

議政白書



江原道議會

目 次

第 1 章 概 観	53
第 1 節 江原道地方自治沿革	55
1. 最初の 邑面長 및 議會議員 選舉	55
2. 最初の 道議會議員 選舉	55
3. 第2代 邑面長 및 邑面議會議員 選舉	55
4. 最初の 市長 및 議會議員 選舉	56
5. 第1代 江原道議會議員 選舉	56
6. 第1代 江原道議會 構成	57
7. 第2代 江原道議會議員 選舉	57
8. 第2代 市議員 및 第3代 邑面議會議員 選舉	57
9. 第2代 江原道議會 構成	57
10. 第10代 市長, 第3代 邑面長 選舉	58
11. 最初の 民選道知事 選舉	58
12. 第3代 江原道議會 開院準備	58
13. 市郡議會議員 選舉 및 院構成	58
14. 第3代 江原道議會議員 選舉 및 院構成	59
15. 第1回 全國同時地方選舉	59
16. 第2回 全國同時地方選舉	60
第 2 節 第5代 江原道議會 開院	62
1. 開院式	62
2. 其他	62
第 3 節 議員選舉	63
1. 本選舉	63
가. 概要	63
나. 選舉事務日程表	63
다. 候補者 登録	66



다. 選舉結果	74
第 4 節 議會組織 및 院構成	79
1. 議會組織	79
가. 開院初 議會機構 現況	79
나. 機構의 變動	79
다. 現在의 機構	79
2. 議員現況	79
가. 議會登錄 및 變動	79
나. 議員現況	80
3. 院構成	81
가. 前半期 議長團選出	81
나. 前半期 常任委員會 構成	81
다. 特別委員會 構成 및 運營	84
第 5 節 議會運營 總括	86
1. 議會運營 概況	86
2. 議會運營 現況	86
3. 行政事務監查	87
4. 江原道政 및 教育行政 質問	88
5. 會期別 主要事項	89
6. 各種 議案 處理 實績	90
가. 議案別 處理實績	90
나. 委員別 處理實績	91
다. 提案者別 處理實績	93
第 6 節 議會事務處	95
1. 機能 및 事務分掌	95
가. 機能	95
나. 事務分掌	95
2. 機構 및 人力	96
가. 機構	96
나. 人力	97

다. 事務處幹部	99
3. 施設 및 裝備	100
가. 議會廳舍	100
나. 施設 및 裝備現況	101
第 2 章 議政活動	103
第 1 節 第92回 臨時會	105
1. 概況	105
가. 開會	105
나. 事務日程	105
다. 議會活動	109
라. 議案處理狀況	112
2. 議決案件	112
가. 條例案	112
나. 建議案	126
第 2 節 第93回 臨時會	133
1. 概況	133
가. 開會	133
나. 事務日程	133
다. 議會活動	135
라. 議案處理狀況	137
2. 議決案件	137
가. 條例案	137
나. 建議案	162
第 3 節 第94回 臨時會	169
1. 概況	169
가. 開會	169
나. 事務日程	169
다. 議會活動	171
라. 議案處理狀況	174



2. 議決案件	174
가. 條例案	174
나. 同議案	185
다. 建議案	186
第 4 節 第95回 臨時會	192
1. 概 況	192
가. 開 會	192
나. 事務日程	192
다. 議會活動	197
라. 議案處理狀況	198
2. 議決案件	199
가. 條例案	199
나. 豫算案	224
다. 建議案	228
第 5 節 第96回 定期會	231
1. 概 況	231
가. 開 會	231
나. 事務日程	231
다. 議會活動	239
라. 議案處理狀況	240
2. 議決案件	241
가. 條例案	241
나. 豫算案	299
다. 同議案	310
라. 建議案	314
第 6 節 第97回 臨時會	325
1. 概 況	325
가. 開 會	325
나. 事務日程	325
다. 議會活動	330

다. 議案處理狀況	332
2. 議決案件	333
가. 條例案	333
나. 同議案	353
다. 建議案	357
라. 規則案	360
第 7 節 第98回 臨時會	364
1. 概 況	364
가. 開 會	364
나. 事務日程	364
다. 議會活動	367
라. 議案處理狀況	368
2. 議決案件	369
가. 條例案	369
나. 同議案	390
다. 建議案	394
第 8 節 第99回 臨時會	399
1. 概 況	399
가. 開 會	399
나. 事務日程	399
다. 議會活動	403
라. 議案處理狀況	406
2. 議決案件	406
가. 條例案	406
나. 豫算案	412
다. 同議案	418
라. 建議案	423
第 9 節 第100回 臨時會	430
1. 概 況	430
가. 開 會	430



나. 事務日程	430
다. 議會活動	433
라. 議案處理狀況	434
2. 議決案件	434
가. 條例案	434
나. 同議案	441
다. 建議案	443
라. 規則案	447
마. 綱領案	452
第 10 節 第101回 臨時會	454
1. 概 況	454
가. 開 會	454
나. 事務日程	454
다. 議會活動	457
라. 議案處理狀況	459
2. 議決案件	460
가. 條例案	460
나. 同議案	508
다. 建議案	510
第 11 節 第102回 臨時會	515
1. 概 況	515
가. 開 會	515
나. 事務日程	515
다. 議會活動	520
라. 議案處理狀況	521
2. 議決案件	522
가. 條例案	522
나. 同議案	538
다. 建議案	542
第 12 節 第103回 臨時會	550

1. 概況	550
가. 開會	550
나. 事務日程	550
다. 議會活動	552
라. 議案處理狀況	554
2. 議決案件	554
가. 條例案	554
나. 建議案	564
第 13 節 第104回 臨時會	567
1. 概況	567
가. 開會	567
나. 事務日程	567
다. 議會活動	569
라. 議案處理狀況	570
2. 議決案件	571
가. 條例案	571
나. 建議案	578
다. 規則案	583
第 14 節 第105回 臨時會	586
1. 概況	586
가. 開會	586
나. 事務日程	586
다. 議會活動	591
라. 議案處理狀況	593
2. 議決案件	594
가. 條例案	594
나. 豫算案	605
다. 同議案	612
라. 建議案	621
第 15 節 第106回 定期會	625



1. 概況	625
가. 開會	625
나. 事務日程	625
다. 議會活動	633
라. 議案處理狀況	635
2. 議決案件	636
가. 條例案	636
나. 同議案	676
다. 建議案	681
第 16 節 第107回 臨時會	690
1. 概況	690
가. 開會	690
나. 事務日程	690
다. 議會活動	695
라. 議案處理狀況	696
2. 議決案件	696
가. 條例案	696
나. 建議案	760
다. 規則案	766
第 17 節 第108回 臨時會	768
1. 概況	768
가. 開會	768
나. 事務日程	768
다. 議會活動	770
라. 議案處理狀況	771
2. 議決案件	772
가. 條例案	804
나. 建議案	810
第 18 節 第109回 臨時會	810
1. 概況	810

가. 開 會	810
나. 事務日程	810
다. 議會活動	813
라. 議案處理狀況	814
2. 議決案件	815
가. 條例案	815
나. 同議案	859
第 19 節 第110回 臨時會	870
1. 概 況	870
가. 開 會	870
나. 事務日程	870
다. 議會活動	875
라. 議案處理狀況	876
2. 議決案件	877
가. 條例案	877
나. 豫算案	910
다. 同議案	916
第 20 節 第111回 定例會	920
1. 概 況	920
가. 開 會	920
나. 事務日程	920
다. 議會活動	925
라. 議案處理狀況	926
2. 議決案件	926
가. 條例案	926
나. 豫算案	953
다. 同議案	956
라. 建議案	958
第 21 節 第112回 臨時會	962
1. 概 況	962



가. 開 會	962
나. 事務日程	962
다. 議會活動	964

第 3 章 行政事務監査 및 道政・教育行政質問 969

第1節 行政事務監査 973

1. 監査概要	973
가. 監査目的	973
나. 監査期間	973
다. 監査方法	973
2. '98년도 行政事務監査	973
가. 實施概要	973
나. 資料의 提出要求	973
다. 監査日程	975
라. 監査結果	976

第2節 道政 및 教育行政 質問 1159

1. 概 況	1159
가. 會期 및 日數	1159
나. 質問議員 現況	1159
다. 質問議題數	1161
2. 第94回 臨時會	1162
가. 第2次 本會議 質問 및 答辯要旨	1162
나. 第3次 本會議 質問 및 答辯要旨	1174
다. 第4次 本會議 質問 및 答辯要旨	1190
3. 第96回 定期會	1203
가. 第2次 本會議 質問 및 答辯要旨	1203
나. 第3次 本會議 質問 및 答辯要旨	1216
다. 第4次 本會議 質問 및 答辯要旨	1231
4. 第100回 臨時會	1244

가. 第2次 本會議 質問 및 答辯要旨	1244
나. 第3次 本會議 質問 및 答辯要旨	1259
다. 第4次 本會議 質問 및 答辯要旨	1273
5. 第106回 定期會	1290
가. 第2次 本會議 質問 및 答辯要旨	1290
나. 第3次 本會議 質問 및 答辯要旨	1306
다. 第4次 本會議 質問 및 答辯要旨	1332
6. 第111回 定例會	1346
가. 第2次 本會議 質問 및 答辯要旨	1346
나. 第3次 本會議 質問 및 答辯要旨	1364
다. 第4次 本會議 質問 및 答辯要旨	1373

第 4 章 其他 議政活動 1379

第1節 議員研鑽會・懇談會・세미나 1383

1. 第5代 江原道議會 議員 研鑽會	1383
2. 議政活動 專門性 提高를 위한 業務 研鑽會	1383
3. 行政事務監査 技法 研鑽	1384
4. 地方自治 關聯 業務研鑽	1384
5. 21世紀 江原道 農業・農村의 發展을 위한 研鑽會	1385
6. 定期會 對比 豫算審査 및 行政事務監査 技法 研鑽會	1385
7. 2000년 道議會情報化過程	1386

第2節 懇談會 및 討論會・比較見學 1387

1. 21세기 강원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방향	1387
2. 21세기 영동지역 사회복지의 발전방향	1387
3. 강원도 생활체육의 발전 방향	1388
4. 강원도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사전협의 간담회	1389
5. 국립공원의 구역조정계획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1389
6. '99강원도의회 의원 총회	1390
7. 도 시・군 합동간담	1390



第3節 國際交流	1392
1. 강원도의회 → 일본국 방문	1392
2. 강원도의회 → 중국 방문	1392
3. 강원도의회 → 캐나다 방문	1392
4. 강원도의회 → 인도네시아 방문	1393
5. 강원도의회 → 러시아 방문	1393
6. 강원도의회 → 동남아 방문	1393
7. 일본 → 강원도의회	1393
8. 중국 → 강원도의회	1394
第4節 議員海外研修	1396
1. '99·'00도의원 해외연수	1396
第5節 陳情 및 請願處理	1400
1. 陳情處理	1400
2. 陳情目錄 및 處理現況	1402
3. 請願處理	1410
第6節 其 他	1411
1. 全國 市·道議會議長協議會 運營	1411
2. 全國 市·道議會 運營委員長 協議會 運營	1413
3. 社團法人 江原道議政會 設立 및 運營	1415
· 江原道議會 歷代議員 人名錄	1425
初代 議員	1425
第2代議員	1426
第3대의원	1427
第4代議員	1428

第 1 節 江原道地方自治沿革

1. 最初の 邑面長 및 議會議員 選舉

1952년 4월 25일 강원도에서는 미수복지구를 제외한 8개군의 3개읍 59면에서 읍면장과 읍면의회의원선거를 동시에 실시하였으며 총 982명의 의원을 선출하였다.

- 제1대 읍·면장 선거

1952년 4월 25일 실시되었으며 기록사항이 전무함.

- 제1대 읍의회의원 선거

1952년 4월 25일 실시되어 원주군 1개읍에 13명, 강릉군 3개읍에 39명, 명주군 2개읍에 26명 등 78명의 의원을 선출하였다.

- 제1대 면의회의원 선거

1952년 4월 25일 실시되어 횡성군 8개면에 100명, 원주군 8개면에 126명, 영월군 8개면에 102명, 평창군 7개면에 90명, 정선군 6개면에 74명, 강릉군 7개면에 188명, 삼척군 7개면에 121명과 현재 경북의 울진군 8개면에 103명 등 총 59개면에서 904명의 위원을 선출하였다.

2. 最初の 道議會議員 選舉

1952년 5월 10일 실시된 최초의 도의회 의원선거시 본도에서는 시국의 불안정과 6·25사변으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3. 第2代 邑面長 및 邑面議會議員 選舉

- 제2대 읍장선거

명주군의 주문진읍과 묵호읍, 삼척군의 삼척읍 등 3개읍에서 1956명 8월 8일 실시되었으며 삼척군 북평읍은 기득권자를 무투표로 그 외는 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자를 확정



○ 제2대 면장선거

춘성군 8개면, 홍천군 10개면, 횡성군 6개면, 원성군 8개면, 영월군 7개면, 평창군 3개면, 정선군 5개면, 명주군 6개면, 삼척군 3개면과 현재 경북의 울진군 3개면등 총 59개면에서 1956년 8월 8일 실시되었으며 춘성군 2개면과 홍천군 7개면, 횡성군 1개면, 영월군 1개면, 정선군 1개면, 명주군 4개면등 16개면에서는 무투표로 기타 면에서는 투표에 의하여 당선자를 확정.

○ 제2대 읍의회의원선거

1956년 8월 8일 실시되어 명주군 2개읍에 26명, 삼척군 2개읍에 26명등 52명의 의원을 선출하였다.

○ 제2대 면의회의원선거

1956년 8월 8일 실시되어 춘성군 8개면에 91명, 홍천군 10개면에 118명, 횡성군 8개면에 91명, 원성군 9개면에 101명, 영월군 8개면에 92명, 평창군 7개면에 81명, 정선군 6개면에 68명, 명주군 8개면에 89명, 삼척군 7개면에 82명과 현재 경북의 울진군 8개면에 93명등 총 79개면에서 906명의 의원을 선출하였다.

4. 最初의 市長 및 議會議員 選舉

○ 제1대 시장선거

최초의 시장선거는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등 3개시에서 실시되었는데 춘천시에서는 3명이 입후보하여 1956년 8월 8일 투표로 선출하였고 원주 및 강릉시는 기득권을 인정 투표 없이 1956년 9월 1일 무투표로 당선이 확정되었다.

○ 제1대 시의회의원선거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등 3개시에서 1956년 8월 8일 실시되어 춘천시 15, 원주시 15, 강릉시 15명등 총45명의 의원을 선출하였다.

5. 第1代 江原道議會議員 選舉

1956년 8월 13일 실시된 선거에서 총 25명의 의원을 선출하였는데 시군별로 보면 춘천시 1, 원주시 2, 강릉시 1, 춘성군 2, 홍천군 3, 횡성군 2, 원성군 1, 영월군 2, 평창군 2, 정선군 1, 명주군 3, 삼척군 3명과 현재의 경북 울진군에서 2명이었다.

6. 第1代 江原道議會議員 構成

1956년 9월 6일 제1회 임시회에서 의장 1인, 부의장 1인을 선출하고, 내무위원회, 산업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징계자격위원회등 6개 위원회를 구성.

7. 第2代 江原道議會議員 選舉

1960년 12월 12일 실시된 선거에서 총 28명의 의원을 선출하였으며, 시군별로 보면 춘천시 2, 원주시 2, 강릉시 2, 춘성군 2, 홍천군 2, 횡성군 2, 원주군 2, 영월군 2, 평창군 2, 정선군 2, 명주군 2, 삼척군 4명과 현재의 경북 울진군에서 2명이었다.

8. 第2代 市議員 및 第3代 邑面議會議員 選舉

○ 제2대 시의회의원 선거

1960년 12월 19일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등 3개 시에서 실시되어 각시별 15명씩 총 45명의 의원을 선출하였다.

○ 제3대 읍의회의원 선거

1960년 12월 19일 실시되어 영월군 1개읍에 13명, 명주군 2개읍에 26명, 삼척군 3개읍에 39명등 78명의 의원을 선출하였다.

○ 제3대 면의회의원선거

1960년 12월 19일 실시되어 춘성군 8개면에 91명, 홍천군 10개면에 117명, 횡성군 8개면에 91명, 원성군 9개면에 101명, 영월군 7개면에 80명, 평창군 7개면에 81명, 정선군 6개면에 68명, 명주군 8개면에 89명, 삼척군 6개면에 69명과 현재 경북의 울진군 8개면에 93명등 총 77개면에서 880명의 의원을 선출하였다.

9. 第2代 江原道議會 構成

1960년에 12월 21일 제22회 임시회에 의장 1인, 부의장 1인을 선출하고, 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산업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징계자격위원회등 7개 위원회를 구성.



10. 第10代 市長, 第3代 邑面長 選舉

- 제2대 시장선거
춘천 4명, 원주 3명, 강릉 2명의 후보가 각각 등록하여 춘천과 원주시 후보자 1명씩 사퇴하여 1960년 12월 26일 선거를 실시 당선자를 확정.
- 제3대 읍장선거
영월군 영월읍, 명주군의 주문진읍과 묵호읍, 삼척군의 삼척읍, 북평읍, 장성읍등 3개군 6읍에서 1960년 12월 26일 선거를 실시하여 6명의 당선자를 확정.
- 제3대 면장선거
제3대 면장선거는 춘성군 8개면, 흥천군 10개면, 횡성군 8개면, 원성군 9개면, 영월군 7면, 평창군 7개면, 정선군 6개면, 명주군 8개면, 삼척군 6개면과 현재 경북의 울진군 8개면등 총 77개면에서 1960년 12월 26일 실시되었으며 흥천군 1개면, 영월군 2개면, 정선군 1개면등 4개면에서는 무투표로 기타 면에서는 투표에 의하여 당선.

11. 最初의 民選道知事 選舉

춘천시의 2개시와 7개군, 현재의 경북 울진군을 포함한 11개시군에서 1960년 12월 29일 실시된 도지사 선거에서는 총 7명이 후보자로 등록 1명이 사퇴하고 6명이 경합하여, 원주에서 출마한 박영록씨가 당선 1960년 12월 29일 제11대 강원도지사로 취임 5개월간 재임하였다.

12. 第3代 江原道議會 開院準備

- 의회청사 신축 준공 : 현재의 청사는 1989년 7월 31일 착공하여 1990년 10월 30일 준공
- 의회준비단 발족 : 1991년 2월 1일 내무국지방과에 3명의 인원으로 의회설치를 위한 준비단을 발족

13. 市郡議會議員 選舉 및 院構成

- 시군의회의 의원선거
1991년 3월 26일 시군의회의의원선거를 실시하여 22개 시군, 240명의 의원을 선출하였다.

- 시군의회 구성
1991년 4월 15일 22개 시군에서 동시에 임시회를 개회 의장단을 선출하고 원을 구성.

14. 第3代 江原道議會 議員選舉 및 院構成

- 도의회의원 선거
1991년 6월 20일 도내 22개시군 54개 시군에서 54명의 의원을 선출
- 강원도의회 구성
 - 전반기
1991년 7월 8일 제27회 임시회에서 의장 1인, 부의장 2인과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산업위원회, 건설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후반기
1993년 7월 6일 제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장 1인, 부의장 2인과 제3차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위원회, 건설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강원도의회 위원회 명칭 일부변경
1995년 5월 9일 제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건설위원회”를 “건설방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그 시행은 1995년 6월 27일 부터이다.

15. 第1回 全國同時地方選舉

- 도지사 선거
춘천시의 6개시와 11개군등 총 18개 시군에서 1995년 6월 27일 실시된 도지사선거에서는 민주자유당 이상룡 후보와 자유민주연합 최각규 후보가 경합하여 자유민주연합 최각규 후보가 당선되었다.
- 시장·군수 선거
18개 신군에서 1995년 6월 27일 실시된 시장·군수선거에서는 자유민주당 17명, 민주당 10명, 자유민주연합 4명, 무소속 56명등 총 87명의 후보가 출마하여 자유민주당 9명, 민주당 1명, 자유민주연합 1명, 무소속 7명등 총 18명의 시장·군수가 당선되었다.
- 시군의회 의원선거 및 원구성



- 시군의회 의원선거
1995년 6월 27일 실시된 시군의회 의원선거에서는 18개시군 227개 선거구에서 245명의 의원을 선출하였다.
- 시군의회 구성
1995년 7월 4일부터 7월 18일까지 각 시군별로 임시회를 개최, 의장단을 선출하고 원을 구성하였다.
- 제4대 강원도의회의원 선거 및 원구성
 - 제4대 강원도의회의원 선거
1995년 6월 27일 실시된 제4대 강원도의회 의원선거에서는 18개시군 52개 선거구에서 총156명의 후보가 경합하여 52명의 의원과 이에 따른 비례대표의원 6명 등 총 58명의 의원을 선출하였다.
 - 제4대 강원도의회 전반기 원구성
1995년 7월 13일 제63회 임시회에서 의장 1인, 부의장 2인과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위원회, 건설방재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강원도의회 위원회 명칭 일부변경
1996년 7월 22일 제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건설방재위원회”를 “관광건설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그 시행일은 1996년 8월 8일부터이다.
 - 제4대 강원도의회 후반기 원구성
1997년 1월 9일 제78회 임시회에서 의장 1인, 부의장 2인과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16. 第2回 全國同時地方選舉

- 도지사선거
춘천시의 6개시와 11개시군 등 총 18개 시군에서 1998년 6월 4일 실시된 도지사 선거에서 한나라당 김진선 후보와 자유민주당 한호선 후보, 무소속의 이상룡 후보가 경합하여 한나라당 김진선 후보가 당선되었다.
- 시장·군수 선거
18개시군 시장·군수 선거에서는 한나라당 17명, 국민회의 14명, 자유민주연합 9명, 국민신당 3, 무소속 13명 등 총 56명의 후보가 출마하여, 한나라당 13명, 자유민주연합 2명, 새정치국민회의 1명, 무소속 2명 등 총 18명의 시장·군수가 당선되었다.

○ 시군의회 의원선거 및 원구성

- 시군의회 의원선거

1998년 6월 4일 실시된 시군의회 의원선거에서는 18개시군 185개 선거구에서 195명의 의원을 선출하였다.

- 시군의회 구성

1998년 7월 일부터 7월 일까지 각 시군별로 임시회를 개최, 의장단을 선출하고 원을 구성하였다.

○ 제5대 강원도의회의원 선거 및 원구성

- 제5대 강원도의회의원 선거

1998년 6월 4일 실시된 제5대 강원도의회 의원선거에서는 18개시군 42개 선거구에서 총 104명의 후보가 경합하여 42명의 의원과 이에 따른 비례대표의원 5명등 총 47명의 의원을 선출하였다.

- 제5대 강원도의회 전반기 원구성

1998년 7월 13일 제92회 임시회에서 의장 1인, 부의장 2인과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第 2 節 第5代 江原道議會 開院

1. 開院式

- 개원식은 1998년 7월 13일 14:00시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도의원 47명과 도지사, 교육감을 비롯하여 도단위기관장, 언론사대표, 유관기관대표등을 초청한 가운데 “주자명”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의 사회로 국민의례, 의원선서, 의장개회사, 도지사축사, 교육감축사의 순으로 거행되었으며, 이날 실시한 의원선서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 선 서 전 문 〉

·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8년 7월 13일

강 원 도 의 회 의 원

2. 其 他

- 개원식 직전 12:00에 강원도지사 주최 오찬이 도청 신관대회의실에서 도의원 전원, 집행부 간부공무원, 교육감 및 교육청 간부, 의회사무처 처장·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으며
- 개원식이 끝난 후 14:30분부터 강원도의회 청사 현관에서 도의원 47명, 도지사, 교육감이 참석 기념촬영을 하고, 14:50분부터 도의회 의장초청 다과회를 도청 신관상황실에서 개원식 참석자 전원이 참석하였다.

第 3 節 議 員 選 舉

1. 本 選 舉

가. 概 要

- 제5대 강원도의회 의원선거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34조제1항 및 부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 6월 4일 실시되었다.
- 의원선거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2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구 및 행정구역등을 고려 시군을 분할하여 설정하였는데 인구 7만의 시군은 2인 7만이상 30만미만의 시군은 3인의 의원을 두도록 한 규정에 따라 총42개의 선거구에 42인의 의원과 비례대표 5명을 포함하여 총47인 의원을 정수로 하게 되었다.
- 선거인수는 총827개 투표구 487,020세대 1,540,809명중 70.6%인 1,087,113명이며, 투표인수는 선거인수의 61.9%인 672,375명이 투표에 참가하였다.
- 투표결과는 무효 21,379표를 제외한 650,998표가 유효투표로 확정되었으며, 정당별 득표결과로 보면 한나라당이 269,982표, 국민회의 220,689표, 자유민주연합 76,146표, 국민신당 13,335표를 얻었고 무소속은 70,846표를 차지하였다.

나. 選舉事務日程表

- '97. 12. 6 ~ '98. 6. 4까지 : 기부행위제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의 설치금지
- '98. 3. 6까지 : 향토예비군 소대장 이상의 간부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직의 사직(당해기관)
- '98. 4. 15까지 : 인구수등 해당 선관위에 통보
- '98. 5. 3까지 : 공무원등 입후보제한을 받은 자의 사직
- '98. 5. 3 ~ 6. 4까지 : 입후보자 거주요건



- '98. 5. 9까지 : 선거비용 제한액등 공고·통지
- '98. 5. 13까지 : 정당·후보자등이 연설회장소로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나 장소의 지정·공고
- '98. 5. 13 ~ 5. 17까지 : 선거인명부작성, 부재자신고, 부재자신고인명부작성
- '98. 5. 16까지 : 후보자등의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 지정·공고·통지
- '98. 5. 18까지 : 투표용지작성방법 결정·공고·통지 및 통보
- '98. 5. 18에 : 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
- '98. 5. 18 ~ 5. 20까지 : 선거인명부 열람·공람 및 이의신청
- '98. 5. 19 ~ 5. 20까지 : 후보자등록신청
- '98. 5. 19 ~ 6. 4까지 : 의정활동보고의 제한
- '98. 5. 20까지 : 경력방송원고제출, 후보자투표용지 게재순위 결정, 합동연설회 실시·장소결정 공고·통지
- '98. 5. 21까지 :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 사본 교부신청 및 작성비용 납부
- '98. 5. 21 ~ 5. 27까지 : 선거인명부 누락자 증재신청 및 등재신청에 대한 심사, 결정 통지
- '98. 5. 23까지 : 선전벽보·선거공보 지방자치단체의장 선거의 부재용 책자형소형인쇄물 제출
- '98. 5. 24까지 : 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 설치 허가신청
- '98. 5. 26까지 : 매세대별 선거공보 발송, 부재자투표참관인 선정·신고, 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참관인 선정·신고, 순회투표의 부재자투표참관인 신고·교체
- '98. 5. 27까지 : 부재자투표소 설비
- '98. 5. 28까지 : 투표용지 모형공고, 선거인명부 확정 송부 통보
- '98. 5. 28 ~ 5. 30까지 : 부재자투표소 투표
- '98. 5. 30까지 : 개표소 공고
- '98. 5. 31까지 : 선거공보 추가발송
- '98. 6. 1까지 : 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 위촉공고
- '98. 6. 3까지 : 투표용지와 투표함 송부, 투표소의 설비, 개표소의 설비, 투표참관인 선정·신고,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 '98. 6. 4 : 선거일(투표 및 개표)
- '98. 6. 5 : 당선인결정·공고·통지, 당선증 교부 및 보고

[선거구 및 의원정수]

시 군 별 계	선거구명	선 거 구 역	선거구수	의원정수
춘 천 시	제1선거구	신북읍, 동면, 북산면, 후평1동, 후평2동, 후평3동	4	4
	제2선거구	서면, 사북면, 중앙동, 소낙동, 근화동, 소양동, 호반동, 사우동		
	제3선거구	동산면, 동내면, 교동,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석사동		
	제4선거구	신동면, 남면, 남산면, 조운동, 약사동, 죽림동, 퇴계동, 온의동		
원 주 시	제1선거구	문막읍, 부론면, 호저면, 지정면, 태장1동, 태장2동	4	4
	제2선거구	중앙평원동, 일산동, 학성1동, 학성2동, 단계동, 우산동		
	제3선거구	소초면, 귀래면, 판부면, 신림면, 봉산1동, 봉산2동, 행구동		
	제4선거구	원인동, 개운동, 명륜1동, 명륜2동, 단구동		
강 릉 시	제1선거구	강동면, 옥계면, 장현동, 월호평동, 중앙동, 입암동, 옥천동, 두산동	4	4
	제2선거구	왕산면, 구정면, 홍제동, 임당동, 내곡동, 노암동		
	제3선거구	주문진읍, 성산면, 사천면, 연곡면, 유천동, 죽간동, 윤정동, 저동		
	제4선거구	교1동, 교2동, 포남1동, 포남2동, 초당동, 송정동		
동 해 시	제1선거구	천곡동, 송정동, 북삼동, 북평동, 이원동, 삼흥동, 삼화동	2	2
	제2선거구	부곡동, 동호동, 향노동, 발한동, 사문동, 묵호동, 어달동, 망상동		
태 백 시	제1선거구	황지1동, 황지2동, 황지3동, 상장동, 소도동, 화전1동	2	2
	제2선거구	장성1동, 장성2동, 장성3동, 문곡동, 철암1동, 철암2동		
속 초 시	제1선거구	영랑동, 동명동, 노학동, 조양동, 청호동, 대포동, 도문동	2	2
	제2선거구	중앙동, 금호동, 청학동, 교동		
삼 척 시	제1선거구	도계읍, 하장동, 미로면, 신기면, 남양동, 당저동, 도원동	2	2
	제2선거구	원덕읍, 원덕면, 노곡면, 가곡면, 교동, 정리동, 사직동		
홍 천 군	제1선거구	홍천읍, 북방면	2	2
	제2선거구	화촌면, 주촌면, 내촌면, 서석면, 동면, 남면, 내며, 서면		
횡 성 군	제1선거구	횡성읍, 공근면, 서원면	2	2
	제2선거구	우천면, 안흥면, 둔내면, 갑천면, 청일면, 강림면		
영 월 군	제1선거구	영월읍, 상동읍, 중동면, 하동면	2	2
	제2선거구	북면, 남면, 서면, 주천면, 수주면		
평 창 군	제1선거구	평창읍, 미탄면, 방림면, 대화면	2	2
	제2선거구	봉평면, 용평면, 진부면, 도암면		
정 성 군	제1선거구	정선읍, 동면, 북면, 북평면, 임계면	2	2
	제2선거구	고한읍, 사북읍, 신동읍, 남면		
철 원 군	제1선거구	철원읍, 동송읍	2	2
	제2선거구	김화읍, 갈말읍, 서면, 근남면, 근북면		
화 천 군	제1선거구	화천읍, 간동면	2	2
	제2선거구	하남면, 상서면, 사내면		
양 구 군	제1선거구	양구읍	2	2
	제2선거구	남면, 동면, 방산면, 해안면		



시 군 별	선거구명	선 거 구 역	선거구수	의원정수
인 제 군	제1선거구	인제읍, 북면, 서화면	2	2
	제2선거구	남면, 기린면, 상남면		
고 성 군	제1선거구	간성읍, 죽왕면, 토성면	2	2
	제2선거구	거진읍, 현내면		
양 양 군	제1선거구	양양읍, 서면, 강현면	2	2
	제2선거구	손양면, 현북면, 현남면		
비례대표				5

다. 候補者 登録

1) 登録現況

강원도의회 의원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전 16일부터 2일간(1998년 5월 19~5월 20일) 총104명이 등록하였으며, 후보자 등록현황은 아래와 같다.

가) 政黨別

계	한나라당	국민회의	자유민주연합	국민신당	무 소 속	비 고
104	35	37	14	3	15	()은
(13)	(3)	(5)	(4)	(1)		비례대표

나) 職業別

계	정치인	농 업	상 업	약 사	회사원	운수업	공무원	수산업	건설업	기 타
104	8	17	19	2	2	1	29	2	5	19
(13)	(5)					(1)		(1)	(1)	(5)

다) 學歷別

계	고졸이하	고 졸	전문대졸	대 퇴	대 졸	대학원수료	대학원졸
104	19	33	1	9	31	10	1
(13)	(4)	(5)			(3)		(1)

라) 年 齡 別

계	31~35	36~40	41~45	46~50	51~55	56~60	61세이상
104	11	15	12	12	26	18	10
(13)		(1)	(1)		(4)	(2)	(5)

2) 候 補 者 名 簿

가) 地 域 區 道 議 員

시군별	선거구명	기호	정 당 명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직 업	학 력	경 력	득표수
춘천시	춘천시제1	1	한나라당	許 彬	남	43. 4. 10	동면 장학리 80-1	음식업	춘천고졸	· 강원도의회3대의원 · 강원도의회4대의원	14,307 (50.1)
		2	새 정 치 국민회의	池南基	남	54. 9. 6	신북읍 산천리 796	농 업	춘천기계공 고졸	· 강원도의회의원 · 새시대새정치청년연합 강원도지부장	9,340 (32.7)
		4	국민신당	安炳奎	남	60. 5. 20	후평1동 711-3	작 가	한국방통대 중퇴	· 춘천시의회의원 · 강원일보신춘문예소설 부분당선	4,882 (17.1)
	춘천시제2	1	한나라당	李茂淳	남	49. 9. 10	서면 방동리 849 1/1	사 업 (목축업)	춘천농고졸	· 춘천아마추어복싱연맹 회장 · 제4대강원도의회의원	7,617 (39.5)
		2	새 정 치 국민회의	邊知亮	남	58. 6. 15	후평1동 현대A 102-1302	시 민 운동가	서울대정치 학과졸	· 공선협사무처장 · 경실련사무국장	6,447 (33.5)
		3	자유민주 연 합	黃煥道	남	43. 7. 12		강원도의 회의원	춘천고졸	· 춘천고등학교총동창회 이사 · 강원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5,197 (27.0)
	춘천시제3	1	한나라당	金東觀	남	52. 3. 15	석사동 402-2	(주)월드 무역대표 이사	춘천고2년 중퇴	· 한나라당춘천시을지구 당부위원장 · 월드카대표	8,302 (35.7)
		2	새 정 치 국민회의	鄭然大	남	61. 8. 14	석사동 705-16 19/2	시우량공 고사대표	춘천농고졸	· 한국광고사업협회강원 도지부장 · 한국자유총연맹춘천시 지부장	10,245 (44.1)
	춘천시제3	4	국민신당	李桂天	남	58. 10. 10	석사동 283-15 삼익1차A 101-903	(주)천세 경영인	한국방통경 영학과졸	· 이인제후보자춘천시를 연락소장 · 국민신당강원도지부사 무처장	4,706 (20.2)



시군별	선거구명	기호	정 당 명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직 업	학 력	경력	득표수
춘천시	춘	1	한나라당	徐鍾乙	남	35. 7. 24	퇴계동 878-87/2	무	강원대농학 과졸	· 춘천시온의동장 · 대한지적공사강원지사장	10,565 (43.6)
	천	2	새 정 치 국민회의	鄭載雄	남	61. 7. 22	교동 11-1457/5	정당인	강원대경제 학과졸	· 새정치국민회의춘천시 을지구당부위원장 · 춘천노동상담소장	8,591 (35.5)
	제 4	3	자유민주 연 합	元太敬	남	58. 1. 21	퇴계동 885-7	자영업	강원대경영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졸	· 시인 · 춘천경실련시민상담소 전문위원	5,058 (20.9)
원주시	원	1	한나라당	蔡喜三	남	60. 2. 10	태장2동 주공A 302-205	상 업	상지대경영 학과졸	· 원주시노동부고충처리 상담위원회총무 · (현)한나라당원주시갑 지구당청년회장	6,515 (31.3)
	시	2	새 정 치 국민회의	郭魯隣	남	41. 3. 21	문막읍 취병리 405	농 업	문막중졸	· 원주시홍보위원부회장 · (현)원주시농촌지도자 시연합회장	7,416 (35.6)
	제 1	3	자유민주 연 합	洪完鎬	남	40. 7. 12	소초면 장양리 852	농 업	강원대농학 과졸	· 재춘천원주총학생회회장 · 농촌지도직공무원(25 년간)	6,889 (33.1)
	원 주 시 제 2	1	한나라당	林相奎	남	36. 9. 5	단계동 808-1 라이프A101-10 5	정당인	강원대체육 과졸	· 원주시의회부의장 · 강원도의회교사위원회 위원장	9,057 (38.2)
		2	새 정 치 국민회의	申秀徹	남	62. 10. 28	단계동 현대A 102-1302	상 업	상지대행정 대학원재학	· 국민회의원주시갑지구 당부위원장 · 대성예식장(대성회관) 대표	5,864 (24.7)
		3	자유민주 연 합	柳鍾浩	남	58. 1. 5	일산동 333-7 21/6	공 업	연세대중어 중문학과졸	· 신흥공업사장 · 원주시의회의원(현)	8,793 (37.1)
	원 주 시 제 3	1	한나라당	沈相基	남	38. 4. 7	봉 산 2 동 1187-10	강원도의 회위원	원주농고졸	· 부론농협조합장 · 부론면장	9,610 (44.6)
		2	새 정 치 국민회의	安相賢	여	63. 7. 16	봉산2동 현대A 611호	정당인	서강대공정 책대학원졸	· 새정치국민회의원주시 을지구당위원장(현) · 강원도의회의원(현)	11,931 (55.4)
	원 주 시 제 4	1	한나라당	李寅燮	남	63. 7. 20	명륜1동 현대A 103동 401호	무	경희대대학 원정치학과 졸	· 원주시의회의원 · 우리밀살리기운동원주, 횡성지부이사	9,084 (33.7)
		2	새 정 치 국민회의	羅昌熙	남	56. 1. 19	명륜1동 265-12	상공인	숭실대대학 원경영학과 졸	· 원주시의원(명륜동)역임 · 강원도시·군의회청년 의원협의회대표	8,667 (32.2)
		3	자유민주 연 합	孫淑子	여	43. 6. 15	명륜1동 현대1차A 101-703	가정법률 상담소	숙명여대대 학원졸	· 제4대의회의의원 · 법률구조법인한국가정 법률상담소장	7,106 (26.4)
		4	무 소 속	徐相洙	남	30. 1. 9	단구동 140-6	삼영기업 사대표	부산대중퇴	· 단구동새마을지도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2,059 (7.6)

시군별	선거구명	기호	정 당 명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직 업	학 력	경력	득표수
강릉시	강릉시제1	1	한나라당	朴洛晋	남	35. 4. 17	옥계면 현내리 357-1 1/2	강원도의원	강원대농학과졸	· 1, 2대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릉시협의회장	13,203 (58.1)
		2	새정치국민회의	劉鉉珉	남	62. 11. 20	남문동 4-1 6/4	은혜물산(주)대표	관동대환경공학과졸	· 강릉농공고총동창회 장학회사 · 국민의회의강릉시갑지구 당부위원장	9,525 (41.9)
	강릉시제2	1	한나라당	辛昌承	남	49. 7. 26	홍제동 741 1/3	(주)창명상운 대표이사	강릉상고졸	· 경포초교동창회부회장 · 한나라강릉시갑지구당 상임부위원장	10,942 (48.8)
		2	새정치국민회의	朴興錫	남	64. 5. 15	홍제동 145-12 14/1	정당인	관동대경영행정대학원졸	· 교보생명소장 · 국민의회의강릉시갑지구 당부위원장	5,380 (24.0)
		3	자유민주연합	李炯錫	남	63. 4. 2	내곡동 480-1 6/2	정당인	고려대정치외교학과졸	· 강원일보정치부기자 · 강원일보국회출입기자	6,111 (27.2)
	강릉시제3	1	한나라당	崔瀋河	남	41. 11. 25	주문진읍 주문3리 5-314	상업	관동대상학과중퇴	· 명주군의회전, 후반기 부의장 · 강릉시의회의원	10,300 (47.2)
		2	새정치국민회의	鄭仁壽	남	46. 2. 25	연곡면 영진리 335 삼천리A 101호	기타	주문진중퇴	· 강원도제3대도의원 · 김대중대통령후보조직 담당보좌역	11,542 (52.8)
	강릉시제4	1	한나라당	李勳	남	45. 11. 11	교2동 18-16 대림A 205호	강원도의회의원	관동대상학과졸	· 민주당강원도지부사무 처장 · 강원도의회의정연구회장	18,084 (63.4)
		2	새정치국민회의	金起淳	남	45. 1. 2	교동 165-166	건설업	한국방송통신대학재학	· 지방공무원 · 전기공사업경력	10,456 (36.6)
동해시	동해시제1	1	한나라당	金振東	남	49. 11. 10	송정동 1044	강원도의회의원	연세대행정대학원4학기수료	·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강원도종직자율위원(현)	19,686 (71.5)
		2	새정치국민회의	權五聲	남	53. 7. 29	천곡동 주공5차 A 505-703	정당인	삼척산업대 환경공학과 3년재학	· 강원지구JC특우회상 무위원 · 민주협운영위원	7,862 (28.5)
	동해시제2	1	한나라당	吳元一	남	55. 4. 7	목호진동 9-1 18/4	수산업	목호고졸	· 강원도의회의원(한,중 친선협의회간사)	9,245 (52.9)
		2	새정치국민회의	朴載善	남	41. 3. 20	발한동 573-1 7/3	정당인	한국방송대 법학과 2년재학	· 새정치국민회의동해지구당수석부위원장 · 새정치국민회의강원도 수산대책특위위원장	2,080 (11.9)
		3	자유민주연합	林順觀	남	44. 9. 7	부곡동 산21번지	회사원	삼척산업대 산업행정과졸	· 동해시재향군인회회장 · 동해시번영회부회장	6,138 (35.1)



시군별	선거구명	기호	정 당 명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직 업	학 력	경 력	득표수
태백시	태백시제1	1	한나라당	李相黼	남	58. 4. 10	소도동 19 9/3	무	관동대경영행정대학원졸	· 태백시의회의원 · 태성전문대강사	5,535 (35.8)
		2	새 정치국민회의	朴茂奉	남	61. 1. 18	황지3동 1/3	상 업	상주농업전문대농학과졸	· '95통합민주당태백시장출마 · 새정치국민회의강원도지부청년위원장	3,793 (24.5)
		4	무 소 속	朴金龍	남	49. 8. 29	황지3동 1/1	강원도의회의원	춘천고졸	· 황지중고총동문회장 · 강원도의회내무위원회간사	6,124 (39.6)
	태백시제2	1	한나라당	鄭圓教	남	42. 1. 5	장성3동 6/1	농 업	독학	· 강릉영동지방노동부 기자 · 강원도의회산업위원회위원장	5,664 (46.5)
		2	새 정치국민회의	孫石岩	남	46. 3. 15	문곡동 2/6 광원 [㉠] 204-206	무	태백기계공고졸	· 대한석탄공사노동조합위원장	6,517 (53.5)
정선군	정선군제1	1	한나라당	崔振圭	남	45. 11. 27	북평면 장열리 494	농 업	여량중졸	· 강원도의회의원	4,903 (35.1)
		2	새 정치국민회의	劉燾大	남	33. 11. 20	정선읍 북실리 광원 [㉠] 302호	무	정성중고졸	· 강원도의원역임 · 강원남부생악협동조합장	4,908 (35.1)
		3	자유민주연합	崔承榮	남	64. 2. 16	북평면 북평6리 2반	강일환경산업대표	청주대영어영문학과4년제적	· '92민주당정선군지구당위원장 · '96민주당태백, 정선지구당위원장	4,175 (29.9)
	정선군제2	1	한나라당	金在錫	남	45. 4. 25	신동읍 조동리 216-1 6/8	농 업	대성고졸	· 정선군의회초대부의장 · 함백청년회의소초대회장	5,024 (40.5)
		2	새 정치국민회의	成熙稷	남	57. 10. 25	고한읍 고한7리 57	무	구봉고등국민고졸	· 김대중후보강원도선대위대변인 · 민족문학작가회의소속시인	7,385 (59.5)
	속초시제1	1	한나라당	安東燮	남	35. 11. 19	노학동 619-5 (33)	정당인	중앙대철학과중퇴	· 속초시청기획감사실장(전) · 강원도민방위소양강사	4,891 (27.9)
속초시	속초시제1	2	새 정치국민회의	金聖龍	남	56. 4. 25	장사동 635-5 3/2	수산업	설악중졸	· 전국어업인후계자중앙회장(전) · 새시대새정치연합청년회속초지구회장(현)	6,249 (35.6)
		3	자유민주연합	金吉貞	남	41. 3. 9	조양동 721-2	강원도의회의원	속초고졸	· 강원도의회의원(현) · 제10대속초고등학교총동문회장	6,400 (36.5)
	속초시제2	1	한나라당	張東希	남	37. 3. 1	교동 동부 [㉠] 102동 604호	상 업	속초고졸	· 속초중학교총동창회장(현) · 속초고등학교총동창회수석부회장(현)	6,569 (41.6)
		2	새 정치국민회의	徐東石	남	37. 2. 19	교동 769-22 14/7	노조위원장	고성고졸	· 전국항운노련속초항운노조위원장(현) · 새정치국민회의속초지구당(현)	4,857 (30.8)
		4	무 소 속	韓永煥	남	51. 5. 20	교동 933-10	상 업	성덕초교	· 속초시의회제2대의원(전) · 성결교회강원도지방남선교회회장(현)	4,350 (27.6)

시군별	선거구명	기호	정 당 명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직 업	학 력	경 력	득표수
고성군	고성군제 1	1	한나라당	金源基	남	58. 9. 1	토성면 아아진4리 4반	도의원	동광농공고졸	· 강원도의원 · 강원도농어민후계자협의회장	5,659 (49.4)
		2	새정치국민회의	禹 成	남	60. 12. 24	간성읍 신안4리 1반	사회사업	한신대신대학원졸	· 우리밀살리기영북지부사무국장 · 고성녹색사랑사무국장	1,692 (14.8)
		3	자유민주연합	金完式	남	42. 10. 10	토성면 성대2리 14	고성군임업협동조합	동국대농학과졸	·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 · 고성군의회의원	4,107 (35.8)
	고성군제 2	1	한나라당	尹承根	남	55. 3. 7	거진읍 거진1리 동진④ A-2003	상 업	고성고졸	· 강원도의원 · 한나라당강원도의회부총무	4,126 (49.8)
		2	새정치국민회의	辛明善	남	44. 12. 16	거진읍 원당리 261	농 업	고성고졸	· 제11대국회의원중앙부서 · 제12대국회의원중앙부서	4,151 (50.2)
	양양군	양양군제 1		한나라당	朴隆吉	남	45. 1. 3	양양읍 서문리 163번지	상 업	양양고졸	· 양양군체육회수석부회장(현) · 현산장학회상임이사(현)
	양양군제 2	1	한나라당	崔鍾益	남	63. 6. 15	양양읍 구교리 106 로알타워 103-211	상 업	양양명륜중 중퇴	· 한국복지재단양양군후원회장 · 양양여자중학교운영위원장	2,269 (37.4)
		2	새정치국민회의	咸鍾善	남	59. 5. 30	현남면 북분리 212	상 업	강릉대무학 학과졸	· 강릉대학교총학생회장 · 새정치국민회의도지부정책실장	3,805 (62.6)
인제군	인제군제 1	2	새정치국민회의	沈鍾基	남	55. 10. 26	북면 원통 685-4 청마빌리 B-402	인제자동차학원장	명지대경영학과2년중퇴	· 한국자동차학원연합회 강원도협회운영위원 ·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인제지구간사	4,391 (38.6)
		4	무소속	李基淳	남	53. 12. 20	인제읍 상동리 내설약④ 101동 1203호	강원도의회의원	인제고졸	· 인제군번영회장 · 강원도의회의원	6,973 (61.4)
	인제군제 2	1	한나라당	邊完基	남	43. 5. 5	기린면 현리 4반 638	약 사	경희대약학과졸	· 강원도의회의원	3,771 (60.7)
		2	새정치국민회의	朴炳龍	남	48. 6. 11	기린면 현리 741-3번지	강원도의회의원	성수상고중퇴	· 4대강원도의회의원	1,917 (30.9)
		3	자유민주연합	龍泰雄	남	44. 12. 18	남면 여론1리 656번지	농 업	서울농업대수 의학과졸업	· 환경운동연합인제지 회장	520 (8.4)
	삼척시	삼척시제 1	1	한나라당	李相俊	남	47. 3. 24	도계읍 도계3리 278-11번지	삼덕기업 사대표	한양공대광산공학과2년중퇴	· 사단법인한국청년회의 소강원지구회장 · 제4대강원도의회의원(현)
2			새정치국민회의	金是瀟	남	39. 2. 3	도계읍 전두리 105-10	(주)광보 산업상임 고문	경희대법학과졸	· 강원도의회의원(전) · 바르게살기운동삼척군협의회장(전)	3,184 (13.8)
4			무소속	鄭在旭	남	43. 4. 25	삼척시 성내동 2번지 15/1	강원도의회의원	한양대회공과졸	· 삼척JC회장 · 강원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현)	7,413 (32.1)



시군별	선거구명	기호	정 당 명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직 업	학 력	경 력	득표수
삼척시	삼척시제2	2	새정치국민회의	李連雨	남	50. 12. 20	근덕면 동막리 673번지 5/1	삼척축협조합장	원덕중졸	· 삼척축협조합장(현) · 축협중앙회이사	7,622 (34.2)
		3	자유민주연합	金東烈	남	55. 9. 9	근덕면 궁촌리 456번지	축산업	삼척공업고등전문학교 2년중퇴	· (사)한국농어민후계자 자연합회중앙회장 · 강원도의회의원(현)	7,548 (33.9)
		4	무소속	朴相洙	남	57. 7. 11	정상동 주공A 104-305	(유)강원건설이사	관동대행정대학원졸	· 삼척시축구협회장이사 · 삼척산업대학교총동문회부회장	7,113 (31.9)
홍천군	홍천군제1	1	한나라당	黃永哲	남	65. 7. 13	홍천군 연봉리 465	도의원	서울대정치학과졸	· 군의원 · 도의원	10,126 (61.4)
		2	새정치국민회의	全長壽	남	64. 6. 8	홍천읍 연봉1리 450	정치인	인하대정치외교대학원졸	· 홍천청년회의소외무부회장 · 21세기홍천포럼운영위원	6,379 (38.6)
	홍천군제2	1	한나라당	高鍾學	남	40. 9. 9	남면 명동리 525	도의원	양덕중졸	· 강원도의회내무위원장 · 강원도의회예산결산위원장	7,014 (36.2)
		2	새정치국민회의	朴熙垞	남	31. 6. 11	두촌면 천현리 96	농업	춘천농과대학농학과졸	· 홍천군의회후기의 · 대한노인회중앙지도강사	5,432 (28.0)
		4	무소속	李相九	남	41. 8. 16	화촌면 내삼포리 315	임업협동조합장	성균관대법률학과졸	· 군의원 · 도의원	6,926 (35.8)
횡성군	횡성군제1	1	한나라당	元鍾益	남	45. 11. 13	횡성읍 읍상리 49-2	농업	횡성고졸	· (현)강원도의회의원 · (현)횡성군생활체육협의회회장	7,014 (54.2)
		2	새정치국민회의	尹萬福	남	38. 7. 3	횡성읍 읍하3리 215-3	농업	횡성고졸	· 농산물검사소횡성, 영월, 철원, 삼척소장 · 재건중학교강사	5,933 (45.88)
	횡성군제2	1	한나라당	全仁鐸	남	48. 3. 16	둔내면 석문리 191	상업	연세대토목공학과수료	· 민주평통자문위원횡성군협의회장 · (현)강원도의원	4,185 (37.9)
		2	새정치국민회의	朴志相	남	42. 12. 1	둔내면 자포곡리 412-13	약사	중앙대약학대졸	· 둔내 중·고등학교육성회장 · 횡성군약사회장	2,960 (26.8)
		4	무소속	李均	남	48. 2. 10	갑천면 구방리 498	농업	국민대법학과졸	· 선거인단당선횡성군의회의원1대, 2대	3,898 (35.3)
영월군	영월군제1		무소속	嚴玟鉉	남	53. 2. 14	영월읍 하송5리 11번 248-1	영진기업대표	한국유대대학도학과중퇴	· 영진기업대표 · 영월군재향군인회장	무투표
	영월군제2	1	한나라당	嚴文燮	남	39. 8. 22	서면 신천2리 장미A동 402호	강원도의회의원	주천중고졸	· 서면, 주천면장 · (현)강원의회의원	5,180 (54.6)
		2	새정치국민회의	金德龍	남	35. 7. 7	서면 쌍용리 450-2	회사원	국민대행정학과졸	· 제2대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 · 제1대강원도의회의원	4,300 (45.4)

시군별	선거구명	기호	정 당 명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직 업	학 력	경력	득표수
평창군	평창군제 1	1	한나라당	金秀暻	남	38. 6. 1	평창읍 상리 239번지	상 업	태백고졸	· 평창군요식업협회회장 · 자유총연맹평창군지부장	6,598 (57.6)
		4	무 소 속	金永泰	남	47. 4. 25	평창읍 하리 169-7(32)	상 업	평창고졸	· 바르게살기평창군협의 회장 · 평창읍번영회장	4,862 (42.4)
	평창군제 2	1	한나라당	陸瓚均	남	38. 4. 6	도암면황계12리 1번 272	농 업	서울시립대 농공학과졸	· 대관령원예조합장(현) · 한국감자연구회부회장	6,251 (48.5)
		4	무 소 속	金秀哲	남	49. 3. 24	진부면하진부리 152-3	공무원	서석초고졸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강원도의회의원	6,626 (51.5)
화천군	화천군제 1	1	한나라당	宋林秀	남	45. 2. 2	간동면 오음리 736-2	농 업	서울중앙대 신고졸	· 농협조합장 · 강원도의회의원	2,488 (38.0)
		2	새 정 치 국민회의	李天圭	남	39. 10. 15	화천읍 하3리 52-20번지	무	전북대농과 대학졸	· 화천군민방위강사 · 재향군인회화천군부회장	2,889 (44.2)
		4	무 소 속	金秀哲	남	57. 2. 21	화천읍 아4리1반 낙원A A-701	화천문화원사무국장	화천실고졸	· 화천청년회의소회장 · 화천중학교운영위원	1,165 (17.8)
	화천군제 2	2	새 정 치 국민회의	申二澈	남	41. 1. 1	사내면 사창리 746	사내농협 조합장	춘천중졸	· 사내농협조합장 · 화천군체육회이사	3,401 (49.3)
		4	무 소 속	鄭忠洙	남	52. 12. 29	상서면 구운리 315-1	농 업	화천중졸	· 강원도의회의원 · 지체장애자화천군지회 고문	3,496 (50.7)
철원군	철원군제 1	1	한나라당	丘寅鎬	남	63. 6. 19	동송읍 이평리 588-3(105) 한국개나리A311	상 업	고려대정치외교학과졸	· 송림학원장 · 철원지역고려대교우회장	3,702 (30.8)
		3	자유민주연합	金圭世	남	42. 9. 13	동송읍 이평리 682-4(126)	상 업	가산중졸	· 철원군의회의장 · 철원군의용소방대연합대장	4,582 (38.1)
		4	국민신당	李熙雄	남	46. 3. 28	동송읍 상노리 153(17)	축산업	덕수상고졸	· 철원군축산업협동조합장 · 철원여고및철원중·고육성회장	3,747 (31.1)
	철원군제 2	2	새 정 치 국민회의	曹圭竝	남	44. 12. 16	갈말읍 신철원리 399-29(43)	정당인	강원대법학과졸	· 강원일보철원주재기자 · 철원군재향군인회부회장	7,723 (53.7)
		4	무 소 속	李弼善	남	52. 3. 19	서면 와수리 1173(23)	농·축산업	신철원중고(농과)졸	· 이용삼국회의원보좌관 · 김화중고등학교운영위원장	6,655 (46.3)
양구군	양구군제 1	2	새 정 치 국민회의	金利洙	남	40. 11. 16	양구읍 이리 77-7	공무원	강원대농학과졸	· 강원도의회의원(3대) · 양구읍장	2,924 (45.4)
		3	자유민주연합	鄭哲洙	남	46. 5. 26	양구읍 상1리 381번지	상 업	경희대사학과졸	· 양구문화원장 · 양구신용협동조합이사장	3,512 (54.6)
	양구군제 2	2	새 정 치 국민회의	朴秀根	남	42. 12. 21	방산면 장평리 235-2	공무원	내촌중졸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사 · 강원도의회부의장	2,994 (48.0)
		4	무 소 속	李海天	남	42. 5. 23	남면 가오작리 848	축산업	춘천중졸	· 강원도의회의원 · 자유총연맹양구군지부장	3,194 (52.0)



나) 比例代表道議員

시군별	정 당 명	기 호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주 소	직 업	학 력	경 력
강원도	한나라당	1	千熙淑	여	35. 8. 28	춘천시 후평3동 주공④ 416-507	정당인	평창고졸	도지부운영위원
		2	沈在千	남	37. 2. 18	강릉시 화산동 132	법무사	강릉초교졸	강릉문화원부원장
		3	全承根	남	46. 10. 27	춘천시 퇴계동 한신④ 101-602	한국노총 사무국장	강릉농고졸	전국광산노조나조지부장
	국민회의	1	權赫姬	남	35. 3. 11	춘천시 퇴계동 한주④ 101-203	정당인	이화여대법학과졸	민족통일강원도지부부회장
		2	安榮培	남	41. 6. 22	정선군 남면 문곡리 102-2	정당인	경희대정외과졸	국민회의태백정선지구당전위원장
		3	李鍾根	남	54. 9. 25	원주시 단구동 구곡지구 4블럭 두산④ 101-1401	건축사	청주대건축공학과졸	(주)에당종합건축사대표
		4	咸泳亨	남	39. 10. 23	속초시 노학동 253-92	여행업	강릉상고졸	국민회의강원도선거본부장
		5	金澤振	남	46. 3. 14	강릉시 교1동 828-19 현대④ 101-1003	정당인	양양고졸	국민회의강릉시을지구당사무국장
	자 민 련	1	印鉉商	남	43. 2. 1	춘천시 석사동 726-9	한강수력노조지부장	수송초교졸	전국전력노조부위원장
		2	鄭花菊	여	32. 10. 25	강릉시 지변동 신54	학교법인문성학원 이사장	주문진신성여학교졸	학교법인문성학원이사장
		3	許應九	남	25. 6. 8	원주시 태장2동 1366-28	새마을금고이사장	횡성고졸	경우회(원주시)수석부회장
		4	李龍百	남	43. 8. 1	속초시 교동 현대④ 105-1205	호청수산 대표	현남중졸	설악라이온스회장
	국민신당	1	嚴義鉉	남	60. 1. 12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114-5	정치인	중앙대사회개발대학원졸	민주당 중앙위원

라. 選舉結果

1) 候補者別 得票狀況

선거구별	선거인수	투 표 수	투표율(%)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계	한나라당	국민회의	자 민 련	국민신당	무 소 속	
합 계	1,087,113	672,375		650,998	269,962	220,689	76,146	13,335	70,846	21,377
춘 천 시	소 계	170,103	98,330	55.8	95,257	40,791	34,623	10,255	9,588	3,073
	제1선거구	52,831	29,502	55.8	28,529	허 천	지남기	안병규		
						14,307	9,340	4,882		973
	제2선거구	31,442	19,813	63.0	19,261	이무순	변지량	황환도		
						7,617	6,447	5,197		522

선거구별	선거인수	투 표 수	투표 율(%)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호 투표수	
				계	한나라당	국민회의	자 민 련	국민신당	무 소 속		
춘 천 시	제3선거구	44,798	24,187	54.0	23,253	김동관 8,302	정연대 10,245		이계천 4,706		934
	제4선거구	41,032	24,828	60.5	24,214	서종을 10,565	정재웅 8,591	원태경 5,058			614
	소 계	176,612	95,807		93,001	34,266	33,878	22,798			2,806
	제1선거구	41,302	21,502	52.1	20,830	채희삼 6,515	곽노린 7,416	홍완호 6,899			672
원 주 시	제2선거구	47,073	24,218	51.4	23,714	임상규 9,057	신수철 5,864	류종호 8,793			504
	제3선거구	37,394	22,535	60.3	21,541	심상기 9,610	안상현 11,931				994
	제4선거구	50,843	27,552	54.2	26,916	이인섭 9,084	나창희 8,667	손숙자 7,106		서상수 2,059	636
	소 계	159,254	98,458		95,543	52,529	36,903	6,111			2,915
	제1선거구	35,393	23,443	66.2	22,728	박낙진 13,203	유현민 9,525				715
	제2선거구	38,841	23,052	59.3	22,433	신창승 10,942	박홍석 5,380	이형석 6,111			619
강 릉 시	제3선거구	35,861	22,645	63.1	21,842	최영하 10,300	정인수 11,542				803
	제4선거구	49,159	29,318	59.6	28,540	이 훈 18,084	김기순 10,456				778
	소 계	71,163	46,179		45,011	28,931	9,942	6,138			1,168
	제1선거구	43,542	28,325	65.1	27,548	김진동 19,686	권오성 7,862				777
동 해 시	제2선거구	27,621	17,854	64.6	17,463	오원일 9,245	박재선 2,080	임순관 6,138			391
	소 계	42,160	28,533		27,633	11,199	10,310	0	0	6,124	900
	제1선거구	24,903	15,981	64.2	15,452	이상출 5,535	박무봉 3,793			박금용 6,124	529
	제2선거구	17,257	12,552	72.7	12,181	정원교 5,664	손석암 6,517				371
속 초 시	소 계	58,982	34,402		33,316	11,460	11,106	6,400		4,350	1,086
	제1선거구	29,400	18,055	61.4	17,540	안동섭 4,891	김성룡 6,249	김길정 6,400			515
	제2선거구	29,582	16,347	55.3	15,776	장동희 6,569	서동석 4,857			한영환 4,350	571



선거구별	선거인수	투 표 수	투표 율(%)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호 투표수
				계	한나라당	국민회의	자 민 련	국민신당	무 소 속	
삼 척 시	소 계	61,487	46,776		45,376	12,496	10,806	7,548	14,526	
	제1선거구	31,923	23,801	74.6	23,093	이상준	김시남		정재욱	
					12,496	3,184			7,413	
홍 천 군	제2선거구	29,564	22,975	77.7	22,283		이연우		박상수	708
						7,622			7,113	
	소 계	53,884	37,362		35,856	17,140	11,798		6,918	692
형 성 군	제1선거구	25,752	17,003	66.0	16,505	황영철	전장수			1,506
					10,126	6,379				
	제2선거구	28,132	20,359	72.4	19,351	고종학	박희경		이상구	498
영 월 군					7,014	5,419			6,918	
	소 계	34,712	24,948		23,990	11,199	8,893		3,898	1,008
	제1선거구	18,957	13,396	70.7	12,947	원종익	윤만복			958
평 창 군					7,014	5,933				
	제2선거구	15,755	11,552	73.3	11,043	전인택	박지상		이복균	449
					4,185	2,960			3,898	
정 선 군	소 계	36,665	9,845		9,480	5,180	4,300			509
	제1선거구	22,988							엄민현	365
	제2선거구	13,677	9,845	72.0	9,480	엄문섭	김덕룡			
철 원 군					5,180	4,300				
	소 계	35,367	25,657		24,337	12,849			11,488	365
	제1선거구	16,436	27,170	74.4	11,460	김수돈			이영태	1,320
화 천 군					6,598				4,862	
	제2선거구	18,931	14,391	71.0	12,877	목찬균			이상명	763
					6,251				6,626	557
정 선 군	소 계	38,752	27,170		26,395	9,927	12,293	4,175		775
	제1선거구	17,621	14,391	72.6	13,986	최진규	유돈대	최승영		
					4,903	4,908	4,175			405
화 천 군	제2선거구	20,725	12,779	67.5	12,409	김재석	성희직			
					5,024	7,385				370
	소 계	38,346	27,431		26,409	3,702	7,723	4,582	3,747	6,655
철 원 군	제1선거구	17,621	12,405	70.4	12,031	구인호		김규세	이희웅	
					3,702			4,582	3,747	
	제2선거구	20,725	15,026	72.5	14,378		조규병			이필선
화 천 군						7,723			6,655	648
	소 계	18,612	13,841		13,439	2,488	6,290		4,661	402
	제1선거구	8,772	6,698	76.4	6,542	송임수	이천규		김수철	
화 천 군					2,488	2,889			1,165	156
	제2선거구	9,840	7,143	72.6	6,897		신이철		정충수	
						3,401			3,496	246

선거구별		선거인수	투 표 수	투표 율(%)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계	한나라당	국민회의	자 민 련	국민신당	무 소 속	
양 구 군	소 계	16,863	12,968		12,574		5,868	3,512		3,194	394
	제1선거구	8,877	6,587	74.2	6,436		김이수	정철수			
	제2선거구	7,986	6,381	72.6	6,138		2,924	3,512			151
							박수근			이해천	
인 제 군	소 계	23,987	18,112		17,572	3,771	6,308	520		6,973	540
	제1선거구	15,618	11,733	75.1	11,364		심종기			이기순	
	제2선거구	8,369	6,379	76.2	6,208		4,391			6,973	369
						변완기	박병용	용태웅			
고 성 군	소 계	27,303	20,238		19,735	9,785	5,843	4,107			503
	제1선거구	15,810	11,727	74.2	11,458		김원기	우 성	김완식		
	제2선거구	11,493	8,511	74.1	8,277		5,659	1,692	4,107		269
						윤승근	신명선				
양 양 군	소 계	22,861	6,318		6,074	2,269	3,805				244
	제1선거구	14,989					박용길				
	제2선거구	7,872	6,318	80.3	6,074		최종익	함종선			
							2,269	3,805			

2) 當選者 現況

가) 政黨別

계	한나라당	국민회의	자유민주연합	무 소 속	비 고
42 (5)	21 (2)	12 (2)	3 (1)	6	()은 비례대표

나) 性別, 職業別

계	성 별		직 업 별									
	남	여	정당인	농 업	상 업	운수업	수산업	건설업	의사 약사	공무원	회사원	기 타
42 (5)	41 (3)	1 (2)	1 (2)	5	7	1	1	1 (1)	1	18	(1)	7 (1)



다) 學歷別

계	고졸이하	고 졸	대 퇴	대 졸	대학원수료	대학원졸
42 (5)	9 (1)	17 (2)	3	10 (2)	1	2

라) 年齡別

계	30세이하	31~35	36~40	41~45	46~50	51~55	55~60	61세이상
42 (5)		3	4	4 (1)	7	12 (1)	7	5 (3)

마) 得票數別

계	3000미만	3000이상	4000이상	5000이상	6000이상	7000이상	9000이상	10000이상	무투표
42	1	5	4	2	7	7	3	11	2

바) 得票率別

계	40% 미만	41~50% 이하	50%이상 60%미만	60% 이상	70% 이상	무투표
42	11	6	17	5	1	2

第 4 節 議會組織 및 院構成

1. 議會組織

가. 開院初 議會 機構 現況

제5대 도의회 의원정수는 총47인으로 의장1인, 부의장 2인과 기획행정, 교육사회, 산업경제, 관광건설, 의회운영 등 5개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었으며 필요시에는 강원도의회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나. 機構의 變動

상임위원회중 산업위원회 명칭이 1998년 9월 25일 제94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15일 강원도조례 제2657호로 공포됨에 따라 산업경제위원회로 변경되었으며, 2000년 6월 27일 제111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 명칭을 기획행정위원회로 의결되어 7월 22일 강원도조례 제2798호로 공포됨에 따라 변경되었다.

다. 現在의 機構(2000年 7月 11日)

의장1인, 부의장 2인과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등 5개 상임위원회와 필요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議院現況

가. 議會登錄 및 變動

- 1998년 7월 11일 현재 의원수는 47인으로 한나라당 23인, 국민회의 14인, 자민련 4, 무소



속 6인으로 등록되었다.

- '98. 6. 29 한나라당 신창승 당선자 탈당, 무소속
- '98. 7. 21 한나라당 고종학의원 사망
- '98. 9. 11 한나라당 장동희의원 탈당, 국민회의 입당
- '98. 11. 18 홍천 제2선거구 보궐선거 무소속 이상구 당선
- '98. 11. 18 한나라당 임상규의원 탈당, 국민회의 입당
- '98. 12. 20 무소속 이기순의원 국민회의 입당
- '99. 5. 10 한나라당 이상준의원 탈당, 국민회의 입당
- '99. 11. 무소속 정충수의원 새천년민주당 입당
- '00. 1. 20 국민회의 정연대, 곽노리, 임상규, 안상현, 이기순, 이상준, 장동희, 신창승, 정인수, 손석암, 이연우, 유돈대, 성희직, 조규병, 이천규, 정충수, 신명선, 함종선의원, 새천년민주당 당면변경에 따른 자격 승계
- '00. 2. 12 한나라당 황영철의원 도의원 사직
- '00. 2. 12 새천년민주당 안상현의원 도의원 사직
- '00. 2. 20 한나라당 이무순의원 탈당, 민주한국당 입당
- '00. 3. 7 자유민주연합 김길정의원 탈당, 한나라당 입당
- '00. 4. 7 무소속 신창승의원 새천년민주당 입당
- '00. 6. 9 보궐선거 원주 한나라당 김학영 당선, 홍천 무소속 박주선 당선
- '00. 9. 18 자유민주연합 정철수의원 탈당, 무소속

나. 議員現況(2000년 7월 11일 현재)

1) 年齡別

61세~67세가 11명, 51세~60세가 24명, 41~50세가 10명, 40세 이하가 2명으로 51세~60세까지의 의원이 전체 51%를 차지하고 있다.

2) 職業別

의원의 직업별로는 농업 5명, 상업 7명, 의약업 1명, 수산업 1명, 운수업 1명, 건설업 2명, 기타 22명이며 무직은 8명이다.

3) 學歷別

고졸이 10명, 대졸 12명, 대퇴 3명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고 대학원졸업이 2명, 고졸이하 10명이다.

3. 院構成

가. 前半期 議長團選出

1) 議長選舉

의장은 제5대 도의회 최초 회의인 1998년 7월 13일 제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의원인 유돈대 의원이 의장 직무대행으로 개의회 강원도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상황의 점검 및 감표활동을 위하여 감표위원으로 김진동 의원, 안상현의원을 지명한 후 10시 23분에 투표를 개시하여 10시 32분에 종료되었으며, 총투표수 47표 중 허천의원 31표, 정인수의원 13표, 무표 3표로 강원도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천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다.

2) 副議長 選舉

부의장 2석의 선거는 각1명씩 선출하였는데, 첫 번째 부의장 선거는 12시 23분에 개시되어 12시 30분에 종료되었으며, 총투표수 47표중 성희직 의원 37표, 권혁희의원 2표, 이기순의원 2표, 무효 6표로서 강원도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희직의원이 당선되었고, 두 번째 부의장 선거는 12시 40분에 개시되어 12시 46분에 종료되었으며, 총투표수 47표중 이기순의원 43표 이상명 의원 1표, 안상현의원 1표, 무효 2표로서 이기순의원이 당선되었다.

나. 前半期 常任委員會 構成

1) 委員選任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 및 강원도의회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하는데 최초의 위원선임은 1998년 7월 14일 제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허천의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2) 委員長 選任

- 위원장 선거는 1998년 7월 14일 제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선임에 이어 상정되어 의장은 감표위원으로 전인택, 박금용의원을 지정하고
- 5개 상임위원장 선거를 한 장의 투표용지로 동시에 선출하는 연기명식 투표로 무소속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10시 33분 개시하여 10시 53분에 종료되었으며 투표결과는 아래와 같다.

※ 투표결과

- 의회운영위원장 : 총46표중 이훈의원 43표, 김진동의원 1표, 무효 2표
- 내 무 위 원 장 : 총46표중 황영철의원 40표, 원종익 1표, 변완기 1표, 무효 4표
- 교육사회위원장 : 총46표중 안상현의원 40표, 박금용의원 1표, 엄민현의원 1표, 무효 4표
- 산업경제위원장 : 총46표중 엄문섭의원 38표, 이해천의원 1표, 오원일의원 1표, 무효 4표
- 관광건설위원장 : 총46표중 김길정의원 23표, 유돈대의원 22표, 이상명의원 1표
- 이로써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장에 이훈의원, 내무위원장에 황영철의원, 교육사회위원장에 안상현의원, 산업경제위원장에 엄문섭의원, 관광건설위원장에 김길정의원이 당선되었다.

3) 幹事選任

가) 議會運營委員會 幹事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는 제92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이연우위원이 김원기위원을 추천하여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로 선임되었다.

나) 內務委員會 幹事

내무위원회 간사는 동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에서 김진동의원이 조규병위원을 추천하여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로 선임되었다.

다) 教育社會委員會 幹事

교육사회위원회 간사는 동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정철수위원이 이천규위원을 추천하여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로 선임되었다.

라) 産業經濟委員會 幹事

산업경제위원회 간사는 동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에서 장동희위원이 이연우위원을 추천하였으나 이무순위원의 5분간 정회요구후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로 선임되었다.

마) 觀光建設委員會 幹事

관광건설위원회 간사는 동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전인택위원이 이상명위원을 추천하여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로 선임되었다.

4) 委員會名 變更

- 1998년 9월 25일 제9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를 개정 “산업위원회”를 “산업경제위원회”로 개정하였으며, 상임위원회별 소관실국을 일부 조정 2000년 6월 27일 제111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를 개정 “내무위원회”를 “기획행정위원회”로 변경하였다.

5) 委員의 變動

- 1999년 9월 10일 제10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간사 이연우위원을 함종선의원으로 교체 선임되었으며, 2000년 2월 12일 제1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장 황영철위원과 교육사회위원장 안상현위원이 도의원을 사임하여 내무위원장에 원종익의원, 교육사회위원장에 이상구의원으로 선임되었으며 제1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주선의원과 김학영의원이 각각 기획행정위원회와 교육사회위원회에 선임되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상임위원회 구성현황〉

區 分	議會運營委員會(10)	企劃行政委員會(11)	教育社會委員會(10)	産業委員會(12)	觀光建設委員會(11)
委員長	李 勳 한나라당, 內務	元 鍾 益 한나라당, 橫城	李 相 九 無所屬, 洪川	嚴 文 燮 한나라당, 원주	金 吉 貞 한나라당, 束草
幹 事	金 源 基 한나라당, 産經	辛 昌 承 민주당, 江陵	李 天 圭 民主黨, 華川	咸 鍾 善 民主黨, 襄陽	李 相 明 無所屬, 平昌
委 員	[民 主 黨] 李 天 圭(敎社) 咸 鍾 善(産經)	[民 主 黨] 權 赫 姬(比例) 孫 石 岩(太白) 辛 明 善(高城) 曹 圭 竝(鐵原)	[民 主 黨] 成 熙 稷(旌善) 林 相 奎(原州)	[民 主 黨] 郭 魯 麟(原州) 李 蓮 雨(三陟) 鄭 仁 壽(江陵) 鄭 忠 洙(華川) 張 東 希(束草)	[民 主 黨] 劉 燾 大(旌善) 李 鍾 根(比例) 鄭 然 大(春川) 李 基 淳(麟蹄) 李 相 俊(三陟)



區 分	議會運營委員會(10)	企劃行政委員會(11)	教育社會委員會(10)	産業委員會(12)	觀光建設委員會(11)
委 員	[한나라당] 金 振 東(企劃) 朴 隆 吉(觀建) 千 熙 淑(敎社)	[한나라당] 金 振 東(東海) 邊 完 基(麟蹄) 李 寅 燮(原州) 李 勳(江陵)	[한나라당] 金 秀 暻(平昌) 沈 在 千(比例) 千 熙 淑(比例) 金 學 泳(原州)	[한나라당] 金 源 基(高城) 吳 元 一(東海) 李 茂 淳(春川)	[한나라당] 朴 洛 晉(江陵) 朴 隆 吉(襄陽) 徐 鍾 乙(春川) 全 仁 鐸(橫城)
	[自 民 聯] 鄭 哲 洙(敎社)	[自 民 聯] 印 鉉 商(比例)	[自 民 聯] 鄭 哲 洙(楊口)	[自 民 聯] 金 圭 世(鐵原)	
	[無 所 屬] 辛 昌 承(企劃) 李 相 明(觀建)	[無 所 屬] 朴 柱 善(洪川)	[無 所 屬] 朴 金 龍(太白) 嚴 玟 鉉(寧越)	[無 所 屬] 李 海 天(楊口)	

6) 常任委員會의 職務와 所管

가) 직무 : 상임위원회의 직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등을 처리한다.

나) 소관

- 의회운영위원회 :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처 소관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조례, 규칙, 규정에 관한 사항
- 기획행정위원회 : 공보관실, 국제교류협력실, 기획관리실, 감사실, 내무국, 민방위재난관리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스포츠대회준비지원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단,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예외), 기타 타실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교육사회위원회 : 환경복지국, 복지여성국, 보건환경연구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교육청 소관으로써 교육위원회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산업경제위원회 : 농정산림국, 산업통상국, 농촌진흥원, 동해출장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관광건설위원회 : 관광문화국, 건설도시국,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特別委員會 構成 및 運營

- 특별위원회는 강원도의회의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구성하며 1998년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8회, 송전탑관련 환경피해대책 특별위원회는 1회, 강원국제엑스포지원특별위원회는 3회, 영월댐대책특별위원회는 1회, 산불피해대책지원특별위원회는 6회 운영되었으며 구성 현황은 아래와 같다.

- 강원국제관광엑스포지원특별위원회는 제100회 임시회에서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현황은 아래와 같다.

[강원국제관광엑스포지원특별위원회]

- 위원장 : 전인택의원
- 간 사 : 박용길의원
- 위 원 : 권혁희, 신명선, 천희숙, 정철수, 김원기, 장동희, 박락진, 서종을, 정연대, 이상명의원

- 영월댐대책특별위원회는 제100회 임시회에서 구성되었으며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현황은 아래와 같다.

[영월댐대책특별위원회]

- 위원장 : 유돈대의원
- 간 사 : 이인섭의원
- 위 원 : 곽노린, 김수돈, 박금용, 성희직, 엄민현, 원종익, 이무순, 이상준, 인현상, 함종선의원

- 송전탑관련 환경피해대책 특별위원회는 제102회 임시회에서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현황은 아래와 같다.

[송전탑관련 환경피해대책 특별위원회]

- 위원장 : 이 훈의원
- 간 사 : 박금용의원
- 위 원 : 김진동, 원종익, 김길정, 정충수, 엄문섭, 이천규, 변완기, 정연대의원

- 영동지역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제109회 임시회에서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현황은 아래와 같다.

[산불피해대책]

- 위원장 : 정인수의원
- 간 사 : 오원일의원
- 위 원 : 신명선, 정철수, 이상준, 김원기, 심재천, 천희숙, 이해천, 이연우, 신창승, 박낙진, 박용길의원



第 5 節 議會運營 總括

1. 議會運營 概況

- 임시회 : 임시회는 총18회 171일 동안 운영되었으며 연도별로 보면 1998년에는 제4회 39일(제92회~제95회), 1999년도에는 제9회 85일(제97회~제105회), 2000년도에는 제5회 47일(제107회~제112회) 간 개최되었다.
- 정례회 : 정례회는 총3회 89일간 운영되었으며 연도별로 보면 1998년에는 제1회 40일(제96회) 간, 1999년도에는 제1회 35일(제106회) 간 2000년도 제1회 14일(제111회) 간 개최되었다.

2. 議會運營 現況

○ 회기운영

구분 년도별	회 의 일 수	개 회 일 수								
		본회의	상 임 위 원 회					특 위		
			계	기행	교사	산업	관건	운영	예결	기타
계	260	61	383	104	82	89	72	36	12	4
1998	79	18	121	34	24	30	23	10	8	
1999	120	27	184	50	40	40	37	17		
2000	61	16	78	20	18	19	12	9	4	4

○ 의원출석

구분 년도별	의 원 출 석 현 황						비 고
	본 회 의			위 원 회			
	연인원	출석인원	출석율	연인원	출석인원	출석율	
계	2,832	2,663	94	4,525	4,178	92	
1998	837	812	97	1,114	1,048	94	
1999	1,269	1,155	91	2,450	2,225	91	
2000	726	696	96	961	905	94	

○ 의안처리 현황

구 분 년도별	합 계	조 례	예산결산	동의안	건의 및 결의안	청 원	규 칙	기 타
계	278	162	19	20	36		6	35
1998	60	39	6	3	12			
1999	126	67	9	13	17		5	15
2000	92	56	4	4	7		1	20

3. 行政事務監査

○ 행정사무감사

- 개 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공단에 대하여 강 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되었다.

-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사항

구분 년도별	합 계	위 원 회 별				
		기획행정	교육사회	산업경제	관광건설	의회운영
계	2,764	686	333	1,059	647	39
1998	1,218	334	173	513	185	13
1999	1,546	352	160	546	462	26
2000						

- 행정사무시정 및 처리요구 현황

구분 년도별	합 계	위 원 회 별				
		기획행정	교육사회	산업경제	관광건설	의회운영
계	423	125	65	158	57	18
1998	191	56	33	67	31	4
1999	232	69	32	91	26	14
2000						



4. 江原道政 및 教育行政 質問

○ 개 요

질문은 정기회 3회(제96회, 제106회, 제111회), 임시회 2회(제94회, 제100회) 등 총5회 실시되었으며, 질문의원은 정기회시 29명, 임시회시 18명 등 총 47명(한나라당 18, 민주당 20, 자민련 5, 무소속 4)이 질문하였으며 총 질문건수는 550건으로 강원도 소관 432건, 강원도교육청 소관 118건이었다.

○ 회기별 질문현황

(단위 : 건)

회기별	구분	의 원 수	건 수	내 용 별		비 고
				도 정	교육행정	
계		47	550	432	118	
1998		19	226	188	38	
1999		20	235	181	54	
2000		8	89	63	26	

○ 분야별 질문현황

분야별	회기별	합 계	1998	1999	2000	비고
합 계		550	226	235	89	
일반행정		164	68	70	26	
환경복지		56	22	25	9	
산업경제		104	50	41	13	
관광건설		108	48	45	15	
교육행정		118	38	54	26	

5. 會期別 主要 議案事項

구분 회기	회기일수	의 사 일 정	주 요 내 용
제92회 임시회	10	'98. 7. 13 ~ 7. 22	○ 제5대 강원도의회 개원 ○ 의장단, 상임위원장 선거, 업무보고 ○ 의안처리(조례안 5, 건의안 2)
제93회 임시회	3	'98. 8. 18 ~ 8. 20	○ 강원도 조직개편안 등 심의 ○ 의안처리(조례안 8, 건의안 3)
제94회 임시회	11	'98. 9. 15 ~ 9. 25	○ 의안처리(조례안 4, 동의안 1, 건의안 2) ○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제95회 임시회	14	'98. 10. 16 ~ 10. 29	○ 1997년도 강원도 및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승인 등 ○ 의안처리(조례안 8, 예산결산 2, 동의안 1, 건의안 1)
제96회 정기회	40	'98. 11. 20 ~ 12. 29	○ 의안처리(조례안 14, 예산결산 4, 동의안 1, 건의안 4) ○ '98년도행정사무감사, '99년도당초예산안심의, 제2회추가 경정예산안 심의)
제97회 임시회	9	'99. 2. 19 ~ 2. 27	○ 의안처리(조례안 8, 동의안 2, 건의안 1, 규칙안 2) ○ 도지사, 교육감 신년인사, 업무보고
제98회 임시회	10	'99. 3. 18 ~ 3. 27	○ 의안처리(조례안 9, 동의안 1, 건의안 2)
제99회 임시회	12	'99. 4. 19 ~ 4. 30	○ 의안처리(조례안 3, 예산결산 2, 동의안 1, 건의안 2) ○ 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 산안 심의)
제100회 임시회	11	'99. 5. 18 ~ 5. 28	○ 의안처리(조례안 5, 동의안 1, 건의안 1, 규칙안 2, 기 타 1) ○ 1000회기념 초청연설 ○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제101회 임시회	7	'99. 6. 18 ~ 6. 24	○ 의안처리(조례안 16, 동의안 2, 건의안 2) ○ 영월댐 대책특위 및 강원국제관광엑스포 특위구성)
제102회 임시회	12	'99. 7. 13 ~ 7. 24	○ 업무보고 ○ 의안처리(조례안 6, 동의안 1, 건의안 3, 기타 2) ○ 송전탑건설관련 환경특위구성
제103회 임시회	3	'99. 8. 18 ~ 8. 20	○ 강원도 조직개편안 등 심의
제104회 임시회	10	'99. 9. 9 ~ 9. 18	○ 의안처리(조례안 2, 예산결산 2, 건의안 2, 규칙안 1, 기 타 4) ○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 참관
제105회 임시회	11	'99. 10. 19 ~ 10. 29	○ 의안처리(조례안 5, 예산결산 1, 동의안 2, 건의안 1, 기 타 4) ○ '98년도 강원도 및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승인 등



구분 회기	회기일수	의 사 일 정	주 요 내 용
제106회 정기회	35	'99. 11. 20 ~ 12. 24	○ 의안처리(조례안 13, 예산결산 4, 동의안 3, 건의안 3, 기타 4) ○ '99년도 행정사무감사, 2000년도 당초예산안 심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제107회 임시회	10	'00. 2. 10 ~ 2. 19	○ 의안처리(조례안 16, 건의안 2, 규칙안 1, 기타 5) ○ 2000년도 업무보고, 의원사직 및 위원장 선임의견 등
제108회 임시회	8	'00. 3. 15 ~ 3. 22	○ 의안처리(조례안 9, 건의안 2, 기타 1)
제109회 임시회	10	'00. 4. 18 ~ 4. 27	○ 의안처리(조례안 13, 동의안 2, 결의안 1, 기타 2) ○ 산불피해대책특위 구성, 활동 등
제110회 임시회	15	'00. 5. 18 ~ 6. 1	○ 의안처리(조례안 9, 예산결산 2, 건의안 1, 기타 4) ○ 2000년 도 및 교육청 1회추경심의, '9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제111회 정례회	14	'00. 6. 27 ~ 7. 10	○ 의안처리(조례안 9, 예산결산 2, 동의안 2, 건의안 1, 기타 6) ○ '99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의 등
제112회 임시회	4	'00. 7. 11 ~ 7. 14	○ 제5도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

6. 各種 議案處理 實績

가. 議案別 處理實績

1) 議案別

구 분	계		처 리 형 태				'98	'99	2000
		%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 결	계 류			
계	278	100	237	41					
조 례 안	162	58	132	30					
예산·결산	19	9	13	6					
동 의 안	20	7	20						
건 의 안	35	12	30	5					
결 의 안	1	0.3	1						
규칙규정안	6	2	6						
기 타	35	12	35						

2) 會期別

회기별 \ 의안별		계	조례안	예산결산	동의안	건의안	결의안	규칙안	기타
합 계		278	162	19	20	35	1	6	35
'98	소 계	60	39	6	3	12			
	제 92회	7	5			2			
	제 93회	11	8			3			
	제 94회	7	4		1	2			
	제 95회	12	8	2	1	1			
	제 96회	23	14	4	1	4			
'99	소 계	126	67	9	13	17		5	15
	제 97회	13	8		2	1		2	
	제 98회	12	9		1	2			
	제 99회	8	3	2	1	2			
	제100회	10	5		1	1		2	1
	제101회	20	16		2	2			
	제102회	12	6		1	3			2
	제103회								
	제104회	11	2	2		2		1	4
	제105회	13	5	1	2	1			4
	제106회	27	13	4	3	3			4
	소 계	92	56	4	4	6	1	1	20
'00	제107회	24	16			2		1	5
	제108회	12	9			2			1
	제109회	18	13		2		1		2
	제110회	16	9	2		1			4
	제111회	20	9	2	2	1			6
	제112회	2							2

나. 委員會 處理實績

1) 委員會別



구 분	계		처 리 형 태				'98	'99	2000
		%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 결	계 류			
계	278	100	237	41			60	126	92
기획행정	91	33	86	5			28	35	28
교육사회	36	13	27	9			12	12	12
산업경제	48	17	37	11			6	29	13
관광건설	36	13	27	9			7	20	9
의회운영	14	5	13	1			1	7	6
예산결산	19	9	13	6			6	9	4
기타특위	1	0.3	1	-				1	
본 회 의	33	10	33	-				13	20

2) 議案別

의안별 위원회별	계	조례안	예산결산	동 의 안	건 의 안	결 의 안	규칙규정안	기 타
계	278	162	19	20	35	1	6	35
기획행정	91	68		17	5			1
교육사회	36	32		3	1			
산업경제	48	30			18			
관광건설	36	27			9			
의회운영	14	5			1	1	6	1
예산결산	19		19					
기타특위	33				1			
본 회 의	1							33

3) 會期別

회기별 위원회별	계	기획행정	교육사회	산업경제	관광건설	의회운영	예산결산	본회의	기타특위
합 계	278	91	36	48	36	14	19	33	1
'98	소 계	60	28	12	6	7	1	6	
	제 92회	7	2	4	1				
	제 93회	11	8	1	1				
	제 94회	7	3	1		1			
	제 95회	12	2	4	2		2		
	제 96회	23	13	2	2		4		

회기별	위원회별	계	기획행정	교육사회	산업경제	관광건설	의회운영	예산결산	본회의	기타특위
	소 계									
'99	제 97회	13	5	3	3		2			
	제 98회	12	5	1	4	2				
	제 99회	8	3	1	1	1		2		
	제100회	10	1		1	5	3			
	제101회	20	4	1	11	4				
	제102회	12	3	3	1	3			1	1
	제103회									
	제104회	11	1		2	1	1	2	4	
	제105회	13	2	1	2	2	1		4	
	제106회	27	11	2	4	2		4	4	
	소 계	92	28	12	13	9	6	4	20	
'00	제107회	24	10	3	1	2	3		5	
	제108회	12	5	1	3	2			1	
	제109회	18	5	3	3	4	1		2	
	제110회	16	2	4	3	1		2	4	
	제111회	20	6	1	3		2	2	6	
	제112회	2							2	

다. 提案者別 處理實績

1) 提案者別

구 분	계	처 리 형 태					'98	'99	2000
		%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 결	계 류			
계	278	100	237	41			60	126	92
도시사제출	161	58	132	29			35	76	50
교육감제출	36	13	30	6			12	14	10
의원 발의	25	9	20	5			7	13	5
의장 제의	32	11	32				-	12	20
위원회제안	24	9	23	1			6	11	7



2) 議案別

구 분	계	조례안	예산결산	동 의 안	건 의 안	결 의 안	규칙규정안	기 타
계	278	162	19	20	35	1	6	35
도지사제출	161	133	9	18				1
교육감제출	36	24	10	2				
의원 발의	25				24			1
의장 제의	32							32
위원회제안	24	5			1	1	6	1

3) 會期別

제안자별 회기별		계	도지사제출	교육감제출	의원발의	의장제의	위원회제안
합 계		278	161	36	25	32	24
'98	소 계	60	35	12	7		6
	제 92회	7	1	4	2		
	제 93회	11	8		1		2
	제 94회	7	4		1		2
	제 95회	12	6	5			1
	제 96회	23	16	3	3		1
'99	소 계	126	76	14	13	12	11
	제 97회	13	9	1			3
	제 98회	12	10		1		1
	제 99회	8	4	2	2		
	제100회	10	6		1		3
	제101회	12	5	3	2	1	1
	제102회	12	5	3	2	1	1
	제103회						
	제104회	11	3	1	3	3	1
	제105회	13	6	2		4	1
	제106회	27	16	4	2	4	1
'00	소 계	92	50	10	5	20	7
	제107회	24	12	2	2	5	3
	제108회	12	2		1	1	1
	제109회	18	12	3		2	1
	제110회	16	8	3	1	4	
	제111회	20	9	2	1	6	2
	제112회	2				2	

第 6 節 議會事務處

1. 機能 및 事務分掌

가. 機 能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에는 총무담당관실과 의사담당관실, 그리고 5개의 전문위원실을 두어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회의운영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보조 등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나. 事務分掌

1) 總務擔當官室

- 의회기본운영계획수립 및 종합조정
-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 의전 및 대외협력, 교류에 관한 사항
- 시설, 물품의 관리 및 예산의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 의회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조사연구 및 보관관리
- 의회활동의 홍보계획 수립 및 보도자료 수집, 제공
- 의회사 편찬 및 각종 간행물 발간 등임.

2) 議事擔當官室

- 정기회, 임시회 집회 및 회의(위원회 포함)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 본회의 의사진행 보좌 및 위원회 의사진행 지원
- 본회의의장 및 회의실 사용조정



- 회의록 녹음, 속기작성, 보관, 열람 등에 관한 사항
-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 청원, 진정의 접수 분류 및 처리 등임.

3) 專門委員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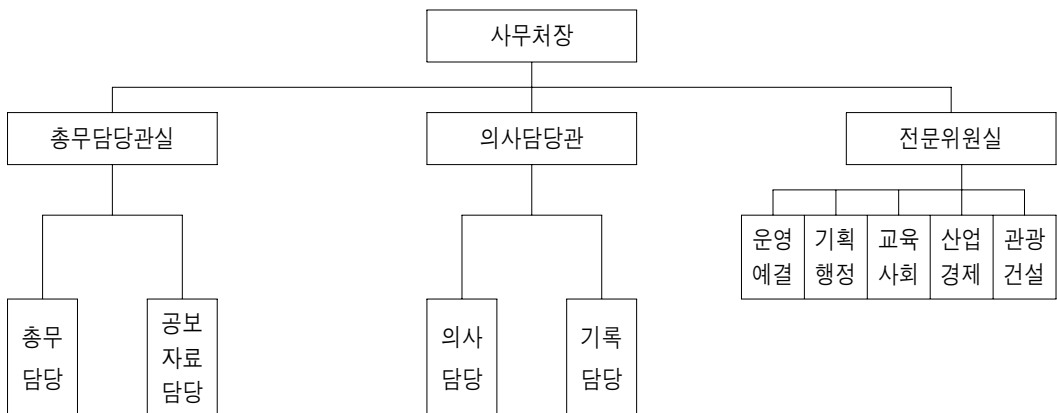
-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 위원회 심의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및 심사보고서 작성
- 위원회의 감사, 조사활동 보좌 및 소관진정서 처리 등임
-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제공 및 조사연구

2. 機構 및 人力

가. 機構

의회사무처의 기구는 사무처장 밑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무담당관실과 의사담당관실, 그리고 6개의 전문위원실을 두고 있으며 총무담당관실에는 총무계와 공보자료계가 있으며, 의사담당관실에는 의사계와 기록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위원실은 운영예결, 기획행정, 교육사회, 산업경제, 관광건설전문위원실이 있으며, 운영예결, 기획행정, 교육사회, 산업경제, 관광건설전문위원실에 의정자료담당을 각각 두고 있다.

[의회사무처 기구표]



나. 人 力

1) 開院當時 人力現況

강원도조례 제2520호(1996년 7월 16일)에 의하여 1998년 7월 1일 개원당시 의회사무처 정원은 총 68명으로 행정3급 1명, 행정4급 1명, 행정·별정4급 7명, 행정5급 7명, 행정·토목·농업5급 3명, 행정6급 6명, 행정7급 14명, 행정·별정7급 1명, 사서8급 1명, 기능직 27명이었다.

2) 定員의 變動

- 1991년 10월 22일 조례 제2241호에 의거 사무직원을 29명에서 43명으로 정원을 증원하였는데 그 내용은 전문위원 보좌직원 4명과 의장비서 1명, 음향장비요원 2명, 속기요원 4명, 기타 보조인력 3명등이다.
- 1991년 11월 28일 조례 제2245호에 의거 43명에서 44명으로 1명 증원되었는데 이는 의회 의전용 차량의 구입에 따른 운전원을 증원하였다.
- 1992년 2월 24일 조례 제2280호에 의거 44명에서 54명으로 10명 증원되었는데 증원내역은 전문위원 2명과 그 보좌직원 2명, 속기사 2명, 의원 및 위원회의 요구자료 지원요원 3명, 부의장실 안내요원 1명 등 10명을 증원하고, 의장실 직원의 직급을 별정7급에서 행정·별정5급으로 상향조정하였다.
- 1992년 10월 6일 조례 제2319호에 의거 56명에서 61명으로, 1995년 7월 18일 조례 제2398호에 의거 61명에서 62명, 1994년 10월 12일 조례 제2415호로 62명에서 64명으로 되었다.
- 1996년 7월 19일 조례 제2520호로 64명에서 68명이 되었으며, 증원내용은 전문요원실에 의정자료담당 4명, 자료실에 사서직 1명을 배치하였으며, 공보담당과 의안계를 폐지, 자료계와 의사계에 통합하였고 전문요원실에 기능직 3명을 두고 총무담당관실에 기능직 2명을 감하였다.
- 1998년 8월 20일 조례 제2649호로 68명에서 62명이 되었으며, 변동내용은 경리계가 폐지되면서 통합되는 운영예결위에 1개계 의정자료담당을 신설 조정하고, 또한 산업전문위원 직렬이 행정직·별정직으로 되어있는 것을 행정직·농업직·별정직이 보임될 수 있도록 하였고, 관광건설 전문위원도 행정직·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행정직·시설직·별정직으로 조정하였다.
- 1999년 1월 16일 조례 제2679호로 강원도의회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강원도정원조례에



서 정하도록 강원도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로 변경하였다

- 1999년 9월 9일 조례 제2727호로 62명에서 1명을 감축한 61명이 되었으며 이는 기능직(전 기직) 1명을 감하였다.

3) 定現員 現況(2000년 6월 30일 현재)

구 분		계			총무담당관실			의사담당관실			전문위원실		
		정원	현원	결원	정원	현원	결원	정원	현원	결원	정원	현원	결원
계		61	61	-	23	23	-	19	18	△1	19	20	+1
행 정	3 급	1	1	-	1	1	-						
	4 급	2	2	-	1	1	-	1	1	-			
	5 급	7	7	-	2	2	-	2	2	-	3	3	-
	6 급	5	5	-	3	3	-	2	2	-			
	7 급	11	1	-	2	2	-	4	3	△1	5	6	+1
사서	8 급	1	1	-	1	1	-						
행·별	4 급	3	3	-							3	3	-
행·농·별	4 급	1	1	-							1	1	-
행·농·별	4 급	1	1	-							1	1	-
행·별	5 급	1	11	-	1	1	-						
행·농	5 급	1	1	-							1	1	-
행·토	5 급	1	1	-							1	1	-
행·별	7 급	1	1	-	1	1	-						
기 능 직	7급 난 방	1	1	-	1	1	-						
	전 기	1	1	-	1	1	-						
	영 사	1	1	-	1	1	-						
	기 계	1	1	-	1	1	-						
	8급 사보(필기)	1	2	+1				1	2	+1			
	운 전	1	2	+1	1	2	+1						
	전 산	1	-	△1				1	-	△1			
	통 신	1	1	-	1	1	-						
	9급 운 전	1	1	-	1	1	-						
	사보(필기)	7	8	+1	-	1	+1	7	6	△1	-	1	+1
10급	사보(워드)	-	1	+1				-	1	+1			
	전 산	-	1	+1				-	1	+1			
	운 전	1	-	△1	1	-	△1						
	사보(워드)	2	1	△1	1	-	△1				1	1	-
	사보(필기)	4	2	△2	1	-	△1				3	2	△1
	사보(조무)	1	2	+1	1	2	+1						
	사보워드 조무	1	-	△1				1	-	△1			

다. 事務處 幹部

1) 事務處長

직 의	성 명	생 년 월 일	직 급	재 임 기 간
사무처장	최 준 익	1938. 1. 13	지방부이사관	'95. 1. 1 ~ '96. 9. 20
"	함 형 구	1948. 2. 15	"	'96. 10. 7 ~ '98. 1. 14
"	권 혁 인	1956. 3. 12	"	'98. 1. 22 ~ '98. 7. 20
"	조 명 수	1954. 3. 4	"	'98. 9. 7 ~ '99. 1. 12
"	이 용 선	1947. 9. 5	"	'99. 1. 13 ~ 현재

2) 擔當官

직 의	성 명	생 년 월 일	직 급	재 임 기 간
총무담당관	한 관 수	1938. 3. 22	지방서기관	'91. 7. 8 ~ '96. 6. 30
"	최 정 부	1941. 9. 15	"	'96. 7. 19 ~ '98. 1. 22
"	주 자 명	1941. 1. 21	"	'98. 2. 5 ~ '00. 1. 17
"	박 종 기	1948. 3. 19	"	'00. 1. 18 ~ 현 재
의사담당관	김 남 규	1937. 12. 19	"	'94. 5. 19 ~ '96. 1. 21
"	손 호 근	1937. 12. 20	"	'96. 2. 5 ~ '97. 12. 31
"	정 판 교	1939. 12. 5	"	'98. 2. 5 ~ '98. 12. 31
"	문 창 용	1940. 1. 22	"	'99. 1. 13 ~ '99. 7. 27
"	신 재 현	1943. 1. 12	"	'99. 7. 28 ~ 현 재

3) 專門委員

직 의	성 명	생 년 월 일	직 급	재 임 기 간
의회운영	이 명 균	1936. 4. 21	지방서기관	'94. 6. 3 ~ '96. 6. 30
"	이 원 용	1937. 1. 28	"	'96. 7. 19 ~ '97. 6. 30
"	전 정 기	1941. 10. 21	"	'97. 7. 25 ~ '98. 2. 4
"	박 종 기	1948. 3. 19	"	'98. 2. 5 ~ '00. 1. 17
"	장 국 광	1943. 4. 12	"	'00. 1. 18 ~ 현 재



직 의	성 명	생 년 월 일	직 급	재 임 기 간
내 무	권 오 동	1939. 2. 23	"	'94. 6. 3 ~ '95. 9. 16
"	함 영 일	1936. 9. 20	"	'95. 10. 7 ~ '96. 12. 31
"	주 자 명	1941. 1. 21	"	'97. 1. 28 ~ '98. 2. 4
	전 정 기	1941. 10. 21	"	'98. 2. 5 ~ '99. 7. 27
	최 종 춘	1945. 2. 22	"	'99. 7. 28 ~ 현 재
교육사회	서 의 승	1945. 8. 24	지방별정4급	'91. 8. 26 ~ 현 재
산업경제	박 종 인	1939. 1. 22	지방서기관	'95. 1. 6 ~ '96. 7. 18
"	정 판 교	1939. 12. 5	"	'96. 7. 19 ~ '98. 2. 4
"	이 수 길	1943. 6. 26	"	'98. 2. 5 ~ '99. 7. 27
"	전 용 길	1941. 4. 4	"	'99. 1. 13 ~ '00. 1. 17
"	전 창 범	1953. 1. 19	"	'00. 1. 18 ~ 현 재
관광건설	임 병 환	1940. 11. 21	지방별정4급	'91. 8. 26 ~ '99. 7. 27
"	신 동 철	1942. 12. 5	지방서기관	'99. 7. 28 ~ '00. 11. 22
"	배 영 규	1948. 10. 27	"	'00. 11. 23 ~ 현 재
예산결산	손 호 근	1937. 12. 30	지방서기관	'92. 4. 15 ~ '96. 2. 4
"	최 정 부	1941. 9. 15	"	'96. 4. 12 ~ '96. 7. 18
"	주 자 명	1941. 1. 21	"	'96. 7. 19 ~ '97. 1. 27
"	조 충 환	1938. 5. 3	"	'97. 1. 28 ~ '98. 6. 30

3. 施設 및 裝備

가. 議會廳舍

- 위 치 : 의회청사는 춘천시 봉의동 15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강원도청과 병존하고 있다.
- 청사의 신축
의회청사는 1989년 7월 31일 착공하여 총232억의 예산을 투입 1년 3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1990년 10월 30일 준공되었으며 지상 4층, 지하 3층으로 청사 전면 및 측면에는 복층반

사유리와 내외부에 화강석 붙임으로 시공되었다.

○ 청사규모

의회청사의 규모는 연면적 6,314㎡(1,910평)으로 이중 본회의장이 1개소에 106평, 의장단실 2개소 55평, 상임위원회 위원실 4개소 127평, 상임위원회 회의실 5개소 171평, 사무실 9개소 175평 기타 자료실, 기계실, 전기실 등이 1,276평으로 배치되어 있다.

나. 施設 및 裝備現況

○ 시설 및 집기

- 기계실 : 보일러 1대(1Ton), 냉·온수기 2대(210RT), 온수보일러(10만kcal/1대), 3만(kcal/1대)
- 영상전송설비 : CCTV 1세트(본회의장, 위원회회의실)
- 음향기기 : 앰프 7대, 마이크 82조
- 회의용 집기 : 책상 215각, 의자 615각, 응접소파 120개, 탁자 36각, 옷장 58각, 흑판 10개, 발언대 9각등

○ 행정장비

- 사무용장비 : 캐비넷 43개, 책상 71각, 의자 72각, 냉장고 13대, 선풍기 26대, TV 21대, 응접소파 93개, 카메라 5세트, 금고 1개, 녹화기 2대 등
- 전자기기 : 모사전송기 16대, 전작구슬기 11대, 전자기계경비시스템 1식, 키폰전화기 92대, 전화기 87대, 핸드폰 3대, 카폰 1대 등

第 1 節 第92回 定例會

1. 概 況

가. 開 會

제92회 강원도의회의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98년 7월 4일 강원도지사가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10일간의 회기로 1998년 7월 13일 개최하여 7월 22일 폐회되었다.

나. 議事日程

1) 本會議

가) 제1차 본회의 : 1998년 7월 13일(월)

- 의장·부의장선거

나) 제2차 본회의 : 1998년 7월 14일(화)

-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 상임위원회선임의건
- 상임위원회선거
- 신상발언(유돈대의원)의건
- 도지사·교육감시정연설
- 휴회의건

다) 제3차 본회의 : 1998년 7월 22일(수)

-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무장공비침투에따른소탕작전조기종료및경제지원촉구건의안
- 강원평생교육정보관설치조례안
- 강원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
- 강원도공공도서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
-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전국관광호텔슬롯머신영업허용계획전면백지화를위한건의안
- 본회의장의석배정의건
- 상임위원회위원조정건의
- 결산감사위원선임및위촉기간결정의건
- 4분자유발언 (김길정, 김진동의원) 의건

2) 議會運營委員會

가) 제1차회의 : 1998년 7월 16일(목)

- 간사선임건의
- 의사일정결정의건
- 업무보고 (의회사무처)
- 본회의장의석배정의건
- 결산감사위원선임에관한건
- 제93회임시회의회운영에관한건

3) 內務委員會

가) 제1차회의 : 1998년 7월 15일(수)

- 간사선임건의
-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회의석배정의건
- 업무보고 (내무국)
-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나) 제2차회의 : 1998년 7월 16일(목)

- 업무보고(공보관실, 감사실)

다) 제3차회의 : 1998년 7월 20일(월)

- 의사일정변경의건
- 업무보고(민방위재난관리국, 소방본부)
- 무장공비침투에따른소탕작전조기종료및경제지원촉구건의안

라) 제4차회의 : 1998년 7월 21일(화)

- 업무보고(기획관리실, 공무원교육원)

4) 敎育社會委員會

가) 제1차회의 : 1998년 7월 15일(수)

- 간사선임의건
-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회의석배정의건
- 업무보고(환경보건국)

나) 제2차회의 : 1998년 7월 16일(목)

- 업무보고(복지여성국)

다) 제3차회의 : 1998년 7월 20일(월)

- 업무보고(강원도교육청)
- 강원평생교육정보관설치조례안
- 강원도공공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



라) 제4차회의 : 1998년 7월 21일(화)

- 업무보고(보건환경원, 도립강원전문대학)

5) 産業委員會

가) 제1차회의 : 1998년 7월 15일(수)

- 간사선임의건
-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회의석배정의건
- 업무보고(농정산림국)

나) 제2차회의 : 1998년 7월 16일(목)

- 전국관광호텔슬롯머신영업허용계획전면백지화를위한건의안(손석암의원외10인발의)
- 업무보고(산업통상국)

다) 제3차회의 : 1998년 7월 20일(월)

- 업무보고(농촌진흥원)

라) 제4차회의 : 1998년 7월 21일(화)

- 업무보고(국제교류협력실, 동해출장소)

6) 觀光建設委員會

가) 제1차회의 : 1998년 7월 15일(수)

- 간사선임의건
-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회의석배정의건

나) 제2차회의 : 1998년 7월 16일(목)

- 업무보고(건설도시국)

다) 제3차회의 : 1998년 7월 20일(월)

- 업무보고(국제대회지원단)

라) 제4차회의 : 1998년 7월 21일(화)

- 업무보고(관광문화국, 강원도국제관광박람회조직위원회)

다. 議會活動

1) 本會議

가) 의장·부의장 선거 : 제1차본회의

- 선거의 방법 :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 및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
- 선거상황 : 의장후보로 나선 정인수의원과 허천의원이 각각 5분간의 제한시간동안 정견을 발표한 후 유돈대의장직무대행으로부터 감표위원으로 한나라당 김진동의원과 국민의회의 안상현의원을 지명한 다음 투표방법에 대하여 정관교의사답당관의 설명이 있었으며, 투표결과 총투표자 47인중 허천의원 31표, 정인수의원 13표, 무효3표로서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천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다. 이어서 2명을 각각 선거하는 부의장선거에서는 성희직의원이 첫 번째 선거에 독자출마하여 총투표자 47인중 37표를 얻어 부의장에 당선되었으며 나머지 한석의 부의장선거에서도 역시 독자출마한 이기순의원이 총투표자 47인중 43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나) 상임위원장선거 : 제2차본회의

- 선거방법 :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선거에



준하여 한 장의 투표용지에 다섯 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동시에 기표하는 연기명식 무기명 투표로 실시되었다.

- 선거상황 : 출석위원은 46명이었으며, 허천의장은 감표위원으로 전인택의원과 박금용의원을 지명하였고 투표방법에 대해 정판교의사담당관의 설명이 있는 후 투표가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의회운영위원장에 이훈의원, 내무위원장에 황영철의원, 교육사회위원장에 안상현의원, 산업위원장에 엄문섭의원이 각각 당선되었으며 1차투표에서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은 관광건설위원장은 2차투표를 실시한 결과 김길정의원이 당선되었으며 각 상임위원장 투표결과는 다음과 같다.

※ 상임위원장 선거결과(출석의원 46인)

- 의회운영위원장 : 이훈의원 43표, 김진동의원 1표, 무효 2표
- 내무위원장 : 황영철의원 40표, 원종익의원 1표, 변완기의원 1표, 무효 4표
- 교육사회위원장 : 안상현의원 40표, 박금용의원 1표, 엄민현의원 1표 무효 4표
- 산업위원장 : 엄문섭의원 38표, 이해천의원 1표, 오원일의원 1표, 이무순의원 1표, 무효 5표
- 관광건설위원장 : 김길정의원 26표, 유돈대의원 19표, 무효 1표

다) 본회의장의석배정 : 제3차본회의

- 1998년 7월 16일 제92회강원도의회의임시회 제1차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서대로 하되 현의장단과 역대의장과 부의장은 후순위로 하기로 결정한대로 가결되었으며 제93회 강원도의회의임시회 제1차본회의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2) 議會運營委員會

가) 제1차회의

- 간사선임 : 이연우위원의 추천으로 김원기위원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다.
- 위원회의석배정 : 위원회의석은 위원장 오른쪽 첫좌석을 간사좌석으로 다른 위원들 좌석은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하여 오른쪽부터 차례대로 배치하되 제93회임시회 제1차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시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 위회사무처 업무보고 : 권혁인 사무처장의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 이후 사무처운영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보고했다.

3) 內務委員會

가) 제1차회의

- 간사선임 : 김진동위원추천으로 조규병위원이 내무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다.
- 위원회의석배정 : 위원회 의석은 위원장 오른쪽 첫좌석을 간사좌석으로 하고 다른 위원들 좌석은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하여 오른쪽부터 차례대로 배정하기로 하였다.
- 업무보고 : 제2, 3, 4차회의에 걸쳐 공보관실, 감사실, 민방위재난관리국, 소방본부, 기획관리실, 공무원교육원의 업무를 보고 받았다.

4) 教育社會委員會

가) 제1차회의

- 간사선임 : 정철수위원의 추천으로 이천규위원이 교육사회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다.
- 위원회의석배정 : 의원회의석은 위원장 오른쪽 첫좌석을 간사좌석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석은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결정하였다.
- 업무보고 : 제1, 2, 3, 4차회의에 걸쳐 환경보건국, 복지여성국, 강원도교육청, 보건환경원, 도립강원전문대학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5) 産業委員會

가) 제1차회의

- 간사선임 : 장동희위원의 추천으로 이연우위원이 산업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다.
- 위원회의석배정 : 의원회의석은 위원장 오른쪽 첫좌석을 간사위원 의석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석은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오른쪽부터 차례로 결정하고 제2차 산업위원회부터 조정하기로 하였다.
- 업무보고 : 제1, 2, 3, 4차회의에 걸쳐 농정산림국, 산업통상국, 농촌진흥원, 국제교류협력실, 동해출장소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6) 觀光建設委員會

가) 제1차회의

- 간사선임 : 전인택위원의 추천으로 이상명위원이 관광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다.
- 위원회의석배정 : 위원회의석은 위원장 오른쪽 첫좌석을 간사좌석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석은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결정하였다.
- 업무보고 : 제2, 3, 4차회의에 걸쳐 건설도시국, 국제대회지원단, 관광문화국, 강원도국제관광박람회 조직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았다.

라. 議案處理狀況

1) 一般議案

- 이번 회기중 상정대상 일반안건은 총 7건으로 제안자별로 도지사 제출 1건, 위원발의 2건, 도교육감제출이 4건이다. 처리결과를 보면 7건 모두 가결되었으며 종류별 처리상황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종류별	상 정 대 상 안 건			의 안 처 리 내 역				
	합 계	전회기 이 월	금회기 접 수	가 결			폐 기 (철 회)	계 류
				소 계	원 안	수 정		
계	7		7	7	4	3		
조 례 안	5		5	5	3	2		
예 산 안								
동 의 안								
건 의 안	2		2	2	1	1		

2. 議決案件

가. 條例案

1)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7월 9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비영업용 승용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액에 2배를 부과하던것을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일반세율을 적용토록 특례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이 조례 시행일 이후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하는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는 1,000분의 20, 등록세는 1,0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토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의 2)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8년 7월 9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5일 제1차회의에서 함형구 내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정기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1998년 7월 22일 제3차본회의에서 황영철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8년 7월 23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1998년 8월 1일 강원도조례 제2641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 2(1가구당 1대 초과 자동차에 대한 세율적용 특례)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이 조례 시행일이후에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및 제1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세는 1,000분의 20, 등록세는 1,000분의 50(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0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자동차(등록세의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2) 강원평생교육정보관설치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7월 9일 강원도교육감
- 제안이유 : 춘천중앙도서관과 죽림분관을 통합하여 학생들의 문화, 예능학술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강원평생교육정보관설치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학생들의 문화·예능등 각종 교육행사에 필요한 설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시설의 설치위치와 주요업무 및 공무원의 정원규정을 정함(안 제2조, 제3조, 제4조)
 - 관장의 직위와 업무 및 하부조직에 대한 분장사무를 정함(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 운영비를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에 계상(안 제10조)
 - 시설사용 및 자료복사수수료를 정함(안 제11조)
 - 정보관 이용시간 및 휴관일로 정함(안 제13조, 제14조)
 - 불미스러운 행위자 입관 및 대출금지사항을 정함(안 제15조)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8년 7월 9일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20일 제3차회의에서 최규성 중등교육국장의 제안설명과 서의승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 후 수정안대로 가결되었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와 같이 설명과 함께 의견은?
- 답변요지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함이 타당하므로 수용하겠음. 또한 관장이 정하는 것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도 수용하겠음.

[수정안의 요지]

- 수정이유
 - 여건변동에 따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조례개정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이용 및 열람시간”조항을 삭제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장이 정하는 것을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토록 하기 위함.
- 수정주요골자
 - 안 제13조(이용 및 열람시간)를 삭제
 - “안 제16조(기타)정보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를 “안 제16조(시행규칙)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
 - “안 제14조(휴관)”를 “안 제13조(휴관)”로 “안 제15조(입관 및 대출금지)”를 “안 제14조(입관 및 대출금지)”로 “안 제16조(기타)”를 “안 제15조(시행규칙)”로 수정
- 본회의 심사 : 1998년 7월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안상현교육사회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없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8년 7월 22일 수정안 심사후 수정안대로 가결된 후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1998년 8월 8일 강원도조례 제2642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조례 제 호

강원 평생교육정보관설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을 위한 문화활동 및 학술, 예능 등 각종 교육행사실시와 교육에 관한 역사적 자료를 수집·보존·전시·조사연구하는 기능과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사회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강원도교육감 소속 하에 강원평생교육정보관(이하“정보관”이라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정보관은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3가 26-1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정보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각종 도서·자료의 수집·정리 및 주민에의 제공
2. 독서의 진흥 및 지도
3. 각종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진흥
4. 교육자료실 및 공연장 운영
5. 기타 지역사회문화센터의 역할

제4조(정원) 정보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조례로 정한다.

제5조(관장) ① 정보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관장은 정보관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의 지휘·감독한다.

제6조(하부조직) 정보관에 행정지원부, 문예교육부 및 정보지원부를 두되, 행정지원부장은 지방 교육행정사무관으로, 문예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정보지원부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조(행정지원부) 행정지원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관인 관수 및 문서관리
3. 인사 및 보안관리
4. 예산회계 및 급여

5. 재산 및 물품관리
6. 기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8조(문예교육부) 문예교육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2. 학생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3. 학생 문화활동 지원
4. 학생 생활지도 및 관리
5. 교육자료실 운영
6. 각종 행사의 기획

제9조(정보지원부) 정보지원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자료의 수집·분류·열람·대출
2. 정보자료실 운영
3. 독서진흥 및 지도
4. 순회문고 및 이동도서관 운영
5. 자료의 관리 및 복사·인쇄
6. 각종간행물 발간
7. 학교도서관 업무의 지도·조언

제10조(재정) 정보관 운영경비는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에 계상한다.

제11조(사용허가 및 수수료) ① 관장은 학생교육 목적에 한하여 정보관의 시설 및 설비를 운영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허가할 수 있다.

② 정보관의 자료를 복사 또는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1”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자의 책임)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정보관의 자료나 물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므로써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휴관) ① 정보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월요일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다만,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의 제3호, 제4호 및 제9호를 제외한 다른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개관한다.



② 기타 필요한 사유로 임시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휴관 7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입관 및 대출금지) 자료의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자료의 반환을 태만히 하는 경우에는 자료대출을 금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자료의 복사·인쇄 수수료

용지규격(단위 : mm)	1매당 복사료	1매당 인쇄료
A3(420×297)	50원	60원
B4(364×257)		
A4(210×297)	40원	
B5(182×257)		

3) 강원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 및 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7월 9일 강원도교육감
- 제안이유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8조 및 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등에관한규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 및 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교육위원 및 교육감선출 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의 목적과 범위를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수당과 실비보상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안 제3조)
 - 선거인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 제3호에 해당하는 실비

- 선거사무종사자, 투·개표참관인, 개표사무원 : 1일 3만원이내 수당과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2의 제4호에 해당하는 실비
- 행사장 동일 시·군 선거인에게 일비외에 식비의 1/3을 추가보상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8년 7월 9일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20일 제3차회의에서 김원 대의사국장의 제안설명과 서의승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다.
- 본회의 심사 : 1998년 7월 22일 제3차본회의에서 안상현교육사회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원 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8년 7월 22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1998년 8월 8일 강원도조례 제2645 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

강원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등에관한규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이하 “선출사무관계자”라 한다)에 대한 수당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선출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수당 및 실비보상) ① 선출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 및 실비 보상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선거인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 제3호에 해당하는 실비
2. 선거사무종사자, 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 및 개표사무원 : 1일 3만원이내의 수당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 제4호에 해당하는 실비
-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행사장(투·개표장, 소견발표회장 등) 소재지와 동일 시·군 선거인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비외에 식비의 1/3을 추가보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강원도공공도서관 설치조례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7월 9일 강원도교육감
- 제안이유 : 춘천중앙도서관과 춘천중앙도서관 죽림분관이 통합되어 교육사료관의 기능과 평생교육을 수행할 강원평생교육정보관이 신설됨에 따라, 현재의 조례에서 춘천중앙도서관 및 춘천중앙도서관 죽림분관과 분관 기능수행이 곤란한 삼척도서관 남양분관을 폐지하여 현실에 맞게 강원도공공도서관 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 “별표1”과 같이 함(안 제2조)
 - 도서관 공무원의 정원을 조례로 정함(안 제5조)
 - 도서관의 조직을 행정지원부, 자료개발부, 정보지원부로 정함(안 제6조)
 - 분관의 업무분장을 정함(안 제10조)
 - 운영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에 계상함(안 제11조)
 - 도서관의 자료 복사·인쇄등에 대한 수수료를 정함(안 제12조 별표2)
 - 자료 분실에 대한 변상규정을 정함(안 제15조)
 - 불미스러운 행위자 입관 및 대출금지사항을 정함(안 제16조)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8년 7월 9일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20일 제3차회의에서 최규

성 중등교육국장의 제안설명과 서의승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 후 수정안대로 가결되었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와 같이 삭제와 수정해도 관계없는지?
- 답변요지
 - 안 제13조와 안 제18조에 대하여 삭제와 수정해도 이의가 없음

[수정안의 요지]

- 수정이유 : 상황에 따라 이용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세부사항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조례개정의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하여 “이용 및 열람시간”조항을 삭제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는 것이므로 관장이 정하도록 한 것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수정주요골자
 - “안 제13조(이용 및 열람시간)”를 삭제
 - “안 제18조(기타)도서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를 “안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
 - “안 제14조(휴관)”를 “안 제13조(휴관)”로
 - “안 제15조(변상)”를 “안 제14조(변상)”로
 - “안 제16조(입관 및 대출금지)”를 “안 제15조(입관 및 대출금지)”로
 - “안 제17조(권한위임)”를 “안 제16조(권한위임)”로
 - “안 제18조(기타)”를 “안 제17조(시행규칙)”로 수정
- 본회의 심사 : 1998년 7월 22일 제3차본회의에서 안상현교육사회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없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8년 7월 22일 수정안대로 가결된 후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1998년 8월 1일 강원도조례 제2641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공공도서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

강원도공공도서관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외의 각종 도서·자료 및 문헌을 수집하여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발전과 평생교육을 위한 지역사회 정부·문화·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감 소속하에 강원도공공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각종 도서·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주민에의 제공
2.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실시
3. 강연회, 감사회, 전시회, 독서회, 기타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4. 다른 도서관의 도서·자료 교류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업무에 고나한 조사연구
6. 기타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4조(관장) ① 도서관에 관장을 두되, 관장은 지방사서서기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② 관장은 도서관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정원) 도서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조례로 정한다.

제6조(하부조직) ① 지방사서서기관을 관장으로 보하는 도서관에는 행정지원부, 자료개발부 및 정보지원부를 둔다.

② 행정지원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자료개발부장과 정보지원부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조(행정지원부) 행정지원부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문서의 수발, 심사 및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

2. 관인 관수에 관한 사항
3. 인사, 복무 및 상벌에 관한 사항
4. 보안 및 비상계획 업무에 관한 사항
5. 예산회계의 운영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타 부서의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8조(자료개발부) 자료개발부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도서관 자료의 납본 및 수집
2. 도서관 자료의 정리 및 목록작성
3.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4. 도서관 자료의 정보교환 및 상호교류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자료의 조사·연구
6. 자료의 제적 및 폐기 처리

제9조(정보지원부) 정보지원부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도서관 자료의 열람 및 대출
2. 순회문고, 이동도서관 운영
3. 도서관 자료의 관리 및 복사·인쇄
4. 도서관자료의 정보 검색
5. 학교도서관 업무의 지도·조언
6. 독서진흥 및 지도
7. 평생교육 및 문화행사 개최

제10조(분관) ① 지방사서서기관을 관장으로 하는 도서관에 분관을 둘 수 있다.

- ② 분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③ 분관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분관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④ 분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분관자료의 열람, 대출, 보존 및 관리
 2. 이동도서관 운영
 3. 분관시설의 관리

제11조(재정) 도서관 운영경비는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에 이를 계상한다.

제12조(도서관의 수수료) 도서관의 자료를 복사 또는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의



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월요일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다만,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의 제3호, 제4호 및 제9호를 제외한 다른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때에는 개관한다.

② 기타 필요한 사유로 임시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휴관 7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변상) 자료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료를 분실 또는 오손하였을 경우에는 동일자료 또는 당해자료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5조(입관 및 대출금지) 자료의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자료의 반환을 태만히 하는 경우에는 자료대출을 금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권한위임) 관장을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보하는 도서관은 관할구역 교육장이 지도·감독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강원도립 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7월 9일 강원도교육감
- 제안이유 : 교육법이 폐지되고 교육기본법이 새로 제정되어 학교설립의 근거규정을 개정하고, 농촌지역의 이농현상에 따른 향후 학생증가요인이 없는 지역의 소규모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을 통·폐합 및 분교장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구분	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합 계	15	2	13			
폐 원	1	1	·			
통폐합	7	·	7			
분교장개편	5	·	5			
명칭변경	2	1	1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8년 7월 9일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20일 제3차회의에서 김호준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서의승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1998년 7월 22일 제3차본회의에서 안상현 교육사회위원장의 심사 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8년 7월 22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1998년 8월 8일 강원도조례 제2644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본문중 “교육법 제82조”를 “교육기본법 제11조”로 한다.

“별표 1”의 유치원 명칭과 위치란중 “(동해시)”의 “삼흥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삼화초등학교 삼흥분교장 병설유치원”으로 하고, “(삼척시)”의 “동덕초등학교 병설유치원”란을 삭제한다.

“별표 2”의 초등학교 명칭과 위치란중 “(원주시)”의 “황둔초등학교 창평분교장”란을 삭제하고, “(강릉시)”의 “운산초등학교”란을 “옥천초등학교”란 다음으로 하여 “운산초등학교”를 “옥천초등학교 운



산분교장”으로 하며, “(동해시)”의 “삼흥초등학교”를 “삼화초등학교 삼흥분교장”으로 하고, “(태백시)”의 “황지중앙초등학교 창죽분교장”단을 삭제하며, “(삼척시)”의 “양평초등학교”를 “동막초등학교 활기분교장”을 “천기초등학교”를 “미로초등학교 천기분교장”으로, “천기초등학교 활기분교장”을 “미로초등학교 활기분교장”으로 하고, “마음초등학교”단을 “동막초등학교 양평분교장”단 다음으로 하여 “마음초등학교”를 “동막초등학교 마음분교장”으로 하며, “역둔초등학교 관문분교장”단, “(홍천군)”의 “구송초등학교 영신분교장”단, “(평창군)”의 미탄초등학교 한치분교장”단과 “덕거초등학교”단, “(정선군)”의 “화동초등학교 선동분교장”단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유치원중 “(삼척시)”의 “동덕초등학교 병설 유치원”단과 “별표 2”의 초등학교중 “(원주시)”의 “황둔초등학교 창평분교장”단, “(태백시)”의 “황지중앙초등학교 창죽분교장”단, “(삼척시)”의 “역둔초등학교 관문분교장”단의 개정사항은 199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나. 建議案

1) 무장공비침투에따른소탕작전조기종료및경제지원촉구건의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7월 16일 이연우, 오원일의원의외 9인
- 제안이유 : 1996년 9월 18일 강릉 정동진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에 이어, 1998년 6월 22일 속초 앞바다에 침투한 잠수정 사건에 이어 계속 되는 이번의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인해 안보에 대한 불안감과 이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으로 가뜩이나 IMF사태로 경제침체에서 강원도민의 어려운 입장을 감안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조속한 소탕작전 종료와 그 간 피서철에 관광객 감소 등 지역경제가 입은 손실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획기적인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서라도 조기에 공비 소탕작전 종료할 것

- 해안선 경계를 강화하여 무장공비 침투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 북한으로부터 도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어 동해안이 안전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홍보할 것
- 장기화되고 있는 소탕작전으로 입은 지역경제 피해보상으로 '96무장공비 침투사건 지원사례에 준하여 지원하여 줄 것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8년 7월 18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20일 제3차회의에서 이연우의원의 제안설명과 전정기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후 수정하여 가결되었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
 - 사실상 공비소탕작적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따른 내용을 수정하여 건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답변요지
 - 발의한 전 의원들로부터 이에 대한 의견을 토론했던 바 공비작전 종료에 대한 내용은 삭제하여도 무방하다는 의견일치를 보았기에 수정안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함.

[수정안의 요지]

- 수정이유 : 무장공비침투 소탕작전의 사실상 종료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함.
- 수정주요골자 : 「무장공비침투에 따른 소탕작전 조기종료 및 경제지원 촉구 건의안」을 「무장공비침투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보상 건의안」으로 하며, 원안 2항의 주요골자에서 1을 삭제함.
- 본회의 심사 : 1998년 7월 22일 제3차본회의에서 황영철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없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건의문은 1998년 7월 22일 수정안대로 가결된 후 예산청에 건의했으나 1998년 11월 19일 도 보상은 불가하다는 회시를 받았다.



[의결전문]

무장공비침투에따른지역경제피해보상건의문

'96년 9월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 앞바다의 북한 잠수함 무장공비 침투사건에 이어, 지난달 소 때 북송전달과 금강산 관광유람선 취함 등 국민 모두가 들떠 대북 경계가 느슨한 가운데 발생한 속 초 앞바다의 북한 잠수정 침투사건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동해시 묵호동에 무장간첩 시신과 침투용 추진기가 또다시 발견되어 군당국이 바상을 발령하는 등 침투 무장공비를 잡기 위해 수색작전이 장기화되므로써 우리 200만 강원도민은 그간 IMF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로 어려운 이때, 또다시 일련의 연속적인 침투사건으로 심각한 후유증에 처해있으며, 특히 피서철 해수욕장 개장으로 숙박업, 음식점, 상가 등 관광관련 업체와 주민들은 일시에 관광객의 발길이 끊겨 깊은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더욱이 우려하는 것은 동해안이 계속 무방비 상태에서 북한의 대남침투 경로화 되어가고 있는데도 매년 침투사실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허술한 군 경계망과 사건이 터질 때마다 대국민사과와 해안 경계태세의 재점검 및 대잠수함 작전능력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도 재발되는 구멍뚫린 안보에 정부당국에 강력한 안보태세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허술한 안보 불감증과는 달리 우리도민은 투철한 안보정신과 반공정신으로 침투 때마다 신속한 신고정신을 발휘하여 무장공비 소탕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고, 사건의 조속한 해결에 크게 기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지원과 대책을 받지 못한채 평상시와 같이 생업을 유지하고 피해를 최소화 해주기만을 바랄뿐입니다.

원컨대, 새정부 출범 후,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추진해온 대북정책 기조가 강성기류로 흐를 가능성은 없지 않지만, 모처럼의 금강산과 동해안 설악권의 관광상품 개발로 내국민은 물론 외국관광객 끌어들여 남북 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하며, 정부의 안보강화와 병행한 현명한 대북정책이 추진되도록 바라며,

이에 강원도민은 그동안 적과 마주하는 최일선 지역에서 정부로부터의 각종 규제와 불이익을 감내하면서 살아오는 한편, 계속되는 무장 침투사건의 막대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자로서 금번 무장공비 침투에 따른 정부차원의 획기적인 지원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건의 합니다.

아 래

첫째, 해안선 경계를 강화하여 무장공비 침투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둘째, 북한으로부터 도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어 동해안이 안전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홍보 할 것 셋째, 무장공비침투 및 소탕작전으로 입은 지역경제 피해보상으로 '96무장공비 침투사건 지원사례에 준하여 지원하여 줄 것

2) 전국관광호텔슬롯머신영업허용계획전면백지화를위한건의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7월 11일 손석암의원외 10인
- 제안이유 : 탄전지역 주민들이 폐광에 따른 탄전지역 황폐화를 막기 위하여 대규모 생존권 투쟁을 통해 쟁취한 「내국인 출입 카지노장」 사업이 「전국 관광호텔에 슬롯머신 영업을 허용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는 문화관광부 장관의 발표로 인하여 무산될 위기에 있는바, 이는 탄전지역 경제활성화라는 부푼 꿈을 안고 카지노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탄전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열망과, 나아가서는 생존권 자체를 짓밟는 잘못된 계획임과 동시에 탄광지역 종합개발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어 주문과 같이 강력히 건의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우리 강원도의회 의원 모두 탄전지역 주민들의 이러한 민심과 여론을 대변하여 문화관광부에서 발표한 「전국 관광호텔 슬롯머신 영업 허용」 계획을 전면 백지화 해줄 것을 요구함.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8년 7월 11일 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6일 제2차회의에서 손석암위원의 제안설명과 이수길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 후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
 - 폐광카지노를 위해서 폐광지역을 세계적인 고원관광 도시로 건설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나와 있는데 과연 2조2천억원의 민간자본유치는 가능한지?
- 답변요지



- 달성가능한 정책적 고려를 바탕으로 목표를 설정, 추진하여 왔으나 작년 11월 이후 IMF 등으로 국내경기가 침체되어 여건이 어려우나 민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눈을 밖으로 돌리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본회의 심사 : 1998년 7월 22일 제3차본회의에서 업무협 산업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건의문은 1998년 7월 22일 원안대로 가결된 후 문화관광부에 건의되어 1998년 8월 5일 종합적 검토 추진중에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의결전문]

“전국 관광호텔 슬롯머신 영업허용” 계획 전면 백지화를 위한 건의문

태백, 정선, 영월, 삼척 등 강원도 탄전지역 4개 시군 27만여 주민들은 “전국의 관광호텔에 슬롯머신영업을 허용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기로 했다”는 문화관광부장관의 7월 2일자 발표에 반대하여 지금 생존권 확보차원에서 총궐기 투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번 양보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외화획득을 위해 이러한 문제를 정책 실무자들이 조심스러운 논의는 해 볼 수 있다손 치더라도, 그에 따른 엄청난 파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관계 장관이 직접 이러한 발표를 했다는데 대하여 실로 충격과 경악스런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관광호텔의 슬롯머신 영업은 이른 바 “정덕진 사건”으로 '93년 12월 금지된 이후 영업중인 업소는 3년간의 유예기간을 준후 '96년 5월에 전면 금지 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영삼정권때도 불법적인 정치자금 조성과 여러 가지 사회문제 발생등을 이유로 금지시킨 슬롯머신 영업을 국민의 정부에서 전국의 관광호텔에 다시 허용하겠다는 발상에 대해 “상당한 의혹”과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발상과 계획에 대해 관광호텔 업계 등 일부 이해 당사자들이야 반길지 모르지만 이는 분명 시대역행적 정책으로서 국민들의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하루에도 수백개업체가 부도로 쓰러지고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로 수백만 노동자

들이 졸지에 실업자가 되어 당장의 생계를 걱정해야하고, 나아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까지 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더욱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을 표방해 왔고 또 진정한 개혁을 국정의 최대 목표임을 표방해 온 현 정부가 이러한 시기에 전국 관광호텔에 슬롯머신 영업을 허용하겠다는 계획이 “과연 진정한 개혁이며 서민을 위한 최선의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우리는 이러한 이유 외에도 국민의 정부가 국민을 불안케 하고, 나아가 탄전지역 주민들의 희망을 짓밟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정책적 오류에 대해 이 건의문을 통해 지적코저 합니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강원도의 탄전지역 4개시·군은 “탄광에서 관광으로!”라는 슬로건으로 고원관광 도시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 참으로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었고, 그동안 정부에서도 “내국인 출입 카지노장 건설사업 만큼은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약속과 다짐을 수도 없이 해왔으며, 지난 대선때도 대부분의 대권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러한 약속들을 한 바 있습니다.

“내국인 출입 카지노장”은 탄전지역 주민들이 폐광에 따른 탄전지역 황폐화를 막기 위해 '95년 3월에 대규모 생존권투쟁을 통해 쟁취한 탄전지역활성화의 유일한 희망이자 목숨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러한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95년말 “폐광지역 개발지원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오랜기간 우여곡절의 과정을 거쳐 내국인 출입 카지노장 운영주체인 카지노법인(강원랜드)이 '98년 6월말에 설립되어 이제 탄전지역 경제활성화라는 부푼 꿈을 안고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채비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터져나온 문화관광부장관의 발표는 이러한 탄전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열망과 희망, 나아가 생존권 자체를 짓밟는 잘못된 계획임을 거듭 인식시키고자 이 건의문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현재 탄전지역의 내국인 출입카지노 사업은 공공부문 51%, 민간투자부문 49%지분으로 법인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공공부문 만으로 우선 설립을 추진 중이며, 내년 상반기로부터 본격적으로 민간부문이 참여하여 탄광지역 개발사업이 활기를 되찾으려 하고 있는 이때 “슬롯머신 허용 검토”운운하는 장관의 발표만으로도 탄전지역 카지노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더욱 위축시켜 엄청난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탄광지역 카지노는 슬롯머신과 테이블게임 이용객이 대략 반반정도이거나. 슬롯머신 이용객이 조금 더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인데 전국의 70여개 특급관광호텔에 슬롯머신 영업을 허용한다면 탄광지역에 세워지는 “내국인 출입 카지노 단지의 실패”는 불보듯 뻔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여건이 좋은 도시지역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거나, 전국의 수백개 관광호텔마다 슬롯머신 허용된다면 어느 누가 구태여 많은 시간과 비용을 써가며 멀리 탄전지역 카지노



를 찾겠습니까?

즉 전국관광호텔에 슬롯머신영업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정부가 “탄광지역 카지노 사업과 고원관광도시건설(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모두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탄전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문화관광부 장관의 발표에 분노하여 항의시위와 서명작업, 그리고 중앙부처 항의방문에 이어 대규모 총궐기생존권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강원도의회의원 모두는 탄전지역 주민들의 이러한 민심과 여론을 대변하여 문화관광부에서 발표한 “전국관광호텔 슬롯머신 영업허용”계획을 전면 백지화해 줄 것을 200만 강원도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전 지역주민들의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전국관광호텔에 슬롯머신 영업허용”계획은 즉각 전면 백지화되어야 합니다.

둘째, 탄전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희망이자 생존권이 걸린 내국인출입카지노장 건설사업의 성공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합니다.

셋째, 지금 정치권에 엄청난 로비와 공식건의로 “외국인 전용카지노에서도 내국인 출입 허용”을 요구하고 있는 바, “탄전지역 1개소외엔 내국인출입 카지노는 더 이상 허용않겠다”는 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넷째, 카지노 호텔 2개소 추가 허용계획 전면 백지화를 요구합니다.

第 2 節 第93回 臨時會

1. 概 況

가. 開 會

제93회 강원도의회임시회는 8월 10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도의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3일간의 회기로 1998년 8월 18일 개회하여 8월 20일 폐회되었다.

나. 議事日程

1) 本會議

가) 제1차 본회의 : 1998년 8월 18일(화)

- 제93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나) 제2차 본회의 : 1998년 8월 20일(목)

-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농업기술원설치조례안
- 강원도지방공무원교육원설치조례안
- 강원도동해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21세기강원도정기획위원회조례안



-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조례안
- 팔당호등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에따른특별대책의규제지역확대반대건의안
- 삼척원전건설후보지선정해제촉구에관한건의안
- 춘천권개발제한구역의제도개선촉구건의안
- 4분자유발언 (성희직, 정연대의원) 의견

2) 議會運營委員會

가) 제1차회의 : 1998년 8월 18일(화)

- 의사일정결정의건
- 제93회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및의사일정협의건의

3) 內務委員會

가) 제1차회의 : 1998년 8월 18일(화)

- 의사일정결정의건
-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농업기술원설치조례안
- 강원도지방공무원교육원설치조례안
- 강원도동해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나) 제2차회의 : 1998년 8월 19일(수)

- 21세기강원도정기획위원회조례안
-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조례안

4) 敎育社會委員會

가) 제1차회의 : 1998년 8월 19일(수)

- 의사일정결정의건
- 팔당호등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에따른특별대책의규제지역확대반대건의안

5) 産業委員會

가) 제1차회의 : 1998년 8월 19일(수)

- 의사일정결정의건
- 삼척원전건설후보지선정해제촉구에관한건의안

6) 觀光建設委員會

가) 제1차회의 : 1998년 8월 19일(수)

- 의사일정결정의건
- 춘천권개발제한구역의제도개선촉구건의안

다. 議會活動

1) 本會議

가) 강원도행정조직개편관련조례안 심의결과에 대한 인사 : 제2차본회의('98. 8. 18)

- 김진선도지사 : 이번 임시회가 도정의 가장 시급한 현안중 하나인 행정조직개편관련 조례를 심의 의결하기 위해 특별히 열렸다는 점에서 큰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의원들이 창조적이고 발전적인 사고와 자세로 심도있게 심의해주고,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의결해 준 점에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다.

김진선도지사는 또 이번 조직개편은 단순히 기구와 인력을 줄이기 위한 개편이 아니라 효율성을 갖춘 경쟁력있는 조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평소 소신대로 주민을 위한 도정을 펼쳐 나갈수 있는 조직이 될수 있도록 하는데 최대한 주안점을 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오늘 의결해주신 조직개편안에 의거 조속한 시일내에 조직개편을 마무리하고 조직의 안정과 함께 개성과 활력이 넘치는 도정, 강원도 세상을 열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나) 4분자유발언(성희직, 정연대의원) : 제2차 본회의

- 성희직의원 : 폐광지역카지노는 탄전지역 경제회생을 위해 특별법까지 만들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런데도 전국의 수백개 관광호텔마다 슬롯머신 영업을 허용하게 되면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의 실패는 불보듯 뻔하다.

내국인 출입 카지노사업은 강원도에서 이미 66억원을 출자하였고, 탄전지역 4개 시군에서 수십억원씩 투자하여 법인설립까지 마쳤으며 앞으로도 상당한 추가 증자를 해야하는데 이런 사업이 실패하면 탄전지역은 물론 강원도 전체가 상당한 피해와 손실을 보게된다. 정책당국자들은 외화획득이라는 명분아래 관광호텔 슬롯머신 영업허가라는 반개혁적 정책을 입법화한다면 탄전지역 민심과 국민여론은 정부로부터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 문제는 이제 대통령의 결단만이 남은 것 같으므로 대통령께서 슬롯머신 영업허가를 절대하지 말아 줄 것을 호소 드린다.

- 정연대의원 :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도민위주의 봉사 행정체제로 과감히 전환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인사 관행에 대한 획기적인 변혁이 절실하다고 본다. 총무·인사 등 지원부서를 중시하는 그 동안의 인사관행에서 벗어나 대민이나 현장부서 중심으로 승진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인사제도의 일대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매년 두 차례씩 치러지는 정기인사에서 총무·인사·기획·예산등 소위 요직 부서에 따른 인사에서는 교통·환경부서등 홀대를 받아왔던 민원부서 공무원들에게 인사상 우선권을 주는 등 인사관행의 혁신적인 진정한 변화의 새바람이 부는 강원도 세상 만들기에 전공무원들이 매진할 수 있는 강원도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2) 委員會

가) 현지사찰 : 산업위원회

- 1998년 8월 19일 제1차 회의에서 의사일정을 결정한 후 소관업무과약을 위해 당일 오후 2시 농산물원종장을 시찰했다.

라. 議定處理狀況

1) 一般議案

- 이번 회기중 상정대상 일반안건은 총 11건으로 제안자별로 도지사 제출 8건, 위원회 제출 2건, 의원발의 1건이다. 처리결과를 보면 11건 모두 가결되었으며 종류별 처리상황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종류별	상 정 대 상 안 건			의 안 처 리 내 역				
	합 계	전화기 이 월	금회기 접 수	가 결			폐 기 (철 회)	계 류
				소 계	원 안	수 정		
계	11		11	11	10	1		
조 례 안	8		8	8	7	1		
예 산 안								
동 의 안								
건 의 안	3		3	3	3			

2. 議決案件

가. 條例案

1)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8월 14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당면한 국가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도 본청의 조직을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현행 11개 실·국·본부 8개 실·국·본부로 감축하고 기구의 명칭과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감사실(局)을 감사관(課)으로 하향 조정하고, 여성정책실을 신설하며, 산림정책관·복지



- 여성국·민방위재난관리국을 폐지하고, 내무국을 자치지원국으로 산업통상국을 산업진흥국으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3조)
- 폐지되는 실·국·본부의 분장사무를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실·국으로 이관 조정함(안 제4조 내지 제11조)
- 실·국·본부 밑에 두는 과·담당관과 그 하부조직 및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2조)
- 이 조례등 개정과 관련하여 다른 34개 조례의 기구명칭을 변경 조정함(부칙 안 제2조)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8년 8월 17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18일 제1차회의에서 박수준 내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정기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친 다음 수정의결되었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
 - 재무과의 명칭이 세무 민원인들에게 다소 생소한 감이 있으므로 세무회계과로 변경하는 것이 어떤지?
 - 공보관실, 국제교류협력실이 비선조직인 이유는?
- 답변요지
 - 세무회계과로 수정토록 하겠음
 - 공보관실은 도의 대변인격이며 국제교류협력실은 국제교류의 원만한 관계 업무수행을 위해 이에 상응토록 하기 위함

[수정안 주요골자]

- 안부칙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⑤, ②⑦의 「재무과」를 「세무회계과」로 명칭변경
- 본회의 심사 : 1998년 8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황영철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후 질의 및 토론없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8년 8월 20일 수정안대로 가결된 후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1998년 9월 9일 강원도조례 제2646호로 공포되었다.

[의결 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에 두는 부지사와 실·국·본부 등의 행정기구 설치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지사) ① 강원도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도지사 밑에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를 둔다.

② 행정부지사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원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다만, 정무부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2. 강원도 소속공무원의 지도·감독

③ 정무부지사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지사를 대리하여 정무적 행사·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2. 의회와 관련된 각종 정무적 협의에 관한 사항
3. 도정의 홍보, 도지사의 활동상 소개 및 언론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도정에 대한 자문을 얻거나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사항
5. 정부·국회 등과 관련되는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정당·사회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7. 투자유치, 통상협력, 경영사업등 경제분야의 정책수립 참여에 관한 사항
8. 기타 도지사를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실·국·본부설치) 강원도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 자치지원국, 환경



복지국, 농정산림국, 산업진흥국, 관광문화국, 건설도시국, 소방본부를 둔다.

제4조(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 정책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2. 도정주요기획 수립, 심사·평가에 관한 사항
3. 광역자치단체간의 협의에 관한 사항
4. 도의회 협력 및 남북교류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편성·운영, 투자심사 및 재정경영에 관한 사항
6. 자치법규 심사·공포, 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7. 공무원 소청에 관한 사항
8. 정보·통신, 통계 및 전산실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자치지원국) 자치지원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무·문서·보안 및 의전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의 인사, 교육, 복무 및 후생에 관한 사항
3. 지방행정 종합관리 및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
4. 도와 시·군간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5. 조직관리 및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사항
6. 선거, 국민투표 및 자치발전에 관한 사항
7. 행정혁신 및 민원사무에 관한 사항
8. 지방세, 세외수입, 기부금품 모집(제한)에 관한 사항
9.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0. 재난관리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11. 민방위 및 경보통제에 관한 사항
12.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13. 재해·재난업무 조정 및 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환경복지국) 환경복지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정책 및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2. 대기·자연환경보전 및 생태계보호에 관한 사항
3. 생활오·폐수, 폐기물처리 및 청소에 관한 사항
4. 먹는샘물 관리 및 상·하수도 등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5. 보건·위생, 의·약무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의료구호 및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7. 노인 및 아동복지, 묘지에 관한 사항
8. 여성복지 향상 및 모자·부자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농정산림국) 농정산림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어업정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농어촌 개발 및 소득증대에 관한 사항
3. 농산물 생산·유통 및 양정에 관한 사항
4. 농지관리·개량 및 농업용수 관리에 관한 사항
5. 특용·원예작물 생산 및 가공에 관한 사항
6. 축산에 관한 사항
7. 산림·산지보호 및 도시녹화에 관한 사항
8. 양묘·식수·영림 및 산지이용에 관한 사항

제8조(산업진흥국) 산업진흥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경제, 산업진흥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물가안정 및 노·사·정협의를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창업, 경영지원 및 수출지원등에 관한 사항
4. 전기·유류·가스등에 에너지 관리 및 연료수급에 관한 사항
5. 공업발전 및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6. 광업 및 광산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7. 교통·운수 및 차량에 관한 사항

제9조(관광문화국) 관광문화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광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관광진흥 및 관광홍보에 관한 사항
3. 관광지 개발 및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재관리에 관한 사항
5.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사항
6. 청소년 건전육성 및 청소년 수련시설에 관한 사항

제10조(건설도시국) 건설도시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토건설·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토지수용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건설업체 육성 및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사항
4. 치수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
5. 하천, 공유수면(내수면) 관리 및 방재에 관한 사항
6.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7. 건축·주거환경개선 및 특정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8. 도로정책, 도시건설 및 교량건설에 관한 사항
9. 지적 및 개별토지의 지가조사에 관한 사항

제11조(소방본부) 소방본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방행정 종합 및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
2.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에 관한 사항
3. 소방상황 통제 및 소방항공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실·과·담당관 등의 설치) 실·과·담당관의 설치와 그 하부조직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감사실장”을 “감사관”으로, “국제교류협력실장”을 “국제협력실장”으로 한다.

② 강원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중 “기획담당관”을 “기획관”으로 한다.

③ 강원도민제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④ 강원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⑤ 강원도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중 “총무과”를 “세무회계과”로 한다.

제30조중 “총무과장”을 “세무회계과장”으로 한다.

- ⑥ 강원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부지사”를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⑦ 강원도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⑧ 강원도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중 “이 경우 경찰국장이 전결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제7조·제8조·제11조제1항 및 제2항중 각각“내무국장”을 “자치지원국장”으로 한다.
제10조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⑨ 강원도지방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보사환경국장”을 “환경복지국장”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농림국장”을 “농정산림국장”으로, “건설교통국장”을 “산업진흥국장”으로 한다.
- ⑩ 강원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중 “보사환경국장”을 “환경복지국장”으로, “건설교통국장”을 “산업진흥국장”으로 한다.
- ⑪ 강원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보사환경국장”을 “환경복지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가족보건계장”을 “건강관리담당”으로 한다.
- ⑫ 강원도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환경보건국장”을 “환경복지국장”으로 하고, 동조 제4항중 “보건행정계장”을 “보건행정담당”으로 한다.
- ⑬ 강원도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중 “여성복지국장”을 “환경복지국장”으로 한다.
- ⑭ 강원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보사환경국장”을 “환경복지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제9조중 “의료보장계장”을 “생활보호담당”으로 한다.
- ⑮ 강원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제1호중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복지계장”을 “생활보호 담당”으로 한다.
- ⑯ 강원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보사환경국장”을 “환경복지국장”으로, “기획담당관”을 “기획관”으로 한다.
- ⑰ 강원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중 “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보사환경국장”을 “환경복지국장”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가정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은 가정복지국장”을 “기금운용관은 환경복지국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은 노인복지계장”을 “기금출납원은 경로복지담당”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 ⑱ 강원도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중 “농어업경영계장”을 “농어업소득담당”으로 한다.
- ⑲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및 제15조중 각각 “농어업경영계장”을 “농어업소득담당”으로 한다.
- ⑳ 강원도1지역1명품특화사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농어업경영계장”을 “농어업소득담당”으로 한다.
- ㉑ 강원도도·소매업 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경제진흥계장”을 “지역경제담당”으로 한다.
- ㉒ 강원도소비자보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호제2항중 “산업통상국장”을 “산업진흥국장”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환경보건국장”을 “환경복지국장”으로 한다.
- ㉓ 강원도물가대책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중 “산업통상국장”을 “산업진흥국장”으로 한다.
- ㉔ 강원도물가대책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중 “산업통상국장”을 “산업진흥국장”으로, “경영지원계장”을 “경영지원담당”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㉕ 강원도근로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1항제1호중 “산업통상국장”을 “산업진흥국장”으로 한다.

- ㉖ 강원도향토공예관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산업통상국장”을 “산업진흥국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통상협력과장”을 “중소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
- ㉗ 강원도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중 “산업통상국장”을 “산업진흥국장”으로, “총무과장”을 “세무회계과장”으로 한다.
- ㉘ 강원도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산업통상국장”을 “산업진흥국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중 “강원지방공업기술원장”을 “강원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 ㉙ 강원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9호중 “통산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㉚ 강원도도립공원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내무국장”을 “자치지원국장”으로, “환경보건국장”을 “환경복지국장”으로, “산업통상국장”을 “산업진흥국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중 “관광과장”을 “관광개발과장”으로 한다.
- ㉛ 강원도사면찬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내무국장”을 “자치지원국장”으로 한다.
- ㉜ 강원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내무국장”을 “자치지원국장”으로 한다.
- ㉝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중 “내무국장”을 “자치지원국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을 “자치지원국장”으로 한다.
- ㉞ 강원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호제1항제1호중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방재계장”을 “방재담당”으로 한다.

2)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8월 14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국가경제위기 극복과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도 조직을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축소 개편함에 따라 현 정원 3,306인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화되는 농촌지도직 공무원등 23인을 포함한 총 3,329인중 406인을 감축하고 2,923인을 정원관리 기관별로 조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본청 및 소속기관에 두는 총 2,923인의 정원을 본청에 894인, 의회사무처 62인, 직속기관 1,547인, 출장소 82인, 사업소 338인으로 조정함(안 제2조)

나) 심사 및 심사결과

- **위원회 심사** : 1998년 8월 17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18일 제1차회에서 박수준내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정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1998년 8월 20일 제2차본회의에서 황영철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후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8년 8월 20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1998년 9월 9일 강원도조례 제2649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1,028”를 “894”로 하고, 동조제2호중 “68”을 “62”로하며, 동조제3호중 “1,659”을 “1,547”로 하고, 동조제4호중 “92”를 “82”로 하며, 동조제5호중 “459”을 “338”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③ (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의회사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68명”을 “62인”으로 한다.

3) 강원도농업기술원설치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8월 14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98 도조직개편에 따라 농업관련 조직을 「저비용 고효율 조직」으로 조정하고자 농산물 원종장과 감자원종장을 농촌진흥원에 통합하는 동시에 기구명칭과 기능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 농업기술원의 설치근거가 종전에는 대통령령에 두고 있던 것이 동 규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명칭을 “강원도농업기술원”으로 함(안 제1조)
 -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업관련 시험·연구 및 농업기술보급, 농산물 원종생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안 제3조)
 - 원장 소속하에 농산물원종장, 감자원종장, 특화작목시험장을 두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안 제5조)
 - 이 조례 제정에 따라 관련 7개 조례의 기구명칭을 변경 조정함(부칙 안 제3조)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8년 8월 17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18일 제1차회의에서 박수준 내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정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 결과 제시한 대로 수정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1998년 8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홍영철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8년 8월 20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1998년 9월 9일 강원도조례 제2650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농업기술원설치조례안

제1조(설치) 지역의 농업발전을 통한 주민소득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 등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에 농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둔다.

제2조(위치) 기술원은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402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기술원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농업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2. 주요 농작물의 우량품종 육성 및 선발연구
3. 농업의 첨단기술개발 및 농업환경 보전에 관한 시험연구
4. 비료·농약·토양의 시험 및 분석
5. 농업경영 및 농업정보에 관한 조사연구
6. 주요 농산물의 저장·이용 및 가공에 관한 시험연구
7. 농촌청소년 및 농업인후계자등 후계인력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
8. 농·축산물의 우량종자·종묘·종축의 보급
9. 시험연구사업에서 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

10. 지역농업의 개발과 농촌생활환경 개선 지도
11. 농작물의 품질향상 및 가축질병 예방 방역기술 지도
12.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 대비 기술 지도
13. 농업관련 단체 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의 교육훈련
14. 전문농업인의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과 농업인의 부업훈련 및 취업알선
15. 기타 농업·농촌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원장) 기술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의 지휘·감독한다.

제5조(원종장·특화작목시험장) ① 기술원에 농산물의 우량종자 생산보급을 위하여 농산물원종장, 감자원종장을 두며, 그 위치 및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기술원에 특화작목에 품종개량, 재배방법 개선, 생리생태, 저장 및 가공이용등과 기타 소득작물에 관한 시험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창산채시험장, 홍천옥수수시험장, 철원특작시험장, 강릉근채시험장을 두며, 그 위치 및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공무원) 원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강원도농산물원종장조례 및 강원도감자원종장 설치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3호중 “농촌진흥원장”을 “농업기술원장”으로 한다.

② 강원도지방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농촌진흥원 시험국장”을 “농업기술원 시험연구부장”으로 한다.

③ 강원도농어업인대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농촌진흥원장”을 “농업기술원장”으로 한다.



- ④ 강원도농업기술연수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농촌진흥원장”을 “농업기술원장”으로 한다.
- ⑤ 강원도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농촌진흥원장”을 “농업기술원장”으로 한다.
- ⑥ 강원도농기계수리소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강원도농촌진흥원”을 “강원도농업기술원”으로 하고, 제4조제1항중 “농촌진흥원장”을 “농업기술원장”으로 하며, 제5조중 “농촌진흥원”을 “농업기술원”으로 한다.
- ⑦ 강원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사무처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농촌진흥원”을 “농업기술원”으로 하고, 제1조중 “강원도농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를 “강원도농업기술원(이하“기술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제3조제1항중 “강원도농촌진흥원장”을 “강원도농업기술원장”으로 하고, 제6조제1항중 “진흥원”을 “기술원”으로 한다.

4) 강원도지방공무원교육원설치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8월 14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설치 근거가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두고 있던 것이
 - 금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의 개편과 아울러 동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원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교육원에서는 6급이하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수행하도록 함. (안 제3조)
 - 원장 밑에 두는 기구와 공무원, 분장사무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안 제6조)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의원회 심사 : 1998년 8월 17일 내부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17일 제1차회의에서 박수준 내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정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1998년 8월 20일 제2차본회의에서 황영철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후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8년 8월 20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1998년 9월 9일 강원도조례 제2651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지방공무원교육원설치조례안

제1조(설치) 지방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소양교육을 관장하기 위하여 강원도지방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제2조(위치) 교육원의 위치는 강원도 춘천시 동면 만천리 324-1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교육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6급이하 공무원의 교육훈련
2. 교육훈련 정보·자료수집
3. 공무원 교육훈련 기법의 연구 및 개발
4. 교재의 편찬 및 교육훈련 성적 평가

제4조(원장) 교육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교육원의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공무원) 원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강원도 동해출장소 조례 중 개정 조례 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8월 14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도 조직개편에 따라 동해출장소의 명칭을 “해양수산출장소”로 변경하고 수산해양개발담당관과 총무과를 폐지하면서 감사기능등 일반 서무적 기능을 본청으로 흡수하여
 - 출장소의 기능을 해양수산개발의 전문기관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강원도 동해출장소의 명칭을 “강원도해양수산출장소”로 변경함. (안 제2조)
 - 출장소의 관할 구역 중 태백시를 삭제하고, 내수면 관련업무는 강원도 전역을 관할토록 단서 조항을 삽입함. (안 제4조)
 - 출장소의 직급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규칙을 정함. (안 제5조)
 - 이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다른 3개 조례의 기구명칭을 변경 조정함. (부칙 안 제2조)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8년 8월 17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18일 제1차회의에서 박수준 내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정기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1998년 8월 20일 제2차본회의에서 황영철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후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8년 8월 20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1998년 9월 9일 강원도조례 2648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동해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동해출장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강원도해양수산물출장소설치조례”로한다.

제2조중 “강원도동해출장소”를 “강원도해양수산물출장소”로 한다.

제4조중 “태백시”를 삭제하고,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내수면 관련 업무는 강원도 전역을 관할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소장)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3호중 “동해출장소장”을 “해양수산물출장소장”으로 한다.

② 강원도농어업인대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동해출장소장”을 “해양수산물출장소장”으로 한다.

③ 강원도어항정책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동해출장소장”을 “해양수산물출장소장”으로, “수산진흥담당관”을 “수산물과장”으로 한다.

6) 강원도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8월 14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현재 춘천시 소양로3가에 위치한 춘천소방서의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소방활동 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 「'94 춘천소방서 이전 신축계획」에 의거 '96년 3월에 착공하여 '98년 8월에 완공, 이전 됨에 따라 소방서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춘천소방서의 위치를 “춘천시 후평1동 257-31”로 변경함. (안 제2조)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8년 8월 17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18일 제1차 회의에서 박수준 내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정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다.
- 본회의 심사 : 1998년 8월 20일 제2차본회의에서 황영철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8년 8월 20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1998년 9월 9일 강원도조례 제2647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소방서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춘천소방서의 위치중 “소양로3가 177-1”을, 후평1동 257-31“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 21세기강원도정기획위원회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8월 14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도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하고 시대적 변화에 부응한 강원도발전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21세기강원도정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위원회의 기능으로 다음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2조)
 - 도정주요업무 및 도비지원사업에 실적에 대한 평가
 - 목표관리제 도입, 경영행정 실현 등 도정혁신에 관한 사항
 - 도정비전 및 도지사 공약과 관련한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 균형투자과 지역특성화 등 도민 통합에 관한 사항
 - 위원은 50인 이내로 하되 각 분야의 전문인사로 구성함(안 제3조)
 - 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
 - 부위원장은 평가기획단장이 됨.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며, 임명직 위원은 그직의 재직기간으로 함(안 제4조)
 - 회의는 연2회 개최하며, 필요시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함(안 제5조)
 - 도정 주요업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위하여 「도정평가기획단」을 둠(안 제7조)
 - 평가기획단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15인 이내로 함.
 - 단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함
 - 평가기획단 회의는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소집
 - 의결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함으로써 의결된 것으로 봄.
 -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개분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기능을 분담 수행토록 함(안 제8조)



- 「도정혁신분과위원회」는 13인 이내로 하며 위원회 기능 중 목표관리제 도입, 경영행정의 실현등 도정혁신에 관한 사항을 수행함.
- 「비전실천분과위원회」는 12인 이내로 하며 위원회 기능중 도정비전, 도지사 공약과 관련한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을 수행함.
- 「도민통합분과위원회」는 12인 이내로 하며 위원회 기능중 지역별 특성화 발전계획과 균형투자 등 도민통합에 관한 사항을 수행함.
- 기타 위원회 운영 기본규정인 간사와 서기·의견청취·회의록 수당과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내지 제14호)

나) 심사 및 경과

- 위원회 심사 : 1998년 8월 17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19일 제2차회의에서 권혁인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박종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이 있었으나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

- 기존위원회중 본위원회와 유사한 위원회가 있는지
- 중앙부처에서 위원회 관련 법령개정등 정부후 제정하는 것은 어떤지에 대한 견해
- 본위원회 위원수가 50명으로 너무 많은 것은 아닌가?

- 답변요지

- 현재 66개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유사한 위원회는 없음
- 현재의 시대적 상황이 강원도 발전을 가속화 시키면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호기라 봄.
- 각분과위원회로 구성, 다른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운영면에서 적절한 인원이라고 판단함.

- 본회의 심사 : 1998년 8월 20일 제2차본회의에서 황영철내무위원장의 심사결과보고후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8년 8월 20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1998년 9월 9일 강원도조례 제2652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21세기강원도정기획위원회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하고 시대적 변화에 부응한 강원도 발전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21세기강원도정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정 주요업무의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2. 도비지원사업에 대한 시군의 사업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목표관리제의 도입, 경영행정의 실현 등 도정혁신에 관한 사항
4. 도정비전 및 도지사 공약과 관련한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5. 지역별 특성화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6. 투자사업비의 지역균형배분등에 관한 사항
7. 강원도의 열 선양 등 도민통합에 관한 사항
8. 기타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제7조의 평가기획 단장이 된다.

③ 위원은 도의회,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도 실국원장등 각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중에서 제7조의 도정평가기획단과 제8조의 각 분과위원회 위원을 미리 정하여 도지사가 위촉 및 임명한다.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명직 위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회의는 연2회 개최하며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 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8조의 분과위원회 위원장 순으로 대행한다.

제7조(도정평가기획단) ① 도정주요업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회 도정평가기획단(이하 “평가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 ② 평가기획단은 제3조의 위원중에서 단장 1인과 제8조의 분과위원장 3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단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③ 평가기획단은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8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④ 평가기획단 회의는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소집하며 의사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 ⑤ 제4항의 의결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함으로써 확정된 것으로 본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도정혁신분과위원회·비전실천분과위원회 및 도민통합분과위원회를 둔다.

- ② 각 분과위원회는 제3조의 위원중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1. 도정혁신분과위원회 : 13인 이내
 2. 비전실천분과위원회 : 12인 이내
 3. 도민통합분과위원회 : 12인 이내
- ③ 분과위원회별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정혁신분과위원회 : 제2조제3호 및 제8호의 사항
 2. 비전실천분과위원회 : 제2조제4호 및 제8호의 사항
 3. 도민통합분과위원회 : 제2조제5호 내지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
- ④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연4회 개최하되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소집하며, 의사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 ⑤ 제4항의 의결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함으로써 확정된 것으로 본다.

제9조(간사와 서기) 위원회·평가기획단 및 분과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각 1인을 두되 위원장·평가기획단장 및 분과위원장이 따로 지명한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의견청취) 위원장·평가기획단장 및 분과위원장은 제2조 가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강원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조례가 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8월 14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국가적으로 남북교류 여건이 점증됨에 따라 남북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도가 그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에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위원회는 교류협력방안·교류촉진을 위한 협의, 교류기반조성 및 민간교류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2조)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3조)
 - 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남북강원도교류협력기획단」을 설치함(안 제4조)
 - 위원 및 기획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토로 함(안 제5조)
 - 위원회는 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등으로부터 의견을 정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기타 위원회 기본사항인 위원장의 직무, 의결정족수, 간사와 서기, 수당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둠(안 제6조·제7조·제9조 내지 제11조)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8년 8월 17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19일 제2차회의에서 권혁인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박종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이 있었으나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

- 본 위원회와 관련 도내 대학간에 주도권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 본 위원회에 도의원 참여확대와 정부와 현대측이 도에 협조한 내용은?

- 답변요지

- 위원회 성격상 주도권 문제는 있을 수 없으며 들은 바도 없음
- 위원회 선정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여 확대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도에서 협의시 심도있게 검토할 것을 청와대로부터 공식적인 회신을 받았음.
- 본회의 심사 : 1998년 8월 20일 제2차본회의에서 황영철 내무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후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8년 8월 20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1998년 9월 9일 강원도조례 제2653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북강원도 교육협력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남북강원도 교류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협의·자문
3. 남북교류 기반조성 및 민간차원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상 3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하되,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자
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기획단) ①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남북강원도교류협력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기획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단장과 기획위원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위원회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및 임명한다.

④ 기획단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남북교류협력 방안에 대한 자료수집·조사연구
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조정
3. 기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5조(임기) 위원 및 기획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제2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간사와 서기)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위원장이 따로 지명한다.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기획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강원도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建議案

1) 팔당호등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에따른특별대책의규제지역확대반대건의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8월 교육사회위원회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수도권한강수계의 상류지역에 위치한 강원도는 수도권지역의 상수원보호라는 차원에서 이 지역의 이해와는 무관하게 지금까지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이 억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 정부가 또다시 팔당호수질보호를 이유로 남한강 및 북한강수계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특별대책지역을 확대·지정하기로 해 이는 해당지역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수도권중심의 중앙정부 시각에서 대책지역을 정한 것으로 불합리하므로 정부차원의 적절하고도 합리적인 대안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이에 반대를 건의하고자 함.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8년 8월 19일 교육사회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이천규의원의 제안설명후 질의 및 토론이 있었으나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1998년 8월 20일 제2차본회의에서 안상현 교육사회위원장의 심사보고후 질

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건의안은 1998년 8월 20일 환경부,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 건의되어 회시되지 않았다.

[의결전문]

팔당호등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에따른특별대책의규제지역확대반대 건의안

강원도는 전국의 어느 지역보다 많은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국가의 전력공급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의 홍수조절과 상수원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댐건설로 인하여 많은 시·군의 교통은 오지지역으로 전락되었으며, 각종 환경관련 보호규제로 인하여 2중 3중축쇄로 채워져 있어 주민의 재산권행사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이 낙후되어 생활 불편은 물론 심한 안무로 인하여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등 주민생활의 불편과 경제적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한강수계수도권시민의 맑은물공급을 위하여 상수원보호 및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추가비용까지 부담하여 왔습니다.

최근에 수도권지역 상수원인 팔당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특별종합대책」은 팔당호 주요영 영향지역은 팔당호 주변 하류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강 상류수계까지 특별대책지역으로의 확대지정은 수도권지역 주민들을 위해 팔당호상류지역인 강원도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지역편향적 대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원도내에서 발생한 오염원은 팔당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북한강 수계의 수질은 지난 94년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이 연평균 1당 1.01mg에서 지난 97년에는 0.63 μ g, 총천호는 94년 1당 1.43mg에서 97년 1.24mg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고, 남한강상류지역인 원주섬강의 경우도 지난 97년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1당 1.63mg으로 2급수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다 섬강 유량이 1일 95만 m^3 으로 남한강 총유량인 1천6백32만 m^3 의 5.8%에 불과하며, 팔당호의 총 유입량에 비해서는 3.2%에 해당하는 것으로 팔당호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합니다.

또한 철원은 신천과 포천천의 배수유역과도 전혀 무관하고 임진강유역의 오·폐수배출업소는 3,657개소이나 철원지역은 109개소로 3%로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임진강권역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은 합당치 못합니다.

한강수계의 수질이 지난 94년 이후 이처럼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강원도가 그간 꾸준히 환경보존정책에 앞장서 가두리 양식장의 허가연장을 불허하고 산 좋고 물 맑은 강원지키기운동, 산간계곡자연휴식년제, 맑은물보전대책등 잇단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북한강 상류의 수질이 개선되고 있는데다 강원도는 팔당호에서 70km의 상류에 있고, 섬강도 남한강의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수원 보호구역의 확대조정은 실효성이 없는 불필요한 규제라고 봅니다.

우리는 팔당호의 수질오염상태가 갈수록 심화되어 이대로 가면 상수원으로 쓰지 못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팔당호수질개선을 위해 정부차원의 특별한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특별종합대책은 팔당호수질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은 뒤로 미루어 둔 채 상류지역의 오염원이나 오염행위에만 관심을 기울여 해당지역 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채 수도권 중심의 중앙정부시간에서 본 제도를 마련한 결과, 팔당호수질개선이라는 명분으로 상류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수질보존능력에 찬물을 끼얹고 생활권과 생존권을 박탈하는 지나친 규제일변도의 방책이지 과학적 근거에 의한 합리적·종합적 물관리대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강원도의회의원 전원은 정부차원의 적절하고도 합리적인 대안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 몇가지 사항을 건의합니다.

첫째, 남·북한강 상류지역까지 팔당호 영향권으로 특별대책지역을 설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팔당호 영향권은 실제 주영향 지역인 하류지역으로 축소할 것.

둘째, 팔당수질오염에 직접영향을 미치지 않는 강원도지역의 수변원충구역지정을 반대함.

셋째, 최근 소양호 가두리 양식장이 철거되고 있으며, 주변환경 기초시설확충 등으로 수질이 현저히 개선되고 있으므로 소양호지정호소 및 수질보전구역지정을 보류할 것.

넷째, 철원은 신천과 포천천의 배수유역과 전혀 무관하고 오·폐수 배출업소가 극히 미미하므로, 철원지역을 임진강 권역특별대책지역지정에서 제외할 것.

다섯째, 보안림을 일률적용시 오염영향을 미치지 않는 잠수구역의 지역도 포함되어 주민생계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남·북한강 본류와 제1지천에서 5km이내를 보안림으로의 지정을 반대함.

여섯째, 원주시 7개면은 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이 없을 뿐 만 아니라, 특정유해물질이 하천수질기준이 BOD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므로 원거리 영향지역인 원주지역을 특별대책지역지정뿐 아니라 특정유해물질배출시설입지제한을 반대함.

2) 삼척원전건설후보지선정해제촉구에관한건의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8월 산업위원회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강원도에서도 삼척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맑고 깨끗한 청정지역이며,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춘 관광지 뿐만 아니라 문화 유적지로서 이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려는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결정에 부당성을 제기하고 특히, 삼척 원전건설 후보지가 타 지역보다 인구밀도가 높고 부지개발비가 과다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이 배제되고 지정된 이유에 대해 부당성을 지적하고자 하며, 나아가 이 지역은 지진발생의 안전지대가 아님이 그간의 지진활동으로 입증되었음.
 - 따라서 삼척시 근덕면 덕산리 일대가 원전건설 후보지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 강력히 해제를 촉구하려는 것임.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8년 8월 19일 산업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이연우 위원의 제안설명후 질의 및 토론이 있었으나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1998년 8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염문섭 산업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건의안은 1998년 8월 20일 산업자원부, 한국전력공사에 건의되어 검토결과 타당성여부는 긍정적이며 지자체와 협의하여 최종안을 정부에 건의예정이라고 회시되었다.

[의결전문]

삼척원전건설후보지선정해제촉구에관한 건의안

강원도는 212.3km의 긴 해안선이 동해에 접해 있는 전국 유일의 맑고 깨끗한 청정 해역을 보유하



고, 자연환경 보전상태가 양호할 뿐 아니라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전국 제일의 관광지로서 자리매김하여 왔으며, 특히, 최근 금강산 관광 유람과 관련하여 동해안은 설악산과 동해남부를 연계하는 관광코스가 개발될 것으로 이는 명실공히 세계적 관광지로 발돋움 하는데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향후 전력수요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원전 후보지로 지정 고시된 삼척 덕산을 비롯한 전국 9개 후보지 가운데 공항건설 후보지인 경북 울진 직산리를 제외한 8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입지타당성 등 『원전후보지 여건변동 조사』를 실시하여 3개후보지를 순위 매김하여 이중 삼척시 근덕면 덕산리가 원전건설 후보지역으로 선정되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지역 정서와 도민을 무시한 이러한 정책결정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광적인 측면에서도 후보지 주변에는 초당휴양촌, 해수욕장, 환선굴 등 빼어난 천혜의 관광지가 널려 있으며, 더구나 입접시에는 금강산 유람선, 패속선 출항과 발맞추어 지역개발을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이 한창인데 불구하고, 원전건설로 지역개발에 찬물을 끼얹고 핵단지화 한다는 무책임한 발상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인될 수 없는 매우 위험스러운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간 정부는 1982년 세계적으로 그 위험이 실증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해 삼척시 근덕면 덕산리 일대 86만평을 국토이용관리법상 원자력 발전소 건설부지로 지정 고시하여 각종 재산권 행사를 제한해 왔으며, 1993년 8월 29일 원전건설 후보지로 처음 거론될 때, 삼척시민들은 원전건설 반대를 위한 대규모 궤기대회를 전개한 바 있고, 이듬해 4월 세계환경운동기구인 『그린피스』에서 선박과 대원을 삼척에 급파하여 현지 투쟁을 전개한 바 있으며, 최근의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며 다시 한번 우리 전 도민은 원전건설 백지화를 위한 투쟁을 강도높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강원도의 동해안은 환동해권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태평양시대의 중추적기지이며 남북교류의 젖줄이자 대동맥입니다.

특히, 강원도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심혈을 기울여 만든 『강원비전 21』에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을 위해 공업항 개발, 관광전용항 개발, 공업해상물류단지 조성, 해양리조트 단지 및 마리너 파크 등 개발사업과 여기에 바다 목장화 사업 등 주민소득 향상과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완성하기 위해 전 도민이 피땀 흘려 일하고 있으며,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아름답고 깨끗한 동해안을 환경오염과 방사능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켜 후손에게 물려줄 의무와 책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드러난 정책결정의 불투명성과 문제점에 대하여 강원도민 전체는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며, 지금까지 우리나라 원자력 정책은 사후약방문식으로 사고발생직후 누출되었을지 모르는 방사능 오염방지 노력보다는 사실을 감추기에 더 급급했으며, 국민은 기만해 왔기에 지금도 생생한 저 유명한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의 대참사를 어찌 잊을 수 있으며, 우리에게도 이러한 참사가 닥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이에 강원도의회는 강원도민을 대표하여 핵 에너지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고, 자연환경을 파괴하며 지역개발에 역행하는 정책결정을 한 정부에 『삼척원전건설 후보지 선정 해제』를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아래

첫째, 삼척 덕산은 장흥의 신리보다 인구밀도가 높고, 해남 외립이나 신안 송공보다 부지 개발비가 더 소요되었는데 이런 문제를 도외시하고 삼척 덕산이 2순위로 지정된 이유에 대해 설득력이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며,

둘째,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은 최근의 원전후보지 개발 우선 순위 조사결과를 무조건 백지화하고 전국 자치단체중에서 원전 입지를 희망하는 유치지역 확보에 정부는 적극 나서야 할 것이며,

셋째, 정부당국과 한전이 동해안 지역에 원전건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지역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말살한다면 우리는 원전건설 저지를 위한 필사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혀 두고자 함.

또한 지리적 여건상 강원도는 지진의 발생에서 안전지대가 아님은 그동안 발생한 양양해상의 진도 4.2의 강진 등에서 증명되었으며, 9월 25일 동해항에서 출발예정인 금강산 유람선 취항과 관련하여 동해안 지역은 지역경제 도약의 전기를 맞고 있으나, 삼척지역은 원전건설 후보지로 선정되어 핵 공포로부터 탈출해야 한다는 절박한 현실앞에 강원도의회 의원 모두는 납득하기 어려운 원전건설 후보지 선정 배경에 다시한번 부당함을 제기하며 해제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3) 춘천권개발제한구역의제도개선촉구건의서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8월 14일 정연대의원외 10인
- 제안이유
 - 개발제한구역의 불합리한 지정과 운영,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은 반드시 개선 또는 폐지되어야 하며 그린벨트 지정의 경우 지정목적과는 달리 획일적으로 지정한 면적에 대한 재조정 없이, 단지 구역내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조치 등은 절대 무의미하다.
 - 그린벨트 구역내 주민의 실질적 요구사항을 집약하여 강원도민의 의사로 강력하게 정부에 전달하므로써 진정 주민을 위한 그린벨트의 합리적 조정방안을 이끌어 내는데 있음.



○ 주요골자

- 춘천권의 그린벨트는 전면해제되어야 함
- 만일 전면해제가 불가능할 경우 표고 200M이하에 대한 해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 가칭 「춘천권 지역 그린벨트 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함.

나) 심사 및 심의 경과

- 위원회 심사 : 1998년 8월 14일 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19일 제1차 회의에서 정연대의원의 제안설명과 임병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및 답변이 있었으나 이기순 의원의 원안가결 동의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
 - 춘천권 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개선 촉구건의안에 대한 집행부의견?
- 답변요지
 - 본건의안은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민원을 적극 해소하는 차원에서 아주 적절한 건이라고 사료됨.
- 본회의 심사 : 1998년 8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김길정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의 심사 보고후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건의안은 1998년 8월 20일 건설교통부에 건의되어 1998년 11월 25일 금년말 개선방안 확정계획 추진중으로 회시되었다.

第 3 節 第94回 臨時會

1. 概 況

가. 開 會

제94회 강원도의회임시회는 지난 9월 7일 이훈의원외 15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도의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자로 의장이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11일간의 회기로 1998년 9월 15일 개회하여 9월 25일 폐회하였다.

나. 議事日程

1) 本會議

가) 제1차 본회의 : 1998년 9월 15일(화)

- 제94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 강원도지사등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나) 제2차 본회의 : 1998년 9월 21일(월)

- 강원도정및교육행정질문

다) 제3차 본회의 : 1998년 9월 22일(화)

- 강원도정및교육행정질문

라) 제4차 본회의 : 1998년 9월 24일(목)



- 강원도정및교육행정질문

마) 제5차 본회의 : 1998년 9월 25일(금)

- 강원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 강원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 강원도명예도민증서수여동의안
- 강원도여성정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국립공원구역조정에관한건의안
- 영월댐건설의안전성문제검토촉구건의안
-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4분자유발언(서종을, 손석암, 신명선, 엄민현의원)

2) 議會運營委員會

가) 제1차회의 : 1998년 9월 15일(화)

-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 제94회강원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협의건의
- 강원도지사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의관한건
- 제95회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협의건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건의

나) 제2차회의 : 1998년 9월 21일(월)

-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에관한건

3) 內務委員會

가) 제1차회의 : 1998년 9월 16일(수)

- 의사일정결정의건
- 강원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 강원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 강원도명예도민증서수여동의안

4) 教育社會委員會

가) 제1차회의 : 1998년 9월 16일(수)

- 의사일정결정의건
- 강원도여성정책위원회조례증개정조례안

5) 産業委員會

가) 제1차회의 : 1998년 9월 16일(수)

- 의사일정결정의건
- 원주공항노선존치및폐쇄반대에관한건의안

6) 觀光建設委員會

가) 제1차회의 : 1998년 9월 16일(수)

- 의사일정결정의건
- 국립공원구역조정에관한건의안
- 영월댐건설의안전성문제검토촉구건의안

다. 議會活動

1) 本會議



가) 제94회강원도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 : 제1차 본회의

-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회기를 1998년 9월 15일부터 9월 25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였다.

나) 강원도지사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제1차 본회의

-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강원도의회 규칙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문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일자는 임시회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일정에 따라 9월 21일과 22일 및 24일의 3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며, 출석대상자는 강원도지사 및 교육감을 비롯하여 도청과 교육청의 실·국장이상 간부공무원 전원의 출석을 요구하였다.

다) 강원도정및교육행정질문 : 제2차, 제3차, 제4차 본회의

- 강원도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질문하였다.

라) 4분자유발언의건 : 제5차 본회의

- 서종을의원 : 금강산관광사업은 정서상으로 보아서 우리나라의 현재 처해 있는 경제여건과 주민들의 정서가 바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관광사업은 시기가 성숙될 때까지 백지화 해야된다. 정부에서는 통일방안과 연계하고 실행민을 위한 다른 구실이지만 동해안 지구에 침투한 무장공비와 잠수함으로 인해 피해주민에 대한 피해보상도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관광시간 소요 경비등 여건이 성숙된 뒤로 미루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면서 또한 기왕에 관광사업을 한다면 사업자인 통일그룹이나 현대그룹 관계자와 협의하여 북한으로 가는 관광객이 최소한 도내 지역에서 1박이라도 하고 갈 수 있도록 출항 시간대를 조정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하며 아무튼 금강산관광사업을 반대한다고 하였다.
- 손석암의원 :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의 갱도심부화 악화로 폐광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볼 때, 본광업소는 태백시전체 60%의 경제를 좌우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아무런 대책없이 폐광될 경우 태백시존폐 문제가 참담한 상황이 도래하게 될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 인근 함태탄광을 재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것으로 함태탄광은 전국 제일의 열량과 질을 자랑해왔던 광산이며, 장성광업소는 작업조건이 쾌적하며 재해를 감소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서 적은비용으로 충분히 통합개발할 수 있는 광구를 그냥

사장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매우 불행한 일이 될 것이므로 석탄산업법 제39조제6항 광업권의 출연제한의 법을 고쳐서 태백을 살리는데 정진에 혼신하고 힘을 다 해 주기를 바란다.

- **신명선의원** : 동해시 소방서장 김원웅이 건설업체와 주유소 등으로부터 25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의원면직 신청서를 냈으나 수사도 없고 구속도 안돼서 1억 8,620만원 퇴직금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는데 의원면직신청서 사본을 제출해 줄 것과 김원웅서장처럼 유사한 강원도임원 공무원에 대해 5년간 서류 제출을 해달라고 함.

화진포 호수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은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 하겠다는 안이한 답변에 대하여 반문하고, 해변가에는 정치어망을 넣어놓고 말리고 있는데 낚새가 많이 나고 관광객들이 걸려 넘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

- **엄민현의원** : 시멘트생산 5개업체를 주축으로하는 우리 강원도 경제는 건설경기 불황으로 상당히 위축되어 있고 시멘트 생산업체가 있는 지역경제형편은 폐광지역을 방불케하고는 실정이라면서 도내 주택건축물량도 약 2만호가 중단 또는 포기상태이고 각종 공사들의 취소등으로 시멘트생산라인의 40~50%를 감량생산하고 있어 도내 시멘트업체의 적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지역의 어려움과 근로자 개개인의 생계위기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도에서도 좀더 강한 의지를 갖고 눈에 보이는 활성화 대책을 세우고 즉시 실천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2) 委員會

가) 현지시찰 : 내무위원회

- 1998년 9월 16일 제1차회의에서 의사일정을 정한 후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삼척소방서, 태백소방서, 제2회강원감자큰잔치행사를 각각 시찰하였다.

나) 현지시찰 : 교육사회위원회

- 1998년 9월 16일 제1차회의에서 의사일정을 정한 후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정선교육청, 평창교육청, 도로확포장으로 인한 피해학교현지확인을 위한 시찰을 하였다.

다) 현지시찰 : 산업위원회



- 1998년 9월 16일 제1차회의에서 의사일정을 정한 후 9월 16일 오후부터 19일까지 4일간 소관업무파악을 위해 속초, 동충하초 가공공장 및 생산농가, 동해안 어업현장, 제2회 강원감자 큰잔치행사현장을 각각 시찰하였다.

라) 현지시찰 : 관광건설위원회

- 1998년 9월 16일 제1차회의에서 의사일정을 정한 후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화암~토산~물운간 도로 확포장사업장, 태백고원전자훈련장을 보고 지방도 424호선 문의터널사업장, 옥계 금진~정동진간 해안관광도로현장을 시찰하였다.

라. 議案處理狀況

1) 一般議案

- 이번회기중 상정대상 일반안건은 총 7건으로 도지사제출이 4건, 위원회제출이 2건, 의원발의 1건이었다. 처리결과를 보면 7건 모두 가결되었고 종류별 처리현황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종류별	상 정 대 상 안 건			의 안 처 리 내 역				
	합 계	전 회 기 이 월	금 회 기 접 수	가 결			폐 기 (철회)	계 류
				소 계	원 안	수 정		
계	7		7	7	6	1		
조 례 안	4		4	4	3	1		
예 산 안								
동 의 안	1		1	1	1			
건 의 안	2		2	2	2			

2. 議決案件

가. 條例案

1) 강원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9월 8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재난관리법령이 전면 개정되어 '98. 3.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된 재난관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기금의 재원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함(안 제2조)
 -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되 그 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기금은 도 금고에 예치·관리토록 함(안 제4조)
 - 기금의 용도는 영 제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범위내에서 사용토록 하고,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시·군에 지원하는 기금은 총 소요금액의 50%를 넘지 못하며 지원절차는 강원도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토록 함(안 제6조)
 - 기금은 융자할 수 없으며, 융자대상은 영 제54조제2항 규정을 따르고 융자한도는 총소요금액의 50%이하로 하되 2천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함(안 제7조)
 - 융자금의 이율은 영 제54조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연리8%, 영제54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5%로하며,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함(안 제8조)
 -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금융기관이 대행토록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관계법령과 융자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업중지, 목적달성불가능 등의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기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리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을 결산보고토록 함(안 제11조 및 12조)

나) 심사 및 심의결과

- 위원회심사 : 1998년 9월 10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6일 제1차회의에서 박수준 자치지원국장의 제안설명과 전정기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1998년 9월 25일 제5차 본회의에서 황영철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후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8년 9월 26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1998년 10월 15일 강원도조례 제 2656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강원도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3조(기금운용계획) ①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③ 도지사는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립목표액이나 기간등을 정하여 기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도지사는 기금을 재난관리법시행령(이하 “령”이라한다) 제54조 제1항 각 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② 영 제54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재난의 예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재난발생위험지역의 표지판 및 안전시설 설치
2.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 구축
3. 재난대비 교육·훈련 및 재난예방에 관한 홍보
4. 재난대비 물자·자재·장비의 구입 및 정비
5. 기타 도지사가 재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금지원한도 및 절차) ① 기금을 시·군에 지원하는 경우 지원금액은 총소요금액의 50%를 넘지 못한다. 다만 영 제54조제1항제5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영 제54조제1항제5호의 경우는 기금을 우선 지원하고 사후 정산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용자)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일부를 용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용자는 총소요금액의 50%이하로 하되, 용자한도액은 2천만원이하로 한다.

제8조(용자조건) ① 용자금의 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54조제2항제1호의 경우 : 연리 8%
2. 영 제54조제2항제2호의 경우 : 연리 5%

② 용자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한다.

제9조(용자업무의 대행) ① 도지사는 용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채권확보 및 안전성유지를 위하여 용자금의 집행과 관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금융기관이 대행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용자업무 대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용자금의 회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용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용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3. 용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를 받았을 때

제11조(회계공무원)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자치지원국장



2. 기금출납원 : 재난총괄담당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결산서를 보고받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도의회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강원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9월 8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종전의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던 국외여비규정과 국내여비규정이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합제정(98. 2. 24 시행)됨에 따라 이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강원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함.
- 주요골자
 - 여비의 종류, 지급구분, 계산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은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하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일괄준용하되 중앙부처에 국한되는 사항은 준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4조)
 - 종전의 조례에서 직급 규정하던 여비의 종류, 국내여비 정액, 이전비, 현장지도여비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조례에서 삭제함(종전규정 제2조, 제3조, 제5조 및 제6조)
 - 도지사의 경우 차관급에 적용하고 그 외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해당계급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8년 9월 10일 내부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6일 제1차회에서 박수준 자치지원국장의 제안설명과 전정기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1998년 9월 25일 제5차 본회의에서 황영철 내부위원장의 심사보고후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8년 9월 26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1998년 10월 15일자로 강원도조례 제2655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강원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이상일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도지사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포1 특호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포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도지사”로 본다.



2. 제17조제1항 단서중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4.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과 협의하여” 및 동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별표 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및지도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동호의 해당공무원란 4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중 1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강원도여성정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9월 8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3개분과위원회를 두어 도지사의 자문기능을 강화하고 종전의 미비된 일부규정을 보완 운영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조례의 제명 「강원도여성정책위원회조례」를 「강원도여성정책특별위원회 조례」로 변경함.
 - 위원회 위원수를 「20인이내」에서 「30인이내」로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를 「도지사」로, 당연직위원은 「2인」에서 「5인」으로 조정함(안 조례 제3조)
 - 위원회운영은 3개분과 위원회로 하고 위원수는 11인 이내로 구성함(안 조례제7조)
 - 「간사와서기」를 「간사」로하고 간사는 여성정책담당으로 함(안 조례 제10조)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함(안 조례 제12조)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8년 9월 10일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6일 제1차회의에서 한경숙여성정책실장의 제안설명과 서의승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통해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가결함.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

- 현행조례 제3조 제3항 중 교육사회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도의회와 집행부간의 자문역할에 있어서 의견개진기회가 없어 본 조례안과 상반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 답변요지

- 도지사 산하의 당연직으로 되어 있으면 불합리하다는데는 동의하지만 여성정책의견을 다 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여 원만하게 여성정책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참여와 역할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당연직으로 두게 되었음

[수정안의 요지]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9월 16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수정이유

- 도의회회의위상과 집행부와 의회의 역할이 구분되어야 하므로 이를 삭제함

- 수정주요골자

- 현행조례 제3조(구성) 제3항중 「당연직위원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을 「당연직 위원
은」으로 수정

- 본회의 심사 : 1998년 9월 25일 제5차 본회의에서 안상현 교육사회위원장의 심사보고후 질의및토론없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8년 9월 26일 수정안대로 가결된 후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1998년 10월 15일 강원도조례 제2654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여성정책특별위원회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수립과 여성정책에 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원도여성정책특별위원회(“위원회”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정책의 개발·연구에 관한 사항
2. 여성관련 의견·정보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3.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4. 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5. 여성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기타 여성정책관련 주요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의 여성정책실장, 환경복지국장, 농정산립국장, 산업진흥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여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년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여성복지분과위원

회, 여성경제분과위원회, 여성사회교육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각분과 위원회별 위원은 11인 이내로 하고,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의사결정은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⑥ 분과위원회별 의결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함으로써 확정된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위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기관·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여성정책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 관리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게는 강원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가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9월 15일 의회 운영위원장
- 제안이유 : 강원도의 행정기구가 축소 개편됨에 따라 일부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직무소관



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상임위원회 명칭 중 「산업위원회」를 「산업경제위원회」로 함 (안 제2조)
- 상임위원회의 직무소관중 내무위원회의 「내무국」을 「자치지원국으로」로 「감사실」을 「감사관실」로 하고 「민방위재난관리국」을 삭제함(안 제3조 제2항 제2호)
- 교육사회위원회의 「환경보건국」을 「환경복지국」으로 하고 「여성정책실」을 추가하며 「복지여성국」을 삭제함(안 제3조제2항제3호)
- 산업경제위원회의 「국제교류협력실」을 「국제협력실」로 「산업통상국」을 「산업진흥국」으로 「농촌진흥원」을 「농업기술원」으로 「동해출장소」를 「해양수산출장소」로 함(안 제3조제2항제4호)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8년 9월 15일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실에서 박종기전문위원의 제안설명 후 9월 21일 제2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1998년 9월 25일 제5차 본회의에서 김원기 운영위원장대리의 심사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8년 9월 26일자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1998년 10월 15일 강원도조례 제 2657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산업위원회”를 “산업경제위원회”로 한다.

제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운영과 관련되 각종 조례, 규칙, 규정에 관한 사항

2. 내무위원회

가. 기획관리실, 자치지원국, 소방본부, 공보관실,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단,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

나. 기타 타 실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교육사회위원회

가. 환경복지국, 여성정책실, 보건환경연구원, 도립강원전문대학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교육청 소관으로서 교육위원회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 산업경제위원회

농정산림국, 산업진흥국, 국제협력실, 농업기술원, 해양수산출장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5. 관광건설위원회

관광문화국, 건설도시국, 국제대회지원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同議案

1) 강원도 명예도민증서수여동의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9월 14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제안배경 및 목적 : 미국의 윌리엄 H. 존슨씨는 1964년부터 1966년까지 우리도의 농촌개발고문관으로 재직하시면서 낙후된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물질, 기술적 지원사업에



많은 공을 세웠으며 한·미 친선교류 미 사업지원을 통해 농촌지역발전과 친선 방문하게 됨에 따라 재임시 우리도 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되새기면서

- 관계근거 : 강원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1969. 3. 15 조례 제469호)
- 추 천 : 박경원 전 강원도지사

○ 주요골자

- 미국민 윌리엄 H. 존슨씨에게 강원도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함.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8년 9월 15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6일 제1차 회의에서 박수준 자치지원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정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1998년 9월 25일 제5차 본회의에서 황영철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동의안은 1998년 9월 26일 원안의결되어 강원도지사에게 송부되었다.

다. 建議案

1) 국립공원구역조정에관한건의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9월 16일 관광건설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지방자치시대의 발전과 더불어 남·북 분단의 50년에 변화의 새 바람이 불고 있고 새로운 관광교류의 교두보가 강원도에 구축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의 금강산 관광과 환동해권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에도 기존의 국립공원구역이 무리하게 지정되어 고수되므로써 아직까지 사유재산권의 침해와 주민생활의 불편은 물론이고 지역개발에도 발목을 잡고 있어 사유지를 포함하여 부적절하게 국립공원구역으로 편입된 면적은 반드시 제척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하여 국립공원구역의 제조정을 요구하는 제안을 하는

것임.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8년 9월 16일 관광건설위원회 이상명의원 제안설명후 질의 및 답변이 있었으나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1998년 9월 25일 제5차본회의에서 김길정관광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건의안은 1998년 9월 25일 환경부에 건의되어, 1998년 11월 12일 한국지방연구원으로 하여금 검토토록 조치하였다고 회신되었다.

[의결전문]

국립공원구역조정에관한건의안

한 시대에 분수령에서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려는 즈음, 남·북 분단 50년의 역사에 변화의 새 바람이 불어 금강산에 이르는 항로가 열리고 새로운 관광교류의 서막을 알리는, 신 동해안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가 지난 '94년부터 동해와 접하고 있는 일본, 중국, 러시아와 더불어 환동해권의 상호교역과 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왔고, 현재 동해항과 속초항이 금강산 유람선 기착항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향후, 나진·선봉지구의 교역항로 개설전망, 양양국제공항 및 동서고속도로 건설추진에 따라 우리도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관광자원의 적절한 활용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도가 보유하고 있는 설악산을 위시한 오대산, 치악산은 '70년 이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천혜자원의 보고로 간직되어 왔으며 강원 미래요, 희망이며 가치가 존중되는 무한한 자산인 것입니다.

현재의 국립공원구역은 지정 당시 정확한 실태와 면밀한 타당성 조사 없이 공원경제지역의 집단취락과 농경지 등 보존가치가 없는 지역을 공원지역에 편입한 경우가 있으며, 지역주민의 개발기대심리에 따라 공원으로 지정된 경우 등 불합리한 공원구역 설정으로 인하여, 사유재산권 침해, 주민



생활 불편 등으로 20여년간 많은 민원과 논란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차에 지난해부터 정부에서 전국 일원에 걸친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공원구역조정을 열망하고 있던 주민들은 큰 기대와 관심을 갖고 추진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군 자체조사를 통하여 공원구역이 불합리하다고 제기된 곳은 11개소 24.896km²로서 설악산국립공원은 노학동, 도문, 설악, 백담, 관터지구등 7개소 19.538km²이며, 오대산국립공원은 간평·도암지구 1개소 1.158km²이고 치악산국립공원은 성남, 금대, 학교지구 등 3개소 4.2km²로 이들 지역은 공원에서 마땅히 제척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공원구역이 조정되어야 할 사유와 당위성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원으로 보존되어야 할 부분과 제척해야 할 부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므로써 주민이 공감하고 공원시책을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타당성 조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둘째, 공원으로서는 자원성이 극히 빈약한 지역, 예를 들면 공원경제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이미 시가화되어 일반도시지역과 구별되지 않는 지역을 계속 공원으로 존치하는 경우 그 실익이 없을뿐 아니라 오히려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증폭되고 있으며, 셋째, 공원내에서 대를 이어 살아온 주민들에게는 그 지역이 생활의 터전이므로 공원관리에 특별한 장애가 없는 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거여건이 조성되어야 하고 공원내 사유지에 대하여 국유화 대책이 없는 한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구역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위와같이 제반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부적절한 공원구역을 조성하므로써, 지역특성을 도외시한 획일적인 공원관리의 문제점이 해소되기를 갈망하면서 강원도민을 대표하여 강원도의원 모두의 뜻을 모아 건의합니다.

2) 영월댐건설의안정성문제검토촉구건의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9월 10일 엄민현의원외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정부에서 물관리를 위해 1960년대부터 다목적댐 개발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10여개의 다목적 댐이 있으나 2006년 이후의 물 부족현상이 발생할 것이라 하여 다시 남한강의 홍수피해 경감과 용수공급을 위해 영월댐을 건설하려 하고 있어 국내외 각계전문가와 지질전문

회사의 자문을 받아 철저하고 면밀한 조사결과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될 때 댐건설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촉구와 함께 정부의 입장을 밝혀줄 것을 건의하려는 것임.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8년 9월 11일 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6일 제1차회의에서 엄민현 의원의 제안설명과 임병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및 답변이 있었으나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

- 본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 답변요지

- 영월댐건설의안전성문제검토촉구에관한건의안은 비등하는 댐안전성에 대한 우려불식과 함께 댐건설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촉구하는 지역주민의 민원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차원에서 시기적절한 건의라고 사료됨. 또한 향후 진행되는 댐안전성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조사 및 보완결과를 예의주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임.

- 본회의 심사 : 1998년 9월 25일 제5차 본회의에서 김길정관광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건의안은 1998년 9월 25일자로 건설교통부에 건의되어 1998년 11월 19일로 문제점을 신중히 검토추진하겠다고 회시되었다.

[의결전문]

영월댐건설의안전성문제검토촉구건의문

물은 생명의 근원이며, 생존에 필요 불가결한 기본요소로서, 우리의 핵심자원입니다. 사람이 쓰



는 물은 모두 2백 99억톤, 이를 취수율별로 보면, 지하수 22억톤, 댐 1백4억톤, 하천수 1백 73억톤으로 주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에 쓰이며, 1일1인당 급수량은 강원도의 3백 47ℓ보다 서울 4백69ℓ, 인천 4백72ℓ로 수도권이 훨씬 많습니다.

이러한 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1960년대부터 다목적댐개발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수도권의 젖줄인 한강수계의 댐은 모두 10여개로 그중 팔당댐, 청평댐은 경기도에 충주댐, 괴산댐은 충청도에 있고 나머지 6개의 댐은 강원도에 있으나, 계속되는 도시화로 인하여 2006년 이후에는 물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 하여 남한강의 홍수피해 경감과 용수공급을 위해 영월댐을 건설하려는 정부의 계획을 이해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조사·발표한 댐 안정성 검토 및 주변환경 영향평가서는 지역주민들이 보기에 매우 부실하게 조사되어 있어 최근 35개 시민환경단체가 건설·설계전문가와 사회·생태학자들의 조사를 토대로 작성한 의견서에 안정성문제를 들어 건설교통부에 영월댐 건설철회를 요청하기에 이르렀었던 것입니다.

댐이 들어설 영월일대는 석회암 지역으로 인근지역에는 고씨동굴, 백력동굴 등 귀중한 우리의 문화재가 유난히 많이 있어, 만약 댐이 건설되면 지반이 침하될 우려 뿐만 아니라, 이들이 모두 수몰되어 결국 환경파괴를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석탄광산지대로서 댐의 안전성에 미칠 영향과 지난 '96년도에 20여km거리에 있는 함백산 부근에서 발생한 몇 차례의 지진도 불안요인으로서 영월댐이 1957년부터 검토되어 왔으나, 30여년간 시행되지 못한 것도 이와 같은 안전성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외국에서도 1926년 취약한 지반위에 세워졌던 미국 “샌프란시스코댐”이 무너져 420명의 희생자를 낸 사건이나, 1963년 석회암 지층에 건설한 이탈리아 “바이온댐”의 붕괴로 2,600여명이 순식간에 수장된 참사를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댐의 안정성입니다.

아무리 용수 확보와 홍수조절의 타당성과 당위성이 있다고 하지만,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영월댐 건설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댐하류의 수많은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댐 공사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수자원공사의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수물예정지역 내에 동굴이 6개 있으며, 백룡동굴 외에도 모두 30M이내의 소규모 동굴」이라고 밝힌 것과는 달리, 이 지역에는 총 길이가 6백 50M의 연포동굴을 비롯 최대 수직굴인 능암덕산동굴(3백80M), 수달동굴(3백M) 등 50여개의 동굴이 있다는 사실에 동굴환경학회와 동굴전문 사진작가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 8월 한국지형학회 하계학술대회에 참가했던 교수들도 영월댐건설 주변지역에 절리(암석이 갈리진 틈)와 단층선이 많아 건설시 수압으로 인한 누수량 증가로 상당한 위험이 있는데다 댐건설 주변일대에 단층선과 60여개의 용천의 존재로 댐의 담수된 물 때문에 용식작용의 속도를 매우 빠르게 할 우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행히도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안전성 및 환경파괴 우려 불식과 환경영향평가 보안을 위해 2001년 7월까지 3년에 걸쳐 수몰지역 동굴 세부조사, 댐 지점 및 누수예상구간에 대한 심층부 수리지질 조사, 수몰지역에 걸쳐 대규모 추가조사를 실시한다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영월댐 건설은 국·내외의 각계전문가와 지질전문회사의 자문을 받아 철저하고 면밀한 조사결과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될 때 댐건설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지역정서와 댐하류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추가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대규모 댐을 건설할 경우에는 결국 국가에 커다란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다시 한번 댐건설 안정성 문제 검토촉구와 함께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第 4 節 第95回 臨時會

1. 概 況

가. 開 會

제95회 강원도의회임시회는 1998년 9월 15일 제94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1차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0월 7일 김원기의원외 15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 회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15일간의 회기로 1998년 10월 15일 개회하여 10월 29일 폐회되었다.

나. 議事日程

1) 本會議

가) 제1차 본회의 : 1998년 10월 15일(목)

- 제95회강원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건의
-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기간결정의건
- 4분자유발언(김원기의원)의건

나) 제2차 본회의 : 1998년 10월 29일(목)

- 1997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1997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21세기강원도정기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
- 강원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 강원도공공도서관및강원평생교육정보관이용조례안
- 강원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고정수렵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안) 재검토촉구건의안
-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 4분자유발언(성희직, 황영철, 정연대의원)의건

2) 議會運營委員會

가) 제1차회의 : 1998년 10월 15일(목)

- 의사일정결정의건
- 제95회강원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건의
-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기간결정의건

나) 제2차회의 : 1998년 10월 22일(목)

-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
-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건의
- 제96회강원도의회(정기회) 회기협의의건
- 1998년도정기회도정질문운영에관한건
- 강원도의회포상규정중개정규정안
- 1997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의사일정변경건의

3) 內務委員會



가) 제1차 회의 : 1998년 10월 16일(금)

- 의사일정결정의건

나) 제2차회의 : 1998년 10월 19일(월)

- 1997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감사관실)

다) 제3차회의 : 1998년 10월 20일(화)

- 1997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기획관리실)
-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초안작성의건
- 의사일정변경의건

라) 제4차회의 : 1998년 10월 21일(수)

- 1997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소방본부)

마) 제5차회의 : 1998년 10월 22일(목)

- 1997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공보관실)

바) 제6차회의 : 1998년 10월 23일(금)

- 1997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자치지원국)
- 1999년도강원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1세기도정기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사) 제7차회의 : 1998년 10월 24일(토)

- 1997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공무원교육원)
- 1998년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

4) 敎育社會委員會

가) 제1차회의 : 1998년 10월 16일(금)

- 의사일정결정의건

나) 제2차회의 : 1998년 10월 19일(월)

-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초안작성의건

다) 제3차회의 : 1998년 10월 20일(화)

- 1997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환경복지국)

라) 제4차회의 : 1998년 10월 21일(수)

- 1997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보건환경연구원)

마) 제5차회의 : 1998년 10월 22일(목)

-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

바) 제6차회의 : 1998년 10월 23일(금)

- 1997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강원도교육청)
- 의사일정변경의건

사) 제7차회의 : 1998년 10월 24일(토)

- 강원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
- 강원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 강원도공공도서관및강원평생교육정보관이용조례안
- 강원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5) 産業經濟委員會

가) 제1차회의 : 1998년 10월 16일(금)



- 의사일정결정의건

나) 제2차회의 : 1998년 10월 19일(월)

- 1997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국제협력실)
-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초안작성의건

다) 제3차회의 : 1998년 10월 20일(화)

- 1997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산업진흥국)

라) 제4차회의 : 1998년 10월 21일(수)

- 1997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강원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고정수렵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마) 제5차회의 : 1998년 10월 22일(목)

- 1997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바) 제6차회의 : 1998년 10월 23일(금)

- 1997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해양수산출장소)

사) 제7차회의 : 1998년 10월 24일(토)

-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
- 강원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아) 제8차회의 : 1998년 10월 28일(수)

- 의사일정변경의건
- 강원도고정수렵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반안동의건

7) 豫算決算特別委員會

가) 제1차회의 : 1998년 10월 26일(월)

-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1997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나) 제2차회의 : 1998년 10월 27일(화)

- 1997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국제대회지원단, 관광문화국)

다) 제3차회의 : 1998년 10월 28일(수)

- 의사일정변경의건
- 1997년도강원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댐건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안) 재검토촉구건의안

다. 議會活動

1) 本會議

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 제1차본회의

- 예산결산특별회위원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제1항및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과 제9조제3항등의 규정에 의거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나)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기간결정 : 제1차본회의

-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기간을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 협의한 대로 1998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 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였다.

다) 4분자유발언 : 제1차본회의

- 김원기의원 : 중국 길림성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강원도가 13억인구의 거대한 시장, 지



구상에서 마지막 남은 시장이라고 불리우는 중구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지금 한창 활성화 되고 있는 주 길림성 강원도 경제무역사무소를 매년 임차료를 지불하는 방식을 탈피하여 민간자본을 유치, 길림성에 강원도무역관을 신축하여 강원도상품전시관 확대로 강원상품의 수출을 촉진시키고 부동산임대수입으로 해외경영수익사업을 도모해야 한다면서 길림성 강원도 무역관 신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합니다.

2) 委員會

가) 현지사찰 : 운영위원회

- 1998년 10월 22일부터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5개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97년도 강원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심의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상의하였다.

나) 현지사찰 : 관광건설위원회

- 1998년 10월 16일 제1차회의에서 의사일정을 결정한 후 소관업무과약을 위해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98경주세계문화엑스포현장을 시찰하였다.

라. 議案處理狀況

1) 一般議案

- 이번회기중 상정대상 일반안건은 총 12건으로써 제안자별로는 도지사제출이 5건, 위원회제출이 1건, 도교육감제출이 6건이 처리되었으며 종류별 처리현황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종류별	상 정 대 상 안 건			의 안 처 리 내 역				
	합 계	전 회 기 이 월	금 회 기 접 수	가 결			폐 기 (철 회)	계 류
				소 계	원 안	수 정		
계	12		12	12	10	2		
조 례 안	8		8	8	6	2		
예 산 안	2		2	2	2			
동 의 안	1		1	1	1			
건 의 안	1		1	1	1			

2. 議決案件

가. 條例案

1) 21세기강원도정기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10월 22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강원도발전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21세기강원도정기획위원회를 구성·운영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연구단의 구성(안 제12조)
 -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단」을 기획평가단 및 분과위원회별로 둘 수 있게 하고
 -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도록 함.
 - 연석회의 신설(안 제13조)
 - 도지사는 위원회위원, 연구단위원이 모두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함
 - 도지사가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4조)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8년 10월 22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3일 제6차회의에서 권혁인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정기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들은 뒤 수정안대로 가결되었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
 - 지난 8월 제93회임시회시 제정된 조례를 불과 2개월여 만에 개정하는 이유는?
- 답변요지



- 21세기 도정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려고 한 바 연구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번에 다시 개정코져 하려는 것임.

[수정안의 요지]

- 수정이유 : 21세기 도정기획위원회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연구단의 역할이 불분명하고 설치근거에 재량권을 두고 있어 이를 의무규정으로 수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여 본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 수정주요골자
 - 안 제12조(연구단 구성) 중 ①항의 「연구단을 설치하여 자문에 응하도록 할 수 있다」를 「연구단을 설치한다」로 안 제13조(연석회의)는 삭제함
 - 본회의 심사 : 1998년 10월 29일 제2차본회의에서 조규병내무위원회 간사의 심사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없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다.

3)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8년 10월 29일 수정안대로 가결된 후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1998년 11월 14일 강원도조례 제2660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21세기강원도정기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1세기강원도정기획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3조중 「위원 및 관계전문가」를 「위원·연구위원 및 관계전문가」로 하여 제15조로 하며, 제14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2조 내지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연구단 구성) ① 평가기획단 및 각 분과위원회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각각 15인이 내의 연구단을 설치한다.

- ② 연구단의 연구위원은 학계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 ③ 연구단의 소관사항에 대한 연구·심의결과를 위원회 또는 평가기획단 및 분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연구단의 연구위원은 위원회의, 평가기획단 및 각 분과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3조(도지사의 출석) 도지사는 이 조례에 의한 각종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강원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

가) 조례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10월 23일 강원도교육감
- 제안이유 : 자율과 자치에 상응하는 책무성을 확보하여 국가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교육행정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며 「저비용 고효율」의 경쟁력있는 지방교육행정 조직으로 개편하고 행정조직운용의 효율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를 운영함으로써 파생되는 비효율적인 측면을 제거하고자 본청과 직속기관의 조례를 통합·운영·관리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교육청본청과 직속기관의 조직관련 조례통합
 - 국장, 과장, 담당관, 보조기관의 직급, 과·담당관의 설치, 지역교육청 하부조직의 설치 등을 규칙으로 정함(안 제2조 내지 제4조)
 - 본청의 초등교육국과 중등교육국을 통합, 교육국으로 하고 기획·공보등 기능일부를 추가하여 관리국을 기획관리국으로 명칭변경(안 제5조, 제6조)
 -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 제2절 강원도교원연수원, 제3절 사임당교육원, 제4절 강원학생교육원, 제5절 강원도교직원수련원, 제6절 이승복 기념관, 제7절 강원평생교육정보관, 제8절 강원도공공도서관, 제9절 강원도학생복지관, 제10절 강원학생



- 통일교육수련장, 제11절 강원도실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등 기구설치에 관한 사항.
- 강원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등 13개조례폐지(안 부칙 제2조)
 - 강원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등 15개 조례중 명칭변경에 대한 용어 정비(안 부칙 제3조)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8년 10월 23일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4일 제7차회의에서 김 호준 도교육청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서의승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1998년 10월 29일 제2차본회의에서 안상현교육사회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8년 10월 29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1998년 11월 17일 강원도조례 제 2662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내지 제43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교육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과장·담당관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강원도교육청 본청과 지역교육청에 두는 국장·과장 및 담당관의 직급과,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과·담당관의 설치 등) 본청의 과·담당관 및 직속기관의 부(실)·과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지역교육청 하부조직의 설치 등) 지역교육청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장 본 청

제5조(국의 설치)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육국 및 기획관리국을 둔다.

제6조(교육국) 교육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
2. 교원의 복무 및 인사관리
3. 교육정보화 및 과학·실업교육의 육성
4. 평생교육의 진흥과 학교체육, 학교보건 및 급식에 관한 사항

제7조(기획관리국) 기획관리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 인사(교원제외), 공보, 비상대비 업무
2. 교육행정의 기획과 정책 개발 및 집행
3. 교육재정에 관한 사항
4. 교육시설 계획과 집행 및 감독

제 3 장 직 속 기 관

제1절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

제8조(설치) ①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교원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며, 과학교육진흥의 내실을 기하며 지방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연구원은 강원도 춘천시 옥천동 24번지에 둔다.

제9조(원장) 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



을 지휘·감독한다.

제10조(업무) 연구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육과정 연구에 관한 사항
2. 과학기술 교육에 관한 사항
3.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
4. 교육·과학 정보화에 관한 사항
5. 교육자료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6. 교직원 연수에 관한 사항

제2절 강원도교원연수원

제11조(설치) ①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원 및 교육전문직의 자질을 함양하고, 직무수행 능력을 배양하며, 투철한 교직관을 확립하여 교육선진화를 기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원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연수원은 강릉시 초당동 57-18번지에 둔다.

제12조(원장) 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업무) 연수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연수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의 편성 및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연수원 운영 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4. 연수생의 등록·면제에 관한 사항
5. 연수생의 학적관리 및 성적관리에 관한 사항

제3절 사임당교육원

제14조(설치) ①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임당의 얼과 덕성을 이어 받아 한국의 여성상을 정립하고, 애국애족에 투철한 민족증흥의 역군을 양성하기 위하여 사임당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교육원은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48-146번지에 둔다.

제15조(원장) 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6조(업무) 교육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여학생, 여교원 및 여성지도자의 교육훈련
2. 사임당의 얼과 덕성에 관한 연구 및 보급

제4절 강원학생교육원

제17조(설치) ①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현의 애국정신을 계승하고, 심신단련을 통한 인격도야로 호국의 얼을 다지며, 선진조국의 주역이 될 자주적, 창의적 도덕적인 한국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강원학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교육원은 강원도 춘천시 남면 가정리 833-1번지에 둔다.

제18조(원장) 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9조(업무) 교육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 심신단련을 위한 집단 수련
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 교육수련

제5절 강원도교직원수련원

제20조(설치) ①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원의 자질향상과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강원도교직원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수련원은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1187-1번지에 둔다.

제21조(원장) 수련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2조(업무) 수련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직원의 복지증진과 심신수련을 위한 휴식공간 제공
2. 각종 여가선용 및 심신수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및 회의장소 제공
4. 교직원 자생서를 수련활동 지원
5. 기타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절 이승복기념관

제23조(설치) ①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승복 소년의 유적을 단지화하여 청소년의 산 반공 교육장으로 삼고 장차 후손들에게 분단민족사를 입증하는 역사적 유물로 남기고자 이승복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념관은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327번지에 둔다.

제24조(관장) 기념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5조(업무) 기념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기념관(계방분교장, 전시관, 묘소, 살던 집 모형)관리
2. 자료 발굴 및 보존
3. 자료 전시 및 홍보
4. 이승복 장학사업 운영

제7절 강원평생교육정보관

제26조(설치) ①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들을 위한 문화활동과 학술, 예능 등 각종 교육 행사 실시 및 교육에 관한 역사적 자료를 수집·보존·전시·조사연구하는 기능과 시설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각종 사회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강원평생교육정보관(이하 “정보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정보관은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3가 26-1번지에 둔다

제27조(관장) 정보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8조(업무) 정보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각종 도서·자료의 수집·정리 및 주민에의 제공

2. 독서의 진흥 및 지도
3. 각종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진흥
4. 교육자료실 및 공연장 운영
5. 정보화 및 평생교육관련 각종 프로그램 개발·연구
6. 기타 지역사회문화센터의 역할

제8절 강원도공공도서관

제29조(설치) ①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의 도서·자료 및 문헌을 수집하여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평생교육을 위한 지역사회 정보·문화·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도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도서관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0조(관장) 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1조(업무) 도서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각종 도서·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주민에의 제공
2.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실시
3.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기타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4. 다른 도서관의 도서·자료 교류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6. 기타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9절 강원도학생복지관

제32조(설치) ①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연수,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숙박시설을 제공하며 재정의 절약과 학생과 교직원의 복지증진을 기하기 위하여 강원도학생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복지관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102-80번지에 둔다.

제33조(관장) 복지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



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4조(업무) 복지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이용자에 대한 숙박시설 제공 및 지원
2. 이용자에 대한 급식제공
3. 복지관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0절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장

제35조(설치) ①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조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학생들에게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분단된 조국의 실상을 현장학습을 통해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서 국가통일·안보의식을 일깨워 주고, 평화통일에 대한 염원 및 의지를 새롭게 하며, 다양한 수련활동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 인식과 협동심, 극기심 및 공동체 의식 등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장(이하 “수련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수련장은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양지리 451번지에 둔다.

제36조(장장) 수련장에 장장을 두고 장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7조(업무) 수련장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수련활동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 편성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3. 수련과정 홍보에 관한 사항
4. 수련학생 안내 및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5. 수련활동 교재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절 강원도실업계 고등학교공동실습소

제38조(설치) ①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계고등학교 학생 및 실과교육을 대상으로 최신 첨단기자재의 조작실습과 선진기계영농기술 보급으로 산업현장에서의 적응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강원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이하 “실습소”라 한다)를 둔다.

② 실습소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39조(소장) 실습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0조(업무) 실습소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최신 첨단 자동화기계의 조작실습을 통한 상업사회의 적응력 향상 교육
2. 실업계고등학교 실과교원의 정보처리 및 첨단 자동화기계의 조작실습을 통한 교수학습 능력의 신장.
3.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 및 교육활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강원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조례 제2110호, 1990. 6. 23)
2. 강원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조례 제2112호, 1990. 6. 23)
3. 강원도교원연수원설치조례(조례 제1991호, 1989. 1. 27)
4. 사임당교육원설치조례(조례 제1041호, 1977. 7. 29)
5. 강원학생교육원설치조례(조례 제2056호, 1989. 8. 11)
6. 강원도교직원수련원설치조례(조례 제2590호, 1997. 9. 25)
7. 이승복기념관설치조례(조례 제1452호, 1982. 7. 5)
8. 강원평생교육정보관설치조례(조례 제2642호, 1998. 8. 8)
9. 강원도공공도서관설치조례(조례 제2643호, 1998. 8. 8)
10. 강원도학생복지관설치조례(조례 제2214호, 1991. 3. 25)
11.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장설치조례(조례 제2407호, 1994. 9. 17)
12. 강원도학생야영장설치조례(조례 제1168호, 1979. 9. 1)
13. 강원도실업계고등학교공공실습소설치조례(조례 제2294호, 1992. 4. 27)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총무처”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13조제2항중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를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



결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14조중 “행정관리계장”을 “교육위원회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② 강원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4호중 “단설중학교”를 “중학교”로 한다.

③ 이승복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중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를 “가부동수인 E0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동조제6항중 “서무”를 “총무”로 한다.

④ 강원도중·고등학교장학생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교육법 제158조”를 “교육기본법 제28조”로 한다.

⑤ 강원도중학교입학배정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교육법시행령 제71조”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1조”로 한다.

⑥ 강원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중 “실과주임”을 각각 “실과부장”으로, “서무직원”을 각각 “교육행정실장”으로, “서무”를 “교육행정실장”으로 한다.

⑦ 강원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중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를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6조제2항중 “사회교육체육과 사회교육계장”을 “평생교육체육과 평생교육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⑧ 강원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한다.

⑨ 강원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⑩ 강원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강원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10월 23일 강원도교육감
-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법 정원운영관리방법이 총정원제로 변경되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 공포되면서 현정원 총 4,102인중 344인을 감축하고 총정원 3,758인으로 정원을 관리·단위기관별로 조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강원도교육감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총 3,758인의 정원을 교육위원회 의사국 16인,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및 각급학교에 3,742인을 두도록 함(안 제2조)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8년 10월 23일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4일 제7차회의에서 김호준 도교육청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서의승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1998년 10월 29일 제2차본회의에서 안상현교육사회위원장의 심사 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8년 10월 29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1998년 11월 17일 강원도조례 제 2663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2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강원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758인이며 그 내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위원회 의사국에 두는 정원 : 16인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각급학교에 두는 정원 : 3,742인

제3조(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2조 각호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4) 강원도공공도서관및강원평생교육정보관이용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10월 23일 강원도교육감
- 제안이유 : 강원도공공도서관 및 강원평생교육정보관 이용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강원도공공도서관 및 강원평생교육정보관이용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자료의 열람과 사료의 관람시간을 정함(안 제2조)
 - 관외로 대출할 수 있는 자료와 1회에 대출할 수 있는 도서의 수, 기간을 정함(안 제3조)
 - 정보관시설 및 설비사용허가와 도서관, 정보관 이용수수료 및 휴관일을 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고의과실로 훼손, 분실사항, 원상복구와 변상을 정함(안 제6조)
 - 대출금지사항과 불미스러운 행위자 퇴관사항을 정함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8년 10월 23일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4일 제7차회의에서 김

호준 도교육청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서의승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토론이 있었으나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질의 및 토론요지]

- 질의요지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와 같이 안 제7조 입관 및 대출금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

- 답변요지

· 규칙으로 정하면 되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대로 규칙에 반영하겠음.

- 본회의 심사 : 1998년 10월 29일 제2차본회의에서 안상현 교육사회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8년 10월 29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1998년 11월 17일 강원도조례 제 2664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공공도서관및강원평생교육정보관이용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공공도서관과 강원평생교육정보관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시간) ① 자료의 열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1.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가. 자료실 : 09:00 ~ 19:00
 - 나. 열람실 : 07:00 ~ 22:00
2. 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 가. 자료실 : 09:00 ~ 18:00
 - 나. 열람실 : 08:00 ~ 22:00



② 강원평생교육정보관의 교육사료에 대한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1.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09:30 ~ 17:00

2. 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 09:30 ~ 16:00

③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3조(관외대출 제한) ① 관외로 대출할 수 없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귀중도서·자료 및 고전

2. 정기간행물 및 신문

3. 비도서 자료

4. 도서관내에서 열람률이 많은 도서

5. 기타 관장이 관외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② 이용자가 일시에 관외대출을 청구할 수 있는 도서의 권수는 3권 이내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도서의 관외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하되, 1회 3일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 및 수수료) ① 강원평생교육정보관장은 교육목적에 한하여 정보관의 시설 및 설비를 운영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자료를 복사 또는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휴관) ①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월요일

2. 일요일은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다만,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의 제3호, 제4호 및 제9호를 제외한 다른 공휴일이 일요일과 중복될 때에는 개관한다.

② 기타 필요한 사유로 임시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휴관 7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자 책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료나 물품 및 시설을 훼손하거나 분실하므로써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제7조(입관 및 대출금지) 자료의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자료의 반환을 태만히 하는 경우에는 자료대출을 금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자료의 복사·인쇄 수수료

용지규격(단위 : mm)	1매당 복사료	1매당 인쇄료
A3(420×297)	50원	60원
B4(364×257)		
A4(210×297)	40원	
B5(182×257)		

5) 강원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10월 23일 강원도교육감
-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법 정원운영관리방법이 변경되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재정·공포되면서 교육위원회 의사국에 두는 현정원 18인을 16인으로 하고 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의사과장의 직급을 단순직인 지방서기관으로 정함(안 제3조제3항)
 - 의사과장의 분장사무를 정함(안 제3조제4항)
 - 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정원을 18인에서 16인으로 함(안 제4조)
 - 교육감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강원도교육위원회 의사국 사무분당 규칙을 폐지함(안 부칙제2조)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8년 10월 23일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4일 제7차회의에서 김호준 도교육청 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서의승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뒤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안 제5조의 직원의 파견요청에 대한 설명 바람

- 답변요지

- 교육감이 통상적인 업무의 파견은 어렵고 교육관련 선거 등 특정한 사안의 업무에 필요할 때 파견을 위하여 명문화시키고자 하는 것임.
- 본회의 심사 : 1998년 10월 29일 제2차본회의에서 안상현교육사회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8년 10월 29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1998년 11월 17일 강원도조례 제 2665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22조의”를 “제22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로 한다.

제3조 제3항중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을 삭제한다.

제3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3. 교육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보관관리
4. 교육위원회 등록에 관한 사항
5. 교육위원회 의전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교육위원회사 편찬 및 각종 간행물 발간
7. 교육위원회 운영 관련법규 제정 등에 관한 사항
8. 교육위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9. 사무직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10. 청사시설관리 및 물품수급관리
11. 문서, 보안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12. 본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조정
13. 본회의 및 소위원회에 의사진행
14. 각종 회의록 작성, 발간, 보관 및 열람
15.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보존
16. 청원, 진정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7. 경비, 방청 및 회의장 질서 유지
18.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연구 등에 관한 사항
19.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사무관리에 관한 사항
20. 세입세출 관련사무에 관한 사항
21.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22. 자료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3.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24. 교육청 업무보고 및 질문에 관한 조정
25. 회의록 녹음 및 속기에 관한 사항
26. 본회의 및 각종 위원회 연설문 작성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사무직원의 정수)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국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16명으로 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 강원도교육감 소속지방공무원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직원의 파견요청) 의장은 교육위원회 사무처리의 지원을 위하여 강원도교육감에게 그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강원도교육위원회의사국사무분장규칙(96. 3. 2 규칙 제7호)은 이를 폐지한다.

6) 강원도고정수렵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10월 10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고정수렵장 시설사용료의 계절별자등징수제도를 도입하는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조례 제명과 수렵장 명칭을 「강원도립춘천수렵장」으로 변경함(안 제2조)
 - 시설사용료를 계절 및 이용수요에 따라 차등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10부제 운행참여차량에 대하여 주차료를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제2항 및 관련 별표2)
 - 멧토끼의 포획료를 종전 마리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조정함(안 제4조제3항 및 관련 별표3)
 - 수렵조수의 포획승인 및 취소권한을 강원도유립경영사업소장이 행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제9조)
 - 특별회계의 명칭을 수렵장 명칭과 일치하도록 변경함(안 제18조)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8년 10월 13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1일 제4차회의에서 이만용농정산림국장의 제안설명과 이수길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나 10월 28일 제8차 회의에서 강원도의회의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이무순위원외 1인의 발의로 강원도고정수렵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번안동의의견이 상정되어 질의 및 답변없이 수정하여 가결되었다.

[수정안의 요지]

- 수정이유
 - 조문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자구수정
- 수정주요골자

- 「제5조(포획승인)수렵장에서 조수를 포획하고자 하는 자는 강원도유림경영사업소(이하 “소장”이라 한다)의 포획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제5조(포획승인권한의 위임)도지사는 법제13조제3항 및 법시행령제21조제2항제4호 단서에 의한 수렵조수의 포획승인권한을 강원도유림경영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로 자구수정
- 본회의 심사 : 1998년 10월 29일 제2차본회의에서 엄문섭산업경제위원장의 심사보고후 질의 및 토론없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8년 10월 29일 수정안대로 가결된 후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1998년 11월 7일 강원조례 제2659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고정수렵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고정수렵장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 강원도고정수렵장운영관리조례”를 “강원도립춘천수렵장관리조례”로 한다.

제2조 제1항중 “강원도고정수렵장”을 “강원도춘천수렵장”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포획승인 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법 제13조제3항 및 법시행령 제21조제2항제4호 단서에 의한 수렵조수의 포획승인 권한을 강원도유림경영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제9조의 제목“(포획승인의 취소통소)”를 “(포획승인의 취소)”로 하고 본문중 “경우에는 수렵조수포획승인증 발급기관에 통보하여 포획승인을 취소토록 하여야”를 “ 경우 소장은 포획승인을 취소”로 한다.

제18조중 “강원도고정수렵장운영특별회계”를 “강원도립춘천수렵장특별회계”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중 멧토끼란의 요금 “10,000원”을 “20,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시설사용료(제4조제2항관련)

시설명	구 분	요 금			비고
		7~8월	9월 ~ 익년 6월 주말, 공휴일	평 일	
주 차 장	소형(승용차, 15인승이하의 승합차, 1톤이하의 화물차), 차량10부제운행 참여자가 승용차	3,000	2,500	2,000	1대 1일
		2,500	2,000	1,500	
	중형(16~35인승 승합차, 1톤초과~5톤미만의 화물차)	5,000	4,000	3,000	
	대형(36인승이상 승합차, 5톤이상의 화물차)	10,000	8,000	6,000	
숲속의 집	59㎡이상(난방 및 취사설비 있는 시설)	150,000	120,000	90,000	1동 1일
	27㎡~59㎡미만(난방 및 취사설비 있는 시설)	100,000	80,000	60,000	
	26㎡이하(난방설비있는 시설)	40,000	30,000	20,000	
사격연습장	1라운드 사용료(실탄 25발, 점시 25개)	20,000	20,000	20,000	

※ 숲속의 집 1일 사용기준은 12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로 한다.

7) 강원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10월 10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98년도 순환수렵장 개장을 앞두고 수렵장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경제실정을 감안하여 보다 많은 이용객을 유치하면서 세입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수렵장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 (안 제7조제1항관련 별표1)
 -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수렵대상 조류 일부를 제외하고 청설모를 추가함. (안 제9조 관련별표2)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8년 10월 13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1일 제4차회의에서 이만용농정산림국장의 제안설명과 이수길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 뒤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

- 순환수렵장 개장에 따른 50억 수입근거는?

- 답변요지

- 94년 강원도 순환수렵장 개장으로 40억원의 수입이 있었고 97년 경북, 경남은 64억원의 수입이 있었음. 금년 강원도 수렵이용자를 업총 10,100명, 공기총 1,380명으로 11,480명을 예상하여 추정한 금액이나 경기가 좋지 않아 작년 경상도 수입보다 적게 잡은 것임.

- 본회의 심사 : 1998년 10월 29일 제2차본회의에서 임문섭산업경제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8년 10월 29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1998년 11월 7일 강원도조례 제 2658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중 “산림개발기금”을 “임업진흥기금”으로 한다.

[별표1] 및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수렵장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단위 : 천원)

구 분	업 총	공 기 총
수렵기간내	500	100
30일	300	50
10일	180	30
5일	120	25
3일	80	20
수렵제한에 따른 예외사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렵행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음	

[별표2] 포획조수의 범위 및 수량(제9조 관련)

조 수 별	수 령 대 상 조 수	포 획 제 한 수 량
수 류	멧돼지, 고라니, 멧토끼, 청설모	수렵기간내 1인각 3마리
조류	수평, 까마귀류(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멧비둘기, 오리류(쇠오리, 청둥오리, 홍머리오리, 청머리오리, 검둥오리, 검둥오리사촌, 고방오리, 흰뺨검둥오리, 검은머리흰죽지, 댕기흰죽지, 넓적부리, 흰죽지	1인1일 각5마리
	참 새	제한없음

8) 강원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10월 10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건설기술관리법령이 대폭 개정(97. 7. 21 시행)됨에 따라 건설공사품질시험 검사 수수료의 징수기준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품질시험·검사수수료 징수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을 적용하며 종목별 수수료 및 소요경비는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장이 고시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8년 10월 13일 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4일 제4차회의에서 이희남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임병환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1998년 10월 29일 제2차본회의에서 김길정관광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8년 10월 29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1998년 11월 14일 강원도조례 제 2661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시험 및 검사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수수료) ① 품질시험 및 검사수수료와 현장출장경비 징수기준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을 적용한다.

②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의한 종목별 수수료와 현장출장 경비를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를 삭제하고, 제5조를 제4조로, 제6조를 제5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豫算案

1) 1997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9월 2일 강원도지사
- 제안설명의 요지
 -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내역으로
 - 총세입예산현액은 1조 3,372억7천5백만원이며
 - 징수결정액은 1조 3,571억3천만원
 - 실 수납액은 1조 3,267억7천4백만원이고
 - 미 수납액은 303억5천6백만원임.
 - 총 세출예산현액은 1조 3,372억7천5백만원이며
 - 지출액은 91%에 해당하는 1조 2,150억2천3백만원
 - 이월액은 892억9천5백만원이고
 - 불용액은 329억5천7백만원임
 -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은 1,117억5천1백만원으로써 이는 모두 98년도 예산으로 이월함.
 - 위의 이월액 892억9천5백만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억3천4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218억2천2백만원임.
 - 의료보호기금과 공원 및 관광지개발 특별회계는
 - 세입 결산액 383억8천6백만원중
 - 지출액이 369억6천만원이고 이월액은 10억원이며
 - 불용액은 3억3천3백만원임
 - 공기업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로써
 - 세입결산액 1,119억2천1백만원에서 세출결산액 999억6천7백만원을 공제한 차인잔액 119억5천4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94억4천4백만원으로

- 특별회계는 지출이 없었으며
- 일반회계 지출결정액 26억1천7백만원중
- 지출원인행위액 25억8천4백만원으로
- 이중 실제 지출된 금액은 24억9천4백만원
- 이월액은 없으며
- 예비비의 불용액은 68억2천7백만원임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8년 10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7일 제2차회의에서 박수준자치지원국장의 제안설명과 박종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장시간 질의 및 답변이 있는 뒤 10월 28일 제3차회의를 속개 역시 장시간 질의 및 답변이 있었으나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

- 각종 기금조성과 관련 노인복지, 재해대책, 운송중사자연수원건립기금등은 조성만하고 집행실적이 없는데 언제까지 조성하고 목표액은?
-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으며 불용액을 미리 예측하며 추경에 정리하여 재투자할 용의는?
- 속초시에서 지역개발기금 융자시 상환능력을 충분히 검토하였는지?
- 예산불용액을 사회, 경제개발에 배정하여 이 분야의 예산을 늘리는 것이 어떤지?
- 민간대행사업비에서 5천만원을 전용하여 강원사회복지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전용한 사유?
- 지방채를 빨리 상환하여 건전재정을 운영할 계획은?
- 순세계잉여금은 실제 수납액과 예산액과의 차이가 나는 이유?

- 답변요지

- 목표액과 기간등을 정하여 현재 조성단계에 있기 때문이며 조성이 완료되면 집행계획을 수립설치 목적대로 집행할 계획임.
-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경비의 소요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소요액을 편성하고 불용되는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여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겠음.



- 속초시의 재정상태는 지방채발행승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정도로 악화되어 있지 않음.
 - 앞으로 불용액을 사회개발과 경제개발분야에 최대한 투자하여 나가겠음.
 -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욕구가 증대되어 분야별 복지수요를 조화있게 실현할 수 있는 정책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전용하였음.
 - 앞으로 우리도의 이익이 되는 범위내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규모로 발행하도록 하겠음.
 - 부서간 업무협조가 소홀하여 추경예산편성시 삭감조정하여야 하나 확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앞으로는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초과계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 최근 농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과 우리 농어업의 경쟁력 향상등을 감안해 볼 때 농어민신문의 보급지원은 필요하다고 봄.
- 본회의 심사 : 1998년 10월 29일 제2차본회의에서 박금용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예산승인의견은 1998년 10월 29일 상정되어 원안대로 가결되어 강원도지사에게 송부되었다.

2) 1997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견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9월 2일 강원도교육감
- 제안설명의 요지
 - 9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8,892억 2천4백만원이며, 세입은 전년도 이월액 364억6천6백만원을 합하면 예산현액은 9,256억9천만원임.
 - 세입결산액은 9,095억5천8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586억1천6백만원으로 세입세출결산결과 509억4천2백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음.
 - 예산현액중 8,586억1천6백만원을 지출하고 342억4천5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므로 불용액은 328억2천9백만원임.
 - 세계잉여금은 509억4천2백만원으로 명시이월이 285억6천2백만원, 사고이월이 56억8천3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66억9천7백만원이 되겠음.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8년 10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6일 제1차회의에서 김호준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박종기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이 있었으나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

- 97년도 결식학생중식지원현황에 대하여 설명바람
- 97년도 체육계학교 육성지원비와 98학교체육코치 운영비에 대하여
- 95년대비 97년 초등교육국 불용액이 5.2%에서 13.1%로 중등교육국은 1.8%에서 14.8%로 증가한 사유
- 속초고등학교 지하수개발 공사비의 불용액 발생사유

- 답변요지

- 결식학생은 총940명(초 141, 중 589, 고 210명)으로 국고보조금 231백만원과 도비 98백만원 등 총 329백만원의 예산으로 1인1식당 2천원씩 연간 180회를 지원, 학생들간의 위화감 해소 및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는데 만전을 기하였음.
- 97년도 체육계학교 육성지원비는 문화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각종대회 훈련비와 선수훈련비로 65백만원을 보조받아 강원체육고등학교에 전액 보조하였으며 자체지원학교운영비는 85백만원임.
- 과목체계상 95년도에 초등교육운영과 초등교육사업으로 분리운영되어 오던 것이 96년도부터 통합되어서 초등교육운영으로 과목이 일원화되었기 때문임.
- 일일 60톤수량과 착정심도 200메타를 추정하여 설계하였으나 착정 105메타에서 필요량 60톤이 확보되었기 때문임.
- 본회의 심사 : 1998년 10월 29일 제2차본회의에서 박금용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예산승인의건은 1998년 10월 29일 상정되어 원안대로 가결되어 강원도지사에게 송부되었다.



다. 建議案

1)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안)재검토촉구건의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10월 22일 관광건설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정부에서 기존의 “특정다목적댐법”을 폐지하고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안」을 제정하려 함에 있어 97입법예고와 관련한 강원도의 검토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등 형식적인 입법절차로 이용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다시 한번 정부와 국회에 강원도민의 집약된 건의안을 강력하게 전달함으로 정기국회에서 입법 심의시 건의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회 및 원내교섭단체가 구성된 정당 건설교통부에 법률안 재검토촉구를 건의하려는 것임.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8년 10월 23일 제3차관광건설위원회회의에서 정연대의원의 제안설명 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1998년 10월 29일 제2차본회의에서 김길정 관광건설위원장의 제안설명 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건의안은 1998년 10월 29일 원안대로 가결되어 건설교통부, 국회건설위원회, 원내3당에 건의되어 1998년 11월 12일 한나라당에서는 정책반영토록 노력하겠고, 1999년 6월 14일 건교부에서는 비용부담문제와 위원회구성은 수용되고 기타사항은 곤란과 불가로 회시되었다.

[의결전문]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안)재검토촉구건의안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안」은 지난 '97년 8월 11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7-288호로 입법예고하여 '97년 11월경에 제정하려던것으로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정부와 이해 당사자인 지역주민들과 마찰을 빚어 '97년 12월 6일 동 법률안에 대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국회차원에서 유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회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으로 선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해 다시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정부안의 불합리성을 제기하여 여러차례 부당한 조항을 개선 및 의견반영을 해달라는 검토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 법률안을 정부가 입법예고시 건의된 의견이 무시된 채 당초 건설교통부안대로 통과시키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음은 국민정부가 국민을 무시한 독단적인 행동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일부 특정지역을 위한 강원도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있는 것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다시한번 강원도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건의합니다.

첫째, 댐건설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문제입니다.

댐건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으며, 가뜰이나 재정이 열악하고 댐건설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조항으로서 이는 자연 그대로 해결이 가능했던 생활용수, 농업용수등을 댐건설 이전보다 더 어렵게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하여 지역수몰과 함께 이중의 피해만 입게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댐이 건설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건설비 부담이 아니라 대폭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물 사용료 납부 문제입니다.

이는 댐건설 이전에 사용료없이 물을 사용하던 기득권을 전혀 고려치 않고 댐건설 이전의 자연유하량 범위내에서의 생활용수, 농업용수등 물사용에 대해서도 수수료 징수는 지역정서를 고려치 못한 처사라고 규정하며, 우수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지역주민의 기득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용분에 대한 면제규정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댐의 주변정비사업의 재원에 관한 조항입니다.

댐의 주변정비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비용을 시장·군수가 댐건설 사업시행자와 함께 부담토록 되어 있는바, 동법안 제44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재원 규정에 의해 추후 특별회계에서 보면 받을 수 있겠다고 판단되어지기는 하지만 시군의 예산편성 절차 등과 관련하여 사업비용을 댐건설 사업자가 우선 부담하고 추후 특별회계에서 보전받고 사업시행 만을 시장·군수가 책임지도록 조치함



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댐주면지역정비사업에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부담하도록 하는 불합리하고 지역정서와 상반된 조항은 반드시 수정 및 폐지되어야 합니다.

넷째, 유휴지 사용권에 관한 조항입니다.

위의 규정에 따라 앞으로는 댐편입 구역내의 모든권한이 댐 관리청에 귀속되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시행해 온 하천골재 채취, 유휴지에 대한 생산적관리 행위 및 하천의 효율적 이용행위가 실질적으로 전면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하천에 대한 관리가 이원화 되어 지금의 국도·지방도 관리 구분보다 더 어렵게 될 수도 있으므로 유휴지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시장·군수에게 계속 존치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댐건설지원사업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에 따르면 댐건설지원사업심의위원회 설치를 배재하였는바 심의위원회 설치를 반영하고, 최소한 댐설치 지역광역자치단체장만 이라도 위원으로 참여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댐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댐건설 기초단체부터 실시계획 고시까지 중앙부처 댐건설협의회(가칭)을 두어 중앙부처와 해당 자치단체(광역·지방)가 같이 참여하여 사전협의 및 의견교환하는 등 지역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위의 내용들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댐 수몰지역 주민들과의 상당한 마찰이 예상됩니다.

이와같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안」은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이라는 그럴듯한 제도신설을 구실로 지역과 현실을 외면한 것으로서 그대로 강행된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여 전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강원도 인제군 내린천댐 설치철회와 같은 용기 있는 현명한 조치를 희망하고, 다시 해바라기성 인사에 의거 거론되고 있는 식수전용댐 설치와 같은 전국토를 사형화 시키는 망국형의 어리석은 우를 아예 삭제하여야 한다는 확고한 신명에 기초를 두고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안」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강원도민과 강원도의회 의원모두의 이름으로 간곡히 건의하는 것입니다.

第 5 節 第96回 定期會

1. 概 況

가. 開 會

1998년도 강원도의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2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고, 이를 통지함으로써 40일간의 회기로 1998년 11월 20일 개회하여 12월 29일 폐회되었다.

나. 議事日程

1) 本會議

가) 제1차 본회의 : 1998년 11월 20일(금)

- 제96회강원도의회 (정기회)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 1999년도예산안및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건의건
- 강원도지사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상임위원회위원선임건의건
- 본회의장의석조정의건

나) 제2차 본회의 : 1998년 12월 1일(화)

- 강원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다) 제3차 본회의 : 1998년 12월 2일(수)

- 강원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라) 제4차 본회의 : 1998년 12월 3일(목)

- 강원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마) 제5차 본회의 : 1998년 12월 16일(수)

-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조례안
-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1999년도강원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998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 1999년도강원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1998년도제2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 1999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4분자유발언(신명선, 정충수, 이상명의원)의견

바) 제6차 본회의 : 1998년 12월 29일(화)

-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 강원도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강원도제2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
-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999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 태백시동점동교도소유치건의안
-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시험연구등에관한조례안

-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함태탄광광구재개발을위한제한법개정건의안
- 농어촌특별세존치촉구에관한건의안
- 강원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관광진흥개발기금지원대상확대건의안
-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 4분자유발언(김진동, 손석암, 이연우, 이상명의원)의견
- 의사진행발언(이훈의원)의견

2) 議會運營委員會

가) 제1차회의 : 1998년 12월 7일(월)

- 1998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 1999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처)
-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견
- 의사일정변경의견

나) 제2차회의 : 1998년 12월 10일(목)

- 의사일정변경의견
- 강원도자치봉사대상규정안
- 강원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3) 內務委員會

가) 제1차회의 : 1998년 11월 21일(토)

- 의사일정결정의견

나) 제2차회의 : 1998년 11월 30일(월)

- 의사일정변경의견



-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견
-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 제3차회의 : 1998년 12월 4일(금)

- 1998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 1999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자치지원국)

라) 제4차회의 : 1998년 12월 5일(토)

- 1998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안
- 1999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감사관실)

마) 제5차회의 : 1998년 12월 7일(월)

- 1998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 1999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공보관실)

바) 제6차회의 : 1998년 12월 8일(화)

- 1998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 1999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사) 제7차회의 : 1998년 12우리 9일(수)

-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조례안
-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1999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기획관리실)
- 강원도제2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

아) 제8차회의 : 1998년 12월 21일(월)

- 강원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자) 제9차회의 : 1998년 12월 22일(화)

- 의사일정변경의건
- 강원도제2의견국추진위원회조례안(계속)
-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 강원도의회사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차) 제10차회의 : 1998년 12월 23일(수)

-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카) 제11차회의 : 1998년 12월 24일(목)

-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타) 제12차회의 : 1998년 12월 28일(월)

- 99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 태백시동점동교도소유치건의안

4) 敎育社會委員會

가) 제1차회의 : 1998년 11월 21일(토)

-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회의석조정의건

나) 제2차회의 : 1998년 12월 4일(금)

- 의사일정변경의건
- 1998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 1999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환경복지국)



다) 제3차회의 : 1998년 12월 7일(월)

- 1998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 1999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보건환경연구원, 여성정책실)

라) 제4차회의 : 1998년 12월 8일(화)

- 1998년도제2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 1999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강원도교육청)

마) 제5차회의 : 1998년 12월 9일(수)

- 1998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 1999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도립강원전문대학)

바) 제6차회의 : 1998년 12월 28일(월)

- 의사일정변경의건
-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시험연구등에관한조례안
-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5) 産業經濟委員會

가) 제1차회의 : 1998년 11월 21일(토)

- 의사일정결정의건

나) 제2차회의 : 1998년 12월 4일(금)

- 1999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
- 1998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농정산림국)

다) 제3차회의 : 1998년 12월 5일(토)

- 1998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 1999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국제협력실)

라) 제4차회의 : 1998년 12월 7일(월)

- 1998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 1999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농업기술원)

마) 제5차회의 : 1998년 12월 8일(화)

- 1998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 1999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산업진흥국)

바) 제6차회의 : 1998년 12월 9일(수)

- 1998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 1999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해양출장소)

사) 제7차회의 : 1998년 12월 16일(수)

- 의사일정변경의건

아) 제8차회의 : 1998년 12월 24일(목)

- 의사일정변경의건
- 함태탄광광구재개발을위한제한법개정건의안
- 농어촌특별세존치촉구에관한건의안

6) 觀光建設委員會

가) 제1차회의 : 1998년 11월 21일(토)

- 의사일정결정의건

나) 제2차회의 : 1998년 12월 4일(금)



- 1998년도강원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건설도시국, 관광문화국)

다) 제3차회의 : 1998년 12월 5일(토)

- 1998년도강원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국제대회지원단)

라) 제4차회의 : 1998년 12월 7일(월)

- 1999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관광문화국)

마) 제5차회의 : 1998년 12월 8일(화)

- 1999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건설도시국)

바) 제6차회의 : 1998년 12월 9일(수)

- 1999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국제대회지원단)

사) 제7차회의 : 1998년 12월 21일(월)

-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견

아) 제8차회의 : 1998년 12월 22일(화)

- 강원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관광진흥개발기금지원대상확대건의안

7) 豫算決算特別委員會

가) 제1차회의 : 1998년 12월 10일(목)

- 위원장선임의견
- 간사선임의견
- 1998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나) 제2차회의 : 1998년 12월 11일(금)

- 1999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

다) 제3차회의 : 1998년 12월 12일(토)

- 1999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

라) 제4차회의 : 1998년 12월 14일(월)

- 1998년도제2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 1999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마) 제5차회의 : 1998년 12월 15일(화)

- 1999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다. 議會活動

1) 本會議

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 제1차본회의

- 1998년 11월 20일 제95회강원도의회의임시회(10. 15)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협의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제1항과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 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한나라당 7명, 국민회의 8명, 자민련 2명, 무소속 3명등 20명으로 구성하기로 의결한대로 가결되었다.

나) 강원도지사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 : 제1차본회의

-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원안대로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일정에 따라 1998년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강원도지사 및 강원도교육감과 관계 실국장급이상 간



부공무원을 출석토록 의결

2) 委員會

가) 현지시찰 : 내부위원회

- 1998년 11월 21일 제1차회의에서 의사일정을 정한 후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홍천 물류센터, 하이트맥주 공장과 춘천의료원 방문에 이어 춘천소방서를 방문 시찰하였다.

나) 현지시찰 : 교육사회위원회

- 1998년 11월 21일 제1차회의에서 의사일정을 정한 후 12월 17일 교육관련시설 시찰에 이어 19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교육관련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춘천, 원주, 강릉, 속초)지역을 위문 방문하였다.

다) 현지시찰 : 산업경제위원회

- 1998년 11월 21일 제1차 회의에서 의사일정을 정한 후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홍천 옥수수시험장, 가축위생시험소, 임업협동조합중앙회 강원도지회를 각각 시찰한데 이어 28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강원도지회를 방문 시찰하였다.

라) 현지시찰 : 관광건설위원회

- 1998년 11월 21일 제1차회의에서 의사일정을 정한 후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전통 자기전수회관, 횡성 천연잔디구장과 문화재관리 실태답사를 위해 평창 봉산제재, 강릉 오죽헌을 시찰하였고, 12월 23일과 24일 안보관광지와 철원 한탄대교 건설현장을 각각 시찰한데 이어 28일 춘천송암지구 레포츠타운, 빙상경기장등 체육시설을 시찰하였다.

라. 議案處理狀況

1) 一般議案

- 이번 회기중 상정대상 일반안건은 총24건으로써 제안자별로는 도지사제출이 17건, 위원회 제출이 1건, 의원발의가 3건, 도교육감 제출이 3건이다. 처리결과를 보면 24건 모두 가결 되었으며 종류별 처리현황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종류별	상 정 대 상 안 건			의 안 처 리 내 역				
	합 계	전회기 이 월	금회기 접 수	가 결			폐 기 (철 회)	계 류
				소 계	원 안	수 정		
계	24	1	23	24	20	4		
조 례 안	14		14	14	12	2		
예 산 안	4		4	4	2	2		
동 의 안	2		1	2	2			
건 의 안	4	1	4	4	4			
결 의 안								

2. 議決案件

가. 條例案

1)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12월 5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정부의 통일정책의 맥락안에서 전국 유일의 분단도로서의 역할을 증진하고, 남북강원도간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하면서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기금조성재원은 강원도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함(안 제2조)
 - 기금은 남북강원도간의 문화·학술·체육·경제분야 등의 교류협력 사업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3조)



- 기금의 운용·관리는 세입세출예산외로 하며 도금고에 예치하도록 함(안 제4조)
- 회계관계 공무원을 정함(안 제5조)
 - 기금운용관 : 기획관
 -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지원담당사무관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8년 12월 7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9일 제7차회의에서 권혁인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정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및 답변후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

- 본 기금의 목표액의 정하여져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 안 제6조제1항 「보고하게 할 수 있다」를 의무 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답변요지

- 본 기금은 남북교류에 대한 도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금의 목표액은 앞으로 사업추진 과정을 지켜보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임.
- 의무 규정으로 할 경우 사업추진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함이 타당함.
- 본회의 심사 : 1998년 12월 16일 제5차 본회의에서 황영철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8년 12월 16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1998년 12월 28일 강원도조례 제 2666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북강원도간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강원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남북강원도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간의 문화·학술·체육·경제분야 등 교류협력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 기타 남북강원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결산보고사항
3.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금을 도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획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남북교류 지원담당사무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제6조(보고 및 환수) ① 도지사는 기금을 사용하는 자에게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당해 기금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원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12월 5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세목」을 종전 취득세·등록세에서 면허세까지 확대하고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대상 면적」을 종전 60㎡이하에서 85㎡이하로 확대 적용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 표준(허가)안에 의함〕
- 주요골자
 - 장애인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면허세 면제규정추가(안 제4조)
 - 전용면적 60㎡ 초과 85㎡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거나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주택으로 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25% 경감규정 추가(안 제15조)
 -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25% 경감규정 적용기간을 99. 6. 30까지 한시 운영(부칙 제2항)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8년 12월 7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8일 제6차 회의에서 박수준 자치지원국장의 제안설명과 전정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및 답변뒤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

-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대상 면적을 종전 60㎡이하에서 85㎡이하로 확대 적용하는 사유는?

— 답변요지

- IMF로 인한 주택 경기침체에 따른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적용기간을 99. 6. 30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함
- 본회의 심사 : 1998년 12월 16일 제5차 본회의에서 황영철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8년 12월 16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1998년 12월 28일 강원도조례 제 2667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중 “승용자동차”를 “자동차”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세·등록세·면허세”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임대 주택법시행령 제6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2조에서 같다)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건축용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을 포함하되, 분양을 하거나 임대수익금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지 아니하는 부대시설과 복지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 받는 공동주택으로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며, 전용면적 60



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 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임대주택용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한 경우
2. 임대주택을 건축한 후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임대주택을 건축주로부터 취득한 후 취득일부터 2월(건축주가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 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무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한 경우

② 과세기준일 현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의 영구임대주택용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용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규정은 이 조례 공포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 취득(이 조례 공포일 이후 1999년 6월 30일 이전에 착공 또는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착공 또는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2001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3)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12월 16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종전의 행정기구 설치조례는 도의 본청·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등 기관별

로 제정운용함에 따라 기구조정시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등 폐단이 있던 것을 이(22개조례)를 1개 조례로 통합 제정하여 조직관리에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이 조례는 도 본청의 행정기구·소속기관의 설치 및 그 조직과 사무분장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본청 실·국·본부장·담당관·과장·소속기관장의 「직급」과 담당관·과·실·부 등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제3조)
- 도지사 밑에 행정·정무부지사, 실·국·본부를 두며, 각각 소관사무를 규정함(안 제2장 도본청 제4조 내지 제13조)
- 직속기관으로 농업기술원·지방공무원교육원·보건환경연구원·소방서·전문대학을 두며, 그 위치와 소관사무를 정하는 한편, 농업기술원에는 종전 사업소로 되어 있던 「농업기술연수원」을 「첨단농업기술연수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하부조직으로 흡수함(안 제3장 제14조 내지 제30조)
- ※ 「농민교육기관」정비는 행정자치부 권고 사항으로서 전국적으로 정비중임.
- 동해안 지역에 해양수산출장소를 둠(안 제4장 제31조 내지 제33조)
- 15개 사업소에 대한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각각 그 위치와 분장업무를 규정함(안 제5장 제34조 내지 제80조)
- 한시기구인 국제대회지원단의 존속기한을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종전의 개별 행정기구설치조례 21개는 이를 폐지함(안 부칙 제2항 및 제3항)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8년 12월 17일 내부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2일 제9차회의에서 박수준 자치지원국장의 제안설명과 전정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및 답변뒤 수정안대로 가결되었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

- 안 제8조의(환경복지국) 6호의 “장애인복지” 내용을 “묘지”로 하고 7호에 “묘지”내용을 “장애인복지”로 수정요망
- 안 제51조(소관사무) 1호 “여성에 대한”을 “여성을 위한”으로 2호의 “심신수련”을



“잠재능력”으로 수정하고 3호의 “복지향상”을 “복지증진”으로 내용 수정요망

— 답변요지

- 업무내용으로 보아 수정토록 하겠음.
-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내용으로 판단되므로 수정토록 하겠음.

[수정안의 요지]

— 수정이유 : 업무의 내실있는 추진과 유사한 업무의 분장을 명확히 하기 위함.

— 수정 주요골자

- 안 제8조(환경복지국) 중 6호 「장애인복지」를 「묘지」로 하고 7호 「묘지」를 「장애인 복지」로 하며 제6절 여성수련원에서 안 제51조(소관사무) 중 1호 「여성에 대한」을 「여성을 위한」으로 2호 「심신수련」을 「잠재능력」으로 3호 「복지향상」을 「복지 증진」으로 수정함.
- 본회의 심사 : 1998년 12월 29일 제6차본회의에서 황영철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후 질의 및 토론없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8년 12월 30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1999년 1월 16일 강원도조례 제 2670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1조 내지 제10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과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행정기구과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도 본청의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 출장소의 장 및 사업소의 장 등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과·담당관의 설치 등) 도 본청·직속기관·출장소·사업소의 실·부·과·담당관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장 도 · 본 청

제4조(부지사) ① 도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밑에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를 둔다.

② 행정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다만, 정무부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2.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의 지휘·감독

③ 정무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지사를 대리하여 정무적 행사·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
2. 의회와 관련되는 각종 정무적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정부·국회 등과 관련되는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정당·사회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도정의 홍보, 도지사의 활동상 소개 및 언론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도정에 대한 자문을 얻거나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사항
7. 투자유치, 통상협력, 경영사업등 경제분야의 정책수립 참여에 관한 사항
8. 기타 도지사를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자치지원국·환경복지국·농정산림국·산업진흥국·관광문화국·건설도시국·소방본부를 둔다.



제6조(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 정책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2. 도정주요기획 수립, 심사·평가에 관한 사항
3. 광역자치단체간의 협의에 관한 사항
4. 도의회 협력 및 남북교류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편성·운영, 투자심사 및 재정경영에 관한 사항
6. 자치법규 심사·공포, 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7. 공무원 소청에 관한 사항
8. 정보·통신, 통계 및 전산실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자치지원국) 자치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문서·보안 및 의전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의 인사, 교육, 복무 및 후생에 관한 사항
3. 지방행정 종합관리 및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
4. 도와 시·군간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5. 조직관리 및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사항
6. 선거, 국민투표 및 자치발전에 관한 사항
7. 행정혁신 및 민원사무에 관한 사항
8. 지방세, 세외수입, 기부금품 모집(제한)에 관한 사항
9.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0. 재산관리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11. 민방위 및 경보통제에 관한 사항
12.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13. 재해·재난업무 조정 및 통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환경복지국) 환경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정책 및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2. 대기·자연환경보전 및 생태계보호에 관한 사항
3. 생활오·폐수, 폐기물처리 및 청소에 관한 사항
4. 먹는샘물 관리 및 상·하수도 등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5. 보건·위생, 의·약무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의료구호 및 묘지에 관한 사항

7. 노인 및 아동복지,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8. 여성복지 향상 및 모자·부자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농정산림국) 농정산림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어업정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농어촌 개발 및 소득증대에 관한 사항
3. 농산물 생산·유통 및 양정에 관한 사항
4. 농지관리·개량 및 농업용수 관리에 관한 사항
5. 특용·원예작물 생산 및 가공에 관한 사항
6. 축산에 관한 사항
7. 산림·산지보호 및 도시녹화에 관한 사항
8. 양묘·식수·영림 및 산지이용에 관한 사항

제10조(산업진흥국) 산업진흥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 산업진흥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물가 안정 및 노·사·정 협의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창업, 경영지원 및 수출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전기·유류·가스등 에너지 관리 및 연료수급에 관한 사항
5. 공업발전 및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6. 광업 및 광산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7. 교통·운수 및 차량에 관한 사항

제11조(관광문화국) 관광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관광진흥 및 관광홍보에 관한 사항
3. 관광지 개발 및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재관리에 관한 사항
5.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사항
6. 청소년 건전육성 및 청소년 수련시설에 관한 사항

제12조(건설도시국) 건설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토건설·이용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토지수용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건설업체 육성 및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사항



4. 치수사업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5. 하천, 공유수면(내수면) 관리 및 방재에 관한 사항
6.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7. 건축·주거환경개선 및 특정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8. 도로정책, 도로시설 및 교량건설에 관한 사항
9. 지적 및 개별토지의 지가조사에 관한 사항

제13조(소방본부) 소방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행정의 기본운영계획 수립·조정 시행
2. 소방공무원 인사·징계·복무·상벌·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3. 소방장비·관서의 유지관리 및 보강에 관한 사항
4. 소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성과분석
5. 화재의 예방·진압 및 원인분석에 관한 사항
6. 의용소방대 운영·지도·감독 및 소방용수시설의 유지 관리
7. 소방안전·화재예방 및 홍보계획의 수립 지도감독
8. 소방관련 민원업무 처리 및 지도감독
9. 구조·구급업무에 관한 사항
10.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대책관련 기획·집행·평가
11. 항공구조·구급·진압 등 항공소방에 관한 사항
12. 소방전산 및 통신에 관한 기획·조정 및 설치유지에 관한 사항
13. 긴급구조상황실운영 및 재난상황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제 3 장 직 속 기 관

제 1 절 농 업 기 술 원

제14조(설치) ① 법 제104조제1항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의 농업발전과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도 농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술원은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402번지에 둔다.

제15조(원장) 기술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

을 지휘·감독한다.

제16조(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농업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2. 주요 농작물의 우량품종 육성 및 선발연구
3. 농업의 첨단기술개발 및 농업환경 보전에 관한 시험연구
4. 비료·농약·토양의 시험 및 분석
5. 농업경영 및 농업정보에 관한 조사연구
6. 주요 농산물의 저장·이용 및 가공에 관한 시험연구
7. 농촌청소년 및 농업인후계자등 후계인력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
8. 농·축산물의 우량종자·종묘·종축의 보급
9. 시험연구사업에서 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
10. 지역농업의 개발과 농촌생활환경 개선 지도
11. 농작물의 품질향상 및 가축질병 예방·방역기술 지도
12.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 대비 기술 지도
13. 농업관련 단체·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의 교육훈련
14. 농기계훈련, 농기계정비공과 등 직업훈련 및 교육용 각종 실습장 운영
15. 전문농업인의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과 농업인의 부업훈련 및 취업 알선
16. 기타 농업·농촌개발에 관한 시험연구·교육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원종장·기술연수센터·특화작목시험장 등) ① 기술원에 농산물의 우량종자 생산보급을 위하여 농산물원종장, 감자원종장을 둔다.

② 기술원에 영농후계자 양성과 과학적 첨단 영농기술 보급을 위하여 첨단 농업기술연수센터를 둔다.

③ 기술원에 특화작목의 품종개량, 재배방법 개선, 생리생태, 저장 및 가공이용 등과 기타 소득작물에 관한 시험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창산채시험장, 홍천옥수수시험장, 철원 특작시험장, 강릉근채시험장을 둔다.

④ 원종장·기술연수센터·특화작목시험장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 2 절 지 방 공 무 원 교 육 원

제18조(설치) ① 법 제104조제1항과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지방공



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교육원은 강원도 춘천시 동면 만천리 324-1번지에 둔다.

제19조(원장) 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0조(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6급이하 공무원의 교육훈련
2. 교육훈련 정보·자료수집
3. 공무원 교육훈련 기법의 연구 및 개발
4. 교재의 편찬 및 교육훈련 성적 평가

제 3 절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제21조(설치) ① 법 제104조제1항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연구원은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17-3번지에 둔다.

제22조(원장) 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3조(소관사무) ①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전염병,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의한 후천성 면역결핍증, 기생충 질환예방법에 의한 기생충질환 및 기타 전염성질환과 집단환자 발생에 대한 진단 등의 시험·검사·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류, 공중위생법에 의한 세척제, 기타 위생용품, 신고대상 장난감, 약사법 및 행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의한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용구, 위생용품, 마약법에 의한 마약류, 대마관리법에 의한 대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류 검사 등의 시험·검사·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먹는물관리법, 수도법, 지하수법, 식품위생법에 의한 먹는 물, 지하수법에 의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온천법에 의한 온천수,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영장수, 공중위생법에 의한 욕장수등의 시험·검사·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수질환경보전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하천·호수유역의 환경조사 및 수질오염저감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 배출시설, 대기질, 강우, 악취, 연료 중의 유황함유량,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소음, 진동, 지하생활공간 공기질관리법에 의한 공기질 오염도 검사 등의 시험·검사·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6.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일반폐기물, 산업폐기물, 쓰레기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방류수 및 지하수,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업소의 방류수,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측 정망 운영 및 오수처리시설, 축산폐수시설, 정화조시설,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 체육시 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골프장 잔류농약 및 유출수 검사,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해양오염 검사 등의 시험·검사·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7. 보건·환경 관련기관의 기술업무 지도 및 훈련에 관한 사항
 8. 기타 공중보건의 향상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험·검사·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 환경관리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건의료원, 보건소(지소포함) 및 보건진료소
 2. 상수도관리, 하수 및 분뇨처리기관
 3.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기관

제 4 절 소 방 서

제24조(설치) ① 법 제104조제1항 및 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 관할 구역안에 소방서를 설치한다.

② 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25조(서장) 소방서에 서장을 두고, 서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6조(소관사무) 서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소방행정의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소방장비의 유지관리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화재의 예방·진압 및 조사·원인분석·통계에 관한 사항
4. 의용소방대운영·지도감독 및 대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소방안전·화재예방 및 홍보계획 수립 시행



6. 건축허가동의·위험물설치허가·소방시설의 기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7. 구조구급 및 특수재해의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
8. 긴급구조상황실 운영 및 재난상황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제27조(소방파출소 등) 소방서의 소관사항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소방파출소 및 119구조대를 둘 수 있으며, 파출소 및 구조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5 절 도 립 강 원 전 문 대 학

제28조(설치) ① 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도립강원전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9조(학장) 대학에 학장을 두며, 학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을 대표한다.

제30조(운영조례 및 학칙) ① 대학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② 대학에 설치하는 학과, 학생정원 및 학사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 4 장 출 장 소

제31조(설치) ① 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 행정의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동해안지역에 강원도해양수산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출장소는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134-3번지에 둔다.

③ 출장소의 관할구역은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과 양양군으로 한다. 다만, 내수면 관련업무는 도 전역을 관할한다.

제32조(소장) 출장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3조(소관사무) 소장은 도지사가 위임하는 관할구역내의 도의 사무(도지사의 사무를 포함한다)를 관장한다.

제 5 장 사 업 소

제 1 절 국 제 대 회 지 원 단

제34조(설치) ①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내에서 개최되는 강원도국제관광박람회와 국제스포츠포츠대회 등 각종 국제대회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에 강원도국제대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지원단은 강원도 춘천시 관내에 둔다.

제35조(단장) 지원단에 단장을 두고, 단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6조(소관사무) 단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99강원국제관광박람회와 '99동계아시아경기대회의 준비와 행사에 관한 지원 업무
2. 기타 도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국제대회의 준비와 행사에 관한 지원업무

제 2 절 서 울 사 무 소

제37조(설치) ①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업무연락 등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기업의 도내 유치, 지역생산품의 국·내외 판촉활동 지원 및 홍보안내등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도에 강원도서울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관내에 둔다.

제38조(소장) 사무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9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사무연락 조정 및 자료수집
2. 기업체, 관광레저사업체 등 입주홍보·안내 및 투자유치
3. 도정·관광홍보 및 자료제공, 관광객 유치안내
4. 국제교류의 매개체 역할 수행
5. 서울지역 도민단체·출향인사·연고기업 등 업무협조 및 지원
6. 농특산물 등 지역생산품의 판촉활동 지원
7. 농수산물 유통정보센타 운영지원



8. 그밖의 도정과 관련한 업무수행

제 3 절 설 악 수 련 원

제40조(설치) ①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과 지역주민에 대한 심신수련과 시책교육 등을 위하여 도에 강원도설악수련원(이하 “설악수련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설악수련원은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산463-1번지에 둔다.

제41조(원장) 설악수련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2조(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공무원과 주민에 대한 심신수련과 정신교육
2. 공무원과 주민에 대한 시책교육 및 연수
3. 공무원과 주민에 대한 복지향상을 위한 휴식공간 제공
4. 기타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4 절 자 연 학 습 원

제43조(설치) ①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민에게 자연에 대한 이해와 자연애호 정신을 증진시키고 대자연 속에서 단체훈련을 통하여 폭 넓은 인간성과 능률한 기상을 키우고 질서, 협동의식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길러주기 위하여 도에 강원도자연학습원(이하 “학습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학습원은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998번지에 둔다.

제44조(원장) 학습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5조(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자연학습 및 자연보호에 관한 교육
2. 단체훈련을 통한 심신단련
3. 애향, 애국심 및 민주시민정신 고취를 위한 교양강좌
4. 기타 자연보호에 관련한 도민연수에 관한 사항

제 5 절 여 성 회 관

제46조(설치) ①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녀자의 복지증진과 근로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도에 강원도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여성회관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111-6번지에 둔다.

제47조(관장) 여성회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 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8조(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여성의 자질향상과 부덕함양을 위한 교양강좌
2. 근로여성의 신상상담 및 직업보도
3. 영세 근로여성 및 요보호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무료 숙식 제공
4. 취학전 어린이의 수탁보호를 위한 보육실 운영관리
5. 일반부녀자의 여가선용의 위한 각종 상담 및 선도
6. 가정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상담 및 선도
7. 여성의 사회참여 동기부여 및 정부시책의 계몽 지도
8. 여성의 향토문화 진흥사업의 전개
9. 여성 기술교육 및 취미지도 교육
10. 여성복지 소외계층 해소를 위한 이동 여성회관 운영
11. 지역사회 균형발전을 위한 여성인력 자원발굴 및 봉사활동 확대
12. 요보호여성 일시보호관리
13. 예식장 관리운영 및 각종 시설물 대여
14. 교육생과 일시보호자 급식 및 예식장 이용자의 식당활용 편의제공
15. 여성체위 향상을 위한 체력단련기회 확대
16. 교육생과 요보호여성 숙소편의를 위한 기숙사 운영관리
17. 기타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

제 6 절 여 성 수 련 원

제49조(설치) ①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내 여성에 대한 심신수련 및 정서교육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에 강원도여성수련원(이하 “여성수련원”이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여성수련원은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464-1번지에 둔다.

제50조(원장) 여성수련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1조(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여성을 위한 심신수련과 정신교육
2.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정신교육에 관한 연구 및 기법개발
3.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휴식공간 제공
4. 기타 시설사용 및 원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7 절 축 산 기 술 연 구 센 터

제52조(설치) ①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개량을 위하여 가축개량을 위한 시험연구와 첨단 축산기술 도입과 보급을 위하여 도에 강원도축산기술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연구센터는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산천리 5번지에 둔다.

제53조(소장) 연구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4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한우 육종개량
2. 종축 및 수정란 생산, 쌍자 생산
3. 한우고기 육질고급화 개발시험
4. 토종가축 선발 및 혈통복원과 보존
5. 초지, 사료작물 지역 적응성 시험
6. 환경보존형 축산기술개발시험
7. 축산전문인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
8. 산학협동 축산기술 개발 시험·연구
9. 기타 축산기술 및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 8 절 가 축 위 생 시 험 소

제55조(설치) ①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위생과 수의 공중보건에 관한 시험·검사·검진 및 연구를 하기 위하여 도에 강원도가축위생시험소(이하 “시험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시험소는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296-3번지에 둔다.

제56조(소장) 시험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7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가축질병의 방역과 가축전염병 검진
2. 가축질병진단 및 가축혈청검사
3. 가축질병예찰 및 지역예찰위원회 운영
4. 야생동물 질병관리 및 조사
5. 종축 질병관리 및 위생지도
6. 도축검사 및 위생지도
7. 축산물가공품검사
8. 축산물내 유해잔류물질 및 미생물검사
9. 축산물작업장 위생관리 및 지도
10. 자체검사원 및 보조검사원에 대한 위생교육
11. 축산물 청정농장 인증업무
12.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의 지역적인 연락 시험사업
13. 기타 가축질병의 방역 및 축산물 위생에 필요한 검사·시험·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제58조(지소) 시험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 및 그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9 절 산 림 개 발 연 구 원

제59조(설치) ①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업에 관한 시험연구와 우량 묘목의 생산, 산림환경의 종합적 이용과 체계적 개발을 통한 소득화 연계, 임업기술 보급을 위하여 도에 강원도 산림개발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연구원은 강원도 춘천시 사농동 218-5번지에 둔다

제60조(원장) 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



을 지휘·감독한다.

제61조(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산림환경 및 산림생태에 관한 연구
2. 중앙임업연구기관과의 지역적인 연락시험
3. 우량종묘 보존 및 생산 기술지도
4. 산림 병해충등 방제방법 연구
5. 도립화목원·산림박물관 조성 및 운영관리
6. 산림피해 상담지도
7.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의 산림피해 발생예찰 및 방역
8. 기타 임업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 10 절 도 유 립 경 영 사 업 소

제62조(설치) ①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유림의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도유림내 산림종합 이용시설을 개발·운영하기 위하여 도에 강원도유림 경영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사업소는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지암리 산 5번지에 둔다.

제63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4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도유림 경영계획 수립 및 시행
2. 도유림내 산림종합 이용시설 개발 및 조성 운영
3. 도유림내 휴양시설, 수렵시설, 수목원 조성 및 이용관리
4. 산림종합 이용시설 사용료 징수 및 경영수지 분석
5. 야생조수 사육증식 복원
6. 기타 도유림의 효율적 경영 및 이용개발에 관한 사항

제 11 절 중 도 관 리 사 무 소

제65조(설치) ①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 및 춘천지국

전적지(이하 “전적지”라 한다)를 종합관리하고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며 6·25전적기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에 강원도중도관리사무소(이하 “중도관리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중도관리사무소는 강원도 춘천시 중도동 603번지에 둔다.

제66조(소장) 중도관리사무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7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관광지 및 전적지내의 자원보호 및 시설유지 관리 운영
2.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의 단속
3. 입장료, 야생료, 주차료 및 시설(토지 포함)임대사용료 등의 부과 징수
4. 6·25전적지 사적유물의 발굴·수집 및 정리·진열
5. 6·25전승사적 개발 및 전물용사의 호국정신 선양
6.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홍보활동
7. 기타 관광지 및 전적지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 12 절 세 계 잼 버 리 수 련 장

제68조(설치) ①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7회 세계잼버리를 기념하고 청소년심신수련 및 통일안보교육 등을 위하여 도에 강원도세계잼버리수련장(이하 “수련장”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수련장은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 산62번지에 둔다.

제69조(장장) 수련장에 장장을 두고, 장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0조(소관사무) 장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청소년의 심신수련
2. 청소년 극기훈련
3. 청소년의 정신훈련
4. 제17회 세계잼버리 사후 관리업무
5. 기타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13 절 도 로 관 리 사 업 소

제71조(설치) ①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유지보수의 원활한 수행과 중장비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에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이하 “도로관리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도로관리사업소는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594-2번지에 둔다.

제72조(소장) 도로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3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도로보수유지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
2. 도로사업의 조사, 연구시험, 측량, 설계시행과 공사 감독
3. 도로포장공사 시행과 도로유지 보수관리
4. 중장비의 운영 및 대여관리
5. 중장비의 정비, 수리, 기술 검사관리
6. 중장비 부속품, 도로유지 보수자재 및 물품수급과 저장관리
7. 교량·터널·고가도로·지하차도·복개도로 등 도로관련 시설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8. 과적차량 단속 및 적발차량 사법처리에 관한 사항
9. 토목공사의 기술지도 및 토목시험에 관한 사항
10. 그밖에 토목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74조(지소) 도로관리사업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의 위치·관할구역 및 그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14 절 수 산 양 식 시 험 장

제75조(설치) ①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해연안의 수산자원을 증식·보호하고, 새품종의 시험개발과 양식기술 보급을 위하여 도에 강원도 수산양식시험장(이하 “시험장”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시험장은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동덕지 산 8-1번지에 둔다.

제76조(장장) 시험장에 장장을 두고, 장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7조(소관사무) 장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어류, 패류, 갑각류 등의 치어·치해 양식 및 방류
2. 지역특산품종의 시험양식 및 기술개발
3. 양식기술 보급을 위한 어업인 교육
4. 양식품종의 질병연구 및 수질관리
5. 양식예보, 적조예찰 및 홍보
6. 가리비 자연채묘 예보
7. 기타 수산양식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 15 절 내 수 면 개 발 시 험 장

제78조(설치) ①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수면어업개발을 촉진하고 담수어류 양식에 관한 조사·시험연구를 위하여 도에 강원도내수면개발시험장을 설치한다.

② 내수면개발시험장은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444번지에 둔다.

제79조(장장) 내수면개발시험장에 장장을 두고, 장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80조(소관사무) 장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담수어양식 기술개발 및 보급
2. 담수어류의 양식에 관한 조사·시험연구
3. 신품종 우량종묘 생산공급 및 기술개발
4. 양어장 적지조사
5. 기타 내수면 개발에 필요한 사항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대회지원단의 존속기한은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강원도농업기술원설치조례(조례 제2650호)



2. 강원도지방공무원교육원설치조례 (조례 제2651호)
3.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 (조례 제1559호)
4. 강원도소방서설치조례 (조례 제2447호)
5. 독립강원전문대학설치조례 (조례 제2541호)
6. 강원도해양수산출장소설치조례 (조례 제393호)
7. 강원도국제대회지원단조례 (조례 제2596호)
8. 강원도서울사무소설치조례 (조례 제2538호)
9. 강원도설악수련원설치조례 (조례 제2196호)
10. 강원도자연학습원조례 (조례 제1745호)
11. 강원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 (조례 제1991호)
12. 강원도여성수련원설치조례 (조례 제2639호)
13. 강원도농업기술연수원조례 (조례 제725호)
14. 강원도축산기술연구센터설치조례 (조례 제2748호)
15. 강원도가축위생시험소설치조례 (조례 제257호)
16. 강원도산림개발연구원조례 (조례 제2523호)
17. 강원도유림경영사업소설치조례 (조례 제2595호)
18. 강원도중도관리사무소설치조례 (조례 제1703호)
19. 강원도세계잼버리수련장설치조례 (조례 제2565호)
20.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설치조례 (조례 제1372호)
21. 강원도수산양식시험장설치조례 (조례 제2585호)
22. 강원도내수면개발시험장설치조례 (조례 제488호)

④(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소방본부장·기획관·감사관·공보관·국제협력실장으로”
를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소방본부장·공보관·여생정책실장·국제협력실장·감사관·기획관으로” 로 한다.

⑤(행정기구 설치조례의 통합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보건환경연구원, 독립강원전문대학, 설악수련원, 여성회관, 여성수련원, 농업기술연수원, 산림개발연구원, 자연학습원, 중도관리사무소, 세계잼버리수련장, 내수면개발시험장의 설치에 관한 조례중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에 관한 새로운 조례가 제정될 때 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원종장·기술연수센터·특화시험장의 명칭 및 위치(제17조제4항 관련)

명 칭	위 치
농 산 물 원 종 장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409번지
감 자 원 종 장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용산리 233번지
첨 단농업기술연수센터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유포리 228번지
평 창 산 채 시 험 장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흥정리 270번지
홍 천 옥 수 수 시 험 장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 814번지
철 원 특 작 시 험 장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청양6리 276-4번지
강 릉 근 채 시 험 장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노동중리 466-2번지

〔별표 2〕 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24조제2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춘 천 소 방 서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259번지	춘천시 일원, 철원군 일원, 화천군, 일원
원 주 소 방 서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671, 672번지	원주시 일원, 횡성군 일원
강 릉 소 방 서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323-3번지	강릉시 일원
동 해 소 방 서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819번지	동해시 일원
태 백 소 방 서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212-1번지	태백시 일원, 정선군중 고한읍, 사북읍, 남면 일원
속 초 소 방 서	강원도 속초시 교동 694-1번지	속초시 일원, 고성군 일원, 양양군 일원
삼 척 소 방 서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5-1번지	삼척시 일원
홍 천 소 방 서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 133번지	홍천군 일원, 양구군 일원, 인제군 일원
영 월 소 방 서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산5번지	영월군 일원, 평창군 일원, 정선군중 정선읍, 신동읍 동면, 북면, 북평면, 임계면 일원

4)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12월 16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종전조례의 정원 구분체계가 본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출장소·사업소로 구분되어 있어 정원 변동시 빈번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등 행정낭비적 요인이 있던 것을



집행기관 정원·소방공무원 정원·교육공무원 정원·의회정원으로 구분하여 정원관리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정원의 총수를 명시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소방공무원의 정원, 교육공무원 정원, 의회사무처의 정원으로 구분함(안 제2조)
-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부칙 제2항)
- 한시기구인 국제대회지원단의 정원 존속 기한을 1999. 12. 31까지로 함(안 부칙 제2항)
- 초과 현원에 대한 정원경과조치 규정을 둠(안 부칙 제3항)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8년 12월 17일 내부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2일 제9차 회의에서 박수준 자치지원국장의 제안설명과 전정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1998년 12월 29일 제6차 본회의에서 황영철 내부위원장의 심사보고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8년 12월 30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1999년 1월 16일 강원도조례 제 2679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 원 도 지 방 공 무 원 정 원 조 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과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이하 “도” 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2,921인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590인
2. 소방본부·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1,208인
3. 도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 61인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62인

제3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기구,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등 정원 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한시정원) 집행기관의 정원중 10인은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③(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제2649호, 1998. 9. 9)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정직 공무원이 초과현원인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5) 강원도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12월 16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위원회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두고 있는 전문위원실 기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정원을 강원도정원조례에서 정하도록 하는 등 종전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조례의 명칭을 「강원도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 개칭함
- 사무처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제3조)
- 위원회에 전문위원과 사무보조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되, 일반적인 사무는 처장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
- 사무직원의 정원은 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하부조직 및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8년 12월 17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2일 제9차회의에서 박수준 자치지원국장의 제안설명과 전정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1998년 12월 29일 제6차 본회의에서 황영철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8년 12월 30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1999년 1월 16일 강원도조례 제 2671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강원도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 원 도 의 회 사 무 기 구 설 치 및 직 원 정 수 조 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처의 설치)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사무처장) ① 사무처에 사무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전문위원) 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전문위원과 사무보조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 및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등을 따로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 제안자 : 1998년 12월 16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98. 9. 9일자 조직개편으로 실국의 명칭과 위임사무의 소관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현 직제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별표 1]의 업무분야 명칭중 조직개편시 폐지된 「복지여성」 및 「민방위재난관리」분야를 삭제하고 「내무」를 「자치지원」으로 「환경보건」을 「환경복지」로 「산업통



- 상」을 「산업진흥」으로 「수산」을 「해양수산」으로 변경함(안 별표1)
- 「기획관리」 분야의 “도유재산관리” 및 「민방위재난관리」 분야의 “민방위대동원권”에 대한 위임사무를 자치지원국 소관으로 하고 종전의 「복지여성」 분야의 “사회복지·아동·요지” 등에 관한 위임사무를 환경복지국 소관으로 조정함(안 별지 1 자치지원이란 제7호 내지 제12호 및 환경복지란 제100호 내지 제131호)
- 소속기관의 인사권에 대한 위임사무가 [별지 2] 와 [별표 3] 으로 분리되어 혼동의 우려가 있어 [별표 3] 을 [별표 2] 로 합치면서 우측란에 사무별 수입권자를 명시하여 위임사무를 명확히 구분함(안 별지 2 제1호 내지 제7호)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8년 12월 17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2일 제9차 회의에서 박수준 자치지원국장의 제안설명과 전정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및 답변 뒤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요지

- 강원도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는 사유는?

—답변요지

- 98. 9. 9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현 직제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임
- 본회의 심사 : 1998년 12월 29일 제6차 본회의에서 황영철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8년 12월 30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1999년 1월 16일 강원도조례 제 2672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 ②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중 도본청 실국장, 도의회사무처장, 직속기관장, 출장소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2와 같다.

[별표 1]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기획관리란·복지여성란 및 민방위재난관리란을 각각 삭제하며, “내무”를 “자치지원”으로, “환경보건”을 “환경복지”로, “산업통상”을 “산업진흥”으로, “수산”을 “해양수산”으로 하고, 자치지원란 “제7호 내지 제12호” 및 환경복지란 “제100호 내지 제131호”를 각각 별지1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를 별지2와 같이 하고, [별표 3]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 강원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12월 14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시행 98. 9. 19 법률 제 5568호) 취지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휴직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근무상한 연령을 임용권자가 당해 별정직공무원의 요청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삭제함(안 제8조제3항, 제4항)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명시함(안 제10조)



-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휴직기간을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도 명시함(안 제1조의 2)
- 휴직중인 공무원의 신분과 복직에 따른 절차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안 제11조의 3)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8년 12월 18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1일 제8차 회의에서 박수준 자치지원국장의 제안설명과 전정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및 답변이 있었으나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요지

- 본 조례의 내용이 상당부분 체계와 내용이 부실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답변요지

- 인쇄과정에서 오류가 되어 잘못되어 있음. 따라서 내년 상반기중 대대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조례안에 대한 전면적인 보완·수정할 계획임.
- 본회의 심사 : 1998년 12월 29일 제6차 본회의에서 황영철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8년 12월 30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1999년 1월 16일 강원도조례 제 2673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강원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호중 “6월이상”을 “강원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 기간이상”으로 한다.

제11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휴직기간)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제11조의2(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 공무원중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1998. 9. 19, 법률 제5568호) 개정전에 제6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반직 공무원 정년에 준한 근무상한연령에 의한 당연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자와 1999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각각 해당일자, 1999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자는 19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③(근무상한연령 연장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연장받아 재직중인 자의 근무상한연령 연장기간은 1998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

④(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직권면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신체·정신상의 장애(공무상 질병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유로 직권면직 예정일자를 정하여 통보한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8) 강원도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12월 14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현행 강원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강원도지방고용원규칙”을 조례로 격상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 지방공무원임용령의 개정(89. 5. 10 대통령령 제12706호)으로 지방고용직공무원이 그동안 전원 기능직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현재 강원도(도 본청 및 소속기관)에는 고용직공무원이 근무하지 않아 현원이 없을 뿐아니라
 - 「강원도지방공무원조례시행규칙」에도 고용직공무원의 정원이 전원 삭감되어 없는 상태로써 사실상 조례의 기능이 상실 되었으므로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게 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8년 12월 18일 내부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1일 제8차 회의에서 박수준 자치지원국장의 제안설명과 전정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1998년 12월 29일 제6차 본회의에서 황영철 내부위원장의 심사보고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8년 12월 30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1999년 1월 16일 강원도조례 제 2674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강원도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 강원도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11월 14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개혁과 국민적운동인 「제1의 건국」을 지방행정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개혁과제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도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위원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0인 이내로 구성하며, 10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음(안 제3조제1항 및 제4항)
 - 위원장과 고문은 도지사가 위촉함(안 제3조제2항 및 제4항)
 - 위원은 도의회의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시장·군수, 행정부지사, 교육청 부교육감, 제2의 건국 추진과 관련된 국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4급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함(안 제3조제3항)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안 제4조)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6조제2항)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6조제2항)
 - 위원회에 상임위원회를 두며, 상임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7조제1항 및 제1항)
 -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위원회 위원중에서 도지사가 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지명함(안 제7조제3항)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8년 11월 8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9일 제7차 회의에서 박수준 자치지원국장의 제안설명과 전정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12월 22일 제9차 회의에서 질의 및 답변이 있은뒤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

- 정치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추진계획은?

— 답변요지

- 본 위원회 위원으로는 여·야를 막론하고 위촉할 계획이며 도의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며 정치적인미는 전혀 없도록 하겠음.
- 본회의 심사 : 1998년 12월 29일 제6차본회의에서 조규병 내무위원회 간사의 심사보고후 질의 및 토론이 있었으나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8년 12월 30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1999년 1월 8일 강원도조례 제 2668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

제1조(목적)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지원하는 강원도제2의건국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정부에서 확정된 과제중 도에서 실천하여야 할 사항
4.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의회 부의장, 상임위원장
2. 시장·군수
3. 행정부지사, 교육청 부교육감, 제2의 건국 추진과 관련된 국가의 특별지방행정 기관 소속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4.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회에는 도지사가 위촉하는 10인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3조제4항에 의한 고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상임위원회) ① 위원회에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②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도지사가 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지명한다.

④ 상임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자치지원국장이, 서기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② 상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위원회의 서기가 겸임한다.



제9조(회의록) 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요청을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자에게는 강원도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0)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12월 18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 촉진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대금과 대부료의 감면, 납기 연장 등 특례를 조례에 반영하면서 종전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 재산의 대상, 수의계약, 금액감면, 납기연장, 분할납부등 지방재정법 시행령상의 특례조항을 조례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3조)
 -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공장건설 및 관광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을 대부하면서 대부료 및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투자규모, 고용창출효과, 생산량수출량 등에 따라 전액감면, 75%감면, 50%감면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23조의3)
 -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재산을 매각하면서 매각대금을 감면하는 경우 투자규모, 고용창출효과, 생산량수출량 등에 따라 전액감면, 50%감면, 25%감면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39조의4)

- 종전의 규정 중 매각대금 분할납부 규정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적용기준이 모호하던 것을 개선하여 대상재산을 구분하면서 납부기간을 5년이내, 10년이내, 20년이내로 하고 이자율을 각각 4%에서 8%까지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2조)
- 종전의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중 공용면적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고 천재지변 등의 경우 납기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제26조, 제28조)
- 종전 규정 중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토지를 건물점유, 좁고 긴모양의 경우로 제한하던 것을 실경작농경지, 폐천부지도 수의매각할 수 있도록 그 폭을 확대함(안 제39조의2)
- 기타 종전 규정 중 4급관사를 폐지하고 대부재산 영구시설물 출조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등 종전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함(안 제20조, 제57조 등)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8년 12월 19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3일 제10차 회의에서 박수준 자치지원국장의 제안설명과 전정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및 답변뒤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

- 본 조례안 개정의 사유는?

— 답변요지

-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종전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 본회의 심사 : 1998년 12월 29일 제6차 본회의에서 조규병 내무위원회 간사의 심사보고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8년 12월 30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1999년 1월 16일 강원도조례 제2678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교부율” 을 “귀속비율” 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총괄재산관리관은 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88조제1항제10호, 제89조, 제90조제1항제2호, 제91조제3항, 제92조의2, 제95조제2항제27호, 제96조제10항, 제100조제2항제5호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제19조의3(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등)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외국인 투자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투자지역내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6.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공유재산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영 제100조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

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3.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지구안에 있는 토지중 도지사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도지사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납부조건으로 하거나 분할 납부기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변경 계약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분할납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95조제2항제2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
2. 제39조의2제5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
3.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③ 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95조제2항제6호, 제10호, 제11호,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
2.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각에 매각하는 경우
3. 도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도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4.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



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 ④ 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원의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인구의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
 5.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6. 제23조의3제1호아목의 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 제23조제7항을 삭제하며, 동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영 제8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원할로 계산할 수 있다.
- ⑨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 전용단지, 기술연구집단지화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기술연구집단지화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7항 및 영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임대·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임대료·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액 감면을 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 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투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 수반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이상의 사업
 - 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
 - 다. 고용창출 효과가 300명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
 - 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

이 100퍼센트인 외국인 투자사업

- 마.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항
-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 아. 미화 3천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관광호텔·국제회의산업,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내에서 미화 5천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관광종합휴양업

2. 75퍼센트를 감면 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 나. 고용창출 효과가 200명이상 300명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 라.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3. 50퍼센트를 감면 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 나. 고용창출 효과가 100명 이상 200명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 라.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 사. 제19조의3제1호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단지내 또는 아파트형 공장내의 공유재산 제24조제4항중 “인근의 매매 실례조서, 사정정통단체, 조합”을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으로 한다.

제2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당해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 사용자가 전용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합산한 재산의 평가액
4.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당해재산의 평가액을 결정.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

$$\text{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times \frac{\text{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text{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의 전용으로 하는 총면적}}$$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선납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1년이 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 ③ 경작목적으로 대부한 농지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수입금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종료 연도의 대부료는 대부기간 종료 전에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조건을 달리 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
- ③ 도지사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

제37조제4항중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관리부서와”를 “공유임야 관리부서와”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의2(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95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를 1만제곱미터 이하까지 매각하는 경우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5년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실경 작종인 농지로서 당해 경작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로 한다.

③ 영 제95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시의 동지역은 3,300제곱미터이하, 시·군의 읍·면지역은 6,600제곱미터 이하까지 그 점유자(하천법 제25조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양여이후 계속 대부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위 매각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도시계획상 도로·공공주차장·공원등의 공공시설 용지가 아닌 재산(장래 공공시설 용지로 예정되어 있거나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매입자가 향후 10년간 매각목적외로 사용하거나 부동산 투자를 할 염려가 없는 재산
2.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매각하는 경우
3. 폐천부지안에 농경지가 있는 경우, 다만 매각면적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 제9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영 제95조제2항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시의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7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 소유자나 산업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에는 토지의 경계선이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군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 건축물정리예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제3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4(매각대금의 감면) ①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도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투자지역내의 재산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을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
3. 도지사가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업종별 공장용지 또는 개별 공장용지내의 재산
4. 도지사가 외국지개발에관한법을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과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② 지방산업단지 등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성원가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전액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개발·조성하는 투자 장려지역내의 재산
2.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억달러 이상인 대형 공장건설사업 및 동부대시설내의 재산
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천명이상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④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50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

- 시 고도기술 수반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사업장내의 재산
-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사업장내의 재산
- 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500명이상 1천명 미만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 4.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투자사업내의 재산
- 5.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외국인 투자사업내의 재산
- ⑤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25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장내의 재산
 - 2.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 500명 미만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 3.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투자사업내의 재산
 - 4. 전체 생산량의 7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체의 공장용지내의 재산

제50조중 “실·국·원장 등”을 “시설관리사등”으로 한다.

제51조제3호중 “기획관리실장·농업기술원장·해양수산출장소장 및 도의회사무처장의 관사”를 “시설관리사·기타 관사등”으로 하고, 제4호를 삭제한다.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 1. 사용대상 소속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제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 감면은 2000년 12월 31일까지만 이를 적용한다.
- ③(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 제23조의3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대부 계약 또는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한다.
- ④(매각대금의 감면) 제39조의4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매매계약분부터 적용한다.

11) 강원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11월 14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물품의 불용결정 절차중 타기관에 불용품 소요여부를 조회하는 경우 물품의 가격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불용품 소요조회 가격기준을 종전에 1천만원 미만으로 하던 것을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으로 함(안 제16조3항)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8년 11월 18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3일 제10차 회의에서 박수준 자치지원국장의 제안설명과 전정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1998년 12월 29일 제6차 본회의에서 조규병 내무위원회 간사의 심사보고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8년 12월 30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1999년 1월 16일 강원도조례 제 2678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1호중 “10백만원” 을 “2천만원” 으로 하고, 동조동하제2호중 “5백만원이상 1천만원미만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2)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시험·연구등에관한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12월 16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기관별로 재정운영하던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강원도행정기구 설치조례로 통합 전문개정하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3조(소관사무) 및 보건환경연구원법 제8조(수수료등)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약품, 수질, 대기, 토양 등에 관한 시험, 검사, 조사, 연구사무수행에 필요한 처리기준과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이 수행하는 시험·검사·조사·연구와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수수료의 징수방법 및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 시험·연구등이 불가능할 경우 신청서 접수거부 등(안 제5조)
 - 의뢰인이 부득이한 경우 시험·연구 등 취소로 수수료 반환 요청하는 경우 반환(안 제6조)
 - 외부기관 등이 의뢰한 연구용역 사업수행(안 제7조)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8년 12월 17일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8일 제6차회의에서 정 의호 보건환경연구원장의 제안설명과 서의승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및 답변뒤수정 안대로 가결되었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지적과 같이 안 제2조제2항의 신청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와 중복되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 답변요지

- 안 제8조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나 중요한 사안이 처리절차이기에 분명하게 근거마련을 위해 강조하기 위함이나 삭제하여도 운영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수정안의 요지]

- 수정이유 :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8조에 규칙에 정한다고 하였기 안 제2조제2 항의 신청처리절차를 규칙으로 정한다는 중복되므로 삭제하려는 것임.

— 수정주요골자

- 안제2조제2항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등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 로 정한다」를 삭제
- 본회의 심사 : 1998년 12월 29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이천규 교육사회위원회 간사의 심사보 고후 질의 및 토론없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8년 12월 30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1999년 1월 16일 강원도조례 제 2677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시험·연구등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시험·검사,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행사항) 연구원은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23조에서 규정한 식품·약품·수질·대기·토양 등의 시험·검사·조사·연구(이하 “시험·연구등”이라 한다)를 의뢰받아 처리한다.

제3조(수수료의 징수) ① 시험·연구 등의 수수료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징수하되 기준이외의 품목은 유사한 품목에 준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강원도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의 연구용역사업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시험·연구 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현지출장을 요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장공무원의 여비 및 시험기구 운반에 소요되는 경비를 징수한다.

④ 시험성적서 사본 등의 발급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4조(수수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3조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1. 부정식품, 의약품, 저유황사용지역 단속을 위한 경우
2. 법정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에 필요한 경우
3. 배출시설에 대한 정기 환경오염도 검사
4.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5. 민방위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정호의 수질검사
6. 도지사 또는 원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의 50%를 감경하여 징수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및 군부대에서 먹는물을 위하여 사용하는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단, 최초로 개발하여 먹는 물의 적부판정을 받기 위한 검사는 제외)
2. 읍·면·동의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

제5조(신청서 접수에 불응) 시험·연구 등의 장비 미확보 또는 검체이상등 사정에 의하여 시험·연구등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를 아니할수 있다.

제6조(수수료 등의 반환) 원장은 의뢰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연구 등을 취소하고 검체 및



수수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연구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연구용역사업) ① 원장은 외부기관 등으로 부터 의뢰받은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구용역사업중 연구원이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하여는 다른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3) 강원도립 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12월 15일 강원도교육감
- 제안이유 : 유치원 원아의 취원기회 확대를 위하여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신설하고 농촌지역의 이농현상에 따른 학생이 감소하는 지역과 증가하는 요인이 없는 지역의 유치원과 소규모학교의 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계획에 의하여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구 문	계	유 치 원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합 계	50	13	37			
신 설	4	4	-			
통·폐합	25	4	21			
분교장 개편	12	-	12			
명칭변경	8	5	3			
기타(번지부여)	1	-	1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8년 12월 16일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8일 제6차회의에서 김호준 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서의승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1998년 12월 29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이천규교육사회위원회 간사의 심사보고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8년 12월 30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1999년 1월 15일 강원도조례 제2679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의 유치원 명칭과 위치란중 “(원주시)”의 “북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란 다음에 “남원주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원주시 단구동 1588-2”을, “홍양초등학교 병설유치원”란 다음에 “둔둔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원주시 소초면 둔둔리 776”을 각각 삽입하고,
- “(홍천군)”의 “청량초등학교 병설유치원”란을 “서석초등학교 병설유치원”란 다음으로 하여 “청량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서석초등학교 청량분교장 병설유치원”으로 하며, “구만초등학교 병설유치원”란을 “화계초등학교 병설유치원”란 다음으로 하여 “구만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화계초등학교 구만분교장 병설유치원”으로 하고,
- “(횡성군)”의 “횡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성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횡성군 횡성을 곡교리 244”를 각각 삽입하며, “현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란과 “(영월군)”의 “관운초등학교 병설유치원”란, “금릉초등학교 병설유치원”란을 각각 삭제하고,
- “(정선군)”의 “문래초등학교 병설유치원”를 “임계초등학교 문래분교장 병설유치원”으로 하며,



“(화천군)”의 “대봉초등학교 병설유치원”란을 삭제하고, “명월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사내초등학교 명월분교장 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실내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화천군 사내면 명월2리 270”을 각각 삽입하고,

“(인제군)”의 “방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기린초등학교 방동분교장 병설유치원”으로 한다.

[별표 2]의 초등학교 명칭과 위치란중 “(춘천시)”의 “금산초등학교 덕두원분교장”란을 삭제하고,

“(원주시)”의 남원주초등학교 위치란중 “원주시 단구동 구곡택지개발지구 163블럭”을 “원주시 단구동 1588-2”로 하며,

“(강릉시)”의 “제비초등학교”란과 “(양양군)”의 “상평초등학교 갈천분교장”란을 각각 삭제하고,

“(삼척시)”의 “점리초등학교”란을 “도계초등학교 심포분교장”란 다음으로 하여 “점리초등학교”를 “도계초등학교 점리분교장”으로 하며, “미로초등학교 두타분교장”란을 삭제하고, “노곡초등학교”란을 “근덕초등학교 교곡분교장”란 다음으로 하여 “노곡초등학교”를 “근덕초등학교 노곡분교장”으로 하며, “하장초등학교 번천분교장”란을 삭제하고, “역둔초등학교”란을 “하장초등학교”란 다음으로 하여 “역둔초등학교”를 “하장초등학교 역둔분교장”으로 하며,

“(홍천군)”의 “내촌초등학교 연지분교장”란을 삭제하고, “항곡초등학교”란과 “청량초등학교”란을 “서석초등학교”란 다음으로 하여 “항곡초등학교”를 “서석초등학교 항곡분교장”으로 하며, “청량초등학교”를 “서석초등학교 청량분교장”으로 하고, “구만초등학교”란과 “구만초등학교 노일분교장”란을 “화계초등학교”란 다음으로하여 “구만초등학교”를 “화계초등학교 구만분교장”으로 하며, “구만초등학교 노일분교장”를 “화계초등학교 노일분교장”으로 하고,

“(횡성군)”의 “덕천초등학교”를 “안흥초등학교 덕천분교장”으로 하며, “현천초등학교”란과 “공근초등학교 가곡분교장”란,

“(영월군)”의 “봉래초등학교 삼옥분교장”란과 “연상초등학교 회원분교장”란, “관운초등학교”란,

“(평창군)”의 “대화초등학교 개수분교장”란과 “무이초등학교”란,

“(정선군)”의 “봉양초등학교 정덕분교장”란을 각각 삭제하고, “광하초등학교”란을 “정선초등학교”란 다음으로하여 “광하초등학교”를 “정선초등학교 광하분교장”으로 하며, “임

계초등학교 월탄분교장”란을 삭제하고, “문래초등학교”를 “임계초등학교 문래분교장”으로 하며,

“(화천군)”의 “화천초등학교 신명분교장”란, “대붕초등학교”란, “대붕초등학교 동촌분교장”란을 각각 삭제하고, “명월초등학교”를 “사내초등학교 명월분교장”으로 하며,

“(인제군)”의 “부평초등학교 수산분교장”란과 “부평초등학교 소치분교장”란을 각각 삭제하고, “방동초등학교”를 “기린초등학교 방동분교장”으로 하며, “방동초등학교 추대분교장”을 “기린초등학교 추대분교장”으로 하고, “방동초등학교 진동분교장”를 “기린초등학교 진동분교장”으로 하며, “서화초등학교 서흥분교장”란을 삭제하고,

“(고성군)”의 “송정초등학교”란을 “거진초등학교”란 다음으로하여 “송정초등학교”를 “거진초등학교 송정분교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강원도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12월 14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97. 1. 1 제정·운영중에 있는 기금운영관리조례에 대하여 일부조항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등 미비점이 발견되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기금운용관리규정 보완(안 제3조)
 - 기금을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하며, 도금고에 예치하도록 함
 - 도지사는 기금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함(안 제4조)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8년 12월 18일 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2일 제8차회의에서 박



세희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임병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1998년 12월 29일 제6차 본회의에서 김길정 관광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8년 12월 30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1999년 1월 16일 강원도조례 제 2675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내지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되 매년 조성되는 기금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금 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립 목표액이나 기간 등을 정하여 기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이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하는 다음 각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재해사전대비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2.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3.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4. 소하천 및 하천시설중 제방·수문·배수관·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등의 정비사업
5. 하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장은 제외한다) 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6. 수리시설중 배수장, 방조제, 용수로, 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
7.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에 한한다)의 정비사업

제5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지방 재정법시행령 제1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기금운용관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를 제9조로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기금운용 심의)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강원도정조정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② 제1항의 심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방재담당이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豫算案

1) 1998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11월 30일 강원도지사



○ 제안설명의 요지

—1998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802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 1,944억원보다 858억원이 증가한 규모임.

—일반회계는 1조 1,026억원으로 824억원이 증가 하였음.

- 세입예산은 총 1조 1,026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24억원이 증가 하였으나,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세수기반이 약화되어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596억원이 감소되었고 중앙지원 수입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 지정재원은 961억원이 증가되었음.

또한 수해복구 사업과 지방도 정비사업의 도비부담을 위하여 지방채 459억원을 추가 발행하였음.

- 세출예산에서 국고보조금은 실업대책 일환으로 지원되는 공공근로사업비와 폐기물매립시설 및 공단폐수 종말처리장 시설사업비, 수해복구사업비 등 총 914억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 사업은 지방도정비사업, 하수종말처리장사업, 오지 및 정주권개발 등 337억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 사업은 자전거도로정비, 생물산업지원센터건립을 위하여 37억원이 증액되는 등 중앙지원사업에 총 1,291억원이 증액되었음.

또한 투자유치기획단 전문직 신규채용 등에 따른 인간비와 제수당 등 법정필수경비 부족액 2억원과 자체사업인 '99동계아시아경기대회 준비를 위한 노르딕경기장 보강과 하천 정비사업비 등 연내 계상이 불가피한 사업비 7억원

건축재정운영 계획에 의한 실행예산 운영으로 총 49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삭감 정리함으로써 세수결합 대비와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였음.

— 특별회계는 1,776억원으로 34억원이 증가하였는바

- 도립 강원전문대학운영 특별회계는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만큼 일반회계 전입금이 감소되는 등 기정예산보다 5억원이 감소한 26억원이며,
- 춘천수렵장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원이 감소한 14억원으로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시설사용료가 감소되었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의 집행잔액과 물품구입비 등 절감 예산을 삭감 조정하였음.
- 공원 및 관광지개발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5억원이 증가한 54억원이며, 증가 내용으로는 중도관광지 영농보상비로 지역개발기금에서 10억원을 차입하여 '98사업으로 명시이월 하였었으나 감정이 이의제기에 따른 소송이 장기화되어 연내지급이 어렵기 때문에 관련예산을 세입 조정하여 지역개발기금 원리금상환 재원으로 11억원을 계상하였음.
-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5억원이 증가한 413억원이 편성되었는바

국고보조금 16억원과 이에 따른 도비 부담액 4억원이 증액되었고 '97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증가된 재원과 예비비를 조정하여 한시적 보호대상자 의료비와 과년도 진료비 부족사업비로 2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음.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8년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0일 제1차회의에서 권혁인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박종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및 답변위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

- 예비비 60억원을 감액한 사유와 이는 다른 세출예산의 증액을 하기 위한것 아닌가?
- 순세계 잉여금이 1회 추경시 증액하고 2회 추경시 많은 금액을 삭감한 이유는?
- 도의 총부채 규모와 도민 1인당 부채액 상환계획은?
- 도내 지방도와 군도의 노선수와 포장율은?
- 동해항 여객터미널 사업비 2억원의 감액사유는?
- 세수결함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계획은?

— 답변요지

- 예비비 삭감은 IMF관리 체제하의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경기 하락등으로 지방세등 세수결함에 따라 세출예산을 조정하기 위함임.
- 세원포착이 정확하지 못하였고 앞으로는 재정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초과계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 98. 6월말 현재 3,098억원이며 도민 1인당 부채액은 시군 지방채를 포함 57만원이고 전체 부채의 93%는 기금에서 융자받은 시군이나 기업체등이 상환하고 나머지 228억원은 장기채로 5년 내지 15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상환계획임.
- 97년말 현재 245개 노선 7803.6km로 포장율은 65.5%임.
- 금강산 관광유람선 출항지향으로 선정되면서 당초건축계획보다 2배정도 큰 835평 규모의 여객터미널을 신축하였기 때문임.
- 결산시까지 11월부터 설정, 운영하고 있는 특별 징수기간의 철저한 운영을 통하여 최대한



정수노력을 집중할 것임

- 본회의 심사 : 1998년 12월 16일 제5차 본회의에서 서종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추경예산안은 1998년 12월 16일 원안대로 가결되어 강원도지사에게 송부되었다.

[의결전문]

예 산 총 괄

- 199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총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 산 총 액	기 정 예 산 액	금 회
합 계	1,280,259,607	1,194,440,023	85,819,584
일 반 회 계	1,102,654,113	1,020,246,839	82,407,274
도립강원전문대학 운영 특별회계	2,601,300	3,116,100	△514,800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41,346,182	38,805,899	2,540,283
공원 및 관광지 개발관리 특별회계	5,352,871	3,865,090	1,487,781
춘천수렵장운영 특별회계	1,380,406	1,481,360	△100,954
공기업특별회계	126,924,735	126,924,735	

2) 1999년도강원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11월 11일 강원도지사

○ 제안설명의 요지

- 99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및 5개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9,568억 3천 8백만원으로써 98년도 예산액 1조 1,605억 8천만원보다 18%가 감소한 규모임.
- 일반회계는 98년 예산대비 26%가 감소한 7,962억 5천만원으로써,
 - 세입은 지방세 1,680억원, 세외수입 419억 3천 1백만원, 지방교부세 1,480억 7천 3백만원, 지방양여금 834억 8천 2백만원, 국고보조금 3,204억 6천 5백만원, 지방채 343억원 등으로 계상하였음.
 - 세출은 일반행정비 709억 4천 3백만원, 사회개발비 2,180억 6천 7백만원, 경제개발비 3,983억 1천 3백만원, 민방위비 403억 2백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 686억 2천5백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음.
- 특별회계는
 - 기타 특별회계로써 「도립강원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 37억 4천 7백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399억 8천 7백만원 「공원 및 관광지개발관리특별회계」 35억 5천 7백만원 「춘천수렵장운영특별회계」 9억 4천 1백만원 등 4개 회계 총 482억 3천 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로써 1,123억 5천 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음.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8년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1일 제2차회의에서 권혁인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박종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장시간에 걸쳐 질의 및 답변에 이어 12월 12일 제3차 회의를 속개 역시 장시간의 질의 및 답변이 있는 후 수정안대로 가결되었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

- 국제교류를 수행함에 있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빈 초청경비 등이 적절하게 책정 운영되는지?
- 예산편성시 의회삭감을 위해 30% 과다 편성하지 않는지?
- 내년도 세입예산중 지방교부세가 15% 감소한 사유는?
- 강원도 남북교류 기금과 관련하여 내년도에 2억원이나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이유와 투자



계획은?

- 자치지원국소관 복리후생비 예산이 98년도에 비해 28억원 감액된 이유?
-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대한 추진대책은?

— 답변요지

- 해외 지방정부들과 국제교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상호주의를 엄격히 적용하여 국제 행사의 초청인사는 행사와의 유관정도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초청하여 운영
- 예산요구 절차 등 중앙부처와 달리 도지사 아래의 보조기관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음.
- 정부의 99년도 세입예산이 감소하였고 98년도 내국세를 감액하면서 이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분을 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98년도에 감액하지 않고 99년도 내시분에서 감액하여 내시될 계획에 있기 때문임.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앞으로의 진전을 예상해 볼때 본 기금 또한 연차별도 상당한 금액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앞으로 본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남북 강원도간의 문화, 학술, 체육, 경제분야 등의 교류협력 사업에 지원될 것임.
- IMF체제속에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99년도 공무원 인건비 예산편성기준이 변경되어 월평균 봉급액의 250%를 지급하던 체력단련비가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임.
-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시장·군수 신청에 의하여 국비 80%, 도비 10%, 시군비 10%의 재원으로 95~2004년까지 10년간 1,000km를 목표로 현재 215km 완료했고 99년도는 87km에 82억을 투자함.

[수정안의 요지]

— 주요골자

- 일반회계 세출예산중에서
 - ▶ 기획관리 정책개발계획수립 용역비 - 100백만원
 - ▶ 기획관리 예산운영시책업무추진비 - 40백만원
 - ▶ 기획관리 예산운영사회단체보조금 - 100백만원
 - ▶ 기획관리 자동차관리시스템임차료 - 100백만원
 - ▶ 도시개발 소규모주민편의사업비 - 200백만원
 - ▶ 일반지역개발 소규모주민편의사업비 - 200백만원 등
 총 740백만원을 감액하여
- 일반회계

- ▶ 의정활동기록 전산화추진에 - 90백만원
- ▶ 생활체육사업 지원에 - 100백만원
- ▶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에 - 200백만원
- ▶ 의용소방대 운영에 - 30백만원
- ▶ 예산정책사업중
 - 여성순회교육에 - 10백만원
 - 여성지원봉사대 운영에 - 10백만원
 - 여성정책 토론회에 - 10백만원
- ▶ 나환자 진료장비에 - 30백만원
- ▶ 폐결핵 영양제공급에 - 30백만원
- ▶ 농약방제 개량마스크 공급에 - 30백만원
- ▶ 해외시장 개척에 - 30백만원
- ▶ 관광기념품 개발에 - 30백만원
- ▶ 관광여행상품 개발에 - 40백만원
- ▶ 교육지원의 특별회계전출금 - 30백만원
- ▶ 총 740백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 100백만원
 - 특별회계 세입·세출
- ▶ 도립강원전문대학 세입예산 일반회계 전입금과 세출예산 실습장 설치에 각각 100백만원을 증액 계상함
 - 일반회계 세입과 4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함
- 본회의 심사 : 1998년 12월 16일 제5차 본회의에서 서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의 심사보고후 질의 및 토론이 있는 뒤 수정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세입세출예산안은 1998년 12월 16일 수정안대로 가결되어 강원도지사에게 송부되었다.

[의결전문]

예 산 총 괄



□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 산 총 액
합 계	956,973,517
일 반 회 계	796,250,229
도립강원전문대학 운영 특별회계	3,847,065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39,986,726
공원 및 관광지 개발관리 특별회계	3,556,853
춘천수렵장운영 특별회계	941,040
공기업특별회계	112,355,604

3) 1998년도제2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11월 11일 강원도교육감
- 제안설명의 요지
 - 98년도 제2회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8,633억 4천만원보다 238억 7천만원이 감소된 8,394억 7천만원이며,
 - 세입은 보통교부금 140억 4천 2백만원 지방교육 양여금 311억 1천 6백만원이 감액된 반면 특별교부금 증액교부금 증액교부금 149억 7천 5백만원, 교육환경개선 교부금 44억원 국고 보조금 16억 6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세출예산은 인건비 134억 1천 1백만원, 운영비 11억 7천만원, 학교비 28억 4천 6백만원, 시설비 53억 9천 1백만원, 사학지원비 5천 1백만원, 기타 예비비 10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8년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4일 제4차 회의에

서 김호준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박종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및 답변이 있은후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

- 예술고의 시설예산 46억 5천 1백만원이 전액 삭감된 사유와 명시이월조서 누락 사유?
- 98년도 교육청에서 찾은 땅과 잃은 땅의 내역?
-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시군별로 3-5억원씩 삭감하면서 춘천시만 44억원을 증액한 사유?
- 연구시범학교 발표교 지원비와 영세학교 육성회 지원비 감액에 대하여

— 답변요지

- 1회 추경시 교육부에서 지원된 것으로 건립부지 확보와 공공시설 입지승인 및 환경성검토 설계용역등이 장시간 소요되어 98년도 공사집행이 불가하여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위하여 삭감. 99년도 당초 예산의 신규편성과 2차분은 2000년도에 편성할 계획으로 명시이월 미 작성
 - 찾은 땅은 양구군 원당초등학교 관사부지 4필지 1,530㎡를 되찾았으며 잃은 땅 없음.
 - 98. 9. 17 교육부가 98년도 현대화 시범학교로 춘천 신남초등학교 선정 통보 44억원을 특별교부하였기 때문임.
 - 교부금 및 양여금이 큰폭으로 감액되어 부득이 지원규모를 최소화하여 지원하고 잔액을 이번에 감액하였음.
- 본회의 심사 : 1998년 12월 16일 제5차 본회의에서 서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의 심사보고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예산안은 1998년 12월 16일 원안대로 가결되어 강원도지사에게 송부되었다.

[의결전문]

예 산 총 괄

- 1998년도 제2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각각 839,470,000천원으로 한다.



4) 1999년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11월 11일 강원도교육감
- 제안설명의 요지
 - 99년도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7,390억원으로써 98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243억 4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 세입은 국가부담금 수입 6,882억 4천 7백만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수입 43억 6천 4백만원, 자체수입 463억 8천 9백만원, 기타 등으로 편성되었음.
 -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세출예산 총액의 74.9% 교육위원회비 기관운영비가 1.8% 교육사업비 1.2% 학교비 8% 시설비 10.2% 사학지원비 3.6% 예비비 0.3%로 편성하였음.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8년 12년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4일 제4차 회의에서 김호준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박종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장시간 질의 및 답변에 이어 12월 15일 제5차 회의를 속개 역시 장시간에 걸쳐 질의 및 답변이 있는 후 수정안대로 가결되었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

- 학교폭력 추방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사회단체명과 지원내역?
- 98하반기 고등학교 급식확대 실적과 99년도 확대계획?
- 99년도 결식학생 예정인원과 지원계획은?
- 행정요원 1명의 국외연수비로 9천만원이 계상된 내역은?
- 체력단련비가 전액 삭감된 것이 일시적인 동결조치인자와 보상금 예산액이 증가한 사유는?
- 사학지원비가 본청예산과 시군 교육청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는데 이중편성이 아닌가?
- 관사구입비 1억 2천만원에 대해 설명

— 답변요지

- 광복회 강원도지부 1백만원, 민주시민교육회 1백만원, 자유총연맹 3백만원, 바르게살기운

- 동 강원도지부 6백5십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 98년도 65개교에 대해 91억 3천 5백만원의 예산으로 시설중에 있고 99년도 급식확대 대상은 30개교에 대한 신규급식비 약 5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12억원만 요구하였음.
- 올해 결식학생수 3,621명보다 13.7%정도 증가한 4,100여명으로 추정되며 지원예산은 국고 및 교육비특별회계 9억8천만원과 학교 및 교육청에서 후원운동을 추진하여 모금한 4억원 등 총 13억 8천여만원으로 지원할 계획임.
- 2년간 장기국의 연수를 시켜 지방교육행정 지원인력으로 활용하고자 교육부의 계획에 의거 현재 2년차 사업으로 학자금, 현지체재비, 의료보험료 기타 경비 등 1년간 소요경비로 환율이 유동적이고 인상요인 등을 감안 계상한 것임.
- 기본금을 동결하고 체력단련비는 전액 삭감하는 정부방침에 따라 각 시도 공통기준에 의거 편성되었으며 보상금이 44% 증가한 것은 자치단체 연금부담율이 1.9%에서 2.1%로 퇴직수당 부담금 요율이 상향 조정되어 증가하였음.
- 사립고등학교 및 사립특수학교 지원예산은 본청예산에, 사립초등학교와 사립중학교 예산은 시·군 교육청 예산에 편성되어 있음.
- 부교육감의 관사로 삼성아파트 30.8평의 개인소유 아파트를 전세 계약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급회계상 사유는 전세계약이 99. 2. 23일에 종료됨에 따라 전세금 반환 후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반영한 것임.

[수정안의 요지]

- 주요골자 : 세출예산중 예비비에서 17억원을 감액하여 17개 교육청 세출예산 학교비의 일선교단 지원 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시군교육청별 1억씩 17억원을 증액계상
- 본회의 심사 : 1998년 12월 16일 제5차 본회의에서 서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의 심사보고후 질의 및 토론후 수정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예산안은 1998년 12월 16일 수정안대로 가결되어 강원도지사에게 송부되었다.

[의결전문]



예 산 총 괄

1999년도 강원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세입·세출 각각 739,000,000천원으로 한다.

다. 同議案

1)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10월 8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금회에 제출하는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1999년도 계획으로써 강원도 국제관광박람회는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풍요로운 미래의 삶이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국제관광EXPO 주제관건립 및 상징탑건설 부지를 취득하고 국가 공원시책 사업으로 시행하는 설악산국립공원 탐방 안내센터 건립주지에 편입된 도유지 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금회제출한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구 분		건 명	수 량	면 적	금 액
일반회계	취득	계	2건	23,350	17,547,525
		○ 국제관광 EXPO 주제관 건립부지 지하1층, 지상4층	1필지	15,900	11,948,850
		○ 국제관광 EXPO 상징탑 건립부지(전망대 지상 15층)	1필지	7,450	5,598,675
특별회계	매각	○ 설악산국립공원공원관리 사무소건물 및 부지	6필지 (1동)	8,731	1,669,454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8년 10월 13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3일 제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6차 회의에서 박수준 자치지원국장의 제안설명과 전정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및 답변에 이어 면밀한 심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현지 확인후 1998년 11월 30일 제96회 강원도의회정기회 내무위원장 제2차 회의에서 질의 및 답변이 있는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

- EXPO 주제관 및 상징탑 매입부지 평당 단가가 너무 높은 것은 아닌가?
- EXPO를 위하여 속초시에서 부지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내실있는 심사를 위하여 현지 확인이 필요함.

— 답변요지

-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한 것이며 현재 거래도 이정도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속초시의 재정 여건과 본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강원도에서 주제관과 상징탑 부지매입이 현실적으로 절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본회의 심사 : 1998년 12월 16일 제5차 본회의에서 황영철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계획안은 1998년 12월 16일 원안대로 가결되어 강원도지사에게 송부되었다.

[의결전문]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강원도가 제출한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지방재정 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



래와 같이 의결한다.

2) 99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11월 12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본 안건은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복지향상 및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95년 7월 1일부터 발행하고 있는 전국자치복권의 99년도 발행계획을 지방재정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도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 주요골자
 - 발행기관 :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1 특별시, 6 광역시, 9도 공동발행)
 - 판매지역 : 전국
 - 발행형식 : 즉석식, 추첨식, 전자식
 - 발행규모 : 2,500억원(즉석식 500억원, 추첨식 1,000억원, 전자식 1,000억원)
추첨식 및 전자식은 승인될 경우 99. 7. 1부터 발행
 - 예상수익 : 50억원(판매액의 28.8%)
 - 발행기간 : 99. 1. 1 ~ 99. 12. 31(1년)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8년 11월 13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8일 제12차 회의에서 권혁인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정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1998년 12월 29일 제6차 본회의에서 조규병 내무위원회 간사의 심사보고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계획안은 1998년 12월 30일 원안대로 가결되어 강원도지사에게 송부되었다.

[의결전문]

'99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1999년도 전국자치복권을 다음과 같이 발행할 것을 지방재정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결의한다.

1. 발행기관 :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1특별시 6광역시 9도)
2. 발행종류 : 전국자치복권
3. 발행규모 : 2,500억원(즉석식 500, 추첨식 1,000, 전자식 1,000)
4. 발행형태 : 즉석식, 추첨식, 전자식

○ 발행형식별 발행액

발 행 형 식	발 행 기 간	발 행 액	발 행 주 기
즉 석 식	99. 1. 1 ~ 12. 31	500억원	1 ~ 2월
추 첨 식	99. 7. 1 ~	1,000억원	매 주
전 자 식	99. 7. 1 ~	1,000억원	매 주

5. 금액구성 및 수입금 배분

○ 복권금액의 구성

계	당 첨 금	판매수수료	발행비용	수익금
500원	256원	50원	50원	144원
100%	51.2%	10%	10%	28.8%

○ 판매대행 : 제일은행 (농협중앙회 · 지방은행)

○ 수익금 배분 : 협의회 규약에 의거 배분

(복권 판매액, 시군구수, 인구수 등 고려)



라. 建議案

1) 태백시동점동교도소유치건의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11월 27일 손석암의원외 12인
- 제안이유 : 광산지역 폐광조치가 시작된지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대체산업 하나없는 소외된 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알리고 교도소 유치결정 후에 발생될 반대 민원을 없애고자 동점동민 절대다수(960명)의 서명을 받아 타 지역에서는 기피하는 교도소라도 유치하여 낙후된 지역경제의 회생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태백 폐광지역에서도 가장 오지인 동점동 주민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타 지역에서 협오시설로 여기는 교도소라도 유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교도소유치 예정지 현황은 동점동 173번지의 14필지 86,951㎡(26,302평)로 주위의 환경사지를 절토하면 4~5만평의 부지확보가 수월하며,
 - 특히 동 위치는 인근지역보다 지가가 저렴하고 산으로 둘러 쌓여있어 보안성이 뛰어난 지역임.
 - 교도소 설립시 사업 효과성은,
 - 3,000~5,000명 정도의 수형인을 수용할 때 약 500명 정도의 교도관을 필요로 하므로 일가구 3인 가족으로 본다면 1,500명 정도의 인구증가와 면회객들의 방문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기대
 - 재소자들의 식생활에 필요한 주·부식의 구매로 인근농민과 상인들의 소득향상 기대
 - 교도소설립시 필요한 인력의 취업으로 고용창출 효과기대
 - 수형시설안의 단순 조립공정의 공산품 생산을 위한 지역 중소기업체의 협력으로 재소자들의 기술습득 및 지역기업체 활성화 등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8년 11월 27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8일 제12차 회의에서 손석암의원의 제안설명과 전정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1998년 12월 29일 제6차 본회의에서 조규병 내무위원회 간사의 심사보고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건의안은 1998년 12월 29일 법무부장관에게 건의되어 1999년 1월 14일 국가재정 형편상 현재는 어렵고 향후 법무발절 장기계획 사업추진시 참고하겠다고 회시되었다.

[의결전문]

태백시동점동교도소유치건의안

태백 폐광지역에서도 가장 오지인 동점동 주민은 생존권 확보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타지역(특히 안양)에서 혐오시설로 여기며 지역정서와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생각하여 이전 해줄 것을 요구하는 교도소라고 위치하고자 '98년 7월 16일 교도소 유치 추진발대식을 동점동 사무소 회의실에서 가졌던 바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교도소 유치결정이 난 후에 발생될 반대 민원을 없애고자 동점동민 절대다수의 서명을 받아 강원도의회 차원에서 다루고자 본 건의서를 발의하는 바입니다.

실상 어느누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교도소를 유치시키는 것을 반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 국토가 IMF라는 기막힌 현실속에 “산 입에 거미줄 칠까?” 라는 속담을 “칠 수 있다” 로 바뀌어야 할 처지이다 보니 다른 지역에서 결사 반대하는 핵폐기물 조차도 유치하겠다고 환영의사를 표하는 실정인 바,

교도소 유치라면 기꺼이 반겨야 하는 서글픈 현실에 당면해 있으며, 또 생활의 방편으로 꼭 유치되기를 동점동 주민은 간곡히 갈망하여 마지 않습니다.

현재 동점동 침례교회 마태원 목사가 위원장으로 있으며, 양세철, 방춘만 등 20여명이 주축이 되어 오매불망 갈망하고 있습니다.

교도소 설립시 사업 효과성으로 보았을 때

—3,000 ~ 5,000명 정도의 수용인을 수용할 때 약 500명 정도의 교도관을 필요로 하며,



이들의 주거를 위한 APT 500세대가 필수적으로 들어 설 것으로 예상함으로서 일가구 최소 3인 가족으로 본다면 1,500명 정도의 인구증가와 학생수가 늘어나고 지역상권의 활성화가 기대됨.

- 면회객들의 방문으로 인한 지역상권의 활성화도 기대
- 재소자들의 식생활에 필요한 주, 부식의 구매로 인근 농민과 상인들의 소득향상 기대
- 교도소 설립시 필요한 인력의 취업으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 기대
- 수형시설안의 단순 조립공정의 공산품 생산을 위한 지역중소기업체의 협력으로 재소자들의 기술습득 및 지역기업체의 활성화
- 이외에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며, 태백시 전성기에 12만 5천명의 인원이 이제 6만 밖에 안되는 실정 중에서도 동점동은 9,044명에서현재 1,680명으로 감소된 바, 그 감소율은 무려 80%가 넘는 실정이므로 1,500-2,000명 정도의 인원이 불어난다면 참으로 기대효과는 상당하리라 여겨 집니다.

교도소유치 예정지 현황은 동점동 173번지 외 14필지(속칭=말바드리) 면적은 86,951㎡(26,302평)이 되며, 주위의 환경사지 임야자락을 절토하면 4-5만평은 어렵지 않게 확보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교도소를 유치하고자 하는 위치는 인근지역보다 저렴한 지가와 산으로 둘러쌓인 요새로 보안성이 뛰어나고 기존 도로에서 1km 미만 남짓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교통이 편리한 잇점이 있습니다.

지난 7월 6일 도에서 법무부에 교도소 신설시 강원도 유치를 희망한 결과 향후 교도소 신설시, 우리도와 협의하겠다는 회신('98. 7. 16)을 받은바도 있음을 알고 있는바 폐광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고 낙후지역의 경제회생을 도모코자 교도소 유치를 건의하오니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함태탄광광구재개발을위한제한법개정건의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11월 27일 손석암의원외 9인
- 제안이유 : 석탄산업이 국가경제 부흥에 크게 기여하여 왔지만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태백지역 경제가 크게 위축되어 있는 지금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는 심부화로 인해 2-3

년이면 생산라인이 자동마감되어 지역경제가 몰락하게 될 우려가 있는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원이 이루어져 수직갱도를 설치하여야 하나 수갱작업이 될 때까지 장시간이 소요되어 인근에 있는 함태탄광을 반드시 재개발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석탄산업법 제39조 6항(광업권의 출연제한)을 개정하여 고원관광 도시기반이 구축될 때까지 작업여건을 지속시키고 또한 38국도, 35국도를 조기 착공하여 지역관광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지역경제의 몰락을 막기 위해 건의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석탄산업이 국가경제 부흥에 크게 기여하여 왔지만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태백지역 경제가 크게 위축되어 있음.
- 태백시 전체 경제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장성광업소의 경우 지표에서 수직으로 975m가 내려가 있어 심부화로 작업 여건이 어려우며, 정부지원의 둔화로 심부개발이 되지않아 2-3년이면 생산라인이 자동 마감된 실정에 있어, 정부지원이 이루어져 수평작업이 될 때까지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의해 폐광된 함태광구를 통합 개발하고자 하나, 함태탄광은 석탄산업법 제39조6항(광업권의 출연 제한) 정부의 폐광대책비 지급하에 소멸된 구역에 대하여는 「석탄 및 이와 동일한 동일 광상중에 보존하는 다른 광물을 대상으로하는 광업권 설정의 출원을 할 수 없다」는 법에 저촉이 되므로, 석탄산업법 제39조 6항을 고쳐 장성광업소가 고원관광 도시기반이 구축될 때까지 작업여건을 지속해 주기 바라며,
- 언젠가는 광산은 없어질 것이고, 또 없어져야 하며, 그 때를 대비해서 38번국도와 31번 국도, 35번국도를 조기 착공하므로 지역관광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하여 대체 산업 육성 후, 폐광시켜 줄 것을 강원도의회 의원 전원의 뜻을 모아 건의하려는 것임.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8년 11월 27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4일 제8차 회의에서 손석암 의원의 제안설명과 이수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및 답변후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

- 93년 5월 석탄산업합리와 정책에 의해 함태탄광이 폐광되었을때 정부에서 지원한 금액은?



· 함태탄광 폐광사유가 경제성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정부시책에 의한 것인지?

— 답변요지

· 폐광대책비로 근로자에게 10개월 임금 88억원과 업체시설 보상금 14억원이 지원됨.
· 80년대 당시 질 좋고 경제성이 좋았으나 노조가 도급제를 유급제로 전환을 요구하여 유급제로 하다보니 근무성과가 저조해지고 탄광경기가 침체되는 등 복합적 원인으로 폐광되었음.

○ 본회의 심사 : 1998년 12월 29일 제6차 본회의에서 엄문섭 산업경제위원장의 심사보고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건의안은 1998년 12월 29일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국회산업자원위원회에 건의되어 1999년 1월 7일 현재의 석탄수급상황등으로 향후검토 사안임을 회시되었다.

[의결전문]

함태탄광광구재개발을위한제한법개정건의안

60년대 이전 암울했던 우리 농경정책의 빈약성으로 온 국민이 기아에서 허덕이던 생활에서 선진 도약의 산업사회로, 에너지원의 빈곤으로 온 산천을 황폐화 시켰던 시대에서 푸르른 산과 들로, 성냥개피 하나를 생명의 불씨로 여겨오던 시대에서 최첨단 반도체, 인터넷 과학문명에 이르기까지 그 발전의 초석이 되어 왔던 광산개발이 99년을 기점으로 몰락의 상태로 돌입했습니다.

70년대 80년에 걸친 극심한 유류과동시 국가경제의 존폐가 우려되었지만, 한달에 한번만 쉬고 29 일을 불개미처럼 광부들은 말없이 일해 왔습니다.

그 결과 경제는 부흥했었지만, 지금도 태백시 황지동 바람불이 산자락엔 탄을 캐다 순직한 3,958명 영령들이 위령탑에 안치되 있고, 불구가 된 광부들이 수십만명, 불치의 병인 진·규폐증에 걸려 죽을 날만 기다리는 환자가 3만명이 넘습니다.

실제 총격을 벌이는 전쟁터보다도 더 많은 순직 광부들이 속출했지만, 화장실 갈때와 올때의 태도를 보이는 정부정책에 실로 실망을 금할 길 없습니다.

현재 장성광업소가 위치한 곳의 지표는 해발 600m 정도이며, 지표에서 수직으로 975m 내려가

있어(해저 400m) 심부화로 작업여건이 어려우며, 무엇보다 정부지원의 둔화로 심부개발이 되지 않아 2~3년이면 현재 생산라인(line)이 자동마감 되는 실정입니다.

더 이상의 개발을 위해서라면 해저 400m에서 다시 수직갱도를 개설해야 하는데 비용이 2천억 이상으로 추정되며 완공기간은 약 5~6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정부지원이 이루어져 수갱작업이 될 때까지 인근에 있는 함태탄광을 재개발하지 않으면 태백시 전체경제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정성광업소가 멀지않아 석탄산업의 박물관으로 남고 말것이며, 이로 인하여 태백시 경제는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태백지역경제가 최악의 경우로 닥치기전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와 '93년 5월에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에 의해 폐광된 함태광구를 통합개발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서 다음 사항을 건의 합니다.

- 석탄산업법 제39조6항을 고쳐 장성광업소가 고원관광 도시기반이 구축될 때까지 작업여건을 지속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언제인가는 광산은 없어질 것이고 또 없어져야 하며, 그때를 대비해서 38번 국도와 31번 국도, 35번 국도를 조기착공하므로 지역관광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하여 대체산업 육성후, 폐광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함태탄광은 석탄산업법 제39조6항(광업권의 출연제한) 정부의 폐광대책비 지급하에 소멸된 구역에 대하여는 석탄 및 이와 동일 광산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대상으로 하는 광업권 설정의 출원을 할 수 없다는 법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정해진 법이 영원해야 한다면, 지금 우리는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대적 변천에 따라 시대가 요구하는 사항에 부응할 수 있는 것이 법의 근본 취지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에 폐광 조치된 다른 광산도 모두 살려야 하는 형평성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석탄공사는 국영기업체라는 미명아래, 대한석탄공사법 제10조에 의거 석탄가공, 연구, 근로자의 교육훈련 밖에 할 수 없었고, 이와는 반대로 민영탄광은 광산을 발판으로 수 없는 계열기업을 확산해서 특히 강원산업같은 곳은 굴지의(30년 그룹) 재벌이 되어 있습니다.

동원탄좌, 삼척탄좌 등 이제 그들은 광산이 아니어도 버티어 갈 수 있는 기반조성을 다 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민영탄광에 대한 혜택은 이미 광산개발 초기부터 주어 왔던 것이므로, 미래의 광산몰락에 대비할 수 없었던 석탄공사에 대해 이제쯤은 돌파구를 찾아준다 해도 형평성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됨에 따라 지역경제의 몰락을 막기 위해 강원도의회 전체의원의 뜻을 모아 강력히 건의합니다.



3) 농 어촌 특별 세 존 치 촉구에 관한 건 의 안

가) 제 안

- 제안이유 및 제안자 : 1998년12월24일 산업경제위원장
- 제안이유
 - 93년12월15일 UR협상결과 침체된 농어촌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농어촌의 새로운 발전전기를 마련하고자 기존의 42조원 투자계획과는 별도로 10년동안 15조원을 농어촌에 추가 지원토록하고 이를 위해 94.8.1일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게 되었으며 본 재원으로 농어업 경쟁력 강화 분야 등 당면한 사업에 투자한 결과 우리 농어촌 곳곳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 조세체계 간소화라는 명목으로 정부 당국의 「농어촌 특별세」 폐지 방침은 가뜰이나 농어가 부채 등 어려운 농어촌에 투자 축소라는 농어업인들의 심한 반발과 기투자한 사업의 효율성 저하 등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될 것이므로 「농어촌특별세」 폐지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존치하여 줄것을 촉구하려는 것임.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8년12월24일 산업경제위원회 제8차회의에 상정되어 이연우위원의 제안 설명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1998년12월29일 제6차본회의에서 염문섭산업경제위원장의 심사보고후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건의안은 1998년 12월 29일 재정경제부, 농림부, 국회경제위원회에 건의되어 1999년 9월 20일 농특세가 폐지되더라도 별도계정설치등으로 사업재원확산에 노력하겠다고 회시되었다.

[의결전문]

농 어촌 특별 세 존 치 촉구에 관한 건 의 안

정부에서는 UR협상 타결로 쌀 시장을 개방해야 하는 등 WTO체제로 들어감에 따라 농업인들이 큰 충격을 받아 영농의욕이 상실되고 이농현상이 심화되면서 휴경농지의 증대 등 우리 농업이 총체

적 위기에 처하자,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그리고 농어업인복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농어촌을 살려야 한다는 절실한 상황에서 범 국민적 공감대가 조성되어 농어촌 부흥을 위한 목적세인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여 '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동안 매년 1조5천억원씩 총 15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농특세를 재원으로 다양한 사업에 투자한 결과 지역전문 농업인의 육성, 환경 농산물 생산기반의 확충, 대형기계화 영농을 위한 기반조성, 산지유통 시설확충, 농촌지역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 농어촌 도로 및 주택계량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IMF체제하에서 금융분야 및 기업분야의 구조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지출이 늘면서 재정적자가 심해짐에 따라 제정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명목과 조세체계 간소화 라는 미명아래 「조세체계 간소화에 따른 세법 등의 조정에 관한 임시특례조치법률(안)」을 제정하여 「농어촌특별세」를 폐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초 '95년부터 2004년까지 중장기 10개년 계획대로 설계되고 추진되어온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사태가 생기며, 지금까지 투자한 사업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고 계속투자를 할수 없어 농어업경쟁력에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우기 식량자급기반의 불안정과 농가부채 규모의 증가 등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점에서 「농어촌특별세」의 폐지는 농어업부문에 대한 투자와 농어촌경제를 위축시키고 농어업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정책이며, 농어업 투자의 축소외지의 표현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어 농어업인들의 심한 반발 등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벼 냉해와 농작물 등에 많은 피해를 입는 등 농어촌 경제가 타격이 많은 이때에 정부 당국의 「농어촌특별세」 폐지 방침에 대한 논의가 있음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되며,

당초 계획대로 2004년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계속 존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농어촌특별세」 폐지 방침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150만 도민과 함께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4) 관광진흥개발기금지원대상확대건의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12월14일 전인택의원외 10인
- 제안이유 : 한국관광의 1번지 강원도는 천혜의 아름다운 경관과 관광자원, 그리고 유서



깊은 문화전통을 갖고 있는 지역으로서 체계적인 관광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구체화하고 널리 알리기 위하여 우리도 속초시에 「99국제관광박람회」를 유치하는 등 관광산업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 해야할 관광진흥개발기금이 대기업체 위주로 지원되고 있어 제도의 완화와 융자금의 확대지원을 요구하려는 것임.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8년 12월14일 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22일 제8차 회의에서 전 인택위원의 제안설명과 임변환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및 답변뒤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

- 본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 답변요지

- 본 건의안의 채택은 강원관광의 도약을 가져올 수 있는 시기적절한 건의안으로 보며 향후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사항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 본회의 심사 : 1998년12월29일 제6차본회의에서 김길정관광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건의안은 1998년 12월 29일 문화관광부에 건의되어 1999년 9월 27일 불가로 회시되었다.

[의결전문]

관광진흥개발기금지원대상확대건의안

정부는 지난 '72년 12월에 관광기본법에 근거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제정하여 3차례에 걸친 개정을 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법제정의 목적을 살펴보면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지원을

개발하여 관광사업의 지도 및 육성을 도모함으로써 관광진흥에 기여함과 아울러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여 관광산업에 지원함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의 1번지 강원도는 천혜의 아름다운 경관과 관광자원, 그리고 유서깊은 문화전통을 갖고 있는 지역으로서, 체계적인 관광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구체화하여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서 관광산업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관광자원의 철저한 관리와 홍보에 역점을 두고 관광의 1번지인 강원관광을 조성하기 강원도민 모두가 뛰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기암절경의 아름다운 산과 동해의 푸른바다, 맑고 깨끗한 강과 호수의 어울어진 전혜의 자연비경, 대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즐길 수 있도록 개발된 등산, 쾌적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잘 갖추어진 관광호텔, 휴양콘도미니엄의 숙박시설 등 관광자원성 면에서 다른 도와는 차별화되는 가장 우수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동계아시아경기대회와 '강원도국제관광엑스포를 개최를 겸하여 내년을 「강원방문의해」로 정하고 관광활성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강원도 관광의 질을 한단계 높이고, 도약할 수 있는 기반조성과 아울러 국내외 관광객을 강원도로 유치하기 위한 사업을 위하여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관광산업이 우선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하지만 지금의 현 실정은 그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IMF라는 국제통화기금체계하에서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운영자금을 구하지 못하고 도산하고 있음은 새삼 거론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관광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며 관광호텔, 관광단지, 여행업 등 대규모 사업장은 그래도 현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소규모 관광사업체, 즉 숙박시설, 상가시설, 관광특구내의 문화·체육시설운영, 관광도산품의 생산 및 판매업 등 영세업체는 하루 멀다하고 도산하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도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해 놓고 대기업체 위주로 지원하고 있는 현 기금운용의 문제가 상당히 크다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관광진흥개발기금관리및운용요령에 근거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시설 건설 및 개·보수 자금」, 「국민관광진흥사업자금」, 「관광사업체 운영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운용되고 있으며, 이중 「관광사업체 운영자금」의 경우 그 지원대상은 일반여행업, 카지노업, 외국인전용 기념품 판매업, 국제회의용역업체에 한하여 지원토록 규정하고, 최근 경영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중소 관광업체는 운영자금의 융자·지원혜택은 엄두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93년부터 '98년까지 6년동안 매년 도내 관광업체에게 지원된 기금의 대부분은 22개업체에 3



백99억8천만원 규모로 대형업체 위주로 기금이 지원 되었으며,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연리6% 4년거치 5년상환 또는 2년거치 4년상환을 조건으로 시중은행의 융자 조건보다 유리하지만 호텔, 국제회의시설, 관광단지등의 문화 및 상가시설, 카지노 등 지원대상이 제한되고 상환능력 평가등으로 소규모 숙박업체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IMF 자금지원 체제 이후 관광객의 격감으로 경영구조가 취약한 중소 관광호텔 및 업체들은 존폐의 위기에 이르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될 시 지방단위의 외국인 관광객유치에 많은 차질이 예상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관광업체에서는 지원자금 확대와 자금지원 요건을 완화하여 많은 업체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관계부처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데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현상태가 계속될 경우 관광산업의 미래는 암담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광진흥개발기금중 「운영자금」이 일반여행업, 카지노업, 국제회의 용역업, 외국인 전용 기념품판매업(관세청허가 면세점 제외) 등에 한정·지원되고 있는바, 영세한 시설규모를 갖추고 있는 관광업체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으나, 「운영자금」의 융자·지원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많은 중소 관광업체들에게 운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다음사항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 1) 기금대여업무 취급을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 제3조에 의거 한국산업은행만이 취급하고 있어, 사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을뿐아니라 지원시기는 연간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만 지급되고 있어 신규승인사업체의 융자시기 등 일실 사례가 빈번하므로 시중은행에서 년중 어느때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
- 2) 「운영자금」의 융자지원 대상을 관광특구지역내 관광호텔, 광역시를 제외한 시·도 소재 관광업체중 종사원 200인이하의 중소관광호텔 및 모텔급 숙박시설에도 지원범위 확대
- 3) 관광특구지역에 한하여 일반숙박시설(일반호텔, 여관, 민박 등) 및 음식점(모범음식점 등) 등의 건설 또는 개수자금을 융자
- 4) 관광안내표지판, 화장실, 관광안내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자금의 보조확대
- 5) 외국인 관광객유치를 위한 홍보사업비 및 관광식품 개발사업비의 보조

강원도는 관광지원성 면에서 가장 우수하고 대규모 이벤트의 준비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여건은 조성되어 있으나 이들의 수용에 필요한 숙박 시설 및 기반시설 미비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와 지원을 확대해 줄것을 강원도민의 뜻을 모아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第 6 節 第97回 臨時會

1. 概 況

가. 開 會

제97회강원도의회임시회는 지난 2월 11일 황영철의원외 15인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자로 의장이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9일간의 회기로 1999년 2월 19일 개회하여 2월 27일 폐회하였다.

나. 議事日程

1) 本會議

가) 제1차 본회의 : 1999년 2월 19일(금)

- 제97회강원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 도지사및교육감신년인사
- 4분자유발언(정인수, 김원기의원) 의견
- 신상발언(신명선의원) 의견
- 의사진행발언(황영철의원) 의견
- 휴회의건

나) 제2차 본회의 : 1999년 2월 27일(토)

- 강원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 강원도의회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 강원도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 강원도민제안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자연학습원운영조례안
- 강원도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 1999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지방채발행계획안
- 강원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1지역1명품특화사업육성기급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한일어업협정에따른어업인보호대책건의안
- 신상발언 (정인수의원) 의건

2) 運 營 委 員 會

가) 제1차회의 : 1999년 2월 19일(금)

-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 1999년도의회운영기본계획안
- 제97회강원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나) 제2차회의 : 1999년 2월 24일(수)

- 1999년도업무보고(의회사무처)
- 강원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철회동의안건
- 강원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 강원도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 제98회강원도의회임시회회기협의안건

3) 內 務 委 員 會

가) 제1차회의 : 1999년 2월 20일(토)

-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 1999년도 업무보고

나) 제2차회의 : 1999년 2월 22일(월)

- 1999년도 업무보고(공보관실)

다) 제3차회의 : 1999년 2월 23일(화)

- 1999년도 업무보고(소방본부)
- 강원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라) 제4차회의 : 1999년 2월 24일(수)

- 1999년도 업무보고(공무원교육원)

마) 제5차회의 : 1999년 2월 25일(목)

- 1999년도 업무보고(자치지원국)
- 강원도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 강원도조례증개정조례안
- 강원도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바) 제6차회의 : 1999년 2월 26일(금)

- 1999년도 업무보고(기획관리실)
- 강원도민제안조례증개정조례안

4) 敎育社會委員會

가) 제1차회의 : 1999년 2월 20일(토)

-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 1999년도 업무보고(여성정책실)



나) 제2차회의 : 1999년 2월 22일(월)

- 1999년도 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다) 제3차회의 : 1999년 2월 23일(화)

- 1999년도 업무보고(환경복지국)

라) 제4차회의 : 1999년 2월 24일(수)

- 1999년도 업무보고(도립강원전문대학)

마) 제5차회의 : 1999년 2월 25일(목)

- 강원도자연학습원운영조례안
- 강원도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 건설폐기물처리장적정통보철회에관한청원

바) 제6차회의 : 1999년 2월 26일(금)

- 위원회의사일정의건
- 1999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지방채권발행계획안
- 1999년도 업무보고(강원도교육청)

5) 産業經濟委員會

가) 제1차회의 : 1999년 2월 20일(토)

-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 강원도 1지역 1명품특화사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증개정조례안
- 강원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나) 제2차회의 : 1999년 2월 22일(월)

- 1999년도업무보고(국제협력실)

다) 제3차회의 : 1999년 2월 23일(화)

- 1999년도업무보고(산업진흥국)

라) 제4차회의 : 1999년 2월 24일(수)

- 위원회의사일정변경의건
- 한일어업협정에따른어업인보호대책건의안
- 1999년도업무보고(해양수산출장소)

마) 제5차회의 : 1999년 2월 25일(목)

- 1999년도업무보고(농정산립국)

바) 제6차회의 : 1999년 2월 26일(금)

- 1999년도업무보고(농업기술원)

6) 觀光建設委員會

가) 제1차회의 : 1999년 2월 20일(토)

- 의사일정결정의건

나) 제2차회의 : 1999년 2월 22일(월)

- 1999년도업무보고(국제대회지원단)

다) 제3차회의 : 1999년 2월 23일(화)

- 1999년도업무보고(관광문화국)

라) 제4차회의 : 1999년 2월 24일(수)

- 1999년도업무보고(국제관광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처)

마) 제5차회의 : 1999년 2월 25일(목)



- 1999년도업무보고(건설도시국)

다. 議會活動

1) 本會議

가) 도지사및교육감신년인사 : 제1차본회의

- 김진선도지사 : 새로운 밀레니엄문턱에서 백년대계 천년지계를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여 보다 주체적이고 혁신적이며 실리적인 도정을 통해 세계화, 지식정보화 분권화에 대응하면서 질과 환경과 인간화 시대를 생각하는 역동적이고 격조 높은 도정을 펼치고자 노력할 것이며, 특히 21세기적인 자치행정수요, 새밀레니엄시대의 도민정신을 창출해 낼수 있는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온 정성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 김병두교육감 : 98년은 열린교육과 수준별, 능력별 학습지도를 정착시킴으로써 학생들의 창의력 학습지도를 정착시킴으로 학생들의 창의력과 사고력을 증진하는 한편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배양과 다양하고도 현장중심의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방법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금년에는 도덕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미래사회의 인재육성을 강원교육의 지표로 삼아 바른 인성함양을 위한 덕성교육, 다양성과 경쟁력을 갖춘 창의성교육, 21세기를 주도할 열린인간교육 그리고 학교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지원행정을 구현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하였다.

나) 4분자유발언 : 제1차 본회의

- 정인수위원 : 강원전문대학 98년 해양수산학과 교수채용 모집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이학박사 이 아무개로부터 교수채용결과가 불공정하다는 진정서를 접수하고 진상파악에 착수한 결과 교수채용과정과 결과에 커다란 의혹이 있다는 심증을 굳히게 되었다. 사례로 97년 교수채용시에는 중앙일간지 및 지방지 등 네곳에 교수채용 공고를 냈음에도 98년에는 중앙지 한 곳 그것도 많은사람들이 볼 수 없는 지면을 의도적으로 이용공고하여 의혹을 불러 일으키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심사위원들 중 일부위원은 전공경력도 없는 무자격자가 심사를 하였고, 또한 일반적으로 대학의 심사공개 강의의 경우 40이상 실시함에도 겨우 10분으로 제한하여 객관적인 측정이 결여되었다. 따라서 강원전문대학을 감독할 책

임이 있는 지사에서 공식으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철저한 특별감사를 요구하였다.

- 김원기의원 : 강원도의 내일은 관광산업으로 승부해야 한다는 결론에 따라 차별화된 강원도적인 관광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등산로, 산책로, 도로변 공원등의 주변을 우리꽃으로 조성하는 「우리꽃길」 만들기를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꽃으로 조성할 경우 첫째, 외국꽃 수입에 따른 예산의 절감과 둘째 야생화와 다년생 야생목으로 대체하므로 관리비가 절감되고 셋째 개화기가 각기 다른 1년생 화훼류와 다년생 관목으로 파종식재하므로 계절별로 다양한 꽃을 관상할 수 있게 할 수 있고 넷째, 우리꽃의 아름다움과 화훼산업의 발전을 기여하며 다섯째, 약초와 허브를 얻는 등 지역풍토에 맞는 식물을 심어 농가소득에도 기여하며 여섯째,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하는 노동력을 유인할 수 있어 고용창출에도 기여하는 효과를 갖을 수 있다.

이러한 「우리꽃길」 가꾸기에는 기후와 토양의 조건이 강원도가 최적지라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으므로 집행부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다) 신상발언 : 제1차 본회의

- 신명선의의원 : 지난 2월 1일 최북단 어민생계대책토론회를 본의원의 지역구에서 가지면서 지사님이 참석해 달라는 연락을 여러차례 했지만 동계올림픽 때문에 시간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국장님이 내려와 달라고 신신부탁을 해서 국장님이 내려오기로 했으나 국장님이 못내려오고 과장님이 내려온다고 했다.

그러나 2월 2일 12시 30분 지사님이 갑작스럽게 내려오시어 어민관계자들과 토론회를 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오후 2시에 시작한다는 토론회를 2시 40분에 시작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지사님이 도의원지역활동하는데 밥상에 재뿌리게 됐다. 또한 토론회에 참석키로 한 과장을 통해 30만원을 보내줬는데 이 자리에서 반납하고, 5월달 발족되는 신용보증조합 초대 이사장 임명을 주시해 보겠다.

라) 의사진행발언 : 제1차 본회의

- 황영철의원 : 오늘 4분발언과 신상발언을 들으면서 도의회가 오늘 이 순간을 통해서 좀더 발전되고 우리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지난번 김스클럽에서 2박 3일간의 의원들과의 만남에서 제시된 의견중 4분발언이 의원님들의 외침으로 끝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서 긴급 현안 질의제를 채택을 요구한 바 있었으며, 이부분에 대해 의원님들이 다들 공감한 바 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주요한 현안으로 발언될



내용이 있을 경우 긴급현안제로서 현안질의제로 채택하여 이부분을 도정발전에 좀더 올려
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서 이끌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마) 신상발언 : 제2차 본회의

- 정인수의원 : 본 의원은 제1차 본회의에서 강원전문대학 98년 교수채용과 관련하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데 이것은 강원전문대학 학장의 고등학교 제자인 모 국가기관에 수산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이 아무개가 정식으로 본 의원과 동료의원에게 진정하면서 시발된 사건이며, 이 아무개 주장에 따르면 첫째, 97 교수채용시에는 전공관련사항을 접수제로 하여 2차심사까지 갔던 경험이 있으나 이번 98년도에는 석·박사 전공이 채용분야에 일치됨에도 대학과정이 전공과 다르다 하여 서류심사에서 탈락시켰다. 둘째, 심사위원인 담당교수는 채용공고 이전부터 이 아무개 특정인을 채용하겠다고 여론을 조성한 바 있다. 셋째 이런 억울한 사정을 이해하여 공정한 심사를 위한 선처를 해달라는 것이었다. 본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시대적 흐름인 사회정의를 수호하고 개혁적 차원에서라도 관련 문건을 당당히 공개해서 자잘못을 가릴 수 있도록 강원도 감사 담당관실에서 강력하고도 공정한 감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위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였다.

2) 委員會

가) 현지사찰 : 관광건설위원회

- 1999년 2월 20일 제1차회의에서 의사일정을 결정한 후 소관업무를 파악을 위해 2월 26일 동면 월곡리 옥산가 옥광산 채취현장을 시찰하였다.

라. 議案處理狀況

1) 一般議案

- 이번회기중 상정대상 일반안건을 총14건으로 제안자별로는 도지사 제출이 10건, 위원회 제출이 3건, 도교육감제출이 1건이다. 처리결과를 보면 14건 모두 가결되었으며 종류별 처리 현황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종류별	상 정 대 상 안 건			의 안 처 리 내 역				
	합 계	전회기 이 월	금회기 접 수	가 결			폐 기 (철 회)	계 류
				소 계	원 안	수 정		
계	14		14	14	14			
조례안	8		8	8	8			
규칙안	2		2	2	2			
예산안								
동의안	3		3	3	3			
건의안	1		1	1	1			

2. 議決案件

가. 條例案

1) 강원도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2월 11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노동조합 설립이 금지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장협의회를 구성토록 하여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상호간의 성실한 이행을 보장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며 도민의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직장협의회는 기관장인 4급이상 공무원이 기관단위로 설립함을 원칙으로 하고 2개이상의 직장협의회가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도록 함(안 제2조)
 - 직장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관장은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의 직책 및 업무를 지정하여 공고하도록 함(안 제3조)
 - 직장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7일이상 개시하도록 하고 직장협의회 설립사실을 통보받는 기관장은 7일 이내에 설립증을 교부하도록 함



(안 제4조)

-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는 매년 2회개회를 원칙으로 하며, 기타 협의절차, 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 협의회 규정에 제정, 가입과 탈퇴, 대표자 및 위원의 선임, 협의회 준수사항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2조내지 제14조)
-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합의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하며 기관의 장은 협의회가 사용할 회의장소 및 사무장비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5조)

나) 심사 및 심의결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 2월 12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25일 제5차 회의에서 박수준 차치지원국장의 제안설명과 전정기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1999년 2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황영철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9년 3월 2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1999년 3월 20일 강원도조례 제2683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 · 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 · 운영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소속공무원의 직장협의회 설립 ·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다만, 기관장이 5급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경우, 소속공무원의 수, 지리적 특성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의회는 2개이상의 협의회가 연합할 수 없다.

③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단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 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의회사무처와 도 본청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

제3조(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①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서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휘·감독의 직책에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 법령·훈령 또는 사무분장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직무대리 관련 규정에 의하여 명확한 요건을 갖춘 법정대리자와 인사명령에 의하여 직무대리 명령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2.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와 관련된 인사관련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타자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예산회계법·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4.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비서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5.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감사·조사·비밀·유선교환업무등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6. 보안·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공공안전의 목적상 특정인 또는 특정시설에 대한 보안·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7. 자동차운전업무를 종사하는 공무원 : 자동차운전업무를 실제수행하는 공무원
8.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 인사관련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신규임용·승진임용·전진·전보·겸임·과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과 관련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③ 제1항제5호의 규정에서 비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실·국·과 등에서 비밀업무를 관리·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④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 이 조례 시행규칙에서도 같다.)은 당해 기관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협의회의 설립) ①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장소, 설립준비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공무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 2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준비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③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설립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규정과 협의위원명부, 협의회 회원명부 및 설립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설립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이하 “설립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 통보서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협의회규정 등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는 설립증을 교부받는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⑥ 협의회의 설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협의회규정)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1. 명 칭
2. 목적 및 사업
3. 협의위원의 수에 관한 사항
4.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선임방법·임기·후임자의 선임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회원에 관한 사항
6. 회의에 관한 사항
7. 협의회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규율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제6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① 협의회 회원의 자격과 가입절차등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내

에서 협의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가입(탈퇴)원서를 협의회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협의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회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협의회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입원서를 협의회에 제출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우편발송인 경우에는 협의회에 도달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 ④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전보·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당해 인사발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명령의 발령부서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부서는 그 변동사실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⑥ 회원은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탈퇴원서를 당해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퇴원서가 당해 협의회에 도달하였을 때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7조(회원의 제명의결시 진술권 부여) 회원의 제명은 협의회규정에 따라 행하되, 협의회규정이 정한 의결기관의 의결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며, 제명의결을 위한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제명대상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의결전에 본인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야 한다.

제8조(협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① 협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당해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되, 협의위원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 ② 협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입후보자와 자격은 합리적인 요건을 정하여 협의회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
- ③ 협의회는 구성원의 직종별·직급별·성별비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1. 협의회 가입공무원의 1할이상을 차지하는 직종별·직급별로 가급적 1명이상의 협의위원이 선임되도록 할 것
 2. 여성공무원이 1할이상인 경우에는 1명이상의 여성공무원을 협의위원으로 선임할 것
- ④ 협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⑤ 협의회 가입자격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협회의 대표자 또는 협의위원이 교체된 경우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 가입대상 공무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 및 회원명부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설립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사실과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협의회에 시정·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을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 ①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상호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대표자는 설립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일 7일전까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문서로 설립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④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기관의 장이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관련공무원을 협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⑤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회무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회원 또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각각 1명씩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⑦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이 협의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각각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한 기관장(직무대리자 포함한다), 대표자 및 협의위원
3.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
4. 기타 토의사항

제11조(합의사항의 이행)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알려

야 하고,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협의회의 의무) ① 협의회는 협의회규정, 협의위원명부, 회원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대표자·협의위원 및 협의회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된 날부터 3일이 내에 이를 설립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회원으로서의 부적격자가 있거나 협의회규정 등이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 즉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협의회는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중에 이를 할 수 있다.

제14조(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둘 수 없다.

제15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당해 기관의 회의장소·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강원도민제안조례중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2월 11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도민의 제안사항을 공모함에 있어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문호를 개방하는 등 종전의 제안제도를 개선하여 활성화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제안을 할 수 있는 도민의 폭을 넓혀 출향도민과 주둔군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종전에 연1회 공모하던 자유제안을 연중 계속하여 공모하도록 하고 그 사항을 공고하도록 함(안 제5조)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 2월 12일 내부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26일 제6차회의에서 조명수기 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 후 전정기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1999년 2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황영철 내부위원장의 심사보고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9년 3월 2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1999년 3월 20일 강원도조례 제2682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민제안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민제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안자격) 제안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음모일 현재 강원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과 출향도민·주둔군인으로 한다. 다만 출향도민은 해당지역의 도민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다.

제5조(제한시기등) ① 제안은 연중 계속하여 공모한다. 다만 지정제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공모사항은 도보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2월 11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지방세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무역업등을 영위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등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
 - 1가구당 1대 초과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의 증가를 배제토록 한 특례규정을 법령 개정에 따라 삭제함(안 제13조의 2)
 -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대상 중 호주승계예정자에 대한 범위를 개선하고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인해 대체취득하는 부동산가액에 대한 산정기준을 지방세법상 산정기준을 중용토록 보완(안 제14조 제20조)
 - 현행 도세감면조례규정상 중복되는 2건의 불필요한 조례는 이를 폐지함(안 부칙제2조)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 2월 12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25일 제5차 회의에서 박수준 자치지원국장의 제안설명후 전정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1999년 2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황영철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9년 3월 2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1999년 3월 20일 강원도조례 제2681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5호”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4호가목”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업 또는 무역대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중고기계장비·중고선박 및 중고항공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13조의2를 삭제한다.

제14조제3항중 “지방세법시행규칙제49조의2에 규정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하고, “호수승계예정자”를 “호주승계예정자 및 호주승계자”로 한다.

제20조제3항 후단중 “아니하다”를 “아니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지방세법시행령제7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① 강원도 조례 제1652호 강원도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 도서과세면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② 강원도 조례 제2314호 강원도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4) 강원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2월 11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지방세법령의 개정(99. 1. 1시행)에 따라 사치성 재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과 자동차 저장권설정 등록세율을 인하하는 등 조례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별장·골프장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을 일반 취득세율의 7.5배에서 5배로 변경함(안 제23조제2항)
 - 1가구2차량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2배 중과규정을 삭제함(안 제23조제3항, 제31조제3항)
 - 자동차 저장권 설정등록에 대한 등록세율을 차종에 따라 채권금액의 1%~3%하던 것을 0.2%로 하향조정함(안 제31조)
 - 등록세 신고납부 기한을 종전에 「등기 또는 등록하기 전까지」로 하던 것을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함(안 제49조제1항)
 - 종전의 대도시내 법인 등기등에 대한 등록세 중과규정은 지역실정에 맞지 않아 이를 삭제함(안 제38조)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 2월 12일 내부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25일 제5차 회의에서 박수준 자치지원국장의 제안설명과 전정기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1999년 2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황영철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9년 3월 2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1999년 3월 20일 강원도조례 제2680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중 “100분의 750”을 “100분의 500”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4조제9항중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을 각각 “제23조제2항”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중 “1,000분의 30을”을 “1,000분의 2”로 하고, 동조 제2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2. 저당권 설정등록 :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제38조를 삭제한다.

제49조제1항중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를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제31조제1항제2호·제2항제2호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5) 강원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2월 11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시군부녀의용소방대조직을 보강하고 의용소방대연합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전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부녀의용소방대에 총무부를 신설하여 필요한 반을 부설하는 한편, 종전의 홍보부에 반을 보강하여 업무분장 일부를 조정함(안 제8조제2항)
 - 의용소방대도 연합회와 시군연합회의 임원(회장, 부회장)을 당해 연합회 추천에 따라 도

지사와 소방서장이 해당임원을 임명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31조제4항)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 2월 12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23일 제3차회의에서 이성열 소방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전정기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및 답변이 있었으나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

- 부녀의용소방대란 명칭을 여성의용소방대로 의용소방대를 다른 표현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 답변요지

- 중앙부처와 협의검토하도록 하겠음

- 본회의 심사 : 1999년 2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황영철내무위원장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9년 3월 2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1999년 3월 20일 강원도조례 제2673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별지 제1호와”를 “별지1과”로 하고, 동조제3항중“별지제2호와”를 “별표2와”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구호반”을 “구조반”으로 “별지제3호와”를 “별표3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부녀대에는 총무부·홍보부·구호부를 두고, 총무부에는 서무반·보급반을, 홍보부에는 홍보반·봉사반을, 구호부에는 구급반·구호반을 두며 부반별 업무분장은 별표4와 같다.

제15조제1항중 “별지 제6호”를 “별표5”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별지 제8호”를 “별표6과”로 한다.

제27조제2항중 “별지 제9호”를 “별표7”로 한다.

제3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도연합회 임원(회장, 부회장)은 당해연합회 추천에 의하여 도지사가 시·군연합회임원(회장, 부회장)은 당해연합회추천에 의하여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4를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 강원도자연학습원운영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2월 13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기관별로 제정 운영하여 오던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조례 제2670호, 99. 1. 16)로 통합 전문개정하면서 강원도 자연학습원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45조(소관사무)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학습및자연보호에 관한교육, 민주시민정신교육에관한사항, 시설사용료등징수기준에관한사항을 합리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도지사는 매년 자연학습원운영관리계획수립과 시설사용료등 징수기준을 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시설사용료 감액 및 면제대상을 정함(안 제4조0)
 - 자연학습원운영 및 시설관리를 비영리법인, 청소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함(안 제5조)

- 자연학습원 재정운영결과 재정적자본에 대하여 도비로 보조함(안 제6조)
-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사항을 정함(안 제7조)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 2월 18일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25일 제5차 회의에서 이만용 환경복지국장의 제안설명과 서의승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질의 및 답변]

- 질의요지
 - 학습원을 도에서 직접운영시 문제점과 수탁시의 문제점은?
 - 운영상 재정적자시 수탁자에게 보조할 이유는?
- 답변요지
 - 직접운영시 경비가 많이 들고 수익은 적으며 많은 공무원 인력이 필요해 불가피하고 위탁운영시는 공공서의 문제로 교육대상, 교과과정선정 등 인위적인 문제가 있겠음.
 - 재정적자 개선책의 마련되지 않아 98년 4월 대한불교 조계종 제4교구 월정사의 수탁운영 제안이 있어 약정하게 되었음. 적자결과 1억원까지는 도에서 전액보조하고 적자 초과분 1억 5천만원까지는 쌍방이 똑같이 부담하며 적자폭이 1억 5천만원 초과될 경우는 지원이 불가함을 통보하였고 무조건의 적자보존이 아님을 이해바람.
- 본회의 심사 : 1999년 2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이천규교육사회위원회 간사의 심사보고 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9년 3월 2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1999년 3월 20일 강원도조례 제2684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자연학습원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자연학습원(이하 “자연학습원”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관리 계획) ① 도지시는 매년도 자연학습원 운영·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수인원
2. 교육과정, 연수과목 및 교과편성 내용
3. 연수생 등록절차
4. 연수시설의 관리
5. 기타 연수원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사용료 등) ① 도지시는 자연학습원 시설사용자로부터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도지시는 연수생으로부터 식대, 교재대, 외래강사료 등 연수에 필요한 실비를 징수 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 제1항 사용료를 50% 감액 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2. 소년소녀가장세대인 자
3.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4.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시설사용료를 면제한다.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6조제1항 해당자

제5조(운영·관리의 위탁) ① 도지시는 자연학습원 운영 및 시설물 관리를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사항을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도비의 보조) 도지시는 매년도말 자연학습원 회계운영 결산결과 재정적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적자분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는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3조

내지 제15조를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에 체결한 강원도자연학습원 위탁관리에 관한 약정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7) 강원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2월 11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단일기준으로 징수하고 있는 종전의 자연휴양림시설사용료등 계절별 이용 수 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그간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안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조례의 적용대상을 강원도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으로 한정함(안 제2조)
 - 입장료와 시설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1개조문으로 정비하는 한편 승용차 10부제 참여차량 과 경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기준을 신설하고 시설사용료의 구분내용(별표2)을 현실에 맞게 보완함(안 제4조)
 - 시설사용료를 계절별 이용수요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기준액의 50%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조정하여 사회적·경제적 여건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시설사용자중 숙박시설(단체막사 및 숲속의 집)이용자에 대하여는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8조 제3항)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 2월 13일 산업경제위원회 회부되어 2월 20일 제1차회의에서 최현영



농정산림국장의 제안설명과 김용기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1999년 2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업무협산업경제위원장의 심사보고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9년 3월 2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1999년 3월 20일 강원도조례 제2687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강원도”를 “강원도가 조성한”으로 한다.

제2조중 “강원도안에”를 “강원도가”로 “중 국가와 시장·군수가 조성한 휴양림을 제외한 모든 휴양림”을 삭제하며,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특수시설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례를 정할 수 있다.

제3조제1호중 “국면”을 “초등”으로 하고, 동조제8호중 “도지사, 산림소유자”를 “도지사”로하며, 동조 제10호 및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특수시설 : 산림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등을 말한다.

11. 지역주민 : 강원도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입장료 및 사용료) 입장료는 별표1의 기준에, 시설사용료는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제5조(사용료의 요율조정) ① 시설사용료는 계절별 이용수요에 따라 제4조 징수기준의 50%범위 내에서 그 요율을 증감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설사용료 증감 조정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 제목“입장료 면제등”을 “입장료등의 감면”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를 “별표1의 감면요금을 적용한다”로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산림법시행규칙 제31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4조 별표2의 시설사용자중 숙박시설이용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주차료를 면제한다.

1. 단체막사 : 1실당 주차2대
2. 숲속의집 : 1동당 주차1대

제9조제2항제2호중 “입장료”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로 한다.

제10조중 “제5조 및 제6조”를 “제4조”로 한다.

제13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천재지변등으로 인하여 휴양림사용이 어려울 때

제14조제2항중 “공유림에 조성된”을 삭제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를 “강원도”로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 강원도1지역1명품특화사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2월 11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지역별 특성에 맞는 명품을 중점육성하여 농어가에 소득증대 및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설치한 1지역1명품 특화사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종전의 향토전통음식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기금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운용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에 대하여 법령의 조항을 인용하여 명확히 함(안 제4조제1항)
- 명품을 농특산물 및 민공예품, 향토전통음식으로 하던 것을 향토전통음식을 제외함(안 제2조제11호, 제7조제5호)
- 사업당 융자한도액을 지금까지 1억원으로 하던 것을 2억원으로 확대함(안 제11조제1항)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 2월 13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20일 제1차회의에서 최헌 영농정신립국장의 제안설명과 김용기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1999년 2월 27일 제2차본회의에서 엄문섭 산업경제위원장의 심사보고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9년 3월 2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1999년 3월 20일 강원도조례 제2686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1지역1명품특화사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1지역1명품특화사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1지역1명품으로 선정된 각 시·군의 농특산물 및 민공예품, 향토전통음식”를 “1지역1명품특화사업으로 선정된 농특산물 및 민공예품등의”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생산자단체 융자지원에”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제5조의2의규정에 의한 생산

단체 용자지원에”로 한다.

제7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용자한도액은 명품으로 선정된 특화사업당 2억원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용자받은 잔액이 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동일 명품사업에 대하여 계속 용자 할 수 있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용자금상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지원된 명품 및 향토전통음식에 대한 지원당시의 용자조건 및 상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나. 同議案

1) 강원도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2월 11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지역보건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사항을 도의회에 득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계획수립의 배경 : 기존사업계획은 지역주민 건강사업등을 중앙정부의 일반적인 시달로 하여오던 것을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와 협의조정지역실정에 알맞은 계획을 수립, 도민건강증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 계획수립구성 및 내용
 - 사업목표 : 일반적목표, 구체적목표
 - 보건의료수준현황 : 인구, 의사수, 의료기관분포, 주요사망원인, 주요질병상태등
 - 보건소 일반업무 추진계획 : 17개사업



- 보건소 육성지원계획 : 시설투자계획, 장비투자계획, 인력개발계획
- 도주관 주요역점사업 : 11개 사업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 2월 12일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제5차 회의에서 이만용환경복지국장의 제안설명과 서의승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및 답변이 있었으나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질의 및 답변]

- 질의요지

- 도내 병·의원의 전반적인 경영운영실태점검과 시설이 낡은 곳은 강화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견해는?

- 답변요지

- 병·의원의 운영실태 파악은 의료법인의 경우는 파악이 가능하여 금년에 조사할 것이며 개인의원일 경우 경영실태 파악은 지난하여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음

- 본회의 심사 : 1999년 2월 27일 제2차본회의에서 이천규교육사회위원회 간사의 심사보고 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동의안은 1999년 3월 2일 가결되어 원안대로 강원도지사에게 송부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강원도가 제출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지역보건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동의한다.

- 계획명칭 : 강원도 지역보건의료계획
- 시행기간 : 1999~2002(4년)

- 수립기관 : 강원도
- 지역보건의료사업계획 주요내용
 - 보건소의 일반업무 : 17개사업
 - 보건소지원계획 : 3개사업
 - 도주관 주요역점사업 : 11개사업
 - 투자계획 : 88,981백만원 (국45, 184, 도7,602, 시군36,195)

2) 1999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지방채발행계획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2월 25일 강원도교육감
- 제안이유 : 교원정년조정 (65세→62세)에 따른 정년 및 명예퇴직 신청교원증가로 명예퇴직 수당과 퇴직수당부담금의 부족재원을 재정융자특별회계융자금으로 지원받아 명예퇴직 신청교원을 전원 수용함으로써 교직사회의 신진대사 촉진으로 교육력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인건비 예산절감효과를 거양하여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지방채의 종류 및 규모는
 - 지방채의 종류는 차입금(정부자금채)이며 규모는 547억 3,300만원으로
 - 자금의 종류는 재정융자특별회계 지방교육재정지원금이며
 - 이율은 연리 6.5%로
 - 융자시기 및 상환방법
 - 융자시기는 99년 8월이며, 상환방법은 3년거치 5년분할 상환으로
 - 상환재원은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원임
 - 99년도 정년 및 명예퇴직 인원은
 - 99년 2월 662명
 - 99년 8월 743명으로 총 1,405명임
 - 시기별 소요예산 및 소요예산 부족액을 보면
 - 시기별 소요예산은 99년 2월말 소요액이 551억 600만원, 99년 8월말 소요액이 505억 500만원으로 총 1,056억 1,100만원 소요되며



- 소요예산부족액은 99년도 인건비 절감액 및 기존예산액 508억 7,800만원을 제외한 547억 3,300만원임
- 지방채 상환계획을 보면
 - 99년부터 2002년까지 거치기간에 대한 이자 118억 7,300만원과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원금 547억 3,300만원 및 이자 94억 7,200만원으로 총 760억 7,800만원에 대하여 연도별도 균등상환할 계획으로
 - 상환재원은 교육비특별회계 지원으로 분할상환기간 동안의 고호봉자인 퇴직자의 인건비와 신규채용자의 인건비 차액분으로 충당예정임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 2월 25일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26일 제6차회의에서 김호준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서의승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질의 및 답변]

- 질의요지
 - 지방채발행의 원리금을 강원도가 부담질 경우 문제가 있으므로 강원도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 답변요지
 - 국책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서 전국 동시에 이뤄지는 사항으로 향후 교육부건의안 강원도의 의견을 개진. 협의해 나가겠음.
- 본회의 심사 : 1999년 2월 27일 제2차본회의에서 이천규 교육사회위원회 간사의 심사보고 후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계획안은 1999년 3월 2일 원안대로 가결되어 강원도교육감에게 송부되었다.

[의결전문]

1999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지방채발행계획(안)

강원도교육감이 1999년도 지방채를 다음과 같이 발행할 것을 지방자치법 제115조 ①항의 규정에 의거 의결한다.

1. 발행기관 : 강원도교육청
2. 지방채의 종류 : 차입금(정부자금채)
3. 지방채의 규모 : 547억 3,300만원
4. 자금의 종류 : 재정융자특별회계 지방교육재정지원금
5. 이율 : 연리 6.5%
6. 용자시기 : 1999년 8월
7. 상환방법 :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8. 상환재원 :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다. 建議案

1) 한·일어업협정에따른어업인보호대책건의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2월 24일 산업경제위원회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강원도어업은 해양선이 단조로와 양식어업이 발달할 수 없고 어선어업에 의존하므로 20톤이상 중·대형어선들은 대화퇴 및 일본근해까지 출항하여 조업을 하여 왔으나 한·일 양국간의 불공평한 신한·일어업협정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으로 대화퇴 및 일본근해에서 조업하던 어선들이 황금어장상실과 조업을 하지 못함에 따라 양국간 어업협정의 부당성을 제기함과 아울러 재협상을 강력히 촉구하며 또한 이번 어업협정 발효로 강원도어업인은 막대한 손실과 더불어 어업기반마저 무너질 위기에 있으므로 고통과 실의에 잠긴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려는 것임.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 2월 24일 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이연우 산업경제위원회 간사의 제안설명후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1999년 2월 27일 제2차본회의에서 이연우 산업경제위원회 간사의 제안설명 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건의안은 1999년 2월 29일 국회, 해양수산부에 건의되어 1999년 6월 21일 현재로서 불가하고 업무참고로 회시되었다.

[의결전문]

한·일어업협정에따른 어업인보호대책 건의안

이상난류로 전례없는 흥어와 경기불황의 장기화로 동해안 어업인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99. 1. 22일 배타적 경제수역(EEZ) 개념을 도입한 신 한·일 어업협정이 발효되어 어장을 빼앗긴 강원도 어업인들이 출어를 포기하는 등 생계에 어려움을 물론, 그간 공들여 다져왔던 우리의 어업기반까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준비없는 대응과 졸속적인 외교협상으로, 그동안 가장 중요시 되었던 일본근해 황금어장의 축소와 배타적 경제수역권내에서의 조업제한으로 연간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며, 어업인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치 않는 이러한 결과에 동해안 어업인들은 깊은 실음과 더불어 어업계는 전반적으로 도산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65년 한·일 어업협정 체결이후, 우리나라 어업자원은 일본어선들에 의해 남획되었고, 지금에 와서 우리 어업인도 어업진흥정책에 힘입어 어느정도 성장된 상태로 어업활동을 12해리 영해를 근거로, 12해리 외측에서 다소나마 자유롭게 조업하여 왔으나, 일본의 일방적인 협정파기와 이어서 불리한 신 한·일 어업협정이 체결되어 동해안 어업인들은 생업터전을 잃고, 하루 아침에 도퇴되는 현실을 맞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강원도의회는 강원도민을 대표하여 「한·일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 보호대책」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불공평한 한·일 어업협정은 재협상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국의 영토(부속도서 포함)을 기점으로하여 어업협정을 하여야 함에도 일본은 자국의 영토를 기점으로 하였고, 우리는 독도가 분명한 우리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독도를 기점으로하지 않아, 어업인들이 황금어장인 대화퇴를 비롯한 독도주변 수역어장을 잃어, 조업수역이 좁아지고 우리영토에서 주권행위를 할 수 없는, 상상치도 못할 정부의 처사에 울분을 금할 길 없으며, 앞으로 한·일 어업협정은 반드시 독도를 우리의 영토로서 재협상되어야 하며, 일본에서 응하지 않을 때에는 대마도도 독도와 같이 중간 공동수역으로 설정하여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며,

둘째,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어업구조조정사업비의 현실화입니다.

한·일 어업협정이 잘못되어, 우리 어업인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생활기반이 뿌리채 흔들리니, 어업인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어업구조조정사업에 한·일 어업협정에 따른 영향이 큰 어업에 대하여 우선 비중을 두고, 어선감축을 하는데 어선(기관), 어구, 폐업보상금 포함 평균 1억7천만원으로 보상한다고 하나, 20톤급 채낚기어선의 경우 어선, 어구까지 톤당 2천만원이 넘으므로 강원도 어선의 경우, 20톤이상 채낚기어선의 평균톤수가 58톤으로서(약 5억6천만원) 1억7천만원으로서는 당치도 않는 보상이며, 이 또한 용자 30%, 자부담 10%가 있어 실제보상은 1억2백만원밖에 되지 않아, 현실성이 결여된 보상액 책정으로 말미암아 어업구조조정사업을 신청할 어업인들은 없을 것이며,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진정어업인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하고,

셋째,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조업하지 못하는 어선들의 어구 및 폐업손실 보상입니다.

자망 및 통발어업 등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입어하지 못하거나 업종별 제한 입어로 조업을 포기하는 어선이 있는바(강원도는 명태 유자망 9척, 문어통발 1척) 동어선들이 감척에 응하지 않을 시 사용하였던 어구 및 폐업보상에 대하여서는 어구손실 보상방법이 없으므로, 조업을 하지 못하는 것도 억울하지만 조업을 위하여 투자하였던 투자비 손실은 대단히 크다고 보는 바, 이러한 어업인들의 보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넷째, 어장이동 및 업종전환에 따른 방안모색입니다.

수산자원을 생산할 수 있는 어장은 대부분이 대륙붕과 대륙사면에 분포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이동조업 또는 업종전환에 따른 어구비 지원과 대체어장 및 해외어장 개발지원금에 570억원을 지원한다고 하나, 과연 이동조업할 어장이 있으며, 업종전환이 어업인들이 원하는 업종으로 전환이 가능할지 불투명합니다.

일본에서는 정부에서 새로운 어장을 개발하여 어업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정확한 조업이 이루



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동조업할 장소 및 업종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다섯째, 영어자금 이자탕감입니다.

영향업종 어업인의 경영개선 지원에 있어, 경영안정자금 특별지원을 연체이자에 한하지 말고 일반이자도 탕감하여 줄 것과 영어자금 상환기간도 2~3년으로 연장하여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여섯째, 수산업 발전의 종합대책입니다.

이제 연안어장 뿐만 아니라, 근해 수산자원도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할 수 없으며, 백화현상의 자연재해로 연안 마을어장이 황폐하고 있으나, 자연재해대책법에 적용을 받지 못하여 복구지원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1항 규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연안 오염으로 인한 산란서식장 회복을 위하여 완벽한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완공이 시급하며, 또한 해저에 투기된 오물과 버려진 각종 침체어망회수를 위한 전문선박에 따른 특별지원대책과, 아울러 어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어항축조, 인공어초투하 확대, 기관, 어구장비 구입시 부과세 면제, 오징어 채낚시 어선건조시 부과세 면제, 오징어 채낚기 광역규제 철폐, 영어자금의 정책자금의 저리자금 확대 지원 등을 과감하게 추진하므로서, 어업인들을 진정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국민의 정부로 다시 거듭나는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라. 規則案

1) 강원 의회 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2월 24일 운영위원회
- 제안일자 : 의회의 단체방청안에 대한 지역구의원의 소개발언제도를 신설하여 도민의 의장참여 분위기를 확대하고 국내·외의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및 이에 상응하는 주요인사가 의회 내방시에는 필요한 절차를 거쳐 본회에서 연설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의회의 회의장에서 휴대용 전화 및 호출기의 지참·사용을 금지하여 정숙한 회의장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지역주민등 5인이상의 단체방청인이 의회의 회의를 방청하게 된때에는 해당 지역구의원이 발언허가를 받아 소개발언을 하고 박수로 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의3)
- 국내 및 외국의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이에 상응하는 주요 인사가 의회 내방시에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본회의 초청연설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5조의2)
- 의원이나 방청인은 의회의 회의장 안에서 휴대용전화기 및 호출기를 지참·사용하거나 신호음이 울리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81조, 제87조)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 2월 24일 운영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김원기운영위원회 간사의 제안 설명후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1999년 2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김원기운영위원회 간사의 심사보고 후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규칙개정안은 1999년 3월 2일 원안대로 가결되어 강원도지사에게 송부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의회규칙 제 호

강원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강원도의회회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 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 3(방청인 소개 발언) 지역주민등 5인이상의 단체방청인이 의회의 회의를 방청하게 된때에 해당지역구의원은 미리 의장에게 방청인 소개발언 신청을 하여 회의 개의직후 또는 산회직전에 방청인을 소개하는 발언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87조 제7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박수로 환영의 뜻을 표시할 수 있다.

제6장의 제목“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을 “도지사등의 출석·답변 및 연설”로 하고, 제



7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 2(본회의 초청 연설) 국내 및 외국의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이에 상응하는 주요인사가 의회에 내방한 때에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연설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중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휴대용 전화기나 호출기를 지참하여 신호음이 울리게 하는 행위 제87조중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휴대용 전화기 및 호출기를 사용하거나 신호음이 울리게 하는 행위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강원도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2월 24일 운영위원회
- 제안이유 : 전국 시·도의회 의원배지 모형과 크기 및 색상이 조금씩 상이하던 것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시·도의회 의장 및 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 의원배지통일안을 마련함에 따라 관련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의회기의 무궁화도형 가운데 원의 바탕색을 「흰색」에서 「자주색」으로 하고 모형과 규격을 일부 변경함(안 제2조)
 - 의원배지의 무궁화 도형 가운데 원의 바탕을 「흰색」에서 「자주색」으로 하고 모형과 규격을 일부변경함(안 제6조)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 2월 24일 운영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김원기 운영위원회 간사의 제안설명후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1999년 2월 27일 제2차본회에서 김원기 운영위원회 간사의 제안설명후 원

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규칙개정안은 1999년 3월 2일 원안대로 가결되어 강원도지사에게 송부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의회규칙 제 호

강원도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강원도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기면은 하늘색, 무궁화 도형과 議자 및 강원도의회 자는 금색, 무궁화도형 가운데 원의 바탕은 “흰색”을 “자주색”으로 한다.

제6조제2호중 색상은 금색으로 하고, 가운데의 원의 바탕은 “흰색”을 “자주색”으로 한다.

【별표1】 과 【별표 2】 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第 7 節 第98回 臨時會

1. 概 況

가. 開 會

제98회 강원도의회임시회는 1999년3월10일조규병의원의외 15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자로 의장이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1999년3월18일 개회하여 3월27일 폐회되었다.

나. 議事日程

1) 本會議

가) 제1차 본회의 : 1999년3월18일(목)

- 제98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결정의건
- 4분자유발언(정연대, 박용길, 손삭암의원)의건

나) 제2차 본회의 : 1999년3월27일(토)

-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선행도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규약안
- 강원지방조달청강릉출장소준치건의안

- 강원도여성회관운영조례안
- 강원도가축위생시험소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
- 강원도신용보증조합지원에관한조례안
- 강원도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 폐광지역카지노외타지역내국인출입카지노불허요구건의안
- 강원도중도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립국악무용예술단운영조례안
- 4분자유발언(원종익의원)의견

2) 運 營 委 員 會

가) 제97회 제3차회의 : 1999년 3월 17일(수)

-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견
- 제98회강원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견
- 제99회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협의의견

3) 內 務 委 員 會

가) 제1차회의 : 1999년3월19일(금)

- 의사일정결정의견
- 강원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나) 제2차회의 : 1999년3월20일(토)

- 수도권행정협의회의규약변경규약안

다) 제3차회의 : 1999년3월26일(금)

- 의사일정변경의견
-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선행도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지방조달청강릉출장소준치건의안

4) 敎育社會委員會

가) 제1차회의 : 1999년3월19일(금)

- 의사일정결정의건
- 강원도여성회관운영조례안

5) 産業經濟委員會

가) 제1차회의 : 1999년3월19일(금)

- 의사일정결정의건
- 강원도가축위생시험소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

나) 제2차회의 : 1999년3월20일(토)

- 강원도신용보증조합지원에관한조례안
- 강원도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다) 제3차회의 : 1999년3월24일(수)

- 폐광지역카지노외타지역내국인출입카지노불허요구건의안

6) 觀光建設委員會

가) 제1차회의 : 1999년3월19일(금)

- 의사일정결정의건

나) 제2차회의 : 1999년3월20일(토)

- 강원도중도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립국악무용예술단운영조례안

다. 議會活動

1) 本會議

가) 4분자유발언 : 제1차본회의

- 정연대의원 : 농림부 자료에 의하면 최근2-3년간 귀농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하며 실업자 200만 시대에 귀농인구수는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이다 가운데 모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이들 귀농희망자 대부분이 약1억5천만원 이상의 투자를 기본 전제로 삼고 있다고 조사돼 강원도로의 귀농인구 증가는 단순히 농촌으로의 인구증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인만큼 도에서 강원도로의 귀농희망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귀농정책을 추진해 나갈것을 촉구하였다.
- 박용길의원 : 북한 금강산을 3박4일간 시찰한데 대한 소감이라고 전제하고 북한의 금강산이 옛모습 그대로 잘 보존되고 있는 반면 우리의 설악산은 부끄러운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설악산을 등산로 이외에는 통행을 제한하고 등산로에는 안전시설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며 설악산의 자연훼손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대청봉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은 설악산과 금강산의 연계개발 차원에서 실현되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는 정진기지가 강원도이므로 도지사의 북한방문을 권유하였다.
- 손삭암의원 : 아무죄없이 아픈 가슴을 쓸어안고 좌절의 위안길을 걸어야 하는 200만명의 실직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정부는 쌍끌이가 무엇인지 외끌이가 무엇인지도 모른채 한일어업협정에 임해 25만이라는 엄청난 어민가족이 어려움에 처해있으며 1,500여 척의 어선이 닻을 내려야 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이들을 보상해야하는 한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가운데 실직자 구제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에 많은 인력들이 몰리고 있어 농번기에 일손부족현상이 우려되어 농민들이 큰 걱정애 빠져있는 실정이라면서 오류를 범하지 않는 행정정책 수립을 촉구하였다.

2) 委員會

가) 현지시찰 : 내무위원회

- 1999년3월19일 제1차회의에서 의사일정을 정한 후 소관업무과약을 위해 3월22일부터25일까



지 4일간 강릉소방서, 강릉의료원, 원주소방서, 원주의료원을 시찰하였다.

나) 현지시찰 : 교육사회위원회

- 1999년3월19일 제1차회의에서 의사일정을 결정한후 3월20일부터26일까지 6일간 강원평생교육정보관, 양구교육청, 양구도촌·한전초등학교, 양양산업(주)건설폐기물처리장, 고성(주)우주환경산업건설폐기물처리장, 대명콘도, 강릉(주)삼용건설폐기물처리장 현장을 현지시찰 하였다.

다) 현지시찰 : 산업경제위원회

- 1999년3월19일 제1차회의에서 의사일정을 결정한후 소관업무파악을 위해 3월22일부터26일까지 투자유치기획단,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첨단농업기술연수센터, 철원특작시험장, 철원고추냉이실증포장현장을 각각 시찰하였다.

라) 현지시찰 : 관광건설위원회

- 1999년3월19일 제1차회의에서 의사일정을 결정한후 소관업무파악을 위해 3월 19일 춘천자연거이용시설, 중도관광지를 현지시찰하였고, 3월22일부터26일까지 원주시립박물관, 원주문화원, 평창종합문화예술회관, 대기~고단(강릉)확포장사업현장, 삼척 종합예술회관, 강릉참소리박물관, 빙상경기장, 고성 통일전망대 답사, 미시로 확포장사업현장, 양구 편치불지구, 화천 평화의담을 각각 현지시찰하였다.

라. 議案處理狀況

1) 一般議案

- 이번회기중 상정대상 일반안건은 총12건으로 도지사제출이10건, 위원회제출1건, 의원발의1건이다. 처리결과를 보면

구 분 종류별	상 정 대 상 안 건			의 안 처 리 내 역				
	합 계	전회기 이 월	금회기 접 수	가 결			폐 기 (철회)	계 류
				소 계	원 안	수 정		
계	12		12	12	10	2		
조 례 안	9		9	9	7	2		
예 산 안								
동 의 안	1		1	1	1			
건 의 안	2		2	2	2			

2. 議決案件

가. 條例案

1)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3월11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치행정과에 설치한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추진기획단」의 인력을 한시적으로 보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2명 증원하여 집행기관 소속으로 함. (안 제2조)
 - 증원하는 정원 2명은 읍면동 기능전환이 완료되는 2001년6월30일까지로 그 존속기한을 정함. (안 부칙 제2항)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3월16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26일 제3차회의에서 박수준 자치지원국장의 제안설명과 전정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및 답변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1999년3월27일 제2차본회의에서 황영철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9년 3월 29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1999년 4월 17일 강원도조례 제 2688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2,921”을 “2,923”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1,590”을 “1,592”로 한다.

부칙 제2항중 “10인은 1999년12월31일까지로 한다”를 “10인은 1999년12월31일까지로 하고, 2인은 2001년6월30일까지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강원도선행도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3월11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출향도민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여 강원사랑운동을 보다 확산시키고 도정발전의 원동력으로 집결해 나가기 위하여 종전의 선행도민대상 4개부분에 출향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애향 부분을 추가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시상부분을 종전에 친절봉사, 근면, 효행, 의행의 4개부분으로 하던 것을 애향 부분을 추가하여 5개부분으로 함. (안 제3조제1항제5호)
- 애향부분의 수상자격을 강원도에 본적 또는 원적을 가지고 있는 출향도민으로서 도정발전에 기여한 자로 함. (안 제4조 제1호)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3월16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19일 제1차회의에서 이성열소방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전정기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수정하여 가결되었다.

[수정안의 요지]

- 수정이유 : 의용소방대원으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바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장학생 자격의 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함.
- 수정주요골자
 - 안 제2조(장학생의 자격) 중 제3호의 「모범대원(소장서장이상 표창수상자 및 소방서장이 추천한 자)」를 「모범대원의 자녀중 소방서장이 추천한 자」로 수정함.
- 본회의 심사 : 1999년3월27일 제2차본회의에서 황영철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9년 3월 29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1999년 4월 17일 강원도조례 제 2691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선행도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선행도민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애향부문

제4조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애향부문은 강원도에 본적 또는 원적을 가지고 있는 출향도민으로서 도정발전에 기여한 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강원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3월 11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의용소방대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표창을 받은 모범대원의 자녀를 지급대상에 추가하는 등 종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장학생의 자격중 「표창경력이 있는 모범대원의 자녀」를 추가함(안 제2조제3호)
 - 광역체제의 전환으로 실효성 없는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함(안 제3조·제4조·제8조 및 제9조)
 - 「소방서·군」을 「소방서」로
 - 「소방서장 또는 군수」를 「소방서장」으로 수정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 3월 16일에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19일 제1차회의에서 이성열 소방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전정기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답변없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다.

[수정안요지]

- 수정이유 : 의용소방대원으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장학생자격의 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함.

－ 수정주요골자

- 「모범대원 (소방서장이상 표창수상자 및 소방서장이 추천한자)」를 「모범대원의 자녀중 소방서장이 추천한자」로 수정함.

○ 본회의 심사 :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9년 3월 29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1999년 4월 17일 강원도조례 제 2691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모범대원의 자녀중 소방서장이 추천한자

제3조중 “소방서·군(소방서 미관할구역에 한한다. 이하같다)”을 “소방서”로, 소방서장 또는 군수 (소방서 미관할구역에 한한다. 이하같다)“를 ”소방서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3항·제8조제2항 및 제9조중 “소방서장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강원도여성회관운영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3월11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기관별로 제정운영하여 오던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조례 제2670호 99.1.16)로 통합 전문개정되면서 강원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46조(설치)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의 자질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근로여성의 자립기반사업시설사용료등 징수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회관의 사용료등 징수기준을 정하고 신청인과 여성회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납부액을 반환하도록 함. (안 제2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 여성단체 등 사용료, 수수료, 면제대상을 정함. (안 제3조)
 - 외부강사 초빙과 수당지급사항을 정함. (안 제4조)
 - 도시사가 필요할 경우 회관운영관리를 위탁하고 수탁자에게 필요한 운영비 보조와 지도·감독을 정함. (안 제5조)
 - 시·군에서 선발하는 교육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숙박비 제공범위를 정함. (안 제6조)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 3월15일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19일 제1차회의에서 이만용 환경복지국장의 제안설명과 서의승전문위원의 검토 보고후 질의 및 답변이 있었으나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
 - 여성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것에 비해 지원이 약한데도 안 제5조의 위탁관리의 위탁시 여성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는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 도에서 위탁관리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 아닌지?
 - 안 제3조제1항2호에 여성단체의 범위는?
- **답변요지**
 - 공적인 측면에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단계에 있으나 향후 위탁관리 결정하는 문제와는 별개의 성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람.
 - 변화의 방향만 적응하기 위한 성격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할 것이나 위탁기능과정을 밟는 것은 아님.
 - 별도의 규칙으로 정함.

- 본회의 심사 : 1999년3월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상현교육사회위원장의 심사보고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9년 3월 29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1999년 4월 17일 강원도조례 제 2693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여성회관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여성회관의 사용료 및 수수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 및 수수료는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강원도수입증지로 납부함을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거 납부한 사용료 및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거나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사용 개시 또는 개강전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회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설이나 역무의 제공이 어려울 경우

제3조(사용료 및 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각호의 경우에는 예식장(냉난방비포함)및 회의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여성공익법인 및 여성단체
3. 생활보호법·모자복지법·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4.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3호에 대하여는 교육생수강료 및 어린이수탁료를 면제한다.



제4조(강사초빙) 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위탁관리) 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여성회관의 운영·관리를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도보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하여는 행정권한위탁및위임에관한규정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숙식비의 제공) 도지사는 교육계획에 따라 시군에서 선발하는 교육생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숙식비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 강원도가축 위생시험소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3월11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98.6.14시행)에 따라 가축위생시험소가 가축, 원유 및 축산물가공품을 검사함에 있어 그 검사의 수수료징수기준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도축검사수수료 기준이 1975년 이래 개정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이를 타도기준으로 현실화 함. (안 제3조제1항 발표)
 - 원유 및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검사수수료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고시하는 수수료기준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 (안 제3조제2항)
 - 검사를 위하여 현지출장을 요하는 경우 출장여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청인이 납부 하도

록 함. (안 제3조제3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는 검사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함. (안 제4조)
- 검사시료 및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인이 시료의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도록 함. (안 제5조)
- 사료의 검사가치가 없거나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함. (안 제6조)
- 강원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규정된 종전의 도축수수료는 이를 삭제함. (부칙 안 제2항)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3월15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19일 제1차회의에서 최현영 농정산림국장의 제안설명과 김용기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심사 : 1999년3월27일 제2차본회의에서 이연우산업경제위원회 간사의 심사보고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9년 3월 29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1999년 4월 17일 강원도조례 제 2692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가축위생시험소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축하는 가축 및 축산물 검사에 대한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축산물가공처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및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축장에서 도살·처리하는 가축 및 식육의 검사



2.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유하는 원유의 검사
3. 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가공품의 검사

제3조(수수료 등의 징수) ① 제2조 제1호의 검사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 ②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검사에 대한 수수료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고시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라 징수하되, 동 기준에 명시하지 아니한 품목에 대하여는 유사한 품목에 준하여 징수한다.
- ③ 검사신청인은 제2조 제3호의 검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현지출장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출장공무원의 여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수수료는 강원도수입증지로 납부한다.

제4조(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
3.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검사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제2조의 검사를 함에 있어 제출된 검사시료와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사시료에 대하여는 검사결과 통보후 7일 이내에 검사신청인의 반환요구가 있을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신청에 대한 불응) 가축위생시험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검사에 대한 신청을 받은 시료의 검사가치가 없거나 검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4]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 중 2. 농수산 관계를 삭제한다.

7) 강원도 신용보증조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3월11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능력이 없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유망중소 기업에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재단법인 강원신용보증조합」에 대하여 도비를 출연하는 등 도가 지원할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조합의 신용보증 능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도비·정부지원금 및 도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조제1항)
 - 조합운영의 결손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가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자금을 일시 대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조제2항)
 - 도의 지원금은 조합의 정관이 정한 사업목적 범위내에서 사용토록 용도를 명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회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
 -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도가 지원한 출연금 및 보조금의 사업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를 관련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 도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조합에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및 제6조)
 -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조합에 출연 및 자금의 일시대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보완함. (안 부칙 제2항)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심사 : 1999년3월16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20일 제2차 회의에서 김낙기 산업진흥국장의 제안설명과 김용기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및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심사 : 1999년3월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이연우산업경제위원회 간사의 심사보고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9년 3월 29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1999년 4월 17일 강원도조례 제 2694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신용보증조합지원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는 재단법인 강원신용보증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연금등) ① 도지사는 조합의 신용보증 능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다.

1. 도 출연금
2. 중앙정부지원금
3. 도 중소기업육성기금

② 도지사는 조합운영의 결손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도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자금을 일시대여 할 수 있다.

제3조(출연금등의 용도)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 출연금등은 다음각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조합의 정관, 업무방법서등에서 정한 중소기업의 금전채무에대한 보증
2. 기타 보증업무와 관련한 조합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조합이 제1항에서 정한 용도외에 출연금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도지사는 타 용도로 사용한 출연금등을 회수 할 수 있다.

제4조(사업평가)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합에 지원한 출연금 및 보조금의 사업성과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를 관련기관·단체 또는 관계전문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조합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행정지원) 도지사는 조합 설립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사무의 범위내에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조례의 개정)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5항 중 “중소기업지원기관 및 단체” 를 “중소기업지원기관 및 단체, 강원신용보증조합” 으로 하며,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 강원신용보증조합에 대하여는 기금에서 그 자금을 일시대여 할 수 있다.”

8) 강원도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3월11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에너지 이용합리화법령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사용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0년12월26일 (조례 제2128호)이 조례를 제정공포하였으나
 - 에너지이용합리화법령 제39조제1항이 98.2.2개정되었고 동법시행규칙 제26조가 98.4.1개정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이 법령에서 직접 정하여서 사실상 조례의 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이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심사 : 1999년3월15일 상임위원회에 외부되어 3월20일 제2차회의에서 김낙기 산업진흥국장의 제안설명과 김용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심사 : 1999년3월27일 제2차본회의에서 이연우산업경제위원회 간사의 심사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9년 3월 29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1999년 4월 17일 강원도조례 제 2696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강원도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강원도조례 제2128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 강원도중도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3월11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중도관광지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다른 관광지에비해 요금수준이 낮게 책정되어 있어 유지관리비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최소 관리비용의 이용자 부담원칙 및 정부의 「입장·사용료 현실화방침」의 연차적인 이행을 위하여 금회에는 타 관광지의 중·하위권 수준으로 요금을 인상조정하는 한편 비수기에는 요금을 감액징수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탄력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야영장 사용권의 서식을 별도 서식으로 정함. (안 제5조제2장)
 - 장애인에 대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면제조항을 신설함. (안 제6조제1항제5조)
 - 관광비수기에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의 50%범위내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안 제6조제3항)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3월15일 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20일제2차회의에서 방재흥 관광문화국장의 제안설명과 임병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및 답변이 있었으나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

- 중도관광지 입장료 인상안 중 비수기시 50%를 감면은 너무 많음.
- 중도관광지 현재의 상태에서 투자 및 시설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요금인상은 부적당.
- 민간업체 및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할 계획임.

- 답변요지

- 50%는 최소단위이고 탄력적이고 운영할 계획임.
 - 향후 점차적으로 개발할 계획에 있으며 민간 및 외국업체를 유치하여 본격적으로 개발할 계획에 있음.
 - 현재로써는 타업체 및 기관에 위탁할 계획은 없지만 향후 투자자가 있을 경우 종합적이고 일시적으로 개발하였음.
- 본회의 심사 : 1999년3월27일 제2차본회의에서 이상명관광건설위원회 간사의 심사보고후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9년 3월 29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1999년 4월 17일 강원도조례 제 2690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중도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중도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주차장 사용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야영장 사용권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제1항중 제5호 내지 제7호를 제6호 내지 제8호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
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수첩을 소지한자

③ 관광비수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 및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의 50%범위내에서 감액징수할 수 있다.

별표 1 및 별표2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입장료(제2조 관련)

※ ()는 감액된 요금임.

구 분	어 른	청소년 및 군경	어 린 이
개 인	1,300(800)	800(500)	400(300)
단 체	1,300(800)	600(400)	300(200)

[별표2] 시설사용료(제5조제1항 관련)

※ ()는 감액된 요금임.

시 설 명 칭	구 분	사 용 료
주 차 장 (당 일)	승 용 차	2,000(1,000)
	버스·화물차	4,000(1,700)
야 영 장 (1일)	일반형(9인 이하)	1,500
	대 형(10인 이하)	3,000

1일은 24시간 이내로 봄.

[별지 제1호서식] 입장권

입장권원부 일련번호 : 중도관광지 () 원 년 월 일 강원도지사	입장권부표 일련번호 : 중도관광지 () 원 년 월 일 강원도지사	입장권부표 일련번호 : 중도관광지 () 원 년 월 일 강원도지사	강원도기 중도관광지 입장권 일련번호 : () 원 () 배경사진 및 홍보문안
4.0cm	4.0cm	4.0cm	9.0cm

※()안에는 어른, 청소년 및 군경, 어린이 등으로 표시하고 뒷면에는 주의사항을 기재할 것.

[별지 제2호서식] 입장권

단체입장권원부 일련번호 : 중도관광지 () 원 년 월 일 강원도지사	단체입장권부표 일련번호 : 중도관광지 () 원 년 월 일 강원도지사	단체입장권부표 일련번호 : 중도관광지 () 원 년 월 일 강원도지사	강원도기 중도관광지 단체입장권 일련번호 : () 원 배경사진 및 홍보문안
4.0cm	4.0cm	4.0cm	9.0cm

※ ()안에는 어른, 청소년 및 군경, 어린이 등으로 표시하고, 뒷면에는 주의사항을 기재할 것.

[별지 제3호서식] 주차장 사용권

주차장 사용권 일부 일련번호 : () 원 년 월 일 강원도지사	강원도기 중도관광지 주차장 사용권 일련번호 : () 원 배경사진 및 홍보문안
5.0cm	9.0cm

※ () 안에는 승용차, 버스, 화물차 등으로 표시하고, 뒷면에는 주의사항을 기재할 것.

[별지 제4호서식] 야영장 사용권

야영장 사용권 원부 일련번호 : () 원 년 월 일 강원도지사	강원도기 중도관광지 야영장 사용권 일련번호 : () 원 배경사진 및 홍보문안
5.0cm	9.0cm

※ ()안에는 일반형, 대형등으로 표시하고, 뒷면에는 주의사항을 기재할 것.

10) 강원도립국악·무용예술단운영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3월11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강원문화예술의 창달과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강원도가 국악부문과 무용부문에 대한 2개부문의 예술단을 창단·운영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예술단 인원은 22인상 42인 이하로 하며, 국악부와 무용부를 둠. (안 제3조 및 제4조)
 - 단장 : 행정부지사(부단장 : 관광문화국장)
 - 각부에 부장 1인씩 둠
 - 예술단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등 12인 이내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함. (안 제5조)
 - 위촉(임명)권자 : 도지사, 임기 : 2년(연임가능)
 - 위원장 : 관광문화국장(부위원장은 호선)
 - 예술단원의 공개전형을 위하여 일시적인 전형위원을 위촉함. (안 제6조)
 - 국악부문 5인, 무용부문 5인
 - 예술단원의 전형은 일반 공개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전형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 일반공개전형은 실기시험과 면접으로 함.
 - 특별전형은 서류심사로 하되, 그 대상을 권위있는 대회 입상자등으로 한정함.
 - 단원은 전형을 거쳐 도지사가 위촉함. (안 제9조)
 - 위촉기간 : 2년, 위촉당시 연령 : 만60세 이하
 - 단원이 품위손상등 예술단 활동을 저해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으며, 승임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함. (안 제10조 및 제13조)
 - 예술단 운영경비를 매년 예산에 계상토록 하고, 단원·운영위원·전형위원에 대하여는 보수지급 및 실비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 및 제12조)
 - 예술단 공연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으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기로 하고, 외부공연으로 출연료를 받는 경우에는 세입조차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
 - 필요한 경우 예술단을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하며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5조 및 제16조)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3월15일 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20일 제2차회의에서 방재홍

관광문화국장의 제안설명과 임병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수정하여 가결되었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

- 예술단 상임위원들이 예술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보수체계 개선
- 안 제9조 「단원의 해촉조항」에서 위촉기간을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하고자 함.

- 답변요지

- 예술단 상임위원은 전국과 비교하여 적은 액수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개선할 계획에 있음.
- 안 제9조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하여도 관계없음.

[수정안의 요지]

- 수정이유 : 강원도립국악, 무용예술단의 운영에 대하여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구수정
- 수정주요골자
 - 「제9조(단원의 위촉) ①상임단원은 전형을 거쳐 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를 「제9조(단원의 위촉) ①상임단원은 전형을 거쳐 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
- 본회의심사 : 1999년3월27일 제2차본회의에서 이상명 관광건설위원회 간사의 심사보고후 질의 및 토론없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9년 3월 29일 수정안대로 가결되어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강원도조례 제2695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립국악 · 무용예술단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문화예술의 진흥 및 창달을 위하여 강원도립국악·무용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임단원”이라 함은 예술단의 일원으로서 상시공연을 연구·지도·출연하는 자를 말한다.
2. “비상임단원”이라 함은 예술단의 공연활동시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출연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성) ① 예술단은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하여 22인이상 42인이하의 상임단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비상임단원을 둘 수 있다.

- ② 단장은 행정부지사, 부단장은 관광문화국장이 된다.
- ③ 예술단에는 국악부와 무용부를 두며, 각부에 부장 1인을 둔다.
- ④ 단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단장등의 직무) ① 단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예술단을 통할하며,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예술단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립국악·무용예술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관광문화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은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및 임명한다.
-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예술단 운영에 관한 사항
 2. 단원의 특별전형 및 해촉에 관한 사항
 3.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⑦ 운영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전형위원) ① 단원의 일반공개전형을 시행하기 위하여 전형위원을 둔다.

- ② 전형위원은 국악부문·무용부문 각각5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③ 전형위원은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당해 전형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7조(전형) ① 전형은 일반공개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서류심사와 면접에 의한 특별전형을 할

수 있다.

② 공개전형은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하며, 그 방법과 채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전형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내외 권위있는 예술경연대회에서 입상경력이 있는 자
2.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 중 실적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8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에서 정하는 결격자는 단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9조(단원의 위촉) ① 상임단원은 전형을 거쳐 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상임단원의 위촉당시 연령은 만60세 이하로 한다.

제10조(단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원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당원으로서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시키는 자
2.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
3.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회피한 자
4. 단장의 허락없이 자체공연 외의 공연에 출연하거나 관여한 자
5. 기타 법령 등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제11조(예산) 도지사는 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매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제12조(보수 및 실비보상) ① 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수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촉된 운영위원 및 전형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겸직금지 및 복무) ① 단원은 도지사의 사전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단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단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관람료등) ① 예술단이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예술단의 외부공연으로 출연료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도의 수입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관람료 징수기준은 작품의 질 등을 참작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위탁운영) 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술단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도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하여는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규정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同議案

1) 수도권 행정 협의회규약변경규약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3월17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규약의 내용중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맞지 않거나 표현이 부적절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그간 정부조직 및 각 지방자치 단체의 직제개편으로 기관 명칭 또는 직명이 변경됨에 따라 규약상의 기관명칭과 직명을 현재에 맞추려는 것임.
- 주요골자
 - 협의회 위원의 상임·비상임 구분폐지(안 제4조제1항)
 - 수도권 5개 시·도를 상임 및 비상임위원으로 구분했던 것을 폐지
 - 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한 서기3인(서울, 인천, 경기)을 5인(각시·도에 1인씩)으로 조정
 - 규약상 구체적인 정기회의 소집시기 조정(안 제6조제1항)
 - 정기회를 연2회 2-3월과 8-9월 중에 소집하도록 특정시기로 구체화 되어있던 규정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2회 개최” 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회의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함.

- 안전관련 중앙행정기관이 장등의 회의참석 근거규정 신설(안 제10조제2항)
 - 협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안전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는 근거규정신설(행자부협의회의운영규칙 제3조)
-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및 실무협의회 위원장, 간사등의 직명변경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7조, 안 제9조)
 - “인천직할시”를 “인천광역시”로
 -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 “부시장 또는 부지사”를 “행정자치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로
 -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실·국장”으로
 - “기획관리담당관”을 “광역행정업무담당과장 또는 담당관”으로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3월18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20일 제2차회의에서 조명수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정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심사 : 1999년3월27일 제2차본회의에서 황영철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후 질의 및 토론없이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규약은 1999년 3월 29일 원안대로 가결되어 강원도지사에게 송부되었다.

[의결전문]

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규약안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소위치) 협의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구성) 협의회는 수도권행정관련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도 구성한다.



제4조(조직) ① 협의회의 위원은 제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서울특별시장으로 하고, 유고시에는 서울특별시 행정(1)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가 대리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1. 인접지역과 관련되는 도시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구역내의 건축 및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3.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인접지역과 관련되는 주택 및 공업단지 등의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5. 행정구역 경계관리 등에 관한 협의·조정 또는 공동처리에 관한 사항
6. 한강의 개발·관리 및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7. 자원의 개발·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8. 환경오염방지 및 감사에 관한 사항
9. 시·도간 연결 버스노선의 신설·연장 등 교통망 확장에 관한 사항
10. 주요 연결도로 등 도로망의 신설·확장 및 포장에 관한 사항
11.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12. 수도권 광역 상·하수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13.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공동감시·단속 및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
14. 자원 및 생산물의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15.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행정보급 및 기술의 교환
16. 기타 광역행정 수행상 필요한 사항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하는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위원은 협의안건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협의안건을 제출받은 회장은 협의안건을 실무협의회에서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전검토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⑤ 협의안건의 합의는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제7조(미합의 사항의 조정요청) 관계지방자치단체장은 협의회에서 2회이상 협의하여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협의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합의 및 조정의 효력) 관계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나 행정자치부장관이 조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등)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5인을 둔다.

② 간사는 서울특별시의 광역행정업무 담당과장 또는 담당관으로 하고, 서기는 각 시·도의 광역행정업무 담당사무관 각 1인씩으로 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각 위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협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전관련 중앙행정 기관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지방의회의원, 관련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전문가 중에서 협의회는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협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효율적 운영과 협의안건에 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실·국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련 국·과장이 배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실·국장이 되며, 간사와 서기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자가 겸직한다.

④ 실무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회의 이 회의개최를 요구하는 때 또는 실무협의회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종합하고 이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3조(경비부담)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할 수 있다.

제14조(회계) 협의회는 경리상황은 매년 첫 번째 회의시 간사가 보고하며 협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규약변경) 이 규약은 위원전원의 찬성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정)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규약의 해석 등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建議案

1) 강원지방조달청강릉출장소준치건의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3월20일 신창승의원외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영동지역 강릉에 소재하는 강원지방조달청강릉출장소가 정부의 구조조정에 의해 강원 지방 조달청으로 통합되면 영동지역 10개 시·군의 80여만의 주민들과 1,190여개 공공기관·중소기업체들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은 물론 여간 840억원에 해당하는 조달물량수급에 따른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강원지방조달청강릉출장소를 존치시켜주기를 건의하려는 것임.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심사 : 1999년3월23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26일 제3차회의에서 신창승위원의 제안설명과 전정기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1999년3월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황영철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건의안은 1999년 3월 29일 기획예산위원회 · 조달청에 건의되어 회시되지 않았다.

[의결전문]

강원지방조달청강릉출장소조치건의문

강릉지역에 있는 강원지방조달청강릉출장소는 '79년7월6일 조달청춘천사무소강릉출장소로 개소하여 20년간 영동지역 10개시·군의 각급 공공기관의 저장품과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주요 건설자재의 공급으로 조달청의 최일선 창구로써 낙후된 강릉지역의 발전과 함께 같이 성장하여 왔으며, IMF이후 지역 중소기업체의 경영악화와 민수시장의 침체로 조달청의 자금 의존도는 점점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강원지방조달청강릉출장소의 업무량 증가를 살펴보면 '87년도에 159억원의 물자공급에서 '97년 10년동안 838억원으로 5배가 증가하였고, 수요기관도 '87년도 375개 기관에서 '97년말 현재 1,190개 기관으로 3배가 늘어 많은 기관에서 많은 물량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달청강릉출장소를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으로 폐쇄하고 춘천에 소재하는 강원지방조달청으로 통합한다는 소식이 있는 바, 만약 강원지방조달청으로 통합될 경우 영동지역 각급 공익기관의 조달물품 적기공급과 춘천에서의 원거리 운송에 따른 물량비용의 과다로 인한 조달물자의 원가상승요인이 되어 값싸고 질 좋은 조달물자를 공급할 수 없게 됨은 물론, 영동지역 1,190여개 업체와 기관들이 하루종일 소요되는 춘천까지가서 조달업무를 수행할 경우 막대한 물류비용과 경비가 소요되고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영동지역은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 강원도는 영동지역 주민들의 행정불편을 덜기 위해 해양출장



소까지 설치하는 실정인데 조달청 강릉출장소가 폐쇄되면 1,190여개 기관과 업체들,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작고 능률적인 정부 조직개편도 중요하지만 이로 인하여 영동지역의 중소기업체 지원과 많은 이용업체에 대한 행정의 편의제공을 하고 있는 강원지방조달청강릉출장소를 폐지하는 것은 시대조류에 역행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 3월9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을 빨리하는 것보다 편리하고 좋은 것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도 이러한 이유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조달청강릉출장소는 연간 840억원의 물자를 공급하여 연간1%의 수수료 수입만 본다해도 연간 8억원의 수입이 발생하며 현재 지출비용 4억원(인건비)을 제공한다고 해도 흑자출장소로 지역경제활성화와 많은 조달물자 이용자의 편의제공 차원에서 춘천까지 왕복1일(8시간)이 소요되는 현실을 감안하여(타지역 4개 출장소 관할지방청과의 소요시간 : 1~1.5시간) 강원지방조달청강릉출장소를 존치시켜 주시기를 강원도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2) 폐광지역카지노외타지역내국인출입카지노불허요구건의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3월24일 산업경제위원장
- 제안이유 : 석탄산업합리화 조치로 탄광지역의 침체되어 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폐광지역에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최근 제주도가 내국인 출입 카지노 허용을 위해 관련법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는 바 강원도민은 폐광지역외 타 지역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 허용을 결사반대하며 정부의 분명한 입장 표명과 아울러 침체된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해 스몰카지노사업이 조속히 개장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 건의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제주도를 포함한 타 지역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 허용 추진을 결사반대 함.
 - 내국인 카지노 허용논란 조기 종결을 위해 국정책임자의 분명한 의지를 밝혀 주기 바람.
 - 정부는 ‘스몰카지노사업’의 조속실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기를 요청함.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3월24일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회의에서 김규세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의 제안설명후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1999년3월27일 제2차본회의에서 이연우 산업경제위원회 간사의 심사보고후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건의안은 1999년 3월 29일 청와대, 문화관광부, 산업지원부, 여야3당에 건의되어 1999년 4월 9일 내국인출입허용불가로 통보되었다.

[의결전문]

폐광지역카지노외타지역내국인출입카지노불허요구 건의안

강원남부 탄광지역은 지난 60-70년대 우리나라 유일의 에너지 자원인 석탄 생산으로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나,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 및 청정에너지 선호로 정부에서는 '89년부터 석탄 산업합리화 시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대체산업육성 등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아직 대책없이 인위적인 석탄산업 합리화로 많은 탄광업체가 문을 닫고, 산업역군으로 막장에서 젊음을 불사르던 근로자들은 직장을 잃고 지역을 떠나가 전체 인구가 절반이상 줄어들어 폐광촌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지역경제 회생과 생존권 확보를 위한 처절한 투쟁의 결실로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게 되었고, 정부에서는 특별법에 따라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를 탄광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주민 생존권 확보와 낙후된 지역개발의 유인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폐광지역 카지노가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이때에, 제주도 등 타 지역에서 내국인 출입 카지노 허용을 요구하고 있어 폐광지역 카지노 추진에 막대한 지장은 물론, 강원도민은 지역정서를 무시한 이러한 처사에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허용할 경우, 접근성이나 주변환경이 극히 열악한 폐광지역 카지노는 경쟁력을 상실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추진하는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 전체가 실패로 이어지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해 7~8월 문화관광부 장관의 슬롯모신 전국허용과 관련한 청와대 보고이후, 탄광지역 주민들은 강력한 집단 반발로 이를 극복해 나갔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앞으로 내국인 출입 카지노 허용문제가 대두될 경우에는 제2의 사북사태도 불사하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슬롯모신을 포함한 내국인 카지노 허용문제에 대하여는 지난 '96년9월 대통령이신 김대중 당시 국민회의 총재께서 강원남부 폐광지역을 방문하시어, 지역주민들의 추가설치 요구에 대하여 1개소 추가허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며 2개소 설치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98년8월 국민회의 정책위원회에서도 슬롯머신은 전혀 논의된 바 없으며, 향후 안건으로 상정치 않을 계획임을 통보해 왔으며, 또한 '98년9월 문화관광부에서도 현시점에서 전국 허용문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추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최근 제주도에서 '내국인출입 카지노'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한 탄전지역 주민들이 생존권 확보차원의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는 등 탄전지역 민심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만큼, 폐광지역 이외의 다른 지역에는 내국인 출입 카지노 설치를 공식적으로 불허하겠다는 입장표명과 함께 강원도에서 추진중인 '스몰카지노 사업' 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주요골자로 요망하기에 우리 강원도의회 의원 일동은 강원도민을 대표하여 폐광지역 경제회생과 주민들의 생존권 수호를 위한 여망을 받들어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1. 제주도를 포함한 타지역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 허용추진을 결사 반대합니다.
2. 내국인 카지노 허용논란 조기 종결을 위해 국정책임자의 분명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정부는 '스몰카지노사업' 의 조속 실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第 8 節 第99回 臨時會

1. 概 況

가. 開 會

제99회 강원도의회임시회는 지난 4월 10일 안상현 의원의 15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자로 의장이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12일간의 회기로 1999년 4월 19일 개회하여 4월 30일 폐회하였다.

나. 議事日程

1) 本會議

가) 제1차 본회의 : 1999년 4월 19일(월)

- 제99회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 1999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 1999년도제1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건의건
- 4분자유발언(김길정, 엄문섭, 함종선의원) 의견
- 신상발언(황영철, 유돈대의원) 의견

나) 제2차 본회의 : 1999년 4월 30일(금)

- 1999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 1999년도제1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 행정규제기본법시행에따른강원도행정정보공개조례증정비에관한조례안
-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공공시설세부과지역변경동의안
- 강원도초등학교교원자격의취득을위한보수교육수강료징수조례안
- 수산관계법령위반어업인에대한사면건의안
- 영월댐건설반대건의안
- 해외연수결과보고
- 4분자유발언 (장동희, 이종근, 곽노린의원) 의건

2) 運 營 委 員 會

가) 제1차회의 : 1999년 4월 19일(월)

- 의사일정결정의건
- 제99회강원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결정의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제100회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협의의건
- 제100회임시도의회도정질문운영에관한건

나) 제2차회의 : 1999년 4월 22일(목)

- 1999년도 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처)

3) 內 務 委 員 會

가) 제1차회의 : 1999년 4월 20일(화)

- 의사일정결정의건
- 1999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소방본부, 감사관실)

나) 제2차회의 : 1999년 4월 21일(수)

- 1999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자치지원국)

-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에따른강원도행정정보공개조례등정비에관한조례안
- 강원도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공동시설세부과지역변경동의안

다) 제3차회의 : 1999년 4월 22일(목)

- 1999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공무원교육원)

라) 제4차회의 : 1999년 4월 23일(금)

- 1999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기획관리실)

마) 제5차회의 : 1999년 4월 24일(토)

- 1999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공보관실)

4) 敎育社會委員會

가) 제1차회의 : 1999년 4월 20일(화)

- 의사일정결정의건
- 1999년도제1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청)
- 강원도초등학교교원자격의취득을위한보수교육수강료징수조례안

나) 제2차회의 : 1999년 4월 21일(수)

- 1999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환경복지국)

다) 제3차회의 : 1999년 4월 22일(목)

- 1999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도립강원전문대학)

라) 제4차회의 : 1999년 4월 23일(금)

- 1999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보건환경연구원)



마) 제5차회의 : 1999년 4월 24일(토)

- 1999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여성정책실)

5) 産業經濟委員會

가) 제1차회의 : 1999년 4월 20일(화)

- 의사일정결정의건
- 1999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산업진흥국)

나) 제2차회의 : 1999년 4월 21일(수)

- 1999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농정산림국)

다) 제3차회의 : 1999년 4월 22일(목)

- 1999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농업기술원)

라) 제4차회의 : 1999년 4월 23일(금)

- 1999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해양수산출장소)
- 수산관계법령위반어업인에대한사면건의안

마) 제5차회의 : 1999년 4월 24일(토)

- 1999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국제협력실)

6) 觀光建設委員會

가) 제1차회의 : 1999년 4월 20일(화)

- 의사일정결정의건
- 1999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관광문화국)

나) 제2차회의 : 1999년 4월 21일(수)

- 1999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건설도시국)
- 영월댐건설백지화촉구건의안

다) 제3차회의 : 1999년 4월 22일(목)

- 1999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국제대회지원단)

7) 豫算決算特別委員會

가) 제1차회의 : 1999년 4월 26일(월)

- 의사일정결정의건
- 간사선임의건
- 1999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나) 제2차회의 : 1999년 4월 27일(화)

- 1999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다) 제3차회의 : 1999년 4월 28일(수)

- 1999년도제1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라) 제4차회의 : 1999년 4월 29일(목)

- 1999년도제1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다. 議會活動

1) 本會議

가) 1999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제1차본회의



- 1999년 4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김진선 강원도지사로부터 1999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
 - ※ 김진선 도지사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교부세등의 세입은 줄고 지출해야 할 곳은 많은 그 어느때보다 어려운 상황하에서 편성하였다고 전제하고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금과 각종 현안사업비 해결을 위해 지방채발행, 교부세 추가확보, 예산절감 등의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나) 1999년도제1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제1차본회의

- 1999년도 4월 19일 제1차본회의에서 김병두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
 - ※ 김병두교육감은 이번 회기에 상정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확정이후 교육부로부터 추가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양여금과 보조금등 국고지원 추가사업을 계상하고 1998년도 결산잉여금 및 수업료 인상분과 교원장년단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등을 계상하기 위하여 편성하였다고 전제하고 이와같이 편성된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7,390억원보다 18.7%증액된 8,770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 1차본회의

- 1999년 4월 19일 제99회강원도임시회 제1차운영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1항과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 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한나라당 7명, 국민회의 8명, 자민련 2명, 무소속 3명등 20명으로 구성하기로 의결한 대로 가결되었다.

라) 4분자유발언(김길정, 엄문섭, 함중선의원) : 1차본회의

- 김길정의원 : 지난 3월 22일부터 31일까지 도지사님과 함께 동남아세일즈순방을 다녀오면서 느낀점을 소개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전제하고 동남아지역도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난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정부차원에서의 관광진흥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태국에서는 경제난 타개목적으로 관광진흥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도 집행부에서도 새로운 관광정책의 개발등 적극 나서고 있으나 좀더 공격적인 관광홍보, 마케팅활동을 전개하면서 전도민관광요원과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경제의 어려움을 관광으로서 극복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관광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엄문섭의원 : 지난 3월 22일부터 31일까지 도내 중소기업체 동남아시아개척단과 함께 필

리핀, 태국, 인도네시아등 3개국에서 펼친 우수제품 관촉상담에 참여한 체험을 보고드리고자 한다고 전제하고 우리도가 나아가야 할 중요지표의 하나로 투자유치와 수출증대 등에 큰 비중을 두고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 하였다.

- **함종선의원** : 지난 4월 8일자 김진선지사의 영월댐건설과 관련한 강원도의 입장발표에 대한 발언이라고 전제하고 지사의 댐건설 불가발표에 뒤이어 각종사회단체에서 반대성명 발표가 홍수를 이루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대결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극히 불행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영월동강 댐건설 찬반입장을 떠나 중앙정부와 강원도지방정부간의 대결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사태에 대해 김진선지사께서 이를 수습할 수 있는 대책을 촉구하였다.

마) 신상발언(황영철, 유돈대의원) : 1차본회의

- **황영철의원** : 중앙정부의 동강댐건설계획에 따른 도민들의 움직임에 대한 지사님의 명확한 의견표출과 이에 뒤따른 도민의 의사를 대변해야할 우리도의회 의사표출이 과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이부분에 대해 절차의 문제제기를 시작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앞뒤를 제대로 재지 않은 잘못된 의견이라고 생각하며 조금은 절차상 부족한 면이 있다할지라도 그 기본적 취지가 도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이라면 그부분은 우리스스로서 감싸주고 함께 이끌어가고 중앙정부에 도민들의 이익을 함께 대변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였다.
- **유돈대의원** : 영월댐이 만일 건설된다면 정선은 매년 침수가 되어 정선이 완전히 없어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 자리에 있는 의원들이 여야를 떠나 정선에 살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서라도 같이 협조해 영월댐건설의 부당함을 얘기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2) 委員會

가) 현지사찰 : 내무위원회

- 1999년 4월 22일부터 4월 29일 기간동안 1999년도 제1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은 운영위원회(의회사무처소관), 내무위원회(소방본부, 감사관실, 자치지원국, 공무원교육원,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교사위원회(도교육청), 환경복지국, 도립강원도전문대학, 보건환경연구원, 여성정책실, 산업경제위원회(산업진흥국, 농정산업국, 농업기술원, 해양수산물장소, 국제협력실), 관광건설(관광문화국, 건설도시국, 국제대회지원단), 예산결산특위위원회에서 각각 심의하였다.



나) 현지사찰 : 관광건설위원회

- 1999년 4월 20일 제1차회의에서 의사일정을 결정한 후 소관업무파악을 위해 4월 23일 지방도 408호선(봉평 무이리~홍천서석)도로현장시찰에 이어 4월 24일 지방도 456호선(횡계 우회도로 및 고속도로진입구간)현장을 시찰하였다.

라. 議案處理狀況

1) 一般議案

- 이번회기중 상정대상 일반안건은 총 8건으로 제안자별로는 도지사제출 4건, 도교육감제출 2건, 의원발의 2건이며 처리결과를 보면 8건 모두 가결되었고 종류별처리현황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종류별	상 정 대 상 안 건			의 안 처 리 내 역			
	합 계	전회기 이 월	금회기 접 수	가 결			폐 기 (철회)
				소 계	원 안	수 정	
계	8		8	8	6	2	
조 례 안	3		3	3	3		
예 산 안	2		2	2	1	1	
동 의 안	1		1	1	1		
건 의 안	2		2	2	1	1	

2. 議決案件

가. 條例案

1) 행정규제기본법시행에따른강원도행정정보공개조례등정비에관한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4월 12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행정규제기본법의 제정(98. 3. 1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등 「규제법정주의」를 실현하고자 강원도규제개혁대책협의회 심사를 거친 개선사항을 별개의 조례안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조례개정 이후에 법령이 제정되면서 조례의 규정내용이 법령에 모두 반영되어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강원도행정정보공개조례」를 폐지하면서 종전에 규정하던 정보공개수수료는 강원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조 및 부칙 제2항)
- 인감계등 과도한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된 「강원도수입증지조례」중 해당 내용을 삭제함(안 제2조)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 4월 21일 제99회강원도의회임시회 내부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박수준 자치지원국장의 제안설명과 전정기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1999년 4월 30일 제99회강원도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조규병 내부위원회 간사의 심사보고후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9년 4월 30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1999년 5월 20일 강원도조례 제2699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행정규제기본법시행에따른강원도행정정보공개조례등정비에관한조례안

제1조 강원도행정정보공개조례(강원도조례 제2394호)는 이를 폐지한다.

제2조(강원도수입증지조례의 개정) 강원도수입증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인감계와”를 “은”으로, “인감계를”을 “인적사항을”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첨부서류 : 위치도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의 기준에 의하여 징수한다.

2)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4월 12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농공단지활성화를 위하여 농공단지에 대체입주 하는 자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도내에 외국자본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기간을 연장하여주며 침체된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별장용부동산에 대한 종과세 제도를 한시적으로 폐지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종전 농공단지 최초 입주자에 대하여만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던 것을 단지내 휴업 또는 폐업된 기존업체를 인수하여 입주하는 업체에 대하여도 2003년까지 면제하여 주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 외국인 투자기업이 도내에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법령에서 사업개시일부터 8년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투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15년간 면제하도록 함(안 제28조의4 신설)
 - 별장용부동산에 대하여 종전 일반세율(1000분의 20)의 5배를 적용하던 취득세 종과율을 2001년까지 일반세율을 적용하되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도내 본적·원적을 가지고 있는 자에 한해 적용하고 아파트등 공동주택은 도내 본적·원적을 불문하고 모두 적용토록 함. (안 제30조의2 신설)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 4월 13일 내부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1일 제2차 회의에서 박수준 자치지원국장의 제안설명과 전정기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1999년 4월 30일 제2차본회의에서 조규병내무위원회 간사의 심사보고후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9년 4월 30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1999년 5월 15일 강원도조례 제 2698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한함)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 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당해 농 공단지 관리기관 또는 당해 농공단지 관리기관이 저장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면제 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4(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강원도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 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9조제4항 단서의 규



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전액을 면제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정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별장에 대한 감면) 이 조례 시행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장에 해당되더라도 이에 적용하는 취득세의 세율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20을 적용한다.

1. 강원도내에서 취득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
2. 강원도에 본적 또는 원적이 있는 자가 성묘·고향 방문 등의 목적으로 강원도내에서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강원도초등학교교원자격의취득을위한보수교육수강료징수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4월 16일 강원도교육감
- 제안이유 : 교원정년의 단축과 명예퇴직의 확대로 초등학교 교원의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부족한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교원자격의취득을위한보수교육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실시하는 중등학교교사자격증소지자의 초등학교 2급정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시 교육대상자가 납입하는 수강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 교육대상자의 수강료는 교육부가 제시한 보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전국 표준 연수경비를 적용하였고(안 제2조)
 - 수강료의 징수방법은 보수교육 개시전일까지 연수기관으로 교부하여야 함으로 당해 보수교육 실시 5일전까지 납입토록하고 납입한 수강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도록 하였으며(안 제3조)
 - 수강료미납시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교육대상자가 소정 기일내에 수강료를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교육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음(안 제4조)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 4월 17일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0일 제1차회의에서 최규성 교육국장의 제안설명과 서의승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및 답변이 있었으나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질의 및 답변]

- 질의요지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와 같이 설명바람
- 답변요지
 - 국가적인 필요에서 추진하는 것이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금액 최소화를 위해서는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음
- 본회의 심사 : 1999년 4월 30일 제2차본회의에서 안상현교육사회위원장의 심사보고후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9년 4월 30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1999년 6월 18일 강원도조례 제 2697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초등학교교원자격의취득을위한보수교육수강료징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원자격의취득을위한보수교육에관한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이하 “보수교육과정”이라 한다)의 수강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강료) 보수교육과정 교육대상자의 수강료는 별표1과 같다.

제3조(수강료 징수) ① 수강료는 당해 보수교육 실시 5일전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입한 수강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수강료 미납자 조치) 보수교육과정 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소정기일 내에 수강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교육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위임교정)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豫算案

1) 1999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4월 14일 강원도지사
- 제안설명요지
 - 1999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449억원으로서 기정예산 9,570억원보다 1,879억원이 증가한 규모임.
 - 일반회계는 9,841억원으로서 1,878억원이 증가하였음.
 -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성립이후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등 중앙지원사업증감내시분 1,087억원과 지방세 추가징수 전망액 50억원, 98년도 결산을 감안한 순세계잉여금등 세외수입 335억원을 증액하였고 금년 9월에 개최되는 관광EXPO관련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 지방도 정비사업 등 필수재원확보를 위하여 지방채 406억원을 계상하였음.
 -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비 234억원과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24억원등 추가지원되었거나 변경지원되 사업비 1,02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 사업은 지방도정비, 하주조알처리장 등 변경 내시된 사업비 143억원을 계상하

였고 지방도정비 사업중 연내완공이 불가피한 민원관련 노선과 99년도 마무리노선에 대한 도비 소요액을 지방채와 채무부담 사업으로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시책분과 기금지원사업으로는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 30억원과, 자전거도로정비사업 22억원, 소방력보강사업 17억원등 시책교부세사업 163억원과 기금지원 사업비 15억원을 지정된 용도대로 계상하였고 이밖에 지역발전 촉진과 도민복지향상을 위하여 국제관광EXPO 상징탑건립과 부지 매입비 및 노인교통비 추가 소요액 연내투자가 불가피한 당면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지방세징수교부금, 명퇴 및 퇴직수당등 법정, 의무경비 100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음.

- 특별회계는 1,608억원으로 1억원이 증가하였음.
- 도립강원전문대학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7천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휴학생 증가로 인한 수업료 감소액과 순세계잉여금, 전입금등의 변동사항을 정리하였고 신입생 유치를 위한 광고료와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료 인상분등 필수경비 추가소요액을 계상하였으며 공원 및 관광지개발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천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연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등 추가 소요액과 차입금 상환잔액이자 부족액등으로 정리하였고 춘천수렵장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숲속의 집 정비사업비와 경상경비 변동사항을 일부 조정하였으며 산막 및 세미나실 건축에 소요되는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3억 4천만원은 채무부담사업임.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 4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6일 제1차회의에서 조명수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박종기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및 답변에 이어 4월 27일 제2차회의를 속개 장시간에 걸쳐 질의 및 답변을 거쳐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다.

[질의 및 답변]

- 질의요지
-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추가계상사유
- 중부내륙권 발전 및 공동협력에 관한 연구용역비 1억원의 용역기관과 기대되는 효과는?
- Y2K문제 해결예산이 산발적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기획관리실에서 통합관리하는 방안은?
- 고시훈련계관련예산에 문서정합기 구입예산을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볼 때 계상



하여야 하는지?

- 도청합창단이 꼭 필요한지와 입상실적이 있는지?
-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1개소에 22억을 삭감한 이유?
- 경로연금대상자 선정 및 지급기준은?
-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예산이 당초보다 많이 삭감된 사유?
- 국가지원지방도확포장사업 4개지구내역

- 답변요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도세 총액의 2.6%를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써 98년도 정산분과 99추가소요액을 계상하였기 때문임.
- 용역기관 및 방법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도간에 협의중에 있으며 다른지역에 비해 오지이면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이 지역의 균형적 개발을 촉진시키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
- 도의 각부서에서 본예산 확정이후 추가로 도출된 Y2K문제해결비용으로 농업기술원을 비롯한 7개기관에 계상되었으며 사업소의 경우는 회계처리가 사업소 단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각부서에 계상하게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Y2K문제해결비용종합관리는 기획관리실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음.
- 우리도에서는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을 비롯한 국가자격시험 시행을 위하여 연간 평균 8회에 걸쳐 문서편집실을 운영하고 있음. 현재 편집실을 운영하고 있음. 현재 편집실에 자동편집장비가 없어 각종시험문제 편집을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어 시험때마다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으로 고속으로 자동 편철할 수 있는 문서 정합기를 구입하여 편집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임.
- 직원들의 정서함양과 활기찬 직장분위기조성을 위하여 조직된 직원들의 순수 취미모임이고 결성된 기간이 짧아 아직까지 대회에 입상실적은 없음.
- 금년부터 2001년까지 3년에 걸쳐 총350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이중국고보조금이 105억원으로 30% 지원받는 사업으로 금회 감액하는 22억원은 환경부로부터 지원계획이 변경되어 감액하였음.
-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와 가구별 1인당 소득이 354천원이하이고, 재산이 4천만원이하인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음.
- 세입은 당초예산 편성시 98. 11월의 국고보조금 가내시액을 기준하였으나, 그 후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일부예산이 감액되었기 때문이며 세출은 장애인 생활정보센터 운영과 장애인보호작업장 개선등 시급한 사업에 대한 추가 요인이 발생되어 증액되었음.

- 금년도 추진하는 4개지구는 98년도부터 장기계속공사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장으로 영월 남면~서면간, 영월주천~원주신림간, 철원서면~근남면간, 국제관광엑스포 행사준비와 연계한 속초 미시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음.

[수정안의 요지]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4월 27일 계수조정 소위원회
- 수정이유 : 영세장애인 사회복리비등 일부 증액 조정
- 주요골자
 - 세출예산 예비비에서 2억2천2백만원을 감액하여 여성기능훈련비에 2천만원, 독립전문대 실습장 5천만원, 전국어민후계자대회참가 2천만원, 근로자 산업시찰 4천만원, 무사마귀 병방제 3천만원, 장애인수화교실 1천2백만원, 1급장애인 진료비로 5천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함.
 - 본회의 심사 : 1999년 4월 19일 제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진선지사의 제안설명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토록 한 후 1999년 4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박금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수정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추가경정예산수정(안)은 1999년 4월 30일 수정(안)대로 가결되어 강원도지사에게 송부되었다.

[의결전문]

1999년도 제1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 수정(안)

1. 예산총칙 :

제1조 : 세입·세출 예산총액과 일시차입 한도액

- 합계 : 1,032,526,796천원을 1,032,576,796천원으로 수정
(일시차입한도액은 30,976,000천원을 30,977,000천원으로 수정)
- 기타특별회계 : 48,432,747천원을 48,482,747천원으로 수정



(일시차입한도액 1,453,000천원을 1,454,000천원으로 수정)

- 도립강원전문대학운영 : 4,020,325천원을 48,482,747천원 수정)

(일시차입한도액은 121,000천원을 122,000천원으로 수정)

제2조 내지 제6조는 변동없음

제7조 : 일반회계 예비비는 7,489,677천원을 7,267,677천원으로 수정

2. 일반회계 : 수정내역

(단위 : 천원)

소관	과 목		자치단체제출예산액	수정액		수정예산액	수정사유 및 내역
	세항	세세항		감액	증액		
계			984,094,049	222,000	222,000	984,094,049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경상 적경비	701-00	2,226,000		50,000	2,276,000	강원전문대학특별회계전출금(강원전문대학실습장)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경 상적경비	307-02	110,000		12,000	122,000	장애인수화교실운영 (5개소)
보건위생과	보건관리자체 사업	308-01	422,905		50,000	472,905	장애인무료건강진단 (2천명)
여성회관	여성회관운영 경상적경비	206-01	19,673		20,000	39,673	여성기능훈련 (미용 40명)
유통특작과	유통특작관리 자체사업	403-01	912,400		30,000	942,400	무사마귀병방제(약품)
경제진흥과	노정관리경상 적경비	301-09	0		40,000	40,000	근로자산업시찰 (100명)
해양수산 출장소	수산진흥 자체사업	307-02	29,000		20,000	49,000	전국어민후계자대회참 가(600명)
예산담당관실	예산운영 예비비	801-00	7,489,677	222,000		7,267,677	

3. 특별회계 : 1999년도 도립강원전문대학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 세 입

(단위 : 천원)

소관	과 목		자치단체제출예산액	수정액		수정예산액	수정사유 및 내역
	세항	세세항		감액	증액		
계			4,020,325		50,000	4,070,325	
도립강원전문 대학	전입금	224-01	2,226,000		50,000	2,276,000	일반회계전입금

○ 세 출

(단위 : 천원)

소관	과 목		자치단체제출 예산액	수정액		수정예산액	수정사유 및 내역
	세항	세세항		감액	증액		
계			4,020,325		50,000	4,070,325	
도립강원전문 대학	사무관리	401-01	274,636		50,000	324,636	실습장설치비

4. 공기업특별회계 : 수정사항 없음.

2) 1999년도제1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4월 16일 강원도교육감
- 제안설명요지
 - 99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7,390억원보다 1,380억4천만원이 증액된 8,770억4천만원임
 - 세입은 보통교부금 41억3천만원, 특별교부금 및 증액교부금 37억 6천만원, 지방양여금 25억 1천만원, 국고보조금 15억 5천만원등 국가부담수입이 119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세수입에 따라 추가 전입되는 법정전입금 5억 1천만원과 비법정 전입금인 공공도서관 운영비 3천만원등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5억 4천만원과 입학금 및 수업료 인상분과 과년도수입등 27억 9천만원 98순세계잉여금등 이월금 679억 9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원정년단축 및 명예퇴직에 따른 경비 547억 3천만원을 정부재정응자 특별회계차입금으로 계상하였음.
 - 세출예산은 급여관리 638억5천만원, 교육위원회비 2천만원, 교육행정비 47억 5천만원, 교육사업비 30억 3천만원, 학교비 227억 9천만원, 사학지원비 53억 7천만원, 시설비 370억원, 제지출경비 12억4천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음.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 4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8일 제1차회의에서 김호준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박종기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및 답변에 이어 4



월 29일 제2차 회의를 속개 장시간 질의 및 답변이 있었으나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1999년 4월 19일 제99회강원도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김병두교육감의 제안설명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토록한 후 1999년 4월 30일 제2차본회의에서 서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감사의 심사보고후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1999년 4월 30일 원안가결되어 강원도지사에게 송부되었다.

다. 同議案

1) 공동시설세부과지역변경동의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4월 12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난 94. 4. 29(강원도 고시 제 94-72호) 고시한 공동시설세 부과지역이 그동안 도로개설등 지역사정이 변경됨에 따라 고시한 부과지역을 변경하고자 강원도세조례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주요골자

구분		읍면동	통·리	반
현행 행정구역		187	4,179	20,448
현행 부과지역		187	3,607	18,211
변경 내역	추가(중전제외→부과지역)		372	1,326
	제외(중전부과→제외지역)		1	26
변경후 부과지역		187	3,978	19,511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 4월 13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1일 제2차회의에서 박수준자치지원국장의 제안설명과 전정기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1999년 4월 30일 제2차본회의에서 조규병내무위원회간사의 심사보고후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동의안은 1999년 4월 30일 원안가결되어 강원도지사에게 송부되었다.

[의결전문]

공동시설세 부과지역 변경 동의(안)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공동시설세 부과지역 변경 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변경 할 것을 지방자치법 제35조와 강원도세조례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한다.

[공동시설세 부과지역]

시군별	부 과 지 역 명
춘천시	다음지역을 제외한 관내 모든지역 제외지역 : - 근화동 : 31통 1,2,3,4반 - 동 면 : 품안리, 품걸 1,2리, 신이리, 평촌리, 상걸 1,2리 - 동산면 : 봉명2리3반, 원창1리3반 - 신동면 : 의암리6반, 팔미2리 1,3반, 혈동1리, 혈동2리2반 - 남 면 : 한덕리, 관천리1. 2반 - 서 면 : 서상2리, 월송3리, 덕두원2리 - 사북면 : 오탄1. 2. 3리, 가일리, 원평리1,2반, 송암리, 인람리 - 북산면 : 내평리, 청평2리, 부귀리, 물로1,2리, 조교1,2리, 대동리, 대곡리, 추진리
원주시	관내 모든 지역
강릉시	다음지역을 제외한 관내 모든지역 제외지역 : - 주문진읍 : 향호1리 2,3,4,5,6,8반, 향호2리, 장덕1,2리, 삼교리 - 성산면 : 관음1,2리, 위촌 1,2리, 송암리, 보광1,2리, 산북1리, 산북2리 1,2,3반, 어흘리 1,2,5,6반 - 왕산면 : 목계리, 왕산리, 송현리, 고단1,2,3리, 대리 1,2,3,4리 - 구정면 : 덕현리, 제비1,2리 - 강동면 : 상시동1리 2,3,4반, 상시동2리, 하시동1,2,3리, 임곡1,2리, 언별1,2리, 심곡리 - 옥계면 : 남양1,2,3리, 북동리, 산계2,3리, 도직리 - 사천면 : 석교2리, 방동상리 1,2,4,5반, 방동하리, 산대월리, 노동중리4반 - 연곡면 : 신왕리3,4반, 유등리, 퇴곡1리1반, 삼산1리1반, 삼산2,3,4리



시군별	부 과 지 역 명
동해시	다음 지역을 제외한 관내 모든 지역 제외지역 : 삼화9통 1,2반, 삼화13통3반, 삼화14통1,2반, 삼화15통1반, 삼화16통3,4,5반
태백시	다음 지역을 제외한 관내 모든 지역 제외지역 : 삼수동19통1,2반, 삼수동20통1,2,3반
속초시	관내 모든 지역
삼척시	다음 지역을 제외한 관내 모든 지역 제외지역 : - 원덕읍 : 월천2리, 노곡2리 - 하장면 : 공전리, 판문리4,5반 - 노곡면 : 우발리, 개산리, 주지리. 여삼리4반, 하마읍리 7,10,11,14,16-2,22-2,31-2,130번지 - 가곡면 : 오목리1반, 탕곡리5,6,8반, 오저2리3반, 동활리3반, 풍곡리8반 - 남양동 : 22통3반 - 성내동 : 10통5,6반, 23통1반, 29통2반, 30통1,2반 - 교 동 : 3통2반중480,488,489,490번지 - 정라동 : 7통4,5반, 10통1,2,3,4반, 13통2,3반
홍천군	다음 지역을 제외한 관내 모든지역 제외지역 : - 홍천읍 : 삼마치2리 - 화촌면 : 굴운리3,4,5반, 야시대2리,2반, 주음치리5반, 구성포2리4반, 풍천2리3반, 군업1리4반, 장평1리3반, 장평2리4반, 성산1리8반
홍천군	- 두촌면 : 패석1,2리 - 내촌면 : 물걸1리5반, 물걸2리1,3반, 와야2리3반, 서곡리3반, 화상대1리6반, 화상대2리 5,6반, 광암리 - 동 면 : 신봉리 - 남 면 : 남노일리 - 서 면 : 길곡리, 동막리, 마곡리 - 북방면 : 북방1,2리, 우너소리3반, 노일리, 장항리, 도사곡리 - 내 면 : 창촌리, 자운리, 방내1리1,2반, 방내2리, 율전3리2,3,4반, 명개리
횡성군	다음지역을 제외한 관내 모든 지역 제외지역 : 갑천면 하대2리5반, 상대리6반, 병지방1리1반
영월군	다음지역을 제외한 관내 모든 지역 제외지역 : - 영월읍 : 영흥8리8반, 덕포1리3반, 삼옥1리1반, 삼옥3리2반, 거운리 5,6반, 문산1리, 문산2리, 연하2리 2반, 연하3리 3,4반, 정양리1,2반, 팔괴2리5반, 홍월2리 - 중동면 : 직동1리2반, 직동2리, 화원2리, 연상1리5반 - 하동면 : 각동리7반, 예밀2리3반, 와석2리3반, 내리4,5반 - 북 면 : 공가1리3반, 공기2리3반, 덕상1리, 덕상2리 - 남 면 : 창원3리3반 - 서 면 : 웅정리1,2반, 광전1리 1,3반, 광전3리, 후탄2리 1,2,3반 - 주천면 : 판운2리3,5반, 신일1리5반, 금마2리2반, 용석1리2반 - 수주면 : 무릉1리5반, 도원2리, 두산1리3반

시군별	부 과 지 역 명
평창군	다음 지역을 제외한 관내 모든 지역 제외지역 : - 평창읍 : 고길리3,4반, 지동리, 조둔리4반, 천동리3반, 도둔리3반, 마지1리 3,4,5반, 마지2리, 대상리4반, 입탄리, 향동리3,4반, 후평리4반, 계장리3반, 하일리 2,3반, 원당리1반, 뇌운리 - 미탄면 : 창1리8반, 창2리, 창3리 7,8반, 회동1리 1,2반, 회동2리 1반, 한탄리, 기화리, 마하리, 수정리 - 방림면 : 방림1리1반, 방림3리4,5반, 방림5리5반, 운교1리3,4반, 운교2리 2,3반, 운교3리 1,2반, 계촌1리4,5반, 계촌3리3반, 계촌4리4,5반, 계촌5리4,5반, 계촌6리3반 - 대화면 : 대화5리4반, 대화7리3,5반, 대화8리, 신1리2반, 신2리4반, 신3리, 신4리2반, 개수1리, 개수2리, 상안미1리5반, 상안미2리, 상안미3리3반, 하안미3리4반, 하안미4리3반, 하안미5리3반, 하안미6리3반 - 봉평면 : 창동3리3반, 창동4리4반, 평촌1리1,2,3,4반, 평촌2리, 유포1리, 유포2리, 유포3리, 진조리, 면온1리3,4,5반, 면온2리 1,2반, 무이1리2,3,4,5반, 무이2리1,3반 - 용평면 : 속사1리, 속사2리, 도사리, 노동리, 백옥포1,2리, 장평2리, 재산1,2,3리 - 진부면 : 호명리4반, 두일2리, 탑동리, 동산리1,2반, 신기리4반, 봉산리, 화의리, 막동리, 장전리 - 도암면 : 황계2리 5,6,7반, 용산1리4반, 용산2리2,3반, 유천2리2,5반, 유천3리
정선군	다음지역을 제외한 관내 모든 지역 제외지역 : - 정선읍 : 봉양6리1반, 덕송2리3반, 덕우리1,4반, 용탄1리8반, 굴암리, 가수리 - 사북읍 : 직전리1,2,3반 - 신동읍 : 방재1,2리, 고성1,2리, 덕천리, 운치1,2,3리 - 동 면 : 화암4리3반, 석곡1리3,4반, 북동리, 건천리, 백전1,2리 - 남 면 : 무릉2리, 유평2리, 광덕1,2리 - 북 면 : 여량1리5반, 여량4리6반, 유천1리5반, 구절1리10반, 남곡리1반 - 북평면 : 장열2리3반, 북평5리2반, 문곡리, 나전1리1반, 나전2리3반, 숙암리 - 임계리 : 임계4리, 봉산1리3반, 고양리
철원군	다음지역을 제외한 관내 모든지역 제외지역 : 근남면 잠곡3리3반
화천군	다음지역을 제외한 관내 모든지역 제외지역 : - 화천읍 : 신읍1리1반 464번지, 2반 385번지, 3반 269,205-2,203-2,203-3번지, 4반, 풍산1리1반1240번지, 풍산2리1반 537-3번지, 3반200,240,272,285-1,290-2,293,297-2,306번지 4반, 동촌1,2리 - 간동면 : 용호리2반1189,1235,1254, 산17번지, 3반1317번지, 4반 1361, 1368-1, 1370, 1371, 1371-1, 1375, 1420, 1420-2, 1521, 1554, 1554-2, 1555-2, 1556, 산113, 산122번지, 간척2리1반 931, 928번지, 5반994-3번지, 간척3리3반 86-2, 86-3번지, 도송리3반 372, 872, 877, 879, 881, 912, 산23번지, 구만리1반1364, 1365, 1375, 1379, 1415, 1415-1, 1416, 1417-3, 1430, 1446, 1482, 1484, 1485-1, 1487, 1489번지, 방천1,2리



시군별	부 과 지 역 명
화천군	- 하남면 : 논미리1반 13-3번지, 2반16-2, 59번지, 3반132-5, 137-2, 139-1, 148-1, 174-3, 203-1번지, 논미2리1반612, 614, 615, 678-1번지, 2반638, 738, 745, 752, 763번지, 계성리1반65, 71-1, 76-1, 76-2, 96, 96-1, 97, 103, 106-4, 113, 164, 135번지, 2반120-1, 94, 208번지, 3반127-3, 161-4, 176번지, 4반 264-2, 288-1, 290-1, 291, 316, 340, 340-2, 349번지, 5반 21, 218, 안평리1반 475, 476, 492, 498-1, 543번지, 2반 567, 816-5, 817-1, 875, 868-3, 1470번지, 용암리1반 13-5, 842, 849, 938, 1057-1번지, 2반794, 795, 796, 805-2, 806, 810-1번지, 3반 889-3, 4반 629-1, 631, 674-3번지, 삼화리1반 423, 496-1, 543-2, 545-4, 564, 569, 574-2, 660번지, 2반 262-2, 315, 445-3, 445, 13번지, 3반 81, 82, 83, 87, 90-1, 91, 164, 166, 208-1번지, 거례리1반 579-14, 614, 579-5번지, 2반 632, 635, 638번지, 3반 739, 213, 239-1, 239-2, 241-1, 248, 318, 739번지, 4반 84, 93, 95-1, 110, 112-1번지, 서오지리1반18, 21-3, 21-7, 29-1, 385-1번지, 2반 392-1, 395, 387-2, 420번지, 3반 494, 510, 557-1, 496번지 - 상서면 : 신평리, 다목2리1반 - 사내면 : 광덕2리1반 463,476번지, 용담2리3반 399, 86, 167, 641, 760, 408, 145, 106, 415, 148번지
양구군	다음 지역을 제외한 관내 모든 지역 제외지역 : - 양구읍 : 수인리, 웅진리, 월명리, 상무룡1,2리 - 남 면 : 두무리
인제군	다음 지역을 제외한 관내 모든 지역 제외지역 : - 인제읍 : 남북1리 35~58번지, 합강2리 221-1~228-1번지, 원대리 - 남 면 : 갑둔리, 정자리, 신월리, 관대리, 수산리 - 기린면 : 진동1,2리, 방동2리, 북1리4반, 서2리3반 - 상남면 : 미산1리
고성군	다음 지역을 제외한 관내 모든 지역 제외지역 : 토성면 도원1리
양양군	다음지역을 제외한 관내 모든 지역 제외지역 : - 서 면 : 내현리2반중 빈지골, 송천리3반중 북암리, 황이리1반중 미천리, 공수전리3반중 용소리 - 현북면 : 어성전1리1반중 700-1, 707번지(어성전천 건너편) 어성전2리3반(개잔마을), 법수치리, 면옥치리1,2반, 장리2,3반 - 현남면 : 하월천리 - 강현면 : 강선리 800~900번지, 답리 141~144번지, 회룡리 400번지(송암골), 둔전리 95~124번지, 물갑리30~150, 210~432번지, 침교리1~100번지, 방축리 186~195, 207~210번지, 광석리95~100번지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강원도고시 제1994-72호('94. 4. 29)는 폐지한다.

라. 建議案

1) 수산관계법령 위반어업인에 대한 사면건의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4월 13일 오원일 의원외 10인
- 제안이유 :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로 동해안 어업인들의 어장상실과 침체된 어업활동의 의욕을 북돋우고 다가오는 2000년을 향한 새로운 희망과 각오의 장을 마련하고자 어업인의 과실로 발행한 어업면허 등에 대한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어업인에 대하여 사면을 하여 줌으로써 어업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는 어업인들이 새로운 의욕을 가지고 조업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 어려운 국난을 극복하고 어업인의 사기를 높이고자 건의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지난 22일 신한·일어업협정체계를 어장축소, 세계기상 이변에 따른 수산자원의 감소로 어획부진 및 IMF로 인한 어업경영악화로 지역경제의 침체는 물론 어업인은 삶의 의욕마저 상실한 실정에 이르렀으며
 - 연안국의 주권이 12해리에서 1994년 유엔해양법 협약의 발효로 200해리까지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설정되어 연안국의 권한이 더욱 강화되었고 일본국에서도 65년에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함에 따라 우리측에 유리한 새로운 협정체결이 강력히 요구되는 상태였던 것이 작금의 현실이나 정부의 준비없는 대응과 미흡한 외교협상으로
 - 금번 신한·일 어업협정을 체결, 우리 어업은 매우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으므로 어업인들의 의욕과 사기를 북돋아주고 용기를 채워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때임.
 - 헌정사항 처음으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여야의 정권교체로 탄생한 국민의 정부출범과 함께 대대적인 사면조치를 단행, 국민화합에 기여한 바 있으므로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어업인에 대하여도 대대적인 사면을 하여 줄 것을 건의하려는 것임.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 4월 15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3일 제4차회의에서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1999년 4월 30일 제2차본회의에서 업무협 산업경제위원장의 심사보고후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건의문은 1999년 4월 30일 청와대, 법무부, 해양수산부에 건의되어 1999년 5월 13일 불가로 회시되었다.

[의결전문]

수산물관계법령위반어업인에대한사면건의문

지난 1. 22일 신 한·일어업협정 체결로 우리도 어업인의 오징어·복어업의 주어장인 대화퇴 동중국 수역의 어장축소로 어선어업은 도산상태에 처하게 되었으며, 또한 라디노 및 엘리노 현상 등 세계기상 이변에 따른 해황의 변동으로 인한 수산자원의 감소로 어획부진과 IMF로 인한 어업경영 악화로 지역경제의 침체는 물론 어업인은 삶의 의욕마저 상실한 채 참혹한 지경에 있습니다.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60~70년대 수산물증산 정책에 힘입어 연안국의 주권이 12해리(약 22.2km)로 한정되어 있을 때 오대양을 누비며 자유로운 어업행위로 국민의 단백질 주 공급원인 수산물생산과 수출로 수산대국으로 위상을 크게 높였으나, 국제적 시대 흐름에 따라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되어 바다를 가진 연안국은 200해리(약 370km)까지 배타적경제수역으로 설정되어 연안국의 권한이 더욱 강화되게 됨에 따라 우리의 어업여건은 한층 더 악화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엊친데 덮친 격으로 일본국에서는 65년에 체결된 한·일 어업협정은 일방적으로 파기함에 따라, 우리 측에 유리한 새로운 협정체결이 강력히 요구되는 상태였던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60년대 선진화된 일본의 어업기술을 바탕으로 일본국에 유리하게 체결된 협정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자원은 급격한 감소로 갈어 접어들게 되었으나, 그동안 이에 자극받은 우리나라 어업인들의 피땀어린 노력과 어업기술개발 등으로 수산물 생산에 가시적 성과는 있었으나, 금번 신 한·일 어업협정 체결로 우리 어업인은 매우 불리한 입장이 된 것입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그동안 우리정부는 완벽한 준비없이 안일하게 대처해 왔으며, 이로 말미암아 오늘의 불행한 사태는 예견되었던 것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또한 어업인의 불만을 무마하기에는 임기응변적 내용으로써 정부 불신만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어업인들의 의욕과 사기를 북돋아주고 용기를 채워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으로 다시한번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도록 신바람나는 어업여건 조성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여야의 정권교체로 탄생한 국민의 정부출범과 함께 지난 1년간 국민 대화합속에서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민주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 취임·건국 50주년·대통령 취임 1주년 경축 특별사면 등 3회에 걸쳐 5백60만명에 대해 대대적인 사면조치를 단행한 바 있음을 상기코져 합니다.

특히, 대통령 취임시에는 정부수립 후, 처음으로 자동차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행정처분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전체 국민의 약 12%에 해당하는 5백5십만명에게 수혜를 줌으로써, 운전면허 제한자에 대하여 획기적인 사면조치로 국민화합에 기여했습니다.

이와 아울러 망망대해의 검푸른 파도를 헤치면서 수산물생산과 국민건강의 에너지원인 단백질 공급으로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 있어 본의 아니게 수산물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생계와 직결되는 어업면허 및 허가 등 어업활동에 제한을 받아 불이익을 보고 있는 어업인이 많은 현실은 위에서 열거한 사례와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나는 가혹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실정에 있는 우리도(道) 어업인의 여망인 어업면허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줄 것을 물론, 기 제한 받고 있는 어업인에 대해서도 위의 예와 같이 사면을 하여, 신 한·일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우리동해안 어업인의 불만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사기를 진작시켜 새로운 마음으로 어업전선에 동참하도록 수산물관계법령위반 어업인에 대하여 대대적인 사면을 하여 줄 것을 명실상부한 도민의 대의기구인 강원도의회의원일동은 강원도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건의합니다.

2) 영월댐건설반대건의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4월 12일 엄민현의원외 10인
- 제안이유 : 정부에서 객관성도 갖추지 못한 홍수조정과 수자원확보를 목적으로 여론을 무



시한 채 영월댐건설을 강행하려 하고 있어 생존권차원에서 우리나라 마지막 자연의 보고인 동강을 살리고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영월댐건설을 반대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동강은 세계적인 희귀종과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 생물자원의 보고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객관성도 갖추지 못한 홍수조절과 수자원확보를 목적으로 각계의 여론을 무시한 채 영월댐건설을 강행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려 하고 있는 것임.
- 댐건설로 인한 자연생태계 훼손 및 문화재손실, 석회암 및 동굴지대로서의 함몰누수 위험성, 지진발생시 재앙 등 안정성 문제, 댐건설 후 기상변화에 따른 농작물피해와 주민건강문제등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오는 8월로 예정된 환경영향평가결과와는 무관하게 영월댐건설을 강행하려는 것은 앞뒤순서가 바뀐 시대착오적 발상이 아닐수 없음.
-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환경을 지키고 댐건설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 파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영월댐건설을 반대함.
 - 남한강 하류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한 영월댐 건설은 있을 수 없음
 -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정시 지역주민들에게 부담과 피해가 없도록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환경및생태계파괴는 관광자원의 훼손이므로 영월댐건설을 반대함.
 - 댐건설여부와 관계없이 수몰지역주민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보상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 4월 13일 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1일 제2차회의에서 엄민현위원의 제안설명과 임병환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수정안대로 가결되었다.

[질의 및 답변]

- 질의요지
 - 본건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 답변요지

- 영월댐건설반대건의안은 영월댐문제를 둘러싼 국민들간의 논란과 갈등을 조속히 종결함은 물론, 물 수급문제에 대하여 보다 근본적이며 체계적인 대안수립과 댐과 관련한 현행의 불합리한 법과 제도에 대한 정부의 정책전환을 촉구하는 지역주민의 뜻을 적극 표명한다는 차원에서 시기적절한 건의라고 사료됨

[수정안요지]

- 수정이유 : 영월댐건설에 대하여 댐건설로 인한 정선지역의 수물사항 문제점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문구를 삽입하려는 것임.
- 수정주요골자
 - 자구내용중 “댐건설후 기상변화에 따른 농작물피해와 주민건강문제”다음에 “수시폭우로 인하여 정선군 소재지 수몰”을 삽입
- 본회의 심사 : 1999년 4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김길정관광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후 수정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건의안은 1999년 4월 30일 건설교통부에 건의되어 1999년 5월 17일 국민적 의견수렴 후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한다고 회시되었다.

[의결전문]

영월댐건설반대건의안

강은 자연생태계에서 나오는 부산물의 자정작용과 각종 동·식물의 서식처로 귀중한 생태를 형성할 뿐 아니라, 인간에게 직접 삶의 풍요로움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의 자체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동강지역은 멸종·보호종 생물들의 많이 살고 있고 특이한 지형과 자연석이 잘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희귀종과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 생물자원의 보고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객관성도 갖추지 못한 홍수조절과 수자원 확보를 목적으로 각계의 여론을 무시한 채 영월댐건설을 강행 자연상태를 파괴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댐건설로 인한 자연생태계훼손 및 문화재손실, 석회암 및 동굴지대로서의 함몰누수 위험성, 지진 발생시 재앙 등 안정성문제, 댐건설 후 기상변화에 따른 농작물피해와 주민건강문제, 수시폭우로 인하여 정선군 소재지 수몰 등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오는 8월로 예정된 환경영향 평가결과와는 무관하게 영월댐 건설을 강행하려는 것은 앞 뒤 순서가 바뀐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댐건설이 강행된다면 현재 이곳에서 서식하고 있는 황조롱이 등 조류 6종, 여름치수달 등 천연기념물 8종과 관중, 두꺼비 부채등 환경부지정 특정야생식물 8종이 보존이 어렵고, 또한 백룡동굴(천연기념물 제260호)과 고성산상(도 기념물제78호)의 수몰 및 주변수몰은 물론 신석기, 청동기, 철기유적과 고인돌 등 무덤유적의 손상문제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9월 제94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영월댐 건설은 안정성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문제점토를 촉구하였고, 수자원 공사 산하 수자원 연구소 지반구조 연구팀이 최근 연구결과에서도 댐이 건설되어 만수위가 될 경우 저수지 옆의 석회암 지대를 통해 누수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어 그 안정성에 문제가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영월댐 건설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활발해진 지진활동도 댐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1404년 이후 98년까지 영월등 인접지역에 발생한 지진만도 총 600여회에 이르고 있어 댐건설 예정지역 주변은 단층절리 등 지진다발지역으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1급수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동강이 축산시설과 양어장 산업의 비점오염원등 각종 오염원 때문에 이미 2~3급수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임에도 여기에 댐마저 건설된다면 수질은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국회에 상정 계류되어 있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안에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시행자 부담, 댐저수 구역내 유흥지관리권의 자치단체장에게 이양, 이주정착지 미이주자에 대한 지원, 댐소재지 자치단체의 생활용수 사용료 완전면제,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이면도로 개설, 선착장 설치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한 댐관련 관리정책도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댐 건설로 인한 수몰지역주민들의 고통을 안겨준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정부에 있음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주민의 의견과 각계의 여론을 무시한 채 댐건설을 강행한다면 우리나라 마지막 자연의 보고인 동강을 살리고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환경을 지키고 댐건설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파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영월댐건설을 반대합니다.

첫째, 남한강 하류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한 영월댐건설은 있을 수 없습

니다.

둘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 지역주민들에게 부담과 피해가 없도록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환경 및 생태계 파괴는 관광자원의 훼손이므로 영월댐 건설 반대합니다.

넷째, 댐건설여부와 관계없이 수몰지역주민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보상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第 9 節 第100回 臨時會

1. 概 況

가. 開 會

제100회 강원도의회임시회는 제85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3차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5월 10일 이천규 의원의 1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자로 의장이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11일간의 회기로 1999년 5월 18일 개회하여 5월 28일 폐회되었다.

나. 議事日程

1) 本會議

가) 제1차 본회의 : 1999년 5월 18일(화)

- 제100회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 강원도지사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4분자유발원 (손석암, 신명선의원) 의건

나) 제2차 본회의 : 1999년 5월 24일(월)

- 강원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다) 제3차 본회의 : 1999년 5월 25일(화)

- 강원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라) 제4차 본회의 : 1999년 5월 26일(수)

- 강원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마) 제5차 본회의 : 1999년 5월 28일(금)

- 강원도의회위원윤리강령안
- 강원도의회장에관한규칙안
- 강원도의회의원연구회운영규칙중개정규칙안
- 지방공사의료원재정용자금채무보증승인안
- 동해안군경계시설(철로망)철거건의안
- 강원도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 강원도지방항만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 강원도세계은행차관군도및지방도개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 강원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 강원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강원도국제관광엑스포지원특별위원회구성건의
- 영월담대책특별위원회구성건의

2) 議會運營委員會

가) 제1차회의 : 1999년 5월 24일(월)

- 위원회의사일정변경건의
- 강원도의회의원윤리강령안
- 강원국제관광엑스포지원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
- 영월담대책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

3) 內務委員會



가) 제1차회의 : 1999년 5월 19일(화)

-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나) 제2차회의 : 1999년 5월 27일(목)

- 지방공사의료원재정융자금채무보증승인안

4) 敎育社會委員會

가) 제1차회의 : 1999년 5월 19일(수)

-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5) 産業經濟委員會

가) 제1차회의 : 1999년 5월 19일(수)

-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 동해안군경계시설(철조망)철거건의안

6) 觀光建設委員會

가) 제1차회의 : 1999년 5월 19일(수)

-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나) 제2차회의 : 1999년 5월 20일(목)

- 강원도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 강원도지방항만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 강원도세계은행차관군도및지방도개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 강원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다) 제3차회의 : 1999년 5월 27일(목)

- 강원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다. 議會活動

1) 本會議

가) 강원도지사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 : 제1차본회의

-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강원도의회의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을 원안대로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일정에 따라 5월 24일부터 5월 26일까지 3일간 강원도지사및강원도교육감과 관계실국장급이상 간부공무원을 출석토록 의결함

나) 4분자유발언(손석암, 신명선의원) : 제1차본회의

- 손석암의원 : 내국인출입카지노는 광산촌에만 허용한다는 정부결정에 대해 대통령께 감사드리며 최종순간까지 애써온 김진선지사의 수고가 많았다고 전제하고 카지노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38번국도가 강원도관내의 137.3km에 2조 8,579억원이 소요되어야하나 고작 98년말까지 1,139억원을 투입했고 금년도는 겨우 563억원 밖에 책정되지 않았으면서 38번국도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더욱더 지사가 노력 해달라고 함.
- 신명선의원 : 99년도 민간단체보조금 정책사업과 관련 지원대상단체들은 자부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서류가 없으며 사업계획서상에 회원수가 있는데 회원명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한사람이 세가지 단체에 가입되어 있어도 알 수 가 없으며 사업평가 또한 지원단체에 대한 평가자료가 없어 평가자체가 어려워 민간단체보조금 정책사업 심사가 쉽지 않았으면서 집행부의 내실있는 평가자료준비를 촉구함.

다) 강원도국제관광엑스포지원특별위원회구성 : 제5차본회의

- 1999년도 5월 24일 제100회 강원도의회의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와 강원도의회의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에 의거하여 한나라당 6명, 국민의회의 4명,



자민련 1명, 무소속 1명등 12명으로 구성하고 존속기간을 특위구성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라) 영월댐대책특별위원회구성 : 제5차본회의

- 1999년 5월 24일 제100회강원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와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에 의거하여 한나라당 4명, 국민회의 5명, 자민련 1명, 무소속 2명등 12명으로 구성하고 존속기간을 특위구성일부터 정부에서 영월댐 건설문제 해결시까지로 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라. 議案處理 狀況

- 이번회기중 상정대상 일반안건은 총 10건으로 도지사 제출 6건, 의원건의안 4건이며 처리 결과를 보면 10건 모두 가결되었으며 종류별 처리현황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종류별	상 정 대 상 안 건			의 안 처 리 내 역				
	합 계	전회기 이 월	금회기 접 수	가 결			폐 기 (철회)	계 류
				소 계	원 안	수 정		
계	10		10	10	9	1		
조 례 안	7		7	7	7			
예 산 안								
동 의 안	1		1	1	1			
건 의 안	1		1	1		1		
결 의 안	1		1	1	1			

2. 議決案件

가. 條例案

1) 강원도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5월 10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하천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하천공사로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수익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던 하천법 제58조가 폐지(99. 2. 8법률 제5893호로 하천법 전면개정)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 5월 13일 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20일 제2차회의에서 관광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박세희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임병환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1999년 5월 28일 제5차본회의에서 이상명관광건설위원회 간사의 심사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9년 5월 29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1999년 6월 18일 강원도조례 제 2700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강원도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강원도조례 제422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강원도지방항만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5월 10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1968. 11. 12 제정공포한 본 조례의 위원회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항만법이 개정되면서 위원회 운영주체가 종전 도에서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실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 5월 13일 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20일 제2차회의에서 박세희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임병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1999년 5월 28일 제5차본회의에서 이상명 관광건설위원회간사의 심사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9년 5월 29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1999년 6월 18일 강원도조례 제 2701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지방항만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강원도지방항만위원회조례폐지조례 (강원도조례 제457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조례의 개정) 강원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 제3조제19호의6을 삭제한다.

3) 강원도세계은행차관군도및지방도개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5월 10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지방도로의 재원충당을 위하여 84년부터 시행하여 오던 본조례를 외채상환 기간이 99. 5월말로 완료됨에 따라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게 되어 자치법규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 5월 13일 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20일 제2차회의에서 박세회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임병환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1999년 5월 28일 제5차본회의에서 이상명관광건설위원회 간사의 심사보고 후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9년 5월 29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1999년 6월 18일 강원도조례 제 2703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세계은행차관군도및지방도개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강원도세계은행차관군도및지방도개발사업비지방채조례(강원도조례 제1646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강원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5월 10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도로법의 개정으로 신설된국가지원지방도를 반영하는 한편 법령에서 직접규정하고 있어 조례와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조정하는 등 종전의 규정을 전면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종전에 「지방도」 만을 도지사가 관리하도록 하던 것을 도로법에서 「국가지원지방도」를 신설하여 관리토록 함에 따라 이를 목적규정에 반영함(안 제1조)
 - 도로점용료는 법령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자에게 부과함(안 제2조)
 - 점용료의 징수기준은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함(안 제3조)
 - 점용료의 부과·징수사무를 종전대로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하도록 함(안 제4조)
 - 점용료의 조정·감면·납부고지·반환등에 관한 사항을 도로법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종전 조례에서 규정하던 것을 삭제함.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 5월 13일 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20일 제2차회의에서 박세희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임병환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1999년 5월 28일 제5차본회의에서 이상명관광건설위원회 간사의 심사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9년 5월 29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1999년 6월 18일 강원도조례 제 2704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강원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이하 “도로”라한다)의 점용료징수에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는자에게 부과한다.
- 제3조(점용료의 징수) 점용료는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의 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따라 징수한다.
- 제4조(부과·징수의 위임) ① 도지사는 점용료의 부과·징수에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군에 대하여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5조(준용) 도로점용료의 조정·감면·부과징수·반환등은 법시행령 제26조의3내지 제26조의 5를 준용한다.
-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강원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5월 10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94. 6. 17 시행)으로 조례개정 근거가 삭제되고 조례내용이 법령과 중복되는 등 조례의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 일환으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 5월 13일 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27일 제3차회의에서 방재흥관광문화국장의 제안설명과 임병환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1999년 5월 28일 제5차본회의에서 이상명관광건설위원회간사의 심사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9년 5월 29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1999년 6월 18일 강원도조례 제 2702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강원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강원도조례2094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同議(承認)案

1) 지방공사의료원재정융자금채무보증승인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5월 12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도민의 의료복지 서비스를 위하여 지방공사 강원도 원주의료원, 강릉의료원, 영월의료원의 의료장비구입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의 조건으로 융자하는 보건복지부의 농어촌 특별세관리 특별회계 재정융자금을 받고자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 지방재정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21조 제2항 및 강원도보증채무관리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의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사업명 : 의료장비구입
 - 채무보증액 : 금일십오억원정 (₩1,500,000,000)
 - 원주의료원 5억원, 강릉의료원 5억원, 영월의료원 5억원
 - 자금종류 : 농어촌특별세관리 특별회계(“농특”)
 - 차입처 : 보건복지부(융자취급은행 : 농협 시·군지부)
 - 차입조건 : 5년거치10년상환, 연리5.5%
 - 상환재원 : 당해의료원운영의업수익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 5월 13일 내부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27일 제2차회의에서 이근식 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정기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1999년 5월 28일 제5차본회의에서 황영철 내부위원자의 심사보고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동의안은 1999년 5월 28일 원안대로 가결되어 강원도지사에게 송부되었다.

[의결전문]

지방공사의료원재정융자금채무보증승인(안)

강원도가 1999년도 지방공사 강원도 원주, 강릉, 영월의료원의 농어촌특별세관리 특별회계 재정 융자금 도지사 보증채무부담행위를 지방자치법 제115조제3항, 지방재정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 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승인한다.

1. 사업명 : 의료장비구입
 2. 채무보증액 : 금일십오억원정 (₩1,500,000,000)
-원주의료원 5억원, 강릉의료원 5억원, 영월의료원 5억원
 3. 자금종류 :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농특”)
 4. 차입처 : 보건복지부(융자취급은행 : 농협 시·군지부)
 5. 차입조건 : 5년거치10년상환, 연리5.5%
 6. 상환재원 : 당해의료원운영의업수익
- ※ 따로붙임 : 융자금 연도별 상환계획
- 융자금 연도별 상환계획
 - 융자금 상환내역

(단위 : 천원)

융 자 금 액	상 환 기 간	상 환 조 건	
		이율	거치 및 상환
1,500,000	1999~2013	연 5.5%	5년거치 10년상환

- 연도별 상환계획

(단위 : 천원)

연도별	원주의료원			강릉의료원			영월의료원		
	계	원금	이자	계	원금	이자	계	원금	이자
계	788,750	500,000	288,750	788,750	500,000	288,750	788,750	500,000	288,750
1999	27,500		27,500	27,500		27,500	27,500		27,500
2000	27,500		27,500	27,500		27,500	27,500		27,500
2001	27,500		27,500	27,500		27,500	27,500		27,500

연도별	원주의료원			강릉의료원			영월의료원		
	계	원금	이자	계	원금	이자	계	원금	이자
2002	27,500		27,500	27,500		27,500	27,500		27,500
2003	27,500		27,500	27,500		27,500	27,500		27,500
2004	77,500	50,000	27,500	77,500	50,000	27,500	77,500	50,000	27,500
2005	74,750	50,000	24,750	74,750	50,000	24,750	74,750	50,000	24,750
2006	72,000	50,000	22,000	72,000	50,000	22,000	72,000	50,000	22,000
2007	69,250	50,000	19,250	69,250	50,000	19,250	69,250	50,000	19,250
2008	66,500	50,000	16,500	66,500	50,000	16,500	66,500	50,000	16,500
2009	63,750	50,000	13,750	63,750	50,000	13,750	63,750	50,000	13,750
2010	61,000	50,000	11,000	61,000	50,000	11,000	61,000	50,000	11,000
2011	58,250	50,000	8,250	58,250	50,000	8,250	58,250	50,000	8,250
2012	55,500	50,000	5,500	55,500	50,000	5,500	55,500	50,000	5,500
2013	52,750	50,000	2,750	52,750	50,000	2,750	52,750	50,000	2,750

※ 융자금 상환계획은 3개의료원이 동일함

다. 建議案

1) 동해안군경계시설(철조망)철거건의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5월 12일 박웅길의원외 10인
- 제안이유 : 동해안일대의 해수욕장 개장에 발맞추어 한·일어업협정체결이후 어업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동해안주민들의 실질적인 관광소득을 올리고 관광강원을 지향한 본도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기위해 강원도민의 뜻을 모아 현재 군부대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해안선철조망에 대해 철거를 건의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동해안철책선은 철거되어야 한다.
 - 완전철거가 불가할시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과 관광객의 왕래가 잦은 곳에 대해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부분개방과 아울러 개방시간을 군작전에 지장이 없는 한 년중 개방하여야 한다.
 - 관광객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동해안 철책선과 군초소는 가능한한 자연친화적인 조형물로 꾸며야 한다.



- 군 작정상 인근 해안에 대한 어업조업을 제한하고 있는 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 야간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에는 경계등을 설치하여 항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철책선 출입문에 대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추가설치를 하여야 한다.
- 출입문 열쇠는 공동관리(군과 마을대표)로 한다.
- 해수욕장으로서의 손색이 없는 곳에 대해서는 군작전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신규개장을 허용하여야한다.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 5월 13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19일 제1차회의에서 박용길의원의 제안설명과 김용기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수정안대로 가결되었다.

[수정안 요지]

- 수정이유 : 「동해안철책선은 철거되어야 한다」 라고 하고 뒤이어 「완전철거가 불가할 시…」 라는 별개의 건의요구사항은 혼선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문맥의 연결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구수정
- 수정주요골자
 - 「첫째, 동해안 철책선은 철거되어야 한다」, 「둘째, 완전철거가 불가할 시 자연경관이…」를 「첫째, 동해안철책선은 철거되어야 하나 단 완전철거가 불가할시 자연경관이…」로 첫째와 둘째를 하나로 묶어 첫째로 하고, 건의안 중 「셋째」에서 「여덟째」 건의요구사항을 「둘째」에서 「일곱째」로 자구수정
- 본회의 심사 : 1999년 5월 28일 제5차본회의에서 엄문섭산업경제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없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건의안은 1999년 5월 29일 국방부에 건의되어 1999년 6월 28일 추진, 검토, 허용한다고 회시되었다.

[의결전문]

동해안군경계시설(철조망)철거건의문

강원도는 '99년을 관광산업의 원년을 삼고 '99관광엑스포의 개최, 설악·금강 연계개발 등 관광관련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동해안 지역은 천혜의 아름다운 경관과 관광자원, 그리고 유서깊은 문화전통을 갖고 있는 지역으로서, 깨끗한 물과 아름다운 산, 그리고 동해의 푸른바다와 어우러진 섬과 괴암절벽의 우람한 절경은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들로부터 아낌없는 탄성을 자아내는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국인들은 강원도에 안와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곳입니다.

또한 대자연의 보존과 함께 개발된 쾌적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잘 갖추어진 관광호텔, 휴양콘도미니엄의 숙박시설 등 관광자원성 면에서 다른 도와는 차별화되는 가장 우수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관광의 품격을 한단계 높이고, 도약할 수 있는 기반조성과 국내외 관광객을 강원도로 유치하기 위한 사업을 위하여 강원도에서는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해안을 접하고 있는 시군에서도 해안을 주제로 하는 관광상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구체화하여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서 관광산업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금년부터 동해안 전 해수욕장에서는 시군의 자체수입원이 되었던 입장료를 받지 않기로 하는 등 관광자원의 철저한 관리와 홍보에 역점을 두고 관광의 1번지인 강원관광을 조성하기 위하여 강원도민 모두가 뛰고 있습니다.

지난 5. 3일 강원도 행정개혁보고시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격려하였듯이 강원도가 살길은 관광산업 뿐이며, 이를 위해서는 청정 이미지가 담겨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해안 지역민들에게 놓여 있는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우리강원도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내지역을 만드는데 심혈을 쏟고 있으나 군부대에서는 동해안 지역에 철조망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조망 설치는 항포구, 부두, 해수욕장, 절벽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해안선 전 구간 212.3km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로부터 계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해양수산출장소에서 파악한 민원사태 만도 현재 122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동해안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행정기관, 사회단체 등에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러한 사항을 건의 또는 완화해 줄 것을 관련기관에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50년 6·25전쟁발발과 휴전이후 북한의 침투와 도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기 시작한 철조망은 현재는 대간첩침투작전을 위하여 존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철조망이 이제는 동해안 지역주민들의 생계수단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보의 첨단도로서 국가안보를 위하여 동해안 철조망의 설치 및 유지·관리가 불가피하다는 군부대의 의견에 이해는 가나, 현재 군에서 대간첩침투작전을 위하여 첨단과학장비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만큼 철책선의 효용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동해안 주민들은 지역경제에 비중있는 해수욕장 개장 등을 목전에 두고 강원관광 봄 조성 과 21세기 뉴밀레니엄 국가적 축제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당국에 동해안 철책선 철거 및 관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동해안 철책선은 철거되어야 하나, 단 완전철거가 불가할시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과 관광객의 왕래가 잦은 곳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부분개방과 아울러 개방시간을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한 년중 개방하여야 한다.

둘째, 관광객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동해안 철책선과 군 초소는 가능한한 자연친화적인 조형물로 꾸며야 한다.

셋째, 군 작전상 인근 해안에 대한 어업조업을 제한하고 있는 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넷째, 야간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에서 경계등을 설치하여 항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철책선 출입문에 대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추가설치를 하여야 한다.

여섯째, 출입문 열쇠는 공동관리(군과 마을대표)로 한다.

일곱째, 해수욕장으로서의 손색이 없는 곳에 대해서는 군작전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신규개장을 허용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개선촉구 및 건의사항은 '99년 9월에 개최하는 「강원도국제관광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본도의 관광이미지를 쇄신하여 「한국관광1번지 도」로서 관광의 국제화를 촉진시켜 나감과 아울러, 금번 한일 어업협정 체결이후 어업환경이 어려워진 어민들의 생활지원 방향 또한 한계점에 이르러 어업소득보다 관광을 중심으로 한 어업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앞당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해안 지역 주민들은 지난 동해안 잠수함 간첩침투에서 보았듯이 어느 타 지역보다 안보정

신이 투철하고 주민신고체제가 잘 이루어져 있으며, 유사시 군과 긴밀한 협조하에 지역민의 감시 및 신고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강원도 관광산업 발전과 어민들의 어업의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강원도 어민들의 요망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라. 規則案

1) 강원도의회장에관한규칙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5월 17일 의회운영위원장
- 제안이유 : 도민의 대표로서 명예직인 도의원이 임기중에 도민을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때에 고인의 유지를 기리기 위하여 의회에서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의회장은 현직 도의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자 중 그 유가족이 희망하는때에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결정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2조)
 - 의회장의 장의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장의 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조)
 - 의회장의 장의기간·절차·의식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과 가정 의례준칙을 준용함(안 제6조)
 -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연도 강원도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 집행하도록 함(안 제7조)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 5월 17일 제9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회의에서 김원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의 설명후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1999년 5월 28일 제5차본회의에서 이훈의회의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규칙안은 1999년 5월 28일 원안대로 가결되어 강원도지사에게 송부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의회규칙 제 호

강원도의회장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도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도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임기 중에 사망하여 도의회장(이하 “의회장”이라 한다)을 행할 경우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회장 대상자)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의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자중, 그 유가족이 의회장을 희망하는 때에 의회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결정한다.

제3조(장의위원회) ① 의회장의 장의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의회에 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 의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한다.

④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이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의회의 상임위원장, 정당대표, 사무처장과 위원장이 위촉한 의원 및 고인의 친지대표등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장의식의 일시와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타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⑦ 위원회는 회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기타 장의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약간인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이 된다.

제5조(영결식) 의회장의 영결식은 고인에 대한 복념, 약력보고, 조사, 육성녹음 근정, 헌화 및 분향등을 행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의회장 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한다.

제6조(장의기간등) 의회장의 장의기간·절차·의식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과 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제7조(장의비용)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의한 소요금액을 당해연도 강원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 집행한다.

제8조(조기계양) 의회장일에는 의회 의사당 구내에 조기를 계양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강원도의회 의원연구회운영규칙중개정규칙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5월 17일 의회운영위원장
- 제안이유 : 현행 강원도의회의원연구회운영규칙은 의원연구회의 운영범위를 순수 연구분야에 한정하도록 등록도 의원별로 1개 연구회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의원연구회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연구회 운영범위와 연구회등록기준을 현실에 맞게 확대 조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현재 연구회 운영범위를 도정에 대한 순수 연구분야로 한정하고 있으나, 도정연구분야외에 의정연찬, 세미나 등의 활동도 할 수 있도록 하며 교수, 연구원등 전문가의 자문 및



공동연구활동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조, 제4조)

- 연구회등록기준을 의원별로 1개 연구회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2개 연구회 까지 가입을 허용하고 연구회 등록 후 20일 이내에 연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하던 것을 연구활동 개시 30일전까지 제출하도록 완화함(안 제2조)
- 연구활동계획서외에 연구활동 세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내용이 단순한 경우에는 연구활동 계획서만 제출할 수 있게 하고 연구활동 결과보고외에 1회이상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던 것을 연구활동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
- 연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의회의장으로 하고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명정함(안 제9조)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 5월 17일 제9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회의에서 김원기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의 설명후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1999년 5월 28일 제5차본회의에서 이훈의회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후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규칙안은 1999년 5월 28일 원안대로 가결되어 강원도지사에게 송부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의회규칙 제 호

강원도의회의원연구회운영규칙중개정규칙안

강원도의회의원연구회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규칙은 강원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정발전과 주요시책 및 지역개발등 특정분야에 관하여 공동으로 연구를 하거나 연찬회, 세미나 등의 활동(이하 “연구활동”이라 한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원연구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4항중 “2개 연구회 이상”을 “2개 연구회를 초과하여”로 한다.

제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연구회의 회장은 연구회를 등록한 후 특정한 연구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개시 30일 전까지 연구활동 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획서에는 연구활동의 주제, 목적, 추진내용, 소요예산 내역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 제1항중 관광개발등 다음에 “의정과”를, 시책의 발굴개선에 필요한 연구다음에 “활동”을 각각 삽입하고,

동조 제2항중 “자문을 받을 수 있다”를 “자문을 받거나 공동으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 “연구활동기간중”을 “연구활동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으로 “3개월”을 “6개월”로 한다.

다만, 연구활동의 내용이 단순한 경우에는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연구활동 계획서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제6조 제3항중 “연구활동세부계획서”을 “연구활동계획서 또는 그 세부계획서”로 하고 “월별 또는 단계별”을 “월별, 단계별 또는 연구활동 종료 후 일괄”로 한다.

제8조중 “연구계획”을 “연구활동계획서”로 한다.

제9조 제1항중 “심의위원”을 “심의위원회”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4항을 신설한다.

-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의회의 의장·부의장과 각 상임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의장을 위원장르 하되, 필요할 경우에 의장은 전문인 약간명을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
-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이 경우 회의 또는 서면에 의한 심의를 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제2호중 “연구목적”을 “연구활동목적”으로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마. 綱領案

1) 강원도의회 의원강령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5월 17일 의회운영위원장
- 제안이유 : 강원도의회에서는 제3대도의회당시의회윤리강령 제정을 검토하다가 계류한 바 있으나 전면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뜻깊은 제100회 도의회를 당하여 다시금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의회윤리강령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우리는 도민의 대표자로서 스스로의 자질을 함양하고 참된 명예와 품위를 유지함(안 제1호)
 - 우리는 주민의 봉사자로서 공익우선의 자세로 주민의 의사를 충실하게 대변함(안 제1호)
 - 우리는 도정의 선도자로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도정을 올바르게 선도함(안 제1호)
 - 우리는 의정의 주체자로서 공정한 여건과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여 민주적 의정풍토를 정착함(안 제1호)
 - 우리는 지역의 책임자로서 자신이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도록 함(안 제1호)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 5월 17일 제9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회의에서 김원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의 설명후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1999년 5월 28일 제5차본회의에서 이훈의회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의원강령안은 1999년 5월 28일 원안대로 가결되어 강원도지사에게 송부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의회의원 윤리강령안

우리 강원도의회의원은 도민으로부터 선택받은 도민의 대표로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도민의 신뢰를 증진하고 의회의 명예를 지켜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도의원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밝힌다.

1. 우리는 도민의 대표자로서 높은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도의원의 참된 명예와 품위를 유지한다.
1. 우리는 주민의 봉사자로서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자세로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한다.
1. 우리는 도정의 선도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도정을 올바르게 선도한다.
1. 우리는 의정의 주체자로서 공정한 여건과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여 민주적인 의정풍토를 정착시킨다.
1. 우리는 지역의 책임자로서 지역사회와 의회활동 과정에서 자신이 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다한다.



第 10 節 第101回 臨時會

1. 概 況

가. 開 會

제101회 강원도의회임시회는 지난 6월 10일 업무협의원과 15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자로 의장이 집회공고 함으로써 7일간의 회기로 1999년 6월 18일 개회하여 6월 24일 폐회하였다.

나. 議事日程

가) 제1차 본회의 : 1999년 6월 18일(금)

- 제101회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및의사결정의건
- 4분자유발언(황영철의원)의건

나) 제2차 본회의 : 1999년 6월 24일(목)

- 강원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명예도민증수여동의안
- 강원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
- 강원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 강원도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 강원도농공지구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 강원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 강원도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 강원도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및운영기금적립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 침체어망인양전용선박건조지원에관한건의안
- 무연탄정부수매사업기간연장을위한건의안
- 강원도오색은천관리조례안
- 강원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도로보수증기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 강원도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지원조례안
- 4분자유발언(성희직의원)의견

2) 議會運營委員會

가) 제1차회의 : 1999년 6월 18일(금)

-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견
- 제101회강원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견
- 1998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에관한건
- 제102회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협의의견

나) 제2차회의 : 1999년 7월 12일

-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견
- 제102회강원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견
- 회기중임시도의회운영에관한건

3) 內務委員會

가) 제1차회의 : 1999년 6월 19일(토)



-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 강원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

나) 제2차회의 : 1999년 6월 23일(수)

-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강원도명예도민증서수여동의안

4) 敎育社會委員會

가) 제1차회의 : 1999년 6월 19일(토)

-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 강원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産業經濟委員會

-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 침체어망인양전용선박건조지원에관한건의안
- 강원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
- 강원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 무연탄정부수매사업기간연장을위한건의안
- 강원도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 강원도농공지구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 강원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 강원도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 강원도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및운영기금적립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6) 觀光建設委員會

가) 제1차회의 : 1999년 6월 19일(토)

- 의사일정결정의건

나) 제2차회의 : 1999년 6월 23일(수)

- 강원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 강원도오색온천관리조례안
- 강원도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지원조례안

7) 영월댐대책특별위원회

가) 제1차회의 : 1999년 6월 18일(금)

- 위원장선임의건
- 간사선임의건
- 영월댐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

8) 강원국제관광엑스포지원특별위원회

가) 제1차회의 : 1999년 6월 18일(금)

- 위원장선임의건
- 간사선임의건
- 업무보고의건 (강원국제관광엑스포조직위사무처)
- 강원국제관광엑스포지원특별위원회운영기본계획안

다. 議會活動

1) 本會議

가) 4분자유발언의건 : 제1차본회의



- **황영철의원** : 국책사업인 횡선군 청일면 신대리 송천탑 건설사업과 관련, 시행청인 한전과 시공회사인 쌍용건설측에 의해 자행된 주민폭행사건은 이 사업의 실체를 고발하는 새로운 인식의 출발이 되어야 하며 쓰러져 짓밟힌 힘없는 강원도민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면서 강원도 집행부는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남의 사업인양 옆에서 지켜보지만 말고 이 사업으로 인해 도민들에게 가져올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적법하게 진행되고 마무리되어 있는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하며 도의 공사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그들의 오만과 그릇된 행태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주어야 한다고 함.

2) 委員會

가) 현지시찰 : 내무위원회

- 1999년 6월 19일 제1차회의에서 의사일정을 결정한 후 소관업무 파악을 위해 6월 21일 삼척의료원 시찰에 이어 6월 22일 양양, 인제 소방파출소를 시찰하였다.

나) 현지시찰 : 교육사회위원회

- 1999년 6월 19일 제1차회의에서 의사일정을 결정한 후 소관업무 파악을 위해 6월 21일 춘천CC골프장, 두산리조트, 화천교육청시찰에 이어 6월 22일은 화천 현대화 시범학교, 화천대붕초등학교 안보학습장, 철원교육청을 시찰하였고 6월 23일은 강원도학생통일교육수련장, 안보교육현장(노동당등)을 시찰하였다.

다) 현지시찰 : 산업경제위원회

- 1999년 6월 19일 제1차회의에서 의사일정을 결정한 후 소관업무 파악을 위해 6월 21일 수산양식시험장 시찰에 이어 6월 22일 전국어업인후계자 강원도협의회 임원 및 시·군회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하였고 6월 23일 감자원종장을 시찰하였다.

라) 현지시찰 : 관광건설위원회

- 1999년 6월 19일 제1차회의에서 의사일정을 결정한 후 소관업무 파악을 위해 6월 21일 99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평창상안미지구)현장 시찰에 이어 6월 22일 99재해위험지구정비사

업(영월 영흥·하송지구)현장을 시찰하였다.

마) 영월댐대책특별위원회

- 제100회 도의회임시회 제5차본회의에서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2명의 위원이 선임되어, 동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유돈대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바) 강원국제관광엑스포지원특별위원회

- 강원도의회위원회 조례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제10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본회의에서 의장제의로 12명으로 구성되어 동조례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전인택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 운영기본계획(안)은 최명희 행사본부장이 보고 후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라. 議案處理狀況

1) 一般議案

- 일반의안 이번회기중 상정대상 일반안건은 총 20건으로 도지사제출 17건, 도교육감 제출 1건, 의원발의 2건이 가결되었으며 종류별처리현황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종류별	상 정 대 상 안 건			의 안 처 리 내 역				
	합 계	전회기 이 월	금회기 접 수	가 결			폐 기 (철 회)	계 류
				소 계	원 안	수 정		
계	20		20	20	19	1		
조 례 안	16		16	16	15	1		
동 의 안	2		2	2	2			
건 의 안	2		2	2	2			

※ 계류 :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議決案件

가. 條例案

1) 강원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6월 10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소방법개정(99. 2. 5공포, 8. 6 시행) 및 행정규제기본법(98. 3. 1 시행)에 따라 종전규정 중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과도한 규제 35건을 폐지(26건) 또는 완화(9건) 하는 등 규제로 인한 민생불편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종전규정중 열을 발생하여 화재발생이 우려되는 것으로 규정하던 난방기구등의 위치와 구조에 관한 규제기준 10건을 폐지함(안 제2조 제1항)
 - 「조리목적의 렌지·화덕등 주방설비」, 「난로와 벽난로의 위치 및 구조」, 「건조설비」, 「사우나 및 간이탕비설비」, 「압력탱크저장」, 「위험물임시저장 및 소량위험물 가열·냉각설비와 건조장치」 등에 관한 규제기준 14건을 폐지함(안 제3조, 제5조제1항, 제6조내지제9조, 제18조제4항제3호, 제19조제3항, 제20조제1항제2호·제6호 및 제16호 내지 제18호, 동조제4항제5호)
 - 화재경보발령시 불의 사용을 제한하던 규정과 화재로 오인할 수 있는 수도의 단수·감수 행위 신고제도를 삭제함(안 제22조 및 제23조제3호)
 - 「호텔·유흥주점·노래연습장 등에서 난로를 사용할 경우」와 「농예용 및 어패류양식장 난방시설」, 「소량위험물 취급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등 과도한 규제9건을 완화함(안 제5조제2항, 제18조제1항 및 제4항, 제20조)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 6월 11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1999년 6월 19일 제1차회의에 상정, 이성열 소방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전정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1999년 6월 24일 제2차본회의에서 황영철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9년 6월 24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1999년 7월 15일 강원도조례 제 2718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화재예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본문을 다음과 같이하고, 동항 제2호·제5호 내지 제12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항3호를 제2호로, 제4호를 제3호로, 제13호를 제4호로하여 동호아목중 “로”를 “열풍로(이하 “로”라 한다)”로, “과도의”를 “과도한”으로 하고, 동항제14호를 제5호로 하여 “프로판가스·석탄가스 그 밖의 기체연료”를 “LP가스등 기체연료”로 한다.

- ① 연료의 사용으로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의 위치 및 구조의 공통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난로) 호텔, 시장, 백화점, 유흥주점, 지하의 위생접객업소, 소극장, 노래연습장, 비디오 물감상실 및 단란주점 등에서 액체를 연료로 하는 난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난로이외에는 설치·사용할 수 없다.

1. 난로에 받침대를 설치·고정시켜 쉽게 이동 또는 전도될 우려가 없도록 하거나 이동 또는 전도시에 자동으로 소화가 가능한 구조일 것.
2. 난로의 연소기(본체)와 연료통은 상호 5미터이상 거리를 둘 것. 다만, 연료통이 벽 또는 격실로 구획된 경우와 난로 자체에 연료통이 부착되어 생산된 제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내지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중 “충·수압시험을 받은 옥외탱크, 옥내탱크”를 “옥내·외탱크”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항제6호중 “장치 및 계량구”를 “장치 또는 계량구”로 한다.

2. 저장탱크는 두께 3.2밀리미터 이상의 강철판으로 틈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하고,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17조제2항제5호중 “창 및 출입구는 자동폐쇄식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을 “창 및 출입구에는 갑·을종방화문 또는 불연재료로 된 문을”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소방기술기준규칙”을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이하 “소방기술기준규칙”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지정수량 10배미만의”를 “지정수량 20배미만의”로 하고, 동조제4항제3호를 삭제하며,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이하 “탱크”라 한다)는 두께 3.2밀리미터 이상의 강철판으로 틈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하고,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18조제4항제7호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정수량 5배미만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경우에는 전단의 자동계량장치 대신 수동으로 위험물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구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⑦ 옥내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설비는 제4항의 기준에 의하는 것외에 탱크와 탱크전용실의 구조는 제17조제2항(제5호는 제외한다)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탱크전용실의 창 및 출입구에는 갑·을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의 제목 “(위험물 임시저장·취급기준)”을 “(위험물 임시저장·취급기준등)”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법 제15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취급하고자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험물 임시저장·취급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④ 소방소장은 제3항에 의한 신고수리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험물임시저장·취급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중 “위험물을 저장·취급한다는 취지 및 위험물의 품명과”를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과”로 하고, 동항제2호·제6호·제16호 내지 제18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3항제2호중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갑·을종방화문 또는 불연재료로 된 문”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5호를 삭제하며, 동조제5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별표의 제4류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를 소방기술기준규칙 제200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에 맞게 이중벽탱크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제5항제6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의 단서규정에 의한 이중벽탱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화재라고 오인할 만한 연기등을 발하는 행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것중 화재라고 오인할 만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그 취지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소방서장에게 신고(전화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가연물질등을 태우거나 약제 및 화학제품등을 사용하여 연기 또는 불을 발하는 행위
2. 기타 연기 또는 불을 발생시키는 기계·기구(놀이용기구는 제외한다)를 취급 및 사용하는 행위

제24조중 “제2조 내지 제11조(제5조는 제외한다)의”를 “제2조·제4조·제10조 및 제11조의”로,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을”를 “예방소방업무처리지침을”로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8조 내지 제21조(제19조제3항은 제외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제2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2. 제23조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사람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1999.

8. 6부터 시행한다.

②(신고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신고수리 등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신고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6월 10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투자효율이 낮은 강원도 지역에서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 공급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의 공익성과 도민의 가스 수혜도 등을 고려하여 도세를 면제하여 주려는 것임.
- 주요골자
 -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 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종전 50% 감면하던 것을 전액 면제하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 6월 11일 내부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3일 제2차회의에 상정되어 박수준자치지원국장의 제안설명과 전정기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및 답변이 있었으나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질의 및 답변]

- 질의요지
 - 타시도와와의 형평성에 안맞는 취득세, 등록세 전액면제는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에 대한 견해는?
- 답변요지
 - 투자효율은 낮은 지역이나 공익성측면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민의 가스 수혜도 등을 감안하여 도에서 추진하려는 것임.
- 본회의 심사 : 1999년 6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황영철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9년 6월 24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1999년 7월 15일 강원도조례 제 2705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강원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6월 10일 강원도교육감
- 제안이유 :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정부의 규제정비지침에 따라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자유경쟁을 통한 학원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요자 중심의



열림교육을 촉진하며 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99. 1. 18 법률 제5634호) 및 동법시행령(99. 5. 10 대통령령 제16294호)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삭제,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학원건축물과 유해업소 건축물간의 거리제한규정을 삭제함(안 제2조)
- 지하층은 지상에 4m²이상의 채광시설을 갖추도록 한 규제내용을 삭제함(안 제3조 제4항)
- 학원과 교습소의 부제교습횟수 제한규정을 삭제함(안 제4조제3항 및 제4항)
- 동일건물내에 같은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의 등록 또는 교습소의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제와 동일건물내 동일층에서 학원과 교습소가 함께 등록·신고할 수 없도록 한 규제를 삭제함(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 다른 부처와 협의·조정이 필요한 학원(간호조무사 학원) 등의 등록 및 변경등록시 사전에 주무부처와 협의후 수리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6조제4항)
- 사회교육전문요원을 채용하였을 때 신고하도록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7조제1항)
- 수강료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변경할 수 없도록 한 규제를 삭제함(안 제8조제2항)
- 학원이 등록·운영할수 있는 교습과정의 확대에 따라 관련내용 및 용어를 정비함(별표1~6)
- 타 조례의 제명변경 및 변경된 기구명칭 등 용어정리와 기타 경미한 사항을 보완함(안 부칙 제2조)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심사 : 1999년 6월 11일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19일 제1차회의에 상정되어 최규성 교육국장의 제안설명과 서의승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되었다.

[질의 및 답변]

- 질의요지

- 타시·도에서도 본 조례안 제출과 관련하여 학원연합회 등으로부터 문제제기가 있었는지?
- 동일 건물내에 같은 교습과정의 학원수립을 규제하고 있는 타시·도는?

- 상위법령과 시행령과 공포되고 1달여만에 조례안이 상정되었는데 늦은 것은 아닌지?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부칙 제2조를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되는데 의견은?
-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학원의 난립이 예견되는데 의견은?

- 답변요지

- 타시·도는 문제제기가 없었음
- 경기, 인천, 전북과 우리강원도가 규제되어 있었음
- 도교육위원회를 통과해야만 상정할 수 있어 그 기간의 공백 때문에 법의 절차를 준수하였기 때문임.
-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이미 개정되어 야 할 문구를 입법심의의 번잡함을 피하기 위하여 이번 조례안에 부칙으로 포함하였음.
-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므로 시대의 변화로 이해해 주시기 바람

[수정안 요지]

- 수정이유

- 부칙으로 다른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을 조례체계 기술상 불부합되므로 본 조례개정과 무관한 부칙조항을 삭제하기 위함.

- 수정주요골자

- 부칙안제1조(시행일) 조문을 삭제
- 부칙안제2조제1항내지제2항을 삭제

- 본회의 심사 : 1999년 6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상현교육사회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9년 6월 24일 강원도교육감에게 이송되어 1999년 7월 15일 강원도조례 제 2720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학원의설립 ·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학원의설립 · 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지하실은 영 제9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의 기준에 적합하고, 유사시 대피가능한 외부출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학원(교습소 포함)의 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의 제목중 “교습시간 및 부제교습 횟수”를 “교습시간”으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학원의설립 · 운영자는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사 및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원(이하 “생활지도사”라 한다)을 채용한 때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관할 교육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1내지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의 위반사항란 제1호중 “5) 정원초과”를 “5) 일시수용능력인원초과”로, “8) 목적, 편제, 교습과정 위반”을 “8) 교습과정 위반”으로, “11) 강사, 사회교육전문요원, 생활지도사 채용 · 해임 미보고”를 “11) 강사, 생활지도사 채용 · 해임 미보고”로, “23) 사회교육전문요원, 생활지도사 미배치”를 “23) 생활지도사 미배치”로 “23) 강사, 사회교육전문요원, 생활지도사 인적사항 미게시”를 “26) 강사, 생활지도사 인적사항 미게시”로, “27) 등록증, 수강료 미게시”를 “27) 수강료 미게시”로 하고, 동란 제2호 중 “3) 정원초과”를 “3) 일시수용능력인원 초과”로 “5) 목적, 교습과목 위반”을 “5) 교습과목 위반”으로 하며, “16) 교습소신고필증, 교습료 미게시”를 “16) 교습료 미게시”로 한다.

별표 6의 위반사항별란 제1호중 “재개원 또는 폐원”을 “폐원”으로 하고, 동란 제2호중 “재개소 또는 폐소”를 “폐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학원의 시설규모

분야	계열	교습과정	강의실 · 열람실 · 실습실 면적		비고
			동지역	읍 · 면지역	
직업기술	(전계열)	(전과정)	[별표3]의 실험 · 실습 · 실기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기준		
국제실무	외국어	(전과정)	90㎡이상	60㎡이상	강의실 기준
인문 · 사회	인문사회	성인고시	120㎡이상	90㎡이상	“
		행정, 경영, 회계, 통계	60㎡이상	45㎡이상	“
경영실무	경영관리	(전과정)	[별표3]의 실험 · 실습 · 실기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기준		
	사무관리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하는 과정	60㎡이상	50㎡이상	실습실 기준
		강의실만 둘 수 있는 과정	60㎡이상	50㎡이상	강의실 기준
예능	예능	(전과정)	[별표3]의 실험 · 실습 · 실기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기준		
입시 · 검정	보통교과	입시종합	90㎡이상	60㎡이상	강의실 기준
		입시단과	90㎡이상	60㎡이상	“
		검정고시	120㎡이상	90㎡이상	“
독서실	독서실		90㎡이상	60㎡이상	열람실 기준

[별표2] 학원의 교습과정별 강의실 설치기준

분야	계열	교 습 과 정	
		강의실 또는 열람실만 둘 수 있는 학원의 교습과정	강의실은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는 학원의 교습과정
직업기술	산업기반기술		토목, 건축, 환경, 공예, 국토개발, 화공, 의복, 섬유, 안전관리
	산업응용기술		디자인, 이 · 미용,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조율, 식음료품
	정보처리기술		컴퓨터, 인터넷
	문화관광		광고, 캐릭터, 관광



국제실무	외국어	“전과정”	
인문·사회	인문사회	“전과정”	
경영실무	경영관리		“전과정”
	사무관리	부기, 속기, 속독, 속셈, 경리	워드프로세서, 주산, 펜글씨
예능	예능		“전과정”
입시·검정	보통교과	“전과정”	
독서실		“독서실”	

[별표3] 실험·실습·실기를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분야	계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비고
직업기술	산업기반 기술	기계	1. 기계일반 가. 강의실 30㎡이상 나. 설계실 60㎡이상 다. 실습공장 60㎡ 이상 라. 설비 (1) 선반 2대이상 (2) 모우터 7마력 이상의 것 1대 이상 마.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 중기운전 가. 강의실 30㎡이상 나. 운전실습장 900㎡이상 다. 기재실 30㎡이상 라. 실습장비 (1) 중기가동 완전품 4대 이상 (2) 엔진체 1대 (3) 중장비 기술교육에 필요한 시험기 및 측정기 10대 이상 (4) 축전기, 충전기, 전기배전판, 삼각대, 구리스주유기 등 부대시설 기계 (5) 일반공구 20종 이상 마.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 중기정비 가. 강의실 30㎡이상 나. 정비실습실 60㎡이상 다. 기재실습실 60㎡이상	

분야	계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비고
			라. 설비 (1) 중기정비용(불가동 분해조정용) 1대 이상 (2) 엔진체 2대 이상 (3) 각장비별 부품 3조 이상 (4) 삼각대, 체일블럭, 전기용접기, 산소용접기, 야전용 유압프레스, 오일작기 각1대 이상 (5) 중장비 기술교육에 필요한 시험기 및 측정기 9종 이상 (6) 중장비 기술교육에 필요한 일반공구 20점이상 마.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 농기구 정비 가. 강의실 30㎡이상 나. 정비실습실 60㎡이상 다. 기재실 15㎡이상 라. 설비 및 교구 (1) 작업대 10대 이상 (2) 디젤기관 2대 이상 (3) 가솔린기관 5대 이상 (4) 시험기 및 측정기 5대 이상 (5) 부대시설·기계 10종 이상 (6) 일반공구 20점 이상 마. 기타 필요한 시설 설비 및 교구 5. 냉동 가. 강의실 30㎡이상 나. 실습실 45㎡이상 다. 기재실 30㎡이상 라. 설비 및 교구 (1) 냉동유니트 5대 이상 (2) 분해조립형, 개방형압축기 각5대 이상 (3) 진공펌프, 회전식 압축가스 각2대 이상 (4) 밀폐형 압축기 5대 이상 (5) 증발기, 응축기 3대 이상 (6) 기타 부속기기 10종 이상 (7) 작업대 3개 이상 (8) 측정, 마름질, 해머, 분해, 다듬질 및 배관용접, 전기실습을 위한 기자재 마. 기타 필요한 시설 설비 및 교구	



분야	계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비고
			6. 시계수리 가. 실습실 45㎡이상 나. 설비 (1) 선반 1대 이상 (2) 전자기계조정기 6대 이상 (3) 펀치 20개 이상 (4) 스탠드 20개 이상 (5) 자동분해소제기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자동차	1. 자동차 운전 가. 강의실 60㎡이상 나. 시설 (1) 기능교습장 면적은 6,600㎡이상으로 하되 제1종 대형면허반의 기능 교습을 병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3,000㎡이상의 면적을, 제2종 소형면허 및 원동기 장치 자전거면허의 기능교습을 병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1,000㎡이상의 면적을 추가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2층으로 기능 교습장을 설치하는 때에는 상하 연결된 차도의 너비가 7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정비장 60㎡이상과 교습차량 정비를 위한 제반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3) 주차시설은 70㎡이상으로 하고, 바닥을 포장하여야 한다. 다. 시설·설비 및 장비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별표15)에 규정한 기능교습코스를 연결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능시험을 위한 채점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법령 및 구조와 기능강의를 효율적으로 교습할 수 있도록 책상·의자와 각종 보충교재 (3) 자동차엔진체 및 차대 각 2대 이상 (4) 생산공장에서 출고된지 3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제작증명서가 구비된 차량을 기능교습장 일시 수용인원 1인에 1대를 기준으로 확보하되, 기능교습장 면적 300㎡당 차량1대 이내를 확보하여야 한다.	

분야	계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비고
			(5) 도로 운전기능 교습차량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적합한 차량으로 1대 이상 “나”목(4)의 기능교습 차량 대수의 50% 이내 라. “가”, “나”목의 시설은 동일 부지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나”목(1)의 기능교습코스시설은 교습중 다른코스를 침범하지 않도록 배열하고, 코스와 코스사이 는 상당한 거리를 두어서 상호 교습에 지장이 없 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설비를 하여야 한다. (1) 코스의 난이도에 따라 개별코스를 설치할 수 있다. (2) 전후진 코스의 폭은 3.5미터 이상 길이는 15미 터 이상 설치한다.	
		화공 및 세라믹	1. 화공 가. 실습실 45㎡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화공계측, 화학실험기, 화공장치 및 설비등 5 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전기	1. 전기기기 가. 실습실 60㎡이상 나. 전기실 30㎡이상 다. 설비 (1) 모터1마력 이상의 것 2대 이상 (2) 수전, 송전 배전실 (3) 테스타 10대 이상 (4) 실험대 5대 이상 라.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통신	1. 정보통신 설비 가. 실습실 6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모뎀(MODEM) 10대이상 (2) 다중송신장치(MUX) 1대이상 (3) 오실로 스코프 1대 이상 (4) 회로시험기 10대 이상	



분야	계열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비고
			(5) 주파수발전기 1대 이상 (6) 설비실습용 컴퓨터 10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치 및 교구 2. 정보통신 기기 운용 가. 실습실 6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파일통합장치(CLINT-SERVER 32PORT이상) (2) 하드디스크 1GB이상 컴퓨터 1대 이상 (3) 터미널용 컴퓨터 20대 이상 (4) 컴퓨터프린터기 2대 이상 (5) 국가검정용 프로그램 20개 이상 (6) 업무용 통신프로그램 2개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전자	1. 전자기기(라디오, TV, VTR, 컴퓨터) 가. 실습실 45㎡이상 나. 기재실 15㎡이상 다. 설비 및 교구 (1) 공통기재 (가) 회로시험기 2인당 1대 이상 (나) 신호발전기 3대 이상 (다) 트랜지스터 체커 1대 이상 (라) 저주파 발진LSRL 2대 이상 (마) 트랜지스터 1대 이상 (바) 시그올레트시 1대 이상 (사) 정전용량계 1대 이상 (아) 임리던스 브릿쉬 1대 이상 (자) 조립 및 수리실습에 필요한 공구 30조 이상 (2) 텔레비전 과정 (가) “(1)호의 공통기재 (나) 텔레비전, 스위트발전기 1대 이상 (다) 음주선, 오실로스코프 1대 이상 (라) 고전압계 1대 이상 (3) 컴퓨터 기기 과정 (가) “(1)”, “(2)호의 시설·설비 (나) 컴퓨터(전산기기) 5대 이상 (다) 컴퓨터용 모니터 10대 이상 (라) 컴퓨터용 프린터 1대 이상 (마) 보조기억장치 2대 이상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시 설 · 설 비 및 교 구	비 고
			(4) 비디오 기기 과정 (가) “(1)”, “(2)”호의 시설·설비 (나) VTR 2대 이상 (다) 비디오 카메라 2대 이상 (라) 모니터 텔레비전 3대 이상 라.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토목 건축	1. 토목, 건축 가. 설계실 6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제도판 및 제도대 1인당 1조 (2) 측량기구 (가) 전경의 5인당 1대 이상 (나) 수준의 5인당 1대 이상 (다) 평균의 5인당 1대 이상 (라) 수수령의 5인당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의복· 섬유	1. 수예, 자수 가. 실습실 45㎡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재봉기 자수과정 : 자수재봉기 1인당 1대 이상 (2) 수예, 손자수, 조화, 인형과정 : 과정에 필요한 설비 및 교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 양재 및 한복 가. 실습실 45㎡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재봉기 2인당 1대이상 (2) 다리미 2인당 1대이상 (3) 재단식 4인당 1대이상 (4) 전신마네킹 5개 이상 (5) 디자인 실습대 2인당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 편물 가. 실습실 45㎡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기계편물인 경우에는 편물기 1인당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시 설 · 설 비 및 교 구	비 고
		농림	1. 동물 가. 실습실 45㎡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사육과정 (가) 사육장 300㎡이상 (나) 동물 5종 이상 (2) 박제과정 (가) 박제표본 : 어류, 조류, 갑각류 각5점이상 (나) 박제 제작기구 : 1인당 1조 이상 (3) 모피, 피혁과정 (가) 화공약품 처리장 15㎡이상 (나) 회전기, 약품침전 탱크전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에너지	1. 열관리 가. 실습실 60㎡이상 나. 설비 (1) 보일러 4종 이상 (2) 보일러 부속장치 (3) 버너 4대 이상 (4) 가스분석기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환경	1. 환경관리 가. 실습실 45㎡이상 나. 설비 (1) 대기, 토양, 해양오염측정기 3대 이상 (2) 소음진동 측정기 2대 이상 (3) 수질검사 시험기 2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공예	1. 보석감정 가. 실습실 45㎡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현미경 2인당 1대 이상 (2) 굴절계 2인당 1대 이상 (3) 보석용(비중측정검용) 정밀저울 1대 이상 (4) 평광기 2인당 1대 이상 (5) 분광기기(포터볼제외) 1대 이상 (6) 자외선 형광반응기 1대 이상 (7) 이색경 2대 이상 (8) 각 보석류 150종 이상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시 설 · 설 비 및 교 구	비 고
		공 예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 귀금속 가공 가. 실습실 45㎡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산소용접기 2대 이상 (2) 마모기 1대 이상 (3) 광택기 1대 이상 (4) 모루 2인당 1대 이상 (5) 압연기(전기롤러) 1대 이상 (6) 실습대(4인용기준)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 도예 가. 실습실 60㎡이상 나. 공작대 4인당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안전관리	1. 안전관리 일반 가. 실습실 45㎡이상 나. 설비 (1) 소방 및 가스설비, 방호장치 및 보호구, 안전 기기 등 5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산업응용 기술	디자인	1. 산업디자인 가. 실습실 6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인테리어 디자인 과정 (가) 제도판 1인당 1대 이상 (나) 실습대(1인용)2인당 1대 이상 (다) 실습용 컴퓨터 3대 이상 (2) 그래픽 디자인 과정 (가) 실습대(1인용) 2인당 1대 이상 (나) 컴퓨터 1대 이상 (다) 실습용 컴퓨터 2인 1대 이상 (3) 섬유디자인 과정 (가) 실습대(1인용)2인당 1대 이상 (나) 실습용 컴퓨터 3대 이상 (다) 복사조명대 1대 이상 (4) 디스플레이 과정 (가) 실습대(1인용) 2인당 1대 이상 (나) 실습용 쇼윈도우 2인당 1대 이상 (다) 쇼윈도우용 마네킹 3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시 설 · 설 비 및 교 구	비 고
			2. 패션디자인 가. 강의실 30㎡이상 나. 실습실 60㎡이상 다. 설비 및 교구 (1) 디자인 제도대 2인당 1대 이상 (2) 시청각 기구 1대 이상 (3) 에어브러쉬 1세트 이상 (4) 모타미싱 10대 이상 (5) 패션 실습대 4인당 1대 이상 (6) 스팀다리미 5대 이상 (7) 인대(마네킹)3대 이상 (8) 실습용 컴퓨터(32BIT이상)2대 이상 라.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이·미용	1. 이용 가. 실습실 6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이발의자 5개 이상 (2) 증기소독기 2조 이상 (3) 건발기 2대 이상 (4) 이발기, 면도기, 가위 각 10개 이상 (5) 대형거울 : 이발의자에 상응하는 개수 (6) 세면장 및 급수시설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 미용 가. 실습실 6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실습대(4인용) 5대 이상 (2) 건발기, 파마기, 인두(마네킹) 각 20조이상 (3) 맛사지 침대, 샴프대 각 2대 이상 (4) 안면기, 미용의자, 미안대(거울) 각 2대 이상 (5) 세면장 및 급수시설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 분장 가. 실습실 6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분장세트 30조 이상 (2) 가발 3종 40개 이상 (3) 마네킹 30개 이상 (4) 수염재료 일체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시 설 · 설 비 및 교 구	비 고
			(5) 시청각기구 1조 이상 (6) 특수분장제조기 1조 이상 (7) 조명시설 2조 이상 (8) 분장실습대 및 의자 15조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식음료품	1. 조리 가. 조리실 6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조리대 4인당 1대 이상 (2) 냉장고 1대 이상 (3) 환풍기 1대 이상 (4) 각 요리별로 10인당 요리에 필요한 기구 1식 이상 (5) 요리대수에 상응한 수의 급수시설 (6) 제독시설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 제과·제빵 가. 조리실 6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빵 슬라이서 1대 이상 (2) 수직형 믹서 10대 이상 (3) 오븐(용량 : 2장)10대 이상 (4) 수평형 반죽기(중형) 4대 이상 (5) 발효실(용량 : 40장) 2대 이상 (6) 추저울(5kg) 20대 이상 (7) 비중계, 당도계, PH미터기, 수분측정기 각1대 이상 (8) 습도계, 온도계 각 4대 이상 (9) 로라(OEUGHT SHETER)1대 (10) 냉장고(1,000ℓ 이상) 1대 (11) 실습실당 싱크대 2대 이상 라.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 조주 가. 실습실 6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진열대 4대 이상 (2) 조주대 4대 이상 (3) 양주병 500개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시 설 · 설 비 및 교 구	비 고
		인쇄	1. 인쇄 가. 실습실 60㎡이상 나. 설비 (1) 인쇄기 2종 이상 (2) 활재, 활자판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사진	1. 사진 가. 실습실 60㎡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사진기 3종 이상 (2) 확대기 2대 이상 (3) 암실 5㎡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피아노 조율	1. 피아노조율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정음작업대 2대 이상 (2) 조율튜우너, 튜닝해머 각 3대 이상 (3) 스테이샤, 스푸운밴다, 건반고르기자, 다이얼게 이지 각2대 이상 (4) 피아노 3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기타광학	1. 기타광학(안경) 가. 강의실 30㎡ 이상 나. 실습실 60㎡ 이상 다. 설비 및 교구 (1) 컴퓨터 검안기 자동, 수동 각 1대 이상 (2) 시력표 3대 이상 (3) 옥습기 1인당 1대 (4) 굴절검사기 1인당 1대 (5) 검안세트 2대 이상 (6) 가열기 5대 이상 (7) 세척기 2대 이상 (8) 착색기 2대 이상 라.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시 설 · 설 비 및 교 구	비 고
	정보처리 기술	컴퓨터	1. 컴퓨터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32BIT이상의 퍼스널 컴퓨터 30대 이상 (학습자수 1인당 1대 이상) (2) 주변기기 및 각종 교육용 프로그램 30개이상 (3) 프린터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정보통신	1. 정보통신(정보처리) 가. 강의실 30㎡ 이상 나. 실습실 60㎡ 이상 다. 설치 및 교구 (1) 다음의 성능을 갖춘 다중사용자(MULTI-USER) 환경의 주전산시스템 1식 (가) 하드디스크 : 1GB 이상 (나) 자기테이프 : 150MB 이상 (다) 라인프린터 : 600LPM 또는 1,320PCS이상 (2) 교육용 프로그램 20조 이상 (3) 컴퓨터 회로기판 및 각종 IC류 20개 이상 라.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간호조무 사기술	간호조무 사	1. 간호조무사 가. 강의실 60㎡ 이상 나. 실습실 60㎡ 이상 다. 설비 및 교구 (1) 인체모형 1개 이상 (2) 인체해부 및 생리케도 각 1부 이상 (3) 시력 및 색맹표 각 1부 이상 (4) 신장 및 체중계 각 1개 이상 (5) 주사기 20종 이상 (6) 소독기 중형 1개 이상 (7) 혈압계, 청진기 각 5개 이상 (8) 침대 대인용 2개이상, 소인용 1개 이상 (9) 흡입기(Suction)1개 이상 (10) 휠체어 1개 이상 (11) 주사실습용 인체모형 (12) 인공배뇨셀 (13) 기관 절개선(cannula kit) 라.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시 설 · 설 비 및 교 구	비 고
	문화관광	방송	1. 방송 가. 강의실 30㎡ 이상 나. 기본시설·설비 및 교구 (1) 부조정실 (가) 기재실 3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①영상조정기(VEDED MIXER UNIT) 1대 ②음향조정기(AUDIO MIXER UNIT) 1대 ③동기신호발생기(SYNCGENERATOR) 1대 ④파형감식기(WAVEFORM MONITOR) 1대 이상 ⑤방송용녹음기(TAPE RECORDER) 1대 이상 ⑥영상위상감지기(VECTOR SCOPE) 1대 ⑦고화질 녹음기(S. VHS) 1대 이상 ⑧영상 및 음향감지기 (VIDED & AUDIO MONITOR) 5대 이상 ⑨편집기(EDITOR) 1대 1 또는 2대 2 1대 (2) 스튜디오 (가) 설비 및 교구 ①베타감 고화질카메라(BETACAM CAMERA) 또는 고화질 카메라(S. VHS CAMERA) 1대 이상 ②조명기(LIGHT 1KM이상)3대이상 ③영상 및 음향감지기(VIDEO & AUDIO MONITOR)1대 이상 (3) 방송실습제작실 (가) 편집실 ①기재실 30㎡ 이상 ②설비 및 교구 ㉠방송용 영상조정기(BWITCHER) 1대 ㉡방송용 음향조정기(AUDIO CONSOL) 1대 ㉢방송용 녹화기(S.VHS) 또는 SETACAM 1:1 1대 이상 ㉣방송용 영상보정기(LINE PROCESSOR) 1대 ㉤방송용 색상보정기(COLROR CORRECTOR) 1대 ㉥방송용 영상감지기(VIDEO MONITOR) 1대 (나) 녹음기 ①기재실 ㉦녹음조정실 30㎡ 이상 ㉧녹음 스튜디오 30㎡ 이상 ②설비 및 교구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시 설 · 설 비 및 교 구	비 고
			㉔방송용 음향조정기(AUDIO MIXER UNIT) 1대 ㉕방송용 녹음기(REEL DECK) 1대 ㉖방송용 녹화기(VTR) 1대 이상 ㉗방송용 반향발행기(ECHO) 1대 이상 ㉘방송용 음향증폭기(P.A AMP) 1대 이상 ㉙필름편집기(FILM EDITOR) 1대 ㉚방송용 음향감청기(SPERKER) 2대 이상 ㉛영상음반기(COMPUTER DISK ELECTRIC GRAPHIC) 1대 ㉜MULTI TRACK RECORDER 1대 ㉝CASSETTE DECK 1대 ㉞COMPACT DISK 1대 ㉟방송용 음반작동기(TURN TABLE) 1대 (다) 야외 녹화장비 ①방송용 취재용 촬영기(ENG BAMERA) 2대 이상 ②방송용 전기용 조명기(LIGHT) 2대 이상 ③방송용 건전지 조명기(SUNGUN) 1대 이상 다. 과정별 시설 · 설비 및 교구 (1) 종합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중 (3)의 (나)를 제외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단, 유선방송인 경우에는 “다”목(11)의 시설 · 설비 및 교구를 갖추어야 함. (다) 기타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2) 방송제작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중 (3)의 (나)를 제외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3) 방송기술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중 (3)의 (나)를 제외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4) 아나운서, 리포터 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중 (1),(2) 및 (3)의 (나)(다)의 시설, 설비 및 교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시 설 · 설 비 및 교 구	비 고
			(5) 무대미술(무대분장 포함)과정 (가)“가”목 및 “나”목의 시설·설비 및 교구제외 (나) 실습실 60㎡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 편집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 (1) 및 (3)의 (가)의 시설·설비 및 교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7) 촬영·영상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 (1)·(2) 및 (3)의 (다)의 시설·설비 및 교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8) 조명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 (1)·(2) 및 (3)의 (다)의 시설·설비 및 교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9) 음향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 (1)·(2) 및 (3)의 (나)의 시설·설비 및 교구 (10) 성우과정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의 (3)의 (나)의 시설·설비 및 교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1) 유선방송전송기술과정 (가) 시설 ①“가”목의 공통시설 ②기자실 3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①영상 및 음향복조기(DEMODULATOR) 각 2대 이상 ②영상 및 음향변조기(MODULATOR) 각 2대 이상 ③튜너(COMMUNITY SATELLITE, BROADCASTING SATELLITE) 각 1대 ④복호기(DECODER) 1대 이상 ⑤영상분배기(VIDEO) 1대 ⑥음향분배기(AUDIO DIVIDER AMP) 1대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시 설 · 설 비 및 교 구	비 고
			⑦칼라화면발생기(PATTERN GENERATOR) 1대 ⑧주파수대변환기(SCRAMBLER) 1대 ⑨레벨미터(신호측정기) 2대 이상 ⑩채널혼합기 1대 ⑪채널변환기(8CH 이상) 1대 ⑫가입자수신기(CONVERTOR) 2대 이상 ⑬파형검사기(WAVEFORM MONITOR) 1대 ⑭영상위상감지기(VECTOR SCOPE) 1대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관광	1. 관광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관광도서 30종 이상 (2) 한국지도(50만분의 1), 세계지도 (3) 실습실당 고적, 명승지 안내도 각 1매 이상 (4) 실습실당 녹음기, 시청각기구, 카메라, 각 1대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경영실무	사무관리	워드프로세서	1. 워드프로세서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일시 수용인원 1인당 같은 종류 및 같은 기능의 실습기 1대 (2) 출력기능이 없는 기기는 2대당 프린터기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주산	1. 주산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대형주판 2개 이상 (2) 속도측정용 초시계 2개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시 설 · 설 비 및 교 구	비 고
예능	예능	전통무용, 무용	1. 전통무용 / 무용 가. 시설 (1) 무용실 60㎡ 이상 (2) 탈의실 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전축, 녹음기 각1대 이상 (2) 대형거울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서예	1. 서예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베틀 일시수용인원 1인당 1대 이상 (2) 지필묵 일시수용인원 1인당 1대 이상 (3) 서법도서 10종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음악	1. 음악 가. 실습(음악)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감상용전축(채널당 출력 20W 이상) 1대 이상 (2) 악기과정 : 해당악기 5대 이상 (3) 성악과정 (가) 현대성악 : 피아노 1대 이상 (나) 고대성악 : 장고, 가야금, 피리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미술	1. 미술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정물대 1개 이상 (2) 화판 및 화판걸이(이젤)일시수용인원 1인당 1개(단, 13세 미만의 아동만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4인당 1개)이상 (3) 서양화 과정 : 석고 및 석고대 10점 이상 (4) 동양화 과정 : 베틀, 모포 10점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웅변	1. 웅변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녹음기 2대 이상 (2) 강연대 2개 이상 (3) 원고철판 2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시 설 · 설 비 및 교 구	비 고
		모델, 연극	1. 모델/연극(영화포함)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모델, 무대미술, 배우과정 (가) 무대장치, 조명장치, 녹음장치, 확장장치 각1조 이상 (2) 영화기술과정 (가) 현상실 10㎡ 이상 (나) 녹음실 15㎡ 이상 (다) 촬영기 영사기 각 1대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바둑	1. 바둑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바둑판 10조 이상 (2) 바둑해설판 1조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꽃꽂이, 꽃기에	1. 꽃꽂이 / 꽃기에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껌도 5종 이상 (2) 실습용 공구 20세트 이상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독서실	독서실		1. 독서실 가. 열람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열람대 1인당 1대 (열람대 넓이는 가로 78cm, 세로 58cm 이상) (2) 대백과 사전(전집류) 1질 이상, 정기간행물 구독 5종 이상 (3) 남녀공용인 독서실에 있어서는 열람실을 남·여별로 구분하여 출입문도 따로 하여야 한다. 다.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별표4] 실험·실습 또는 실기를 필요로 하는 학원의 교습과정·과목별 반당 학습자수

분야	계열	교습과정	교습과목	반당학습자수(명)	비 고
직업 기술	산업기반 기술	기계	1. 기계일반	40	운전실습장 면적의 증가에 따라 반 당 학습장의 수를 증원할 수 있다.
			2. 중기운전	30	
			3. 중기정비	30	
			4. 자동차 (농기구) 정비	40	
			5. 냉동	40	
			6. 시계수리	30	
		자동차	1. 자동차운전	40	기능교습장 일시 수용인원 -1·2종 보통 : 기능교습장 면적 300㎡당 1인 이내 -1종 대형·특수 : 기능코스 1식당 2인 이내 -2종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 : 기 능교습장 면적 50㎡당 1인 이내
		화공 및 세라믹	1. 화공	40	
		전기 통신	1. 전기기기	40	
			1. 정보통신설비	40	
			2. 정보통신 기기운용	40	
		전자 토목, 건축	1. 전자기기	40	
			1. 토목, 건축	20	
		의복, 섬유	1. 수예 자수	30	
			2. 양재 및 한복	30	
			3. 편물	30	
		농림 에너지	1. 동물	20	
			1. 열관리	40	
			1. 환경 관리	40	
		환경 공예	1. 보석감정	30	
			2. 귀금속가공	30	
			3. 도예	40	
	산업응용	안전관리 디자인	1. 안전관리 일반	30	
			1. 산업디자인	40	
			2. 패션디자인	40	
		이·미용	1. 이용	30	
			2. 미용	30	
			3. 분장	20	
		식음료품	1. 조리	40	
			2. 제과, 제빵	40	
			3. 조주	40	
		인쇄 사진	1. 인쇄	40	
			1. 사진	30	
		피아노조율 기타광학	1. 피아노조율	30	
			1. 기타광학(안경)	30	

분야	계열	교습과정	교습과목	반당학습자수(명)	비 고
경영 실무 예능	정보처리	컴퓨터 정보통신	1. 컴퓨터	40	단, 피아노는 12명
			1. 정보통신 (정보처리)	30	
	간호 조무사 기술	간호조무사	1. 간호조무사	40	
	문화관광	방송 관광	1. 방송	20	
			1. 관광	60	
	사무관리	워드프로세서 주산	1. 워드프로세서	40	
			1. 주산	40	
	예능	전통무용, 무용 서예 음악 미술 웅변 모델, 연극 바둑 꽃꽂이, 꽃 기예	1. 전통무용/무용	20	
			1. 서예	30	
			1. 음악	20	
			1. 미술	30	
			1. 웅변	50	
			1. 모델/연극	30	
			1. 바둑	30	
			1. 꽃꽂이/꽃기예	30	

※비고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교습과정 · 과목별 학습자의 수는 유사한 교습과목을 준용한다.

4) 강원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6월 10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이 조례의 근거법률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95. 12. 29 제정된 「농지개량조합법」에 흡수되고 「농지개발확대촉진법」은 94. 12. 22 제정된 「농어촌정비법」에 흡수되면서 조례로 위임하던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자치법규 일제 · 정비 계획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 6월 12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19일 제1차회의에 상정되



어 최현영 농정산림국장의 제안설명과 김용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이 있었으나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

- 조례제정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등이 흡수·폐지가 된지 4~5년이 경과되었는데 지금까지 조례가 존치된 이유와 그동안 조례존치로 불이익을 받은 사람은 없는지?

- 답변요지

- 그간 조례를 정비해야 했는데 이번에 자치법규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으로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조례존치이후 시행된 것은 없음.
- 본회의 심사 : 1999년 6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업무협산업경제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9년 6월 24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1999년 7월 15일 강원도조례 제 2713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

강원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 (강원도조례 제1004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강원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6월 10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이 조례는 초지조성 및 사후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80. 6. 5 제정 시행하여 오던 것을 초지법이 개정(97. 4. 10 시행)되면서 조례의 제정근거 조항이 삭제되었기에 존치필요성이 없게되어 조례규칙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 6월 12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19일 제1차회의에 상정되어 최현영농정산림국장의 제안설명과 김용기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1999년 6월 24일 제2차본회의에서 엄문섭산업경제위원장의 심사보고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9년 6월 24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1999년 7월 15일 강원도조례 제 2712호로 공포되었다.

6) 강원도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6월 10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이 조례의 제정근거법령인 「도·소매업진흥법」이 폐지되면서 새로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97. 4. 10 공포)에 그 법령이 흡수되었으나 종전 법령에서 규정하던 위원회설치 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 6월 12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12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19일 제1차 회의에서 김낙기 산업진흥국장의 제안설명과 김용기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이 있었으나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1999년 6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엄문섭 산업경제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9년 6월 24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1999년 7월 15일 강원도조례 제 2710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도 · 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강원도도 · 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 (강원도조례 제1836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 강원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6월 10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이 조례의 근거법령인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분리개정(97. 12. 13)되면서 조례로 과징금을 징수하도록 하던 종전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의 존치필요성이 없어 도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의거 폐지하려는 것임.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 6월 12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19일 제2차회의에서 김낙기산업진흥국장의 제안설명과 김용기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1999년 6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엄문섭 산업경제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9년 6월 24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1999년 7월 15일 강원도조례 제 2708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안

강원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강원도조례 제1647호)는 이를 폐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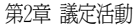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 강원도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6월 10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이 조례의 근거법률인 「자동차 관리법」이 전면개정(95. 12. 29)되면서 종전에 조례에서 규정하던 징수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전부 규정하고 있



494

령 개정(99. 3. 26)에 따라 개발사업 관리권한이 도지사로부터 시장·군수로 이양된 사무 및 규제완화 계획에 따른 관련규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개발촉진지구내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3조)
- 실시계획승인, 착공신고 및 준공인가, 시행자 지정취소 등 도지사의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이양된 조항을 삭제함(안 제4조 내지 제9조 및 제13조)
- 지역특화사업에 관한 도지사의 권한을 조례로 시장·군수에게 권한 위임한 것을 법으로 이양함에 따라 권한위임 조항을 삭제함(안 제14조)
- 규제완화계획에 따라 카지노사업 참여 민간개발자에게 이행 각서를 제출토록 한 의무규정을 삭제함(안 제19조)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 6월 12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19일 제1차회의에서 김낙 기산업진흥국장의 제안설명과 김용기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1999년 6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업무협산업경제위원장의 심사보고후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9년 6월 24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1999년 7월 15일 강원도조례 제 2706호를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내지 제9조·제13조·제14조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0) 강원도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및운영기금적립조례중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6월 10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이 조례의 근거법률인 「자동차운수사업법」의 법률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을 인용하는 등 종전의 규정을 일부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법률명칭을 변경하고 인용조항을 정비함(안 제2조, 제4조, 제6조)
 - 기금관리공무원의 직명을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 직명과 일치(안 제17조)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 6월 12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19일 제2차회의에서 김낙기 산업진흥국장의 제안설명과 김용기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1999년 6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염문섭 산업경제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9년 6월 24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1999년 7월 15일 강원도조례 제 2716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및운영기금적립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및운영기금적립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의 규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4조중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63조의 규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05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제4항의 규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제4항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7조제1호중 “산업통상국장”을 “산업진흥국장”으로 하고 동조 제2호중 “교통안전계장”을 “교통안전담당”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1) 강원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6월 10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유통단지개발촉진법(96. 6. 30 시행) 규정에 따라 유통단지의 개발, 단지의 지정 및 지원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위원회는 유통단지개발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및 단지의 지정과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되 위원회의 기능은 「강원도정조정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함(안 제2조)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 6인이내 위촉위원 9인 이내로 함(안 제3조)
 -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인을 두되 유통단지개발 종합계획수립 및 유통단지 관리에



- 관한 지원사항에 대하여는 경제진흥과장이, 유통단지의 지정 및 개발과 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계획과장이 하도록 함(안 제4조)
- 회의에 출석하는 위촉위원 등에 대한 실비변상규정을 두고 기타 사항은 강원도정조정위원회 회조례의 규정을 따르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 강원도정조정위원회회조례에서 이 위원회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반영함(안 부칙제2항)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 6월 12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19일 제2차 회의에서 김낙기 산업진흥국장의 제안설명과 김용기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1999년 6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엄문섭 산업경제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9년 6월 24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1999년 7월 15일 강원도조례 제 2717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의 의하여 강원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통단지개발 종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유통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유통단지개발 등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는 강원도정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3조(구성) ① 제2조의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위원은 당연직위원 6인 이내, 위촉위원 9인 이내로 한다.

제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수립 및 단지 관리에 관한 사항은 경제진흥과장이 되고, 유통단지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은 지역계획과 장이 된다.

제5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원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의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원도정조정위원회 조례에 의한다.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9호의 2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의 22. 강원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운영조례 제2조에 규정한 사항

12) 강원도오색온천관리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6월 10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온천공동급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온천법에 개정(95. 12. 30)됨에 따라 「양양군온천공동급수조례」를 제정(99. 3. 25) 시행하게 되므로 종전에 시행하여 오던 「강원도오색온천공동급수조례」를 폐지하면서 오색온천의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온천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3조)
- 온천사용료는 온천법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양양군온천공동급수조례」에 의하도록 함(안 제4조)
- 온천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권한을 종전대로 양양군수에게 위임하고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50을 양양군에 교부함(안 제5조)
- 온천시설의 유지관리비를 도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제3항)
- 종전의 「강원도오색온천공동급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함(안 부칙 제2항)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 6월 11일 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3일 제2차회의에서 방재홍 관광문화국장의 제안설명과 임병환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1999년 6월 24일 제2차본회의에서 김길정관광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후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9년 6월 24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1999년 7월 15일 강원도조례 제 2715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오색온천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가 소유하고 있는 오색온천의 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온천의 명칭은 강원도오색온천(이하 “오색온천”이라한다)이라 한다.

② 오색온천의 위치는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의 24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공급계약) 온천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강원도지사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① 온천수의 사용료는 온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양양군온천공동급수 조례에 의한다.

② 사용료 징수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조(권한의 위임)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색온천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양양군수에게 위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양군에 교부한다.

③ 오색온천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양군수에게 도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강원도오색온천공동급수조례(조례 제1502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3) 강원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6월 10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건축법이 개정(99. 2. 28 공포 99. 8. 9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인용하던 법률조항을 변경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건축위원회 기능중 인용된 종전 법률조항을 개정된 법률조항으로 변경함(안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 행정기구의 변경다시 정비되지 않은 종전의 “계장”을 “담당”으로 수정함(안 제10조제2항)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 6월 11일 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3일 제2차회의에서 박세희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임병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1999년 6월 24일 제2차본회의에서 김길정관광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9년 6월 24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1999년 7월 15일 강원도조례 제 2707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제8조제3항”을 “제8조제2항”으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62조제1항, 제62조의 2 및 제63조 규정의 도시설계 승인에 관한 별표 2의 사항 제10조제2항의 “업무주관계장”을 “업무주관담당”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4) 강원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6월 10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종전의 「중기운영관리조례」는 93년도에 전면개정한 바 있으나 과거(70년, 80년)에도(道)보유중기가 건설공사의 주요기능을 하던 당시의 규정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어 민간보유장비가 일반화·다양한 현대화한 오늘날에는 불합리한 점이 많으므로 이를 현실에 맞게 전면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종전의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개정(94. 1. 1)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강원도도로보수용장비운영관리조례」로 변경함.
 -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매년 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하고 장비의 사용절차와 방법등을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훈령 또는 예규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제3조 제4항)
 - 보유한 장비는 종전과 같이 도가 관리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및 긴급복구에 기본적으로 사용되 필요할 경우 계약에 의하여 개인·단체 등에 사용하게 하거나 수급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장비사용료는 종전과 같이 기본사용료와 운전경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산정기준은 종전에 별표와 건설공사표준품셈을 병용하던 것을 건설공사표준품셈과 여비규정에 의하도록 함(안 제5조)
 - 장비사용기간을 종전에 일과 월로 구분하던 것을 현실성 없는 월단위를 삭제하고 일단위와 시간단위로 사용요율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5조 제3항)
 - 장비사용 감면규정은 종전과 고가장비에 대하여 100분의 30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장비사용 결과에 따라 종전과 같이 정산을 하되 규칙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함(안 제7조)
 - 종전에 규정하던 「장비사용절차」, 「중기조정」, 「망실훼손경우처리」, 「징수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칙, 훈령, 장비사용계약등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개정조례에서 직접 규정하지 아니함(종전조례 제7조 내지 제9조, 제11조 내지 제14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개정안 제2조 및 제3조)

나) 심사 및 심의결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 6월 11일 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3일 제2차회의에서 박세



회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임병환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1999년 6월 24일 제2차본회의에서 김길정관광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9년 6월 24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1999년 7월 15일 강원도조례 제 2714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강원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도도로보수용장비운영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가 도로보수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차량(이하 “장비”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비운영계획의 수립 등) ①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매년 장비 운영 및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장비의 정비·점검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3조(장비의 사용) ① 장비는 소장이 시행하는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의 유지보수와 긴급복구사업에 의한다.

② 소장은 계약에 의하여 개인 및 기관·단체에 장비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장비를 사용하는 자가 관련공사를 도급발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장은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를 수급시행할 수 있다.

④ 장비의 사용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사용료의 징수) ① 소장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비를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제5

조의 산정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3조제3항의 수급공사비에는 장비사용료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5조(장비사용료 산정기준) ① 장비사용료는 기본사용료(감가상각비, 정비비, 관리비)와 운전 경비(조종사인건비와 숙식비, 현장정비비, 유류대)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 산정은 건설공사표준품셈의 기준과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다.

③ 1일 장비사용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요율을 적용한다. 다만, 장비 운반용 장비는 주행거리에 의한 시간으로 산정한다.

제6조(사용료 감면) ① 소장은 장비기본사용료가 지역실정상 고가인 경우에는 장비가 동증진을 위하여 장비사용 결정시 100분의 30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제외하고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없다.

제7조(사용료의 정산) 소장은 사용료가 기준가동시간에 미달 또는 초과하였거나 반납 또는 불가항력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시간 등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5) 강원도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지원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6월 16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강원도의 관광사업을 활성화하고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자에 대한 융자와 이차지원을 하는 등 관광사업의 경영안정지원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도지사는 시중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관광사업자에게 경영안정자금으로 융자할 재원을 확보함(안 제3조)
 - 관광사업 경영 안정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허가



-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관광편의시설업으로 하며 이 업종중 용자가 제외되는 경우를 명시함(안 제4조 및 제5조)
- 도지사는 관광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적격자를 심사하여 금융기관에 추천하도록 함(안 제6조)
 - 금융기관에 추천한 관광사업자의 융자금에 대하여 그 이자의 일부를 도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도지사의 추천에 따라 융자를 받는자가 융자금을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융자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가 된 경우에는 이자의 보전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8조)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심사 : 1999년 6월 17일 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3일 제2차 회의에서 방재흥 관광문화국장의 제안설명과 임병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1999년 6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김길정 관광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9년 6월 24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1999년 7월 15일 강원도조례 제 2719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관광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광사업자의 경영안정자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자”라 함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규정에 의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2.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이하“경영안정자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관광사업자가 도지사의 추천에 의하여 관광사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융자재원의 확보) ① 도지사는 시중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관광사업자의 경영안정자금 융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원 확보 및 융자에 관하여는 당해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제4조(융자대상) 경영안정자금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관광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
2.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3. 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객이용시설업
4. 법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업
5. 법 제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
6. 법 제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

제5조(융자대상의 제외) 제4조의 관광사업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거래자로 된 관광사업자
2. 금융감독원이 정한 은행감독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관광사업자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거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광사업자
4.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파산 또는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관광사업자
5.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운영자금지원대상인 관광사업자
6. 본 조례에 의한 경영안정자금의 한도액을 융자받아 상환중인 관광사업자
7. 최근 2년 이내에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벌금, 사업정지(과징금), 과태료처분을 받은 관광사업자
8. 휴업·폐업 등으로 융자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사업자

제6조(선정) ① 도지사는 경영안정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적격성을 심사하여 융자할 관광사업자와 금액을 결정한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하여 결정된 관광사업자를 금융기관에 추천하며, 그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심사를 거친후에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재심사를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신청 및 추천절차·선정기준·용자한도액 및 자금의 용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이자의 보전) ① 도지사는 금융기관에 추천한 관광사업자의 용자금에 대하여 그 이자의 일부를 도비로 지원할 수 있다.

- ② 지원할 이자율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이자보전의 중단) ① 제6조제2항의 추천에 의하여 용자금을 받은 관광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자금에 대한 이자보전을 하지 아니한다.

1. 용자금을 목적외로 사용하는 경우
2. 제5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관광사업자의 등록·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된 경우
4. 추천한 관광사업자가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하여 용자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이자보전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과 관광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의 설정)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제5조·제6조제3항 및 제8조제1항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공포일부터 5년으로 한다.

나. 同議案

1) 강원도 명예도민증서수여동의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6월 18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제5회도민의날(99. 7. 8)을 기하여 그간 도정발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외국인·재외동포 및 타시·도 출신인사에 대하여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그동안 협조와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강원도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되새기면서 우리 고장과 맺은 인연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도정발전의 협력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일본인 니시오유지 전 닛토리현 지사 등 11인에게 명예도민증서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함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 6월 18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3일 제2차회의에서 박수준 차치지원국장의 제안설명과 전정기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1999년 6월 24일 제2차본회의에서 황영철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9년 6월 24일 원안대로 가결되어 강원도지사에게 송부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명예도민증서수여동의(안)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명예도민증서수여동의(안)을 강원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강원도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할 것을 동의한다.



□ 명예도민증서 수여대상 : 11명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및 본적	주소
1	니시오 유지 (西尾邑次)	21. 2. 19 (79세)	남	일본국 돗토리현	鳥取縣 鳥取市 大賞寺 42 (前 돗토리현 지사)
2	오 충 열 (吳 忠 烈)	28. 2. 25 (71세)	"	在캐나다 교포(서울)	1503-76 Ave Edmonton. Alberta. Canada
3	문 선 재 (文 善 在)	34. 2. 7 (65세)	"	경북 봉화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19 한양A 3동 402호
4	현 승 종 (玄 勝 鐘)	19. 1. 16 (80세)	"	평남 개천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45-8 위커했A 21동 201호
5	정 범 모 (鄭 範 模)	25. 11. 11 (74세)	"	서 울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174 우성빌라 107-102
6	이 상 주 (李 相 周)	37. 8. 19 (62세)	"	경북 경주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565 우성A 5동 603호
7	오 영 우 (吳 榮 祐)	41. 8. 25 (58세)	"	전북 옥구	서울시 양천구 목동 신양빌라 202호
8	이 재 관 (李 在 寬)	42. 1. 17 (57세)	"	경기 이천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청실A 17동 805호
9	박 세 환 (朴 世 煥)	40. 4. 5 (59세)	"	경북 영풍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구현대A 77동 504호
10	백 낙 조 (白 樂 朝)	34. 3. 23 (65세)	"	서 울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93-1
11	박 영 관 (朴 永 寬)	39. 4. 8 (60세)	"	서 울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65 일진빌라 B동 201호

다. 建議案

1) 침체어망인양전용선박건조지원에관한건의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6월 11일 정인수의원외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우리도 어업여건은 양식어업보다 연안에서의 어선어업이 대종을 이루고 있으나 부득이 발생되고 있는 침체어망으로 말미암아 연안어장을 황폐화시키고 있음은 물론, 어류서식과 산란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지속적인 어업유지 발전과 어업인의 생업안정을 위하여 연안 침체어망 인양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함으로 정부차원에서 조속히 침체 어망인양 전용선박을 건조·운영하도록 건의하려는 것임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 6월 12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19일 제1차회의에서 정인 수의원의 제안설명과 김용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1999년 6월 24일 제2차본회의에서 엄문섭산업경제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건의안은 1999년 6월 24일 해양수산부에 건의되어 1999년 10월 18일 불가로 회시되었다.

[의결전문]

침 체 어 망 인 양 전 용 선 박 건 조 지 원 에 관 한 건 의 안

동해안은 서·남해안과는 달리 해안선이 단조롭고 수심이 깊어 양식어업보다는 계절성 회유어종을 대상으로 한 자망어업이 발달된 지역이므로 침체어망 피해 또는 심각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현재 동해안 어민들은 한·일 어업협정 체결로 외해의 어장이 축소되고 침체어망과 바다오염 등으로 어장환경이 황폐화되어 풍부했던 수산자원이 고갈되어 있어 IMF와 더불어 3중고의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부연한다면 동해안은 풍량이 심하여 각종 해양사고의 위험은 물론, 지역특성상 불가피적인 침체어망 발생율이 높아 많은 양의 어망이 침체되어 어류의 산란과 서식을 방해하여 어류가 모여 살아야 할 연안어장이 날로 황폐화되고 그 피해는 어업부진으로 연결되어 어업인의 생활고가 심각



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본도에서는 '82년부터 '96년까지 자체사업으로 침체어망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고성연안의 명태어장에 한하여 지방비 및 수협비(442,708천원)를 투자하여 29,238톤의 침체어망을 인양한 바 있습니다.

그후 이러한 어려움과 사업의 당위성이 중앙에 건의되어 '97년부터 현재까지 다행히 국비가 지원 되어 전 연안을 대상으로 침체어망 인양사업을 확대 추진해 오고는 있으나 침체어망 인양에 적합한 전용 선박이 없어 투자비에 비해 인양실적이 저조한 전근대적인 작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침체어망 인양사업은 전문선박으로 하여금 과학적인 탐지장비와 인양장비를 갖추어 연중 실시해 나가야 하나 어업인들의 청문에만 의존하여 현재는 비작전 기간중 군부와 협조하여 군함을 이용하거나 학사일정을 고려한 강원전문대 실습선을 이용하여 한시적으로 추진하므로서 작업기간 부족과 인양장비가 적정치 못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재 보도의 연안어장중 약 25,625ha에 달하는 해역에는 10만톤 가량의 침체어망이 산재 되어 있고 지금도 매년 3,000톤 가량의 침체어망이 발생하고 있어 침체어망 인양사업을 위한 전문 선박 건조는 시급한 현안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전용선박 건조와 운영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21C 해양강국을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수산자원 보호와 어선어업 발전을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이를 건조 운영해 주기를 200만 도민을 대표한 강원도의원 전체의 뜻으로 간곡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해양은 인류 마지막 보고라고 합니다.

그러나 1994년 UN해양법 협약으로 연안국들이 해양의 자유 이용시대에서, 앞다투어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는 등 자국만의 어장관리에 치열한, 해양의 분할경쟁시대로 접어들면서 외해어장의 출어가 제약받는 현재 황폐화 되어가는 연안어장을 회복시켜 나가는 것은 정부차원의 당연한 수산정책의 일부이며, 필연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라옵건데 부디 우리 강원도 어업인들의 숙원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침체어망 인양 전용선박 건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2) 무연탄정부수매사업기간연장을 위한건의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6월 16일 이상준의원의외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정부는 그동안 석탄사업 보호와 폐광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95년부터 매년 100만톤 규모의 무연탄을 수매하여 비축하여 왔으나 이는 95년 3월 탄전지역주민 생존권 투쟁에 의한 탄전지역 주민들과의 합의사항이기도 함
- 그런데 정부에서는 매년 100만톤씩 수매하던 것을 올해는 70만톤 규모로 사업비를 줄인 데 이어 내년에도 관련 예산확보에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지금 탄전지역주민들은 매우 불안해 하고 있는 실정임.
- 주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민수용 소비에 한계가 있는 국내생산 무연탄은 일정기간동안 만이라도 정부에서 수매해 주지 않으면 이는 곧 폐광과 지역경기 침체로 이어져 지역의 존립마저 위협받게 될 것임.
- 이러한 폐광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무연탄 정부수매(비축) 사업을 폐광지역지원특별법 적용시한인 2005년까지 연장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함.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 6월 17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19일 제1차회의에서 이상준 의원의 제안설명과 김용기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1999년 6월 24일 제2차본회의에서 엄문섭산업경제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건의안은 1999년 6월 24일 산업자원부, 국회산업자원위원회에 건의되어 1999년 7월 14일 관련부서와 협의검토하겠다고 회시되었다.

[의결전문]

무연탄정부수매사업기간연장을위한 건의문

태백, 도계, 고한, 사북 등 강원남부 탄전지역은 탄광에 대한 지역경제의존도가 매우 높은 곳입니다. '89년 석탄산업합리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이후 수백개에 달하던 탄광들이 대부분 문을 닫



고 이제는 겨우 8개의 탄광(전국 11개)이 남아 있는데, 그동안 지역공동화와 경기침체가 계속되어 이제는 지역의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으로 대체산업유치, 농공단지조성 사업을 추진하였지만 이들 사업마저 지역여건과 맞지 않아 대부분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강원남부 탄전지역에서는 “탄광에서 관광으로”라는 슬로건으로 몇 년전부터 내국인출입 카지노 사업과 고원관광도시 건설에 매달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인 사업착수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이 지역경제활성화의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려면 최소한 4~5년정도는 더 기다려야 하는 만큼, 그때까지만이라도 탄광들이 현재 규모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입니다.

현재 전국의 11개탄광에서 생산하는 무연탄은 대략 연간 430만톤으로, 이중 상당량이 화력발전소에서 소비하고 있고 정부 비축탄과 가정에서 연탄으로 사용하는 민수용으로 일부가 소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연탄사용 가정이 급격히 줄어 민수용 무연탄 소비는 그 규모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 무연탄 수매를 통한 석탄비축을 내년에도 최소한 올해 규모의 수매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 몇 개의 탄광은 폐광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이는 곧 탄광노동자들의 대량실적과 지역경기 침체로 이어질게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따라서 향후 몇 년간은 정부에서 올해 규모의 무연탄 수매(비축)를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입니다.

이는 곧 '95. 3월 탄전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투쟁을 통해 정부로부터 약속받은 3.3합의 사항이기도 합니다.

강원남부 탄전지역은 정부에서 ‘폐광지역특별법’까지 만들어 지역경제 회생을 약속한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탄전지역 주민들과의 약속과 합의를 저버려 이로 인하여 계속된 폐광과 감산으로 탄광노동자와 주민들이 모두 떠나버린다면, 그 후에 고원관광도시가 건설되어도 무슨 소용이 있으며 특별법 제정이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에 강원남부 폐광지역의 특수한 사정과 어려움을 감안하여

- 가. 정부는 무연탄 수매사업을 특별법 적용시한인 2005년까지 연장하여 추진하여 주실것과
- 나. 2000년부터 3년간은 연간 70만톤, 2003년 부터는 50만톤 규모로 수매하여 주실 것을 우리 강원도의회 의원 일동의 뜻을 모아 강력히 건의합니다.

第 11 節 第102回 臨時會

1. 概 況

가. 開 會

제102회 강원도의회임시회는 1999년 7월 5일 이연우의원과 15인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집회요구가 있어 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자로 의장이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12일간의 회기로 1999년 7월 13일 개회하여 7월 24일 폐회되었다.

나. 議事日程

1) 本會議

가) 제1차 본회의 : 1999년 7월 13일(화)

- 제102회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 결산감사위원선임및위촉기간결정의건
- 4분자유발언(신명선, 천희숙, 변완기의원)의건

나) 제2차 본회의 : 1999년 7월 24일(토)

- 본회의초청연설(황영조)
- 강원도수입증지조례증개정조례안
- 강원도사무위임조례증개정조례안
-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도간경계조정예관한도의회의견요청의건



- 강원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 · 운영에관한조례안
-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999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지방채발행계획안
- 진폐환자휴업급여연령별차등감액지급계획철회건의안
- 강원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 태백산도립공원의국립공원지정반대건의안
- 강원도국제관광엑스포의성공적개최를위한항공기지증편및교통관계보강건의안
- 송전탑건설관련환경피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건의안
- 4분자유발언 (원종익, 함종선, 김길정의원) 의견
- 신상발언 (유돈대의원) 의견

2) 議會運營委員會

가) 제1차회의 : 1999년 7월 22일(목)

- 의사일정변경건의
- 9월중임시도의회운영에관한건
- 송전탑피해등환경대책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
- 1999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의회사무처)

3) 內務委員會

가) 제1차회의 : 1999년 7월 14일(수)

- 의사일정결정의건
-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기획관리실)

나) 제2차회의 : 1999년 7월 15일(목)

- 의사일정변경건의
-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도간경계조정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건의

-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공보관실)

다) 제3차회의 : 1999년 7월 16일(금)

- 강원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라) 제4차회의 : 1999년 7월 19일(월)

-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소방본부)

마) 제5차회의 : 1999년 7월 20일(화)

-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자치지원국)

바) 제6차회의 : 1999년 7월 21일(수)

-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공무원교육원, 자치지원국)

사) 제7차회의 : 1999년 7월 22일(목)

-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감사관실)

4) 敎育社會委員會

가) 제1차회의 : 1999년 7월 14일(수)

- 의사일정결정의건
- 강원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999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지방채발행계획안

나) 제2차회의 : 1999년 7월 15일(목)

-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환경복지국)



다) 제3차회의 : 1999년 7월 16일(금)

-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보건환경연구원)

라) 제4차회의 : 1999년 7월 21일(수)

- 의사일정변경의견
-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강원도교육청)

마) 제5차회의 : 1999년 7월 22일(목)

-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여성정책실, 도립강원전문대학)

5) 産業經濟委員會

가) 제1차회의 : 1999년 7월 14일(수)

- 의사일정결정의견
-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산업진흥국)

나) 제2차회의 : 1999년 7월 15일(목)

-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농정산림국)

다) 제3차회의 : 1999년 7월 16일(금)

- 진폐환자휴가급여연령별차등감액지급계획철회건의안

라) 제4차회의 : 1999년 7월 19일(월)

-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농업기술원)

마) 제5차회의 : 1999년 7월 20일(화)

- 의사일정변경의견

바) 제6차회의 : 1999년 7월 21일(수)

-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해양수산출장소)

사) 제7차회의 : 1999년 7월 22일(목)

-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국제협력실)

6) 觀光建設委員會

가) 제1차회의 : 1999년 7월 14일(수)

- 의사일정결정의건
-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관광문화국)

나) 제2차회의 : 1999년 7월 15일(목)

-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건설도시국)

다) 제3차회의 : 1999년 7월 16일(금)

- 강원도부동산중개업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라) 제4차회의 : 1999년 7월 22일(목)

- 태백산도립공원의국립공원지정반대의건의안
- 강원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江原國際觀光엑스포支援特別委員會

가) 제1차회의 : 1999년 7월 15일(목)

- 의사일정결정의건
- 강원국제관광엑스포의성공적개최를위한항공기증편및교통관계보강건의안



다. 議會活動

1) 本會議

가) 4분자유발언 : 제1차본회의

- 신명선의원 : 지난 6월말 기준해서 3~4일동안 강원도문화재 10호 화진포호수에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는데 그 이유는 누적된 공무원들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책임감없고 전문성이 없는데서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관계공무원들을 엄중문책 해야겠다.
- 천희숙의원 : 지난 7월 6일 속초에서 열린 강원여성대회가 성공적인 행사로 끝날 수 있도록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면서 내년도 여성대회는 여성들만의 행사로만 맡기자 말고 거도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예산을 특별히 배려해 주길 당부한다.
- 변완기의원 : 인제군 기린면 진동 상부댐공사와 관련하여 한전의 횡포와 비도덕성을 규탄하고자 한다고 전제하고 한전은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이미 40%이상의 공정을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산업자원부와 약속한 인제군 기린면과 양양군 서면을 잇는 418지방도로 구간 중 약 8km에 해당되는 조침령구간 확포장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도집행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한다.

2) 委員會

가) 현지시찰 : 교육사회위원회

- 1999년 7월 14일 제1차회의에서 의사일정을 결정한 후 소관업무 파악을 위해 7월 19일과 20일 이틀간 고성하수종말처리장과 고성교육청을 각각 현지시찰하였다.

나) 현지시찰 : 산업경제위원회

- 1999년 7월 14일 제1차회의에서 의사일정을 결정한 후 소관업무 파악을 위해 7월 16일 내수면 개발시험장 시찰에 이어 22일과 23일 가축위생시험소중부지소와 진부화훼영농조합법인을 시찰하였다.

다) 현지시찰 : 관광건설위원회

- 1999년 7월 14일 제1차회의에서 의사일정을 결정한 후 소관업무과약을 위해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지방도 418호선(현리~조침령구간)도로현장과 지방도56호선(미시로)도로 확·포장공사현장, 지방도 418호선(조침령~양양)도로현장을 각각 현지시찰하였다.

라) 강원국제관광엑스포지원특별위원회

- 1999. 7. 5부터 7. 9일까지 5일간 엑스포성공개최를 위한 전국시도의회, 시도청 및 교육청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했다.
- 본행사의 성공적개최를 위한 항공기 증편 및 교통관계보강 건의안을 채택 가결하였다.

마) 송전탑건설관련환경피해대책특별위원회

- 1999년 8월 9일 환경피해대책을 보고 받고,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도 가결했다.

라. 議案處理狀況

1) 一般案件

- 이번회기중 상정대상 일반안건은 총12건으로써 제안자별로는 도지사제출이 5건, 의장제의 1건, 위원회제출이 1건, 의원발의가 2건, 도교육감제출이 3건이다. 처리결과를 보면 12건 모두 가결되었으며, 종류별 처리 현황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종류별	상 정 대 상 안 건			의 안 처 리 내 역			
	합 계	전회기 이 월	금회기 접 수	가 결			폐 기 (철회)
				소 계	원 안	수 정	
계	12	1	11	12	10	2	
조 례 안	6		6	6	4	2	
예 산 안							
동 의 안	3	1	2	3	3		
건 의 안	3		3	3	3		
결 의 안							



2. 議決案件

가. 條例案

1) 강원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7월 6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정부의 수입인지 판매인에 대한 「지정제」가 「계약제」로 전환됨에 따라 강원도 수입증지 조례도 「계약제」를 도입하여 규제사항을 완화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도지사가 지정한 판매인이 아니면 수입증지를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종전의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함(안 제7조)
 -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판매폐지등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 종전의 「10일」에서 「2일」로 완화함(안 제11조)
 - 판매인 지정신청서를 계약체결 신청서로 변경하고 「지정의취소」를 「계약의해지」로 바꾸는 등 관련조항의 종전용어를 수정함(안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3조, 제14, 제17조 및 제25조)
 -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개정규정에 의하여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안 부칙 제2항)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 7월 6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6일 제3차회의에서 박수준자치지원국장의 제안설명과 전정기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1999년 7월 24일 제2차본회의에서 황영철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9년 7월 26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1999년 8월 14일 강원도조례 제 2725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수입증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판매인 지정)”을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3항중 “판매인 지정”을 “증지판매에관한 계약체결”로, “판매인으로 지정”을 “그 계약을 체결”로 하고, 동조제4항중 “판매인 지정”을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체결”로 한다.

- ① 증지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이 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와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증지를 일반인에게 판매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최근 1년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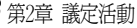
제8조중 “판매인으로 지정”을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체결을”로 한다.

제9조의 제목 “(판매인 지정신청)”을 “(계약의 신청 및 고시)”로 하고, 동조제1항중 “판매인 지정을 받고자”를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로, “지정 신청서에 관계 증빙서류”를 “계약체결 신청서에 구비서류”로 하며, 동조제2항중 “판매인으로 지정 받고자”를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로 하고, 동조제4항중 “판매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판매인 지정서를 교부하고”를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판매인의”로 하여 동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중 “10일”을 각각“2”로 하고, 동조제2항중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서”를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서”로 한다.

제13조의 제목“(지정의 취소)”를 “(계약의 해지)”로 하고, 동조제1항중 “지정을 취소”를 “계약을 해지”로 하며, 동조제2항중 “지정판매인”을 “판매인”으로 한다.

제14조중 “판매인 지정”을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에 체결”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결재란중 “계장”란을 삭제한다.

2)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7월 14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자동차운수업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분리 제·개정되면서 운수사업과 관련한 일부 사무가 국가사무에서 도교유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현재 시·군에 재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무를 현행법령체계에 맞도록 조정하고자 규칙에서 삭제하고 본 조례로 위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관한 면허, 양수, 법인합병, 개선명령 및 과징금부과 징수 등의 사무를 신설함(안 별지 제33호)
 - 자가용자동차의 유상 운송허가, 사용제한 및 금지명령에 관한 사무를 위임함(안 별지 제 34호 및 제37호)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사업의 약관신고, 양수·양도·법인의 합병, 상속신고에 관한 사무를 위임함(안 별지 제36호)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 7월 14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5일 제2차회의에서 박수준자치지원국장의 제안설명과 전정기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1999년 7월 24일 제2차본회의에서 황영철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9년 7월 26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1999년 8월 14일 강원도조례 제 2726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산업진흥 업무분야란 제21호를 삭제하고, 동란 제33호 내지 제38호 내지 제42호로하며, 동란에 제33호 내지 제37호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강원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7월 12일 강원도교육감
- 제안이유 : 교육공무원의 직장협의회의 설립은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과 업무능률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상호간의 성실한 이행을 보장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교육공무원 직장협의체 구성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직장협의회는 기관장이 4급이상 공무원인 기관단위로 설립함을 원칙으로 하고, 2개이상의 직장협의회가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도록 함(안 제2조)
 - 직장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관장은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의 직책 및 업무를 지정하여 공공하도록 함(안 제3조)
 - 직장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7일이상 게시하도록 하고, 직장협의회 설립사실을 통보받은 기관장은 7일 이내에 설립증을 교부하도록 함(안 제4조)

-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는 매년 2년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기타 협의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 협의회 규정에 제정, 가입과 탈퇴, 회원의 제명의결시 진술권여, 대표자 및 협의위원의 선임,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협의회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내지 제9조, 제12조 내지 제14조)
-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합의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기관의 장은 협의회가 사용할 회의장소 및 사무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5조)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 7월 12일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4일 제1차회의에서 김호준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서의승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이 있었으나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

- 직장협의회와 교원노조와의 관계는?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바에 대한 설명을 바람.

- 답변요지

- 직장협의회는 일반직으로 공무원만으로 구성되고 교원노조는 교원만이 가입되며 서로의 마찰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도내에서 5급이하 단위기관이 1개소뿐이므로 도내 실정상 이를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4급 이상으로 함.

- 본회의 심사 : 1999년 7월 24일 제2차본회의에서 안상현교육사회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9년 7월 26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1999년 8월 14일 강원도조례 제2721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기관장이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강원도교육위원회 의사국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
2. 기관장이 5급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 학교의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의 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이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제1항 단서규정 제외)협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다.
- ③ 제1항의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단위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단위를 말하며, 실·국·과 및 담당관등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협의회의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①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의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 법령·훈령 또는 사무분장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으로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직무대리 관련규정에 의하여 명확한 요건을 갖춘 법정대리자와 인사명령에 의하여 직무대리명령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2.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조 제1호의 임용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타자 단순히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예산회계법·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타자 등 단순히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4.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비서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5.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감사·조사·비밀·유선교환업무 등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6. 보안·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공공안전의 목적상 특정인 또는 특정시설에 대한 보안·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7.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자동차운전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8.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② 제1항제5호의 규정에서 비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실·국·과등에서 비밀업무를 관리·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③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당해 기관(제2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책 또는 업무중 협의회에서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협의회의 설립) ①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장소, 설립준비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공무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 20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준비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초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③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설립사실의 통보는 별제 제1호서식에 의하되, 협의회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규정과 협의위원명부, 협의회 회원명부 및 설립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설립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이하 “설립증”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협의회 규정 등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⑤ 협의회는 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 ⑥ 협의회 설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협의회규정)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및 사업
3. 협의위원의 수에 관한 사항
4.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선임방법·임기·후임자의 선임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회원에 관한 사항
6. 회의에 관한 사항
7. 협의회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규율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제6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① 협의회 회원의 자격과 가입절차등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협의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협의회에서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가입(탈퇴)원서를 협의회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협의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회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협의회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입원서를 협의회에 제출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우편발송인 경우에는 협의회에 도달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 ④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전보·사무분장의 변경등으로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당해 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명령의 발령부서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부서는 그 변동사실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⑥ 회원은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탈퇴지원서를 당해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퇴원서가 당해 협의회에 도달하였을 때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7조(회원의 제명의결시 진술권 부여) 회원의 제명은 협의회규정에 따라 행하되, 협의회규정이 정한 의결기관의 의결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며, 제명의결을 위한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제명대상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의결전에 본인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①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당해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중에서 선임하되, 대표자를 포함하여 협의위원은 10인 이내로 한다.

②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입후보자의 자격은 합리적인 요건을 정하여 협의회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직급별·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1. 협의회 가입공무원이 1할이상을 차지하는 직종별·직급별로 가급적 1명이상의 협의위원이 선임되도록 할 것

2. 여성공무원이 1할이상인 경우에는 1명이상의 여성공무원을 협의위원으로 선임할 것

④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임기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 가입자격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협의위원이 교체된 경우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소속공무원중 협의회 가입대상 공무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 및 회원명부등이 사실과 다른경우에는 설립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사실과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제4조 제4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협의회에 시정·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사실과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협의회에 시정·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협의회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 ①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 ②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
- ③ 협의회는 대표자는 설립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일 7일전까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문서로 설립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 ④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관련공무원을 협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 ⑤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⑥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회무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회원 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씩의 간사를 둘 수 있다.
- ⑦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이 협의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와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각각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한 기관장(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 대표자 및 협의위원
 3.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
 4. 기타토의사항

제11조(합의사항의 이행)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 하고,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협의회의 의무) ① 협의회는 협의회규정, 협의위원명부, 회원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② 협의회는 대표자·협의위원 및 협의회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된 날부터 3일이내에 이를 설립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이를 설립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회원으로서의 부적격자가 있거나 협의회규정 등이 법류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에 즉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협의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협의회는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중에 이를 할 수 있다.

제14조(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15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당해 기관의 회의장소·사무장비 등을 사용할 게 할 수 있다.

제16조(세부사항 위임)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7월 12일 강원도교육감
- 제안이유 : 춘천시 석사동 석사3동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새로 초등학교를 신설하고 농촌지역의 이농현상에 따른 향후 학생수 감소지역의 소규모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을 통·폐합 및 분교장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구 분	계	유 치 원	초 등 학 교	중 학 교	고등학교
합 계	95	18	76	1	
신 설	1		1		
통·폐합	55	8	46	1	
분교장개편	26	7	19		
명칭변경	6		6		
주소변경	7	3	4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 7월 12일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4일 제1차 회의에서 김호준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서의승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장시간 질의 및 답변에



이어 7월 21일 제4차회의를 속개 질의 및 답변 후 수정하여 가결되었다.

[질의 및 답변]

- 질의요지

- 분교장 격하에 학부모들의 이견이 있어 홍천군의 동창초교, 좌운초교, 울전초교는 지역적 정서에 맞지 않아 분교장 격하를 반대하면서 현행대로 존치해 줄 것을 건의하는데?
- 본교를 분교로 격하하는 것은 복식수업을 이해하는 것, 교육적 운영비 손실등 지역적 의견을 들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홍천군의 3개학교분교장 격하는 문제가 많고 인제군 기린초등학교 방동분교장도 학부모다수가 반대하므로 폐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는데?

- 답변요지

- 농어촌교육여건에 목적을 두고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써 통폐합을 하지 않을 경우 5억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여 재정적으로 불리하며 학부모와는 합의가 되었음.
- 홍천군 3개 초등학교는 분교장으로 격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제군 기린초등학교 방동분교장은 학생수가 22명으로 기린초등학교와 차량거리로 10분소요되어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면 환경개선으로 폐교학교는 5억원이 지원됨.

[수정안의요지]

- 수정이유 : 학생수 20명이상의 분교는 통·폐합대상이 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향후 학생수 증가가 예상되는 인제기린 초등학교 방동분교장에 대하여는 통폐합에서 제외하고 지역적 정서와 인구증가 및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홍천지역 3개 초등학교 현행대로 존치하기 위함
- 수정주요골자
 - (인제군)의 “기린초등학교 방동분교장 병설유치원”란을 삭제
 - (홍천군)의 “동창초등학교”를 “내촌초등학교 동창분교장”으로 하며를 삭제
 - “좌운초등학교”란을 창촌초등학교운두분교장란 다음으로 하여 “울전초등학교”를 “창촌초등학교 울전분교장”으로 하며 “울전초등학교 방내분교장”란을 “창촌초등학교 울전분교장”란 다음으로 하며 “울전초등학교 방내분교장”을 “창촌초등학교 방내분교장”으로 삭제
- 본회의 심사 : 1999년 7월 24일 제2차본회의에서 안상현교육사회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없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9년 7월 26일 수정안대로 가결,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1999년 8월 14일 강원도조례 제2722호로 공포되었다.

5) 강원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7월 6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64. 2. 29 제정·시행되어온 이 조례의 일부내용중 법령과 불부합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심의회 위원중 당연직 위원을 일부 조정함(안 제2조제2항)
 - 심의회 개정의정족수를 종전의 「재적위원의 3분의 2이상 출석」에서 「과반수의 출석」으로 조정하고 비합리적인 「가부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6조)
 - 기타 위원의 조정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과 현실에 일치하지 않는 용어를 수정함(안 제3조·제10조 및 제12조)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 7월 7일 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22일 제4차 회의에서 박세희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임병환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뒤 수정하여 가결되었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
 - 본조례안의 주요골자 중 “가부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는 내용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시행령의 제8조(의사정족수)의 내용과 상충되는 바 본 개정조례안은 시행령이 개정된 후에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데 집행부의 의견은
 - 본 개정조례안중 안 제6조(의사정족수)의 내용중 “가부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를



삽입하고자 함

- 답변요지

- 개정조례안 제6조(의사정족수)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는 내용은 비민주적인 의사결정방법으로 이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 안 제6조의 말미에 삽입하여야 관계는 없으며 상위법인 시행령이 개정되는 대로 본 조례안을 개정토록 하겠음.

[수정안의 요지]

- 수정이유 : 국토건설종합계획법시행령 제8조(의사정족수)의 내용이 개정이 안되었으므로 시행령의 개정이후에 본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기 위함
- 수정주요골자
 - 「제6조(의사정족수)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제6조(의사정족수)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로 수정의결
- 본회의 심사 : 1999년 7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명 관광건설위원회 간사의 심사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없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9년 7월 26일 수정안대로 가결,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1999년 8월 14일 강원도조례 제2724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강원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의사정족수)중 “한다”를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로 한다.

6) 강원도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7월 6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본 조례는 “부동산중개업법”에 근거하여 86. 12. 19 제정·시행 되어 왔으나 93. 12. 7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면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이 중개 사무소 등록관청이 시장·군수에게 있으므로 도지사가 부과·징수하도록 한 종전의 도조례는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임.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 7월 7일 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6일 제2차회의에서 박세희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임병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1999년 7월 24일 제2차본회의에서 이상명 관광건설위원회 간사의 심사보고 후 질의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9년 7월 26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1999년 8월 14일 강원도조례 제 2723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강원도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강원도조례 제1769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同義案

1)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6년 6월 11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급회에 제출하는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및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1999년도 변경계획으로써 공유재산의 활용증대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필요한 재산을 교환하고 도시계획사업 편입토지를 비롯한 실경작 농경지 등 매각요건이 부합되고 관련인이 매수를 희망하는 도유재산을 각각 매각하고자 하는 것임.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 6월 11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3일 제101회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박수준 자치지원국장의 제안설명과 전정기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 후 계류되어 1999년 7월 15일 제10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1999년 7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황영철내무위원장의 제안설명 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1999년 7월 26일 원안대로 가결되어 강원도지사에게 송부되었다.

2) 도간경계조정에관한도의회의견요청의건

가) 제 안

- 제안이유 및 제안자 : 1999년 7월 2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경기도 포천군에서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과의 경계지역인 관인면 탄동리 지역

에 시행한 ‘느릅실’지구 경지정리 사업으로 인해 그간 경계기준이 되던 하천의 유수가 변경됨에 따라 수계변동에 의한 행정 관할구역의 불일치 요인발생으로 경계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변경된 초과 수계의 중앙을 경계선으로 도간 경계를 재확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군의회 의견수렴등의 절차를 거쳐 건의된 도간 경계조정에 대하여 도의회의 의견을 요청하는 것임.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 7월 7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5일 제2차회의에서 박수준자치지원국장의 제안설명과 전정기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1999년 7월 24일 제2차본회의에서 황영철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의결안은 1999년 7월 26일 원안대로 가결되어 강원도지사에게 송부되었다.

[의결전문]

도간경계조정에 관한도의회의견(안)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에 의거 강원도지사가 아래 지역간의 도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요청에 대하여 도간 경계조정을 찬성한다.

- 도간 경계조정 대상지역
 - 경기도 포천군 관인면 탄동리 25필지 8,554㎡
⇒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편입
 -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오지리, 상노리 13필지 7,951㎡
⇒ 경기도 포천군 관인면 편입



3) 1999년도강원교육비특별회계지방채발행계획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7월 12일 강원도교육감
- 제안이유 : 교원정년조정 (65세→62세)에 따른 99년 8월말 명예퇴직신청공무원의 증가로 추가소요되는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수당부담금의 부족재원을 농협 및 시중은행의 차입금으로 명예퇴직신청교원을 전원 수용함으로써 교직사회의 신진대사 촉진과 교육력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인건비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하여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지방채의 종류 및 규모
 - 지방채의 종류는 차입금(농협 및 시중은행)이며, 규모는 243억 8,400만원으로
 - 자금의 종류는 기채이며
 - 이율은 연리 8.25%로
 - 용자시기 및 상환방법
 - 용자시기는 99년 8월 말이며 상환방법은 2년거치 3년분할상환
 - 상환재원은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원임
 - 99년도 8월말 명예퇴직 추가수용인원
 - 총 350명 (초등 226, 중등 124)
 - 99년 8월 말 소예예산 부족액
 - 소요예산은 총 307억 4,600만원으로 명예퇴직수당 185억 3,900만원과 퇴직수당 부담금 122억 700만원이며
 - 소요예산 부족액은 99년도 인건비 절감액 63억 6,200만원을 제외한 243억 8,400만원임.
 - 지방채 상환계획
 - 99년부터 2001년까지 거치기간에 대한 이자 46억 8,500만원과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원금 243억 8,400만원 및 이자 47억 300만원으로 총 337억 7,200만원에 대하여 연도별 균등상환할 계획으로
 - 상환재원은 교육비특별회계 재원으로 분할상환기간 동안의 고호봉자인 퇴직자의 인건비와 신규채용자의 인건비 차액분으로 충당할 예정임.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 7월 12일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4일 제1차회의에서 김호준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서의승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이 있었으나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

-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부담금을 국가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방비로 부담하여야 할 타당성이 있는지?

- 답변요지

- 현행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의 교부기준이 되는 기준개정 수요액 산정방법은 90년도 이전의 단위사업별 산정교부방법이 아닌 시도별 적용지수를 감안 총액배분하고 있으며 총액배분된 교부금에는 교원인건비를 비롯 모든 지방교육 수요재정이 포함되어 있음.
- 본회의 심사 : 1999년 7월 24일 제2차본회의에서 안상현 교육사회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동의안은 1999년 7월 26일 원안대로 가결되어 강원도지사에게 송부되었다.

[의결전문]

1999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지방채발행동의안

강원도교육감이 1999년도 지방채를 다음과 같이 발행할 것을 지방자치법 제115조 ①항의 규정에 의거 동의한다.

1. 발행기관 : 강원도교육청
2. 지방채의 종류 : 차입금(농협 및 시중은행)
3. 지방채의 규모 : 243억8,400만원



4. 자금의 종류 : 기채
5. 이 율 : 연리 8.25%
6. 융자시기 : 1999년 8월
7. 상환방법 : 2년거치 3년분할 상환
8. 상환재원 :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다. 建議案

1) 진 폐 환 자 휴 업 급 여 연 령 별 차 등 감 액 지 급 계 획 철 회 건 의 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7월 8일 박금용의원의 10인
- 제안이유 : 정부에서 진폐환자들이 휴업급여를 연령별로 차등감액 지급하려는 법개전을 추진하고 있어 이는 진폐환자들의 특수성을 무시한 탁상행정적 발상으로 이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진폐환자 연령별 휴업급여 차등감액지급계획 조속히 철회
 - 진폐환자 요양, 치료예산 대폭 확대하여 의료서비스 개선
 - 일반 산재환자와 진폐환자 동일시하는 산재보상법개정안 결사반대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 7월 9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6일 제3차회의에서 박금용의원의 제안설명과 김용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없이 수정하여 가결되었다.

[수정안의 요지]

- 수정이유 : 문맥의 이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자구수정
- 수정주요골자

· 주문 내용중 13행 「먹고는」을 「먹고 이제와서는」으로, 28행 「이러한」을 「쥐꼬리만한」으로, 「가지고」를 「받아」로 하고, 30,31행 「전쟁터 같은」을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으로 32행 「산업전사인 것입니다」를 「산업전사인바국가유공자 차원에서 대우해야 할 것입니다」로, 37행 「우리 폐광지역」을 「석탄사업합리화정책이후 공동화되어버리 폐광지역을 갖고 있는」으로 자구 수정함.

- 본회의 심사 : 1999년 7월 24일 제2차본회의에서 엄문섭 산업경제 위원장의 심사 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동의안 1999년 7월 26일 노동부에 건의되어 1999년 8월 12일 불가로 회시되었다.

[의결전문]

진 폐환자휴업급여연령별차등감액지급계획철회건의문

노동부에서는 최근 산업재해보상보험 개정작업을 하면서 근로자의 노동가능능력 등을 고려하여 일정연령 이상의 경우에는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지난 4월27일 입법에 고를 하였습니다.

산재환자(진폐환자포함)들에게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매월 평균임금의 70%씩 지급하던 휴업급여를 앞으로는 61세-65세 이상은 10-15% 정도 감액하여 지급하는 쪽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전국진폐재해자협회가 강력히 반발한데 이어 전국의 산재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대부분의 진폐환자들이 정부에 대한 성토와 불만여론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진폐환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한때는 산업역군, 산업전사라며 실컷 부려 먹고 이제와서는 불쌍한 진폐환자들에게 그동안 주던 밥그릇마저 뺏아간다는데 말이 되느냐” “어차피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푸대접을 받느니 차라리 투쟁하다 죽는게 낫다” 며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또한 동 협회에서 “현재 휴업급여를 받고 있는 2천4백여 입원진폐환자의 약73%정도가 60세 이상인 실정인데 이 법이 국회에 상정되면 진폐환자들이 대규모로 상경하여 극단적 투쟁을 할 계획이



다”는 공식입장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진폐환자도 일반 산재환자들과 마찬가지로 산재보상법의 동일기준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고 하지만, 이는 진폐환자들의 특수성을 무시한 탁상행정적 발상으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폐환자는 일반 산재환자들과 달리 합병증이 생겨 입원할 경우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가장의 오랜 노동력 상실로 이들 가정은 대부분 극빈층을 면치 못하고 있어 쥐꼬리만한 휴업급여를 받아 경우 가족들이 생계를 꾸려가는 경우가 상당한 실정인 것입니다.

광산 노동자의 진폐환자들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지하막장에서 목숨걸고 석탄을 캐내어 국가경제를 일으켜 세운 산업역군, 산업전사인 바, 국가유공자 차원에서 대우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을 만들게 된 배경도 바로 이러한 광부들과 진폐환자들의 엄청난 희생과 수고에 대한 보상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원호가족과 상이군경들이 고령이라고해서 연금을 차등지급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 입니다.

바로 이러한 명분과 이유로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이후 공동화 되어 버린 폐광지역을 갖고 있는 강원도 의원들은 정부 당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진폐환자 연령별 휴업급여 차등감액지급계획 조속히 철회

둘째, 진폐환자 요양, 치료예산 대폭 확대하여 의료서비스 개선

셋째, 일산 산재환자와 진폐환자 동일시하는 산재보상법개정안 결사 반대

2) 태백산도립공원의 국립공원 지정 반대건의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7월 8일 박금용의원의외 10인
- 제안이유 : 강원도민의 정서적 구심역할을 하고 21C 국내유일의 고원관광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태백 도립공원을 정부에서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려 하고 있어 이에 반대하기 위함.
- 주요골자
 - 태백산 도립공원 지정 이후 3개지구(소도, 혈동집단시설지구, 백단사 취락지구)를 중심으로

로 관광기반사업과 편익시설 확충사업에 집중투자하여 관광객이 매년 2배정도 증가 추세에 있을 뿐 아니라 석탄박물관, 눈썰매장, 민박촌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확충하여 수익이 보장되는 시점에 있는 태백산 도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려는 의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음.

—태백산 도립공원을 지역정서와 의견을 무시한 채 국립공원 지정을 그대로 강행한다면 생존권 수호차원에서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갈 뿐 아니라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둬

—우리 강원도의회는 정부에 강력히 건의드리오니 작은 정부 실천과 지방화시대에 지역주민 정서를 감안하여 태백산 도립공원으로의 존치를 바라는 바임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 7월 9일 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22일 제4차회의에서 박금용위원의 제안설명과 임병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및 답변이 있었으나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요지

- 본 건의안 채택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답변요지

- 집행부에서도 본 건의안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하며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문제점과 도립공원으로의 존치 필요성 등에 대한 지역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임.
- 본회의 심사 : 1999년 7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명 관광건설위원회 간사의 심사보고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건의안은 1999년 7월 26일 환경부에 건의되어 1999년 8월 9일 민간단체·지역사회주민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임으로 회시되었다.



[의결전문]

태백산도립공원의국립공원지정반대건의안

태백산은 1989년 5월 13일 태백시 소도동, 금천동, 형동일원 17.44km²를 도립공원으로 지정 보존·관리하여 오는 강원도의 관광자원이며, 강원도민의 정신적 구심역할을 하는 모산으로서 태백산을 중심으로 한 탄광지역 개발사업 추진으로 21C국내 유일의 고원관광도시로 탈바꿈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89년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로 인하여 지역경제의 침체와 공동화현상으로 지역주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되자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위한다는 미명아래 95년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으나, 그 이후 지역주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긴축재정과 민간투자자들의 관망적인 자세로 개발이 가시화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태백산 도립공원 지정 이후, 3개지구(소도, 혈동집단시설지구, 백단사 취락지구)를 중심으로 36,128백만원(공공 21,128, 민자 5,000)을 관광기반사업과 편익시설 확충사업에 집중투자하였고, 타 지역과의 차별화된 관광전략 추진 및 비교우위의 관광상품 발굴로 관광객이 매년 2년정도 증가추세에 있을 뿐 아니라, 90년 이후 지방자치역량으로 석탄박물관, 눈썰매장, 민박촌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확충하여 수익이 보장되는 시점에 있는 태백산 도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려는 의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난 60-70년대 국가기간산업의 원동력이었던 석탄산업의 맥을 끊어 놓고, 또다시 고원관광도시로 거듭나고자 나래를 활짝펴려고 하고 있음에도 태백산을 국립공원화하여 관리권을 다시 가져가려는 것은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앙정부 관리권의 지방정부 대폭이양에 반하는 것이 아닐 수 없으며, 납득이 가지않습니다.

태백산 도립공원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서화레져단지, 함백산, 수렵장, 태백관광레져단지 등 탄광지역개발사업이 자연공원법에 의한 제약으로 추진에 어려움과 사유지개발의 제한으로 토지 소유주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축소로 눈축제 등 사계절 축제 등 각종 이벤트행사 추진이 곤란할 뿐아니라 박물관, 눈썰매장, 민박촌 이용객의 입장료, 시설사용료 이중부담으로 이용객의 감소가 우려되는 등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역주민의 불편과 피해가 예상됨에도 태백산 지명도 상승과 안정적인 국비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시설투자비 면제, 국가차원의 자연생태계 관리가 가능하다는 명분으로 태백산 도립

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려는 것은 정부에 대한 도민의 불신과 작은 정부실현에 배치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태백산이 전국적으로 명성이 널리 알려져 많은 관광객이 찾는 국민관광지로 각광받고 있고, 도립공원지정 이후 공공시설 투자는 완료 단계에 있어 더 이상의 부담은 없을 뿐 아니라, 국립공원과의 업무 차이가 별로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로 친 환경보전효과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태백산 도립공원을 지역정서와 의견을 무시한 채, 국립공원지정을 그대로 강행한다면 생존권 수호차원에서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갈 뿐 아니라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강원도의회는 정부에 강력히 건의드리오니 작은정부 실천과 지방화시대에 지역주민정서를 감안하여 태백산 도립공원으로의 존치를 바라는 바입니다.

3) 강원국제관광엑스포의성공적개최를위한항공기증편및교통관계보강건의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7월 15일 강원국제관광엑스포지원특별위원장
- 제안이유 : 99년 9월 11일 ~ 10월 30일 (50일간) 까지 개최되는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는 300만 손님의 편안한 수송과 직결된다 할 것이므로 항공노선의 보강과 철도 및 고속버스의 증편을 관계부처에 강력 건의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엑스포 기간중에
 - 강릉 ↔ 서울 : 현 1일 7회를 9회로
 - 강릉 ↔ 부산 : 현 1일 1회를 2회로
 - 속초 ↔ 서울 : 현 1일 3회를 7회로 증편하여 주고
 - 철도운행과 관련하여
 - 엑스포 기간중 관광특별열차 1일 2회 운행하여 주길 바랍
 - 고속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 속초 ↔ 서울(강남 구의동) : 현 1일 37회에서 50회로 증편하여 주기를 강력 요구함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 7월 15일 강원국제관광엑스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김원기 엑스포 특위원의 제안설명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자구수정 동의대로 가결되었다.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요지

- 엑스포 기간중 차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고속버스를 50회로 증편하는 경우 교통 체증이 될 것으로 염려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답변요지

- 고속버스 증회 운영과 관련해 교통혼잡 부분은 결론적으로 자가용 이용객을 줄이고 대중 교통 수단을 늘린다는 차원에서 보면 증회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봄.
- 본회의 심사 : 1999년 7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전인택 엑스포특위원장의 제안 설명 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건의안은 1999년 7월 26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건의되어 1999년 8월 26일 검토시행하겠다고 회시되었다.

[의결전문]

강원국제관광엑스포의성공적개최를위한항공기증편및교통관계보강건의안

강원도는 “관광을 통한 삶의 새로운 가치창조와 가능성”을 제시하고 “관광산업의 현주소를 체험하는 세계인의 축제를 마련” 하므로써 “21세기를 향한 세계속에서 강원도 위상을 정립” 한다는 데 대회 이념의 목적을 두고 '99. 9. 11 ~ 10. 30(50일간) 까지 '99강원국제관광박람회를 기획하고 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행사준비를 착실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엑스포가 개최되는 속초를 비롯한 동해안 일대는 아름다운 경관과 유서깊은 문화전통을 갖고 있는 지역으로서, 깨끗한 물과, 아름다운 산, 그리고 동해의 푸른바다와 어우러진 절경은 동해안을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들로부터 아낌없는 찬사를 받

을뿐 아니라 자연과 인간이 함께 쉬쉬는 하나뿐인 공간인 것입니다.

강원도가 관광이라는 이벤트를 가지고 국내최초로 개최하는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를 위한 시도 이면서 관광한국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면서, 관광강원의위상제고에도 큰 몫을 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는 세계각국의 여행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제의 장에 주제관과 상징탑을, 만남의 장에는 한국관과 국제관을, 체험의 장에는 기업공통관과 기업독립관을 준비하고 있으며, 함께보고 즐기며 직접 참여하는 놀이마당으로 각종 이벤트 및 행사시설을 준비하고 300만명의 손님을 맞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 개최지인 속초시의 접근 도로망은 철도노선의 부재와 항공노선의 부족 및 잦은 결항, 또는 행사장 주진·출입노선인 7번국도의 혼잡등으로 인하여 지·정체가 심해 이의 해소를 위한 교통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바 강원도의회에서는 중앙 관계부처에 다음과 같이 항공 노선의 보강 및 속초·강릉의 항공기 증편과 고속버스, 열차 등을 아래와 같이 증편하여 줄 것을 정중하게 건의드립니다.

첫째,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엑스포 기간중에

—강릉 ↔ 서울 : 현 1일 7회를 9회로

—강릉 ↔ 부산 : 현 1일 1회를 2회로

—속초 ↔ 서울 : 현 1일 3회를 7회로 증편하여 주시고,

둘째, 철도운행과 관련하여

—엑스포 기간중 관광특별열차 1일 2회 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속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속초 ↔ 서울(강남·구의동) : 현 1일 37회에서 50회로 증편하여 주시기를 강력 요구하는 바입니다.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시설의 확충 못지 않게 중요한 교통문제가 건의 내용과 같이 이루어 진다면 분명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는 우리 모두에게 미래에 대한 가능성과 희망을 주고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산업으로 관광수준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이며 지방의 종합적 발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第 12 節 第103回 臨時會

1. 概 況

가. 開 會

제103회 강원도의회임시회는 지난 8월 10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자로 의장이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3일 간의 회기로 1999년 8월 18일 개회하여 8월 20일 폐회하였다.

나. 議事日程

1) 本會議

가) 제1차 본회의 : 1999년 8월 18일(수)

- 제103회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 4분자유발언(신명선, 김진동의원) 의견
- 도지사인사

나) 제2차 본회의 : 1999년 8월 20일(금)

-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의국민유치확대를위한동해~쓰루가·사카이간 국제관광선 취향건의안
- 신상발언(서종을의원) 의견

- 4분자유발언 (정충수의원) 의견

2) 議會運營委員會

가) 제1차회의 : 1999년 8월 18일(수)

-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 제103회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나) 제2차회의 : 1999년 9월 8일(수)

-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 제1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
- 송전탑건설관련환경피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추가선임에관한건
- 의회운영사임및선임의건
- 제105회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건
- 강원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3) 內務委員會

가) 제1차회의 : 1999년 8월 19일(목)

-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敎育社會委員會

가) 제1차회의 : 1999년 8월 19일(목)

-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5) 産業經濟委員會

가) 제1차회의 : 1999년 8월 19일(목)

-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 수해피해현상및복구계획보고
- 무시들음병(위황병)발생경위및주문배합비료피해상황보고

6) 觀光建設委員會

가) 제1차회의 : 1999년 8월 19일(목)

- 의사일정결정의건
- 건설도시국소관수해복구현황및복구계획에대한보고청취

7) 江原道國際觀光엑스포支援特別委員會

가) 제1차회의 : 1999년 8월 18일(수)

-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의국인유치확대를위한 동해~쓰루가·사카이간국제관광선취항건의안

다. 議會活動

1) 本會議

가) 4분자유발언(신명선, 김진동의원) : 제1차본회의

- 신명선의원 :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과 관련 오랜기간이 걸렸으나 집행부에서는 입법예고도 못한 상황이며 대책 또한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지사에게 정치력을 발휘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강원도청구조조정과인사문제와 관련 과감하지 못했던 1차 구조조정으로 인해 2차 구조조정이 더욱 힘들게 됐다고 지적하고 집행부의 구조조정이 미흡하다고 보며 강원도의

회 운영위원회에서 온의동 지사 자리배치와 관련 의회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은 대 표역할 수행을 강조하였다.

- 김진동의원 :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의 성공을 위해서는 참가국가 수에 못지 않게 많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전제하고 실현가능한 외국인 관광객 확대유치 대안으로써 강원도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돗토리현등을 중심으로 엑스포관광객을 확대 모집하고 현대상선에서 운항하고 있는 금강산 관광선을 활용하여 엑스포기간중 강원 도 동해항과 일본 쓰루가·사카이항간에 국제관광선을 주1회이상 취항할 수 있도록 도 당 국에서 적극 검토 추진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나) 도지사 인사 : 제1차본회의

- 김진선도지사 : 도의회가 회기중이건 비회기중이건, 여아없이 무더위중에도 집행부와 원 활한 교감속에 일찍이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도의회 활동에 대해 각별한 감사의 뜻을 표 하기 위해 자리에 섰다고 전제하고 관광엑스포특위활동위한도의원들 활동과 영월댐대책특 위 도의원들의 활동에 감사한다면서 또한 송전탑건설관련특위활동을 벌이고 있는 의원들 과 수도권규제완화와 관련해서도 비회기중에도 각부처를 방문하면서 활동을 해주고 있는 의장단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달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계속 성원해주길 바란다고 하면서 저희들의 용기를 갖고 더욱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2) 委員會

가) 당면사항보고 : 산업경제위원회

- 1999년 8월 19일 수해피해현황 및 복구계획 및 무시들음병(위황병)발생경위 및 주문배합비 료 피해상황보고를 받았다.

나) 현지사찰 : 교육사회위원회

- 1999년 8월 19일 제1차회의에서 의사일정을 결정한 후 소관업무과약을 위해 19일 당일 강 원도교육과학연구원을 시찰했다.

다) 업무보고 : 관광건설위원회



- 1999년 8월 19일 수해피해현황 및 복구계획을 보고 받았다.
- 1999년 8월 19일 제1차회의에서 의사일정을 결정한 후 소관업무과약을 위해 19일 당일 철원지역 수해우심지구를 시찰했다.

라) 건의안의결 : 강원국제엑스포지원특별위원회

- 1999년 8월 19일 외국인 유치확대를 위한 동해~쓰루가, 사카이간 국제관광선 취항건의문을 채택 가결하였다.

라. 議案處理狀況

1) 一般議案

- 이번회기중 상정대상 일반안건은 총 3건으로 도지사제출이 2건, 의원발의 1건이며 처리결과는 3건 모두 가결되었으며 종류별 처리현황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종류별	상 정 대 상 안 건			의 안 처 리 내 역				
	합 계	전화기 이 월	금회기 접 수	가 결			폐 기 (철 회)	계 류
				소 계	원 안	수 정		
계	3		3	3	2	1		
조 례 안	2		2	2	1	1		
건 의 안	1		1	1	1			

2. 議決案件

가. 條例案

1)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8월 17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정부의 국정개혁방침에 따라 98년도 1단계구조조정에 이어 2단계로 구조조정을 하려는 것으로써 경제·사회등의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작지만 강원도 핵심역량 위주의 조직」을 마련하기 위해 본청의 유사기능을 통합하여 3개과를 축소개편하게 됨에 따라, 실국간 분장사무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일부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자치지원국을 자치행정국으로 산업진흥국을 산업경제국으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5조)
 - 법무담당관의 기능을 감사관에게 통합함에 따라 기획관리실장 소관 사무중법제관련사무를 삭제함(안 제6조제6호 및 제7호)
 - 교통행정과와 도로과를 통합하여 도로교통과로하고 산업경제국장 소관사무중 교통·운수 및 차량에 관한 사항을 건설도시국장에게 이관함(안 제10조 및 제12조)
 - 농업기술원장 소속하에 특화작목개발시험장을 신설하고 평창산채시험장, 홍천옥수수시험장, 철원특작시험장, 강릉근채시험장을 통합하여 팀제로 운영토록 함(안 제17조)
 - 한시기구인 국제대회지원단을 폐지함(안 제5장제1절)
 - 도유립경영사업소를 산림개발연구원으로 흡수하여 도유립 경영과로 폐제함(안 제61조 및 제5장 제10절)
 - 본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기구 및 직명이 변경되는 사항과 도사무 시군위임사항등을 소관 부처와 일치하도록 부칙에 명시하여 관련조례를 일괄 개정함(안 부칙제2조제1항 내지 제18항)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 8월 17일 내부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19일 제1차회의에서 최현영자치지원국장의 제안설명과 최종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친 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
 - 지적과 폐지내용이 조례안에 없는데 그 사유는?
 - 도의회 사무처 담당관등의 명칭변경은 간담회시 제시한 의견내용과 다른데 그 이유는?



- 조례안 제17조제3항에서 「작목별시험포장의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은 따로 정한다」로 되어있는데 「시험포장」을 다른 내용으로 변경할 수 없는지?

- 답변요지

- 조례상으로는 실·국업무에 대한 사항만 다루게 되어있으므로 지적과 폐지는 같은 건설 도시국 내의 주거환경 개선과 통합되기 때문에 조례내용은 사실상 변경되는 것이 없음.
- 본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에서 의회사무처 하 부조직으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정 어려움. 다만, 단순한 명칭 변경은 도의회사무처 직제규칙 변경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함.
- 본사항은 조례내용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없고 기관장 훈령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여짐.

[수정안 요지]

- 수정이유 : 조례로서 명시할 필요성이 없는 내용임으로 수정함.
- 수정주요골자
 - 안제17조(원종장, 기술연구센터, 특화작목시험장등)제3항「특화작목개발시험장을 두며 작목별 시험포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를 「특화작목개발시험장을 둔다」로 수정함
- 본회의 심사 : 1999년 8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황영철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후 이종 근의원의 몇 명의 의원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어 질의 및 토론을 거쳐 표결에 부쳐진 결과 출석의원 40인중 찬성 24표, 반대 13표, 무효 3표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9년 8월 20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1999년 9월 9일 강원도조례 제 2728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자치지원국”을 “자치행정국”으로, “산업진흥국”을 “산업경제국”으로 한다.

제6조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의 제목 “자치지원국”을 “자치행정국”으로 하고, 동조본문중 “자치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며, 동조 제8호 내지 제13호를 각각 제9호 내지 제14호로 하고, 동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민간협력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의 제목 “산업진흥국”을 “산업경제국”으로 하고, 동조본문중 “산업진흥국장”을 “산업경제국장”으로 하며, 동조제7호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실업대책 및 공공근로사업 추진

제12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교통·운수 및 차량에 관한 사항

제17조제3항중 “평창산채시험장, 홍천옥수수시험장, 철원특작시험장, 강릉근채시험장을 둔다.”를 “특화작목개발시험장을 둔다.”로 한다.

제5장1절 및 제10절을 각각 삭제한다.

제61조중 제1호 내지 제9호를 각각 제6호 내지 제14호로 하고, 동조에 제1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유림 경영계획 수립 및 시행
2. 도유림내 산림종합 이용시설 개발 및 조성 운영
3. 도유림내 휴양시설, 수렵시설, 수목원 조성 및 이용관리
4. 산림종합 이용시설 사용료 징수 및 경영수지 분석
5. 기타 도유림의 효율적 경영 및 이용개발에 관한 사항

[별표1]중 평창산채시험장, 홍천옥수수시험장, 철원특작시험장, 강릉근채시험장의 명칭 및 위치란을 삭제하고, 동란에 특화작목개발시험장의 명칭 및 위치를 다음과 같이 삽입한다.



명 칭	위 치
특화작목개발시험장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산천리 727번지

부칙(조례 제2670호, 1999. 1. 16) 중 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강원도의회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중 “자치지원국”을 “자치행정국”으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가목중 “환경보건국”을 “환경복지국”으로 하며, 동조동항제4호중 “산업진흥국”을 “산업경제국”으로 하고, 동조동항 제5호중 “국제대회지원단”을 삭제한다.

② 강원도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제7조·제8조·제11조제1항 및 제2항중 “자치지원국장”을 각각“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별지제1호서식 및 별지제6호서식중 “내무국장”을 각각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강원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산업진흥국장”을 “산업경제국장”으로, “농업기술원시험연구부장”을 농업기술원연구개발부장”으로 한다.

④ 강원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중 “산업진흥국장”을 “산업경제국장”으로 하고, 제8조 제2항중 “주무계장”을 “주무담당”으로 한다.

⑤ 강원도소비자보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중 “산업진흥국장”을 “산업경제국장”으로 하고, 제28조중 “경제진흥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

⑥ 강원도물가대책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중 “산업진흥국장”을 “산업경제국장”으로 하고, 제9조2항중 “경제진흥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

- ⑦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중 “산업진흥국장”을 “산업경제국장”으로 한다.
- ⑧ 강원도근로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산업진흥국장”을 “산업경제국장”으로 한다.
- ⑨ 강원도향토공예관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산업진흥국장”을 “산업경제국장”으로 한다.
- ⑩ 강원도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중 “산업진흥국장”을 “산업경제국장”으로 한다.
- ⑪ 강원도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산업진흥국장”을 “산업경제국장”으로 한다.
- ⑫ 강원도도립공원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자치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산업진흥국장”을 “산업경제국장”으로 한다.
- ⑬ 강원도사면찬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자치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제8조제2항중 “향토문화계장”을 “향토문화 담당”으로 한다.
- ⑭ 강원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자치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 ⑮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중 “자치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 ⑯ 강원도도소매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경제진흥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
- ⑰ 강원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경제진흥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
- ⑱ 강원도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 및 운용기금적립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⑲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업무분야란중 “자치지원”을 “자치행정”으로, “산업진흥”을 “산업경제”로 하고, 산업경제분야란 제22호 내지 제37호 및 관광문화분야란 제23호를 각각 삭제하며, 건설도시분야란에 제131호 내지 제14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1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업의 양도, 양수등의 신고수리 나. 사업의 등록과 사업자의 변경등록 다. 사업의 개선명령 라. 사업의 허가취소 또는 정지명령 마.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 및 징수 바.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신청문	자동차관리법 제55조 동법 제53조 동법 제56조 동법 제66조 동법 제74조 동법 제75조
132	자동차에 대한 개선명령	동법 제24조
133	자동차의 강제처리	동법 제26조
134	자동차의 점검, 정비명령 및 사용의 정지명령	동법 제37조
135	정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의 수리와 해임명령	동법 제38조
136	차고시설확보 신고의 수리	동법 제39조
137	업무의 보고 및 검사	동법 제72조
138	임시운행 허가	동법 제27조
139	자동차등록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관리 및 멸실의 경우의 조치와 자동차등록원부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열람신청의 처리 나. 자동차의 신규등록 및 자동차등록증 교부·재교부 및 등록의 거부 다.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및 부착, 봉인 라. 자동차등록번호표의 영치 마. 자동차변경등록의 처리 바. 자동차이전등록의 처리 사. 자동차말소등록의 처리와 말소사실 증명서의 교부 아. 자동차등록사항의 확인 및 등록사항 확인표의 교부 자. 자동차등록에 관한 이의신청의 처리 차. 자동차 구조·장치의 변경승인 카. 과태료의 부과처분 및 징수	자동차관리법 제7조 동법 제8조, 제9조 동법 제10조 동법 제13조제6항 동법 제11조 동법 제12조 동법 제13조 동법 제17조 동법 제28조 동법 제34조 동법 제84조 동법 제73조
140	무등록 영업행위 단속	
141	이륜자동차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이륜소형자동차의 사용신고수리 및 차량번호 지정 나. 이륜소형자동차의 신고사항 변경수리 다. 이륜소형자동차의 번호표 봉인 라. 이륜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승인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동법 제48조제2항 동법 제49조제2항 동법 제5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7조의 3
142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나. 공사시행의 인가 및 변경인가, 인가신청기간의 연장, 공사완료에 따른 시설확인 다. 사용개시 기간의 지정 및 개시 신고 라. 사용약관의 신고 및 변경 신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7조 동법 제39조 동법 제40조 동법 제41조

	마. 시설사용료의 인가 및 변경인가	동법 제42조
	바. 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중지명령 및 터미널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정명령	동법 제43조
	사. 중대한 사고시의 조치 및 보고	동법 제44조
	아. 터미널의 위치, 규모 및 구조설비의 변경인가, 신고수리	동법 제45조
	자. 터미널의 사업 개선명령	동법 제46조
	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터미널사용의 명령	동법 제47조
	카. 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변신고	동법 제50조
	타. 사업의 상속신고 수리	
	파. 사업의 휴·폐지의 허가	동법 제50조
	하. 사업의 면허취소 및 정지명령	동법 제76조
	가. 사업자에 대한 청문	동법 제77조
	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동법 제77조
	다.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와 이의신청 접수 및 통보	동법 제85조
143	자가용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여객자동차에 한함)	
	가. 유상운송의 허가	동법 제73조
	나. 사용의 제한 및 금지명령	동법 제74조
144	택시운전자의 자격취소 및 효력정지의 명령	동법 제78조
145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관한 다음에 권한 가. 주선사업의 운송주선 약관 신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4조
	나. 사업의 양도·양수, 법인의 합병, 사업상속의 신고	동법 제24조
146	자가용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화물자동차에 한함) 가. 사용 및 사용폐지의 신고	동법 제38조
	나. 유상운송의 허가	동법 제39조
	다. 사용의 제한 및 금지명령	동법 제40조

[별표 2]의 업무분야란중 “자치지원”을 “자치행정”으로 한다.

2) 강원도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8월 17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정부의 4대국정개혁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조직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98년도 1단계에 이어 2단계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려는 것으로서 연도별·정원관리 기관별로 감축되는 정원과 그에 따른 정원에 관한 적용례와 초과현원에 대하여 유예기간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강원도지방공무원 총정원 2,923인중 152인을 감축한 2,771인으로 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1,592인중 151인을 감축한 1,441인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62인중 1인을 감축한 61인으로 함(안 제2조)
- '99년도에 적용하는 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를 정함(안 부칙제2조(표1))
 - 감축정원 : 73인(집행기관 72인, 의회사무기구 1인)
- 2000년도에 적용하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정함(안 부칙제2조(표2))
 - 감축정원 : 44인(집행기관 44인)
- 2001년까지 감축되는 정원 152인의 초과현원에 대한 유예기간을 정함(안 부칙제2조제2항)
 - 1999년 감축정원 : 73인 → 2000년 12월 31일까지
 - 2000년 감축정원 : 44인 → 2001년 7월 31일까지
 - 2001년 감축정원 : 35인 → 2002년 7월 31일까지
- [표1], [표2]에 대한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매년 7월 31일까지 정함(안 부칙 제3조)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 8월 17일 내부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19일 제1차회의에서 최현영 자치지원국장의 제안설명과 최종추천위원회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1999년 8월 19일 제2차본회의에서 황영철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9년 8월 20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1999년 9월 9일 강원도조례 제 2727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2,923”을 “2,771”로 하고, 동조제1호중 “1,592”를 “1,441”로 하며, 동조제4호중 “62”를 “61”로 한다.

강원도조례 제2688호(1999. 4. 17)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적용례) ① 강원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31일까지는 [표1]을, 2001년 7월 31일까지는 [표2]를 각각 적용한다.

[표1]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표

구 분	정 원
정원의 총수	2,850
1. 집행기관의 정원	1,520
2. 소방본부·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1,208
3. 독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61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61

[표2]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표

구 분	정 원
정원의 총수	2,806
1. 집행기관의 정원	1,476
2. 소방본부·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1,208
3. 독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61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61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표1]규정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73(집행기관의 정원 72인,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표2]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4인(집행기관의 정원 44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까지, 제2조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5인(집행기관의 정원 35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직급별정원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 규정 및 부칙 제2조 [표2]의 규정에 대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매년 7월 31일까지 정한다.

나. 建議案

1)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외국인유치확대를위한동해~쓰루가·사카이간국제관광선취항건의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8월 16일 김진동의원의외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전면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의 경영은 지방의 논리에 따라 지방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시행되어야 하는 지방의 자주적 책임을 강하게 요청받고 있으며
 - 이에 따라 올해 강원도에서는 지난 1월 99동계아시아 경기대회개최에 이어 이번에 99강원 국제관광엑스포를 개최하여 21세기 관광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계획으로서
 - 국제관광엑스포의 실질적인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객의 확대유치가 관건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해 현재 운항중인 금강산 관광선을 활용하여 강원도동해항과 일본 쓰루가·사카이항간에 국제관광선을 취항하도록 할 것을 관계 당국에 건의하려는 것임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 8월 16일 강원국제관광엑스포지원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16일 제1차 회의에서 김진동의원의 제안설명과 신동철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
 - 본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 답변요지

- 관광엑스포의 실질적인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객의 확대유치가 관건이며 이를 위해 현재 운항중인 금강산 관광선을 활용하여 동해항과 일본 쓰루가항간에 국제 관광선을 취항하도록 건의안을 채택하신것에 대하여 의견을 같이하고 있으며 본사안에 대하여 당해 업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조기취항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 본회의 심사 : 1999년 8월 19일 제2차본회의에서 박용길 강원국제관광엑스포지원특별위원회 간사의 심사보고후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건의안은 1999년 8월 20일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현대아산, 현대상선에 건 의되어 1999년 8월 30일 불가로 회시되었다.

[의결전문]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외국인유치확대를위한동해~쓰루가·사키이간국제관광선취항건의안

우리들은 고도산업사회로 대별되는 20세기를 마감하고 보다 혁신적인 사고를 요소로하는 지식·정보화사회로서 대망의 21세기를 창출하기 위한 길목에서 조국과 향토의 발전을 일관되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강원도는 조선시대의 문헌인 택리지에서 고증하기를, 풍광이 수려하기로 나라안에서 으뜸이라고 하였듯이, 경관이 빼어나고 인심이 순후하여 수많은 선현과 시인묵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였으며, 근년에 이르러서는 천혜의 자연과 그 속에 서려있는 전통문화의 향취로 인해, 연간 4천만명의 관광객이 찾아 드는 전 국민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지난해 11월부터, 민족분단 반세기만에 동해항을 기점으로 금강산 뱃길이 열려, 남과 북을 연결하는 민족통합 기반조성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고, 금년 1월에는 '99동계아시아 경기대회를 개최하여 용평 설원에서 전 아시아인의 영원한 우정과 화합의 장을 펼쳤으며, 이러한 기틀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강원도의 600년 역사상 최초의 지구촌 축제로서,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를 개최하여 세계적 관광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는 강원도의 빼어난 자연과 인문자원을 기반으로 하여, “인간과 자



연, 미래의 삶”을 주제로 오는 9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50일간, 강원도 속초시 청초호 수변에서 국내외 관광객 300만명을 유치하여, 맑고 깨끗한 동해바다와 수려하고 장엄한 설악산을 배경으로, 쪽빛 드높은 가을하늘을 함께 호흡하며, “만남과 대화, 그리고 새로운 발견”의 향연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강원도는 명실공히 한국관광의 1번지로서 그간, 전 도민이 세계속에 한국의 얼을 심고 가꾼다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이번 관광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온갖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이제, 그 마무리 준비에 마지막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외국인 참가의 경우, 당초목표 50개국, 70개 지방정부를 훨씬 상회하는 60개국, 78개 지방정부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국제관광엑스포의 보다 완벽한 성공을 위해서는 참가 국가수에 못지않게 더욱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에, 200만 도민을 대표한 강원도의회는 실현가능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확대 방안으로서, 현재, 강원도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돗토리현 등을 중심으로 엑스포 관광객을 확대모집하고, 기존의 현대상선 주식회사에서 운항하고 있는 금강산 관광선을 활용하여,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 기간 중, 강원도 동해항과 일본 쓰루가·사카이항간에 국제관광선을 주1항차 이상 취항할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서 적극검토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하오니 기필코, 성취될 수 있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건의가 성사된다면, 이는 일본에서 출항하여 중간기착지 없어 강원도를 직접 오갈수 있어, 보다 차별화된 외국인 입·출국수속으로 새로운 관광외화 소득을 확대 창출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강원도는 금번 관광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한 외국인 관광객 확대유치의 확실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고, 장차, 금강산과 설악산을 연계한 국제관광 루트의 개발에도 획기적인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번 강원국제관광엑스포가 오는 9월 11일부터 개막되는 만큼,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보다 조속한 추진을 거듭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第 13 節 第104回 臨時會

1. 概 況

가. 開 會

제104회 강원도의회임시회는 1999년9월1일 김길정의원회15인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자로 의장의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10일간의 회기로 1999년9월9일 개최하여 9월18일 폐회되었다.

나. 議事日程

1) 本會議

가) 제1차본회의 : 1999년 9월 9일(목)

- 제104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견
- 의회운영위원회사임및선임의견
- 송전탑건설관련환경피해대책특별위원회중간보고
- 의사일정변경의견
- 강원국제관광엑스포특별위원회중간보고의견
- 4분자유발언(엄민현의원)의견

나) 제2차 본회의 : 1999년 9월 18일(토)

- 강원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
- 폐광카지노입장료징수와관련한건의안



- KIST강릉분원설치를위한건의안
- 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조례안
- 송전탑건설과관련 환경피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추가선임에관한건
- 4분자유발언(이종근의원)의견

2) 內務委員會

가) 제1차회의 : 1999년 9월 10일(금)

- 의사일정결정의견

나) 제2차회의 : 1999년 9월 13일(월)

- 강원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

3) 敎育社會委員會

가) 제1차회의 : 1999년9월 10일(금)

- 의사일정결정의견

나) 제2차회의 : 1999년 9월 17일(목)

- 건설폐기물처리장적정통보철회에관한청원의견

4) 産業經濟委員會

가) 제1차회의 : 1999년 9월 10일(금)

- 의사일정결정의견
- 감사사임및선임의견

나) 제2차회의 : 1999년 9월15일(수)

- 의사일정변경의견
- 폐광카지노입장료징수와관련한건의안
- KIST강릉분원설치를위한건의안

6) 觀光建設委員會

가) 제1차회의 : 1999년9월10일(금)

- 의사일정결정의견

나) 제2차회의 : 1999년 9월17일(목)

- 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다. 議會活動

1) 本會議

가) 4분자유발언 : 제1차 본회의

- 엄문현의원 : 지난 1997년9월 댐 예정지 고시이후 현재까지 영월동강댐 건설 논란이 장기화 되면서 지역주민들의 각종 불편과 고충은 물론 영농전반에 걸친 피해가 날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일을 정부에서 굳이 댐건설을 할 필요가 없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견해와 도에서 수몰예정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부채상환 기간 유예, 저리자금상환등 영농지원사업을 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다행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정부는 댐건설 백지화 되었을 때 수몰민을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피해 주민의 대책과 보상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과 영월댐 건설여부 조기결정을 촉구 함.

2) 委員會



가) 현지시찰 : 내부위원회

- 1999년9월10일 제1차회의에서 의사일정을 결정함 후 10일 당일과 11일 99강원도 국제관광 박람회 방문에 이어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강릉시 왕산면 매입부지 현장과 정선군 임계면 감자원종장이전예정부지, 태백시 창죽동 매입, 매각부지 현지 답사 및 영월군 북면 매입부지 현장을 각각 시찰하였다.

나) 현지시찰 : 교육사회위원회

- 1999년9월10일 제1차회의에서 의사일정을 결정한 후 10일과 11일 99강원도국제관광박람회 방문에이어 9월13일 횡성하수종말처리장 현지 시찰을 하였으며 15일과 16일 동해교육청과 홍천교육청을 각각 시찰했다.

다) 현지시찰 : 산업경제위원회

- 1999년9월10일 제1차회의에서 의사일정을 결정한 후 10일과 11일 99강원도국제관광박람회 방문에이어 13일과 14일 도립화목원과 내수면개발시험장 시찰이 있었으며 16일 17일에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와 평창 제3회 강원감자큰잔치현장을 각각 시찰하였다.

라) 현지시찰 : 관광건설위원회

- 1999년9월10일 제1차회의에서 의사일정을 결정한 후 10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99강원도국제관광박람회시찰에 이어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인제, 양구, 화천의 수해우심지구(개량복구대상도로와하천)를 각각 시찰하였다.

라. 議案處理狀況

1) 一般議案

- 이번 회기중 상정대상 일반안건은 총11건으로, 제안자별로는 도지사제출이 3건, 교육감제출 1건, 의원발의 3건, 의장제의 3, 위원회 제출이 1건이다. 처리결과를 보면 11건 모두 가결되었으며 종류별 처리현황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종류별	상 정 대 상 안 건			의 안 처 리 내 역				
	합 계	전회기 이 월	금회기 접 수	가 결			폐 기 (철 회)	계 류
				소 계	원 안	수 정		
계	11		11	11	10	1		
조 례 안	3		3	3	2	1		
예 산 안	2		2	2	2			
동 의 안	4		4	4	4			
건 의 안	2		2	2	2			

2. 議決案件

가. 條例案

1) 강원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9월4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강원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도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사무와 절차·방법등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지방자치법 제59조제3항에 근거하여 조례로 정하려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및 위탁대상 사무의 기준을 정함. (안 제1조내지제4조)
 - 수탁기관의 선정방법과 협약체결 방법을 정함. (안 제5조내지제7조)
 - 위탁사무의 처리방법과 그에 대한 도지사의 지원근거, 지도·감독, 감사권과 이의신청 절차 및 재위탁 금지조항을 둠. (안 제8조내지제15조)
 - 기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조항을 둠. (안 제16조)
 -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조례로 이미 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해 위탁된 것으로 보도



록 경과규정을 둠. (안 부칙제2항)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의의회 심사 : 1999년9월7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13일 제2차 회의에서 최현영자치 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최종추천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및 답변이 있는 뒤 수정하여 가결되었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

- 안 제6조제1항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제2항의 내용중 도의회 의원을 삽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 답변요지

- 행정자치부 표준안으로 작성되었지만 내용으로 보아 수정토록 하겠음.

[수정안의 요지]

- 수정이유 : 조례안의 내용을 구체화하며 내실있는 업무추진을 기하기 위함

- 수정주요골자

- 안 제6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제①항 「수탁기관의 선정에 공공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를 「수탁기관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사유발생시마다 개별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를 둔다」로 수정하며 제②항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을 도 관계공무원과 당해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도의회 의원과 도 관계공무원 및 당해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수정함.
- 본회의심사 : 1999년 9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황영철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후 질의 및 토론 없이 수장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9년 9월 20일 수정안대로 가결된 후 강원도지사에게 송부되어 1999년 10월

9일 강원도조례 제2729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도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도지사의 사무중 일부를 도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도지사의 사무를 위탁받은 도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도지사는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 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민간위탁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의 선정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수탁기관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사유발생시마다 개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도의회 위원과 관계공무원 및 당해 분야의 전문가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도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강원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7조(협약제결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사무위탁사실을 공고 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사무의 처리)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서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도지

시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처리의 지원)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 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휘·감독)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이나 지시를 시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절차·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이의신청) ①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도지사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변명서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재위탁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도지사의 소관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이미 개별조례에서 민간에 위탁관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해 위탁된 것으로 본다.

[별표] 민간위탁사무(제4조제3항관련)

소 관	위 탁 사 무 명
환경정책과	강원도자연학습원 관리·운영
체육 청소년과	강원도세계잼버리수련장 관리·운영
총 무 과	강원도설악수련원 관리·운영
	업무용 차량의 관리·운영(도지사가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차량에 한함)

2) 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9월4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문화재보호법령이 개정(법 99.1.29, 시행령99.6.30)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이 수립 등 법 체계를 일원화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문화재 지정·해제등 심도있게 심의를 위하여 현재 20명인 문화재위원을 30명으로 증원함. (안 제4조)
 - 문화재의 지정·보수등과 관련하여 안전 검토·심의 또는 현지조사시에 실비조상을 할 수 있도록 수당지급제도를 개선함. (안 제12조)

- 개정문화재 보호법 및 시행령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
 -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전부 사망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하도록 함. (안 제16조)
 -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8조의2)
 - 문화재의 관리위탁 및 기술지도, 문화재의 자치단체 우선매입, 보조금 반환 규정등 규제 사항을 폐지함. (안 제21조·23조 및 제25조)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 9월8일 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7일 제2차회의에서 방재흥 관광문화국장의 제안설명과 신동철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1999년9월18일 제2차본회의에서 이상명관광건설위원회 간사의 심사보고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9년 9월 20일 강원도지사에게 1999년 10월 9일 강원도조례 제2730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여 문화재” 를 “문화재” 로 한다.

제4조제1항중 “20인 이내” 를 “30인 이내” 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문화재관리계장” 을 “문화재관리담당” 으로 한다.

제12조중 “전문위원이” 를 “전문위원 또는 관계전문가가” 로, “공무로 출장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원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를 “위원장의 지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 또는 안건을 심의·검토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로 하며,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회의참석 수당과 여비는 강원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16조제3항중 “인정이”를 “인정이 해제되며”로, “그 지정이 각각 해제된 것으로 본다”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무형문화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로 한다.

제17조제3항중 “3월 이내”를 “6월 이내”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이 수립)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와의 협의를 거쳐 도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재 보수·정비에 관한 사항
2. 문화재 주변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3. 기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관할구역내의 도지정문화재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1조·제32조 및 제2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중 제1호를 삭제한다.

제30조제2항중 “법 제14조, 법 제15조, 법 제20조, 법 제22조, 법 제25조 제1항제1호, 법 제27조 및 제20조, 제23조, 제26조”를 “법 제20조·법 제 25조제1항제1호 및 법 제27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建議案

1) 폐광카지노입장료징수와관련한건의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8월31일 성희직의원회 10인
- 제안이유 : 현행특별소비세법에는 내국인의 카지노 입장시 입장세로 92,950원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폐광카지노의 효율적인 운영과 객장 분위기 유지를 위해 적정수준의 입장료를 받되(일반5천원, 단체3천원) 이 수입은 전액 폐광지역 교육사업 및 소외계층 복지예산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을 도의회위원들의 뜻을 모아 건의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내국인 카지노 입장시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조항은 현실여건에 맞지 않으므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함.
 - 폐광카지노 입장료는 5천원 수준(단체입장시 3천원)이 적당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 조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 폐광카지노 입장료 수입은 강원남부폐광지역의 ‘교육·복지기금’으로 지원 되어야 함.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9월2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15일 제2차회의에서 성희직위원의 제안설명과 김용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심사 : 1999년9월18일 제2차본회의에서 엄문섭산업경제위원장의 심사보고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건의안은 1999년 9월 18일 원안가결되어 1999년 9월 20일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 국민회의, 한나라당에 이송되어 업무에 참고토록하였다.

[의결전문]

폐 광 카 지 노 입 장 료 징 수 와 관 련 한 건 의 문

강원남부 탄전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투쟁에 의해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이 제정 된지도 벌써



써 여러 해가 됩니다.

이러한 특별법의 핵심사업인 폐광카지노 사업은 2000년10월경 스몰카지노 개장에 이어 2002년 말 이전에 본 카지노장이 개장하게 됩니다.

사실상 국내 최초의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카지노인 만큼 이로 인한 각종범죄와 사회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한 관계당국의 철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강원남부 폐광지역 도 의원들 모두는 카지노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인 입장료 징수 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폐광지역에 입장료를 받지 않으면 저소득층, 노인들이 시간 때우기 식으로 카지노장에 몰려들어 객장을 배회하게 되어 카지노 이용객들에게 상당한 불편과 불쾌감을 주게 된다.” 그리고 “폐광카지노에서는 1인당5천원(단체 입장시 3천원)수준의 입장료를 받는 것이 걱정할 것 같다.” 는 의견을 내 놓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폐광지역 주민들은 “폐광지역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카지노 입장료 수입을 전액 교육환경개선사업과 노인·장애인복지를 위해 지원해야 한다. 카지노 입장료를 국세로 가져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행법에는 폐광카지노 입장료 수입을 폐광지역 주민들의 희망과 요구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내국인의 카지노 출입시 1인당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입장세로 65,000원,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가 19,500원,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8,450원 이렇게 모두 92,950원을 입장세로 내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국인들에게 카지노 출입 시 입장세를 받는 문제는, 외국인전용카지노의 경우 내국인 출입을 수십년 동안 법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으로 관련법은 하루속히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전국 13개소의 외국인전용카지노에서도 1인당 3,710원씩 받아오던 입장세(특별소비세)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부담을 준다고 하여 '98.1월부터 이를 모두 폐지 하였습니다.

외국인 전용카지노에는 폐지한 입장세를 폐광카지노 입장객들에게만 받겠다는 것은 법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 할 것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전용카지노가 있는 제주도에서도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입장세’는 받지 않고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 카지노 입장시 관광진흥 부과금으로 1인당 1만원의 입장료를 받아 제주도의 지방재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폐광지역 입장료수입을 특별소비세란 명목으로 국세로 가져간다는 것은 폐광지역특별법 제정취지나 지역주민 정서와도 상반된 것으로 전혀 명분히 없다 할 것입니다.

더욱이 폐광카지노는 당초 특별법시행령으로 카지노 이익금의 75%를 지역개발기금으로 내놓도록 되어 있던 것을 이익금의 10%만 내도록 최근 시행령을 개정함 바 있습니다.

이는 폐광카지노의 공익성을 상당부분 훼손하였을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 셈입니다.

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라도 카지노 입장료는 반드시 폐광지역 몫으로 전액 지원되어야 합니다.

태백, 정선, 영월, 삼척 등 강원남부 폐광지역은 석탄산업 사양화와 지역경기 침체로 우리 나라에서도 가장 낙후되고 어려운 지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폐광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 중엔 폐광실직자, 진폐환자, 생활능력이 없는 노인계층 등 저소득, 극빈층이 상당한 실정입니다.

폐광지역의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카지노 입장료 수입 전액을 폐광지역 주민들의 보다 나은 생활과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을 위해 가칭 ‘폐광지역 교육·복지기금’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폐광지역특별법 제정취지와 목적에도 부합될 뿐 아니라 카지노사업으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와 부작용을 줄이는 데도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폐광지역 주민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우리 폐광지역 도 의원일동은 이와 같은 폐광지역 주민들의 바람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정부당국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내국인의 카지노 이용시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조항은 현실여건에 맞지 않으므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2. 폐광카지노 입장료는 3천원~5천원 수준이 적당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합니다.
3. 폐광카지노 입장료 수입은 전액 강원남부 폐광지역의 ‘교육·복지기금’으로 지원되어야 합니다.

2) KIST 강릉분원설치를 위한건의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9월13일 정인수의원의 9인
- 제안이유 : 강릉시 대전동·사천면 일대에 조성되는 「강릉과학지방산업단지」의 성공을 위하여는 첨단산업을선도할 고도의 국책연구기관 존재가 필수적이라는 판단과 KIST의 장기발전계획이 일치함에 따라 KIST강릉분원설치를 적극 추진하여 이에 대한 타당성 기초조사까지 완료했음에도 분원설치 성사가 불투명한 실정이어서 KIST분원설치가 무산될 경우 과학산업단지조성자체가 무의미하다는 판단아래 외국 저명기관의 긍정적 평가에 의해 타당성과 경쟁력이 공인된 사업추진을 정부측에 건의하여 이를 관찰하기 위함.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9월14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15일 제2차회의에서 정인수 의원의 제안설명과 김용기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1999년9월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염문섭산업경제위원장의 심사보고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건의안 1999년 9월 18일 원안가결되어 1999년 9월 20일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에 건의하여 처리되었다.

[의결전문]

KIST강릉분원설치를위한건의문

정부에서는 ‘전국토기술지대망 구축’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동·서 테크노밸리 완성을 위한 ‘강릉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을 지난 ‘98년 대통령선거공약으로 발표한바 있으나 이를 지방과학산업단지로 지정고시(‘93.12.6/건설교통부)함으로써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 재정에 커다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함은 물론 10년가까이 담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등 부진을 면치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릉을 비롯한 강원지역 주민들은 단지내에서 KIST분원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이 설립됨으로써 과학산업단지의 활성화를 통한 국가발전과 지역개발에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100억원 상당의 연구소 부지를 자치단체(강릉시)가 무상제공 하면서까지 사업추진을 기다려 왔으나 출연(연) 구조조정과 맞물려 분원설치가 어렵다는 정부의 발표(‘99.5.3)에 커다란 실망과 분노를 느

끼기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경제난으로 인한 국가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출연연구기관의 신규설치가 정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는 보다 거시적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역설적으로 지금이야말로 미래를 위한 준비와 경쟁력 있는 분야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릉지역은 공항·항만·철도·고속도로 등 접근성, 강릉수력발전소의 배수를 이용한 풍부한 농업용수, 그리고 인근의 강릉·양양수력, 영동화력 발전소에서 공급되는 충분한 전력과 무엇보다도 전국제일의 청정지역으로써 오염되지 않은 자연환경 등 첨단과학산업단지로서의 입지여건을 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객관적 자료요구에 의하여 실시된 ‘KIST강릉 분원설치타당성기초조사용역 보고서(미국 SRI-C)’에서도 밝혔듯이 “강릉 과학산업단지내에 국책연구기관의 존재는 필수적이며 KIST강릉 분원은 이지역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 특화자원 연구를 통한 성공은 물론 조기에 세계적인 연구소로 성장할 수 있다”는 긍정적 결론이 도출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강원도의회 의원들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강릉은 21세기 신동해권 국제교류의 중심적 위치에 있을뿐 아니라 통일을 대비한 민·군점용 안보기술개발의 전초기지로써 과학산업단지 정착방안은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합니다.
- ② 취약한 도내 과학기술기반 확충과 과학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는 국책연구기관의 존재가 필수적이며, KIST분원은 이를 충족할 유일한 현실적 대안입니다.
- ③ 강릉과학산업단지내 KIST분원에서 중점 수행하게 될 인체건강관련산업분야는 향후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부가가치 특화산업으로써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것입니다.
- ④ KIST강릉분원 설치문제는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현안이며, 강원도에서는 연구소 설치 및 향후 연구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원컨데 국가 장래를 생각하는 총정에서 KIST강릉분원 설치에 관한 입장을 200만 도민의 이름으로 거듭 정부의 결단을 강력 촉구합니다.

다. 規則案



1) 강원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9월8일 의회운영위원장
- 제안이유 : 현재 본도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발언제도는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보충발언, 4분자유발언, 방청인소개발언, 본회의초청연설등이 있으나 회의규칙상에 발언종류별로 근거규정이 불명확하고 일부내용은 현실과 맞지 않아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의회 회의록의 기재사항중 서면질문과 답변에 대한 규정이 불명하여 효율적 회의록 작성이 지남함으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의사일정발언과 신상발언에 대한 근거와 발언허가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33조)
 - 방청인 소개발언을 해당 지역구 의원의 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의장이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8조의3)
 - 회의록에 게재하는 서면질문과 답변서는 의회의 회의중에 질문이나 답변을 마치지 못한 등의 사유로 서면질문한 사항과 서면답변을 하기로 하여 제출된 서면답변서로 함. (안 제50조)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9월8일 제103회임시회 제2차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김원기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의 제안동의발언후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 회의 심사 : 1999년9월18일 제2차본회의에서 김원기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의 제안 설명 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규칙안은 1999년 9월 20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의회규칙 제 호

강원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강원도의회회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 제목 “(발언의 허가)”를 “(의사진행·신상발언의 허가)”로 하고, 동조 제1항중 “의원이 발언”을 “의원이 의사진행이나 신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을”로 하며, 동조 제3항중 “의사진행”을 “의사진행 및 신상”으로 한다.

제38조의 3의 본문을 동조 제1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의 단체 방청인에 대한 소개발언을 해당 지역구 위원이 하지아니할 때에는 이를 의장이 소개할 수 있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보충발언) 의장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보충하기 위한 보충보고나 질문의원이 보충적으로 질문을 하기위한 보충질문등의 보충발언을 하려고 하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 제12호의 서면질문과 답변서는 의회의 회의중에 질문이나 답변을 마치지 못한 등의 사유로 서면질문한 사항과 서면답변을 하기로 하여 제출된 서면답변서에 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第 14 節 第105回 臨時會

1. 概 況

가. 開 會

제105회 강원도의회임시회는 제104회 강원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난 10월 11일 이상명위원의 15인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 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일자로 의장이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11일간의 회기로 1999년 10월 19일 개최하여 10월 29일 폐회되었다.

나. 議事日程

1) 本會議

가) 제1차 본회의 : 1999년 10월 19일(화)

- 제105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결정의 건
- 1999년도 제2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건의
-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결정의건
- 영월댐특별위원회중간보고
- 4분자유발언(김길정, 황영철, 정인수의원)의 건
- 신상발언(손석암의원) 의견

나) 제2차 본회의 : 1999년 10월 29일(금)

- 1998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1998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1999년도제2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지방의회의원불평등처우시정 · 개선건의안
- 199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강원도초등학교교원자격의취득을위한보수교육수강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소규모양곡가공업허가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강원도청소년희망기금관리조례안
- 강원도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
-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2) 議會運營委員會

가) 제1차 회의 : 1999년 10월 19일(화)

- 의사일정결정의건
- 제105회강원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결정의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건의
- 제106회강원도의회(정기회) 운영에관한건
-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기간결정의건

나) 제2차 회의 : 1999년 10월 25일(월)

-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건의
-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건의
- 1998회계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의회사무처)
- 지방의회의원불평등처우시정 · 개선건의안

다) 제3차 회의 : 1999년 11월 19일(금)

- 의사일정결정의건



- 제106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의사일정협의의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건의건
- 강원도지사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內務委員會

가) 제1차회의 : 1999년 10월 20일(수)

- 의사일정결정의건
-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초안작성의건
- 1998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공무원교육원, 소방본부)

나) 제2차회의 : 1999년 10월 21일(목)

- 1998년도강원도세입세출승인의건 (기획관리실)

다) 제3차회의 : 1999년 10월 22일(금)

- 의사일정변경의건
- 1999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자치행정국, 감사관실, 공보관실)
- 의사일정변경의건

라) 제4차회의 : 1999년 10월 25일(월)

- 1998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소방본부)
- 199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마) 제5차회의 : 1999년 10월 26일(화)

- 의사일정변경의건
-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

4) 教育社會委員會

가) 제1차회의 : 1999년 10월 20일(수)

- 의사일정결정의건
- 1998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환경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초안작성의건

나) 제2차회의 : 1999년 10월 21일(목)

- 1998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강원도교육청)

다) 제3차회의 : 1999년 10월 22일(금)

- 1999년도제2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청)

라) 제4차회의 : 1999년 10월 22일(금)

- 1998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여성정책실)

마) 제5차회의 : 1999년 10월 25일(월)

- 1998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강원전문대학)

바) 제6차회의 : 1999년 10월 26일(화)

- 강원도초등학교교원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수강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

5) 産業經濟委員會

가) 제1차회의 : 1999년 10월 20일(수)

- 의사일정결정의건
-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초안작성의건



나) 제2차회의 : 1999년 10월 21일(목)

- 1998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농정산립국)
- 강원도소규모양곡가공업허가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다) 제3차회의 : 1999년 10월 22일(금)

- 1998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농업기술원, 국제협력실)

라) 제4차회의 : 1999년 10월 23일(토)

- 1998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해양수산출장소)

마) 제5차회의 : 1999년 10월 25일(월)

- 1998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산업경제국)
-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바) 제6차회의 : 1999년 10월 26일(화)

-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6) 觀光建設委員會

가) 제1차회의 : 1999년 10월 21일(목)

- 의사일정결정의건
-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초안작성의건

나) 제2차회의 : 1999년 10월 22일(금)

- 1998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관광문화국)

다) 제3차회의 : 1999년 10월 23일(토)

- 주요업무보고 (건설도시국-도로교통과)

- 1998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건설도시국)

라) 제4차회의 : 1999년 10월 25일(월)

- 강원도청소년희망기금관리조례안
- 강원도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

마) 제5차회의 : 1999년 10월 26일(화)

- 1999년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

7) 豫算決算特別委員會

가) 제1차회의 : 1999년 10월 26일(화)

- 위원장선임의건
- 간사선임의건
- 1999년도제2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나) 제2차회의 : 1999년 10월 27일(수)

- 1998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다) 제3차회의 : 1999년 10월 28일(목)

- 1998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다. 議會活動

1) 本會議

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 제1차본회의



- 지방자치법 제50조제1항과 강원도의회의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 제9조 제3항등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원으로 국민회의 8명, 한나라당 7명, 자민련 2명, 무소속 3명등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나) 99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결정 : 제1차본회의

-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제19조의 2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사무감사기간을 1999년 11월 22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였다.

다) 4분자유발언(김길정, 황영철, 정인수의원) : 제1차본회의

- 김길정의원 : 속초출신의원으로서 강원도가 3년넘게 준비한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가 근세기에 가장 성공한 엑스포라는 여론평가를 들었는데 대해 속초시민의 한사람으로 가슴 뿌듯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그동안 수고해준 도지사와 도청공무원 특히 엑스포 조직위 모든 관계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하는 한편 앞으로 이런 성공적 엑스포를 대비한 몇가지 제안을 하였다.
- 황영철의원 : 우리 강원도의회는 그동안 중대한 시점마다 지역과 정파를 초월하여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최근 이러한 신뢰가 허물어질지 모르게 되어 가슴아프게 생각한다면서 김진선지사의 당적과 관련된 발언을 이 의정단상에서 가끔 듣게 되는데 정치관, 정당관에서는 그렇다치더라도 그들의 논리속에 도정이 흔들리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야당지사든 여당지사든 소속의 차이를 떠나 투명하게 도정을 감시하고 때론 협조해야 하며 올바른 지방자치의 가치를 일구고 원칙을 지켜나간다면 언젠가 중앙도 변하리라 생각한다고 하였다.
- 정인수의원 : 지금 동해안은 예년과 달리 오징어가 풍어를 이루고 있어 어민들에게 좋은 일이지만 오징어가 대풍을 이루자 어가가 하락되어 어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는 실정이므로 도지사께서 오징어 소비촉진 강화책을 마련하여 출항강원인과 강원개발공사 및 도내 각급기관과 연계한 오징어팔아주기운동을 전개하여 어가 하락을 막아줄 것을 강력히 주문하며 아울러 도교육감께도 동해안 어촌의 극빈학생 급식지원대책 마련을 건의하였다.

라) 신상발언 : 제1차본회의

- 손석암의원 : 본인은 지난 95년 1월 사랑의 장기기증본부에 장기를 모두 기증해 놓고 있

어 목숨이 다하는 순간이 온다면 각막을 비롯한 7가지 장기로 7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된다면서 그러나 지금까지 시신만은 기증치 못했는데 몇가지 동기로 인해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본인의 시신 전부를 대학병원에 기증할 것을 약속한다고 하였다.

2) 委員會

가) 현지시찰 : 내부위원회

- 1999년 10월 20일 제1차회의에서 의사일정을 결정한 후 소관업무과약을 위해 10월 21일 강원인터넷대학을 시찰하였다.

나) 현지시찰 : 산업경제위원회

- 1999년 10월 20일 제1차회의에서 의사일정을 결정한 후 소관업무 과약을 위해 당일 농협 강원지역본부를 시찰하였다.

다) 현지시찰 : 관광건설위원회

- 1999년 10월 20일 제1차회의에서 의사일정은 결정한 후 소관업무과약을 위해 10월 22일 지방도 463호 하오터널을 시찰하였다.

라. 議案處理狀況

1) 一般議案

- 이번회기중 상정대상 일반안건은 총 13건으로 도지사제출이 6건, 의장제의 4건, 위원회제출이 1건, 도교육감제출이 2건이었다. 가결되었으며 종류별 처리현황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종류별	상 정 대 상 안 건			의 안 처 리 내 역				
	합 계	전화기 이 월	금회기 접 수	가 결			폐 기 (철회)	계 류
				소 계	원 안	수 정		
계	13		13	13	13			
조 례 안	5		5	5	5			
예 산 안	1		1	1	1			
동 의 안	6		6	6	6			
건 의 안	1		1	1	1			



2. 議決案件

가. 條例案

1) 강원도초등학교교원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수강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10월 9일 강원도교육감
- 제안이유 : 교원정년 단축 및 명예퇴직으로 2000학년도에 부족되는 초등학교 담임교사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교육부랑에 의하여 선발한 보수교육대상자와 초등학교 기간제교사 전담교사에 대한 초등학교 2급정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보수교육의 수강료 납부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초등학교 2급정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시간이 672시간 이상인 자의 수강료를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게 정함(안 제3조제2항신설)
 - 336시간이상 교육대상자 수강료를 672시간, 1008시간으로 확대하여 초등학교 2급정교사 자격취득요건에 부합하도록 함(안 별표1)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심사 : 1999년 10월 11일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6일 제6차회의에서 서지원교육국장의 제안설명과 서의승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 후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와 같이 2000년 8월까지 명퇴를 희망하는 교원이 증가되리라 예상되는데 교원수는 대략 얼마인지?
 - 명퇴를 희망하는 교원에 대한 원인 분석은?

- 보수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부족한 초등교사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은?
- 도내초등학교 학급당 정원은?

- 답변요지

- 명예퇴직교사는 285명 정도로 예상함.
- 구조조정에 의한 정년단축으로 명퇴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임. 내년 8월이후 명퇴신청자에 대해서는 65세 정년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명예퇴직자를 최소화하는 것과 학급중설의 최소화 방법임. 부족시에는 기간제 교사로 충원해야 한다고 생각함.
- 42명임
- 본회의 심사 : 1999년 10월 29일 제2차본회의에서 안상현 교육사회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9년 10월 29일 강원도교육감에게 이송되어 1999년 11월 13일 강원도조례 제2735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초등학교교원자격의취득을위한보수교육수강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초등학교교원자격의취득을위한보수교육수강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시간이 672시간이상인 수강료는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분할 납입하게 할 수 있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교육대상자 수강료

교육과정	교육시간	대상인원	1인당수강료	비고
초등학교 교사과정	336시간	80명 이하	1,071,000원	
		120명 이하	954,000원	
		160명 이하	887,000원	
		200명 이하	854,000원	
		240명 이하	826,000원	
		280명 이하	811,000원	
		320명 이하	796,000원	
		320명 초과	787,000원	
	672시간	80명 이하	2,200,000원	
		120명 이하	1,930,000원	
		160명 이하	1,790,000원	
		200명 이하	1,710,000원	
		240명 이하	1,660,000원	
	1,008시간	280명 이하	2,370,000원	
		320명 이하	2,310,000원	
		360명 이하	2,270,000원	
		400명 이하	2,230,000원	
		440명 이하	2,200,000원	
		480명 이하	2,180,000원	
		520명 이하	2,030,000원	

2)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10월 13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97. 7. 1 시행)되면서 「도·소매업진흥법」을 통합 흡수함에 따라 종전규정의 용어등을 수정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종전에 사용하던 「연쇄화사업」을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는 「체인사업」으로 용어를 바꾸고, 법률명칭과 인용조항을 변경함. (안 제2조, 제6조 및 제9조)

- 종전규정에 오자를 바로잡음(제9조제5항)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 10월 18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5일 제5차회의에서 박영환산업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김용기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1999년 10월 29일 제2차본회의에서 엄문섭산업경제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9년 10월 29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1999년 11월 18일 강원도조례 제2732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6호중 “도·소매업진흥법 제26조”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및 제46조”로 한다.

5. “체인사업자”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체인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제1항제4호중 “연쇄화사업자”를 “체인사업자”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중 “도·소매업진흥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연쇄화사업”을 “체인사업”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제6항”을 “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강원도소규모양곡가공업허가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10월 13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이 조례는 소규모양곡가공업의 시설기준 및 허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으나 양곡관리법령이 개정(99. 1. 21)되면서 양곡가공업 허가제도를 등록 또는 신고제로 완화하고 일정규모이하는 신고없이 영업이 가능하도록 자유화하였으며 법령에서 등록·신고절차 및 시설기준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 10월 18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1일 제2차회의에서 김옥수 농정산업국장의 제안설명과 김용기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1999년 10월 29일 제2차본회의에서 업무협산업경제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9년 10월 29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1999년 11월 18일 강원도조례 제2733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소규모양곡가공업허가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강원도소규모양곡가공업허가절차등에관한조례(강원도조례 제2194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강원도청소년희망기금관리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10월 13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지금까지 운영해 오던 3개의 청소년 지원에 관한 기금을 통합하여 운용체계를 합리화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증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조례의 제정근거를 청소년기본법에 두고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관리하도록 하며 관련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 기금의 재원은 강원도 및 시군 출연금과 기타 수입으로 함(안 제3조)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 10월 15일 관광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10월 25일 제4차 회의에서 방재흥 관광문화국장의 제안설명과 신동철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1999년 10월 29일 제2차본회의에서 이상명관광건설위원회간사의 심사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9년 10월 29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1999년 11월 18일 강원도조례 제 2734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청소년희망기금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6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도청소년희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2. “학비”라 함은 학교로부터 납부고지되는 수업료와 입학금을 말한다.
3. “장학금”이라 함은 재능이 우수한 학생에게 학비보조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4. “생활안정비”라 함은 생활보호법 제2조제5호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강원도 및 시·군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3. 기타 수익금

제4조(기금의 용도 및 지원범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제52조의 중·고등학교과정에 재학중인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의 학비지원
2. 생활보호대상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과정 재학생의 장학금지원
3. 부양의무자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청소년의 생활안정비지원
4.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의 건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도내에 주소를 둔자로 한다.

③ 법령 또는 다른 조례등에 의하여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지원을 받거나 학비를 면제받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당해 기간에 한하여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④ 기금의 용도별 지원범위·기준·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강원도금고에 예치하여야 하며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④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적립기금에 재적립할 수 있다.

⑤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강원도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관광문화국장
2. 기금출납원 : 청소년담당사무관

제7조(기금운용계획) ① 기금운용관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 도의회에 제출한다.

제8조(기금결산) ① 기금운용관은 매회계년도마다 전년도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를 거쳐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②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관계규정 및 강원도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조례의 폐지) ① 강원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강원도조례제2306호)는 이를 폐지한다.



② 강원도근로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강원도조례 제1180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 강원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강원도조례 제1766호)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학비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지원한 학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조례의 개정) 강원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9의1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19의19를 삭제한다.

19의18, 강원도청소년희망기금관리조례 제5조제5항의 규정에 관한 처리할 사항

5) 강원도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10월 13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문화재보호법령이 개정(법 99. 1. 29, 시행령 99. 6. 30)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등 법체계를 일원화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강원도문화예술중장기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계획수립시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 및 제14조)
 - 도지사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설립하는 “재단법인강원문화재단”에 도비·국비지원금등의 출연 또는 대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재단육성기금”을 설치·운용하며 기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도비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하고 필요시 그 일부를 시·군 및 민간단체출연으로 조성토록 규정함(안 제20조)
 - 재단의 운영상 필요시 기금출연외에 별도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1조)
 - 재단이 자립할때까지 연구인력의 관리인력에 대하여는 도 공무원을 겸임 및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2조)

- 기타 현행제도운영상 불필요한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함(안 제2조·제4조 및 제10조)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 10월 15일 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제4차회의에서 방재흥 관광 문화국장의 제안설명과 신동철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1999년 10월 29일 제2차본회의에서 이상명 관광건설위원회간사의 심사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9년 10월 29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1999년 11월 18일 강원도조례 제 2731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문화예술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강원도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제3항중 “강원도교육청 중등교육국장”을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문화예술계장”을 “문화예술담당”으로 한다.

제5장(제24조 내지 제29조)을 제7장(제31조 내지 제36조)으로, 제4장(제16조 내지 제23조)을 제6장(제23조 내지 제30조)으로, 제3장(제13조 내지 제15조)을 제4장(제15조 내지 제17조)으로 하고, 제3장(제13조 및 제14조) 및 제5장(제18조 내지 제22조)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문화예술진흥 종합계획



제13조(계획수립) ① 도지사는 도의 역사,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강원도문화예술진흥중장기 종합계획(이하 “문예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문예진흥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의 제시
2.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 창달에 관한 계획
3. 문화예술 관련시설의 정비·확충에 관한 계획
4. 문화예술 정보의 효율적 제공에 관한 사항
5. 문화거리, 테마박물관등 지역문화시설의 적정개발을 위한 계획
6. 노인,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등을 위한 문화예술 관련 시설의 확충에 관한 계획
7. 국제 문화예술교류 추진을 위한 계획
8.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의 강구
9. 문화와 관광사업의 연계·발전에 관한 사항
10. 기타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시책의 강구

제14조(도민의 의결반영) ① 도지사는 문예진흥계획의 수립시 관계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시 관계전문기관·단체에 문예진흥계획의 수립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장 강원문화재단

제18조(문화재단) 도지사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설립하는 재단법인 강원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1. 도비·국비지원금등의 출연 또는 대여
2. 소속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
3. 기타 재정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19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사업을 위하여 기금의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2.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자문
3. 도내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활동의 지원
4. 도지정 테마박물관의 지원
5. 국제문화예술교류센터 운영

6.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서 정한 사업이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출연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20조(재단기금) 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강원문화 재단육성기금(이하 “재단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② 도지사는 2006년까지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재단기금에 대한 도비 출연금을 세출예산서에 계상하되, 200억원이 조성될 때까지로 한다.

③ 제1항의 재단기금은 필요시 그 일부를 도내 각 자치단체 및 그 외의 출연으로 조성할 수 있다.

④ 재단기금의 운용 및 관리는 따로 계정을 설정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운영경비 지원) 재단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20조제2항의 출연금이외에 별도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요청) ① 재단은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도 지사에게 소속 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요청을 받은 경우 도지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겸임 및 파견할 수 있다.

부 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금의 귀속에 관한 경과조치) 동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강원문화재단 이 설립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날에 동조례 제20조제1항의 재단기금에 귀속한다.

나. 豫算案

1) 1998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견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9월 2일 강원도지사



○ 제안설명요지

-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내역으로
 - 총 세입예산현액 역시 1조 3,695억5천5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조4,143억7천5백만원이고
 실수납액은 1조 3,707억8천3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35억9천2백만원이며
 - 총 세출예산현액은 역시 1조 3,695억5천5백만원으로
 지출액은 1조 2,357억4천9백만원이고
 이월액은 875억3천6백만원이며
 불요액은 462억7천만원임.
 - 징수액에 대한 지출액차액은 1,350억3천4백만원으로 이는 모두 99년도예산으로 이월함.
 - 위의 이월액 875억3천5백만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억1천3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 469억8천6백만원 임
- 도립강원전문대, 의료보호기금운영, 공원 및 관광지개발관리, 춘천수렵장운영 등 기타 특별회계는
 - 세입결산액 507억8천4백만원중
 지출액 494억2천8백만원으로서 지출액차액13억5천7백만원은 모두 이월하였음
- 공기업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서
 - 세입결산액 1,230억1백만원에서 세출결산액 982억2천8백만원을 공제한 차입잔액 247억 7천3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예비비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8억5백만원으로
 - 지출결정액 41억5천5백만원중
 - 지출원인행위액은 41억3백만원으로
 - 이중 실제 지출된 금액은 41억3백만원이고
 - 이월액은 없으며
 - 예비비의 불용액은 5천2백만원임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 10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8일 제3차회의에서 최헌영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박종기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이 있었으나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

- 취득세 미수납액이 212억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지방세부과업무에 문제가 있는지, 징수업무에 문제가 있는지와 과년도체납액에 대한 '99년도 정리실적과 현재 소송과 관련한 체납액은?
- 매년 자주재원의 비율이 줄어드는 이유와 세수증대를 위한 대책은?
- 지방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그 증가 사유와 부채내역, 상환계획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기 바람
- 예비비지출에 있어 사전예측이 가능한 사업임에도 편의에 의해 집행한 것이 아닌가?
- 지방세정업무추진에 따른 인센티브실시필요성과 과오납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한 사항은 없는지?
- 97, 98년도 외주발주 용역에 대한 건수, 예산지출액 및 활용현황은?

- 답변요지

- 기금조성을 위한 채무가 3,376억원으로 전체 부채의 83%를 차지하며 이들 부채는 융자 회수금으로 상환하게 되며 순수한 도비로 상환해야 하는 부채는 708억원으로 대부분 장기채로 지방재정운영에는 큰 부담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연도별 상환내역으로 2000~2004년까지 매년 20억미만 수준이고 2005~2014년까지는 매년 50~60억 수준임.
 -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무질서한 예비비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음.
 - 인센티브는 98년 9개시군 3억4천만원, 99년 9월에 1천7백만원의 시상금을 지출하였고 과오납반환액은 7억9천만원이며 특별히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한 사례는 없었음.
 - 97년도는 여성정책개발연구용역등 총18건에 26억9천만원중 24억6천9백만원을 지출하였고 98년도 경관하천조성기본설계용역등 19건에 39억8천만원중 36억원을 지출하였음.
 - 지난해 12월 강원개발연구원, 대학교수, 조세연구원등 조세전문가로 하여금 우리도에 유리한 세원발굴을 하기 위해 세제 개편 연구팀을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음.
앞으로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서울에서 세미나를 개최한 후 관련부처에 정책건의 할 계획임.
- 본회의 심사 : 1999년 10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유돈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승인안은 1999년 10월 29일 원안대로 가결되어 강원도지사에게 송부되었다.

2) 1998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9월 1일 강원도교육감
- 제안설명의 요지
 - 9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내역으로
 - 총세입예산액은 8,411억9천6백만원으로서
 - 징수결정액은 8,928억8천1백만원
 - 실수납액은 8,924억원
 - 미수납액 4억8천1백만원이며
 - 총세출예산액 역시 8,411억9천6백만원으로
 - 지출액은 8,146억2천2백만원
 - 이월액은 97억4천8백만원
 - 불용액은 810억7천1백만원임
 - 징수액에 대한 지출액 차액은 777억7천8백만원으로 이는 모두 99년도 예산으로 이월함.
 - 위의 이월액 97억4천8백만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천5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79억8천5백만원임.
 - 예비비 예산액은 11억원으로
 - 지출원인행위액 7천8백만원중
 - 교육감선출에 따른 경비도 7천8백만원을 지출하였고
 - 이월은 없으며
 - 불용액은 10억2천2백만원임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 10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7일 제2차회의에서 김호준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박종기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및 답변이 있었

으나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

- 9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99년도 당초예산에 전액계상하지 않고 축소 계상한 것은 특정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 98년도에서 99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의 진척상황 및 이월사업이 발생치 않도록 하기 바람.
- 사학재단을 공립으로 흡수 할 수 있는 방안은?
- 교육예산은 계속 투자되어야 하는데 98년도 불용액이 전년도에 비해 273억원이 증가한 사유와 회계감사는 실시되는지?
- 생산문매각대금증감사유 중 이승복기념관에서 한우매각대금 127만원 감소사유?
- 사립학교교사채용과 관련하여 부조리 발생여부는?

- 답변요지

- 교육비특별회계 예·결산 절차상 매회계년도 결산은 지방재정법등 관련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정리 기한인 익년도 3월이후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어 예측하지 못했음.
- 명시이월된 사업은 14건으로 11건 사업은 완료되었고 황지교 급식시설 및 태백함태초교 체육관 신축사업은 금년 12월중 준공예정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음.
- 법인에서 운영을 포기하는 경우외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나 학교가 소규모화 된다는지 통·폐합의 필요성이 제기되면 학생들의 학습권보호차원에서 설립자와 함께 적극 협의해 나가겠음.
- IMF체제하에서 국내경제의 불안정으로 세수결손에 대비하고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예산절감계획, 실행예산 편성등 초긴축 재정운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수시로 감사로 받고 있음.
- 예상수입액은 보유하고 있는 한우 수량을 가지고 전년도 및 예년평균 수입액을 근거로 책정하였으나 솟송이지 분만율이 낮은 원인과 98년도 한우가격이 평년수준보다 낮기 때문임.
- 사립교원 채용시 우수교원확보 및 채용과 관련된 부조리방지 차원에서 공개경쟁선발 유도 및 감사결과 비리는 없었음.

- 본회의 심사 : 1999년 10월 29일 제2차본회의에서 유돈대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승인안은 1999년 10월 29일 원안대로 가결되어 강원도지사에게 송부되었다.

3) 1999년도제2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10월 9일 강원도교육감
- 제안설명의 요지
 -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세입은 기정예산 8,770억3천7백만원보다 344억2백만원이 증액된 9,114억3천9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바
 - 국가부담수입이 99억9천9백만원이 증액된 7,101억9천만원
 -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이 244억3백만원이 증액된 1,963억4천4백만원임.
 - 세출예산 역시 9,114억3천9백만원으로
 - 급여관리가 340억8천3백만원
 - 교육위원회비가 3백만원
 - 교육사업비가 3억9천5백만원
 - 학교비가 1억5천2백만원
 - 사학지원비가 12억2천8백만원
 - 시설비가 7천2백만원
 - 제지출경비가 2백만원등 총 359억5천만원이 증액된 반면
 - 교육행정비가 15억3천3백만원이 감액된 것에 기인함.
 - 따라서 금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원 명예퇴직자 증가에 따른 퇴직수당 및 새로 신설된 공무원 가계지원비 확보를 위한 인건비조정과 기타부서운영 및 교육현장사업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편성임.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 10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6일 제1차회의에

서 김호준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박종기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이 있었으나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

- 각급학교의 난방비 확보에 있어 유류가 인상에 따라 부족되는 예산의 확보방안?
- 2개월여 남은 현재 추경예산에 국내여비를 증액할 필요성이 있는지?
-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예산이 감액된 사유?
- 교원명퇴에 따른 지방채 발행 절차, 이자율, 상환방법, 상환재원 확보방안과 상환이자는?
- 성과상여금과 교원연수원 차량 구입비 전액 삭감이유?
- 초등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보수교육대상자 선발시험경비를 1회 추경시 편성하지 못한 사유?

- 답변요지

- 유류가 인상분에 대하여는 2000년 당초예산에 학급당경비를 140만원에서 175만원으로 인하여 대비토록 하였음.
- 교육부로부터 연수계획확대에 따른 초등영어심화연수비와 교원장년단축 및 명예퇴직급증에 따른 초등교사 추가임용시험경비와 IMF관리체제에 따라 당초예산의 재원부족으로 계상하지 못하였던 각종여비를 금회 추경예산에 보전 계상하였음.
-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정년단축에 따라 정년퇴직과 명예퇴직자가 대폭증가하여 수혜대상 학생수가 자연적으로 감소하게 되었기 때문임.
- 발행 총규모는 791억1,700만원이고 이율 및 상환방법은 재정융자특별회계는 6.5%농협 및 시중은행 8.25%이고 3년거치 5년분할과 2년거치 3년분할상환이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향후 분할상환기간동안에 고호봉 퇴직자의 인건비와 신규채용자의 인건비차액분으로 상환하며 발행절차는 필요성이 요구되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발행함.
- 성과상여금 정부방침에 따라 공무원가계지원비가 신설되면서 제도가 폐지된 관계로 삭감하였으며 차량구입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차량정수가 감배정된 삼척도서관에서 관리전환하였기 때문임.
- 교원장년단축으로 초등교사자격증소지자가 전국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중등교사 자격증소지자를 보수교육선발대상자로 9월에 시험을 실시하였기 때문임.



- 본회의 심사 : 1999년 10월 29일 제2차본회의에서 유돈대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 보고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승인안은 1999년 10월 29일 원안대로 가결되어 강원도지사에게 송부되었다.

다. 同義案

1) 1999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10월 14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금회에 제출하는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1999년도 변경계획으로서 공유재산의 확대조성과 활용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토지를 취득하는 사항과 농업진흥구역안의 실경작농경지중 매각요건이 부합되고 관련인이 매수를 희망하는 소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 금회 제출한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아래와 같다.

(단위 : ㎡, 천원)

구 분	건명	건수	수 량	금 액
취득	계	81필지	50,170,659 (15,176,624평)	6,792,637
	○도유림 집단화	1필지	6,137,027 (1,856,450평)	828,499
	○대체 재산조성	80필지	44,033,632 (13,320,174평)	5,964,138
처분	계	21필지	72,809 (22,024평)	163,618
	○실경작 농경지	21필지	72,809 (22,024평)	163,618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 10월 15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5일 제4차회의에서 최현영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최종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장시간 질의 및 답변에 이어 10월 26일 제5차회의에서 계속된 질의 및 답변이 있었으나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질의 및 답변]

- 질의요지

- 공유재산을 취득·매각하는 사유는?

- 답변요지

- 홍천·인제군의 국방부 종합전술훈련장 부지의 편입에 따라 대체 토지확보 원칙에 의거 취득하는 것이며 매각은 태백시 매봉산 고랭지채소단지내의 실경작들에게 매각하는 것임.

- 본회의 심사 : 1999년 10월 29일 제2차본회의에서 황영철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승인안은 1999년 10월 29일 원안대로 가결되어 강원도지사에게 송부되었다.

[의결전문]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강원도가 제출한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

(단위 : m², 천원)

구분	건명	건수	수 량	금 액
취득	계	81필지	50,170,659 (15,176,624평)	6,792,637
	○도유림 집단화	1필지	6,137,027 (1,856,450평)	828,499
	○대체 재산조성	80필지	44,033,632 (13,320,174평)	5,964,138
처분	계	21필지	72,809 (22,024평)	163,618
	○실경작 농경지	21필지	72,809 (22,024평)	163,618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관리계획총괄표(7-1)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구	분		당초(기정)			금 회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9 1	26,693 564.34	18,258,901 98,170	81	50,170,659	6,792,637	90 1	50,197,352 564.34	25,051,538 98,170	
	1. 매입	토지 건물 기타	2	23,350	17,547,525	81	50,170,659	6,792,637	83	50,194,009	24,340,162	
	2. 교환으로취득	토지 건물 기타	7 1	3,343 564.34	711,376 98,170				7 1	3,343 564.34	711,376 98,170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102 8	70,819 470.79	2,338,435 24,579	21	72,809	1,63,618	123 8	143,628 470.79	2,502,053 24,579	
	4. 매각	토지 건물 기타	53	61,633	974,392	21	72,809	163,618	74	134,442	1,138,010	
	5.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49 8	9,186 470.79	1,364,043 24,579				49 8	9,186 470.79	1,364,043 24,579	
	6. 기타처분	토지 건물 기타										

취득대상재산목록(7-2)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종류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취득시 기	취득사유	재산소유자 주소·성명
		소재지	수량				
		합 계(81필지)	50,170,659	6,792,637			
1	임야	태백시 창죽동 산1-1	6,137,027	828,499	년내	도유림 집단화	
		소 계(80필지)	44,033,632	5,964,138			
2	임야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산 354	82,314	14,817	년내	대체재산 조성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55-1 대한석탄공사
3	"	" 산 356	87,769	15,447			
4	"	" 산 739	511,836	50,672			
5	"	" 산 754	102,149	10,419			
6	"	" 산 756	146,281	14,921			
7	"	" 산 777	40,760	4,035			
8	"	" 산 785	118,314	12,068			
9	"	" 산 804	129,025	10,451			
10	"	" 산 818	157,289	12,740			
11	"	" 산 843	60,893	4,932			
12	"	" 산 844	92,727	7,418			

취득대상재산목록(7-2)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재산소유자 주소·성명
	종류	소재지	수량				
13	임야	강릉시 왕산면 대گیری 산 867	105,818	8,677	년내	대체재산 조성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55-1 대한석탄공사
14	"	" 산 845	163,041	13,043			
15	"	" 산 894	80,926	6,636			
16	"	" 산 897-1	69,421	5,693			
17	"	" 산 929	202,612	20,464			
18	"	강릉시 왕산면 고단리 산 605	19,835	3,134			
19	"	" 산 606	146,578	25,505			
20	"	" 산 608	176,430	18,702			
21	"	강릉시 왕산면 송현리 산 24-1	131,603	47,377			
22	"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산198-1	329,950	46,853			
23	"	태백시 상사미동 산 1	709,590	139,080			
24	"	" 산 65-1	1,139,526	195,998			
25	"	태백시 하사미동 산 195-1	687,574	104,511			
26	"	태백시 조탄동 산 67	1,185,025	171,829			

취득대상재산목록(7-2)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재산소유자 주소·성명
	종류	소재지	수량				
27	임야	태백시 조탄동 산55	505,090	73,238	년내	대체재산 조성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55-1 대한석탄공사
28	"	태백시 원동 산97	4,039,989	731,238			
29	"	" 산13-1	630,448	63,045			
30	"	삼척시 하장면 숙암리 산192	1,057,587	82,492			
31	"	삼척시 하장면 광동리 산77	1,259,504	130,988			
32	"	삼척시 하장면 토산리 산43	424,266	39,457			
33	"	" 산96-1	48,199	4,531			
34	"	" 산96-2	86,083	8,006			
35	"	삼척시 하장면 관문리 산50	133,984	11,255			
36	"	삼척시 하장면 용연리 산126	281,952	20,864			
37	"	" 산138	122,381	9,913			
38	"	" 산207	883,443	63,608			
39	"	영월군 영월읍 삼옥리 산162	476,033	72,833			
40	"	" 산180	742,116	113,544			



취득대상재산목록(7-2)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재산소유자 주소·성명
	종류	소재지	수량				
41	임야	영월군 영월읍 삼옥리 산196	337,190	75,531	년내	대체재산 조성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55-1 대한석탄공사
42	"	영월군 북면 마치리 산1-1	5,887,250	853,651			
43	"	" 산5	47,207	19,874			
44	"	" 산5-1	56,394	10,715			
45	"	" 산6	392,033	50,572			
46	"	" 산15-1	2,000,906	304,138			
47	"	" 산15-2	499,079	67,875			
48	"	" 산15-3	986,975	135,216			
49	"	" 산23	59,008	16,050			
50	"	" 산29	13,587	1,726			
51	"	" 산45-2	99,174	14,579			
52	"	" 산94-1	689,093	92,338			
53	"	영월군 북면 공기리 산1	5,657,554	469,577			
54	"	영월군 영월읍 거운리 산209	3,958,016	344,347			

취득대상재산목록(7-2)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재산소유자 주소·성명
	종류	소재지	수량				
55	임야	영월군 하동면 와석리 산82	218,381	20,309	년내	대체재산 조성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55-1 대한석탄공사
56	"	평창군 평창읍 마지리 산23	64,661	8,923			
57	"	" 산33	343,438	40,869			
58	"	평창군 미탄면 울치리 산28	66,545	8,651			
59	"	" 산31-1	141,322	17,948			
60	"	" 산50-2	516,637	75,429			
61	"	" 산54	90,248	11,461			
62	"	" 산55	41,653	5,623			
63	"	" 산79	2,777	389			
64	"	" 산83	35,603	4,806			
65	"	평창군 미탄면 창리 산19	86,083	17,131			
66	"	" 산47	574,215	139,534			
67	"	" 산62	211,041	44,319			
68	"	평창군 미탄면 평안리 산4	240,992	35,426			

취득대상재산목록(7-2)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재산소유자 주소·성명
	종류	소재지	수량				
69	임야	평창군 미탄면 기화리 산36	135,372	33,437	년내	대체재산 조성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55-1 대한석탄공사
70	"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 산1	49,587	10,959			
71	"	정선군 남면 문곡리 산185	1,241,961	253,360			
72	"	" 산190	168,595	39,114			
73	"	" 산228	918,347	212,138			
74	"	정선군 북면 유천리 산109	202,909	22,726			
75	"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산285	134,380	19,754			
76	"	" 산292	213,124	52,642			
77	"	정선군 임계면 임계리 산35	32,132	4,563			
78	"	" 산58-1	71,008	9,515			
79	"	" 산71	132,397	21,846			
80	"	" 산88	20,628	2,950			
81	"	" 산98	27,769	3,693			

매각대상재산목록(7-4)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과표또는 평가액	매각 시기	취득사유	재산소유자 주소·성명
	종류	소재지	수량					
		합 계(21필지)	72,809	72,809	163,618	년내	실경작, 농경지	
1	"	태백시 창죽동 9-357	4,047	4,407	9,834			태백시 화전1동 9/3 박봉만
2	"	" 9-336	2,802	2,802	6,809			" "
3	"	" 9-371	3,101	3,101	7,753			" "
4	"	" 9-359	5,612	5,612	12,964			태백시 황지2동 8/5 서길식
5	"	" 9-381	1,486	1,486	3,611			" "
6	"	" 9-383	1,595	1,595	3,684			" "
7	"	" 9-360	1,068	1,068	2,595			태백시 화전1동 9/3 민경도
8	"	" 9-362	5,876	5,876	10,577			태백시 황지동 90-9 남춘화
9	"	" 9-363	1,379	1,379	3,048			" "
10	"	" 9-367	3,970	3,970	7,861			태백시 황지1동 12/6 정재철
11	"	" 9-385	4,381	4,381	9,682			" "
12	"	" 9-370	4,548	4,548	11,370			태백시 화전1동 9/3 김성용
13	"	" 9-372	3,428	3,428	8,570			" "
14	"	" 9-384	7,798	7,798	17,234			태백시 황지1동 7/3 오태숙



매각대상재산목록(7-4)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과표또는 평가액	매각 시기	취득사유	재산소유자 주소·성명
	종류	소재지	수량					
15	"	태백시 창죽동 9-387	1,615	1,615	3,924	년내	실경작, 농경지	태백시 황지1동 7/3 오택숙
16	"	" 9-388	4,814	4,814	11,698			태백시 황지1동 9/3 윤인규
17	"	" 9-390	1,376	1,376	3,344			" "
18	"	" 9-401	4,749	4,749	8,881			태백시 상장동 3/3 최흥엽
19	"	" 9-403	3,730	3,730	6,975			" "
20	"	" 9-188	1,497	1,497	3,613			태백시 황지2동 1/1 안재학
21	"	" 9-347	3,947	3,947	9,591			" "

2)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10월 14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금회에 제출하는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2000년도 계획으로서 강원대학교 부속병원 설립에 따라 지방공사 강원도 춘천의료원과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건물 및 부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임.
 - 관리계획 총괄 내용은
 - 토지 9필지 37,820.9m²(11,440평) 16,624,906천원
 - 건물 10동 21,886.59m²(6,621평) 11,900,604천원
 - 매각하는 재산은 강원대학교로부터 의과대학부속병원설립을 위해 춘천시 효자동 소재 지방공사 강원도 춘천의료원과 인접해 있는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매수를 신청해 음에 따라 당해 재산을 의대부속병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강원대학교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임.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 10월 15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5일 제4차회의에서 최현영 자치지원국장이 제안설명과 최종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1999년 10월 29일 제2차본회의에서 황영철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승인안은 1999년 10월 29일 원안대로 가결되어 강원도지사에게 송부되었다.

[의결전문]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강원도가 제출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

(단위 : m², 천원)

구분	건명	건수	수량	금액
매 각	계	9필지, 10동	59,707.49 (18,061평)	28,525,510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설립			
	-지방공사강원도 춘천의료원부지 및 건물	8필지, 9동	54,424.47 (16,463평)	26,503,249
	-부지	8필지	34,301.9 (10,376평)	14,897,077
	-건물	9동	20,112.57 (6,087평)	11,606,172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부지 및 건물	1필지, 1동	5,283.02 (1,598평)	2,022,261
	-부지	1필지	3,519 (1,064평)	1,727,829
	-건물	1동	1,764.02 (534평)	294,432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관리계획총괄표(7-1)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구분			당초(기정)			금 회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 매입	토지 건물 기타										
	2. 교환으로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9 10	37,820.9 21,886.59	16,6245,906 11,900,604				9 10	37,820.9 21,886.59	16,624,906 11,900,604	
	4. 매각	토지 건물 기타	9 10	37,820.9 21,886.59	16,624,906 11,900,604				9 10	37,820.9 21,886.59	16,624,906 11,900,604	
	5.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6. 기타처분	토지 건물 기타										

매각대상재산목록(7-4)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과표또는 평가액	매각 시기	매각사유	매수희망자 주소·성명
	종류	소재지	수량					
	합 계(9필지, 10동)		59,707.49	59,707.49	28,525,510			
	소 계(8필지, 9동)		54,424.47	54,424.47	26,503,249			
1	대	춘천시 효자동 14	845	845	386,165	년내	강원대학교 부속병원설립(지 방공사강원도 춘천의료원)	춘천시 효자2동 192-1 강원대학교 총장
2	잡종지	" 15-2	201	201	91,857			
3	대	" 16-1	688	688	314,416			
4	전	" 17	2,168	2,168	990,776			
5	대	" 17-1	25,146	25,146	11,149,722			
6	"	" 17-2	3,606	3,606	1,647,942			
7	"	" 630	302.9	302.9	99,654			
8	임야	" 산7-6	1,345	1,345	216,545			
9	건물	" 17-1	20,122.57	20,122.57	11,606,172			
		소계(1필지, 1동)	5,283.02	5,283.02	2,022,261			
10	대	" 17-3	3,519	3,519	1,727,829		강원대학교 부속병원설립(강 원도보건환경연구 원)	
11	건물	" 17-3	1,764.02	1,764.02	294,432			

라. 建議案

1) 지방의회의원불평등처우시정·개선건의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10월 25일 의회운영위원장
- 제안이유 : 진정한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건실한 발전이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할 것이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현실의 일천한 역사를 차지하더라도 각종 법령



제도상 중앙정치권과의 불평등이 극심하게 노정되고 있어 우선 지방의정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과 우편법등의 불평등 입법을 시정 개선하는 동시에 국회의원 입법활동 차량비에 준하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차량비 지원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방안을 국회 및 정부당국에 건의하려는 것임.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 10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김원기 운영위원회 간사의 제안설명 및 제안동의후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1999년 10월 29일 제2차본회의에서 김원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의 제안설명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안건은 1999년 10월 29일 국회,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에 건의되어 1999년 11월 12일 현재 심판결과로 조치하겠으며, 차량범위확대는 곤란하다고 회시되었다.

[의결전문]

지방의회의원불평등처우시정 · 개선건의안

우리나라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모태로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을 제정 공포한 이래, 올해로서 그 50주년을 맞이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정 반세기의 헌정사적 의미를 간직하게 되었으며, 지방자치제의 시행은, 1952년부터 1961년까지 10년간 지방자치의 태동기를 거쳐, 그후 30년간 격동의 역사속에 지방자치 휴면기를 지나, 지난 1991년 각급 지방의회 부활에 이어, 1995년부터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체제를 갖추고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행 지방자치는 형식면에서는 전면자치라고 할 것이나, 내용면에서는 명목상의 자치로서 「지극히 제한된 자치입법권」, 「중앙통제위주의 행정·조직권」, 「법령과 지침에 묶인 자치재정권」 등 우리들의 염원하는 진정한 지방자치는 아직도 요원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하겠습니까.

이에, 강원도의회에서는 이같은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을 개탄하면서 지나치게 불평등 처우로

일관되고 있는 다음 사안을 조속히 시정·개선해 줄 것을 전체 도의원의 뜻을 모아 건의하는 바입니다.

1.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불평등 시정

현행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 및 국회의원에게만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각각 국가의 의결기관인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독립된 지위에서 국민과 주민을 위해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정치활동 측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세비를 지급하는 반면에, 지방의회의원은 명예직으로 규정하면서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회의원에게만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의원은 후원회를 둘 수 있게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명백한 차별로서 헌법제11조에서 규정한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건실한 발전을 위하여 지방의회의원도 국회의원과 같이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우편법 관련법규 불평등 개선

현행 우편법 제2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다량의 우편물은 발송요금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기준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도록하고, 우편법시행규칙 제85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국회의원은 연 3회 이내(1회 5천통이상)에서 의정활동을 지역구 주민에게 알리기 위한 우편물의 경우, 그 우편료 감액기준을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여 해당 우편료를 1/3로 감액하여 받고 있으나, 명예직인 지방의회의원은 지역구 주민에게 의정활동보고서를 발송시에 우편료를 전액 받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간에 또 다른 불평등이라 할 것이므로 지방의회의원도 의정활동결과보고서 발송시 등에 국회의원과 같이 우편료를 감액받을 수 있도록 시정·개선을 촉구합니다.

3.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차량비 지원

현재, 국회는 국회의원 입법활동 차량비 지급규정에 의거 국회의원 입법활동 지원을 위하여 세비와는 별도로 '99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매월 894,380원의 차량비(유지비 357,830원, 유류비 536,550원)를 지원받고 있으나, 지방의회의원은 명예직으로서 의회의 회의참석, 의정자료수집, 지역구 민원처리등 각종 의정활동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자가용 차량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차량 운영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지급되고 있는 의정활동비(광역지방의회의원 월 60만원, 기초지방의회의원 35만원)는 국회의원의 차량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명예직인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에 걸맞게 최소한의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방의회 의원도 국회의원의 경우처럼, 의정활동 차량에 대한 유지비나 유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망합니다.

4. 지방의회의원 액화석유가스사용 자동차 허용

현행,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8-149호에 의하면, 액화석유가스 사용자동차 및 관리기준을 운수사업용 승용자동차, 자치단체의 관용승용자동차, 국가유공상이자 및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등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의 업무용 관용 승용자동차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사용되는 의원차량에 대하여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 않아,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차량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경비 절감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관용승용자동차와 같이 액화석유가스 사용을 허용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第 15 節 第106回 定期會

1. 概 況

가. 開 會

제106회 강원도의회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1999년 11월 12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35일간의 회기로 1999년 11월 20일 개회하여 12월 24일 폐회되었다.

나. 議事日程

1) 本會議

가) 제1차 본회의 : 1999년 11월 20일(토)

- 제106회강원도의회(정기회)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 2000년도예산안및1999년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건의건
- 강원도지사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신상발언(성희직의원) 의견
- 4분자유발언(신명선, 정인수, 전인택의원) 의견

나) 제2차 본회의 : 1999년 12월 7일(화)

- 강원도정및교육행정질문

다) 제3차 본회의 : 1999년 12월 8일(수)



- 강원도정및교육행정질문

라) 제4차 본회의 : 1999년 12월 9일(목)

- 강원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마) 제5차 본회의 : 1999년 12월 16일(목)

- 1999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 2000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
- 1999년도제3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 2000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강원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안
- 강원국제관광엑스포지원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견
- 신상발언 (신명선, 황영철의원)
- 4분자유발언 (정연대, 정철수, 성희직의원) 의견

바) 제6차 본회의 : 1999년 12월 24일(금)

- 강원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고문번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2000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 해난사고피해자취득세면제동의안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항소부설치에관한건의안
-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조례안

- 강원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 국립태백식물종자은행설립건의안
- 주길림성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운영지원에관한건의안
- 강원도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견
- 송전탑건설관련환경피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견
- 산업경제위원회해외연수결과보고
- 신상발언 (손석암의원) 의견
- 4분자유발언 (김진도, 이종근, 정인수의원) 의견

2) 議會運營委員會

가) 제1차회의 : 1999년 12월 6일(월)

- 1999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 2000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처)
-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견

나) 제2차회의 : 2000년 1월 1일(화)

- 의사일정결정의견
- 2000년도의회운영기본계획안
- 제107회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견
- 강원도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
- 강원도의회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3) 內務委員會

가) 제1차회의 : 1999년 11월 22일(월)

- 의사일정결정의견



나) 제2차회의 : 1999년 12월 1일(수)

- 의사일정변경의견
- 1999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 2000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기획관리실)

다) 제3차회의 : 1999년 12월 2일(목)

- 1999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 2000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공보관실, 감사관실)

라) 제4차회의 : 1999년 12월 3일(금)

- 1999년도제2차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 2000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소방본부)

마) 제5차회의 : 1999년 12월 4일(토)

- 1999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 2000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공무원교육원)

바) 제6차회의 : 1999년 12월 6일(월)

- 1999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 2000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자치행정국)

사) 제7차회의 : 1999년 12월 7일(화)

- 의사일정변경의견
- 강원도수입증지조례증개정조례안
- 강원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항소부설치에관한건의안

아) 제8차회의 : 1999년 12월 18일(토)

- 강원도고문번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 2000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자) 제9차회의 : 1999년 12월 22일(수)

-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 해난사고피해자취득세면제동의안
-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견

차) 제10차회의 : 1999년 12월 23일(목)

- 의사일정변경의견
- 2000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 강원도고문번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敎育社會委員會

가) 제1차회의 : 1999년 11월 22일(월)

- 의사일정결정의견

나) 제2차회의 : 1999년 12월 1일(수)

- 1999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환경복지국)
- 2000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환경복지국)

다) 제3차회의 : 1999년 12월 2일(목)

- 1999년도제2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 2000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라) 제4차회의 : 1999년 12월 3일(금)

- 1999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 2000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보건환경연구원)

마) 제5차회의 : 1999년 12월 4일(토)

- 1999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 2000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여성정책실)

바) 제6차회의 : 1999년 12월 6일(월)

- 1999년도제2차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 2000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강원전문대학)

사) 제7차회의 : 1999년 12월 17일(금)

- 의사일정변경의건
-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아) 제8차회의 : 1999년 12월 18일(토)

-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5) 産業經濟委員會

가) 제1차회의 : 1999년 11월 22일(월)

- 의사일정결정의건

나) 제2차회의 : 1999년 12월 1일(수)

- 1999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농정산림국)
- 2000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농정산림국)

다) 제3차회의 : 1999년 12월 2일(목)

- 1999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산업경제국)
- 2000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산업경제국)

라) 제4차회의 : 1999년 12월 3일(금)

- 1999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농업기술원)
- 2000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농업기술원)

마) 제5차회의 : 1999년 12월 4일(토)

- 1999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국제협력실)
- 2000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국제협력실)

바) 제6차회의 : 1999년 12월 6일(월)

- 의사일정변경의건
- 강원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조례안
- 1999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해양수산출장소)
- 2000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해양수산출장소)

사) 제7차회의 : 1999년 12월 17일(금)

- 의사일정변경의건

아) 제8차회의 : 1999년 12월 18일(토)

- 강원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 국립태백식물종자은행설립건의안
- 주길립성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운영지원에관한건의안

자) 제9차회의 : 1999년 12월 23일(목)

-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6) 觀光建設委員會

가) 제1차회의 : 1999년 11월 22일(월)

- 의사일정변경의건

나) 제2차회의 : 1999년 12월 1일(수)

- 1999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건설도시국)

다) 제3차회의 : 1999년 12월 2일(목)

- 2000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건설도시국)

라) 제4차회의 : 1999년 12월 3일(금)

- 강원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안

마) 제5차회의 : 1999년 12월 4일(토)

- 1999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관광문화국)

바) 제6차회의 : 1999년 12월 6일(월)

- 2000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관광문화국)

사) 제7차회의 : 1999년 12월 17일(금)

- 의사일정변경의건
-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강원도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豫算決算特別委員會

가) 제1차회의 : 1999년 12월 10일(금)

- 위원장선임의건

- 간사선임의건
- 1999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나) 제2차회의 : 1999년 12월 11일(토)

- 2000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

다) 제3차회의 : 1999년 12월 13일(월)

- 2000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

라) 제4차회의 : 1999년 12월 14일(화)

- 의사일정변경의건
- 2000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
- 1999년도제3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 2000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마) 제5차회의 : 1999년 12월 15일(수)

- 2000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8) 江原國際觀光엑스포支援特別委員會

가) 제1차회의 : 1999년 12월 4일(토)

- 강원국제관광엑스포지원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다. 議會活動

1) 本會議

가) 2000년도 예산안 및 199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시정연설 : 제1차 본회의



- 김진선도지사 : 시정연설에서 도정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한 후 2000년도 도정의 시책 방향을 설명한 후 2000년도 예산안은 뉴밀레니엄 강원도 세상의 가치와 미래를 창출해 내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합리적인 재정배분과 건전재정의 회복을 기조로 하여 편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후 발생한 세입세출 변동사항을 이번 회기중에 최종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 김병두교육감 : 2000년도 주요교육시책 개요로 바른인성함양을 위한 덕성교육, 다양성과 경쟁력을 갖춘 창의성교육, 21세기를 주도할 열린인간교육, 학교의 자율성제고를 위한 지원행정등이라고 설명하고 2000년도 예산안 편성내역과 주요사업내용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2000년도 도정방향요지]

- ① 지금까지 지켜온 철저한 보존, 완벽한 개발의 강원도적 환경원칙을 앞으로도 철저히 고수해 나갈 것임.
- ② 구상중인 강원문화 르네상스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것임.
- ③ 사회복지운동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육성하는 대책을 강구하겠음.
- ④ 거도적인 인재양성운동을 전개할 것임.
- ⑤ 민간중심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지방차원에서 접근해 나가겠음.

[2000년도 교육시책 기본방향 및 주요사업]

- ① 책임있게 행동하고 협력하는 생활실천중심의 인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음.
- ②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특기적성교육 활동을 활성화하고 강원예술고와 같은 특성화 학교 설립과 지원에도 힘쓰겠음.
- ③ 유치원 공교육체제를 단계별로 확대추진하고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며 여성 능력 개발과 남녀평등교육이념의 확산에 힘쓰겠음.
- ④ 진취적인 강원인을 육성하기 위한 향토인재 육성지원체제를 강구하고 지역특성화 고등학교의 설립지원에 힘쓰겠음.
- ⑤ 교원스스로가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높여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음.
- ⑥ 사학의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와 사학지원의 성과를 높이겠음.

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 제1차 본회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등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다) 4분자유발언 : 제1차회의

- 신명선의원 : 강원도 발전을 위해 강원도금고 윤번제는 계속 실시되어야 하며 지방화시대에 도금고를 책임질 수 있는 은행은 강원도민들에게 베푸는 정도 여하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들도 관의 하도급제에서 벗어나 도민들이 대출받을 때 이자라고 싸게 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베풀어야 한다면서 2000년도 강원도금고를 책임질 은행은 강원도민이 웃고 즐기며 거래할 수 있는 은행이어야 한다고 주장함.
- 정인수의원 : 강원도금고 운영과 관련해 운영의 문제점을 지난 제57회 도의회임시회때 공식제기하면서 당시 강원도와 모 은행간 58년간 유지하던 밀약은 금고운영에 대한 인식변화의 전기를 맞이했으나 이후 도금고 계약사항은 연중행사처럼 핫이슈로 등장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도금고 선정은 지사의 고유권한이기도 하지만 도금고 선정은 결코 안배형식으로 특정금융기관 위주로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앞으로 공공금고 계약은 서울시처럼 공개 입찰방식으로 전환,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하자고 주장함.
- 전인택의원 : 강원관광엑스포가 화려하고 장엄한 막을 내린 가운데 지난 6개월동안 엑스포특위 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전국을 순화하며 엑스포의 홍보와 관람을 호소하였고 엑스포기간동안 수많은 관람인을 보며 가슴 뭉클하고 뿌듯한 심정을 주체할 수 없었던 흥분과 희열도 잠시, 한 언론에서 엑스포 행사를 마치 거대한 사기드라마처럼 비화되었을 때 허탈감과 자존심이 함몰되는 아픔을 느꼈지만 강원관광엑스포를 통해 많은 부분에서의 변화를 보면 관광엑스포를 개최한 것은 그 착상부터가 평가받을만 하다면서 이번 강원관광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는 강원관광의 새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함.

2) 委員會

- 각 위원회별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999년 11월 22일부터 1999년 11월 30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다.

라. 議案處理狀況

- 이번회기중 상정대상 일반안건은 총27건으로 도지사제출이 16건, 교육감제출 4, 의장제의 4, 위원회제출이 1건, 의원발의 2건이었다. 처리결과를 보면 27건 모두 가결되었고 종류



별 처리현황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종류별	상 정 대 상 안 건			의 안 처 리 내 역				
	합 계	전 회 기 이 월	금 회 기 접 수	가 결			폐 기 (철 회)	계 류
				소 계	원 안	수 정		
계	27		27	27	22	5		
조 례 안	13		13	13	10	3		
예 산 안	4		4	4	2	2		
동 의 안	7		7	7	7			
건 의 안	3		3	3	3			

2.議決案件

가. 條例案

1) 강원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12월 16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의 진퇴를 같이하는 별정직 비서관과 비서는 근무상한 연령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함)
- 주요골자
 -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지방의회 사무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 (중전)소속기관의 장에서 → (개정)지방의회 사무처장을 포함.
 -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의 전보가 가능하도록 전보사유를 명확히 함(안 제7조)
 -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일반직 정년을 준용하나 비서관 또는 비서는 이를 적용하

지 않도록 정함(안 제8조)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 12월 16일 내부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3일 제10차회의에서 최헌영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최종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1999년 12월 24일 제6차본회의에서 황영철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9년 12월 27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2000년 1월 17일 강원도조례 제 2740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공무원중 읍장·면장 및 시의 동장을 제외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제2항중 “규칙”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소속기관의 장”을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도의회의 사무처장”으로 한다.

제7조중 “단위기관내에서 전보임용”을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임용”으로 한다.

제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지사 및 도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12월 16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이양 및 행정규제 완화 등으로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반 폐기물처리업 허가 관련 사무를 신규로 위임하고 현재 시장·군수에게 위임 처리하고 있는 사무의 일부를 개정된 법령체계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폐기물의 발생, 수집·운반·처리과정의 연계성과 현장중심의 행정체제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폐기물(중간·최종·종합)처리업의 허가 및 지도 감독 관련 사무를 신규로 위임함(안 별지 환경복지분야 제98호).
 - 양곡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양곡매매업의 신고제가 폐지되고 양곡도정업의 허가제가 신고제로 전화됨에 따라 기 위임사무의 내용을 일부조정함(안 농정산림분야 제77호·제78호 및 제80호)
 -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 집)과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에 대한 허가·등록 및 지도감독 관련 위임사무의 내용을 조정함(안 별지 관광문화분야 제25호)
 - 하천법과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사무명과 근거법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위임사무의 내용을 현행 법령체계에 맞도록 조정함(안 별지 건설도시분야 제28호 내지 제112호)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 12월 16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3일 제10차회의에서 최헌영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최종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이 있었으나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
 - 일반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시군에 위임해 주었을 경우 난립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견해는?
- 답변요지
 - 본 업무의 경우 도에서 허가하거나 시군에서 허가한다고 하여 난립할 우려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본회의 심사 : 1999년 12월 24일 제6차본회의에서 환영철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9년 12월 27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2000년 1월 17일 강원도조례 제 2744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환경복지분야란 제98호를 별지와 같이하고, 농정산림분야란 제76호를 삭제하며, 동란 제77호·제78호 및 제80호를 각각 별지와 같이하고, 관광문화분야란 제25호를 별지와 같이하며, 건설도시분야란 제28호 내지 69호·제78호 내지 제80호·제104호·제105호 및 제107호를 각각 별지와 같이하고, 동란 제81호·제91호 내지 제94호 및 제97호 다목을 각각 삭제하며, 동란 제110호 내지 제146호를 각각 제113호 내지 제149호로 하고, 동란에 제110호 내지 제 112호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업무분야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환경복지	98	폐기물처리업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검토 및 적합여부 통보 나. 허가 및 변경허가 다. 허가에 따른 필요한 조건부여 라. 허가에 취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마. 과징금 부과·징수 바. 권리·의무 승계신고의 수리 사. 휴·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수리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2항 동법 제26조제3항 동법 제26조 제6항 동법 제28조 및 제56조 동법 제29조 동법 제32조 동법 제42조



업무분야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아.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자료제출, 관계공무원의 서류 및 시설·장비등의 검사 자. 폐기물처리업자의 방치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차. 위임사무의 청무에 관한 사항 타. 위임사무의 과태료 부과·징수	동법 제43조 동법 제43조의2 동법 제57조 동법 제63조
농정산림	77	양곡가공업자의 등록 및 신고	양곡관리법 제19조 및 동규칙 제4조, 제4조의 2
	78	양곡가공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동법 제21조
	80	과태료의 부과 징수	동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관광문화	25	청소년수련시설(생활권수련시설 및 자연권수련시설 및 자연권수련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동시설의 설치·운영 허가 및 변경허가 나. 동시설의 등록 및 변경등록 다. 동시설의 설치·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에 대한 시정명령 라. 동시설의 행정처분중 허가취소, 운영정지, 행정처분에 따른 의견진술에 관한사항 마. 동 시설의 폐지신고 및 폐지제한 사. 동 시설의 허가 및 등록전 소관부서 협의 통보 아. 동 시설의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청소년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동법 제26조의2제2항 동법 제26조제3항 동법 제29조 동법 제31조제1항 및 제31조의2 동법 제33조 동법 제34조의2 제2항 및 제3항 동법 제38조제3항 및 제4항
건설도시	28	지방1급·2급하천에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시장·군수가 허가하거나 승인한 사항에 한함)	하천법 제4조제2항
	29	다른 사업의 시행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에 한함)	동법 제6조
	30	하천대장의 작성·보관과 등본의 교부·열람	동법 제14조
	31	하천관리 상황의 점검 청 이에 따른 조치	동법 제15조
	32	지방2급하천의 하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심사의뢰(2개 시군 이상에 연계된 하천은 제외)	동법 제17조
	33	지방2급하천의 하천공사(지방1급 하천의 유지·관리에 관한 공사를 포함)	동법 제28조
	34	지방2급하천의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관리	동법 제28조제2항
	35	지방2급하천의 하천공사 준공의 고시(시장·군수가 시행한 하천공사에 한함)	동법 제28조제3항
	36	지방1급·2급하천에서 하천공사의 유지·관리에 관한 허가	동법 제29조
	37	지방2급하천의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관리에 관한 허가	동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업무분야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38	동 하천공사 공사비의 예치	동법 제30조 제5항
	39	준공인가 및 이에 필요한 검사의 의뢰(시장·군수가 허가하거나 승인한 사항에 한함)	동법 제31조
	40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시장·군수에게 허가권등에 관한 권한이 있는 사항에 한함)	동법 제32조제1항
	41	동 하천공사의 준공인가 및 이에 필요한 검사의 의뢰	동법 제32조
	42	지방1급·2급하천에서 유수의 점용허가	동법 제33조 제1항제1호
	43	동 토지의 점용허가	동법 제33조 제1항제2호
	44	동 하천부속물의 점용허가	동법 제33조 제1항제3호
	45	지방2급하천에서의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허가	동법 제33조 제1항제4호
	46	지방1급·2급하천에서의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기타 토지의 형상 변경허가	동법 제33조 제1항제5호
	47	동 토석·모래·자갈 기타 하천 산출물의 채취허가	동법 제33조 제1항제6호
	48	동 스케이트장·유선장의 설치허가	동법 제33조 제1항제7호
	49	동 식물의 재식허가	동법 제33조 제1항제8호
	50	동 선박의 운항허가	동법 제33조 제1항제9호
	51	동 허가 등의 고시(시장·군수가 허가한 사항에 한함)	동법 제33조 제2항
	52	동 점용허가에 따른 하천공사 실시 계획의 인가·변경인가, 인가의 고시, 준공인가	동법 제33조 제5항
	53	동 점용공사의 대형 및 공사기간의 통지	동법 제36조
	54	국가하천 및 지방1급·2급하천에서의 점용료 등의 징수	동법 제38조제1항
	55	동 변상금의 징수	동법 제38조제3항
	56	동 점용료 등의 감면	동법 제39조
	57	지방1급·2급하천의 하천예정지 및 연안구역 내의 행위허가	동법 제40조
	58	지방1급·2급하천에서 과오납금의 반환(시장·군수가 부과한 것에 한함)	동법 제59조
	59	동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에 한함)	동법 제64조
	60	동 공익을 위한 처분 등(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에 한함)	동법 제65조
	61	하천감시원의 임면	동법 제68조
	62	동 보고 및 출입 등(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에 한함)	동법 제69조
	63	동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에 한함)	동법 제70조
	64	동 낚시 등의 금지구역 지정 등	동법 제71조 및 동시행령 제50조
	65	동 하천의 사용금지 구역에 대한 단속 및 처분 등	동법 제72조
	66	원상회복 명령,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공작물 등의 국유화 및 원상회복 비용의 예치(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에 한함)	동법 제73조



업무분야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67	국가하천 및 지방1급·2급하천에서 하천구역의 지정 등 공 용부담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그에 따른 협의(관리청 시 행 하천공사를 포함한다)	동법 제74조
	68	하천편입토지의 조사, 토지소유자에게 통지 및 열람	동법 시행령 제53조
	69	지방1급·2급하천에서 토지의 수용·사용(시장·군수에게 위임한 사항에 한함)	동법 제76조
	78	허가수수료의 징수	동법 제80조
	79	청 문	동법 제81조
	80	과태료의 부과·징수	동법 제81조 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 제6호
	104	건설기계 대여업의 신고수리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동시행령 제13조
	105	건설기계사업의 폐쇄 조치(단, 건설기계대여업에 한함)	동법 제23조
	107	청 문	동법 제36조
	110	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수리(단, 건설기계대여업에 한 함)	동법 제24조
	111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동법 제34조의 2
	112	건설기계의 폐기	동법 제34조의 3

3) 강원도고문번호사조례중 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11월 18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고문번호사의 수당지급 근거는 조례로 정하고 세부적인 수당금액은 도지사에
게 위임하도록 하여 수당지급액 증감요인발생시 이를 즉시 반영하는 등 합리적이고 탄력
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 15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예산의 범
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토록 함(안 제6조제1항)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 11월 19일 내부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8일 제8차회의에서 이병을
감사관의 제안설명과 최종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장시간 질의 및 답변이 있는 후 12월

23일 제10차회의를 속개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1999년 12월 24일 제6차 본회의에서 황영철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9년 12월 27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2000년 1월 17일 강원도조례 제 2743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고문번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고문번호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150,000원이하의 수당”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12월 16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임대주택법시행령이 개정 (99. 11. 12 시행)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5세대이상에서 2세대이상으로 완화함에 따라 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규정을 이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5세대이상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하던 것을 2세대이상으로 함(안 제15조)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 12월 16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2일 제9차회의에서 최현영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최종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1999년 12월 24일 제6차본회의에서 황영철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9년 12월 27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2000년 1월 17일 강원도조례 제 2741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중 “5세대이상”을 “2세대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강원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11월 18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행정규제기본법 취지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등 「규제법정주의」를 실현하고자 강원도규제대책협의회 심사를 거친 강원도수입증지조례중 판매인에 대한 규제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판매인에 대한 결격요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8조)
 - 판매인이 사망한 때, 30일이상 판매하지 아니한 때, 무능력자가 된 때 등의 사유로 인한 판매인 또는 관계인의 신고의무사항을 삭제함(안 제15조)
 - 판매인의 증지 오·훼손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 및 장부비치 의무와 장부검사 제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안 제17조 및 제27조)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 11월 19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7일 제7차회의에서 최현영 차지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최종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1999년 12월 24일 제6차본회의에서 황영철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9년 12월 27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2000년 1월 17일 강원도조례 제 2739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수입증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5조·제17조 및 제2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중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 강원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11월 18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기존의 업무가 시군으로 위임되었거나 징수근거의 폐지등으로 징수근거가 없어진 항목은 삭제하고, 개별법령에서 도 조례로서 징수토록 규정된 항목은 신설하는 등 종전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개별법령 개정에 따른 기존항목의 폐지 → 8종
 - 시군으로의 업무위임 : 2종
 - 징수근거의 폐지 : 4종
 - 상위법령에 징수근거 마련으로 중복규정 : 2종
 - 개별법령에서 도 조례로 징수토록 규정된 항목의 신설 → 7종
 - 비료관리법 개정 (2종),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제정 (5종)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 11월 19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7일 제7차회의에서 최현영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최종추천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1999년 12월 24일 제6차본회의에서 황영철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9년 12월 27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2000년 1월 17일 강원도조례 제 2745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증명등의 사항과 수수료는 별표4와 같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제출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4] 제증명등수수료(제2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증 명>			
1. 삭제 <85. 4. 6>			
2.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 증명	1통	300	
(2) 하자보증금 납부(예치) 증명	1통	300	
(3) 원천징수 공제증명	1통	300	
(4) 공사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 보관확인원	1통	300	
(5) 일반경쟁입찰 참가가격 등록증명	1통	300	
3. 삭제 <98. 1. 10>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4.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 원자재(시설재, 공업요소) 소요량 증명 -			
(1) 가소요량	1통	3,000	
(2) 확정소요량	1통	1,000	
5. 기타 제증명			
(1) 화재증명	1통	500	
(2) 기타 시설공무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통	300	
<인·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1. 일반행정관계			
(1)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 신규	1건	500	
- 계속	1건	300	
(2) 인·허가, 등록, 지정 등의 대장열람	1건	100	
(3)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등 재교부 신청	1건	500	
2. 삭제 <99. 4. 17>			
3. 삭제 <98. 1. 10>			
4. 삭제 <98. 1. 10>			
5. 보건사회관계			
(1) 한지의료인의 허가지역변경허가 신청	1건	500	
(2) 의료기관(종합병원) 개설허가	1건	79,000	
(3)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개설허가	1건	50,000	
(4)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변경 신청	1건	17,000	
(5)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1매	3,300	
(6)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	1매	800	
- 등록사항의 정정신청 제외			
(7) 이·미용사 신규면허증 교부	1건	2,300	
(8)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1건	2,000	
6. 삭제 <98. 1. 10>			
7. 문화예술관계			
(1) 유통관련업 등록신청			
(가) 비디오·게임물판매·대여업	1건	2,000	
(나) 시청·게임제공업·노래연습장업	1건	20,000	
(2) 유통관련업 변경등록(신고)			
(가) 비디오·게임물판매·대여업	1건	1,000	
(나) 시청·게임제공업·노래연습장업	1건	5,000	
(3) 종합게임장 지정신청	1건	20,000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8. 삭제 <98. 1. 10>				
9. 체육관계				
(1)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가) 사업계획 승인신청	1건		200,000	
(나)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	1건		60,000	
(다) 등록신청	1건		100,000	
(라) 변경등록 신청	1건		40,000	
(2) 기타 등록체육시설업				
(가) 사업계획 승인신청	1건		100,000	
(나)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	1건		40,000	
(다) 등록신청	1건		60,000	
(라) 변경등록 신청	1건		20,000	
10. 농수산물관계				
(1)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	
(2)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	

7)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12월 2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이 개정 ('99. 1. 21)됨에 따라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잡종재산에 대한 신탁제도를 도입하는 것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함(안 제5조)
 -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사항중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도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함(안 제7조)
 - 상위법령과 조례에 중복되어 규정된 매각처분 재산에 상응하는 대체재산 조성에 대한 조항 삭제함(안 제17조)
 - 현행 연 8%이자로 10년간 분할납부 매각대상중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철거주민에



- 게 주거용으로 재산을 매각할 때와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가, 저소득층에게 400㎡이하의 토지를 매각의 경우 연 5%이자를 적용토록 개정함(안 제22조)
- 현행 외국인투자기업중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만 매각대금의 20년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던 것을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시 20년간 분할납부가 가능토록 개정함(안 제22조)
 - 현행 경작목적이 대부시 대부료는 농지소득 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사가 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하던 것을 당해 토지 평정가격(공시지가) 1,000분의 10으로 개정함(안 제23조)
 -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중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대부료를 1,000분의 10으로 적용토록 개정(일반적용요율 1,000분의 25) (안 제23조)
 - 현행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대부할 경우만 대부요율을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던 것을 사업목적상 필요시 1,000분의 10이상 할 수 있도록 개정함(안 제23조)
 - 현행 대부료 특례조항(전년도에 납부한 대부료 보다 연간 대부료가 10% 증가한 때 적용되는 대부료 인상률)이 적용되던 변상금에 대하여는 특례적용 조항 삭제함(안 제23조의 2)
 - 공유재산 연간대부료가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근지역의 사유재산 임대료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나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한 경우 20%범위내에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가감조정할 수 있는 조항 신설함(안 제23조의 2)
 - 현행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감면의 경우 제조업과 수출지향형 기업에 국한된 조항을 삭제하고 고용인원 기준을 1일 평균 인원수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23조의 3)
 - 건물대부시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과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대하여 세부적이고 합리적인 대부료 산출기준 마련함(안 제25조)
 - 잡종재산의 신탁종류(부동산관리신탁, 부동산처분신탁, 토지신탁)에 대한 조항신설함(안 제31조의 2)
 - 현행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매각대금 감면의 경우 공장건설과 공장용지, 수출지향형 기업에 국한된 조항을 삭제함(안 제39조의 4)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 12월 4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2일 제9차회의에서 최현영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최종준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1999년 12월 24일 제6차본회의에서 황영철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9년 12월 27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2000년 1월 17일 강원도조례 제 2742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사용하거나 전대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조정”을 “지급”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보상금은 신고자의 은닉재산신고서 접수후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에 의하여 신고인에게 지급하며 지급기한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제2항의 심의사항중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중 “공유재산관리 담당공무원”을 “법 제7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으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을 본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8조(공유재산의 현황파악) 재산관리관은 영 제80조제2항에 의한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도시계획 및 재개발지구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제소등 재산소유권상 분장이 있는 재산

제19조의2중 “제100조제2항제5호”를 “제100조제2항제5호·제4항”으로 한다.

제19조의3제3호중 “제29조”를 “제2조”로 하고, 동조제6호중 “인정하는 지역의”를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영 제9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
6.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 제3항 제1호중 “제6호, 제10호, 제11호, 제16호”를 “제2호, 제6호, 제10호, 제11호 및 제16호”로 하며, 동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제5호중 “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을 “기업의 사업목적상 필요한”으로 한다.

5.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요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지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23조제1항중 “사용요율”을 “사용료의 요율”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농경지를 실경작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한 토지의 대부분은 당해 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23조제3항중 “영 제9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업채석의”를 “광업채석의”로, “사용료로”를 “사용료를”하고, 동조제4항중 “영 제9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를 “다음 각호의”로 하며, 동조제6항중 “1000분의 25로 한다”를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로 한다”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경우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23조제8항중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을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로 하고, 동 조제9항중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로, “기술연구집단지단의 지정을 받은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는 경우”를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를 “할 수 있다”로 한다.

제23조의2 본문을 제1항으로 하여 “(사용료·변상금을)”를 “(사용료)”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신설한다.

②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근 지역의 사유재산 임대료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나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희망자가 없어 2회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퍼센트 범위내에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이를 가감조정 할 수 있다.

③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적용 받는 자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액조정할 수 없다.

제23조의3제1호가목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외·투법”이라 한다 제9조”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로 하고, 나목중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을 “이상인사업”으로 하며, 다목을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인 사업”으로 하고, 라목중 “수출지향형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하며, 동조제2호가목중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을 “미만인 사업”으로 하고, 나목을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미만인 사업”으로 하며, 라목중 “수출지향형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하고, 동조 제3호가목중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을 ”미만인 사업으로 하며, 나목을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미만인 사업”으로 하고, 라목중 “수출지향형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한다.

제25조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하고, 동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1.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지평가액을 당해 건물의 바닥면적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이하 같다)을 산



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은 대부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한 평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text{대부를 받은자가 다른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에는 해당층의 총면적)} \times \frac{\text{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text{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에는 해당층의 총면적)}}$$

3.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층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 다. 지하층은 제4호를 적용한다.
4.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층이상의 건물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 라.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 마.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 바.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 사.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하에 단독으로 있는 건물등에 대하여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 다.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6.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이 특수한 사정으로 공용면적의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로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유예할 수”를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대부료 등의 사용)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대부료(사용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29조제1항중 “공유재산 재산관리관”을 “재산관리관”으로,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대부정리부”로 한다.

제31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 2(신탁의 종류) 영 제102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 관리신탁·부동산 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39조의2제1항중 “농업진흥구역안”을 “농업진흥지역안”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사용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할”을 “사용할”로 하며, 동조제5항제2호중 “위치하거나”를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 또는”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를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미달하는”으로 한다.

제39조의4제1항제4호중 “조성한 업종별 공장요지 또는 개별공장”을 “조성한”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중 “공장건설사업”을 “사업”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공장용지내”를 “사업장내”로 하고, 동조제4항제1호중 “외·투법 제9조”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로 하며, 동항제3호중 “공장용지내 재산”을 “사업장내 재산”으로 하고, 동항 제4호중 “수출지향형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감액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목적이 달성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매각재산을 담보로 근저당설정 등을 하거나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매각재산을 환수한다는 것을 영 제9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5조제1항중 “도·시·군”을 “당해 도의”로, “고려하여 시·군별로 청사신축계획서에 의거”를 “고려하여”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9조제1항중 “경찰관서, 농촌지도소 및 보건소 등의 관서”를 “유관 행정관서”로 한다.

제50조중 “공용주택과 동 목적을 위하여 소유하는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전세주택”을 “공용주택”으로 한다.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준용) 채권인 공용전세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중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을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등 예규를”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제5호·제6호·제2항제2호,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3조제2항·제6항 단서, 제9항, 제23조의 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대부료 산출기초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대부·사용중인 자로서 다음연도의 대부료·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8)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11월 9일
- 제안이유 : 유치원 원아의 취원기회 확대를 위하여 병설유치원을 신설하고, 농촌지역의 이농현상에 따른 학생감소지역의 소규모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통·폐합 및 분교장으로 개편하며, 춘천, 강릉택지개발사업지구내 새로 초등학교를 신설하고, 인구유입으로 과밀·과대학교의 분리를 위하여 춘천, 원주에 중학교를 신설과 고성군 거진지역 중·고의 학생수 감소로 남녀공학의 중·고별로 통합개편하여 학교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구 분	계	유 치 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 계	29	7	16	3	3
신 설	7	3	2	2	
통 · 폐 합	16	3	11	1	1
분교장 개편	3		3		
명 칭 변 경	3	1			2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 11월 13일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7일 제7차회의에서 김호준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서의승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이 있었으나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

- 통·폐합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은?
- 통·폐합학교 수목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 답변요지

- 충분히 하였음
- 카드화하여 관리하고 있음

- 본회의 심사 : 1999년 12월 24일 제6차본회의에서 안상현교육사회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9년 12월 24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2000년 1월 1일 강원도조례 제 2737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유치원 명칭과 위치란중 (춘천시)의 금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란 다음에 “당림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춘천시 서면 당림리 144”를 각각 삽입하고, (강릉시)의 한솔초등학교 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율곡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강릉시 교동2지구 택지개발지구내 5-18블럭”을 각



각 삽입하며, “왕산초등학교 고단분교장 병설유치원”란을 삭제하고, (양양군)의 “임호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인구초등학교 임호분교장 병설유치원”으로 하며, (영월군)의 녹전초등학교 병설유치원란 다음에 “구래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영월군 상동읍 구래리 102”를 각각 삽입하고, “내덕초등학교 병설유치원”란과 (화천군)의 “상승초등학교 노동분교장 병설유치원”란을 각각 삭제하며, 별표 2의 초등학교 명칭과 위치란중 (춘천시)의 우석초등학교란 다음에 “봄내초등학교”와 “춘천시 석사동 815”를 각각 삽입하고, (원주시)의 “귀운초등학교”를 “귀래초등학교 귀운분교장”으로 하며, (강릉시)의 초당초등학교란 다음에 “율곡초등학교”와 “강릉시 교동2지구 택지개발지구내 5-18블럭”을 각각 삽입하고, “신왕초등학교 퇴곡분교장”란을 삭제하며, “삼덕초등학교”란을 주문초등학교란 다음으로 하여 “삼덕초등학교”를 “주문초등학교 삼덕분교장”으로 하고, (양양군)의 “임호초등학교”를 “인구초등학교 임호분교장”으로 하며, (삼척시)의 “미로초등학교 활기분교장”란과 (횡성군)의 “청일초등학교 금평분교장”란을 각각 삭제하고, (영월군)의 “영월초등학교 흥월분교장”란, “내덕초등학교”란, “무릉초등학교 두산분교장”란, “무릉초등학교 운학분교장”란, “무릉초등학교 윤일분교장”란, “금릉초등학교”란, “도천초등학교”란과 (평창군)의 “용산초등학교”란을 각각 삭제하고, 별표 3의 중학교 명칭과 위치란중 (춘천시)의 남춘천여자중학교란 다음에 “우석여자중학교”와 “춘천시 석사동 723”을 각각 삽입하고, (원주시)의 평원중학교란 다음에 “남원주중학교”와 “원주시 단구동 1565-1”을 각각 삽입하며, (고성군)의 거진중학교 위치란중 “고성군 거진읍 거진11리 432”를 “고성군 거진읍 봉평리 31-1”로 하고, “거진여자중학교”란을 삭제하며, 별표 4의 고등학교 명칭과 위치란 중 “황지여자상업고등학교”를 “황지정보산업고등학교”로, “근덕농공고등학교”를 “삼척전자공업고등학교”로, “거진공업고등학교”를 “거진종합고등학교”로 하고, “거진여자상업고등학교”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11월 27일 강원도교육감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법률 제5647호, '99. 1. 21), 동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6267호,

’99. 4. 30) 개정 및 교육부 표준안(’99. 9. 10)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대금과 대부료의 감면, 납기연장 등을 정하고, 공유재산의 연간대부료, 사용요율등을 완화하여 주거건물, 학교급식, 폐지학교 지역주민의 이용시 대부 및 사용허가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은익재산 신고인에게 보상금 지급절차 간소화(안 제6조 제3항)
- 공유재산 심의는 재산관리관의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으로 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한 재산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7조 제4항 제6항)
- 재산증감 및 현황과약을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재산을 파악하도록 함(안 제10조)
-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의 범위를 정 함(안 제20조의 2, 제20조의 3)
-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내지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잔액은 연 4~8%의 이자 를 붙여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 대부 및 사용허가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실경작자, 생활보호대상자, 학교급식용 으로 사용하는 재산, 외국인 투자기업과 벤처기업이 직접 시설의 개발설치에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대부료, 사용요율을 정함(안 제23조 제2항, 제6항 내지 제9항)
- 연간 대부료, 사용료가 부동산 가계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근지역의 사용재산임대료에 비 해 현저한 차이로 조정이 필요하거나, 사용 희망자가 없어 2회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될 경우, 산출한 대부료, 사용료의 20%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 2 제2항)
-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허가하는 경우 대부료·사용료 감면율을 정함(안 제 23조의 3)
- 건물 대부료의 산출기준, 대부료 등의 납기·대부료 등의 사용 및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 요율규정을 보완함(안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 잡종재산을 생산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신탁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함(안 제31조의 2)
-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 및 폐천부지 등의 매각범위와 외국인 투자촉진 등 을 위하여 공유재산의 대상재산 및 감면범위를 정함(안 제35조의 2, 제35조의 3)
- 기타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고자 함(안 제6조 제1항, 제18조, 제23조 제1항 제 3항 제4항, 제24조 제4항, 제29조, 제44조, 제51조의 2, 제56조)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 11월 29일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7일 제7차회의에서 김호준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서의승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 후 수정하여 가결되었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와 같이 교육부의 표준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 지역주민 복지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은 25/1000로 조정하였는데 10/1000으로 하향조정할 의사는 없는지?

- 답변요지

- 검토보고 내용을 수용하겠음
- 폐지학교 재산유지관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부득이 25/1000로 조정하였으며 향후 특례법시행령이 제정·공포되면 대부요율을 검토하겠음.

[수정안의 요지]

- 수정이유 : 재산의 유지관리와 재원확보를 정확히 하기 위하여 교육부의 표준안대로 안 제27조를 수정하고자 함.

- 수정주요골자

- 안 제27조의 “대부료(사용료를 포함한다)”를 “대부료(사용료·변상금을 포함한다)”로 수정

- 본회의 심사 : 1999년 12월 24일 제6차본회의에서 안상현교육사회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없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9년 12월 27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2000년 1월 1일 강원도조례 제 2738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을 “부동산시가표준액”으로, “조정”을 “지급”으로 하고,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보상금은 신고자의 은의재산신고서 접수 후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결과에 의하여 신고인에게 지급하며 지급기한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제4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5항 제1호의 “6인”을 “6인이상 8인이하”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⑥ 제4항의 심의사항중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를 삭제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재산증감 및 현황파악) 재산총괄관리관은 법 제11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제14조제5호, 제6호 및 제17조, 제18조제2항, 제20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8조제1항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잡종재산의 현황파악) ① 재산관리관은 영 제80조제2항에 의한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20조의 2, 제20조의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 2(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88조제1항제10호, 제89조, 제90조제1항제2호, 제91조 제3항, 제92조의 2, 제95조 제2항 제27호, 제96조 제10항, 제100조제2항제5호·제4항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0조의3(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 등)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4의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을 공유재산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외국인 투자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6.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때
2.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지구안에 있는 토지중 도지사가 도지재개발법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한 때
3. 교육감이 소관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 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납부조건으로 하거나 분할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때, 이 경우 변경계약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분할 납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4. 영 제9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5.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 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② 영 제10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제35조의 2 제5항 제1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로 한다.

③ 영 제100조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

와 같다.

1. 영 제95조제2항제2호, 제6호, 제10호, 제11호 및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에 매각하는 때
3. 교육감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교육감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4.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때
5.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영 제10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원의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인구의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4.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때
5.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제23조 제목 “(대부료 및 사용요율)”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로 하며, 동조 제1항중 “연간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을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 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23조제3항중 “영 제9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목축, 광업, 채석”을 “목축, 광업, 채석”으로 하며, 동조 제4항중 “영 제9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를 “다음 각호”로 한다.

제23조제5항을 삭제하고, 동조에 제6항 내지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로 한다. 다만,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경우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 ⑦ 다음 재산에 대한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
 1. 교육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학교의 학교급식용으로 사용되는 재산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
 2. 교육감이 교육행정목적, 교육지원사업 및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되는 재산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
 3. 재산관리관이 위탁하는 사무의 수행에 필요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사용되는 재산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
 4. 폐지학교의 지역 주민들이 공동의 소득증대사업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용되는 재산은 당해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25이상
- ⑧ 영 제8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며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 ⑨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23조의 2 본문중 “(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 이조에서 이하 같다)”를 “(사용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동조에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대부료가 부동산 가격의 급변한 변동으로 인근지역의 사유재산 임대료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나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희망자가 없어 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대부료의 20퍼센트 범위안에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이를 가감 조정 할 수 있다.
- ③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적용 받는자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여 대부료를 감액 조정할 수 없다.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대부로 또는 사용료의 감면) 영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 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대부로 또는 사용료의 감면을 해당하는 사업

1. 전액 감면을 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 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 수반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1000만달러 이상의 사업
- 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 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외국인 투자사업
- 마.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 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2. 75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 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미만으로 수출하는 사업
-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 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3. 50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 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 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으로 수출하는 사업



-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 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 사. 제20조의3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단지내 또는 아파트형 공장 내의 공유재산
- 제24조제4항중 “인근의 매매 실례조서, 사정정통단체, 조합”을 “감정평가기고나의 감정평가서, 관련 단체 및 조합”으로 한다.

제25조, 제26조, 제27 및 제2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부지평가액은 당해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2.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은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한 평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text{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해당층의 총면적)} \times \frac{\text{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text{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해당층의 총면적)}}$$

3.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층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 평가액으로 한다.
 -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 다. 지하층은 제4호 마목 내지 사목을 적용한다.
4.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층 이상의 건물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 마.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 바.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 사.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 5. 지하는 단독으로 있는 건물 등에 대하여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 6. 재산관리관이 대부 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공용면적의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 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 허가 기간이 1년 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 되는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아프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대부료 등의 사용)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대부료(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28조(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15퍼센트로 한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2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 조건을 달리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이 천재·지변, 기타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



제29조 제목“(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의 비치)”를 “(대부정리부 비치)”로 하고, 동조 제1항중 “공유 재산 재산관리관”을 “재산관리관”으로,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대부정리부”로 한다.

제31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 2(신탁의 종류) 영 제10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신탁업감독규정 제12조에 의한 부동산 관리신탁·부동산 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 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35조를 삭제하고, 제35조의 2, 제35조의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 2(수익계약 매각범위 등) ① 영 제95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를 10,000제곱미터 이하까지 매각하는 때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5년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실경 작종인 농지로서 당해 경작인에게 매각하는 때로 한다.

③ 영 제95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시의 동지역은 3,300제곱미터 이하, 시·군의 읍·면지역은 6,600제곱미터 이하까지 그 점유자(하천법 제25조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양여 이후 계속 대부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매각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이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위 매각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도시계획상 도로·공공주차장·공원 등의 공공시설 용지가 아닌 재산(쟁래 공공시설 용지로 예정되어 있거나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매입자가 향후 10년간 매각목적으로 사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
2.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매각하는 경우
3. 폐천부지 안에 농경지가 있는 경우, 다만 매각면적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 제95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영 제95조제2항제25호에 의한 수익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토지(특별시 및 광역시 동지역에서는 2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 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7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

게 매각할 때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 또는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 소유자나 산업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한다.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예관한특별조치법에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미달하는 동 잔여면적도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안에서 매각할 수 있다.

제35조의 3(매각대금의 감면) ① 영 제96조의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 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동법 제38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 산업단지내의 재산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
3. 도지사가 대규모 외국인투자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재산
4. 도지사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② 지방산업단지 등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성원가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전액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개발·조성하는 투자장려지역내의 재산
2.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억달러 이상인 대형사업 및 동 부대시설 내의 재산



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사업장내의 재산

④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50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경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 수반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사업장내의 재산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사업장내의 재산
3. 외국인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사업장내의 재산
4.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장내의 재산
5.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 조달비율이 70 퍼센트 이상인 외국인 사업장내의 재산

⑤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25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한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즈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장내의 재산
2. 외국인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 500명 미만인 사업장내의 재산
3.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사업장내의 재산
4.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체의 사업장내의 재산

⑥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감액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매각재산을 담보로 근저당설정등을 하거나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매각재산을 환수한다는 것을 영 제95조의 2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4조중 “본청 및 관서의 장 또는 간부직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된 공용주택(공용전세주택포함)과 그 부대시설”을 “교육감, 부교육감 및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공용전세주택 포함)”으로 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사용료의 면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소속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준용) 채권이 공용전세주택에 대하여는 제44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6조중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 및 질의회신·지침·편람 등 예규”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2조 제1항 제4호·제5호, 제2항,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3조 제2항·제6항단서·제9항, 제23조의 2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대부료 산출기초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 대부·사용종인자로서 다음연도의 대부료·사용료를 다음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10) 강원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11월 30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연안관리법에 제정('99. 8. 9시행)되면서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개발을 위한 지역계획의 수립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에 지역연안관리심의회를 두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심의회 위원을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안 제2조)
 - 위 원 장 : 해양수산출장소장
 - 부위원장 : 연안관리과장
 -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심의회의 기능은 지역연안관리계획의 수립·변경, 기타 연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함(안 제4조)
-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심의회는 필요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심의회 회의, 회의록 작성, 간사, 수당과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제9조·제10조 및 제11조)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 12월 1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6일 제6차회의에서 김돈기해양수산출장소장의 제안설명과 김용기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1999년 12월 24일 제6차본회의에서 엄문섭산업경제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9년 12월 27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2000년 1월 17일 강원도조례 제 2748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안관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양수산출장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연안관리과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정책과장, 관광기획과장, 지역계획과장, 해양수산정책과장, 수산개발

과장, 어업지원과장이 되며, 위촉 위원은 연안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 ④ 제3항 규정에 따라 위원은 위촉할 때에는 여성위원을 3명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위촉위원 기준에 적합한 여성이 없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연안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 ②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회의록) 간사는 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 ② 간사는 연안관리담당이 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심의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원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1) 강원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12월 7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이 개정(99. 5. 24시행)되면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조례에 중복규정됨에 따라 존치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 12월 8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8일 제8차회의에서 김옥수 농정산림국장의 제안설명과 김용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1999년 12월 24일 제6차본회의에서 엄문섭산업경제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9년 12월 27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2000년 1월 17일 강원도조례 제 2747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강원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강원도조례 제2405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2) 강원도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12월 3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관광사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관광사업체의 경영안정도모와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운용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용자제외 대상규정을 완화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용자제외 대상으로 되어 있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지원 대상인 관광사업자”와 “최근 2년내에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벌금, 사업정지(과징금), 과태료 처분을 받은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용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 12월 4일 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7일 제7차회의에서 방재흥 관광문화국장의 제안설명과 신동철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수정하여 가결되었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

- 본 조례안은 개정하게 된 이유는?
- 조례안 제5조제7호 “최근 2년이내에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벌금, 사업정지(과징금), 과태료 처분을 받은 관광사업자를, 최근 2년내에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처분을 받은 관광사업자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의견은?

- 답변요지

- 본 조례는 지난 제101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7월 15일 강원도조례 제2719호로 공포되어 시행하였으나 도내의 관광사업체의 자금신청 및 대상규정이 강화되어있어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은 업체가 없었으므로 조례운영의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여 관광사업체에 대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임.
- 7호 내용은 용자대상 제외규정을 정한 것으로 삭제·개정하려고 하였으나 벌금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업에는 용자대상 제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수정안의 요지]



- 수정이유 : 관광사업자의 응자대상 제외규정을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제5조제5호 “삭제”를 “최근 2년 이내에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처분을 받은 관광사업자”로 내용을 변경하고 자 함.
- 수정주요골자
 - 안 제5조제7호 “삭제”를 (현행대로 두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최근 2년 이내에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관광사업자
 - 본회의 심사 : 1999년 12월 24일 제6차본회의에서 김길정 관광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없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1999년 12월 27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2000년 1월 17일 강원도조례 제 2746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지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5조 제7호중 “벌금, 사업정지(과징금), 과태료”를 “벌금 이상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同議案

1) 2000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12월 4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본 안건은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복지향상 및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95년 7월 1일부터 발행하고 있는 전국자치복권의 2000년도 발행계획을 지방재정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 주요골자
 - 발행기관 :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1특별시, 6광역시, 9도 공동발행)
 - 판매지역 : 전국
 - 발행형식 : 즉석식
 - 발행규모 : 210억원(즉석식)
 - 판매목표 : 158억원(판매율 75%)
 - 예상수익 : 35억원(판매액의 22%)
 - 발행기간 : 2000년 2월 ~ 2000년 12월
 - 발행조건
 - 1등 당첨금 : 5,000만원(연식 1억원)
 - 당첨금 지급한도 : 회차별 발행액의 51.5%
 - 발행주기 : 2개월
 - 액면금액 : 500원/1매당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 12월 6일 내부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8일 제8차회의에서 조명수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최종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 뒤 12월 23일 제 10차회의를 속개,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1999년 12월 24일 제6차본회의에서 조규병내무위원회간사의 심사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동의안은 1999년 12월 27일 원안대로 가결되어 강원도지사에게 송부되었다.



[의결전문]

2000년도 전국자치복권 발행계획(안)

2000년도 전국자치복권을 다음과 같이 발행할 것을 지방재정법 제11조의 2 규정에 의거 의결한다.

1. 발행기관 :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1특별시, 6광역시, 9도 공동발행)
2. 복권종류 : 전국자치복권
3. 발행규모 : 210억원(즉석식)
4. 발행형식 : 즉석식

· 회차별 발행계획

회 차 별	발 행 액		판 매 기 간
	금 액(억 원)	매 수(만 매)	
계	210	4,200	
제 40 회	30	600	2000. 2 ~ 2000. 6
제 41 회	30	600	2000. 4 ~ 2000. 8
제 42 회	35	700	2000. 6 ~ 2000. 10
제 43 회	35	700	2000. 8 ~ 2000. 12
제 44 회	40	800	2000. 10 ~ 2001. 2
제 45 회	40	800	2001. 12 ~ 2001. 4

5. 수익금 조성 및 수익금 배분

· 수익금 조성(예상) : 35억원

(단 위 : 백 만 원)

당첨금지급	발행비용				수익금	판매액
	소계	판매수수료	제조배송비	기타발행비		
7,560 (48.0%)	4,725 (30.0%)	2,048 (13.0%)	1,302 (8.3%)	1,375 (8.7%)	3,465 (22.0%)	15,750 (100%)

※ 발행액 210억원 중 75%판매시 소요예상액임

· 수익금 배분 : 협의회 규약에 의거 배분(복권판매액, 시군군수, 인구수등 고려)

2)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12월 6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금회에 제출하는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2000년도 변경 계획으로서 급증하는 소방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중형 소방헬기를 신규로 구입하는 사항과 기존 보유 소형 소방헬기를 매각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금회 제출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천 원)

구 분	건 명	건 수	수 량	금 액
취 득	계	1대	1대(14인승)	7,300,000
	중형 소방헬기 구입	1대	1대(14인승)	7,300,000
매 각	계	1대	1대(10인승)	1,500,000
	소형 소방헬기 매각	1대	1대(10인승)	1,500,000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 12월 6일 내부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2일 제9차회의에서 최현영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최종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1999년 12월 24일 제6차본회의에서 조규병 내부위원회 간사의 심사 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동의안은 1999년 12월 27일 원안대로 가결되어 강원도지사에게 송부되었다.

[의결전문]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안)



강원도가 제출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

(단위 : 천원)

구 분	건 명	건 수	수 량	금 액
취 득	계	1대(14인승)		7,300,000
	중형 소방헬기 구입	1대(14인승)		7,300,000
매 각	계	1대(10인승)		1,500,000
	소형 소방헬기 매 각	1대(10인승)		1,500,000

3) 해 난 사 고 피 해 자 취 득 세 면 제 동 의 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12월 16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해난사고 피해자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세법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 민원임.
- 주요골자 : 해난사고로 인하여 선박이 실종되는 피해를 입은 자(동해시 묵호동 77-3 김응산)에게 실종전 선박의 기관변경에 따라 부과한 취득세 및 가산금 면제함.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 12월 16일 내부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2일 제9차회의에서 최현영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최종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1999년 12월 24일 제6차본회의에서 조규병내무위원회 간사의 심사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동의안은 1999년 12월 27일 원안대로 가결되어 강원도지사에게 송부되었다.

[의결전문]

해 난 사 고 피 해 자 취 득 세 면 제 동 의 (안)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해난사고 피해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세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1. 면제대상자 : 김응산(동해시 묵호동 77-3)
2. 면제내용 :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선박의 기관 변경에 따라 증가한 가액에 대하여 부과한 취득세(가산세 포함) 및 가산금
3. 면제세액 : 전액 (1,463,150원)
 - 취득세 1,189,620원, 가산금 273,530원('99. 12월말 현재)

다. 建議案

1)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항소부설치에 관한건의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12월 4일 정인수의원의 14인
- 제안이유 : 강원도 영동지역의 경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항소부가 없음을 물론, 관할 고등법원과의 거리가 멀어 시간 및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으며 또한 이런 열악한 법률서비스 여건으로 인하여 각종 사건중 항소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나아가 항소포기까지 이어지는 실정으로, 영동지역 주민들의 법의 보호에 심각한 문제점을 들어내고 있어, 주민들의 법률서비스향상과 공평한 법률 혜택을 위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항소부를 설치하여 줄 것을 건의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강원도는 대관령을 사이에 두고 강릉을 중심으로한 영동과 춘천을 중심으로한 영서로 구분되어 있는바 현재 영동지역 법원(강릉지원, 속초지원)에 항소부가 없어 1심재판 결과에 불복항소하려면 단독재판부 사건은 춘천지방법원, 합의재판부 사건은 서울고등법원까



- 지 가야하기 때문에 시간 및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당사자들의 항소포기 사례가 속출하여 영동지역 주민들의 법익보호에 심각한 문제점을 들어내고 있음.
- 거리가 멀어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없는 곳은 전국에서 영동지역이 유일하며, 따라서 국내도시중 법률서비스의 최고 변방이라는 무대 정서가 널리 확산, 현재 고등법원이 없는 지역은 강원도를 비롯하여 충북, 전북, 경북등 4개지역으로 강원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인근의 대전, 광주, 대구고법과 1~2시간 거리에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기에 별 어려움이 없지만 영동지역 주민은 서울고법까지 가야하기 때문에 하루전에 미리가서 숙박을 한 다음 재판을 받을 수 밖에 없어 부담이 배로 늘어남.
 - 이런 열악한 법률서비스 여건은 항소포기로 이어지고 있는데 춘천지법 강릉지원의 경우 '98년도에 접수를 기준으로 민사사건 1만 141건, 형사사건 1천 801건으로 이중 항소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낮은 실정임.
 - 이처럼 열악한 법률서비스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영동지역 주민들의 법률서비스향상과 공평한 법률수혜를 위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항소부를 설치하여 줄 것을 200만 강원도민의 의사를 결집하여 강력히 건의함.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 12월 6일 내부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7일 제7차회의에서 정인수의원의 제안설명과 최종춘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1999년 12월 24일 제6차본회의에서 조규병내무위원 간사의 심사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건의안은 1999년 12월 27일 원안대로 가결된 후 법원행정처에 송부되어 추진중임.

[의결전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항소부설치에관한건의문

강원도는 지리적인 지역특성상 강을 중심으로한 영동과 춘천을 중심으로한 영서를 구분되고 있음

니다.

현재 영동지역 법원의 1심재판 결과에 불복 항소하려면 소액이나 단독재판부 사건은 춘천지방법원, 합의재판부 사건은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야하기 때문에 시간 및 비용이 과다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항소부가 없어 사건 당사자들의 항소포기사례가 속출 영동주민들의 법익보호에 심각한 문제점을 들이내고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 항소심 재판을 효율적으로 받을 수 없는 곳은 전국에서 영동지역이 유일하며, 따라서 영동지역은 국내 도시중 법률서비스의 최고 변방이라는 자조섞인 무대접 정서가 널리 확산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현재 전국 법원지법과 지원중 관할 고등법원과 가장 거리가 먼 곳은 춘천지법 강릉지원과 속초지원이 있습니다.

영동지역 이들 두법원의 1심 재판결과에 불복항소를 내려면 소액이나 단독재판부 사건은 춘천지법, 합의재판부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시간이나 비용부담이 큰 실정입니다.

현재 고등법원이 없는 곳은 강원도를 비롯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등 4개 지역으로 강원도를 뺀 나머지는 인근의 대전, 광주, 대구고법과 1~2시간 거리에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기에 별 어려움이 없지만, 영동지역 주민은 항소법원인 서울고법까지 가서, 오전 재판이라도 걸리는 날엔 하루전에 미리가서 숙박을 한 다음 재판을 받을 수 밖에 없어 부담이 배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사건 당사자들의 경우, 특히 항소심의 경우 1심 재판때 선임한 변호사외에 항소법원에 활동기반을 둔 일반적이어서 소송비용의 이중부담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구속사건은 사정이 더해 항소를 내면 피고인의 신병이 항소법원이 있는 춘천이나 안양교도소로 이감돼 가족들의 면회조차 용이하지 않습니다.

이런 열악한 법률서비스 여건은 항소포기로 이어지고 있는데 춘천지법 강릉지원의 경우 '98년 1년동안 연간 민사사건은 접수를 기준으로 1만141건, 형사사건은 1천801건으로 이들 사건중 항소율은 민사 234건(2.3%), 형사104건(5.7%)로 10%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턱없이 낮은 실정입니다.

이처럼 영동지역의 열악한 법률서비스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이기에, 영동지역 주민들의 법률서비스 향상과 공평한 법률 수혜를 위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항소부를 설치하여 줄 것을 대법원에 200만 강원도민의 의사를 결집하여 강력 건의를 하오니 관철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2) 국립태백식물종자은행설립건의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11월 29일 박금용의원외 10인
- 제안이유 : 한국 고유토종의 종자 및 종묘보전 필요성이 절실하나 현재 농촌진흥청 종자관리소 종자은행은 농작물 위주의 유전자원만을 보관하고 있고, 여타 공·사립수목원 및 식물원 등은 일부 초목을 심어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에 있으므로, 21세기 유전자원의 참여한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자생하는 초본, 목본류 자원의 번식수단이 되는 종자, 식물 영양체 등을 총괄적으로 수집, 보존, 관리할 수 있는 국립종자은행을 자생식물자원이 국내에서 가장 풍부한 태백지역에 설립하여 앞으로 가입예정인 국제신제품보호연맹(UPOV)에서 우리나라의 식물유전자원 보존 활용 개발사업이 선진국 대열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우리나라에서는 고유종 8,529종, 외래종 749종 등 총 9,278종의 식물이 자라고 있으며 그 중 자연환경보전법 적용을 받은 보호식물은 멸종위기 야생식물 한탄 등 6종, 보호야생식물인 산작약 등 52종 등 58종에 불과해 자연식생훼손과 외래종의 증가로 한국 고유종의 종자보전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으로, 태백지역은 백두대간의 중추로서 한강, 낙동강, 오십천의 발원지이며, 민족의 영산이 태백산 정상의 천제단과 우리나라 100대 명수인 용정수 등 자연조건이 풍부해 환경부가 지난 '93년도에 고시한 자연생태계보전지역으로서 희귀동·식물의 서식지로 천혜의 자연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화석 군락지와 영동·중앙고속도로와 동해안을 종단하는 7번국도, 횡단하는 38번국도, 영동·중앙·태백선 등 철도가 연결되어 있어 접근망이 용이한 장점을 갖고 있으며, 또한 태백지역은 여름철 평균기온이 19.2℃로서 서늘한 고원기후로 식물종자보전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강수량 또한 식물이 자라는데는 최적의 자연적 요건을 갖추고 있어, 종자은행을 설립, 관리, 보존하는데는 유리한 지역이므로, 다양한 생태계를 보전하고 소멸위기에 있는 재래토종 및 국내외 유전자원의 탐색, 수집, 확보, 평가, 안전보전 연구로 지구상에서 사라져 가는 식물의 보존과 증식·식물유전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고원의 휴양도시 태백지역에 반드시 식물종자은행이 설립될 수 있도록 200만 도민을 대신하여 강원도의회 의원 전원의 뜻을 모아 건의하려는 것임.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 11월 30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8일 제8차회의에서 박

금융위원의 제안설명과 김용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1999년 12월 24일 제6차본회의에서 염문섭 산업경제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건의안은 1999년 12월 27일 원안대로 가결된 후 과학기술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에 송부하였으나 불가통보.

[의결전문]

국립태백식물종자은행설립건의문

우리나라에서는 고유종 8,529종, 외래종 749종 등 총 9,278종의 식물이 자라고 있으며, 그 중 자연환경보전법 적용을 받은 보호식물은 멸종위기 야생식물 한란 등 6종, 보호야생식물인 산작약 등 52종등 58종에 불과해 자연식생훼손과 외래종의 증가로 한국 고유종의 종자보전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85~'89년까지 5년간 미국의 식물학자 베리잉거 박사는 미국의 우수 식물학자들과 함께 서해 백령도에서부터 동해는 울릉도와 설악·오대·태백·지리산 등 남해 무인도까지 모두 답사하고 우리의 식물자원을 남획해서 미대사관을 통해 미국으로 반출한 사실을 정부는 늦게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산하 식물의 우수함을 감지한 베리잉거 박사는 동양 식물학에서 한국 식물학을 전공하게 된 것만으로도 한국의 식물의 우수성을 대변하여 그 예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합과 카네이션이 우리의 꽃 나리와 패랭이가 원종으로 네덜란드가 개량하여 세계에 보급한 사실은 우리 식물학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정원수로 최고의 가격으로 최고 인기인 미스킵 라일락은 1947년 미국인이 북한 산 백운대에서 「털개 회나무」 씨앗 12개를 채집해서 발아시켜 개량해 세계에 보급했으며, 우리 한국으로도 최고 정원수로 역수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세계가 곡물은 물론이요 식물자원 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저소득 국가의 약용·약초식물종들을 확보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채집활동에 나서고 있는바, 우리나라의 우수식물을 비롯한 잡초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곡과류를 비롯한 모든 식물의 종자를 확보 보관하고 연구할



수 있는 가칭 “국립태백식물종자은행”을 설립, 우리의 고유종을 연구·보존하여 우리 후세에 전수해야 할 것입니다.

태백지역은 백두대간의 중추로서 한강, 낙동강, 오십천의 발원지이며, 민족의 영산인 태백산 정상 천제단과 우리나라 100대명수인용정수 등 자연조건이 풍부해 환경부가 지난 '93년도에 고시한 자연생태계보전지역으로서 희귀동·식물의 서식지로 천혜의 자연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화석 군락지와 국내 유일의 보존 에너지원인 석탄의 주산지인 한때에는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고, 특히 영동·중앙고속도로와 동해안 종단하는 7번국도, 횡단하는 38번국도, 영동·중앙·태백선 등 철도가 연결되어 있어 접근망이 용이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금수강산이라고 불려지고 있지만, 개발과 산업화의 영향으로 국토는 황폐화되고 지구상에 자라고 있는 식물 또한 하나 둘 자취를 감추고 일부 식물들은 식물도감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등 매우 절박한 시점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사라진 식물은 다시 살릴 수 없어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서도 식물종자은행은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자연식생이 우수한 태백지역에 설립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태백지역은 여름철 평균 기온이 19.2℃로서 서늘한 고원기후로 식물종자보전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고, 강수량 또한 연평균 987mm, 평균 습도 64%로서 식물이 자라는데는 최적의 자연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또한 '99년 6월 준공된 강원도는 고원농업시험장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기존 연구 시설 등을 연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되었고, 한계령풍, 가시오갈피, 삼백초 등 희귀식물이 식생활 정도로 녹지등급이 8등급으로서 자연생태계의 보고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산작약, 산당귀, 황귀, 천궁 등 600여종의 약초가 자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생태문화관광개발, 공원휴양도시 등의 잠재력이 무한하여 종자은행을 설립, 관리, 보존하는데는 유리한 지역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유전자원 보존연구는 미국, 소련, 중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하여 역사도 짧고 보유점수도 적은 실정이며, 유전자원 보존 국가기관으로 농작물 종자의 경우는 농촌진흥청 종자관리소내 유전자원과에서 운영하는 「종자은행」이 1975년부터 준비를 시작하여 1991년도에 정식으로 발족하였습니다.

시설규모 4℃ 단기저장 시설에 22만5천점, -18℃장기저장시설에 22만5천점 등 45만점 보관이 가능한데 현재 25년동안이 경과되면서 20과, 60속, 150종 15만점을 국내외로부터 수집하여 2년마다 한번씩 자원의 평가와 장·단기 보존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목의 경우 1967년에 서울대학교 관악수목원이 1,510ha에 1,700여종, 1983년에 임업연구원 광릉수목원이 500ha에 2,844종, 홍릉수목원에 1,722종이 보존되고 있으며, 사설수목으로서 1979년 천리

포수목원에 60ha 7,200종. 한택식물원에서는 초본류 36ha에 900여종. 용인자연농원 987종. 제주도 여미지식물원에 2,030종이 보존되고 있습니다.

또한, 1985년도부터 서울대공원에 1,088종. 전국각도지방자치단체 산하에 6,000여종이 집중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생태계를 보전하고 소멸위기에 있는 재래토종 및 국내의 유전자원의 탐색, 수집, 확보, 평가, 안전보전 연구로 지구상에서 사라져 가는 식물의 보존과 증식·식물유전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고원의 휴양도시 태백지역에 반드시 식물종자은행이 설립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 드리는 것입니다.

3) 주길림성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운영지원에관한건의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12월 18일 산업경제위원장
- 제안이유 : 「주길림성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는 길림성과 강원도뿐만 아니라 한·중양국 간 우호협력을 증진하고 투자무역의 상담 및 교역증대 활동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촉진과 함께 현지에서 한국의 기업체 및 교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줌으로써 국가가 해야 할 역할까지 다하고 있음. 따라서 앞으로 우리의 인접 국가이며 주요한 시장개척의 대상인 중국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경제교역활동이 더욱 활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해외사무소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을 건의하려는 것임.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1999년 12월 18일 제8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정인수 의원의 제안설명 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1999년 12월 24일 제6차본회의에서 엄문섭산업경제위원장의 제안설명 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건의안은 1999년 12월 27일 원안대로 가결된 후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에 송부되었으나 불기통보.



[의결전문]

「주길림성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 운영지원에 관한건의안

강원도는 '94. 6. 8 중국 길림성과 「우의증진 및 교류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95. 3. 9 양 도·성간의 행정·문화·경제 등 여러분야에서 폭넓은 교류의 추진과 나아가 한·중 양국간의 관계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길림성 장춘시에 「주길림성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본 사무소는 그동안 투자무역상담 633건 59,689천불, 수출계약 57건 3,699천불을 추진하였고, 양 도·성 및 대중국 협조사항 691건을 처리하였으며, 본 사무소를 통하여 길림성에 투자한 기업체는 9개업체에 4,600천불, 분규해결을 호소한 기업이 7개 업체, 수출입 알선 8건 1,710천불, 기타 IMF 이후 한국 유학생들의 학비감면 해결, 제1회 장춘한국인체육대회 협조 등 대중국과의 교류 및 경제 교역 증진과 교민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내방객들에게 한국상품의 홍보 및 대중국 시장정보와 관련한 자료발간·제공으로 한국투자자들의 중국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본 사무소는 강원도 뿐만 아니라 타 시·도민의 각종 고충사항 해결 및 교류확대와 투자상담 그리고 교역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강원도 사무소로서의 역할과 함께 대한민국 사무소로서의 역할까지 다하고 있으며, 연간 사무소(전시관)임차료 및 운영비 등으로 160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우호협정을 맺고 있는 길림성은 면적이 18.74만km², 인구는 2,600만명이며, 조선족이 118만명이 거주하고 있고 유일한 조선족 자치주인 연변 조선족자치주와 장백현 조선족자치현이 있어 한국인이 왕래하고 있습니다.

'99. 6. 30 현재 길림성에 투자한 한국기업은 930개이며, 기업체수는 홍콩다음으로 2위, 투자금액은 홍콩, 독일 다음으로 3위이며, '99상반기에 투자한 기업은 79개로서 투자기업수 및 금액면에서 최초로 홍콩을 앞질러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해외사무소는 항상 개방되어 自道民뿐만 아니라 他道民과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밖에 없어 각종 고충 또는 무역상담 요청이 많고, 사소한 문제는 멀리 북경에 있는 대사관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현지에 있는 자치단체사무소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대사관과 지방자치단체 해외사무소의 차이점은 대사관은 외교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직접적으로 민원인과 접촉하기 보다는 간접적인 접촉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교민의 애로를 피부로 접하기 어려우나 지방자치단체 해외사무소는 교민과 직접 접촉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므로 중국시장 개척의 첨병으로 활약할 수 있습니다.

중국지역의 특성은 960만km²의 넓은 면적과 13억의 인구 및 지역별 상이한 특성, 정보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대사관이나 수개의 영사관으로는 교민에 대한 직접보호가 어렵고 대중국 시장개척은 더욱 힘들것이며, 세계 200여개 국가중에서 인구 3,000만명이 넘는 국가는 불과 33개국이나 중국은 20개 지방정부가 있으며, 인구가 제일 많은 하남성의 경우는 9,200만명이 넘습니다.

이와같이 넓은 국토면적과 상이한 지역특성을 갖고 있는 중국을 1개의 대사관과 5개의 영사관으로 교민을 보호하고, 국익증진을 위한 대중국 진출확대를 도모하겠다는 것은 무리이며, 중국의 WTO가입과 함께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하여 중국과의 교류는 더욱더 확대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과의 우호협력 증진과 효율적인 중국시장 개척 및 투자기업의 보호를 위하여는 한·중 양국의 지방자치단체간 긴밀한 협조관계를 통하여 공동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해외사무소의 운영비를 국고로 지원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전하고 국가발전을 위한 역할을 다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장차 전개될 중국과의 관계를 전망해 볼 때, 중국의 WTO가입 이후, 한국 경제 뿐만 아니라 강원도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제품은 중국제품과 더불어 격렬히 충돌할 전망이 우세하다는 현실에 우린 주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에서의 대중국관, 대중국 경제외교 및 교류에 있어 근본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향후 강원도에서는 주길림성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를 현재의 위치에서 활발한 교역을 위해 이전할 계획이며, 사정이 허락하면 중국 길림성 정부의 협조를 전제로 무상으로 토지를 임대받아 건물을 신축할 계획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강원도에서 파견 공무원수를 늘리고 현지 조선족 고용인들을 늘릴 계획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많은 예산이 소요될 형편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강원도의 경우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요구는 불가피하다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이해가 있으셔야 하겠습니다.

현재의 주길림성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는 단순히 강원도 이익만을 위해 존재하는 사무소가 아니라 타 시도의 이익은 물론, 나아가 우리나라의 국익에도 관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에서 건축비를 포함한 매년 운영비 지원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200만 도민을 대신하여 강원도의회 명의로 건의하기에 이르렀으니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촉구하는 바입니다.



第 16 節 第107會 臨時會

1. 概 況

가. 開 會

제107회 강원도의회임시회는 제106회 강원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2000년 2월 2일 이훈의원외 1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자로 의장이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10일간의 회기로 2000년 2월 10일 개회하여 2월 19일 폐회되었다.

나. 議事日程

1) 本會議

가) 제1차 본회의 : 2000년 2월 10일(목)

- 제107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 도지사및교육감신년인사
- 강원도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
- 강원도의회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 신상발언(황영철의원) 의견
- 위원장사임의건

나) 제2차 본회의 : 2000년 2월 12일(토)

- 신상발언 (안상현의원) 의견
- 의원사직 (안상현, 황영철의원) 의견
- 위원장선임의견

다) 제3차 본회의 : 2000년 2월 19일(토)

- 강원도지방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조례안
- 강원도지방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조례안
- 강원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개발공사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지방공사강원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농업기계교관의근무조건개선건의안
- 강원도장애인복지대상조례안
- 강원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 고성군건봉사복원·증창에관한건의안
- 강원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견
- 의회운영위원회사임및선임의견

2) 議會運營委員會

가) 제1차회의 : 2000년 2월 14일(월)

- 제108회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협의의견
- 2000년도업무보고(의회사무처)



3) 內務委員會

가) 제1차회의 : 2000년 2월 11일(금)

- 2000년도업무보고(소방본부)

나) 제2차회의 : 2000년 2월 14일(월)

- 의사일정변경의건
- 위원회간사해임의건
- 위원회간사선임의건
- 위원회의석재배정의건
- 2000년도업무보고(공무원교육원)
- 강원도지방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조례안

다) 제3차회의 : 2000년 2월 15일(화)

- 의사일정변경안
- 농업기계교관의근무조건개선건의안
- 2000년도업무보고(자치지원국)

라) 제4차회의 : 2000년 2월 16일(수)

- 의사일정변경안
- 강원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2000년도업무보고(감사관실)

마) 제5차회의 : 2000년 2월 17일(목)

- 2000년도업무보고(기획관리실)

- 강원도지방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조례안
- 지방공사강원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개발공사설치및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바) 제6차회의 : 2000년 2월 18일(금)

- 2000년도업무보고(공보관실)

4) 教育社會委員會

가) 제1차회의 : 2000년 2월 11일(금)

- 의사일정결정의건
- 강원도장애인복지대상조례안
- 2000년도업무보고(환경복지국)

나) 제2차회의 : 2000년 2월 14일(월)

- 강원도사립대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 제3차회의 : 2000년 2월 15일(화)

- 2000년도업무보고(강원도교육청)

라) 제4차회의 : 2000년 2월 16일(수)

- 2000년도업무보고(여성정책실)

마) 제5차회의 : 2000년 2월 17일(목)

- 2000년도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바) 제6차회의 : 2000년 2월 18일(금)



- 2000년도업무보고 (강원전문대학교)

5) 産業經濟委員會

가) 제1차회의 : 2000년 2월 11일(금)

- 의사일정결정의건
-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나) 제2차회의 : 2000년 2월 14일(월)

- 2000년도업무보고 (국제협력실)

다) 제3차회의 : 2000년 2월 15일(화)

- 2000년도업무보고 (산업경제국)

라) 제4차회의 : 2000년 2월 16일(수)

- 2000년도업무보고 (농업기술원)

마) 제5차회의 : 2000년 2월 17일(목)

- 2000년도업무보고 (농정산림국)

바) 제6차회의 : 2000년 2월 18일(금)

- 2000년도업무보고 (해양수산출장소)

6) 觀光建設委員會

가) 제1차회의 : 2000년 2월 11일(금)

- 의사일정결정의건

나) 제2차회의 : 2000년 2월 16일(수)

- 강원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다) 제3차회의 : 2000년 2월 17일(목)

- 고성군건봉사복원·증창에관한건의안
- 2000년도업무보고(관광문화국)

라) 제4차회의 : 2000년 2월 18일(금)

- 2000년도업무보고(건설도시국)

다. 議會活動

1) 本義會

가) 도지사및교육감신년인사 : 제1차본회의

- 김진선도지사 : 21세기 새천년의 원년인 올해의 도정을 르네상스의 화도로 시작하였는데 「밀레니엄르네상스운동」이야말로 우리 도정이 지향하는 모든 꿈과 희망을 담은 그릇이라고 전제하고 개인적으로는 다가올 백년 새로운 천년의 안목으로 한해를 보는 통찰력, 지역발전에 대한 무한한 집념과 애정, 시련에 편승하지 않는 깨끗한 자세, 원칙을 포기하지 않고 사심에 얽매이지 않는 봉사정신으로 도민의 뜻을 받드는 도정·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도정을 위해 신명을 바치겠다고 하였다.
- 김병두교육감 : 초·중·고등학교 교육의 21세기적 역할은 전문인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자질을 갖춘 민주시민을 기르는 것이라면서 우리 강원교육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교육적 변화에 부응하면서 도덕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미래사회의 인재육성이라는 강원교육의 지표를 구현하기 위하여 바른인성함양을 위한 덕성교육, 다양성과 경쟁력을 갖춘 창의성교육, 21세기를 주도할 열린인간교육, 학교의 자율성제고를 위한 지원행정등 네가지 중점시책을 기초로 삼아 2000년 강원교육의 중흥을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하였다.



나) 신상발언 : 제1차 본회의

- 황영철의원 : 이번 4월 13일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정들었던 의원님등과 이 의정단상을 떠나고자 한다면 10년의 지방의원으로서의 배움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에 지방의 논리를 전달하는 풀뿌리일꾼이 되어보겠다고 말하고 작금의 현실정치에 실망하고 좌절하는 국민들에게 작은 힘이지만 희망이 되고 꿈이 되는 울곧고 깨끗하고 능력있는 일꾼이 되어 보겠다고 하였다.

라. 議案處理狀況

1) 一般議案

- 이번회기중 상정대상 일반안건은 총24건으로 도지사제출 12건, 위원발의 2건, 의장제의 5, 위원회제안 3, 도교육감제출이 2건이 가결되었으며 종류별 처리상황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종류별	상 정 대 상 안 건			의 안 처 리 내 역				
	합 계	전 회 기 이 월	금 회 기 접 수	가 결			폐 기 (철회)	계 류
				소 계	원 안	수 정		
계	24		24	24	20	4		
조 례 안	17		17	17	14	3		
예 산 안								
동 의 안	5		5	5	5			
건 의 안	2		2	2	1	1		

2. 議決案件

가. 條例案

1) 강원도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2월 1일 의회운영위원장
- 제안이유 : 99. 8. 31.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99. 12. 31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회는 매년 2회의 정례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정례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정례회는 매년 2회로 나누어 개최하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함(안 제2조·제3조)
 -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1차 정례회는 6월 20일(총선년도는 8월 10일) 제2차정례회는 11월 25일에 각각 개최하되 그날이 공휴일이 때에는 그 다음날에, 토요일인 때에는 그 다음 다음날에 집회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2000년 2월 1일 제106회강원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김원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의 제안동의발언 후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2000년 2월 10일 제1차본회의에서 이훈 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2000년 2월 10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2000년 3월 15일 강원도조례 제 2751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9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회) 의회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 2회로 나누어 개최한다.

제3조(회기)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

제4조(집회일) 영 제19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토요일인 때에는 그 다음 다음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8월 10일에 집회한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

제5조(안건심의) ① 제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정기회”를 “정례회”로 한다.

제9조의2중 “정부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관 계 법 령 발 체

□ 지방자치법

○ 제38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의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41조(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① 지방의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이를 정한다.
- ②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시·도의회는 40일이내, 시·군 및 자치구 의회의 경우 35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 ③ 연간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시·도에 있어서는 120일,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80일 초과할 수 없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19조의 4(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중 제1차정례회는 6월·7월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중에 집회하여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7월·8월중에 집회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지방의회에의 부의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지방의회에의 부의안건
- ③ 법 및 이 영이 정한 사항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준칙안(행정자치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9조의 4칙 규정에 의하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개회) 의회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
- 제3조(회기)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0일이내(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35일이내)로 한다.
- 제4조(집회) 영 제19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월 ○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월 ○일에 집회한다.

제5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는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의 운영·의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강원도의회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2월 1일 의회운영위원장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및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여 일액을 인상하고 월액으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상향조정에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의원에게 매월 공무원보수지급일에 지급하는 의원활동비 월액을 “60만원”에서 “90만원”(의정자료수집·연구비 70만원, 보조활동비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함(안 제2조제1항)
 - 회기중 회의 출석시에 한하여 일비로 지급하던 “회의수당”을 회기중 불출석시에만 일액을 감면하여 지급하여 지급하는 “회기수당”으로 변경하되 수당지급기준 일액을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함(안 제3조 제1항·제3항)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2000년 2월 1일 제106회강원도의회의임시회의회의운영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김원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의 제안동의 발언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2000년 2월 10일 제1차본회의에서 이훈 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2000년 2월 10일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어 강원도지사에게 이송, 2월 14일 행정자치부에 보고하였으나 2월 17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요구지시를 받아 2000년 2월 19일 수정안대로 가결되어 2000년 2월 29일 강원도조례 제2752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관계법령발취

□ 지방자치법

- 제32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 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다만 의정자료의 수집·연구를 위한 보조활동의 비용은 시·도의 회 의원에 한한다.
 2.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회기중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회기수당
- ② 제1항의 각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 제15조(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① 법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5, 회기수당(원격지 회의출석비를



포함한다)의 지급기준은 별표6,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7 및 별표8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의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이하생략)

[별표5]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15조 관련)

구 분	의 정 활 동 비 지 급 범 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시·도의회 의원	월 700,000원 이내	월 20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월 500,000원 이내	

[별표6] 지방의회의원 회기수당 지급범위(제15조 관련)

구 분	회기수당 지급범위	원격지회의출석비 지급범위
시·도의회 의원	일 80,000원 이내	별표7의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에 의한 교통운임(현지교통비를 제외한다)·숙박비 및 식비(3분의 1)의 범위 이내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일 70,000원 이내	

☐ 강원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별표1]

구 분	액	수
일 비	60,000원	
여 비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에서 정하는 금액을 적용하되 도의원이 아닌 감사위원은 도의원에 준한다.	

3) 강원도지방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2월 2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이 조례는 교육훈련성적 우수공무원을 시상하기 위하여 설치된 공무원교육시상기금을 종전 공무원교육시상기금 운영규정(행정자치부 훈령)에 근거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이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교육훈련성적 우수공무원을 시상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며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함(안 제2조)
 - 기금은 대통령특별지원금, 기금운용수익금등의 재원으로 조성함(안 제3조)
 - 기금의 용도, 시상시기, 시상금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기금은 도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토록하며, 기금운용계획이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및 제8조)
 -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심의회를 둠(안 제7조)
 -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두며,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관계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9조 내지 제11조)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2000년 2월 3일 내부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14일 제2차회의에서 김낙기 공무원교육원장의 제안설명과 최종준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
 - 분임기금운용관을 삭제할 필요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답변요지
 - 기금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치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본회의 심사 : 2000년 2월 19일 제3차본회의에서 원종익 내부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2000년 2월 21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2000년 3월 15일 강원도조례 제 2753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지방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양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 우수공무원을 시상하기 위하여 강원도지방공무원교육시상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도지사는 교육훈련성적 우수공무원에게 상(이하“교육상”이라 한다)을 주기 위하여 강원도지방공무원교육시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통령 특별지원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성적우수자에게 시상금을 지급하는 목적에 사용한다.

1.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 및 전문교육훈련과정으로 교육훈련기간이 2주이상이고 교육훈련평가(이하 “평가”라 한다)가 실시되는 과정
2. 기타 교육훈련기간이 2개월(8주) 이상이고 평가가 실시되는 과정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시상시기 및 시상금 등) ① 교육상은 강원도지방공무원교육원장(이하 “교육원장”이라 한

다)이 때 교육과정의 수료시에 시상한다.

②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시상금을 수여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서식과 시상금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상금은 기금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되 시상금의 지급총액은 전년도 기금운용 수익금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⑤ 교육원장은 수상자의 명부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도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지방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원장이 되고, 위원은 교육원장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③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분입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교육원장
2. 분입기금운용관 : 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3. 기금출납원 : 공무원교육원 서무관리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10조(기금결산) ① 도지사는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강원도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강원도지방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2월 2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지방공기업법이 개정(99. 4. 1 시행)되면서 지방공사사장임·면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되면서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사장추천위원회를 비상설기구로 설치하고 위원회의 임기는 사장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해제토록 함(안 제2조)
 - 위원회의 구성은 7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토록 함(안 제3조)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5조)
 - 사장후보의 추천은 지방공기업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를 추천(안 제6조)

※ 도지사는 추천된 후보가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음(위원회는 지체없이 재심의 추천)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2000년 2월 3일 내부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17일 제5차회의에서 권혁인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최종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2000년 2월 19일 제3차본회의에서 원종익 내부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2000년 2월 21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2000년 3월 15일 강원도조례 제 2759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지방공사 · 공단사장추천위원회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지방공사·공단 이사장 임명대상자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도 지방공사·공단의 사장임명대상자(이하 “사장임명대상자”라 한다)를 추천받기 위하여 강원도지방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되, 필요할 때 수시로 구성하고 목적이 달성되면 자동으로 해산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수는 위원장 1인은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1. 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2인
 2.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3. 당해 공사·공단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4. 당해 공사·공단의 감사 1인
- 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한 때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등에 위원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당해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당해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장임명대상자가 사장으로 임명되는 날까지 한다.

제4조(위원의 결격사유)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원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도의 예산담당관이 된다.

제6조(사장임명대상자의 추천) ① 위원회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선정하여 사장임명대상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하여 추천된 사장임명대상자가 제4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사·공단의 경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위원회에 대해 사장임명대상자를 다시 추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하여 다시 추천할 것을 요청받은 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다시 사장임명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제7조(협조) 위원회는 사장임명대상자 추천과 관련하여 도, 시·군, 기타 관련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강원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2월 2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99. 12. 7)됨에 따라 강원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도 이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경조사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이념에 맞추어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행정자치부표준안에 의함

- 주요골자
 - 임신중의 여성공무원에 대한 60일이 출산휴가의 허가를 임의규정에서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여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23조제2항)
 - 임신한 여자공무원에게는 정기검진을 위하여 임신기간중 매월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생후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3항 및 제4항)
 - 남계와 여계친족간의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의 이념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부모사망 및 탈상시의 휴가일수를 배우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조정함(안 별표3)

나) 심의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2000년 2월 3일 내부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16일 제4차회의에서 장순일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최종추천위원회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2000년 2월 19일 제3차본회의에서 원종익 내부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2000년 2월 21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2000년 3월 15일 강원도조례 제 2754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호중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를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로 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주 “매 생리기마다 1일”을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로 하며, 동조제4항 내지 제9항을 각각 제5항을 내지 제10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7항(종전, 제6항)중 “1회에 한하여”를 “재직기간중에”로 하고, 동조제9항(종전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의 1일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⑨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조기 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까지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4조 단서중 “경우에는”을 “경우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관련)

구 분		일수
결 혼	본인	7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회 갑	본인 및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출 산	배우자	1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7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5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2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6)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2월 2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강원전문대학이 96. 10. 24일자로 설립되어 그동안 11개학과를 운영해 오다가 교육부에서 2000학년도에 1개학과가(생활체육과)신설승인됨에 따라 학과신설에 따른 교원의 정원을 1명 증원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강원도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2,771인에서 1인이 증원되 “2,772”인으로 조정함(안 제2조)
 - 구조조정으로 인해 부칙에 년차별로 정해놓은 정원중
 - [표1] 2000년 7월 31일 : 정원의 총수 2,850인을 “2,851”인으로 하고 교원의 정수 61인을 “62인”으로 하며
 - [표2] 2001년 7월 31일 : 정원의 총수 2,806인을 “2,807”인으로 하고 교원의 정수 61인을 “62인”으로 함(안 부칙 제2조)



- 2차구조조정이후 대통령이 개정됨에 따라 부칙 제4조에 근거한 직급별 정원규정에 관한 경과 조치중
 - “매년 7월 31일까지 정한다”를 “매년 6월 30일까지 정한다”로 함(안 부칙 제4조)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2000년 2월 3일 내부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16일 제4차회의에서 장순일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최종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2000년 2월 19일 제3차본회의에서 원종익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2000년 2월 21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2000년 3월 15일 강원도조례 제 2755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2,771”을 “2,772”로 하고, 동조제3호중 “61”을 “62”로한다.

부칙(99. 9. 9)제2조 [표1]중 정원의 총수란 “2,850”을 “2,851”로, 3. 독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란 “61”을 “62”로 하며, 동조 [표2]중 정원의 총수란 “2,806”을 “2,807”로, 3. 독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란 “61”을 “62”로 한다.

부칙(99. 9. 9) 제4조중 “7월 31일”을 “6월 30”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2월 2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도사무시군위임사항중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한 사무의 위임근거가 별도로 관한 시군 위임사항을 본 조례로 일원화하여 도와 시군간의 업무처리 한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강원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에 삽입되어 있는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가림간판규격의 설정, 안전도검사,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등에 관한 사무의 위임근거를 본 조례로 이관함(안 별표1 건설도시분야 제150호)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2000년 2월 3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16일 제4차회의에서 장순일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최종추천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2000년 2월 19일 제3차본회의에서 원종익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2000년 2월 21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2000년 3월 15일 강원도조례 제 2756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중 건설도시분야란 제15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업무 분야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건설 도시	150	옥외광고물등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수리 및 허가·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 나. 가림간판 규격의 설정 다. 광고물들의 안전도검사에 관한 사항 라. 안전도검사의 위탁 마.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바. 옥외광고업의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사. 옥외광고물등의 허가표시의 취소 아. 영업정지 등에 관한 사항 자. 허가·신고·안전도검사·옥외광고업의 신고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제4조 내지 제9조 동법시행령 제19조제7항 및 제20조제 6항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동법 제10조 동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동법 제13조 동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및 제45조 동법 제17조 동법 제20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 강원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2월 2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지방세법이 개정(99. 12. 28)되면서 지역개발세율의 인상과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등을 이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행정자치부표준안에의함)
- 주요골자
 -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3개의 분과위원회를 두던 것을 「세제분과위원회」는 폐지하고 「의신청분과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과세표준분과위원회」는 「과세표준심 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정리함(안 제9조)
 -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다른 도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지를 관할하 는 도에서 과세토록 하는 규정과 시설대여용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등록명의자

- 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각각 삭제함(안 제19조)
- 지역개발세의 세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안 제76조, 제78조 및 제81조)

과 세 대 상	현 행	개 정 안
발 전 용 수(10㎡당)	1원 50전	3원
지하수(1㎡당)	음 용 수	100원
	온 천 수	50원
	기 타 용 수	10원
지 하 자 원(광 물 가 액)	1,000분의 1.5	1,000분의 3

-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2001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합자동차에 대한 등록세 및 면허세의 세율을 5년간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05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함(안 부칙 제2항)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2000년 2월 3일 내부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16일 제4차회의에서 장순일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최종준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2000년 2월 19일 제3차본회의에서 원종익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2000년 2월 21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2000년 3월 15일 강원도조례 제 2757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또는 과세표준의 결정 기타 지방세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도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도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항중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한다.

② 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단서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제11항을 삭제한다.

제76조중 "1원 50전"을 "3원"으로 한다.

제78조중 "100원"을 "300원"으로, "50원"을 "150원"으로, "10원"을 "30원"으로 한다.

제81조제1항중 "1,000분의 1.5"을 "1,000분의 3"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등록세, 면허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의 의한다.

9)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2월 2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지방세법등의 개정에 따라 관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운 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함)
- 주요골자
 -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상이자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자활용사촌안에 부동산을 취득·소유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공동시설세를 면제함(안 제2조)
 - 국가유공상이자 및 장애인소유자동차를 본인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등록세·면허세를 면제하던 것을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형제·자매를 추가하되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함(안 제2조, 제4조)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중고건설기계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건설기계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
 - 한국자산관리공사(구성업공사) 및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기업으로부터 인수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면제규정을 신설함(안 제28조의 5)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2000년 2월 3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16일 제4차회의에서 장순일 자 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최종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2000년 2월 19일 제3차본회의에서 원종익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2000년 2월 21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2000년 3월 15일 강원도조례 제 2758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목중 “유족에 대한 감면”을 유족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를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자로 구성된 단체“로 하며, 동조제3항중 ”직계 존·비속명의 등록하여“를 ”국가유공자의 직계 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로, ”취득하는“을 ”감면신청하는“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제1호중 ”허가를 받은 자“를 ”등록을 한 자“로 하고, 동항제3호중 ”허가를 받은“을 ”등록을 한“으로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면허세를 추징한다.

제4조제1항중 “직계 존·비속명으로 등록하여”를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로, “취득하는“을 “감면신청하는”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면허세를 추징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제1호중 “허가를 받은 자”를 “등록을 한 자”로 하고, 동항 제3호중 “허

가를 받은”을 “등록을 한”으로 한다.

제10조중 “교육법”을 “교육기본법”으로 한다.

제11조중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동법시행령 제2조”를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동법시행령 제3조”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를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고, 동조제2항중 “주차장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교부일”을 “주차장 설치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허가를 받은 자”를 “등록을 한 자”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건설기계매매업으로 신고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15조제1항제4호중 “임대주택법”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중 “농산물가공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 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를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공장이외의 용도”를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이외의 용도”로 한다.

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및 동법 제28조의 5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제26조제목중 “신용보증조합”을 “신용보증재단”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강원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용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강원도신용보증조합”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강원도신용보증재단”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강원도신용보증조합”을 “강원신용보증재단”으로 한다.

제28조의4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9조제4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는 동법 제121조의2제4항”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제3항”을 “조세제한특례법 제121조의5제3항”으로 한다.

제2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5(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 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동법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전환·정리등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법인과 그 계열기업(이하



“구조조정법인등”이라 한다) 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구조조정법인등이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법인과 그 계열기업(이하 “구조조정법인등”이라 한다) 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구조조정법인등이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목적으로 매각하는 재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동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구조조정대상기업이 구조조정목적으로 매각하는 재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시한) 제28조의5의 신설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③(적용례) 제2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10) 강원도개발공사설치및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2월 2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지방공기업법이 개정(99. 4. 1 시행)되면서 중앙의 권한이 폐지 또는 지방으로 이양되어 조례규정중 상위법 규정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항들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자치법규중 지방공기업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보완정비코자 함.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2000년 2월 3일 내부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17일 제5차회의에서 권혁인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최종추천위원회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다.

- 본회의 심사 : 2000년 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원종의 내부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2000년 2월 21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2000년 3월 15일 강원도조례 제 2760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개발공사설치및 관리 · 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개발공사설치및관리 · 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제12조 · 제18조 · 제23조 · 제24조 · 제25조 및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 등 공사의 제 ·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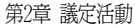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1) 지방공사강원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2월 2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지방공기업법이 개정(99. 4. 1 시행)되면서 중앙의 권한이 폐지 또는 지방으로 이양되어 조례규정중 상위법규정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항들을 보완 · 정비하려는 것임.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2월 2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하여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등 장애인복지대책에 공이 많은 개인·가족·단체등을 발굴하여 시상하고 우수사례를 홍보함으로써 전 도민의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참여를 기여토록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장애인복지항사에 기여한 개인·단체를 발굴시상(안 제1조)
 - 수상은 3개부문으로 부문별 각1인씩(단체) 시상(안 제3조)
 - 수상 후보자 추천은 시장, 군수, 도단위기관, 단체장, 대학총·학장, 군단장급이상 부대장(안 제4조)
 - 공적심사위원회를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예산의 범위내 실비 변상함(안 제5조)
 - 공적의 사실여부를 조사하며, 시상시기는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시상하도록 함(안 제6조및제7조)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2000년 2월 3일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11일 제1차회의에서 이방웅환경복지국장의 제안설명과 서의승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수정안대로 가결되었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안 제5조제5항은 공적심사위원회의 고유사무가 아닌 예산집행에 관한 조항으로 별도의 조를 정하여 운영하고
 - 위원회가 사무를 관장하는 보조기관이 없어 조례의 체계상 별도의 기관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답변요지
 - 안 제5조제5항의 수당과 관련된 사항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별도의 조항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에 동의하며
 - 위원회사무처를 보조하는 보조기관 문제는 강원도농어민대상조례의 예와 같이 동조례시



행규칙으로 자세하게 정하겠음.

[수정주요골자]

- 「안 제5조제5항」은 「안 제9조(실비변상)」으로 하여 5항을 그대로 옮기고 「안 제9조(시행규칙)」은 「안 제10조(시행규칙)」으로 조정.
- 본회의 심사 : 2000년 2월 19일 제3차본회의에서 이상구 교육사회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수정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2000년 2월 21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2000년 3월 15일 강원도조례 제 2762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장애인복지대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사기를 고양하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 향상에 기여한 개인·가족·단체 등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강원도장애인복지대상(이하 “복지대상”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수상부문) ① 복지대상 수상부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랑스런 장애인 부문
2. 장한 장애인 가족 부문
3. 고마운 장애인봉사 부문

② 복지대상 수상인원은 부문별 각1인으로 하되, “고마운 장애인봉사부문은 기관·단체에 시상할 수 있다.

③ 수상후보자의 심의결과 부문별 해당자 또는 기관·단체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시장·군수, 도단위 기관·단체장, 대학교 총·학장, 군단급이상 부대의 장이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공적심사위원회) ① 복지대상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공평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강원도장에 인복지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장애인복지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인사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수상후보자에 대한 조사) 도지사는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공적의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시상시기)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실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상패 및 부상) ① 수상자에게는 상패 및 부상을 수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실비변상)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강원도각종위원회실비보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3) 강원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1월 29일 강원도교육감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의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여 교육위원 의정활동비를 인상조정하고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교육위원들의 국



외여비중 일비와 숙박비 지급단가를 인상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회기중 회의 출석시 지급하던 종전의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함(안 제1조, 제3조)
- 의정활동비 월액을 6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조정함(안 제2조)
- 회기수당 지급방법을 개선하고 회기수당을 1일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조정함(안 제3조)
- 국외여행시 지급하는 일비를 각 등급별로 10달러, 숙박비를 10퍼센트 인상조정함(안 별표2)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2000년 1월 31일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14일 제2차회의에서 홍순균 의사국장의 제안설명과 서의승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2000년 2월 19일 제3차본회의에서 이상구교육사회위원장의 심사보고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2000년 2월 21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2000년 2월 29일 강원도조례 제 2750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조례]

강원도교육위원회조례 제 호

강원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한다.

제2조제2항중 “50만원”을 “70만원”으로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제3조 제목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하고, 동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회의수당”을 각각 “회기수당”으로, 또한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회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의출석 여부에 관계없이 회의수당을 지급한다”를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중 회의(소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6만원"을 "8만원"으로 한다. 별표2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2] ○ 국외여비지급기준표(제4조 제2항 관련)

(단위 : 미불화)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야당)	준비금		
								15일 미만	15일이상30 일미만	30일 이상
의 장	·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철도임 ·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실비액	·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선임 ·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선에 요하는 실비액	1등정액	실비액	가등급 40 나등급 40 다등급 40 라등급 40	가등급 186 나등급 135 다등급 107 라등급 91	가등급 133 나등급 99 다등급 72 라등급 61	150	180	210
	· 공무원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 공무원상의 사유로 인하여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가등급 35 나등급 35 다등급 35 라등급 35	가등급 151 나등급 109 다등급 84 라등급 72	가등급 107 나등급 78 다등급 58 라등급 49			
위 원								140	170	195

[별표 2] 관련

비고 :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 뉴욕, 런던, 파리, 마드리드, 동경, 홍콩, 모스크바

나. 나등급

(1) 아시아주·대양주 : 일본, 파푸아뉴기니, 싱가포르, 대만, 북경, 하노이

(2) 남·북아메리카주 : 워싱턴, 로스엔젤레스, 샌프란시스토, 자메이카

(3) 유럽주 :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스



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헝가리, 덴마크, 체코

- (4) 중동·아프리카주 :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오만, 가봉, 중앙아프리카, 카메룬, 아간다, 코트디브와르, 니제르, 자이르, 수단, 남아프리카

다. 다등급

- (1) 아시아주·대양주 : 인도, 터어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타이,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중국, 베트남
- (2) 남·북아메리카주 : 미국, 캐나다, 멕시코, 코스타리카, 파나마, 아이티, 바베이도스, 부라질, 칠레, 트리니다드토바고, 아르헨티나
- (3) 유럽주 : 아일랜드, 포르투갈, 헝가리, 불가리아,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 (4) 중동·아프리카주 : 요르단, 바레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리비아, 이집트, 케냐, 세네갈, 라이베리아, 모리타니아, 시에라리온, 이디오피아, 부르키나파소, 모리시어스, 잠비아, 알제리

라. 라등급

- (1) 아시아주·대양주 : 미얀마, 스리랑카, 튀지, 네팔, 몽골
- (2) 남·북아메리카주 :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도미니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쿠아도르, 페루, 볼리비아, 우루과이, 파라과이, 수리남
- (3) 유럽주 : 해당국가 없음
- (4) 중동·아프리카주 : 레바논, 예멘, 모로코, 튀니지, 루안다, 말라위, 스와지랜드, 가나, 소말리아, 나미비아,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2. 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예정지에서 1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14) 강원도립 학교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1월 29일
- 제안이유 : 2002년까지 소규모학교 통·폐합계획을 재수립하라는 교육부지침(99. 10. 15)에 의하여 통·폐합 희망학교를 조사 제출받은 결과 농촌지역의 이농현상에 따른 학생감

소지역의 소규모 초등학교와 2개소의 분교장으로 이들 학교를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추가로 통·폐합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구 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		3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2000년 1월 31일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14일 제2차회의에서 김호준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서의승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2000년 2월 19일 제3차본회의에서 이상구 교육사회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2000년 2월 21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2000년 2월 29일 강원도조례 제 2749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교육위원회조례 제 호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 초등학교 명칭과 위치란중(원주시)의 “후용초등학교”란과 “흥업초등학교 사제분교장”란, (평창군)의 “평창초등학교 대창분교장”란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2월 2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이 조례는 2000년도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지침(중소기업청)중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기금운용상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중소기업지원자금의 구분 명칭을 변경함(안 제5조)
 - 중소기업창업및경쟁력강화지원자금, 시장재개발지원자금, 지역특화사업지원자금,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자금
 - 기금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6조제1항)
 - 제조업및제조업관련서비스업, 유통업, 건설업, 관광업, 운송업, 지식·정보관련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관련조합·단체
 - 중소기업지원기능수행단체
 - 중소기업종업원
 - 중소기업창업및경쟁력강화지원자금의 사용에 대한 시설투자 자금의 지원내용을 변경될 사업에 적합하도록 각호 내용을 정정함(안 제9조제1항)
 - 시장재개발지원자금의 사용은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 기반공사와 설계비 및 필요경비에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함(안 제9조제2항)
 - 지역특화지원자금의 사용은 공공단체 또는 중소기업 종업원등에 대하여도 대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3항)
 - 종전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자금 사용에 대한 각호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수정조정함(안 제9조제4항)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2000년 2월 8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차회의에서 박영환산업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창범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수정안대로 가결되었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

- 중소기업단체 · 조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 현재까지 기금조성액과 지원조건은?

- 답변요지

- 중소기업관련조합 · 단체라 함은 중소기업지원법 및 관련법에 의거 인정되는 조합 및 단체를 말하며 중소기업 지원가능 수행단체라 함은 지역특화사업 지원자금 수혜대상 및 공공단체, 협회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지원단체를 말함.
- 200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중 자금지원 확보액은 1,346억원이며 도지사가 조성중인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99년도 12월말 현재 500억원을 조성하였고 지원조건은 경영안전지원 자금 융자기간 1년으로 금리는 은행기준 금리중 3%이차보전 및 전액보증 시행할 계획이며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자금은 융자기간 8년(3년거치 5년균분상환) 금리 8.25%로 도 기재분에 의하여 이차보전됨.

[수정주요골자]

- 제6조(기금의지원대상자)제1항중

「중소기업 및 관련조합 · 단체로서」를

「중소기업 및 종업원 · 관련조합 · 단체로서」로

「종업원 · 」을 자구삽입

- 본회의 심사 : 2000년 2월 19일 제3차본회의에서 엄문섭 산업경제위원장의 심사보고후 질의 및 토론업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2000년 2월 21일 수정안대로 가결되어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2000년 3월 15일 강원도조례 제2763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자금
2. 시장재개발지원자금
3. 지역특화산업지원자금

⑧ 제1항제1호의 자금은 지원사업별로 구분하여 관리·운용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본문중 “기금은 다음”을 “기금을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및 종업원·관련조합·단체로서 다음”으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항제5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제5조제1항”으로 한다.

1.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유통업, 건설업, 관광업, 운송업, 지식·정보관련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관련 조합·단체
2. 중소기업지원기능 수행단체
4. 중소기업 종업원

제9조제1항 본문중 “중소기업시설개체지원(구조조정) 자금”을 “중소기업창업및경쟁력강화지원자금”으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5호중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중소기업지원자금”으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공장 또는 사업장 건립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2. 기계·기구등 생산(서비스)시설의 신규구매, 개체 및 기존공장(사업장)의 증·개축에 소요되는 자금
3. 아파트형공장 등 임대공장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4. 시장, 점포시설 개선 및 전문상가, 공동창고 건립자금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시설투자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연계 운전자금

제9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1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기금중 시장재개발지원자금은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과 그 부속시설에 대한 건축, 기반공사와 설계비 및 필요경비에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제3항 본문중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지원자금”을 “지역특화지원자금”으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하며, 동조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지사가 직접 수행하는 중소기업지원사업비
2. 도지사가 민간단체에 위탁 수행하는 중소기업지원사업비
3. 중소기업지원기능을 수행하는 단체의 중소기업지원사업비 또는 운영비
4. 공공단체 또는 중소기업종업원등에 대한 대출자금

제9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

1. 경쟁력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소요자금
2. 원부자재 구입비등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운전자금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6) 강원도옥외광고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2월 2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이 개정(99. 2. 26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면서 업무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광고물 및 게시시설의 허가·신고시 첨부서류등과 표시제한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옥상간판·애드벌룬·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세로형간판·공연간판·현수막·벽보·전단·교통수단이용광고물·창문이용광고물·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추가표시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내지 제16조)
 -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위촉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7조 및 제18조)
 -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자의 자격·위탁절차·검사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9조내지 제22조)
 - 미풍양속의 유지 및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3조)
 - 옥외광고업이 신고·종사자의 교육 및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4조내지 제26조)
 - 기타 영업정지 등의 처분·게시시설의 위탁·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에 징수하는 수수료



료 및 과태료에 관하여 정함(안 제27조 내지 제30조)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2000년 2월 3일 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16일 제2차회의에서 김진 성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신동철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

- 조례제9호제1호 공연간판에 표시방법과 관련하여 간판의 가로크기는 전폭의 1/3, 세로 크기는 건물높이의 1/4로 한다고 되어 있고 단서규정에 건물의 구조상 부득이할 경우 20%내에서 증가할 수 있다는 범위와 원주에서 제출의견대로 세로크기를 건물폭의 80%로 할 수 있는지?
- 도시지역에 미관지구에 대한 건축심의를 폐지되었는데 광고물은 미관지구내에서 높이 4m이상 광고물은 심의를 존속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아지므로 이를 폐할 의향이 없는지?
- 제5조옥상간판표시방법중 시도경계와 간판간의 수평거리 각각 50m를 30m로 개정하였으나 행정구역 경계는 30m로 간판간의 수평거리는 50m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본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시 권한위임사항이 삽입되었으나 현재 31조를 삭제한 이유는?

- 답변요지

- 단서규정에 의한 20%의 범위는 간판의 가로크기가 전폭의 1/3에 대한 20%를 말하는 것이며 단서규정에 의한 20%를 포함 전폭은 총53%까지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며 원주시 의견대로 건물폭의 80%로 할 경우 건물전면을 차지하여 도시미관과 안전사고발생 시 피해가 예상되므로 개정내용과 같이 50%범위내에서 우선 운영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될 경우 보완해 나가겠음.
- 도시지역 미관지구에 건축물 미관심의는 규제개혁차원에서 폐지되었으나,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에 부착되는 4m이상 대형간판은 건축물과의 조화, 안전 미, 주변과의 미관을 고려하여 심의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우리도는 상대적으로 상업지역의 규모가 적어 50m이상 간격을 유지할 경우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므로 시도간 경계 및 간판간 수평거리를 30m로 완화한 것임,
-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를 일부 시장 군수에 위임하는 것은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향상과 행정사무를 간소화하는데 있으므로 도에서는 금회조례심의과정에 개별조례로 위임한 사무가 강원도사무위임조례및규칙제정취지에 부합되도록 조정하여 통합관리코자 하는데 있음

[수정주요골자]

- 제9조(공역간판의 표시방법)제1항 제1호
 -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전면폭의 3분의 1이내이어야 하고 세로크기는 건물의 높이의 4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건물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20%범위내에서 가로크기를 증가할 수 있다」 를
 -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전면폭이 3분의 1이내이어나 하고 세로크기는 건물의 높이의 4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건물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건물전면폭의 20%범위내에서 가로크기를 증가 할 수 있다」 로 수정의결
- 본회의 심사 : 2000년 2월 19일 제3차본회의에서 이상명 관광건설위원회간사의 심사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없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2000년 2월 21일 수정안대로 가결되어 강원도지사에게 이송, 2000년 3월 15일 강원도조례 제2764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강원도옥외광고물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도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 등) ① 도지사는 영 제7조 및 영 제9조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은 허가신청을 할 때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을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이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옥상간판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미만인 볼링핀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과 지면에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는 높이 4미터미만인 애드벌룬
3. 선전탑
4. 영 제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비행선을 이용하는 광고물
5.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강원도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③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수막·벽보·전단의 경우에는 검인·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으며 그 규격은 별지 제2호시설과 같다.

④ 도지사는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영 제9조제4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중 도지사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을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과 당해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1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가로형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돌출간판
 3. 영 제19조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 또는 높이가 4미터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주이용간판
 5.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는 애드벌룬
 6.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 ⑥ 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등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을 제외한 광고물은 도지사에게 신고함으로써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당해건물명,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품·영업내용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한 광고물
 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중 네온을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

제3조(광고물등의 표시제한 등) ① 도지사는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표시방법을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물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총수량
2. 광고물등의 표시내용·종류, 색깔, 규격 및 모양
3. 표시위치 또는 장소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4조(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2. 광선 등을 벽면이나 공중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19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는 30미터이상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0미터이내 지역안에 옥상간판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도의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 간판간의 수평거리 30미터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 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이상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관할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이내 지역안에 영 제23조제1항4호의 규정에 의한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도의 시·도지사와의 미리 협의하여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 1킬로미터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 제2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에 대하여는 조례 제5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26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버스·택시승강장, 노선버스 안내표지판, 휴지통, 벤치, 관광안내도, 지정벽보판,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 현수막지정게시대
2. 기타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공공시설물

② 영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등주를 이용하는 광고물중 영 제26조제3항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가로등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도시경관의 훼손 및 도로교통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8조(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로형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의 1층 출입구 양측에 각각 하나의 간판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영 제15조제3호·제4호에 의한 간판이 설치되지 않은 건물의 정면이나 측·후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간판의 크기는 가로 3미터이내, 세로는 건물높이의 2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2. 제1호 본문규정에 의한 판류이용간판의 크기는 가로 60센티미터이내, 세로 20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2이상의 간판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는 또한 같다.
3. 벽면과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 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제9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전면폭의 3분의 1이내이어야 하고, 세로크기는 건물의 높이의 4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건물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건물전면폭의 20%범위내에서 가로크기를 증가할 수 있다.
2. 벽면과 간판과의 간격은 4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3. 공연중 또는 다음 공연의 내용에 관하여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4.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현수막은 벽면이용, 지정게시대 이용, 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그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행사내용과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바탕색은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
3.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 또는 지주의 규격을 따른다. 다만, 제4항제3호에 의한 단일형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을 2미터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가로의 크기는 세로크기의 2분의 1이내(좌우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지주부분은 제외한 각각의 현수막을 합한 전체의 가로길이는 또한 같다)이어야 한다.
4.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 현수막(지정게시대 포함)을 표시하기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또는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본문규정에 의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내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의 건물 벽면에 영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후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의한 게시시설의 가로길이는 당해건물폭(창문부분면적 제외)의 5분의 1이내, 세로의 길이는 건물의 높이 이내로 표시하되, 게시시설의 상단은 건물의 상단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이상이어야 한다.



3. 게시시설은 당해건물 전체에 4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만 표시하여야 한다.

③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대는 시장·군수가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가로 10미터이내,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8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가로 20미터의 이내에서 연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재질은 스테인레스 또는 녹막이가 되고 구조에 강한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정게시대는 통해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하나의 지정게시대에서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은 하나만 표시할 수 있다.

④ 지주이용 현수막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지주는 단일형과 연립형으로 구분하며, 단일형은 하나의 지주에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2개의 현수막을 좌우대칭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고, 연립형은 2개이상의 지주를 이용하여 여러개의 현수막을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제3항에 의한 지정게시대와 유사한 형태의 것을 말한다.
2. 지주의 재질은 스테인레스 또는 녹막이가 되고 구조에 강한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주변경관 또는 건물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단일형지주는 당해건물 대지안의 공지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이내이어야 하고 하나의 건물에는 하나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건물에 입주한 업소수 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에만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연면적 500제곱미터 초과시마다 1개씩(최대 4개이내)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4. 연립형 지주는 당해건물 대지안의 통행할 수 없는 공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는 6미터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소에 한하여 업소당 하나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은 3개이내이어야 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전포

나. 공중위생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휴양콘도미니엄

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국제회의장·종합휴양시설·전문휴양시설

라.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업소

제11조(벽보의 표시방법) ①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벽보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계시관 또는 지정벽보관에 부착하여야 한다.
2.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이내, 세로 55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제12조(전단의 배부방법) ①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단은 다음과 같이 배부하여야 한다.

1. 전단은 직접 나누어 주거나 건물출입구 등에 설치한 배부함을 통해 배부하여야 한다.
2. 전단은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이내, 세로 4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제13조(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13조제9항 및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열차 또는 자동차의 외부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자기가 소유하는 열차 또는 자동차의 외부의 창문부분을 제외한 좌·우 양측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소유자가 성명·명칭·영업소명·전화번호·자기제품의 상표 또는 상징형도안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전국·도단위 국제행사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사홍보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다.
3. 표시면적은 각각 측면(창문부분을 제외한다)면적의 4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4. 광고물에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영 제13조제9항 및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선(항공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무인비행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비행선의 좌·우 양측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공중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주간(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에만 띄울수 있고, 항공법의 관련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3. 도지사는 비행안전을 위하여 허가전에 신청인에게 비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비행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항공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 도지사는 관할행정구역의 밖에서 비행하고자 하는 비행선에 표시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허가를 한 경우에는 비행노선을 지정하고, 당해시·도의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의 표시에 대하여는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창문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창문이용광고물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 3층이하의 창문과 출입문에 표시하여야 하며, 창문에 표시할 경우에는 창문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광고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2. 당해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전화번호·영업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에 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 사용하는 색체는 건물과 조화되어야 한다.

제15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31조제3항제6호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네온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운전자 및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거나 생활환경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도지사는 네온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판단하되, 2인이상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영 제3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광고물의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의 시간당 표출 비율은 25%이상이어야 하며 그 세부기준은 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출함에 있어 국정홍보·관계법령 입법예고·기타 일반공익광고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도정홍보내용은 도지사가, 시정·군정 홍보내용은 시장·군수가 각각 정하여 표출의뢰하는 사항은 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표시방법의 완화)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표시위치 또는 장소
2. 광고물 등의 규격, 모양 또는 색깔
3.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위원은 다음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1.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 건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
2. 국어학자
3.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 건축, 디자인 등을 전공한 학자 또는 전문가

4. 기타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18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도시계획법상 미관지구안의 높이 4미터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40제곱미터이상인 지구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이상으로써 네온을 사용하거나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도지사가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9조(안전도검사)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실시하되, 검사자는 확인 서명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를 실시할 검사공무원을 그 소속하의 건축직, 전기직, 토목직 기타 관계공무원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20조(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①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업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검사인력·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하되, 도지사는 그 인원 및 시설의 규모, 장비의 종류 및 수량을 별도로 정하여 제21조제2항에 의한 위탁계획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자(분야별 1인이상 포함)
2. 사무실



3.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및 도지사가 안전도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장비

제21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① 도지사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1또는 그 이상의 자를 지정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 ⑥ 도지사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의 성명, 명칭, 주소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⑦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이를 증명하는 신분증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22조(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①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안전도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지체없이 안전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안전도검사를 위탁받는 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는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증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24조(옥외광고업의 신고) ① 도지사는 영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옥외광고업신고(변경)대장에 의하여 이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 도지사는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 1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으로 효율적인 교육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류별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
3. 교육실시방법·수강절차·비용
4. 기타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당일 참석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교육하여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도지사는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⑥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전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중일 때
3. 향토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26조(교육의 위탁) ① 도지사는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을 위



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자를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대표자 성명·주소·위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5조제2항 각호의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실시일 40일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비용을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제2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을 도지사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영업정지 등의 처분)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의 처분기준을 별표2와 같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옥외광고업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의 처분내용을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때에는 그 옥외광고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 처분내용 및 일자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8조(게시시설 관리의 위탁) ① 시장·군수는 지정게시대·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이하 “게시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관리를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게시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별표3, 동

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4, 동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 광고업 신고수수료는 별표5와 같으며, 수수료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길이는 소수점이하 1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중 10원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증지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도검사수수료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과태료 부과, 징수절차) 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별표 6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가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 방법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의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광고물은 이 조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업무와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업무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위탁시행할 수 있다.



[별표 1]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종류·내용 및 시간(제25조제1항 관련)

종류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비고
신규교육	6시간	○ 관계법류 - 3시간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로법 등) ○ 표시에 관한 사항 - 3시간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대표자, 종업원)	○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교육이 없는 경우에는 종사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함. ○ 옥외광고물관련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표시에 관한 사항 3시간면제
행정처분에 의한 교육	3시간	○ 관계법류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로법 등)	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보수교육	3시간	○ 관계법류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로법 등)	옥외광고업 종사자 (대표자, 종업원)	관계법령의 제·개정 시 실시
기타교육	별도정함	○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하여 공고함		

[별표 2] 영업정지 또는 폐쇄기준(제27조제1항 관련)

위 반 사 항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가. 무허가 광고물등의 조치 (변경포함)	영업정지1월미만	영업정지1월이상 2월미만	영업정지 2월이상 또는 영업폐쇄
나. 무신고 광고물등의 조치 (변경포함)	영업정지15일미만	영업정지15일이상 1월미만	영업정지 1월이상
다. 표시방법위반 광고물등의 조치	영업정지1월미만	영업정지1월이상 2월미만	영업정지 2월이상 또는 영업폐쇄
라. 금지또는제한지역,장소,물건에 표시한 광고물등의 조치	영업정지1월미만	영업정지1월이상 2월미만	영업정지 2월이상 또는 영업폐쇄
마. 금지광고물등의 조치	영업정지1월미만	영업정지1월이상 2월미만	영업정지 2월이상 또는 영업폐쇄
바. 안전도검사에 합격하지 못하고 표시한 광고물등의 조치	영업정지1월미만	영업정지1월이상 2월미만	영업정지 2월이상 또는 영업폐쇄
2. 이 법에 위반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여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영업정지1월미만	영업정지1월이상 2월미만	영업정지 2월이상 또는 영업폐쇄
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영업정지1월미만	영업정지1월이상 2월미만	영업정지 2월이상 또는 영업폐쇄

※ 적용상의 유의사항

- (1) 위반행위의 회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2)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할 때에는 그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 (3) 영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전에 당해 영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이 이를 승계한다.

[별표3]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제29조 관련)

가. 일반옥외광고물(단위 : 원)

광고물의 종류	구분	단위	기 준	지역별 수수료	
				동	읍·면
1. 가로형간판					
가. 건물전면6간판	개		· 6제곱미터 이하 · 6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000	2,000 1,000
나. 건물 측·후면 4층이상 (영 제15조제4호)	개		· 20제곱미터 이하 ·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0 2,000	24,000 2,000
2. 세로형간판	개		· 5제곱미터 이하 · 5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2,000 1,000	1,000 1,000
3. 돌출간판	개		· 3.5제곱미터 이하 · 3.5제곱미터 초과 · 이·미용업소 및 의료기관·약국 표지등	15,000 20,000 4,000	10,000 12,000 3,000
4. 공연간판	개	1개당		4,000	3,000
5. 옥상간판	개		· 20제곱미터 이하 ·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84,000 4,500	76,000 4,000
6. 지주이용간판	개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5,000 2,000	12,000 2,000
7.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	개		· 1개당	15,000	10,000
나. 옥상에 표시하는 것	개		· 20제곱미터 이하 ·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84,000 4,500	76,000 4,000
다. 지면에 표시하는 것	개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5,000 2,000	12,000 2,000



광고물의 종류	구분	단위	기 준	지역별 수수료	
				동	읍·면
8.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가. 일반공공시설물	개	· 1제곱미터 이하 ·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500 500	500	500
나. 전주, 가로등주	개	· 50개 이하 · 50개 초과시 50개당가산	7,500 7,500	5,500 5,500	
9. 교통시설(지하도)이용광고물	개	· 5제곱미터 이하 · 5제곱미터 초과	9,000 10,000	4,500 5,000	
10.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대	· 1대당	400,000	400,000	
나. 차량양측면	대	· 1대당	1,500	1,000	
다. 영업용택시 표지등	대	· 10대당	2,000	1,500	
11. 선전탑	개	· 1개당	4,000	3,000	
12. 아취광고물	개	· 1개당	4,000	3,000	
13. 현수막 가. 유통산업발전법상 시장 등의 건물벽면에 표시하는 것	개	· 5제곱미터 이하 · 5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2,000 1,000	1,000 1,000	
나. 기타 지주 또는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것	개	· 1개당	3,000	2,000	
14. 벽보	매	· 100매당	5,000	4,500	
15. 전단	매	· 1,000매당	2,500	2,500	
16. 창문이용광고물	개	(삭제) ※허가·신고 배제			
17.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백열등이나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을 제외)	개	·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			

나.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신설>

(단위 : 원)

광고물의 종류	구분	단위	기 준	지역별 수수료	
				동	읍·면
1. 시내·시외·전세버스 외부광고	대			2,000	2,000
2. 영업용 화물자동차 외부광고	대			1,500	1,500
3. 영업용 택시광고	대			1,000	1,000
4. 차량탑재영상광고	대			350,000	350,000

광고물의 종류	구분	단위	기 준	지역별 수수료	
				동	읍·면
5. 공중전화부스이용 광고	개		· 1제곱미터이하 · 1제곱미터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3,000
				1,000	1,000

※ 광고물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법에 의거 표시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일반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 수수료의 징수방법

- (1)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중 「광고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본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영 제9조제1항 관련)
 - 광고물등의 규격·위치·장소변경은 수수료의 전액 적용
- (2)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영 제9조제3항 관련)

[별표4]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수수료(제29조 관련)

(단위 : 원)

광고물등의 종류(게시시설포함)	적 용 기 준	수수료
1. 옥상간판과 건물측·후면의 4층이상벽면에 설치하는 판류이용 가로형간판	· 연면적 50제곱미터 미만	15,000
	· 연면적 50제곱미터 이상 70제곱미터 미만	30,000
	· 연면적 7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000
2. 광고물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돌출간판	· 연면적 3.5제곱미터 미만	10,000
	· 연면적 3.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15,000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000
3. 건물 4층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 간판 (1의 가로형간판은 제외)	· 면적 6제곱미터 미만	10,000
	· 면적 6제곱미터 이상 15제곱미터 미만	15,000
	· 면적 1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500
4.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이상인 지주이용 간판	· 연면적 10제곱미터 미만	10,000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15,000
	·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500



광고물등의 종류(게시시설포함)	적용기준	수수료
5. 영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미터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가. 옥상에 표시하는 것	· 연면적 5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50제곱미터 이상 7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7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5,000 30,000 1,000
나. 지면에 표시하는 것	· 연면적 1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0,000 15,000 500

※ 제21조에 의거 안전도검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표 5]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제29조 관련)

(단위 : 업)

구 분	단 위	수수료	관련법규	비고
신 규	업소당	10,000	법 제17조제3항	
변 경	업소당	5,000		

※ 수수료의 징수방법

가. 옥외광고업의 변경신고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영 제41조제3항)

- (1) 관할구역내에서 영업장소재지를 변경한 때
- (2) 업소명을 변경한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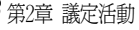
[별표6] 과태료 부과기준(제30조제2항 관련)

위 반 사 항	과 태 료 금 액
1. 옥외광고물관리법 제10조제1항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자	
가.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①면적5제곱미터미만	5만원이상 10만원미만
②면적5제곱미터이상 20제곱미터미만	10만원이상 20만원미만
③면적20제곱미터이상	20만원이상 50만원이하

위 반 사 항	과 태 료 금 액
나. 돌출간판(이·미용업소표지등 제외)·지주이용간판·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①연면적5제곱미터미만 ②연면적5제곱미터이상 10제곱미터미만 ③연면적10제곱미터이상 다. 공연간판 라. 옥상간판·4층이상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간판·옥상에 표시하는 애드벌룬 ①연면적20제곱미터미만 ②연면적20제곱미터이상 마.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선전탑·아취광고물 바. 공공시설이용 광고물 ①동일종류 광고물을 10개미만의 시설물에 표시 ②동일종류 광고물을 10개이상 50개미만의 시설물에 표시 ③동일종류 광고물을 50개이상의 시설물에 표시 사. 교통시설이용광고물 ①5개미만 ②5개이상 20개미만 ③20개이상 아. 교통수단이용 광고물(비행선을 이용하는 광고물) 자. 신고대상 광고물 ①벽보지류 ②현수막 (가) 면적 5제곱미터미만 (나) 면적 5제곱미터이상 10제곱미터미만 (다) 면적 10제곱미터이상 ③교통수단이용 광고물·돌출간판중 이·미용업소 표지등 차. 영 제13조제6항에 해당하는 광고물 ①연면적 1제곱미터미만 ②연면적 1제곱미터이상 3제곱미터미만 ③연면적 3제곱미터이상	5만원이상 10만원미만 10만원이상 20만원미만 20만원이상 50만원이하 5만원이상 20만원이하 10만원이상 20만원미만 20만원이상 50만원이하 10만원이상 20만원미만 10만원이상 20만원미만 10만원이상 20만원미만 20만원이상 30만원이하 30만원이상 30만원이하 10만원이상 20만원미만 20만원이상 30만원이하 30만원이상 50만원미만 30만원이상 50만원이하 장당 5,000원 5만원이상 10만원미만 10만원이상 20만원미만 20만원이상 50만원이하 5만원이상 50만원이하 10만원이상 20만원미만 20만원이상 30만원미만 30만원이상 50만원이하
2.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①1회 위반 ②2회 위반 ③3회 위반	10만원이상 20만원미만 20만원이상 30만원미만 30만원이상 50만원이하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① 번호	② 성명	③ 주민 등록 번호	④ 업소 명	⑤ 전화 번호	⑥ 주소	⑦ 옥외광 고업신 고번호	⑧ 종류	⑨ 수량	⑩ 규격	⑪ 표시 위치	⑫ 표시 기간	⑬ 광고 내용	⑭ 준공 일자	⑮ 성명	⑯ 주소	⑰ 전화 번호	⑱ 변경 사항	비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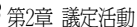
목외광고물
신고필
표시기간
...까지
○○시장·군수

벽 보 : 지름 5센티미터

옥 외 광 고 물 등 안 전 도 검 사 서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업소명		④ 전 화 번 호		
	⑤ 주 소		⑥ 검 사 구 분	신규 · 갱신 · 변경	
⑦ 광고물등허가일자 및 번호			⑧ 광고물등의 종류		
⑨ 표시위치 또는 장소			⑩ 광고물등의 규격		
⑪ 신청일자			⑫ 검 사 일 자		
⑬ 검사내용					
⑭ 감사의견					
⑮ 안 전 도			합 격 · 불 합 격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 제39조 및 강원도옥외광고물관리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를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 성명 : 직위(직명) : (인)					

(뒷면)

구 분		검 사 항 목	적 정	부적정
광고 물종 류별 점검 사항	일반사항	설계도서와 시공과의 상이점		
		부재의 부식 유무		
		광고면의 퇴색 여부		
	옥상간판	옥상바닥의 균열 및 건물의 노후여부		
		구조물의 볼트결손, 조임, 부식유무		
		광고판과 구조물의 부착상태		
	지주간판	지반침하, 주변변형, 누수유무		
		매립부 부식여부, 기초와의 연결상태		
	돌출, 벽면 부착 간판	벽면구조와 시공법 적절여부		
		볼트 부식으로 고착·조임 불량여부		
		벽면 변형여부		
		간판과 벽면의 연결지지대 상태		
구성부재에 관한 점검사항		설계도서와 사용부재 일치여부		
		지지방법 명확, 적절여부		
		처음의 위치에서 이동유무		
		지지부의 변형유무		
		볼트-넛트 조임, 마모, 파손, 유실 유무		
		용접부의 균열, 변형, 부식 유무		
		부재의 도장불량, 부식으로 강도저하 유무		
		골조의 변형으로 광고면판의 이탈 유무		
		부재의 노후로 광고면판의 부착상태 불량유무		
		문자, 부속자재(트랜스·안정기 등)이탈유무		
		전기자재의 노후로 접촉, 절연불량, 화재위험 유무		
		주변여건 변경할 건물 개보수로 광고물에 미치는 영향		
천재지변, 인위적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후, 폭우후, 폭설후, 폭발·충격후		

[illegible]

제 호		처리기간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 신청서		30일
신청 서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업소명 (단체)	
	④ 주 소	
⑤ 영업장 소재지		⑥ 전 화 번 호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40조 및 강원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

구비서류 : 강원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및 인력·시설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756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서			
수 탁 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업소명 (단체)		
	④ 주 소		
⑤ 영업장 소재지			
⑥ 위탁기간		. . . ~ . . . (년 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40조 및 강원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강 원 도 지 사			

210mm × 297mm(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7호서식] <개정>

- 규격 : 가로cm × 세로 8cm
- 바탕색 : 연녹색
- 글 자 : 검정색

전 면	후 면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원증 사진 (3.5 × 4.5) 강원도	소 속 : 직 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자격기한(19 . . . ~ 20 . .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 도 검사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강 원 도 지 사 (인)



〔별지 제8호서식〕 옥외광고업 신고(변경) 대장

① 신고 번호	② 신고년월일	③ 업소명	신 청 자			⑦ 영업장소 재지	⑧ 영업 내용	⑨ 종업 원수	⑩ 변경 사항	비고
			④ 성명	⑤ 주민등록 번호	⑥ 주소					

353mm × 250mm인쇄용지(2급) 60g/m²

〔별지 제9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물종사자 교육수료필증	
① 교육 과정명			
② 교육수료일자			
수 강 자	③ 성 명		
	④ 소 속 영업소명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42조 및 강원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강 원 도 지 사			

210mm × 297mm인쇄용지(특급) 70g/m²

〔별지 제10호 서식〕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이수대상

① 연번	② 교육과정명	③ 교육수료일자	④ 소속업소명	⑤ 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비고

210mm × 297mm인쇄용지(특급) 60g/m²

〔별지 제11호서식〕

옥외광고물종사자교육 불참신고서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업소명		④ 영업장소재지	
	⑤ 주소			
교육 계획	⑥ 일시			
	⑦ 장소			
⑧ 불참사유				
강원도옥외광고물관리조례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귀하				
구비서류 :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210mm × 297mm(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12호서식〕

제 호				처리기간
옥외광고물종사자 교육위탁지정신청서				30일
신 청 서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업소명 (단체)			
	④ 주 소			
⑤ 영업장 소재지			⑥ 전 화 번 호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				
구비서류 : 1. 강의실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등 확보에 관한 서류				

210mm × 297mm(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13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물증사자 교육위탁지정서	
신청서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업소명 (단체명)		
	④ 주 소		
⑤ 영업장 소재지			
⑥ 위 탁 기 간		. . . ~ . . . (년 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강 원 도 지 사			

210mm × 297mm 인쇄용지(특급) 120g/m²

[별지 제14호서식] 옥외광고업 행정처분 대장

일련번호	신고번호	업소명	성명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위반사항	위반회수	처분내용	처분일자	비고

210mm × 297mm 인쇄용지(특급) 60g/m²

나. 建議案

1) 농업기계교관의 근무조건개선건의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2월 10일 원종익 의원의 12인

- 제안이유 : 농업기계업무는 일반적인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전문성을 지닌 기계기술적인 업무이므로 산업의 고도화에 발맞추어 다양해진 기계 기술습득은 물론, 농가에 보급하는 업무야말로 농업기계 교관들이 피나는 노력으로서 농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다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그러므로 농업기계 교관들의 사기진작과 업무의 전문성, 책임성제고를 위하여는 현행별정직이 아닌 타 직렬의 신설 또는 일반적 계열의 전환을 요구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농업기계업무는 기계기술 차원의 업무이므로 다른 일반직 공무원들이 취급할 수 없는 전문성을 지닌 농기계 업무인것임.
 - 따라서 농기계교관들로서는 일반직과 비교할 때 1인2역의 역할을 담당하면서도 금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묵묵히 맡은바 임무를 다하여 왔다고 자부하며 20~30년동안 농촌의 기계화를 위하여 농기계 보급 및 기계화 영농에 적잖은 기여를 하여 농가소득증대에 한 몫을 했다고 생각함.
 - 일반적으로 농기계 보급 및 관리차원의 농업기계 업무가 가지고 있는 속성으로 보아 기술적 지식이 있어야만 업무의 내실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현재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농기계 교관에 대하여 별도의 직렬 신설(농기계직) 또는 농촌지도직이나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이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북돋아 줌으로써 업무추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하는 바임.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2000년 2월 10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15일 제3차회의에서 원종익의원의 제안설명후 최종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2000년 2월 19일 제3차본회의에서 원종익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건의안은 2000년 2월 21일 강원도, 행정자치부에 건의되어 회시되지 않았다.



[의결전문]

농업기계교관의근무조건개선건의문

농업의 변화는 농업기계의 변화를 의미하며 따라서 농업기계와 관련한 공무원의 신분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계 업무는 기계기술 차원의 업무이므로 다른 일반직 공무원들이 취급할 수 없는 전문성을 지닌 농기계 업무인 것입니다.

따라서 농기계 교관들로서는 일반직과 비교할 때 1인 2역의 역할을 담당하면서도 금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다하여 왔다고 자부하며 20~30년 동안 농촌의 기계화를 위하여 농기계 보급 및 기계화 영농에 적잖은 기여를 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한 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산업의 고도화로 이하여 농업도 자동화 농업이라고 할만큼, 첨단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트랙터, 콤팩트, 이앙기, 경운기, 관리기, 바인더, 난방기, 건조기, 예취기, 방제기등 200여종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최첨단 농업기계는 이제 일반농가에서는 서너대씩은 거의 보유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또한 보급과 활용에 대해서는 농업기계 교관들의 역할이 컸음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농기계 보급 및 관리차원의 농업기계 업무가 가지고 있는 속성으로 보아 기술적 지식이 있어야만 업무의 내실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제 강원도의 특수 10대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시·군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산간오지를 찾아다니는 대민행정서비스 1호로서 농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농기계 교관에 대하여 별도 직력신설(농기계직), 또는 농촌지도직이나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이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복돋아 줌으로써 업무추진에 대한 자부심을 갖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2) 고성군건봉사복원·중창에관한건의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2월 10일 신명선의원의 16인
- 제안이유 : 강원도 고성군 소재검봉사는 한국의 4대사찰중 하나로써 한국불교도들의 성지였으며, 역사적으로는 임진왜란과 6.25사변등으로 인하여 수많은 고초를 감내하면서까지 국난극복에 앞장섰던 곳으로써 이제 금강산 개발과 연계하여 남북통일을 대비하는 입장에서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는 건봉사를 유구정비사업 차원이 아닌 옛모습 그대로 복원·중창될 수 있도록 건의하려는 것임.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2000년 2월 10일 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17일 신명선 의원의 제안 설명과 신동철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수정안대로 가결되었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

- 본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 건의안 중에 건봉사는 6.25사변중 아군의 실수에 의한 실화로 황폐화되었는데 이에 대한 실증이라도 있는지?

- 답변요지

- 건봉사복원에는 해마다 국비 및 지방비를 투자하여 건봉사 본래의 모습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금까지 정비실적으로는 사지정비 3개지구에 14억 6,1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사찰복원으로는 11개동에 25억 6,600만원을 투자하였고 이번에 건의한 고성건봉사복원·중창에 관한 건의안 2001년도의 국비신청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실증은 없으나 건봉사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부터 전해들은 바 있으며 앞으로 이부분에 대하여 자료로 제출하여 드리겠음.

[수정안의요지]

- 수정이유

- 건봉사가 황폐화된 원인중 6.25당시 아군측에 의하여 실화로 방화되었다는 실증이 없으



며 이러한 문구를 건의안에 내용으로 기재한다는 것은 건봉사의 복원·중창에 도움이 안되므로 이를 삭제하려는 것임.

- 수정주요골자

- 지구내용중 「더욱이 건봉사는 6.25사변 당시 적군에 의해 파괴된 것이 아니라 아군측의 실수에 의해 실화되어 황폐화되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6.25사변당시 건봉사에 주둔하였던 육군 7사단의 사단장(임부택씨)의 증언에 의하면 아군 PX관리사병의 부주의한 실수로 화재가 발생하여 건봉사가 전소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적군의 폭격이나 실화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군측의 실화에 의해 본사찰의 건물들이 전소되어 황폐화되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전체가 아닌 단지 건물의 기초나 축대의 복원에만 복원공사가 머물러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그 부당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와 「국가의 실수에 의해 전소된」을 삭제
- 본회의 심사 : 2000년 2월 19일 제3차본회의에서 이상명관광건설위원회 간사의 심사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없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건의안은 2000년 2월 21일 문화재청에 건의되어 2000년 3월 16일 관계기관과 논의를 통하여 지속검토하였다고 회시되었다.

[의결전문]

고성군건봉사복원·중창에관한건의안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건봉사(乾鳳寺)는 불보사찰인 통도사, 법보사찰인 해인사, 승보사찰인 송광사와 더불어 염불본산이라 일컬어지는 한국의 4대사찰 가운데 하나로 손꼽혀지는 대사찰로서 웅장한 건물과 많은 유물들을 갖춘 사찰은 한국불교도들의 성지였던 것입니다.

또한 역사적으로는 임진왜란 당시 사명대사(四溟大師)께서 왜적에 맞서 승병(僧兵)을 일으킨 발원지였으며, 난이 끝난이후 양국의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서 전쟁당시 약탈당하였던 부처님의 진신사리(眞身舍利)가 사명대사에 의해 일본으로부터 반환되어 봉안되었던 곳입니다.

이러한 건봉사가 다시 6.25사변에 의하여 이번에는 왜적(倭賊)이 아니라 민족(民族) 자체의 내분(內紛)에 의해 다시 초토화되어 완전히 황폐화(荒廢化)되어 버렸으며, 그 당당하던 옛 위용(威容)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든 유물은 약탈당하거나 유실되었고 건물들은 거의모두 불타버렸습니다. 전후에는 민족의 허리를 두 동간 낸 휴전선이 본 사찰의 주변을 가로질러 설치되었으며, 본 사찰은 비무장지대 안에 편입되어 한때 수백을 헤아리던 승려들은 전국으로 흩어졌고 절은 텅비게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건봉사의 복원은 1986년 당시 전세계가 냉전을 종식하고 동서화합의 분위기가 고조되어 가고 있을 때 「우리민족의 염원인 남북통일(南北統一)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의 여망을 싣고 당시 금강산(金剛山) 개발과 건봉사 복원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적 아래 건봉사 지구가 민통선에서 해제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웅장한 계획 아래 추진되었던 건봉사의 복원계획(復元計劃)은 그 구체적 실천계획 단계에서부터 집행할 예산의 항목이 마땅치 않고, 또 학술적인 복원의 근거가 빈약하다는 명분하에 순연되었습니다.

더욱이 본사찰의 지표조사(地表調査)를 담당하였던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이하 각 조사팀들은 본사찰의 복원이 단지 유구정비(遺構整備)에 머물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이후 관계 당국에서는 이 보고서에 근거하여 건봉사의 복원은 단지 유구정비사업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주어 건봉사는 유구정비 사업지구로 확정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하에 2000년 말까지 유구정비 사업을 완료한다는 일정에 의해 1차 복원사업(復元事業)이 일단 종결되었습니다.

복원 방법으로서 유구정비란 본래 건물(建物)이 남아있지 않고 이미 황폐화 되어버려 건물이 남아있지 않은 유적지(遺跡址)의, 건물의 초석(礎石)이나 기단(基壇) 등의 문자 그대로 유구만이 남아있는 지역에서 행해지는 복원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봉사는 일제시대에는 물론 6.25전쟁 당시에도 건물들이 버젓이 남아있었으며, 이 점은 일제시대 당시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에서 간행한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에 수록된 건봉사의 사진을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에 들어와서도 건봉사는 유구만이 남아있었던 것이 아니라 건물전체가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을 위시한 각종의 관찬사료(官撰史料)나 사찬사료(私撰史料)들로 이 점을 잘 입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봉사의 복원공사는 유구정비사업지구가 아니라 유적전체의 복원공사로 계획이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적복원(遺跡復元)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찰의 복원이라는 보상차원에서도 건봉사의 구 건물의 전체가 모두 복원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임을 강력히 건의를 하오니 관철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 規則案

1) 강원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2월 1일 의회운영위원장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연1회의 정기회를 연2회의 정례회로 개편 시행하게 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정비하고 의회 발언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금까지 발언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4분자유발언 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현행규칙중 용어의 표현이 순화되지 않은 내용을 부드럽게 순화하여 일부 표현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의회의 정기회와 매년 처음 개최되는 임시회시에 개회식을 행하도록 하던 것을 정례회와 첫 임시회에서 개회식을 하도록 함(안 제4조)
 - 의회의 회기별 회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통산하여 연번으로 부여하되 정례회와 임시회를 괄호안에 표시하도록 함(안 제13조)
 - 4분자유발언 시간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4분자유발언”을 “5분자유발언”으로 함(안 제38조의 2)
 -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해 의원 및 방청인이 할 수 없는 행위중 “꺽연”을 “담배를 피우는 행위”로 하여 용어를 순화함(안 제81조·제87조)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2000년 2월 1일 제106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김원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의 제안동의발언 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2000년 2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훈의회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 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규칙안은 2000년 2월 10일 원안대로 가결되어 강원도지사에게 송부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의회규칙 제 호

강원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강원도의회회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중 “정기회”를 “정례회”로 한다.

제38조의 2의 제목 “4분자유발언”을 “5분자유발언”으로 하고, 동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중 “4분”을 각각 “5분”으로 한다.

제1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의회의 회기별 회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통산하여 연번으로 부여하되, 정례회와 임시회를 괄호안에 표시한다.

제81조 제4호중 “끼연”을 “담배를 피우는 행위”로 한다.

제87조 제4호중 “끼연행위”를 “담배를 피우는 행위”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第 17 節 第108回 臨時會

1. 概 況

가. 開 會

제10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는 2000년 3월 7일 김원기위원외 15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 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자로 의장이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8일간의 회기로 2000년 3월 15일 개최하여 3월 22일 폐회되었다.

나. 議事日程

1) 本會議

가) 제1차 본회의 : 2000년 3월 15일(수)

- 제108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나) 제2차 본회의 : 2000년 3월 22일(수)

- 강원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안
- 강원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자연환경보전조례안

- 강원도농업인단체회관운영관리조례안
- 강원도신용보증종합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전국어민총연합회의북한은덕어장조업추진중단촉구건의안
- 강원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동해고속도로연곡IC조기건설을위한건의안
- 5분자유발언 (성희직의원) 의건

2) 議會運營委員會

가) 제1차회의 : 2000년 3월 15일(수)

-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회의석배정의건
- 제108회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건
- 제109회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건

3) 內務委員會

가) 제1차회의 : 2000년 3월 16일(목)

- 의사일정결정의건
- 강원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안
- 강원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敎育社會委員會

가) 제1차회의 : 2000년 3월 16일(목)

-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 강원도자연환경보전조례안

5) 産業經濟委員會

가) 제1차회의 : 2000년 3월 16일(목)

- 의사일정결정의건
- 강원도신용보증조합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농업인단체회관운영관리조례안
- 전국어민총연합회의북한은덕어장조업추진중단촉구건의안

6) 觀光建設委員會

가) 제1차회의 : 2000년 3월 16일(목)

- 의사일정결정의건
- 동해고속도로연곡IC조기건설을위한건의안

나) 제2차회의 : 2000년 3월 21일(화)

- 강원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다. 議會活動

1) 本會議

가) 5분자유발언(성희직의원) : 제2차본회의

- 성희직의원 : 정선군 고한읍 박십지구에 세워지는 스몰카지노가 많은 이용객의 입장이 예상되므로 폐광카지노에서 자동차로 불과 한시간 거리에 있는 태백, 정선, 영월, 삼척 4개 시군 주민들에게 월 하루정도의 출입만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전제하고 이를 통하

여 스몰카지노장의 엄청난 혼잡을 막고 지역주민들의 잦은 카지노 출입으로 인한 가정과
탄 등 사회적 부작용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것이므로 집행부에서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
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2) 委員會

가) 현지시찰 : 내무위원회

- 2000년 3월 16일 제1차회의에서 의사일정을 결정한후 소관업무 파악을 위해 3월 21일 강원
도통합상황실을 방문하였다.

나) 현지시찰 : 교육사회위원회

- 2000년 3월 16일 제1차회의에서 의사일정을 결정한후 소관업무 파악을 위해 3월 20일 여성
수련원 방문에 이어 21일 삼척시 교육청을 방문하였다.

다) 현지시찰 : 산업경제위원회

- 2000년 3월 16일 제1차회의에서 의사일정을 결정한 후 소관업무 파악을 위해 3월 21일 강
원도 농업인단체회관을 시찰하였다.

라. 議案處理狀況

1) 一般議案

- 이번회기중 상정대상일반안건은 총 12건으로 도지사 제출이 9건이며, 위원회제출 1건, 의
장제의 1건, 의원발의 1건으로 처리결과를 보면 12건 모두 가결되었으며 종류별 처리현황
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종류별	상 정 대 상 안 건			의 안 처 리 내 역				
	합 계	전화기 이 월	금회기 접 수	가 결			폐 기 (철회)	계 류
				소 계	원 안	수 정		
계	12		12	12	10	2		
조 례 안	9		9	9	7	2		
예 산 안								
동 의 안	1		1	1	1			
건 의 안	2		2	2	2			



2. 議決案件

가. 條例案

1) 강원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및제안자 : 2000년 3월 7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도세징수사무를 시·군에 위임하고 그 사무비용을 보전해 주는 징수교부금제가 실제 징세비보다 높게 책정되었고 시·군의 징수실적에 따라 교부되어 시·군간 재정불균형 요인으로 작용해 옴에 따라 도세 징수교부금을 현실에 맞게 징세비 보전기능과 재정보전적 기능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2000. 1. 12)이 개정되어 재정보전금제도가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재정보전금의 산정·배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재정보전금의 종류와 정의(안 제2조)
 - 일반재정보전금은 시·군의 인구수 및 도세징수 실적에 따라 용도를 정하지 않고 일반재원으로 배분하는 보전금
 - 시책추진보전금은 지역개발사업 수요, 재해대책 수요, 도세징수실적 우수 시·군 지원사업, 특별한 재정감소보전 등에 배분
 - 재정보전금의 예산편성(안 제3조)
 - 매년 재정보전금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며 추경시 도세의 증감이 있을 경우 재정보전금도 증감 편성하도록 함.
 - 재정보전금의 예산과 결산 차액은 다음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배분하도록 함.
 - 재정보전금의 산정방법(안 제4조)
 - 일반재정보전금 재원중 60%는 최근 주민등록 인구수를 기준으로 도 전체의 인구수에 당해 시·군의 인구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40%는 전년도 도 전체의 도세 징수 실적에서 당해 시·군의 징수실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함.

- 시책추진보전금은 시·군 지역개발사업, 광역행정 추진사업, 재해수요, 도세징수실적 우수시군 필요사업, 기타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배분하며, 시장·군수의 산청에 의하거나 도에서 일정기준을 정하여 배분하도록 함.
 - 시장·군수는 시책추진보전금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함.
 - 재정보전금의 배분통지 및 교부(안 제5조)
 - 도지사는 일반재정보전금의 총액을 매 회계년도 개시전에 당해 시·군에 통지하여야 하며, 변경된 때에는 그 내용용을 통지하도록 함.
 - 일반재정보전금의 교부는 매 분기말 인구수와 도세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분기 익월 말일까지 교부토록 하고 시책추진보전금은 예외로 함.
 - 재정보전금의 시정 등(안 제6조)
 - 시장·군수가 재정보전금 산정 자료를 과장 또는 허위로 작성하여 부당하게 배분 받았거나 받고자 할 때에는 초과된 금액을 반환하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가 시책추진보전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거나, 승인없이 용도변경한 때, 예산 미확보 등으로 당해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에 기배분한 시책추진보전금을 반환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재정보전금에 대한 이의 신청(안 제7조)
 - 시장·군수는 일반재정보전금의 산정기초 등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
 - 도지사는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통지 하도록 함.
 - 재정보전금의 반환 또는 감액(안 제8조)
 - 도지사는 부당하게 배분된 재정보전금의 반환 또는 감액한 금액을 다른 시·군의 보전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함.
 - 구역변경과 폐치·분합의 경우 재정보전금에 대한 조치(안 제9조)
 - 도지사는 시·군의 구역변경 또는 폐치·분합이 있는 때에는 당해 시·군에 배분할 재정보전금을 조정하여야 함.
- ① 2시·군 이상이 통합된 때에는 종전의 시·군에 배분할 보전금을 그대로 배분
 - ② 시·군의 구역이 변경되거나 1시·군이 2이상 시·군으로 분할된 때에는 종전의 시·군에 배분할 보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 하도록 함.
 - ③ 시·군의 폐치·분합 또는 구역변경이 있는 때에는 새로 설치된 시·군에 배분할 시책추진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의 배분 요건을 참작하여 재산정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2000년 3월 9일 내부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16일 제1차회의에서 권혁인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최종춘 전무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2000년 3월 22일 제2차본회의에서 원종익 내부위원장의 심사보고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2000년 3월 22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2000년 4월 12일 강원도조례 제 2766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2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3에 규정된 시·군의 재정보전금 배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군 상호간의 재정형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정보전금”이라 함은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서는 도가 당해 시·군에 배분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일반재정보전금”이라 함은 재정보전금중 일정액을 관할 시·군의 인구수 및 도세 징수 실적에 따라 지출용도를 정하지 않고 일반재원으로 배분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시책추진보전금”이라 함은 제4조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배분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예산편성) ① 도지사는 매년 이 조례에 의한 재정보전금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편성에 의하여 도세에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재정보전금도 이를 증감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전금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정산차액은 다음년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보전금의 산정·배분방법) ① 일반재정보전금의 산정방법은 일반재정보전금 총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근 주민등록인구수를 기준으로 도 전체의 인구수에서 당해 시·군의 인구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년도 도 전체의 도 세징수실적에서 당해 시·군의 도세 징수실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시책추진보전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배분한다.

1. 시·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이나 2개 시·군 이상이 연관되어 광역행정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2.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예비비를 포함한 당해 시·군의 재원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
3. 도세 징수실적이 우수한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4. 기타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각호의 사유로 시장·군수가 시책추진보전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심사하여 배분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배분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추진보전금의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시책추진보전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재정보전금의 배분통지 및 교부) ① 제4조제1항에 의하여 배분한 일반재정보전금은 매 회계년도 개시전에 총액을 당해 시·군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재정보전금의 총액이 변경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시·군의 재정보전금이 변경된 때에는 그 때마다 이를 당해 시·군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일반재정보전금은 매분기말 인구수와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매분기 말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단 시책추진보전금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재정보전금의 시정등)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재정보전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 또는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부당하게 재정보전금을 배분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시장·군수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에 대하여 반환하게 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4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예산미확보등으로 당해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에 당해 시장·군수에게 배분할 시책추진보전금을 감액하거나 이미 배분한 시책추진보전금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재정보전금에 대한 이의신청) ① 시장·군수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보전금의 결정통지를 받고 당해 시·군의 재정보전금 산정기초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당해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보전금의 반환 또는 감액) 도지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또는 감액한 금액을 다른 시·군의 보전재원에 충당할 수 있다.

제9조(구역변경과 폐치·분합의 경우 재정보전금에 대한 조치) 도지사는 시·군의 구역변경 또는 폐치·분합이 있는 때에는 당해 시·군에 배분할 재정보전금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1. 2이상의 시·군이 합하여 새로운 시·군이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시·군에 배분할 재정보전금을 그대로 새로 설치된 시·군에 배분한다.
2. 시·군의 구역이 변경되거나 1시·군이 2이상의 시·군으로 분할된 때에는 새로 설치된 시·군에 배분할 재정보전금은 종전의 그 시·군에 배분할 재정보전금을 기준으로 하여 다시 산정한다.
3. 시·군의 폐치·분합 또는 구역변경이 있는 때에는 새로 설치된 시·군에 배분할 시책추진보전금은 제4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참작하여 다시 산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공포일이 속하는 회계년도부터 적용한다.

2) 강원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3월 7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주민의 감사청구)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17(감사청구 심의회)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도사무에 대하여 20세이상 주민이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20세이상 주민총수의 1,000분의 1이상」으로 설정함(안 제2조)
 - 「주민감사청구심의회」 구성·운영
 -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으로 포함하여 7~11인으로 구성함(안 제3조 제1항 내지 제3항)
 - ▶위원장 : 행정부지사, 부위원장 :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정
 - ▶위원 : 도의회 의원, 변호사·대학교수 등 전문가, 감사관(당연직)
 -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함(안 제4조)
 - ▶도의회 의원은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은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함.
 - 심의회 기능은 감사청구 요건 및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청구인 명부의 유효서명 확인, 기타 위원장 부의사항을 심의·의결함(안 제5조)
 - 도지사는 주민감사 청구인 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소정의 절차완료 즉 심의회에 심의 의뢰(안 제6조)
 -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7조)
 - 위원 수당, 비밀누설금지, 자료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내지 제10조)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2000년 3월 9일 내부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16일 제1차 회의에서 박종혁 감사관의 제안설명과 최종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2000년 3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원종익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2000년 3월 22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2000년 4월 12일 강원도조례 제 2767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4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의17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내 20세이상 주민총수의 1,00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제3조(주민감사청구심의회 구성) ① 시행령 제10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1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도의회 의원
2.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기술사, 기타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3.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도 국장급이상 공무원
5. 도 감사관(당연직으로 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내용의 기록·관리 등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 감사기획담당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및 위원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강원도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5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감사청구요건의 심사·결정(감사청구의 수리 및 각하)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청구인 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주민감사청구 심의의뢰) 도지사는 주민감사청구인 대표자로부터 청구인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법 제13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절차를 완료한 즉시 심의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1 이상의 서명을 받아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의 회의소집시에는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회의개최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위원장을 포함한다)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회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이 소속한 부서에 근무한 자에 관한 사항
2. 위원 본인과 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가 있거나 친족의 관계가 있었던 자와 관계가 있는 사항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3항의 재적위원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⑥ 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심의회 의결로 관계공무원 및 기타 이해관계인과 참고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원도각종위



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비밀누설금지)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자료제출등의 협조)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간사를 통하여 자료의 제공요구나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강원도사무 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3월 7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도 사무 시군 위임사항중 위임근거가 「강원도립공원관리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강원도립공원 관리에 관한 위임 사항을 본 조례로 이관하여 도와 시군간의 업무처리 한계를 명확히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이양된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권한 위임 관련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강원도립공원관리조례에 삽입되어 있는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 시행허가 및 공원시설 관리허가, 공원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 공원점용료등의 징수등에 관한 사무위임의 근거를 본 조례로 이관함(안 별표 1 관광문화분야 제27조)
 - 공유수면관리법 개정으로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이양된 공유수면의 관리,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권한 위임조항을 삭제함.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2000년 3월 9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16일 제1차회의에서 장순일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최종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2000년 3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원종익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2000년 3월 22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2000년 4월 12일 강원도조례 제 2768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관광문화분야란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건설도시분야 제70호 및 제95호를 삭제한다.

[별표1]

업무분야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관광문화	27	강원도립공원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시행허가 및 공원시설관리허가	자연공원법 제22조
		나. 공원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	동법 제23조
		다. 원상회복 면제승인	동법 제24조
		라. 공원보호구역의 점·사용허가 및 원상회복 면제승인	동법 제25조제3항, 제4항
		마. 공원입장료 결정징수 및 공원시설사용료 결정징수허가	동법 제26조
		바. 공원점용료 등의 징수	동법 제26조
		사. 공원구역등 출입제한 또는 금지	동법 제36조의2
		아. 공원구역등 출입제한 또한 금지	동법 제36조의4
		자. 영업의 제한 또는 금지	동법 제37조
		차. 법령위반등에 대한 처분	동법 제39조
		카. 공익을 위한 처분	동법 제40조
		타. 공원대장의 작성보관	동법 제44조
		파. 사법경찰관리의 지명제청	동법 제45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3월 13일 강원도지사
- 제안 이유 : 지식정보산업과 정보화 관련기능을 기획관리실로 일원화하여 지식산업 육성 등 정보화 분야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경쟁력있는 조직으로 발전시켜 나가 고자 실국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사무실 신축으로 이전된 사업소의 소재를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기획관리실 분장사무중 “통신업무”를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고 “지식산업육성 지원 및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6조, 제7조)
 - 산업경제국 분장사무중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을 기획관리실로 이관함(안 제10조)
 - 사업소 이전에 따라 사무소 소재지를
 - 축산기술연구센터는 “춘천시 신북읍 산천리 5번지”를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 1357번지”로 함(안 제52조)
 - 가축위생시험소는 “춘천시 우두동 296-3번지”를 “춘천시 신북읍 산천리 727번지”로 함(안 제55조)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2000년 3월 13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16일 제1차 회의에서 장순일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최종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2000년 3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원종익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2000년 3월 22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2000년 3월 25일 강원도조례 제 2765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8호중 “정보·통신·통계”를 “정보·통계”로 한다.

6. 지식산업 육성지원 및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호중 “사무·문서·보안”을 “사무·문서·보안·통신”으로 한다.

제10조제5호중 “공업발전 및 과학기술 진흥”을 “공업발전”으로 한다.

제52조제2항중 “춘천시 신북읍 산천리 5번지”를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 1357번지”로 한다.

제55조제2항중 “춘천시 우두동 296-3번지”를 “춘천시 신북읍 산천리 727번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중 “국제협력실”을 “국제통상협력실”로 한다.

② 강원도정조정위원회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소방본부장·공보관·여성정책실장·국제협력실장·감사관·기획관”을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소방본부장·공보관·여성정책실장·국제통상협력실장·감사관·지식정보기획관”으로 한다.

③ 강원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중 “정보통계담당관”을 “지식정보기획관”으로 한다.



5) 강원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3월 7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자치단체 분쟁조정 기능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위원회의 기능을 심의기능에서 의결기능으로 강화하고, 구성원을 15인에서 위원장을 포함 11인이내로 조정함(안 제2조, 제3조제1항)
 - 위원중 당연직위원은 5인으로 하고 기획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환경복지국장, 산업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으로 함(안 제3조제3항 제1호)
 - 위촉위원 6명은 도지사가 위촉하고, 임기를 1년에서 3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함(안 제3조제3항 제2호 및 제4조)
 -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함(안 제3조제2항)
 - 부위원장을 따로두지 않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함(안 제5조제3항)
 -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함(안 제6조제2항)
 -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때는 분쟁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줌(안 제7조)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2000년 3월 9일 내부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16일 제1차회의에서 장순일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최종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2000년 3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원종익 내부위원장의 심사보고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2000년 3월 22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2000년 4월 12일 강원도조례 제 2769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140조의2제1항”을 “제14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11”로 한다.

제2조본중 “심의·조정”을 “심의·의결”로 하고, 동조제1호중 “시·군 상호간 분쟁사항”을 “시·군 또는 그 장간의 분쟁”으로 하며, 동조제2호의 “시장·군수 상호간 분쟁사항”을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그 장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 등 각 1인을 포함하며 15인 이내의”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이내의”로 하고, 동조제2항중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된다”를 “위촉위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간사는 기획담당관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를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로 한다.

1. 당연직위원(5인)은 기획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환경복지국장, 산업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2. 위촉위원은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3년이상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자, 판·검사 또는 변호사직에 6년이상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자, 기타 지방자치사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6인 이내로 한다.

제4조중 “1년”을 “3년”으로 하고,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궐 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총괄”을 “통할”로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유고시에”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6조제2항중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를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이상의 출석으로 개의”로 한다.

제7조중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관계공무원, 지방자치단체 조합직원 또는 관계전문



가”로, “있다”를 “있으며”로 하고, 동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분쟁의 당사자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 강원도자연환경보전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3월 13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여 주민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시책 및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자연환경을 적극적으로 보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도, 시·군 및 주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 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을 매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
 - 도지사는 관리아생 동·식물의 보호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야생동물의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4조 내지 제6조)
 -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거나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등을 도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동지역내에서의 행위 및 출입제한과 위법행위에 대한 중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내지 제11조)
 - 생태계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임시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도지사는 법 제30조 제3항에 의한 완충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도록 함(안 제14조)
 - 생물다양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환경조사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사항에 대하여 정함(안 제16조 내지 제21조)

- 지속가능한 개발사업의 수립·시행과 자연환경보전시책의 추진에 활용할 수 있는 생태·자연도의 작성과 주민열람·고시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2조)
- 기타 자연휴식지의 관리,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3조 내지 제28조)
- 생태계 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출입제한·중지명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사항을 정함(안 제29조)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2000년 3월 13일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16일 제1차회의에서 이방 웅환경복지국장의 제안설명과 서의승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및 답변이 있는 후 수 정하여 가결되었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
 - 안 제12조의 임시생태계보전지역지정은 사업의 인·허가 등 관리행위를 제한하는 행위로 써 모법인 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에도 임시생태계보전지역 지정시 당해 지역의 주민과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하고 있는만큼 당해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 지정연월일을 지정년월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답변요지
 - 모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임시 생태계 보전지역지정시 당해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 견을 듣는 것은 필요절차임. 조례의 중복규정을 피하기 위하여 삭제하였으나 강조하는 의미에서 본 사항을 삽입하는데 동의함.
 - 한글맞춤법에 맞게 지정년월일로 수정하는데 동의함.

[수정주요골자]

- 「안 제12조제1항」 “인정되는 지역을” 다음에 “당해지역의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를 삽입하고 같은 조제2항 “당해지역의 시장·군수” 다음에 “주민과 이해관계자” 를 삽입
- 「안 제4조제2항, 제7조제4항 및 제14조」 중 “지정연월일” 을 “지정년월일” 로 수정
- 본회의 심사 : 2000년 3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구 교육사회위원장의 심사보고후



수정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2000년 3월 22일 수정안대로 가결된 후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2000년 4월 12일 강원도조례 제2770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자연환경보전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의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함으로써 현재의 도민과 장래의 후손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며 아울러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 시·군 및 주민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기본원칙에 따라 생태계와 야생동·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도의 시책에 부응하여 관할지역의 자연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하기 위한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도 및 시·군이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사업활동 등을 함에 있어 자연환경의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강원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③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의 현황 및 전망
2. 생태계보전지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연경관의 보전에 관한 사항
4. 야생동·식물의 보호 및 종다양성 증진에 관한 사항
5. 자연보호운동 및 민간부문의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기타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시책 및 투자사업
7.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④ 도지사는 실천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이를 환경부장관 및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고시하여야 한다.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는 실천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실천계획의 추진상황을 2년마다 분석·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장 관리아생동·식물 등의 보호

제4조(관리아생동·식물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야생동·식물중에서 강원도관리아생동·식물(이하 “관리아생동·식물”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도내에서 멸종위기에 있거나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동·식물
2. 도내에서 주로 서식하는 국내 고유종 기타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야생동·식물
3. 학술적·경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야생동·식물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아생동·식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증명, 지정년월일, 지정사유, 주요 생태적 특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관리아생동·식물이 보호가치 상실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아생동·식물 등의 보호) ① 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아생동·식물을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아생동·식물보호대책(이하 “보호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서식지역 및 서식분포 현황
2. 개체수 감소, 서식여건 변동 등에 대한 원인분석



3. 서식지 보호 등 보전계획

4. 기타 관리아생동·식물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관리아생동·식물이 서식하는 지역의 합리적인 토지의 이용방안을 정하고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이의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관리아생동·식물을 보호하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과 생물다양성이 독특하거나 우수한 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경작방식의 변경, 토지의 임대, 기타 보전활동 수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시장·군수에게 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야생동물의 긴급구조) ① 도지사는 농약등 독극물에 중독되었거나, 덫·올무·차량 등에 의해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와 치료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위험에 처해 있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 및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생태계보전지역의 보전

제7조(생태계보전지역의 지정) ①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생태계보전지역 (이하 “생태계보전지역” 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2. 지형·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3.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야생동·식물 및 관리아생동·식물의 서식지·도래지 등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4. 각종의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5.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으로서 특별히 생태계를 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습지·초원지역

② 도지사는 생태계보전지역안에서 특별히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거나 생태계의 훼손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구역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생태계특별보호구역을 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생태계보전지역 또는 생태계특별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당해지역이 다른 시·도에 걸쳐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생태계보전지역 및 생태계특별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의 명칭·

위치·면적·지정목적·지정년월일·지번·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⑤ 도지사는 생태계보전지역 또는 생태계특별보호구역이 군사 목적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해제·변경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생태계보전지역의 관리기본계획) 도지사는 생태계보전지역에 대하여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환경보전전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생태계특별보호구역의 특별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3. 정기적인 모니터링에 의한 생태계변화관찰 및 야생동·식물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생태계보전지역 및 그 완충지역의 주민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
5. 자연자산의 관리와 생태계의 보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사항

제9조(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생태계보전지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생태계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생태계보전지역안에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어 도지사가 지정한 야생동·식물(생태계특별보호구역안에서는 모든 야생동·식물)을 살상·포획·채취·이식·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덫·울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주입하는 행위
2.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기존 건축면적의 2배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3. 하천·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4. 수면의 매립·간척 및 토석의 채취
5. 불을 놓는 행위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칙에서 정하는 재해로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 및 어로행위의 지속을 위한 경우
3. 도지사가 당해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가하거나 생태계의 관리를 위



하여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경우

③ 누구든지 생태계보전지역안에서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 기타 표식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3. 야생동·식물을 살상·포획·채취·이식하거나 동지·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4.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어 고의로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5. 기타 생태계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금해야 할 행위로서 규칙이 정하는 행위

제10조(출입제한) ① 도지사는 생태계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내에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학술 조사·연구 또는 생태계의 보전·복원을 위한 것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행위
2.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한 조수의 서식상황조사
3. 군사 목적상 필요한 행위, 천재·지변 등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해우이
4.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5. 기타 생태계보전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도지사가 고시하는 행위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의 위치·면적, 출입에 제한 또는 금지기간, 출입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고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 지역중에서 사람의 출입이 빈번한 경계지점에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하고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중지명령등) 도지사는 생태계보전지역안에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2조(임시생태계보전지역) ① 도지사는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생태계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당해지역의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관할 시장·군수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강원도임시생태계보전지역(이하 “임시생태계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당해지역의 명칭·위치·면적·지정목적·지정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 당해 지역의 시장·군수 및 주민과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임시생태계보전지역의 생태계에 변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계획 또는 사업의 인·허가 등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계획의 보안을 요청하거나 실시 시기의 조정, 실시방법의 변경 또는 인·허가 등의 유보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임시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동 지역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생태계보전지역등의 표시) ① 도지사는 생태계보전지역 및 생태계특별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경계구역에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안내판이 훼손되거나 설치한 위치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완충지역) 도지사는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충지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의 명칭·위치·면적·지정목적·지정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생태계 보호·복원등)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생태계보전지역, 관리야생동·식물의 서식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고 우선적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로 개설 등 개발에 의하여 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2. 외래동·식물의 번식으로 생태계가 교란된 지역
3. 자연재해로 자연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4. 기타 인위적 간접 또는 과도한 이용으로 인하여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지역

제4장 자연환경의 조사 등

제16조(자연환경조사) ① 도지사는 관할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매 10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조사 대상지역 및 각 지역별 조사기간 및 조사주체
2. 조사내용, 방법, 인원 및 소요예산
3. 조사자료의 정리 및 활용
4. 관계행정기관의 협조사항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야생동·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현황
 2. 식생현황
 3.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보호야생동·식물, 관리야생동·식물 및 국내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
 4. 지형·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
 5. 토양의 특성
 6. 기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 ④ 도지사는 조사지역의 관할 시장·군수와의 협의를 거쳐 자연환경조사의 일부를 시장·군수가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정밀조사등의 실시) ① 도지사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새롭게 파악된 생태계로서 특별히 조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한 지역 중에서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지역 또는 자연적·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자연환경조사에 대한 협조) 도지사는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장비 및 전문인력, 출입제한구역의 출입, 관련자료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조사자료의 체계적 관리) 도지사는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계행정기관 및 일반국민 등이 관련정보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0조(생태계에 대한 변화관찰) ①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 내용을 정기적인 모니터링에 의하여 관찰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이를 행한다.

1.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2.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보호야생동·식물, 관리야생동·식물 및 기타 희귀한 동·식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
3.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자연휴식지
4. 기타 자연환경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② 시장·군수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변화관찰 결과 생태계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생태계의 변화관찰 결과를 연도별로 비교·분석하고, 생태계의 변화가 관찰된 지역에 대해서는 이의 보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자연환경조사원등) ①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변화관찰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자연환경조사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사원에게 그 조사수행을 필요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조사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변화관찰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연보전협회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4. 기타 조사 및 변화관찰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④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원을 위촉한 때에는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생태·자연도의 작성) ①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하고, 자연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강원도생태·자연도(이하 “생태·자연도”라 한다)를 작성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성지침을 고려하여야 하며,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생태·자연도를 작성함에 있어 시장·군수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전문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주민의 열람을거쳐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생태·자연도는 환경부장관 및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제23조(자연휴식지의 지정·관리)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자연휴식지의 생태적·경관적 가치를 보전하는 가운데 건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4조(자연경관의 보전) 시장·군수는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역내 경관적 가치가 높은 호소·암석·폭포·해안선 등을 조사하여 보전하여야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전하여야 한다.

제25조(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 자연환경보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관리 야생동·식물등 야생생물의 보호
2. 자연환경의 실태 및 관리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 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4.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홍보

제26조(교육·홍보)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관계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야생동·식물 보호와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자연환경교육·홍보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국제협력의 증진) 도지사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5 장 과 태 료

제29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생태계 훼손행위를 한 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지·원상회복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 ②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의 처한다.
- ③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입한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④ 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⑤ 도지사는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기존의 생태계보전지역에 대한 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이미 지정되어 있는 생태계보전지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7) 강원도농업인단체회관운영관리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3월 13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농업단체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회원들의 일체감 조성을 위하여 건립한 농업인 단체회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회관은 농업관련 각종행사·농특산물 판매장·각종 연회장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명문화함(안 제4조)

-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였고 사용승인 철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회관 사용료의 기준과 납부방법, 사용료의 감면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농촌진흥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목적으로 정부기관에 법인허가를 받은 도단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2000년 3월 14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16일 제1차회의에서 사공 번웅 농업기술원장의 제안설명과 전창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수정하여 가결되었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
 - 수탁자는 결정되었는지?
 - 수탁자에 대하여 다시 정리하여 주기바람.
 - 제3자와 재위탁할 수 있는지?
- 답변요지
 - 현지 농업인단체 (5개 단체) 연합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음.
 - 농업인단체 연합회가 되겠음
 - 재위탁은 안됨. 시행규칙에 명문화하여 명백히 하겠음.

[수정안 요지]

- 수정이유 : 조문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수정 및 제9조(위탁관리) 제3항 신설
- 수정주요골자
 - 제3조(정의) 2호중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이용하는 자가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금액」으로 수정하고
 - 제9조(위탁관리) 제1항중 「위탁할 수 있다」를 「위탁한다」로 수정하며
 - 제9조(위탁관리) 제3항에 「수탁자는 회관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회관의 설치 목적에 부

합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를 신설한다.

- 본회의 심사 : 2000년 3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함종선 산업경제위원회 간사의 심사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없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2000년 3월 22일 수정안대로 가결된 후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2000년 4월 12일 강원도조례 제2771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농업인단체회관운영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단체회원의 일체감 조성과 각 단체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강원도농업인단체회관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강원도농업인단체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춘천시 우두동 413-6번지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인단체”라 함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목적으로 정부기관에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도단위 단체를 말한다.
2. “사용료”라 함은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회의실, 영상시설 등 회관의 일부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수탁자”라 함은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회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회관의 사용) 회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1. 농업관련 학술 및 문화행사, 농경유물전시, 영농기술정보교화에 필요한 행사
2. 결혼식 및 농업관련 축하행사
3. 농업인단체 사무실 활용 및 농특산물 생활필수품 판매사업
4. 각종 사회단체의 교육행사
5. 회관 수익사업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기타 도지사가 강원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회관의 사용승인)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 및 개인은 사용개실일전에 도지사에게 사용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사용승인 철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1. 사용재산을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승인조건을 위배한 때
2. 공공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때
3. 도지사가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기 아닐 때

제7조(사용료 징수)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납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농업인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행사
2. 농업인단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수익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목적의 행사 등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액할 수 있다.

제9조(위탁관리)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회관의 운영 및 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농업인단체에 위탁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자에 대한 사업능력,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회관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회관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강원도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사용료 기준액

시 설	사용기준	요 금	비 고
1. 강당(예식장)	평일 주간 1회 1시간	30,000	토, 일, 공휴일은 평일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징수
2. 회의실	"	10,000	야간은 주간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 징수 매1시간 초과시 마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징수
3. 강당 냉·난방 시설 · 강당 · 회의실	1회 2시간 "	50,000 15,000	매 1시간 초과시마다 100분의 40을 가산함. 단, 2시간미만 사용할 때는 2시간 사용료 징수 ※ 1시간 초과라함은 30분이상 추가사용을 말함
4. 음향시설	1회 1시간	15,000	매 1시간 초과시마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 징수
5. 영상시설	1회 1시간	50,000	매 1시간 초과시 마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 징수

8) 강원도신용보증조합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3월 7일 강원도지사
- 제안 이유 : 이 조례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2000. 3. 1일부터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설립근거와 변경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조례제명을 “강원도신용보증재단지원에관한조례” 로 변경함.
 - 설립근거를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 로 하고 “강원신용보증재단” 으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1조)
 -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합” 을 “재단” 으로 각각 변경(안 제2조 내지 제6조)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2000년 3월 11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16일 제1차회의에서 박영



환 산업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창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2000년 3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함종선 산업경제위원회 간사의 심사보고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2000년 3월 22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2000년 4월 12일 강원도조례 제 2772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신용보증조합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신용보증조합지원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제2항제1항및제2항·제3조제1항제1호및제2호·제3조제2항·제4조제1항·제5조및제6조중 “조합”을 각각 “재단”으로 한다.

제1조중 “민법 제32조”를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로, “재단법인 강원신용보증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강원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중 “강원신용보증조합”을 “강원신용보증재단”으로 한다.

9) 강원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3월 7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자연공원법이 개정(99. 8. 9 시행)되면서 중복되거나 불필요하게 규정된 조문은 삭제하고 조례상 권한의 위임사항은 “강원도사무위임조례”에 이관하여 도립공원관리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자연공원법과 중복된 조문은 삭제함(안 제6조, 제7조제4항·5항 및 제10조)
 - 권한의 위임사항을 조례운영 체제의 일원화를 위하여 “강원도사무위임조례”에 이관함.
 -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시행허가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확대 위임함.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2000년 3월 9일 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17일 제2차 회의에서 방재홍 관광문화국장의 제안설명과 신동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및 답변이 있는 후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
 -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 시행허가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확대위임할 시 발생하는 문제점은?
- 답변요지
 - 공원사업 시행허가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확대 위임할 시 자연공원법에서 정한 법규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문제점은 없음.
- 본회의 심사 : 2000년 3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명 관광건설위원회 간사의 심사보고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2000년 3월 17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2000년 3월 17일 강원도조례 제2733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립공원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조 및 별표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1항중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특별위원으로 조직한다”를 “자연공원법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한다”로 하고, 동조 제4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建議案

1) 전국어민총연합회의북한은덕어장조업추진중단촉구건의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3월 16일 산업경제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최근 「전국어민총연합회」에서 불법적으로 북한측 「민족경제협력연합회」와 접촉을 갖고 “남북민간어업협력에관한합의문”을 발표한 후 동해안 원산 앞바다 은덕어장에서 트롤어선 및 쌍끌이저인망어선 등을 투입하여 명태, 오징어, 꽁치 등의 조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들 어종은 계절성 회유어종으로서 남쪽 동해안으로의 남하로를 차단할 뿐만 아니라 대형트롤 및 저인망 조업으로 인한 어족자원의 고갈을 초래하여 동해안 어민들의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전국어민총연합회」측의 북한 원산 앞바다 은덕어장의 남북공동조업 추진을 중

단시키기 위하여 관계부처에 사업 불승인은 물론, 확실한 입장 표명과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기 위함.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2000년 3월 16일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오원일 의원의 제안설명 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2000년 3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함종선 산업경제위원회 간사의 제안설명 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건의안은 2000년 3월 22일 원안대로 가결되어 강원도지사에게 송부되었다.

[이결전문]

전국어민총연합회의북한은덕어장조업추진중단촉구건의안

최근 언론보도 및 관계부처(통일부, 해양수산부) 확인결과에 의하면 속치 「전국어민총연합회(회장:정남준)」에서는 지난 2월 21일부터 2월 25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측 「민족경제협력연합회(회장:허혁필)」와 회담을 갖고 소위 “남북민간어업협력에관한합의문”을 발표한 후, 북한 동해 해역에서의 공동 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어민총연합회(이하 「전어총」이라 표기함)에서 발표한 남북 민간어업협력사업의 주요내용과 「전어총」의 조업계획을 살펴보면

- 어업기간은 2000년 3월부터 2005년 봄까지 5년간으로 하고,
- 어업수역은 북한 원산 앞바다 영해기선으로부터 100해리 밖으로 하되 수역명칭을 「은덕어장(恩德漁場)」으로 하며,
- 어업형태는 선망·저인망·트롤·연승 등 7종으로 하고,
- 어업수익은 50:50으로 분배하되 북한측 수입분은 외화 또는 물자를 제공토록 하였으며,
- 「전어총」은 이곳에서 쌍끌이 저인망 및 대형트롤 어선 등 42척을 투입하여 조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와 같은 합의내용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한 「남북어업협력사업」으로 보일지 모르나 다음과 같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동해안 남하어종의 어로차단과 자원의 고갈을 초래하여 동해북부 어민들의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 자명합니다.

첫째, 「전어총」은 부산, 경남지역의 일부 어업인(선주 등)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명실상부한 전국의 어업인들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볼 수 없으며,

둘째, 「전어총」의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와의 합의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법에 근거한 북한 주민 접촉 승인없이(불승인) 불법적인 접촉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국법 질서를 문란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셋째, 어업수역인 북한 원산 앞바다 은덕어장의 주어종은 동해안의 계절성 회유어종인 오징어, 명태, 대구, 꽁치 등으로서 남하길목이 차단되어 강원도 동해어민들의 주어업인 “오징어 채낚기”와 “명태자망어업” 등은 사실상 포기해야 될 것이며,

넷째, 「전어총」이 이곳에서 대형 트롤어선 및 쌍끌이 저인망어선을 투입하여 조업하면 계절성 회귀어종의 치어까지 씹쓸이하여 동해안의 자원고갈을 초래할 것이며,

다섯째, 「전어총」이 투입할 어선도 강원도와는 무관한 부산·경남지역 일부 선주들의 대형 선박들로서 조업이 승인될 경우 결과적으로 특정인들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우리 강원도와 동해안 어민들은 생존권 보존차원에서 그간 수차례에 걸쳐 「전어총」의 「남북민간어업협력사업」에 의한 북한 은덕어장 조업추진을 즉각 중단시켜 줄것을 건의한 바 있으나, 정부에서는 미온적으로 대처(해양수산부에서는 우리도와 입장을 같이 하고 있으나, 통일부에서는 확고한 입장 표명 보류)하고 있어 우리 어민들에게 불안과 실망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만 강원도민의 대의 기구인 「강원도의회」에서는 위와 같이 불법적이고 몰지각한 「전어총」의 행동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하여 정치적인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통일부의 대북관계만을 고려한 지나친 통일논리의 집착을 우려하면서, 전어총의 조업 불승인은 물론, 이들의 행동을 즉각 중단시켜 줄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 동해안 어민들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업기반의 영세성과 계절성 회유어종의 감소, 그리고 한·일 어업협정으로 인한 조업어장의 축소 등 3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남은 유일한 생계수단인 명태, 오징어, 꽁치 등의 조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와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강원도 동해안 어민들에게 불안을 해

소해주고, 새로운 신념으로 대망의 2000년대 새천년 시작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의 현명하고 신속한 조치를 기대합니다.

2) 동해고속도로연곡I·C조기건설위한건의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3월 3일 정인수의원의 10인
- 제안설명요지
 - 우리도 동해안 지역은 매년 관광객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난 1996년부터 2002년까지 강릉-주문진간 동해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으나 지역과 연결되는 연곡IC의 건설이 2007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어 주민 교통불편은 물론 인근 우회도로 지역의 교통혼잡과 각종 주변개발계획의 차질이 예상되어 본 연곡IC가 강릉-주문진간 고속도로와 동시에 개통될 수 있도록 앞당겨 건설해 줄 것을 건의하려는 것임.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2000년 3월 4일 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16일 제1차 회의에서 정인수 의원의 제안설명과 신동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2000년 3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명 관광건설위원회 간사의 심사보고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건의안은 2000년 3월 22일 원안대로 가결되어 강원도지사에게 송부되었다.

[의결전문]

동해고속도로연곡I·C조기건설위한건의안

지난 1996년도에 착공한 동해선 강릉-주문진 구간의 고속도로 건설은 2002년에 완공을 목표로 이



미 상당한 공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도로가 개통되면, 이 지역의 고질적인 교통난 해소는 물론, 날로 급증하고 있는 동해안 관광객 등의 종합적인 수송체계 확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며,

특히, 강릉시 북부권 지역(주문진읍, 연곡면, 사천면 등)의 발전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 지역 주민들은 감사한 마음과 함께 커다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본 고속도로와 이 지역을 연결하는 가장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할 연곡 IC가 2007년 이후에나 단계적으로 건설될 계획으로 있어 도로건설 효과에 대한 실망과 함께 지역주민들을 매우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개통과 동시에 연곡 IC가 설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 IC 세력권에 거주하는 주민들(5만여명)은 물론, 이 지역을 찾는 수많은 관광객(년간 120여만여명)들이 성산 IC에서 강릉시내를 거쳐 7번 국도를 이용하여 7-8km 정도 우회하게 됨으로서, 교통불편은 물론 강릉시내-연곡구간의 7번 국도에 엄청난 교통혼잡을 가져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강릉시에서 본 고속도로 건설과 연계하여 2000년-2005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연곡·사천지역의 「첨단과학 영상산업 지구조성」, 「석교온천 지구조성」, 「연곡마니화나시설」, 「메디아타운조성」, 「스키리조트 및 경마장 설치 계획」 등 주요 개발시책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으며, 연곡 IC 인근지역을 강릉관광의 핵으로 하여 광역 역사문화권으로 조성하는 강원도의 「강릉 전통문화 시범도시 육성계획」과 「사천면 대단위 산불피해지역 개발계획」의 추진에도 많은 지장이 초래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과 강릉시에서는 지난 1996년이후 수차례에 걸쳐 연곡 IC의 동시건설을 도로공사에 요구하였으나, 도로공사에서는 1997. 10. 18 및 10. 31 답변에서 주변 개발계획에 따른 기반시설조성과 주변시설 확충, 그리고 교통량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막연하게 회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도로공사의 당초설계 지침에 의하며 연곡IC는 7호선 국도 강릉-연곡간 도로의 교통량 수용 한계년도인 2009년(도로공사에서는 이 구간의 교통량을 2000년에 34,000여대, 2009년에 48,000여대로 추정하였음) 이후에나 단계적으로 건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그 후 1999년도 교통영향평가에 의하여 그 시기를 2007년으로 조정)

도로공사의 이 같은 판단은 지역발전의 중요성을 간과하였을 뿐아니라 수 많은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엄청난 교통불편을 무시하고 단순한 경제성 논리로 판단한 것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현재 7번 국도 강릉-연곡간의 교통량 증가추세도 '96년도 26,653대, '97년도 33,765대, '99년도 35,449대(동구간중 사천면 덕실조사구에서 조사한 결과)로서, '97년 당시에 판단한 증가 예상량을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이 또한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연곡 IC 건설에 필요한 편입용지 158千㎡가 확보되었고, 출입도로 2.5km에 대한 설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공사를 앞당겨 시행하는 것은 크게 어려움이 없으리라 믿고 간곡히 건의하오니, 본 연곡 IC가 조기에 건설(도로개통과 동시에)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곡 IC가 조기에 건설될 경우에는 위에서 예상한 여러가지 문제의 해결은 물론,

- 현재 추진중인 소금강, 연곡해수욕장, 강릉온천의 개발이 가속화 되어 주변지역이 급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을 뿐 아니라,
- 앞으로 양양국제공항 건설과 발맞추어 설악산과 금강산을 연계하는 국제 관광단지 개발을 촉진시키므로서, 남북통일 시대에 대비한 기반을 앞당겨 조성할 수 있으며,
- 인근 강릉 과학산업단지 조성과 관련업체 유치가 촉진되어 강릉시의 산업발전에도 크게 기여함은 물론,
- 주문진 장덕리 골프장 건설과 향호의 매머드 관광호텔 건립 및 향만개발 등 주문진 관광 개발 계획의 시행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사천에 위치한 동해안 최대규모의 첨단의료기관인 강릉 병원의 응급 환자와 연곡에 위치한 국군 통합병원의 위급환자 수송을 신속하게 할 수 있어 많은 생명을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망의 2000년대 희망과 신념을 갖고 새천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동해안 시대를 여는 우리도의 강릉시민들에게 기대와 보람을 안겨 줄 수 있도록 연곡 IC의 조기 건설을 꼭 실현시켜 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第 18 節 第109回 臨時會

1. 概 況

가. 開 會

제109회 강원도의회임시회는 2000년 4월 10일 원종익의원과 15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 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자로 의장이 집 회공고를 함으로써 10일간의 회기로 2000년 4월 18일 개회하여 4월 27일 폐회되었다.

나. 議事日程

1) 本會議

가) 제1차 본회의 : 2000년 4월 18일(화)

- 제109회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 산불피해복구대책추진상황보고
-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건의
- 5분자유발언(신명선, 엄문섭의원)의건

나) 제2차 본회의 : 2000년 4월 27일(목)

-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지방공사강원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2000세계평화광파르개최동의안
- 강원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농수특산물품질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향토공예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어항시설사용조례개정조례안
- 강원도관광엑스포주제관등입장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안
- 강원도관광엑스포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강원도체육회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사임및선임의견
- 교육사회위원회해의연수결과보고
- 5분자유발언 (김길정의원) 의견

2) 議會運營委員會

가) 제1차회의 : 2000년 4월 18일(화)

-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견
- 제109회강원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견
-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
- 제110회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협의의견
- 제110회임시회도정질문운영에관한건
- 강원도자치봉사대상규정중개정규정안

나) 제2차회의 : 2000년 4월 27일(목)

- 위원회의사일정변경의견
- 제110회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변경협의의견
- 1999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에관한건



3) 內務委員會

가) 제1차회의 : 2000년 4월 19일(수)

- 의사일정결정의건

나) 제2차회의 : 2000년 4월 20일(목)

-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지방공사강원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2000세계평화광파르개최동의안

4) 敎育社會委員會

가) 제1차회의 : 2000년 4월 19일(수)

- 의사일정결정의건
- 강원도교육위원회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교육위원회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産業經濟委員會

가) 제1차회의 : 2000년 4월 19일(수)

- 의사일정결정의건

나) 제2차회의 : 2000년 4월 20일(목)

- 강원도농수특산물품질관리에관한조례안
- 강원도어항시설사용조례개정조례안

- 강원도향토공예관운영관리조례안

6) 觀光建設委員會

가) 제1차회의 : 2000년 4월 19일(수)

- 의사일정결정의건
- 강원도엑스포주제관등입장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안
- 강원도관광엑스포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 강원도체육회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가) 제1차회의 : 2000년 4월 24일(월)

- 위원장선임의건
- 간사선임의건
-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안

다. 議會活動

1) 本會議

가)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 : 제1차본회의

- 2000년 4월 18일 제10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와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민주당 7명, 한나라당 5명, 자민련 1명, 무소속 1명등 1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협의한대로 가결되었다.

나) 5분자유발언(신명선, 엄문섭)의건 : 제1차본회의



- **신명선의원** : 고성을 비롯한 영동지역 산불과 관련 이지역이 특수재해지역으로 지정되었지만 간접적인 바다피해도 명시되어야 한다면서 산불로 인한 재해어민중에서 타인의 땅에 임대하여 주거하다가 피해를 본 재해어민들에게는 공유지, 즉 군유지나 시유지, 도유지등을 집터로 대야하고 20년동안 무상으로 20년후 임대나 분양을 촉구하였다.
- **엄문섭의원** : 온 국민의 지탄속에서 강행하고자 했던 영월댐 건설계획이 집권당에서 백지화하는 것으로 확정함에 따라 댐건설을 우려했던 온 국민은 환호의 박수를 보내게 되었지만 앞으로 남은 것은 댐건설계획이 장기화되면서 황폐해진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허탈에 빠져있는 수몰예정지 주민들을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수몰 예정지역이었던 주민들의 경제가 다른 인근지역 수준까지 성장·발전될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와 대폭적인 지원을 촉구하였다.

2) 委員會

가) 현지사찰 : 교육사회위원회

- 2000년 4월 19일 제1차회의에서 의사일정을 정한 후 소관업무 파악을 위해 4월 20일 홍천 팔련중학교와 홍천군장애인보호작업장시찰에 이어 21일 춘천동원학교를 시찰하였다.

나) 현지사찰 : 산업경제위원회

- 2000년 4월 19일 제1차회의에서 의사일정을 정한 후 소관업무 파악을 위해 4월 21일 가축 위생시험소 남부지소를 시찰하였다.

다) 현지사찰 : 관광건설위원회

- 2000년 4월 19일 제1차회의에서 의사일정을 정한 후 소관업무 파악을 위해 4월 25일 평창 월정사를 시찰에 이어 평창군 도암면 소재 강원도노르딕경기장을 시찰하였다.

라. 議案處理狀況

1) 一般議案

- 이번회기중 상정대상 일반안건은 총 18건으로 도지사제출이 12건, 도교육감제출이 3건, 의장제의 2건, 위원회제안 1건이었으며 처리결과를 보면 18건 모두 가결되었고 종류별처리 현황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종류별	상 정 대 상 안 건			의 안 처 리 내 역				
	합 계	전회기 이 월	금회기 접 수	가 결			폐 기 (철 회)	계 류
				소 계	원 안	수 정		
계	18		18	18	14	4		
조 례 안	13		13	13	9	4		
예 산 안								
동 의 안	4		4	4	4			
결 의 안	1		1	1	1			

2. 議決案件

가. 條例案

1)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4월 11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99강원국제관광박람회장의 효율적인 개발·관리와 종합관광교류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강원도관광정보센터」를 한시 기구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 「강원도관광정보센터」를 속초시 조양동 636번지에 설치함(안 제62조)
 - 관광센터소장의 역할과 소관사무를 정함(안 제63조·64조)
 - 관광센터의 설치기한을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항)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2000년 4월 11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0일 제2차회의에서 장순일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최종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2000년 4월 27일 제2차본회의에서 원종익 내부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2000년 4월 27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2000년 5월 12일 강원도조례 제 2775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절 관광정보센터

제62조(설치) ①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관광박람회장을 효율적으로 개발·관리하고 관광종합 교류의 장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도에 강원도관광정보센터(이하 “관광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관광센터를 강원도 속천시 조양동 636번지에 둔다.

제63조(소장) 관광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4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관광정보센터 개발·관리 및 운영
2. 종합홍보관, 상징탑, 영상관 운영관리
3. 관광·전시·행사 등 종합정보교류장 조성관리

4. 시설물공사 및 유지보수·관리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기구)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정보센터의 존속기한은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4월 11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99강원국제관광박람회장의 효율적인 개발·관리와 종합관광교류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강원도관광정보센터」가 한시기구로 설치·승인됨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 14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강원도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2,772인에서 14인이 증원된 “2,786”인으로 조정함(안 제2조)
 - 구조조정으로 인해 부칙에 년차별로 정해놓은 정원중
 - [표 1] 2000년 7월 31일 : 정원의 총수 2,851인을 “2,865”인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1,520인을 “1,534”인으로 하며
 - [표 2] 2001년 7월 31일 : 정원의 총수 2,807인을 “2,821”인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1,476인을 “1,490”으로 함(안부칙 제2조)
 - 증원된 14명의 정원을 200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함.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2000년 4월 11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0일 제2차회의에서 장순일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최종추천위원회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2000년 4월 27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2000년 5월 12일 강원도조례 제 2776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2,772”를 “2,786”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1,441”을 “1,445”로 한다.

부칙(2000. 3. 15) 제2조 [표1]중 정원의 총수란 “2,851”을 “2,865”로, 1. 집행기관의 정원란 “1,520”을 “1,534”로 하며, 동조 [표2]중 정원의 총수란 “2,807”을 “2,821”로, 1. 집행기관의 정원 “1,476”을 “1,490”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 집행기관의 정원중 14인은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지방공사강원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4월 11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지방공사 강원도 춘천의료원을 강원대학교 병원으로 인계하기 위하여 춘천의 료원을 폐지하여 법인을 해산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병원의 사무소 중 춘천의료원을 삭제함(안 제3조 제1항)

- 춘천의료원의 자본금 출자액을 삭제함(안 별표)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2000년 4월 11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0일 제2차회의에서 권혁인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최종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2000년 4월 27일 제2차본회의에서 원종익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2000년 4월 27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2000년 5월 17일 강원도조례 제 2779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지방공사강원도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공사강원도의료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춘천”을 삭제한다.

[별표]중 지방공사 춘천의료원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강원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4월 11일 강원도교육감
- 제안이유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취지와 같이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이념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기타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한 60일의 출산휴가의 허가를 임의규정에서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여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23조제2항)
 - 임신한 여자공무원에게는 정기검진을 위하여 임신중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3항)
 - 남계와 여계친족간의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 이념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부모사망 및 탈상시의 휴가일수를 배우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조정함(안 제24조)
 - 기타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12조, 제14조, 제16조의 2 제1항, 제22조, 제23조제4항, 제23조제8항, 제23조제9항)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2000년 4월 11일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9일 제1차회에서 김호준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서의승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2000년 4월 27일 제2차본회의에서 이천규교육사회위원회 간사의 심사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2000년 4월 27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2000년 5월 13일 강원도조례 제 2778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총리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하고, 제14조중 “교육감”을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중 “교육감은” 다음에 “국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삽입한다.

제22조제6호중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를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로 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매생리기마다 1일”을 “매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로 하며, 동조제4항 내지 제9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10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8항(종전의 제7항)중 “1회에 한하여”를 “재직기간 중에”로, “허가한다”를 “허가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9항(종전의 제8항)중 “명예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을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으로 한다.

②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제24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3] 경조시별 휴가일수표



구 분	대 상	일 수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7	사망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형제자매의 배우자	3
회 갑	본인 및 배우자	5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2
출 산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탈 상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 조부모 · 외증조부모 · 외조부모	1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7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 조부모 · 외증조부모 · 외조부모	5			

※ 비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5) 강원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4월 11일 강원도교육감
- 제안이유 :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중개정령(교육부령 제 762조, 2000. 3. 2)에 의거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이 조정됨에 따라 강원도 교육감 소속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을 조정하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법률에 의거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법률에 의거 인용조문의 정비(안 제1조)
 - 강원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총정원을 조정(안 제2조)
 - 3,758명을 3,739명으로 조정(19명 감축)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2000년 4월 11일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9일 제1차회의에서 김호준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서의승전문의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2000년 4월 27일 제2차본회의에서 이천규교육사회위원회간사의 심사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2000년 4월 27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2000년 5월 1일 강원도조례 제2774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2조”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5조”로 한다.

제2조중 “3,758인”을 “3,739인”인으로 하고, 동조 제2호중 “3,742인”을 “3,723인”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2조 각호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6) 강원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4월 11일 강원도교육감
- 제안이유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법률 및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중 개정령에 따라 인용조문과 내용을 정비하고 정리하고자 하며 교육위원 및 교육감선출등에 관한 규정폐지령에 의거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법률에 의거 인용조문을 정비(안 제1조)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회의수당명칭을 회기수당으로 변경(안 제2조제2호, 제4조제1항제1호및제2호)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1조에 의거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관리사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로 지정되고 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등에관한규정폐지령이 시행됨에 따라 강원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 및 실비보상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다른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인용조문과 기타 경미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안 부칙 제3조)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심사 : 2000년 4월 11일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9일 제1차회의에서 김호준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서의승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2000년 4월 27일 제2차본회의에서 이천규교육사회위원회 간사의 심사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2000년 4월 27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2000년 5월 13일 강원도조례 제 2777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별지 제1호 서식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를 각각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9조”로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중 “회의수당”을 각각 “회기수당”으로 한다.

별표1 여비지급액란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강원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 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조례 제2645호, 1998. 8. 8)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9조”로 하고, 제8조의2중 “정부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② 강원도교육위원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9조”로 하고, 제2조제3항중 “법 제43조”를 “법 제36조”로 하며, 동조 제4호중 “법 제41조”를 “법 제34조”로 한다.

③ 강원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2조”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7조”로 하고, 제3조제4항제19호를 삭제한다.

④ 강원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9조”로 한다.

⑤ 강원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2조”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7조”로 한다.

⑥ 강원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0조 내지 제43조”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3조 내지 제36조”로 한다.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6



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5조제1항, 제38조제1항중 “법 제41조”를 각각 “법 제34조”로 한다.

- ⑦ 강원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6조”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9조”로 한다.

- ⑧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5조”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0조”로 하고, 동조제3호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3조”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6조”로 한다.

- ⑨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5조”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0조”로 하고, 동조제3호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3조”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6조”로 한다.

7) 강원도농수특산물 품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4월 11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강원도의 청정·우수농특산물 및 가공품에 대하여 도지사의 품질보증 및 푸른 강원마크를 사용승인함으로써 차별성 확보와 농특산물의 이미지 부각 및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하고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농수특산물품질관리심의회를 설치하여 품질보증 품목선정 및 표준규격을 결정하고 기타 관련사항을 심의하고자 함(안 제3조)
 - 농수특산물의 품질향상으로 소비자의 신뢰제고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품질보증제를 실시하고자 함(안 제4조)
 - 도내산 농수특산물의 청정성 및 우수성을 타도산과 차별화하여 농어가 소득증대에 기여를 위한 푸른강원마크 사용승인제를 실시하고자 함(안 제7조)
 - 품질보증품의 사후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및 보증품의 조사와 판매지원, 준수사항을 정

합(안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 보증 및 사용 유효기간 및 준수사항 미이행·부정사용의 방지를 위한 규정을 둠(안 제8조, 제11조, 제12조)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2000년 4월 12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0일 제2차회의에서 김옥 수농정산립국장의 제안설명과 전창범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수정하여 가결되었다.

[수정안의 요지]

- 수정이유 : 조문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 수정 및 삭제
- 수정주요골자
 - 안제8조(보증및사용 유효기간) 제1항중 「1년으로」를 「1년이내로」로 수정하고 동조 제2항중 「(이하 “생산중단”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 본회의 심사 : 2000년 4월 27일 제2차본회에서 엄문섭산업경제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없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2000년 4월 27일 수정안대로 가결된 후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2000년 5월 17일 강원도조례 제2782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농수특산물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청정·우수 농수특산물 및 가공품에 대하여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품질보증 및 푸른강원마크 사용승인으로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품질향



상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수산물”이라 함은 강원도내에서 생산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상태의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석재 및 골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농수산물가공품”이라 함은 제1호의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한 가공식품·전통식품 및 민예품을 말한다.
3. “특산물”이라 함은 강원도내 특정한 지역에서 특징적으로 생산하거나, 그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특징적으로 제조·가공한 것을 말한다.
4. “강원도지사 품질보증표지”라 함은 제1호 내지 제3호에 대하여 도지사가 청정성·진품성·기능성등 품질을 보증하는 표지를 말한다.
5. “강원도농·수·축·특산물고유상품(이하 “푸른강원마크”라 한다)”라 함은 강원도산 농수특산물 및 농수특산물가공품을 타 지역산과 차별화하기 위한 상표를 말한다.
6. “품질보증 표준규격(이하 “표준규격”이라 한다)”이라 함은 도지사가 제1호 내지 제3호에 대하여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물품의 규격 및 생산·제조·가공 등의 공정을 규격화한 것을 말한다.
7. “품질보증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라 함은 농수특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하여 도지사로부터 품질보증을 받아 유효기간내에 품질보증표지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농수특산물의 품질관리

제3조(농수특산물품질관리심의회 설치) ① 농수특산물 및 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농수특산물품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품질보증 농수특산물 품목선정에 관한 사항
2. 품질보증 품목의 표준규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품질보증품 표시에 관한 사항
4. 농수특산물 품질관리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5. 기타 도지사가 심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농수특산물 등의 품질보증) ① 도지사는 농수특산물품의 품질향상으로 강원도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제고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이에 대한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제를 실시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을 받은 농수특산물등의 품질향상과 생산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생산하는 또는 영농법인등 단체에 자금 및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을 받지 아니한 품목의 물품·용기·포장·홍보전단 등에 보증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 규정에 의한 보증의 대상품목·표시방법 및 절차등 기타 품질보증제도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교육·훈련 등) ① 도지사는 보증한 품목의 품질관리 및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업체의 생산·유통종사자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전문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6조(품질보증품등의 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품질보증품의 품질수준의 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산·가공·제조·유통과정을 수시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품질보증품의 규격·품질 또는 보증의 요건 적합성등의 여부
2. 품질보증품의 가공용 원료 원산지 및 농수산물의 재배·사육지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
3. 품질보증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등에의 시험·성분검사 의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사한 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제7조(푸른강원마크 사용승인) ① 도지사는 농수특산물의 청정성 및 우수성을 부각시켜 차별화 하여 소비자의 신뢰도 및 경쟁력 제고로 농어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개발한 “푸른강원마크”의 사용승인제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품목의 물품·용기·포장·홍보전단 등에 푸른강원마크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의 대상품목·표시방법 및 절차 기타 사용승인제도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보증 및 사용 유효기간) ① 농수산물의 유효기간은 품질보증 또는 푸른강원마크사용승인



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하되 당해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농수산물가공품의 유효기간은 보증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보증 받은 품목의 생산을 10월이상 중단할 때까지로 한다.

제9조(농수특산물의 판매지원 등)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정부투자기관이 농수특산물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품질보증표시가 된 농수특산물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권장할 수 있다.

② 품질보증 및 푸른강원마크 표시 농수특산물 등은 강원도가 주관·후원하는 각종 농수특산물 홍보·전시판매장 및 행사 등에 우선 참여토록 할 수 있다.

제10조(품질보증 및 푸른강원마크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품질보증표지 및 푸른강원마크 사용자는 다음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품질보증 및 푸른강원마크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품목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2.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 및 표시기준을 지킨다.
3. 가공품의 주원료는 강원도산 농수특산물을 사용한다.
4. 품질보증 및 마크사용승인 품목의 생산·제조·유통·광고등의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② 판매품목의 품질에 대한 하자로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의 반품 또는 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1조(보증·사용취소 및 신청제한) 제6조제2항 및 제10조를 이행 또는 준수하지 않은 때에는 품질보증 및 푸른강원마크 사용을 취소하고 당해 농어가 또는 영농법인·생산자단체 등에 대하여는 향후 3년간 신청을 제한한다.

제12조(부정사용의 조치) 도지사는 제4조제3항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및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물품·용기·포장·홍보전단 등에 품질보증 및 푸른강원마크 표시를 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확인서 등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 제66조 및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보 칙

제13조(수수료) ① 제4조 규정에 의거 품질보증을 위한 성분분석·시험·검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신청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수수료는 품질 확인을 위한 검사 등에 소요되는 실경비로서 도지사가 고시

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징수액 결정·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푸른강원마크 사용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강원도농·수·축·특산물고유상표관리지침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농수특산물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8) 강원도 향토공예관 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이유 및 제안자 : 2000년 4월 11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향토공예관을 도내향토공예품개발및공예·관광민예품·특산품을 포함한 중소기업제품의 복합전시판매장으로 확대운영하여 공예산업의 육성발전을 도모하고 직제 개편으로 위원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도내 향토공예품 개발 및 공동전시판매」를 「도내 향토공예품 개발 및 공예·관광민예품·특산품을 포함한 중소기업 제품의 복합전시판매」로 변경함(안 제1조제1항)
 - 「도산업진흥국장」을 「산업경제국장」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강원도지부장」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강원지회장」으로 「대한무역진흥공사춘천사무소장」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강원무역관장」으로 변경함. (안 제5조제3항)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2000년 4월 12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0일 제2차회의에서 박영환 산업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창범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및 답변이 있는 후 수



정하여 가결되었다.

[수정안의 요지]

- 수정이유 : 잘못된 제안을 고치고 용어의 통일성과 정확성을 기하여 위하여 일부 자구 수정 및 삭제
- 수정주요골자
 - 안 제5조(운영위원회) 제3항중 「“도산업진흥국장”을 “산업경제국장”으로」를 삭제함
 - 안 제9조(사용료 및 임대료의감면) 제1항2호중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강원도지부」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강원도지회」로 수정하고 동조동항 5호중 「대한무역진흥공사」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강원무역관」으로 수정한다.
- 본회의 심사 : 2000년 4월 27일 제2차본회의에서 업무협업산업경제위원장의 심사보고후 질의 및 토론없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2000년 4월 27일 수정안대로 가결된 후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2000년 5월 17일 강원도조례 제2780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향토공예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향토공예관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도내 향토공예품 개발 및 공동전시판매”를 “도내 향토공예품개발 및 공예·관광민예품·특산품을 포함한 중소기업제품의 복합 전시판매”로 한다.

제5조제3항중 “중소기업협동조합강원도지부장”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강원지회장”으로, “대한무역진흥공사춘천사무소장”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강원무역관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2호중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강원도지부”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강원도지회”로 하

고, 동조동항 5호중 “대한무역진흥공사”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강원무역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 강원도어항시설사용조례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4월 11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강원도어항시설사용조례중 어항사용기간의 변경신고 사항이 강원도행정규제개혁 정비대상에 포함되고 또한 어항법 등 상위법령과 상이하므로 이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어항시설의 사용·점용허가등에 따른 허가기간 및 허가사항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조)
 - 어항시설의 사용신고등에 따른 사용·점용기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
 - 사용·점용료 감면 및 산정방법등을 정함. (안 제4조)
 -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아니하고 어항시설을 사용·점용한 자에 대한 변상금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되 1년이상일때는 매1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선납하도록 함. (안 제6조)
 - 시장·군수가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군수의 세입으로 함. (안 제7조)
 - 도지사는 사용·점용기간의 단축·정지 및 과오로 인한 과납사용료는 반환하도록 함. (안 제8조)
 - 권리·의무의 이전인가신청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9조)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2000년 4월 12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0일 제2차회의에서 김돈



기 해양수산출장소의 제안설명과 전창범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2000년 4월 27일 제2차본회의에서 엄문섭산업경제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2000년 4월 27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2000년 5월 17일 강원도조례 제 2781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어항시설사용조례개정조례안

강원도어항시설사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도어항시설사용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제30조 규정에 의한 제2종어항시설(이하 “어항시설”이라 한다)의 사용허가와 사용료·점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항시설의 사용·점용허가등) ① 어항시설을 사용·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 사용 또는 점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어항시설사용·점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사용 또는 점용기간의 연장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어항시설사용·점용허가변경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허가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어항시설의 사용신고 등) ① 어항시설을 신고에 의하여 사용 또는 점용 하는 경우 그 사용·점용기간 및 범위는 별표와 같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의 사용·점용기간 및 범위안에서 어항시설을 신고에 의하여 사용 또는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어항시설사용·점용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등의 징수) ① 도지사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의 사용·점용허가를 받은 자와 사용·점용신고를 한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어항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당해 어항시설의 가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금액을 연간 사용료로 하여 일할로 계산한다. 다만, 법 제2조제3호가목의 수역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에 의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 가액의 사정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 또는 어항시설과 가장 가까이 소재한 유사시설의 공시지가(어항시설에 대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 제2조제3호 나목 내지 마목의 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의 사용·점용신고를 한 사용자에게 징수하는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5조(변상금의 징수) 도지사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한 자에 대하여 제4조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등의 납부) 어항시설의 사용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되, 사용·점용기간이 1년이상일 때에는 매 1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등의 귀속) 어항시설에 대한 사용료 및 변상금은 도지사가 징수한 경우에는 도의 세입으로 하고, 시장·군수가 징수한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시장·군수의 세입으로 한다.

제8조(과납 사용료등의 처리)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항시설의 사용자가 그 사용·점용기간을 단축한 경우
2.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점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점용이 정지된 경우
3. 착오로 인하여 사용료를 과납한 경우

제9조(권리·의무의 이전인가 신청등)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 또는 의무의 이전인가를 받거나 이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권리·의무이전인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권리·의무상속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받은 허가 등 기타의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신고대상인 어항시설의 사용·점용기간·범위 및 사용·점용료(제3조제1항 및 제4조제5항 관련)

1. 사용·점용신고 범위 및 기간

구 분	신 고 범 위	사용·점용기간
접 안	안벽·물양장·돌제·잔교·호안등 어항시설에 접안 또는 계류하는 선박	30일 이내
정 박	접안장소외의 박지(방파제등 외곽시설의 내항측)에 묘박 또는 정박하는 선박	30일 이내
야적기타	법 제2조제3호가목의 기본시설과 동호 마목의 시설부지상에 화물·자재등을 야적 또는 적치하는 경우	30일 이내

2. 사용·점용료 징수기준 및 요율

구 분	사 용 · 점 용 료 징 수 대 상	사 용 · 점 용 료 율	
		기 준	기본사용·점용료
점안 및 정박	화물선·골재운반선등 화물 또는 자재등을 운반하는 선박	1척에 총톤수 10톤당, 1일 -점안 -정박	500원 250원
	유조선, 액화가스 또는 무연탄등 연료를 운반하는 선박	1척에 총톤수 10톤당, 1일 -점안 -정박	600원 300원
	여객선·유람선등 해상여객 또는 관광을 위한 선박	1척에 총톤수 10톤당, 1일 -점안 -정박	700원 350원
	공사용 장비·자재 또는 폐기물등을 운반하는 선박	1척에 총톤수 10톤당, 1일 -점안 -정박	700원 350원
야적 기타	화물·골재 및 자재, 어상자등 물건(어획물은 제외한다)을 10㎡이상 야적 또는 적치하는 경우	1㎡당, 1일	제4조의 사용료 산정 방법 준용

비고 : 위표의 선박의 범위에 어선을 제외한다.

3. 사용료 산정기준

가. 점안 및 정박

기본수수료 산정시 10톤미만의 톤수는 10톤으로 보아 기본사용료를 산정하고, 1일미만의 기간은 1일로 보아 기본사용·점용료를 산정하며, 총톤수 200톤이상의 선박의 기본사용·점용료는 10톤당 기본사용 점용료 총액에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야적 기타

기본수수료 산정시 1일미만의 기간은 1일로 보아 기본사용·점용료를 산정하며, 사용면적 330㎡를 초과하는 물건의 기본사용·점용료는 기본사용·점용료 총액에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별표 제1호서식] (앞면)



어항시설사용·점용허가(변경)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성 명			③ 주민등록번호			
	② 주 소			④ 전 화 번 호			
⑤ 어항의 명칭					⑥ 어항시설의 종류		
⑦ 어 항 시 설	위 치			규 모			
⑧ 사용(점용)의 목적							
⑨ 사용(점용)기간							
⑩ 선 박 명				총 톤 수			
⑪ 선박의 길이·폭·깊이(홀수)	길 이		폭		깊이(홀수)		
⑫ 사용(점용)조건							
⑬ 원상회복방법							
강원도어항시설사용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어항시설을 사용·점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사용계획 및 시설계획 포함) 2. 신청지 위치평면도 3.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내용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수 수 료	
						없 음	

[별표 제2호서식] (앞면)

어항시설사용·점용허가서					
(허가번호)					
신청인	① 성 명			③ 주민등록번호	
	② 주 소				
④ 어항의 명칭					⑤ 어항시설의 종류
⑥ 어 항 시 설	위 치			규 모	
⑦ 사용(점용)의 목적					
⑨ 사용(점용)기간			일부터 일까지(일간)		
⑫ 사용(점용)료					
⑬ 사용(점용)조건					
강원도어항시설사용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어항시설을 사용(점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인)					
발급기관 연락처	주 소				
	부 서			전화번호	

〔별표 제3호서식〕 (앞면)

어항시설 사용 · 점용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① 성 명		③ 주민등록번호				
	② 주 소		④ 전 화 번 호				
⑤ 어항의 명칭			⑥ 소 재 지				
⑦ 신 청 내 용							
구 분	시 설 명	위 치	규 모	사용목적	사용기간	비 고	
접 안							
정 박							
야 적							
기 타							
⑨ 선박	선 명 : 총톤수 : 길이 · 폭 · 깊이(홀수) :						
강원도어항시설사용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어항시설을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 사용계획서 및 사용위치 평면도(1/1,200)							
제 호 어항시설 사용신고증 강원도어항시설사용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어항시설 사용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인)							



[별표 제4호서식] (앞면)

권 리 · 의 무 이 전 인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14일
신 청 인	① 성 명		③ 주민등록번호	
	② 주 소		④ 전 화 번 호	
⑤ 허가(승인)일 및 근거				
⑥ 허가(승인)목적 및 개요				
⑦ 준 공 기 간				
⑧ 공사 공정물				
⑨ 양 도 사 유				
강원도어항시설사용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권리·의무의 이전인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양수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귀하				
구비서류 1. 주민등록표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2. 양도·양수인의 인감증명서 3.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얻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 수 료
				없 음

[별표 제5호서식] (앞면)

권 리 · 의 무 이 전 인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① 성 명				③ 주민등록번호		
	② 주 소				④ 전 화 번 호		
⑤ 허가(승인)일 및 근거							
⑥ 허가(승인)목적 및 개요							
⑦ 준공예정일							
⑧ 공사 공정률							
⑨ 상속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피상속인과의관계					
⑩ 상속 년월일							
⑪ 상속이유							
강원도여항시설사용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권리·의무의 상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귀하							
구비서류 1. 호적등본 2. 인감증명서 3. 기타 상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 수 료
							없 음

10) 강원도관광엑스포주제관등입장료시설이용료징수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4월 11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시 조성된 주제관 및 엑스포타워등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관광명소로 존치·활용하는 동시에 동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하여 입장료 징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 엑스포장입장료(안 제3조)
 - 주제관 : 어른 3,500원, 청소년·군경 3,000원, 어린이 2,000원
 - 타 위 : 어른 1,500원, 청소년·군경 1,200원, 어린이 800원
- 엑스포장시설 1회 사용료(안 제5조)
 - 엑스포광장 25,000원, 세미나실 15,000원, 다목적실 12,000원
- 입장료등의 감면(안 제6조)
 - 만4세이하 어린이와 만 65세이상의 노인으로 신분증서를 소지한 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 도민에 대한 감액적용 근거를 마련함.
- 입장료등의 사용(안 제10조)
 -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로 징수된 금액은 엑스포장의 보존관리 및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토록 함
- 입장료 징수 및 시설의 위탁관리(안 제12조)
 - 필요한 경우 비영리단체등의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2000년 4월 11일 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9일 제1차회의에서 최흥집관광기획과장의 제안설명과 신동철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수정안대로 가결되었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
 - 관광엑스포주제관등입장료및시설이용료의 징수에 대하여 객관성있는 책정근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주제관의 운영시스템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 과다한 요금책정으로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의 감소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답변요지
 - 본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엑스포장과 유사한 국내시설과 속초 인근 지역의 이용요금을 반영한 사용료로 책정하였으며 책정금액을 토대로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하게 되었음.

- 주제관은 강원도 홍보용으로 활용한 계획으로 영상물은 엑스포기간중에 상영한 내용을 사용계획이며, 향후 영상내용물을 제작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임.
- 요금책정은 적정수준으로 책정하였으며 엑스포장이용 인원은 속초와 설악산을 찾는 관광객의 약 10%를 계산하였음. 향후 본 조례를 운영하면서 미흡한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음

[수정안의 요지]

- 수정주요골자

- 조례안 제1조“강원도관광엑스포주제관등(이하 “엑스포장”이라 한다) 다음에 ”의“자를 삽입하고
- 조례안 제2조 제5항 “어린이 30일 이상의”를 “어린이 20인이하의”로 한다,
- (별표 1)의 입장요금 주제관의 개인 청소년 3,000원을 2,500원으로 (2,500)을 (2,000)으로 어린이(1,800)을 (1,700)으로 단체·청소년 2,500원을 2,000으로
- (별지 제1호서식) “입장원원부”를 “입장권원부”로 한다.
- (별지 제2호서식) “단체입장원 원부”를 “단체입장권 원부”로 한다.
- 본회의 심사 : 2000년 4월 27일 제2차본회의에서 이상명 관광건설위원회 간사의 심사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없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2000년 4월 27일 수정안대로 가결된 후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2000년 5월 17일 강원도조례 제2783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관광엑스포주제관등입장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관광엑스포주제관 등(이하 “엑스포장”이라 한다)의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어린이 : 초등학교 학생과 만5세이상 만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2. 청소년 : 만13세이상 만18세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3. 군 인 : 제복을 입은 하사이하의 군인 및 전·의경을 말한다.
4. 어 른 : 만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자 및 대학생을 말한다.
5. 노 인 : 만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6. 단 체 : 어린이, 청소년, 군인, 어른이 20인 이상의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7. 입장료 : 엑스포장내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시설이용료 : 엑스포장내 세미나실등 일시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9. 시설사용료 : 엑스포장내 식당, 사무실등의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연간요금을 말한다.

제3조(입장료)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4조(입장료 징수 등) ①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② 입장료의 서식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의 개인과 단체로 구분한다.

제5조(시설이용료) ① 시설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설이용료의 납부 및 징수방법은 입장료의 예의 준한다.

제6조(입장료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만4세 이하인 어린이와 만65세 이상인 노인으로 신분증서를 소지한 자
4.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경찰의 날에 입장하는 경찰관,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다만, 장애인수첩을 소지한 경우에 한한다.
6.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8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7.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도민에 대한 입장료는 [별표 1], [별표 2]에서 정한 감액된 요금을 징수한다.

제7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자
2.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3.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
4. 기타 엑스포장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입장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입장료등의 사용)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로 징수된 금액은 엑스포장의 보존관리 및 개발을 위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0조(요금게시) 입장료와 시설이용료는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입장료징수 및 시설의 위탁관리) 엑스포장 입장료 징수 및 시설은 필요한 경우 비영리 단체등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시설사용허가) ① 시설사용허가등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②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자신의 부담으로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입장요금표

(단위 : 원)

구 분	주 제 관			엑 스 포 타 워		
	어 른	청소년·군경	어 린 이	어 른	청소년·군경	어 린 이
개 인	3,500 (3,000)	2,500 (2,000)	2,000 (1,700)	1,500 (1,200)	1,200 (1,000)	800 (600)
단 체	3,000 (2,500)	2,000 (1,800)	1,700 (1,500)	1,200 (1,000)	1,000 (800)	600 (500)

※ ()는 강원도민 요금임.

[별표 2] 시설이용요금표

(단위 : 원)

시 설 명	이 용 료		이 용 시 간 및 초 과 이 용 료
	1회	1일	
엑스포광장	25,000	50,000	1. 1일 : 09:00부터 18:00까지 2. 1회 : 3시간이내 기준, 3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매 1시간마다 다음금액을 추가징수 - 엑스포광장 : 10,000원 - 세미나실 : 5,000원 - 다목적실 : 4,000원 단, 1시간미만 사용시에는 1시간으로 계산
세미나실	15,000	30,000	
다목적실	12,000	24,000	

[별지제1호서식] 입장권서식

입장권 원부	입 장 권	
일련번호 : 엑스포 타워·주제관 원 () 2000년 월 일 강원도지사	엑스포 타워·주제관 원 () 2000년 월 일 강원도지사	엑스포장 전경사진 엑스포타워·주제관 소개문
4.5cm	7.5cm	7.5cm

[별지 제2호서식]

단체입장권 원부 일련번호 : 엑스포 타워 · 주제관 원 () 2000년 월 일 강 원 도 지 사	단 체 입 장 권 엑스포 타워 · 주제관 원 () 2000년 월 일 강 원 도 지 사	엑스포장 전경사진 엑스포타워 · 주제관 소개문
4.5cm	7.5cm	7.5cm

※ 입장권은 엑스포타워, 주제관 등 2종류로 표시할 것.

※ ()안에는 어른,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 등으로 표시할 것.

11) 강원도관광엑스포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4월 11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의 성과를 지속시키고 엑스포의 이념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여기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강원도관광엑스포발전기금을 설치하면서 그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기금의 재원은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임여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함. (안 제2조)
 - 기금의 용도는 국제관광전 개최사업, 도지사가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하며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음. (안 제3조)
 - 기금의 운용관리는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하며 강원도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며,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함. (안 제4조)
 -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며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적립기금에 재적립할 수 있다.



-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함.
- 기금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함. (안 제5조)
 - 기금사업자는 사업의 내용 또는 기금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기금사업자가 지원사업의 포기등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거나 기금을 당해 기금 지원 목적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원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
- 기금의 효율적인 관광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영관과 기금출납원을 둠. (안 제6조)
 - 기금운영관 : 관광문화국장
 - 기금출납원 : 관광기획담당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2000년 4월 11일 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9일 제1차회의에서 최종 집 관광기획과장의 제안설명과 신동철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이 있는 뒤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
 - 강원체육회관을 관리·운용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
 -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의 심의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 답변요지
 - 강원체육회관은 강원체육회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문제점은 없으며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는 기존조례에서 4조와 5조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를 보완하고 완하하려는 것임.
- 본회의 심사 : 2000년 4월 27일 제2차본회의에서 이상명관광건설위원회간사의 심사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2000년 4월 27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2000년 5월 17일 강원도조례 제 2784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관광엑스포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의 성과를 지속시키고 엑스포의 성과를 지속시키고 엑스포의 이념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강원도관광엑스포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자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 잉여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국제관광전 개최사업
 2.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광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 ②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③ 기금은 강원도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관리한다.
- ④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적립기금에 재적립할 수 있다.
- ⑤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강원도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5조(사업변경 및 환수) ① 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기금사업자”라 한다)가 사업의 내용 또는 기금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금사업자가 지원사업의 포기등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기금을 당해 기금지원 목적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원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기금목적외에 사용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원금은 사업계획내용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2. 도지사의 사전승인없이 사업내용과 기금의 용도를 변경 사용한 경우
3. 기타 기금의 사용목적과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제6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관광문화국장
2. 기금출납원 : 관광기획담당

제7조(기금운용계획)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매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 강원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기금결산) ① 도지사는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강원도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2) 강원체육회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4월 11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강원도체육회관관리및운영에관한 조례중 위탁관리에 관한 일부규정을 99년 제6차규제개혁 대책협의회에서 「위탁관리운영계약의 해지」를 「위탁관리운영의 시정권고」로 완화하도록 결정되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2000년 4월 11일 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9일 제1차회의에서 최흥 집관광기획과장의 제안설명과 신동철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이 있는 뒤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
 - 강원체육회관을 관리·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
 -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의 심의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 답변요지
 - 강원체육회관은 강원체육회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문제점은 없으며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는 기존조례에서 4조와 5조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를 보완하고 완화하려는 것임.
- 본회의 심사 : 2000년 4월 27일 제2차본회의에서 이상명관광건설위원회 간사의 심사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2000년 4월 19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2000년 4월 27일 강원도조례 제 2785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체육회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체육회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위탁관리운영계약의 해지”를 “위탁관리운영 시정권고”로 하고, 동조 본문중 “위탁관리 운영계약을 해지”를 “위탁관리운영의 시정권고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3) 강원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4월 11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하천법의 전문개정(99. 8. 9 시행)에 따른 관련법조항 및 내용을 일치시키고 공유수면관리법의 개정(99. 8. 9 시행)으로 공유수면에 관한 인·허가등의 관리업무가 시장·군수에게 이양됨에 따라 공유수면에 관련된 내용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강원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를 강원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로 제명을 변경함.
 - 공유수면의 관리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에게 이양됨에 따라 공유수면에 관한

- 사항을 삭제함. (안 제1조 내지 제3조, 제8조)
- 하천법의 개정에 따른 법령과의 용어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토석·사력을 토석·모래·자갈로 용어를 정비함.
- 하천의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변상금을 당해 점용기간의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120으로 정함. (안 제2조, 제5조)
- 하천의 점·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와 재해로 인한 정상적인 점용목적에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의 감면비율을 정함. (안 제3조)
- 하천법의 개정에 따라 점용료등 산정기준등을 법령과 일치시키고 점용료등의 감면기준이 하천법시행령에 포함됨에 따라 이를 삭제함. (안 별표1, 별표2)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2000년 4월 11일 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9일 제1차회의에서 김진성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신동철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이 있는 뒤 수정안대로 가결되었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
 - 개정조례안 내용중 “별표1”의 점용료등 산정기준에 있어서 끝부분 비고의 3항에 “아니한다”를 “아니하다”로 변경하고 안 제3조의 제2항의 “아니한다”를 “아니하다”로 수정·변경코자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답변요지
 - 조례안의 내용과 문맥상 “아니한다”를 “아니하다”로 변경하여도 큰 문제점은 없음.

[수정안의 요지]

- 수정이유 : 강원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내용과 문맥이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이를 내용과 문맥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고자 함.
- 수정주요골자



- 조례안 제3조의 2본문중 “그러하지아니하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자구수정.
- (별표1) 점용료등산정기준표의 비교3항의 “다만 총점용면적이 1㎡미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수정의결
- 본회의 심사 : 2000년 4월 27일 제2차본회의에서 이상명관광건설위원회 간사의 심사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없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2000년 4월 27일 수정안대로 가결된 후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2000년 5월 17일 강원도조례 제2786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하천 · 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하천 · 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하천 · 공유수면”을 “하천”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법 제38조,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의 사용료, 토지의 점용료, 토석 · 모래 · 자갈 등 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및 기타 하천의 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 ·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하천법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120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하천법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 100퍼센트
2.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목과 같이 한다.
 - 가. 재해로 인하여 전·답등의 수확량이 80퍼센트이상 감소 되었을 경우 : 100퍼센트
 - 나. 재해로 인하여 전·답등의 수확량이 80퍼센트미만 50퍼센트이상 감소되었을 경우 : 50퍼센트
 - 다. 재해로 인하여 전·답등의 수확량이 50퍼센트미만 30퍼센트이상 감소되었을 경우 : 30퍼센트
 - 라. 재로호 인하여 점용물 등의 유실 또는 손실로 인하여 당해 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는 점용의 잔영기간분 : 100퍼센트

제3조의 2 본문중 “별표3”을 “별표2”로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제2항중 “토석, 사력등 하천 및 공유수면”을 “토석·모래·자갈등 하천”으로 하고, “직할시장,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도지사”로 한다.

제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 2(과태료의 징수절차) 하천법시행령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제1호중 “하천법 제68조 및 공유수면관리법 제13조”를 “하천법 제65조”로 하고, 동항제2호중 “토석·사력”을 “토석·모래·자갈”로 하며, 동조 제2항중 “별표2제1호 아목”을 “제3조”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별표1]를 별지와 같이하며, 비고란 제3항의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별표2)를 삭제하고, (별표3)을 (별표2)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점용료등산정기준표

구 분	산 정 기 준
1. 공작물설치를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3
2. 토지의 점용	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인근 유사지 농지소득금액의 100분의 5 다만, 미식부지에 대하여는 토지가격의 100분의 0.8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다만, 1976년 8월 7일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령기까지 조림 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골재채취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다만, 하천등 구역내의 토석, 모래, 자갈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6호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0.75 마. 관로 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5 사.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5
3. 하천부속물의 점용	제1호에 준한다.

구 분	산 정 기 준														
4. 유수의 점용	가. 전기사업 연액 m^3/초당 200,000원 나.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용수 포함)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댐원수대 적용 다. 농업용수(내수면어업용수 포함) $0.05m^3 - 0.5m^3$/초까지 연액 10,000원 $0.5m^3$/초 증기시마다 10,000원 가산 라. 선박의 운항 1) 도선 및 5톤이하 정기 여객선(차량도선은 2배액) 갑지 : 월액 20,000원 을지 : 월액 10,000원 병지 : 월액 6,000원 ※5톤초과 여객선은 5톤 증기시마다 5톤 요금의 반액을 가산 2) 5톤이하 유선 <table><tr><th>지 역 등 급</th><th>동 력 선</th><th>무 동 력 선</th></tr><tr><td>갑 지</td><td>월액 100,000원</td><td>월액 50,000원</td></tr><tr><td>을 지</td><td>월액 60,000원</td><td>월액 30,000원</td></tr><tr><td>병 지</td><td>월액 20,000원</td><td>월액 10,000원</td></tr></table> ※5톤초과 유선은 1톤증가시마다 5톤 요금의 10분의 1을 가산하며, 4인승 이상의 소형 무동력 보트는 무동력선의 반액으로 한다. 3) 부선(유선장을 제외) 및 골재수송선 50톤이하 월액 40,000원 50톤초과 100톤이하 월액 50,000원 100톤초과 200톤이하 월액 70,000원 200톤초과 300톤이하 월액 90,000원 300톤초과 400톤이하 월액 110,000원 400톤 초과시는 100톤 증가시마다 16,000원씩 가산 4) 1) 및 2)의 지역 등급은 수익성을 감안하여 도지사가 결정고시한다.			지 역 등 급	동 력 선	무 동 력 선	갑 지	월액 100,000원	월액 50,000원	을 지	월액 60,000원	월액 30,000원	병 지	월액 20,000원	월액 10,000원
지 역 등 급	동 력 선	무 동 력 선													
갑 지	월액 100,000원	월액 50,000원													
을 지	월액 60,000원	월액 30,000원													
병 지	월액 20,000원	월액 10,000원													
5. 배수(주수)	공업용수의 배수, 다만 농업용수와 일반댐에서의 발전용수의 배수(주수)는 제외한다. 제4호 나목의 3분원 1 ※월 $10,000m^3$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6. 토석, 모래, 자갈의 채취	가. 도에서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 또는 모래, 자갈의 도매가격의 평균치에 100분의 15를 적용 나. 가목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 상공회의소 및 한국골재협회 등 2개 기관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초에 당해연도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도지사의 조정을 받아 시장·군수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지사가 당해 결정금액이하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구 분	산 정 기 준
7. 죽목, 갈매, 목초 및 기타하천산출물의 채취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6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8. 스케이트장, 유선장(유선의 모선을 포함한다), 운동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매점 포함)	토지가격의 100분의 5
9. 기타의 점용 및 사용	제1호 내지 제8호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비 고

1. 토지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매1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 또는 사용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매1일을 1/365년으로 한다.
3. 하천등의 점용면적이 1㎡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1㎡미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2] 점용료등조정산식

구 분	산 정 기 준
10퍼센트이상 20퍼센트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0/100+(증가율-10/100)×3/10}]
20퍼센트이상 50퍼센트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3/100+(증가율-20/100)×1/10}]
50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6/100+(증가율-50/100)×6/100}]
100퍼센트이상 200퍼센트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9/100+(증가율-10/100)×3/100}]
200퍼센트이상 500퍼센트미만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22/100+(증가율-200/100)×1/100}]
500퍼센트이상	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25/100

나. 同義案

1)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4월 11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금회에 제안하는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2000년도 변경계획으로서 공유재산의 확대조성과 활용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연구공원조성부지, 철원북부농업시험장 포장부지를 취득하려는 사항과 농업진흥구역안의 실경작 농경지중 매각요건이 부합되고 관련인이 장기간 매수를 희망해온 도유재산으로서 비교적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 금회 제출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 천원)

구분	건 명	건 수	수 량	금 액
취득	계	164필지	319,836 (96,750평)	752,114
	자연환경연구공원조성부지 확보	161필지	294,578 (89,110평)	402,114
	철원북부농업시험장포장부지 확보	3필지	25,258 (7,640평)	350,000
매각	계	2필지	5,697 (1,723평)	16,520
	실경작 농경지	2필지	5,697 (1,723평)	16,520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2000년 4월 11일 내부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0일 제2차회의에서 장순일자 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최종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다.



- 본회의 심사 : 2000년 4월 27일 제2차본회의에서 원종익 내부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변경안은 2000년 4월 27일 원안대로 가결된 후 강원도지사에게 송부되었다.

[의결전문]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안

강원도가 제출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

(단위 : m², 천원)

구분	건 명	건 수	수 량	금 액
취득	계	164필지	319,836 (96,750평)	752,114
	자연환경연구공원조성부지 확보	161필지	294,578 (89,110평)	402,114
	철원북구농업시험장포장부지 확보	3필지	25,258 (7,640평)	350,000
매각	계	2필지	5,697 (1,723평)	16,520
	실경작 농경지	2필지	5,697 (1,723평)	16,520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관리계획총괄표(7-1)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토지 건물 기타	당초(기정)			금 회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 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		7,300,000	164	319,836	752,114	164	319,836	752,114	
	1. 매입	토지 건물 기타				164	319,836	752,114	164	319,836	752,114	
	2. 교환으로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1		7,300,000				1		7,300,000	
처 분	계	토지 건물 기타	9 10 1	37,820.9 21,886.59	16,624,906 11,900,604 1,500,000	2	5,697	16,520	11 10 1	43,517.9 21,886.59	16,641,426 11,900,604 1,500,000	
	4. 매각	토지 건물 기타	9 10	37,820.9 21,886.59	16,624,906 11,900,604	2	5,697	16,520	11 10	4,517.9 21,886.59	16,641,426 11,900,604	
	5.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6. 기타처분	토지 건물 기타	1		1,500,000				1		1,500,000	

취득대상재산목록(7-2)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종류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취득시 기	취득사유	재산소유자 주소·성명
		소재지		수량				
		합 계(164필지)		319,836	752,114			
		소 계(161필지)		294,578	402,114			
1	전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1		635	486	년내	자연환경연구공원조 성에 따른 부지확보	홍천군 북방명 359-2 김명옥
2	"	"		68	331			"
3	"	"		69	188			"
4	"	"		71	1,455			"
5	"	"		23	188			경기 남양주시 와음읍 안소리 204-8 이명종
6	"	"		24	605			"
7	"	"		25	1,217			"
8	"	"		26	142			"
9	"	"		27-2	1,488			"
10	"	"		70	694			"
11	"	"		74	2,149			"
12	"	"		75	1,471			"



취득대상재산목록(7-2)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재산소유자 주소·성명
	종류	소재지	수량				
13	임야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산 57	1,100	380	년내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에 따른 부지 확보	경기 남양주시 외부읍 약외 24-8 이명중
14	대	" 28	377	1,319			춘천시 동학로 33-6 이상주영 정복희
15	전	" 30	4,889	7,969			"
16	답	" 29	1,742	3,066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5 신옥철
17	"	" 27-1	3,382	5,952			춘천시 은의 147-35 전성주
18	전	" 49	270	440			홍천군 북방면 화동리 341 신흥철
19	"	" 60	1,745	2,844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54 홍종춘
20	답	" 65	2,264	3,781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44 임관오
21	"	" 67	625	1,044			"
22	대	" 66	995	2,109			구로구 고척동 158-4 화성빌라 홍봉수
23	전	" 88	2,496	4,068			"
24	"	" 90	205	334			"
25	"	" 91	9,379	5,102			"
26	"	" 96	1,656	901			"

취득대상재산목록(7-2)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재산소유자 주소·성명
	종류	소재지	수량				
27	임야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산 101	1,425	775	년내	자연환경연구공원조 성에 따른 부지 확보	구로구 고척동 158-4 화성빌라 홍봉수
28	"	" 61	2,347	3,520			"
29	"	" 72	995	1,691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 648 안병구
30	"	" 79	1,157	2,198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 475 박용순
31	"	" 80	734	1,196			"
32	"	" 82	1,127	1,837			"
33	"	" 81	235	383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22-1 이병구
34	"	" 83	3,901	6,358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신영수
35	"	" 84	1,699	2,718			"
36	"	" 85	1,636	2,617			"
37	"	" 86	1,031	1,897			"
38	"	" 87	714	1,456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94 백만원
39	"	" 89	96	156			"
40	"	" 92	208	374			"

취득대상재산목록(7-2)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재산소유자 주소·성명
	종류	소재지	수량				
41	전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94	311	659	년내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에 따른 부지 확보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94 박만원
42	"	" 93	1,180	2,124			서울중랑구 망우동 455-3 김남행1
43	"	" 95	2,271	1,196			"
44	"	" 98	628	377			"
45	"	" 97	2,179	1,307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12 최병춘
46	"	" 102	1,012	551			"
47	"	" 99	783	470			홍천군 홍천읍 북방면 성동 양철순
48	임야	" 78	1,342	730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87 김태홍5
49	"	" 산47	424	151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전복인
50	"	" 산48	262	90			경기 오산시 오산동 420 전 식
51	전	" 73	1,600	2,720			국재정경제부
52	"	" 76	1,104	1,799			"
53	"	" 107	922	522			"
54	도로	" 1019	334	484			"

취득대상재산목록(7-2)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재산소유자 주소·성명
	종류	소재지	수량				
55	하천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1023	39,659	57,505	년내	자연환경연구공원조 성에 따른 부지 확보	국(건설교통부)
56	구거	" 1026	6,217	9,014			"
57	도로	" 1031	46	67			"
58	"	" 1032	1,111	1,611			"
59	구거	" 1033	925	1,341			"
60	도로	" 1039	582	844			"
61	임야	" 산46	41,466	13,684			국(문화교육부)
62	유지	홍천군 북방면 성동리 1039-4	255	640			홍천군 홍천읍 회암리 1051 장재호
63	"	" 1055	674	1,692			홍천군 북방면 북방리873 박성원
64	답	" 1056-2	1,098	2,932			"
65	유지	" 1056-1	732	1,837			"
66	"	" 1036	405	1,016			홍천군 홍천읍 회암리227-3 홍천농기계연구소
67	"	" 1037-1	150	376			"
68	"	" 1039-2	470	1,180			"
69	"	" 1040	675	1,694			"



취득대상재산목록(7-2)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재산소유자 주소·성명
	종류	소재지	수량				
70	유지	홍천군 북방면 성동리 1042	473	1,187	년내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에 따른 부지 확보	홍천군 홍천읍 회암리257-3 홍천농지개발조합
71	"	" 1062	320	171			"
72	"	" 1063	26	14			"
73	"	" 1067	625	328			"
74	답	" 1068-2	98	51			"
75	"	" 1057	1,392	3,605			홍천군 북방면 성동리1605 안동환
76	"	" 1058	24	1,853			홍천군 북방면 성동리342 신창호
77	전	" 1059	647	355			"
78	유지	" 1056-3	672	1,687			"
79	전	" 1074	1,445	4,234			홍천군 홍천읍 대학리72-3 심영섭
80	"	" 1075	783	2,388			홍천군 북방면 성동리1038 전상재
81	답	" 1076-1	344	918			홍천군 북방면 성동리1140 고상혁
82	"	" 1076-2	641	1,660			"
83	전	" 1076-3	875	2,677			"

취득대상재산목록(7-2)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재산소유자 주소·성명
	종류	소재지	수량				
84	답	홍천군 북방면 성동리 1077-1	1,312	3,503	년내	자연환경연구공원조 성에 따른 부지 확보	홍천군 북방면 성동리1140 고상혁
85	"	" 1077-2	1,299	3,364			"
86	"	" 1108	25	67			"
87	"	" 1111	65	174			"
88	"	" 1115-1	1,312	3,503			"
89	"	" 1135	752	1,948			"
90	전	" 1141	420	815			"
91	"	" 1109	230	460			홍천군 북방면 성동리 1101 양이환
92	"	" 1109-1	95	186			"
93	전	" 1110	357	821			"
94	답	" 1078	1,531	4,088			"
95	"	" 1079-1	2,661	7,105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043-15 안호선
96	"	" 1157-1	4,007	10,387			"
97	"	" 1158	536	1,388			"
98	"	" 1159	112	290			"

취득대상재산목록(7-2)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재산소유자 주소·성명
	종류	소재지	수량				
99	답	홍천군 북방면 성동리 1079-2	2,281	6,090	년내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에 따른 부지 확보	홍천군 북방면 성동리101 임관순
100	"	" 1162	1,656	4,421			"
101	"	" 1163	1,041	2,759			"
102	"	" 1112	1,098	2,844			홍천군 북방면 성동리 341 전찬길
103	대	" 1165	238	738			"
104	전	" 1167	7,410	14,375			"
105	대	" 1169	436	1,352			"
106	답	" 1114	380	3,253			홍천군 북방면 성동리 169 전득성
107	"	" 1116	724	987			"
108	"	" 1117-2	800	789			"
109	"	" 1117-3	1,901	3,950			"
110	"	" 1115-2	3,012	3,321			홍천군 북방면 성동리 169 전만재
111	"	" 1171	179	1,238			"
112	"	" 1117-1	3,623	1,174			홍천군 북방면 성동리 73 김남욱

취득대상재산목록(7-2)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재산소유자 주소·성명
	종류	소재지	수량				
113	전	홍천군 북방면 성동리 1077-1	340	659	년내	자연환경연구공원조 성에 따른 부지 확보	홍천군 북방면 성동리 73 김남욱
114	"	" 1077-2	3,769	7,312			"
115	전	" 1108	2,780	1,526			경기의왕시 오전동 346-35 이덕심
116	"	" 1111	525	1,050			홍천군 북방면 성동리1127 홍순용외2
117	대	" 1115-1	500	1,780			경기성남시 수정구 신홍동 정일진
118	전	" 1135	749	1,453			"
119	전	" 1141	1,677	3,253			"
120	"	" 1109	509	987			"
121	"	" 1109-1	407	789			"
122	답	" 1110	2,079	3,950			"
123	전	" 1078	1,712	3,321			"
124	"	" 1079-1	638	1,238			"
125	"	" 1157-1	605	1,174			경기양평군 양평읍 도곡리221-4 고대환
126	"	" 1158	694	1,624			"
127	대	" 1159	301	933			"



취득대상재산목록(7-2)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재산소유자 주소·성명
	종류	소재지	수량				
128	전	홍천군 북방면 성동리 1156	1,864	3,728	년내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에 따른 부지 확보	경기양평군 양평읍 도곡리821-4 고대환
129	답	" 1157-2	635	1,645			"
130	전	" 1161	879	1,705			"
131	"	" 1160	162	314			홍천군 북방면 성동리1127 전춘재
132	대	" 1170-1	202	666			홍천군 홍천읍 회암리 200-5 전원씨 5-22 정병용
133	전	" 1170-2	1,030	2,060			"
134	답	" 1175	55	108			홍천군 북방면 성동리1165 인병현
135	임야	" 산174	3,525	990			홍천군 홍천읍 회암리345-10 함순려
136	"	" 산175	209	58			홍천군 홍천읍 회암리 63-4 최승태
137	"	" 산180	1,137	316			서울용산구 이태원동22-2 오창정
138	"	" 산183	2,263	629			춘천시 신동면 사암리782 장정호
139	"	" 산185	1,450	416			춘천시 호지동 491-190 최병용
140	전	" 1060	1,747	987			홍천군 북방면 성동리 1051 장정호
141	임야	" 1113	545	1,760			국(재정경제부)

취득대상재산목록(7-2)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재산소유자 주소·성명
	종류	소재지	수량				
142	전	홍천군 북방면 성동리 1168	1,616	11,376	년내	자연환경연구공원조 성에 따른 부지 확보	국(재정경제부)
143	"	" 1168-1	134	324			"
144	전	" 1168-2	673	5,014			"
145	"	" 1033-2	235	1,107			국(농림수산부)
146	대	" 산169	1,820	520			국(산림청)
147	전	" 산170	2,240	640			"
148	전	" 산171	275	79			"
149	"	" 산184	5,390	1,498			"
150	"	" 364-1	191	899			국(건설교통부)
151	답	" 1060-1	1,419	766			"
152	전	" 1108-1	55	138			"
153	"	" 1111-2	188	472			"
154	"	" 1113-1	706	2,209			"
155	"	" 1119-1	1,290	676			"
156	대	" 1128-1	104	198			"
157	"	" 1162-1	252	632			"
158	"	" 1170-3	150	285			"
159	도로	" 1170-4	180	342			"

취득대상재산목록(7-2)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재산소유자 주소·성명
	종류	소재지	수량				
160	전	홍천군 북방면 성동리 1175-1	310	589	년내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에 따른 부지 확보	국(건설교통부)
161	하천	" 1176-1	27,994	17,664			"
소 계(3필지)			25,258	350,000			
162	전	철원군 김화읍 청량리 276-1	3,000	42,000	년내	철원북구농업시험 장 포장부지 확보	서울 성동구 정릉동132 조옥림
163	"	철원군 김화읍 청량리 351-1	7,346	104,000			철원군 김화읍 청량리776 문명산
164	"	" 351-2	14,912	204,000			"

취득대상재산목록(7-4)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과표또는 평가액	매각 시기	취득사유	재산소유자 주소·성명
	종류	소재지	수량					
합 계(2필지)			5,697	5,697	16,520			
1	답	철원군 김화읍 용양리 528	2,875	2,875	8,337	년내	실경작, 농경지	철원군 김화읍 생창리 윤정옥
2	"	" 529	2,822	2,822	8,183			" "

2) 2000세계평화광파르개최동의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4월 11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뉴밀레니엄과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으로 강원도가 기획하여 개최준비 중인 「2000세계평화광파르」 사업과 관련,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의의, 사업의 개요 및 주요행사내용을 보고하고 지방자치법에 의거 국제행사 개최에 관한 동의를 얻고자 함.
- 주요골자
 - 「새로운 100년 새로운 1000년」이 시작되는 2000년은 화해와 협력, 사랑과 평화를 지향



하는 뉴밀레니엄의 원년인 동시에 「이데올로기의 시대·20세기」의 불행을 상징하는 「6.25전쟁 50주년」이 되는 해임.

- 「갈등과 분열, 전쟁과 파괴」의 지난 역사를 돌아보며, 아직도 끝나지 않은 그 전쟁으로 「세계 유일한 분단국의 유일한 분단도」가 된 강원도에서 피흘려 싸웠던 군인들이 함께 모여 「화음의 선율」을 연출함으로써 「새 천년의 평화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코자 하는 것임.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2000년 4월 11일 내부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0일 제2차회의에서 권혁인기 확관리실자의 제안설명과 최종준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2000년 4월 27일 제2차본회의에서 원종익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동의안은 2000년 4월 27일 원안대로 가결된 후 강원도지사에게 송부되었다.

[의결전문]

「2000 세계평화광파르」 개최 동의(안)

강원도가 제출한 「2000 세계평화광파르」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것을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4 규정에 의거 동의한다.

1. 사업명 : 「2000 세계평화광파르」
(Kangwon International Tattoo 2000-World Peace Fanfare)
2. 공연기간 : 2000. 10. 3(화) ~ 10. 10(화), 8일간
- 공연 : 1일 1회, 2개국 2시간 공연(국가별 1시간)
3. 장 소 : 강원도 원주시 관내(원주양궁장 특설무대)
4. 초 청 : 6·25 한국전쟁 참전 16개국 + 러시아, 중국 군악대

· 미국	· 영국	· 오스트레일리아	· 캐나다	· 뉴질랜드	· 타일랜드
· 벨기에	· 콜롬비아		· 그리스	· 네덜란드	· 터어키 · 프랑스
· 룩셈부르크	· 필리핀		· 이디오피아	· 남아프리카공화국	· 러시아
· 중국	· 대한민국 육 · 해공군 및 해병대				

5. 주 최 : 강원도 ·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 후원 : 국방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 협찬 : 언론사(지방+중앙) + 항공사



第 19 節 第110回 臨時會

1. 概 況

가. 開 會

제110회 강원도의회임시회는 지난 5월 10일 이상구의원외 15인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자로 의장이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15일간의 회기로 2000년 5월 18일 개회하여 6월 1일 폐회되었다.

나. 議事日程

1) 本會議

가) 제1차 본회의 : 2000년 5월 18일(목)

- 제110회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건
- 2000년도 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 2000년도 제1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 설명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건의건
- 결산감사위원선임및위촉기간결정의건
- 5분자유발언(신명선, 엄민현, 손석암)의원

나) 제2차 본회의 : 2000년 6월 1일(목)

- 2000년도 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 2000년도 제1회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 강원도공인조례개정조례안
-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
- 강원도신사업당상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평생교육정보관이용및사용료징수조례안
- 강원도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
-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양양국제공항건설에따른해양환경오염진상및피해어민보상촉구를위한건의안
- 강원도경관현상조례안
-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사임의건
- 관광건설위원회해외연수결과보고
- 5분자유발언(이상명의원)의견

2) 議會運營委員會

가) 제1차회의 : 2000년 5월 18일(목)

- 의사일정결정의견
- 제110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건의
- 2000년도도정질문운영에관한건

나) 제2차회의 : 2000년 5월 24일(수)

- 2000년도정례회운영에관한건
- 2000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처)

3) 內務委員會

가) 제1차회의 : 2000년 5월 19일(금)

- 의사일정결정의견



- 강원도공인조례개정조례안
-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나) 제2차회의 : 2000년 5월 22일(월)

- 2000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공보관실, 감사관실)

다) 제3차회의 : 2000년 5월 23일(화)

- 2000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자치행정국)

라) 제4차회의 : 2000년 5월 24일(수)

- 2000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소방본부)

마) 제5차회의 : 2000년 5월 25일(목)

- 2000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기획관리실)

4) 敎育社會委員會

가) 제1차회의 : 2000년 5월 19일(금)

- 의사일정결정의건

나) 제2차회의 : 2000년 5월 22일(월)

- 2000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보건환경연구원, 도립강원전문대학)

다) 제3차회의 : 2000년 5월 23일(화)

- 2000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환경복지국)
- 강원도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

라) 제4차회의 : 2000년 5월 24일(수)

- 2000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여성정책실)
- 강원도신사업당조례중개정조례안

마) 제5차회의 : 2000년 5월 25일(목)

- 2000년도제1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 강원평생교육정보관이용및사용료징수조례안
- 강원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産業經濟委員會

가) 제1차회의 : 2000년 5월 19일(금)

- 의사일정결정의건
- 2000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농업기술원)

나) 제2차회의 : 2000년 5월 22일(월)

- 2000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국제통상협력실)

다) 제3차회의 : 2000년 5월 23일(화)

- 2000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농정산림국)

라) 제4차회의 : 2000년 5월 24일(수)

- 양양국제공항건설에따른해양환경오염진상조사및피해어민보상추구를위한건의안
- 2000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해양수산출장소)

마) 제5차회의 : 2000년 5월 25일(목)

- 강원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
-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2000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산업경제국)



6) 觀光建設委員會

가) 제1차회의 : 2000년 5월 19일(금)

- 의사일정결정의건
- 2000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관광문화국)

나) 제2차회의 : 2000년 5월 22일(월)

- 2000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건설도시국)

다) 제3차회의 : 2000년 5월 24일(수)

- 의사일정변경의건
- 강원도경관형성조례안
- 421호지방도낙석위험지역대책미련을위한청원
- 2000년도해외연수결과보고서

7) 豫算決算特別委員會

가) 제1차회의 : 2000년 5월 29일(월)

- 위원장선임의건
- 간사선임의건
- 2000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나) 제2차회의 : 2000년 5월 30일(화)

- 2000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 2000년도제1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8) 산불被害對策特別委員會

가) 제109회(폐회중) 제2차회의 : 2000년 5월 6일(토)

- 강원동부지역특별재난지역산불피해복구지원대책보고의건

나) 제110회 제1차회의 : 2000년 5월 19일(금)

-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나) 제2차회의 : 2000년 5월 26일(금)

- 산불피해대책세부추진계획보고의건

다. 議會活動

1) 本會議

가) 2000년도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 제1차본회의

- 2000년 5월 18일 제1차본회의에서 김진선 강원도지사로부터 2000년도 제1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
 ※김진선도지사는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정의 당면현안과 정책방향에 따라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전제하고 당초예산 이후 변동된 중앙지원사업 정리와 계획 변경등으로 추가소요되는 필수경비를 계상하고 강원 동해안지역 산불피해복구와 예방대책에 필요한 예산을 어려운 가운데 가급적 많이 반영하도록 했으며 재정여건은 지난해 보다 다소 호전되고는 있으나 산불피해와 IMF여파로 긴축재정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이기 때문에 지역단위 각종 현안사업을 처음 생각했던 만큼 충분히 지원하지 못한점에 대해 위원들과 전도민이 함께 이해해 달라고 하였다.

나) 2000년도제1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 제1차본회의

- 김병두교육감은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0년도 당초 예산 확정이후 교육부로부터 추가로 교부된 국가부담수입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가로 전입되는 전입금을 포함하여 교육정보화사업추진을 위한 지방교육채 발행액 및 순세계 잉여금등을 계상하기 위하여



편성하였다고 전제하고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한 교육정보화기반구축 및 제7차 교육과정 시행대비와 새 학교 문화 창조를 위한 투자 가용재원 확충 등 교단지원사업과 교육환경개선비 등에 우선하여 편성하였다고 설명했다.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 제1차본회의

- 2000년 5월 18일 제110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제1항 및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 제9조제3항에 근거하여 민주당 9명, 한나라당 8명, 자민련1명, 무소속2명등 20명으로 구성하기로 의결한대로 가결되었다.

라) 5분자유발언(신명선, 엄민현, 손석암)의원 : 제1차본회의

- 신명선의원 : 산불피해 지역 이재민에게 들어온 성금이 100%로 지급될 수 있도록 강원도에서 중앙정부에 촉구해야 하며 산불피해지역 주민들의 간접피해조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중앙에 건의해야 한다고 하였다.
- 엄민현의원 : 최근 영월댐 건설 타당성 조사를 위한 공동조사단이 영월댐을 전환시켜 홍수조절용 전용댐을 건설하자는 안이 제기되어 댐건설 백지화를 주장하는 온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면서 단지 명칭만 바꾼것으로 자연 생태계에 영향을 주고 안전성문제가 되기는 마찬가지인 대체댐건설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하였다.
- 손석암의원 : 햇볕정책의 결과 멀지 않아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었지만 북한과 가장 접경지에 있는 강원도는 아무런 준비도 해놓지 않고 있다고 전제하고 며칠전 태백시에서 97년도 5월에 발족된 북한 동포들에게 석탄 보내기 운동을 새로운 국면에서 전제하기로 뜻을 모아 모금운동을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면서 강원도는 그 동안 미온적이었던 남북교류협력에 적극적인 대응과 정진을 촉구한다고 하였다.

라. 議案處理狀況

1) 一般議案

- 이번 회기중 상정대상일반건의안은 총 16건으로 도지사 제출이 8건, 도교육감 제출3건, 의원발의 1건, 의장제의 4건으로 처리결과를 보면 16건 모두 가결되었으며 종류별 처리현황

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종류별	상 정 대 상 안 건			의 안 처 리 내 역				
	합 계	전회기 이 월	금회기 접 수	가 결			폐 기 (철 회)	계 류
				소 계	원 안	수 정		
계	16		16	16	13	3		
조 례 안	9		9	9	8	1		
예 산 안	2		2	2	1	1		
건 의 안	1		1	1		1		
동 의 안	4		4	4	4			

2. 議決案件

가. 條例案

1) 강원도공인조례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5월 10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사무관리규정 (99. 8. 7시행)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99. 9. 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공인관리와 관련 개정된 사무관리규정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며 조례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공인은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이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 기관이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안제2조)
 - 전자문서에 사용하는 전자공인의 사용규정을 정함(안 제2조)
 - 도지사 직인 규격을 종전 2.7cm에서 3.0cm로 조정(안 제4조, 별표1)
 - 공인의 신조, 개각 승인제도를 등록, 재등록으로 변경(안 제6조, 제10조)



- 전자공인의 전자공인 등록대장 비치하되 지시정보기획관은 전자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컴퓨터 파일관리 및 전자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 설치관리규정(안 제11조)
- 전자문서의 전자직인 날인은 문서처리과의 문서심사관이 하도록 규정(안 제14조)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2000년 5월 10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19일 제1차회의에서 장순일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최종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 회의 심사 : 2000년 6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신창승 내무위원회 간사의 심사보고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2000년 6월 2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2000년 6월 22일 강원도조례 제2790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공인조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공인(직속기관, 사업소,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종류 및 비치사용) ① 공인은 도지사,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보조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하며,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면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② 도지사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출장소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도지사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출장

소장의 전용임을 “별표2”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전용”임을 “별표3”과 같이 표시 하여야 한다.
- ④ 도지사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그 소속 기관장의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한 전자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 ⑤ 제1항 내지 제4항 규정에 의한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함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명칭에 “인” 또는 “인의”자를 붙이며, 그 규격은 “별표1”과 같다.

제5조(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출납원의 직명에는 수입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③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 되거나 부식되지 아니 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공인의 등록) ①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할 때에는 “별지1호서식”에 의하여 자치행정국장에게 공인등록신청을 하여 공인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공인대장) 자치행정국장은 제6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 하여야 한다.

제8조(인영의 보존) 자치행정국장은 매년 2월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공고) ① 공인(전자공인을 제외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 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재등록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기관의 관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0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의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6조에 의하여 자치행정국장에게 공인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폐기대상 공인을 첨부하여 자치행정국장에게 공인폐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공인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전자공인의등록 및 관리) ① 전자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은 “별지제1호서식”에 의하여 자치행정국장에게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 자치행정국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전자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자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지식정보기획관은 등록된 전자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컴퓨터화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자치행정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공인관수자 및 보관) ① 공인의 종류별 관수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

②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이중케비넷 또는 철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공인의 날인)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처리과의 장(문서심사관) 또는 처리과장은 문서심사자를 1명 지정하여 문서심사 후 전자공인으로 날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표시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공인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4조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인은 신조 또는 개각할 때까지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 공인의 규격

공 인 의 구 분	현 행	개 정
1. 합의제기관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합의제기관)	정방형 3.6cm	3.6cm정방형
2. 도지사	2.7cm정방형	3.0cm정방형
3. 직속기관·사업소장의 공인 가. 1급 공무원인사업소장 나. 2급 또는 3급 공무원인출장소·사업소장 다. 4급 또는 5급 공무원인출장소·사업소장 라. 6급 또는 7급 공무원인출장소·사업소장 마. 출장소장·사업소장의 보조기관	2.7cm정방형 2.4cm정방형 2.1cm정방형 1.8cm정방형 1.6cm정방형	가. 1~3급 공무원 2.7cm정방형 나. 4~6급 공무원 2.4cm정방형
4.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분임자 나. 출납원 및 분임자	2.0cm정방형 1.8cm정방형	(현행과 같음)
5. 계 인 가. 도본청 나. 직속기관, 사업소, 보조기관	반타원형 길이 3.0cm 폭 1.3cm	(현행과 같음)
6. 철 인 가. 도본청 나. 직속기관, 사업소, 보조기관	(원형) 직경 3.5cm 직경 2.0cm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기 관 명

우	주소	/ 전화()	/ 전송()
○ ○ 과	과장 ○ ○ ○	사무관 ○ ○ ○	담당자 ○ ○ ○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참 조

제 목

발 신

인

☐ 공인등록(재등록)신청

☐ 공 인 폐 기 신 고

등록(재등록, 폐기)사유				
폐기대상 공인처리	폐기에정일(년월일)	년	월	일
	폐 기 방 법	☐ 소 각	☐ 이 관	☐ 기타()
	폐 기 재(분실자)	소속 :	직급 :	성명 :
비 고				



공 인 명	
종 류	☐ 청 인 ☐ 직 인 ☐ 특수관인

[별지 제2호서식] 공 인 대 장

공 인 명					
종 류	☐ 청 인	☐ 직 인	☐ 특수관인	관리부서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	(인 영)	등 록 일(재등록일)	년 월 일		
		새 긴 날	년 월 일		
		새 긴 사 람	주 소 : 성명 및 상호 : 주민등록번호 :		
		최 초 사 용 일	년 월 일		
		재 료			
		등 록(재등록)사 유			
		도 보 공 고	년 월 일 공고 제 - 호		
		비 고			
폐 기 공 인	(인 영)	등 록 일(재등록일)	년 월 일		
		폐 기 일(분실일)	년 월 일		
		폐 기 사 유	☐ 마 멸 ☐ 분 실 ☐ 기 타 ()		
		폐 기 방 법	☐ 소 각 ☐ 이 관 ☐ 기 타 ()		
		폐 기 자(분실자)	소 속 : 직 급 : 성명 :		
		도 보 공 고	년 월 일 공고 제 - 호		
		비 고			
※ 관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 재등록할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별지 제3호서식] 인 명 부

○ ○ ○ ○년 2월 1일 현재

공 인 명	등록(재등록)일자	인 영	비 고

〔별지 제4호서식〕 전자공인등록대장

공	인	명				
종	류	☐ 청 인 ☐ 직 인 ☐ 특수관인				
등록 · 재등록 공인	전 자 공 인 인 영		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			
	전 자 공 인 등 록 당 시 의 일 반 관 인 영	등록(재등록)사유				
		관 리 부 서				
		비 고				
폐 기	전 자 공 인 영	등 록 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 기 일 : 년 월 일				
		폐 기 사 유				
		폐 기 자	소속:	직급:	성명 :	
		비 고				
※ 전자관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관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공인사고보고서

20 년 이 이

자치행정국장 귀하

보고자 : (인)

다음과 같이 공인의 사고가 발생하였기 보고함.

다오

1. 사고공인명	
2. 사고발생일시장소	
3. 사 고 내 용	
4. 사고후의처리전말	
5. 기 타	



2)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5월 10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이 1등급 추가로 신설됨에 따라 신설된 7급에 대하여 도세를 감면하고자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국가유공자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상이등급 1급~6급에 한하여 취득세, 등록세 및 면허세를 면제하던 것을 상이등급 7급까지 확대 함. (안 제2 조제3항)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2000년 5월 12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19일 제1차회의에서 장순일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최종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2000년 6월 1일 제2차본회의에서 신창승 내무위원회 간사의 심사보고후 질 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2000년 6월 2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2000년 6월 22일 강원도조례 제2789 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본문중 “6급” 을 “7급” 으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3) 강원도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 2000년 5월 10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업추진에 공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복지시책에 대한 도민의 참여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 사업의 기본방향 및 주요 계획, 정책의 조사, 연구, 평가등의 사항을 심의함. (안 제2조)
 -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안 제3조)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함. (안 제4조)
 - 위원장의 직무, 회의소집 및 의결정수를 정함. (안 제5조, 제6조)
 - 위원해촉에 관한 사항과 전문가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규정을 둠. (안 제7조, 제8조)
 -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도록 하고 출석위원등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제10조)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2000년 5월 12일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23일 제3차 회의에서 이방웅 환경복지국장의 제안설명과 서의승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2000년 6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구 교육사회위원장의 심사보고후 질



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2000년 6월 2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2000년 6월 22일 강원도조례 제2791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의 기본방향 및 주요계획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업 및 정책의 조사·연구 평가에 관한사항
3. 지역사회복지 운동의 촉진을 위한 도민참여 및 협력,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사항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 할 사항
5. 기타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복지국장, 산업경제국장, 여성정책실장이 된다.

④ 위촉위원은 사회복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사회복지에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등을 대표하는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표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의견청취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관련담당이 된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10조(수당등)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는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강원도심사임당조례중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5월 10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여성의 사회적 역할증대에 따른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있는바 이에 따른 사임당의 문예와 부덕을 전승하는 창의적 여성상을 확립하기 위한 신사임당 수상자 자격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그간 직제개편 및 업무이관등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조문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신사임당상 수상자 자격기준조정(안 제3조)
 - 후보자 추천시 구비서류중 일부삭제(안 제4조 제2항 제3호)
 -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정비(안 제2조 제2항 및 제9조)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2000년 5월 12일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24일 제4차 회의에서 한경숙 여성정책실장의 제안설명과 서의승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 회의 심사 : 2000년 6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구 교육사회위원장의 심사보고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2000년 6월 2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2000년 6월 22일 강원도조례 제2792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신사임당상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신사임당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5호를 삭제한다.

2. 문화·예술·전문분야 또는 기타 영역에서 여성의 자질향상 및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한 여성

3. 봉사활동 또는 전문분야에서 주민화합과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여성
4.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모범시민으로 양육한 여성

제4조제2항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2항중 “부지사” 를 “행정부지사” 로 한다.

제9조중 “간사,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부녀복지과장이, 서기는 부녀복지계장이 된다” 를 “여성정책실 정책조정담당을 간사로 한다”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강원도 평생교육정보관이용및징수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5월 10일 강원도교육감
- 제안이유 : 강원평생교육정보관개설 (98. 12. 11)이후 강원도교육청 산하 기관이외에 유관 기관, 사회단체 및 지역주민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정보관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에 대한 적정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 설비의 효용증대와 효율적인 지방교육 재정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이용과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정보관 시설·설비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함. (안 제2조)
 - 정보관 시설·설비의 사용시간을 오전, 오후 및 야간으로 구분하여 운영토록 하고, 일부 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봄. (안 제3조 제1항 및 제2항)
 - 정보관 시설 및 설비를 운영상 지장이 없다고 관장이 판단할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안 제4조 제1항 및 제2항, 별지 제1호 서식)
 -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기타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제1항)



- 이 조례 또는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설비의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될 때, 사용목적에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기타 공익상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사용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제2항)
- 정보관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료를 정함. (안 제6조, 별표1)
- 강원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학교포함)이 주관하는 행사와 강원도교육위원회 행사일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하고, 교육과 관련된 단체의 교육행사일 경우에는 기본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제1항 및 제2항)
- 정보관 시설 또는 설비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며,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때, 사용자가 사용일 7일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하여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사용료를 과오납입때를 제외하고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하도록 함. (안 제8조 제1항 및 제2항)
- 사용자는 관장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도록 함. (안 제9조)
-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정보관의 시설 또는 설비, 기타 물품 등을 훼손·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하도록 함. (안 제10조)
- 정보관 교육자료에 대한 관람시간을 정하고,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 제2항)
- 「강원도공공도서관및강원평생교육정보광이용조례」의 제명과 조문내용중 중복되는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함. (부칙 제3조)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2000년 5월 12일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25일 제5차 회의에서 서지원 교육국장의 제안설명과 서의승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및 답변이 있었으나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
 - 안 제5조제2항제1호중 관장의 지시사항까지 위반하는때 사용허가를 취소·변경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권리를 과다 제한하는 것으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안 제8조제2항(기납부한 사용료반환단서조항) 제2호중 사용허가 취소신청을 사용예정일 7 일전으로 규정한 것은 그 이후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취소 신청까지도 제한함으로써 사 용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설명바람.

- 답변요지

- 이 조항에서 지시는 조례나 규칙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지 시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 정보관 이용을 극대화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기간을 주기 위한 것이며 사용료 반환문제는 신축성있게 운영하겠음.
- 본회의 심사 : 2000년 6월 1일 제2차 본 회의에서 이상구 교육사회위원장의 심사보고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2000년 6월 2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2000년 6월 17일 강원도조례 제2787 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평생교육정보관이용및사용료징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평생교육정보관의 이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범위) 강원평생교육정보관(이하 “정보관” 이라 한다) 시설 및 설비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공연장, 소극장, 특별활동실, 전시실
2. 부대시설 : 피아노, 무대음향시설, 냉·난방시설, 전기·조명시설

제3조(사용시간) ① 정보관 시설 및 설비의 1회 사용시간을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1. 오전 : 09:00 ~ 12:00
2. 오후 : 13:00 ~ 17:00



3. 야간 : 18:00 ~ 22:00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용기간중 일부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사용허가) ① 강원평생교육정보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정보관의 시설 및 설비를 운영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정보관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5일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사용제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기타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손해가 있을 지라도 관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하는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설비의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4.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체납하는 때
5. 사용목적에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는 때
6. 기타 공익상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6조(사용료) 정보관 시설 및 설비의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1. 강원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학교 포함)이 주관하는 행사로서 당해 기관장이 신청하는 경우
2. 강원도교육위원회 행사

② 교육과 관련된 단체의 교육행사로써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본시설사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정보관 시설 또는 설비의 사용자는 사용허가 즉시 제6조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때
2. 사용자가 사용일 7일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하여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사용료를 과오납하는 때

제9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자는 관장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0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정보관의 시설 또는 설비, 기타 물품 등을 훼손·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도서·자료의 이용시간 등) ① 정보관 도서·자료의 열람시간, 관외 대출 제한, 자료의 복사·인쇄 수수료, 휴관, 입관 및 대출금지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공공도서관이용조례 제2조 내지 제5조 및 제7조를 적용한다.

② 정보관의 교육자료에 대한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1.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09:30 ~ 17:00
2. 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 0930 ~ 16:00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관 시설·설비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공공도서관및강원평생교육정보관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공공도서관및강원평생교육정보관이용조례”를 “강원도공공도서관이용조례”로 한다.

제1조중 “강원도공공도서관과 강원평생교육정보관”을 “강원도공공도서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의 제목 “사용허가 및 수수료”를 “수수료”로 하고, 동조 제1항을 삭제한다.

[별표 1] 강원평생교육정보관 시설·설비 사용료



가. 기본시설 사용료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공 연 장	공연 및 영화	오전	30,000원	○ 사전 준비를 위한 사용은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오후	40,000원	
		야간	50,000원	
	기 타 행 사	1시간	10,000원	
소 극 장		1회	15,000원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함
특 별 활 동 실		1회	10,000원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함
전 시 실		m²	120원	○ 1일(09:00~22:00)m²당 사용료임

나. 부대시설 사용료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피 아 노		1회	15,000원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 공연연습 등 사전 준비를 위한 사용은 기준사용료의 50%로 함. ○ 1일 2회이상 사용시 1회 초과분에 대하여 기준 사용료의 50%를 할인함
무대음향시설	마 이 크	1회	15,000원	
	녹 화	1회	20,000원	
	음 향	1회	15,000원	
내 · 난방시설	공 연 장 소 극 장 전 시 실 특별활동실	1시간	연료시가에 의함	○ 1시간미만 사용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전기 · 조명시설	공 연 장 소 극 장 전 시 실 특별활동실	1시간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율에 의함	○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시간당 소비전력 ×kW당 요금×사용시간

[별지 1호서식] 강원평생교육정보관 시설 및 사용신청서

신청기관	주 소							
	신청기관명			연락전화번호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용시설	기본시설							
	부대시설							
사용기간	본행사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	회수 (시간)	오전 회(시간) 오후 회(시간) 야간 회(시간)				
	연습및행사준비물설치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	회수 (시간)	오전 회(시간) 오후 회(시간) 야간 회(시간)				
	설치물철거	년 월 일부터 : 까지						
공연및행사명								
사용목적								
입장예정인원								
기타사항								
비고		붙임 1. 행사계획서(귀빈참석여부 포함) 1부. 2. 기타 필요서류 등						
강원평생교육정보관이용및사용료징수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같이 강원평생교육정보관 시설 및 설비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강원평생교육정보관장 귀하								



6) 강원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 ·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5월 10일 강원도교육감
- 제안이유 : 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 2000.2.28 대통령령 제16,729호)에 의거 학생수 60명 미만의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의원정수 및 위원의 구성비율을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된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학생수 60명 미만인 학교에 두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의원정수 및 위원의 구성비율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동 조례내용을 삭제하고 위원 정수결정의 기준이 되는 학생수는 임시 개시 당해년도 3월 1일자로 하여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육위원의 선출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임기 만료에 따른 지역위원 선출시 현재 위원의 자격을 갖고 있는 학부모·교원위원과 새로 선출된 학부모·교원위원간의 선출권에 대한 논란이 있어 임기를 같이 하는 차기 학부모 위원과 교원위원이 선출토록 하고자 함.
 - 현재 교육행정기관의 인사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는 다른학교의 위원 겸임규정은 삭제하고 다만 병설학교 또는 통합운영학교의 학교장은 각 학교의 학교장을 겸임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당해 학교의 당연직 교육위원을 겸임하도록 함.
 - 기타 현행조례에서 사용하는 명칭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2000년 5월 12일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25일 제5차 회의에서 김호준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서의승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및 답변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2000년 6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구 교육사회위원장의 심사보고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2000년 6월 2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2000년 6월 17일 강원도조례 제2788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영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정수 결정을 위한 학생수는 임기 개시 당해년도 3월 1일 현재 학생수로 한다.

제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영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지역위원 선출은 차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선출한다.

제5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병설학교 또는 통합운영학교의 학교장은 당해 학교의 당연직 교원위원을 겸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위원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9조제1항중 “법 제32조”를 “법 제32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규칙”을 “규정”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법 제32조제9호”를 “법 제32조제1항제11호”로 한다.

제16조중 “서무책임자를”을 “교육행정실장”으로, “서무책임자가”를 “교육행정실장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 강원도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5월 10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지난해 8.23일 경제정책조정회의시 수도권집중억제시책의 일환으로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서도 세제·금융·이전부지매입·배후도시개발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한다는 정부의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 확정·발표와 관련하여 도내에 보다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는 타시·도와 차별화된 각종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여 우리도 시정에 맞는 타시·도 소재 기업의 도내이전 유치를 위한 지원시책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유망기업 및 자본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산업시설용지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토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 기업의 유치촉진을 위하여 이전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용 건물을 취득하는 가액이나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토지비용은 제외)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공장시설투자에 대하여는 그 투자금액의 3%의 범위안에서 1개 기업당 2억원까지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 이전기업이 50명 이상을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1인당 3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 국내기업의 공장시설(건축비 및 부지매입비) 투자금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1일 상시고용규모가 300명 이상 대규모로 제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이전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 수도권 기업이 도내에 이전시 보조금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
 - 유망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유치기업의 공정한 평가 및 선정을 위하여 강원도기업유치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업유치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 유치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 등을 심의 하도록 함. (안 제11조)

-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7조)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2000년 5월 15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25일 제5차회의에서 박영환 산업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창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수정안대로 가결되었다.

[수정안 요지]

- 수정이유 : 조문중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일부자구수정
- 수정주요골자 : 안 제2조(정의)중 「또는」을 「등」으로 수정한다.
- 본회의 심사 : 2000년 6월 1일 제2차 본 회의에서 엄문섭 산업경제위원장의 심사보고후 질의 및 토론 없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2000년 6월 2일 수정안대로 가결된 후 2000년 6월 22일 강원도조례 제2794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의 강원도역로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중 “이전기업”이라 함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에서 정한 「과밀억제권역」등 타시·도에서 2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본사나 공장을 강원도역(이하 “도역”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기업유치 의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강원도 산업구조의 고도화의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도역으로 유망한 기업 및 자본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투 자 지 원

제4조(산업시설용지 지원) 도지사는 유망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제5조(이전비 지원) ① 도지사는 이전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본사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당해 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용 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3%의 범위안에서 1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공장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토지비용은 제외되며, 소요비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공장시설투자에 대하여 3% 범위안에서 1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훈련비 보조) ① 도지사는 이전기업이 50명이상을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1인당 월 30만원까지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총액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범위 등은 강원도기업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세제감면) 이전기업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감면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 및 관련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용지지원) 이전기업이 공유재산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금융지원) 도지사는 기업유치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전기업에 대하여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업보다 우대하여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국내기업이 대규모의 제조업을 도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규모 제조업의 범위는 다음각호와 같다.

1. 공장시설(건축비 및 부지매입비)의 투자금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2. 1일 상시 고용규모가 300명이상인 경우

제3장 기업유치위원회 설치 등

제11조(기업유치위원회 설치) ① 유망한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도역으로의 유치와 유치기업의 공정한 평가 선정을 위하여 강원도기업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유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강원도의 기업유치관련정책에 대한 자문
2. 기업, 관련 기관·단체 등을 방문하여 기업 및 자본의 유치 및 홍보활동에 대한 자문
3.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의 적정성 평가
4. 유치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 심의
5. 기타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제12조(구성 등) ① 유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의원 1인
2. 산업경제국장
3. 기술전문가 3인
4. 경영전문가 2인
5. 기업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유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유치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중소기업지원과장이 간사가 된다.

제14조(회의결과 조치) 도지사는 유치위원회가 심의한 내용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15조(시·군의 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시군의 기업 및 자본의 유치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이전에 필요한 인가·허가 등 행정적 절차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기타 이해관계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도지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었을 경우에는 강원도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포상) 도지사는 기업유치에 관하여 공로가 큰 자에 대하여 강원도 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다른 조례의 적용)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강원도보조금관리조례를 적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5월 10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현행제도(동조례)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운전자금의 지원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기금의 상호전용사전 협의기관 결산·보고 대상의 명칭을 「통상산업부장관」, 「산업지원부장관」에서 「중소기업청장」으로 용어를 변경함. (안 제5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
 - 중소기업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자금중 운전자금의 지원범위를 확대함. (안 제9조 제7호)
 - 경영안정지원자금의 지원대상의 순서를 변경함. (안 제9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2000년 5월 15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25일 제5차회의에서 박영환 산업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창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이 있었으나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
 - 지난 107회 임시회시 제출된 조례 개정시 본 개정사항이 개정되었어야 하나 개정 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 조례관리에 대한 집행부의 주의 촉구
- 답변요지
 - 실질적인 업무소홀로 개정하지 못하였고 금번에 개정안을 제출하였음. 앞으로 조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 본회의 심사 : 2000년 6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엄문섭 산업경제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2000년 6월 2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2000년 6월 22일 강원도조례 제2793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통상산업부장관” 을 “중소기업청장” 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제1호를 제2호로, 제2호를 제1호로 한다.

7.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연구개발비, 원부자재구입비, 시장개척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제19조제2항중 “산업자원부장관” 을 “중소기업청장”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 강원도경관형성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5월 10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우리도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전통과 역사성을 가미한 특색있고 쾌적한 지역 및 도시를 가꾸고 각종 개발시 경관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인 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자연의 훼손방지와 지역실정에 적합한 경관 형성을 위해 도지사, 시장, 군수와 도민, 사업장의 책무를 정함. (안 제4조 및 제5조)
 -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과 심의의제사업, 위원회 기능 등에 관하여 정함. (안 제6조 및 제7조)
 - 자연경관보전의 기본원칙과 경관형성기본계획수립 및 기본계획수립시 지역실정에 맞도록 산림, 하천, 호수, 해안, 도로 및 철도, 역사, 문화, 유적지 주변, 기타 건축물 및 시설

물등이 자연경관과 잘 조화되도록 반영할 사항을 정함. (안 제8조내지제10조)

- 경관형성 관련사업을 시행하는 시장, 군수와 활동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2000년 5월 12일 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24일 제3차회의에서 김진성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신동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2000년 6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명 관광건설전문위원회 간사와 심사보고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2000년 6월 2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2000년 6월 22일 강원도조례 제2795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경관형성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강원도 경관형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관”이라 함은 인간의 시지각적(視知覺的) 인식에 의하여 파악되는 공간구성에 대하여 대상군(對象群)을 전체로 보는 인간의 심적 현상을 말한다.
2. “자연경관 보전”이라 함은 자연의 기능, 자연자원의 이용성 및 다양성 등 생태적 측면과 복원개념 및 건축, 구조물, 역사·문화적 공간 등 인문 경관과의 조화와 연계 등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3. “경관형성”이라 함은 자연경관의 보전을 원칙으로 주변경관을 조화롭게 만들어 가는 것을 말한다.
4. “경관형성계획”이라 함은 경관형성을 위한 경관형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경관형성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총칭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강원도지역내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사업 및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이하 “인·허가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 시행하는 민간개발사업에 적용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또는 응급조치를 행하는 경우
2. 기타 다른 법령에서 경관에 관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 도지사, 시장·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자연환경의 훼손방지와 지역실정에 적합한 경관형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도민과 사업자의 책무) ① 도민은 경관형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그실천을 도모하여, 경관형성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이 경관에 주는 영향을 감안하여 스스로 또는 지역 주민과 협조하여 경관형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며, 도와 시·군이 실시하는 경관형성 시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위원회 및 기능) ① 도지사는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을 강원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의한 강원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여금 심의하게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관형성계획에 관한 사항
2. 도지사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업의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
3. 도지사의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
4. 기타 도지사가 경관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7조(심의 의제) ①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6조에 의한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강원도립공원관리조례에 의한 강원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2. 강원도건축조례에 의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3. 강원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조례에 의한 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4. 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5. 강원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운영조례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6.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도시계획시설 및 사업
7.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업

②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심의 할 때에는 강원도경관형성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8조(자연경관 보전의 기본원칙) ① 자연경관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생태계 훼손방지 및 아름다운 자연경관 유지 관리
2. 산림·하천·호수·해안 등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자제
3.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간의 연속성 있는 자연경관형성
4. 건축물 설치 등 불가피한 개발의 경우 자연경관과 조화 유도 및 시계 차단 방지

② 자연경관을 토대로 특색있는 지역경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문화공간과 건축물, 도로, 철도 등의 인공환경이 자연친화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9조(경관형성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개요
2. 경관형성의 기본구상
3. 지역또는 권역별 경관형성 가이드라인
4. 이미지 요소별 경관형성 가이드라인
5. 경관형성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6. 기타 경관형성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② 기본계획이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경관형성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도지사는 경관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와 기준, 지침등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경관형성계획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시군단위 경관형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계획에 적합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기본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경관형성에 대한 기본계획에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실정에 맞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산림

- 가. 산림축의 보호 및 연결을 통한 자연생태계의 보전
- 나. 산 능선의 단절방지 및 녹지보전
- 다. 산 능선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및 경관저해 건축물의 설치 제한
- 라. 암벽·암석·고목 등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개발 및 시계차단 행위 방지
- 마. 녹지 자연도가 높은 산림의 보전

2. 하천

- 가. 하천생태계 기능유지를 위하여 자연적 하천 형태의 보전 및 친 자연형 하천으로의 복원
- 나. 하천생태계와 자연성을 고려하여 주요 수원지와 합수부의 보전
- 다. 물의 흐름을 고려하여 하천변에 자생하는 수목류 및 갈대군락 등의 보전
- 라. 하천오염 방지와 하천변에 경관의 증진을 위하여 완충지역의 지정·설치
- 마. 하천의 인위적인 친수공간 활용은 가급적 제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하천경관 및 생태적 기능을 최대한 고려

3. 호수

- 가. 자연의 생태와 호수 주변환경의 보전
- 나. 호수 주변을 포함하여 녹음이 풍부한 지역은 가급적 보전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친 자연적인 친수공간으로 정비
- 다. 방재 조립지와 유원지 주변에는 자연 친화적이며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과 유도

4. 해안

- 가. 자연적인 해안선 및 백사장을 유지하고 해안선 변형을 유발하는 구조물 설치에 유의
- 나. 해안 등에 인접한 지역의 녹지 보전
- 다. 해안제방 설치시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재질과 형태로 설치

5. 도로 및 철도

- 가. 도로 및 철도 건설시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를 고려

- 나. 수목·기암괴석 등 특징적인 경관요소의 보전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경관 연출
- 다. 도로 및 철도 주변을 자연경관과 일체감을 줄 수 있도록 고려
- 라. 산림단절식이 아닌 터널식 도로건설 및 동물 이동통로 설치
- 마. 도로시설물 및 교량설치시에는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형식을 선택하고 주위에 있는 경관자원을 가능한 한 살리도록 고려
- 바. 터널입구인 갭문은 주변의 지형이나 경관과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고려
- 6. 역사·문화유적지 주변
 - 가. 역사유적지 주변의 인공시설물의 높이, 규모, 형태, 재질 등에 있어서 해당 역사유적지와의 조화를 고려
 - 나. 옥외광고물의 규모, 형태, 색채, 야간조명 등에 대하여는 역사유적지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고려
- 7. 기타 건축물 및 시설물 등
 - 가. 자연경관의 시계가 방해되지 않도록 건축물 및 시설물의 형태 고려
 - 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색채, 형태, 디자인 고려
 - 다. 건축물 및 시설물 주변의 녹지보전 및 조성을 통하여 자연경관과 일체감 유지
 - 라. 송전·통신탑의 설치는 경관보존의 필요성이 높은 지구를 피하고 배치시에는 색채 디자인 등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유도하여야 하며, 가급적 수목을 이용 은폐·엄폐될 수 있도록 고려

제11조(경관형성 사업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경관형성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경관형성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적 지원을 행하거나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 강원도 지역을 대상으로한 경관형성 활동을 목적으로 할 것.
 - 2. 대상지역과 이해관계가 없을 것.
 - 3. 경관형성 활동으로 타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할 것.
 - 4. 기타 경관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경관형성을 위한 권고·조언 등) ① 도지사는 국가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공공사업에 대하여도 경관형성계획을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위원회심의결과 인·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경관형성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조언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경관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조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를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수립된 강원도경관형성기본계획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 ③ (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 제5조제2항중 “간사는 도본청 기술심의 업무담당계장중에서” 를 “간사는 도본청 기술심의 업무담당과 경관형성업무담당중에서” 로 한다.
- 제9조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의2. 강원도경관형성조례 제6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
- 제11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경관형성계획 반영사항

나. 豫算案

1) 2000년도 제1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5월 12일 강원도지사

○ 제안설명요지

-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확정이후 변경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중앙지원 사업을 정리하는 한편 동해안지역 산불피해 복구비와 산불예방 및 진화대책 사업비로 계상하고 연도내 마무리가 필요한 자체사업을 조정한 것으로 당초예산 1조342억원보다 3,135억원이 증가된 1조3,477억원 규모로 일반회계가 1조 1,476억원으로 85.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특별회계가 522억원으로 3.9%, 공기업특별회계가 1,478억원으로 10.9%임.

나) 심사및 심의경과

- 위원회심사 : 2000년 5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되어 5월 29일 제1차 회의에서 권혁인 기획관리실장이 제안설명과 장국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답변에 이어 5월 30일 제2차 회의를 속개 역시 장시간에 걸쳐 질의 답변후 수정안대로 가결되었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

-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289백만원의 출연 목적은?
- 수산물 종합판매장시설 사업비 국고보조금 9억원 삭감사유와 향후 대책은?
- 내수면 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 예산 5천만원으로 방류할 어종 및 장소는?
- 보통교부세가 감소한 사유와 감소로 차질이 예상되는 사업과 대책은?
- 영월댐 수물예정지 주민 대책으로 농자재지원비를 요구약의 30%만 반영한 사유와 대책?
- 춘천의료원 매각수입이 당초예산보다 30억원이 증가된 사유와 매각내역, 매각후 향후 추진 계획은?
- 도내 여성회관 건립 4개소에 예산계상 내역과 회관건립 입지선정에 도가 관여하는 내역?
- 산촌종합개발사업 사전 설계비지원 대상마을 3개소와 추진상황은?

- 답변요지

-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은 행자부 산하기관으로 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납부하는 출연금 행자부로부터 지방교부세로 배정받아 반영하였음.



- 국고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전액 삭감된 것으로 운영주체가 될 양양수협에서 기존재래시 장내 상인들의 반발과 시설부지 매입의 어려움 등을 들어 사업을 포기 하였기 때문이다.
- 춘천을 비롯한 내륙 5개시군에 지역별 여건에 맞고 어업인이 희망하는 뱀장어, 잉어, 메기등의 치어를 방류하는 것임.
- 당초예산 편성시 보통교부세가 확정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추계치를 계상함으로써 감소 되었으며 지방세 100억원 및 세외수입 205억원등의 일반재원이 확보되었으므로 보통 교 부세 감소로 인해 당초 추진하기로 하였던 사업에는 차질이 없음.
- 국회의 최종예산 심의시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이며 의료원 토지, 건물 등 공유재산과 의료장비 등 물품매각, 보건환경연구원등을 323억 66백만원에 매각하기로 하였으며 법 인해산 등기가 완료되면 청산단이 채된 신고 및 공고, 최고, 채권추심 및 채무변제 잔 여재산의 처분, 문서인계 등을 9월까지 완료할 예정임.
- 건립중인 여성회관 4개소는 태백, 횡성, 정선, 고성이며 당초예산 7억원, 이번 추경에 2억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별 입지선정은 해당 시군과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음.
- 사전설계 3개마을은 삼척시 노곡면 중마읍리,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양구군 월명리 등 이며 금년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수립하여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차 사업으 로 추진할 계획임.

[수정안의 요지]

- 예산안 수정 규모는 총 12억원(일반회계 2억원, 특별회계 10억원) 규모로서 일반회계 예산 삭감은
국제교류 경상적경비(백두산항로 개통 관계자 초청) 2천만원, 문화예술 자체사업비(강 원문인의 집) 1억 8천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일반회계 예산 증액은,
자원봉사센터운영(6개소) 3천만원, 여성회관 교육생급식비 1천만원, 여성회관 컴퓨터구 입 2천만원, 길림성 연변자치주 교류사업 9백만원, 의원 휴게실 비품 1천만원, 동해안 산불 제2차 피해조사 3천만원, 생활체육대회 지원 1천만원, 국제태권도대회 지원 1천만 원, 예비비 7천 1백만원을 증액하며,
강원도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동해목호지구 주택건설사업비 10억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10억원을 증액 조정 함.

- 본회의 심사 : 2000년 5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김진선 강원도지사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토록 한 후 6월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유돈대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후 수정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동의안은 2000년 5월 29일 검토상의회 2000년 5월 30일 제2차회의에서 수정안대로 가결된 후 강원도지사에게 송부되었다.

[의결전문]

2000년도제1회 강원도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 예산총칙 수정(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
 - 일반회계 예비비 7,641,101천원을 7,712,101천원으로 수정
- 일반회계 : 세입·세출
 - 세입 : 변동없음
 - 세출 : 아래와 같이 수정

(단위 : 천원)

소 관	과 목		자치단체 제출예산액	수 정 액		수 정 예 산 액	수정사유 및 내 역
	세 항	목		감 액	증 액		
계			12,059,959	200,000	200,000	12,059-959	
자치행정과	민간협력 경상적경비	307-02	92,000	-	30,000	122,000	자원봉사센터운영 5백만원×6개소
여성회관	여성회관운영 경상적경비	301-09	190,058	-	10,000	200,058	교육생급식비
여성회관	여성회관운영 자체사업	405-01	1,700	-	20,000	21,700	노후교육용컴퓨터 교체구입(15대)
국제협력실	국제교류 경상적경비	202-04	80,000	20,000	-	60,000	백두산항로개통 관계자초청
국제협력실	국제교류 경상적경비	202-04	60,000	-	9,000	69,000	연변자치주청소년초청 사업당교육원연수(15명)
의회사무처	사무처운영 자체사업	405-01	229,100	-	10,000	239,100	위원휴게실비품



소 관	과 목		자치단체 제출예산액	수 정 액		수 정 예 산 액	수정사유 및 내 역
	세 항	목		감 액	증 액		
해양수산 출 장 소	수산개발 자체사업	403-02	0	-	30,000	30,000	동해안산불 제2피해조사
체육 청소년과	체육진흥 자체사업	307-02	3,389,000	-	10,000	3,399,000	도지사기 생활 체육대회지원
체육 청소년과	체육진흥 자체사업	308-01	197,000	-	10,000	207,000	국제태권도대회 지원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사업 자체사업	402-01	180,000	180,000	-	0	강원문인의 집 : 세부계획확정후 반영
예산담당 관실	예산운영 예 비 비	801-00	7,641,101	-	71,000	7,712,101	

2) 공기업특별회계(지역개발기금)

- 예산총칙 수정
 - 제2조 업무예정량중 기금융자계획 총액 50,297,000천원을 49,297,000천원으로 수정
 - 제4조 자본적수입 및 지출 중 투자자산 50,297,000천원을 49,297,000천원으로 수정하고,
예비비 30,209,730천원을 31,209,730천원으로 수정
- 세입 : 변동없음
- 세출 : 아래와 같이 수정

소 관	과 목		자치단체 제출예산액	수 정 액		수 정 예 산 액	수정사유 및 내 역
	세 항	목		감 액	증 액		
계			80,506,730	1,000,000	1,000,000	80,506,730	
예산 담당관실	자본적지출 투자자산	기금 융자금	50,297,000	1,000,000	-	49,297,000	동해목호지구 주택건설
예산 담당관실	예 비 비	예비비	30,209,730	-	1,000,000	31,209,730	

2) 200년도제1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5월 10일 강원도교육감
- 제안설명의 요지

-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세입·세출 총규모는 기정 예산 9,008억 7천만원보다 532억 4천 1백만원이 증액된 9,541억1천1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금번 추경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교육정보화 기반조기구축과 제7차 교육과정이 시행대비, 그리고 교단지원 사업과 교육환경 개선비 등에 우선 편성하였으며, 세입재원으로는 2000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추가로 교부된 국가부담수입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가로 전입되는 전입금을 포함하여 재산매각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인상분과 교육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교육채 발행액 및 순세계 잉여금 등으로 편성하였고, 세출부분은 교육재정의 안정성 및 투자의 효율성과 아울러 일선교육현장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내실있는 재정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단 현장지원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음.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2000년 5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30일 제2차 회의에서 이기호 강원도부교육감의 제안설명과 장국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및 답변이 있은 후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요지

- 120억 기채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교육정보화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및지방채 상환 계획은 무엇인지?
- 실업계고교 내실화지원금 2억4천5백만원으로 49개교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학교 평균 500만원을 지원해서 얼마나 내실화 할 수 있는지의 여부?
- 통일교과서란 무엇이며 그 구입비를 특별히 예산에서 계상하여 지원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 사립학교 자본형성적교육사업 지원비로 계상된 7억1천2백만원의 사업내용은?

- 답변요지

- 교육정보화 기반구축 사업은 학생용 컴퓨터 보급, 교원용컴퓨터보급, 교단선진화 기기 보급, 학내전산망 구축의4개 사업으로 2000년도 중 4개사업을 100%완료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방채 상환계획은 이자는 국고에서 부담하고 교육정보화 사업의 연평균 예산이 140억 정도이므로 2001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상환할 계획임.
- 실업계고교 내실화 지원금 2억4천5백만원은 운영지원비 83억2백만원으로 직업적성반운



영, 실업계고교 직업교육확충, 한국영농학생전진대회, 춘천공동실습소실습실 이전비 등으로 기정 예산 80억7천8백만원을 확보하고 부족분에 대한 계상액 임.

- 학생들로 하여금 흥미를 갖고 통일문제를 학습하고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한국통일교육연구회에서 제작한 교과서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년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서울특별시 교육감 인정교과서로서 지금까지 초등학교 현장에서 도덕시간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지도하여 교사용 지도서와 학생용 교과서를 1질씩 학교에 배부, 통일교육 자료로 활용토록하였음.
- 사립학교 자본형성적교원지원 사업비로 계상된 7억1천2백만원을 원주진광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후생복지비를 위한 학생복지관 신축예산으로 교육부로부터 7억1천2백만원을 특별교부 받아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것임.
- 본회의 심사 : 2000년 5월 18일 제1차 본 회의에서 김병두교육감의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토록 한 후 6월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원종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의 심사보고후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동의안은 2000년 5월 30일 제2차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어 강원도지사에게 송부되었다.

[의결전문]

예 산 총 괄

2000년도 제1회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액은 세입·세출 각각 954, 111, 000천원으로 한다.

다. 建議案

- 1) 양양국제 공항 건설에 따른 해양 환경오염진상조사 및 피해어민보상촉구를 위한 건의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5월 15일 함중선 의원외 13인
- 제안이유 : 양양국제공항 건설현장에서 유출된 토사와 황토물이 인근 바다로 유입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양양군 손양면·현북면 일대의 동해 연안 해양 상태 환경의 오염과 이로 인한 어민들의 양식 및 조업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민원이 야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걱정하고 신속한 대책을 강구토록 함과 동시에 공항 건설 현장의 인근 해양생태에 대한 전반적인 환경영향평가의 실시를 요구하기 위해 건의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양양국제공항 건설 현장에서 유출된 토사와 황토물이 인근 바다로 유입되면서 이로 인한 (추정) 이 일대 연안해양 환경오염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지역 170여 어민들로부터 각종 어패류의 폐사 등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 야기됨에 따라 이와 같은 환경오염의 원인과, 정도 그리고 이로 인한 어민피해 등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조사와 함께 조사결과에 따른 걱정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여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하려는 것임.
 - 진상조사는 공신력 있는 연구·조사기관을 통해 실시되 조사 과업의 범위설정 및 과업지시의 수행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조치하여 줄 것.
 - 조사결과 건설현장의 황토물 유입이 환경오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재발방지를 위한 신속하고 철저한 대책을 강구함은 물론 피해어민들에게는 이에 상응한 충분한 보상을 실시할 것.
 - 당초 공항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지 건설현장과 연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 주고 지금이라도 인근 해양상태환경에 대한 전반적이고 치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은 물론, 공항건설후에도 주기적으로 사후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를 철저히 실시할 것.
 - 이 밖에도 잔여공사 시공시 주변환경의 파괴를 최소화 하도록 시공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심사 : 2000년 5월 15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24일 제4차 회의에서 함중선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창범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수정하여 가결되었다.



[수정안의 요지]

- 수정이유 : 문맥의 연결을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삭제 및 수정
- 수정주요골자
 - 안 제39, 40행중 「온세계가 여명의 미래를 향해 힘차게 약동하고 있는 가운데」를 삭제하고
 - 안 제43행중 「있습니다」를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로 수정함.
- 본회의 심사 : 2000년 6월 1일 제2차 본 회의에서 엄문섭 산업경제위원장의 심사보고후 질의 및 토론없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건의안은 2000년 6월 2일 수정안대로 가결된 후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서울지방항공청에 건의되어 2000년 6월 13일 해양수산부, 환경부와 2000년 6월 17일 서울지방항공청에서 각각 업무참고하겠다고 회시되었다.

[의결전문]

양양국제공항건설에따른해양환경오염진상조사및피해어민보상촉구를위한 건의문

지난 1997년 착공되어 오는 2000년에 개항예정인 양양국제공항건설은 날로 늘어나는 국·내외 항공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동북부지역의 교통환경을 크게 개선하므로 이 지역의 개발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설악산을 비롯한 강원도 동해안 일대의 관광산업을 크게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원도민들은 정부에 대해 매우 고마워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항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밤낮없이 애쓰고 있는 서울지방항공청을 비롯한 관계부서와 시공업체 관계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대와 희망에도 불구하고, 공항건설 현장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공사장에서 유출된 토사와 엄청난 량의 황토물이 인근 바다로 유입되면서 양양군 손양면·현북면 일대의 동해연안 해양 환경오염이(황토물 유입으로 추정되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지역 170여 어민들로부터 각종 어패류의 폐사 등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 야기되

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원도의회에서는 위와 같은 환경오염의 원인과, 정도 그리고 이로 인한 어민피해 등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조사와 함께 조사결과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 진상조사는 공신력 있는 연구·조사관을 대상으로 선정하되 조사과업이 범위설정 및 과업 지시의 수행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결과 건설현장의 황토물 유입이 환경오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재발방지를 위한 신속하고 철저한 대책을 강구함은 물론 피해어민들에게는 이에 상응한 충분한 보상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초 공항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시 건설현장과 연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 주시고 지금이라도 인근 해양생태환경에 대한 전반적이고 치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은 물론, 공항건설후에도 주기적으로 사후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를 철저히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밖에도 잔여공사 시공시 주변환경의 파괴를 최소화 하도록 하여 주시되 특히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사방·침사시설 등)을 철저히 하도록 시공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망의 2000년대 우리 민족의 소원인 남북통일을 앞당겨줄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모든 국민들이 꿈과 희망에 부풀어 있는 중에도 우리도의 동해북부 주민들은 실의에 빠져 생계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들에게 다시 희망과 용기를 안겨 줄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동해바다의 청정생태 환경이 복원(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건의 드립니다.



第 20 節 第111回 定例會

1. 概 況

가. 開 會

2000년도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 38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19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고 이를 통지함으로써 14일간의 회기로 2000년 6월27일 개최하여 7월 10일 폐회되었다.

나. 議事日程

1) 本會議

가) 제1차 본회의 : 2000년 6월27일(화)

- 보궐선거당선의원(김학영, 박주선)선서및 인사
- 제111회 강원도의회(정례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건
-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의회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지사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건의건
- 송전탑건설관련환경피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본회의장의석배정의건
- 5분자유발언(정연대, 신명선, 장동희의원)의건

나) 제2차 본회의 : 2000년 6월 28일(수)

- 강원도명예도민증서수여동의안
- 강원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다) 제3차 본회의 : 2000년 6월29(목)

- 강원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라) 제4차 본회의 : 2000년 6월 30일(금)

- 강원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마) 제5차 본회의 : 2000년7월10일(월)

- 1999회계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2000세계평화광파르운영관리조례안
-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동부지역(강릉동해삼척고성) 산불피해자도세면제동의안
-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농어업재해복구지원기준의현실화를위한건의안

2) 議會運營委員會

가) 제1차회의 : 2000년 7월3일(월)

- 의사일정결정의건
- 제112회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및의사일정협의건의
-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 1999회계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회사무처)

3) 內務委員會

가) 제1차회의 : 2000년6월27일(화)

- 의사일정결정의건
- 강원도명예도민증서수여동의안

나) 제2차회의 : 2000년7월3일(월)

- 2000세계평화광파르운영관리조례안
-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강원동부지역산불피해자도세면제동의안

다) 제3차본회의 : 2000년7월4일(화)

- 의사일정변경의건
- 1999회계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자치행정국, 공보관실)

라) 제4차회의 : 2000년 7월5일(수)

- 1999회계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공무원교육원)

4) 敎育社會委員會

가) 제1차회의 : 2000년7월1일(토)

- 의사일정결정의건
- 1999회계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여성정책실)
- 여성복지서비스현장(제정안) 보고의건

나) 제2차회의 : 2000년7월3일(월)

- 1999회계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다) 제3차회의 : 2000년7월4일(화)

- 1999회계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환경복지국)
- 환경행정복지서비스헌장(제정안) 보고의건
- 사회복지서비스헌장(제정안) 보고의건
- 1999회계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도립강원전문대학)

라) 제4차회의 : 2000년 7월 5일(수)

- 1999회계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보건환경연구원)

5) 産業經濟委員會

가) 제1차회의 : 2000년 7월 1일(토)

- 의사일정결정의건
- 1999회계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농업기술원)

나) 제2차회의 : 2000년 7월 3일(월)

- 중소기업서비스헌장개정안보고
- 강원도소비자보호조례개정조례안
- 1999회계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산업경제국)

다) 제3차회의 : 2000년 7월 4일(화)

- 농업행정서비스헌장개정안보고
- 강원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농어업재해복구지원기준의현실화를위한건의안
- 1999회계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농정산림국)



라) 제4차회의 : 2000년7월5일(수)

- 1999회계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국제통상협력실)
- 해양수산서비스현장제정안보고
- 1999회계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해양출장소)

6) 觀光建設委員會

가) 제1차회의 : 2000년7월1일(토)

- 의사일정결정의건
- 1999회계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관광문화국)
- 관광행정서비스현장제정안보고의건

나) 제2차회의 : 2000년7월4일(수)

- 412호지방도낙석위험지역대책미련을위한청원의건
- 1999회계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건설도시국)
- 도로행정서비스현장개정안보고의건

7) 豫算決算特別委員會

가) 제1차회의 : 2000년7월6일(목)

- 위원장선임의건
- 간사선임의건
- 1999회계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나) 제2차회의 : 2000년 7월 7일(금)

- 1999회계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8) 特別委員會

가) 산불특위 제3차 : 2000년 6월 20일(화)

- 산불피해대책추진상황보고의건

다. 議會活動

1) 本會議

가) 강원도지사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 : 제1차본회의

- 지방자치법제37조및강원도의회회의규칙제73조에의거의회운영위원회에서제안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을 원안대로 도정및 교육행정질문 일정에 따라 2000년 6월28일부터 6월30일까지 3일간 강원도지사 및 강원도교육감과 관계실국장급이상 간부공무원을 출석토록 의결.

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 제1차본회의

- 지방자치법제50조제1항및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제7조제2항, 제9조제3항에의거하여 민주당 9명, 한나라당8명, 자민련1명, 무소속2명등 20명으로 구성하기로한 의회운영위원회 협의결정대로 가결되었다.

다) 신상발언 : 제1차본회의

- 성희직의원 : 7월11로 예정된 후반기의장선거에 강원도의회 발전과 화합을 위해 불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히고 본인의 이런선택이 의장후보들간에 선의의 경쟁으로 이어져 결과에 승복하는 분위기 조성에 보탬이 되어 하반기 의장선거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라) 5분자유발언 : 제1차본회의

- 정연대의원 : 문화관광부에서 발표한 태권도공원 조성계획과 관련, 거도적인 차원에서 태권도공원이 도내에 유치될 수 있도록 지사가 유치 노력에 각별히 심혈을 기울여 줄 것과 아울러 여러의원 및 관계공무원들도 함께 노력해줄것을 당부하였다.
- 신명선의의원 : 최근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간 화해와 평화의 토대가 마련된 가운데 강원도는 한반도의 한가운데 위치해 남북교류에 있어 중추적인 입장이 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고성군 화진포에 김일성 별장이 현재 안보전시관으로 공개되고 있는데 지사와 도정책임자들 및 의회는 정치력을 발휘해 김정일 위원장의 금강-설악권 개발에 화진포를 꼭 포함시킬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 장동희의원 : 속초-훈춘간 해륙수송로의 개설은 전국민의 관심을 집중시켰으나 5월19일



정기운항에 나선 동춘호의 주고객인 소무역상들이 격감되고 있는 등 지역경제활성화의 기대는 물거품이 됐는데 이는 인천항의 경우 1인당 80의 화물까지 통관이 허용되는데 반해 속초항만 유독 50으로 제한하고 있어 형평의 원칙에서 어긋나는데 그 원인이 있다면서 1인당 소화물 통관기준을 인천항과 같이 80으로 조정되도록 해주길 당부했다.

라. 議案處理商況

1) 一般議案

- 이번회기중 상정대상 일반안건은 총20건으로 제안자별로는 도지사 제출9건, 의장제의 6건, 위원회제출2건, 의원발의1건, 도교육감제출2건이다. 처리결과를 보면

구 분 종류별	상 정 대 상 안 건			의 안 처 리 내 역				
	합 계	전회기 이 월	금회기 접 수	가 결			폐 기 (철회)	계 류
				소 계	원 안	수 정		
계	20		20	20	18	2		
조 례 안	9		9	9	7	2		
예 산 안	2		2	2	2			
동 의 안	8		8	8	8			
건 의 안	1		1	1	1			

2. 議決案件

가. 條例案

1)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및 제안자 : 2000년 6월26일 의회운영위원장
- 제안이유 : 2000년 1월27일 의원총회의 결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를 증원하고 내부위원회의 명칭을 현행 강원도행정기구와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원정수를 10명에서 12명으로 증원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3명씩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내부위원회의 명칭을 기획행정위원회로 하여 강원도의 행정기구와 맞도록 함(안 제2조, 제3조)

나) 심의 및 심의경과

- 위원회심사 : 2000년 6월26일 제110회 강원도의회 운영위원회 제3차회의에서 김원기 의회 운영위원회간사의 제안설명 후 위원회별 여론 수렴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7월3일 제111회 강원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김원기간사의 제안동의 후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심사 : 2000년 6월27일 제111회 강원도의회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이훈 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후 질의 및 토록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2000년 6월 28일 원안대로 가결된 후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2000년 7월 22일 강원도조례 제2798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정개정조례안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10명"을 "12명"으로 하고, 동조 제2호중 "내무"를 "기획행정"으로 한다.

제3조 제2항 "내무"를 "기획행정"으로 한다.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7월14일부터 적용한다.



2) 강원도의회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6월26일 의회운영위원장
- 제안이유 : 2000년1월8일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되어 국외여비정액표의 일비와 숙박비가 인상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의회위원의 국외여비지급기준을 공무원여비규정의 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인상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강원도의회위원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안 별표2)

(단위 : 미불화)

구 분	등 급	일 비		숙 박 비	
		현 행	개 정 안	현 행	개 정 안
의장·부의장	가 등 급	30	40	169	186
	나 등 급	30	40	123	135
	다 등 급	30	40	97	107
	라 등 급	30	40	83	91
의 원	가 등 급	25	35	137	151
	나 등 급	25	35	99	109
	다 등 급	25	35	76	84
	라 등 급	25	35	65	72

나) 심의 및 심의경과

- 위원회심사 : 2000년 6월26일 제110회 강원도의회 운영위원회 제3차회의에서 김원기 운영위원회 간사의 제안설명 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2000년6월27일 제111회 강원도의회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이훈 의회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후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2000년 6월 28일 원안대로 가결된 후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2000년 7월 22일 강원도조례 제2799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강원도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 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중 일비(1일당)란과 숙박비(1야당)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일비(1일당)	숙박비(1야당)
의장·부의장	가등급 40	가등급 186
	나등급 40	나등급 135
	다등급 40	다등급 107
	라등급 40	라등급 91
의 원	가등급 35	가등급 151
	나등급 35	나등급 109
	다등급 35	다등급 84
	라등급 35	라등급 7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2000세계평화광파르운영관리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6월19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뉴밀레니엄의 상징사업이며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인 2000세계평화광파르 입장료를 비롯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입장료징수 및 판매



- 입장료(안별표)
 - 보 통 : 어른 5,000원, 청소년 3,000원, 어린이 2,000원
 - 특별할인 : 어른 2,5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
 - 단 체 : 어른 4,500원, 청소년 2,500원, 어린이 1,500원
- 입장권의 판매(안제5조)

도에서 직접 판매하거나 민간에 위탁이 가능토록 함.
- 주차료 징수
 - 주차료(안 별표):승용차-3000원

승합차(16인승), 버스, 화물자동차(5톤이상)-10,000원
 -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안 제4조)

국민,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자, 7세 이하의 어린이, 기타 강원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에 대한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근거를 마련함.
 - 영업시설의 대부(안 제6조)

공연장 내의 영업시설 대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운영등의 위임·위탁(안 제8조)

행사운영등에 관하여 타 자치단체, 민간단체에 위임·위탁할수 있고 이 경우 관련 공무원 파견을 비롯한 각종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협찬(안 제9조)

기업 또는 협찬자 명의의 홍보를 조건으로 협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심의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2000년 6월19일 내부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3일 제2차회의에서 권혁인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최종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2000년 7월10일 제5차 본회의에서 원종익 내부위원장의 심사보고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2000년 7월 10일 원안대로 가결된 후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2000년 7월 29일 강원도조례 제2801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2000세계평화 팡파르운영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가 추진하는 뉴밀레니엄 상징사업이며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인 2000세계평화팡파르(이하 "평화팡파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최지 및 기간) 평화팡파르의 개최는 강원도 원주시로 하며 공연장소와 기간은 참가국의 수에 따라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3조(입장료) 입장료등은 별표와 같다.

제4조(입장료 등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 및 주차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자
3. 7세이하인 어린이
4. 기타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입장권의 판매) ① 입장권의 판매는 도에서 직접 판매하거나 민간에 위탁 판매할 수 있다.

② 입장권을 민간에 위탁 판매할 경우 판매금액의 보고 및 판매액 불입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영업시설의 대부) ① 대부기간은 행사기간에 한한다.

② 공연장내의 영업시설은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대부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③ 회장사업 참가자, 시설참가자, 각시군 추천자중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우선하여 임대할 수 있다.

제7조(시설사용자의 의무) ① 시설사용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동의없이 그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 대하여 시설임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시설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태만이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 등의 위임·위탁) ① 도지사는 타 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을 선정하여 "평화광파르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위임·위탁할 수 있다.

② 위임·위탁받은 자는 본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하고 위임·위탁받은 사항을 시행하되 반드시 도와 사전에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도지사는 관련 공무원의 파견을 비롯한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협찬 등) 공연장에 소요되는 모든 시설, 장비, 비품 등과 홍보물 등 제작물에 대하여는 기업 또는 협찬자 명의의 홍보를 조건으로 협찬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환경의 유지) ① 공연장내 사용자 및 입장객은 청결한 환경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결한 환경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입장객의 입장금지, 사용자에게 대한 변상청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관람자 준수사항) 관람자는 공연장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연에 방해가 되는행위
2. 공연에 방해가 되는 소음을 발행하는 기기의 휴대
3. 선량한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
4. 도지사의 허가 없이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
5. 기타 도지사가 금지하는 행위

제12조(관람거부 또는 퇴장) 관람자가 이 조례 및 조례에 의한 지시사항을 위반하거나 공연장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퇴장을 명하거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게시사항) 도지사는 이 조례 및 이 조례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인이 잘 볼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입장료 징수사항
2. 관람자 준수사항
3. 입장료 및 공연시간
4. 기타 공지사항

제14조(과태료)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의 요금을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액의 5배를 과태료로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입장료등 징수 및 대부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및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0년 10월 30일 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공연장 입장료 요약표

(단위 : 원)

유효 회수	입 장 료			금 액
	종 류	구 분	적 용 범 위	
1 회 사 용	보 통	어 른	20세 이상	5,000
		청소년	중학생, 고등학생	3,000
		어린이	초등학생	2,000
	특별할인	어 른	65세이상 노인 심신장애자와 동반보호자 1인(심신장애자수첩 소지자) 생활보호대상자(생활보호대상자증명서 또는 의료보험증 소지자)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수첩 소지자)하사이하의 현역군인 (정복착용자)	어 른 : 2,500 청소년 : 1,500 어린이 : 1,000
		어 른	20세 이상	4,500
		청소년	중학생, 고등학생	2,500
		어린이	초등학생	1,500

공연장내 주차장 주차료

(단위 : 원)

승 용 자 동 차	승합자동차(16인승이상), 버스, 화물자동차(5톤이상)
3,000	10,000
※ 장애인 표시 부착차량, 경승용차(배기량 800cc 이하), 국가유공자표시 차량은 50% 감면	



4)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6월19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첨단농업기술센터」의 명칭이 농업교육기관에 맞는 이미지 부각이 어렵고 인지도가 낮아 기능에 부응하고 쉽게 이해할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 「첨단농업기술센터」의 명칭을 「농업연수관」으로 변경함(안 제17조)

나) 심의 및 심의경과

- 위원회심사 : 2000년 6월19일 내부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3일 제2차 회의에서 장순일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최종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심사 : 2000년7월10일 제5차본회의에서 원종익 내부위원장의 심사보고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2000년 7월 10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2000년 7월 15일 강원도조례 제 2796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명중 “기술연수센터”를 “농업연수관”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첨단농업기술연수센터”를

“을 “농업연수관”로 하며, 동조 제4항중 “기술연수센터”를 농업연수관”으로 한다.

별표1 제목중 “기술연수센터”를 “농업연수관”으로 하고, 명칭란중 “첨단농업기술연수센터”를 “농업연수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6월19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동해안 지역 산불발생에 따른 산림피해복구를 전담하는 인력과 신설된 소방과 출소 운용인력이 행정자치부로 부터 각각 증원승인됨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44명 증원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강원도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786명에서 44인이 증원된 2,830인으로 조정함(안 제2조)
 - 구조조정으로 인해 부칙에 년차별로 정해 놓은 정원 중
 - 【표1】 2000년 7월31일:정원의 총수 2,865인을 “2,909”인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1,534인을 “1,541”인으로 소방본부·소방서에 두는 소방 공무원의 정원 1,208인을 “1,245”인으로 하며
 - 【표2】 2001년 7월31일:정원의 총수 2,821인을 “2,865”인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1,490인을 “1,497”인으로 소방본부·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1,208인을 “1,245”인으로 함(안 부칙 제2조)
 - 증원된 44인의 정원 중 집행기관의 정원 7인은 2003년 6월30일 까지 한시 정원으로 함.

나) 심의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2000년 6월19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3일 제2차회의에서 장순일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최종춘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후 질의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2000년7월10일 제5차 본회의에서 원종익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후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2000년 7월 10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2000년 7월 15일 강원도조례 제 2797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2,786"을 "2,830"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1,455"를 "1,462"로 하며, 동조 제2호중 "1,208"을 "1,245"로 한다.

강원도조례 제2776호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2000.5.12)부칙 제2조 표1중 정원의 총수의 정원중 "2,865"를 "2,909"로, 1. 집행기관의 정원의 정원중 "1,534"를 "1,541"로, 2. 소방본부·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의 정원중 "1,208"을 "1,245"로 하고, 동조, 표 2중 정원의 총수의 정원중 "2,821"을 "2,865"로, 1. 집행기관의 정원의 정원중 "1,490"을 "1,497"로, 2. 소방본부·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의 정원중 "1,208"을 "1,245"로 한다.

강원도조례 제2776호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2000.5.12)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한시정원) 집행기관의 정원중 14인은 2001년 12월31일까지, 7인은 2003년 6월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6월19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관련법령의 폐지 및 개정으로 삭제 또는 수정이 필요한 사무위임 조항을 정비 하고 매매용 건설기계의 제시·매도 신고수리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며, 각 호별로 분산되어 있는 건설 기계관리 관련 권한 위임 사항을 법조문 순서대로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농정산립분야 중 근거법령이 폐지된 화전정리 관련사무, 산림법 개정으로 폐지된 보안립 예정지에서의 제한사무등과 시장·군수에게 권한이 이양된 종묘판매업 관련사무에 대한 위임조항을 삭제하며
 - 건설도시분야 중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사무가 폐지된 건설기계 조정사에 대한 정기적성검사 등을 삭제하고 지방세의 부과·징수사무와 연계가 필요한 매매용 건설 기계의 제시·매도 신고수리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며, 건설기계관리 위임권한을 법조항 순서대로 정비함.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심사 : 2000년 6월19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3일 제2차 회의에서 장순일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최종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심사 : 2000년 7월10일 제5차 본회의에서 원종익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2000년 7월 10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2000년 7월 29일 강원도조례 제 2802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중 농정산립단중 제39호·제42호 내지 제52호·제56호·제58호·제59호 및 제74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72호 및 제75호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며, 건설도시단중 제96호를 제83호로 하고, 제98호 내지 제104호를 각각 85호 내지 제91호로 하며, 제83호 내지 제85호를 각각 제94호 내지 제96호로 하고, 제111호 및 제112호를 각각 제97호 및 제98호로 하며, 제106호 내지 제109호를 각각 제99호 내지 제102호로 하고, 제87호 내지 제90호를 각각 제103호 내지 제106호 내지 제106호로 하며, 제84호·제92호 및 제93호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 강원도립 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6월26일 강원도교육감
- 제안이유 : 원주시 구곡택지개발지구내 과밀학급·과대학교 해소를 위하여 초등학교 1개교를 신설하고 학생개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른 예술고등학교를 신설하며 이농현상에 따라 학생수감소지역의 과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고 앞으로 원인증가요인이 없는 병설유치원등을 통·폐합하기 위하여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원아감소 및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따라 화천군 신평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폐원하며
 - 초등학교가 분교장으로 개편됨에 따라 병설유치원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평창군 용전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장평초등학교 용전분교장 병설유치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 택지 개발지구내 대규모 주택건설로 인한 학생수 증가로 과밀학급·과대학교 분리를 위하여 신설하는 학교로서 원주시 명륜2동 844번지에 서원주초등학교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 농촌지역의 학생수가 감소하여 통폐합하고자 하는 학교로서 춘천시 서천초등학교 방성분교장을 서천초등학교로, 민천초등학교 명성분교장을 민천초등학교로, 화천군 신평초등학교를 화천초등학교로 각각 통·폐합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학생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학교로서 인력관리 및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투자를 위하여 초등학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학교입니다.
춘천시 발산 초등학교를 남산초등학교 발산분교장으로, 평창군 용전초등학교를 장평초등학교 용전분교장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 학생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른 예술특기자를 조기발굴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위한 특수 목적고등학교로서 강릉시 구정면 제비리 산29번지에 강원예술고등학교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이 개정되는 내용은 2000.9.1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다만 강원예술고등학교는 2001.3.1부터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2000년 6월27일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3일 제2차회의에서 김호준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서의승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 심사 : 2000년7월10일 제5차본회의에서 이상구교육사회위원장의 심사보고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2000년 7월 10일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2000년 7월 26일 강원도조례 제 2800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유치원 명칭과 위치란중(평창군)의 "용전초등학교 병설유치원"란을 장평초등학교 병설유치원란 다음으로 하여 "용전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장평초등학교 용전분교장 병설유치원"으



로 하고, (화천군)의 "신평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삭제하며,
 별표2의 초등학교 명칭과 위치란중 (춘천시)의 "발산초등학교"란을 남산초등학교란 다음으로 하여
 "발산초등학교"를 "남산초등학교 발산분교장"으로 하고, "만천초등학교 명성분교장"과 "서
 천초등학교 방성분교장"을 각각 삭제하며,
 (원주시)의 교동초등학교란 다음에 "서원주초등학교"와 "원주시 명륜2동 844"를 각각 신설하고,
 (평창군)의 "용전초등학교"란을 장평초등학교란 다음으로하여 "용전초등학교"를 "장평초등학
 교 용전분교장"으로 하며, (화천군)의 "신평초등학교"를 삭제하고,
 별표4의 고등학교 명칭과 위치란중 강릉상업고등학교란 다음에 "강원예술고등학교"와 "강릉시 구정
 면 제비리 산29"를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0년 9월1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4의 개정사항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강원도소비자보호조례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6월19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소비자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중앙의 권한중 소비자의 기본권익 보호에 대한 일부
 사무가 시·도에 위임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각종 위원회정비계획에 의거 유사 중복성이
 있는 「강원도물가대책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본 조례에 삽입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소비자의 기본적권리 실현을 위한 도지사 의무사항을 신설함(안 제3조)
 - 소비자의 안정시책강구, 정보제공 및 교육활성화, 사업자의 부당거래행위방지대책, 소
 비자피해구제상담, 소비자단체지원, 물가안정대책 강구 등
 - 위해 방지를 위한 조사 및 시험조사, 수사, 파기명령권을 신설함(안 제5조 및 제7조)
 - 물품 및 용역의 성분·함량·구조,이용상의 경고표시, 기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조사 및 검사
 - 소비자의 생명·신체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우려가 있는 경우 그 물

품 및 용역제공자에게 수거·과기명령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 삽입함(안 제28조)
 - 도지사가 결정 관여하는 교통요금, 도시가스요금 및 기타사업요금, 수수료등 심의
 - 지방물가안정을 위한 실무위원회설치 및 기관·단체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등
- 소비자보호관련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1조)
- 강원도물가대책위원회조례를 폐지함(안 부칙 제2항)
 - 이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위촉된 "물가대책위원회"위원 및 실무위원은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위원 및 실무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경과 규정을 둠(안 부칙 제3항)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심사 : 2000년6월22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3일 제2차회의에서 박영환산
업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창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수정안대로
가결되었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

- 99년 12월22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조례개정안이 통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
지난 지금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 행정자치부에서 하달된 표준조례안 제25조(구성)제3항에는 심의위원회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금번 조례안에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는지?
- 본 개정조례안 제29조(구성)제4항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임기중 결원이 있을 경우 잔여임기 여부에 대한 명시가 불분명함.
- 부칙3항(위원의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은 종전물가대책위원회 위원 및 실무위원의 권한
과 자격을 그대로 승계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임기해석은 어떻게 하는지?

- 답변요지

- 행자부에서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자마자 곧바로 현행소비자보호 조례와 물가 대책위원회조
례를 통합하는 타당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개정조례안을 작성하여 금년 3월과 4월 소비
자 단체와 물가대책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20일간 입법예고 기
간을 거친 후 금번에 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음.



- 도의 각종조례의 형평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는 것을 금번 조례에도 준용한 것임.
- 일반적인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설정되어 결원시 보궐되어서 선임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기준 임기로 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으로 되어 있음.
- 부칙3항에 경과조치에 임기해석은 조례공포와 동시에 그 시점부터 2년으로 하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정의하고 있음.

[수정안의 요지]

- **수정이유** : 위원의구성및위촉에관한경과조치등 조문의 해석상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하기위하여 일부 자구수정
- **수정주요골자**
 - 안 제29조(구성)제2항중 「부위원장은 산업경제국장이 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고
 - 안 제29조(구성)제3항중 「당연직환경복지국장, 농정산림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되고」를 「당연직위원은 환경복지국장, 농정산림국장, 산업경제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되고」로 수정하며
 - 안 부칙 제3항(위원회위촉에관한경과조치)중 「위촉된것으로 본다」를 「위촉된것으로 보며 임기는 2000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로 수정한다.
- **본회의 심사** : 2000년 7월10일 제5차본회의에서 업무협 산업경제위원장의 심사보고후 질의 및 토론없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2000년 7월 10일 수정안대로 가결된 후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2000년 7월 29일 강원도조례 제2803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조례]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소비자보호조례개정조례안

강원도소비자보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도소비자보호조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원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 및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소비자보호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기본권리가 실현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 포함한다) 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제공된 물품이나 용역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다만, 제공된 제품을 원재료(중간재료를 포함) 및 자본대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 나. 제공된 물품을 농업(축산업 포함)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다만 축산업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축산업자 및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자를 제외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옹호 내지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의무) 도지사는 소비자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규정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소비자 안전시책의 강구
2. 소비자 정보제공과 교육의 활성화
3. 사업자의 소비생활과 관련된 정보제공 유도
4. 사업자의 부당한 거래행위 방지대책의 강구
5. 소비생활 관련 주요 정책결정에 소비자의사의 반영
6. 소비자 피해의 구제 상담
7.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육성
8.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대책 강구



9.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제 2 장 소비자권리의 보장

제1절 안전대책의 강구

제4조(안전대책의 강구) 도지사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이를 실행하여야 한다.

제5조(조사 및 시험검사) 도지사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시험·검사 또는 조사하여야 한다.

1. 물품 및 용역의 성분함량구조 등 그 주요한 내용
2.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상의 지시사항이나 경고 등 표시할 내용과 방법
3. 기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위해물품의 회수 등) 사업자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물품 또는 용역을 회수하거나, 제조 또는 판매를 중지하는 등 위해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위해물품의 수거·파기명령 등) ① 도지사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게 그 물품의 수거 파기를 명하거나 제조·수입·판매 금지 또는 당해 용역의 제공금지를 명할 수 있고, 당해 물품 및 용역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파기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파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와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위해 물품을 수거하여 파기하는 때에는 사업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기간 사업자간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거하여 파기하는 공무원외에 관계공무원 1인 이상을 참여시켜야 한다.

제2절 부당거래의 방지

제8조(부당거래의 조사) 도지사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나 방법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거래의 실태를 조사하고, 불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거래의 금지)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당한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판매 의도를 숨기고 접근하거나, 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오인을 초래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
2. 소비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반하여 집요하게 설득하거나, 심리적 불안을 야기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3. 소비자의 경솔무경험공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시키는 행위
4. 소비자나 소비자의 가족을 기만하거나 협박하는 등 부당하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의 이행을 하게 하는 행위
5.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6. 기타 부당한 판매방법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10조(시정조치) 도지사는 사업자가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표시·광고실태의 조사) ① 도지사는 소비자가 표시로 인하여 물품 또는 용역의 선택이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적정한 표시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방해 받지 않도록 광고에 대한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적정한 광고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계량·규격 실태의 조사) ① 도지사는 소비자가 계량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물품 또는 용역의 규격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절 소비자 피해의 구제



제13조(피해구제 창구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상담처리하기 위하여 소비자피해구제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비자 행정피해구제의 상담처리를 위하여 상담창구 인력 1인 이상을 지정 배치하여야 하고 이들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소비자피해구제창구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피해구제의 신청) 소비자는 소비자피해구제창구에 전화, 서신, 방문,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피해구조의 처리) ① 도지사는 제14조에 의하여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경우 교환, 환불, 수리, 해약 등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상담·처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관계공무원의 자료의 검사 및 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한 적절한 보상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하여 품목별로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시험·검사 의뢰) 도지사는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공립 시험검사기관에 관계물품의 시험·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7조(피해구제의 기준) 소비자피해의 구제는 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8조(피해구제 처리기한) 도지사는 소비자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경우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전화 및 방문 등의 상담 처리상황 및 결과는 전화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19조(소비자피해의 조정) 도지사는 소비자의 피해구제사항 처리중 사실 진위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전국에 걸친 집단 다발적인 사항 및 사업자나 소비자의 일방이 합의권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다른 피해구제기구와 협조) 도지사는 소비자피해구제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 단체 등에 피해구제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피해사례의 공표) 도지사는 소비자피해사례 가운데 주민에게 알리어 피해의 확산을 예

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해 사례집을 발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포할 수 있다.

제4절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 지원

제22조(소비자의견 반영 및 정보제공) ① 도지사는 소비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주요시책을 결정하는 경우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시책내용을 홍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소비자가 자주성을 가지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물품·용역 및 소비생활의 합리화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거래 조건이나 거래 방법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교육 및 정보제공 등은 소비자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3조(시험 및 검사요청) ① 도지사는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로부터 물품이나 용역에 관한 시험·검사 또는 조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 또는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요청인이 이를 부담한다. 다만, 해당시험검사 또는 조사가 주민의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물품의 규격·품질·안전성 등에 관한 소비자단체의 시험·검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시험·검사 시설의 설치·구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소비자단체의 등록) 도지사는 소비자단체의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19조 제1항 및 영 제17조제3항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그 등록부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소비자단체의 업무) ①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시책에 관한 건의
2.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시험·검사 및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3.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4. 소비자의 교육, 계몽, 캠페인
5. 소비자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 정보제공 및 당사자간 합의의 권고
6. 기타 도지사가 위탁하는 사항

② 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된 정보를소비자보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26조(보조금의 지급) ① 도지사는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법등에 대하여는 강원도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3장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제27조(설치) 소비자보호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안정 관련 조례·규칙의 제정, 개·폐에 관한 의견 자문
2.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안정 시책에 관한 사항 자문
3. 소비자 단체 지원 및 지방물가안정을 위한 기관·단체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도지사가 결정·관여하는 교통요금, 도시가스요금,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수수료, 사용료 등의 심의·조정
5. 기타 소비자보호와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주요시책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복지국장, 농정산림국장, 산업경제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도의회 의원, 소비자문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소비자대표, 사업자대표, 물가안정 관련기관·단체의 관계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에 관한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특별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해촉하여야 한다.

제32조(회의) ① 위원회는 연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 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소비자보호업무 담당과장이 두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4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위원회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 한다.

④ 실무위원장은 산업경제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자, 관계 전문가,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35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소비자문제 또는 물가안정에 관하여 전문 지식이 있는 자, 소비자 또는 관계 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6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등에 참석한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예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보 칙

제37조(검사 및 자료제출) ①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물품·시설 및 물품제조공정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당해 사업자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물품·서류 등의 제출을 서면으로 명할 수 있다.

1.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하여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과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것이 필요한 경우
2.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소비자보호를 위한 관계법령의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고, 검사 등에 의하여 알게 된 내용을 이 조례의 시행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공표) 도지사는 소비자권익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1. 시험·검사 및 조사한 결과 사업자가 위반한 사항
2. 사업자의 소비자보호관계법령 및 조례 위반내용
3. 이 조례에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시정권고 및 시정조치의 내용

제39조(청문) 도지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공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5 장 벌 칙

제4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행정 절차법의 규정에 따른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⑥ 과태료의 금액과 그 부과기준, 부과징수 등에 관한 세부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폐지조례) 강원도물가대책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 ③(위원의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강원도물가대책위원회조례의 규정에 의거 위촉된 물가대책위원회 위원 및 실무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2000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9) 강원도종지개량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6월19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근거법인 농지개량조합법이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2000. 1. 1시행)으로 변경됨에 따른 용어 및 법조항 명을 변경하고 법령과 중복규정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심의 및 심의경과

- 위원회심사 : 2000년6월22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4일 제3차회의에서 김옥수 농정산림국장의 제안설명과 전창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수정하여 가결되었다.

[수정안의 요지]

- 수정이유 : 조문중 용어의 정비가 누락되고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바로 잡고자 일부 자구수정.
- 수정주요골자
 - 안 제1조(목적) 중 「농지개량계(이하 “개량계”라 한다)」를 「수리계」로 수정하고 안 별지3호 서식중 「수리계등록부」를 「수리계등록증」으로 수정한다.
- 본회의 심사 : 2000년 7월10일 제5차 본회의에서 엄문섭 산업위원장의 심사보고후 수정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조례안은 2000년 7월 10일 수정안대로 가결된 후 강원도지사에게 이송되어 2000년 7월 29일 강원도조례 제2804호로 공포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농지개량계” “수리계”로 한다.

제1조중 “농지개량조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8조”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3조”로, “농지개량계(이하 “개량계”라 한다)”를 “수리계”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법 제88조제1항”을 “법 제43조제1항”을 한다.

제4조 및 제7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단서중 “법 제43조제4항”을 “근로기준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호”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 제24조제2호”로 하며, 동조제4항중 “제51조”를 “제43조제4항 및 제5항”으로, 동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수리계의 해산)규칙 제2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해산할 경우에는 당해 수리계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에 수리계의 장은 당해 기반시설과 제13조의 서류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규칙 제24조제3호가목의 경우에는 해당 농업기반공사
2. 규칙 제24조제3호나목 또는 다목의 경우에는 관할지방자치단체

도지사는 제2항제2호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

하여 기반시설을 유지,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8항중 "해산승인 및"을 삭제한다.

제2조제2호·제3호, 제3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본문·동항제3호·제5호·제8호·동조제2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본문·동항제3호·동조제2항,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 본문,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내지 제5항, 제13조본문제1호·제2호,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2호 중 "개량계"를 각각 "수리계"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豫算案

1) 1999회계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권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6월28일 강원도지사
- 제안설명요지
 - 99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내역
 - 세입 예산현액은 1조 6,627억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1조 7,077억 6천 7백만원
실수납액은 1조 6,765억 1천 3백만원
미수납액은 312억 5천4백만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역시 1조 6,627억원으로
지출액은 1조 5,630억 3천만원이고
이월액은 860억 1천4백만원이며
불용액은 136억 5천5백만원임.
 -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조 4,579억 7천8백만원으로



- 정수결정 1조 4,870억 2천 8백만원
- 수납액 1조 4,573억 7천 5백만원
- 미수납 296억 5천3백만원이고
-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조 4,579억 7천 8백만원으로서
지출액은 1조 3,627억 3천2백만원이고
이월액은 853억 6천 6백만원이며
불용액은 98억 7천9백만원임.
- 도립강원전문대, 의료보호기금운영, 공원 및 관광지개발관리, 춘천수렵장운영 등
기타 특별회계는
- 세입결산액 560억 3천3백만원 중 지출액 551억 5천3백만원으로서 지출액 차액 8억8천만
원은 모두 이월하였음.
- 공기업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로서
- 세입결산액 1,631억 5백만원에서 세출결산액 1,451억 4천 6백만원을 공제한 차인잔액 179
억 5천 9백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음.
-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33억 7백만원으로
- 지출결정액 32억 5천 3백만원중
- 32억 2천4백만원을 지출하고
- 예비비의 불용액은 2천9백만원임.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2000년 7월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7일 제2차회의에서 김태
겸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과 장국광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이 있었으나 원
안대로 가결되었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
 - 일반회계미수금이 아직도 279억이나 되는데 미수액 징수대책은?
 - 일반회계불납결손이 전년에 비해 8억원이 증가하여 17억원이 되었는데 사유는?
- 답변요지
 - 사업부진, 도산등 납세능력이 부족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징수하

고 납부약속 미이행자 및 납부태만에 대해서는 재산, 예금, 봉급의 압류, 재산 공매 등 강력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음.

- 98년의 IMF관련 불경기로 부도, 파산등과 관련한 악성 미수금이 많이 증가하였으며 악성 미수금에 대한 강력한 채권확보 및 불납결손조치를 추진하였기 때문임.
- 본회의 심사 : 2000년7월10일 제5차본회의에서 유돈대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승인건은 2000년 7월 10일 원안대로 가결된 후 강원도지사에게 송부되었다.

2) 1999회계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권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6월26일 강원도교육감
- 제안설명요지
 - 99회계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9,466억 9천7백만원이며
 - 세입결산액은 9,684억5천만원
 - 세출결산액은 8,984억 3천3백만원으로
 - 세입세출결산결과 700억 1천7백만원의 잉여금 발생
 세계잉여금 700억 1천 7백만원 가운데 각급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등 다음년도 사업으로 확정된 명시이월비 327억 (7천9백만원, 사고이월비50억6천7백만원, 순세계잉여금 321억 7천1백만원임.
 - 세입관별 결산내역으로는 국가부담수입이 77.5%인 7,508억 7천5백만원, 도 및 시군자치단체일반회계 부담수입이 0.8%인 76억 5백만원등 의존 수입이 7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존수입을 제외한 자체수입은 2,099억 7천만원이나 재정경제부 및 농협으로부터 차입한 지방교육채 791억 1천7백만원을 감하면 실제자체수입은 1,308억 5천3백만원으로 13.5%에 불과한 실정임.
 - 세출관별 결산내역은
 예산액 9,466억9천7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97억7천8백만원을 합산한 예산현액은 9,564



억4천5백만원이며 이중 지출총액은 8,984억 3천3백만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이 378억 4천6백만원, 불용액이 201억6천6백만원으로 98년도 불용액 510억7천1백만원과 비교할때 99년도는 교육사업이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었음.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심사 : 2000년 7월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6일 제1차회의에서 이기 호부교육감의 제안설명과 장국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및 답변이 있었으나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

- 경포고 다목적실 신축공사 중 7백만원이 98년도에서 99년도로 명시이월된 후 다시 2000년도로 재 이월된 사유는?
- 99년도 세입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은?

- 답변요지

- 갑작스런 동절기 기온강하로 조잡 또는 부실등이 우려되어 99.12.27 공사중지하고 2000.3.19완료되어 7백만원을 재 이월하여 집행하였음.
- 장기간 미납시 가능한 모든 규정을 적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음.
- 본회의 심사 : 2000년 7월10일 제5차본회의에서 유돈대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승인건은 2000년 7월 10일 원안대로 가결된 후 강원도지사에게 송부되었다.

다. 同義案

1) 강원도명예도민증서수여동의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6월19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제6회 강원도민의 날(2000.7.8)을 기하여 그간 도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애써 주시고, 적극 협조해주신 외국인, 재외동포 및 타시도 출신인사에 대하여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그동안 협조와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강원도 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되새기면서 우리고장과의 맺은 인연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도정발전의 협력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중국인 왕원쿤(王云坤)중국 길림성 당서기외 20인에게 명예도민증서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함.
 - 대상자 인적사항 및 공적사항
 - 미리 배포한 강원도명예도민증서 수여동의안 참조

나) 심의 및 심의경과

- 위원회심사 : 2000년 6월21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26일 제1차회의에서 장순일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최종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 본회의심사 : 2000년6월28일제2차본회의에서 원종익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후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동의안은 2000년 6월 28일 원안대로 가결되어 강원도지사에게 송부되었다.

2) 강원동부지역산불피해자도세면제동의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6월19일 강원도지사
- 제안이유 : 강원동부지역 산불 피해와 관련하여 도세 중 비과세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감면을 확대하고자 지방세법 제9조의 2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산불로 인한 피해목 벌채 및 소실 건축물 신축에 따른 토지 형질변경 또는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면허세를 면제함.
- 산불로 소실된 건축물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 대체 취득 후 1년간 공동시설세를 면제함.

나) 심의 및 심의경과

- 위원회 심사 : 2000년 6월21일 내부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8일 제2차회의에서 장순일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최종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동의안은 2000년 7월 10일 원안대로 가결되어 강원도지사에게 송부되었다.

[의결전문]

강원동부지역(강릉 · 동해 · 삼척 · 고성)산불피해자 도세면제 동의(안)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동부지역 산불 피해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세법 제92의 2 규정에 의거 도세를 면제하도록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1. 면세대상:2000. 4. 7~4. 15내 강원동부지역(강릉 · 동해 · 삼척 · 고성)의 산불 피해자
2. 면세세목 및 기간
 - 가. 산불로 인한 피해목 벌채 및 소실된 건축물 이축에 따른 토지형질변경 ·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면허세
 - 나. 산불로 소실된 건축물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 대체 취득 후 1년간의 공동시설세

라. 建議案

1) 농어업재해복구지원기준의 현실화를 위한건의안

가) 제 안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6월27일 염문섭의원의 9인
- 제안이유 : 농·어업에 대한 재해의 예방과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의 증진을 도모하고 재해를 입은 농·어가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 시행되어 오고있는 농어업 재해 대책법등 관계법령상의 피해산정과 복지지원 기준이 불합리하거나 현실에 극히 미흡하여 실효성이 미약할 뿐 아니라 기상여건의 변화, 지역의 특수여건등에 의해 번번히 발생하고 있는 국지적인 재해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실정임. 따라서 이를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과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계법령의 개정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관계부처에 건의하려는 것임.

나) 심사 및 심의경과

- 위원회심사 : 2000년 6월27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4일 제3차회의에서 염문섭의원의 제안설명과 전창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다) 처리 및 결과

- 본 건의안은 2000년 7월 10일 원안대로 가결되어 2000년 7월 11일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농림부에 건의되어 2000년 7월 24일 농림부장관 2차 회의시 내용과 같음으로 회시되었다.

[의결전문]

농어업재해복구지원기준의현실화를위한건의문

농업 및 어업에 대한 재해의 예방과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농어업경영의 안정과 생산의 증진을 도모하고 재해를 입은 농어가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1990. 8.1부터 「농어업재해대책법」을 제정(법률제4250호)시행하여 오고 있으나, 동법에 의한 피해의 산정기준이 불합리하고 복구에 대한 보조 및 지원기준이 현실에 극히 미흡하여 농어민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등 실효성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특히 최근들어 기상이변으로 인한 국지적인 폭우·폭설·우박·냉해 등의 빈번한 피해발생과, 우리 강원도와 같이 고산준령으로 인한 기상변화가 극심한 지역 여건하에서는 동법에 의한 보조와 지원이 매우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원도의회에서는 이를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구호및복구비용부담등에 관한규정」 등 관계법령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주실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 국고보조 대상이 되는 시군당 피해기준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여 날로 증가하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국지적인 재해에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 한해·수해·풍해·냉해 등의 경우:시·군당 50ha⇒30ha로
 - 서리·우박·설해의 경우:시·군당 30ha⇒20ha로
 - 농업용시설·농경지·가축피해의 경우:시·군당 3억2억원으로 하향조정하고,
- 지원대상 농가의 피해기준을 「농가별 피해면적 기준」에서 「농가의 작목당 피해면적 기준」으로 조정하여 경제적 가치 기준에 의한 피해정도의 공평성을 확보하고,
- 농업시설·축산시설·어업시설(어선, 어망, 어구)에 대한 복구비지원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 소규모 시설의 경우:현행 보조20%(국고15, 지방비5)융자60%, 자부담20%에서
⇒ 보조50%(국고35, 지방비15)융자40%, 자부담10%로
 - 대규모 시설의 경우:현행융자70%, 자부담 30%에서
⇒ 보조20%(국고15, 지방비5)융자60%, 자부담20%로
 보조비율을 상향조정하여 피해농어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 농산물저장고, 자동화시설, 농기계 등 생산보조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도 농업시설에 포함하여 복구비를 지원토록 하고
- 시설농작물 피해에 대하여는 막대한 재배투자비 등을 감안 농지작물과 차등 지원하되 경영자금의 저리융자 등 별도의 지원시책의 마련과
-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의 핵심부분으로서 자연대책법(재해구호및복구비용부담등에 관한규정)을 준용토록 되어 있는 "농·어업분야의 피해산정 및 복구비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으로 규정하여 본법 제정의 의의를 확보하고,
- 장기적인 과제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 및 보험제도 실시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건의사항의 대부분은 그간 우리도를 비롯한 전국의 여러 자치단체, 지방의회, 농어민

단체에서 수차례에 걸쳐 건의된 바 있으나, 관계당국으로부터 「다른 재해(농어업재해이외의)와의 형평성, 「재정형편」 등의 이유로 거부 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다른 재해와는 달리 기상여건에 완전히 노출되어 「피해가 심하고 복구가 어려운 농업재해의 특수성」을 간과하였을 뿐 아니라 날로 증가하는 「기상이변 상황」을 무시한 것으로서 수백만 농·어민들의 불만 요인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 농어촌은 농·수·축산물의 수입개방과 영농·어 인력의 부족, 그리고 누적되는 부채의 상황부담 등으로 매우 고충을 겪고 있는데다 최근 극심한 기상이변으로 예기치 못한 재해마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그 어려움이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말로 농어촌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더 없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농어민들의 활발한 생산의욕이 되살아나고 황폐해진 우리 농·어촌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농·어촌 시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개선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농업재해대책은 우리 농어촌과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조치를 기대합니다.



第 21 節 第112回 臨時會

1. 概 況

가. 開 會

제112회 강원도의회임시회는 2000년 7월 3일 제11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7월 3일 김진동의원외 1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자로 의장이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4일간의 회기로 2000년 7월 11일 개회하여 7월 14일 폐회되었다.

나. 議事日程

1) 本會議

가) 제1차 본회의 : 2000년 7월 11일(화)

- 제112회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 의장·부의장선거

나) 제2차 본회의 : 2000년 7월 12일(수)

-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상임위원장선거

2) 議會運營委員會

가) 제1차 회의 : 2000년 7월 14일(금)

- 간사선임의건

3) 企劃行政委員會

가) 제1차 회의 : 2000년 7월 14일(금)

- 의사일정결정의건
- 간사선임의건
- 위원회의석결정의건

4) 敎育社會委員會

가) 제1차 회의 : 2000년 7월 14일(금)

- 의사일정결정의건
- 간사선임의건
- 위원회의석결정의건

5) 産業經濟委員會

가) 제1차 회의 : 2000년 7월 14일(금)

- 의사일정결정의건
- 간사선임의건
- 위원회의석결정의건

6) 觀光建設委員會

가) 제1차 회의 : 2000년 7월 14일(금)



- 의사일정결정의건
- 간사선임의건
- 위원회의석결정의건

다. 議會活動

1) 本會議

가) 의장·부의장선거 : 제1차본회의

- 선거의 방법 :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 및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각각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선출
- 선거상황 : 의장후보로 나선 허천의원, 임상규의원이 각각 5분간의 제한시간동안 정견을 발표한 후 성희직의장직무대행이 감표위원으로 새천년민주당 함종선 의원과 한나라당 서종을 의원을 지명하였고 투표방법에 대하여 신재현의사담당관의 설명이 있었으며 투표결과 출석의원 47인중 허천의원 27표, 임상규의원 18표, 무표 1표, 기권 1표로써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천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으며, 계속된 부의장선거에서는 부의장후보로 나선 이해천의원, 이상명의원, 이상준의원, 이훈의원등 4명의 정견발표 후 투표를 실시, 출석의원 47인중 이해천의원 18표, 이상명의원 8표, 이상준의원 6표, 이훈의원 15표로 과반수이상 득표자가 없어 2차투표를 실시한 결과 이해천의원 20표, 이상명의원 4표, 이상준의원 4표, 이훈의원 19표로 역시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어 이해천의원과 이상명의원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이해천의원 23표, 이훈의원 24표를 얻어 이훈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으며, 이어서 실시된 두 번째 부의장 선거에서는 제1차투표에서 과반수이상 득표자가 없어 2차투표를 실시한 결과 출석의원 46인중 이상명의원 18표, 이상준의원 27표, 이인섭의원 1표로써 이상준의원이 당선되었다.

나) 상임위원장 선거 : 제2차본회의

- 선거방법 : 상임위원장 선거는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에 준하여 무기명 투표 실시되며 한 장의 투표용지에 5개 상임위원장을 동시에 투표하는 연기명식 투표로 실시되었다.

- 선거상황 : 이기순의장직무대행으로부터 이천규의원과 박용길의원이 감포위원으로 지명된 후 투표방법에 대해 신재현 의사담당관의 설명뒤 실시된 투표에서 개표결과 의회운영위원장에 김원기의원이 당선되었으며, 내무위원장에 2차투표결과 김진동의원이, 교육사회위원장에 정충수의원, 산업경제위원장에 이무순의원, 관광건설위원장에 전인택의원이 각각 당선되었으며 투표결과는 다음과 같다.

※ 상임위원장 선거결과(출선의원 46명)

- 의회운영위원장 : 김원기의원 36표, 이천규의원 1표, 박용길의원 2표, 이인섭의원 1표, 이해천의원 1표, 무효 5표
- 기획행정위원장 : 제1차투표 - 원종익의원 7표, 권혁희의원 18표, 김진동의원 19표, 신명선의원 1표, 기권 1표(당선정족수 미달)
제2차투표 - 권혁희의원 20표, 김진동의원 25표, 무표 1표
- 교육사회위원장 : 이상구의원 18표, 정충수의원 26표, 무효 2표
- 산업경제위원장 : 이무순의원 27표, 오원일의원 19표
- 관광건설위원장 : 전인택의원 32표, 박금용의원 12표, 이상명의원 1표, 기권 1표

다) 상임위원회위원선임 : 제2차본회의

- 의회운영위원회 : 손석암, 신명선, 신창승, 이천규, 함종선, 김원기, 김학영, 박용길, 이인섭, 인현상, 박주선의원등 11명
- 기획행정위원회 : 권혁희, 손석암, 신명선, 이종근, 조규병, 김길정, 김진동, 원종익, 이훈, 정철수, 박주선, 엄민현의원등 12명
- 교육사회위원회 : 성희직, 이상준, 임상규, 정충수, 김원기, 심재천, 엄문섭, 이인섭, 천희숙, 이상구의원등 10명
- 산업경제위원회 : 이연우, 이천규, 장동희, 정인수, 함종선, 김수돈, 김학영, 변완기, 오원일, 김규세, 이무순, 이상명, 이해천의원등 13명
- 관광건설위원회 : 곽노린, 신창승, 유돈대, 이기순, 정연대, 박낙진, 박용길, 서종을, 전인택, 인현상, 박금용의원등 11명



2) 議會運營委員會

가) 제1차회의 : 2000년 7월 14일(금)

- 간사선임 : 신창승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였다.

3) 企劃行政委員會

가) 제1차회의 : 2000년 7월 14일(금)

- 간사선임 : 손석암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였다.
- 위원회의석결정 : 위원회 의석은 위원장 오른쪽부터 간사좌석으로 하고 나머지위원들 좌석은 가나다순으로 배정하기로 하였다.

4) 敎育社會委員會

가) 제1차회의 : 2000년 7월 14일(금)

- 간사선임 : 장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이해천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였다.
- 위원회의석결정 : 위원회의석은 위원장석 오른쪽 첫 좌석을 간사위원좌석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석은 성명 가나다순으로 배정하기로 하였다.

5) 産業經濟委員會

가) 제1차회의 : 2000년 7월 14일(금)

- 간사선임 : 함종선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였다.
- 위원회의석결정 : 위원회의석은 위원장 오른쪽 첫 좌석을 간사위원 좌석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석은 성함의 가나다순으로 배정하였다.

6) 觀光建設委員會

가) 제1차회의 : 2000년 7월 14일(금)

- 감사선임 : 장시간에 걸치 토론 끝에 박용길위원이 감사로 선임되었다.

第 1 節 行政事務監査

1. 監査概要

가. 監査目的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3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기간중 각 위원회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집행을 감시·통제하며 안전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기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나. 監査期間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기간을 10일 이내로 정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실시되었다.

다. 監査方法

공식적인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실시하며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과 제출서류의 검토·질의 그리고 필요시에는 감사대상 현장의 확인 또는 관계인의 출석요구로 증언이나 의견진술을 받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2. '98年度 行政事務監査

가. 實施概要



- 1)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96회 정기회('98. 11. 20)에서 감사계획이 결정되어 1998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 2)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였으며 위원회별 감사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10인, 내무위원회 12인, 교육사회위원회 11인, 산업경제위원회 12인, 관광건설위원회 11인으로서 필요한 경우 현장검증 및 답사를 병행하기로 하였다.

나. 資料의 提出要求

1) 資料要求議員 現況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의원은 위원회별로 내무위원회 12인, 교육사회위원회 11인, 산업경제위원회 12인, 관광건설위원회 11인으로 총46인의 의원이 요구하였다.

2) 監査資料要求 現況

감사자료요구 건수는 총 1,218건으로서 이는 강원도에 1,173건, 교육청에 45건을 요구하였으나 교육청에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의결한 요구자료이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상 임 위 원 회 별					
		계	기획행정	교육사회	산업경제	관광건설	의회운영
총 계		1,218	334	173	513	185	13
강 원 도	소 계	1,173	334	128	513	185	13
	공보관실	21	21				
	여성정책실	10		10			
	국제통상협력실	46			46		
	감사관실	26	26				
	기획관실	81	81				
	자치행정국	123	123				
	환경복지국	102		102			
	농정산림국	250			250		
	산업경제국	67			67		
	관광문화국	79				79	
	건설도시국	97				97	
	소방본부	47	47				
	농업기술원	59			59		

구 분		상 임 위 원 회 별					
		계	기획행정	교육사회	산업경제	관광건설	의회운영
	해양수산출장소	91			91		
	공무원교육원	15	15				
	보건환경연구원	9		9			
	의회사무처	13					13
	강원개발연구원		13				
	강원개발공사		8				
	도립강원전문대학		8	7			
	국제대회지원단					2	
	관광EXPO조직위원회						
교육청	소 계	45					
	교 육 청	45		45			

다. 監査日程

1) 議會運營委員會

1998년 11월 23일에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2) 企劃行政委員會

1998년 11월 21일 감사관실을 시작으로 23일 공보관실, 24일 기획관리실, 25일 소방본부, 26일 강원개발연구원과 강원도개발공사, 27일 자치지원국, 28일 공무원교육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였다.

3) 敎育社會委員會

1998년 11월 21일 여성정책실 소관 감사에 이어 11월 23일 보건환경연구원, 11. 24 환경복지국, 11월 25일 강원도교육청, 11월 26일 인제군장애인보호작업장 및 주문진고등학교 현지감사, 11월 27 일 도립강원전문대학 및 설악한화리조트 현지감사, 11월 28일 감사결과 간담회, 11월 30일 보고서 작성을 하였다.

4) 産業經濟委員會



1998년 11월 21일 산림개발연구원 감사에 이어 11월 23일 국제협력실, 11월 24일 산업진흥국, 11월 25일 농정산림국, 11월 26일 강릉 왕산면 화훼단지, 11월 27일 해양수산출장소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다.

5) 觀光建設委員會

1998년 11월 21일 국제대회지원단 감사에 이어 11월 23일 관광문화국, 국제관광박람회조직위원회, 11월 24일 25일 건설도시국, 11월 26일 27일 건설도시국, 관광문화국, 국제관광박람회조직위사무처, 11월 28일 건설도시국, 11월 30일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라. 監査結果

1) 監査結果 및 處理現況

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1998년 12월 29일 강원도의회 제96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채택의 결되어 1998년 12월 29일 강원도로 이송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 분	합 계	시정 및 처리 요 구 사 항	건의사항	기 타 특기사항
계	242	191	51	
의회운영	5	4	1	
기획행정	101	56	45	
교육사회	35	33	2	
산업경제	68	67	1	
관광건설	33	31	2	

2) 是正 및 處理要求・建議事項 結果要旨

가) 企劃行政委員會

○ 公報官室

[시정·처리요구]

도정홍보위원 활동의 활성화 대책 강구 및 여성위원의 확대 위촉방안강구

[처리결과]

- 새로운 홍보기법 및 상담의 기법습득을 위한 정례연수회 개최 (6월)
- 도정잡지 및 국·도정홍보물 정기적 배부
- 우수활동 상담위원 년말 포상
- 상담위원 활동사례집 발간 보급
- 언론제보처리 통보제운영 (분기1회)
- 도정상담위원의 임기가 '99. 5월말로 만료되며, '98년말 과소동 통폐합에 따라 위원수는 226명에서 187명으로 축소조정
- 여성청년층 적극적인 활동이 가능한 대상자를 선발 위촉토록 하는 한편 여성위원의 비율을 15~20%까지 확대되도록 조치 계획임

[시정·처리요구]

도정홍보의 다양화를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활용방안과 누구나 쉽게 찾아 볼 수있고 알기 쉬운 홍보방법 강구

[처리결과]

'99년 2월부터 주식회사 BBI와 계약체결로 인터넷에 강원도홈페이지와 연결하고 관련사이트에 강원도 신문(강원뉴스)을 개설하여 도정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음.

[시정·처리요구]

디자인센터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수립

[처리결과]

- 디자인센타 지원계획을 시군에 시달하여 시군에서 요청시 협조지원

[시정·처리요구]

수도권 지하철 홍보물을 2호선 이외노선에 확대하는 방안과 강원일보 인터넷 광고에 대한 성과 분석 실시 및 모빌비전의 홍보예산이 과다 소요되고 있는데 대안마련

[처리결과]

- '98년 지하철 객차내 250량(2호선 150, 5호선 100)
- '99년 지하철 객차내 140량(1호선 70, 3호선 70) 2호선 200량 속초시에서 별도설치(관광 EXPO)



[시정·요구사항]

강원일보 인터넷광고에 대한 성과분석 실시

[처리결과]

- 전국 네티즌등과 다양한 정보를 직접 제공, 도홈페이지와 연결 체계구축 접속도 제고
- 검색하면 1면과 검색목차 화면, 배너클릭 성 광고게재
- 도에서 자체제작 공급, 도정구호, 국제이벤트(동계대회, 관광EXPO) 주요이벤트(전국기능대회, 감자 큰잔치)

[시정·요구사항]

모발비전의 홍보 예산이 과다 소요되고 있는데 대안 마련

[처리결과]

- 강릉 경포해수욕장(4,100천원), 감자 큰 잔치(8,250천원)
- 정월대보름 맞이 농특산물전(서울), 관광EXPO 현장(속초)

[건의사항]

도정홍보위원들과 도의원들과의 간담회등 개최로 도정발전을 위한 상호 만남의 장 마련

[처리결과]

- 정례연수회 개최시 도의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임(6월중)

[건의사항]

민간기업이나 정부단체 간행물 등을 통하여 도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는 투고·기고자에게 포상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처리결과]

- 민간기업, 은행, 단체, 조합발행 간행물과 정부·기관단체 발행 간행물
- 신문 및 잡지, 방송매체
- 민간인(개인·단체)에 감사패 및 시상품, 공무원은 상패 및 시상품

[건의사항]

TV 일일연속극 방영장소유치 등을 통한 관광지과 특산품 홍보방안 마련

[처리결과]

- 언론관련 기자, PD, 연예인과의 간담회개최와 각종홍보물을 제공
- 대중성과 시청율이 높은 프로그램의 유치·섭외·출연 홍보효과 극대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음.

[건의사항]

고속도로변 등지에 홍보방안 전시센터를 설치하여 PC를 통한 강원도 홍보 방법 강구

[처리결과]

- 고속도로휴게소의 안내소에 설치된 PC를 활용 강원도 홈페이지와 인터넷 신문(뉴스)을 관련 사이트로 넣도록 협조하여 도정 홍보를 년중 실시하겠음('99년 3월 이후)

[건의사항]

「동트는 강원」 표지제호 디자인 보완

[처리결과]

- 종전 표지제호 디자인 동트는 강원"동"자를 로고체로 사용
- '99년 1월호(제18호)부터 표지 제호 디자인 "동"자를 교체사용

○ 監査官室

[시정·처리요구]

금품수수 및 공금 횡·유용등에 대한 감사 및 회수철저

[처리결과]

- 각종공과금, 세입세출외현금, 각종 과태료
- 행정기관 직영 경영수익사업
-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지원금
- 특별회계의 이자수익금 등 중점감사
- 여비, 급양비, 초과근무수당 등 변태 우려 예산 감사 확행
- 종결시까지 추적관리, 고의지연, 누락사례 엄중문책



[시정·처리요구]

시군의 복지회관 운영에 대한 정밀감사를 실시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 대책 강구

[처리결과]

- 종합감사 기회 활용 정밀감사 실시 : 1999년 대상시군 8시군
- 제도상 문제점 : 관련조례 개정
- 운영상의 문제점 : 해당기관에서 개선토록 조치

[시정·처리요구]

감사요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2년내 전보제한 규정 준수

[처리결과]

- 전보발령시 사전 협의 토록 자치지원국과 협조
- 승진, 본인희망, 업무능력 부족, 비위, 품위손상시 예외
- 감사관실 신규발령자 감사원 직무교육과정 우선 이수후 감사 투입
- 교육 이수후 3년 경과자 보수교육 확행

[시정·처리요구]

과적차량 단속분야에 대한 감사실시

[처리결과]

- 중점감사분야 : 대중교통관리, 운수업체 지도감독, 과적차량 단속 등
- 종합감사 8개시군에 대하여도 교통분야 감사시 과적차량 단속실태 감사확행

[시정·처리요구]

일용직에 대한 회계업무등 주요업무를 분장하는 사항 근절조치

[처리결과]

- 주요업무를 분장할 수 없음에도 분장한 경우 업무분장 책임자 문책
- 일용직의 회계관련 비위 발생시 해당 일용직은 물론 감독공무원에 대하여 동일기준 문책(변상책임도 동일)

[시정·처리요구]

감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 강구

[처리결과]

- 「시스템감사」 실시 : 사업의 입안⇒시행⇒완료등 단계별 감사 실시로 감사 누락방지
- 감사지적이 빈발한 취약분야, 감사 사각지대 해소 위한 부분감사 실시(1999년 : 기금관리, 수산행정, 교통행정)

[건의사항]

감사자와 수감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토론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감사수행 요망

[처리결과]

- 피감사자와 감사자가 동일한 의자 사용
- 일방통행식 감사자세 지양, 피감사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
- 무리한 감사자료 요구억급, 친절하고 부드러운 자세 견지

[건의사항]

주민 감사청구제 도입에 대한 실효성 검토 및 추진

[처리결과]

- 청구주체 : 도·시군의원, 시민운동, 연구, 학술, 직능단체, 주민대표, 공익법인 단체
- 청구대상 : 도·시군청 산하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사항
- 감사여부 결정 및 실시
 - 청구된 내용에 대하여 도지사가 실지감사 여부 결정
 - 별도 감사반 편성, 서면 또는 실지감사 실시
- 결과조치
 - 감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 및 내용 공개
 - 위법·부당사항 시정요구 및 조치

[건의사항]

조직개편 후 유보정원을 기동 감찰반 활용방안 강구

[처리결과]

- 유보정원은 현재 동계아시아게임, 관광엑스포 지원인력으로 편성되어 유보정원이 없는 상태임
- 유보정원 발생시 기동점검반 운용인력이 부족할 경우 유보인력 활용방안을 자치지원국과 협조



[건의사항]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도입에 따른 검토분석 및 완벽한 추진대책 마련

[처리결과]

- 검토대상
 - 공직내부 각종 비위사항 고발자에 대한 신분보장 관련
 - 공공기관 및 개인정보의 범위
 - 공무원윤리강령과 부패방지법제정 관련사항 등
- 검토결과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규정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개인정보사항이 왜곡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 내부고발자가 공공기관 정보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위법사항을 내부조례나 규칙등으로는 보호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건의사항]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제에 대한 감사를 위한 전문가팀 운영 필요

[처리결과]

- 점검대상 : 도발주 20억원 이상 토목·건축공사 현장
- 점검주기 : 발주, 착공, 공사증 준공 등 단계별 점검
- 점검방법 : 자체감사요원 최대한 활용하되 필요시 외부전문가 초빙점검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따라 업무내용이 부실한 시군은 언론에 공포하기 바람

[처리결과]

- 주민생활과 관련된 분야의 개선 수범사례
- 취약업무에 대한 감사실시 사례
- 고질적인 부실공사 사례
- 공표방법 : 언론기관에 보도자료 제공

○ 企劃管理室

[시정·처리요구]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 방안강구 및 민간중심의 전문가 역할이 요구되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위촉하는 방안 등 대책강구

[처리결과]

- 현황 : 69개 위원회
 - 근거 : 법령 56, 조례 11, 훈령 1, 예규 1
 - 인원 : 1,123명 (공무원 423, 민간인 700)
- 향후추진계획
 - 행정내부위원회는 「도정조정위원회」에 기능흡수, 유사기능위원회는 1개위원회로 통·폐합('99 상반기)
 - 법령개정 필요 위원회는 중앙계획과 연계하여 통·폐합('99 상반기)
 - 민간중심위원회는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위촉

[시정·처리요구]

의료원의 구조조정과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책강구

[처리결과]

- '98년도 행자부에서 노사정협의를 거쳐 전국 공통사항으로
- 도에서는 의료원별 노사협의를 거쳐 정관등 제규정을 개정하여 추진

[시정·처리요구]

만성적자를 보이고 있는 의료원의 민간위탁등 민영화 방안 검토

[처리결과]

- 우선 경영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민영화방안 지속 연구 검토
- 적자경영을 해소하기 위해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방안을 강구하고 민영화 등 경영체제문제는 지속적 연구검토
- 다만 위탁·민영화시 의료시혜자의 부담 증가 우려사항 고려



[시정·처리요구]

광역행정협의회 운영의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대응 방안

[처리결과]

- 확대 : 현재 「수도권행정협의회」 + 「중부내륙권 3개도 협의회」(가칭) + 「지역균형발전협의회」 구성·운영
- 광역행정협의회 구성·운영은 도가 주도적으로 설립, 운영되도록 추진

[시정·처리요구]

일반 영세 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원 경영개선 대책 강구

[처리결과]

- 의료원별 지역실정에 맞는 무의촌 무료진료를 실시할 계획이며 의료보호환자등 저소득층에 대한 진료에 더욱 매진

[시정·처리요구]

붕어섬 개발의 실패원인을 분석하여 금후 대책강구

[처리결과]

- 중도·붕어섬 일괄개발을 원칙으로 하되 분리 투자방안 검토
- 사업구상에 맞는 개별방법의 다각화 모색
- 사업자가 토지매입후 독자개발
- 도(토지) +사업자(자본·기술) 공동개발

[시정·처리요구]

「강원비전 21」이 담고 있는 내용을 도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방안 강구

[처리결과]

- 알기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문,영문,일문 등 3개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국내외에 배부
- 도정 인테넷을 통해 도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앞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

[시정·처리요구]

지방공기업의 경영진단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경영개선 대책 강구

[처리결과]

- 외부 용역평가 및 전문기관에 경영진단 실시

[시정·처리요구]

도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채택된 안건의 홍보강화와 사례집 발간

[처리결과]

- 채택사례 등 운영취지 홍보 및 1공무원 1제안의 정착과 출향도민까지 참여확대 도치계획

[시정·처리요구]

LAN운영의 활성화와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준비 철저

[처리결과]

- 구내정보망 확대구축 : '99. 2월~3월
- 고속분배기등 통신장비 6종 보강, 사업소 및 시군 전자우편시스템 설치
- LAN컴퓨터 확대 : 420대 ⇒ 450대, 사업소 20개소

[시정·처리요구]

각종 위원회 운영에서 위원회의 지역별 안배 및 여성의 참여 확대방안 강구

[처리결과]

- 위원회 총 69개 1,123명 위원(남 1,069, 여 54)
- 여성위원 참여비율 확대 20%이상
- 위원회 정비시 위·해촉등 분야별, 전문가별, 남녀별 등 균등화 추진

[시정·처리요구]

예산전용, 이월사업 보조금 사용 잔액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사전 예비심사제도를 운영토록 하는 방안 강구



[처리결과]

- 예산전용 : 총액예산제도의 적극 활용 및 세목내 예산의 상호융통을 통한 전용의 최소화 운영
- 예산이월 : 장기대형사업의 경우 계속사업비 제도를 적극활용하여 연도별 실소요액을 계상하는 등 투자재원의 효율성 제고, 단기사업은 사전에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조기발주등을 통하여 연내마무리 위주로 운영 ⇒ 불가피할 경우 최소화 운영
- 보조금사용잔액
 - 주요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집행상황을 파악하고 잔액이 예상될 경우 사업계획변경 등을 통하여 추경시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

[건의사항]

기금운영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

[처리결과]

- 기금총괄관리관 : 기획관리실장
- 기금운영관 : 주무국장
- 기금출납원 : 주무담당관

[건의사항]

춘천·원주·강릉 지역에는 3차 진료병원이 있으므로 의료원을 노인전문병원 또는 정신질환병원 등 특화 병원으로의 전환

[처리결과]

- '98강원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의료원의 합리적 운영 특화방안 연구결과를 토대로 '99년부터 각 의료원과 긴밀히 협의하여 신중히 연구검토하여 추진

[건의사항]

도지사 선거시 타후보 공약사항도 검토하여 도정시책에 반영 강구

[처리결과]

- 접경지 개발과 보존, '99국제관광EXPO, 21세기 강원청사진, 상수원특별대책, 실업대책 등 후보자별 공약사항에 대하여 '99 주요도정시책에 반영하여 추진중

[건의사항]

금강산관광 유람선의 주·부식은 지역특산물을 전량구매토록 추진

[처리결과]

- 식품자재납품('98) : 52품목 85백만원(강원개발공사 13품목 21백만원, 지역농수축협 39품목 64백만원)

[건의사항]

백두대간 종합관리계획 수립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반영

[처리결과]

- 기초안 제시후 시군 의견수렴등 절차실시, 주민요구사항 최대한 반영

[건의사항]

강원도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 강구

[처리결과]

- 「강원의 얼」 선양사업 추진 유인석, 김유정유적지 조성, 유적, 명사, 전설의 터조성, 허균, 허난설헌, 한용운 사상 선양 등 강원인 하나되기 운동 추진
- 도립문화예술단 창단, 강원문화재단 설립, 문화예술인마을 조성, 강원예술인 및 국악전수회 관 건립 등
- 전통문화시범도시(강릉)육성, 강원감영(원주)복원, 단종유적정비(영월)등 비지정 유무형문화재 지정
- 정선아리랑등 전통민속예술 전승개발
- 강원도이미지(CI) 메뉴얼 적용확산, 지역통합을 위한 시군연계 CI메뉴얼개발
- 「한국관광의 1번지」 「통일한국의 1번지」 「신동해권의 중심지」 등

[건의사항]

「강원의 비전 21」의 내용을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만화형태로 제작·홍보

[처리결과]

- 주요내용 설명과 사진위주로 편집한 홍보책자를 제작 배부한 결과,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기 확보된 물량을 지속적으로 배부할 계획임

[건의사항]

MBO제를 정착 시킬 수 있는 방안 강구

[처리결과]

- 4급이상 점수화 평가, 5급이하 추진실적 관리하여 성과급, 인사 반영

[건의사항]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현행 단식부기로 검토

[처리결과]

- 근거 : 지방재정법 및 동시행령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
- 체제 : 과목구조, 편성 집행방법 등을 지침으로 정하여 자치단체 예산편성 체제 통일
-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복식부기를 도입하는 것은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 할때 지방자치단체 독자적으로 도입할 수 없는 실정으로 앞으로 행자부와 협의하여 도입여부 검토

○ 自治支援局

[시정·처리요구]

형식적인 도민의 날 행사에서 탈피하여 도민들이 정신적인 통합을 기할 수 있고 응집력 있는 행사개발 추진

[처리결과]

- 제5회 도민의 날 경축행사 계획 수립시 도민통합과 응집력을 고양시킬 수 있는 행사위주로 추진
- 계획수립 시기 : '99. 2월중
- 추진내용
 - 문화예술분야 : 강원무용제, 도민합창경연대회 등
 - 체육분야 : 어머니배구대회, 게이트볼대회등
 - 기타분야 : 학생·주부백일장등

[시정·처리요구]

구조조정으로 시군의 통합 부서에 대한 업무내용이 홍보 미흡으로 도민들이 불편을 초래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 강구

[처리결과]

- 시군행정조직 개편관련 홍보대책 강구 통보 : 자치 12200~1948('98. 12. 1)
- 주요내용
 - 시군청사입구 「부서 안내판」 설치
 - 안내 팸플렛 제작 배부
 - 반상회보 게재 홍보
 - 지역유선방송(자막) 및 언론매체 활용 홍보 등

[시정·처리요구]

도세의 징수율이 시군세 징수율 보다 현저하게 낮는데 도세의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 강구

[처리결과]

- '98 징수실적(12월말)

(단위 : 억원)

구분	예산(A)	부과(B)	징수(C)	비율 (%)	
				C/A	C/B
계	4,406	5,382	4,539	207	167
도세	1,650	2,144	1,744	106	81
시군세	2,756	3,238	2,795	101	86

※ 사유분석

- 도세는 경기에 민감한 취득·등록세가 90%를 차지한 반면 시군세는 재산세·종토세 등 보유세 위주로 구성
- '98년도의 경우 도세의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IMF로 인한 경기침체에 의한 것으로 분석됨.
- 고액·고질체납자 징수노력 강화
 - 체납규모 및 유형별 징수활동 전개
 - 고액체납자 징수전담팀 구성 운영
 - 계절별 특별징수기간 설정 운영
- 고액체납장 대하여는 현장 징수제도



[시정·처리요구]

각종 연구개발비의 용역발주가 일부 대학에 편중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강구

[처리결과]

- 학술연구분야 용역은 각 대학별 전문성 연구실정등을 종합고려하여 사업부서의 요구에 의해 용역을 시행
- '98 용역건수 : 11건(강원대 2, 강릉대 1, 기타연구기관 8)
- 학술연구용역 계약을 사업시행 부서와 협의하여 도내대학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시정·처리요구]

민방위강사 자질향상을 위한 대책마련과 민방위교육방법 개선대책 강구

[처리결과]

- 시행시기 : '98. 12. 1(시군통보)
- 주요내용
 - 자체 민방위강사 위촉시 퇴직공무원 및 우수전문인력 활용
 - 시군실정에 맞는 교과목 개발
 - 교육교재 발간 활용 등
- 민방위 교육방법 개선
 - 산간·오지·교통불편지역의 순회교육 실시
 - 원거리, 장기출타자등 교육이수 곤란자 현지교육
 - 현장근로자등 생계곤란 대원 야간교육 실시 등

[시정·처리요구]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하여 재난발생 위험이 많은 시설에는 특별관리 대책 강구

[처리결과]

- 지정관리시설 : 115개소
- 유형별 : E급 10개소, D급 105개소
- 관리주체별 : 도 30개소, 시군 85개소
- 일제 안전점검실시 : 년2회(상·하반기)
- 재난위험시설물 지정관리 : 115개소

- 책임관리지 지정 및 카드화 관리
- 정기 안전점검 기록 : 월 1회 이상
- 재난위험물 장·단기대책 강구
 - 시설물별 정비계획 수립 시행
 - 장기 정비계획 수립 : 5개년계획
- 재난위험시설물 지정·해제
 - 안전점검결과 추가지정 고시
 - 개·보수시 해제관리
- 재난위험시설 해소사업 추진
 - 99계획 : 44개소 40,378백만원

[시정·처리요구]

관용차량 관리운영에 내실화를 기함은 물론, IMF 시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렌트카 운영 방안 검토

[처리결과]

- 관용차량 현황
 - 차량 : 총 32대(업무용 18, 사업용 14)
 - 운전원 : 17명(당초 24 → 17명 : 7명 감축)
- 효율성이 낮은 차량 불용처분 : 6대
- 도본청 업무승용차 「자가운전제」 시행
 - 시행시기 : '99. 1. 15부터
 - 방법 : 5급이하 도내 출장시 자가운전
 - ※ 렌트카 도입방안은 장기연구과제로 추진

[시정·처리요구]

각종 불법신고센터 운영실적이 다소 미흡하므로 기능 강화대책 강구

[처리결과]

- 불법신고센터 현황 : 10종
- 시행일 : '99. 1. 19
- ※ 총무 13130-114('99. 1. 19)



- 주요내용

- 불법신고센터 기능 적극 홍보(반상회보, 팜플렛, 마스크등 이용)
- 주민불편신고 접수시 신속한 처리
- 불법신고센터 운영부서별 자체활성화 대책 수립 등(각 부서별 책임조치)

[시정·처리요구]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 내실있는 활성화 방안 강구

[처리결과]

- 근거 :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 기준 : 상호 인사교류협약에 의해 실시
- 도·시군간 1:1상호교류원칙 준수
- 시·군간 균형있는 인력배치와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시·군간 인사교류 유도
- 시군공무원 도과견근무제 실시
 - 대상 : 6~7급 일반직(시군별 1~2명)
 - 기간 : 6월~1년 범위
 - 기능 : 행정정보교환, 정책기획능력 배양 등
- 시군공무원 도발탁 지속시행
 - 도 전입고사 실시, 소양고사 우수자발탁 등

[시정·처리요구]

도의 재산관리분야 전문가가 없을 뿐 아니라, 재산관리부서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데, 개선대책과 담당공무원의 사기양양 대책 강구

[처리결과]

- 재산관리 공무원 현황

계	5급	6급	7급	별정7급	기능직
7명	1	1	2	1	2

- 전문성 제고 및 사기양양 방안
 - 재산관리분야의 전문성제고를 위해 순환전보제한 관리부서로 지정관리
- 공유재산관리 전문교육
 - 시기 : '99. 7~9월

- 대상 : 도·시군 재산담당공무원
- 교육기간 : 한국감정원 교육기관
- 재산관리 비교견학
 - 시기 : '99 하반기중
 - 대상 : 타시도(2시도)
 - 내용 : 도유재산 전산관리실태등

[시정·처리요구]

「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의 내실있는 추진대책 수립

[처리결과]

- 시행일 : '99. 1. 6
- 주요 추진시책
 - ① 군부대주변 환경정비 및 민북지역 개발사업 : 5개사업 6,576백만원
 - ② 지역예비군 지원사업
 - 통신방치통 구입비 : 150백만원
 - ③ 전역자 만남의 장 조성
 - 그리운 부대 옛전우와의 만남
 - 월남 파병용사 만남의 장 조성 등
 - ④ 모범하사관 및 군인가족 초청 도정소개
 - 시기 : 모범하사관(6월), 군인가족(하반기)
 - 인원 : 244명
 - 내용 : 도정소개, 간담, 산업시찰등
 - ⑤ 군부대와의 자매결연 내실 추진
 - 명절, 부대창설기념일 등 방문위문
 - 시군 실과단위, 사회단체 결연확대
 - ⑥ 군관계관 간담회 : 년 2회
 - ⑦ 유공장병 표창 : 21명

[시정·처리요구]

장애인 공무원 채용 2%에 대한 지속적인 대책 강구



[처리결과]

-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에관한법률 (91. 1. 1제정)
- 장애인공무원 현황(98. 12월말)
 - 의무고용대상 : 152명 (의무고용정원의 2%)
 - 장애인공무원 : 132명 (1.65%)
 - 의무고용정원 : 20개직렬 8,008명 (공무원정원 : 15,109명)
- 장애인공채실적 (91이후)
 - 선발계획 : 9급 42명 (행정36, 세무6)
 - 합격 : 20명 (행정15, 세무5) : 합격률 47.6%
- 의무고용대상 직력 공채시 지속적으로 3%이상 분리 채용

[시정·처리요구]

강원인터넷대학 활성화 방안강구와 추가 프로그램개발

[처리결과]

- 위치 : 강원대학교 미래관 8층
- 설립일 : '98. 6. 9
- 규모 : 서버, 통신등 19종 36대
- 도민이용 확대 홍보 : 지방지, TV등
- 전도민 「전자우편계정갖기운동」 전개
 - 인터넷대학에 전자우편관리 서버설치
- 지역정보화 교육실시
 - '99. 4~8월중, 5개권역 분산실시
- 사이버문학상 및 전국 인터넷 경진대회 개최('99. 5월중)
- 강원 인터넷대학 비학위과정 설치
 - 주3회이상, 1학기이상 수강자 수료증 발급('99. 3월부터 시행)
- 강원특성문화 형성 캠페인 전개
 - DMZ환경, 자연생태계, 고유문화 등 제작

[건의사항]

공무원 구조조정이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

[처리결과]

- 총과원 : 406명
- 2000년말까지 잠정적 정원 인정
- 과원에 대해 '99동계조직위 및 관광EXPO프로젝트팀 배치 활용
- 적용대상 : 2002년말기준 과원 미해소자
- 2000년말까지 과원해소 노력
 - 명예퇴직, 공로연수, 조기퇴직 유도
 - 직렬조정, 전직 유도 등
- 2000년말까지 미해소 과원에 대해 과원처리방안 강구
 - 각 계층의 의견수렴을 통해 객관적 기준안 마련
 -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안 확정 및 시행

[건의사항]

공무원 연금매점내 「수산물 코너」 개설

[처리결과]

- 도청 매점 규모 : 220평(매점 142, 창고 78)
- 개설시기 : '99. 2월중
- 확장규모 : 매장 142 → 152평(증 10평)
- 취급품목 : 동해안 어류, 건어물, 젓갈류 등

[건의사항]

현 공무원의 직위체계가 계급제·직위 분류제로 되어 행정의 전문성, 생산성, 경쟁력 등이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능력제 및 인센티브제 도입 검토

[처리결과]

- 계약직공무원 제도 시행 : '98. 10
 - 계약직 채용 : 13명
- 개방형 전문직위제 도입
 - 적용분야 : 법률, 국제통상 등 전문분야
 - 시행시기 : '99. 7월중
- 기본계획 수립 시행 : '99. 1



- 능력과 실적에 의한 인사관리
 - 개인별 목표설정 : '99. 1월
 - 개인별 실적평가 : 반기 1회
- 목표관리제에 의한 인센티브 부여
 - 근무성적 반영 및 성과급 지급 등

[건의사항]

「근무희망부서 행정예고제」 운영방안 연구·검토

[처리결과]

- 근무성적 평정시 자기가 특정부서로 편중되는 관계로 실제 인사운영에 제약요인이 됨
- 근무희망부서의 특정부서 편중의 문제점 보완과 행정의 전문화등을 종합 고려하여 많은 연구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건의사항]

도지사 관사가 아파트로 주민과의 대화의 장소가 없어 상당히 불편함으로 관사신축 방안 검토
다만, 근무 희망부서기술서에 전보 희망부서를 명기하도록 규정

[처리결과]

- 위치 : 춘천 문화원 부지(춘천시 봉의동 4의 9번지)
- 면적 : 5,204㎡(도유지)
- 관사설립 기본계획 수립(시설규모, 예산확보 방안 등)
- '99 추경예산 확보 검토
 - 용역비 및 시설비 등

[건의사항]

소규모 잡종재산 실태조사 후 실수요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등 도의 대처방안 검토

[처리결과]

- 조사기간 : '99. 2 ~ 5월
- 조사대상 : 10千필지 26千㎡
- 도유 잡종재산 실태조사 결과 매각필요 소규모 잡종재산에 대해 실수요자에게 매각 추진

- 지방 재정법 개정시 매각기준 완화 건의 검토

[건의사항]

'98년 도가 수렵허가 지역으로 수렵장 사용료를 시군에 배분하는 문제검토

[처리결과]

- 근거규정 : 조수보호 수렵에관한법률 제13조(수입금사용 용도제한)
- 총 징수액 : 3,376백만원
- 집행계획
 - 임업진흥기금 : 400백만원
 - 수렵장운영경비 : 207백만원
 - 조수보호사업비 : 850백만원
 - 춘천수렵장 조성비 : 2,480백만원
- 관련 법규정에 의해 수입료 사용의 용도가 제한됨
- 수입액의 일정비율로 시군에 배부할 수 있도록 산림청에 건의 검토

[건의사항]

여성수련원의 원장을 여성공무원으로 임명

[처리결과]

- 여성수련원설치일 : '98. 7. 1
- 설치근거 : 강원도조례 제2639호('98. 7. 1)
- 기 능 : 여성복지향상 및 여성전문교육 실시
 - ※ 종전 동해수련원에서 기능 전환
- 여성공무원의 인적자원을 감안하여 가급적 여성공무원으로 보임 검토

○ 消防本部

[시정·처리요구]

소양호 수난구조대의 수자원개발공사 위탁관리운영 방안 강구

[처리결과]

- 소양호 수난구조대 설치배경은 '93. 10. 10 서해훼리호 전복과 '94. 10. 24 충주호 유람선 화



재발성 사건으로 인하여 소양호 수상관광객 안전을 위해 '97년 소양호 수난구조대구조정 제작·착공하여 '98. 10. 26 완공하였음.

- 수난구조대 관리운영에 관하여 소양댐 발전주체인 수자원개발공사측과 협의하여 관리전환에 대해 검토하겠음.

[시정·처리요구]

'99관광 EXPO 관련한 소방대책 강구

[처리결과]

- 각 소방관서에서는 종합적인 소방안전대책을 수립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대회관련 시설 소방 안전점검 4회와 긴급구조구급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대회기간중에는 돌발사태 대비 행사장에 소방력을 고정배치하여 테러대비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대회준비에 적극 노력하고 있음.

[시정·처리요구]

대형화재 발생시 인근 관서 지원출동 유도요원을 의용소방대원으로 활용하는 소방대책 강구

[처리결과]

- 대형화재 발생시 인근관서에 응원출동을 요청할 경우 화재장소와 접근도로망을 함께 무선통신하고 있으며, 소방본부 상황실에서는 무선을 통하여 출동차량이 쉽게 화재현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 더욱 완벽한 출동체계 확립을 위하여 접근토록 분기점(4거리)인근에 유도요원으로 의용소방대원을 사전 지정 임무를 부여함으로써 소방차량 유도에 만전을 기하겠음.

[시정·처리요구]

소방관서 직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지역 소방활동의 지장이 많으므로 연고지 배치 등, 이에 대한 대책 수립

[처리결과]

- 소방공무원 출신지역별 인원구성편차가 심하여 사실상 100%연고지 배치가 매우 어려운 실정임.
- 타지역 근무자중 연고지 배치가 시급한 직원 및 장기 오지근무자순등 형평성에 따라 가급적 연고지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음.

[시정·처리요구]

소방도로 개설시 시군 소방관서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처리결과]

- 승용차 증가로 6m ~ 8m 소방도로상에는 보편적으로 야간에 차량이 양쪽에 주차해 있는 상 태임.
- 따라서 야간화재 진압시 소방차량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앞으로 소방도로 개설시 시·군등과 협의하여 소방관서 의견이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음

[시정·처리요구]

화재발생 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나 표창대책 수립 추진

[처리결과]

매년 12월을 기준으로 최우수기관 선정을 위해 평가하고 있으며, 최우수 소방관서로 선정되면, 익년도 도지사표창 및 관계공무원 발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시정·처리요구]

출장소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격려차원 대책 수립추진

[처리결과]

- 출장소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은 환경이 매우 열악한 곳에서 근무하는 것은 사실임.
- 매년 포상계획에 의거 출장소별 화재, 구조, 구급활동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우수 공무원에 게 포상토록 하겠음.

[시정·처리요구]

개인소유 소화전과 관공서 등의 소방용수시설 점검 및 위치파악 철저

[처리결과]

- 소방용수(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자연수리)조사를 동절기 2회, 기타 월 1회 실시하고 있음.

[시정·처리요구]

소방공무원의 체력단련 시설보강 방안수립 추진



[처리결과]

- 소방공무원 체력단련 시설은 소방관서별 탁구대, 헬스기구등 기초체력단련기구를 확보하고 있으나 부족한 실정임.
- 향후 필수 체력단련기구 확보기준에 따라 예산을 확보 점진적으로 보강해 나가겠음.

[건의사항]

재래시장에 대한 소방대책과 관련하여 시범적으로 1년에 1개시장을 선정, 도내 전 소방력을 집중 투입하여 강력한 단속으로 소방통로 확보요망

[처리결과]

- 년중 정례적으로 재래시장 화재발생대비 소방서별 소방통로확보, 소방훈련 철시 점검, 합동 소방검사 등 집중적으로 실시하지만, 재래시장 특성상 가시적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며
- 앞으로 시범적으로 재래시장 1개소를 선정 소방통로 확보등 위해요인을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음.

[건의사항]

아파트 부녀 의용소방대 조직운영의 활성화 대책 요망

[처리결과]

- '97년도 11층이상 아파트의 대상에서
- '99년부터는 10층이하 아파트에도 참여시켜 아파트 부녀의용소방대를 확대운영할 계획임.

[건의사항]

지역의용 소방대원과의 밀접한 유대관계를 위한 계획 수립 추진

[처리결과]

- 지역의용소방대원과 밀접한 관계를 위해 지역소방서장, 파출소장이 수시 방문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해결하도록 하며
- 간담회, 체육대회등을 통해 지역의용 소방대원과 소방공무원과의 긴밀한 유대관계 유지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음.

○ 公務員教育院

[시정·처리요구]

공무원 의식개혁을 위한 정신교육 시간 확대 방안 강구

[처리결과]

- 1주이상 기본, 전문교육시 소양교과 확대 편성
- 39과정 3,110명
- 교육일정 : 2. 8 ~ 11. 26

[시정·처리요구]

이론 강의는 외부 유능한 강사가 담당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

[처리결과]

- 행정법, 행정학 등 기본필수과목은 대학교수 초빙
- 행정 실무위주 과목 : 원 자체 교수요원 활용

[시정·처리요구]

어학교육 과정의 교육생 선발시 실력차이가 있으므로 수준별·과정별로 분류하여 교육토록 하는 방안 강구

- 초급, 중급, 외국어과정 운영
- 교육대상 : 수준에 맞게 출제선발
- 60명 (영어 30, 일어 30)

[시정·처리요구]

교육우수자 우대가 미흡함으로 앞으로 인사발탁, 포상 등 사기양양 대책 수립 시행

[처리결과]

- 성적우수자 시상확대 (1~5위)
- 성적우수자 사후관리 계획 수립 인사부서와 협의 조치

[시정·처리요구]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시설 등 확보 추진



[처리결과]

-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장애인 민원안내 교육
 - 주차장표시 2면, 장애자용 화장실수 4개소(남2, 여2)
 - 시군민원창구 근무자 수화교육(40명)

[건의사항]

행정학, 행정법, 민법총칙 등의 교과목 확대편성 요망

[처리결과]

- '99기본·공통전문과정 교과편성에 반영
 - 일반직 신규자과정 12시간(행정법, 행정학)
 - 공통전문과정(자치행정) : 민법, 행정법 10시간

[건의사항]

현장체험과 사회봉사 점수가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는데 개선토록 노력필요

[처리결과]

-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봉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현장체험 5점, 사회봉사활동 5점을 부여하였음.
 - '99년에는 기본교육과정의 사회봉사활동에 한해 5점 부여

[건의사항]

여성공무원에 대한 시책교육을 위해 별도 과정으로 편성시행

[처리결과]

- 여성능력 향상과정
 - '99선택전문과정에 여성능력향상과정 개설 : 교육인원 80명

[건의사항]

'99관광엑스포 개최에 따른 통역요원 확보를 위해 외국어 통역요원을 원하는 주부여성을 대상으로 교육실시

[처리결과]

- 교육원에서는 민간에 대한 교육계획은 없으나
 - 관계부서에서 협조요청시 시설사용 및 강사섭외 등 적극 협조할 계획임.

[건의사항]

교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양한 교육방안 수립추진

[처리결과]

- 공직자새로나기 과정
 - 대상 : 5급공무원 380명
 - 일정 : 2 ~ 3월
- 정보관리자과정
 - 대상 : 5급공무원 80명
 - 일정 : 10월
- 도의원특별연수과정
 - 대상 : 도의원 57명
 - 일정 : 4월, 10월
- 기본교육, 공통전문 및 선택 전문과정 : 40개과정 63기 3,470명

○ 江原開發研究員

[시정·처리요구]

환경·관광등 분야의 연구원 배치방안 검토

[처리결과]

- '98. 12. 15 정기이사회에서 직제를 종전의 「室制」에서 7개 「팀제」로 개편하여 연구업무를 전문적·탄력적으로 수행토록 조정
 - 따라서 '99. 1월부터 환경복지팀과 관광문화팀을 설치하여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있으며
 - 또한 현실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원 신규채용이 어렵기 때문에 위촉연구원 대학교수 등을 활용하여 연구에 충실을 기할 계획임.



[시정·처리요구]

지역개발연구에 집중되고 있는 바,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연구활동을 펼칠 수 있는 연구진의 보강 등 역할이 다양화 방안 모색

[처리결과]

- 직제를 경제농림, 산업투자, 지역개발, SOC, 관광문화, 환경복지, 행재정팀등 7개팀으로 조정하여
 - 연구업무를 전문성 위주로 다양화함으로써 연구원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있으며
 - 기능이 미약한 복지부문은 대학교 수등 외부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연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계획

[건의사항]

연구원의 이직에 대한 특별한 대책 마련

[처리결과]

- 먼저, 2백여원의 기금을 조기확보하여 연구원 운영의 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 능력급·연봉제의 도입, 안식년제 및 교육훈련제도 등을 적극 검토하여 보람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임.

[건의사항]

의회가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과제연구 추진

[처리결과]

- 도의회와의 간담회등 잦은 접촉을 통하여 의회의 관심사항을 파악하고 “수시연구과제”등으로 의회기능 활성화 연구도 실시하겠음.

[건의사항]

학술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연구가 되도록 노력

[처리결과]

- 금년부터 도정과 관련된 시사성 있는 주제를 단기의 「수시과제」로 운용하여 연구의 시기성과 실효성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며

- 또한, 공무원등 실무자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학술적인 면 보다는 실용성 위주로 추진할 계획임.

[건의사항]

연구위원들의 연구과제가 너무 많아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염려되므로 이에 대한 방안 강구

[처리결과]

- 도 및 시군의 연구수요를 감안할 때 어느정도의 과부하는 불가피한 상황
- 대학교수 및 위촉연구원의 활용을 통해 과부하 완화를 도모하겠음.

[건의사항]

한강수계 수질보존 및 관리를 위한 비용분담의 연구과제에서 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감안한 연구결과가 나오도록 노력

[처리결과]

- 본 연구는 서울시정연구원등 5개지역 연구소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로 금년 4월 완료할 계획임
- 도민의 정서와 지역발전을 위한 내용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건의사항]

조화로운 연구기관이 되도록 여성연구원 임용 검토

[처리결과]

- 연구원의 자질은 전문성만 갖추고 있다면 누구나 가능함.
- 현재 연구원 여건상 신규채용이 어려우므로 위촉연구원으로 여성을 활용할 계획임.

○ 江原開發公社

[시정·처리요구]

타시도 공사의 경영성과 분석자료를 수집하여 본도공사의 향후 계획수립 추진에 활용

[처리결과]

- 택지개발등 용지조성사업, 주택건설, 임대사업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경북,



경남개발공사

- 지자체대행사업 : 서울(청소년수련사업), 대전(청소사업, 재활용사업), 제주(폐기물처리 시설건립, 제주의료원 신축)
- 기타사업 : 부산(공유수면매립사업), 광주(골프연습장운영), 경기(무역업), 제주(먹는샘물사업)
- 서울도시개발공사는 610억원, 부산도시개발공사는 179억원, 대구도시개발공사는 172억원등 대도시지역의 공사는 당기순이익을 올리고 있으나, '97년에 설립된 경기, 경북개발공사는 각각 44백만원, 160백만원의 적자발생
- 지방공기업의 사업다각화 전략의 일환으로 '99년부터는 무역팀을 신설하여 도내 농·특산물 및 도내산 공산품의 수출입업무를 시행할 계획임.

[시정·처리요구]

속초 및 홍천 연봉지구 미분양 택지에 대한 강력한 분양 대책 수립 추진

[처리결과]

- 분양대금의 분할납부와 이자감면, 분양대금의 할인 등 분양 활성화방안을 수립하여 도에 건의후 방침회신 대기중
- 지속적인 분양활동 전개
 - 홍천군청에 분양안내 영상광고 방영
 - 홍천 및 춘천지역 생활정보지 게재
 - 지역 공인중개사를 통한 수요자 발굴

[시정·처리요구]

농특산물의 서울 등지 백화점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납품 활성화 방안 강구

[처리결과]

- 대형유통업체(그랜드백화점, 해태유통, 까르프, 미도파, 코렉스등)에 야채 및 구근류를 9억1천만원의 매출실적을 올림
- 예상거래업체 : 그랜드백화점, 해태유통, 한화우성, 현대백화점, 까르프, 미도파, E마트, 월마트, 건영, 갤러리아등
- 예상품목 : 냉동오징어, 코다리, 건어물, 건채류, 감자, 곡물류, 야채류

[건의사항]

공영빌딩내 공간해소 대책 강구

[처리결과]

- 임대료 인하추진 : 감정평가에 의한 1층공실의 임대료를 일부 인하조정운영
- 임대홍보 실시
 - 춘천, 홍천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163개소)에 임대 홍보물 배포
 - 생활정보지 및 영상광고시행
- 공실임대홍보의 지속적 실시
- 3층 공사사무실의 1층이전 검토 : 임대료가 비싼 1층의 임대수요가 없어 공사 사무실을 1층으로 이전하고 비교적 저렴한 3층을 임대공급 검토
- 1층 공실을 의원회관으로 활용방안 협의(도의회)
- 빌딩옥상의 유휴공간을 증축하여 임대공급 계획(76평)

[시정·처리요구]

금강산 유람선내 직자재를 도내 농특산물로 납품확대

[처리결과]

- 총납품횟수 : 22회
- 납품품목 : 12종(배추, 감자, 팥이버섯, 무, 표고버섯, 양송이, 대파, 양파, 오이, 양상추, 찐옥수수, 당근)
- 매출액 : 21,740,000원
- 현재 유람선에 공급하는 품목중 우리공사가 납품하는 물량은 전체물량의 약 9%정도임.
- 납품품목 중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수입육, 해산물등이 수입품 위주로 되어 있어 납품확대에 한계가 있으나 도내 농산물위주로 지속적 거래확대 추진 예정

[시정·처리요구]

도내 콘도·호텔 등지의 납품 개척 노력필요

[처리결과]

- 도내 콘도, 호텔 10개업체를 순회 방문하여 식자재 납품현황을 파악한 바
 - 계절별 소요물량의 변동폭이 높으며,
 - 소모되는 농·수산물의 양이 소량임.
- 문제점 : 보사의 서울소재로 납품업체 선정 및 가격결정이 서울에서 이루어짐.
- 도내 단체급식용 식자재 공급체계 강화



- 매출목표 : 1,200백만원

나) 教育社會委員會

○ 女性定策室

[시정·처리요구]

여성정책실과 여성복지과의 업무중복 및 이원화로 인해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는데 일괄성있는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

[처리결과]

- '98. 9월 조직개편시 여성정책실 신설 : 1실 3담당(10명)
- 복지여성국을 환경복지국에 통폐합 여성복지과 존치
 - ※ 여성회관, 여성수련원의 지도·관리
- 여성정책업무의 이원화
 - 여성정책업무와 여성복지업무
- 대·내외 여성관련부서의 혼선초래
- 부서간 업무협조 강화로 이원화 현상 극복
- 여성정책 추진상 무제 요인의 사전방지 : 업무소관의 명확한 구분 등
- 새로운 여성정책 개발 확대를 통한 기능상 차이점 인식

[시정·처리요구]

여성단체 회원중심의 정책활동에서 탈피하여 농·어촌여성, 소외된 여성등 폭넓은 여성계층에 대한 사회참여의 여성정책 개발필요

[처리결과]

- 농어촌여성 욕구조사 실시
 - 계획수립 : 2월
 - 조사요원 교육 : 3월
 - 조사기간 : 4월
 - 조사분석 및 교육프로그램개발 : 5~6월
- 도단위 순회교육 실시 : 5회 /1,000명

- 교육기간 : 농한기(11, 12월중)
- 교육기관 : 시군청 및 마을회관
- 농촌여성 지도력향상 교육 : 3회/240명
 - 교육기간 : 8월
 - 교육기관 : 동해수련원
- 교육평가 : 12월

○ 環境福祉局

[시정·처리요구]

팔당호등 한강수계수질개선대책과 관련하여 강원도가 경기도에 비해 대정부에 대처하는 강도가 미흡하였는데, 강원도민의 생업문제와 직결되므로 인해 반대했던 것으로, 지역주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실익이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것임

[처리결과]

- 강원도적 논리개발 대응으로 수변구역, 보안림지정시 주민대표,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지정 토목하는등 규제사항을 완화하였으며
 - 물이용 부담금을 상류지역 물사용자가 부담토록 하였으며
 - 앞으로 물이용부담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시도간 협의를 강화하겠음.

[시정·처리요구]

강원자연생태환경 영상물제작사업에 13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제작하는 것이라면 관광객 유치홍보특면과 활용방안을 고려하여 영상물 제작을 하여야 할 것임

[처리결과]

- 강원자연생태환경 영상물은 총4편으로 '99. 2월중 과업이 완료될 것이며
 - 이 영상물은 3개국어 제작되어 도내 관광자원이 소개되는 등 관광홍보를 겸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음.

[시정·처리요구]

하천수질오염원관리의 GIS전산화 사업이 21세기 정보화사회가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전산화에 대한 계획과 현실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전산화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임

[처리결과]

- 보건소의 전산화 사업은 국비지원으로 4개 보건소를 설치중에 있으며
 - 2002년까지 전보건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연차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 아울러 관련공무원의 전산화 교육은 완료한 상태임.

[시정·처리요구]

축산농가의 오·폐수방류로 인하여 식수원에 오염이 가중되고 있는데 도내 축산농가에 대한 일제조사후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

[처리결과]

- 축산폐수배출시설 특별단속 계획을 12월중 수립하여 시군에 시달하였으며
 - 원주 축산폐수 사고지역은 현지조사 후 위반업소 9개소를 적발하여 검찰에 고발조치 하였음.
 - 앞으로 상수원상류 및 대규모 축산단지에 대한 특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음.

[시정·처리요구]

건설폐기물처리장설치 적정 통보시 사전에 반드시 도 관계관이 현지출장하여 타당성 및 여건조사, 주민여론청취등 민원 발생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후 통보토록 할 것

[처리결과]

- 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시군과 합동으로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 집단민원 발생예방에 최선을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음

[시정·처리요구]

정선군 신동읍 예미지역 건설폐기물 처리장은 입지조건이 부적절하므로 적정통보취소 또는 허가취소토록 할 것

[처리결과]

- 사업시행 주체가 민간인으로 관련 법령에 의하 적법절차를 이행하였음은 물론
 -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사항에서 행정기관이 임의의 적정통보 취소는 불가함.

[시정·처리요구]

도내 건설폐기물처리장 설치관련 집단민원들을 조기해결토록 적극 노력할 것

[처리결과]

- 집단민원 예방을 위해 신규 사업계획이 제출되면 시군과 합동으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해당 주민들에게 행정예고제(사업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 99년에는 집단민원 사전예방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을 작성하여 활용하겠음

[시정·처리요구]

건설폐기물처리장 명칭이 혐오감을 주어 민원발생 확대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향후 명칭을 『건축물골재 재생산공장』, 『건축물골재 재생산 사업장』 등으로 개칭토록 할 것

[처리결과]

- '98. 11. 25 환경부에 명칭변경 건의
- 폐기물중간처리업 명칭을 「자원재생산처리업」 또는 「건축물재생처리업」으로 변경요구 하였음

[시정·처리요구]

공공건물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형식적인 곳이 너무도 많음. 일제 점검후 가능한한 개선토록 할 것

[처리결과]

- '99. 1~3월까지 시군자체 계획에 의거 장애인 편의시설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담당공무원 교육을 1월중 실시하여 개선조치해 나가겠음
- 조사대상 : 38종
- 단기계획 : 99. 6월까지
- 장기계획 : 2000. 4월까지 개선조치

[시정·처리요구]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이 부실한 곳이 많고 무계획하게 추진된 곳이 많은데 전체 작업자에 대한 실태파악을 실시하여 개선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 업종 선택과 품목개발로 장기적인 물량확보와 기능훈련실시 등으로 품질향상을 제고하고
- 자립기반 확보될 때까지 체계적인 홍보 및 행정지원
- 앞으로 장애인 고용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장애인 생산품 판매촉진 홍보책자를 발간 활용해 나가겠음.

[시정·처리요구]

도내 장애인전용 주차자리는 모두 눈에 잘 띄는 황색선으로 표시하고, 현관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 표시토록 할 것

[처리결과]

- 98. 12. 8일 장애인 편의시설(주차장) 관련 시군 사회복지과장 회의를 실시하여 개선책을 강구토록 조치하였음
- 99. 1월중 담당공무원 교육실시하여 이행을 촉구해 나가겠음

[시정·처리요구]

지역의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정확한 조사없이 선정되어 대상자 아닌 사람이 선정되는 사례가 있는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생활보호대상자는 본인 신청과 읍면동장의 직권조사를 병행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현지조사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음
- 99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은 보다 철저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시정·처리요구]

도내 27개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하여 정상적인 의무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것

[처리결과]

- 장애인의 능력에 맞는 직업재활을 통한 기능인력을 확보하고
-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협조하여 장애인의무 고용시 인센티브제 적용
- 장애인 고용 우수업체 홍보 및 시상, 기관단체장 간담회 및 협조서한문 발송 등 도내 5개

지방노동사무소와 고용촉진 공단과의 고용대책을 적극 협의 추진해 나가겠음

[시정·처리요구]

중부지역에 발생하는 유행성 출혈열에 대하여 국비보조사업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나, 총 36,255건중 8,408건은 무료접종이 안되고 있어 대책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유행성출혈열 무료접종은 국가에서 직접 관리가 필요한 농림업종사자중 의보대상자를 중심으로 접종을 실시하고 이으며
- 주민 전원에 대한 무료접종은 예산사정상 어려운 실정임
- 앞으로 시군에서 자체사업을 확보하여 무료접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음

[시정·처리요구]

연막소독에 사용하는 살충제가 인체에 유해할 뿐 아니라 가축 사료에 접촉되어도 유해하므로, 살충효과만 얻을 수 있는 방안과 개선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 방역약품은 살충제와 살균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 연막소독시에는 주로 살충제를 가열하여 살충연료를 800~3,000배로 희석하여 사용함으로 유해성이 작아지게 됨
- 앞으로 효과적인 모기성충 구제를 위하여 모기서식지를 중심으로한 환경개선등 미생물 모기의 생활습관을 이용한 구제와 분무소독 등을 중점실시하고 필요시에만 연막소독을 실시하겠음

[건의사항]

시각장애인용 점자도서관 설치, 농아들을 위한 수화교실설치에 대한 예산확보 및 대책마련

[처리결과]

-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설치와 관련 2월중 타시도를 견학하고 소요예산 판단등을 거쳐 예산(추경)을 확보토록하고
- 농아인 수화교실은 강원도농아인협회 농아인 수화통역센터에 수화교실을 병행 설치 운영할 계획임.



※ 공무원 수화교실 운영(4월) : 40명

○ 道立江原專門大學 所管

[시정·처리요구]

대학의 시설규모에 비해 시험실습기자재 부족, 교수 및 강사진 대우가 타대학에 비해 열악하여, 사기저하 우려 및 우수교수진 확보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 만큼 개선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 대학자체 확보기준 설정 : 총 7,616점 9,302백만원
- '98확보실적 : 총 4,460점 2,171백만원
- 개선대책
 - 강원지역 대학간 첨단장비 공동활용협약에 따라 고가장비 타 대학기자재 적극 활용
 - ※ 협약체결 : '98. 11. 18
 - 동일기자재 중복구입 지양
 - ※ 공동·실험실습실 설치검토 및 학과공동활용 방안 마련
 - 필수기자재 우선순위에 의거
- 연구보조비 지급(월정액)
 - 조교수 : 월 400천원
 - 전임강사 : 월 350천원
- 교원연구비 국비지원 건의
 - 국회건의 : '99. 11. 23
 - 교육부건의 : '98. 12. 31
- 개선방안 강구
 - 월정액 상향지급 검토 : '99 도립대학장협의회 논의예정
 - 성과금 지급방안 강구 : 대학자체예산활용(기성회계)

[시정·처리요구]

대학의 경쟁력확보와 강원도가 원하는 대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설치과목의 특성화(강원도의 특성을 살린 임업 및 어업관련학과 집중육성·발전), 타 대학과의 차별화에도 각별한 노력이 요구됨.

[처리결과]

- 설치학과 : 4계열 11학과
- 입학정원 : 440명
- 특성화 육성학과 : 수산해양계열 4개학과
- 특성화 지원학과 : 기타계열 7개학과
-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학과별 특성화계획 수립

[시정·처리요구]

'98년도 입학생 수능성적을 볼 때 260점대 이상이 5명에 불과, 성적우수학생 유치노력이 부족하였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 주요홍보내용
 - 우수고교 순회홍보활동 전개 : 3회 18명
 - 신입생 모집요강 배부 : 전국 1,146개교 1,300부
 - 일간신문광고 : 5개지 8회
 - 지방지 3개지 6회
 - 중앙지 2개지 2회
 - 입시전문잡지 광고 : 7개지
 - 도내 시군별 유선방송 실시 : 18개 시군
- 원서접수마감후 입학성적사정결과 성적 우수자 개별면담 추진
- 우수학생 장학지원대책 강구 : 장학금, 기숙사제공등

[건의사항]

세계 속의 대학으로 성장·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학의 특성화를 기할 수 있는 우수한 실험실 습기자재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21C대학장기발전 구상실설치 2천 5백만원, 대학 축구부 활동경비 2천 5백만원, 화물자동차 구입비 2천만원, 20개 동아리 운영등 1천 6백만원, 실습선 희망봉호 개조비용 5천만원, 양어장 시설비 6억원등 총 7억 3,600만원의 예산확보 요망

[처리결과]

- '99 당초예산 확보실적



※ 실습장 설치비 : 100백만원

- 활용계획
 - 양어장 실시설계비 20백만원
 - 해수유입 및 배수시설설치 80백만원
- 미확보예산 조치계획 : '99. 1회추경예산 요구예정

○ 江原道教育廳 所管

[시정·처리요구]

행정사무감사 관계자료와 증인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할 때 AMK공장은 27-28억원이면 매입이 가능했던 상황임에도 31억 5백만원(부가세 뺀 금액)에 매입한 것은 담합에 의해 3-4억원 더 준 것으로 밖에 볼 수 있음. 이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처리결과]

AMK측이 거론하였다는 27~28억원은 당시 관리인 길대경의 사적인 의견에 불과하며 95. 9. 20 삼성중공업측과 37억원에 가계약하였으나 기술이전문제로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점을 보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뺀 31억 5백만원에 매입한 것이 담합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음. 앞으로 이러한 업무처리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음.

[시정·처리요구]

당초 사업계획서엔 개·보수비로 3억원을 계상했음에도 '97년도에 4억여원의 개·보수비를 사용 하고도 또 다시 '99년도에 개·보수비로 19억 3천만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예산낭비뿐 아니라, 이 사업이 너무도 무계획하게 추진된 것임을 알 수 있음. 이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처리결과]

당초 AMK건물 수리계획은 칸막이설치등 간단한 내부수리만 계획하여 97년도에 4억여원을 집행하였으나 이러한 부분적 수리만으로는 공동실습소와 춘천기계공고에 필요한 실습소 및 기숙사로 활용하기가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었음. 이에 따라 97. 9. 6 동건물의 전반적인 보수를 위해 설계용역을 의뢰한 결과 벽체·창호·방수와 전기시설, 냉·난방시설, 통신시설, 소방시설 등에 19억3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동금액을 99년도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임. 99년도 AMK건물 개·보수비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공사에 완벽을 기하여 우수기능인 양성

에 이바지하고자 함.

[시정·처리요구]

공공실습장 용도로 매입한 AMK공장건물은 향후 활용계획을 보더라도 2개층은 남는 공간채우 기식이라서, 효과적인 공간활용시(11억 5천만원을 들여 '96년 8월 20일 공사를 착공한 교실 9실 실습실 5실공사는 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분석이 가능함.

AMK공장 매입예산은 7월 19일에 확정되어 내려온 만큼, '96년 8월 22일에 착공한 교실 및 실습실 증축은 하지 않아도 되었음에도 공사를 강행하여 결국 11억 5천만원의 예산 낭비하였음. 이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처리결과]

춘천기계공고에 96년 교실 9실과 실습실 5실을 증축한 것은 정부의 직업교육확충사업계획에 의거 94년도에 신설된 토목과와 건축과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95년도에 이어 증축한 것임. 특히 토목과와 건축과는 경공업계열학과로서 교육·실습과정의 특성상 중공업계열학과와는 분리운영해야 하고 교실과 실습실을 동일건물내에 배치해야 하므로 주로 기계·금속계열이 배치되는 AMK건물내에 배치하기가 곤란함. AMK건물 매입은 당시 직업교육확충사업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급히 추진되는 과정에서 공동실습소와 춘천기계공고의 중공업계열 첨단실습실과 기숙사확보가 시급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중복투자라고 할 수 없음. 향후 각종 시설사업계획 수립시에도 장기수용계획과 활용계획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복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시정·처리요구]

공유재산매입시 법으로도 2곳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토록 하고 있음에도 나라감정평가법인 한 곳에만 감정을 맡기는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함. (향후 나라감정에는 일체의 감정을 맡기지 말 것) 이에 대한 시정

[처리결과]

부동산매입시 관계법령에 의거 2개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가한 금액이하로 매입하여야 하나 96. 8. 6 나라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이 5,043,015,300원으로 AMK와의 협의가격 3,450,000,000원과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2개기관 평가의 실익이 없고 감정수수료 420여만원만 낭비된다는 단순한 생각에서 1개기관에만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음. 본 건 업무담당자에 대하



여는 업중 주의촉구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음.

98. 11. 21부터 현재까지 나라감정평가법인에는 부동산감정평가를 의뢰한 사실이 없으며 앞으로 가능한 의뢰하지 않겠음.

[시정·처리요구]

'93년도에 감정가가 45억원이었던 공장을 '96년도에 감정가가 50억 4천만원이 나온 것은 담합에 의한 감정가 부풀리기라고 볼 수 밖에 없음.

(이것이 담합이 아니라면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음. 이러한 감정가에 대해 문제제기 하지 않은 관계자는 직무유기를 한 셈임) 이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처리결과]

'93년도에 비해 96년도 감정가가 상승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공신력있는 감정평가기관에서 3년간의 부동산가격 상승분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하였고 감정평가전 AMK측과 매매협의를 금액은 감정가보다 훨씬 낮은 34억5천만원이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며 담합에 의해 감정가를 부풀려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

[시정·처리요구]

고등학교 급식 전면실시는 '98년도에만 91억원이란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함에도 대부분의 학교에서 급식희망자가 30~40%에도 못미치고, 학교에서도 추진에 난색을 보이는 것이 많은 실정임.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고등학교 급식 전면실시는 학교별 사업효과 및 타당성 검토, 그리고 제반여건들을 고려하여 문제가 심각한 학교는 사업중지 또는 보류하여야 할 것임.

[처리결과]

고등학교급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98년 12월 급식운영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학부모 급식비부담 경감과 양질의 급식을 위해 99. 1. 15 고등학교 행정실장 회의시 학교급식의 직영을 권장하고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시달하였음. 향후 급식추진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실정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시정·처리요구]

AMK 공장매입건과 고등학교 전면급식과 관련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위원회는 도 교육청의 주요정책 결정권자들이 너무도 무계획 무소신 무책임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 대해

질책하지 않을 수 없음.

그리고 도 교육청의 재산매입, 매각과 각종 공사와 관련하여 상당한 의혹이 제기되었는데도 이러한 점에 대한 반성없이 앞으로도 이러한 자세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감사원 감사, 검찰에 고발하는 문제등도 고려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함.

[처리결과]

AMK재산 매입, 고등학교급식 전면실시의 추진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의 검토가 미흡했던 점도 있었으나, 현행 도교육행정의 제도와 여건상 정부방침에 의한 사업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데는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산 매입·매각, 공사 등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담당자의 업무소홀이나 무지로 인해 관계규정을 불이행하거나 불합리하게 처리한 사례는 있지만 담합 등의 사례는 없었으며 향후 업무추진시 이와 같은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시정·처리요구]

고교급식 전면실시와 관련, 급식희망자 200명이상 학교는 급식위탁업자 선정시 반드시 공개입찰도록 할 것

[처리결과]

99. 1. 15 지역교육청 지원과장 및 고등학교 행정실장 회의시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로 급식위탁업자 선정·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급식시설 설치 및 식품조달과 관련한 비리를 근절하도록 지시하였음

[시정·처리요구]

교육청에서 관리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난방비 및 운영비 부족으로 이용자들의 불편과 민원이 많은 바 개선책을 마련 할 것

[처리결과]

운영비예산 감축으로 난방비가 부족하게 된 공공도서관은 예산을 추가지원하여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 공공도서관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음



[시정·처리요구]

교내음용수 수질검사결과 수질개선 대책이 미흡한 점에 대한 시정조치

[처리결과]

학교 먹는물 수질개선을 위해 99년도중 126,000천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정수기 35대를 보급할 계획임

[시정·처리요구]

도내 급식학교 운영자체와 위탁급식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 마련

[처리결과]

학교급식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다양한 식단으로 양질의 급식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토록 할 계획이며, 위생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학교별로 급식위생 및 안전관리자를 지정 운영하도록 할 계획임

[시정·처리요구]

담지역학교 통학용 장학선 2척이 물로분교 2명, 조교분교 8명의 학생을 위해 운영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초래한다고 보는데 장학선 운영을 재검토할 것

[처리결과]

춘천교육청 소속 장학선 2척(강원605호 6.39톤 9노트, 강원606호 4.29톤 8노트)은 속도가 느리고 낡아 매각처분하고, 99. 3. 1 대봉초-동촌분교장의 폐교로 불필요하게 되는 화천교육청 소속 장학선 1척(강원 505호 5.39톤 12.5노트)을 춘천교육청으로 관리전환하여 운영함으로써 장학선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할 계획임

[시정·처리요구]

도내 남자, 여자 중·고등학교를 남·녀공학 중·고등학교로 통·폐합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기존의 남자, 여자 중·고등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것은 학생수감소로 인한 통·폐합이나 학과개편등의 사유가 있어야 추진이 용이하며 단순히 남·녀공학을 전제로 한 통·폐합이

나 개편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그러나 앞으로 지역사회나 학부모가 통·폐합을 요구할 때에는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러한 방식에 따라 99학년도에 태백기계공고를 남·녀공학으로 개편하였음

다) 産業經濟委員會

○ 農政山林局

[시정·처리요구]

대형화 농기계 억제 및 농기계 부채감소 방안 대책 강구

[처리결과]

- 주요농기계 적정보유대수 및 연차별 공급계획 수립
 - 시군별 보유목표량 설정 및 연차별 공급계획 수립('98. 5. 18)
 - 작물별 경영규모별 기계화모델 제시('97. 9. 3)
 - 경영규모별로 가장 적합한 농기계 종류 및 규격선택모델 제시로 적정 규모의 농기계구입 유도
 - 전문경영체 중심의 대형기계 지원 :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쌀전업농생산조직등 농기계 공동이용으로 이용을 확대
 - '99농업기계화사업 시행지침시달시 농기계구입 부채감소방안 시달('99. 1. 15)

[시정·처리요구]

백합 등 절화류 출하시기 조정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소득증대 방안 강구

[처리결과]

- 백합등 절화류는 출하시기 조절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재배법임
 - 수출물량은 가격과 수출시기를 조정하여 추진중에 있음
- '99년 사업계획 수립시 출하시기 조절 예정임(1월중 협의회개최 예정)
 - ※ 가격이 높은 시기
 - 2월 : 졸업시즌 · 5월 : 어버이날 · 8월 : 오봉절 · 9월 : 행사계절
 - 12월 : 크리스마스, 정월
- 행사시기에 맞추어 틈새시장 공략추진



[시정·처리요구]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 방안 강구

[처리결과]

- '99농특산물 해외시장개척 활동계획
 -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 4회
 - 동경 (3월), 시카고 (5월), 홍콩 (8월), 상해 (9월)
 - 해외 농특산물전 개최 : 1회
 - 미국 뉴욕 (9월)
 -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 1회
 - 일본 (5월)
 - 해외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 1회 (10월)
- 농특산물 수출경쟁력 강화
 - 가공식품수출 포장디자인개발지원
 - 4개품목 내외, 디자인개발비의 50%
 - 수출상품 식품영양분석 수수료 지원
 - 60개품목 내외, 품목당 분석수수료의 50% 지원
 - 수출실무교육 실시
 - 첨단농업기술연수센터에 “농특산물 수출반”과정 편성 추진
 - '99. 5월중 (1박 2일), 1기 40명 (생산농가, 수출업체)

[시정·처리요구]

일본 오사카에 설치한 농수산물 유통공사를 통한 수출증대 방안 강구

[처리결과]

- 오사카 전시장 운영을 맡고 있는 한국물산(주)의 부도로 전시장 장소 이전 관계등 문제점 발생
 - 향후 현지 운영체제가 정비될때까지의 상황을 보아가며 지금까지의 운영실적 향후전망, 위탁기관의 현지운영 능력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후
- '99 상반기중 재계약 여부결정

[시정·처리요구]

한우대상 브루셀라접종 후유증으로 인한 농가피해 대책 강구

[처리결과]

- 한우 접종은 제주도에서만 실시로 우리도에서 피해농가가 없고 젓소를 대상으로 실시
- 피해현황
 - 예방접종두수 : 355농가, 8,334두
 - 피해발생농가 : 171농가, 507두
- 피해농가 조사 및 채혈두수
 - 기간 : '98. 10. 19 ~ 11. 30(3차)
 - 채혈두수 : 203농가 2,165두
- 보상금 지급지침 시달('98. 12. 17)
- 보상액(두당)
 - 유산태아 : 87천원
 - 유산어미소 : 3백만원 용자 (연 3%, 5년거치 10년 상환)
- 유산어미소에 대한 보상세부지침은 추후시달예정

[시정·처리요구]

소 전산화 사업 문제점의 개선방안 강구

[처리결과]

- 농림부 추진방향 변경('98. 7. 23)
 - 사업대상을 모든소에서 정부시책 참여우로 조정
 - 사업관리주체 : 시군 → 축협(축협 금융전산망 이용 기조치)
 - ※정부시책 참여 소
- 한우개량단지, 젓소산유능력검정 특수가축공제, 송아지생산안정제 종축등록사업

[시정·처리요구]

정부양곡 도정과정 철저 감독 및 부산물(쇄미, 설미 등) 불법유통 철저 감시감독 체계화 수립 방안

[처리결과]

- 정부관리양곡 가공청산 관리요령시달('98. 10. 2)
 - 가공청상과 관련 예상문제점 제시
 - 가공일보 접수시 일일원료곡 책임 생산량 확인



- 가공지시 건별 처리과정 1회이상 불시점검 이행
- 가공청산 업무추진 일제점검('98. 10. 12 ~ 10. 16)
 -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지시
- 부산물 변상가격 현실화 조치('98. 11. 1 고시)
 - 쇠미, 설미, 변상가격 차등화
 - 변상가격을 시중가격에 접근시켜 불법유통 사전차단

[시정·처리요구]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농특세사업 지원대상 농가 철저 감독강화 방안 대책 강구

[처리결과]

- 농업투·융자사업 관리책임자 지정 및 관리대장 비치 확행
 - 대상 : 정부지원 시설·장비일체
 - 관리책임 : 시장, 군수(10백만원 미만은 읍면장)
 - 사업장 표지판 설치관리
 - 50백만원 이상 투자 사업장 시설
 - 사업부서별 현장 지도감독 철저히행
 - 농촌투·융자사업 성과분석 홍보강화
 - 농림사업 종합평가 실시
 - 시기 및 대상 : '99. 2월, 18개시군
 - 대상사업 : 42사업(자율21, 공공21)
 - 평가내용 : 추진상황, 정착이행 상태, 지방비 지원실적, 자금집행 및 진도관리 농·축산물 수급 가격안정 노력등
- 평가결과 우수시군 가산금 지원

[시정·처리요구]

집중호우, 장마 등으로 과수재배, 벼농사 농가피해 상황 조사 철저와 복구 지원책 강화방안 강구

[처리결과]

- 농업재해 발생시 신속 철저한 조사 실시를 위한 추진체계 확립
 - 합동조사반 편성운영 : 행정, 농업기술센터, 농가대표 등
 - 피해신고 창구설치 운영 : 읍면동

- 담당자 및 조사자 교육실시 : 피해조사 요령 및 복구지침
- 중앙부처와 도간 신속복구 대책강구
 - 복구대책과 소요예산 조기확보
 - 대대적 일손돕기 추진

[시정·처리요구]

경지정리 및 객토사업에 따른 농가 불만해소 방안 강구

[처리결과]

- 경지정리사업
 - '99. 1. 7 농림부 국고상향지원 건의 : 중앙기준단가를 현 25,240천원/ha를 40,000천원/ha으로 상향하여 국비 80%지원건의
- 객토사업
 - 융자단가 인상 중앙과 협의추진 : 농림부에서 현행 1,200천원/ha를 2,500천원/ha로 조정 검토중
- 경지정리사업
 - 중앙과 지속적인 유대 및 개선협의
 - 봄마무리 계획변경시 사업비 절감을 위한 철저한 검토
 - 봄마무리 예산배정시 국비 추가지원을 위한 최대한 노력

[시정·처리요구]

농산물 원산지 표시 철저를 통해 도내 농산물 보호대책 방안 강구

[처리결과]

- 대상품목 : 428품목
 - 수입 농산물 : 175 품목
 - 국산 농산물 : 148 품목
 - 농산물가공품 : 105개 품목
- 농산물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치운영
 - 도·시군, 유관기관(농검, 농·수·축협)
- 부정유통 신고 또는 고발 포상금 지급
 - 원산지표시 위반자를 신고한자는 물량에 따라 30~1,000천원 지급



- 합동단속반 편성운영 : 시군별 월1회 이상
 - 행정, 농검, 농·수·축협등
- 사법경찰 관리지명 공무원 교육실시
 - 농업공무원교육원(수원) : 37명
- 명예감시원 활동강화 : 125명
- 홍보전단 제작배포 : 100천매

[시정·처리요구]

한우와 젓소의 자연종부 증가에 따른 부작용사례 계몽 및 인공수정 강화를 위한 예산지원 방안 강구

[처리결과]

- 대농민교육, 가축인공수정사 등을 통하여 지속적 홍보 및 계몽실시
- 번식우 사육농가에 간이보정틀, 유도책등의 설치비 지원
- 번식우사 표준설계도 개발보급

[시정·처리요구]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 농어촌진흥기금 등 농정산립국 소관 각종 기금 운영을 통한 이자 수입 증대 방안 강구

[처리결과]

- 효율적 기금운용 관리계획 수립시행 : '98. 12. 10
- 조치사항
 - 기금예치는 도금고 지정대상으로 일원화
 - 높은 이율 종목을 선택하되 반드시 안정성을 고려하여 예치은행과 종목결정

[시정·처리요구]

품질인증 농산물에 대한 지원책 강화 방안 강구

[처리결과]

- 대상품목 : 51개 농산물 및 추산물
- 구분 : 일반, 유기, 무농약, 저농약, 축산물

- 품질인증 농산물 홍보강화
 - 언론매체 활용 : 신문, TV등
 - 홍보물제작배포 : 50천매 (농검)
 - 원산지표시 위반자를 신고한자는 물량에 따라 30~1,000천원 지급
- 지원사업 품질인증 농가 우선지원 협의
 - 각시군 및 관련실과, 유관기관
- 품질인증품 판매망 확대
 - 기획판매전 및 지정판매점 확대
 - 각종판매행사시 인증품 우선출품 유도

[시정·처리요구]

유리온실 시설농가에 대한 지원대책 강화 방안 강구

[처리결과]

- '98양액재배시설 개선비 지원 : 840백만원
- 첨단시설 기술지원 컨설팅 운영 : 3회
- 온실면적 : 26.5ha (채소 20, 화훼 5.7)
- 농가수 : 114농가
- 지원대책
 - 수출유망품목으로 재배전환 추진
 - 운영자금 및 시설개보수 자금지원 : 국고, 농안기금, 농어촌진흥기금 등
- '99 자금지원 계획
 - 유류대 110백만원 (5개 경영체)
 - 시설개보수 490백만원 (화훼시설)
 - 농어촌진흥기금 200백만원 (정선군)

[시정·처리요구]

퇴비증산 운동의 구체적 계획 수립방안 강구

[처리결과]

- '99여름철 퇴비생산 계획수립추진
- 생산계획 : 732톤



- 추진기간 : 7월 ~ 9월
- 추진방향
 - 농협흙살리기 운동과 연계추진
 - 퇴비생산화운동 전개 및 홍보로 농가자율 참여유도
 - 우수마을 시상제실시

[시정·처리요구]

시설원예농가 유류값 부담에 따른 지원대책강화 방안 강구

[처리결과]

- 에너지 절감대책 사업추진
 - 사업량 : 18개소, 16ha
 - 사업비 : 498,080천원
 - 사업내용 : 연탄보일러, 심야전기, 벙커C유등 보일러 시설교체등
- 수출원예농가 유류대 융자금 지원
 - 사업량 : 5개경영체(원예)
 - 사업비 : 110백만원(개소당 20~25백만원)
- 지원자금 : 농안기금(년5%, 1년상환)
- '99원예시설농가 시설개보수 지원계획
 - 지원대상 : 에너지절감 대체시설(보온커튼, 연탄보일러등)
 - 지원액 : 500백만원(국10, 지방10, 융자60, 자부담20%)

[시정·처리요구]

강릉시 왕산면 화란봉 유한화훼공사에 대하여 자부담 우선 확보와 시비 부담을 전제로 도비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

[처리결과]

- 토지구입비 및 종지구입비는 자체해결가능하나 사업비에 대한 투자 애로
- 강릉시의 대책요구시 도비추가 지원방안 예정
- 도비추가 지원 가능한 시책을 요구해야 지원가능 : 2월경 종합계획 수립

○ 産業振興局

[시정·처리요구]

국소관 각종기금 운영채신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방안 강구

[처리결과]

-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98말 현재)
 - 조성목표 : 1,000억원 (2002까지)
 - 조성실적 : 431억원 (기금 360, 이자 71)
 - 관리현황
 - 3개은행 5개계좌 43,112백만원
 - 제일 (3계좌) : 36,988백만원
 - 강원 (1계좌) : 2,000백만원
 - 농협 (1계좌) : 4,124백만원
 - 예치방법 : 정기예금, 예치이율 : 12% ~ 9%
 - '99결산 예상액 : 494억원
 - 수입 : 10,513백만원 (출연 6,000 이자 4,513)
 - 지출 :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4,226백만원)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98. 7. 25)에 따라 정부 또는 지자체의 예금이 2001. 1. 1부터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업금전신탁등 종전의 고금리 상품보다는 안정성 위주로 운영
 - 도금고의은행의 이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
- 운수종사자연수원 건립기금 조성('98말 현재)
 - 조성목표 : 75억원 (2001까지)
 - 조성실적 : 48.6억원
 - 관리현황
 - 2개은행 11개계좌 4,860백만원
 - 제일 (7계좌) : 2,485백만원
 - 강원 (4계좌) : 2,375백만원
 - 예치방법 ; 금전신탁, 정기예금 , 예치이율 : 17% ~ 10%
 - '99결산 예상액 : 51억원
 - 수입 : 294백만원 (출연 50, 이자 244)



- 지출 : 운송종사자교육비지원 (50백만)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 (98. 7. 25)에 딸 정부 또는 지자체의 예금이 2001. 1. 1부터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업금전신탁등 종전의 고금리 상품보다는 안정성 위주로 운영
- 도 금고은행의 이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

[시정·처리요구]

실업자, 실직자 대출의 원활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강구

[처리결과]

- 실업대책 대부사업 자격요건 완화 건의
 - '98. 12. 9도 주관 「유관기관실업대책 실무회의시」 근로복지공단(춘천지사)에 실업자 대부사업 자격요건 완화건의
- 건의요지
 - 1000만원이하 생계자금 대부는 신용대출
 - 기타 주택자금, 영업자금 대부는 담보요건 완화적용
- 1월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검토중

[시정·처리요구]

피부에 외닿는 물가안정 지도 대책 강구

[처리결과]

- ① 물가대책 위원회 운영활성화
 - 개최 정례회 : 매 분기 1회
 - 공공요금 안정관리강화 : 요금결정의 투명성, 합법성,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 강화
- ② 물가관리시스템 재정비 강화
 - 물가동향 조사분석 역량 확충
 - 소비자물가 분석대책 강구 : 월 1회
 - 주요품목 가져조사분석 : 월 1회
 -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확대 : 유급요원+공공근로요원
 - ※'99하반기 모니터요원 연수회 개최
- 현장위주 합동지도 점검 : 분기 1회
 - 지도점검반 편성 : 유관기관 합동

- ・ 특별점검기간운영 : 4회
- 소비자단체 참여 활성화
 - ・ 소비자중심 물가감시기능 강화
 - ・ 소비자단체 활동비 지원
 - ・ 소비자단체 연수회 개최(하반기)
- ③ 가격파괴확산 및 인센티브 강화
 - 가격인하 모범업소 인센티브 강화
 - ・ 상수도료감면, 종량제봉투지원 등
 - 가격파괴거리 확대 및 활성화
 - ・ 거리선포, 거리축제 대회 등
 - 물가안정관리 우수시군 시상
 - ・ 우수시군 상사업비 지원

[시정·처리요구]

물가대책위원회의 내실화 및 강화방안 강구

[처리결과]

- 물가대책 위원회 운영 정례화
- 개최시기 : 분기1회(필요시수시)
 - ・ 1/4분기 : '99물가안정및설날대비대책협의
 - ・ 2/4분기 : 소비자보호대책, 관광성수기 대책 협의
 - ・ 3/4분기 : 추석절 대책 및 상반기 추진상황 보고
 - ・ 4/4분기 : 연말, 연시, 김장철 물가안정대책 협의
-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 ・ 안건 및 토의자료 제출 의무화(참석기관별 1건이상)→물가대책위원 관심도 제고
 - ・ 회의자료 사전통보 : 심도있는 안건 심의

[시정·처리요구]

외지업자의 탈·불법 할인상행위 근절대책 강화방안 강구

[처리결과]

- '98외지 상인 불법, 상행위 단속 실적



- ※ 외지인의 상행위에 대한 별도의 단속 근거는 없음(단속애로). 다만 탈, 불법 상행위에 대해 개별법에 의거 단속(시군)
 - 불법광고물 설치 : 29건 9,700천원
 - 불법가설 건축 : 1건 3,000천원
 - 건축물 무단 용도 변경 : 시정 2건
 - 도로무단점용 : 1건 100천원
- 할인매장 설치관련 시·군인허가 심사시 적법여부 등 요건심사 철저 지시 ('98. 9. 26)
- 지역상공단체와의 협조체제 강화
 - 불법상행위 개선대책 공동노의 대응(상행위 장소제공 거절등)
 - 효율적 단속을 위한 유관기관 공조강화(행정, 세무 등)
 - 일과성 대형할인판매 상행위에 대한 개별법 저촉여부 철저 심사 철저(도로법, 건축법 등)

[시정·처리요구]

농공단지 입주업체 지원방안 강화 및 휴·폐업업체에 대한 특단의 지원대책 방안 강구

[처리결과]

- 입주업체 세제지원
 - 취득세, 등록세 : 면제
 - 재산세, 종토세 : 5년간 50% 감면
- 기업활동 규제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
 - 규제완화 발굴 중앙건의 : 8건
 - ※ 순회감담회(2회) 및 실태조사(1회)
- 기업활동 규제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
- 경영안정자금 지원
 -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등
- 판로지원
 - 시장개척단 파견 : 6회 45개업체(농공단지 12개업체 참여)
 - 향토기업제품 팔아주기운동(5회)
- 신기술 및 경영기업 연수교육
 - 기술연수교육 : 259명
 - 기술지원단 운영 : 68개업체
- 경영안정자금 지원확대

- 판로지원
 - 국제박람회 참가, 시장개척단 파견
 - 중소기업제품 우편주문판매 지원
- 창업촉진 : 창업스쿨 운영
- 신기술 및 경영기법 연수훈련 지원
 - 국내연수 300명, 해외연수 40명
- 농공단지 신규조정 : 홍천 상오안 농공단지(10,060평, 704백만원)

[시정·처리요구]

벽지노선, 비수익 노선 버스운송 업체에 대한 운송원가와 운송수입에 대한 검증방법 강화(전문 용역기관 의뢰 등)와 교통량조사 강화(년 2회 이상) 강구

[처리결과]

- 현행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 검증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결손액 산출
 - 평균승차인원 14명 미만 보상
 - ※ 전문용역기관 의뢰시 1억원정도 소요예산 추정되어 실익이 없음
- '98버스업체 운행실태 조사
 - 교통량조사 실시 : '98. 4 (161개노선 운행명령)
 - 운행실태일제조사 : '98. 7(여건변동노선 일제정비)
 - 161개노선 → 139개노선
- 교통량조서 계획수립 : 2월
- 교통량조사 : 2회(4, 9월)
 - 대상 : 139개노선
 - 내용 : 노선별 평균승차 인원 산출
- 손실보상금 지급
 - 교통량조사 결과 평균 승차 인원 미달하는 노선

[시정·처리요구]

벽지노선, 비수익 노선 운송업체의 의무사항 철저 준수이행 감독강화

[처리결과]

- 운행실태 일제 점검



- 점검기간 : 98. 6. 18 ~ 7. 11
- 점검대상 : 4시군 26노선
- 점검결과 : 교통여건변화로 이용객이 없는 22개노선을 벽지 노선에서 제외 조치
- 의무 및 준수사항 철지지시(98. 12. 2 지시)
 - 대상 : 시군 및 업체
 - 내용 : 운행사항 확인철저, 결행, 단축운행 사전 예방, 행정처분 확행 등
- 운행실태 불시점검 : 년2회
 - 대상 : 139개노선
 - 내용 : 인가 운행횟수 준수여부, 결행, 단축운행 사전예방
 - 위반사항 조치계획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관련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시정·처리요구]

시의버스 친절, 서비스 강화교육, 버스안 커튼, 안전벨트, 화장실, 대합실(여름은 시원하고 겨울은 온방장치 등) 등 점검철저 방안 강구

[처리결과]

- 버스·택시 지도단속(시군)
 - 단속인력 : 총 26개반 84명
 - 단속장비 : 차량 38, 사진기 161, 무전기 163, 캠코더 3
 - 단속실적 : (98. 1~12월) : 시내버스 301건, 택시 777건
 - ※ 도 자체단속
 - 기간 : '98. 12. 12 ~ 26(10일)
 - 단속 : 10개시군, 25건
- 운전자 제복착용 의무화 및 농어촌버스 안내방송 실시
- 운전자 운행실명제(자격증게시) 확행
- 계절별 운수종사자 친절봉사교육실시 → 택시대표자간담회 및 의식개혁 특별교육(99. 8월중)
- 차량정결 및 환경개선 추진(99년 상·하반기 2회)
- 시군 및 유관기관 합동 지도 단속추진 → 행정처분
- 시민단체 중심의 서비스평가제 및 모니터제 운영 → 교통문화 실태 및 시민여론 조사

[시정·처리요구]

운송업체에 대한 부당요금 징수, 불친절, 장시간 정차, 정해진 시간 주·정차 등 위법사례 단

속 강화

[처리결과]

- '98처리실적 주정차위반 단속실시(시군)
 - 단속공무원 : 241명(전담공무원 59, 공익요원 142, 청경 4, 일용직 36)
 - 단속실적 : 642천대
 - 이의신청면제 : 24천대
 - 과태료부과 : 610천대
 - 출석고지 : 8천대
- 주택가 이면도로 단속책임 윤번제 확행 → 간부공무원 책임자 지정
- 월별 집중단속대상 노선지정 관리 → 중점단속 실시
- 등하교 및 출퇴근시간대 집중단속반 편성 → 거리별로 주기적 순환배치(차량이용)
- 주정차 계도인력 확충 → 교통질서봉사대 활용(경찰서협조)
- 단속구간별 실적관리제운영 → 상하반기 실적평가
-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확행 → 과태료 부과, 징수
- 언론, 반회보, 시·군정지등 활용 → 주민홍보 및 계도 추진

[시정·처리요구]

강릉 버스(시외, 고속) 터미널 에스컬레이터 설치 등 안전사고 방지책 방안 강구

[처리결과]

- 에스컬레이터 미설치 배경
 - 당초 설계에 미포함
 - 건물구조상 설치불가
- 강릉시로 하여금 안전사고 방지대책 강구토록 지시('98. 12. 28)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 ※ 12월현재, 강릉시와 터미널 사업자가 계단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등 안전사고 예방 대책 협의중
- 안전사고 예방대책강구 실태 지속관기
 - 계단에 대한 미끄럼 방지 시설 부착여부
 - 사고발생시 응급조치 강화실태등



[시정·처리요구]

'98년 현재 도내에 가동중인 기존의 외국인 투자업체 지원 강화 방안 강구

[처리결과]

- 도내 외국인 투자업체 현황('98. 10월말 현재)
 - 업체수 : 21개업체 (가동 13, 휴폐업 8)
 - 휴폐업원인 : 자금경색에 따른 경영악화

[시정·처리요구]

위 외국인 투자업체 (21개중) 휴·폐업 8개 업체의 정상 가동지원 방안 강구

[처리결과]

□ 현행 지원제도

〈자금지원〉

- 신규입주기업 지원 : 연리 6.5% (연동제)
 - 시설자금 : 7억원이내 5년거치 10년
 - 운전자금 : 3억원이하, 1년거치 3년간
- 대체입주기업 : 신규입주기업에 준함
- 입주가동기업 지원 (농공단지입주기업)
 - 시설자금 : 공장증·개축, 기계증설→신규입주 기업에 준함
 - 경영정상화자금 : 경영정상화를 위한 운전자금 지원

〈입주업체 세제지원〉

- 국세 (법인, 소득세) :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5년간 50% 감면
- 지방세
 - 취득세, 등록세 : 면제
 - 재산세, 종토세 : 5년간 50% 감면
-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시행령 제정·시행 ('98. 11. 4) 으로 지원확대

□ 지원확대 내용

〈조세감면〉

- 대 상 : 산업지원서비스업,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등

- 감면세 :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관세(신고일로부터 3년이내)

〈국·공유재산의 임대 등〉

- 국유재산매입 : 매입대금 20년간 분할 납부 또는 1년범위내 납기연장
- 공유재산매입 : 조례가 정하는 범위내 분할납부 및 납기연장

〈자금지원〉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유치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요청시 고용창출 및 기술이전 등 외국인투자에 따른 국민경제효과와 입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금지원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

- 공장설립 승인등 외국인투자에 관련된 민원사무처리기간을 개별 법령상의 처리기간보다 단축 가소화 함.

〈향후 지원강화 및 경영정상화 방안〉

- 현행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관계법상 외국인투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및 차별화 규정은 없음
- 현행 지원제도내에서 특별지원방안은 없으나 외국인투자기업관리 차원에서 지원요청시 우선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음.

※ 기 지원현황 : 9개업체 1,660백만원

· 구조조정자금 : 2개업체 674백만원

· 경영안정자금 : 7개업체 986백만원

○ 國際協力室

[시정·처리요구]

수입, 수출 격차에 대한 원인분석과 중장기계획 수립 방안 강구

[처리결과]

중소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업무로서 현재 수출입 원인 분석 및 그에 따른 중장기계획을 수립중에 있음.

[시정·처리요구]

외국과전 연수공무원에 대한 연수결과보고서 내실강화 방안 강구



[처리결과]

- 향후 외국연수 공무원의 귀국보고서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 사전 연수과제 부여시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부여하고 연수중 분기 1회씩 중간보고서를 작성토록 하며 연수후 제출할 귀국보고서 작성계획을 연수종료 2개월전에 사전제출토록 하겠음.

[시정·처리요구]

길림성 주재 강원도 경제무역사무소 운영의 전반적 개혁방안(사무소 위치변경, 전시품교체, 경영방법 쇄신 등) 강구

[처리결과]

- 길림성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는 99. 3월 개소후 점차적으로 도내기업의 수출입상담 지원 및 동북3성의 지방정부 역할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고 더욱 발전된 무역사무소 운영방안으로
 - 동북3성의 중심지이자 최대시장성이 있는 장춘지역에 강원도무역관 건립으로 중국시장 진출거점 확보
 - 중국인 소비성향분석에 따른 신상품으로 매년 1회 교체, 각종 전시회, 박람회 참석시, 시장조사를 통한 판매가능 제품 참가유도 동북3성내 강원상품안내소 설치등 99년도에는 도내 중소기업의 대중국 수출활동 지원에 역점 운영

[시정·처리요구]

오징어 가공조합 해외시장개척단 시장조사 참여방안 강구

[처리결과]

각종 해외시장개척단과견 및 국제박람회 등 해외시장 개척활동시 관련조합과 협의하여 시장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

[시정·처리요구]

지사 외교 활동시 수행원 선정 초당적이며, 상임위 소속 우선 배려 원칙 확립 방안 강구

[처리결과]

- 그동안 지사 외교활동 수행원 선정시, 도의회와 협의하여 선정하여 왔음

- 앞으로는 의회사무처에 수행원 추천 의뢰시, 국제협력실 소속 상임위원 산업경제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추천하여 달리는 내용을 적시함으로써, 산업경제위원회와 협의회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음.

○ 農業技術員

[시정·처리요구]

화훼시설재배 농가에 화훼관련 기술지도 배양 및 각종 정보제공 강화 대책 강구

[처리결과]

- 장미 경쟁력 향상기술, 백합 병해충 방제 및 생리장해 대책 등 19개분야 자료 제공
- 강원농업 정보책자 활용 : 4회
- 현지 기술지원단 운영 : 3회
 - 행정, 연구, 대학교수, 지도합동
 - ※ 중앙단위 시설화훼 기술지원단 운영
- 우량꽃 생력재배, 국화 연3기작재배등 4분야 6개소 화훼 새기술보급시범추진
- 기술지원단 편성운영과 시험연구된 새기술 지속적 자료제공
- 화훼재배 및 생산동향과 병해충 방제등 기술지도 자료 제공

[시정·처리요구]

귀농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 강구

[처리결과]

- '95년이후 '98. 12월말까지 890명으로 40세이하 청장년층 증가추세 : (95)119, (96)176, (97)125, (98)470
- IMF이후 실업증가에 따른 귀농인증가
- 귀농인상담실 19개소(도1, 시군 18)설치로 정착애로 및 영농창업 안내
 - '98 : 1,350건
- 귀농인 영농교육 660명 실시 및 귀농인 가이드북 2,000부 제작지원
- 영농창업기금 지원 : 183명 30억원
- 귀농인 카드화 관리로 영농현장 중점지도
- 영농 정착단계별 요구에 맞는 상담안내와 교육 및 현장지도 강화



- 귀농인을 위한 영농기술 및 경영 모형활동 적정 영농설계 추진
- 영농 창업자에 대한 추수지도 철저로 성공적 영농정착 유도

[시정·처리요구]

보리재배 증산을 위한 보리병해 예찰과 방역체계 강화 대책 강구

[처리결과]

- 보리 재배현황
- ('97추과) 279ha ⇒ ('98) 270
 - 주재배지역 : 영동남부(삼척, 동해)
- '98병해 발생 실태
 - 5상중순 고온다습으로 붉은 곰팡이병 다발생(남부지방중심) : 35,345ha
 - 도내는 삼척, 동해시 중심 2회에 걸쳐 정밀 조사하였으나 발생면적 없음
- 생육재생기 정밀판단 웃거름 적기적량 사용 지도
- 출수기 지역별 순화예찰 강화
 - 병발생포장 입회방제 실시
 - ※ 보리 주재배지역 남부지방 지도기관 연계병해발생 정보수집 활용

[시정·처리요구]

환경농업을 위한 퇴비증산운동 강화대책 강구

[처리결과]

- 농촌 노동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
- 여름철 퇴비생산 활동 극히 미약
- 퇴비생산 우수마을 시상제(농정국)
- 농촌학습단체 및 작목별 영농회중심 퇴비증산 계도 : 18개마을 569농가 참여 123천톤 생산
- 새해영농 설계교육시 퇴비증산 교육 강화 : 18개시군 38,800명
- 여름철 퇴비생산 현장지도 실시
- 농산부산물 활용 양질퇴비 생산
 - 18개 환경농업 특성화마을 중심

[시정·처리요구]

농업기술원 자체에서의 화훼연구개발계획 수립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 '95년 화훼연구중장기개발계획 수립
- '97년 중장기 계획 수정 보완
- '95년 이후 추진실적
 - 수출나라 종구생산 및 절화재배 기술 개발
 - 시책건의 : 1건
 - 영농활용자료 : 3건
 - 기본종구생산 농가보급 : 50만구
 - 안개초등 기타 화종
 - 시책건의 : 1건
 - 영농활용자료 : 1건
- 매년 중장기 계획 및 환경여건 변화에 따라 시책과제 설정 및 연구계획 수립 추진
- 참고 : 시험연구 추진 방법
 1. 시험연구 사업 지침시달(청장 → 연구기관)
 2. 시험연구사업 개괄설계(연구기관)
 3. 분야별 사전 항목조정(분야별 사전항목 조정 심의회)
 4. 시험연구사업 설계 확정(연구기관 → 청장)
 5. 시험연구 사업결과 평가 및 결과 활용(분야별 결과 활용 심의회)

[시정·처리요구]

영농현장에서의 아이디어 개발 농가 농업경영인에 대한 보상책 강화방안 강구

[처리결과]

- 영농현장에서 아이디어개발 농가는 특허출원 실용신안 출원등의 보호를 받을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홍보계도하여 개발기술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겠음
 - 영농현장의 아이디어 개발산업은 시험 연구부 시험연구산업, 기술경영지도부의 지역특성화 사업·농업인 개발과제 사업이 있음
- 사업실시근거 : 농림기술개발사업 실시 요령 (농림부훈령)
- 사업비지원 : 과제당 3천만원내외 (농특세재원, 전액국비지원)
- 산업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추진요령 p17)
 - 농업인 개발과제의 연구성과로서 취득하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등은 주관 연구기관 또는 농업인의 소유로 함



· 다만, 시작품등은 기술개발 완료후 1년동안 주관 연구기관에서 기술보급 홍보자료 또는 현장적용 등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음.

※ 농업인 개발과제는 개발한 농업인에게 산업재산권을 부여하고 있어 별도의 보상책이 필요치 않다고 사료됨.

[시정·처리요구]

화훼농가 비가림하우스 지원책 강화방안 강구

[처리결과]

- 화훼 전업농가 육성을 위하여 '97년도 2개소 1.8ha 시범지원 계획에 있으며 일반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도 농정국에서 시책적으로 화훼재배 농가에 우선 지원되도록 협의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음.

[시정·처리요구]

감자젤리 기술이전을 위한 실질적 대책방안 강구

[처리결과]

- 횡성 우천농공단지 및 춘천 당림 농공단지 가공업체에서 기술업체에서 기술이전을 문의한바 있으나 자금부족으로 사업추진 곤란
 · 연구기술 내용을 신문, 방송등에 홍보하여 희망업체를 공모할 계획임
 ·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이전 가능성 협의 검토
 · 기술이전 업체가 선정되면 지역 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가공시설 설치와 운영을 위하여 도 차원에서 농특자금이나 중소기업 육성 자금등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 특산품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음.

[시정·처리요구]

씨감자 보급강화를 통한 감자생산농가 불만해소 방안 강구

[처리결과]

- 종자산업법 발효에 따른 생산주체 다변화로 요구물량 충족 기대
 · 기존 : 정부기관 주도
 · 개선 : 지방자치단체, 농협, 생산자 단체 참여 가능

- ※ 2001년까지 민간중심으로 단계적이관, 자율경쟁시대 돌입
- 농가설문을 통한 의견수렴으로 도 자체 개선 방안 강구
 - 조사대상 : 감자재배농가690호(시군)
 - 조사기간 : '99.1.15~ 1.31
 - 설문내용 : 씨감자생산관련 전반
- ※ 설문회수 분석후 개선대책 수립

[시정·처리요구]

품질인증획득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강화방안 강구

[처리결과]

- 도내 특화 농산물에 대한 청정성을 살리고 품질 우위확보를 위하여 성분분석을 통한 우수성 입증, 농약안전사용권장, 고품질 농산물생산 등 지속적인 기술지원 추진

[시정·처리요구]

집중호우, 장마 등 천재지변에 의한 농가피해 조사 및 지원책 철저 방안 강구

[처리결과]

도 농산지원과 소관으로 농산지원과에서 답변

[시정·처리요구]

벼 우수 신품종 장려 강화방안 강구

[처리결과]

- 벼 신품종 선발시험 수행
 - 내용 : 신품종의 지역별적응성검토
 - 장소 : 춘천 등 6개소
- 신품종 종자 생산
 - 원원종 : 원종 종자용
 - 생산량 : 10품종 150kg
 - 보급종 : 신품종 종자 농가 조기보급
 - '98 생산량 : 17품종 14.4M/T



'99 계 획 : 화동벼 등 우량, 신품종 생산 보급

[시정·처리요구]

벼싹 불량종균 유통조절 대책 및 기술 교육강화 방안 강구

[처리결과]

- 불량종균 사용실태 조사('98.12)
 - 흥천 : 4농가 300평 (수한 1,2호)
 - 정선 : 8농가 400평 (D-1)
 - 인제 : 1농가 60평 (장수)
 - 조치사항 : 조사결과 도청관련부서 통보,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새해영농설계 교육시 중점교육 공문시달('99.1.8)
- 기술교육 계획
 - 기술교육 계획
 - 과정명 : 새해영농설계교육 벼싹 재배반
 - 교육계획 : 18시군 46회 2,225명
 - 교육기간 : '99.1.9~ 2.27
 - ※ 질의하신 AX-3, 김제1호, 흑평은 기품종 등록되었음.

[시정·처리요구]

농약 잔류검사 강화 방안 강구

[처리결과]

- 농산물의 농약잔류와 관련된 연구사업의 지속적 추진
 - '99년도 시험연구사업 반영
 - 고랭지채소 재배지 사용제초제 안정성 구명시험(식물체 및 토양잔류분석) : 평창
 - 도내 주요 채소작물의 농약잔류성 분석
 - 농약 잔류 분석을 위한 전문부서가 없으며 현재 토양 및 비료를 분석하는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분석여건 조성에 어려움이 있음

[시정·처리요구]

농업인학습단체회관은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관명칭 변경 등 운영위원회 협의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조속히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관리하여야 할 것임

[처리결과]

-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97.7.2 도지사 결재후 가칭 “회관운영 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시로 회관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99.1.11일 농업인단체회장들이 회관운영위원회를 새로이 결성하여 1월중 법인설립 신고자 절차에 따라 추진중에 있으며 법인허가와 동시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중임.

[시정·처리요구]

'95년부터 환경농업 추진과 관련, 정부에서는 직불제 시행예고 및 농림부와 농협중앙회, 도본청 등에서 환경 농업부서가 신설되었는데도, 아직까지 「환경친화형농업」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환경농업」이라는 용어를 쓰도록 철저히 기할 것

[처리결과]

- '96년 농림부는 「21세기 농림수산 환경정책」을 수립하면서 「환경농업」에 대한 용어 정의 설정
 - 환경친화형, 환경조화형, 유기·자연농업등을 포괄적으로 「환경농업」 개념에 통합 사용토록 함.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환경농업」 개념에 통합 사용토록 함.
 - 농업기술원의 모든 문서와 보고서, 제출자료등에 「환경농업」으로 즉시 시정 사용하고 있음
- 첨언하여 농업기술원에서는 '95년부터 밭토양 정밀조사, 환경농업 특성화 시범마을 육성등 우리도 여건에 맞는 시범사업 개발보급에 노력하고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우리도 환경농업 실천의 선도적 역할 수행 및 조기정착 노력
 - 농업기술원내 환경농업 전담부서 및 인력배치등 제도적 장치 적극 보완
 - ※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요망

○ 海洋水產出張所

[시정·처리요구]

해수욕장 관광객 유치 출향인(고향을 떠난 사람) 상대 「고향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운동」 추



진계획 수립

[처리결과]

- 출향인사 「여름휴가 보내기운동」 추진
 - 계획 수립 : '99. 3월말까지
 - 출향 인사 : 재경도민회, 중앙부처, 공무원, 기타주요인사
 - 서한문 발송 : '99. 7월초
 - ※ 출향인사를 통한 홍보활동으로 관광객 적극 유치

[시정·처리요구]

해수욕장 익사사고 방지대책 강구

[처리결과]

- '99해수욕장 운영계획에 포함
수상안전관리 지침시달(시군)
- 수상안전요원 교육강화
 - 교육기간 : '99. 5-6월중(7일간)
 - 주 관 : 적십자사 강원지사

[시정·처리요구]

한·일 어업협정('98. 9. 24)에 따른 동해안 어민 연간 60억원(4,000t) 어획고 손실에 따른 단기·중장기 대책 강구

[처리결과]

- 어업구조조정(감척)사업 추진
 - '99계획 : 전국 262척 35,818백만원, 본도 34척 5,026백만원
- 어업질서 확립자금 지원
 - '99계획 : 전국 328척 3,280백만원, 본도 114척 1,140백만원
- 각종 어업자금 확대 신규지원
 - '99계획 : 영어자금 1,250억원, 어업경영안정자금 750억원, 조합경영개선자금 270억원
- 종합적인 어업진흥 제도개선 추진
 - 채낚기어선 저자망 겸업허가처분, 연간 50억원 소득예상

-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총어획, 허용량(TAC) 시범추진(본도:붉은대게)
- 어선유류비 인상억제 및 정부 수산물 비축자금 효율적 운용
- 어업 구조조정, 어업질서확립, 각종어업자금 확대지원 및 각종어업제도 개선지속 추진

[시정·처리요구]

오징어 자동할복기, 진공포장기 지원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책 강구

[처리결과]

- '97년도 ⇒ 시범사업으로 추진
 - 사업량 : 자동할복기 2대(동해1, 속초1)
 - 사업비 : 84백만원(도비24, 시비32, 자담28)
- '98년도 ⇒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
 - 사업량 : 자동할복기, 진공포장기 각 23대
 - 사업비 : 563,500천원(국비169,050 융자225,400 자담169,050)
- 당초계획 : 23대(강릉3, 동해9, 속초6, 고성5)
- 국비배정 : 6대(동해6, 속초5, 고성5)
- 추진내역 : 9대(속초9)
- 미 추진 : 7대
- 문제점
 - 오징어 어획부진으로 자동할복기 설치 필요성 인식 부족
 - 사업자의 융자 한도액까지 사용으로 추가대출 담보능력 상실
 - 경기불황으로 자금회전의 압박, 융자자담능력 상실
 - 기계개발 초기 단계로 성능결함(칼날등)으로 설치 기피
- 대책
 - 선상 자동할복을 통한 선도유지등 상품성 향상 홍보 지도
 - 정부비축 사업으로 선상 소포장 오징어 소비촉진 대책 강구: 위판가격의 30% 상향수매(48,000판)
 - 기계 결함사항 파악 개선조치 및 인력 절감 설치 유도

[시정·처리요구]

주문진 해수욕장 국민관광지 활성화 추진이행 방안 강구



[처리결과]

- 주문진 해수욕장은 '84. 7. 6일 관광지로 지정 '85. 4. 2일 조성계획 승인
- 기본시설 및 이용시설은 점진적으로 조성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강릉시 관광종합개발계획
 - 위 치: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 면 적: 1, 296m²
- 공공편의시설, 숙박시설, 기타 각종편의시설 설치
 - ※ 강릉시와 협의 지속적 개발

[시정·처리요구]

주문진·연곡해수욕장 이벤트사업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 이벤트 행사계획 수립 : '99. 6월말
 - 방송국, 언론사등 통한 이벤트 행사 계획 홍보
- 이벤트 행사 확대 촉구 공문시달(강릉시 관광개발과)

[시정·처리요구]

3중자망 어업인에 대한 전업자금지원 근본쇄신 방안강구

[처리결과]

- 전업자금 지원실적
 - 합 계: 355척 1, 459백만원
 - 96년도: 14척 14백만원
 - 97년도: 45척 350백만원
 - 98년도: 296척 1, 410백만원
- 3중자망 사용 어업인의 생계를 빙자로 전업 의지 미약
- 척당 지원규모는 적고 대출 및 보증관계로 신청 기피
- 일반 어업인 3중자망 사용 어업인에 대한 불만 팽배 및 민원 야기
- 수산자원 보호령 제5조(특정어구의 사용금지) 제1항 시도지사에게 권한위임
 - 2중이상 자망 사용에 대한 해수부장관 승인신청

- ⇒ 승인불가 회신('98. 8. 3)
- 제도개선 과제로 건의 : '98. 7. 2
- 전업자금 지원규모 확대 및 금리인하 건의
 - '99년도 척당 20백만원
 - 금리 9.5% ⇒ 6%로
- 특정어종(도치, 곰치, 삼세기)에 대한 포획어구 어법개발
 - ⇒ 연구과제 선정 추진

[시정·처리요구]

영어자금 대상톤수 기준 세분화 및 대출기준 상향조정 방안 강구

[처리결과]

- 어업인에게 실질적인 어업경영 자금지원 조치
 - 어선규모별 소요자금과 대출실태 전반에 대하여 일제조사 실시와 금융기관(수협)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세분화, 기준상향)건의

[시정·처리요구]

주문진항 개발 신항만건설 추진 지속적 방안 강구

[처리결과]

- 용역기간 : '98.3~ '99.6월
- 과업내용
 - 동해권 항만수요 및 개발여건 전망
 - 기존항만 기능정립 및 신항만 개발 타당성 검토
 - 신규 항만개발 입지조사등
- 동해권 항만 정비 기본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 신항만 개발입지 선정
- 주문진항이 신항만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음.

[시정·처리요구]

가솔린 엔진부착 소형선박(1t 미만) 도·시비 확대지원 방안 강구

[처리결과]

- 가솔린 엔진(선외기) : 1,012척



- 강릉203, 동해15, 속초35, 삼척185, 고성175, 양양167, 내륙232
- 정부지원 어선기관대체 사업
 - '99년도 어선 기관대체 실적
 - 사업량: 12,913마력72척 1,119백만원
 - 사업비율: 융자 80% 자담 20%
 - ※ 매년 평균81척, 14,800마력(1,742백만원)
- 현행 사업 집행지침상 가솔린 엔진대체 사업만 보조지원은 불가함
- 디젤기관 대체 어업인과의 형편성 결려로 보조사업 집행 곤란함
- 관계법령 및 수산사업지침 개정시 기관대체사업 보조금이 지원토록 개선건의
- 도·시비에서 별도 지원토록 예산반영
- '99지원(강릉시) 계획
- 30척(990마력), 128백만원

[시정·처리요구]

해양수산출장소 발주 각종공사 부실공사 방지 및 유착근절을 위한 감독 전담팀 제도 도입 실시 방안 강구

[처리결과]

- 공사 규모상 외부전문인에 의한 별도 공사감독 전담팀 구성이 어려운 실정임
- 기존 공사감독(토목직2명) 이외에 별도내부공사 감독 전담팀을 편성운영
- 구성시기 : '99.3월 예정
- 구성인원 : 5명(행정2, 수산1, 사업장 시군 수산직1, 어촌계장1)

[시정·처리요구]

어가부채('97년도 어가당 평균 10,667천원) 저감 및 상환을 위한 지원대책 방안 강구

[처리결과]

- 영어자금 이자인상분 도비 보전
 - 지원범위 : 원금 7천만원 이내
 - 지원기간 : '98.4.15~'99.4.14(1년)
 - 보 전 액 : 471백만원
- 어가부채 경감자금지원

- 자금규모 : 750억원 (전국)
- 융자조건 : 연리 5.5% 융자기간 : 2년
- 대체대상융자금 : 어선건조등 기 지원된 시설성 수산정책자금중 '98.10~'99.12월까지 상환하여야 할 원금 및 이자
- 융자신청 : '98. 12. 15~ '99. 1. 15
- 심의 및 대상자 통지 : '99. 1. 31한
- 상호금융 금리인하 및 상환연기
 - 대상자금 : 조합원에게 대출된 수협외 상호금융 자금
 - 금리인하 : 기대출 자금의 2% 수준 (조합별 자율결정)
 - 상환연기 : '99년말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원금의 상환 2년간 연기
- 농특세 융자금의 금리인하
 - 인하시기 : '99. 1. 1부터
 - 인 하 율 : 6. 5 $\Rightarrow$ 5.5% (1%)

○ 山林開發研究員

[시정·처리요구]

사방사업 직영시행을 악용한 조직적인 대형범죄 사건 (편취 금액 5억 8천만원)에 대한 감독자들에게 대한 징계요청 및 처리결과

[처리결과]

- 요구자 : 강원도지사
- 요구처 : 강원도인사위원회위원장
- 일 자 : 1998. 12. 14
- 대 상
 - 관련행위자 : 8명 (유우근, 신현근, 최덕연, 변안수, 전경엽, 민대기, 강응순, 이필영)
 - 관련감독자 : 4명 (최문길, 김영명, 박규원, 윤찬희)
- 일 자 : 1998. 12. 22
- 결 과 :
 - 관련행위자 8명 : 해임
 - 관련감독자 4명 : 불문경고



[시정·처리요구]

대형 범죄예방 근절대책 방안 수립

[처리결과]

사방사업 대형범죄예방 근절 대책방안에 대하여는 직영 사방의 제도상 문제점으로 발생한 사건
이므로 완전 도급제로 사업시행하여 대형범죄사건을 사전에 예방토록 제도개선

※ 산림개발연구원 사방사업은 1997년부터 완전도급으로 사업시행

○ 家畜衛生試驗所 東部支所

[시정·처리요구]

도축장의 축산물 검사시 축산물 검사원이 성실하고 친절한 근무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 할 것

[처리결과]

도축검사장 현장출장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근무하였으나 앞으로 더욱 성실하고 친절하게 근무
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겠음.

· 월2회이상 친절교육 실시(소장)

[건의사항]

가족위생시험소 동부지소 현 청사가 낡고 협소하므로 도유지(강릉시 관내 10필지)와 사유지(강
릉시 장현동 사무소 건물 및 부지)를 상호 교환하여 청사를 이전할 수 있도록 요망

[처리결과]

- 청사 이전계획 수립
 - 이전건물 : 구 동부치산사업소
- 행정재산 관리청 지정신청 (도 세무회계과)
- 시설보수예산 요구('99추경시)
- 시설보수후 청사이전 : '99년중
 - ※ 구 강릉시 장현동사무소 건물은 동민들의 복지센터 이용으로 추진 곤란

라) 觀光建設委員會

○ 觀光文化局 所管

[시정·처리요구]

건설중이거나 사업승인되어 5~6년이 경과되도록 공사중단 및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업체에 대하여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

[처리결과]

- 부진사업체 행정처분 등 : 13개업체
 - 사업승인 최소 : 1개업체
 - 경고처분 : 4개업체
 - 사업촉구 : 8개업체
- '99. 1월 : 부진업체 청문계획 통보
- '99. 2월 : 청문결과에 따라 행정조치
 - 사업계획 승인최소, 사업촉구 등

[시정·처리요구]

총 사업비 100억이상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열악한 지방재정상 사업추진시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경주

[처리결과]

- 각종 사업예산의 국비확보를 위해
 - 중앙부처 방문 사업설명회(사업 및 국비지원의 당위성 등) 개최
 - 중앙부처 지역인사를 통한 사업비 확보등 다각적인 국비확보 노력강구

[시정·처리요구]

경포지구 불량건물 중 미철거된 건물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주민과의 협의 후 철거가 되도록 조치

[처리결과]

- '95. 11 : 철거대상건물 현황조사 용역 실시
 - ※ 철거대상 : 57동(보상금 수령후 미철거14, 보상금 미수령 43)
- '95. 12 : 건물현황조사용역 일시중단
- '95~'98 : 주민대표자와 협의회 개최(11회)
- 측량재개를 위한 지역주민과 지속적 협의



- 협의 완료후 조사측량, 감정평가실시 및 보상금 확보시행 (강릉시)

[시정·처리요구]

삼척시립박물관, 원주시립박물관, 동해시립박물관 등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확보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예산미확보로 인한 장기공사가 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

[처리결과]

- 원주시립박물관
 - 사업기간 : '94~ '99 (6년차)
 - 규 모 : 부지7,420㎡, 연면적 3,195㎡
 - 사 업 비 : 11,528백만원 (국비3,000 도비1,000 시비5,676)
 - ※ 착공 : '97.12월, 준공예정 : '99.12월
 - 예산확보 대책 : '99 국비지원 신청 (신청액: 2,000백만원)
- 동해시립박물관
 - 사업기간 : '99~2001 (4년차)
 - 규 모 : 부지33,058㎡, 연면적3,745㎡
 - 사 업 비 : 10,000백만원 (국비2,000, 도비4,000, 시비230)
 - ※ 공사착공 : '99.9월예정
 - 예산확보 대책 : '99국비지원 신청 (신청액: 1,390백만원)
- 삼척시립박물관
 - 사업기간 : '95~'96 (5년차)
 - 규 모 : 부지 9,247㎡, 연면적2,580㎡
 - 사 업 비 : 8,276만원 (국비610, 교부세3,500, 도비200, 시비3,966)
 - ※ 사업비 전액 기확보
 - 추진상황 : 현공정 70%
 - ※ 착공 : '97.10월, 준공예정: '99.12월
- '99.1월말까지 식자재 납품 : 142백만원
- 식자재 공급확대, 도내 토산품 공급문제에 대하여 관련부서 협의추진중 (농정산림국, 산업진흥국)
- 관광교육前 강원관광비디오 상영 및 관광 안내소 운영
- 강원농특산물 판매장 건립 : '99.5월 개장
- 금강산관광사업 정착단계시 도내 연계 관광 상품개발 협의 (현대와 기합의)

[시정·처리요구]

현대그룹의 금강산관광과 관련하여 특산물판매로 인한 이익 뿐만 아니라 모든 사항을 홍보하여 실질적인 주민소득증대와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리결과]

- '99.1월말까지 식자재 납품 : 142백만원
- 식자재 공급확대, 도내 토산품 공급문제에 대하여 관련부서 협의추진중(농정산림국, 산업진흥국)
- 관광교육前 강원관광비디오 상영 및 관광 안내소 운영
- 강원농특산물 판매장 건립 : '99.5월 개장
- 금강산관광사업 정착단계시 도내 연계 관광 상품개발 협의(현대와 기합의)

[시정·처리요구]

강원의 얼 선양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효석 문화마을” 조성 사업에 대하여 기념관에 전시될 유품수집에 내실을 기하고, 향후 문화마을 조성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처리결과]

- 유품수집 문제
 - 이효석 선생이 평양 및 함흥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관계로 현재 많은 유품이 남아 있지는 않으나
 - 유족측과 긴밀히 협의하여 최대한 유품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문화마을 조성후 관리문제
 - 『가산문학 선양회』에 위탁관리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시정·처리요구]

현재 중도관광지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며, 막대한 적자행진에 계속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추진하기 바람

[처리결과]

- 추진상황
 - 중도관광지 처리 대책 수립 : '98.12월
- 관광지 운영관리에 있어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거론되나 현재로서는 부적절



- 민간위탁시에도 일부 도비보조 필요
- 상업성 추구로 인한 조성시설의 훼손과 이미지 실추 우려 등
- 따라서, 본격 개발시까지 현행대로 직영하면서 운영개선 추진
 - 관리측면 : 홍보지원, 운영개선모색, 이벤트 유치등
 - 경영측면 : 입장·시설사용료 징수, 시설유지 관리개선등
 - 추진대책 : 레포츠시설 확충 : 게이트볼장, 그라운드골프장
 민·외자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다양한 관광객 유치활동 전개 및 미개발지를 레포츠 공간으로 활용
 입장료·사용료등의 현실화('99상반기중 추진)
- 장기대책
 - 중도·붕어섬 일괄개발을 원칙으로 하되, 분리 투자방안 적극 검토
 - 사업가의 구상에 맞는 개발방법 다양화 모색
 - 외자유치 협상시 “외자유치촉진법”을 적용할 수 있는 관광단지 지정 및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조건 제시

[시정·처리요구]

각종 문화재 행사의 도비 지원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행사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후 지원토록 할 것

[처리결과]

- 그 동안 문화제행사의 도비지원은
 - 도민에게 문화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고
 - 도민의 삶과 질 향상 차원에서 행사의 목적과 기대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하였음
 - 앞으로 보다 철저한 검증을 통해
 - 도민의 자긍심 고취와 대표성있는 문화제만 지원하여 경쟁력을 키워나가겠음.
- ⇒ 『1시군 1문화운동』 시책추진의 일환으로 대표축제 육성

[시정·처리요구]

황성 전통자기 전수회관 건립에 있어서 개인의 특혜의혹이 자주 제기되는 바, 이의 불식을 위하여 선명하고 투명한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사후 철저한 관리가 요청됨

- 전수회관건립 지원사유
 - 전통자기 기능전수 및 자기 대중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회관 건립비 지원

- ※ 보유자 개인에게 지원할 경우 : 사망 등 사유 발생시 재산처리 및 전승교육의 계속관리 등 불투명
- 따라서, 이의 지속적 관리와 법인의 정관목적 사업이 건립목적에 부합되므로 보조사업으로 지원
- 준공후 건물의 관리
 - 건물은 법인의 기본자산으로 등기등록
 - 시설관리는 법인에게 책임부여
 - 법인 해산시 자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처리(법인장관에 포함)
- 보조사업 및 사후관리
 - 보조사업추진
 - 철저한 공사감리 및 현장지도 실시 ⇒공사부실 예방
 - 공사완료 후 사업비 정산 확인 ⇒효율적인 사업비 집행 유도
 - 자산등기·등록지도 ⇒소유권 문제 발생 등 사전 예방
 - 사후관리방안
 - 매년 법인결산 지도화행 ⇒법인의 부실화 예방
 - 전수교육 실시 지원 및 점검 ⇒전통기능의 전승체계 확립

[시정·처리요구]

태백종합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2~3년내 집중투자 불능시, 방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초기 단계에서 시의 재정부담능력, 규모의 축소 및 기능 재배치, 국비지원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재검토하여 사업추진 하기 바람

[처리결과]

-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태백시와 다각도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으며 국비가 최대한 지원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겠음.
- ※ '99년도 국비신청 : 2,000백만원

[시정·처리요구]

종합문화예술 회관 설치와 관련하여, 사업부서에서 기획단계부터 지역특성, 사용인구, 예산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와 용도결정이 요구됨. 현장설계 또는 기술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도 사업 목적이 부합되는 계획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철저한 분석·검토 심의가 요청됨(예, 평창종합문화예술회관)



[처리결과]

-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종합문화예술회관의 건립은
 - 향후, 지역특성·활용 인구·예산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규모와 용도를 결정하겠으며
 -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심층적인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목적에 부합되는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음.

○ 建設都市局 所管

[시정·처리요구]

도로 장기 계속공사에 있어서 지나친 장기화는 주민의 불신감 팽배 및 공사비 증액 등으로 효과가 반감되고 있어 신규지구의 확행보다는 준공위주의 내실을 기하도록 할 것(예, 어론~상남간 도로확포장)

[처리결과]

신규사업 억제 및 장기계속공사 조기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시정·처리요구]

전원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경제적 여건 등을 감안 장기적인 목표로 추진한다고 하나 이럴경우, 지휘부 변경 등 변수 요인이 많이 잠재되어 있음. 현재 초기단계이므로 타당성조사, 기본구상에서부터, 기본계획, 기본설계, 시행에 이르기까지 철두 철미한 후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할 것임 (용역비만 120억원, 사업비가 무려 1조원이 추산되는 막대한 규모임을 유념할 것)

[처리결과]

- 기본계획 용역착수
- 용역예산 : 1,556백만원
- 용역업체 : 건화엔지니어링
- 계약일 : '98.12.24
- 착수일 : '98.12.29
- 준공예정 : '99.12.24
- 계약금액 : 527,899천원
- 항공측량 및 토질조사용역 : '99상반기 착공

- 국내외경제·사회등 환경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단계별 추진계획에 의거 시행
- 기본계획완료후 지구지정등 관계절차 이행
- 외자를 비롯한 민자유치방안 강구
 - ※ 성공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본계획용역 시행과정에서
 - 다양한 경험과 아이디어 도입 및 외국자본의 투자 가능성과 투자가의 신뢰를 고려하여 국 내·외국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자 국토개발연구원등 연구기관 및 학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 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성공적인 사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정·처리요구]

재해위험지구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급성과 우선 순위에 입각하여 사업추진이 요망

[처리결과]

- 재해위험지구지정현황 : 85지구
 - 유형별 : 상습침수24, 붕괴위험52, 고립위험2, 노후시설7
- 소요사업비 : 91,029백만원
- 사업기간 : '96~2005년(10개년)
- 사업추진기준
 - 재해위험지구정비 우선순위에 의거 추진 : 97우선순위 결정
 - 추진중인 사업지구
 - 재해피해의 가능성이 높은 지구
 - 대규모 인면피해 우려지구
 - 대규모 농경지 피해예상지구
 - 다중민원 발생지구
 - 중기정비계획에 의하여 사업추진
 - 시군자체 및 타기관 추진사업은 자체계획에 의거 시행
- 사업지구 : 30지구(해제18, 정비12)
 - 국고지원 : 3지구
 - 시군자체 및 유관기관 : 27지구
- 사업비 : 25,315백만원



- 사업대상 : 7지구
 - 국고지원 : 5지구
 - 시군자체 : 2지구
 - ※ 강릉공제, 삼척나릿골지구
- 사업비 : 5,599백만원
 - ※ 국고2,700 ,도비1800 , 시군비12,099

[시정·처리요구]

'97년까지 미보상된 하천편입토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보상을 실시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처리결과]

- 보상대상 : 4,216필지 6.516천㎡
- '98까지 보상 : 4,146필지 6,393천㎡
- 미보상 70필지 123천㎡ 932백만원
- 보상계획 5필지 41천㎡ 200백만원
- 재정형편상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보상완료 예정임

[시정·처리요구]

미시령터널은 강원도의 영동과 영서를 잇는 사업으로서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민자유치 및 예산확보에 주력하기 바람

[처리결과]

- 98. 7월 민자유치 사업계획 수립
- 98. 9월 민자유치대상사업 신청
- 98. 12. 8 강원도 민자유치 실무위원회에서 민자유치 대상으로 선정
- 98. 12. 9 프랑스 알메디그롭 강원도 방문시 사업 설명
- 민자유치 촉진법 및 시행령 개정중이므로 개정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
 - 시설사업기본계획수립 : 99. 6월
 -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 : 99. 8월
 -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 : 99. 12월

- ・사업시행자 선정 및 지정 : 2000년 4월
- ・실시설계 승인 및 사업착공 : 2000년 6월

[시정·처리요구]

과적차량의 운행은 포장도로의 파손은 물론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재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이 요구됨.

[처리결과]

- '98 단속결과
 - ・검차대수 : 72,795대
 - ・적발대수 : 126대
- '99 추진계획
 - ・과적 근원지파악 집중관리 : 1월중 시행
 - ・운전자 및 업체계도 실시 : 캠페인전개(3회), 홍보 및 프랜카드 설치
 - ・과적차량 집중단속 : 고정단속(연중지속운영), 이동단속(분기 20일이상 실시), 합동단속(분기 10일이상 실시)

[시정·처리요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내 사유지중 미보상된 면적에 대하여는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민원을 야기시키므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임

[처리결과]

-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인 시장, 군수로 하여금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토록 도계 58070-25('99. 1. 13) 호로 권고조치
 - ・권고내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지역여건변화로 필요성이 희박하고 실현불가능한 시설은 도시계획 재정비시 현지확인을 통하여 해제·변경하는등 장기 미집행시설을 최소화 하고,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14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연차별 집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도시계획사업을 타사업에 우선하여 시행토록 하는 등 사유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
- 도에서는 시군도시계획재정비계획 결정 신청시 권고사항이 이행되도록 적극 검토하고, 시군에서 도시계획사업시행 및 도시계획변경으로 장기미집행시설을 해소한 실적을 확인



[시정·처리요구]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이 부실하고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 위원회운영의 효율성을 저해 하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통폐합 방안이 요구되며, 위원의 전문성을 고려 위촉되어야 할 것임

[처리결과]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은 법령 및 조례에 근거를 두고 해당 위원회별로 자격요건을 규정하여 위원들을 위촉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을 위한 위원회 기능이 강화되고 있으나 위원회 목적이 유사한 위원회에 대하여는 그 기능이 상실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계 규정을 정비하도록 노력 하겠음.

[시정·처리요구]

광고물의 도로점용료 징수 및 사용료 징수에 대하여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도로법 개정을 적극 건의하고, 안전도 검사기준안을 조기에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 광고물의 도로점용료 징수개선 건의시기 : 도로법 개정시
- 전문기관과 연구기관에 검사기준 산정가능여부와 용역비 소요액 확인 후 방침결정 시행검토

[시정·처리요구]

건설공사장의 현장감독 및 감리원의 근무와 관련하여 공사감독자가 최대한 현장에 상주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견실시공은 물론,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지휘부에서는 현장 감독 공무원과 감리원의 현장상주 여부를 철저히 파악 감독하기 바람

[처리결과]

감독 공무원이 현장에 상주하여 책임감을 갖고 성실시공 및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함이 타당하나 인력 및 예산등 현실적으로 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상주 감독시 내부 업무추진이 문제가 되는 등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사업전만에 걸쳐 일일결산등을 통하여 철저한 공정관리를 시행토록 하겠음.

[시정·처리요구]

도로관리사업소 장비의 적극적인 민간대여를 확행하여 경영수입 증대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처리결과]

- 기술능력향상 및 홍보활동강화
 - 민간장비보다 질 좋은 기술능력 제공
 - 유관기관, 단체에 대한 판촉, 홍보활동 지속 실시
- 경쟁력 강화
 - 현대식 장비로 작업효율제고
 - 예방정비 점검강화로 신속대여로 작업능률 향상

[시정·처리요구]

도로공사에 있어 편입용지 미보상 상태에서 우선 착수됨으로 시공비 과다, 비능률 등을 초래하므로 착수전 협의취득, 착수 후 수용 취득할 수 있도록 절차를 이행토록 할 것(예, 어흘-행정 간 도로공사)

[처리결과]

편입용지 미보상상태에서 선시공사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시정·처리요구]

도로공사에 있어 하천과의 경계를 옹벽 일변도로 시행하는 것을 지향하고 친환경적이고, 친수적인 시설을 삽입, 경관을 부드럽게 연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도로시설물 주변환경을 고려 환경친화적으로 시공되도록 조치

[시정·처리요구]

『별첨 1』의 시·군 도로시설 및 관리와 관련한 개선하여야 할 문제점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기 바람

[처리결과]

- 추진계획 수립 : 99. 1
- 추진일정
 - 현지조사 : 99. 1 ~ 2월
 - 조치계획수립 : 99. 3



- 추진계획
 - 도로관리청별로 조사 및 계획수립 추진

○ 國際大會支援團

[시정·처리요구]

동계아시아 경기대회 이후 방대한 시설·장비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별도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할 것

[처리결과]

- 시설 및 장비 : (주) 쌍용에 위탁관리
- 4계절 활용방안강구 시행계획 수립중

[시정·처리요구]

동계아시아 경기대회 주 진입로와 노르딕경기장의 진입로 접속에 있어 가각전제 미시행으로 교통위험 잠재 : 가각전제토록 재시공

[처리결과]

강원도립노르딕경기장 진입도로는 국지도로(산지부)로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거 40km/h의 설계속도로 설계되었으며 가각전제에 대하여는 도로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곡선으로 정리하여 적당한 시거확보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경기장 진입도로 교차로에 곡선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용평리조트로 진입하는 주도로의 좌우시거에 대하여는 150m이상 충분한 시거 확보가 가능하고 신호없는 교차로의 최소시거(운전단가 교차로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리)는 설계속도 40km/h/일 때 최소시거 59m로 본 경기장의 진입도로 연장은 183m로 운전자로 교차로를 인지할 수 있는 거리는 충분함.

- 도로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 제26조(평면교차또는접속) 제2항 - 도로가 동일 평면에서 교차하거나 접속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회전차선, 변속차선 또는 교통섬을 설치하고, 가각부를 곡선으로 정리하여 적당한 시거와 교통안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江原道國際觀光博覽會組織委事務處

[시정·처리요구]

상징탑 건립공사에 있어 슬립폼(Slipform) 공법에 의하고 있으나 거프집의 활동조작과 속도에

있어 시방서에 의하고, 한중 CON 'C인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CON 'C가 동결되지 않도록 품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경화에 필요한 촉진양생(증기양생등)을 강구토록 할 것

[처리결과]

상징탑 건립공사는 전액 민자유치로(우일신소재) 시행하는 공사로 책임감리 시행으로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 공사중 사용하고 있는 슬리폼공법은 기후요인에 관계없이 연속 시공할 수 있는 공법으로 상징탑 CON'C 타설부위는 온수보일러 및 온수 COIL의 설치로 보온 양생 조치로 하는 등 견실시공을 하고 있음.

[시정·처리요구]

관광객 유치를 적극화 시키기 위하여 『단체입장권유치보상제』 실시방안을 검토 강구할 것

[처리결과]

- 국내 관람객 유치
 - 단체관람객 할인제
 - 대 상 : 30인 이상 단체관람객
 - 할인조건 : 당해 입장료의 2,000원씩 할인(단체·예매권의 경우 33% 할인)
 - 유치업체 보상제
 - 대 상 : 30인 이상 단체관람객 유치업체
 - 보상금액 : 매표액의 10% 현금보상
 - 기 타 : 안내책임자(업체) 입장료 면제
- 외국인 관람객 유치
 - 단체관람객 할인제
 - 대 상 : 9인이상 단체관람객
 - 할인조건 : 당해 입장료의 2,000원씩 할인
 - 유치업체 보상제
 - 대 상 : 9인이상 단체관람객 유치업체
 - 보상금액 : 매표액의 30%현금보상
 - 기 타 : 안내책임자(업체) 입장료 면제
- 유치실적평가 시상제(국내+국외)
 - 대 상 : 관람객유치 우수여행사
 - 평 가 : EXPO기간중 단체관람객 유치 우수 3개 업체



- 시상금 : 총 6백만원 (1위 : 3백만원, 2위 : 2백, 3위 : 1백)

[시정·처리요구]

타 시도 문화행사에 '99강원국제관광박람회를 알리는 선전관 설치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주요 이벤트 참가
 - 대상행사
 - 동계아시아게임 : '99. 1 ~ 2월
 - 한국관광정보축전 : '99. 6월
 - 참가인원 : 4명 (조직위 2, 도우미 2)
 - 홍보내용
 - 현수막 게첩 및 EXPO 홍보물 배부
 - 팻지등 EXPO기념품 증정 등
- 시·도청 방문 홍보
 - 대 상 : 전국 15개 시·도
 - 방문자 : EXPO도우미 2명
 - 시 기 : '99. 5~6월
 - 홍보내용
 - EXPO 안내 팸플렛, 리후렛 등 배부
 - 팻지 등 EXPO기념품 증정
 - 입장권 예매 등
- 도내 주요이벤트 연계 홍보
 - 대상행사 : 춘천봄내예술제등 27종
 - 주 관 : 해당시군(도 관련부서)
 - 홍보내용
 - 도단위 행사 : EXPO홍보코너 개설
 - 시군단위 행사 : 팸플렛 등 배부
- 전국순회홍보 이벤트
 - 5개 대도시, 100일 이상

[시정·처리요구]

행사 후 시설, 장비, 자재의 활용계획을 수립 시행 할 것

[처리결과]

박람회 종료후에는 영구시설인 주제관은 강원도 홍보관으로 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였으며 상징
탑은 청초호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전망타워시설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시시설로 설치하여 박람회 종료후 철거되는 각종 재활용시설(벤치, 휴지통, 재떨이 등)은 속
초시 등 인근지역의 사용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활용하는 등 효율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음.

[건의사항]

도내 3개 국립공원내 상가, 음식점 등 오페수가 배출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 정부차원의 보상
후 철거토록 하는 방안을 건의함

[처리결과]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 실태파악후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신중 검토하겠음.

[건의사항]

지적측량대행기관인 대한지적공사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예산 및 직원인사 권한을 시도지사 또
는 공사사장에게 권한 위임되도록 행정규제위원회 또는 행자부에 건의 요망

[처리결과]

행정사무 감사시 질문에 대하여 구두답변으로 종결처리된 사항임.

3. '99年度 行政事務監査

가) 企劃行政委員會

○ 公報官室

[시정·처리요구]

도정상담위원의 명칭변경과 활동이 저조한데 활성화 대책 강구



[처리결과]

- 도정상담위원의 명칭변경은
 - 타시도 운영사례를 「벤치마킹」 하고
 - 상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변경 여부를 검토
- 상담위원 활성화 방안
 - 위원 위촉은 향후 시군추천과 병행하여 위촉 기준강화와 공개 모집 등을 검토
 - 활동 제고는 위원에게 월별, 분기별, 활동실적을 정례적으로 통보하고
 - 시군협의회구성과 지역 순회 간담회를 개최토록 조치

[시정·처리요구]

국민홍보위원 활동사항 각종 보고서 작성기재,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

[처리결과]

- 앞으로 업무보고시 활동상황을 반영토록 하고
- 국민홍보위원도 도정홍보의 한부분으로 인식해 각종홍보물 제공 등 정부시책과 주요쟁점에 대한 홍보 요원화를 추진해 나가겠음

[시정·처리요구]

중앙공중과 매체의 기획물과 연속극 유치, 촬영지 유치등의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

[처리결과]

- '99년말 활동 유공자 5명을 선발하여 포상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

[시정·처리요구]

시각장애자들이 더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점자판 1,200부를 증가 발행

[처리결과]

- 금년도에는 당초계획대로 점자판 해독이 가능한 인원인 600부를 발행토록 하고, 향후 수용자 조사 후 증부 검토

[시정·처리요구]

강원도보의 인터넷 게재 등 발행개선 방안 강구

[처리결과]

- 강원도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키 위해 프로그램 구축중이며 금년 4월경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임

[건의사항]

「동트는 강원」 발행예산에 대한 자급자족 할 수 있는 방안 필요

[처리결과]

- 외부 광고유치 확대와 저렴한 가격에 유료로 보급하는 방안 별도 검토
※ 증정본은 제외

[건의사항]

CIP관련 업무가 기획관실에서 공보관실로 일원화 하여 운영 활성화 방안 검토

[처리결과]

- CIP와 캐릭터개발 업무 공보관실에서 추진

[건의사항]

「동트는 강원」을 청소년용으로도 발행하여 청소년들도 구독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처리결과]

- 청소년용 「동트는 강원」의 별도 발간은 예산 등 제반문제가 검토 되어야 할 것이며
- 우선 보완적으로 「청소년용도정 홍보책자」를 발간할 계획임

○ 監査官室

[시정·처리요구]

감사모니터 제도의 보강으로 첩보감사 기능의 활성화 도모

[처리결과]

- 감사모니터 제도 활성화계획 수립
· 수립시기 : 2000. 1/4분기중
- 감사실시 사전예고제 실시



- 예고대상 : 종합감사 실시 시군별 50~100명 (기관, 단체)
- 실시기간 : 년중
- 기대효과 : 각종 감사정보 수집

[시정·처리요구]

감사결과 시정요구된 사항중 미이행된 사항에 대하여 특수관리대책반 등을 구성, 이행실태 점검

[처리결과]

- 도 감사결과 장기 미집행사항 확인
 - 총 174건 ('99. 12월말 현재)
- 장기 미집행사항 처리요령 시달 및 이행지시 : '99. 12. 28
- 이행여부 확인 : 2000. 1월말
- 미이행사항에 대한 조치 : 년중
 - 특수관리사항으로 지정
 - 완결시까지 특별 관리

[시정·처리요구]

문화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을 불법건축물등 각종 시설물과 관련되어 시공에서 부터 테마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처리결과]

- 부분(테마)감사 실시
 - 실시대상 : 문화체육시설 운영관리실태,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리실태, 건설공사 품질관리실태
 - 계획수립 : 2000. 1~2월
 - 대상시군 : 각 2~3개 시군 선정
 - 감사실시 : 년중
 - ※ 별도 부분감사계획 수립
- 일상감사 실시
 - 대상 : 도발주 대단위 시설공사
 - 발주전 : 사업계획, 설계내역 확인
 - 공정별 : 시공, 안전등 현장확인 (30, 60, 90%)
 - ※ 정밀감사 필요시 외부 전문가와 합동감사 실시

[시정·처리요구]

언론보도의 무책임한 보도로 공공기관이나 민간에 불이익을 주었을 때의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 필요

[처리결과]

- 해당부서(시군) 자체조사 사항
 - 해당부서별 대응여부·방법 판단, 처리
- 도에서 감사를 실시한 사항
 - ① 사실로 확인될 경우
 - 시정요구 및 사안에 따라 관계 공무원 문책
 - ② 사실무근 또는 과장보도의 경우
 - 감사결과 해당부서(시군) 통보
 - 해당부서(시군) 별 언론대응여부 판단·조치
- 언론대응 방안 : 정정보도 요청,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 ※ 해당부서(시군) 및 언론사등에서 감사관련자료 협조 요청시 필요자료 제공

○ 企劃管理室

[시정·처리요구]

5개 의료원 매각 등 경영체제 전환에 대한 종합적인 경영대책 강구

[처리결과]

- 의료원이 수립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진료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선행- 먼저 지역별 실정에 맞는 특화병원 운영에 중점을 두면서 춘천의료원의 매각과 같은 경영체제전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적극 검토하겠음

[시정·처리요구]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사전 충분한 조사와 검토로 취소가 되는 사업이 없도록 특별한 대책 강구

[처리결과]

- 국도비 보조사업신청 엄선 및 사업관리 철저



-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및 배정시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지역주민의 합의성, 시군비 및 자부담능력 등 사업추진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음

[시정·처리요구]

여성정책연구 센터의 설치에 대하여 구조조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여성회관 기능과 연계하여 기능보강 방안검토

[처리결과]

- 여성수련원 운영개선 및 여성회관 기능전환계획과 연계한 「강원여성정책연구센터」 설립 방안 마련을 위한
 - 최적대안 모색검토
 - 강원여성정책 연구기능 활성화
- 종합적인 기능을 고려한 「강원여성 정책연구센터」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 ※ 계획수립 및 의견수렴 등 추진중

[시정·처리요구]

남북관계 전문가와의 워크숍 개최 등과 같은 남북교류 각종 회의를 남북의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도의원이나 여성들의 참여 확대 방안 강구 추진

[처리결과]

- 남북관계 전문가와의 워크숍 개최시
 - 도의원,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시정·처리요구]

시·군의 경영수익 사업이 전반적으로 저조하여 재정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활성화 방안 강구

[처리결과]

- 지역특성과 부존자원을 활용한 신규 사업 적극 발굴 추진
 - 2000년 경영수익사업 : 총 6개분야 136개사업(99 : 6개분야 94개사업)
- 연구·연찬회 확대로 선진경영능력 제고 : 8회 196명
- 현장중심 평가·확인·환류기능 지도 강화 : 연2회이상

[시정·처리요구]

목표관리제 운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방안 강구 추진

[처리결과]

- 여건변동에 따른 「단위목표」 조정·보완('99. 11~12월)
- 성과상여금 지급시기 조정
 - '99년 ⇒ 2001년으로
 - ※ 2000년도분을 평가하여 지급
- '99정기평가 실시('99. 12월)
- 객관적인 평가지표·평가 측정서 지속 보완
 - 중앙 및 타 시·도 비교검토
- 2000목표관리제 운영계획 수립
 - 행자부와 연계, 종합검토

[시정·처리요구]

의료원 간호원들의 의료원간 순환교류가 가능할 수 있는 대책 강구근본

[처리결과]

- 근본적인 대책수립 강구
- '99. 8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나 교류대상자가 없어서 실시하지 못하였음
- 2000년도에는 의료원장 등과 협의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임

[시정·처리요구]

강원도개발공사의 흥천농특산물 유통센터 적자운영에 대한 대책강구

[처리결과]

- 보유재고상품 및 미수금정리 : 2000. 3월까지
- 운영방식 변환 : 2000. 2월까지
 - 매각추진 (1차) : 공개경쟁입찰
 - 임대추진 (2차) : 매수자가 없을 경우
 - ※ 매각·임대 실현 시까지 한시적으로 물류센터 인원감축 운영 (7명 → 3명)



[시정·처리요구]

각종 위원회의 운영활성화와 또한 역할과 기능을 재점검하여 유사위원회에 대한 통폐합을 추진토록 할 것

[처리결과]

- 총 66개 위원회 → 61개 위원회
 - 약사심의, 건강실천, 동계대회환경영향 평가, 중소기업지원기관, 문화예술진흥위원회(협의회) 등 5개위원회 감소
- 각종 위원회운영 활성화 및 정비방안 마련
 - 정비가능위원회(유사기능등) 선정 정비추진 : 2000. 2~6월
 - 운영실적 부진위원회 정비검토(개최실적 등)
 - 여성위원 확대(2002년 30%이상) 및 민간위원 참여율 제고

[시정·처리요구]

의료원장의 중도 퇴직 등으로 인하여 일관성 있는 운영이 결여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특별한 대책강구

[처리결과]

- 의료원장은 의사의 특성상 개업 등의 사유로 중도퇴직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임
- 2000년도에는 지방공기업의 「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를 제정하여 원장 임용시 책임자를 임명할 계획임

[시정·처리요구]

종합지리정보 시스템의 GIS예산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소기 목적달성 방안강구

[처리결과]

- 1단계 사업완료(운영중)
 - 기간 : '98. 4월~'99. 10월
 - 사업비 : 513백만원
 - 정보화 대상 : GIS 운영환경 구축, 4개분야 72개업무
- 2단계 사업(2000~2002년)
 - 대상 : 5개분야 54개업무

- ・사업비 : 924백만원
- ・2000년 계획 : 사업비 100백만원, 재해예방관리시스템 구축, 1단계사업 안정화 추진
- 3단계 사업 (2003~2005년)
 - ・대상 : 7개분야 61개업무
 - ・사업비 : 824백만원

[건의사항]

「강원7+3플랜」 추진의 내실화를 위한 사업비 확보 노력

[처리결과]

- 「강원7+3플랜」에 포함된 사업들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노력중이며 2000년부터 가시적으로 사업추진
- 사업규모
 - ・총 275개사업 5조 1,144억원 ⇒ 2000년 투자 : 113개사업, 5,382억원

[건의사항]

「새천년 해맞이 행사」의 내실있는 추진과 소모성 이벤트가 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 필요

[처리결과]

- '99. 12. 31~2000. 1. 1
- “새천년의 해오름 · 그 위대한 꿈과 희망”이라는 슬로건으로 정동진을 비롯한 도내전역에서 동시 다원적으로 개최
 - ・개최지별 특성과 새천년의 축제가 연계된 행사
 - ・사전홍보를 통한 교통대란 예방
 - ・민간업체유치로 예산절감 및 관광수입에 의한 지역소득 증대에 기여

[건의사항]

남북교류 협력에 대비한 기반조성에 다각적인 방안 모색 추진

[처리결과]

- 남북교류협력참여 기반조성
 - ・「북강원 현황」의 인터넷서비스 제공



- 「새천년의 남북교류협력방안」 세미나 개최
- 남북교류 여성학술 심포지움 등
- 남북강원도 교류협력기금 확충
- 적극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 농업분야 교류협력사업 : 감자시험재배추진, 북한적응 다수성 품종육성,
 - 북강원도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 : 결핵퇴치사업, 결식아동돕기 등
 - 남북교류대비 접근교통망 확충노력
 - 민간부문 교류협력사업의 적극추진

[건의사항]

강원개발연구원이 도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역할 강화에 노력할 것

[처리결과]

- 도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직접 연관이 있는 핵심과제선정 연구
- 지역의 의견수렴을 통한 가치증진연구, 대 중앙에 대한 강원도 입장표명 논리 제시 등 역할 증진

[건의사항]

도정주요시책 심사평가와 주요사업 투자심사 업무의 내실있는 추진요망

[처리결과]

- 목표지향 및 실적주의에 입각 평가
 - 도정역점시책·현안사항 등을 성과별·항목별로 List(투자심사 : 5억원이상)화
 - ⇒ 월별추진상황 체크, 분기별 심사분석
 - ⇒ 행정누수 방지
 - 부진·미흡사업 심층분석
 - ⇒ 대안 및 해법제시, 당초목표달성 유도
- ※ 주요사업의 비효율적인 투자개선 및 건전 재정운영 도모를 위한 투자심사강화

[건의사항]

Y2K문제에 대한 철저한 사전대비

[처리결과]

- Y2K문제 해결완료 : '99. 11. 4
 - 해결건수 : 3,225건 (100%)
 - 자체선언 : '99. 11. 29 : 자체선언심의위원회 심의
- 사전 대비 사항
 - Y2K비상대책계획 수립 : '99. 4. 25
 - 사후대응 순회교육 : '99. 10. 1
 - Y2K비상대응 계획수립 : '99. 12. 7
 - Y2K비상근무 계획수립 : '99. 12. 21
 - 비상대응 종합모의훈련 : '99. 12. 28
- Y2K 비상근무 실시
 - 기간 : 1999. 12. 31~2000. 1. 3(4일)
 - 인원 : 도 253명 38개실과소
 - Y2K종합상황실 운영 ⇒ Y2K문제 발생 없음
- Y2K문제는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건의사항]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대한 형평성 유지 등에 따른 지급방안 모색 필요

[처리결과]

-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원 되는 경비로 사업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지원되므로 일률적인 형평성 유지는 어려우나
- 향후 사업시 예산편성지침 및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지원하므로 형평성 유지에 노력해 나가겠음

○ 自治行政局

[시정·처리요구]

구조조정 등으로 저하된 공무원사기 진작대책

[처리결과]

- 공무원사기양양대책수립추진('99. 6. 7)
 - 공무원발탁 승진 등 9종(추진중)



- 하위공무원 직급상향조정('99. 12. 31)
- 직급상향 : 19명(일반직)
- 직렬조정 : 12명(기능직)
- 지방공무원제도 개선 건의(2000. 1. 18)
- 조직, 인사, 복무, 보수 등 20종(행정자치부)

[시정·처리요구]

도 파견공무원과 시군전출공무원에 대한 조속 조치로 조직안정대책 강구

[처리결과]

- 시군전출 도소속공무원의 발탁
 - 발탁 : 9명(행정 4, 기술 5)
 - 도파견 시군공무원의 신속조치
 - 신규파견 및 기간연장 : 9명
 - 복귀 조치 : 11명

[시정·처리요구]

도·시·군5급이상 공무원 인사적체 해소대책 강구

[처리결과]

- 5급 이상 공무원 인사적체 해소 추진
 - 41년생 명예퇴직, 공로연수 권장
 - ※ 명예퇴직19, 공로연수1, 대기발령2
 - 시책추진기획단 신설배치 : 10명(과장, 담당급)

[시정·처리요구]

'99국제관광엑스포 파견공무원 우대대책

[처리결과]

- 5급이상 인사우대(16명)
 - 상향전보 : 9명(행정 8, 기술 1)
 - 승진전보 : 4명(행정 3, 기술 1)

- ・ 희망보직 : 3명 (행정)
- 6급이하 인사우대 (추진중)

[시정·처리요구]

지방세체납액 강력 징수대책 강구

[처리결과]

- 체납액 징수 및 조치사항
- ・ 징수실적 : 634억원 ('98 : 683억원)
- ・ 조치사항

구 분	건 수	금 액
채권 확보(부동산, 차량압류 등)	60,830	524억원
행정제재(인허가, 신용제한 등)	6,236	162억원
공매의뢰	581	64억원
형사고발	86	8억원

-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및 제재 중심의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
- 납세자에 대한 납세 편의시책 확대 추진

[시정·처리요구]

중앙·도·자체교육 등 중복된 교육훈련으로 행정지장 초래 대책강구

[처리결과]

- 피교육생 선발시 행정공백이 없도록 조치
- 중앙·도·자체교육 대상자 선발시 중복선발 방지
- 민원부서 교육생 선발시 업무대행자 지정 운영
- 피교육생 선발 및 교육훈련운영 실태 지도점검 실시

[시정·처리요구]

민박을 통한 「찾아가는 사랑방」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실국장이 추진할 수 있는 대책 수립 추진

[처리결과]

- 도지사와 병행하여 실국장 현장 행정 강화



- 분기 1회이상 정례화
- 주민과의 대화, 간담, 현장체험 등

[시정·처리요구]

도과장 명예읍면장제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 수립 추진

[처리결과]

- 운영회수 : 2회 ⇒ 1회
- 운영기간 : 2박3일
- 내용 : 주민간담, 사업장방문 현장체험 등
- ※ 운영개선을 위한 실과설문 실시('99. 12월)

[시정·처리요구]

도심지내 도유재산중 비활용공공건물에 대한 활용방안 강구

[처리결과]

- 공공목적 비공여재산 현황

구 분	계	유상임대	무상임대	활용검토
사업소(개소수)	5	2	2	1
건물(천㎡)	9	5	3	1
부지(천㎡)	28	10	6	12

- 비활용 공공 건물에 대하여는 공공기관 및 투자기업 등에 중점 임대
- 재산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적 강구 ⇒ 적극적인 관리 운영 실시

[시정·처리요구]

도의 실정에 맞지 않는 도세감면사항 발굴대책 강구

[처리결과]

- 감면유형 : 25개유형 174종
 - 지방세법상 : 18개유형 140종
 - 조례상 : 7개유형 34종
- ※ '98 감면규모 : 526억원
- 2000년도 지방세 정책과제로 채택건의('99. 11월, 행정자치부)

- 기존의 세제개편과 연계, 새로운 세제 개편과제로 선정
- 세제개편 세미나 개최(2000. 2월)
 - 정책건의 · 타시도공동 법제화추진
- 우리도의 여건에 맞지 않는 비과세 감면사항의 지속발굴 추진

[시정·처리요구]

송전탑에 대한 지방세 과세방안의 마련

[처리결과]

- 총 3개구간 244km 526기(가설중)
 - 태백~가평(765kV) : 155km 268기
 - 울진~태백(345kV) : 38km 104기
 - 태백~가평(154kV) : 51km 154기
- 2000년도 지방세 정책과제로 채택 건의('99. 11월, 행정자치부)
- 기존의 세제개편과 연계, 새로운 세제 개편과제로 선정
- 세제개편 세미나 개최(2000. 2월)
- 세미나개최결과 정책건의 및 타시도와 공동으로 법제화 추진

[시정·처리요구]

지방세이의신청 최소화 대책수립 추진

[처리결과]

- 지방세구제업무 처리현황('99)
- 과세전 적부심사 : 37건
- 지방세이의신청 · 심사청구 : 60건
- 과세예고 및 충분한 소명기회 제공으로 민원예방
 - 수시부와 지방세는 부과전 과세예고
 - 과세시 소명기회 부여 및 과세전 적부심사절차 사전안내
- 세무공무원의 업무연찬으로 과오납의 최소화

[시정·처리요구]

주민등록증과 관련 개인의 정보누출 최소화방안강구



[처리결과]

- 개인정보유출방지를 위한 제도
- 열람 또는 등, 초본의 교부 신청인을 제한(주민등록법)
- 최소한의 공무원에게만 전산시스템 사용권 부여
- 공무원 상 조회시에도 산전결재후 조회 확행
 - ※ 직무를 이용한 타인의 정보누출시 공공기관의개인정보에관한법류에의거 처벌
- 주민등록 또는 정보교육시 수시교육
- 시군읍면동 업무지도

[시정·처리요구]

「도민의날」과 관련 「어머니배구대회」 개최에대한합리적 방안 강구

[처리결과]

여론수렴의 절차를 거쳐 1·2부로 구분하여 개최하는 방안 검토(체육청소년과의 협의)

[시정·처리요구]

강원도인재육성차원에서 숙우회원과 도의원과 도의원과의 간담회 개최 추진

[처리결과]

- 숙우회원과 도의원과의 「대화의 장」 운영계획
 - 기간 : 연2회(4, 11월)정례화
 - 참석 : 도의원, 숙우회원
 - 내용 : 도정설명 및 의견수렴

[시정·처리요구]

춘천여학사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대책 강구

[처리결과]

- 시설비 : 4백만원(난방비)
- 운영비 : 35백만원 정도
 - ※ 지역인재 육성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

[시정·처리요구]

인재관리측면에서 외국어능력우수자활용증대방안 강구

[처리결과]

- 외국어어학교실 운영(연2회)
- 시군외국어능력우수자 발탁
- 외국어능력우수자활용계획 수립
- 국제협력·근무희망부서 우선배치 등

[시정·처리요구]

보존부적합재산을 사용자에게 매각,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처리결과]

- '99매각실적
 - 매각토지 : 160필지 2,833천㎡
 - 매각수입 : 4,184백만원
- 연2회이상 추진실태 파악 ⇒ 실수요자에게 적극 매각

[시정·처리요구]

지방자치단체 관용 차량의 액화석유가스 사용방안 검토로 운영비 절감대책 강구

[처리결과]

- 본청보유차량 : 28대중
 - LPG 사용차량 : 1대(승합)
- LPG차량 사용시 문제점
 - 가솔린 차량을 LPG차량을 구조 변경시 출력저하(가솔린의 70%) ⇒ 도내 도로여건상 구조 변경 불합리
 - 주요의전용 활용시 지원불가(안전상 사유)
- 소형차량 신규 구입시 LPG차량 우선 구입

[건의사항]

민간단체의 국비보조금 사업성과를 극대화 방안 강구



[처리결과]

- 사업비 지원결정시 심사위를 구성
 - 사업계획, 추진능력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 결정
- 실적평가
 - 워크샵·서면평가, 평가위 심사평가
- 정산보고
 - 보조금 집행내역, 사업성과 등 종합분석

[건의사항]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 구성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노력 강구

[처리결과]

- 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및 규칙 제정공포 : '99. 3. 20
- 가입금지대상업무 공고 : '99. 3. 20~26
- 설립관련 설명회 개최 : 2회
 - 6급이하직원의 고충청취 등
- 양구군직장협의회 설립 : '99. 11. 23
- 직장협의회 설립여건 조성
 - 협의회 취지 적극 홍보 자율 구성토록 지속 권장
- 설립구성 운영시 행·재정지원
 - 도지사와의 정례적 간담회 개최
 - 협의회 건의사항 적극수렴 시책반영

[건의사항]

각종행사에 지원되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며 도지사가 참석하는 행사가 많은데 향후 도민복지시책을 펼치는데 노력하여 줄 것

[처리결과]

- 도단위 행사개최 현황('98)
- 도민의 날 행사 등 64회 7억원 소요
- 향후 추진계획
- 획일적인 대규모 행사 지양

- ・ 행사경비 절감
- 유사행사 통·폐합 개최 등을 통한 행사수 축소
- ※ 정부행사간소화지침 철저 이행

[건의사항]

민간인 포상수여에 대한 남발로 포상의 권위 및 위상이 저하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필요

[처리결과]

- 포상수여현황

'99년도	'98년도	'97년도
2,576명	2,414명	2,652명

- 공적심사위원회 엄격한 심사
- 연간 민간인 포상계획 수립시 적정규모 산정
 - ・ 예년 수준 범위내 : 2,600명
- 포상의 영예성 제고를 위한 철저한 관리

[건의사항]

집단민원과 도민소리방 등에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 철저 요망

[처리결과]

- 건별 카드화 관리 및 접수·처리사항 전산관리
- 사안별 담당자지정, 건의사항 적극해결
- 홍보물 제작 배포 등
- ※ 갈등·분쟁 등 집단민원 해소를 위한 인터넷토론방개설·운영(상반기 중, 도청홈페이지)

[건의사항]

중앙과 도,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강구

[처리결과]

- 중앙과 도,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
 - ・ 1:1상호교류 원칙(협의조정)
- 추진실적



- 도 ⇔ 중앙 : 4명 (행정)
- 도 ⇔ 시군 : 19명 (행정 9, 기술 10)
- 인사교류계획에 의견 추진

[건의사항]

재난위험시설의 안전대책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불미스러운 사고 사전예방에 만전

[처리결과]

- 재난위험시설 (E, D급) 현황
- 시설현황 : 124개소
 - E급 : 9개소 (건축, 교량)
 - D급 : 115개소 (교량)
- 내용
 - 시설별 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 책임자지정
 - 정기 및 수시점검 실시
- 장·단기 정비계획에 의거 연차별 해소사업 추진
 - ※ '99추진실적 : 38개소 894백만원
- 공공시설, 민간시설 수시 정밀검사 실시
- 재난발생 우려시 응급조치계획수립
 - 대피명령, 경계구역설정, 강제대피조치 등

[건의사항]

퇴출공무원에 대한 지속적 관리로 소외가 최소화 방안 강구

[처리결과]

- 2000년말까지 별도정원 인정
 - 직권면직 등 강제 퇴출사례 없음
- 명예·조기퇴직 등 자진퇴직자에 대하여
 - 퇴임후의 계획과 거취 등 파악
 - 공로패 수여 및 오·만찬 실시
 - 훈·포장 전수식 별도실시 등 배려

[건의사항]

강원인재육성포럼을 통하여 동참할 수 있는 시책추진발굴 요망

[처리결과]

- 인재육성포럼 개최계획 (2차)
 - 일시 : 2000. 1/4분기중(예정)
 - 장소 : 미정
 - 참석대상 : 강원개발연구위원 등
 - 주관 : 강원개발연구원
 - 내용 : 강원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라 방침결정, 중장기계획으로 인재양성시책수립
 - ※기개최실적 : '99. 6. 3. 공영빌딩

[건의사항]

여성공무원의 임용확대를 위한 1실과 1명이상 배치

[처리결과]

- 여성공무원 우대시책 중점 추진
 -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
 - 1실과 1여성 배치 원칙
- 여성공무원의 인적자원 지속확충
 - 우수 여성공무원 우선발탁 배치
- 확충된 인력범위내에서 주요보직 및 주요부서 배치 점진적 확대 추진

[건의사항]

회원권에 대한 지방세 과세방안 적극 검토

[처리결과]

- 회원권 현황('99)
 - 골프 : 6골프장 4천명
 - 콘도 : 31콘도 74천명
- 2000년도 지방세 정책과제로 채택 건의('99. 11월, 행정자치부)
- 기존의 세제개편연구와 연계 새로운 세제개편과제로 선정



- 세제개편세미나 개최 : 2000. 2월
- 세미나 개최결과 정책건의 및 타시도와 공동으로 법제화 추진

○ 消防本部

[시정·처리요구]

청소년시설 및 노유자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특별한 안전관리대책 수립 추진

[처리결과]

- 청·노유자시설 소방안전종합대책
- 특별소방검사
 - 기간 : '99. 7.
 - 대상 : 935개소(청소년 65, 노유자 870)
 - 결과 : 199개소 382건 시정보완
- 접근도로확인 및 인근응수시설 정비 : 57개소
-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훈련 : 50개소
- 소방안전수칙 계첩 : 4,000매
- 홍보활동 전개 : 559회
- 수련시설관계자등 안전교육 : 11,457명
- 수련시설관리카드 작성
- 소방안전검사 : '99. 12~2000. 1
- 지속적인 체험위주 안전교육
- 화재진압 인명구조 훈련
- 소방홍보활동 지속 전개
- 관계법령 개정 건의

[시정·처리요구]

소방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수당이 타 시도와 비교하여 열악한데 이에 대한 대책 강구

[처리결과]

- 지급시간 개선(외근근무자 기준)
 - '98 : 20시간

- '99 : 25시간
- 2000 : 30시간
- 향후 지급시간 개선장기목표 : 75시간

[시정·처리요구]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대한 활성화방안 강구

[처리결과]

- 소방출장소 구급차 배치지역의 대형운전면허소지대원 소방차운전 지원팀 운영
- 월동기 재래시장등 취약지 방화 순찰, 초동출동대 편성 운영
- 봄철 화재 및 산불예방 홍보활동 전개

[시정·처리요구]

소방법령 완화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책 수립 추진

[처리결과]

- 특수장소관계자 년1회이상 안전교육 의무폐지
- 대량위험물저장소 분기별 1회훈련 폐지
- 소방검사 완화
 - 1급, 자체소방대편성대상 등 : 연2회 → 1회이상
 - 그밖의 소방대상물 : 연1회 → 2년 1회
- 규제완화에 따른 안전대책
- 법령개정건의(청·노유자시설)
 - 건축허가동의확대 : 400㎡ → 100㎡이상
 - 스프링클러설치대상확대 : 1000㎡ → 600㎡이상
 - 부실소방감리처벌 강화 : 1년이하 징역, 500만원이하 벌금
 - 건축허가동의절차 강화 : 설계도, 계획도 첨부
- 유관기관 합동안전검사 실시
- 책임담당제 지속운영(대형, 다중업소)
- 협회등 모임활용 소방안전교육 실시
- 언론매체활용 홍보활동 지속실시



[시정·처리요구]

'98년이후 소방파출소 5개소를 신설하였지만 개설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 강구

[처리결과]

- '98이후 관서신설
 - 파출소 4개소 : 강릉옥계·포남, 원두 둔내, 영월신동
 - 수난구조대(1) : 소양호 수난구조대
- 미개소 사유
 - '97 직제승인후 I.M.F 국가경제난으로 공무원 증원불가
 - '98 지방조직 개편으로 기존 정원 120명 감축
- 운영실태
 - 현재 파출소 4개소에 1일 2명씩 배치 임시운영
 - 소양호 수난구조대 4명 배치운영
- 소방공무원 정원관련규정 개정 정원확보방안 강구
- 정원 확보시까지 현행대로 유지

[시정·처리요구]

시장등 소방차량출동이 필요한 곳에 대한 소방통로 확보대책 수립 추진

[처리결과]

- 대상 : 재래시장등 취약지역 선정
- 방안
 - 정기·불시 지도단속
 - 소방차 불시 통행훈련
 - 주민계도·홍보
 - 노점좌판의 이동식화
 - 차광막의 도르래식화
 - 아파트단지내 소방차전용 주차라인 표시

[시정·처리요구]

고지대 및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소방안전대책 방안강구

[처리결과]

- 소방차통행로 확보
 - 소방통로 확보대책과 병행 추진
- 주민합동 소방훈련의 내실화
- 주민초기소화용 비상소화장치설치
- 지역별 경방계획의 카드화 관리

[시정·처리요구]

농촌지역에 맞는 소방차가 배치될 수 있도록 전면 재조정 추진

[처리결과]

- 일정 : 2000. 1월~2월
- 방법 : 소방서별 자체계획 수립추진(소방본부 시행계획 통보)

[시정·처리요구]

「강원도소방본부」가 진정한 도민의 소방기관이라는 이미지 홍보방안 수립 추진

[처리결과]

- 강원소방 CIP
 - 상징물 확정 : 4종 7점
 - 단계별 활용
 - 1단계 : 문서·청사·차량·피복활용
 - 2단계 팜프렛·리후렛등 제작
- 강원소방홈페이지 개설
 - 설치관서 : 본부등 5개소
 - 내용 : 소방상식 및 민원안내 도민참여 대화방 개설
- CIP추가응용요소 지속 개발
- 관서별 홈페이지 구축
- 소방안전가이드 제작·배포

[시정·처리요구]

수난구조대 근무직원들에 대한 복지시설의 조속한 조치



[처리결과]

- 세면장, 주방, 화장실 등 생활환경열악
- 정원 18명 → 현재 4명으로 운영
- 주방 및 세면장 설치
 - 기간 : '99. 12. 20~12. 29
 - 시공 : 새한설비(춘천시 후평동)
 - 소요액 : 5,543천원
 - 면적 : 기존건물 신발장옆 2.1평 증축(조립식판넬)
 - 부대시설 : 싱크대 1조(찬장포함) 환풍기 1개, 순간온수기(가정용) 1대, LP Gas 20kg 1개, 자동펌프 1대, 샤워시설 1조, 물탱크(FRP 1톤)
 - ※ 화장실 → 공동화장실 이용
- 정원승인토록 지속추진 등

[시정·처리요구]

의용소방대출동수당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대책 강구

[처리결과]

- 각 소방서별 연2회 책임점검지도
- 소방서별 출동수당 지급실태 및 점검 지도사항에 대한 소방본부의 연1회 확인점검

[시정·처리요구]

소방인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강구

[처리결과]

- 소방인력 부족현황

구 분	소방력 기준정원			현 정원		
	계	관서	장비	계	관서	장비
정원	2,441	1,273	1,168	1,209	692	517

※ 소방력기준대비 현정원 : 49.5% 불과

- 문제점
 - 파출소 화재·구조·구급활동 동시 수행불가
 - 소방차량 운전요원의 절대 부족으로 장비운행 차질

- 각종 소방검사, 장비관리, 일반행정 업무 형식적 수행 불가피
- 대책
 - 장기적으로 중앙부서와 협의 정원증원 방안 강구
 - '98 조직개편후 인근관서 동시출동 체제 구축
 - 의용소방대원 출동체제 구축

[건의사항]

인제파출소의 출동로가 좁아 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전대책 필요

[처리결과]

- 현청사 현황
 - 위치 : 인제읍 상동리 381
 - 부지 : 3,348㎡중 760㎡(읍사무소 부지)
 - 청사 : 철근콘크리트 지상3층 1동 461.22㎡
 - 소유자 : 인제군수(무상사용 승낙)
- 이전신축 추진
- 추진방향
 - 부지 : 1,000평~1,500평 규모의 토지를 인제군에서 제공(구두약속, 위치 선정중)
 - 건축 : 도비 500백만원(2000. 1회추경 또는 2001년 당초예산 요구)
- 추진일정
 - 부지확보 : 2000년 상반기
 - 건축 : 2000년하반기~2001년 상반기

[건의사항]

시·군의용소방대의 증원으로 효과적인 운영방안 검토

[처리결과]

- 타 시·도 실태조사
 - 대의 편성 및 대원수
 - '99년도 예산현황
- 수집자료 비교분석후 결정



[건의사항]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으로 부실공사 예방 철저

[처리결과]

- 소방관련업체 지도 감독
- '99기동검사반 운영 (2회)
 - 대상 : 감리완공대상 등 101개소
 - 결과 : 11개소 25건 시정보완
- 감리완공대상 중간지도점검 : 153개소
- 기동검사반 운영 (연2회)
 -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현장확인점검
 - 도출된 문제점 세부 보완대책 수립
- 감리완공대상 중간지도점검

[건의사항]

「119구급예약제」의 시행에 따른 내실있는 추진

[처리결과]

- 계획수립 : '99. 2. 11(방호 13840·117)
- 대상 : 독거노인, 장애인등
- 내용
 - 정기통원치료
 - 관공서, 은행 등 민원대행 등
 - ※ '99. 3/4분기 추진실적
 - 2,383명(독거노인515, 장애인385, 만성질환자228, 신부전증 환자872, 기타383)
- 수혜대상 관리카드(546명)정비 → 연2회
- 119구급대원 친절봉사 교육강화 : 월1회(직장교육시 병행)

[건의사항]

소방공무원 승진심사위원회에 대한 편성 철저

[처리결과]

소방공무원 승진심사위원회는 소방공무원법 및 승진심사규정에 의해 계급별 승진심사위원회 (15

명내외)를 3심제로 운영하는 등 심사위원 편성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 公務員教育院

[시정·처리요구]

교육훈련성적 우수자에 대한 인사우대 대책 강구

전산교관의 조속한 배치

수화교육과정에 시군 보건소 공무원도 참가할 수 있는 계획수립

[처리결과]

- 도 인사부서에서 최근 3년간 도 및 시군 성적우수자 명단 요구가 있어 통보 조치
- 금후 도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인사혜택을 받은 수 있도록 지속 추진
- 도 조직관리부서와 협의 추후 조직정비시 전산직이 배치될 수 협조
- 2000년도 교육계획에 시군 보건소 직원도 입교할 수 있도록 교육계획에 반영

[시정·처리요구]

장애인 공무원이 교육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책 수립추진

[처리결과]

- 수직형승강기, 통행접근로, 화장실 설비 등 장애인 편의시설 금년중 설치(2000년도 예산 천만원 계상)

[건의사항]

교육원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수시 시행

[처리결과]

- 소방, 전기, 가스 등 분야별로 당해 법규에 의거 자체 전문업체 위탁 점검 확행

[건의사항]

여성공무원의 교육인원 확보를 위해 탁아소 등을 설립운영하는 방안 강구

신규자반에 의회실무과목을 편성운영 방안 강구



[처리결과]

- 교육시설 여건상 당장 실현은 어려움으로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
- 2002년도 교육계획에 반영

○ 江原開發研究員

[시정·처리요구]

연구원의 운영자금 관리에 대한 대책 강구

[처리결과]

- 현재 기금총액은 191.5억원이며 기금출연 금융기관인 조흥은행, 제일은행, 농협에 정기예금의 형식으로 분산예치하고 있음.
- 현재 예치금리는 7~8%정도이며 향후 기금예치시 시중의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리와 상품을 조회하여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기금을 예치·운영할 계획임.

○ 農政山林局

[시정·처리요구]

빈 농약병 수거 목표량 상향조정과 100% 실적 제고방안?

[처리결과]

- 중앙 : 환경부
- 도 : 환경정책과
- 기관 : 자원재생공사
- 협조 : 도 농산지원과
- 농약빈병수거 목표량 결정
 - 환경부, 시도, 한국자원재생공간 협의로 수거보상분담액 결정 및 목표량 결정
 - ※ '99 수거실적(농약공업협회자료)
 - (목표량) 1,632 ⇒ (실적) 1,713천개 103%달성 전국 최우수 실적
- 농업인, 판매상에게 농약빈병 수거 집중교육 및 홍보실시
- 집중수거의 날 실시 등 대대적인 수거 캠페인 전개

[시정·처리요구]

소, 돼지, 닭을 제외한 기타 가축사육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처리결과]

- 흑염소, 사슴 등 기타 가축 사육농가 시설개선 및 종축구입 등 : 농어촌진흥기금지원 (1, 251 백만원)
- '99년 토종꿀 명품화사업 지원 (지방비 45백만원)
- 도 농어촌진흥기금 및 농업경영 종합자금 등을 활용 기타가축 사육농가 지원계획

[시정·처리요구]

한우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소 육질개선 방안

[처리결과]

- 강원한우 브랜드화사업 지속추진
 - 알콜발효사료공장설치 1개소
 - 알콜발효사료공급·거세 1,500두
 - 강원 한우브랜드판매점 설치 1개소
- 사업비 : 730백만원 (도비 143, 시군비 361, 자담 226)
 - 축산기술연구센터 연구추진중
 - 유전형질을 활용, 고급육출현율 향상
 - 거세등을 이용 고급육 생산시험

[시정·처리요구]

암소 다산정책 및 다산어미 소 값 손실분에 대한 다산 장려금등 인센티브 도입방안 강구

[처리결과]

- 지속적인 한우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산장려금제 시행
 - 지급대상
 - 가축개량사업(혈통등록) 및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 동시 참여농가의 3산이상 송아지생산 한우암소
 - 지급액(두당)
 - 100천원(송아지생산시)



- 재원 : 축산발전기금 보조
- 송아지 생산안정제 실시
 - 평균거래가격과 안정가격과의 차액보전(두당 20만원 한도)

[시정·처리요구]

강원도의 휴경면적은 전체 농경지의 3.6%인 4,242ha로 전국 휴경을 1.2%보다 3배이상 높아
주곡 자급자족에 미치는 영향평가와 휴경농지 감소대책

[처리결과]

- 휴경논 생산화 확대 추진 : 80ha
 - '99년까지 재생산 실적 : 827ha
- 대리경작자 지정확대('99 : 25ha)
 - '96이후 취득 처분대상 농지중 영농기이전 미처분 농지는 대리 경작자 지정 후 처분 유도
 -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농지는 대리경작자 우선지정 휴경억제
- 농지이용실태 조사강화
 - 조사결과 교차확인
 - 이행현황 수시점검

[시정·처리요구]

경지정리관련 부실공사 추방 및 민원발생 방지 대책

[처리결과]

- 부실공사 및 민원신고센터 운영
 - 장소 : 공사감독 사무실
 - 기간 : '99. 11~2000. 5. 31
- 부실공사 방지 지도·감독 철저 공문시달(2회)
- 내용
 - 부실시공 등으로 민원사태가 없도록 지도감독 철저
 - 3개기관 통합에 따른 업무공백이 없도록 사업추진 철저
 - 품질관리교육 등 부실공사 예방
 - 교육일시 : 2000년 3월중
 - 대상 : 시군 토목직 공무원

[시정·처리요구]

경지정리에 따른 용도 상실한 농업용 소형관정 정리방안

[처리결과]

- 농업용 관정보유 현황
 - 보유 : 13,803공
 - 폐기 : 148공
- 관리계획
 - 경지정리 지구내 기시설 되었던 소형관정은 사업완료후 필요치 않으므로 관정.양수기 관리지침에 의거 불용결정 폐기처분하고 있음
- 불용결정 폐기처분 : 시장·군수
 - 관개용수 부족시(수혜지역말단 지구등) 보충용수 확보를 위하여 대형암반관정을 개발하고 있음.

[시정·처리요구]

중산간지에 대한 간이 경지정리 방안강구

[처리결과]

- 간이경지정리사업은 휴경방지를 위하여 중산간지등 영농여건 불리지역을 정비, 농기계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비사업
- '99년 가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 ⇒ 확대추진 계획
 - 면적 : 152ha
 - 총사업비 : 1,120백만원

[시정·처리요구]

강원도 농어업인대상 관련 광고행위 억제 및 예산지출 동결

[처리결과]

- 향후 적재적소에 광고되도록 하며 절약하는 방향으로 노력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용을 강화하여 사업내실 추진

[시정·처리요구]

우량 백합구근 생산 체계 강화로 백합화훼 농가지원 대책강구



[처리결과]

- 추진실적 (94~99)
 - 사업량 : 1,200만구
 - 사업비 : 6,159백만원
 - 도비1,121, 시군비1,959, 자담3,079
 - 화란으로부터 종구를 수입하여 1년간 양구후 절하재배
 - 종구구입 절감으로 수출증대
 - 백합종구 구입(양구) 지원
 - 사업량 : 200만구
 - 사업비 : 1,000백만원
 - 백합종구자금화추진(2000~2003)
 - 구근센터설치 : 1개소(농업기술원)
 - 종구생산단지조성 : 10ha
 - 대관령지구2, 편치불지구1
 - 2000년 추진
 - 사업량 : 구근센터 1개소, 종구구입 170만구
 - 사업비 : 1,595백만원(국670, 도432, 시군238, 자담255)
 - 2003년까지 자금체제구축 ⇒ 2004년부터 절화용 종구공급

[시정·처리요구]

제2임산물 종합유통센터 유치무산에 따른 강원도지사의 전략실패에 따른 책임소재 및 상응하는 조치

[처리결과]

〈강원도 추진상황〉

- 임산물유통센터 유치건의('99. 5)
 - 농림부, 산림청, 임협중앙회
- 도지사 관계기관 방문협의
 - 임협중앙회('99. 5. 10)
 - 산림청('99. 5. 17)
- 행정부지사, 농정산림국장 방문 건의('99. 11. 26)

- 산림청, 임협중앙회
- 도관계관 임협중앙회 방문건의
 - 산림관리과장 : 3회
- 도의회대표단 관계기관방문(12. 3)
- 시, 군의장단 관계기관 방문(12. 6)
- 임업후계자 연합회(이자수의 24명) 관계기관 방문(11. 24)
- 강원지역 32개 시민단체 강원건립 성명서 발표(11. 15)

〈임협추진상황〉

- 건립후보지 선정 : 3개소
- 부지선정 위원회 개최 : 6회
- 부지선정위원회 현장답사 : 2회
 - ※ 2000년 상반기 부지확정 예정으로 실패한 것은 아님
- 우리도 유치의 당위성을 적극 홍보하여 반드시 유치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 관계기관과 협의강화 등

[시정·처리요구]

농촌에 산재한 폐비닐 유상 수거방안 강구와 비닐수거를 통한 토양 보존방안 대책

[처리결과]

- 폐기물 수거는 원인발생자 부담 원칙(환경부)
- 유상수거 실시는 현실적 어려움
 - '99수거실적 : 3,872톤
- 새농어촌건설운동 차원 범조성
 - 마을환경정비의날 등 대대적인 일제수거 실시 및 캠페인 전개
- 지속적인 수거교육 및 홍보
 - 생산성저하 및 토양오염 등

[시정·처리요구]

강원도의 화훼수출 신장을 위한 전략과 지원육성방안 강구

[처리결과]

- 전략 품목육성 : 백합, 장미, 국화, 꽃도라지, 갈라, 자생화 등



- 백합종구 자금체제구축 ⇒ 수출경쟁력 강화도모
- 수출유망품목단지조성 지속확충과 전업화 추진
- 수출목표설정 : (99) 1,800백만원 ⇒ (2000) 3,000 ⇒ (2005) 10,000백만원
- 백합종구 자금추진 : 2003년까지
- 강원도산 화훼류 홍보추진
 - 꽃박람회참가홍보 : 2회 (일본효고현, 경기 고양)
- 기술지원단 운영 : 년3회
 - 도, 농업기술원, 대학, 수출업체

[시정·처리요구]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규제지역 축소를 통한 전지역 확대방안 강구

[처리결과]

- 현재 환경규제 지역인 상수원보호구역, 자연공원지역 등으로 지원이 한정되어 있어 규제지역 밖의 희망농가가 많음
- 확대에 어려움이 있으나 규제지역 이외의 지역도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추진

[시정·처리요구]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보조단가 상향 대책

[처리결과]

- 대상작목 구분없이 보조단가를 ha당 524천원으로 일괄적용함에 따라 채소류, 과수 등 토지집약적 작목의 농가는 상대적 불리
- 작물별 지원기준이 마련되도록 중앙건의 추진

[시정·처리요구]

불량종균생산 및 유통 단속강화 방안

[처리결과]

- 99단속회수 : 240회 (도7, 시군233)
- 단속인원 : 395명 (도10, 시군385)
- 지도·단속사항

- 생산업체 : 불량종균 및 미등록 종균생산 및 유통금지
- 재배농가 : 불량종균 및 미등록 종균사용금지, 우량종균선별요령
- 위반건수 : 없음
- 우량종균 생산을 위한 생산업체 (9개소) 협의회개최 (1분기중)
- 생산업체 합동지도 점검 (연2회)
- 재배농가 피해바이 교육실시
 - 재배농가 현지교육 : 5회
 - 시군별 겨울철 영농교육 실시
- 불량종균 피해방지 홍보
 - 반상회, 각종교육시 홍보강화

[시정·처리요구]

유류대 인상에 따른 겨울농사 지원대책강구

[처리결과]

- 보온커텐 등 난방용 에너지 절감 시설 개보수지원 : 4개법인 96백만원
- 채소, 화훼, 수출농가 면세유류 구입 자금 융자지원 : 497백만원
 - 채소 수출농가 : 277백만원
 - 화훼 수출농가 : 220백만원
- 온풍 난방기 등 난방시설의 열효율 제고를 위하여 '99. 11~12월말까지 일제점검 순회수리봉사 실시
- 농업경영종합자금 융자지원
 - 에너지절약시설 (수막시설, 심야전기이용, 지중난방시설, 보온커텐시설, 전조재배시설 등) 개보수
 - 연리 5%,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화훼, 채소수출농가 유류구입자금 융자
 - 농가당 20백만원 (연리5%)
- 새해 영농설계교육시 에너지절감 대책 중점홍보
- 시설채소 재배농가 에너지절감 우수 사례 수집 전파

[시정·처리요구]

농산물 허위표시 단속 강화 방안강구



[처리결과]

- 원산지표시 대상 : 436개 품목
 - 수입 농산물 : 176개 품목
 - 국산 농산물 : 145개 품목
 - 농산물 가공품 : 115개 품목
- 농산물 부정유통신고센터 설치
 - 도, 시군, 농관원, 농·축협 등
- 부정유통고발 포상금지급 활성화
 - 위반내용을 고발·신고한 자
 - 지급액 : 50~1,000천원
- 합동단속반 편성운영
 - 행정, 농관원, 농축협 등
 - 시군별 월 1회이상 실시
- 농산물 명예감시원 적극 활용
 - 명예감시원 147명(소비자단체 36, 생산자단체 111명)
- 홍보전단 제작배포 : 100천매
 - 당초예산에 5,000천원 확보

[시정·처리요구]

가축질병 관련 매월 발표하는 가축전염병 발생월보를 통한 한달이 지난 다음에 공개한다는 업
무쇄신방안 및 예방책 강구

[처리결과]

- 가축전염병 발생정보 신속제공
- 도내 발생시
 - 발생즉시 방역기관을 통하여 농가에 홍보, 해당지역 가축입식 자제지도
- 인접시도 발생시
 - 매월분석, 질병발생 사항을 각시군에 전파, 사전대비 유지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발생정보공개
 - 농림부, 수의과학검역원, 강원청정축산농장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발생정보 상시열람 추진

[시정·처리요구]

버섯 재배농가 지원 대책으로

가. 4계절 재배시설 지원

나. 자금지원 단가 현실화

다. 왜곡된 버섯유통구조 개선(중간상인들의 버섯 산지값보다 높게받아 느타리 버섯의 소비위축을 부추기고 있는 등)

라. 생산량 증가와 소비침체로 버섯값이 생산비 수준을 밀돌고 있는데 대한 지원방안

[처리결과]

- 버섯재배사 시설개선사업 지원

· 사업량 : 20동

· 사업비 : 400백만원

※ 도비 60, 시군비 140, 자담 200백만원

〈기대효과〉

- 년중 생산시설(냉동기, 수막시설)

- 홍수출하방지 및 고품질 버섯생산

- 설치규모 : 35평형

- 동당단가 : 20백만원

- 자금지원 : 보조50%, 자부담 50%

※설치단가는 기현실화 조치

- 농협계통출하 확대

· 대부분 농협계통 유통(90%이상) 가락동시장에 일괄출하

· 농협계통출하 확대추진 및 냉동 차량 보유 영농법인, 작목반 활용 인근농가 생산품 공동출하 유도

- 직거래 확대

· 농협 하나로마트 버섯전문점, 대형유통 마트에 직거래 확대

- 시설현대화 자동화로 생산비 절감

- 동계 영농교육, 전담지도사 배치 고품위, 생산성 향상 중점지도

※손익분기점(추정) : 상자당 5,000원

- 노후 재배사 시설개선 지속추진



[시정·처리요구]

도지사추천 농특산물 리콜제 도입운영방안

[처리결과]

- 「강원도 농수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 품질하자에 대한 반품, 변상 등을 조치 할 수 있는 규정 마련

[시정·처리요구]

1지역 1명품운영 관련 활성화 방안

[처리결과]

- 관련조례제정 : '96년
- 기금조성 : 19억원 ('99말)
- 융자지원 : 22개사업, 19억원
- 기금확대조성(2002까지) : 40억원
- 지원방침
 - 생산설비, 저장시설 등 생산기반 지원위주에서 판매확대를 위한 포장 제품디자인 개발 등으로 지원범위 확대

[시정·처리요구]

새농어촌건설운동과 관련 중점과제인 친환경농어업 관광농어업, 정보화농어업 실천을 위한 구체적 사업 내역과 이행방안

[처리결과]

- '99 추진실적
 - 친환경농업지구조성 : 2개소
 - 중소농고품질단지 : 63
 - 환경농업 직접지불제 : 818ha
 - 토양개량제 공급 : 93천톤
 - 객토 : 14,000ha
- 2000 추진계획
 - 친환경농업지구조성 2개소 20억원

- 친환경농업시범마을 2개소 0.9억원
- 중소농고품질생산단지 7개소 17억원
- 환경농업직접지불제 818ha, 4.3억원
- 토양개량제 공급 41천톤 27억원
- 객토 4천ha 50억원
- 퇴비증산 및 시상 784천톤 0.2억원

〈관광농어업 추진〉

- '99 추진실적
 - 관광농어업 특성화전략 계획 수립
 - 4계절형 관광농업시범지구 18개소
 - 新Green Tour Course개발 17개코스
 - 관광농원 58개소, 민박마을 25개소
- 2000 추진계획
 - 4계절형 관광농업시범지구 조성
 - ※관광농어업상품개발 : 향토음식, 특산물판매장, 테마관광농어업 등
 - 新Green Tour Course 운영 및 홍보
 - 관광농원 및 민박마을조성 6개소
 - 사업비 : 12억원 (융자 8, 자부담 4)
 - 새천년상징 자연환경조성

〈정보화 농어업 추진〉

- 추진계획
 - 우수마을 PC구입지원 : 36대
 - 농업인 정보화 교육
 - 교육인원 : 600명
 - 교육내용 : 인터넷, 농업정보검색 등
 - 농업정보 119서비스 운영
 - 운영기관 : 강원대학교
 - 운영내용 : 컴퓨터 활용에 대한 현지방문 문제해결 및 지도
 - 첨단농업기술연수센터 농업인 정보화 과정운영 : 7개과정, 280명

[시정·처리요구]

도내 양곡가공시설 과잉에 따른 종합적인 합리화 대책



[처리결과]

- 양곡관리법상 도정공장시설은 1일 가공능력 15톤을 기준 대·소규모 시설로 구분하여 등록제로 운영
- 양곡관리 법령을 개정하여 규제를 철폐('99. 7. 29)하고 자율적으로 운영
 - 양곡도정업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고, 1일 2톤미만의 시설은 신고없이 영업가능
 - 자가도정 시설은 제외한 임도정 시설은 통폐합 내지는 퇴출 등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이 될 것으로 판단

[시정·처리요구]

수출 농수산물 생산 농어민 또는 수출업체 지원을 위한 실과(국제 협력실, 해양출장소)와 공조 협조체제 강화와 지원대책

[처리결과]

- 관련부서 공조·협조체제 강화
 - 국제협력실
 - 통·번역 등 외국어 지원협조 및 수출관련 정보 교환 등
 - 해양출장소
 - 농수산물 해외특판전 공동참가와 수출정보교환 및 업무협조
- 수출농수산물 생산농어민 및 수출업체 지원대책
 - 수출전략품목 수출지원
 - 화훼류 수출단지 조성지원
 - 화훼류 대미수출 물류비지원
 - 해외특판전 개최 등 해외시장 개척활동 참가지원
 - 수출입정보(농수산물유통공사협조)
 - 농수산물 수출교육 및 상담실시

[시정·처리요구]

농수산물 해외시장 또는 해외박람회 참가시에 경쟁력 있는 제품선정, 투명성 확보방안

[처리결과]

- 참가 희망업체 전원수용
 - 유사품목 중복 및 특정업체 지속 참가경향

- 참가대상국가 수출유망품목 및 경쟁력있는 제품을 엄선참가조치
- 동일지역 동일상품 참가지양
- 특정업체 참가 년3회 이내 제한
- 해외특판전 성격에 따라 「참가기준 설정」으로 엄격심사후 참가결정

[시정·처리요구]

농가부채로 인한 농지 경매현황을 파악을 통한 농가부채 경감 등 지원방안 강구

[처리결과]

- 농지경매현황('99. 11. 30기준)
 - 총 : 459농가, 499ha 경매진행중
- 농가부채 경감대책추진
- 상호금융대체자금지원
 - 호당 1천만원한도(1년간 6.5%)
- 정책자금 상환연기(1년간, 5%)
 - '98~'99상환연기된 자금 및 2000년까지 도래자금
- 농업경영개선자금지원
 - 2년거치 3년분할상환, 6.5%
- 연대보증 부담경감추진
 - 농업용연대보증 대출금을 → 농립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으로 대체

[시정·처리요구]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 별표를 악용 젓소 소족과 머리가 한우로 둔갑하는 부정유통 방지 대책 강구

[처리결과]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하여
 - 한우는 적색, 젓소(숫컷, 처녀소), 육우, 교자우는 녹색,
 - 출산경력이 있는 젓소는 청색으로 구분표시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합격 표시를 지육 및 기타부분(머리, 꼬리, 족 등) 도 철저를 기하도록 가축위생시험소에 조치('99. 12. 12)
- 향후 주기적인 이행실태 점검으로 둔갑사례가 없도록 조치



[시정·처리요구]

가축전염병인 부루셀라, 오제스키병 사전예방과 질병 감염된 가축의 부정유통 적발대책 강구

[처리결과]

-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격리, 이동제한 등 규제를 받음
- 현재 강원도는 돼지오제스키병 비발생 지역이며, 부루셀라의 경우에는 발병 가축을 살처분하여 불법 유통을 사전차단하고 있음.
 - '99 살처분두수 : 4두 (5,581천원)
- 또한, 신규가축입식시 중간상인으로 부터 가축을 구입하는 것을 피하고 청정농장인증농가와 같이 믿을수 있는 농장에서 구입하도록 계도지속 실시

[시정·처리요구]

농촌인구 노령화는 가난과 질병, 소외라는 3중고에 시달리게 하는데 대한대책으로 노령농민들을 위한 영농프로그램 개발, 부업, 봉사활동 등 생산적인 중·장기대책 수립

[처리결과]

- 농촌노령인구 비율(전국)
 - ('80) 10.5% → ('97) 29.9%
- 농촌노인교육 활동지원 : 14개소
 - 노인교실, 교양강좌, 건강활동
 - 공동부업활동지원 → 소득사업화
- 노인모임체 구성으로 여가활동 및 젊은 세대와의 교류·화합을 위한 활동전개
 - 봉사활동, 한자·예절교실, 선진지 견학 등
- 노인이 쌓아온 지식과 기술발굴 관광상품화
 - 짚을 이용한 생활용품, 전통음식 놀이 등

[시정·처리요구]

화훼연구 용역결과와 용역결과가 실제 화훼 농가에 기여한 문제점에 대해 장려 및 개선 방안

[처리결과]

- 평야지산 구근식재에 따른 바이러스 이병을 높음

- 담액경 양액재배시 액상비율이 높아 구근부패 등 생육불양
- 백합 차광재배시 차광조건 불분명으로 고품질 백합 생산 지난
- 백합 연작재배에 의한 피해발생
- 고랭지역 백합 잎마름병 피해
- 고랭지가 백합종구 생산적지구명
 - 고랭지역이 평지보다 근권발육 2~5배, 구중 45~50%증가
 - 바이러스이병을 낮음 : 고랭지산 2~6%, 평야지 5.5~15.6%
- 백합 양액재배법 개선
 - 담액경보다 분무경 재배법 유리
- 백합종구 양구시 최적 차광조건 구명
 - 절화생산30%차광, 구근생산 무차광재배
- 상자재배시 적합한 배지구명
 - 팽연화 왕겨70% + 피트모스 30% 혼합배지
- 구근생산시 피복재배법 구명
 - 왕겨 흑백 이중필름 피복재배
- 백합 잎마름병균의 방제효과가 높은 살균제 구명
- 강원도 화훼연구용역 결과를 시군농업기술센터 활용, 지도강화
 - 연작피해방지 상자재배 권장
 - 고품질 절화생산 30%차광재배
 - 양액재배시 분무경 재배실시

[시정·처리요구]

산립병해충 방제 및 예방대책 강구

[처리결과]

- '99방제실적
 - 솔잎 흑과리 : 37,462ha
 - 일반병해충방제 : 7,700ha
- 2000방제계획
 - 솔잎흑과리 : 32,100ha
 - 일반병해충 : 3,700ha
- 예방대책강구



- 국립공원 관광지 등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된 송이임지 등 소나무 보존지역 중점방제
- 항공시비, 간벌 등 수세강화사업 병행실시로 피해회복에 최선
- 예찰조사 강화 및 적기방제로 사업효과 제고

[시정·처리요구]

국제농업교류업무 관련 북방농업교류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전략 수립과 단계적 실천방안

[처리결과]

- 통일대비 북한 식량난 해결을 위한 북한적응 콩, 옥수수 다수성 신품종육성
 - 우량계통 육성 및 생산력 검정 적응시험 등
- 북한과 기상여건이 유사한 중국 길림성 연변대학에서 현지시험으로 추진 (연구원 1명파악)
 - 길림성, 도간 상호교환 계획에 의거 추진

[시정·처리요구]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처리결과]

- 운영실태조사
 - 일시 : '99. 3. 15~4. 10
 - 대상 : 12개소
 - 기관 : 유통공사+농협+지자체 공동
 - ※ 조사결과 부진사업장 : 6개소
- 부진사업장 경영컨설팅 실시
 - 기간 : '99. 8. 1~ '99. 10. 20
 - 기관 : 유통공사+농협 합동실시
 - ※ 경영진단결과 통보 : '99. 12. 22
- 2000운영실태조사
 - 조사대상 : 16개소
 - 조사기관 : 유통공사+농협+지자체 합동조사
- 경영자 및 관련공무원 합동연찬회
 - 시기 : 2000년 하반기
 - 대상 : 유통센터경영자, 관련공무원

[시정·처리요구]

농축산물 수출10대 전략품목선정 및 이에 따른 구체적 전략수립 방안강구

[처리결과]

- 수출실적 : 55백만불(99. 3/4분기)
- 주요수출품목
 - 돼지고기, 홍계맛살, 김치, 화훼류, 송이, 성게, 새우양식사료 등
- 수출 10대 전략품목(안)
 - 백합, 장미, 마늘, 김치, 송이, 꽃도라지, 토마토, 돼지고기, 치커리제품, 새우양식사료
- 강원농산물 수출진흥계획수립 : 2월
 - 수출단지조성, 수출물류비지원
 - 수출농수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지원
 - 해외시장 개척활동 참가지원
 - 수출교육 및 정보제공

○ 産業經濟局

[시정·처리요구]

외지상인 할인판매 불법행위 단속강화(년중 무휴)책 강구

[처리결과]

- 외지상인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시군 담당회의 개최 및 불법행위 방지 대책 시달('99. 11월중)
 - 입점실태 상시파악 체제 구축
 - 읍·면·동 활용 취약지역 입점실태 수시예찰
 - 입점업체 불법행위 합동단속 실시
 - 건축, 도로, 광고물 관련부서 합동
 - 무자료 거래자 세무조사 의뢰
 - 불법행위 적발시 고발등 강력한 행정조치 실시
- '99. 4/4분기 입점실태 및 불법 행위 단속
 - 입점 : 51개업체
 - 단속실적 : 고발(6건), 과태료부과(4건 1,800천원)
- 입점업체 실태 철저파악 및 불법 행위자 처분 강화



- ⇒ 고발위주의 강력한 처분 실시
- 취약지역 합동단속 체제 확립
 - 소비자단체, 지역상인 대표, 유관부서 연계
- ⇒ 취약, 우심지역 집중 단속

[시정·처리요구]

수출기업육성 및 해외시장 개척활동 장려금 지원등 대책 강구

[처리결과]

- 수출기업 육성대상 사업
 - 무역실무 교육, 제품홍보지원
 -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지원
 - 해외시장 및 바이어 조사지원
 - 해외시장 개척사업
- 지원실적
 - 해외시장 및 바이어조사 : 48개 지역
 - 무역실무 교육 : 5개업체, 3회 157명
 -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지원 : 3개업체
 - KOREA TRAD지 제품광고 : 13개업체
 - 시장개척단 및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 7회 14개업체
 - 수출상품 홍보 : 9회, 34업체, 180개국
 - 수출전력 설명회 개최 : 2회 110명
 - 무역전문 인력 양성사업
 - 무역업창업 양성교육 : 7회 365명
 - 인터넷 무역교육 : 3회 157명
- 해외시장개척단 및 박람회 참가 지원
 - 상담장, 부스 임차료 지원
 - 상담요원 통역비 지원
- 홍콩국제전문 전시회 참가지원
 - 지원대상 업체 : 3개 업체

[시정·처리요구]

강원신용조합 효율적 운영을 통한 경쟁력 있는 영세기업 및 신용상태가 건전하고 잠재력이 큰 중소기업 대상 적극 지원 방안

[처리결과]

- 보증지원 ('99말)
 - 보증서 발급실적 : 103건 3,199백만원
 - 일반보증 : 32건, 1,255백만원
 - 특별보증 : 71건, 2,044
 - ※ 보증한도 : 일반보증(50백만원), 특별보증(30백만원)
- 보증지원
 - 보증서 발급계획 : 450건 300억원
 - 일반보증 : 200건 100억원
 - 특별보증 : 250건 200억원
 - 보증금액 확대
 - 업체당 5천만원 ⇒ 2억원이하(특별보증 3천만원)
 - 지원대상 확대 : 제조업 ⇒ 전업종
 - 일반보증 : 유통, 서비스, 소상공인 등 확대
 - 특별보증 : 도 경영안전자금 지원대상 업종 지식 기반산업 포함
 - 신기술 및 벤처기업 특별보증 지원(업체당 1억원 이하)
- 「엔젤사랑방」 설치운영
 - 설치목적 : 개인투자 희망자의 유희자 자금 투자유도 및 우수 신기술 보유기업 자금제공
 - 주요업무
 - 투자 유망업종 등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정보 제공 및 예비창업자 상담
 - 사랑방 운영 : 강원신용보증조합(상담요원 3명 배치)

[시정·처리요구]

강원전문대학 제1회 졸업생 100% 취업알선 및 장래성있는 보장책 강구

[처리결과]

- 도지사 취업알선험조 서한문 발송 및 방문 전달
 - 시기 : '99. 10~11월



- 대상 : 150업체 (방문전달 95, 발송 5)
- 도본청 실과장 전담책임 담당기업 지정관리
 - 연고담당 기업체지정 : 21명 95명
 - 담당기업체 방문완료 : '99. 11~12
 - ⇒향후 신규채용시 적극 검토할 것임을 약속, 고무적 반응
- 취업대상자 현황책자 제작·배부
 - 시기 : '99. 11~12(실과장)
 - 대상 : 95업체, 서울사무소, 도민회등
-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 일시 : 매월 첫째, 셋째주 수요일
 - 장소 : 5개(춘천, 원주, 태백, 강릉, 영월) 지방노동사무소 교통 안전센터
- 실과장 전담책임 담당기업 지속관리
 - 실과장 21명 95업체 : 월1회이상 통화 및 방문
- 도 및 시군공무원(일반직, 기능직) 채용시 우선채용
 - 대상 : 미취업자 55명
 - 담당 : 도 및 시군인사담당 부서
- 도 실국(장) 취업담당 지정 운영(업무관련 학과와 연계)
 - 지정방법 : 도 실국장 업무소관과 유사한 강원전문대학의 개별학과와 연계하여 취업전담 지정
 - 취업활동 : 취업전담 지정된 학과의 미취업자를 관련 기업체에 취업알선
 - 지정내용
 - 수산개발과 ⇒ 해양수산출장소(각과)
 - 수산식품과학과 ⇒ 해양수산출장소(각과)
 - 토목과, 지적과 ⇒ 건설도시국(각과)
 - 정보통신과 ⇒ 기획관리실(정보통계)
 - 기계·산업디자인 ⇒ 산업경제국(중소)
 - 관광과 ⇒ 관광문화국(각과)
 - 환경위생과 ⇒ 환경복지국(각과)

[시정·처리요구]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개선안 강구

[처리결과]

- 농공단지 입주관련 제도 개선
 - 대체입주 업체에 대한 세제지원
 - ⇒ 취득세, 등록세 전액감면 (2003년까지)
 - 입주업체 제한 완화
 - ⇒ 업체1일 폐수배출량 기준완화, 폐수종말 처리시설을 운영중인 농공단지에 대한 입주업종 추가(펄프, 종이제조업 등) 허용
 - 용지분양가를 시가 감정액으로 분양
 - 입주업체의 공장임대 면적 제한완화
- 농공단지 입주업체 자금지원
 - 경영안정자금 : 12개업체 1,650백만원
 - 구조조정자금 : 1개업체 500백만원
- 농공단지 입주업체 판로지원
 - 시장개척단 파견 : 5회 11개업체
 - 우편주문안내 책자 발간 : 1만5천부
 - 중소기업생산제품안내 : 51만부
- 「중소·벤처기업 입주정보센터」 인터넷 사이트 개설
 - 방법 : 도정 홈페이지에 별도 사이트개설
 - 내용 : 산업입지 안내 등 5개분야
 - 운영 : 2000. 1월중 시범운영
- 산업입지 Infra 구축
 - 산업입지정보시스템 구축(건교부 주관)
 - 공장설립 및 관리시스템구축(산자부 주관)
 - ⇒ 상반기중 전국 온라인 개통계획
- 중소기업체 육성자금 지원확대
 - 육성자금 지원대상 및 자금조성 확대
 - ⇒ 중소기업육성자금설치운영조례 개정
- 기업체 제품홍보 및 판매 확충
 - 도 지역산품전자상거래 운영활성화
 - 산업기술 지역정보화 모델 구축확대
 - 우편주문 안내책자 제작 배포등



[시정·처리요구]

중소기업 저리자금 지원 관련 응자 추천대비 실패출 제고방안

[처리결과]

- 추진방향
 - 경영안전자금 지원방식의 이원화
 - 강원신보와 연계 「전액보증제」 및 「이자보전」 병행 실시
 - 도내중소기업의 저리자금 지원대상 확대
 - 자금지원 대상 확대
 - 중소제조업 위주에서
 - ⇒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유흥업, 건설업, 관광업, 운송업, 지식·정보 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관조합·단체
 - 기술신보와 연계 「기술평가보증제」 실시
 -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없는 기업의 자금난 해소
- 추진계획
 - 자금지원 규모 : 1,346억원
 - 경영안전자금 : 300억원
 -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자금 966억원(중앙 117, 지방 103, 이월 746)
 - ※경쟁력강화 401, 특별지원200, 신기술·벤처기업100, 유통개선65, 기타 200(관광40, 건설100, 운수60)
 - 시장 재개발 사업 : 80억원(이월)

[시정·처리요구]

수출촉진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활동의 내실화 방안 강구

[처리결과]

- 해외시장 개척활동
 - 중국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 1회
 - 국제 종합박람회 참가 : 2회
 - 국제 전문전시회 참가 : 1회
- 영세수출업체의 무역전문 인력 확보

- 우수수출기업 대표 품목 발굴 육성
- 무역업 실무교육(인터넷 무역)을 통한 전문인력 적극 양성
⇒ 창업 인큐베이팅 교육실시
- 무역실무지원 확대 및 통·번역 서비스 확대 지원
- 유망 수출기업 전문박람회 개별참가 확대 및 참여업체 예산지원 확대
- 수출용 카탈로그 제작지원
- 중소기업서울사무소의 수출촉진 전진 기지화

[시정·처리요구]

저물가 정책 강화책

[처리결과]

- '99년도 지방물가 관리결과
- 물가안정관리에 행정력 집중, 전국평균을 하회하는 안정적 물가관리 시현
 - 소비자물가 : 목표 3.0% ⇒ 1.3% (전국평균 1.4%)
 - 지자체물가 : 목표 3.0% ⇒ 0.3% (전국평균 0.3%)
- 2000년도 추진계획(목표 3%)
- 지자체관리 개인서비스 품목의 가격안정
 - 물가동향분석(월1회), 주요품목 가격조사(주1회)
 - 지역별, 품목별 담당 공무원지정 가격지도(월1회)
 - 물가대책 위원회 정례운영(분기 1회)
 - 현장중심 물가지도, 점검 정례화(분기1회 운영)
 -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확대('99 : 19명 ⇒ 30명)
 - 지역물가 조사 비교공표로 가격인하 유도(월1회)
- 소비자 참여를 통한 물가안정 도모
 - 소비자단체 물가감시단 운영 : 6개단체
 - 소비자단체 연수회 개최 : 2회
- 사업자의 자율적인 가격안정 유도
 - 옥외 가격표시제 적극 권장
 - 가격 모범업소 행정적 인센티브 부여
- 지방공공 요금의 안정적 관리
 - 인상억제, 경영혁신 등 원가 절감 노력



- 인상요인이 누적된 공공요금의 단계적 현실화
- 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인상시기 분산
- 장기적 대책 추진
 - 등락폭이 큰 농산물의 가격안정 대책 강구
 - 물류비 절감을 위한 교통망, 물류시설 확충

[시정·처리요구]

기금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 방안 강구

[처리결과]

- 중소기업 육성기금 현황(2000. 1. 26현재)
- 조성목표 : 1000억원 (2002까지)
- 조성실적 : 500억원 (출연407, 이자93)
- 관리현황
 - 3개은행 6개계좌 49,979백만원
 - 조흥은행 (3계좌) : 37,451백만원
 - 제일은행 (1계좌) : 4,080백만원
 - 농협 (2계좌) : 8,448백만원
 - 예치방법 : 정기예금
 - 예치이율 : 연 7.5% ~ 8.0%
- 기금관리 및 운용의 기본원칙
 - 중소기업지원 자금규모의 지속적 확대와 연계관리
 - 경영안정 자금(은행 협조자금)
 - 구조조정 자금(은행 차입자금)
 - 예금자보호법 적용에 따른 안정성과 고수익성을 참작 관리
 - '98. 7. 25부터 금전신탁등 상품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정기예금 만 보호대상)
 - 2001. 1. 1부터 지방자치단체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
 - 저리자금 지원 및 특별보증 재원의 원활한 확보 운용
 - ※기금관리 및 운용계획 별도수립 제출

[시정·처리요구]

도내 석유판매업소 지도 단속을 통한 소비자보호 증대 방안

[처리결과]

- 방침
 - 도 및 시군 합동으로 지속적인 지도 단속 확행
- 근거
 - 계량 및 측정에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29조
- 대상
 - 눈새김탱크로리, 전량눈새김탱크로리, 연료유 미터, 오일 미터 등
- 단속일정 (연4회)
 - 설날 : 1. 31 ~ 2. 2(3일간)
 - 하절기 : 7. 24 ~ 7. 28(5일간)
 - 추석절 : 9. 18 ~ 9. 20(3일간)
 - 동절기 : 11. 13 ~ 12. 15(3일간)
- 중점단속 내용
 - 변조여부
 - 검정 및 정기검사 실시여부
 - 사용공차 초과여부
 - 비법정 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등
- 적발업소 조치사항
 - 계량 및 측정에관한법률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 조치(과태료, 수거, 파기 등)

[시정·처리요구]

우편주문판매 책자발간에 따른 추천업체 선정의 투명성 및 기존 게재에도 불구하고 실적저조 업체 교체 및 효율적 방안강구

[처리결과]

- 매년 1월 전국우체국에서 모집 공고,
 - ⇒신청업체에 대한 심사위원회 심사(3차)를 거쳐 책자수록 업체 선정
 - ※강원도 우편주문안내 책자는 '97년부터 전국책자에 수록된 업체중 도내 업체만 발체하여 해당업체의 수록의사 확인후 희망업체만을 수록
- 실적저조 업체 교체수록
 - 업체 선정시 경쟁력(품질, 가격) 및 향후 성장성등을 종합 참작하되,



- ⇒ 장기 판매실적 부진업체는 계속 게재여부 정밀분석 및 교체 검토
- 우수업체 인터넷 상거래사업 정착 추진
 - 강원도 지역산품 전자시장에 업체 및 상품 등록 등

[시정·처리요구]

향토공예관 운영과 관련한 경영진단 및 효율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폐쇄, 매각 또는 직영체제를 포함한 일대 쇄신방안 강구

[처리결과]

- 운영실태
 - '85 ~ '99까지 매년 도비보조금 66백만원 지원
 - 만성적 경영부실 상태 지속으로 획기적 운영개선 방안 강구 필요
- 개선대책
 - 단기적으로, 2000년부터 도비보조금 축소 및 관리인원 감축 운영
 - 도비보조축소 : 66백만원 ⇒ 44백만원
 - 관리인원감축 : 3명 ⇒ 2명
 - 중·장기적으로 개선방안으로, 건물의 효율적 활용방안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 강구 추진중
 - 공예품 전시장과 공예중소기업 제품 복합매장 구획 운영 등
 - ※ 종합 개선대책 수립후 별도 제출

○ 國際協力室

[시정·처리요구]

강원도주최 각종 국제행사 개최시에 외국초청 인사에게 부담하는 초청여비등 체재비는 상호주의적 원칙에 입각하여 집행할 것

[처리결과]

- 환동해권 지사·성장회의 및 실무대표자 회의는 매년 공히 상호주의의 원칙에 의거 주최측에서 체재비를 부담하고 참가자측에서는 항공비를 지급해 오고 있음.

[시정·처리요구]

'99년 김진선지사의 해외자본 유치활동 관련 미국 RNM컨설팅 그룹으로부터 1억달러, '99. 1. 8

베가스 퍼시픽으로부터 2천만불, '99. 2. 8 알메디그룹으로부터 20억불 투자유치성과와 달리 단 한번도 실질 성사되지 아니한 책임소재에 따른 상응하는 조치 및 향후 경제외교 실패 재발방지 대책 강구

[처리결과]

- RNM사에서는 중도투자과 관련 시장조사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도에서 부담해 주기를 원한 반면, 도에서는 동사가 투자를 물색 용영토록하는 입장표명에 따라 협상이 답보 상태에 있고
- 베가스퍼시픽사의 임시 카지노 투자와 관련해서는 주관사인 강원랜드에서 국내 장외주식 공모를 통해 자금을 조달함에 따라 투자가 필요치 않게 되었으며
- 알메디 그룹의 투자와 관련해서는 투자사업비에 대한 정부특지방보증요구로 최종협상이 결렬된 상태임.
- 외국인투자유치는 대부분 대규모 투자이며 미지에 대한 투자라는 특수성 때문에 상담, 투자 의향서 교환, 사업성 검토, 수익성분석 등 일련의 준비 검토 과정이 필요함으로
- 투자유치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수익성 분석등 철저한 자료준비와 투자여건들을 사전에 충분히 토의한 후 서로의 조건들을 합치시킨후 가시적인 투자를 성사시키는 방향으로 추진.

[시정·처리요구]

지사 순방 라스베가스 체류시에 있었던 불미스러웠던 현지 교민과의 불협화음과 같은 유사 사례 방지대책 강구

[처리결과]

- 미주 순방시 일정 관계로 일부 오해가 있었으나 원만히 해결 되었으며 향후, 해외 순방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문지와 충분히 사전 협의토록 하겠음.

[시정·처리요구]

해외시장 개척시에 주력상품으로 경쟁력있는 수산물을 집중개발할 수 있는 대책

[처리결과]

- 수산물 가공업체 대상 해외시장정보 및 바이어 명단제공
 - 업체선정 : 20개
 - 내용 : 시장정보 및 바이어 명단(상하반기)
 - 소요예산 : 2백만원(유료정보)



- KOTRA 해외무역관 이용
- 해외시장 개척시 해양수산물출장소와 공동 참가(농산물 유통과)
 - 대상 : 미국 LA농수산물특관전
 - 시기 : 2000. 9월중
 - 품목 : 수출유망 농수산물
 - 주요활동
 - 현지 직관행사 및 상품홍보
 - 시장조사활동, 소비자반응 조사
 - 수출상담회 개최, 바이어섭회
 - 수출주력수산물 : 성게, 양어사료, 홍게가공 및 조미 오징어
- 수출농수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지원 (농산물유통과)
 - 목적 : 수출지역에 적합한 현지어표기, 고유상표부착을 통해 청정이미지 제고
 - 2000계획 : 5품목
 - '99실적 (7개업체 8품목 · 수산물 3품목)
- 현지인의 기호, 식습관, 문화에 맞는 수산물 개발(해양수산물출장소)
 - 방침 : '97 ~ '99(3년) 해외시장 개척시 선호된 수산물 중점 개발
 - 산업체, 수출업체, 학계, 연구기관 및 농수산물 유통공사와 연계하여 사업의 효율성 도모
 - 개발품목수 : 젓갈류, 김, 미역, 오징어, 다시마
 - 판매지역 : 일본, 미국, 중국
- 수출상품카드로그 제작지원 및 수산물 교역정보 제공(해양수산물출장소)

○ 農業技術院

[시정·처리요구]

농업인구, 경지면적 감소사유는 위탁영농 및 전업 기계화 촉진으로 인한 자체 진단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대책 강구

[처리결과]

- 노지형농업에서 첨단 시설농업으로 전환
 - 시설농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방안 연구개발 보급
 -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작목 개발 보급
- 내실있는 농업법인체 육성

- 회사법인 : 위탁영농 및 농산물생산 가공전문
- 조합법인 : 농산물 유통전문
- 기계화 촉진에 따른 유휴 노동력 이용 연구
- 농외소득원 개발 보급
 - 농촌휴양자원 개발
 - 농공단지 취업
 - 농촌특산단지 육성
 - 농촌여성 일감찾기 사업
- 인적자원의 재활용 교육
 - 농산물 가공·이용 기술
 - 농업정보화 마인드 교육

[시정·처리요구]

흙 살리기운동 추진관련 농경지에 인산, 칼리 적정 수준 유지방안 강구

[처리결과]

- 작물별, 토양별 인산, 칼리 관련 적정시비량설정을 위한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경지에 적절한 인산, 칼리 수준이 유지토록 하겠음.

[시정·처리요구]

농민들의 병해충 방제 및 현장애로기술해소를 위한 농업연구 과제 수행실적 강화 및 연구예산 확보방안 강구

[처리결과]

- 2000년 병해충방제 및 현장애로기술 해소 연구강화 계획
- 고냉지 소득작목 안정생산기술 개발
 - 고랭지채소 병해 조기진단 및 발생예찰 연구
 - 무사마귀병 발생생태 연구
 - 윤작체계 확립, 저항성품종선발 및 방제법 연구
- 농작물 병해충 정밀조사
 - 강원도 주요재배작물 병해 및 해충 종류조사
- 천적 및 유용곤충 이용에 관한 연구



- 시설재배지 굴파리류 피해정밀조사 및 천적탐색, 이용방안 연구
- 꽃무지등 산업화곤충사육 및 이용연구
- 감자더듬이병 생물적 방제를 위한 분의제 농가실증 및 유용미생물 이용종자코팅 실용화방안 연구
- 벼도열병 저항성 포장검정 및 병해충 예찰조사
- 연차별 연구예산 확보계획

(단위 : 천원)

연 도	계	도 비	국 비
2000	100,000	30,000	70,000
2001	130,000	60,000	70,000
2002	180,000	100,000	80,000
2003	200,000	120,000	80,000
2004	200,000	120,000	80,000

[시정·처리요구]

우수백합 구근 보급 부족량에 대한 대책강구

[처리결과]

- 우수백합구근 보급현황
- 강원도백합재배면적 : 49.4ha
 - 구근이용면적 : 26.7ha
 - 씨백합재배면적 : 22.7ha
- 최근 3년간 구근생산 및 보급량
 - 도 시책사업으로 16cm이하의 소구를 수입하여 1년 양구후 농가에 보급하여 절하용으로 사용('97:2,869천구, '98:2,503천구, '99:1,880천구 생산보급)
- 부족량에 대한 대책
 - 1년 사용후 상태가 양호한 구근을 재활용하고 일부는 절하용 성구를 수입사용
 - 수출용이 아닌 아시아틱 및 나팔나리 계통은 자체생산 또는 국내구근업체에서 수급
- 농림부 지역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기술원에 구근센터를 설치하여 연 300만구를 생산하고 감자원종장등에서 양구하여 2004년부터는 농가에 보급할 계획임
- 2000년부터 2003년까지는 현행과 같이 도 시책사업으로 소구를 수입하여 1년 양구후 절화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

[시정·처리요구]

농촌노령화, 이농화에 따른 농촌인력부족의 지도대책 일환으로 농업기계화 및 위탁영농 확대방안 강구

[처리결과]

- 농업기계 보유 : 205,780대
 - 농가당 2.5대 보유
- 벼농사의 완전기계화 추진
 - 이앙작업 : 99.5%
 - 수확작업 : 99.2%
- 농기계 이용율 제고
 - 농기계 공동구입 또는 위탁영농으로 농기계 비용 부담 절감
 - 주요농기계 적정 손익분기점 제시로 농기계 활용 극대화
 - 주요 농기계 적정 모델 제시
- 위탁영농 전문대행 업체 육성
- 회사법인
 - 현74개 → 120개소로 확대
 - 읍면별 1개소 이상 설치
- 공동이용조직 : 1,853개소
 - 부락단위로 지역실정에 맞게 공동이용 조직 재편성

[시정·처리요구]

무사마귀병에 강한 품종육성이나 방제약 개발 대책 강구

[처리결과]

- 무사마귀병 방제연구 추진실적
- 무사마귀병 저항성 무 품종선발('97)
 - 백두무등 16품종
- 고냉지배추 무사마귀병 저항성 품종선발('98) : CR그린등 3품종
- 무사마귀병 방제약제 선발('98)
 - 후루아지남수화제등 3품종
- 사마귀병 십자화과 잡초기중 규명('99) : 말냉이등 4종



- 2000년 무사마귀병방제연구 추진계획
- 무사마귀병 발생 생태연구
- 윤작체계 확립, 저항성품종 선발 및 방제법 연구

[시정·처리요구]

감자, 콩, 벼, 보리등 부족분 종자보급 활성화방안 강구

[처리결과]

〈감 자〉

- 종자산업법에 의거 보급종생산공급이 점차 민간업체 이관으로 확대생산은 어려운 실정임
 - 보급종생산업체와 시군농업기술센터 연계로 자체구입 적극 유도
- 감자원종장내 씨감자 생산시설확충 및 기술축적 추진
 - 도자체 기본식물 ~ 보급종까지 생산 공급체계 구축 → 종사부족 해소

〈콩〉

- 보급종가격이 시중가의 50% 수준으로 수요급증을 대비 연차적 확대생산공급토록 종자관리소와 협의 추진
 - ('96) 29.7톤 ⇒ ('98) 32.6 ⇒ ('99) 40.1
- 2001년 농가보급용 보급종생산 협의시 채종물량 증가 건의조치(1월중)
 - (2000P) 55.5톤 ⇒ 80 (44% ↑)

〈벼〉

- 우량종자 확대보급으로 정부보급종 부족분 해소
 - 우량종자 확보 및 공급 : 1,222톤
 - 53%로 2년 1기 교환가능
 - 694톤, 도원산 14, 시범포 197 시군 자율증식포산 317
 - 2000년 지역적응품종증식포 설치운영
 - 규모 : 75ha 390톤(7,800ha분)
- 2001년 농가보급용 보급종 생산협의시채종물량 증가 건의조치(1월중)
 - (금년) 694톤 ⇒ 830톤 (20% ↑)

〈보 리〉

- '98이전까지는 보급종공급물량이 과잉되었으나 최근 사료종 종자선호에 따라 보급종확대 공급 추진
 - ('94) 25.2톤 ⇒ ('96) 18.3 ⇒ ('97) 14.6 ⇒ ('98) 17.4 ⇒ ('99) 20.7

- 2000년 보급종생산협의회('99. 8. 11)시보급종 확대생산 협의
 - ('99) 20.7톤 ⇒ 25.0 (21% ↑)

[시정·처리요구]

농민들의 작목선택 지도 철저 이행을 통한 농산물가격 폭락방지책 강구

[처리결과]

- 대량 저장, 가공기술 개발(2000년)
 - 가격등락이 심한 작목 : 고랭지, 무, 배추, 당근
 - 공급과잉시 저장, 가공으로 공급량감소
- 재배의향 조사, 재배면적 조절 유도
 - 김장무, 김장배추, 고추, 마늘 등
- 농업인 의사결정 능력 배양
 - 영농설계교육시 작목선택 중점교육 실시(2000. 1. 5~2. 27)
 - 작목선택요령 농가경영컨설팅 집중 실시(연중)
 - 유통정보, 기상자료, 기술정보의 신속한 보급

[시정·처리요구]

신동해권 농업교류 추진 사업관련 중국 길림신문사측에서 제의한 버섯종균 기술제휴 공동개발사업 적극 수용 공동개발 강구

[처리결과]

- 합작투자 희망농가 재조사(2차)
 - 기간 : 2000. 1~3월
 - 주관 : 특화작목개발시험장
- 희망농가 선정시 합작 계약추진
 - 계약자 : 희망농가, 중국길림신문사
 - 협조 : 길림성 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
- 기타 : 버섯 연구원 중국 파견
 - 기간 : 2000년 상반기(1개월간)
 - 목적 : 합작타당성 조사, 기술교류 등
 - ※ 길림성과의 상호교류계획에 의거 추진



[시정·처리요구]

신종 병해충 ‘하이포크리아병’, ‘수박바이러스’, ‘보리붉은곰팡이병’, ‘가지검은마름병’ 등 방제연구개발 강구

[처리결과]

〈느타리버섯 하이포크리아(Hypocrea)〉

- 원인 및 발병조건
 - 푸른곰팡이병의 완전세대
 - 비온후나 수확시기 균상표면에 발생
 - 재배사 주위의 높은 병원균 밀도
 - 수분 과부족 및 이상발효에 의한 버섯균산 생장불량
 - 오염된 종균
- 방제대책
 - 재배사 바닥 콘크리트로 개선 및 재배환경개선에 의한 병해충 서식지 제거
 - 60~65℃로 8~12시간 살균
 - 수확시 균상 정리 철저
 - 폐상시 살균후 먼곳으로 이동시켜 2차 오염방지

〈수박 바이러스〉

- 원인 및 발병조건
 - 주요병원균 : 오이모자이크바이러스(CMV), 수박모자이크바이러스(WMV), 오이녹반모자이크바이러스(CGMMV)
 - CMV, WMV는 진딧물에 의해 전염하고 2차로 식물체즙액에 의한 전염도 가증
 - CGMMV는 91년대 들어와서 국내에서도 피해사례가 들어오고 있고, 접촉, 종자, 토양에 의해 전염
- 방제대책
 - 매개충인 진딧물 방제
 - 종자전염의 경우 건전종자 사용
 - 토양전염의 경우 발생지 연작억제 및 박과 이외의 작물로 윤작
 - 접촉전염 방지 위해 이병주 제거후 제3인산소다액(30배)이나 비누사용 손, 도구 등 세척

〈보리붉은 곰팡이병〉

- 원인 및 발병조건
 - 유숙기이후 몇일간 비가 계속해서 오면 많이 발생

- 병징은 주로 출수후의 이상에 의해 발생하나 유묘의 줄기, 뿌리등에도 발생
- 방제대책
 - 출수기 전후 캡탄수화제 700~800배액 또는 유황 400배액을 7일 간격으로 2~3회 살포
 - 수확후 신속히 건조하여 건전종자의 이병방지

〈가지검은 마름병〉

- 원인 및 발병조건
 - 세균병으로 사과, 배, 신초가 흑변고사되어 가지검은마름병으로 명명
 - 5월 하순에서 6월 하순사이에 주로 발생
- 방제대책
 - 동계에는 석회유황합제, 농용신쿠퍼수화제 처리
 - 생육기에는 농용신수화제 및 아그리마이신수화제를 만개후 10일간격으로 2회 살포

[시정·처리요구]

벼농사관련 도복, 반도복으로 인한 벼쓰러짐 감소 강화책 강구

[처리결과]

- '99도복현황 : 5,475ha
- 완전도복 : 2,998ha (55%)
- 반도복 : 2,477ha (45%)
- 사전대책 수립 추진
- 도복 주원인인 질소비료 30% 덜주기 중점 추진계획 수립시달('99. 12. 29)
 - 2000년 새해영농설계교육 중점실시
 - 영농교육부교재 작성배부 : 15천매
- 영농기간 쌀생산대책 기술지원단 구성 현장중심 기술지원
 - 도, 시군별 기술지원단 편성운영

[시정·처리요구]

도내 생산, 유통되는 국·외산 농산물잔류농약 분석 강화책 강구

[처리결과]

- 도내 생산 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은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보건환경연구원의 사무임



- 농검고시 제1998·6호
- 강원도보건연구원의시험연구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 농업기술원은 적용 농약선발 및 살포시기, 살포횟수 등 저농약 사용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여 농약잔류량을 경감시키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海洋出張所

[시정·처리요구]

동북아 경제협력, 수입개방에 따른 수출·입 업무 등 전문지식 공무원 양성 및 수출주력 수산물 선정 수출촉진 대책강구

[처리결과]

- 「통상협력수출전담팀」 구성 운영
- 도주관 농산물, 공산물, 수산물등 유통판매 및 수출촉진 업무에 외부 전문가를 계약직 채용 수출업무 전담
- 수산물 수출품목중 경쟁력이 우위제품을 주력품목으로 선정추진
 - 성게, 양어사료, 홍계가공품, 조미오징어 등

[시정·처리요구]

추가경정 예산시 수산물 수출촉진(물류비 지원등)을 위한 장려금 등 예산지원 확보

[처리결과]

- 통상협력수출전담팀」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도 주관)
- 기구 구성 후 운영 예산 및 수산물 수출촉진 장려금등 확보
 - 추경 예산시 요구

[시정·처리요구]

강릉시 사근진항 개발(물양장 접안공사)사업 관련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비하여 감독권 강화

[처리결과]

-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
- 관리청 : 강릉시장(소규모어항)

- 사업계획 : 방파제93m, 물양장45m, 방사제60m

- '99추진실적

· 사업비 : 50백만원 (시비)

· 사업량 : 진입로20m, 선착장20m

〈지역주민 민원처리〉

· '99물양장 공사와 관련하여 백사장 경관을 훼손하므로 타당하지 않다는 지역주민들의 의견 제시

· 시설계획에 대한 지역주민 설명회 개최 ('99. 6. 9)

· 백사장 경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최소한의 시설물 설치하는 대안 제시로 민원해소

- 추진계획

· 해안 모래침식 방지시설 : 방사제 3개소 100m 10억원 (재해예방 시설비)

※사근진항 기본계획과 별도 추진

· 선착장 18m

[시정·처리요구]

어민들이 농림수산업자 신용 보증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강구

[처리결과]

- 제도시행 : '99. 10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기금제도 및 신청절차 홍보 강화

· 지역방송·신문, 인터넷 등 활용

· 어업인교육(정기·특별)

· 간담회 및 각종회의시 홍보

[시정·처리요구]

폐업어선으로 인한 실직어민에 대한 취업보장 및 항구적 대책 강구

[처리결과]

- 실직 어선원 어촌정착자금 지속 확대지원 건의

- 2000년 지원 : 370백만원

- 향후조치계획

· 어업인 의견 파악·개선건의



· 자금지원확대건의 : 매년 500백만원 이상 지원 (해양수산부)

[시정·처리요구]

침체어망인양사업에 따른 문제점분석 및 효율을 기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으로 성과있는 사업추진 방안강구

[처리결과]

- 발생면적 : 25.625ha
- 추정량 : 10만 여톤
- 인양수심 : 20~600m
- '99까지 인양실적
 - 인양면적 : 3,084ha
 - 인양량 : 41,275톤
 - 사업비 : 2,141백만원
- 침체어망탐색이 어려워 효율적인 사업추진 곤란
- 인양해역의 작업여건이 불리하여 인양애로
- 침체어망전문선박이 없어 인양 능률 저조
- 침체어망인양 전용선박건조·운영 건의
 - 선박규모 : 200톤급
 - 소요예산 : 4,000백만원
 - 건조·운영 : 해양수산부
- 전용선박건조시까지 인양 전문업체 지정·운영
 - 인양선박·장비를 갖춘 업체
- 침체어망인양 전용선박 건조·운영 지속건의
- 침체어망인양 전문업체 조기육성 건의
- 침체어망인양 종합개선대책 마련·시행

[시정·처리요구]

수산물 폐슬러지 효율적 처리방안 관련 학술용역 이전에 강원도, 해양수산출장소, 업계의 요구 등을 종합한 방안 제시

[처리결과]

- 발생 및 처리비용
 - 슬러지 발생량(연간) : 55업체 39천톤
 - 처리비용 : 39천톤×25천원=975백만원
 - ※ 업체당 연평균 17,700천원 소요
- 처리실태
 - 대부분 처리가 쉽고 비용이 저렴한 해양투기(31천톤) 처리하고 있으며,
 - 일부, 소규모 폐슬러지 발생업체는 육상 매립 또는 재활용업체 수거
- 처리방안
 - 수산가공 업체에서 발생하는 폐슬러지를 이용한 상품개발로 해양오염방지
 - 관련업체, 학계, 연구소 등 효율적 처리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구용역 실시

[시정·처리요구]

어업지도선 운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보완 대책

[처리결과]

- 어업지도선 : 3척
- 연간 출동일수 : 척당 133회
- 어업지도선 유류비 국비보조
 - '99년 대비 30% 삭감 : '99년 70백만원 ⇒ 2000년 49백만원
- 평상 항해시 경제속력 향해로 유류비 최대절감
- 국비 추가지원 건의 : 제1회 추경반영

[시정·처리요구]

침체어망 해도작성 및 수중 실태조사 강구

[처리결과]

- 발생면적 : 25,625ha
- 추정량 : 10만 여톤
- 인양수심 : 20~600m
- '99까지 인양실적
 - 인양면적 : 3,084ha



- 인양량 : 41,275톤
- 사업비 : 2,141백만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침체어망 탐색·인양
 - 특수 칼꾸리를 이용한 선박예인으로 탐색·인양
- 향후 추진계획
- 사업추진방법 개선
 - 침체어망인양 대상해역 실태조사 : 위치, 물량 등
 - 침체어망인양·처리

[시정·처리요구]

인공어초 투하관련 효과 측정 및 부실여부 수중실태 조사 강구

[처리결과]

- 인공어초 투하위치 확인 및 현지 실태조사 : 2000. 4월
 - 최근 2년간 인공어초 투하수역 20개소, 1,797ha (10,833개)
- 어초어장 환경, 보존상태 조사 및 수중촬영 : 2000. 5월~6월

[시정·처리요구]

소형어선(40톤미만) 및 종사 어민에 대한 종합보험 또는 공제혜택 증대 강화책 강구

[처리결과]

- 해양수산부 건의('99. 12. 2)
 - 선원 공제료에 대한 국고지원을 100톤 이상을 포함 일률적 50%지원
 - 공제 보상금 지급체계 보완
- 회신내용('99. 12. 15)
 - 선원공제료 보조율 인상을 위하여 예산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계획
 - 공제가입자의 납입공제료 및 가입 한도액, 지급체계보완 등에 대하여는 공제계약자인 수협 중앙회와 협의
- 국제협약에 의한 후속지원책인 수산진흥대책의 일환으로 어선들의 보호와 어업경영 활성화 차원에서 100톤이상 어선을 포함한 선원 공제료 국고지원을 조기확대 지원추진
- 사고 발생시 현실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호프만식 보상산출방법 도입 등 공제료 보상금 지급

체계제도 조기보완 추진

[시정·처리요구]

사천진항 기상이변시 20톤급이상 대형 어선들의 항내 피신이 불가능하여 항구의 중요기능을 상실했다고 하는데 대한 역학조사 및 대책강구

[처리결과]

- 수질모형실험에 의한 어항정비계획 수립 용역(한국해양연구소)
 - 1차 : '95. 3~'96. 3
 - 2차 : '96. 5~'97. 5

〈기본시설 변경계획〉

- 북방파제 : 492m ⇒ 812m(연장 320m), 기존시설 철거 120m
- 남방파제 : 연장 110m(신설)
- 방사제 : 365m ⇒ 583m(연장 218m)
- 어항정비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용역(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 용역기간 : '97. 5 ~'98. 1
- 향후계획
 - 환경영향평가 관계부처 협의 : 2000. 3월
 - 기본시설계획 변경고시 : 2000. 6월
 - 공사시행 : 2001년~2009년(8년간)

[시정·처리요구]

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강화책 강구

[처리결과]

-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강화
 - 도 및 시·군간 교체단속 : 분기1회
 - 연중 수시단속 실시 : 월 1회이상
 - 특별단속 : 추석등 수산물 대량소비기
-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한 홍보 활동강화
 - TV, 라디오, 유선방송등을 통한 홍보
 - 여성단체 및 소비자단체등과 연계한 캠페인 실시 등



- 원산지표시 명예감시관 운영 활성화
 - 지정인원 : 7명
 - 활동내용 (임무)
 - 원산지표시 지도 및 홍보
 - 부정유통행위 및 신고 및 고발
 - 활용시기 : 년중
 - 신고보상금제 운영
 -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을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포상금지급(100만원이하)

[시정·처리요구]

귀어업인 대상 정착기반 구축을 위한 실직대책 강구

[처리결과]

- 지원현황
 - 현행 : 10~30백만원
 - ⇒ 건의 : 30~50백만원 (해양수산부)
- 시기 : 사업집행지침 개정시
- 귀어입인 영어기술교육 강화
 - 어선어업, 증양식어업 등 수시교육

[시정·처리요구]

폐업어선 처리 해체관련 공정성, 투명성 확보책 강구

[처리결과]

- 현황
 - 대상어선 : 80척
 - 처리방안 : 공공용제공, 해외수출 및 현대화사업 등 매각, 불용어선 해체 처리
- 추진실적
 - 폐업어선 활용신청 공고 : '99. 11. 4~11. 19
 - 활용신청 접수 : 148척(1척에 1~5건 중복신청)
 - ※ 활용 미신청 : 21척(20년이상 노후선박)
- 활용계획

- 신청 용도별로 해양수산부 승인후 처리
- 공공용을 제외한 2인이상 경합의 경우 입찰에 의한 매각
- 활용 미신청 노후어선은 재공고후 일괄매각
- 폐선관리 및 처리계획
 - 폐업어선 인수후 처리시까지 전문관리업체에 위탁관리 : 소요예산 도비 90백만원
 - 해체처리대상어선은 폐선처리업체 공개모집후 입찰방식을 통한 선정 (객관성 유지 및 예산 절감)

[시정·처리요구]

동해안지역 폐기물, 오폐수 방류로 인한 연안생태계 파괴에 대한 역학조사 및 1등급유지대책 강구

[처리결과]

- 업무이관(1997)
 - 환경부에서 해양수산부로
- 동해안 해양환경측정망 운영
 - 동해수산연구소 조사·분석
- 동해연안 수질등급('99기준)
 - 조사 지점 : 32개소(1등급 15, 2등급 7, 3등급 10)
- 연안통합관리제도의 도입·운영
 - 주관 : 해양수산부
 - 목적 : 효율적인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
 - 근거 : 연안관리법('99. 8. 9시행)

[시정·처리요구]

주문진항 종합개발에 따른 문제점 또는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현지주민여론 수렴 대책 강구

[처리결과]

- 주문진항개발사업은 국가(해양수산부)가 주관되어 추진하는 사업임
- 항개발 관련, 어업인·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
 -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항만시설 관리기관인 강릉시에서 개발주체인 동해지방 해양수산청과 협의



·도·시의원, 어업인·주민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의견수렴(2000. 1. 12 공문시행)

[시정·처리요구]

어촌종합개발관련 졸속, 근시안적 계획이 아닌 미래 지향적이고 실질 어민소득기여 방향으로 정책적 요구에 따른 대책강구

[처리결과]

현행 어촌종합개발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은 해양수산부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용역 의뢰하여 수립

- 해양수산개발원에서는 계획수립시 해당 시·군을 방문, 지역개발·장기 비전관련 종합자료 수집 및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서(안)을 작성
- 또한, 수립된 기본계획서(안)을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 시군의 「수산심의 조정위원회」의 검토조정 의견을 수렴
- 이와같은 절차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에서는 권역별 사업 세부계획에 대한 의견을 반영 최종 보고서로 확정

[시정·처리요구]

어촌종합개발 관련 참여주체에 대한 진단과 특정어업인들이 좌지우지하는 폐단 사전 차단 대책

[처리결과]

- 현행 어촌종합개발사업 주체는 권역별 어촌계에서 사업을 주관
- 대상사업은 원칙적으로 각 권역별 어촌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서에 의하여 추진
- 공공사업은 사업집행주체(시장·군수)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 어촌계 자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중 사업의 수행내용 및 사업의 특성상 어촌계가 수행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 사업집행주체가 공사입찰·계약체결 업무를 대행·객관성 확보등 특정 어업인의 개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음

[시정·처리요구]

3중자망 전업 및 양성화 대책

[처리결과]

- 3중자망어업 개발 연구용역 추진

- 기간 : '99. 11. 5~2000. 12. 4(13개월)
- 용역기관 : 한국해양연구소
- 내용 : 3종자망어업의 합리적인 허용 방안 및 자원의 적정이용 관리방안연구
- 3종자망어업 양성화 추진계획
 - 연구용역결과 제시된 대안에 따라
 - 적정 조업어선수, 어구규모 및 사용량, 조업수역 및 시기, 대상어종 등에 대한 합리적 기준에 의거
 - 해양수산부에 합법조업 허용 건의 예정(2000년 12월)

[시정·처리요구]

어민후계자 지속적인 양성대책 및 기존의 어민후계자 관리대책

[처리결과]

- 어업인후계자 지속적 양성
- 후계자 선정 : 매년 30~50명
- 어업인후계자 관리 강화
 - 관리부서 : 도, 시·군, 동해지방해양 수산청(수산기술관리소)
 - 관리방법 : 어업인후계자 사업장방문(월, 분기)
 - 관리내용 : 어업경영 실태조사·분석 및 기술교육

[시정·처리요구]

새농어촌 건설운동 관련 친환경농업, 관광농어업, 정보화 농어업 과제에 대한 실천방안 강구 및 어민에게 확산할 수 있는 대책

[처리결과]

- 어촌체험관광마을 견학 실시
 - 체험어장개발, 바다낚시체험, 민박·휴게시설 등 운영 전반
- 친환경어업, 정보화 어업 기술습득 등 교육 실시

[시정·처리요구]

인허가, 감독부서 근무 공무원 순환인사를 통한 업자(업체) 유착 연결고리 사전차단 대책강구



[처리결과]

- 대상 : 2년이상 근무자
 - ※ 우리 소 2년이상 근무자 전원교체 조치
- 민원담당 공무원 교육강화
 - 분기1회 이상 친절교육 실시
- 민원인 불편사항 신고엽서 비치
 - 우리 소 민원실 비치 접수·처리 통보

[시정·처리요구]

중국 길림성 강원경제무역사무소를 교두보로한 수산 분야등 동북3성 진출방안 대책강구

[처리결과]

- 도내 수산제품 중국현지 선호도조사
 - 조사시기 : 2000. 5월~6월 (2개월)
 - 조사협조 : 길림성 강원경제무역사무소
 - 조사사항
 - 수산물에 대한 중국현지 선호도 조사
 - 도내 수산제품에 대한 수출경쟁력 및 수출타당성 조사
- 도내 수출품 전시 및 홍보실시
 - 전시시기 : 2000. 8월
 - 전시장소 : 길림성 강원경제무역 사무소
 - 전시품목 : 중국현지 선호도조사결과 수출경쟁력 있는 수산물

[시정·처리요구]

향후 연해주와의 교류시페어선 무상양여 방침에 대해서는 무조건적 무상양여는 상호주의에 입각할 것

[처리결과]

- 교류계획
 - 2000년 환동해권 지사·성장 회의시의제로 요청
 - 우리측에서는 연해주 연근해 어획 쿼타요구
 - 연해주측에서 우리측 요구사항 수용 조건으로 폐업어선의 무상양여 요구시 검토계획

- 폐업어선 대외협력사업추진
 - 폐업어선 무상양여에 대하여는 연해주 측으로부터 공식요구가 없었으며

[시정·처리요구]

도립종묘배양장 장장 및 연구관 교체에 따른 전문성 공백관련 특단의 대책

[처리결과]

- 수산양식분야 전문공무원 충원
- 장장은 수산양식분야에 행정경험이 많은 공무원 우선 충원
 - ※ '99. 12. 9자 충원
- 기술담당관은 결원발생시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를 전직 또는 영입등의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충원계획임

[시정·처리요구]

조피볼락 등 치어 및 어패류 담수어족 방류사업 관련 어민 소득에 미치는 고부가가치 성과 측정결과 제시

[처리결과]

- 조사·연구 기관 : 수산진흥원, 수산양식시험장
- 대상품종 : 넙치, 조피볼락, 전복, 성게 등
- 주요내용
 - 품종별 적합한 표지표 조사연구
 - 표지방류 실시 및 어획량등에 의한 효과조사 실시
 - 방류효과 설문조사등 : 6개시군 81명
- 결과
 - 표지어 포획사항을 계속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 청취 및 설문조사에 의하면 방류효과가 크다고 많은 어업인이 인정하고 있으나
 - 어업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적으로 계량화하기는 어려움
- 성과측정상의 문제점
 - 방류해역의 해황 및 환경조사의 체계적 실시등 조사관리에 많은 전문인력과 예산이 수반
 - 품종별 성장 및 생존기간을 고려할 때 조사에 장기간 소요
 - 표지어 포획신고 미진으로 정확한 재포율 산정 지남



- 수산진흥원(국가기관) 계획
 - 기간 : 2000~계속
 - 대상품종 : 넙치, 조피볼락, 전복, 성게, 보리새우, 대하 등
- 우리 소 계획
 - 시기 : 2000년 9월중 실시
 - 품종 : 조피볼락 10,000마리 이상
 - 성과측정 : 항포구 순회 어업인 탐문·측정 정례화
 - ※ 방류어의 서식·이동사항, 성장도 및 포획사항 조사

[시정·처리요구]

시군에서 파견 근무중인 수산직공무원 인사의 공정성과 장기간 근무지 교체방안 강구

[처리결과]

- 퇴직·승진등 인사요인 발생시 장기근속자 우선 조정
- 도근무 승진자 시·군전출 확대 검토
- 시·군 근무공무원중 업무능력 우수자도 우선 발탁

○ 觀光文化局

[시정·처리요구]

붕어섬 개발관련

- 가시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국내 민간 투자업체와 국내 민간 투자업체와 외국인 투자업체를 유치하고
- 관광단지 및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여 종합휴양업 등으로 개발하는 방안 강구

[처리결과]

- 호안제방공사('91~'93) : 5,135백만원
- 환경영향평가 협의 : '94. 0 6. 10
- 관광지조성계획승인 : '94. 12. 1
- 관광단지 지정 : 2000. 2월까지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 요건 완화시(특정 ⇒ 불특정관광지)

※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5조 개정추진

- 중점투자유치 상세자료 작성(용역) 민자유치 촉진 : 중도, 붕어섬 등

[시정·처리요구]

중도관광지 관련

-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매년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바,
- 관광객유치 및 수입증대 방안 수립시행

[처리결과]

- 투자액 : 520억원
- 사업내용 : 토지매입 243천평, 야영장조성 67천평 등
- 민·외자 유치활동 : 13회
 - 라스베가스 투자관계관 현장방문
- ※ 현, 미국 ITPS사와 투자협약 추진중(지분 및 개발방향 등)
- 편의시설 확충
 - 장애인시설 및 화장실정비 : 9등
 - 청소년 체육시설(농구장) : 2면
- 관광지 홍보강화
 - 대학, 기업, 사회단체등 리후렛 배포
- 각종 이벤트 유치
 - 족구, 길거리 농구대회 등

[시정·처리요구]

관광지구 지정후 장기간 미개발 관련

- 지역개발의 저해요인 작용,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바
- 관광지정 취소, 지정면적 취소등 대안을 강구 개발업무 철저

[처리결과]

- 관광지구 현황 : 35개소
- 미개발지구 : 11개소
 - 조성계획 2년내 : 6개소
 - '99신규지정 : 4개소



- 취소검토 : 1개소
- 개발실태 정밀조사 : 2회('99. 3~4월)
 - 장기 미개발지구 지정취소 및 제척 검토 : 2개지구(화암, 파로호)
 - 자원우수지역 신규지정 : 3개소(강릉온천, 태백구문소, 횡성어답산)
- 장기 미개발지구 취소검토 및 불합리지구 면적변경 추진
 - 대상관광지 : 2개지구
 - 면적취소 : 정선화암
 - 지정취소 : 화천 파로호
- 추진일정 : 2000. 상반기중

[시정·처리요구]

지역축제육성 관련

- 지자체에서 무분별 경쟁적인 축제개최로 축제의미 퇴색 및 예산 낭비
- 지역특성과 장점을 살린 선별적 축제육성방안 강구

[처리결과]

- 지역특성을 살린 우수축제 집중육성
 - 1시군1대표축제, 특별이벤트 등
- 우수축제의 도단위 축제화로 국제적 수준의 축제로 육성
 - 비목문화제, 도솔산전적문화제
- 지역축제 학술세미나 개최
 -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등
- 지역축제 평가계획 수립추진

[시정·처리요구]

태백문화회관 건립 축소시행 관련

- 사업의 축소시행과 관련하여 용역비 부담집행등의 사례가 없도록
- 직 상급기관인 도에서 종합적으로 확인시행

[처리결과]

- 회관 건축규모 축소조정에 따른 설계 용역비 집행에 대하여는
- 당초 설계 용역업체로 하여금 추가 비용 부담없이 조정토록 조치

- 용역업체 : 예가람 종합건축사무소
- 지방비 부담의 어려움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부담으로 공사를 추진토록 적극 조정 지도

[시정·처리요구]

- 미착수 또는 공정부진 골프장지구 관련
- 사업계획승인후 미착수 또는 공정부진 지구에 대하여 전반적인 확인을 시행하고,
- 승인조건과 관련법률등을 적용 행정조치

[처리결과]

- 행정처분 조치(2000. 1. 6) : 1개소
 - 사업장 : 오크밸리골프장
 - 사업자 : (주) 한솔개발
 - 소재지 :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 행정처분내용
 - 영업정지 10일(1. 17~1. 26)
 - 처분사유 : 병설 대중골프장(9홀)을 '99. 12. 18까지 미준공
- 대중골프장 추진촉구
 - 2001. 6. 30한 공사완료

[시정·처리요구]

- 온천개발 관련
-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고 편법시행, 부당시행의 사례가 없도록 하고
- 온천법에 의한 시행이 되도록 조치

[처리결과]

- 온천현황 : 26개소
 - 이용중 6, 지구지정 7, 발견신고 13
- 이용온천 실태점검 : 6개소
 - 수문관측시설, 온천공 관리실태, 오폐수 처리시설 등
- 지구지정 온천개발계획 : 7개소
 - 입지여건에 부합된 개발계획수립
 - 환경, 재해, 교통영향평가 이행철저



- 발견신고 온천 행정지도강화 : 13개소
 - 온천지구 또는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 면밀 검토
 - 지하수영향 검토, 주민의견 수렴

[시정·처리요구]

강원관광기념품 관련

- 판로확대를 위하여 중간유통업체 육성, 국내외여행사 팸투어를 통한 생산공장의 여행코스 포함 등
- 생산업체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시책 추진

[처리결과]

- 지정판매장 운영 : 14개소
- 행사장 기념품판매부스 설치 : 2회
- 관광기념품 생산업체 관광코스화
 - 관광코스업체 조사 : 1월중
 - 주변관광지 연계상품개발 : 3월중
- 강원관광기념품 지정판매장 확대
 - 추가선정 대상업소조사 : 1월중
 - 업소선정 및 기념품판매 : 3월중

[시정·처리요구]

청소년수련관 관리조례 제정

- 청소년수련관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관리조례 제정방안을 강구

[처리결과]

- 청소년기본법에 위탁운영과 수련비용 징수 등 관련 근거조항이 마련
 - 제27조 제1항 : 위탁운영
 - 제32조 : 이용료 및 수련비용 징수
- 따라서, 적정관리를 위한 근거조항이 이미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관리조례 제정은 불필요

[시정·처리요구]

청소년수련관 지원관련

- 강원도청소년수련관의 적자보전 방법에 있어 예산승인제등을 채택 사전지원(적자폭 만큼)하는 방안강구

[처리결과]

사전지원 근거조항 마련

- 근거 : 강원도청소년수련관 위탁약정계약 갱신체결('99. 12. 30)
- 내용
 - 연간운영 적자 예상액의 선지원 근거조항 신설(위탁약정서 제9조제4항)
 - 연간운영에 따른 적자 예상액을 당해 년도에 미리 지원하고
 - 이를 위탁약정 내용과 회계결산 결과에 따라 정산할 수 있도록 함

[시정·처리요구]

강원국악전수회관 건립사업 관련

- 용역설계에서부터 충분한 조사없이 실시설계가 됨으로 착공시부터 건물의 위치를 변경하는 등 졸속시행의 비판을 면키 어려움
- 내부시설의 계획도 입주사무실 기능에 치우친 인상이어서 본래의 장중하고 여유있고 조금은 느긋한 공간구성이 필요함
- 특히, 국악연습실, 마당놀이와 공연무대등의 면적 확장방안 강구

[처리결과]

- 설계업체 행정처분 : 업무정지 1월
- 건물유치 변경 : '99. 4월
 - 대형하수 BOX 발견으로 설계변경 및 건물배치 변경
- 국악전수회관의 내부공간 배치 및 활용공간 확장방안에 대하여는
- 2000. 1월중 설계변경에 따른 관계자 협의를 통하여 조정할 계획임

○ 建設都市局

[시정·처리요구]

노후교량 및 터널안전 진단과 관련하여 진단 결과에 따라 노후교량 개선을 위한 유지관리사업



을 위하여 공격적인 예산투자를 하기 바랍

[처리결과]

- 지방도로상의 교량 및 터널에 대하여는 매분기 정기적으로 일상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상태가 현저한 시설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도로안전 사고예방과 안전도 개선을 위하여 타사업보다 우선 예산을 반영하여 적극 대처하고 있음
- 우리도의 요 정비대상 시설은 재가설 131, 부분보수 121, 정밀안전진단 94개소 등 총 346개소 192,003백만원이 투자계획으로, '99년도에 56개소 58,100백만원이 투자되었고, 2000년도에 133개소 52,905백만원이 투자계획이며, 향후 157개소 80,988백만원을 연차적으로 정비계획으로 적극 투자하여 도로안전사고예방 및 정상기능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시정·처리요구]

장기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다각도의 미집행시설의 해소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 불투명한 시설은 도시계획 재정비시 점진적으로 제척하여 시설을 폐지해 나가도록 권유함

[처리결과]

〈사업개요〉

- 시설결정 : 57종 13,016개소 172km²
- 98까지 집행 : 4,577개소 80km²
- 미집행현황 : 8,439개소 92km²
- ※10년이상미집행 : 4,429개소 62km²

〈'99 추진실적〉

- 도로개설등사업시행 : 197개소 1.4km²
- 도시계획(재정비)변경 : 115개소 2.1km²

〈향후 추진계획〉

-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일제 조사 : 6. 30까지
- 10년이상 경과한 미집행시설 재검토 및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 2001.12말
 - 2002. 1. 1부터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하여 매수청구권 부여
 - 청구후 2년 이내 매수여부 결정통보
 - 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 매수해야하고
 - 매수불가시 대통령이 정하는 일부 건축행위 허용
- 개정도시계획법시행일(2000. 7. 1)이후 20년이상 미집행시 실효(일몰제)제도 운영(도시계획

수립시재원조달 계획 마련 의무화)

[시정·처리요구]

건축법에서 규정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도를 비롯한 일부시군에 미설치되어 있거나, 기 설치된 시군의 경우도 법률관리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바, 이의 전반적 개선을 요구함

[처리결과]

-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따른 도 및 시군 건축조례상 설치근거 마련
- 동 위원회 설치관련 추진사항
 - 도분쟁조정위원회 설치계획 : 1월중
 - 위원회구성을 위한 인적사항파악(법률전문가, 여성인력 등)
 - 미설치 시군에 설치촉구(8개시군)
 - 1월중 구성(강릉, 영월, 철원, 화천, 양구, 고성, 양양)
 - 정선군은 2월중 구성
 - 기설치 시군에도 법률전문가 위촉을 촉구
- 다수의 법률전문가 위원포함 조치
 - 위원 임기 3년으로 즉시 교체 위촉은 지난
 - 일부 시군의 경우 법률전문인력이 전무한 실정
 - ※ 위원회 재구성시 위촉도록 행정지도
- 위원회 설치관련 홍보강화
 -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홍보강화로 건축관련 분쟁발생시 분쟁단사자가 적극 활용토록 유도

[시정·처리요구]

장애자도로(보도), 자건거도로 등에 있어 경계석으로 인하여 사고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가 하면 순환 연결성이 미흡하여 이의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일본등과 같이 보도를 아스콘화 하는 방안을 연구 시행하여 주기 바람.

[처리결과]

〈사업개요〉

- 전체계획 : 581노선 2,160km 1,800억원



- 중기계획 : 269노선 546km 457억원 ('98~2002년)
- 98까지정비 : 76노선 167km
- 사업기간 : '94~2010년

〈'99 추진실적〉

- 시범사업 : 23노선 65km 7,477백만원
- 자체사업 : 36노선 50km 7,259백만원
- 국정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 시행청인 시·군에 처리조치 권고(2회 : '99. 10. 27, '99. 12. 2)

〈향후 추진계획〉

- 자전거이용시설정비사업과 병행하여 횡단보도턱 낮추기 사업추진 및 장애인 시설인 점자부려 설치
- 사업효과, 연계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 선정 추진
- 과거 보도를 이용하던 것을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위주로 정책전환 추진
- 노상적치물, 불법주정차단속으로 자전거 이용 불편해소
- 자전거 사랑 시·군지부 설치 및 홍보활동 강화
- 2000년 사업추진
 - 시범사업 : 31노선 69.6km 7,880백만원
 - 자체사업 : 26노선 40.0km 4,543백만원

[시정·처리요구]

육상골재 및 산림골재 채취시 일부 불법채취로 인해 민원이 발생할뿐 아니라, 자연환경이 훼손되며, 강우유출시 토사동시유출 등으로 수해로 연결되기도 하는바, 행정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처리결과]

- 2000년 골재수급계획 시달시 육상골재 채취허가시 조건사항 이행토록 행정지도 철저 및 불법채취로 인한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 산림법에 의해 허가 및 관리하고 있는 산림골재는 농정산림국 산림관리과에 협조요청('99. 12. 9)
 - 토석채취 허가시 허가조건사항 이행 및 채취장 관리감독 철저
- 육상골재 채취장에 대하여 관할 시장·군수로 하여금 수시로 채취장 점검토록 조치하고, 산림골재는 관련부서(산림관리과)와 지속적인 협의로 토사유출등으로 인한 수해가 발생되지 않

도로 지도감독 철저

[시정·처리요구]

도로상에서 견인차들의 과속과 난폭운전 및 특정장소 대기 등은 불안감을 조성하므로,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이러한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할 것

[처리결과]

- 일부업체들이 고장난 사고차량 확보경쟁을 위해 도로상 난폭운전 및 특정장소에서 대기 등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실정임
- 위와 같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운송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홍보계도를 강화하는 한편 경찰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견인차 운송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시정·처리요구]

전원 생태도시 건설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신중하고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나 입지선정 지연등이 건설연기론으로까지 비쳐지고 있어 매우 유감이며, 향후 장기적 목표와 단계별 계획에 의거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처리결과]

- 도시규모 : 12km²내외(인구5만내외)
- 예상사업비 : 1조 1,600억원
- 사업기간 : '97~2010년(14년간)
- 단계별 추진계획
 - 계획 및 준비단계 : 1997~2000
 - 착수단계 : 2001~2003
 - 시행단계 : 2001~2008
 - 완성단계 : 2009~2010
- 타당성조사및기본구상용역완료(98)
- 기본계획용역 추진중 : 공정 59%
- 항공측량 용역추진
 - 용역기간 : '99. 6. 28~2000. 4. 18
 - ※도시개발법제정('99. 12. 28국회의결)



- 기본계획용역및항공측량용역 계속 추진
-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구역지정과 도시계획법 및 관련법 등 제반절차 이행 및 중앙정부 시범사업 책정등 관련부처 협의절차 수행
- 장기계획 목표를 가지고 여건변화 추이에 따라 단계별 추진

[시정·처리요구]

도로관리사업소의 지방도 관리에 있어 기존 도로측구를 함몰하거나 L형 측구지역에 있어 맹암거 건설의 불량으로 노면에 용수가 침출하는 등 심각한 도로피해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도로배수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지방도 보수에 임할 것

[처리결과]

- 우리도의 경우 굴곡부와 급경사지 및 낙석 상습지역이 많은 관계로 도로노건의 배수시설인 L형, J형, U형 측구 등이 낙석에 의한 매몰 또는 파손으로 그 작업량이 많아 적기에 작업을 할 수 없어 배수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도로 편구배 및 도로폭의 협소 노선과 경사지등에 대하여는 도로측구 우·배수처리 맨홀등을 성치하는등 노면배수에 대한 사전조사 및 설계를 철저히 하여 배수불량지를 개선해 나가겠으며
- 도로의 용출수 및 배수불량으로 인한 노면붕괴 지역은 도로 상류지역의 근본적인 횡·종배수 시설을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도로이용의 안전성을 위해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시정·처리요구]

과적운행 차량의 단속은 도로의 내용 수명연장과 직결되고, 파손방지와 안전운행을 도모하므로 이동·고정단속을 계속 강화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사전 계도·홍보활동도 병행할 것

[처리결과]

- 과적운행차량 단속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99년도에는 단속을 강화하여
 - 총 117,409대를 계측 365대를 적발하여 전년대비 132%(적발율 기준)가 증가된 실적을 거양하였고
 - 과적운행차량 예방을 위하여 홍보전단 2,000매 배포, 현수막 입간판 30개 설치,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9회를 실시하는 등 예방활동도 주력하였음
- 2000년도에는 과적운행차량의 단속을 강화하여 도로구간보존 및 안전운행 도모에 만전을 기 하겠음

[시정·처리요구]

제설장비 적재적소 배치는 폭설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의 효과가 있으므로, 장비의 운행·관리·배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처리결과]

-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설용 장비는 종합제설차 6대를 포함하여 모두 28대로, 겨울철 교통두절이 빈번히 발생하는 미시령 등에 고정배치하는 등 제설장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 또한 비강설 지역 장비를 기동배치하는 등 앞으로 도로 설해대책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시정·처리요구]

건축허가후 시공도중 중단된채 방치된 대형건물등에 대하여 일제히 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수립·시행토록 할 것

[처리결과]

- 공사착공후 1년이상 중단된 건축현황('99. 10. 31현재)
 - 도내 12개시군 44개소
 - 공동주택물 : 22개소
 - 일반건축물 : 22개소
- 시공도중 중단된 건축물의 해소방안 강구지시(도→시군) : 2000. 1.
 - 시군별 중단건축물의 현황 파악 및 공사재개를 위한 방안 강구
 - 인근 주민의 불편사항 우선 해소
 - 사업주체에게 공사재개 독려(불가시 제3자 인수를 통한 공사재개 등)
- 중앙부처에 중단 건축물의 해소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을 건의하겠으나, 대안 마련 지난
- 대규모 건축물의 건축허가시 사업주체의 사업전반에대한 예상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 처리

[시정·처리요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설공사 품질관리시험은 건설공사 품질향상으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큰 효과를 보고 있으므로 철저하고도 완벽한 품질관리시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람



[처리결과]

- 도로관리사업소 품질시험실의 시험기구는 만능시험기와 70종으로 토질검사시험등 6개분야 52 종목에 대하여 시험이 가능하며, '99년도 품질시험 추진실적은 11,300건을 계획하여 12,230 건 실시하여 108%가 증가된 시험실적을 거양하였으며,
- 건설공사 품질향상 및 부실공사 예방대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도와 시군 건설담당공무원 교육을 실시하여 공사감독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시험의 필요성 인지로 건설공사 품질제고 예방에 노력하였고,
- 공사현장의 품질시험 기술지도 강화로 시공업체의 품질시험 인식제고 및 건설시공 유도로 부 실공사를 방지하여 철저하고도 완벽한 건설공사 품질관리에 만전을 도모하겠음

[시정·처리요구]

강원도북부 도로관리와 관련 사업소의 원거리 위치로 유사시(폭설, 폭우) 즉각적이고, 능률적 인 보수체제 돌입에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중북부도로관리지소 설치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리결과]

- 현재 정부의 구조조정 단계에서 영서북부지역내 도로관리청인 북부지소 설치에는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
- 앞으로 정부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2001년 이후에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설 치가 가능한 방향으로 협의해 나가겠으며
- 이지역의 원활한 도로유지관리를 위하여 인근 읍면사무소 등에 장비를 상시 배치하여 폭설, 폭우 등 긴급사태 발생시 대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음

[건의사항]

대여사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사업자나 이용자가 기피하고 있는 렌트카 번호판 기호를 일반인 사용 차량과 동일하게 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요망

[처리결과]

-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제작에 관한 고시 개정시 건교부에 건의하고자 함

[건의사항]

노후버스의 운행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바, 총운행거리에 따른 사용년한의 규 제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건설교통부에 건의 요망

[처리결과]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령 하위법령 개정시 건교부에 건의하고자 함

[건의사항]

강원중북부 지방도 관리에 있어 도로관리사업소의 원거리 위치로 효과적인 대처가 미흡하므로, 전향적 개선을 위하여 북부지소 설치를 요망

[처리결과]

- 현재 정부의 구조조정 단계에서 영서북부지역내 도로관리청인 북부지소 설치에는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
- 앞으로 정부의 구조조정이 마무리 되는 2001년 이후에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설치가 가능한 방향으로 협의해 나가겠으며
- 이지역의 원활한 도로유지관리를 위하여 인근 읍면사무소 등에 장비를 상시 배치하여 폭설, 폭우 등 긴급사태 발생시 대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음

○ 엑스포조직위사무처

[시정·처리요구]

엑스포장내의 주제관과 상징탑을 관광자원으로 연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람.

[처리결과]

- 기본방향
 - 엑스포주제관, 상징탑을 청초호유원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새로운 설악권 관광명소로 개발
 - 동지역은 「강원관광종합정보교류센터」로 조성
- 주요검토내용
 - 기존시설내 엑스포기념관, 시군정보관, 관광홍보관, 관광정보관련 코너설치
 - 상설이벤트 유치가 가능하도록 주변공간 확보운영
 - 주제관 영상관 활용을 제고(아이맥스사 영상물 활용 등)
 - ※ 2000년 상반기중 기본계획 수립 ⇒ 단계별 실행추진

[시정·처리요구]

MBC 시사매거진 보도내용과 관련 잘못된 부분은 과감한 시정조치를 함으로 신뢰를 회복토록



할 것.

[처리결과]

- 국제관의 해외진품아닌 상품판매행위
 - 국제관이 상품판매에 너무 치중
 - 국제관 전시부스에 자국인이 아닌 종사자 근무
 - 해외참가국 및 외국인 관람객수 의심 등
 - 보도사항중 일부 사실인정 및 해명·사과
 - 일부 진품아닌 상품판매, 전시부스 타국인 근무행위 등
 - 언론기관 해명(11. 8), 인터넷 통한 해명·사과(11. 1)
 - 물품환불 등 후속조치 추진
 - 물품반납·환불조치 : 14건 34점
 - 인터넷, 언론을 통해 공고, 대행사 책임환불조치
 - 국제관운영 대행사(주)코트파에 대한 행정제제 요청
 - 조직위 ⇒ 문화관광부, 서울시
 - 조치결과 : 서울특별시 경고처분('99. 11. 30)
 - 부스종사자운영 : 철저한 사후정산 실시
- ※ 외국인 관람객수, 해외참가자 부담 등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해명
- 엑스포 결산과정을 통해 국제관 운영상 문제점 철저히 분석
 - 향후 예상되는 유사국제행사에 동일 사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

第 2 節 道政 및 教育行政 質問

1. 概 況

가. 會期 및 日數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제5대 전반기 의회 운영 중 총 5회기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정례회에서 2회(제106호, 제111회), 임시회에서 3회(제94회, 제96회, 제100회)로서 각 회기별로 3일간씩 총 15일간 실시되었다.

나. 質問議員 現況

1) 政黨別

제5대 전반기 의회에서는 총 48인의 의원이 질문하였으며 정당별로는 새천년 민주당 22인, 한나라당 19인, 자유민주연합 2인, 무소속 5인이다.

2) 會期別

각 회기별로 7~11인의 의원이 질문하였으며 회기별 현황은 아래와 같다.

- 제94회 임시회 : 9인
 - 민 주 당(5) : 이천규, 유돈대, 신명선, 장동희, 신창승의원
 - 한나라당(4) : 김수돈, 김길정, 김진동, 이인섭의원
- 제96회 임시회 : 11인
 - 민 주 당(5) : 정인수, 이연우, 정연대, 손석암, 함종선의원
 - 한나라당(4) : 심재천, 변완기, 전인택, 원종익의원
 - 무 소 속(2) : 엄민현, 정철수의원



- 제100회 임시회 : 9인
 - 민 주 당(4) : 권혁희, 곽노린, 이종근, 정인수의원
 - 한나라당(4) : 원종익, 서종을, 박응길, 이인섭의원
 - 자 민 련(1) : 인현상의원
- 제106회 정기회 : 11인
 - 민 주 당(4) : 인상규, 정연대, 성희직, 안상현의원
 - 한나라당(4) : 오원일, 전인택, 이인섭, 이 훈의원
 - 자 민 련(1) : 김규세의원
 - 무 소 속(2) : 이상구, 이상명의원
- 제111회 정례회 : 8인
 - 민 주 당(4) : 조규병, 이종근, 정충수의원
 - 한나라당(3) : 천희숙, 김원기, 김진동의원
 - 무 소 속(1) : 정철수의원

3) 日字別

- 제94회 임시회
 - 제2차 본회의('98년 9월 21일 월요일)에서 한나라당 김수돈, 민주당 이천규, 유돈대의원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 제3차 본회의('98년 9월 22일 화요일)에서 한나라당 김길정, 김진동, 민주당 신명선의원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 제4차 본회의('98년 9월 24일 수요일)에서 민주당 장동희, 신창승, 한나라당 이인섭의원 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 제96회 정기회
 - 제2차 본회의('98년 12월 1일 화요일)에서 한나라당 심재천, 원종익, 민주당 정인수, 이 연우, 무소속 엄민현의원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 제3차 본회의('98년 12월 2일 수요일)에서 민주당 정연대, 손석암, 자민련 정철수의원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 제4차 본회의('98년 12월 3일 목요일)에서 한나라당 변완기, 전인택, 민주당 함종선의원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 제100회 임시회

- 제2차 본회의('99년 5월 24일 월요일)에서 한나라당 원종익, 서종을, 민주당 권혁희의원
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 제3차 본회의('99년 5월 25일 화요일)에서 민주당 곽노린, 이종근, 한나라당 박웅길의원
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 제4차 본회의('99년 5월 26일 수요일)에서 자민련 인현상, 한나라당 이인섭, 민주당 정인
수의원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 제106회 정기회
 - 제2차 본회의('99년 12월 7일 화요일)에서 민주당 임상규, 정연대, 자민련 김규세, 무소
속 이상구의원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하였다.
 - 제3차 본회의('99년 12월 8일 수요일)에서 무소속 이상명, 민주당 성희직, 한나라당 오원
일, 전인택의원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 제4차 본회의('00년 6월 30일 금요일)에서 민주당 손석암, 한나라당 김진동의원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 제111회 정례회
 - 제2차 본회의('00년 6월 28일 수요일)에서 자민련 정철수, 한나라당 천희숙, 김원기의원
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 제3차 본회의('00년 6월 29일 목요일)에서 민주당 조규병, 이종근, 정충수의원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 제4차 본회의('00년 6월 30일 금요일)에서 민주당 손석암, 한나라당 김진동의원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다. 質問議題數

5회에 걸쳐 강원도정에 대하여 분야별로 432건의 질문과 강원도교육청에 대하여 118건의 질문을 하여 총550건의 질문을 하였으며, 회기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2. 第94回 臨時會

가. 第2次 本會議 質問 및 答辯要旨

1) 김수돈 議員

가) 江原道政

[질 문]

도내전역을 7개성장축으로 구분하고,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개발전략 추진방법은?

[답 변]

7개성장축으로 지역균형 발전 ①춘천, 홍천, 원주를 수도권 배후 기능축 ②양구, 인제, 정선, 태백은 산지개발축 ③속초에서 삼척을 연결하는 신동해안축 ④춘천, 화천, 양구에서 금강산을 북방교류축 ⑤홍천, 인제, 속초, 고성은 체류형 관광축 ⑥원주, 평창, 강릉은 고원휴양산업축 ⑦영월, 태백, 삼척은 하이테크산업축을 강원개발연구원이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합니다.

[질 문]

붕괴되어 가는 한우육성사업에 대한 대처방안과 농가보호 대책은?

[답 변]

축산경영자금 융자지원 확대등 경영안정을 위하여 각종 금융지원과 산지 소값 안정과 쇠고기 소비촉진을 위해 한우수매, 농가의뢰도축 허용, 슈퍼나 체인점등의 육류판매 허용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고, 청정 환경축산과 소비자 신뢰를 구축을 위하여 브랜드화 등 양축농가 소득확보와 축산발전에 도모코자 판매망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질 문]

철도가 기설치된 후 방음벽 설치비 부담규정 국고 60%, 지방비 40%를 국고 80%, 지방비 20%로 철도청과 협의 개선할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답 변]

현재 미설치된 곳은 주거단지에 대한 소음정도를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철도청과 심도있게 협

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설치비중 지방비 부담률도 낮출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질 문]

여성의 인적자원의 체계적인 양성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여성회관의 획기적인 전문기술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이 요구되는데, 이에대한 방안은?

[답 변]

여성회관에서 운영중인 교육프로그램 내용은 미용등 기술과목과 서예, 꽃꽂이 등 17개분야이며, 특히 금년에는 조리·미용과목에 시장 군수 추천을 받아 61명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3개월간 합숙교육을 시범 실시중이며, 앞으로 전문기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도내 사회교육 기관과의 권역별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여성 능력개발 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코자 합니다.

[질 문]

열악한 시군 보건소의 만성병 진료와 전염병 예방사업에 절대 부족한 의료진 확보와 장비보강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그 대책은?

[답 변]

도내 약사 정원 9명중 5명은 5개 시·군보건소(춘천, 원주, 강릉, 속초, 화천)에 채용하고 있으며 4개시군은 낮은 보수로 미채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방진료실은 12개 보건소에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이중 7곳은 한의사가 배치되어 있고 5곳은 지역 한의사회 및 군의관의 자원봉사로 진료중에 있고, 또한 미 설치된 6개시군은 '99년부터 년차적으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만성 퇴행성질환 치료를 위해 12개 보건소에 물리 치료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소의 진료기능 보강, 전문인력 확보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질 문]

현대 도의 추진에 한계가 있는 한시적 실업대책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행·재정적 정책수단이 필요한데 이에대한 실업대책은?

[답 변]

도차원의 장기실업대책을 포함한 종합대책 수립추진중에 있으며 장기대책으로 기존기업의 도산을 최소화하는 한편,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유망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확대와 “수



주지원센터”설치운영, 벤처기업 등의 창업자금 지원확대, 특히 고용흡수력과 지역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서비스산업에 주력하는 한편 SOC투자 확대를 통한 실업자 흡수, 해외 고용정보 수집 인력송출 방법 강구 등 도단위 추진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 동원하여 일자리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실업대책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나) 教育行政

[질 문]

IMF체제하의 실직자 자녀학비 및 결식학생 급식 등 풀어야 할 난제가 많은데, 도내 기존시설을 뒤로한 채 565천만원의 건축비와 매년 66천만원의 운영비를 들여가며 강원도 설악 학생수련관(가칭) 신축이 필요한지?

[답 변]

현재의 수련시설로는 8.8%의 학생밖에 감당하지 못함. 기존의 시설 효율성 등을 검토 통폐합 또는 폐쇄예정, 설악학생수련원은 통일조국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과 평화통일의지 교취를 위한 안보체험학습으로서 절대 필요한 시설입니다.

[질 문]

강원도 여교원의 비율이 약 44%인 반면, 현재 임명된 여교장·교감은 33명으로서 극히 적은 수인데, 향후 교장·교감직에 여성 참여도를 높일방안은?

[답 변]

여교장·교감 및 교육전문직에 여성 참여도가 낮은 까닭은 주부등 1인 3역의 부담으로 벽지근 무기회부족 개인연구등 승진을 위한 자기발전 노력결여 등임. 여교원의 승진기회 확대를 위하여 학교운영에 적극 참여시키는 등 승진여건을 갖추 수 있도록 중요보직을 동등하게 부여토록 적극 권장하는등 다각적으로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2) 이천규 議員

가) 江原道政

[질 문]

폐광지역 「카지노」 사업관련, 도 차원의 방안과 대책은?

· 폐광지 개발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카지노는 물론, 스키장, 골프장 동시개발 추진

[답 변]

폐광지역 개발목표는 쾌적하고 인락한 자조적 고원관광 도시를 조성하고, 동해안과 연계한 국민휴양관광지인 사업으로 종합관광단지 개발을 민자유치사업이며, 카지노 리조트 건설은 2010년까지 3단계 나누어 추진하고 있음. 마스터 플랜 10월확정 본격적인 개발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질 문]

폐광지역과 연계한 국도 및 지방도 확포장사업 조기추진방안은?

· 7·31·38번 국도, 416번 지방도로

[답 변]

38호선의 경우 투자사업비 규모가 막대하여, 우리도에서는 본도로에 대하여 「특별지원대책 도로」로 지정하여 줄 것을 건교부등 관련부처에 건의중에 있으며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 문]

환경농업의 직접 지불제 관련, 환경농업 대상농가 선정시 철저한 심사와 적법 타당성검토 및 발을 포함한 직접 지불제 시행 방안과 대책은?

· 환경농업실천 농가에 토양검정기 무상지원 계획은?

[답 변]

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내년부터 시행되는 신규시책으로 발을 포함한 환경농업 실천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농림부에서는 법 시행규정을 마련중에 있으며 대 농업인 시책홍보와 농산물 검사등 모니터링 수행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강화해 나가고, 환경농업 실천농가에 대한 토양검정기는 농협의 「흙 살리기 운동」 차원에서 '97년부터 이미 년차적으로 무상지원되고 있습니다.

[질 문]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한 운영방안과 대책은?

· 예산절감과 축제횟수 조정을 위하여 시군축제중 유사한 축제 통합방안?

· 관 주도축제의 지역주민 주관 축제로의 전환용의



[답 변]

지역축제는 외래객을 유치할 수 있는 관광 이벤트 사업으로 육성해 나가되, 그 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축제는 지원·육성하여 활성화 시켜 나가고 그렇지 못한 유사한 축제는 정리·조정하여 경쟁력을 키워나가도록 할 계획임.

아울러 지역주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민간주도의 축제가 되도록 권장·유도해 나가겠음.

[질 문]

생태보전지역관리 대책은?

- 양구 대암산~용늪지역, 태백 대덕산~금대봉 지역에 대한 관리대책
- 생태보전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보존대책?

[답 변]

지난 8월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 대암산 용늪은 환경부 관리로 남고, 대덕산 금대봉은 우리도로 이관되었고 이들 보존·관리대책으로 주변산지 식물들이 침입하는 등 습지로서의 기능이 점차 훼손되어 감에 따라 환경부에서 '97년부터 생태계 복원사업 타당성 조사를 실시중임, 대덕산·금대봉지역은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이후 유급감시원(4명)을 배치하여 철저히 감시하고 있으며, 태백시와 동부지방산림관리청등과 협조하여 보호대책을 강화하는 등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질 문]

농촌여성들의 전문영농교육확대는?

[답 변]

여성의 자질향상 및 능력개발을 위한 생활과학기술교육, 새해영농설계교육, 영농공개강좌 등을 실시중이고 앞으로 교육계획수립시 교육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요구도가 높은 교육과정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질 문]

여성농업후계자 육성방안과 대책은?

[답 변]

신청자격 및 평가등에 있어 남성에 비해 우대 받을 수 있도록 30세 미만인 미혼여성에게는 예

비후보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선정 평가시에도 가산점을 주는등 기준점수를 받으면 여성이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앞으로 여성 농업인 후계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질 문]

축산농가 보호대책은?

· 축산농가도 사료비 절감을 위한 「정부미강」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답 변]

IMF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정부관리 미강을 사료용으로 공급 가능토록 '98. 2. 20 농림부에 건의한바 벼수매 물량중 대부분은 조곡 상태로 판매하고 정부관리 미강은 전체 미강의 5%수준에 불과하고, 착유후 탈지강은 전량 사료용으로 공급되므로 정부 미강의 직접 사료용 공급은 당분간 어려운 실정이라는 회신이었으며, 앞으로 사료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시안 이므로 기회있을 때 마다 건의를 통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 教育行政

[질 문]

연말까지 결식학생 예상인원, 급식해결방안 및 대책 예산확보방안, 방학동안의 급식계획과 내년 고교급식 100%달성에 대한 예산확보방안 음식쓰레기 처리대책은?

[답 변]

현재 결식 학생수는 3,500명으로 연말까지는 상당수 증가예상임. 지원방법은 국고보조금과 도비(101,805만원)로 2,551명을 지원하고, 878명은 「도시락후원운동」을 통한 모금(46,350만원)과 각급기관 단체 및 개인 독지가의 성금으로 결식학생 중식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질 문]

방음벽 설치 등 교육환경 개선에 교육감의 의지와 관심을 부탁하며 특히, 화천 중·고등학교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실 것을 주문함.

[답 변]

도내 소음피해 대상학교는 70개소로서 이미 방음벽과 방음창 시설 조치하였으며, 화천중·고등학교는 운동장사용에 의한 피해로서 화천군 관계자와 긴밀한 협의를 가져 운동장 사용을 수업



에 지장이 없는 공휴일 등을 택하도록 하고, 부득이 평일에 할 경우 화성기 사용 자제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 유돈대 議員

가) 도정질문

[질 문]

과학영농기술교육 실택 및 각종 자금지원운용 상황은?

[답 변]

영농기술 향상을 위하여 선도농업인을 대상으로 국내외 첨단전문기술 중앙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단위는 주산단지 위주의 지역특화품목 재배기술 교육에 중점을 두고, 시·군에서는 개별 농업인의 시기별 현장교육등 연간 20개과정 8만여명을 하고 있으며 영농지원사업은 '94~'98년까지 2조 4,385억원 투자계획, 금년도 적정생산 기반관리등 8개분야에 3,869억원 투자할 계획입니다.

[질 문]

생산된 농작물의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 판매시책 추진상황은?

· 현 유통구조에서 보다 발전된 개선방안?

[답 변]

정월 대보름맞이 행사, 대도시 판매행사 16회, 직거래장터운영 822회, 국도변 직판장등 173개소 운영, 도·농자매결연 153회등 다양한 직거래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개선대책은 수송, 포장, 저장등 규격화 및 출하확대를 위한 물류기능 확충, 대관령고랭지채소 산지도매시장 금년 10월 완공예정임 등 지속적인 유통구조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질 문]

농업후계자 및 전업농 희망농가에 육성자금 확대 지원방안은?

[답 변]

농업인후계자는 연평균 365명에 비해 '98년에는 최고 5천만원까지 452명으로 확대지원하고, 전업농은 '96년까지 5천만원까지 지원하였으나 1억원까지로 지원 한도액을 확대하였으며, '98년에

는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194명을 선정, 129억원을 지원하는 등 농촌인력 육성자금 지원규모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 문]

귀농자 시책의 획기적인 발전방안과 대책은?

[답 변]

귀농자의 정착을 위한 상담실(도·시군 농업기술센터)설치 1,291건 상담실사, 특별교육 30회 422명 실시, 귀농자 농업 창업자금 1인당 2천만원 한도로, 금리 6.5% 2년거치 3년균등 분할 상환 조건 184명에게 국비 30억원 지원조치, 귀농안내 가이드북 2천부 제작배부하는 등 최대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질 문]

농작물 재해보상 범위확대 및 실질적 구제방안 강구는?

- 농작물 재해시 현 보상범위 개선용의
 - 중·고·대학생 수업료 면제
 - 영농자금 무이자 지원
 - 농가별 실제피해액에 따른 현금 보상
 - 농가에 지원되는 여신금리 하향조정

[답 변]

지원범위 확대 및 복구비 인상을 수차 건의 개선요구 한 바 있으며 그 결과 금년 8월부터 중고생 수업료 면제를 2ha미만에서 5ha미만까지 확대지원케 되었으며, 영농자금 무이자지원에 대하여는 피해율 50%미만은 1년, 이상은 2년간 이자감면 및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고, 농가별 실제 피해액에 따른 현금보상은 어려우며, 이재민 구호 및 생계비지원 2ha미만에서 5ha까지 범위확대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질 문]

탄광지역의 경제활성화 대책은?

- 광공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지원 사유와 활성화 대책
- 태백 석탄박물관과 고한·사북의 석탄역사촌을 정책적인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및 지역에 알맞은 계곡형 관광휴양지 조속 설치되어 주민소득증대 모색



[답 변]

폐광지역의 경우 대도시와 접근성 부족과 도로망의 불비로 인한 물류비용등으로 경제성이 낮은 실정임. 지역의 접근 도로망인 38번 국도가 개선될 경우 저지가와 저인건비 청정환경 등을 비교우위로 이주가 기대되며, 석탄박물관은 '97년 5월 개장 54만명이 관람하였고, 체험교육 갯도 관광은 현재 폐광 갯도는 붕락 출수등 안정성이 취약하므로 향후 폐광이 검토되는 안전한 체험 갯도 개발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질 문]

정선철도 폐쇄반대 및 버스노선 조정방안은?

- 공공성을 감안한 정선철도 계속운행 대책
- 도청~정선간 1일 2회 버스운행 증회

[답 변]

정선선이 지니고 있는 관광철도 기능을 살리는 방안을 철도청과 협의한 결과 하계 휴양열차, 주말 등산열차 운행 등 다각적인 노력경주, 버스운행 증회는 이용율이 저조로 어려움, 시간변경은 업체와 협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질 문]

국·도립공원 일부 건물·토지의 국립공원 관리공단 이관 승인 여부와 현황, 지방화시대의 지방재정 확충면에서 관리권을 강원도로 조속히 이관용의 및 이에 대한 향후 계획과 대책은?

[답 변]

무상임대 도유재산은 관리사무소, 화장실, 도로 등 공공시설이며, 자연공원법에서 공공시설을 국립공원관리공단측에 무상임대토록 규정되어 있음. 그 외 주차장, 야영장 등 수익성 시설은 유상대부하고 있음, 관리권 위임은 '91년부터 9회에 걸쳐 건의하여 왔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음. 계속해서 위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 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제척

- 설악산 국립공원내 노하·척산·도문동지역 노후건물 증·보수 해소대책은?
- 관광객 편의를 제공할 주차장, 숙박시설을 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 구역 해제 강구 방안은?

[답 변]

현재 환경부에서 국립공원 전반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지난 8월 26일 환경부와 타당성조사 용역업체로 하여금 공원구역으로 불합리하게 확정된 11개소 24km²의 제척을 건의한 바 있으며, 향후 공원구역조정 타당성 조사결과에 대한 지방순회 공청회시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 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질 문]

생활환경 오염대책은?

- 축산폐수의 무단방류 및 레미콘 공장의 골재채취로 인한 하천 오염 방지대책
-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운동으로 자가용 함께타기와 자전거 이용을 권장할 용의

[답 변]

축산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정화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나 일부 축산시설에서는 부주의에 의한 폐수유출로 하천과 토양오염 사고가 있었고, 현재 도내 레미콘공장은 88개소이며, 골재 채취장은 5개 시군 6개공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업소는 침전지를 이용하여 상등수를 재사용하고 있으므로 배출되는 폐수는 없음. 자전거 이용의 권장과 함께 '97년까지 133억원을 투자하여 70개노선 108km의 자전거 도로를 개설했으며, '98년에도 71억원을 투자 67km와 보관대 설치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도청 공무원의 경우 주1회 차 안가져오기와 10부제 운행, 카풀제, 통근버스 운영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98. 9. 1일부터는 도민전체로 자율 10부제 운행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 문]

상습수해 방지 대책은?

- 도내 교량등 수해위험지역 점검결과 제출
- 상습피해지역을 얼마나 되며, 이에 대한 방지대책

[답 변]

도내 교량 1,982개소, 제방 701개소, 재해위험지구 85개소, 방재시설물 288개소, 건설공사장 271개소 등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응급보수·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하였으며, 연차별 중장기 계획에 의한 항구적인 대책도 함께 강구해 나가고 상습 피해지역과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85개소를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의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비사업은 '96년부터 2005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모두 910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질 문]

행정기구 감축, 조직안정 및 사기진작대책은?

- 공직안정과 사기진작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할 용의
- 내년 지방행정조직의 민영화등을 통한 제2단계 개편시 「경영도 행정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신다면 이를 구체화 할 대안은?

[답 변]

최근의 저성장, IMF시대에 걸맞는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의 구현을 위해 조직의 축소와 인력의 감축 개편과 경쟁원리를 도입한 「자치경영행정」의 축소가 불가피함. 과원에 대한 조치는 정년퇴임, 명예퇴임, 등 자연감소 등을 감안 큰 어려움이 없음. 공무원 사기 진작책은 지금까지 추진해온 「근속승진제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실시함으로써 조직의 생산성 제고와 우수한 성적을 거둔 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승진등 인사관리 제도를 적극 개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아가겠습니다.

[질 문]

청사시설 개선촉구 요망?

- 도청별관과 의회청사간 지붕연결 통로 설치

[답 변]

연결통로 설치에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으나, 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장차 예산사정이 호전되는 시기에 설치방안은 강구하겠습니다.

나) 教育行政

[질 문]

원거리 지역 출·퇴근하는 교사들에게 관사와 기숙사 건립제공 계획과 복안은, 벽지근무 가산 점 부여 근무의욕 고취대책은?

[답 변]

원거리 취약학교 근무교사들에게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 의거 도서벽지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4조규정에의거 교육감이 2.5점범위내에서 월 0.015점의 가점을 주고 있고, 노후시설의 교체, 멀티미디어 및 사무자동화 등 교육환경개선과 교원복지시설 확충으로 벽지교원 근무의욕고취와 도농간 학력 격차를 좁혀 나가고 있습니다.

[질 문]

국난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미래 주인공들에게 국가관을 심어주기 위한 교과서 개편에 대한 견해와 교육부에 건의할 용의는?

[답 변]

현행 6차 교육과정에서 「민족의 일원으로서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다가올 통일에 대비하여 세계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 하려는 태도」를 가지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제7차는 민족통일의 당면과제 등을 연구하여, 통일과 관련되는 문제점을 스스로 찾고, 투철한 국가관을 심어줄 수 있도록 가일층 확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질 문]

종합고등학교를 남녀 공학으로 병합하고 인문고와 실업고를 분리하여 적성에 알맞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 변]

남녀 공학과 중학교까지 병설운영을 전제로 하는 인문과 실업계의 분리는 학교규모의 적정성 유지와 전문성 교육,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살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성을 지니고 있어 본도 교육청에서는 수년전부터 지역주민등의 의견을 수렴 희망학교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하나 하나 개편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 문]

통폐합된 학교수는 얼마나 되며, 폐교에 대한 관리계획과 청소년 비행등 사회불안 해소책은?

[답 변]

현재 관리하고 있는 폐교는 170개교임. 활용현황으로 20개교 학생아영장등 지역교육청 자체활용, 134개교는 청소년교육·공공목적 및 주민 복리증진사업등의 목적으로 임대활용, 12개교는



지역교육청에서 자체활용 예정이고 4개교는 철거계획이며, 현재 미활용폐교는 활용처분시까지 직원이 상주관리하거나 인근주민에게 위탁관리하고 수시 점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질 문]

학교폭력 근절대책으로서, 의례적인 계획보다는 획기적이고 적극적인 근절대책은?

[답 변]

도내 273개 중·고등학교에 학교폭력 추방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폭력 실태 파악을 위하여 쪽지상담 및 설문조사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폭력피해 신고컴퓨터 통신망 개설운영, 인격존중 학교풍토 조성등 사회와 학부모로부터 신뢰받는 학교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점차 정착되어가고 있을것입니다.

나. 第3次 本會議 質問 및 答辯要旨

1) 김길정 議員

가) 江原道政

[질 문]

도지사 공약사항 실천대책은?

- 야당지사로써 IMF체제하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할 사항과 예산 확보 문제
- 21개 도지사 공약사항을 강력하게 추진해낼 지사님 의지
- 정부여당과의 관계정립을 위한 구상

[답 변]

저의 도정 소신과 철학이 일관된 맥락을 유지하는 가운데 도정방향에 대한 저의 포부를 체계화 시킨 청사진으로써 모두 22개분야 152개의 세부시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21세기 도정 기획위원회와 도정평가단으로 하여금 이공약들을 더욱 합리적으로 구체화하고 그 진행상황을 평·관리토록 할 계획이며, 장기적인 사업은 재임기간 중 최소한 기반조성까지는 완벽하게 구축할 계획입니다.

[질 문]

'98년도 세수확보 대책은?

· 수많은 기업도산으로 세수확보가 지날 것으로 예상되는 그 규모와 대책

[답 변]

취득세, 등록세 부분에서 560억원정도의 세수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추경예산시 징수목표액 조정 재정운영 조치하고 소액채납자는 현장징수활동 강화, 고액채납자는 압류 공매등 체납처부 강화, 은의·탈루세원 발굴 세수감소 최소화 노력하겠습니다.

[질 문]

속초 또는 동해에서 금강산 유람선 출항 관련, 사전에 도의 승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답 변]

통일의 물꼬를 트고 설악산~금강산 연계관광 차원에서 도와줄 부분은 돕고, 협조와 도움을 받아야 할 사항은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으며, 해당기업과는 금강산 관광과 동해안관광을 연계하는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고 함께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여 많은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문제와 지역인력의 고용과 지역산품의 우선구매등 관광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고 있음. 앞으로 남북교류사업은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강원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될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민간부문의 교류도 가능한 본 계획에 따라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 문]

북강원도에 대한 환경친화적 차원의 개발과 교류에 대한 견해는?

· 강원도지사 허가없이 북강원도 환경파괴 행위의 개발방지대책

[답 변]

금강산과 설악산을 연결하는 순환관광루트를 만들고 양지역을 상호 보완적으로 개발하여 과잉중복투자와 환경훼손을 예방하는 내용을 골자로 내년에 우리도와 문화관광부가 공동으로 설악산~금강산 연계개발 전략과 기본계획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질 문]

향후 가시화될 남북교류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우리도의 제의에 대하여 북한측의 대응에 대



한 전망은?

[답 변]

우리도는 「통일한국의 1번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목표로 남북교류 확대에 대비 철도도로 복원사업, 동해권 5개국을 연결하는 「환상관광」 루트 개발추진, 「남북강원도 교류협력위원회」 관련기구설치, 「항공해권 5개국 지방회의」에 북한 참여 유도, 학술교류 등 민간부문에서부터 점진적 교류방안 모색, 이에따른 북한의 대응도 점차 도민이 소망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질 문]

'99 국제관광박람회 대비 7번국도 우회도로 개설, 찻집관거시설 양여금 지원, 주제관 부지대금의 내년도분조기지급 등 예산대책은?

· EXPO 기간중 호수이용 이벤트 행사나 수막스크린 연출등을 위한 수질개선 방안은?

[답 변]

7번국도 사업비 양여금은 69억원중 20억원은 지원이 확실히 되고 잔여 사업비는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으며, 그 외 모든사업도 엑스포 기간내 완료에 양여금 전액지원이 가능토록 최선을 다하겠음, 주제관 부지대금은 '99년도부터 5개년 분할상환액의 지급이 가능토록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 추진하겠으며, 하수종말 처리장 건립과 찻집관거 설치가 진행중에 있으며, 해양수산부의 신 해수교환 사업이 추진중이며 다각적으로 청초호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 문]

속초항을 신항만 준설 및 확장 개설하여 북방교역 전진기지항으로 개발하기 위해 종합여객터미널 16억원 지원에 관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 대포항 개발에 소요되는 예산의 '99년도 정부지원 전망에 대한도의 견해는?

[답 변]

환동해권 국제교류 및 대북방 교역증대에 따라 그 면모를 일신할 필요성이 요구되며, 따라서 정부에서는 동해권 항만 재정비와 신항만 개발검토를 위해 금년도에 9억3천만원의 용역비로 「동해안항만정비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는 내년 6월에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될 전망이다.

속초항 시설확충과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147억원을 지원받기 위해 중앙에 요구

중임.

[질 문]

향토 야생동물 사육방사 복원계획의 향후 추진계획은?

[답 변]

복원계획은 '98년부터 2년차사업으로 사업장 설치와 종조수구입등 사업비 2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정부 긴축재정운영에 따라 설계비 4천만원만 확보되어 설계유보중이며, 앞으로 11월부터 운영할 순환수렵장 수입금 중에서 사업비 확보 '99년당초계획대로 사업추진할 계획입니다.

[질 문]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폭 확대를 위한 대책은?

[답 변]

지사직속 기구로 「여성정책실」 설치하여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경쟁시대에 앞서가는 강력한 여성정책을 펴고자 여성정책의 자문의 기능을 수행하는 「여성정책특별위원회」를 의회 의결을 거쳐 설치할 계획이며, 여성발전 기금도 30억원으로 확대추진코자하고, 각종 위원회등 정책 결정과정에 여성 참여율을 높이는 등 정치, 사회등 모든분야에 고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질 문]

관광산업과 관련하여 호텔, 콘도등을 승인받고 건축중단된 건물을 정리할 방안은?

[답 변]

관계법령의 적합성과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 및 방안 만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계획 검토시 자본금이나 사업주의 사업의지를 확인하는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관광진흥법을 개정 관광사업 등록 이후에만 허용하던 양도양수신고를 사업 승인을 득한때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사업자가 자금악화등을 이유로 공사지연 하거나 공사중단 사례가 해소될 것입니다.

[질 문]

공사비를 하청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악덕업주들에 대한 도차원의 대책은?

[답 변]

하도급자 보호방안으로 공사대금채불등 민사상의 분쟁여부 확인을 위하여 법개정문제는 법취지



를 감안할 때 어려우며 앞으로 사업 추진지도에 당사자간의 원만한 해결이 선행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 김진동 議員

가) 江原道政

[질 문]

민선 2기 도정운영 철학과 공약실천 의지는?

- 경영행정의 실현과 환경친화적 개발등 5대 도정방침을 주장하셨는데 다시한번 확고한 도정운영 철학을 천명요망

[답 변]

도정운영의 기초를 「창의성과 유연성」으로서 창의성을 주체적, 자주적, 차별적인 것이며 쫓대가 있는 강원도적인 것을 의미함. 유연성이란 기존틀을 창조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혁신성 등의 기초위에 최상의 목표개념으로 「강원도 세상」을 제시했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경영행정의 실현」, 「신산업의 육성」, 「환경친화적 개발」, 「사회복지의 실현」, 「지역문화의 창조」의 5가지방침 제시, 이를통해 「개성과 활력이 넘치는 도정」을 펼치겠음, 도정운영 철학인 동시에 최고의 이상적 목표로 「변화의 새바람 강원도 세상」은 행정환경의 총체적 표현으로써, 모든 정책기조의 맥락이며, 아울러 강원도 세상이란 강원도의 이익이 존중되며, 강원도의 미래가 보장되는 세상이 열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 문]

금강산 관광유람선 취항관련

- 각기 다른기업이 경쟁적으로 유사한 형태의 관광사업 추진허용에 따라, 북측에 이용당하고 있거나 앞으로 그러할 우려가 없는지 도의견해와 이에대한 중앙정책당국과의 협조방안
- 지금까지 진행된 금강산 관광선의 취항장소와 시기 결정과정에서 도는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 만약 역할이 없었다면 그 이유와 향후 도의 권익확보차원에서 대처방안은?

[답 변]

현대그룹의 동해항, 금강산 국제그룹의 속초항은 각 항구로서의 기능을 감안해보면 다루트화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되므로 경쟁적사업이기 보다는 동해안 관광과 연계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우리도에서는 본사업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 통일부 등에 지회보고

를 하였으며 대통령계도 상세히 보고드린바 있으며 강원도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패키지 관광개발, 체류형 관광유도, 선수물품 공급과 농산물 직판장 설치등 도내 생산품 구매촉진, SOC사업의 확충과 항만배후지역 정비 등 실익과 연계될 수 있도록 통일부등 관련부처와 사업 자측과도 실무협의 창구를 마련하는등 적극적으로 협조·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질 문]

금강산 유람선 운항시간을 오후 출항, 오전 귀항을 조정(오전출항, 오후귀항)하여 관광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할 용의와 방법은?

[답 변]

현재 일정을 보면 서울, 경기, 충청권을 제외한 관광객은 동해시에서 출발 당일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관광안내교육”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전일에 도착해야하는등 동해시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 문]

금강산관광과 설악산을 비롯한 도내관광 연계개발 대책은?

[답 변]

우리도에서는 금강산관광이 설악산등 도내관광과 연계되게 하기 위해 현대와 통일그룹에 금강산과 동해안 관광을 함께 묶는 패키지상품 개발요청, 관광항구와 컨벤션센터 및 역사문화촌 건립등 관광자원개발, 국제공항, 항만, 철도·도로망등 기반시설 확충노력과 내년에 설악산·금강산 연계관광 기본전략과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대통령 우리도 순방시 용역비지원약속). 앞으로, 설악산·금강산 연계관광을 실현시키고 강원도를 동북아시아의 대표적 관광명소로 키워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 문]

삼척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의 원전 저지 대응전략은?

[답 변]

산업자원부장관과 직접면담을 통하여 원전건설에 대한 주민과 도의 입장을 명백하게 전달하였으며, “장을병”국회의원도 관련 부처장과 한전사장등을 만나 주민들의 원전후보지지정 반대 의사를 전달한 바 있고, 산업자원부는 한전으로부터 후보지 입지지정에 관한 건의를 받아 연말까지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후보지를 결정할 예정이며, 도에서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인 원전후보지 결정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 문]

동해항 국제 카페리 취항 거둬 촉구함.

[답 변]

'97. 12. 17일 한국 동해중앙훼리와 일본 국제중앙훼리간에 합작 투자계약이 성사되면서 동해항과 쓰루가항간 카페리호운항 논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 1월 취항목표로 여객선 구입을 위한 가계약 체결, 터미널 건립 부지 사용문제 외항 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등 해양수산부와 협의중이고 우리도에서도 사업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 문]

동해항 주변개발을 위한 도의 지원방안은?

[답 변]

도에서는 동해항 주변정비를 위하여 동해시와 공동으로 ①도시계획 재정비 ②동해항거점 유통단지 개발 ③국제관광 시설사업 ④동해항 시가지 접근도로 개설 ⑤북평산업단지 민자유치 등의 방안적극 검토와 주변개발정비 사업계획을 구체화하여 개발에 필요한 국비지원등을 중앙부처에 요구하는 한편 동해시 종합개발을 위한 민자유치도 함께 검토하여 나가겠습니다.

[질 문]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영동광역권 개발정책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강구?

[답 변]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립과 관련하여 우리도에서는 6월에 영동광역권 지정·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국토개발연구원과 강원개발연구원에서 공동으로 수행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99. 6월에 영동광역권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승인을 정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본계획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 문]

21세기 국토동서횡단 물류수송 체계구축을 위한 연구시행에 대한 방향은?

[답 변]

지난 9월 9일 국토개발연구원에서 개최한 21세기 「국토구상(안)」에 국토통합축을 형성하기 위하여 인천~강릉축, 군산~포항축, 평양~원산축 등 3개의 동서내륙축을 개발한다는 구상이며, 인천~원주~강릉·동해·속초를 연결하는 동서축이 개발되자면 고속도로, 산업단지, 관광지등 사회 간접시설 확충이 필연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강원개발연구원 등을 통하여 동서횡단물류 수송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여 제4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 문]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 운영 개선방안은?

- 도 민속예술경연대회와 도민체전을 동시 개최하되 민속경연대회는 격년제로 개최하여 최우수 팀과 우수팀을 선발, 해를 달리하여 출전시킬 용의

[답 변]

분야가 전혀 다른 도민체전과 동시에 개최와 격년제 개최는 관계전문가와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의견이 각각 다르며 주로 농어촌 주민을 위한 큰축제를 감안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 등 도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 신중히 결정해야할 것임. 그 외 전국대회와 도대회의 연속성과 전통민속예술 발굴에 미치는 영향 등 당장 시행은 곤란하다고 하겠습니다.

[질 문]

철도 교통체계의 혁신 대책은?

- 포항~삼척, 설악~금강에 이르는 동해 중·북부선의 철도개설 사업 조속 추진
- 경춘선 복선전철화사업 지연방지 대책
- 도내 종합적인 철도 교통망 확충 대책

[답 변]

설악산과 금강산 연계개발등 남북교류 기반조성 차원에서 조기착수를 위해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졌으며, 2003년 완공을 목표로 금년까지 118억 4,200만원을 투자 기본설계중이며 내년도에는 용지매입비 270억원이 정부예산에 반영되었으며, 종합적인 철도망 확충대책은 동서축 노선 서울~원주간 복선화, 원주~강릉간 복선개설, 남북축 동해선 경원선 금강산선 등을 기본골격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질 문]

2006년 동계올림픽등 국제 스포츠대회 유치 및 추진전략은?

- '99동계아시안게임과 연계하여 2006년 동계올림픽 유치계획과 대책
- 각종 국제스포츠대회등의 유치계획은?

[답 변]

유치신청은 IOC규정에 따라 2006년 6개국이 신청마감 되었으며, 내년 6월 IOC총회 개최국으로서 개최할 수 없게 되어있고 우리도로서는 우선 '99동계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어낸 후 여타 계획을 제반여건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추후에 방침을 정하고자 합니다.

나) 教育行政

[질 문]

제2기 교육지표를 변경하신 이유가 정치구호적 내용에 영향을 받을 것은 아닌지?

- 앞으로 교육지표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보다 세심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동의여부 및 견해는?
- 제2기 강원교육지표를 보다 쉽게 교육감의 철학과 의지를 담아 설명을 요함.

[답 변]

교육지표를 정함에 있어 「창의성과 애향심」을 강조하는 강원교육의 흐름의 틀을 유지하며 일관성 있게 추진함. 민선2대 교육지표는 21세기의 지식·정보화 시대에 도덕성과 창의성이 강한 미래 지향적이라야 되겠다는 신념아래 「도덕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미래사회의 인재육성」으로 설정하고, 웅비 강원교육 2000을 구현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질 문]

대학입시에 있어, 서울대학교의 경우 2002년부터는 대입 무시험 전형을 내신성적 등으로만 할 때 또다른 부조리가 조장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각급 학교별로 수험능력에 우열을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적용할 때 파생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대책과 대처방안은?

[답 변]

학업성적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각종대회 입상성적, 봉사활동, 특별활동, 학생회활동 등 전반을 평가한 자료와 학업의지, 학교생활 태도등을 반영한 종합평가제를 도입 학생추천대비하고

있으며,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교원과 학교운영위원으로 하는 추천심의위원회를 학교별로 구성평가가 기준마련과 심사등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성적외 특기, 품성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선발방법을 개발 적용하도록 건의할 예정입니다.

[질 문]

도농 학교간 교육환경과 학력격차를 해소하고자 실시하는 「내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의 추진에 전폭적인 지지와 아울러, 도내 읍면지역학교 선생님중 자녀를 근무소재지 초·중·고등학교에 취학시키고 있는 구체적인 현황은?

[답 변]

읍·면지역교사 취학자녀 현황은 교사 2,026명이며, 취학자녀수는 2,275명임. 이중 소재학교 취학학생수는 656(28.8%)명으로 교원인사등 잦은 전학문제점과 근거리 통근 관계로 대상교사 전원이 동참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3) 신명선 議員

가) 江原道政

[질 문]

도정을 이끌어가는 기본철학과 기조는?
·향후 4년간 도정의 총체적 프로그램, 소신과 철학

[답 변]

도정운영의 기조를 「창의성과 유연성」으로서 창의성은 주체적, 자주적, 차별적인 것이며, 쫓대기가 있는 강원도적인 것을 의미함. 유연성이란 기존틀을 창조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혁신성등의 기초위에 최상의 목표개념으로 「강원도세상」을 제시했고 이를 구현 하기 위해 「경영행정의 실현」 「신산업의 육성」 「환경친화적 개발」 「사회복지의 실현」 「지역문화의 창조」의 5가지 방침 제시. 이를 통해 「개성과 활력이 넘치는 도정」을 펼치겠으며, 도정운영 철학인 동시에 최고의 이상적 목표로 「변화의 새바람 강원도 세상」은 행정환경의 총체적 표현으로써, 모든 정책기조의 맥락이라 하겠습니다.

[질 문]

행정구조조정에 따른 도청과 지방관서의 행정효율성은 직업관료들의 전문성과 도덕성으로 보는



데, 측정기준 지표는 어떤 것이며, 타시도와 비교결과

- 재정자립도를 감안한 과감한 구조조정 용의
- 구조조정 대상인물이 개혁하고 있는 기현상이 발행하고 있지 않은지
- 명퇴 공무원들의 수당이 어떤 모 기초단체는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유무와 대책은?

[답 변]

스스로 공부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고자 전산화, 외국어능력, 전문자격증 취득 등 3위 1체적 공무원 자격인증제등을 도입할 것을 신중히 검토하겠으며, 전문성과 도덕성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지표 없는 실정으로 전문 연구기관 자문등을 통하여 기준지표 설정문제를 검토하고 감축비율은 1단계 목표인 12.5%인 406명을 감축함. 2002년까지 17.5%의 목표로 읍면동 기능전화(주민자치센터)등으로 지속적 추진 계획임. 새마을지도자 특채등으로 임용된 공무원도 법령에 의거 자격요건과 절차에 따라 임용되었기 때문에 동등한 신분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며, 2000년말 면직대상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 시행할 계획입니다.

[질 문]

교부세 선정과정에 국군장병과 유동인구를 포함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할 용의는?

[답 변]

'97년도부터 지방교부세 산정시상수도비, 하수도비, 청소비 산정시 군병력수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동인구는 통계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 문]

산림간벌작업시 군부대 주변 및 군사지역은 국난극복 차원에서 군장병 활용 용의

- 솔잎혹파리 방제 수간주사 작업후 지금까지 약물중독 사상자수와 보상처리 사항, 향후 조치와 사고예방 대책은?

[답 변]

군부대 주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산림은 군작적 등의 사유로 산림작업의 실행이 불가하며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방제는 '96년부터 실행하였으며 약물중독으로 사망 3명 치료 후 완쾌 33명임, 피해자에 대하여는 산재처리 되었으며, '97년부터 약제용기 개량보급 등으로 중독자가 발생치 않았습니다.

[질 문]

고성산불로 인한 생태계 변화관찰 상황과 대책은?

[답 변]

산림청 임업연구원과 본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생태조사 및 수질검사('98년) 조사결과 하천수질과 계류수는 점차안정 되어가고 있으며, 앞으로 산림복구가 완료되면 자연생태계가 점차 복원될 것입니다.

[질 문]

고성 화진포 호수 수질오염대책은?

[답 변]

현내면 산학리등에 3개소에 소규모 오수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호수전역을 지난 9. 1부터 3년간 낚시금지 구역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으며, 지하수로 개설은 해수유입으로 호수 생태계 변화와 해안모래 이동으로 수로막힘현상등 문제가 예상되므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 문]

군부가 관리하고 있는 별장(이승만, 김일성)을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관리할 용의는?

[답 변]

동 지역이 군사시설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있고, 문화재 지정구역 확대시 사유지 개발의 부분적인 제한에 따른 민원과, 부지매입등 많은 난제를 안고 있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질 문]

도금고 윤번제에 따른 고비용 해소와 안정성과 투명성확보를 위한 견해는?

[답 변]

최근 금융기관 구조조정 과정에서 강원은행과 제일은행이 부실금융으로 지적된 데 대하여 해당은행의 경영개선계획서를 검토해 본 결과 현재로서는 2개은행 모두 건실한 은행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과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말 금고계약시까지



경영정상화 추진상황을 보아가며 도금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 문]

고성군 북방 민통선내 출입 영농이 가능한 휴경농지(건달리, 명호리)전·답 약30만평을 농지정리할 용의는?

[답 변]

고성군 민통선 북방의 휴경지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개간사업 신청이 있을 경우 군부대가 동의하고 개간대상지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질 문]

60~70년대 시행했던 유아등을 도 일원의 가로등, 보안등에 설치할 용의는?

[답 변]

해충 유살기능은 있으나 해충방제를 위하여 가로등, 보안등에 유아등을 설치할 경우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검토된 바 없으며, 다만 야간조명을 지속할 경우 일조 감응형 농작물의 개화 결실이 부진하게 되며, 또한 감광형 해충인 나방류는 유살가능하나 여타 해충의 살충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질 문]

가축의 대량사육과 배합사료 사용으로 이름모를 곤충이 발견되는데, 그 이름과 종류수는?

[답 변]

가축의 다두사육과 배합사료 사용으로 인해 고충이 발생한 사실은 현재까지 보고·접수된 바 없으며,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 앞으로 양축농가 지도 점검시 예의주시하여 관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 문]

강원도 축산정책의 허와 실은?

[답 변]

축종별 전문경영체 1,500호를 연차적으로 지정하여 시설 및 자동화설비 등 생산기반을 확충하도록 지원하고, 전문경영체의 청정농장인증을 위해 안정성이 확보된 농장육성 추진등 기술적

뒷받침을 강화하기 위하여 축산기술연구센터의 이전확충과 가축위생시험소의 기능보강, 축산물(고급육) 위생적 처리를 위해 축산물종합처리장을 원주에 건설하고, 향촌토종마을 육성사업등 지역 특화사업추진,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안정적인 판매전략 및 판매망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질 문]

농촌에 보조·융자되는 농기계 창고, 저온창고, 비닐하우스우사, 돈사 등 시설물 사후 관리의 문제점과 '97~'98년도 농촌에 보조, 융자된 금액은?

[답 변]

'94~'98까지 총 2조4,290억원이 투자되었으며, 그동안 중앙 및 도 합동 지도·점검은 물론 각종기술 지원과 사후관리 지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5년의 짧은 기간내에 많은 자금이 집중투자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사업성 검토가 미흡한 점과 사업목적외 사용 등 사후관리의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만, 향후 본도에서는 이런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는 한편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부실운영 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질 문]

도정수에 따르는 부산물의 비율과 처리방법등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부미 도정공장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의뢰 용의는?

[답 변]

도정수율은 농림부와 농검에서 제한율등을 감안결정, 정부양곡 가공청산은 도정수율 보다 초과 생산된 물량은 각공업자에게 귀속되고 부족량에 대하여는 가공업자가 10일이내에 변상하게 됨. 부산물중 쉐미·설미는 가축사료용으로 미강은 착유업체에 매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질 문]

주민이 실제 거주사용하는 향만부지에 대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불하 또는 임대사용 허가토록 조치용의는?

[답 변]

향만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 또는 운영의 위임·위탁을 받은자와 임대계약체



결 및 승낙을 얻어 사용할 수 있으며, 어항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고자 하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향후 항만과 어항부지를 현 지주인이 오래전부터 사용해오고 있는 부지에 대하여 일제 실태조사후 어업인이나 주민들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관계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질 문]

조업한계선에서의 해양경찰대 통제방법의 부당성 해소대책 및 어로행위 등 현장감사 실시여부는?

[답 변]

어로한계선 월선조업지도는 관계당국과(속초해양경찰서) 긴밀히 협조하여 어업인들이 불이익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가 실시하는 일반안전조업지도와 불법어업행위에 대한 지도단속도 해상에서 직접 검문 및 검색을 자제하는 등 어업인 생산소득이 향상토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 문]

해양수산물장소는 퇴직대상공무원의 대기소 같은데, 이것은 동해안 주민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닌지?

[답 변]

도사업소간의 인사교류는 순환전보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양출장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인사를 해왔으며, 앞으로도 기능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인사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 문]

어획고 감소에 따른 어민생활 대책

· 노인과 어린이들의 식생활문제가 심각하므로 이들 어민가족들에 대한 지원방안은?

[답 변]

'98 영어자금 573억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강릉 무장공비 침투시 지원된 영어자금(30억원)은 '98연말까지 상환연기 되었고, 어업용 면세유류 IMF이전가격으로 인하공급 하는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생활이 어려운 어업인과 실직자 등에 대하여는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로 8,867명을 책정하여 생계보호, 의료보호, 자녀학비 등 2,479백만원을 지원중에 있음. 결식아동

은 고성군내 18개초등학교 2,445명 전학교 급식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다각적으로 영세어민 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 문]

고성군 거진항 해군기지를 마차진항으로 이전하여 거진항이 어로항으로서 제모습을 찾도록 할 용의는?

[답 변]

해군기지 이전 문제는 국방상 입지여건 및 안보적 차원과 새로운 해군기지항의 건설에 따른 막대한 예산 소요 등 정부차원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해군기지의 운영에 따른 어선정박과 어획물을 양육하는데 불편한 점에 대하여는 거진항의 관리청인 해양수산부에 방파제나 물양장을 확장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질 문]

도내 6개의료원을 민영화할 용의, 의료수가와 의료서비스에서 개인병원에 뒤지는 관계로 시설면에서 앞서고도 적자 운영에 대한 방안은?

[답 변]

현실적으로 볼 때 지방공사 의료원은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저소득층, 행려병자등 영세서민의 공공진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본도는 농어촌과 산간오지가 많아 의료수혜 절대적인 기관으로 공공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료서비스 개선과 임직원 급여체제 개선·기구 및 인원감축조정 등 다각적인 경영개선 방안이 수립될 것이며, 민영화 등 경영체제 전환문제는 향후 연구검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 문]

고성 거진초등학교 학생들이 인도가 없어 1m 하수도 뚜껑위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들의 생명보호 대책은?

[답 변]

우선 학생들의 안전보행을 위한 대책으로 원주지방 국도관리청과 협의하여 보차도분리 경계시설을 조속히 설치토록 하겠으며, 향후 7번국도확장 또는 우회도로를 조기에 건설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 문]

금강산 육로 관광계획 관련, 통일전망대에서 20km거리에 있는 온정리까지 육로관광 설립계획에 대해 도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며, 예산과 착수시기는?

- 가장 효과적이고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육로관광을 택하지 않은 속사정
- 도와 도의원들의 공동으로 육로 관광계획을 중앙정부와 별도 추진할 계획은?

[답 변]

금강산관광등 남북관광교류가 유람선등 해로에 의해 추진되는 것은 육로에 의할 경우, 휴전선 통과등 군사적 문제와 관광객 통제가 어려운 점 등, 북측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생각하며, 남북교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확대분위기가 성숙되면 당연히 육로에 의한 교류도 검토될 것으로 보나 통일전망대~금강산(온정리)에 이르는 육로관광계획을 도나 중앙정부가 계획한 바 없으며, 정부 국정 100대 과제에서 「남북간 교통·통신망 복원·연결」을 추진하고 있고, 남북으로 이어지는 도로, 철도등 기간 교통망이 추진될 것이므로 우리도가 내년에 수립할 설악산~금강산 연계개발계획에 주요부분으로 다루어지게 될 것이므로 남북교류의 진전을 보아가며 육로관광의 건의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教育行政

[질 문]

도교육청과 산하 기관을 포함한 재직 공무원중 5급이상 전원 개인별 개혁과제 3건씩 제출요망.

[답 변]

자료 방대로 생략(의회 회의록 참조)

다. 第4次 本會議 質問 및 答辯要旨

1) 장동희 議員

가) 도정질문

[질 문]

속초항 항만시설 보강과 신항만 건설계획은?

- 속초항은 신태평양시대의 교류거점 확보와 남북교류 및 관광협력 전진기지로서 그 역할이 부각되고 있음.
- 현재의 항만기능을 수심 10M이상, 3만톤급 2척이상 동시 접안 가능토록 보완공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계획은?
- 21세기 통일 및 신동해시대에 대비 신항만을 속초항과 반드시 연계개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

[답 변]

남북교류와 환동해권 교류 및 대북방교역의 중심지로서 항만의 시설확충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우리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동해안 항만정비기본계획」을 용역중에 있으므로 내년도에 용역이 마무리되면 바람직한 위치가 결정되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고 속초항의 시설보완을 위하여 내년도에는 여객터미널 및 항만준설등 8개 사업에 소요되는 147억원을 해양수산부에 요구한 바 있으며, 예산책정에 대한 전망은 매우 밝은편이라 하겠습니다.

[질 문]

북한 잠수정의 속초유치

- '98. 6월 속초 앞바다에서 포획된 북한 잠수정 유지관리 문제를 두고 속초시와 동해시가 갈등을 빚고 있음.
- 금강산 패속선 운항, 설악산-금강산 연계 개발등을 고려할 때 북한잠수정의 속초시 유치는 명백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답 변]

'96. 9월 강릉지역에 침투한 북한 잠수함의 경우 군에서 활용할 가치가 없어 대국민 홍보 및 전시용으로 결정 현재 강릉시 침투지역에 대주민 홍보전시용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속초앞바다에서 나포된 북한잠수정은 국방부 정보본부에 의하면 군에서 활용할 가치가 높아서 군사용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질 문]

설악산 관광객유입을 위한 도로확포장 계획은?

- 미시령터널 및 4차선 확포장문제는 설악권 3개 시군의 오랜 숙원이며
- 관광성수기 및 주말의 경우 그 기능을 상실한 상태인데, 도의 대책은



· 속초 교동-노학동 척산 구간의 4차선화 조기시행 계획

[답 변]

본 구간 도로는 실시설계를 마치고 총 사업구간을 3개공구로 나누어 사업착공을 준비중에 있음. 특히 제3공구 미시로구간은 '99국제관광EXPO를 대비하여 금년내에 76억1천만원의 사업비로 착공할 계획임. 또한 터널구간인 제2공구는 전액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고 1·3공구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반절차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으며, 속초시 교통으로 노학동 척산삼거리 구간(2.64km)의 4차선 확·포장사업은 국제관광EXPO 대회 전까지 완료하기 위하여 금년내에 설계등 공사착공을 위한 제반준비를 완료토록하고, '99양여금사업비와 시비등 소요사업비를 확보토록 하는 등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 문]

설악권 광역상수도사업 조기추진

- 속초시의 경우 쌍천 취수원의 준공으로 식수공급에는 문제가 없으나 관광객 급증과 상주인구 증가시 물부족사태가 우려되고 있음.
- 도와 환경부 주관으로 설악권 광역상수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사업내용과 추진상황은?

[답 변]

정부사업으로 건설하기로 광역상수원 댐은 주민의 반대로 추진중단 되었고 도에서는 1단계로 속초 쌍천지방상수도 확장, 설악 식수저수지건설, 고성 인흥지구 식수공동저수지 건설등 3개사업을 선정하여 해당 시군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을 마련함. 쌍천지방상수도 취수원 확장사업 완료에 이어 정수장 이전확장 사업을 내년도에 착공 2001년 완공계획으로 준비중임. 고성 인흥지구 식수공동저수지 건설은 농어촌진흥공사 강원지사에서 기본조사가 완료되어 현재 농림부에 '99사업 신청중임. 설악식수 저수지 건설사업은 정부에서 신규사업 예산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해당지역기관과 주민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여 다각적인 협의중에 있습니다.

[질 문]

3중 자망어구의 사용실태 및 대책은?

- 영세 어업인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예전부터 3중 자망어구를 사용하였으나, 근래들어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라 하여 단속하고 있다고 하는데,
- 도에서 이러한 실상을 조사한 실적이 있는지와 대책은.

[답 변]

3중자망어구 사용실태 조사결과 10톤미만 1,300여척이 사용하고 있음. 일반어구로는 어획이 불가능한 특정어종에 대한 자원남획을 예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어업인의 소득 등을 위하여 3중자망어구 허용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국립수산물진흥원 동해수산물연구소의 의견이 제시된 바 해양수산부는 5톤미만 어선 연안 5마일 이내 해역에서 10월부터 익년 3월까지 3중자망어구 허용 신청을 자원보호령에 따라 불가회신 받음. 우선 타업종으로 전업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질 문]

전복살포 양식사업 확대개발 방안은?

- 전복은 기호식품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생산량이 절대 부족한 실정임.
- 어업인들도 가리비보다는 전복살포 양식사업을 더 선호하고 있고 확대지원을 바라고 있는데, 도의방안은?

[답 변]

어촌공동 고소득 품종인 전복살포 양식확대에 133억 800만원 투자할 계획으로 '97년까지 37억6천만원투자 512ha 어장개발 종패살포종이며 우리도에 서식하는 자연산 우량 종 보존과 앞으로 소요되는 종패는 어민들의 종묘중간 배양장과 육상수조식 양식장개발을 적극지원 우량 종묘수급 계획이며 수산양식장에서도 10만마리의 종묘를 사육중이며 2002년부터 100만마리 생산분양 계획이고 향후 사업확대 및 지원을 위해 중앙부처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질 문]

속초항의 정비와 함께 사진항을 수산업과 관광산업을 연계한 전략항으로 개발중이나 예산부족으로 조기완공이 어려운데, 이에대한 도의 대책은?

[답 변]

사진항 방파제 연내 마무리를 위해 시비부담 및 도비추가 지원 방파제 연장공사 금년중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조치, 수산해양과 육상관광 입지를 연결하는 복합기능 수행을 위하여 내년도에도 보조지원을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질 문]

도가 보유한 어업지도선(60톤)의 경우 기상특보시 현지해상활동이 곤란함을 이용하여 어선규모가 큰 중형기선 저인망과 트롤어선들이 조업금지 금역을 위반하여 조업함으로써 연안부설 자망



어구 훼손 및 어업분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대형 어업지도선(100-150톤) 건조계획은 없는지?

[답 변]

해상 기상특보 발효시 일부 출어하는 트롤어선들의 조업지도를 위해 별도 대형지도선(150톤급)이 필요하지만 재정부담이 크며 IMF체제로 중앙정부의 신규 지도선 건조사업이 유보되어 금후 경제여건이 회복된 연후에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선주 및 선장들과의 간담회 등으로 어구피해 예방을 계도하는 한편 현어업지도선의 효율적인 운영 등 어업분쟁 및 어구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 문]

농업인 보호 및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 유도를 위해 속초시 교동 학생체육관 시설 부지내 건립 추진중인 농·축산물 직판장 설치상황 및 향후 활용방안은?

[답 변]

속초시 교동 731-3번지 학생체육관 시설부지내 300평규모 조립식으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설계나 착공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금후 속초시에서 직판장 건립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접수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 이인섭 議員

가) 江原道政

[질 문]

지역간 갈등해소와 균형적인 개발을 통해 도민의 의지를 결집시킬 복안은?

[답 변]

「하드웨어(Hardware)적 접근방법으로」 첫째, 교통망의 고속화, 첨단화, 광역화로 도전역을 2시간대의 생활권역으로 도전역을 2시간대의 생활권역으로 묶기 위해서는 한여로 터널뚫기 등, 둘째, 지역별, 권역별 특화개발로 산업, 문화, 예술, 교육등의 모든면의 도민의 욕구 도내에서 수용되도록 특성화, 셋째, 인재등용은 지역성을 배제하고 능력과 업적에 의한 공정한 업적에 의한 공정한 인사원칙을 지키겠습니다.

「소프트웨어(Software)적 대책방안」으로 첫째, 「강원의 얼」의 선양 사업추진등, 둘째, 인재

양성으로 황영조 선수가 영동사람이 아닌 「강원도 사람」 인 것처럼 강원도 인재를 키워 도민화 나뉘기 등으로 「도민통합」을 위해 정신과 소신을 다하겠습니다.

[질 문]

특정지역에 도비가 편중 지원된 내용과 보다 합리적이고 균형적이며 명분있는 예산편성을 위한 대책은?

[답 변]

년도별로 각 시별 지원함계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등 특정사업비포함으로 금액의 편차가 클 수밖에 없으며, 특정사업을 제외하고 나면 '98년 도의 경우 춘천 56억, 원주 58억, 강릉 41억으로 비슷한 수준이며, 앞으로 특정지역에 편중됨이 없이 균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 문]

강원감영 복원사업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추진할 용의는?

[답 변]

강원감영 정비사업에는 강원체신 청사 부지매입비 등 90억원과 사유지 매입비 160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어려운 점과 시청사 이전문제등이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어 불가피 하였음. 앞으로 도주관 추진문제를 포함 전향적으로 재검토해 나가되, 규모를 감안 연차적 추진방안등을 강구하겠습니다.

[질 문]

중소기업지원 관련

- IMF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시, 기관들을 적극 입주유도를 위한 도의 대책은?
- 현장행정을 중시하는 행정환경에 비추어 도의 산업통상업무중 일부를 원주로 이전, 기업유치나 중소기업 지원업무의 효율을 기할 용의는?

[답 변]

'97년부터 원주시 우산동에 재단법인 강원도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를 설립하여 추진중이며, 당초건립 대상지를 원주로 한 것은 도내 기업체수, 교통여건, 기업의 활용성, 장기발전전망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것이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도는 도단위 각종 중소기업지원기관·단



제, 금융기관 각 단위조합 등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원스톱체제를 갖출 계획임. 구체적인 입주대책은 건물공사를 감안 향후 수요조사 별도 강구하겠습니다.

[질 문]

강원도민체전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은?

- 종합시상제를 폐지하고 종목별 시상제로 대체용의
- 개최종목을 대폭 감소하고 관중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경기종목을 선정할 용의
- 도민체전의 격년제 실시용의 및 알찬 도민체전을 위한 대안

[답 변]

종합시상제의 폐지는 시·군참여 열거저조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시간을 두고 각계층의 의견을 수렴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경기종목수는 36종목은 전국체전 종목이며 비인기 종목이라 할지라도 기준(기량)미달 선수는 참가를 제한하고 있음. 우선 양대회를 예산절약 측면에서 개선해 나가면서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등 각 단체와 체육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습니다.

[질 문]

전원신도시 관련

- 올해국비 20억원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지금까지 어디에 사업비가 소요되었는지 향후 처리방향은?
- 신도시와 관련된 용역사업은 어느정도 진척되었는지.

[답 변]

사업추진은 준비단계, 착수단계, 시행단계, 완성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는 준비단계로 기본계획용역을 위한 방법과 시기 등을 검토중이고 기본계획수립시 공청회를 통하여 도민 의견 수렴하고 경제·사회등 주변여건에 대응하고 21세기 모델의 전원신도시건설을 준비한다는 장기목표로 단계적 개발전략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개발단계에서는 경제여건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기본계획등 필요한 용역비는 금년도에는 국비와 도비등 기확보된 30억원 예산을 가지고 내년까지 항공측량·토질조사와 기본계획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질 문]

정보통신분야 관련

- 강원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중 도와 시군 추진사업의 구체적인 추진방법 및 CIO제 도입시기는?
- LAN망 활용현황과 향후 대책은?
- 경기넷과 같은 시스템구축 용의는?
-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시군에 대하여 도에서 웹 호스팅방식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할 의향은?
- 도에서 사용중인 각종 상용프로그램의 정품사용 현황과 '95부터 현재까지 구입을 위한 예산편성 내역은?

[답 변]

도자체 추진 사업으로 지역통합정보시스템(KW-NET), 지역상품 전자시장시스템 등을 추진하게 되며, 시·군사업은 지역특성에 적합한 과학단지, 멀티미디어단지, 소프트웨어단지 등의 조성 과 지역공동 네트워크 등과 직접 접촉하여 주민 편익에 직결되는(도시시설물, 교통시설관리 등) 정보서비스 업무를 중점 추진하게 됨, CIO(정보화책임관)제는 중앙기관은 대통령 훈령(공 포 : '98. 9. 11)인 "행정기관의 정보화 책임관 지정운영지침"에 의해 지정토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의 별도지침이 시달되면 지정추진 계획입니다.

중앙부처 관련업무 방재관리등 7개업무와 도 자체개발한 도정 정보등 15개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부서간 업무연락등 전자우편을 적극 활용하고, 앞으로 청내전공무원 LAN이용 환경구축 과 아울러 전자결재 제도를 도입 및 활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에서는 내년도 지역통합정보시스템(KW-Net)을 이용 전용정보망이 아닌 ISP방식을 채택 지역 주민들이 인터넷을 접속하여 편리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정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인터넷 전용컴퓨터(서버)를 고성능 서버로 교체하여 홈페이지가 없는 6개시군은 물론, 데이콤등 타정보업체를 이용하는 시·군에 대하여도 본도 서버에 웹호스팅방식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도의 경우 PC구입시 정품을 공급받아 활용하고 있음. '95년부터 금년까지 소프트웨어 구입예산 은 총 39,300만원임.

3) 신창승 議員

가) 江原道政

[질 문]

지사님께서 구성하고 계신 강원도세상의 현주소와 종착역은?



- 지사님이 구상하고 계신 강원도세상의 최종목표는 어느정도의 수준인지
- 도지사 임기 4년동안 어느정도의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 견해

[답 변]

도정운영의 기초를 「창의성과 유연성」으로서 창의성은 주체적, 자주적, 차별적인 것이며 쫓대가 있는 강원도적인 것을 의미함, 유연성이라 기존들을 창조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혁신성등의 기초위에 최상의 목표개념으로 「강원도세상」을 제시했고 이를 구현하기위해 「경영행정의 실현」 「신산업의 육성」 「환경친화적 개발」 「사회복지의 실현」 「지역문화의 창조」의 5가지방침 제시, 이를 통해 「개성과 활력이 넘치는 도정」을 펼치겠음. 도정운영 철학인 동시에 최고의 이상적 목표로 「변화의 새바람 강원도 세상」은 행정환경의 총체적 표현으로써, 모든 정책기조의 맥락이며, 아울러 강원도 세상이란 강원도의 이익이 존중되며, 강원도의 가치가 대접받고, 강원도의 미래가 보장되는 세상이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 문]

도와 시군 기초자치단체와의 상호유기적 협조체제 강화를 위한 방안은?

[답 변]

현실적으로 도와 시군과의 관계는 상호동반자적 위치에서 협력과 지원을 통한 보완기능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회」 정례회 운영 활성화로 지역현안 협의 조정, 인사교류운영, 균형적인 자원배분, 특성화와 균형적 지역개발 등으로 희망찬 「강원도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질 문]

세수감소에 대한 대책은?

- 전년도에 비해 지방세 징수가 25%나 감소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책
- 또한 내년도 세입재원 부족에 대한 대책은

[답 변]

세수감소는 취득세, 등록세 부분에서 560억원정도 전망됨. 추경시 징수목표액을 조정운영하고, 소액채납자는 현장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고액채납자는 압류, 공매등 채납처분을 강화해 나가 고, 은익·탈세원의 발굴등을 통하여 세수감소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질 문]

현재 도를 포함한 18개 시군의 지방채현황은 얼마이며, 이의 해결을 위한 대책은?

[답 변]

채무규모는 현재 3,098억원으로서 전국 광역자치단체중 14번째이며, 시·군 포함시 8,745억원으로 전국 12번째이며, 채무구조는 지역개발기금 조성, 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성, 농어촌 진흥기금 조성등 총 2,870억원으로서 상환성 융자 회수금으로 부채 93%를 차지하고 순수 도비 상환 부채는 228억원으로서 7.3%이며, '94년말(544억원)과 비교하여 감소되었습니다.

[질 문]

우리도에 대한 투자유치 촉진 대책은?

· 강원도투자유치기획단 출범계기로 우리도의 각종 자원을 차별화하여 홍보하고 국내외 자본을 적극 유치하여야 하는데, IMF라는 시대상황속에 어떠한 대안과 전략으로 추진할 것인지.

[답 변]

투자유치기획단 발족을 계기로 정무부지사의 풍부한 일선현장 경험을 최대한 살리고 우수한 우리도의 개발잠재력을 구체화시켜보다 많은 국내외 자본이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의 경제난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우선 강원도만의 차별화 정책을 적극 발굴, 홍보하여 자본유치를 위해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투자자들을 직접 찾아 나서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 문]

해양수산 관련시책으로 동해연안 주요어장에 침체어망으로 인하여 해양환경과 어장기능을 파괴하고 있는데 도에서 침체어구 인양 전용선박 건조 용의는 없는지, 침체어망 인양사업실태와 대책은?

[답 변]

침체어구 인양은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도내에서 아직도 많은 량이 남아있어 전문인 양성 확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만 300톤급 선박건조비가 약30억원을 상회하며, 운영관리비도 많이 소요되므로 도의 재정형편상 빠른시일내 해결은 어려우며, 앞으로 국비지원방안 등 조속히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양수산부에서 '99년도에 30억원을 투자 "해양 청소선"을 건조 계획을 수립중입니다.



[질 문]

도 수산양식시험장의 수산종묘사업 확대 계획은?

- 최근 개장된 도 수산양식시험장의 수산종묘사업에 2억7천만원이 투자되었는데 향후 계획은
- 봉양식장에 재직중인 22명의 기능직중에서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특별임용할 계획은 없는지

[답 변]

예산 270,000천원으로 시험종묘 80만마리를 생산 동해연안에 무상방류 하였으나 대다수 어업인들이 더 많은량의 치어방류를 요구함으로 2002년부터는 2,000만마리 이상의 종묘를 생산할 목표로 예산지원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기능직 공무원중 양식관련 자격증을 소지한자를 수산연구직으로 특별임용 문제는 조직과 업무효율, 자격요건등을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질 문]

IMF금융위기로 도내에 귀농인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기술지원등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방안은?

[답 변]

귀농자 상담실 설치운영 총 1,291건의 상담실시, 전업농 창업희망자에게 2,000만원 한도로 6.5%의 금리로 183명에게 30억원을 국비로 융자조치함, 금년 겨울철 작목별 교육 희망자 수요 조사중임. 새기술 정보습득 등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 문]

농업인에 대한 의료복지 대책은?

- 농업인의 50%이상이 만성질환과 농부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음.
- 농업인의 호응 및 활용도가 높은 마을 단위의 건강관리센타설치 등 삶의 질 향상 방안은

[답 변]

살기 좋은 농촌생활 환경조성을 위하여 1983년부터 주거환경개선 19,574호, 포말세척식 변기등을 설치지도함, 농업인 건강관리실 91개소 설치운영하고, 무료건강진료를 실시했으며 앞으로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적극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질 문]

지역문화 계승 및 선양사업 대책은?

- 지역문화 10개 사업에 3백억원이 소요되는 강원열 선양사업에 국비 5억원등 18억원이 투자되는데 그칩
- 향후 투자계획과 본 사업의 추진 의지
- 이효석 묘소이장사업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문화유산 관리대책

[답 변]

「강원의 열」 선양사업은 '96년에 강개연 용역사업으로 「강원의 열 선양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해오고 있고, 앞으로는 총 5개분야 82개사업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여 내용과 사업성을 충실히 해 나가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며, 이효석 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족측에 의해 경기도 파주시 동화경묘공원으로 옮겨가게 되었으나, 다행히 2년후 진부로 모시겠다는 유족측의 의사표명이 있었으므로 앞으로 이효석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알차게 추진함은 물론 묘소이장 사업도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질 문]

청소년육성운동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개발 및 지역사회 청소년 육성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활동영역을 영동지역에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답 변]

현 청소년봉사센터는 지역이 광활하여 활동이 미흡하기도 함, 향후 대책은 중앙의 확대 설치계획과 그간의 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성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문화관광부에 영동지역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설치여부를 건의하겠습니다.

나) 教育行政

[질 문]

고액 과외, 보험금에 눈이 어두어 자식의 손가락을 자르는 등의 문제를 보더라도 교육개혁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우리도의 교육개혁 현주소를 진단해 주시고, 향후 지향해야 할 바는 무엇인지?

[답 변]

새정부의 교육부문에 대한 개혁과제는 초·중등교육의 창의력 배양등 5개와 지금까지 추진해온 교육관제를 포괄하는 36개의 실천과제를 설정하고, 학교현장에서 교육수요자가 적극 참여하



는 아래로부터의 실천위주의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6월 24일 대통령 자문기구로 「새교육공동체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음. 앞으로 우리 교육현장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중심으로 생동감있게 변화될 것임. 강원도교육청은 실천적 노력과 지원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질 문]

강원 예술고 건립의 연차별 소요재원 조달대책 강구사항과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등 부진여부는 없는지?

· 개교시기를 당초계획보다 앞당길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답 변]

강릉시 구정면 제비리에 2001년 개교를 목표로 1단계 공사로 기본시설등 필수시설을 2단계 공사는 기술사·연주홀 등 부속건물의 시설을 갖추게 되었음.

총 소요액 : 1,317,400만원중 1단계공사비 706,600만원(국비500,000 시비206,600) 투자 '98년 설계완료하고 '99년 3월에 공사착수 2000년 10월에 준공예정이며 2001년의 개교는 가능할 것임. 2단계 공사비는 국고보조 등으로 확보할 계획이나 국가재정의 어려움등 재원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3. 第96回 定期會

가. 第2次 本會議 質問 및 答辯要旨

1) 심재천 議員

가) 江原道政

[질 문]

시·군 보건소에 보건분야의 전문가들을 영입하여 보건분야의 책임을 맡게 할 용의 및 구체적인 인력 특채방법은?

[답 변]

특별채용은 관계규정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항상 시·군보건소장을 시장 군수로 하여금 여건이 형성되면 예방의약 및 공중보건 등을 전공한 전문가를 임명토록 적극 권고하겠습니다.

[질 문]

적자를 거듭하고 있는 지방공사 의료원들의 향후 진로에 대한 견해는?

[답 변]

경영개선을 위하여 ①조직·인력의감축 ②연봉제도입 ③계약제임용확대 등의 「의료원 구조조정」을 빠른 시일내 완료하고, 강원개발연구원의 「지방공사의료원의 합리적 운영방안」연구결과가 나오면 지역별 실정에 맞는 특화병원 운영에 중점을 두면서 매각, 위탁경영등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질 문]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영동지역 분원 설치용의는?

[답 변]

도에서는 해양수산출장소에 시설을 실험실로 개수하고, 92종에 116대의 각종 검사장비를 갖추어 '99년 하반기부터는 연구원의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수질 및 식품검사업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고 연구원 분원설치는 행정구조조정으로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질 문]

현행 자치법규 정리·정비 대책은?
·대본발간 배포는?

[답 변]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제히 정비하고자 금년 10월부터 현행 자치법규전반을 검토, 이중 조례 97건, 규칙 65건 등 총 162건을 정비대상으로 발굴하고, 개정 및 폐지여부를 검토중에 있으며, 내년도 상반기중에 정비완료할 계획이며 대본발간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추록은 규정에 의거 상·하반기를 나누어 연2회 발간하고 있으나, 연말까지 D/B화 하여 근거리 통신망을 구축하고, 내년 상반기중 정부 고속망과 연결하여 누구든지 PC를 통하여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질 문]

정동진 해돋이 관광객 수용을 위한 도단위 지원방안과 대책은?

[답 변]

지역의 면적이 협소한 취락지역으로서 개발여지가 적을 뿐만 아니라 해돋이와 간이역으로 대변되는 교유의 이미지를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제약이 있으므로 내년도에 우선 도비 1억원을 지원하여 대형 모래시계, 나침반 등의 조형물을 설치하고 하수복개, 진입로포장등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임(총사업비 333백만원 : 도비 100, 시비 233), 앞으로 정동진 지역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대적인 위락시설의 도입보다는 관광객 수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면서 인근 등 유명관광지, 안인 안보사적지, 심곡·금진지구와 연계한 단기체류 및 경유형의 관광명소로서 육성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나) 教育行政

[질 문]

현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교를 교육청 수익사업(주말 직원가족 캠프장, 주말농장 등) 관광 강원의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활용할 의향은?

[답 변]

지역교육청의 학생야영장, 현장학습 등으로 22개교 사용하고, 임대활용은 145개교중 공공기관

무상임대 11개교, 개인·단체·교회등에서 유상임대한 134개교를 청소년수련장, 미술 실습장, 마을회관, 농산물 저장장소 등으로 활용에 따른 사용료 수익은 약 476백여만원임, 부지만 남은 문닫은 학교는 16개교로서 매각등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 문]

학교보건에 관한 전문적인 지도와 사업시행을 지역 시군 보건소와 연계하여 사업실시할 의향은?

[답 변]

지역교육청에서는 평생교육체육부서에 보건직과 식품위생직을 배치하고 있으며, 각급학교에 양 호교사를 두어 학생보건 관리에 최선을 다함, 전염병 예방과 급식 위생 및 안전관리에 주력하 여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인 식품 및 식기 등의 세균검사와 전염병 발생시에 시·군보건소 등 보건 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역학조 사에 대한 공동대처 및 각급학교의 방역활동이 원활한 협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엄민현 議員

가) 江原道政

[질 문]

「저소득층 단체보험 가입제」를 도차원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용의는?

[답 변]

저소득층 단체보험가입은 원주시 사례만 본다면 약간의 도움이있겠지만, 동해시와 속초시에서 도 유사한 단체보험에 가입 운영한 결과 실효성이 적어 중단상태이고, 「저소득층 단체보험가 입」 제도는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야 하며 현실적으로 당장 시행은 곤란한 실정입니다.

[질 문]

지방채 발행과 관련, 조기부채상환 계획은 무엇인지?(서면제출)

[답 변]

도본청의 채무구조를 살펴보면 지역개발기금등 기금조성을 위한 지방채가 93%를 차지하고 있



고, 이들부채는 시 군, 기업체 등에서 상환하게 되므로 강원도의 채무구조는 비교적 양호하며, 앞으로 지방채 발행을 줄이면서 건전 재정기조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 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면적의 조기 집행방안과 대책은?

[답 변]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지방재정 허용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미집행 시설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필요성이 적고 실현성이 희박한 시설에 대하여는 재정비시 해제·변경하는등 장기 미집행 시설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질 문]

도민이 청정한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 강구와 대책은?

[답 변]

상수도 원수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 사항으로 반드시 복류수를 취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원주시의 경우 섬강복류수만을 취수하였으나 인구증가에 따른 원수부족으로 '93년 취수탑을 설치 원수의 30%를 표류수로 취수해 왔으나 오염물질 유입량이 계속 증가되어, 100%복류수를 취수하기 위한 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는 등 취수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 문]

평창강 수질오염 예방대책은?

[답 변]

평창강은 14개 지점을 월1회씩 1년동안 검사한 결과 1개지점(평창읍 하수유입지점)을 제외한 전지점이 1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나, 수질오염이 증가되고 있어 도에서는 도내 267개 하천·호소를 대상으로 물관리GIS전산시스템 구축등 수질 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 문]

노후관 및 계량기 교체 등의 예산을 도에서 지원할 용의와 상수도 유지관리에 대한 사업계획은?

[답 변]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은 국비지원없이 시군에서 정부의 재정경제특별회계에서 용자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빈약으로 용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태백시와 영월군의 노후관 및 계량기 교체 예산을 도에서 지원하는 문제는 시군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중앙에서도 노후관 개량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현행 용자를 보조로 전환하기 위하여 관계부처간 협의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국고보조 계획에 따라 도비지원 문제를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질 문]

시군별 각종 축제중 지역특성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진작시킬 수 있는 축제를 도 지정 축제로 선정 도비 지원, 관광상품으로 육성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 변]

각종 지역축제를 외래객을 유치할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육성해 나가되 그 지역의 장점과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고 관광상품으로서의 개발필요성이 있는 축제를 시군별로 1개씩 선정하여 1시군 1대표축제로 도비와 문예진흥기금등을 지원, 육성해 나가겠으며 관광상품 및 지역에 기여하지 못하는 축제는 정리·조정될 수 있도록 권유해 나가겠으며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축제가 되도록 지도 육성하겠습니다.

2) 정인수 議員

1) 江原道政

[질 문]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견제와 균형의 관계로 가야하는데 지사와 대 의회관은 수평적 관계와 파트너십을 위장한 종속관계인가, 아니면 견제와 균형을 통한 대등한 동반자관계인지 소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의회는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최고의결기관이며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를 통한 자치행정의 균형을 도모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수레의 두바퀴와 같이 불가분의 필수적 관계임,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존중의 풍토속에서 지역의 이익과 도민의 복리를 위해서는 오히려 한몸이 되는 관계가 바람직한 관계라고 보지만 의회가 갖는 전통적 권능과 권위는 어떠한 경우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질 문]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계획, 한계 극복대책은?

- 팔당호 수질보전 등 강원도는 총제적 위기이며 산적한 현안이 있음.
- 도지사 선거공약은 152개 사업으로 확정한 것으로 아는데 야당지사로서 과연 이러한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순조로이 진척시킬 수 있는 계획, 야당지사로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지?

[답 변]

공약사업중 도로·철도·공항등 국책사업은 중앙고속도로건설등 7개노선, 양양국제공항 조기건설, 항만 2개사업에 내년도 투자재원 5,600억원을 확보함 그외사업은 중앙에 건의 중임, 도주관 투자사업은 신산업육성, 농어업 기반구축, 관광개발 등 도민에게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적점을 두고 내년에 1,700억원의 투자재원을 확보 추진계획입니다.

[질 문]

여론조사결과 지지가 저조한 이유는?

[답 변]

제2기 민선도정 출범이후 순회간담회 민박투어는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었음. 윈드서핑·암벽타기등은 강원도 관광이미지 부각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던 충정이었으며 여론조사 결과가 진정한 도민의 뜻이었다면 우선 검토하 받아드릴 자세가 되어있습니다.

[질 문]

산림관련 비리 책임, 방재대책은?

- 산림개발연구원 소속 공무원 9명이 전원구속된 사건에도 지휘감독들을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은 이유
- 당시 김지사께서 행정부지사로 지휘감독 책임을 면할길 없기 때문에 유아무야하고 있다는데 대책

[답 변]

사건발생 당시에는 고성산불 등 재해로 인하여 업무량이 폭증하여, 현장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을 사전에 인지하고, 예방하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정해

진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 등 문책토록 되어 있으나 1심 판결문에 편취 목적과 사용처가 명시되어 있지않아 항소심 재판진행 결과에 따라, 문책을 실시할 계획으로 처리유보중임, 확보중인 비위실체에 대한 입증자료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위자와 감독공무원에 대하여 엄중 문책할 계획입니다.

[질 문]

외자유치는 당면한 현안이며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야 하겠으며 지금까지 막상 투자유치가 성사된 것은 한건도 없는데 지사가 외치는 「신산업의 요충지」 이자 「신동해권의 중심지」 한낱 환상으로 끝날 우려가 있지 않는지?

[답 변]

투자유치 업무를 활성화 하고자 전문경영인 출신 정무부지사 영입단장으로한 투자유치 기획단을 발족하고 전담할 전문직 공무원 3명을 공채 임용하였고 기획단에서는 투자유망사업 107건을 선정,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국내·외에 배포 송부하는 등 적극홍보하고 있음, 전문직 공무원을 적극활용유치설명회 등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질 문]

조직관리와 인사제도에서 「창조적 파괴자」인 변화와 혁신과 달리 취임후 인사는 현실과의 타협, 소지역주의 관료직 인선으로 정책변화가 없는데 공정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한 인사기준의 객관화를 정립한 신 인사 정책 용의는?

[답 변]

경험과 능력을 고루 갖춘 인재라고 판단되면 연공서열 중시의 기준틀을 깨고 과감히 발탁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왔음. 향후 인사정책은 불요불급한 인력감축 및 합리적인 재배분, 정보관리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 계약직과 개방형 전문직위제 단계적확대,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 등 확대, 현실안주와 학연·지연 등 철저히 배제.

[질 문]

금강산 유람선 운항 관련, 강원도 이익 확보 방안은?

- 설악산 금강산 관광특구로 공동개발하여 세계적 명소로 실현코자 중국측 인사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했음.
- 유람선 출항과 관련 강원도의 이익을 챙기는 실질적 방안은



[답 변]

강원도의 이익을 위해 정몽헌 현대그룹회장은 우선, 출발항 주변을 연계관광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고용 인력과 식자재 구매에 있어 지역을 우선 배려하는 것과 '99년 관광 EXPO와 향후 설악권 개발에 현대그룹이 참여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가시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대통령께서도 우리도 순방시 설악선~금강산 연계개발방안 수립 용역비의 지원을 약속하신바 있습니다.

[질 문]

취임이후 각 부처를 방문하고 여당인맥을 동원 다각적으로 로비활동을 해야 할 시기로 보는데 지사의 예산 로비실적은?

[답 변]

'99년도 본도의 국고보조금은 3,562억원으로 충북의 2배임, 국고의 확보는 도, 도의회, 도출신 국회의원 모두가 여야를 막론하고 일치단결하여 노력한 결과임. 도지사 취임 후 중앙부처방문장·차관·국장 등과는 만나 국고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 문]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제공 속도감 있는 행정의 변화를 가져올 처방은?

· 의식변화에 대하여 진단결과 실국장의 경영마인드 부족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발전, 디제노믹스발상의 대전환 결여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위한 극약 처방은?

[답 변]

외부개혁으로 도, 시군의 조직구조를 작고 효율적인 개편('98:12.5%, '99:17.5%) 추진하는 한편, 추가로 행정업무의 민영화, 민간위탁등 경쟁요소 도입계획임. 내부개혁방안은 주민과의 약속을 문서로 공표하고 이행하기 위한 「주민헌장제」를 '99년부터 도입운영계획임, 공직자 특별연수 실시 및 매월직장교육을 통하여 공직자 정신개혁과 친절봉사교육으로 혁신마인드를 유발하고 있음. 교육을 통한 사고의 전환 유도, 창의적이고 친절하게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등 각종 인센티브 부여, 불친절공무원은 주민감사 청구제와 삼진아웃제를 도입등 시행으로 주민 신뢰성을 확보했습니다.

[질 문]

강원전문대학 관련 경과보고서와 도정백서에 기록이 왜곡되고 특정인에게 공적이 있는것처럼 왜곡진상을 바로 잡는 책임있는 답변 요구

[답 변]

대학설립배경과 연혁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못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도정백서의 기록이나 이미 사용되었던 경과보고 문헌은 돌이킬 수 없기에 금년 내에 도립강원전문대학으로 하여금 대학의 설립과정에 대한 연혁을 상세하고 분명한 대학의 설립과정에 대한 연혁을 상세하고 분명한 대학설립 추진과정에 수록되도록 해서 도립강원전문대학 설립추진에 애쓰신 모든 분들의 노력이 후세에 길이 남도록 반드시 만들어 놓겠습니다.

[질 문]

제2건국 추진을 각계 각층이 망라된 진정한 국민운동으로 전개하는 역사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은 무엇인지?

[답 변]

「제2의 건국 운동」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화해협력, 세계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하여 ①참여 민주주의 발전, ②민주적 시장경제 완성 ③보편적 세계주의 발전 ④창조적 지식기반 국가건설 ⑤신노사문화 창출 ⑥남북간 교류시대 개막 등 6개 개혁과제를 그 실천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 이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의 관하여는 앞으로 본격적인 추진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나) 教育行政

[질 문]

페스타로씨의 정신을 되새기고 초심으로 돌아가는 참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 청사진제시는?

[답 변]

본도교육청은 「도덕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미래사회의 인재육성」이라는 교육지표 아래 5가지의 중요시책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모든 교육가족들로 하여금 믿음, 사랑, 봉사를 존중하는 교육자 본연의 자세에서 학생지도에 충실하며
-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수요자중심의 교육활성화
-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학교교육의 강화
- 도시, 농어촌, 광산촌 학교간의 교육격차 해소
- 각급학교 시설의 현대화 및 교단선진화 등의 차질없는 구현에 모든 교육력을 경주함.



[질 문]

공립전문대학설립경위에 대한 도교육청의 공식입장은?

[답 변]

주문진수산고등학교의 학생수 격감으로 개편을 검토하여 전문대학 설립을 협의해옴에 따라 도의회 제36회 임시회에서 정인수의원과 7인의원 발의로 국립주문진수산전문대학 설립촉구 건의서를 채택(93. 10. 22) 교육부에 발송, 교육부에서 국립불가방침과 공립전문대학 설립방안을 강구토록 회신, 교육부의 전문대학승격이 확정되고 이상룡 전 지사께서 수산고 자리에 전문대학 설립을 희망하여 옴에 따라 제반조건을 협의하여 전문인력 육성과 도민의 여망에 부응한다는 차원에서 동의함으로써 강원전문대학이 설립을 보게되었다 사료됩니다.

3) 이연우 議員

1) 江原道政

[질 문]

의회사무처 공무원의 인사권을 의회로 독립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 변]

전반적인 임용권을 전면적으로 위임할 경우, 정원·직제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인사운영에 지장 초래가 예상되고, 또한 지방공무원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관계법상의 문제등 현실적으로 어려움,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고 규정되었습니다.

[질 문]

「강원도청」을 「강원도사무소」라는 명칭으로 개칭할 용의는?

[답 변]

현재 공식적인 행정기구 명칭은 “강원도”로서 임 600여년전부터 사용되었으며 조선조말 1896년 13도제실시로 공식화된 이후,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사용되고 있음. 역사성과 상징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청사의 명칭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사용되고 있는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질 문]

부락마다 암반관정이 설치되어 농업용수로 쓰고 있는 시설을 농어촌 상수도 시설과 연계개발할 용의는?

[답 변]

농업용수 암반관정은 설치지역 농경지에 위치하고 수질검사 항목은 납 등 15개항목인데 반하여 상수도의 수질검사 항목은 대장균등 45개 항목으로 먹는물 수질기준의 초과 가능성이 높아 상수도 시설과 연계하여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앞으로 농어촌 간이상수도 시설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 문]

앞으로 2~3차 구조조정에는 획기적인 행정조직 개편을 할 용의는?

[답 변]

기구 및 정원 감축시 대국대와 주의로 인력관리를 집적화 하는 한편, 정원 감축시 행정직 13.5%, 기술직 9~12%수준으로 감축을 최대한 억제하였고, 행정환경과 장비의 현대화 등으로 단순기능인력(타자원, 운전원 등)의 감축율이 높았던 것은 불가피 하였고, 앞으로 2002년까지 치열한 경쟁시대에 걸맞게 「주민이 만족하고, 감동할 수 있는 도정」을 펼쳐갈 수 있도록 효율성과 합리적인 기능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질 문]

모든 군납품을 도민이 직접 생산한 것을 100%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하여 도민의 수익증대는 물론, 권익보호에 앞장설 용의는?

[답 변]

군납물량중 우유를 제외한 쇠고기, 돼지고기, 우유는 1일 군납량 40톤중 20톤을 대부분 지역축협을 통해 관내생산 축산물을 납품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국방부 축협중앙회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전량 도내산으로 납품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질 문]

서울에 대형매장을 신설하여 도민이 직접 생산한 청정 농축산물을 「브랜드화」한 상품으로 판매할 용의는?



[답 변]

도내생산 농수특산물을 청정성과 품질의 우수성이 서울등 대도시에서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으나, 판매와 홍보를 위한 대형 판매장 설치에 경기침체와 재정형편상 어렵고 “푸른강원”마크를 브랜드화하여 강원도 농산품에 대한 신뢰성 및 인지도를 높여, 기존대도시 직판장 및 직거래 판매행사 적극적인 홍보실시 하겠습니다.

[질 문]

어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기르는 어업육성, 수산종묘 시험장 사업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 변]

연안정착성 수산종묘를 대량 방류하기 위하여 '95년부터 국·도비 87억원을 투자하여 지난해에 전국 최대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춘 수산양식시험장을 건립하고 첫째인 '98년도에 조피볼락 등 80만미를 생산하여 방류하였고, 2002년 부터는 2,000만미의 종묘를 생산할 계획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 문]

농어가 부채경감 대책은?

[답 변]

농림부에서 농가부채대책위원회의 건의(10. 13)와 '99예산(안)을 토대로 「농가부채 및 경영안정 대책」을 마련 11월 24일 세부 지침을 시달하고, 행정기관이 주도로 내년말까지 상황이 도래하는 농업정책자금(120여개)의 원리금을 2년간 상환연기해 주는것과 협동조합 자율적으로 상호 금융자금의 금리인하(2%)와 상환연기(2년)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농가부채문제해결은 상환기간연기 등 만으로는 근본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기본적으로 「생산비 절감, 소득원 확충, 농업경쟁력 강화와 구조개선」을 통해 농가 소득을 늘여나가야 되며, 농업인 스스로가 성실한 책임경영으로 상환능력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며, 현실적으로 도단위에서 정책자금을 통한 부채경감 대책 강구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농어민 스스로가 성실한 책임경영을 통하여 부채상환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농정시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질 문]

삼척 매월~월천간 7번 국도 4차선 확장사업을 경북구간(울진~영덕)이 완공되는 2003년에 완

공할 수 있는 도의 대책은?

[답 변]

총연장 231.8km에 사업비 1조 6,715억원의 투자계획으로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일부 구간의 4차선공사 완료와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고 경북도 경계~삼척간, 간성~통일 전망대간은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지 못하였으나 '99년계획으로 용역비 69억 8,600백만원을 건교부에 요구하여 내년도 시행계획으로 있습니다.

[질 문]

강원도가 주최하는 각종 간담회, 토론회, 각종 행사 등에 사회단체나 각급 기관을 참여시키고 있는데 반해, 유달리 의회가 배제되고 있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답 변]

기본적으로 의결기관인 도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는 마차의 수레바퀴와 같이 균형을 이룰때만이 도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의원님들과 잦은 대화기회를 통하여 도정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 教育行政

[질 문]

도내 각급학교 급식에 있어, 단가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수입식품에 의존하는데,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의 차원에서 우리 농축수산물 사용을 권장할 의향은?

[답 변]

현재 각급 자체조리 급식학교에서 신뢰도가 높은 농·축·수협등에서 구입 이용하고 있음, 본도 교육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반드시 이용토록 학교장 회의등 기회 있을때마다 당부하고 있습니다.

[질 문]

인재육성 사업에서 실시하는 장학생 선발을 학교성적 위주에서 탈피하여 재능있는 특기생의 인재육성 사업차원에서 같은 비중으로 선발한 의향은?

[답 변]

년간 200명에게 혜택을 주고 있으며, 이중 성적우수자는 71%에 해당되는 143명이고, 29%인



57명은 예·체능 및 과학특기자들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매년 확충해 나가고 있음, 타기관 및 장학재단에서 본도교육청에 위탁지급하고 있는 장학생선발도 각 장학재단과 협의하여 다방면에 특기가 있는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 문]

국가 교육행정 개혁과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년을 65세에서 60세로 단축하는 것에 대해 교원 70%, 학부모는 전폭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나 소수 교원들의 반대는 국가발전 및 국민의 여망하는 교육행정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 변]

학교는 지식만을 전수하는 사설학원이 아니라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지덕체를 고루 가르치는 삶의 도장이라고 생각하며, 교원의 정년단축이라는 고뇌에 찬 국가의 시책에 공감하지만 획일적이고 급격한 60세 정년단축안 보다는 명예퇴직 제도를 확대하여 교직사회 스스로 구조조정을 통한 자연스러운 신진대사 방안과 함께 63세 정도의 연차적인 정년단축으로 교직 공백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第3次 本會議 質問 및 答辯要旨

1) 정철수 議員

가) 江原道政

[질 문]

강원도의 인사문제와 관련, 향후 인사원칙은?

[답 변]

도민의 통합과 변화의 새바람을 일으키기 위하여 경험과 능력을 고루 갖춘 인재라고 판단되면 과감히 발탁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왔으며, 이러한 인사원칙은 보장된 임기동안 반드시 지켜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또한 현실에 안주하는 공무원과 학연·지연등을 철저히 배제하고, 실적과 능력위주의 인사를 정착시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가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질 문]

「한강수계수질관리특별대책」등 당면사안별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처방안은?

- 한강수계 수질관리 특별대책
- 원주공항 폐쇄
-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답 변]

수변구역은 의암댐·남한강 조정지점까지 양안 500m로, 보안림은 남·북한강 본류 및 1차지천 양안 5km로됨, 주민대표 등 공동조사반 현지조사후 도지사와 협의지정 등록됨. 물이용 부담금 부과는 하류지역 물사용자로 한정하게 되며, '98. 9. 3일 문화관광부로부터 슬롯머신의 전국허용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통보 받았고, 원주공항 문제는 탑승율을 높이기 위한 홍보와 관광상품개발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원전문제는 한전측에서 주민반대지역은 제외시키겠다는 의사를 밝힌바 있고 영월댐은 전반적인 보완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최종 평가결과를 보고 신중히 대처 해야 할 것으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안)은 금번 정기국회에서 다루어질 경우 우리도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상임위 국회의원 및 도의회 등과 긴밀히 대처할 방침입니다.

[질 문]

금강산 항로개설에 따른 현대가 강원도에 투자를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

- 31번 국도를 이용하여 육로를 통하는 내금강산 관광계획을 강원도가 주도하여 정부와 협의할 계획은?

[답 변]

출발항 주변을 연계관광방안 모색, 인력고용과 식자재 구매에 지역우선배려, '99관광엑스포와 설악권개발에 현대그룹참여 약속, 향후 도가 도울 것은 돕고 현대측이 합의한 사항을 지키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으며 육로를 통한 남북교류사업은 31번, 7번국도외에도 구철원~금곡리간등 금강산선 철도복원을 위한 용지매수가 진행중에 있으며, 그 외 동해안 철도 건설등 남북연계관광을 대비한 SOC사업을 추진중이고 특히 내년도에 정부의 용역비를 지원받아 설악~금강산연계개발계획수립시에도 SOC사업을 중점적으로 연구,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육로를 통한 관광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 문]

'99예산이 축소된 것은 국고 보조가 감소(18%)되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정부에 대한 예산지원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답 변]

예산규모가 줄어든 것은 각 시·도의 공통적인 사항으로, 결코 우리도가 국고보조금을 타시도에 비해 적게 받는 것은 아님, 내년도 본도의 국고보조금은 3,457억원으로서 충청북도 보다 배의 수준임을 말씀드립니다.

[질 문]

도 재정상황을 감안해 볼 때, 몇 개 시군이 부도 또는 파산이 예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신세원 발굴을 위한 특단의 방안은?

[답 변]

금년도 세수추계 결과 도세 23%인 496억원이 감소예상되고, 시군세는 2%인 43억원의 증가가 추정되므로 세수로인한 도산우려는 없을 것이며, 관광세·수자원세·산림교부세 신설등을 행정자치부와 재정경제부에 건의한 바 앞으로 자주 재원 확보방안 연구를 위해 「세제개편연구팀」을 구성하여 새로운 세원발굴등 재원확보 방안을 집중연구하는 한편 세미나개최, 연구결과와의 중앙부처 건의와 함께 타시도와의 공조를 통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 문]

공공 근로사업이 시군별 무원칙한 예산지원문제(국비배정 및 사업내용)와 공공근로사업 대상자 선별추진에 부적격자 참여 등의 문제가 있는지?

[답 변]

행정자치부가 지역별 신청자 수를 기준으로 배정토록 함으로써 일부 형평성이 미흡한 면이 있으나, 신청자 기준 때문에 강릉시와 태백시가 화천 양구군에 비해 많았고, '99년도 보조금은 시군별 인구수를 50% 직업안정기관에 등록한 구직 실업자수를 30%, 공공근로사업 참여인원을 20%로 각각 가중치를 적용하여 배정하였으며, 참가자격은 전업주부나 자영 농어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구직 등록한 실직자 위주로 하고, 우선순위도 실직가장, 저소득자, 30대에서 50대 순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질 문]

여성정책에 대한 소신과 각 위원회중 여성위원이 몇 %나 차지하고 있는지?

[답 변]

여성복지국이 폐지되긴 하였으나, 도지사 직속이 여성정책실을 설치하고 여성전용 수련원도 개원하였고, 향후 여성종합 정보망과 여성정책연구센터등의 개원 등으로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되며, 여성참여 확대는 7.2%에 불과한 48명만이 위촉되었으나 조만간 발족되는 여성특별위원회와 여성발전기금운용 위원회가 구성되면 72명으로 늘어나므로 총 대상위원의 10.3%에 육박하므로 정부권장 11%에는 다소 못미침. 앞으로 확대 위촉토록하여 여성지위와 권익이 향상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질 문]

복잡한 유통구조로 제값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시설농사를 포기하는 농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는?

[답 변]

시설재배 농가에 면세유 공급은 우리도만 “특급지역”으로 따로 지정토록하여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으며, LPG사용농가 영세율적용 조치함. 시설농가 시설개보수비 경영체당 2~10억원까지 지원가능토록 추가조치중임. 농산물 제값받기시책은 생산 농산물을 “공동브랜드화”하거나, 공동시장개척할 수 있게하는등 틈새시장 공략방안강구, 재형 소매상과의 직거래를 확대하여 품질차별화와 가격차별화를 위한 활성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 문]

백합종구 생산지원사업지원실적과 향후 지원계획은?

[답 변]

백합 바이러스 방제 사업과 고랭지 및 평안지의 종구생산 시험사업, 백합의 년중생산체계 확립 등에 관한 연구를 산학 협동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 종구생산 지원할 수 있도록 수 정예산에 추가 반영을 예산부서와 협의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질 문]

시군 보건소에서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을 순회 무료접종이나 저렴한 가격으로 접종할 수 있



도록 조치바라며, 접종계획에 미달된 시군의 향후계획은?

[답 변]

무료접종확대는 지원예산의 부족등 기타 희망자에 대하여는 약품원가로 유료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순회접종은 약품의 보관접종부작용 방지 등으로 강력하게 권장할 사항이 아니고, 다만 접종시기에 마을에서 최단거리에 위치한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서 접종·홍보했으며 앞으로 무료접종을 확대하고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하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 문]

향토문화 육성발전을 위해서는 그 지역이 향토사 연구원을 육성하고,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그 지역의 향토문화와 향토사를 연구토록 해야 하는데, 대학에 용역을 주어 왜곡된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은?

[답 변]

문화원 부설 「향토사 연구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 조사·연구 활동은 도지회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 「강원도 향토문화 연구발표회」가 있으며, 시·군 문화원에서는 사료집 발간, 사적지 순례, 시·군지 발행 등이 있지만 미약함, 앞으로 향토사 조사·연구 활동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질 문]

민속예술경연대회로 발굴해 낸 민속을 계속 보완 발전시켜 공연하므로 민속을 통한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키고 대회를 격년제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답 변]

문제점으로 제기된 심사방법 문제, 그리고 격년제 문제, 또는 청소년민속예술제 신설 등 전반적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유관기관·단체, 전문가 등 광범위한 여론수렴을 거쳐 확정·시행토록 함으로써 새 천년을 열어가는 특색있는 향토문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教育行政

[질 문]

중·고 병설학교를 남·녀 공학학교로 통·폐합하고 고등학교는 인문과의 취업과로 분리하는

것이 전문교사 확보, 학교운영 면에서 바람직한 바, 이에 대한 견해는?

[답 변]

학생들의 정서순화, 선의의 경쟁, 이성간의 이해와 예의 등 교육을 위하여 남녀공학을 적극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중학교 62.2%, 고교 58%가 운영중에 있음. 앞으로 교과목상치 등의 해소차원에서 남녀공학으로 교육에 질을 높여 나가겠으며 인문과의 취업과로 분리 운영은 교육의 질적제고와 진로 및 진학 지도의 내실화를 위하여 두가지 기본방침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학교규모에 따라 인문고와 실업계고로 완전분리 남녀공학으로 운영하는 것과 소규모 인문고에는 취업과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 문]

일선교장의 관외 과다출장을 자제토록하여 학교운영에 전념할 수 있게 할 용의는?

[답 변]

양구지역 고등학교의 출장일수가 129일로 많은 이유는 고등학교장이 중학교와 병설인 관계입니다. 금년에 출장억제를 위해 2회에 걸쳐 복무지침을 시달한 바 있으며, 일과시간에 경조사 등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 문]

내년부터 실시하는 중·고등학교 급식시설 지원비의 삭감으로 부실시공 및 학부모 부담이 우려와 이용자 수 감소에 따른 대책은?

[답 변]

IMF경제여건으로 부득이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경량구조물로 변경추진하게 되고 위탁급식으로 단가가 높아 학부모 부담 가중과 조리원반급식에 따라 질저하, 여학생 식성이 까다로워 급식희망자 감소 등이 예상되는바 급식시설과 양질의 급식, 저렴한 가격 등으로 개선하며 급식희망자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위탁급식을 교내 급식전환등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질 문]

원주지역 학교운영 위원장과의 간담회 결과 평가 대상 선정학교 집중투자로 다른 학교와의 교육환경 격차 심화를 방지하기 위한 평가심사제도의 개선의향은?



[답 변]

교육평가 대상학교를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할 경우 부작용이 예상되어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3~5배수로 추천하고, 그 중 1개학교를 방문하는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하게 되었고, 우리도에서도 선정된 학교 중 일부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완하기 위해 자원하게 된 것은 불가피 하였습니다.

하지만 도내 모든학교의 교육현장이 함께 개선되도록 지원하여 왔음.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97년, '98년도 지원금도 모든학교에 골고루 배분하여 학교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정연대 議員

가) 江原道政

[질 문]

주민이 실생활이 자치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제공 등 자치행정의 개혁방안은?

[답 변]

제2기 민선도정의 출범과 더불어 「도정혁신 40개 과제」를 선정하여 행정의 틀을 「자율지향·경쟁지향·성과지향」체제로 전환하고 행정에 경영개념을 도입하여 생산성과 능률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에서 행정의 전반적인 혁신과업을 추진중임. 목표관리제 도입, 건축재정운영 등 26개 과제는 이미 실천되고 있고, 주민현장제 등 14개 과제는 세부실천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질 문]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에 대한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 변]

매년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실효성 검토와 기능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법령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의 경우 '98. 7월말 실태조사하여 행자부에 건의하였고, 행자부와 기획예산위가 합동으로 '98. 12월말 정비대상 위원회를 최종 선정하여 관계부처에 법령개정을 요구할 계획으로 조례에 의한 위원회중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과감히 정비하여 낭비적 요인 제거 및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질 문]

행정정보 공개는 주민참여와 홍보부족으로 저조, 이에 대한 견해와 도민 참여방안은?

[답 변]

행정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조례에 의하여 매년 공개목록을 작성하여 안내책자를 발간배포하는 등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98년 행정정보공개 접수처리실적은 2,780건(도42, 시군2,738)을 신청받아 공개했고, 앞으로 도·시군정 홍보물등 홍보매체들을 통한 대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 문]

도민과 함께하는 제2건국운동과 강원도의 과제는?
· 제2건국 운동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과 의견은?

[답 변]

「제2의 건국운동」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화해협력, 세계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여 ① 참여 민주주의 발전 ② 민주적 시장경제 완성 ③ 보편적 세계주의 발전 ④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건설 ⑤ 신노사문화 창출 ⑥ 남북간 교류시대 개막 등 6개 개혁과제를 그 실천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에 관하여는 앞으로 본격적인 추진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또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질 문]

지난 10월 25일 신문보도와 관련, 각급 기관이 품위유지를 위해 도세를 방만하게 사용하지 않는냐에 대한 해명과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구체적 견해는?

[답 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범위 내에서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계획을 수립 집행함. 집행시 신용카드 사용, 영수증 첨부등 회계처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감사원 감사, 도의회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에 따라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질 문]

기초자치단체와의 협력단체에 대한 기본방향, 수부 도시인 춘천시에 대한 입장은?



[답 변]

민선시대에는 협조와 동반의 횡적·수평적인 관계로 변화되어 가고 있음, 도와 시군은 지역발전의 공동 운명체로써 함께 힘을 합할 때 경쟁에서 이기고, 지역발전도 앞당겨질것임. 도와 시군 주민 모두가 “강원도”라는 큰 틀 속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 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방안은?

·상습, 고질체납자의 세금 강제징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 개정에 대한 의견

[답 변]

현재 지방세 부과 징수에 대해서는 압류에서 고발까지 모든 권한이 자치단체장에 부여되어 있어 관련법령 개정은 고려치 않고 있음. 부동산 취득후 30일 이내에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금을 붙여 압류, 공매등 강제징수가 가능하므로 별도로 상당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시키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실현이 곤란하겠습니다.

[질 문]

현재 17개 분야 835억원의 기금이 있으나, '98. 8월 예금자 보호법시행령 개정으로 보호대상에서 제외, 앞으로 개정법률안 시행으로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기금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방안?

[답 변]

도는 기금의 안정성과 자금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산발적으로 예치해오던 기금을 금고은행으로 일원화하고 있으며, 현재 4%인 33억원이 한국투자신탁에 예치되어 있으나 '98. 12월 말에 만기도래와 동시 금고은행으로 일원화 하여 안정성 있는 고금리 상품에 예치토록 하여 기금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질 문]

강원도개발공사의 농산물판매장사업, 폴리머 생산공장운영, 연봉 조성택지의 미분양, 공영빌딩 임대부진으로 적자 공기업이 현실임, 강원개발공사의 기구 및 사업축소로 탄력성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 변]

홍천 농특산물 판매장은 대형유통망확보와 금강산 유람선 식자재납품등으로 수지가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폴리머복합판 생산공장은 벤처사업으로 과학기술부로부터 우수제품으로 인정받은바 있고 완공후 판로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고, 빌딩임대사업과 택지분양수탁사업은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개선을 위해 정원의 10%인력 감축과 기존업무의 합리적 통폐합으로 경영의 효율성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 문]

도의 정보화 시책으로

- LAN 설치후 전자결재방식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하는데, 활용도가 어느 정도인지 도지사의 도정 정보화 마인드 대한 견해
- 화상 시스템 설치후 이용부진으로 예산낭비의 전시행정시간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후 운영의 효율성에 문제 있음, 홍보부서에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인터넷 홍보에 대한 견해와 활용방안은?

[답 변]

구내 정보통신망(LAN)의 활용도는 중앙부처와 도자체 업무, PC통신, 인터넷정보 검색등 활용하고 있음, 7월부터 일일보고등 문서없이도 내용전달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 E-mail을 활용중임, 전자결재 도입은 PC보급이 (현재 보급률 62%) 더욱 확대되어야 하는 컴퓨터 구입예산 확보등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음. 화상회의는 '98년도 4,150명이 이용하므로 출장비절감과 업무공백해소 등 효과를 가져왔음. 인터넷홈페이지는 현재 운영요원의 전문화와 운영체계의 확립이 중요하다고 보며 의원님이 제시하신 안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 문]

인터넷대학이 강원대와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내용상 부실하고 교양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며 설립취지와 목적에 비해 과도하게 투자된 비용과 도민의 혜택이라는 측면이 너무 거리가 멀다고 판단되며, 강원도정 인터넷 홈페이지와도 중복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 변]

운영실적을 5개분야, 27개강좌, 180개의 강좌를 개설하여 무료공개강좌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80,000여명이 98,683회를 접속하는 이용실적을 보이고 있음. 「강원인터넷대학」의 강



좌내용은 건강·의료, 생활경제등 주로 도정소식 및 행정정보 홍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질 문]

도금고의 안정성과 관한 의견과 개선대책은?

[답 변]

'97년부터 시행하는 제일은행, 농협, 강원은행 순으로 1년간씩 윤번제로 운영해오고 있으나, 최근 강원은행이 타은행과 합병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앞으로 추이를 보아 가며 금고계약을 체결하여 도금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 教育行政

[질 문]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선진국수준이라 할 수 있는지 실제교육의 질이 향상되고 있는지?
· 학생수와 교사수는 비교할 때 소규모 학교의 교육의 질이 오히려 낙후되는 원인은?

[답 변]

'98. 9. 8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학업성취도 및 학습부진아 등 비교분석에 나타난 평가결과에 의하면 초등은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고, 중등은 지역간 다소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음, 소규모 오지학교 교육의 질이 낙후된 원인은 선의 경쟁 자극결여, 과모상치 등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도농간 교록수업, 우수교사 배치, 순회교사 활용 및 복수자격증 교사활용방안등 강구해가고 있으며, 열린교육으로 전환, 먼지역 소규모학교 협동체제 운영강화 등 추진으로 교육정책 비전을 위하여 도의회와 정기적인 토론회를 통하여 발전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 문]

교육청에서 관장하는 도서관을 지방행정기구로 이관 일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지?

[답 변]

소관부처의 일원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만으로 실현하기는 어려우며 중앙부처가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관계법령정비 등 도서관 관리체계의 일원화가 이루어 질 때 가능할 것임. 현재 중앙부처간의 기능조정계획에 따라 소관부처를 일원화하고자 정부차원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질 문]

학생수에 비해 일반직 행정관리 기구가 비대하여 교육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소견은?

[답 변]

현재 초등학교 418개교 중 187개교만 사무직을 배치하고 6학급이하 231개교 소규모학교는 사무직을 배치하지 못하였으며, 본도의 경우 이농현상과 폐광등에 의해 학생수가 소규모학교(1~3학급)에서 줄거나 폐교되어 행정직을 감소시킬 요인의 영향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질 문]

교육행정 구조조정으로 1개구 교육청을 통폐합하면 교육예산 절감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답 변]

우리도의 경우 지리적, 문화적등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역교육청의 통·폐합은 예산절감 효과를 위하여 실질적 지역주민 정서를 무시하고 통·폐합할 경우 교원 및 지역주민의 교육여건 등으로 인해 피해의식이 고조되므로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질 문]

폐교와 관련하여 폐교를 예견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증·개축 투자이후 2~3년내에 폐교된 것은 없는지?

[답 변]

학생감소로 '96~'98년도까지 통·폐합 학교수는 79개교이며, '99년도에는 초등학교 21개교를 폐교할 계획에 있음. 교실증·개축은 학생수 증가로 부족한 도시지역의 과밀학급 학교를 우선지원하고, 내용연수경과 노후건물과 벽채균열등으로 위험성이 있어 꼭 개축의 필요성이 인정된 학교를 개축하였고, 그러나 50명 내외의 통·폐합대상 소규모학교는 교실의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개축을 유보하고 있으며, 위험성과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부분적으로 수리를 요하는 사항은 보수비를 지원하여 건물 유지관리가 되도록 하고 있음. 폐교를 예상하지 못하고 증·개축후 2~3년내 폐교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례는 없습니다.



3) 손석암 議員

가) 江原道政

[질 문]

도출신 5급 공무원중 18개시군에 60명이 있으나, 시군별로 형평에 맞지 않으며, 태백시에 12명이 있는 등 인사문제에 대하여 평등을 유지·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요구함.

[답 변]

구조조정으로 도가 고통을 겪으면서도 국장급1명을 도로전입시킨바 있으며, 시의과원중 2명을 도에 파견조치하였으며 직접 전입하지 못한 것은 현재 도에도 많은 과원관계로 불가피 하였으며,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는 많은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고, 상호협력체제의 구축과 행정발전, 지역안배등을 고려하여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질 문]

태백시는 4면이 험한산에 막혀 교통소통에 애로, 울진 포항방면의 신리재의 90m를 터널로 조성하 추진토록 촉구함.

[답 변]

지방도로 427호선(황지~근덕)은 재정여건이 취약하여 양여금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조기 사업추진 어려움, 신리터널 공사 조기착공은 중기계획은 수정하여 2000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1년에 착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 문]

광산지역 개발촉진과 관광유람선 카지노 설치에 대한 대처방안은?

- 폐광지역 진흥사업의 부진에 따른 대책
- 금강산 관광선내 카지노 허용소문에 대한 진상과 대처방안

[답 변]

공공투자 부문은 45개 사업으로서, 개발촉진지구 및 대체산업 연결도로 12개노선과 기반시설, 도시환경정비 사업등 총 28개사업에 1,210억원을 투자, 정상추진되고 있음. 카지노리조트 조성 사업도 진입도로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민간투자부문은 시행자가 지정된 관광휴양사업(9개사업)실시계획 승인을 준비중이고, 사업참여를 신청한 7개사업은 시행자

지정을 검토중에 있고, 외자부문은 투자유치 기획단을 편성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금강산 관 광유람선 카지노 설치문제는 문화관광부에서도 검토한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질 문]

석탄소비를 위한 도차원의 대책과 이북에 연탄보내기운동촉구건의

- 석탄소비증대를 위한 시책주친과 함태탄광의 조속한 재개발 건의
- 이북에 비축탄 1,500만톤을 보내는 정책에 대하여 정부에 건의 추진을 촉구

[답 변]

석탄소비 촉진대책으로 시군에 연탄지원 소비센터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1,265가구의 연탄보일러 교체비용 1억 5,200만원을 지원하고, 석탄합리화 사업단을 통해서 3,245대의 연탄 보일러를 보급함. 정부의 석탄소비정책이 철실히 요구된다고 볼 때 무연탄 비축사업을 2005년까지 연장 하고 발전용탄의 소비확대를 위한 기존 발전소의 정상가동과 신규 발전소를 건설해 줄 것과 무 연탄의 대북지원 또는 교역 통로를 마련해 줄 것 등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질 문]

고랭지 채소밭에 '96년도부터 발생한 무사마귀병이 확산되고 있으며, 전염된 밭은 특별한 방제 방법이 없이 방제가 시급한 실정임. 이에 대한 확산방지와 대처방안은?

[답 변]

'97년도에 무사마귀병 종합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고랭지 밭토양검정을 완료하고, 전필지 별로 시비 처방서를 농가에 발급하고 동시 전산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토양 유기물 함량을 높이기 위해 휴한기 녹비호맥 2,670ha를 파종하였으며, 발생우려지 120ha에 농약 방제비 156,000천원과 간이소독대 및 공동육묘장 설치를 지원함. 내병성이 강한 품종 및 우수약제 선 발 보급 등 종합방제기술개발 연구를 강화해 나감은 물론 도비 137,000천원을 확보 지원할 계 획입니다.

[질 문]

국립 자연사박물관 태백유지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유치 노력하고 있으며, 입지상 태백시가 최 적지로 '97년도 영동남부권에 1,450만명이 방문하였고 본 사업에 소요되는 국비사업에 적극 협 조를 요망함.



[답 변]

지난해 6월 9일 문화관광부가 제시한 SOC, 접근성 등 수도권에서 1시간 이내라는 부지선정 기준에 따라 춘천 동면 장학리등 5개지역을 추천한 바 있으며, 특히 태백시장과 상공회의소 회장으로 부터 건의가 있어 문화관광부에 제출한 바 있고 앞으로 본도 유치문제는 교통망등 다소 열악한 여건에 있으나 2002년부터 추진한다는 정부의 발표에 따라 그 추진추이를 지켜보면서 충분한 시간과 도·시군의회 각급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와 대응전략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였습니다.

나) 教育行政

[질 문]

도내 공업계 고등학교의 시설물 설치 및 건물증·개축한 춘천기계공고는 80여억원 투자, 강릉농공고는 65억원투자하고 태백기계공고는 6억원을 투자했는데, 지나친 불균형적 처사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해명은?

[답 변]

공업계 확충사업에 있어 춘천기계공고와 강릉농공고에 학과 신설, 학과 개편 요인이 생겨 학교로부터 요구가 있어 교실, 실습실, 기숙사등의 시설투자 예산이었으며, 춘천기계공고는 2학과 6학급, 강릉농공고는 5개학과 12학급이 증설됨에 따른 시설투자였으며, 태백기계공고에도 학과증설 요인이 발생하였으면 같은 투자가 되었을 것임. 태백기계공고에 공동실습소 첨단기자재 확충에 288백만원을 지원하여 IMF로 힘든 재정형편에 실업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 문]

고등학교 급식시설에 조리실만 짓는 이동 운반급식의 위생문제 대처방안은?

- 조리실과 먼 거리의 교실과 고층건물의 운반에 대한 인건비 추가발행 대책은?
- 희망급식시 저소득층 자녀의 소외감 발생에 따른 해결방안은?
- 학급별 이동급식시 불량학생의 급식갈취에 따른 해결방안은?
- 서울시의 경우처럼 학교급식에 대한 호응도가 하락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 산업계 학교, 시골 농번기가 있는 학교의 학교급식 호응도가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1억이상 투자한 급식시설이 사장되었을 때의 책임은?

[답 변]

학교별로 학교장 책임하에 급식위생 및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점검을 실시토록하고 감독 청에서는 연2회이상 위생 및 안전사항을 지도·점검하는등 안전성을 확보 하겠으며 위탁운영의 인건비를 위탁급식업자가 부담함으로써 인건비 추가 발생은 없으며, 급식갈취 등은 담임교사와 같이 급식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경감을 위하여 위탁급식 운영시 공유재산 사용료 및 부가가치세를 하양조정, 직영운영시 정부양곡구입 등 강구결식학생 중식지원도 학교에서 급우들과 함께 급식 위화감 해소판단유휴교실 등 기존시설 최대한 활용하는등 적정 설비기준 판단을 위하여 관계부서의 2차에 걸친 정밀조사등 만반의 대책강구하겠습니다.

다. 第4次 本會議 質問 및 答辯要旨

1) 변완기 議員

가) 江原道政

[질 문]

IMF상황하에서 불용불급한 기구축소, 사업소 정비, 단순사무보조 인력의 감축이라는 미명아래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공무원은 없는지?

-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공무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개혁과 변화의 새바람을 일으킬 계획은?
- 행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주민만족 행정과 경쟁력있는 지방정부를 육성할 계획은?

[답 변]

「일할 수 있는 조직, 목표달성을 위한 조직」 즉 효율성과 경쟁력을 갖추고 도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데, 중점을 두어 개편하였으며, 특정직종이 희생양이 된 사례는 없었으며 사기업체의 경영마인드 도입을 위한 교육, 연수, 견학 등을 이미 실시하고 있고, 전문직 채용민간기업 경영기법 공직내부 확산·파급 행정원가 절감 등을 통한 저비용 고효율 행태로 개선, 행정서비스의 질향상을 위해 주민관의 약속을 문서로 공표이행하기 위한 「주민헌장제」를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 지속적인 공직자 자기혁신 및 의식개혁운동등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질 문]

도로, 교통 환경, 상하수도, 혐오시설 등 지역간의 갈등과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별도 분쟁조정위원회등을 설치 운영할 용의는?

· 합리적 분쟁해결 자치단체에 재정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 용의는?

[답 변]

현행 지방자치법 140조의 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기능만 있어 보상적 문제 등의 해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에서는 의결기능을 부여하고 중앙과 자치단체간 갈등 조정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협의조정기구”설치등을 골자로한 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고, 도로 교통 환경등과 관련된 광역행정에 대해 수해 및 피해자치단체간의 합리적 재원부담, 재정상 인센티브 제공등 자치단체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광역행정수행기본법”이제 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 이와같은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면, 자치단체간 분쟁조정등 광역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질 문]

민선2기를 맞아 지사께서 공약하신 「변화의 새바람, 강원도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떠한 계획과 방안이 있는지?

[답 변]

우리 도정은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개성과 활력이 넘치는 도정」을 펼친다는 각오로 경영행정의 실현, 신산업의 육성, 환경친화적 개발, 사회복지의 구현, 지역문화의 창조 등, 다섯가지 시정 방침을 설정 추진중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적인 노력에 못지 않게 우리의 보편적 도민의식 또한 시대 흐름에 맞게 바뀌어야 할 것이며 명실공히, 창조적 사고, 진취적 기상, 긍정적 행태가 우리도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하고, 강원도 세상은 변화된 시대환경을 통찰하고 이를 지역발전의 기회로 활용 할 수 있는 행정적 역량과, 여기에 200만 도민의 의지와 新思考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질 문]

강원도를 환경친화적이고 아름다운 세계관광 1번지로 만들전략은?

[답 변]

도전역을 관광·휴양지화 목표로 춘천권 수도권의 위락관광지와 통일 안보관광 코스로, 치악산

권은 운동·휴양시설 중심의 종합휴양지화, 설악권은 남북관광교류 거점지로, 강릉·태백권은 고원휴양단지화 해양·문화관광지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며, 환경친화적인 산악 스포츠 기반시설확충, 역사문화촌조성 및 설악~금강산 연계관광 개발계획, 국제관광엑스포 성공 개최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 문]

도농 통합후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도에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답 변]

통합시에 80억원의 기념사업비를 특별지원한 바 있고, 지방교부세 산정기준 주민세등은 통합전과 같이 실시하고 있음. 종전 군지역의 현안시설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질 문]

잼버리장등 도관련 공기업 운영을 민간기업에 위탁관리할 의향은?

[답 변]

잼버리수련장 등 5개소의 관리를 민간에 위탁관리 하고 있으며, 그 외 공기업 부문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비교 형량하여 위탁경영 또는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 보겠음. 의료원은 저소득층진료와 2차 진료기능이 계속 유지된다면 매각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 문]

한강수계 수질관리를 위한 국가의 정책과 도민의 정서를 조화롭게 수용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은?

- 정부대책안의 지역별 지대별 차등조항 내용
- 수질관리 지역개발 비용을 수혜자가 어떤 형태로 세분 분담하는지
- 도민의 정서로 보아 관련법안에 문제점들이 수정 보완되지 않는 한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데, 이에대한 소견은
- 5개시도가 수도권 행정협의회에서 공동 대응기로 합의하신 구체적인 내용은

[답 변]

수변구역·보안립 설정은 주민대표, 자치단체, 전문가등으로 구성되는 공동조사반에서 현지실



태를 조사한 후 도지사 협의를 거쳐 지정토록 되어 있어 규제면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여건 마련, 하류지역 물사용자에 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 법률」(안) 중앙에서 마련중이며, 수도권행정협의회의 6개항의 합의문 내용은 ① 체계적 보호관리를 위해 5개 시도 환경부 수자원공사 등으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구성, ② 제반비용은 수혜자 부담정신을 바탕으로 5개 시도합의 합리적 원칙에 따라 공동부담, ③ 「한강환경감시대」 활동강화 오염방지 공동대응, ④하류지역주민 비용분담 인식 재확인 상호간에 대화와 이해의 폭을 확대, ⑤ 해양오염(인천)방지 비용 오염원분석, ⑥ 수질개선을 위해 국고지원의 확대, 전담기구 설치, 「수질개선 특별조치법」 제정 등을 중앙에 건의 공동조사시 규제를 최소화와 더 많은 이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 문]

설악산 국립공원 제척문제에 도와 관련부처 사이에 논의된 바 있거나 건의한 내용은?

[답 변]

도내 3개국립공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11개지구 24,896km²가 국립공원으로서 보존 가치가 없는 지역으로 조사되어 97년 8월 중앙부처에 공원구역에서 제척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고, 그 후 정부에서 국립공원 구역조정 등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추진함에 따라 환경부에 재차 건의하였으며, 10월 17일 공청회에서도 도의 입장과 조정의 당위성을 적극 개진하였음. 앞으로 제척 대상지역에 대하여 현지실태와 문제점 조정의 필요성을 부가시켜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질 문]

강원도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험사업의 경쟁력 있는 품목발굴과 육종등 가시적이고 획기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도에 알맞은 교유의 품종개발에 주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 변]

특화시험장에서 개발되고 있는 우수품종 육성사업은 벼 수원 427호등 4품종, 찰옥수수 홍천 1·2호, 기존의 신고배보다 2배보다 큰 대과종배 강원나-01호와 가시없는 왜성두릅, 고원지대에 알맞은 고랭지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산화 관리체계 구축등과 화훼분야로 수입에 의존하던 수출용 백합종구를 독자개발 증식보급등 지역농업을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 教育行政

[질 문]

교육부에서 최근 도내 교원정원을 800여명을 감축시킨다는 가배정 사항을 통보하여 온 것으로 하는데, 이러한 교원 총정원제에 대한 부작용과 교원 정년단축과 맞물린 교육문제의 해결방안은?

[답 변]

전체학교수 635개교중 31.5%에 해당하는 200개교가 5학급 이하인 소규모학교로 교감이 배치되지 못하게 되며 중등학교 교사는 학교당 평균 2.6명 정도씩 축소 배정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정원의 축소 배정에 따른 문제점에대한 대책으로서는 평균 수업시수를 감안하여 학교별 정원을 배정함으로써 수업시수 증가분을 고르게 안배하고 행정업무 간소화 및 전산화 체제로 전환하여 교원 업무량경감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소규모학교의 협동체제 운영 및 지역특성을 살린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로 도시·농촌간 교육의 질경차를 좁혀 나가도록 하고 겸임, 교류수업 방안 확대운영으로 상치교과 교사 발생을 억제하는 등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 전인택 議員

가) 江原道政

[질 문]

조직개편의 향후 인력감축, 조직관리 방향과 인력감축, 봉급동결로 저하된 사기진작 대책 및 「팀」제 운영의 효율성은?

[답 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 「작고 유연한 지방행정기능」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목표관리제」를 도입 조직의 생산성 제고는 물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아울러 공무원 후생복지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공직사회가 안정된 가운데 도정이 능률적으로 수행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 문]

'97~'98 도세 및 시군세 징수율 제고방안은?



[답 변]

연말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고액·고질채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공매등 강제 징수조치와 소액채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징수 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세수결합액 496억원은 2회추경에 반영 삭감할 계획입니다.

[질 문]

각종 국제행사의 성공개최를 위해 외국인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내역과 도민들에게는 어떤 협조사항이 필요한지?

[답 변]

관광홍보 기본전략은 외래 관광객 유치의 핵심이 되고 있는 여행상품 국제행사 등과 연계한 개발에 역점, 해외시장별(동남아·일본위주에서 벗어나 신흥거대시장으로 부상되고 있는 중국과 구미주지역) Target을 설정하고 집중공략과 체류기간연장 및 재방문 유도를 위한 관광상품의 질 향상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동남아 주력시장에 스키 트래블마트를 3년 연속 실시 성과거양, 도민의 참여와 협조는 「친절」, 「질서」, 「청결」이며 '99년을 「강원관광 진흥의 원년」으로 범도민 관광요원화 운동등 손님맞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질 문]

여성정책 추진실적과 도의 여성 정책방향은?

[답 변]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강원도 시행계획수립, 60대실천과제 배분 추진, 12월중 추진실적 평가·분석하여 내년도 계획수립, 각종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여성사랑방」의 개설운영, 여성단체운영의 내실화, 여성자원봉사의 체계적관리, 여성발전기금 확대조성, 「일하는 여성의 집」 운영하고 있으며 '99년추진방향으로 기마련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추진력을 높여가는 한편, 「여성정책연구센터」 설립여성정보망 개설운영 등 내실있는 시책 추진 계획입니다.

[질 문]

도내 축산폐수 상수원 유입으로 수돗물 공급의 중단사례와 그 원인 및 향후대책은?

[답 변]

소초면 장양리 취수장과 평장천 상수원에 축산폐수 유입으로 중단되는 사고 원인은 축산농가의

영세성과 축산폐수 처리에 관하여 축산업자의 관리소홀과 관계공무원의 지도·감독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공무원과 축산업자를 즉시 고발조치 하였으며, 금후 감사결과에 따라 엄중문책 할 것이고, 재발방지를 위해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상류지역을 특별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질 문]

모든 장애인 단체를 조사하여 관련부서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의향과 현재 장애인 단체현황 및 지원기준은?

[답 변]

전국 제1의 장애인복지 시범도 조성 계획을 추진중임. '98. 3. 24일 강원도 장애인총연합회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하여 애로사항 청취 단체간 의견조율 등 장애인 복지증진 최선을 다하고 있음.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예산지원 및 편의시설확충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 문]

청소년 수련시설의 신규건립의 지양을 건의하면서

- 현재의 수련시설만이라도 알차게 운영하고 경영합이 요구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방법 검토용의 특히, 중도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은?

[답 변]

수련시설의 건립은 청소년수, 시설수, 이용도, 관리주체등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건립되도록 하겠으며, 시설운영은 최소한의 비용만 받고 있어 적자인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 가급적 전문적 경영관리의 노하우를 지닌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본 시설물 등의 공익적 목적이 크므로 수익성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내실있는 민간전문 경영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토록 하여 수지 개선 및 지도해 나가겠으며, 중도문제는 수지적자로 인해 근본적인 개선대책 없이는 민간위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 문]

미곡종합처리장 건립지원 확대 용의는?

[답 변]

양곡관리법 제4조에 근거하여 농림부에 설치되어 있는 양곡유통위원회에서 수매방법 등을 심



의 결정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정부가 직접 수매를 시행하고, 수매대금은 농협에서 우선 지급하고 추후 정부와 정산하고 있고, 앞으로 정부에서는 농가가 농협이나 RPC에 판매를 위탁하면, 농협과 RPC에서 그것을 담보로 대금의 일부를 융자금으로 우선지급하고 판매위탁된 미곡을 가공 판매한 후 농가와 상호 정산하는 방식의 융자수매를 도입할 계획으로 도는 RPC지원 확대를 꾸준히 건의한 결과 전국 RPC당 평균 4,400톤보다 많은 7,300톤씩 11개 RPC 80,700톤을 매입 전국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질 문]

젓소 「부르셀라」 피해정도와 대책과 농가에서 감염사실을 축소·은폐 여부는?

[답 변]

농림부에서 '98. 9. 15일 백신접종을 전면중단 시키고, 현재는 원인규명을 위한 역학조사를 진행중이며 도내 병증세를 보이는 소의 유산두수는 11개 시·군 171농가에 507두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10월 19일부터 5일간 기예방접종된 농가대상으로 유산두수 파악 및 소의 혈액을 채취 국립수의과학 검역원에 원인규명을 위한 감사의뢰와 동시 긴급방역 및 유산우의의 치료실시를 했으며 생산된 우유도 인체에 해가 없다고 하였으며, 생산된 우유는 연구문헌에 따르면 현재 살균처리방법으로도 쉽게 사멸되기 때문에 해독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질 문]

태백~가평간 송전탑 설치로 강원도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강원도 피해대책은?

[답 변]

전원개발특례법과 환경영향평가법등에 의거 공청회 및 사업설명회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 피해의 최소화 방안강구 후 민원이 제기된 지역은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 지도록 한전측에 적극 중재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 문]

산간 휴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방안은?

[답 변]

'97년부터 “한계농지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도는 원주, 횡성 각각 2개지구에 43ha를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소요사업비 전액융자 방식으로 원활치 못함. 전액융자 방식으로

원활지못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산간발유휴 농지정비는 “한계농지 정비사업”의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년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밭 기반정비사업은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하여 귀농인 등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 문]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대상을 소규모 업체로 지원되도록 제도 개선할 용의는?

[답 변]

'72년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제정운영하고, 기금의 재원은 ① 정부의 출연금, ② 카지노 사업자의 납부기금, ③ 출국 납부금, ④ 기금운용 수익금등으로 조성 문화관광부장관이 관리·운영하고 한국산업은행이 취급하고 있음. 영세 중소관광호텔 및 국내외 여행업체 등의 운영자금 등을 융자대상 사업에 포함하여 지원해 줄 것을 문화관광부에 건의하기 위하여 검토중에 있으며, 출국하는 모든내국인에 대한 「출국납부금」이 확대적용됨으로써 기금운용 규모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므로 소규모업체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질 문]

현재 건설중에 있는 황성담 상류에 위치한 갑천면 일대는 상습 침수지역으로서 댐완공 후에는 역류현상으로 인한 침수가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조사결과와 대책은?

[답 변]

현지 주민요구사항 댐높이 상향수몰지 보상, 또는 하향조정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황성군수와 협의한 결과, 이 지역의 기존 제방호안 개량과 하천폭을 넓혀 하천수가 저류될 수 있는 효과와 항구적인 침수예방을 위하여 배수로 정비와 수문 및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방안만이 최선책이라 판단되어 사업비 25억 '98. 9. 7일 건교부 및 수자원공사에 건의한 바 있음, 답변은 회시받지 못했지만 계속 협의·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教育行政

[질 문]

'99년도부터 실시예정인 5학급미만의 소규모학교 교감제 폐지는 교사의 업무부담 가중으로 인한 본연의 업무공백 및 교사의 승진기회 감소 등을 초래하는데 이를 재고할 의향은?



[답 변]

정원 감축으로 인한 교원들의 사기저하를 막고 업무부담을 경감시키면서 교원 인력의 감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으로 학급수를 불구하고 모두 교감으로 배치하되 12학급미만의 학교는 반드시 학급담임을 겸하도록 하고 6학급 이하 학교의 교감은 행정사무까지 담당하도록 하여 지역특수여건을 고려한 개선방안으로 교육부와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교육부가 일률적인 소규모 학교 교감감축 방침을 재고하도록 계속적으로 건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질 문]

교직의 여성화 추세와 관련하여, 현재 초·중등 교사중 여교사의 비율과 남녀교사의 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의향, 그리고 남자교사 확보를 위한 대책을 교육부에 건의할 의향은?

[답 변]

남자교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 교육대학교 신입생 비율에 있어서 학생 비율의 상향조정과 군제대자에 대한 가산점(초등 5점, 중등 2~3점)의 상향조정, 남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확대등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남학생들의 교육대학 유인책으로 교육대학 입학전형시 교육감이 일정비율로 시·군별 남학생 추천제도의 도입 등을 대학당국과 계속협의하여 남·여 교원수의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함종선 議員

가) 江原道政

[질 문]

김지사의 공약실천 상황을 「21세기 강원도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분석 한다고 하는데, 현재까지(공약사항)심사 분석한 성과와 문제점은?

[답 변]

고속교통망 확충 등 22분야 152개 사업으로써, 현재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그 실천계획을 구체화 하는 과정에 있음. 공약 사항은 지역발전과 정책적과제라는 차원에서 엄정하고 객관성 있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순수 민간기구인 「21세기 강원도정 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위원회의 주도하에 그 추진상황을 관리·평가할 방침으로 위원회 발족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가 분석결과를 기점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 문]

도민의식조사에 의한 “변화의 새바람 강원도 세상”의 도정구호가 홍보부족으로 흔들리고 있으며, 민선 제2기의 성공을 위해서는 도민통합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홍보 및 통합대책은?

[답 변]

제시하신 도민의식 조사결과가 순수한 도민의 뜻이 반영된 결과라면 도정홍보 노력의 미흡을 반성하는 자세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더욱 도정홍보에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도민통합문제」 단기적(hardware) 방법으로 거리와 마음을 가까이 하기 위해 교통망의 고속화·첨단화·광역화로 「2시간대 생활권 구축」에 지역개발 역점을 두고 성공한다면 획기적인 효가가 있을 것이며, 장기적(software) 접근방법은 「강원의 얼」 「강원의 정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도민적 일체감을 고양 시키는 도민통합의 진정한 의미는 1차적인 거리의 통합과 생각의 일체감 조성을 바탕으로 의식의 통합, 정보의 통합, 두뇌의 통합을 이룸으로써 「역내외 전 강원인의 Network化」인 것입니다.

[질 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물가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실업대책은 생계보호에서 고용창출로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답 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투자여건 조성을 위하여 고속도로, 전철 복선화, 항공, 항만 등 기간교통망을 확충 기업유치와 물류수송에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도전역을 내륙산업벨트, 임해산업벨트, 동서산업벨트로 나누어 「신산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관광자원개발 관광산업육성, 외자 및 민자유치 촉진등 추진, 수출기반 구축을 위한 시책으로 중소기업 경영 및 구조조정자금 등을 2002년까지 1,000억원 확대지원,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대출을 위해 강원도 신용보증조합설립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과 자생력 향상 지원 및 기업체의 해외시장개척단 파견(2회 6개국), 국제박람회참가 등을 지원 경제력 확보와 수출증대 등에 주력하겠습니다. '99 동계아시아경기대회와 '99국제관광박람회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기로 삼겠습니다. 금강산 유람선 출항 등을 도민소득과 연결 경제·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노력하고, 물가안정 대책으로 농수산물의 공급물량 확대 및 직거래제도 활성화와 공공요금 인상자제, 유통업체의 대형화와 유통단계의 단순화, 사회간접 자본시설 확충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 실업대책으로는 단기적 생계유지차원의 공공근로사업과 한시적 생계보호사업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취업정보센터등을



통한 알선, 인턴사원취업지원등을 고용창출 기회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 문]

불합리 한일어업협정 대책으로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는등 어업구조 조정을 통해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어업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대책의 강구책은?

[답 변]

새로 타결된 한일 어업 협정은 '99. 1. 24부터 효력이 발생함, 우리도의 경우 생산고의 절반인 약 60억원 (4,000톤)의 어업손실이 추정되지만 해양수산부에서 과거생산량 만큼의 어획쿼터량 확보를 위해 양국 실무자 협상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그 결과 감소여부가 결정되겠지만 협상 진행분위기로 보아서는 어획쿼터량 확보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채낚기업계의 타격이 당장은 그리 크지않을 것임.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 강구가 절실한 시점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영어자금의 증액지원 등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보조를 맞추되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 우리도 시책을 차별화 및 구체화하여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 문]

양양, 속초, 고성등 강원 영북지방의 벼냉해 피해로 전체약정물량의 44% 수매에 그칠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대한 대책으로 영농자금 상환연기, 이자감면, 학자금 면제 등 자연재해에 준하는 정부 및 도차원의 대책강구가 필요한데, 김진선지사의 구체적인 대책은?

[답 변]

도는 10월 31일 피해농가의 정부차원의 특별지원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건의하여 11월 11일 정부지원이 확정되어 수매 약정이행을 30%이상 못하는 2,062농가에 선금상환연기 103백만원, 이자감면 72백만원등 정부지원 혜택을 보게되었으며, 약정이 불가능한 30%미만 627농가에 대하여는 해당 시·군에서 자체지원 방안을 강구토록 지시하였으며, 그 외 중장기 정책자금중 상환도래 원금 이자에 대하여 2년간 상환연기가 관철되도록 농림부와 계속 협의중에 있음등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 教育行政

[질 문]

농·어촌 초등학교 복식수업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은?

[답 변]

문제점으로 학년별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어렵고, 산간벽지 등 지역적 제약을 받아 교육문화 혜택이 부족하며, 학급인원이 소수이므로 교과외 단체활동시 팀구성이 어려워 협동적인 인성함양에 제약이 있다고 보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학습결손이 가장 낮다고 하는 인접형(2~3학년, 3~4학년, 4~5학년) 복식학급의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예 체능교과는 공통으로 다루어주고, 국어, 수학등은 열린수업 전개로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실시하며, 이에 따른 교구시설 설비와 첨단 기자재를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담당교사의 자질을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 문]

춘천 모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제자를 성추행한 사건의 해당교원에 대한 조치내용과 성추행 및 성희롱의 근절대책은?

[답 변]

사건경위는 최 모교사는 58세로 평소 협심증과 뇌졸중의 후유증세를 보이는등의 교사로서 학생들을 체벌하고 편애함으로써 학생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행도 있었다는 진술이 있었으며, 김 모 교감은 60세로 엉덩이 및 어깨 또는 등을 두드려주는 등의 행동을 아이들의 부모님께 이야기함으로 알려 지게 되었으며, 신 모 교사는 47세로서 여학생들의 가슴둘레를 등뒤에서 직접 재는 등의 행위로 수치심을 유발하게 되었음. 이에 대한 조치로 이들의 행위는 성추행이나 성희롱으로 인식되기에 충분하므로 당사자 3명과 학교장도 응분의 책임을 물어 엄중 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



4. 第100回 臨時會

가. 第2次 本會議 質問 및 答辯要旨

1) 원종익 議員

가) 江原道政

[질 문]

수도권규제정책 완화 내지철폐 주장에 대한 대응책과 파생되는 문제점은?

[답 변]

수도권 관광 휴양업의 면적 제한은 무제한 허용한다는 것은 본도의 기존 관광휴양산업의 경쟁력상실 우려와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공장총량규제 배제등을 과밀부담금 부과제외 등의 규제완화는 직·간접적인 영향이 많은 것임. 대응책으로는 금년초부터 대전시와 충남·북, 전북도등 수도권 5개시도와 공동대응기로 하고, 토론회 개최, 반대공한 발송등으로 법개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해 왔으며, 입법예고 기간중인 4. 26일 수도권 7개시도 도지사의 반대건의문을 국무총리실, 건교부·산자부에 제출한 바 있음. 도의회 의원총회 반대결의, 강원도의회 의원총회의 주관으로 인근 6개 시도의회회장 공동으로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철회」 건의등으로 건교부는 시도의견을 충분히 반영 신중처리 방침입니다.

[질 문]

물이용 부담금의 규모 및 배분의 톤당 물이용 부담금 수준의 결정, 합의시점과 부담금의 적정 수준 및 기금의 사업별 우선순위와 배분기준?

[답 변]

이용 부담금은 환경부와 5개시도 실무책임자가 모여 6회에 걸쳐 협의하였으나, 「서울·인천」 톤당 70~80원, 「경기도」 수변구역 토지매입비 재원을 늘려야 한다고 178원을, 「강원·충북」은 하수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가 100% 지원되어야 한다는 등으로 견해차가 커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내에 5개시·도지사가 위원으로 있는 「한강수계 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생각됨. 「경기·강원·충북도」가 필요로하는 물이용부담금은 톤당 198원(3조8천억)이나 환경기초 시설 설치·운영비 100%를 전제로 하고, 수변구역 토지매입비 일부는 정부채권을 발행하여 충당하는 방식을 적용할 때 톤당 140원(2조 7천억)정도

가 적정하다고 보아 우선 투자순위는 환경기초시설설치운영비, 주민지원사업, 수변구역토지매입비, 기타사업순의 사용이 우리도의 입장입니다.

[질 문]

전원신도시계획 지구입지선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공정성과 투명성확보방안, 추진상황 및 추진일정은?

[답 변]

건설배경과 필요성은 21세기 최대가치인 쾌적한 환경에 중점을 둔 전국최초의 「전원 생태도시」를 수도권 일일산업 휴양벨트화가 가능한 지역에 300여만평 규모의 「저밀도 개발」형태로 건설하고 21세기 승부산업인 문화, 관광, 첨단과학이 조화를 이루는 지족적인 탈서울 인구를 계획적으로 수용함으로서 강원도 중부내륙 거점도시로 개발코져 하며 공정성 확보방안은 지난 4월 도시 계획 권위자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입지선정 평가항목에 대한 자문을 받았으며, 국내입지 선정전문기관인에 의뢰하여 도내 및 수도권의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설정된 평가항목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조사 결과에 대하여 외국전문용역사인 미국LA 소재 RMN사의 기술협력과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는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된 최적의 후보지가 선정되도록 하겠음.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10년까지 14년이 소요되는 장기계획임(계획 및 준비단계, 착수단계, 시행단계, 완성단계), 지난해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완료, 기본계획용역 금년 12월말까지, 항공측량 발주추진 중이며, 토질조사용역은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임, 향후 추진계획은 2000년까지 기본계획용역, 항공측량, 토질조사용역과 예정지 지정을 위한 협의절차등 단계별로 면밀하고 신중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 문]

불량농약, 비료유통이 되고 있는바 등록하지 않은채 비료를 제조하거나 성분이 미달된 비료가 유통, 이의 근절을 위한 단속현황과 적발한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 현황은?

[답 변]

'98년도에 연간 1,849개소를 지도·단속하였고 이중 37건(생산업체 31, 판매업소 6)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등록취소 11, 영업정지 10, 고발 1, 과태료부과 8, 경고 및 주의·시정 7건등 행정조치하고, 금년에는 405개소를 단속 11건(생산업체 9, 판매업소 2)을 행정처분중에 있음. 향후 불량비료 유통단속과 우량비료 생산을 위하여 비료업체교육 및 명단공개, 농협납품 제한 등 지도와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질 문]

동물사체 소각로설치에 구식인 시간과 연료값이 많이 드는 강제송풍식으로 발주한 이유 및 발주한 업체에 대한 철저한 확인 필요로 하고 도의 축산정책의 문제점, 향후정책방향 및 2001년도 소수입전면 개방에 따른 대비책은?

[답 변]

가축위생시험소 및 남부지소에서 선택한, 강제송풍 열분해 방식의 소각로는 동물사체 소각시 발생하는 악취 방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 선정하게 되었으며, 열용융방식은 연구단계로서 상용화되지 않았음. 중부지소 소각로는 결정된바 없음. 강원축산의 문제점은 사육규모영세성과 농후사료 위주로 가축 경제수명 단축, 대도시와의 많은 물류비용, 수도권 상수원제약등 그러나 우리도 입지 여건은 81%의 산지에 초지 사료자원 풍부와 서늘한 기후로 생육 및 질병예방의 적합한 여건을 살려 청정 이미지에 걸맞는 특성화된 고품질축산물 생산 및 브랜드화로 소비자 신뢰와 부가가치 극대화,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료자급도 제고, 환경친화적인 축산업육성, 돼지 및 닭고기 수출전략 산업육성, 축산기술연구센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는 먼저 횡성으로 이전을 완벽하게 추진한 후 육종개량 등 축산기술 및 시책을 보급함으로써 강원한우의 차별화로 국내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강원축산기술의 정보센터로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센터내에 축산교육장설치 실습위주의 체험교육 실시 2001년 소수입전면개방에 따른 대응책으로 송아지생 산안정제 추진을 정부와 협조해 나가는 한편, 강원브랜드화 시책을 적극 추진 등 농가 주소득 원으로 유지발전되도록 생산비절감과 품질고급화에 지속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 문]

「유리온실사업」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데, 유리온실을 경영하고 있는 법인체(농민)현황과 애로사항, 수지타산 내용은?

[답 변]

유리온실은 21개소에 28.2ha를 설치함. 우리도가 가장 유리한 작물인 백합, 토마토와 같은 작물을 선택하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되며, 본 사업은 국고지원사업이 완료되고 2000년부터는 희망농가에 한하여 전액융자 사업으로 전환됨, 애로사항은 경영비 부족, 재배기술미흡, 생산물의 가격불안정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앞으로 유리온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경영체를 모델로 교육장을 설치하여 교육을 활성화하고 원주 유리온실과 같이 중앙단위의 컨설팅(그린포닉스 수경연구소)과 협조하여 차별화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동시에 유리온실 경영자금을 농림부에 건의하여 장기저리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중임.

향후 경영이 어려운 경영체는 소득이 높은 수출품목으로 입식하여 유리온실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작목 전환비를 지원토록 적극검토하겠습니다.

[질 문]

「육군탄약고」가 있는 황성읍 묵계리는 특수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지역발전에 막대한 지장, 탄약고의 타 지역 이전 및 보호구역 축소 용의는?

[답 변]

황성읍 묵계리에 위치한 탄약고 시설은 인근 주민의 재산권과 인명보호를 위하여 폭발물의 안전거리를 고려하여 보호구역의 축소조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탄약고의 이전은 여러 가지 제약으로 어려우며 보호구역의 축소조정 및 이전문제에 대하여 국방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 문]

농기계 사용법과 정비방법, 안전에 대한 교육실시등을 담당하는 농기계 교관요원에 대한 특별 채용 기회부여 용의는?

[답 변]

농기계교관은 별정직과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조건과 방법에 나타나 있듯이, 채용에서부터 특수 업무 또는 기능적인 업무담당을 위하여 채용되었음. 농기계 교관요원의 일반직 특별임용은 해당 자치단체별로 정원조정이 우선되어야 가능하며 현재 1, 2차 구조조정으로 감축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별정직·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특별임용은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구조조정이 완전히 끝나서 과원이 해소된 후 능력이 있는 별정직 공무원을 특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질 문]

호우피해에 따른 지방도 409호선 복구지연사유 및 완공시기·설계·발주업체 및 예산내용은?

[답 변]

수해발생 즉시 복구계획 수립과 함께 실시설계는 하였으나 '98. 12. 16일 예산이 확정됨에 발주가 지연되었으며, 동절기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동절기에 공사를 발주하지 못하고 금년 2월에 발주하였으며 노선버스의 강바닥 통행은 도로 유실구간의 도로가 붕괴되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



하여 불가피하게 하천측으로 임시가도설치 우회시켰으며, 현재는 옹벽시공이 완료되어 본노선으로 차량이 통행하고 있음. 현재 시공중에 있으며 오는 6월말까지는 복구공사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 문]

단종 면허소지자의 부분별 등록에 따른 문제로 단종 건설업체의 등록기준과 경력부족으로 부실공사의 우려에 대한 대비책은?

- 부실공사 판정시 행정처분 방법?
- 횡성군이 단종 면허등록자가 갑작스럽게 56개업체로 늘어난 이유?

[답 변]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하며, 업종별 기준이 모두 다른 관계로 서면으로 제출하였음. 경력부족으로 인한 부실공사의 대비책으로는 관계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는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되어 있으며, 발주부서에서도 감독공무원을 배치하여 부실공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행정처분은 부실공사 발생시 관계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처분조치하고 있으며, 구조안전에 지장초래, 하자보수 책임기간내 하자발행, 인근 주요 공공시설물등 파손하여 공중에 피해 불량자 재사용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영업정지 6월~2월로 되어 있음. 횡성군에 전문건설업 등록자가 갑자기 늘어난 것은 도내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로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공사의 조기발주, 소규모사업의 증가, 발주 업종의 다양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나) 教育行政

[질 문]

대통령 방문에 따른 교육감 업무보고시 교원정년 단축과 명예퇴직 등으로 부족한 초등교원을 충원하기 위해 강원도교육연수원 부설로 교원양성기관 설립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음. 이로 인하여 교육대 학생들의 반발과 문제제기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답 변]

부족교사 수급을 위하여 제2차 초등학교 교사 신규 임용시험을 실시 100명 모집에 74명이 합격 직무교육중임. 2000년까지 우리도에서는 640명정도의 교사자원부족이 예상됨. 교육부의 초등교

원 양성기관설립 승인이 되면 춘천교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춘천교대의 수용이 어려운 대상 인원을 교육시켜 교원 수급에 대처해 나가고자 함. 교육대학 학생들의 반발문제는 대학 당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 문]

지난 5월 13일, 상지대학교에서 도의회 의정연구회가 주관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를 위한 세미나에서 원주 모여고 학생들중 이웃의 봉사를 받아야 할 소년소녀가장이 많은데, 이들이 오히려 봉사활동에 시간적 부담을 많이 갖고 있어 교육청 배려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대한 문제점과 의견은?

[답 변]

소년·소녀가장들의 이러한 입장을 배려하여 전국 대부분의 대학은 특례입학 제도를 마련 봉사 활동불참으로 불이익을 받지않게 하고 있음. 본도 교육청에서도 대학진학시 학교장 추천, 담임 교사추천등의 전형방법 적극활용 대학진학에서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진학지도를 해오고 있으며, 진로담당교사 연수시 이점을 각별히 환기 시키겠습니다.

2) 서종을 議員

가) 江原道政

[질 문]

공직사회의 2단계 조직개편, 체력단련비 삭감, 의료보험료와 기여금의 상향 등으로 인한 공직 자들의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어 있는데 후생복지 차원에서 특단의 대처방안 강구책에 대한 복 안은?

· 지적인대로의 처우라면 능력을 발휘하고 헌신하는 등의 참된 겨레의 기수가 되리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답 변]

사기진작책으로 근속승진제 확대와 개선, 명예퇴직과 조기퇴직수당 지급개선, 유급휴가제 실시 등을 정부에 건의(99. 5. 11)함. 중앙차원의 검토가 되고 있음, 실적주의 지향의 능력있고 열 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보다 과감하게 발탁하는 인사실시, 도자체 연구비지급제도 등을 강구, 시책유공공무원해의연수, 도청 보육시설 설치운영, 부부공무원 합류 및 연고지 배치, 즐거운



가정의 날 운영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질 문]

경춘고속도로 국책사업으로 전환하여 조속한 사업추진과 동서 고속도로 춘천시 내 외곽등 통과 하도록 설계변경 필요는?

[답 변]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반드시 국가사업 추진으로 전화되어야하며, 이에 대하여 4월 초순 경 지사가 직접 관련장관과 청와대 관계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논의를 한 바 있고, 강원도와 경기도가 수도권행정협의회를 통하여 공동으로 건의('99. 2. 25)함, 대통령 방문시 8월까지 대상 자 없을시 국가사업으로 검토약속, 노선변경은 지형여건상 더 이상 춘천지역으로 유도하기란 기술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질 문]

강원국제박람회 준비 상징탑의 공사중단·재개로 공기의 촉박으로 인한 부실공사 우려, 안전대책과 원활한 교통소통 방안과 대책은?

· 주차장 시설의 확보와 교통혼잡예방책에 대한 방안은?

[답 변]

당초 설계상 공사기간에 다소의 여유가 있었고, 공사재개 이후 기술인력의 증원, 공사시간연장 등을 통해 계획공정에는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기 때문에 8월초까지는 모든 공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음. 부실 공사에 대한 대책으로 전문기관 안전진단실시, 구조물 품질관리와 시공의 안정성 등을 위하여 전문업체 전면 책임감리를 담당케하여 완벽한 시공과 철저한 지도감독 수행해 나가고 있음. 현재 시설부 직원 7명 전원이 지난 5월 17일부터 현장근무 체제에 들어가서 엑스포 대회장 전반에 대한 공사 추진 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교통난해소는 지난해 전문기관에 교통대책용역을 실시하고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음. 대회장 접근로 교통량 분산계획으로 강릉 방향에서 진입하는 차량은 동측 게이트로 유도, 미시령과 온천로를 통해 진입하는 차량은 청초호 4거리에서 북측게이트로, 만천로를 통하여 진입하는 차량은 삼정여관옆 소도로를 이용 북측 게이트로 유도해 분산시키는 계획임. 국도 7호선을 통해 진입하는 차량은 조양동 새마을 4거리에서 관람객 차량만 동측게이트로 통행시키고 화물차와 직행버스 또는 속초 시내 경유 차량등은 소야로로 우회를 시켜, 관람객들의 엑스포 대회장에 입장불편 최소화 대회장주변의 교통흐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좌회전 진입은 완전

차단하고, 직진위주의 신호 체계운영대책방안강구 온천로등 대회장 접근도로 확충 및 정비 속 초시내 운행 차량 최소화를 위한 셔틀버스 운영계획임. 주차장 확보와 혼잡 예방책은 지난해 10월에 실시한 관동대학교의 교통대책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대회장내와 해양수산부 매립지에 4,056대(37,409평)분 확보, 외곽에는 임시주차장 5개소에 2,600대(20,379평) 기존주차장 4개소에 1,860대(18,837평)등 총 8,516대(76,625평)분을 동시주차가능토록 확보하고 예비주차장 설악등 지역의 관광지 주차장 9개소에 3,592대, 공·민영 주차장 40개소에 3,525대등 총 7,091대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질 문]

체납된 지방세 1,100여억원에 달하는 체납 이월액 징수 해소방안은?
· 세수결손으로 인한 각종사업의 축소·중단된 부분에 대한 대책

[답 변]

체납액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437억원,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신용제한 63억원, 공매의뢰 37억원등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금년에도 소득감소에 따라 체납액 징수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앞으로 징수를 제고를 위해 납기한의 연장, 징수유예등 납세자의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 주는 한편,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병행하는 등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 문]

경로연금 상향조치등 기동성 있는 젊은 노인에게 일거리를, 병약한 노인에게는 적절한 경로연금 지급되도록 상향조치 방안은?

[답 변]

경로연금 지급은 생활보호노인에게 현재 월2만원에서 5만원까지 지급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연차적으로 지급액을 5만원으로하고 지급대상도 현재 전체 노인의 22%에서 35%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알고 있음.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로당 취미교실운영, 장수·효마을 지정육성사업을 시군별로 1~2개소를 선정 시범운영중이며 운영실적이 좋을 경우 확대실시를 검토하고 있으며 노인분들의 일거리 제공은 공동작업장 4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 취업알선센터 4개소를 운영 취업기회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 문]

개발제한지역 지정목적의 최소한 면적만이 규제되는 개혁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정부 관련부처에 규제완화 해제건의 실태 및 그 내용과 사후 대책은?

[답 변]

각종 토지이용 규제지역에 대하여 지정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은 철저히 보전하고, 그 외의 지역은 규제완화 내지 해제하여야 할 것으로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함.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완화나 해제를 위하여 중앙에 건의한 내용과 조사팀별 1/4분기 추진상황은 상수원보호구역 3개소해제, 3개소 구역조정 용역중, 농업진흥지역 7,783km² 편입, 8,074km² 제외시키고자 농림부 승인요청, 도지사 보전임지 전용허가·협의권한을 현행 5ha에서 20ha로 확대해 줄 것을 행자부에 건의 8월 산림법시행령 개정후 시행예정, 그 외 지속건의 추진하겠습니다.

[질 문]

붕어섬개발사업 및 삼악산 삭도시설 재추진계획으로

6-1 붕어섬조성사업 부진에 따른 견해 및 재추진계획

6-2 삼천동 유원지에서 붕어섬~삼악산을 잇는 삭도시설(케이블카)사업계획재추진 계획은?

[답 변]

그간 민·외자유치를 위하여 부지매각 입찰실시, 우수한 20개업체 초청 설명회 개최, 외자유치 홍보 및 설명회 7회 개최한 바 있으나 아직 투자선이 결정되지 않고 있음, 향후 좋은성과 기대, 중도개발과 연계개발 방안강구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공동참여등 투자유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경춘선철도 복선화, 중앙고속도로 완공 등 접근성 개선될 경우 민간투자가 기대됨, 본격개발전까지 투자를 유보하고 중도관광지 운영관리 개선에 최선. '96. 9. 20 환경부 회신 내용을 보면 삭도시설 추진은 붕어섬 개발후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자연환경 예측과 저감방안 마련후에 시행여부와 사업규모를 재검토하겠다는 통보에 따라 잠정적으로 유보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질 문]

고정수렵장과 휴양림시설 재정자립도가 극히 취약함에도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적자운영까지 하고 있는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흑자전환사업 방안과 대책제시와 민간업자에게 위탁 내지 이양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 변]

도립 춘천수렵장은 현재 시설하고 있는 사격장과 숙박시설 및 세미나실 등이 완공되면 연중단 체이용객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 향후 2~3년이 지나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해에 현대식 원룸형 숲속의 집 1동 10실을 신축하였고 올해에도 숲속의 집 10동에 대한 시 설보완중으로 금년부터 본격적인 연중 운영체계를 갖추어서 흑자운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수렵장이나 자연휴양림 운영은 조수보호 및 수렵에관한법률과 산림법령에 그 자격요건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본 시설들을 국민의 휴양휴식과 수렵욕구를 충족시켜 밀렵을 방지하는 한편, 야생동물을 증식하여 산림에 다시 방사시킴으로서 산짐승의 밀도를 조절하기 위한 공익시설인 점을 감안할 때 민간 위탁운영에 따른 효과의 문제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나) 教育行政

[질 문]

경제한파와 구조조정등으로 금년 8월까지 초·중등교원 1천명이 퇴임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에 따른 교사 수급방안은?

-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중 미발령된 인력을 흡수하고, 일반대학 졸업자에 대한 교사채용 고시를 실시하여 일정기간 연수 후 임용할 용의는?
- 퇴직 원로교사를 적정한 조건하에 재활용할 방안에 대한 견해는?

[답 변]

부족한 교사충원을 위하여 일반교사를 기간제로 임용하고자 하나 초등교사 자격증을 갖고 희망하는 교사 자원이 거의 없음. 퇴직교원의 급증에 대한 교원수급을 위하여 교사 신규임용 시험을 실시하였으나 100명모집에 74명이 직무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초등교원 양성기관 설립 승인이 되면 춘천교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춘교대의 수용이 어려운 대상인원을 교육시켜 교원수급에 대처해 나가고자 하며, 교육대학 학생들의 반발 문제는 대학 당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3) 권혁희 議員

가) 江原道政

[질 문]

도내 중소기업제품판매촉진을 위해 제정(94. 1)한 조례 제5조에 대한 이행실적, 내용 및 조례보강방안?



[답 변]

도시군 및 유관기관에 단체수의 계약물품 및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공고 안내책자를 배포하여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수의 계약을 체결토록 적극 권장하며, 매월 구매실적을 제출받아 그 이행실적을 점검·독려하고 있음, 조례제정이후 매년 구매실적이 초과 달성돼 왔고 '98년도의 경우에는 총 5천6백억원의 공공구매를 계획하여 목표의 4%가 초과구매실적을 거둬, 앞으로 구매촉진을 위하여 우수 시군 또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질 문]

통상협력실적 및 타도와의 대비내역은?(해외시장 개척단 및 강원도 투자유치사무소 포함)

[답 변]

도내업체중에서 수출이 유망한 96개업체를 선정, 일본과 미국등 13개국에서 개최되는 시장개척단 3회 및 박람회와 파견할 계획임. 그동안 4회에 걸쳐 일본과 인도, 그리고 미국 등 6개국에 32개 업체를 파견하여 도내 상품의 전시·홍보와 함께, 5천5백만 달러어치 상담과 수출계약 등 세일즈활동전개, 도지사 동남아 세일즈 순방 통상협력 체제를 다지는 한편 3천6백만 달러의 수출상담 및 계약성과를 거두었으며, 해외 자본의 투자 유치를 위한 설명회 개최성과는 외교통상부, 전경련 등 국내 경제단체 및 기업, 독일 등 34개국 대사 및 상무관, 주한 미국 유럽 일본 상공회의소 회장 등 투자관련 내·외국인 700여명이 참석함. 외국인컨설팅회사 등 128개사가 참가하는 등 해외투자자들이 강원도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는 등 설명회가 끝난 후 일본의 「도아이카니믹(주)대도산업에서는 오색관광호텔사업의 투자상담 자료를 요청하는 등 10여개 기관 및 업체에서 도내 투자와 관련 관심표명과 상담진행중이고,

· 국내업체 상담건수 - 총 192건

· 외국인 컨설팅회사 등 상담 - 총 81건

농특산물 수출촉진을 위한 해외시장개척은 일본, 중국, 미국등에 3회에 걸쳐 36개업체 및 농가가 참여, 백합, 가공식품 등 935만달러의 계약실적을 올림. 투자자의 사업성 검토등 일련의 준비과정후 결정하게 되므로 단기간내 성과가 가시화 되기는 어렵다하겠습니다.

[질 문]

강원도 관광자연 자원보호 조례 제정하여 자원을 지키고 가꿔야 하는데 대한 견해는?

[답 변]

우리도에서는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등 환경 감시요원 총 23,105명을 위촉하여 각자 담당지정

지역에서 관련기관 공무원과 연계하여 감시활동에 참여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관리 야생동·식물의 지정, 생태계보전지역의 관리등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환경보전조례를 제정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 문]

야생동물들이 뛰노는 평화로운 자연강원 조성에 고정수렵장 운영개선 방안과 밀렵단속 실적 및 대책은?

[답 변]

본도에서 민간 밀렵감시단 활성화를 위하여 포상과 활동비 및 장비지원 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앞으로 시민단체와 공조체제유지 지속적인 단속으로 밀렵 및 밀매행위 근절로 야생동물보호 순환수렵장운영 및 야생조수보호 사업비 4억3백만원의 지출내역과 도립 춘천수렵장 조성에 24억4천2백만원이 투자되었고 동물사육비 5,100마리를 증식목표로 추진하고 있어 사육비 투자가 높아지리라 보고, 춘천수렵장의 예산은 시설 및 운영비이며 밀렵단속에 총당된 예산은 없습니다.

[질 문]

광산지구 지진에 따른 대형참사의 사전예방대책을 위한 조사실적 및 중앙부처건의내용은?

[답 변]

지진방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기상청 및 각 대학 지진연구소에서 한반도 지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진에 대한 교육과 함께 사전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관계법령에서 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광산지역 시설에는 내진설계 기준심사를 강화하여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 문]

여성정책실 신설후 새로 개발된 정책과 이에따른 발전 및 변화된 실상은?

- 시군의 여성업무를 남성과장이 총괄하고 있는데 여성과장들의 본청 환원근무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은?
- 생활안정 지원사업대상자중 여성공공근로자수?
- 고학력 여성실업자를 위한 특별대책은?



- 취업알선 및 취업실적증 여성취업자수('98~'99 현재)
- 폐광지역 카지노사업 기초사업으로 여성경제활동대상 특별교육실적 및 계획

[답 변]

기구와 인력감축 기초속에서도 여성전담기구와 정원은 증설하여 국장급으로 예우하고 있는 「여성정책실」과 5급3개직위 등 5급이상 직위 4자리 증설함, 일부 시군남성 가정복지과장을 가급적 여성공무원으로 임용할 것을 권장해 나갈 계획임. 사기진작 시책으로 5급 2자리에 여성공무원을 발탁우대승진시키는 등 여성공무원양성과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으며, 상반기중에 시군여성공무원 도 전입 선발고사를 실시, 청내 보육시설 수요조사 분석, 공무원 교육원에 여성간부양성과정 신설과 현대사회와 남녀평등과목 설치운영등 여성공무원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을 위해 여러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98년 강원도 여성취업자수는 1,202명임, 폐광카지노의 여성취업 직업훈련은 7월경 강원랜드용역성과에 따라 다양한 훈련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음, 강원여성현장제정 선포한 후 여성회관, 여성단체 등에 낭독용 현장문안 300부를 보냄과 동시에 자체제작 계첩협조 총629회 활용되었고, 여성들의 반응을 조사한 적은 없으며, 여성농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설치, 체력단련실, 조리실, 찜질방, 샤워실등을 운영하고 있음, 모성보호사업으로 임부등록관리, 임부건강진단, 유방암, 자궁암 검진등을 실시하는 등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이중노동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농촌보육시설의 운영시간 연장검토, 여성영농전문기술교육 등 3개과정 5,880명 실시함, 그 외에 농한기를 이용하여 여성농민을 위한 전문직업 의식교육과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등을 개발하여 실시할 계획이고 성차별적인 법, 제도 의식의 개선을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강원도 자치법규집의 성차별 조항을 전면적으로 검토하는 등 현재 여성정책 특별위원회의 정치·경제·행정분과위원들의 주축이 되어 일차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법무담당관실의 협조하에 성차별 조항을 삭제 혹은 수정한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나) 教育行政

[질 문]

도농간 학교간 교육환경에 있어 소규모학교에 배치되는 우수교사의 기준과 순회교사의 기준과 순회교사의 소속감 불투명, 이동순회 수업으로 인한 학생지도의 불안정성, 거점육성학교의 전보특례에 따른 인사의 부적정성 등 문제해소방안은?

- 겸임교사 및 상치교사의 현황과 소규모학교 통합교육과정 운영효과, 복수전공 교사제의 역구현 및 연수비 부담문제에 관한 견해는?

[답 변]

소규모 벽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승진 가산점을 벽지가 아닌 농어촌지역 근무교원에는 승진 및 전보가산점을 부여하여 우수교사를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우수교사를 선정하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배치하고 있지 아니하고 우수교사가 소규모학교를 선호하도록 유인책을 쓰고 있으며, 순회 겸임교사에게 교통비지급과 전보가산점 부여, 포상시 우대등으로 문제점이 해소되고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상치교사 해소와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 학교장이 교사를 내신할 때에는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도교육청은 인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하므로 공정한 인사가 되고 겸임교사 189명, 83명의 부분상치교사 배치, 상치교사 해소책으로 부전공 자격연수확대, 복수자격자 우대채용, 겸임교사제 활용, 중등 현직교사 부전공 자격연수는 '98년도에 8개과목 273명을 실시, '99년 10개과목 280명의 연수계획등 연차적으로 확대과목 상치해소와 제7차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계속지원계획이며 개별화교육이 용이한 통합교육과정으로 다양한 학습활동과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태도를 길러주게 되겠습니다.

[질 문]

특기적성교육비 부담 중 교육비지원 50%(학생자 부담 50%)는 수강료 부담이 가능한 여유있는 가정의 생들에게만 유리한 불평등한 조치는?

- 특기적성교육이 대학입시에 대한 큰 도움이 없어 방과후 사설학원을 추가 수강함으로써 학부보들의 고통가중 및 이중의 사교육비 부담은?
- 수강료를 받고 지도함에 따른 교사들의 위상 및 권위의 문제, 외래강사와 내부강사의 강사비 차등지급에 대한 이해부족과 특기적성교육 이수자현황 및 문제점 해소방안은?

[답 변]

강사비 보전은 개설된 강좌의 수강생 숫자와 관련된 것으로 수강인원이 적은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학생이 부담하는 수강료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수강료의 50%까지 국비로 지원 수강료의 경우는 차등없이 일률적으로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하되, 실직자 자녀를 비롯한 극빈자, 보훈대상자, 소년·소녀가장 등은 수강료전액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002학년도부터는 대학입시 전형방법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전환되므로 현재 고교1학년 중심으로 특기·적성교육을 강화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본교육의 조기정착을 위해 중·고등학교 1개교씩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모델개발을 연구중에 있고, 674명의 교사가 연수실시 중에 있으며, 교재 교구 구입비도 지원하고 있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 문]

교육개혁 평가 3년패에 따른 교사들의 자긍심과 학부모들의 만족도의 타시·도에서 본도에 견학한 사례는?

[답 변]

연속 최우수 3년패로 우리도의 교육의 방향과 수준을 평가하고, 반성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봄, 학부모님에 대한 만족도는 조사한 사례는 없으나 좋은 평가를 하실 것으로 생각됨, 우리도에 견학온 사례를 보면 황성덕고초등학교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열린교육을 실천하여 선진학교로 부상 '98년도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 새교육공동체위원, 교육장 등 금년도에서 시·도교육청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 문]

질높은 수업의 창출을 위한 불필요한 잡무줄이기에 대하여 '98, '99년도 감축한 공문건수 및 '97~'99 자체생산공문건수(일반문서, 업무연락, 업무협조 구분)현황은?

· 교무실의 연구실화, 교직원 복지시설 근무환경 개선내용,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과 교사들의 의견수렴 여부 및 방법은?

[답 변]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생산된 문서건수 현황은 '97년도 4,135건, '98년도 4,454건, '99년도 1,605건이며, 일선잡무를 줄이기 위하여 강원교육 회보발행을 통하여 91건의 공문서 생산을 감축하였고 문서에 대한 실명제 및 보고통제 강화 학교 사무의 전산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활용 등을 통하여 공문서 유통량을 줄여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고 있음, 현재 총 1,616실을 확보하여 교재연구실 등 교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음.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가 시행된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교실 신축 증·개축과 학급수 감소등의 요인으로 발생한 여유교실을 이용하여 총95실을 확충, 약45억원을 투자한 바 있으며, '99년도에 17억원을 투자 지원할 계획임, 교원사택을 꾸준히 확충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 문]

폐교는 지역의 생활박물관, 수련원, 복지관 등 공익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데 폐교 279개교중 60개교의 매각처리내용과 137개교의 임대현황은?

[답 변]

현재까지 총 279개교가 폐교되었음. 매각처분된 재산은 60개교이고 노후건물 16개교는 철거하

여 부지만 활용하고 있음, 학생아영장등의 교육용으로 22개교와 지역주민, 사회단체등에서 137개교로 유상·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으며, 매각처리내용 및 임대현황은 그 양이 많아 서면 제출로 대신하겠습니다.

나. 第3次 本會議 質問 및 答辯要旨

1) 곽노린 議員

가) 江原道政

[질 문]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 대한 복안과 지역업체 의무하도급제 시행을 철저히 할 용의는?

- 시공업자가 부도나면 발주자가 직접 하청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하도급거래법」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실태는?

[답 변]

'98. 9월이후부터 지역제한 대상이 아닌 50억원이상의 공사발주시 반드시 도내업체 3개업체이상, 도내업체 지분율이 50%이상의 보장이 되도록 계약추진하고 있음. 도내 국책건설사업인 「영동선철도이설사업」에 도내업체가 참여되도록 철도청장과 적극 협조하고 있는 등 활성화를 위해 적극노력하고 있으며, 전문건설업체보호를 위하여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하도급대금지급에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대로 지급토록하고 원도급자가 대금수령후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케 하는등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질 문]

지난해 수해피해의 복구실태 및 재발우려는 없는지 관계기관의 검증·확인실태로 '99년 분야별(가뭄, 장마, 폭설)재해대책은?

- 재해대책기구를 도의회와 공동구성하여 상시체제 전환용의는?
- 재해대책 예산집행, 지휘체계(軍의 경우 작전 권역만 지원)등의 문제점에 대한 협의실적은?
- 방재물자 비축현황, 재해대책기금현황 및 재해 위험지구 현황은?
- 「재해관리 책임 실명제」 추진현황은?

[답 변]

재해방지 대책은 시기별로 「가뭄대책」 「장마철 재해대책」 「겨울철 설해대책」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분야별 추진대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음. 재해대책 종합상황실운영규정에 따라 경보 발령시 기능별로 구성된 6개반 35명이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어려움이 없으며, 재해발생시 예산집행은 응급복구를 위해 예비비와 재해대책기금을 사용하게 되며, 항구복구는 피해확인절차와 중앙 복구계획확정등의 상당한 시일소요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 재해복구비를 연초에 배정 재해발생시 집행 연말정산방안을 중앙재해대책본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이를 검토중에 있고, 지휘체계는 재해대책법 제40조의 규정에 관할내의 민방위대, 군부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부대의 작전권역 외에도 지원이 가능하므로 별도 협의를 갖은 바 없으며 방재물자 비축은 「수방자재」 「구호물자」 「방역물자」 「제설용 자재」를 비축하고 있고, 재해기금은 도 40억4천만원, 시군 47억2천만원, 총87억6천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60억원을 적립할때까지 가급적 사용을 억제할 계획입니다.

도내 재해위험지구는 상습침수지구 24개소, 붕괴위험 52개소, 고립위험 2개소, 노후시설 7개소 등 모두 85개소이며, 정비사업비는 모두 999억원으로 추정되며 재해위험시설별 「재해관리책임실명제」 추진은 위험지구 65개소, 경계구역 27개소에 관리자를 지정하고 관리카드 비치, 정기적순찰과 응급조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 문]

농업직공무원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는 인사로 효율적인 업무처리지연 및 행정의 질저하에 대한 견해는?

- 농산지원과장을 농업직으로 배치할 용의는?
- 농업정책의 중요성을 감안직급상향 조정의향은?

[답 변]

농산지원과장은 농업 또는 시설 4급 공무원으로 보직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는 시설4급으로 보직되어있음. 농산지원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기획·조정할 수 있는 직이 어느직인가에 대하여는 의원님 말씀을 새겨보면서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인사운영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농업직 직급 상향조정과 관련하여 2차구조 조정시 비단 농업직뿐만 아니라 다른 직렬도 모두 망라하여 어느한 직렬에 치우침이 없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토·반영할 계획입니다.

[질 문]

환경친화적 농업육성을 위한 선진농업 발전방안은?

- 개별농가단위의 지원방식을 지양하고 부락단위의 지원으로 전환할 용의와 농업정책수립시 농업인의 참여방안은?

[답 변]

지난해 「환경농업 원년의 해」 선포와 더불어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실천시책으로 친환경농업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으로서, 강원도의 특성을 환경농업의 유리한 기반으로 하여 차별화된 농산물을 생산하는 등 친환경농업의 선도 道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지원제도는 성격과 여건에 따라 경지정리와 같은 부락단위지원과 영농규모화사업, 토양개량사업과 같은 개별농가별로 지원하고 있음, 현재 단위사업별로 지원되고 있던 형태를 2004년까지 종합지원방향으로 「농업·농촌 투융자」 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농업정책 농업인 참여는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개편 「농정심의회」를 구성 참여확대방안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질 문]

정부의 지방자치 3권 부여로 평강과 철원을 포함하는 평원시 조성사업에 대한 계획 및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답 변]

우리도에서는 남북강원도 교류협력위원회 및 기획단을 구성하여 우선 비정치적 분야인 농어업 등에서부터 공동시험연구 및 기자제지원사업, 솔잎혹파리 공동방제, 공동어로사업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양 지역간 교류협력의 기초마련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접경지역 평화지대조성계획」을 국토연구원과 강원개발연구원에 공동연토록 하고 있으며, 특히 철원지역에 평원시(평화의 뜰), 남북물류기지, 농·축산업등을 중심으로 경제공동특구, 생태연구공원 설치등을 구상하고 있으며 여기에 제시되는 내용들을 구체화하여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토록 하는 한편, 정부(통일부)가 구상중인 「남북평화·화해·협력 기지개발 종합계획」에도 반영노력, 평강군과 철원군을 포괄하는 「평원시 조성사업」은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은 상징적 사업으로 남북한 당국합의하에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정부에 제시한 것입니다.

[질 문]

지방자치 3권(행정·치안·교육)통합, 도지사에게 권한부여 방침에 대한 대책과 운영계획은?

[답 변]

본 사안은 현재 정부에서 검토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발표된 바가 없으므로 정부계획을 보아가며 적절한 대책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며 앞으로 정부방침이 확정되고 시행계획이 가시화되면 철저한 대책과 계획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질 문]

농어민의 날 행사에 대한 도인구의 약 17% (267천명)인 농업인을 위해 도비지원 용의는?

[답 변]

농업인의 날 행사는 농림부 주관으로 전국규모의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도는 강원도농어민 대상 시상식 및 행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체육대회, 우수농산물전시 회등을 개최하고 있으나, 시·군별 행사비는 열악한 도재정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 정입니다.

[질 문]

노인들의 노인생활체육활동 공간인 게이트볼장에 비가림막을 설치할 용의는?

[답 변]

게이트볼장 건립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아 90개소를 건립하였으며, 전천후 시설은 10개 소에 불과하여 우천시 활용도가 낮음. 앞으로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시 시군비 투자를 원칙으 로 추진하되 동호인수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곳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나) 教育行政

[질 문]

도농의 교육격차 해소와 농어촌 벽지학교의 실태 및 교육정상화를 위한 수립된 계획은?

[답 변]

'9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거점 우수학교 육성은 지난해까지 59개교에 약41억원을 지원 하여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으며, 금년에도 학급당 200만원씩 42개교에 9억원을 지원 교육력향상 사업을 추진중이며, 「내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거주지 상급학교에 진학률이 점차 높아져, 대학입시에서 농·어촌 특례입학과 학교장 추천입학 학생이 '99학년도 575명이나 합격하였음. 타 시·도간 교류활동과 도·농간 교환학습은 이질화되어가는 문화적 장벽을 허물고, 공동체 의식의 함양은 물론 더불어 사는 삶의 지혜와 슬 기 그리고 다 양한 사회성을 길러 주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질 문]

집단 따돌림 예방대책과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답 변]

보이스카우트와 걸스카우트 같은 건전한 청소년 단체활동을 활성화로 공동체 생활적응 기회제공, 상담쪽지 4만매 배부, 7개시 552명 상담자원봉사제운영 학생고충신고 전화가설 등, 학생자치회 중심의 대토론회, 모의재판 경연대회, 학생자율 선도단 운영, 활성화에 힘쓰고, 강원도경찰청, 춘천지방검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지도 체제를 강화하고,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 학생자율 자정활동 등 다양한 방법의 지도체제를 강구하겠습니다.

[질 문]

지난해 이후 부쩍 증가한 부모의 실직이나 유고로 인하여 학생가장이 된 도내 학생수와 대책은?

[답 변]

학생가장 현황은 '99년 4월 현재 도내 학생가장의 수는, 초등학생 136명, 중학생 322명, 고등학생 380명으로 총 838명임, 외환위기 전에 비해 5.4%가 증가하였으며, 대책으로 생활보호대상자로 등록된 학생전원은 학비감면 혜택을 받고 있으며, 결식학생 도시락 후원운동의 급식대상자로 선정, 급식비 전액을 지원하고, 모범적인 학생은 장학금 혜택도 배려하고 있음, 교사와 1:1 대리부모 결연으로 학생의 생활 형편을 돕고, 진로지도 등으로 올곧게 성장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질 문]

문막중·실업고등학교 학생수가 문막공단입주등 자연증가로 포화상태가 되어 교육환경등 각종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음. 이에 따른 문막중학교 이전계획의 진행정도와 완료시점은?

[답 변]

이전 부지로 구 문막초등학교 부지를 검토한 바 있으나, 학교정화구역내에 유해업소가 밀집되어 있고 교통이 혼잡한 시내 중심지로서 적절치 못하여 인근농지를 다시선정 지역주민과 협의한 바 있으나 학교부지로 협소하고 진입로 개설이 어려우며 정화구역과 인접되어 있다는 이유로 최근에 와서는 다시 구·문막초등학교로의 이전을 위하여 재검토중에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부지를 확정하여 이전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 박용길 議員

가) 江原道政

[질 문]

공직자가 나이가 많다는 사유로 해직·명퇴를 강요당할 우려가 있는데, 인력감축만이 구조조정인지, 중앙지침만 따를것이 아니라 구조조정에 대한 견해를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지사님의 소신은?

[답 변]

경쟁력있는 지방조직을 위해 전반적으로 조직과 인력을 축소하는 기본원칙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할 수 있는 조직, 목표달성을 위한 조직」으로 개편하여 「주민이 만족하고, 주민이 감동할 수 있는 도정」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음. 정부제시 감축기준의 현실적 제약이 있어 공무원정원의 산정시에 본도의 경우 관광, 군장병 관련 행정수요등 지방특수성과 다양성을 반영해 줄 것을 수차 중앙에 건의한 바 있고 현재 반영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명퇴를 강요한 사례는 없으며, 그동안 명퇴한 70명은 명예롭게 자진 퇴직한 공무원들을 말씀드립니다.

[질 문]

'99 강원국제관광박람회 개최에 북강원도 참여권유를 위해 북한방문 용의는?

[답 변]

강원국제관광EXPO에 북한을 참여시키고자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중심이 되고 관광관계자의 참가 및 북측교예단등의 출연을 제의한 바 있으며, 아울러 「환동해권 지사·성장회의」 및 「동아시아 지방정부포럼」 창설에 북측의 참여권유등 여러경로를 통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만한 진전은 없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질 문]

양양 강현면~장재터~설악동으로 연결되는 우회도로 개설 용의는?

[답 변]

군도1호선은 3.7km가 비포장도로로 행사준비 기간동안에 예산확보 및 공사는 어려움이 있고,

강현면 강선리→장재터→설악동을 연결하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를 우회도로로 지정하였으며, 박람회 기간중 우회도로 안내표지판 설치 및 유도요원을 배치하는 등 교통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 문]

양양국제공항과 관련된 도비지원 실적과 향후 투자계획은?

- 주변 군도(여운포~낙산대교~낙산 7번국도)를 지방도로 승격하여, 집중투자할 용의는?
- 낙산대교건설의 군비부담을 도비 지원용의는?

[답 변]

'98년에 도비 1억원을 양양군에 지원하여 「양양국제공항주변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조치한 바 있으며, 양양군에서는 강릉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음. 이를 토대로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개발계획, 도종합개발계획등과의 연계성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장·단기계획으로 구분한 「공항주변개발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이 계획이 확정 되는대로 국책사업과 도 사업 및 군 자체사업으로 구분하여 2000년부터는 연차별로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군도의 지방도 승격의 개별조성 승격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고 추후 승격요인이 다량 발생 일제정비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낙산대교 건설사업은 양양군의 재정형편상 부담이 크지만 도의 재정형편도 어려워 양여금으로 추진하는 지방도사업에 대한 도비부담도 감당하기 어려워 현재로서는 도비 지원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 문]

국립공원에 대한 환경부의 타당성 조사기준안을 토대로 현지 실태조사의 참여여부,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은?

[답 변]

정부는 '97년 8월 1단계로 국립공원구역 타당성 조사기준 작성용역, 2단계로 국립공원구역 타당성 조사용역 구분추진, 1단계 용역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수행하여 그 기준을 마련제출, 환경부는 이 “안”에 대한 토론회와 간담회를 거쳐 「국립공원위원회」를 개최, 심의하였습니다만 주민여론이 높아 6월초 주민의견을 더 수렴한 후 최종 확정할 계획임, 본 도의 현지실태조사에 참여는 1단계기준(안)이 확정 되는대로 2단계 「공원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예정으로 있으며, 도에서는 이 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도내 구역조정대상 지역의 여건과 특수성, 조정 당위성을 반영하는 등 도내의 불합리한 공원구역이 최대한 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질 문]

지방공사 의료원의 의료장비 현대화 방안으로 경영수익 확대를 노후시설 개·보수와 첨단 의료 장비 도입, 보장이 시급한데, 춘천의료원이 매각된다면 그 매각대금으로 도내 도립의료원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재투자 할 용의는?

[답 변]

노후시설 개보수와 첨단의료장비 구입에는 각 의료원별로 20~30억원씩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道 재정형편상 연차적으로 재정융자금 등을 통해 지원해 나가고자 함. 춘천의료원의 매각 대금 재투자문제는 매각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현시점에서 사용계획은 없습니다만 향후, 춘천의료원이 매각된다면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관련법규에 의하여 처분재원을 사용할 계획이며, 보건의료 사업에도 투자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질 문]

일선 시군 보건소의 방역 및 예방접종 약품 소요 물량 파악지연사유는?
· 각종 예방접종 약품을 도에서 구입, 시군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답 변]

이상고온 전염병 발생에 신속대응하기 위해 도에서는 지난 3월 시군 보유 방역약품 재고량을 일제 파악한 결과, 연막살충제, 분무용살충·살균제, 우물소독약 등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 수개월 동안은 약품 부족현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도의 일괄구입은 약품의 안정성, 보관, 배분 유통에 따른 문제점등으로 '98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된 바 있으며, 이미 시군 보건소별 금년도 소요예방접종약품 구매단가 계약이 완료되었고, 필요시 시군별로 적절하게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질 문]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의 확대실시에 대한 견해와 지방비 부담액 전부를 도비로 지원할 계획은?

[답 변]

동해안 지역이 확산추세에 있어 금년 사업물량의 62%인 2만 160ha를 동해안 송림지역에 집중 방제에 주력추진할 계획임. 향후 피해추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효율적인 방제가 이루어지도록

록 하겠음. 본도는 방제량이 과다하고 열악한 재정형편상 시군비 부담이 과중하여 '97년도 중앙에 건의가 받아 들여져 국고지원비율이 타도는 50%본도는 66%로 차등지원되고 있으며, 도 재정형편상 도비로의 지원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나) 教育行政

[질 문]

교원의 정년단축은 교원의 질적향상을 통한 교육력 신장등 당초 기대와는 달리 숙련된 40대 교원의 명예퇴직 증가와 교육부장관 퇴진서명운동 등의 부작용이 있는데, 정년재조정, 유능한 교육전문직의 교장초빙제 및 교육장제 실시, 일선교사의 사기진작 등 특단의 대책이 요망됨.

· 스승의 그림자의 밟지 않는다는 우리의 전통적 스승관을 정립시키는데 대한 계획은?

[답 변]

'99년 교장 자격연수를 통하여 초등 198명, 중등 138명, 총 336명의 신규 교장임용자원을 양성하고 있기 때문에 초빙계약제를 많이 도입하지 않고서도 자체 승진충원이 됨. 임용자원이 부족할 경우 퇴직교장 또는 교육전문직을 교장으로 계약초빙할 수 있음. 교육장, 장학관의 초빙계약은 교육부의 지침에 의거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교사 사기진작책은 능력중심의 교사 인사 체제확립, 교과연구실 및 교원사택 확충 등 여건개선과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교원연구비지원(박사과장 교원 100만원, 모범수업 지도교사 30만원)공문서 감축처리 절차 간소화 잡무경감등 이상적인 스승상 정립으로서 교사자신이 고매한 인격과 품성, 교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 그리고 투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랑과 열정으로 학생지도에 임해야 하고 교사의 가르침에 대하여 학생과 학부모등 교육 수요자들에 의한 스승존경과 신뢰의 풍토조성이 있어야 할 것임. 교육행정 당국과 사회로부터 교원이 보다 안정된 가운데 학생지도 등 맡은바 직무수행에 최선을 노력을 다할 수 있는 폭넓은 의미에서의 근무조건과 교육환경개선 지원이 지속되어야 하겠습니다.

[질 문]

속초관내 소규모학교 통폐합 대상은 본교 13개교, 분교장 4개교가 해당되나 이를 적용시 이농의 가속화로 농어촌과 벽지학교 교육의 황폐화, 학생들의 등하교 불편 및 지역문화공간 상실 문제가 발생됨. 따라서 통폐합은 ① 교육여건 요인으로 교직원수, 학생수, 학급수, 교실수, 교사신·개축년도, 학생수용도 ② 지리적 요인으로 학교소재지, 인근교와의 거리, 겨울철 교통두절 ③ 지역사회 요인으로 지역주민과의 관계, 학부모의 재정적지원은 통폐합에 대한 주민여론



등 충분히 여건을 고려한 종합적 기준을 마련하여 학습권 보장과 지역간 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요망됨.

[답 변]

과소규모 통·폐합은 학생의 측면, 교원의 측면, 교육환경 측면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한 관점에서 그 당위성을 찾을 수 있다하겠으며,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수 100명이하 본교와 20명이하 분교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 통·폐합은 학생의 장래와 지역사회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다는 점을 인식하여 대상학교의 교육시설 여건, 통학여건, 학생 수용전망, 지리적 요인 및 주민과 학부모의 의견수렴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중하게 통·폐합학교에 대하여는 교단의 선진화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특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소규모학교 통·폐합은 단순한 재정적 차원만이 아닌 정상적인 교육실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종근 議員

가) 江原道政

[질 문]

대통령과 도지사의 역학관계를 전제로 한 원만한 국정과 도정 운영에 대하여 강원도의 특성을 살린 저가격·고품질의 서비스 창출방안은?

[답 변]

제2기 민선도정은 출범과 동시에 자체적인 「도정혁신프로그램 35개 과제」를 선정·추진해 오며 「속도경쟁·혁신경쟁」시대에 대응하는 한편, 주민감동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목표관리제」 「실적주의제」 「개방형인사제」 등을 통해 행정의 틀을 「경쟁지향·자율지향·성과지향」체제로 전환하고, 이에 걸맞게 행정조직을 재편하는 등 저비용·고효율의 경영행정을 실현하고 전문성을 증대하는 시책도 병행하고 있음. 이러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기획하고 평가할 수 있는 민간자문기구로서, 21세기 강원도정기획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질 문]

영월댐 불가 표명이후, 중앙정부와의 관계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 변]

이미 발표한 우리도의 입장이 단순히 정부시책의 반대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국가와 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한 취지에서, 우리의 의견을 건의한 것이며, 다른 어떠한 정치적인 고려도 없었으며, 정부에서도 대통령방문시 영월댐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 방침을 밝히신 것으로 보아 우리도의 입장을 심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관련부처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질 문]

「제2의 건국」 운동의 실천방안과 추진경과는?

[답 변]

도에서는 자력갱신, 실사구시 실천의 「새농어촌 건설운동」이나 전도민 관광요원화를 위한 「친절한도민되기」 운동도 「제2의건국」을 접목시켜 함께 발전시켜 나가도록 할 것임. 현재 도·시군 추진위원회(위원수 636인)가 구성되어 위원회 단위로 자체 실천과제를 발굴 추진중에 있으며, 도에서 6월 1일 제2차 추진위원회를 개최 중점 추진과제를 심의·확정할 예정이며, 도시군 추진위원회간에 효과적인 연계방안 모색, 민간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본 운동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질 문]

구조조정과 행정구조 개편에 따른 課내의 담당제도를 계장제로 환원하고 업무도 부여할 용의는?

[답 변]

계제를 폐지하게 된 취지는 과내에서 1계층을 직위를 축소하여 과장중심의 기능수행과 책임을 부여하고, 생산적인 근무시스템을 확보,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폐지하게 되었으며 시행된지 8개월밖에 안된 시점에서 환원은 어렵겠습니다.

[질 문]

행정의 전문성확보를 위한 공직자의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한 대책은?

· 공직사회내에서의 갈등에 대한 조사 실적과 팀웍제고를 위한 조직정비대책은?

[답 변]

민선2기 출범이후 국장급이상 공무원 인사2회는 도조직개편과 교육수료와 입교에 대한 인사로



불가피하였으며, 앞으로 전문성 확보와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가급적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인 사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직장내에는 따돌림 현상은 없다고 생각되며, 갈등에 대한 조사는 실시한 적이 없음. 도에 서는 화목하고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공무원 계층별로 의견을 수렴하여, 직장내에 서 변화 시정 개선해야할 사항 95건을 선정하여 “공직사회 새로나기 실천운동”으로 추진해 나가 고 있습니다.

[질 문]

각종 위원회의 유명무실한 위원회 통합·정비 대책은?
·여성위원수 상향조정 및 해당분야 전문가 위촉의향은?

[답 변]

위원회의 통합정비는 개별법령개정작업이 병행되어야 하므로 중앙부처별 법령 개정작업을 추진 하고 있으므로 그 추이를 보아가며 다각적인면에서 검토하여 위원회의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해 나가겠음, 위원구성과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도정의 전문성을 보완해 주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활동하는 위원회, 일하는 위원회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 겠습니다.

[질 문]

도내 각 지역 특성을 살리는 「3각테크노전략」 중 원주권의 「기술혁신센터」 지정을 받기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은?

[답 변]

원주권의 「원주의료기기테크노파크」 사업은 지역여건에 적합하며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 업으로 장기적으로 연세대학이 기증한 5천평 부지내에 「의료기기테크노파크」 조성 계획아래 연구 및 창업보육센터를 연세대와 흥업보건소에서 운영중에 있음, 앞으로 만평규모로 태장농공 단지내에 제품생산시설을 갖추어 나갈 계획임. 우산공단내 건립중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2000년 6월에 완공되면 창업보육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의료기기 지역기술 혁신센터(TIC)」 설립은 의료기기테크노파크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하 는 사업임. '99. 4. 28 산업자원부와 예산청에 각각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국고지원 신청서를 제 출한 바 있음. 최종선정은 예산확보와 시도의 공모를 통해 지원결정할 것임. 우리도에 설립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사전에 충분한 준비로 만전을 기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 문]

준농림지역내에서 규제한 7가지 제한사항등을 폐지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 변]

도의 조례준칙(안)은 국토이용관리법령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준농림지역의 개발시 검토할 범위 및 절차를 제시한 지침에 불과하므로 시장·군수가 이를 기초로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할 사안이라고 판단됨. 시·군의 형평성 유지 및 혼선방지를 위해 도 조례준칙(안)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고, 조례운용시 발생하는 불합리한 사항은 개정절차를 통하여 보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질 문]

읍면동 행정단위의 건축직 공무원 충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답 변]

읍면동사무소의 건축직공무원 충원문제는 1998년 8월 31일 개정된 대통령령(제1585호)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시장군수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임. 향후 일선 시·군까지 전파하여 건축직 충원과 인사운영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질 문]

공무원 및 민간업체들의 적극적인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정책촉구

[답 변]

공채인원의 2%를 일반 응시자와 분리하여 선발시험을 실시해 왔습니다, 현재 우리도의 전체 장애인 공무원은 적용대상의 2%인 166명을 고용하여야 하나 164명이 근무하고 있음. 도전입 희망자를 파악 충원하고 구조조정후 신규채용시 충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문제는 노동부산하 공법인인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도에서는 관련기업체와 시장·군수에게 관심을 촉구하겠습니다.



[질 문]

장애인 복지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줄일 용의는?

[답 변]

장애인 전화료 감면신청은 주민등록등본과 장애인수첩 사본 각1부를 관할 전신전화국에 제출하도록 되어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또한 한국통신에서는 신분을 확실하게 파악하기 위함임.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통신과의 행정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스톱 실시가 어려운 실정임. 우선적으로 자원봉사자를 통하여 신청업무를 대행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 문]

특별 지방행정 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해 나아갈 계획은?

[답 변]

도내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역의 현안문제와 도민의 이익과 직결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하여 긴밀한 업무협조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 문]

강원중소기업청의 원주이전 및 강원감영부지인 강원체신청의 이전문제 과감히 추진요망.

[답 변]

현재 춘천시 후평동에 소재한 중소기업청을 퇴계동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신축부지를 이미 확보하고 내년에 준공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현단계로는 원주이전이 어려움, 강원체신청은 현재 단계동 택지개발지구내에 신축중인 「원주우편집중국」으로 이전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융·여신등 취급업무의 특성상 청사 이전협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무엇보다 이 문제는 우선 원주시, 시의회, 시민단체 등이 함께 나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도는 복원사업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나) 教育行政

[질 문]

학교운영위원회가 형식적 운영, 민주적이지 못한 위원선출방법, 종래 육성회와의 차이점을 못 느끼는 학부모 시각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의 개선방안과 사립학교까지 학교운영위원회를 확대

하는 방안은?

[답 변]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인사들에게 폭넓은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교구성의 주체임을 확인시켜 주었고,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 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금년도에는 「학교운영위원회 공개의 날」 지정,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평가」, 「학교자체 운영추진 기획단」 구성, 「직무연수과정의 교과목」 개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실행 조치로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육자치의 중심축으로 발전하는 기틀을 다져 나가고 있음. 사립학교는 현행 법상 권장 사항으로 자율적 구성을 지도하고 있으나 24개교가 미설치되어 있음. 한편 관련 법령을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질 문]

학교급식 이용율이 46% 또는 20~30%에 불과하여 기본운영비 확보도 안되며 학교당 평균 1억 원 미만의 시설비 투자로 경량철골 조립식 건물이 설치되어 있고 학교 환경을 저해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현실에 맞고 실현가능한 학교부터 계획성 있게 추진이 되어야 하겠음.

[답 변]

급식소 시설은 기존건물을 활용유무를 실태조사와 학교장 의견을 수렴하여 신·개축등을 검토 하였으며, 유휴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을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증축, 신축 대상학교에 대해서는 경량철골조 구조 등으로 '98년도에 58개교에 대하여 91억 3천 5백만원의 예산으로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설치되어 운영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고등학교 급식이 처음 실시되는 관계로 급식운영 및 이용면에서 다소 부족한 점은 있으나, 부가가치세 면제, 재산 사용요율인하, 자체조리학교 급식운영비 지원 등 학부모 부담 급식비를 경감시키고 양질의 급식이 많은 학생이 이용하도록 지속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 第4次 本會議 質問 및 答辯要旨

1) 인현상 議員

가) 江原道政



[질 문]

공무원 직장협의회 구성을 위해 앞장서서 독려할 의향은?

[답 변]

현재 광역자치단체 2개, 기초 13개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타 시도에 설립된 협의회가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고, 최근 구조조정과 보수삭감 등으로 인해 공직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조만간 우리도에서도 설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 문]

강원개발연구원의 역할과 명칭변경에 대해 사회복지 정책실무국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전문적으로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강개연의 명칭 변경 및 조직보강은?

[답 변]

연구진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98. 12월 직제개편을 단행, 종전의 기획연구실, 지역개발실, 산업경제실 등 3개 연구실을 폐지하고, ① 경제·농림팀 ② 산업·투자팀 ③ 지역개발팀 ④ SOC팀 ⑤ 관광문화팀 ⑥ 환경복지팀 ⑦ 행·재정팀 등 7개 연구팀으로 개편하여 전문성있는 연구개발을 하고 있음. 주신 고견을 참고로 연구원 운영에 보다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질 문]

도내 공공시설, 운동장 및 학교 체육시설 중 49개소에 천연잔디구장 조성계획이 확정되었는지와 일부개소를 선정, 시범운영할 계획은?

[답 변]

사업대상은 천연잔디구장으로 전환이 가능한 공설운동장 13개소 학교운동장 36개소(시군별 2개소) 등 총 49개소를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 추진사항은 공설운동장 3개소, 학교운동장 3개소를 지원 2개소 완공, 4개소는 조성중에 있음, 금년에는 철원공설운동장을 잔디구장으로 전환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질 문]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공무원교육원에 천연잔디구장 설치 용의는?

[답 변]

98년도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국민체위향상을 위해 연차적으로 공설운동장 및 학교체육시설의 잔디구장에 필요한 예산 1억원중 5,000만원을 지원 신청하고 사업이 확정되면 자체부담금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 문]

강원도 체육진흥협의회를 활성화 시켜서 도민 체육정책을 조속히 수립 필요, 이에 대한 견해는?

[답 변]

체육행정의 여건변화에 따라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가 각각 이사회, 대의원총회 등 기존의 의사결정기관을 통해 독자적인 영역을 가지고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성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별도의 체육진흥협의회는 개최하지 않았음. 중앙은 활용가치와 운용실익이 적어 '98. 12. 31자로 폐지됨. 본도 체육진흥협의회도 존치필요 여부를 판단 조치할 계획입니다.

[질 문]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내용에 도민의 체력증진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이 없음. 조례개정 용의는?

· 도 체육회 이사회에서 체육기금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하는 것은 잘못, 이에 대한 견해는?

[답 변]

체육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내용을 보면 제2항 「도체육진흥계획에 의한 사업 중 필요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규정에 의거 생활체육진흥분야에도 기금지원이 가능함. 현재 상황에서 매년 5억원내외의 기금이식만으로는 도체육회 연간 예산액(31억원)도 충당할 수 없으므로, 생활체육협의회는 일반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체육진흥기금이 확대 조성되면 생활체육분야에도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

[질 문]

도민체전은 엘리트 대회, 생활체육대회는 지역문화 행사와 접목 필요, 이에 대한 견해?

· 도민화합 저해요인인 종합채점제 폐지관련 견해는?

[답 변]

별도로 선발전을 갖는 종목을 도민체전에 포함하는 사유는 시합을 통한 경기력향상과 도민화합



차원에서 참여시키고 있으며 종합시상제를 채택하다 보니 1~2개팀만 출전하는 종별이 있는가 하면, 급조팀 참가로 인한 경기수준 저하등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저변확대와 경기력을 향상하고 보람과 긍지를 갖게하며, 타 시군의 팀창단을 유도하기 위해 도민체전에 참여시키고 있음. 종합시상제는 도민체전의 참여 열기를 높이고 경쟁을 통한 경기력 향상과 전종목에 대한 균형적 발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채택하고 있습니다.

[질 문]

생활체육활성화에 많은 투자, 생활체육진흥방안은?

[답 변]

도에서는 동네체육시설, 천연잔디구장조성 등 총 52억2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소프트웨어 부문에서도 생활체육교실운영등의 프로그램운영지원비로 5억4천7백만원 정도를 매년 지원하고 있음. 수립중인 21세기를 대비한 「강원도체육진흥 중·장기계획」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반영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 문]

정부에서는 지자체 직영체육시설을 생활체육단체에 위탁방침과 관련한 도의 정책?

[답 변]

도의 공공체육시설은 기본시설인 운동장·체육관 41개소, 전용시설인 야구장, 빙상장 등이 54개소 등 총 95개소로서 시설관리자인 시장군수가 민간위탁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경기단체등 민간단체에 37개소가 위탁관리되고 있음. 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운동장·체육관을 제외한 테니스장, 궁도장 등에 대하여는 민간위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질 문]

강원개발공사가 운영하는 공영빌딩 운영 전반에 대해서면 자료제출 및 강원개발공사의 설치목적은?

[답 변]

설립목적은 지방공기업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추진코자 '97년 1월 지방공사로 설립운영 하고 있음. 요구하신 공영빌딩 운

여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질 문]

춘천시 근로자복지회관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요청

· 심야전기로 에너지 일부대체 · 연료비 절감효과, 보일러 설치비용 1억 5천만원 지원요청

[답 변]

연료비 절감을 위해 태양열 이용시설비로 교체하고자 '99당초예산에 7천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일조량 부족으로 부적합하여 추진을 보류중에 있음.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비용 1억5천만원에 대한 부족분 8천만원에 대하여는 복지관을 관리하고 있는 춘천시로 하여금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教育行政

[질 문]

경제한과 영향으로 학교운영비와 학부모 후원금이 크게 줄어 각급학교 운동부해체 등 학교체육 전반이 고사도리 우려가 있는바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답 변]

IMF한파에 의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내용을 보면 체육발전 5개년 계획에 의거 '96년부터 매년 4명씩 증원 현재 78명의 코치를 배정 80,125만원 투자, 체육 교구구입 지원비 2억원, '98년 동계강화훈련비 79,800만원 총 241,925만원을 지원함.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소년체전에서 타도에 비하여 열악한 환경속에서 지난해 급부상된 6위 목표를 고수하자는 일념으로 89개교에 각후원의 지원받아 훈련입하고 있음,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에 학교 운동부 육성을 위해서는 대한체육회, 국민체육관리공단, 도체육회의 보다 현실적인 지원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질 문]

학교운영지원비에서의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월정액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

[답 변]

학교운영비를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월정액을 지급한 사례는 없으며 학부모회(육성회)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교원연구비 및 직책수당으로 교사, 교감, 교장에 월 5만원 내지 7만원을 지급하



고, 행정직원에게는 관리 수당으로 직급에 따라 월 3만원 매지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 문제는 감사원 감사결과 시정권고 사항으로 교육부 지급기준 마련을 검토중에 있으므로 교육부 지급기준이 확정되면 추후 조정하겠습니다.

[질 문]

방과후 교육활동 개선 특별교부금 지원이 교육청 및 각급학교에서 지원취지를 위배하여 집행된 사례가 있는지 여부?

[답 변]

특기·적성교육 국고지원금은 인건비(강사료 보전 및 수강료지원)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수강비 지원은 실직자·극빈자·보훈대상자 자녀 및 소년·소녀가장이 특기·적성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에게만 지원토록 되어있음 강사료는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하되 부담이 과중할 경우 50%범위내에서 지원가능함. 본도에서 위배하여 집행한 사례가 있는 지를 자체점검 1회, 감사원감사1회, 2회에 걸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반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음. 특기·적성교육 활동의 2차자체 점검에서도 예산지원 및 집행이 규정대로 지출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질 문]

정부의 세수감소에 따라 학교급식 전면 확대 정책에 많은 차질이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탄력적 대응방안과 중요기관에서의 지원사례

[답 변]

고등학교 급식이 교육부의 국고지원액이 당초예상보다 감소되어 급식운영 및 이용면에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으나, 위탁급식업체의 부가가치세 면제, 행정재산 이용요율 인하, 자체조리 학교에 대한 급식운영비 지원 등을 통한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키고, 식단의 다양화를 통한 양질의 급식을 실시하여 고등학교 급식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고등학교 급식확대에 양양군에서 지역발전과 향토인재 양성사업으로 양양중·고등학교와 양양여자 중·고등학교 편의시설내에 급식소와 식당을 설치중에 있음. 한전화천발전소에서 화천고등학교 식당건립비 8천만원은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2) 이인섭 議員

가) 江原道政

[질 문]

정부 각기관은 정보화망을 구축하고 있어 도, 시군의 전산망에 연결 및 FAX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민원처리 가능, 도의 입장은?

[답 변]

제안해 주신 “종합 합동민원 사무소”설치는 도민만족을 위한 혁신적 고견입니다만 중앙부처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여 중앙부처간 협의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FAX 민원확대등 다양한 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원서비스 헌장」을 공표하고 실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 문]

골프장 회원권에 대해 균형된 지역개발과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골프장 회원권에 대한 재산세 부과요의는?

[답 변]

골프회원권은 재산가치를 판단하기 곤란할 뿐 아니라 현행법상 재산세는 건물, 선박 등 고정자산만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과할 수 없음. 다만 골프회원권과 국유재산의 사용권, 지적재산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각종 무형의 자산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세원발굴 차원에서 다각적인 과세방안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질 문]

지역사 프로그램이 존재하는지와 지역통합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등 지역역사 보급에 적극 나설 용의는?

[답 변]

도에서는 「강원도사 및 왕조실록」을 발간한 바 있고, 시·군에서는 향토지 발간 등 지역역사의 조사·연구등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시·군문화원별로 7천1백만원씩 지원하여 문예학교개설, 유적지 답사와 전시회 등을 실시하여 왔으나 아직 「지역학」정립에는 미흡한 실정임. 민선2기의 출범과 함께 「강원인과 강원문화의 정체성을 밝혀 강원도 세상의 이론적 창출을 도모하고 도민의 정신적 통합을 추구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강원학」의 정립을 제시한 바가 있음. 「강원학」에 관하여는 현재 강원개발연구원에서 '99년도 기본과제로 선정 연구중에 있으며, 연구결과가 나오는대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 강원의 가치와 정체성을 확



립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질 문]

저독성 농약개발과 방제기술보급 방안은?

[답 변]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사업으로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사업 및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친환경 시범마을조성, 친환경 농업직접 지불제 지원사업과 도내 31개 부산물 비료생산 업체에서 축분을 이용한 부산물비료를 생산공급하여 화학비료사용을 줄여나가고자함. 농업과학 기술원에서 저독성농약으로 혼연제농약, 혼합제농약 등을 개발보급 하고 있음. 현재는 농약제조회사별로 개발보급될 것임. 2000년부터 환경농업시범사업을 확대하여 화학비료의 적정사용과 농약의 억제등으로 안전 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 문]

축산관련 조직 효율적 재편 및 자급사료의 개발과 대체 축산의 개발 시급, 도의 방침은?

[답 변]

축산조직은 도를 중심으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특히 국립축산기술 연구소 대관령지소등을 총망라한 강원한우연구회 구성 운영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지역별, 종축별 대표자가 참여하고, 강원대, 상지대, 강릉대축산전공교수 및 축협행정 등이 망라된 강원축산발전협의회를 구성중에 있으며, 앞으로 이를 통해 현장애로를 종합적으로 청취하고 추진 및 협조기관을 조정하는등 축산농가에 종합서비스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기관간 협조와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음. 자급사료 개발시책은 양질조사료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10,875농가에 5,729백만원을 투자하고, 실수요자 초지조성을 위하여 국공유지 신규초지 희망자에 우선임대 초지조성을 확대하면서 기성초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호맥재배 지원을 확대 하는등 조사료 생산 및 이용확대를 위한 행정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 문]

국내·외 수출품목으로 자생화훼 육성방안은?

[답 변]

농업기술원, 고령지 시험장, 한국자생식물협회의, 우리꽃사랑모임등 민관합동으로 지속적인 연구

중에 있고 일부 농가에서는 우리나라의 자생화인 용담초, 개불알꽃, 조팝나무, 작약등을 홍콩과 일본으로 수출중에 있음. 또한 우리나라 자생화를 국내외에 알리고자 금년도에 프랑스 낭트박람회와 국립산업과학관에서 전시회를 통하여 유럽지역에 우리꽃을 홍보하고 있으며, '99강원관광엑스포 행사시 우리꽃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전국 자생화 콘테스트를 개최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판매촉진에 힘쓰고자하며, 2000년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개최되는 일본의 효고현 세계꽃박람회에 참가 우수성을 홍보하고 일본시장의 수출길을 넓힐계획임.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리는 세계꽃박람회(2000. 4. 26~ 5. 7)에 강원도 홍보관을 설치하여 「자생화회는 강원도로부터」 라는 시명감을 가지고 농가소득증대와 연계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질 문]

대규모 해외 농축산단지를 조성하여 인력을 파견하고 '강원도 브랜드'로 역수입, 제3국으로 수출을 도모할 용의는?

[답 변]

제시하신 해외 농축산단지 조성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인 면에서나 투자예산 확보문제 등 검토되어야 할 과제가 많을 것으로 사료됨. 현재 국내 농산물이 외국 농산물과 가격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실정하에서 도내 농업인들의 소득보장면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을것으로 사료됨. 당면한 농정시책으로는 도내산 농축산물의 고급화, 브랜드화를 통한 판로확대는 물론 수출촉진에 더욱 노력할 계획임.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教育行政

[질 문]

춘천, 원주, 강릉지역의 교육여건, 교육청 및 도서관 직제와 구성현황 및 예산 비교시 원주지역 불균형 지원.

- 학급당 수용 인원의 경우 중학교는 2명, 고등학교는 5~11명이 초과되고, 교원 1인당 담당 학생수도 더 많음.
- 일반직의 경우 지원과장이 춘천은 4급, 원주는 5급이고, 직원수도 12명이 적으며 기능직을 포함할 경우 20명이나 적게 구성됨.
- 외형상 원주시 예산이 많은 것은 사학지원비에 의한 것이며, 실제 교육행정비를 보면 강릉보다 9,100만원, 춘천보다 1억500만원이 적게 차등배정됨.



- 춘천의 평생교육정보관은 원주, 강릉도서관보다 2배이상 행정비 예산이 지원되며, 일반직 지원도 춘천이 4명이나 많음.

[답 변]

원주지역의 학급당 학생수가 타시에 비해 많은 것은 매년감소하고 있는 도내의 학생수 감소비율이 춘천이나 강릉보다 원주지역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내년에 남원주중학교가 개교하면 타시와 비슷한 수준이됨, 고등학교는 매년 감소율을 감안하면 증설이나 신설은 곤란하며, 교육수첩의 통계는 제작 과정에서 고교부분이 오류가 발생하였음. 춘천교육청은 지역 특수성을 감안 지원과장을 지방 4급으로 보임하게 됨. 향후 예상되는 지역교육청 구조조정시 지역 및 교육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직 및 보직체계,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임.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을 제외한 기본운영비와 기준성경비총액은 춘천교육청에 42억 1,225만원, 원주교육청 45억 7,283만원, 강릉교육청에 40억 5,760만원을 배정기준에 따라 배정함.

강원평생교육정보관의 정원과 예산이 많은 것은 춘천중앙도서관을 평생교육학습정보기관체제로 확대개편하여 도서관 기능뿐만 아니라 교육자료실 및 문화예술공연장 운영, 교육, 문화, 정보, 자료제공을 위한 전산장비 운영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추가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3) 정인수 議員

가) 江原道政

[질 문]

추경에서 예산반영 기준과 공정성은?

- 실국 당초예산 삭감, 지사선거공약사업 재원전용 사례는?

[답 변]

제1회추경은 당초예산 편성후 중앙에서 내시된 국고보조사업, 지방교부세사업, 지방양여금사업의 변경분을 정리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었고, 기타 도 자체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반영하였음. 일부 실국에 대하여는 기존예산으로 사용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이므로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예를 들면 2종어항 주변정비사업비 4억원을 삭감하여 3종자망 연구비에 1억원, 어구보수 보관장 설치비 1억원, 가리비살포 양식사업에 1억 2천만원, 해변어류 치어방류사업에

5천만원, 어업인후계자대회 참가비에 3천만원에 투자하였습니다.

[질 문]

지사에 대의회 교섭창구개설에 따른 정무부지사 대의회 공식창구 활용 활성화 방안은?

[답 변]

정무부지사 역할과 기능으로 임명배경은 기업활동, 투자유치등 명제적 분야 취약, 엑스포 등 기업, 외국참여등을 위해 기업경영인을 외부에서 채용 지사를 보조하여 예상외의 큰성과를 거두고 있음 대의회 업무는 행정부지사가 수행하도록 조정하고 대의회 홍보업무기능등을 강화하고, 정무적협조업무를 포함하여 지역경제 관련정책등 담당업무가 보다 더 활성화 되도록 의회와 집행부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대의회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 문]

예산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과 타시도 예산확보를 위한 동향 파악내용은?

[답 변]

지난 4~5월중 실국장, 실과장이 수회에 걸쳐 중앙부처를 방문 우리도의 주요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등을 설명하였으며, 대통령께 5월 3일 행정개혁보고회의시 도현안 주요사업등을 건의드린 바 있고, 수시로 중앙부처를 방문 또는 전화로 현안사업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6월~9월까지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예산심의 동향과 정보를 조기에 입수하여 우리도가 건의한 사업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질 문]

중도개발관련 막연한 투자지양, 예산낭비 해소방안은?

[답 변]

만성적자 해소대책은 민간에게 토지를 매각하여 개발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다각적인 투자유치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는 점이라 하겠음. 가장 큰 원인은 수도권으로부터의 접근성이 취약하기 때문이며, 또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대단위 신규투자 사업자가 나서지 않는데 있다 하겠음. 따라서 이러한 취약요인이 해소되면 민·외자의 개발의욕도 되살아 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 문]

강원전문대 재정악화 도비지원 주장근거 및 졸업생 취업대책 방안은?
· 객관적인 전문가 경영진단, 단·중·장기대책 수립은?

[답 변]

설립초기의 모든 도립대학들의 겪는 어려움이므로 교육부에서도 이를 감안하여 개교후 5년간 연 6억원씩 지원해주고 있으며 경제의 호전으로 휴학율이 현저히 줄고 있음. 졸업생에 대한 취업대책방안으로 각학과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취업정보나 안내를 통해 적극 지도하고, 교수들로 구성된 취업보도위원을 활용하여 학생 개개인의 취업상담을 실시하며, 현장실습 등 산·학·연 협약체결을 통해 취업기회 확대계획임. 당초 등록금 세입예상액인 11억5천만원 대비 1억4천만원이 세수에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경상운영비의 절감, 임대료 수입, 공공예금이자 증식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등을 통해 대처해 나가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재정자립을 위한 인력수요가 많은 학과 신설 및 기존학과의 입학정원을 증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고 있으나 도립대학의 성격상 타사립대학과 비교하여 재정자립 부분만을 생각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라 사료됩니다.

[질 문]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 강구 및 시·군자립도 제고의 실질적인 지원방안은?

[답 변]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수의 변동이 거의 없는 우리도와 같은 경우에는 국고보조액이 많으면 자립도가 떨어지고, 적으면 높아지기 때문에 자립도가 문제가 아니라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보통교부세의 증대에 있음. 이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 구성된 「지방세제연구팀」을 통해 강원도의 여건에 맞는 신세원발굴, 지역적 과세기반을 가진 국세의 지방이양 불합리한 세제의 개편등을 연구중에 있으며, 연구결과 실천을 위해 재정책확 세미나, 수도권 행정협의회,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등을 통하여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도 지방세제 개편과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 상향조정(13.27%~17%)등의 지방재정 조정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질 문]

채부액 경감대책 및 세수감소에 대한 확충방안?

[답 변]

세수확충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수도권행정협의회와 같이 자치단체간 공동으로 세제개편을 추진중에 있으며, '98년 12월 전국 최초로 조세전문가가 참여하는 세제개편 연구팀을 구성하여 장기적이고 조직적인 대응을 전개함과 동시에, 외국투자 기업유치를 위해 세제감면 확대, 수수료, 사용료의 현실화 등을 추진하고 있음. 고약·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감소와 함께, 납기의 연장, 징수유예 등 납세자의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 주는 한편 우수시군 및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상과 격려를 병행하여 최대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 문]

지사 포상의 기준강화와 남발 지향 용의는?

[답 변]

그간 민간인에 대한 년도별 포상실적을 보더라도 연평균 5.7%씩 감소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결코 포상납용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도에서는 상훈법과 정부포상업무 지침에 의하여 엄격한 심사와 공적위주의 적격자를 선발하는데,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선발하고 있습니다.

[질 문]

지식정보산업 유치를 위한 강릉 KIST분원 유치 성사방안은?

[답 변]

'98년 정부예산에 기초조사비 6억원확보, 과학기술부 다른지역과의 형평성 등의 사유로 부정적 입장을 견지함, 객관적 타당성 조사후 사업추진여부 결정기로하고 미국 스탠포드 연구소에 조사용역 의료 금년 3월 12일 긍정적 결론이 도출되었으나 최근 정부구조조정과 맞물려 정부차원 조기추진에 다소난색표명, 지역국회의원 등과 공조하여 반드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음, 현재 국민회의 당론으로 확정하여 대통령비서실에 통보하였습니다.

[질 문]

강릉 해양연구소 분소 유치성사방안은?

[답 변]

부지 미확보로 유치여부가 결정되지 못하고 있음. 재원조달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



고 한국해양연구소와 지속적인 협의로 동해안지역에 해양연구소 동해기지가 유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질 문]

지방행정개혁이 구조조정의 진수 판단에 따른 견해는?

[답 변]

행정조직의 구조적 경직성과 법제도 때문에 효율적 목적대로 운영이 어려움.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있음. 하급직 실력, 능력등 감안 과감한 발탁인사, 실국장 간부임용과 보직을 보다 전형적인 인사체계 운영을 구상, 개방형, 투자유치, 외국어 등 몇몇분야는 전문가 영입, 그러나 기존조직과 따로 정원의 인원을 확대 못하고 있습니다.

[질 문]

강원도 관광산업 육성발전 추진현황과 관광객유치 실질적 소득 방안은?

[답 변]

도전역을 4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춘천권등 4개 권역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개발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공공부문에 9천6백억원을 투자기반시설확충, 민간부문 4조 7천4백억원을 투자 관광휴양 시설을 하였고, 참여와 체험, 관광기념품전등의 프로그램과, 행사등으로 관광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실적은 '96년 3,930만명 12,090억원의 관광수입, '97년 4,118만명 12,393억원, '98년 3,836만명(추계치로 예년 수준일것임)

[질 문]

외자유치팀을 도내 시군에도 설치, 「투자환경설명회」 등 입체적인 국제행사 개최 제안에 대한 견해는?

[답 변]

도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투자유치기획단을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외자유치활동을 펼쳐왔으며, 시군에서도 금년부터 전담팀 및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자체적인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음. 도 시군간 정보교환 및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투자유치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제고를 위해 재정경제부, KOTRA등에서 실시하는 각종 투자유치 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등 전문공무원 양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 각지역 주한상공회의소 외신기자클럽, 국내외 기업

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설명회에 도와 시군·민간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내실있는 설명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질 문]

고충민원 증가 이유 및 방지대책, 중앙부처에서 이첩된 분야별 처리현황, 민원처리 소홀 공무원 조치내용은?

[답 변]

중앙정부에 접수되어 도에 이첩된 민원은 '97년 287건, '98년 387건, '99년 159건으로 늘어난 추세임, 그 이유는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생활욕구가 증가하는 반면에 중앙정부에 해결 기대감을 더 두는데도 원인이 있다고 하겠음. 민원처리에 소홀히 했던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97년도에 94명을 문책하였고, '98년에는 69명, 금년에는 12명 등 모두 175명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를 한 바 있음. 중앙정부에 제출되는 고충민원을 줄이기 위하여 민원서비스 현장제 실시 등 다양한 시책으로 고충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 문]

“조례개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과감한 규제개혁 용의는?

[답 변]

도에서는 각종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심사·정비하기 위하여 지난해 5월 20일 교수, 변호사, 경실련, 연구소, 중소기업 관계관 등 각계 민간 전문가 5명과 도의 실국장 5명이 참여하는 「강원도 규제개혁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3차에 걸쳐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 148건을 완전히 정비하였고, 조례·규칙등 정비대상 362건중 202건은 폐지 또는 완화하기로 심사한 바 있음. 99년 5월 현재 75건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27건은 법 개정추진중이거나 조례 개폐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질 문]

실질적인 남북강원교육 성사를 위해 북측에 공식제안용의는?

[답 변]

북한에 우리도의 특산물인 옥수수과 감자를 심어 식량난 극복과 통상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남북교류협력의 여건이 성숙될 경우에 대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북측에서 문을



열고 있는 부분적인 민간교류나 경험에 있어서도 지난 5월 14일 첫출항에 나섰던 “풍악호 입항 거부”에서 보았듯이 실질적인 교류협력에는 많은 장애요인이 잠재해 있다고 생각되며, 장기적으로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질 문]

강원도 이익창기기에 전력해야하는데 지사의 입장은?

[답 변]

중앙부처 방문횟수는 계획적, 개별적, 비공식적으로 담당 실국장을 대동하고 타도보다 많이 갔으며, 그간 활동으로 상당한 이슈, 주민숙원사업을 관철내지 해결함, 인기주의 선심행정, 치적 홍보등등에 대하여는 이기회에 분명하게 다짐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도지사가 되고 싶은 마음은, 선출직 공무원으로써의 욕심이겠지만, 오직 인기만을 위해서 큰일을 그르치거나, 정도에서 어긋나는 행동을 할 만큼 어리석지는 않으며, 공직자로서의 「綱常과 倫紀」를 무엇보다 소중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 教育行政

[질 문]

교사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교원양성기관 설치 추진상황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중 국가관, 민족관 등 확고한 사상과 21세기에 대한 패러다임이 풍부한 적임자 선발용의. 선발방법은?

[답 변]

교육부에서 초등교원 양성기관 설립이 승인되면 춘천교육대학교와 선발과정, 교육과정운영 소요경비, 교육기관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 교원양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선발방법은 일차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선발시험을 거치되, 특히 면접을 통해 초등교사로서의 교직적성 국가관, 세계관, 미래관 등을 검증 확인하는 절차에 의거 철저를 기하겠음. 춘천교육대학교에서도 본도 교원수급의 어려운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춘천교육대학교부설 초등교원 양성소 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 문]

집단 괴롭힘에 대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답 변]

보이스카우트와 걸스카우트 같은 건전한 청소년 단체활동을 활성화로 공동체 생활상은 기회제공, 상담쪽지 4만매 배부, 7개시 552명 상담자원 봉사제운영, 학생고충신고 전화가설 등, 학생자치회 중심의 대토론회, 모의재판 경연대회, 학생자율 선도단 운영, 활성화에 힘쓰고, 강원도 경찰청, 춘천지방검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지도 체제를 강화하고,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 학생자율자정활동 등 다양한 방법의 지도체제를 강구하겠습니다.

[질 문]

결손학생의 증가에 따른 심각성과 치유책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감께서 정적으로 성과 검증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하는데 받아들일 용의는?

[답 변]

결손학생 생활지도의 주안점을 이들 대부분이 ‘사랑의 결핍’의 상황에 있기 때문에 본도교육청에서는 ‘사랑 펼치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중·고등학생 6,185명이 결연을 맺어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었으며, ‘원 플러스 텐’이라는 상담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교사가 결손학생이나 선도대상 학생을 10명씩 상담관리하는 제도를 적극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결손학생이 바르게 성장하고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수업료 감면혜택을 주고 있으며, 현재 13,400명에 달하는 초·중·고 결손학생 가운데 30.4% 이르는 생활보호 대상자 및 극빈자 자년 4,080명에게 연간 24억 3천 2백만원의 급식비를 지원해주고 지역별 후원인사와 사회봉사 단체, 종교단체와 자매결연 대리부모와 결연학생이 서로 사랑의 편지쓰기, 봉사단체 사회지도자와의 연계한 결손학생을 위한 ‘사랑 펼치기 운동’전개를 제안하심에 깊이 공감하며 그 취지나 목적에 적극 동의를 표하며, 현재 유사한 ‘사랑잇기 운동’을 춘천지검에서 범도민적으로 추진하면서 본도 교육청도 적극 동참하여 결손학생 돕기 운동을 펴나가고 있는바 연계추진 노력하겠습니다.



5. 第106回 定期會

가. 第2次 本會議 質問 및 答辯要旨

1) 임상규 議員

가) 江原道政

[질 문]

평소 인사행정철학 및 향후 인사방향?

- 주요인사 조정이 도정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며 전문행정 분야에 대하여 행정직급을 줄이고, 전문분야 보좌관제 신설은?

[답 변]

조직의 특성 때문에 경력, 경험도 중요하며, 무엇보다도 성실도, 책임감, 능력과 실적평가에 의한 의사반영이 보다 중요시 되어야 한다는 점, 시대환경 변화에 따르는 전문적인 역량이 가미, 확대가 인사철학이라 생각합니다. 실국장 중심의 「인사위원회」 구성운영, 「공무원 개인별 업무실적 평가제」를 실시하여 50%까지 인사에 반영, 전문성이 필요한 특정분야는 외부전문가로 적절한 범위내에서 보완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분야 보좌관제」 계약직 제도등을 보완·발전시켜 보겠습니다.

[질 문]

관광EXPO 향후 구체적인 추진(구상)계획은?

[답 변]

주제관과 상징탑을 중심으로 시군의 관광정보관과 그에 필요한 시설일부등을 구체적으로 기획하여, 관광홍보와 영구적인 엑스포 기념사업과 함께 국내·외관광 정보교류 또는 마케팅까지 겸할 수 있고, 이벤트 공간마련등 이 지역을 「강원관광 종합정보 교류센터」로 추진하겠습니다.

[질 문]

관광산업의 개발과 환경보존 조화, 견해는?

[답 변]

관광시설 개발에 대하여는 먼저 엄격한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오폐수 등 오염원을 제거하

고 경관형성을 중요시하며, 「관광입도」를 목표하고 있는 우리도로서는 경관형성이 더욱 중요하므로 여기에 중점을 두어 ①경관형성에 관한 검토기준 매뉴얼을 만들어 일관된 기준을 적용 ②시뮬레이션 기법을 도입하여 기술적으로 관광시설들이 경관과 조화되고 미관이 고려되도록 권장, 이를 위해 경관형성조례를 제정 모든시설이 관광과 연관되도록하며 경관형성에 맞추어 계획되고 개발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질 문]

자연휴식년제, 낚시금지구역 확대등 시책 추진은?

- 관련조례등 개정(제정), 적극적·체계적관리

[답 변]

'97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산간계곡자연휴식년제」시책과 낚시금지·제한구역도 도내호소를 중심으로 매년 확대 추진해오고 있음. 1급수 유지를 위해 물관리 지리정보시스템구축, 낚시 면허제 도입 연구 등 시책 추진중임. 자연환경보전조례 및 경관형성조례를 제정중에 있음. 수질관리에 위해 소양강 등 20개소 주요하천 상류지역의 환경기준 및 방류수 수질기준(30→20PPm)을 강화해 나갈계획을 연구 추진중입니다.

[질 문]

복지행정에 대한 견해와 추진의향은?

- 사회복지정책 철학과 장·단기 계획
- “홍천보건복지사무”시범사업 평가결과와 획기적 사업내용
- 우수사업 전시군에 추진계획

[답 변]

시대변화에 발맞춰 도에서는 '91년부터 사회복지전문요원 104명을 채용하여 시·군·읍·면·동에 배치행정의 전문성을 살려오고 있음.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위해 내년 252명 확충 사회복지 전문성 강화해 나가겠음. 금년내로 장애인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삶의 질향상 시책에 최우선을 두고 그 실천 3대원칙 ①외롭지않게 ②불편하지않게 ③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할 수 있도록 추진. 도는 '98~2002년까지(5년계획) 「강원사회복지종합계획」을 마련 사회복지서비스 확충, 복지전문인력의 확보, 민·관파트너쉽의 연계화, 복지정보망의 구축, 수요자본위의 복지시설 체계구축 복지재정의 획기적인 확대 등에 장기적인 정책목표를 두고 착실히 추진해 나갈것임. 홍천군 시범보건복지사무소 운영은 '95년 8월 2일부터 지역주민



들에게 보건과 복지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일환으로 시작됨.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거 보건소에 사회복지요원 11명을 전담배치하여 보건의료복지와 노인·아동·장애인·모자복지는 물론 저소득층을 위한 지역복지를 추진해 오던중 복지행정조직 이원화, 수행구역의 광범위와 재가복지 전담요원이 배치되지 않아, 방문간호가 어렵다는 이유로 '98. 9. 10. 홍천군의 직재개편시 본청 복지사업과로 흡수 운영함으로 국고지원이 중단되었고 금년 12월중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시범복지사무소를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면시행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복지대상자 관리 전산프로그램은 행정자치부에서 개발중에 있습니다.

나) 教育行政

[질 문]

부족한 초등학교원 양성문제 중등교사 자격소지자의 초등학교사 발령은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한 정책, 단기보수교육을 통한 초등학교원 정규자격증을 주는 초등학교원 수급정책에 대한 교대생들의 반발문제

- 다양성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시대적 요청에 반하는 교원수급정책의 문제
- 이들 문제에 대한 대책은?

[답 변]

부족교사 110명은 경륜을 갖춘 퇴직교원 임용,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478명이 춘천교육대학에서 교육대학 교수들로 질높은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대생반발 문제는 우리교육청, 교대 연수원 관계자와 교대생들이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되어 초등교육을 함께 걱정하며, 수용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질 문]

최근 5년간 10억원 이상규모의 신·개축 시설공사의 부실문제는?

- 총 40여건 가운데 23%가 하자 또는 부실시공된 사유규명
- 지붕누수, 균열 등 하자부실공사 : 9건
- 공사중 설계변경으로 5건에 3,400만원 추가집행
- K고 복지관 부실공사, 44억원이 추가 집행된 K문화회관
- 시공시 지반침하 등에 대한 일부공법 변경으로 6,500만원이 추가 집행된 Y초교

[답 변]

춘천고 복지관 신축공사는 창틀과 접하는 벽면사이 균열, 강원교육문화회관 천장을 앵글위에

유리를 설치하고 누수방지를 위하여 시공된 코팅부분에서 일부누수현상이 발생 계약조건에 따라 각각 시공회사가 보수 완료조치함. (시공사 부도시 보증회사 시공)
예맥초교 기초파일 공법 변경예산 추가집행은 주변이 주택지로 당초 향타공법으로 설계하였으나 주민들의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고려하여 공사비가 추가 소요되는 오거파일 공법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질 문]

학교급식의 위생관리문제로 조리종사원의 건강진단 미 실시
· 위생관리실태와 음식물 찌꺼기처리 실태
· 직영화를 통한 예산절감
· 이들 문제에 대한 대책

[답 변]

조리종사원 건강진단을 제때에 실시하지 못한 학교는 보건소에 의뢰하여 장티푸스, 결핵, 전염성피부질환, B형간염 검사를 실시하여 건강한자가 조리에 임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학교별로 잔반통 없는날 지정운영, 환경 및 영양교육 실시, 적절한 급식량조리 및 배식등의 시책추진 감량화하여 비용도 적게들며 이용율도 자체조리를 선호하므로 자체조리급식학교에 운영비 및 인건비 511백원의 예산지원 적극권장 유도하겠습니다.

[질 문]

강원과학고등학교 학사행정(모집 등) 운영문제
· 교육부의 비교내신제 발표이후 입학인원이 모집정원에 미달되어 학교운영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답 변]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하여 수학·과학경시대회, 과학전람회, 컴퓨터경진대회, 컴퓨터창의성대회등에서 입상한 학생들에게 가산점부여 특별전형 선발함으로 재능과 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음. 또한 영재교육의 우월성을 추구하기 위해 정원 감축운영(1학년의 정원 2학급 46명)하고 있으며 과학연재 교육과 과학동아리 활동을 적극 권장하여 경시대회, 과학전람회등에 다수 입상토록하여 그 실적으로 진학학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원 조기진학과 과학특기자 무시험전형 등으로 대학진학관련 과학고의 운영문제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정연대 議員

가) 江原道政

[질 문]

도현안문제가 신속·지속적인 대응이 정치력 부재로부터 기인한다는 평가의 견해는?

[답 변]

국가기관·자치단체 수장역할은 정치적, 소속정당에 치우쳐 입장대결하는식으로 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일의 성격상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지역일임으로 대정당과 관계없이 일의 성취를 위해 일하고 있음. 실제 일을 하는데는 그 방법은 도지사의 지적 전문 역량과 도가 갖고 있는 논리·타당성 그리고 그와 연관있는 그룹(주), 국회의원, 도의원, 시군자치단체장등, 주민단체들과 이익집단 등과의 연계작용들이 있을것임. 만일 도지사의 직무와 역할이나 지역발전 문제가 정치력·정당소속에 따라 좌우되고 달라진다면 그런 정부는 잘못된 정부일 수 밖에 없다고 봄. 현정부는 그렇지 않아 대통령께서는 국정과 자치행정은 국가발전의 골간을 이루는 양대 축이므로, 어느 자치단체나 지역에 대해서도 편견과 차별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하셨고, 또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고 소속정당에 관계없이 지원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도민의 입장에서 「강원도의 가치와 이익」을 분명히 챙기고 「강원도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도지사-그 본질에 입각해서 제나름의 중앙과 역량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 문]

솔선하여 「제2의 건국운동」 주창하지 못할바에야 욕망욕으로 위원회 만들필요가 있는지?
· 정부방침이니 어쩔 수 없이 만든것인지 견해는?

[답 변]

시정연설에서 밝힌 환경운동, 문화운동, 사회복지운동 등은 그 내용에 있어 「제2의 건국운동」 운동 중앙추진과제인 21세기 문화시민운동과 우리도의 따뜻한 정나누기운동 등 의식·생활 개혁과제 일맥상통하는 것들이고 구체적인 표현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제2의 건국」 운동의 기본취지와 크게 다를바가 없습니다.

[질 문]

공정성 확보 위해 도금고의 선정 및 운영에 있어 금고관리 조례제정, 민의수렴 용의는?

[답 변]

도지사 고유권한이라고 도지사임의대로 혼자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님. 로비는 누가 누구에게 로비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음 도금고 선정문제는 강원도 여건과 특성과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이해 가도록 선정할 것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 문]

지역경제활성화관련 지역재래시장 및 중소기업업체 지원대책 부식등 관념적 구호탈피, 필요조치와 대책이 절실하며 관급공사발주, 조달물품구입등이 지역경제 기여여부 및 지역유통산업에 대한 문제는?

[답 변]

유통시장의 변화속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미약한 재래시장등 중소기업업체의 활성화에 제고가 필요함. 소비성향 변화에 따른 상인들의 의식전화, 협업화, 조직화에 의한 가격경쟁력 제고 지역실정에 맞는 시장재건축·재개발사업에 역점을 두고 점포의 현대화 추진중이며, 유통전문연구기관과 연계하여 춘천 등 3개지역 중심으로 설명회 개최, 원주 중앙·강릉 서부시장 경영진단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지역실정에 맞는 차별화·전문화된 시장으로 조성할 계획임. 내년 시범시장선정·특성화 시장의 기본모델 개발 활성화, 각계 전문가로 협의회를 구성 재래시장 재건축건설팅 자문단으로 활용, 우리도의 '99년도에 집행한 공사 및 물품구매는 총 225건 53,194백만원중 도내업체가 수주한 실적은 184건에 25,665백만원으로 금액대비 48.3%임. 도발주 사업에 도내업체 256억원을 수주토록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보호육성에 크게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질 문]

인사원칙을 비롯 참모진에 업무분담 폭을 넓히는등 지사는 인사문제에 있어 탕평책용의는?
- 대내적인 문제는 참모진에게 맡기고, 대외적인 일에만 몰두용의는?

[답 변]

특별한 제약이 없고 역량면에서 차이가 없다면 가급적 지역간의 고른 배분 임용이 좋을것임. 그렇게만 될 수 없는 것이 행정조직의 특성임. 의원님께서 지역편향인사 사례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확하게 지적해주시기 바람. 이제는 이러한 막연하고 편향된 인식과 틀에서 벗어나야 할 것으로 생각함. 도정수행에 있어 대내·외적 문제는 그 본질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어떤일은 대외적 또는 대내적 어느것은 도지사, 어떤일은 국장·과장이 분담할



일이 있고 실국장 책임주의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함이 적절치 않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질 문]

강원개발공사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감사(11. 30)시, 잘못된 투자나 사업으로 인해, 적자규모가 증가, 폐지주장 제기

- “적자해소를 위한 다양한 대책마련중 주택사업이 성공을 하면 흑자전환가능” 답변관련
- 구체적인 주택사업의 규모 및 대안은?

[답 변]

본 공사는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할 특수한 상황에 있으며, '97년 1월 설립 이래 지난해까지 5억여원의 흑자를 기록했음. 일부사업의 문제로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선폴리머 공장은 지난 10월 14일부터 공장운영의 기술능력과 경험등을 구비한 민간위탁운영하고 있으며, 홍천의 농특산물 유통센터는 경쟁력등 문제가 있어 2000년부터 민간 위탁 또는 매각등 과감히 정리하고, 공영빌딩 관리사업, 카지노사업참여, 주택건립사업, 해외 무역사업, 개발택지분양사업 등 흑자가 예상되는 5개사업에 전력을 기울여 경영개선 해 나갈 계획임. 주택사업은 고한지역의 900세대의 아파트건립 사업은 공기업으로서의 세제감면 혜택을 받는 등의 장점이 있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질 문]

도지사 업무추진비 편성방식과 규모,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용의는?
·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계기 되도록 조치

[답 변]

업무추진비를 공개 못할 이유가 없고 그 준비를 하고 있음 다소 증빙처리 등 시간이 걸리겠으나 충실히 준비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음. 그러나 보기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보아짐. 그러나 마치 이것이 전체적으로 베일에 가려있고 의혹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취지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 教育行政

[질 문]

전교조 강원도지부의 교육현안 설문조사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 단체교섭을 위하여 도내 2천명의 교사들에게 설문조사한 14개 항목의 내용과약 여부 및 이들 14개 항목의 내용

[답 변]

설문조사내용은 교원의 임금, 근무환경, 직장의 안정성 여부, 사회적 지위에 대한 만족도 등 복지에 관한 부분과 교육개혁, 교육정책 등의 현안사항이 포함된 14개항으로 구성되어 이중 임금, 근무조건 등 3개부분은 교육부와 교원노조간 대화진행중, 단체교섭통해 원만히 해결방안 모색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교사의 질향상 방안은 수업시 간수 불균형 해소, 현직교사 부전공 자격연수 확대실시하고 교과 일반연수기관의 연수운영 전반에 대해 실태분석실시, 연수프로그램 질향상, 교원 해외연수 확대등 교원 자아실현 기회확대, 교육력 증진을 위한 자율연수 확대,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과 석·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행정력 편의제공으로 사교육비 경감과 학습의욕 충족을 위한 특기·적성교육은 예·체능 전교과 영역에 걸쳐 국고 및 자체예산을 지원운영하며, '99전반기 운영상 문제점 개선방안을 분석운영해 나아가는 등 수행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3) 김규세 議員

가) 江原道政

[질 문]

야당출신 도백으로서의 입지와 향후 정치철학은?

[답 변]

만일 도지사의 직무와 역할이나 지역발전 문제가 정치력·정당소속에 따라 좌우되고 달라진다면 그런 정부는 잘못된 정부일 수 밖에 없다고 봄. 현정부는 그렇지 않음. 대통령께서는 국정과 자치행정은 국가발전의 골간을 이루는 양태축이므로 어느 자치단체나 지역에 대해서는 편견과 차별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하셨고 또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고 소속정당에 관계없이 지원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도민의 입장에서 「강원도의 가치와 이익」을 분명히 챙기고 「강원도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도지사-그본질에 입각해서 제나름의 중앙과 역량을 통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질 문]

「평화통일을 대비하는 남북교류 기반구축」 계획인 경원선 복원, 금강산복원, 중앙고속도로 철



원연장 등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은?

[답 변]

경원선 복원은 '91년도에 494백만원으로 실시설계완료, '98년도까지(23억원) 용지매입 151천 평 방미터매입(91.5%), 금강산선 복원은 금년말까지 13억원 투자실시 설계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99. 6. 24 환경영향평가설명회, 조기착공을 위해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음, 춘천~철원간 중앙고속도로 연장사업은 기획예산처의 투자 우선순위가 낮아 다소지연될 것으로 예측됨. 통일대비 차원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부각시켜 도로공사의 긴밀히 협조하여 2000년 예산에 60억원 반영 타당성 조사 용역과 기본계획설계용역까지도 착수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음.

[질 문]

관광 EXPO장인 속초 청초호주변 효율적 활용

- 상징탑, 주제관등 영구시설물 기념물적 역할부여
- 장·단기계획등 구체적, 거시적인 향후견해는?

[답 변]

주제관과 상징탑을 중심으로 시군의 관광정보관과 그에 필요한 시설일부 등을 구체적으로 기획하여, 관광홍보와 영구적인 엑스포 기념사업과 함께 국내·외국관광 정보교류 또는 마케팅까지 겸할 수 있고, 이벤트 공간마련등 청초호유원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이지역을 「강원관광 종합정보교류센터」로 추진하겠으며, 앞으로는 규모와 관계없이 관광과 관련된 Fair(농산물공진회, 품평회)형식의 이벤트-세계관광민속예술전, 세계관광 기념품전, 관광음식품전 등을 매년 일정기간 연속적으로 개최하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질 문]

공직사회 구조조정으로 “사기양양 및 처우개선”종합적 대책과 그 견해는?

[답 변]

「도민통합」의 기조아래 지연, 학연등을 철저히 배격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통하여 음지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발굴, 우대하는 「능력」과 「실적」중심의 성과주의 인사를 시행하고 있음.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5, 6급 복수직급제의 실시와 총정원 범위내에서 6, 7급 공무원의 직급확대방안을 ('99. 3. 27 - 행자부, '99. 5. 7 - 시도 지사회의)에 걸쳐 중앙정부

에 강력히 건의한 결과 6급과 기능직 7급 정원의 일부를 늘리고 8급이하 하위직 정원의 일부를 줄이는 내용의 정원조정의 12월 중에 이루어지면 6급이하 하위직공무원의 연쇄적인 승진을 통하여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 문]

경지정리사업 보조금 지급단가가 획일적 적용되는 등 기준단가 초과소요분을 차등적용 지원방안 강구는?

[답 변]

중앙지원 예산단가를 우리도의 특수성을 감안 상향지원 되어야 한다는 것을 중앙에 수차례('95~'94년까지 12회) 실제 설계 소요 사업비의 80%, 또는 지역별로 차등지원하여 주도록 건의하였으나 현재는 농림부로부터 지방비의 부담경감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단가 현실화와 보조율 상향조정을 위하여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하겠다는 관계부처와 계속협의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음. 본 도에서는 단가 현실화가 관철되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질 문]

철원 상노~외촌간 국도승격 확·포장공사인 “군도와 농어촌도로”로 자체시행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도차원의 추진상황과 대책요함.

[답 변]

'98. 8. 21부터 국도승격을 각종 채널을 통하여 여러차례 건의하여 건교부에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도로법에 의거 국도 노선지정령 및 국가지원지방도 노선지정령의 빈번한 개정등으로 인하여 수시로 승격하기 곤란하다는 건교부의 답변을 받은바 향후 일제 정비시 승격 검토될 것으로 알고 있음. 현재로서는 도재정이 어려움에 따라 도비로 4차선 확, 포장은 곤란하므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나) 教育行政

[질 문]

교원정년 단축과 명예퇴직등으로 인한 초등교사의 부족현상과 교원명예퇴직수당 재원확보 문제는?
· 교육부의 초등학교 부족교원 충원을 위한 보수교육 방침천명과 이에 따른 교대생반발, 그리고 보수교육 1회한정 등 표류하는 교육부 정책에 대한 도 교육청의 대책



- 교육부의 명예퇴직수당 국고지원이 일부지원에서 전곡시·도 교육의장 협의회 반발로 전액 지원토록 변경되는 등 흔들리는 교육정책에 의해 교단도 동요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책과 교육감 의견은?

[답 변]

부족교사 110명은 경륜을 갖춘 퇴직교원 임용,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478명이 춘천교육대학에서 교육대학 교수들로 질높은 보수교육중임. 이 교육은 1회에 한하고 교대생반발 문제는 우리교육청, 교대 연수원 관계자와 교대상들이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되어 초등교육을 함께 걱정하며 수용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고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수당 부담금은 총 5,401,800만원 책정됨, 재원확보 방안은 재정융자특별회계융자금 2,442,500만원, 은행 차입금 2,959,300만원 모두 기채충당, 이에 대하여 국고에서 원금까지 전액 지원한다는 설이 있습니다만, 이 또한 불투명합니다.

스승존경과 교원 우대 분위기 조성, 각종 연수·연찬회를 통한 교육애와 사명감 고취, 박사학위과정 연구비지원, 현장연구교사제 운영 등 행정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질 문]

청소년 수련활동에 따른 안전대책 문제로 지난번 경기도 “씨랜드 사건”등을 거울삼아 각급학교의 야영 및 수련활동과 관련하여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각종 수련시설의 철저한 안전대책 점검 실시와 일부학교에서 이용하고 있는 사설 수련시설의 안전사고등 이에 대한 종합적 대책은?

[답 변]

수련·야영장은 대부분 폐교분교를 개·보수하여 활용한 시설이기 때문에 지역교육청 지원과 관리담당부서와 시설부서에서 정기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참사 전후 각종 수련야영 활동장의 시설점검 및 보완을 지시하였고,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 이후 지역교육청 및 단위학교 별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토록하여 훈화, 시청각 매체교육, 토론회, 캠페인을 전개하여 안전의식을 지속적으로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질 문]

도내 농·어촌 및 벽지학교 시설과 환경이 일반행정기관보다 낙후되어 있으며, 특히, 재래식 화장실은 보건·위생문제와 더불어 악취와 공포감 조성등으로 어린 학생들의 정서발달을 저해하고 도내 각급학교의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답 변]

벽지학생들이 도시학생들과 비교해 소외감과 열등감을 갖지 않도록 새로운 교육과정에 알맞은 현대화된 교육기교재의 균등한 배분 등 지역적 배려에 힘쓰고 있습니다. 수세식으로 개량하는데에는 그 지역의 급수원과 오수처리시설 및 배수로 등 주변여건이 충분히 구비되어야 하고, 95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산간 오지의 수세식개량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교육환경개선 차원에서 여건이 갖추어진 학교부터 개선해오고 있음, '96~'99년까지 19개교를 개량하였고 2000년도에 7개교 15개동을 123,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4) 이상구 議員

가) 江原道政

[질 문]

내륙산간지에 대한 균형적 자원 배분정책으로 대체개발과 주민소득증대, 농업과 산업대책 제시 하시기 바랍니다.

[답 변]

강원도전역을 「공간발전의 틀」로 구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균형 발전전략추진으로 「강원 7+3플랜」 개발전략과 투자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고 있음. 홍천은 춘천~원주축 「수도권 1일 산업·휴양벨트」 조성계획과 상대적으로 개발이 뒤처져 있는 「백두대간 축」에 대한 종합 개발 전략등을 수립·추진중임. 도내 「2시간대 축」에 대한 종합개발 전략등을 수립·추진중임. 도내 「2시간대 생활권」 구축에 목표를 둔 「길」 전략으로 광역교통망확보를 위해 절대 필요한 동서고속도로 건설, 국도 44호선 확·포장 사업등을 역점적으로 추진중임. 이 지역의 대체농업 등 특화산업 유치조성을 위해 「수도권 1일 산업·휴양벨트」와 「백두대간 종합관리계획」에서 산업 각부문별로 수요 추진계획과 중·장기적으로 전원생태도시 건설·자연환경 연구공원 조성사업등을 도정 역점시책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 문]

수도권 맑은물 공급위해 한강상류 개발규제에 따른 물값 받아 청정산업 개발, 오폐수 정화시설 운용 등 구체적인 계획은?

- 물값중 도의 몫, 시군 청정산업과 균형적 배분
- 북한강·남한강수계 청정산업 개발, 지원등



[답 변]

한강수계 하류지역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한 '99, 2000년도 한강수계기금은 총 2,150억원으로 하수·분뇨·축산폐수 공공처리장 등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에 1,026억원, 토지이용 규제지역 주민지원 사업비로 배정된 700억원은 '99년도 수도법에 의거 지원정산된 34억원을 제외한 666억원을 시·도별로 배분하기 위하여 토지이용 규제면적, 인구수 등을 민간인이 참여한 정밀조사를 진행중임. 수변구역 토지매입비로 128억원이 배정됨. 청정산업 등 기타 수질개선 사업비로 배정된 296억원은 상수원관리, 환경기초 조사비등 77억원을 제외한 219억원을 시·도별로 배분할 계획입니다.

- 강원도 몫으로 배분이 확실한 기금은 홍천·횡성군 등 10개시·군의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240억원, 운영비 90억원등 총 330억원임
- 수질개선사업에 포함된 청정산업은 춘천·원주시를 중심으로 오·폐수가 배출되지 않은 전자, 영상, 애니메이션, 의료기기 제조등의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 시도 실무협의회를 거친 후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사업계획 등을 검토·협의를 한 후 해당 지역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도는 환경친화형 청정산업 육성에 우선을 두고 각종 규제로 인한 보상차원에 청정산업비 최대확보 노력을 기울려 나가겠습니다.

[질 문]

동서고속도로 정부투자로 건설할 것을 제기 용의는?

[답 변]

IMF등으로 민자유치사업 구간인 춘천~서울 구간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여러차례 건의한 결과, 국가사업으로 전환이 가시화 되었음. 따라서 건교부에서 2000년도에 춘천~서울 간 66.5km는 기본설계 용역을 춘천~양양간 92.1km는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2000년 예산에 110억이 반영되었습니다.

[질 문]

신도시 건설계획 확실한 마스터플랜 제시는?

[답 변]

「전원생태도시」는 21세기 최대 가치인 쾌적한 환경에 중점을 둔 도시속에 농촌과 산촌이 조화된 도시를 건설하여, 삶의 질을 추구하는 탈서울 선호계층을 수용함으로써 도내 중부 내륙권의 거점도시를 조성하는데 있음. 지난 해까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완료, 현재 국내외

전문회사에 입지별 개발여건분석 및 기본계획구상 등의 용역과 항공지형 측량용역을 진행중에 있고, 건교부에서 다양한 형태의 도시개발이 가능한 「도시개발법」의 제정, 환경친화적 생태 도시를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중앙정부가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인 「도시계획법」 개정중임. 후보지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는 관련법규 정비되고 정부정책 분명하게 확립된 후 시범사업, 국고지원, 민간투자, 외국자본 유치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함과 충분한 준비를 위하여 지연되고 있음. 주요 접근망인 중앙고속도로 건설과 4번국도 4차선 공사가 완성되는 시점 등 제반여건 성숙단계인 2000년 하반기 내지 2001년도 상반기 정도 기준으로 홍천·횡성지역 일원을 대상으로 확정할 계획임. 댐건설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질 문]

폐광지역 대책으로 “강원랜드”산자부의 모든권한 이양받을 대책과 관광개발분야 민자유치 부분 미흡, 향후대책은?

· 자원활용계획등 소득향상을 위한 마스터플랜

[답 변]

카지노사업은 폐광지역개발사업의 핵심사업으로 반드시 성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산업자원부는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차원과, 강원도는 지역경제 회생차원에서 그리고 강원랜드는 카지노리조트의 완벽한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3자가 서로 협력하면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민자유치 부진이유는 접근성 취약 등 투자여건이 열악한 면도 있지만, IMF관리체제하에서 투자분위기가 위축되어, 우수한 민간자본의 참여가 저조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최근 국가경계가 회복단계에 있으며, 특히, 민간투자자들의 행·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임.

카지노 관련 지역주민 소득 연계방안으로 개발사업은 주민소득과 직접 연계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민자사업 시행자에게도 지역산품 우선구매, 지역주민고용, 지역업체 하도급 등 개발사업 이익이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 문]

제2임산물 종합유통센터 도내 유치전망과 견해는?

[답 변]

제2임산물 유통센터는 어떠한 경우라도 당연히 강원도에 유치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의 논리와 명분으로서, 지난 11. 1일 전국 임업관련 18개대학 교수 108명이 연서로 「강원 영동권」에 건



립을 촉구하는 견해는 표명하였고, 11. 15일 경실련·환경운동연합등 32개 시민단체 성명발표, 강원도의회 대표단과 시군의장단(건의문 채택) 중앙방문등으로 전도민이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도민의 단합된 힘이 헛되지 않도록 꼭 본도에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 문]

광산개발 빙자 산림훼손 현황 및 불법 채석판매 행위에 대한 견해는?

[답 변]

도내 쇄골재를 생산 판매업에 참가하고 있는 업체는 6개업체이며, 광업법 제47조에 의하여 인가받아 채취하는 광물의 사용 용도에는 제한규정이 없어 채광한 광물을 쇄골재로 생산, 레미콘 등 골재용도로 사용하여도 법적으로 판매행위를 제한할 수 없으나, 산림법 제90조의 3 규정에 광구내 채석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석회석 채광을 빙자한 채석행위에 대하여 산림법 위반으로 입건송치한 바 있으나, 채광인가를 받은 사항으로 무혐의 처분된 사례도 있습니다.

[질 문]

새농어촌 건설운동의 현재까지 추진실적, 문제점 및 향후 추진방향은?

[답 변]

농어촌의 정신적 측면을 진단해 볼 때 IMF등 환경변화에 창조적 적응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실사구시」 「자력갱생」 「자율경쟁」을 3가지 기본원칙으로 추진중이며, 소득도 시대환경 변화에 맞는 「친환경 농어업」을 수단으로 특성화전략 추진, 문제점은 관주도로 강하게 획일적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확산되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몇 개 마을이라도 제대로 추진 모델화 해 나가는 목표로 하고 있음. 금년도에 5억원씩 10개 우수마을을 선정 추진중입니다.

[질 문]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투융자실적 및 계획은?

[답 변]

42조원의 계획중 본 도의 6%인 2조 4,663억원이 투자됨.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확충과 기계화 및 시설현대화 등 여러분야에서 구조조정이 진전되는 효과를 거두었음. 우리도의 투융자 계획은 특성사업으로 「선도유지·진품보장·효능성홍보」의 3대 이미지를 지닌 품질보증제의 시행과 친환경농업의 육성, 농산물 리콜제의 도입검토, 유통단계 축소에 힘쓰고, 수출 유망품

목 집중육성 일본·중국·미국 등 해외시장 개척 등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질 문]

준용하천 기본계획 수립·미수립대상, 부진사유는?

[답 변]

기본계획 수립대상중 국가 및 지방1급은 100%완료 되었으며, 지방 2급하천은 224개소 2,707.8km 중 47개소 804km를 수립 29.7%의 수립율을 보이고 있으며 수립불요개소는 댐 담수지, 협곡등 14개소 158km로 집계됨, 부진사유는 km당 1천만원 정도로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하여 국비지원을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음. 2000년에 도비 10억, 시군비 53천만원 투입 10개 하천 169.9km를 수립할 계획임. 2005년까지 133억원의 예산으로 2,128km를 수립 78.7%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질 문]

복지행정 관련업무 전산프로그램 개발계획은?

[답 변]

복지 대상자관리 전산프로그램은 이미 행정자치부에서 '9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시·군 행정종합 정보화 사업의 하나인 복지대상자 선정 및 지원프로그램을 개발중에 있어 2000년 하반기부터 이 프로그램이 본격 시행되게 되면 복지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과 복지전달 체계가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 문]

김치 수출실적 및 향후 수출확대 지원계획은?

[답 변]

수출실적은 '98년도에 324만불수준이었으나 금년도 일본 후지TV에서 김치특집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산 김치의 유산균수가 일본기무치에 167배 많다고 방영하는 등의 홍보관계로 도내산 김치는 3/4분기 현재 615만불로 2배가량 신장하였음. 금년도 수출촉진을 위한 해외시장개척활동을 위하여 동경식품박람회와 오사카식품박람회에 참가 일부업체에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앞으로 수출확대를 위하여 청정강원 김치브랜드화, 수출포장디자인 개발지원, 해외시장개척활동 강화, 수출업체에 유망품목 시장 개척자금, 수출시설 현대화 자금등 저리자금(연리 5%)를 통



하여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질 문]

여름철 퇴비증산운동 실패와 향후 추진계획은?

[답 변]

현금에 이르러 화학비료에 의한 토양의 산성화, 유기함량부족에 의한 지력감소와 병해충발생, 연작곤란 사례가 빈발하고, 무공해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의 필요성이 가중되어, 시상금 2천만원을 책정 퇴비증산 사업을 실시하게 되어 553천톤의 생산실적을 올려 퇴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였으며, 앞으로 강원도 농산물의 진품보상, 효능성 확보등 특성산품 생산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 마을별 시상금을 확대할 계획입니다만, 예산이 이에 따르지 못하여 추경에 1억원이 추가반영되도록 노력하여 마을 시상제를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나) 教育行政

[질 문]

연금 불안설과 정년 단축으로 인해 교단을 떠나는 초등학교 부족교원 충원대책은?

-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된 교원들의 사기양양 대책
-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농촌학교의 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책

[답 변]

스승존경과 교원 우대 분위기 조성, 각종 연수·연찬회를 통한 교육애와 사명감 고취, 박사학위과정 연구비 지원, 현장연구교사제 운영 등 행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부족교사 110명은 경륜을 갖춘 퇴직교원 임용,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478명이 춘천교육대학에서 교육대학 교수들로 질높은 보수교육중임. 이 교육은 1회에 한하여 실시하고 앞으로 우리도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은 필요성, 기대효과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홍보실시하되, 산간오지 등 지역 특수여건을 감안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통폐합 신축적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나. 第3次 本會議 質問 및 答辯要旨

1) 이상명 議員

가) 江原道政

[질 문]

국도변 시가지 건축중단된 건축물이 방치된 대책 수립 및 현재 추진상황은?

· 해결노력 어떠했는지 및 향후 해결책

[답 변]

도내 공사착공후 중단된 건축물이 '99. 11월 현재 11개 시군 44건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원인분석결과 경기침체에 따른 부도 등으로 중단되었고, 대책으로 현장발생 주민불편사항 해소, 공동주택은 공제조합과 보증사에 시공대행토록 독려하는 한편 제3자 인수를 통한 공사 재개를 대책 강구하겠습니다.

일반주택은 중앙부처에 허가권자에게 공매원, 강제철거권등의 법적·제도적 장치마련을 건의한 바 있으나 특별한 대안이 없으며 8. 15 발표 대통령 국정과제 후속조치 중산·서민 주거안정 대책마련 등에 의한 내년도는 건설경기 호전해소 전망입니다.

[질 문]

도민과 가까이 있는 도정을 위한 방안으로 내부분서 감축계획, 획기적 대책은?

· 사업·지원부서의 인원비율, 사업부서 인원증원 용의는?

[답 변]

향후 문서감축을 위해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간략한 보고체계강화, 화상회의 확대, 구두보고 활성화 등 다양한 감축 시책마련 일선공무원들이 문서작성에 얽매이지 않고 도민에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고 도민과 가까이 하는 도정수행을 위해 도지사·실과장단과 필요시 실과장단까지 분야별로 도민 생활 현장을 직접 찾아가 건의 또는 애로사항을 격의없이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 문]

획기적 조수보호대책과 조수피해 보상, 사라져가는 조수보호 의향은?

[답 변]

야생조수 보호대책으로 밀렵우범지역을 도표로 작성하여 관리하면서 극성기간(11~2월) 감시단(10명)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불법야생조수 포획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폭설 등 겨울철에 야생조수 먹이주기(123톤) 실시, 본도 산림개발연구원에서는 야생동물병원 운영 부상조수 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향후 불법조수포획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자 적발시에는 즉시 입건조치 사건화 하는 등 야생조수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 문]

보건소의 활성화 방안의 검토여부 및 전문인력 미배치 문제 해소방안은?

[답 변]

'99~2002년까지 지역보건·의료사업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보건소의 시설확충 개선과 의료장비의 보강, 한방진료실 및 건강증진실 설치·운영 등을 통하여 보건소의 공공 보건의료서비스 체제로 강화되는 추세이고 현재 보건소에 약사가 배치되지 않아 차질을 빚는 사례는 없으며 2000년 7월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보건소내 약국폐지가 불가피하다 하겠습니다.

[질 문]

에이즈환자 집단생활토록하여 전염병 예방할 법적근거는?

[답 변]

에이즈 등 2종 전염병환자는 강제격리 치료규정이 없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14조의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자의 치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감염자에 대하여 전문진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으므로 이 규정에 의거 국립보건원에서 6개월에 1회씩 정기적인 면역검사를 실시하여 전문진료기관과 연계하여 치료하고, 치료비는 전액 국·도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감염자를 강제격리하게 되면 개인의 인권침해는 물론 검사대상자들이 검사기피와 잠적할 우려가 있어 감염자에 대한 치료기회가 상실되고, 은둔된 상태에서 사회적 박탈감으로 무분별한 전파행위를 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격리수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 문]

복지의 효율성을 위한 생활보호대상자 증가수치, 자립 능력 배양 시책과 취로사업 생산적인 방향으로 전환, 발전방안은?

· 장애인시설 정기적인 점검과 관심

[답 변]

생활보호대상자의 증가수치는 IMF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저소득 실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98년 한시 보호제를 실시생계를 지원하고 이들에 대한 자활능력 배양등 한계가 있어, 정부는 2000. 10. 1부터 시행예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마련하여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법은 「생산복지」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근로능력자에 대한 능력개발, 일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마련중이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0억원 조성 미래의 인재들을 양성하여 왔습니다. 취로사업은 대상자가 노약자, 부녀자등이므로 생산적인 사업추진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하여 도 및 시군이 역점시책으로 추진해온 결과 크게 확충되었지만 여타 공공건물 및 편의시설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사실임. 그러나 법정 시한인 내년 4월까지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도로, 공원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이 조기완료 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가고, 기설치된 편의시설 또한 불편이 없도록 정기적인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질 문]

농산물유통·마케팅인 강원산품 공동브랜드화 및 공동상표개발추진상황은?

[답 변]

강원 농특산물의 브랜드화 전략은 선도유지·진품보장·효능성확보의 3대 이미지로 차별화하기 위해 강원도가 보증하는 「품질보증제」 「푸른강원 마크 사용승인제」 시행을 위하여 조례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중에 있고 강원도 대표작목인 감자는 「금바위 감자」 특허청 등록을 필했고, 횡성한우·평창대관령한우·정선황기한우·양양한우등의 상표를 등록 전국적으로 지명도를 높이고 있어, 도에서도 「강원한우」 공동상표 개발 상반기중에 시행할 계획임, 앞으로 서울 강남지역에 강원도산의 진품과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구축의 일환으로 「강원산품진품센터」 설립을 구상하는 등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질 문]

도민대상 노인 요양시설에 타시도 노인이용 및 입소시 입소자격 여부는?

[답 변]

본도에는 9개의 노인생활시설에 정원 690명의 68%인 487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이중 6명만이 서울 2명, 경기도 2명, 경북도 2명 출신으로 우리도의 이용희망자가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는



없음, 따라서 본도 출신만을 위한 별도의 시설운영은 현단계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노인생활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은 65세이상의 노인으로써 부양의무자로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분들 순이 되겠습니다.

[질 문]

「강원도 직업전문센터」 설립의향은?
· 중소기업 건전육성위해 지방세 감면

[답 변]

「직업전문센터」를 신규로 설치할 때 기구와 인력, 예산등의 추가소요와 기존 시스템과의 중복, 그동안 축적된 기술의 활용등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급 고용안정기관을 상호연계하여 활성화 하고, 실업정보종합시스템 전산망을 앞당겨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질 문]

동해 금강산 유람선 운항에 따른 관광수입과 도민의 수익증대와 연계대책은?

[답 변]

북한과 연계된 사업인 만큼 긴 안목을 내다보고 보다 안정적이고 더 큰이익을 챙기는 쪽으로 정부나 현대측과 모든 문제를 조율해 나갈 방침임. 도에서는 금강산 관광사업이 시작되기전 현대그룹 측에 ①출발항 주변 연계관광 ②지역주민 우선 고용 ③지역산품의 우선 구매 ④부대사업장 및 관련사업 운영등에 지역주민 참여방안강구를 요청, 현대그룹 정몽헌 회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금강산 관광사업의 파급효과는 지역농수산물 판매등 총 87억원에 달하고 한국은행 춘천지점의 금년한해 금강산 관광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생산, 부가가치, 고용 유발 효과가 최대 310억원과 640명으로 추계합니다. 선식자재 공급확대를 위해서도 계약재배 등을 통하여 지역산품의 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아가겠습니다.

[질 문]

'97도정질문시 「EXPO장내 야간공연장 개설검토」 답변관련, 실제 검토여부는?

[답 변]

엑스포와 관련하여 회장내 공연장의 야간개설을 포함하여, 운영시간의 연장문제를 검토해본 결

과 ①연장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경비의 추가소요 문제와 ②청소·위생·의료·방역등에 대한 정비시간 부족과 전시관 및 영업시설 개장준비가 소홀해 질 우려가 있다는 점 ③심야운영에 따른 음주·수상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문제 ④계절적으로 심한 일교차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점이 우려되어 부득이 야간공연장의 개설이나 운영시간을 연장하지 못하였습니다.

[질 문]

소방점검 실태 및 소방진단 업무추진 전반에 대한 설명은?

[답 변]

본도에서는 “인천호프집화재”전에 이미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대상을 특별관리키 위해, 「다중이용시설종합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여 숙박·관람시설을 포함한 4,737개소에 대한 특별소방검사를 실시 이중 5%에 해당하는 236개소에서 463건(소방 298, 건축 49, 전기 50, 가스 45, 기타 21)의 위해 요인을 개선시킨바 있으며, 인천화재 후에도 다중이용시설 3,767개소의 특별소방검사실시로 799개소에서 1,131건(소방 971, 건축 106, 전기 1, 가스 43, 기타 10)의 불량사항을 적출, 보완토록 조치함. 특히 읍·면지역은 소방관서와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지역과 똑같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및 특별소방검사를 실시함은 물론 예방활동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에서는 대형화제로 인한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12월중에 시장등 판매시설, 가스저장·취급시설, 청소년·노유자시설등에 대한 소방검사를 월동소방안전대책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일련의 화재참사 이후, 소방법상 미흡한 부분등을 제도적으로 보완키위해, 청소년 수련시설등에 대한 소방안전시설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현재, 행자부에서 소방법개정을 추진하는 사항과는 별도로 청소년·노유자 시설등에 기본소방시설외에 별도의 소방·방화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여러 가지 관련규정과 제도를 마련하여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관련시설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소방교육의 의무화등 법령개정을 중앙에 건의토록 하였습니다.

나) 教育行政

[질 문]

일선학교 교사 부족 발생이 정부의 일률적인 조직 개편과 인원 감축정책에 의한 것이 아닌지와 교육행정인원 감축범위에 교원 감축도 포함되는지 여부 및 교육부에 감축내용

· 사회적인 인원 감축 영향을 받아 조그만 과오도 증징계함으로써 의욕상실에 따른 자연감원을



유도여부

- 명예퇴직자 787명의 명퇴사유 현황, 교사 중 '98~'99년도 징계자수와 평년도 명퇴자와의 대비 및 교직자의 이직원인
- 명예퇴직자 중 재임용 희망자의 전문적 능력 활용 차원에서 수용의사 여부 및 재임용 노력현황
- 일반대학 졸업자의 초등교원 임용과 관련하여 현재의 보수교육인원과 초등교육에의 적응성 예측여부 및 장기적 관점에서 초등교육에 미칠영향 분석 후 시행하였다고 볼 때, 단기간(4개월) 연수 후 임용하여도 충분하다는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

[답 변]

교원의 감축은 교육행정인원 감축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학급수의 증감에 따라 교원의 증감이 결정되고 있음. 오늘의 초등교원 부족사태는 급격한 교원의 정년단축과 명예퇴직 교원의 증가에 의함이며 평년에 비해 명퇴교원의 숫적증가는 교원정년 단축과 공무원 연금법 개정설에 따른 불안감과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부족교사의 보충대안으로 퇴직한 교원 중 많은 인원을 본인의 희망을 들어 기간제교사로 임용 활용하고 있음. 보수교육 이수중인 478명만 전원확보 한다면 674명 수급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징계사실이 있는 교원은 명예퇴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예퇴직한 교원은 징계 받은 사실없으며 부족교사 110명은 경륜을 갖춘 퇴직교원 임용,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478명이 춘천교육대학에서 교육대학 교수들로 질높은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다각적인 면에서 계속 연구·분석함으로써 교원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 문]

최근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DDR의 놀이기구에 대한 견해와 어떤 방법으로 청소년들의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할 것인지?

[답 변]

DDR은 공개된 장소에서 하는 놀이므로 청소년들에게 음악과 율동이 어울려져 여가선용에 좋을 것 같음. 각 사회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Dance 경연대회를 많이 개최하고 있음. TV에서도 DDR은 청소년들에게 권장할만한 놀이문화라 보아지며 현재 각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가활동으로 산악자전거, 급류타기, 스쿼시, 등산, 에어로빅, 볼링, 노래방기기 이용 등 예체능 계열의 프로그램이 있으며, 앞으로 현장 체험학습과 다양한 축제문화를 보다 활성화하여 여가를 선용할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 문]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 시행문제에 있어 타 시·도의 경우 교육부의 연 2회 실시 지침을 어기고 수회 실시하고 있는바, 연2회 지침을 준수하는 우리도가 얻는 이익을 무엇이며, 2000년도 대학입시에서 상대적으로 열등한 우리도 입시생들에 대한 대책은?

- 수학능력시험 결과 타 시·도와의 성적비교 현황 및 차이점
- 교육부의 연2회 실시지침이 법규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인 권고사항이었는지 여부
- 도내에서 녹음기 불량으로 인한 수능시험 차질 발생여부

[답 변]

교육부는 '98. 4. 28일 사설기관 시행 모의고사 참여와 관련한 기본방침을 통하여 '99학년의 경우 중학생과 고1학생은 사설기관의 모의고사 실시 불가, 고2는 1회·고3은 2회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학교별로 자체 평가자료를 제작, 평가를 실시하여 학생 개개인의 성취도를 측정하도록 지도하였음. 진로지도 자료로 활용코자 2000학년도에는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평가 문항을 개발하여 연2회정도의 학력평가를 계획하고 있으며 수학능력시험 예상득점은 본도의 경우 300점이상 학생 4,820여명으로 '99학년에 비해 14.3% 상회함. 전국 예상 상승률 12.3%에 비하여 높게 나타남으로 2000학년도 입시에서도 좋은 결과가 기대되어 4교시 외국어 듣기평가에 일부 수험생의 민원은 1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와 동일한 상태로 시행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외국어 평가에 대한 수험생의 심리적 부담과 평소 정취 음량의 개인차에 의한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질 문]

폐교활용으로 사우나로의 둔감과 교과서 무더기 방치등의 보도사태내용을 보면 당초 폐교활용 계획과 사용자와의 계약체결은 어떤 방법이었기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였는지? 이러한 사태에 발생에 대한 대책강구 계획은, 해당업소는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 변]

황성 덕원초교 폐교는 '97년도에 황성군수에게 매각하였고, 국정교과서 황성보급소장이 신학기용 교과서를 황성군수에게 승인을 받아 임시 보관한 것이고, 흥천 남산초교 장전분교장 폐교는 '98년 (주) "심봤다"산업의 사원 및 회원연수장 사용 목적으로 임대하면서 일반인 상대로 찜질방의 영업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계약위반 물의를 빚는데 대하여 흥천군교육장에게 시정 및 경고조치함. '99. 11. 20 철거 각서제출, 앞으로 단기일내 철거와 임대계약 취소검토를 검토하겠습니다.



2) 성희직 議員

가) 江原道政

[질 문]

간부공무원 잦은 교체 많은 문제가 있는데 개선책은?

[답 변]

최근들어 1차, 2차 구조조정을 계속하면서 정년퇴직, 명예퇴직, 공로연수 등의 요인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발생을 했던 것임. 앞으로 이번 연말연시 인사를 마무리를 하고 나면 완벽하지 못하지만 이런 현상은 어느 정도 줄어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 문]

서울사무소 기능 및 일부간부 인사방향 재검토

- 외자유치팀 축소, 정보수집 기능 강화용의는?
- 정무부지사 인사시 정치적 역량인물 발탁은?

[답 변]

정무부지사는 경제분야 중점발탁으로 대중양관계, 정치 등등 그런 부분은 도지사를 비롯해서 도 전체가 갖고 있는 역량들을 소위 토탈대응을 한다는 개념으로 인사를 했음. 상황에 따라서 도정전체의 목적과 전략등에 따라서 적절하게 인사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의 주목적은 수출촉진, 해외관광네트워크, 국내관광 네트워크 형성, 그리고 투자유치로는 민자와 외국투자유치였음. 한편, 중앙부처 법률안, 정책적 동향 등 연결 고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방조직구조조정 지침에서 시·도의 서울주재 사무소를 축소 운영할 것을 권유하고 있어 확대개편에 다소 어려움이 있고, 업무특성상 투자유치란 것이 단기일내에 성과가 나타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아직 그 실적이 미미하고 앞으로 서울사무소와 투자유치기확단 및 국제협력실의 통상업무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서울사무소 기능의 확대개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 문]

중요현안에 대한 도지사의 정치적 판단과 결정, 대응능력에 문제 지적

(예) 동강댐건설반대 발표시기관련, 중앙정부 오해 자민련 총재 도방문시 서울출장 관련

[답 변]

평소의 소신이 현행정부의 제도, 법, 정치논리가 강원도의 타당한 가치나, 도민의 공론이 제약 받거나 불이익이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영월댐문제도 위의 입장에서 대중양관계 등 검토 후 나름대로 최종적으로 입장정리를 했음. 특히 국회환경노동위의 현지방문건교부업무보고 등의 상황에서 더 멈추거나 조정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발표하게 되었으며, 박태준 총재의 도청방문 문제는 우선 법안, 예산문제등 중앙부처 방문이 각부처별로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되었다고 자민련측과 충분히 양해를 구했고, 그것은 고의가 아니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 하셨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질 문]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접경지역 지원법관련

- 도의 대표적인 활동내역(서면제출)
- 중앙정부관심, 예산배정위해 많은 노력필요, 견해는?

[답 변]

도지사로서 중앙지원이나 우리의 뜻이 관철되도록 장·차관, 국회의원 등 여러경로를 통해서 만나는 등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접경지역지원법 문제는 이용삼의원의 발의로 시작되었는데 법안자체도 우리가 만들어서 협의를 했고, 통과될 수 있는 논거를 만드는데도 중앙지원만 받고 우리예산으로 접경지역 종합개발계획을 세우는 등 여러과정까지 그 중심에 강원도가 서있습니다.

환경단체 반응은 강원도가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의 개발계획이나 내용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오히려 부정적에 그러므로 나름대로 강원도의 이익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질 문]

도금고 선정에 있어 “제한입찰”방식선택 및 도금고선정위원회 구성 및 선정관련 논란·갈등 최소화(계약기간 3년등) 방안은?

[답 변]

도금고 선정을 “제한입찰”방식으로 할 경우 특정한 금융기관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도 있어 선의의 공정한 경쟁이 사실상 제한을 받을 우려가 있고, 따라서 금고 지정은 금고의 안정성과 운영능력이 있고 해당 자치단체의 실정에 가장 적합한 금융기관이 지정되었느냐가 중요함. 그러므로 2000년 도금고지정은 도민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행정내부의 심도있는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가장 바람직한 금고지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질 문]

폐광 카지노사업 추가허용불허 재확인 입장표명과 정책적 지원과 주도적역할 카지노 개장, 주변정비 사업, 조경사업등 만전

[답 변]

11월 26일 대통령께서 도내 모일간지와 기자회견시 강원도 폐광지역 이외의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하시면서, 폐광지역 경제회생과 대체산업 육성차원에서 다른지역까지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신바 있습니다.

정선군 남면 태백지역이 배후도시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년차별 정비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안전사고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강원랜드의 기술직 사원을 현장에 상주 배치 일일점검을 실시하고, 도·정선군·강원랜드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도 구성 운영하고 주변환경정비로 진입로확포장 하천정비등(9개사업 158억원)추진중이며, 접근도로변 정비 및 조경사업은 물론 철도청 등 관광객 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대책강구중에 있습니다.

[질 문]

카지노사업 전담 「강원랜드」 자금운용을 외지금융기관 예치자금을 폐광지역 기관에 예치하는 방안은?

[답 변]

강원랜드 자본금 2,030여억원 가운데 현재 서울 등 외지 금융기관에 예치된 금액은 모두 1,000억원으로 농협, 조흥은행, 한미은행, 외환은행, 국민은행 등에 분산예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외지 금융기관에 예치된 자본금에 대하여는 지난 11월초 강원랜드 이사회에서도 협의된 바 있습니다만, 정기예금 만기가 도래하면 탄광지역 시군에 소재한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참고로 현 시점에서 해약할 경우 만기시에 비하여 5%정도 예치금리가 줄어들게 되어 중도해약에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나) 教育行政

[질 문]

소규모 중·고등학교 통·폐합 추진문제로 상치교사 문제, 수준별 수업곤란, 특활활동 운동부

운영곤란, 지역사회 동문들의 관심과 지원 저조등 소규모 학교의 문제를 치유하고 본격적인 경쟁교육체제에 대비하여 소규모 중·고 병설학교를 단설의 남녀공학인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분리 통·폐합 추진에 도내에서 분리 통·폐합이 가능한 여건을 갖춘 지역과 학교수 현황은?

·정선군 고한읍과 신동읍 지역도 남녀공학의 단설학교로 분리 통·폐합 추진의향(고한 중·고와 고한여중·고, 함백 중·고와 함백여중·고)?

[답 변]

소규모 중·고등학교를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적법한 절차를 밟아 남녀공학 중학교·고등학교로 분리운영중임, 첫째로 거진중·공고와 거진여중·상고로서 2000년 3월 분리운영되며 남자중과 실고가 병설운영 학교는 남녀공학 중학교로 통합개편, 인문계 고교와 병설운영 예로 화천실고와 화천중·고교가 해당되며 고한중·종고 및 고한여중·여종고, 함백중·종고 및 함백여중·여고는 통·폐합의 여건을 갖춘 학교이며, 우선 이에대한 학생,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동문회 등 학교공동체의 여론이 성숙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동 지역에 대하여는 지역여건과 더불어 학교 관계자와 졸업생 및 학부모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통·폐합 여부를 검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 오원일 議員

가) 江原道政

[질 문]

지역정보화 추진에 따른 예산투자액, 타지역과 비교분석, 도의 수준과 경쟁력 향상 구체적 지원시책과 추진방향은?

[답 변]

우리도의 정보화 수준은 현대 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사회·경제·행정 정보의 정보화 지수를 보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이 가장 높고, 정보화관련 연구단지와 기업체가 많은 충청·대구권 지역에 이어 우리도가 7위로 평가되어 전국 중간 수준임으로 앞으로 도정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공무원 1인 1PC보급과 LAN망 확충, 종합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확대 구축하는 등 「디지털 도정」 구현을 할 것이며 사이버 강원종합정보센터를 구축하여 관광정보 홈페이지에 관광안내예약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하며, 중소기업체에 홈페이지 구축지원과 청정축산농장 인증시스템, 지역산품전자시장과 연동하여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지원으로 보다 질좋은 대



민서비스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어촌정보사랑방 운영과 도민정보화 교육을 강화하고, E-Mail 주소 갖기 운동확대등으로 도민의 「삶과 질」 향상에 모든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 문]

춘천, 원주, 강릉중심의 「3각테크노밸리」 육성

- 국가지원, 민자유치등 자본유치, 견해 및 대책은?
- 인근시군 연계발전전략수립, 구체적 청사진은?

[답 변]

정부의 「산업기술 기반조성기금, 정보화촉진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각종 기금을 포함한 정부예산을 유치하여 지식기반 산업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의 지식기반사업의 중장기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자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에 3각테크노밸리 조성계획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정부의 지식기반산업 육성계획과 연계가 가능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의 각종 계획 및 시책에 3각테크노밸리 계획내용을 반영토록 하겠으며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중소 벤처기업이 들어오면 자금공급을 위해 「강원신용보증조합」을 통한 신용보증을 확대하고,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계획입니다. 인근 시군과의 연계 발전전략으로 춘천, 강릉권의 생물산업의 경우 비중이 높은 농수산업 등의 1차산업 품목에서 천연 재료를 추출하여 각종 기능성 제품생산 기반구축 및 인근지역을 원료 생산지화하는 방안연구 중임. 원주권은 의료기기 산업벨트로 연결계획이고, 춘천의 게임산업과 연계하여 정선지역과 연계하여 카지노지역에 게임관련산업 발전방안도 연구토록 하고 장기적으로 3각테크노밸리 조성계획은 인근 시군에 관련 파생산업을 육성 도전체에 지식기반 산업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 문]

「새농어촌건설운동」 관련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은?

[답 변]

농어촌의 정신적 측면을 진단해 볼 때 IMF등 환경변화에 창조적 적응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실사구시」 「자력갱생」 「자율경쟁」을 3가지 기본원칙으로 추진중이며, 소득도 시대환경 변화에 맞는 「친환경 농어업」을 수단으로 특성화전략 추진하고 현장여론 반영을 반영키 위해 마을별 간담회를 113회, 새농어촌건설운동의 발전모형과 우수마을 실천사례집 4000부를

발간배포, 농어업인·관련기관 단체, 연구기관, 학계 등 각 계층의 신기술과 정보 교환 세미나 2회 등의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질 문]

2010년 동계올림픽 강원도 유치관련 대회유치를 위해 어떤 노력과 준비가 있는지?

[답 변]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한다고 하면 2001년까지 KOC에서 국내유치 후보도시를 검토한 후 최종 적지선정, IOC에 유치신청을 하면 2003년에 IOC총회에서 최종개최지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대륙별로 순회개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2010년 동계올림픽은 아시아지역에서 개최될 전망 이 사실입니다. 개최하려면 엄청난 시설과 예산소요등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고, 또 국가적으로 IOC등에 유치가능성 문제도 정밀히 검토 등 여러 가지 측면을 예의분석하는 과정의 초기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 문]

노인복지 경노당 난방비 현실화 및 추가지원은?

[답 변]

경로당 난방비는 지원기준이 과거 연탄사용을 근거로 책정되어 현재의 유류사용과 비교하면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도에서는 국고지원 기준액 연25만원 이외에도 도·시군비로 개소당 연 10만원씩을 추가 지원하기 위하여 2000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난방비 부족액은 다소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 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규정 미준수 사례가 있는데 「장애인복지시범도 육성」시책 견해와 대책은?

[답 변]

「장애인복지 시범도」육성을 사회복지사업의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단순 시혜차원의 보호적 기능에서 장애인 자활능력 배양을 통한 「생산적 복지」를 지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위해서 ①외롭지 않게 ②불편하지 않게 ③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할 수 있도록, 우선 공



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일부 횡단보도 등 많은 장소의 편의시설의 확충에 따른 각시설주에게 편의시설 법정시한인 4월까지 조기완료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시설의 파손 또는 작동불량이 없도록 정기적인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질 문]

도내 다중이용시설의 적발업소 처리결과, 안전관리 대비책은?

[답 변]

11월 현재 정기소방검사 11회, 특별소방검사 10회등 총 21회에 걸쳐 연 40,265개 대상에 실시, 이중 6.5%인 2,598개소에서 4,526건(소방 3,785, 건축 269, 전기 140, 가스 277, 기타 550)의 불량사항을 도출·개선하고 있으며 소방시설불량사항에 대하여는 1차로 시정·보완명령서를 발부하여 일정기간내에 개선토록하고 올해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2개 대상에 대해 입건조치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중이용시설허가 과정에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발급시간부가 현장을 직접확인하여 시설기준을 엄격히 적용, 완벽한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소방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 문]

금강산 관광선 현대상선 기여부문 및 약속부문, 향후 대책은?

· 남북교류지원단 등 활용, 정기적 회의개최 방안은?

[답 변]

북한과 연계된 사업인 만큼 긴안목을 내다보고 보다 안정적이고 더 큰이익을 챙기는 쪽으로 정부나 현대측과 모든 문제를 조율해 나갈 방침임, 도에서는 금강산관광사업이 시작되기전 현대그룹측에 ①출발항 주변 연계관광 ②지역주민 우선고용 ③지역산품의 우선구매 ④부대사업장 및 관련사업운영 등에 지역주민 참여방안강구를 요청, 현대그룹 정몽헌 회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강산 관광사업의 파급효과는 지역농수산물 판매 등 총 87억원에 달하는 것과 한국은행 춘천지점의 금년한해 금강산 관광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생산, 부가가치, 고용유발 효과가 최대 310억원과 640명으로 추계하며 선식자재 공급확대를 위해서도 계약재배등 통하여 지역산품의 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현재 문화관광부가 주관이 되어 강원도와 현대상선 및 한국관광공사등의 실무자로 구성된 「남북관광교류 실무협의회」 운영중이며, 제반사항을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 문]

동해안 수산물가공산업 육성관련

- 「해양수산분야 연구센터」 설치
- 수산물 기능성식품 또는 약품개발, 실천방안

[답 변]

연구센터 설치 필요성은 공감하나, 현재 동해안 소재 여러대학 관련학과와 부설연구센터를 우선활용하고 해양수산연구센터 설치의 인력과 운영예산등이 수반되므로 장기적인 관심에서 연구·검토되어야 하겠으며 강릉대학교 동해안해양생물자원연구센터에서는 신물질 추출등 16종의 연구를 진행중임.

강원도립전문대학에서는 오징어 젓갈 천연 향진제 개발 외 2종의 연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신기술·신상품개발을 지역대학부설 연구기관 취지에 맞는 과제를 부여하는 등 산·학·연 협력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질 문]

동해안 청정해역을 지키기 위한 시책사업으로 침체어망제거 전용선박 건조, 추진실적, 지원대책은?

[답 변]

'97년부터 각종 오·폐수 등에 의한 수질오염이 되고 있는 14개 1종어항을 대상으로 오염발생물질과 오염발생원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밀조사를 2000년 5월까지 마무리하고, 각 어항의 입지특성에 부합되는 수질개선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며, 전용선박 건조·운영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하여 회신내용을 보면 전용선박을 직접 운영할 것을 전제로 필요예산을 신청하며 검토·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도의 재정형편상 연간 5억원이상의 선박운영예산을 매년 확보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 동서남 권역별로 건조·운영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인양전문업체육성을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추진하겠습니다.

[질 문]

조직내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는 부서 사기양양대책은?

- “음지부서”직원 사기양양시책과 균형적 인사행정

[답 변]

투명·공정한 인사관리를 통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하는 「능력」과 「실적」중심의



성과주의 인사를 시행하고 5, 6급 복수직급제의 실시와 총정원 범위내에서의 6, 7급 공무원의 직급정원 확대 등 승진적체 해소방안을 2회(99. 3. 27 - 행자부, 99. 5. 7 - 시도 지사회의)에 걸쳐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한 결과 6급과 7급정원의 일부를 늘리고 8급이하 일부를 줄이는 정원조정이 12월 중에 이루어질 경우 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의 연쇄적인 승진을 통한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 教育行政

[질 문]

학교주변 교통안전 무방비 문제와 교통안전시설 미설치 학교현황은?

- 학교주변 10m 이내에 횡단보도가 없는 학교 : 전체의 18%인 118개교
- 사고위험이 있는 학교주변도로에 황색점멸등이 미설치된 학교 : 229개교
- 학교주변에 교통표지판이 미설치된 학교 : 217개교
- 학교 안내판이 미설치된 학교 : 150개교
- 각종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학교주변에 대한 개선 견해와 향후대책은?

[답 변]

교통안전을 위하여 녹색어머니회와 어린이 교통경찰대, 교사를 통한 현장 지도로, 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있으며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스쿨 존) 설정 및 시설물 설치를 추진해 '99년도에 신호등을 신설한 학교가 14개교, 표지판 신설학교 94개교, 과속방지턱을 신설한 학교가 41개교로 총 149개교가 교통안전 관련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해당학교 주변의 도로 및 교통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 문]

학교급식 위생관리 문제로 국정감사 자료

- 급식학교 중 위생불량학교 : 29개교(초 24, 중 5)
- 맨홀 또는 맨홀 걸름장치 미설치
- 나무도마대 불량, 조리원 건강진단 미실시
- 가스관련 안전장치 미비, 식당 방충망 미설치등
- 집단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바,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은?

[답 변]

학교급식 전담직원에 대하여 식품 및 개인위생, 안전점검방법등 교육 실시, 학교별로 급식전 식품검수, 위생 및 안전점검 실시, 조리종사원에 대한 위생안전수칙 준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으며, 급식운영 및 위생 안전점검 등을 연 2회 실시하고, 보건소 등과 협조하여 급식기구 및 급식품에 대한 세균검사를 실시하는 등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조리종사원 건강진단을 제때에 실시하지 못한 학교에 대하여는 시·군 보건소에 의뢰하여 실시토록 하여 조리여 임하도록 조치하는 등 조리종사원들에게는 작업과정 분석 등 잘못된 위생습관 개선교육과 급식품 구입부터 급식후 처리과정까지 모든 위해요소를 중점분석 관리토록 하고, 지도점검 행정지도 강화, 식중독 등 발생시 신속한 조치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급식제공등 위생관리에 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질 문]

학교건물 노후화로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바, 이에 대한 조치사항과 향후대책은?

· 내구연한 경과로 개축이 시급한 건물 : 431개 교실(초 285, 중 118, 고 28)

[답 변]

실제 개축대상은 전체교실수의 2.7%에 해당하는 431실로 조사됨. 이를 개선(개축)하는데는 약 325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 시급한 노후교실부터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학교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기하고, 구조적 기능장애 등 위험요인을 조사하여 위험요인이 있을 시 적절한 조치로 건물의 구조적 안전을 꾀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학교건물에 대해 년2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문제시설로 판정된 경우 전문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신속성 있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조적 결함이 발견된 고한종합고등학교 및 화천초등학교 2개교과 보수보강을 요하는 경포대 초등학교 및 삼척중학교 2개교로서 3개교는 이미 보수보강, 전면 개축을 완료하였고 화천초등학교는 현재 전면개축 추진중에 있습니다.

[질 문]

11월 3일 마감한 초등교사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교육대학생이 모집정원의 47%인 165명이 지원하여 205명이 미달할 뿐만 아니라 지원자격 중에서도 다수가 경기도 등 타지역 중복 지원으로 교사 수급에 큰 차질이 예상됨.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초등교사 수급대책은?

[답 변]

2000년도 초등학교 교원수급계획은 정년퇴직, 명예퇴직등으로 696명의 수요가 예상됨으로 충원



방법으로 정규교사 채용 100명, 보수교육자 임용 478명, 기타 35명, 모두 613명을 충원할 수 있으며, 부족인원 83명에 대하여는 퇴임교원중에서 기간제교사로 충원할 계획임. 현재 춘천교대에서 보수교육 이수중에 있는 478명만 전원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 2000년도 교원수급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 문]

폐교된 학교시설의 교육적 활용을 위하여 향후 교원, 학생,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교육적 측면에서의 활용대책은?

- 소규모 초등학교 폐지 추진 '97~'99년 실적 : 130여개교, 2002년까지 추가계획 : 250여개교
- 시설 임대자가 시설을 개조하여 비교육적 영리사업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음.

[답 변]

앞으로도 이들 폐교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노후로 안전성이 문제되는 건물은 철거하고, 도시인구 농촌역류 현상등을 고려 활용이 예상되는 재산은 보존관리할 계획이며, 불필요한 재산은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산과 교환하여 대체재산을 확보하고, 임대가능한 재산은 임대하여 교육재정 수입증대에 충실할 것이며, 지역주민인 원할시에는 우선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 문]

학교주변 유해업소 및 시설현황과 유해업소 및 시설물로부터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는?

[답 변]

도내의 '98년말까지 이전·폐쇄대상업소는 22개이었으나, 지속적인 정비 추진으로 8개 업소가 이전 또는 폐쇄되어 현재 14개소가 잔존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하여 이전·폐쇄를 추진중에 있으나,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규제된 업소로서 현재 업주의 생계유지와 타업종 전환 곤란, 임대료 상승 및 건물 부채등으로 다른 장소로의 이전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전 시에는 그에 상응한 경비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정비가 어려운 실정으로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여건변화등을 파악하여 시장(군수)에게 이전·폐쇄 대상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요청과 합동 지도 단속 및 업주 계도 등의 정비로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나가겠습니다.

[질 문]

학교 교외 생활지도 및 성교육 문제로

- 모일간지 보도내용
- 도내 모학교 한학급 45명중 상습 흡연학생이 35명, 음주학생이 35명임
- 주말이면 PC게임방, 주점, 오락실, 만화방, 노래방 출입 및 상당수 학생성경험자임
- 학교의 교외 생활지도 및 성교육에 문제가 있으며, 특히 수능고사 이후와 동계 방학을 앞두고 열려됨.
- 도교육청의 학생 교외생활지도 강화 계획과 유관 기관과의 합동대책 및 올바른 학생 성교육 대책은?

[답 변]

본도의 교육청에서는 매년 학생흡연예방대책을 세워 각급 학교별로 교육 및 지도단속과 미성년자에게 담배팔지 않기 캠페인 등을 전개해 왔으며, 3년 전부터는 한의사회의 도움을 얻어 금연침시술을 보다 폭넓게 확대해 나가는 한편 유관기관과 함께 교외 생활지도 차원의 청소년유해업소 방문을 강화하고 각종 우범지역을 지속적으로 순찰하여 음주 및 탈선예방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과거 성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1백명 이상의 교사에게 전문 성교육 연수를 이수케 하여 성교육지도에 임하고 있음. 도교육청 자체 성교육지침서를 통하여 관련교과 시간을 통한 성교육을 펼쳐 나가고 청소년들의 탈선행위가 일탈행동 예방이 학교교육만으로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학교와 가정과 사회단체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청소년 탈선예방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 전인택 議員

가) 江原道政

[질 문]

관광EXPO 행사장 활용관련

- 향후 운영방향, 기존시설존치, 추가시설 구상은?
- 「국제관광단지화」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은?

[답 변]

현재 영구시설물인 주제관과 상징탑 주변을 거점으로 하여 강원도 관광 및 홍보, 엑스포기념전



시장 등을 조성함으로써 이지역을 「강원관광 종합센터」화하는 방안을 청초호 유원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설악권 새로운 관광명소로 조성코자 검토중입니다.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추진을 위하여 다소 기간이 소요되더라도, 전문기관의 용역, 전문가의 자문과 조언, 유사행사의 성공사례 등 각종 자료수집하여, 21세기를 열어나갈 「강원관광산업」의 핵심적인 전초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관광명소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 문]

아시아권 스키관광객위한 수용시설 미비, 용평실내빙상장, 크로스컨트리경기장 死藏등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

[답 변]

용평리조트 실내빙상장은 쌍용양회공업(주)에서 제일코일 등을 제거하고 체육관으로 활용중에 있으며, 사내체육대회, 전국JC대회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시설활성화를 위해 쌍용측에서 전국 노동자대회 등 전국적인 대규모대회를 유치할 계획이나 위치등 주변여건을 감안할 때 체육관의 년중 활용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노르딕경기장은 크로스컨트리경기과 바이어드론경기를 할 수 있는 전국에 단 하나밖에 없는 시설로 대회를 치루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시설로서 동계기간중에는 전국대회 등 모든 대회를 강원도립 노르딕경기장을 사용하고 대회기간 이외에는 크로스컨트리와 바이어드론 선수들의 전지훈련과 스키교실 운영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질 문]

관광특성화사업 관련 백두대간 보존법 입법화시 미치는 영향은?

[답 변]

'99. 9. 18 여·야국회의원 37명이 발의한 「백두대간보전법안」의 주요내용은 백두대간 1,400km의 산줄기에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이미 개발행위를 제한하도록 되어있으며 이 법안은 백두대간의 생태계 및 지리인문적인 기초조사가 되어 있지 않고 지역주민의 생존권 문제, 개발행위금지에 따른 사유권 침해, 개발행위 금지 등 현실적으로 수용이 불가하므로, 주무부처인 환경부에서도 법제정을 반대하고 있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의조치 되지않고 보류된 상태입니다.

백두대간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생태축 범위를 일률적으로 양측 700m설정을 지역실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 설정하고, 주민의견수렴, 폐광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기

고시되었거나 관계기관과 협의 완료된 사업은 백두대간 생태축 보호·복원계획과 관련없이 추진가능토록 건의하였습니다.

[질 문]

관광특성화사업과 지역경제활성화 관련 관광자원 개발·보존방향은?

[답 변]

관광자원의 특성화 개발전략은 우리에게 유리한 것 최대한 발굴, 철저히 특성화·차별화 「문화의 체험」을 중시하는 관광패턴에 맞추어 백두대간 역사문화촌과 같은 창조형 관광자원 개발 등 관광상품화, 자원화, 테마화, 패키지화등을 통해 다양한 관광수요에 대비 도내 곳곳이 쉬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서 「전도역을 관광휴양지」로 조성하고 새롭게 개발하는 시설이나 기존 시설들도 외국인 관광객을 염두해 두고 글로벌스탠다드화, 「관광과 문화와 예술」이 일치하는 행태를 도입 그속에서 먹고, 보고, 쉬도록하여 부가가치를 높여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설악~금강산 연계개발계획 등 대형 Project가 정부계획에 반영되고 다른지역에 우선하여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촉구하며 Soft-Ware적 측면에서도 Idea를 찾아내서 강원도 여건에 맞게 구체화하는 작업도 병행하여, H/W·S/W 모든 부분에 있어 명실공히 국제적 관광지로 손색이 없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질 문]

구조조정과 인사문제관련

- 대민서비스 많은 분야 행정기구 통·폐합, 소방도록, 주차시설 확보등 문제, 견해
- 해양출장소 총무과(해양수산정책과) 재부활 사유
- 정원초과 공무원수 직종별 구분, 향후 정리계획
- 5급이상 직종별, 직급별, 출신지별(서면답변)
- 기술직종 과장급이상 특정지역·학교출신, 개선책은?

[답 변]

조직개편으로 정원감축된 인원은 1, 2차 총 479명이며, 결원등으로 357명이 해소되고, 현재 일반직 50명, 기능직 70명, 별정직 2명등 총 122명이 과원이고 해소방안은 명퇴, 조기퇴직, 공로연수 등 자연감소를 적극 권장하고 그래도 해소되지 않을 경우 내년 6월말까지 공정하고 객관적인 「과원처리기준」을 마련하여 2000년 12월말까지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장급이상 특정기술계통학교 출신공무원으로 편중배치는 상대적으로 출신공무원이 많기 때문이며, 해소책으로는 도민통합이라는 대승적 기조아래 능력과 실적, 전문성과 경쟁력을 그 척도로 삼고, 현보직에 관계없이 과감히 발탁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음. 앞으로의 인사운영에 편중문제를 세심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질 문]

기초자치단체와 관계개선을 위해 시장, 군수와 협조체제, 비협조자치단체 조치등은?

[답 변]

도와 시군과의 관계는 업무의 지도·감독과 조정을 하는 수직적 관계도 있지만, 상호보완적 협력관계, 시군 자율과 독자적 관계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가 및 도의 사무를 제외하고는 시군 자율로 가는 것이 불가피하고 다만 도정은 곧 각시군이 포함되는 “강원도”라는 전체 틀속에 강원도적 특수성을 가지는 시책들을 공통적으로 힘을 합쳐 추진해 나가면서 열심히 잘하고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지원을 더해주겠습니다.

[질 문]

기초자치단체와 관계개선에서 재해로 재정상 어려운 시군, 재정적 지원책

[답 변]

각 시군은 IMF 경제상황으로 인해, 재정형편이 어려워 진데다가 특히, 금년수해로 더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금년도 수해복구를 위한 시군비 부담금 지원을 위해 특별교부세(52억원)와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지원(216억원)을 한 바 있고 앞으로도 재정형편이 나아지면 시군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으며, 보유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을 활용 적극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 문]

붕괴위험 높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전대책은?

[답 변]

특별관리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D급이 3개단지 8동 142세대, E급이 2개단지 4동 66세대임, 저소득층 소유로 재건축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강릉시 금강연립은 주택공사 임대아파트 입주를 강릉시장이 협의중에 있음. 태백시의 삼성연립은 국민주택기금의 상환연체액이 누

증되고 있어 태백시가 경매를 통해 철거 정리할 계획으로 추진중이며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사후관리대책으로, 관리책임자 지정, 특별관리와 아울러 월1회이상 안전점검을 실시 재난예방철저, E급주택 재건축 유도, 용자이율 현행 8.5%에서 3%로 인하함과 동시, 임대아파트 입주자 쉽도록 관계법령을 보완하는등 조치를 중앙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질 문]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장기적 검토없이 톱밥발효축사 건립에 따른 문제발생시 대체수단은?

[답 변]

도내 축산용 톱밥소요량은 147천톤으로 제재소와 시군, 협동조합 및 국유림관리소 등 146개소의 톱밥제조시설에서 연간 87천톤의 톱밥을 생산·공급하고 있으나 약60천톤은 왕겨 및 우드칩 등 톱밥대체재가 활용되고 있어 분뇨처리에는 큰 문제가 없으며, 톱밥생산 원료목 확보가 어려워 톱밥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농가부담 가중되고 있어, 앞으로 저장액비화사업(99년 37개소)을 역점 추진하고 톱밥 원료목 지원확대를 위해 공공근로 사업장에서 생산된 간벌목 공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질 문]

관광농원 운영이 도산 또는 경매업체 구제책, 계속하가 여부는?

· 운영자금 지원 정상적 운영 유도대책은?

[답 변]

총77개소중 19개소가 지정취소되고, 58개소는 운영·조성중에 있으며, 5개소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매중인 1개소는 황성 둔내 삼교관광농원입니다. IMF이후 국내경기 침체로 내방객이 감소와 무리한 시설투자로 금융비용 증가등으로 인한 경영악화가 주원인이고 농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금년 10월부터 운영자금으로 연리 5%의 자금을(담보 또는 신용보증부 대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실화 운영을 위하여 재정지원강화와 그린투어 관광농어업상품을 개발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홍보 팸플렛을 제작하여 여행사,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질 문]

먹는 샘물업체 수질개선부담금 체납, 실태점검은?



[답 변]

먹는물관리법에 의거 업체가 신고한 판매실적 실사를 위하여 수시로 현지조사를 실시, 신고의 무위반 1개업체에 경고처분 등 행정조치를 취하였으며 관련법상 수질개선부담금 체납사유로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국세징수법에 의거 강제징수(공매)할 수 있으나, 업체의 도산으로 지역경제의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함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해 소유부동산 압류조치후, 분할납부토록 유도해 나아가고 있으며 체납액 해소방안으로 경매가 진행중인 횡성 오일식품 외 4개업체는 먹는물관리법 제22조, 영업승계 규정에 따라 낙찰자에게 부과 징수하였으며, 기타 3개업체는 경영상태가 개선되고 있으므로 조기 납부유도하고, 불응시국세징수법에 의거 부동산공매절차를 통하여 강제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질 문]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 책정관련 민원을 접수 시정처리 견해는?

[답 변]

「정기책정」은 매년 9월 1일 기준으로 기존보호자와 신규신청자 및 시장·군수직권 재산과 소득등을 조사 매년 12월중 「정기책정 보호」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수시책정」은 생활보호를 해 줄 필요가 있는 대상자는 수시로 조사하여 년중 수시로 책정 보호하고 있고 금년도 생활보호책정 관련 시군에 민원접수된 29건은 사회복지전문요원이 현지를 직접방문 27건을 해결하고 2건은 사실과 다르므로 불가처리 하였습니다.

나) 教育行政

[질 문]

교원 근무여건에 따른 교사들의 승진기회 축소와 사기저하 및 이직현상 심화등 이들 사항에 대한 견해 및 대책은?

- 5학급 미만 소규모학교(초 103, 중 13) 교감 미배치로 교감 고유업무인 장학 및 조정기능 약화
- 소규모학교 교사들의 복식수업과 막중한 업무처리 부담가중 및 교원 사기저하와 교수학습과 교재연구 소홀로 교육의 질 저하와 벽지교육의 황폐화·공동화현상
- 하루평균 10건 이상의 과다한 공문서 처리로 교육의 질 저하

[답 변]

6학급 이상학교와 상대적으로 많은 업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수업결손, 교사의 사기저하,

승진기회 축소 등 많은 문제점이 있음.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도교육청에선 기회있을 때마다 관계요구에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 교감 배치관련법 개정과 보직교사 배치문제를 계속 제기하여 오고 있습니다.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하여 문서 실명제와 보고문서 주기 및 횡수감축, 공문서 처리절차의 간소화, 정보유통 시스템운영 및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와 분교장에 공문을 보내지 않고 본교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등 업무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질 문]

각급학교 교육행정실 명칭은 민원인들에게 학교기능의 중추조직으로 오해를 사고, 교원 사기를 저하시키므로 행정지원실로의 개칭 의향은?

[답 변]

교육개혁 실천을 위하여 '96년부터 2년간 교육행정실 개선을 위한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98년 3월 1일 도내 전 학교에 확대 운영한 사업으로써, 그 내용은 교무실에서 교원들이 담당하던 증명발급 등 7건의 사무를 교육행정실로 이관하고, 「서무과, 서무실」을 「교육행정실」로 명칭변경하였고, 교육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전국 시·도교육청에 권장 확대운영되고 있으며 상당기간 시범운영한 후 시행한지가 불과 2년정도로써 교육행정실 명칭을 변경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는 없다고 보아 현재로서는 변경이 곤란하다 하겠습니다.

[질 문]

소년체전 및 전국체전 상위 입상과 관련 비인기 체육종목의 육성·지원대책은?
·체육종목의 계열 육성을 위한 대학팀이나 실업팀 창단 선도의향은?

[답 변]

비인기종목으로 구분되는 육상, 수영, 유도, 배드민턴, 역도, 로울러등의 종목을 정책종목으로 선정집중육성하고, 신인선수 조기발굴, 지도자 배치, 선수육성을 위한 훈련비, 장비구입비 등 예산확보와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감기대회, 종목별대회, 선수권대회 등 각종대회를 개최하여 적극육성 지원하고 있으며 종목별 계열화의 예를들면 양궁은 명륜초교, 학생중, 북원여중, 원주여고, 원주고, 상지대학으로 원주에 단지화되어 있으며, 로울러 종목은 남강초, 율곡중, 경포고, 관동대학, 강릉시, 실업팀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도내 우수선수의 타시·도 유출억제 차원에서 9개대학에 26종목의 팀이 설치되었고 강원도청을 비롯한 시·군에 14개종목 25팀이 운영되고 있음. 앞으로 대학팀 및 실업팀 창단을 위하여 강



원도체육회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 第4次 本會議 質問 및 答辯要旨

1) 이인섭 議員

가) 江原道政

[질 문]

생산선 향상, 주민 만족위해 「행정개혁」 관련

- 도와 시군간 새로운 관계정립, 견해와 일하는 조직, 미래형 조직으로 변모시킬 방안
- 새시대 적응할 공직자양성 교육프로그램
- 공정하고 객관적 근무성적평가제도개선(하급자, 동료, 주민의 평가참여 방안)
- 중앙↔도, 도↔시군 인사교류 적극추진 용의

[답 변]

도와 시군의 관계는 ①「지도·감독관계」로서 이는 법적사항인 법적지위 관계 ②「조정관계」- 수직적·수평적으로 혹은 범위로 볼때의 광역적 조정관계 ③「상호보완·협력관계」로써 시군에 협조할 사업 정책에 대해 도와주고, 시군이 함께 따라주고 협력하는 관계 ④「독립적·자율적관계」-자치단체 자체시책은 시군 자율로 추진 해결해야 하며, 열심히 잘할때에는 도가 지원해 주는 관계에 있습니다.

행정조직은 행정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조직이 되고 우리도가 안고 있는 발전전략에 따르는 조직으로 운영되도록, 민간부분 관여를 줄이고, 사회복지 등 한계자원들을 지원하는 시책분야 지속화 조직유지, 정보화·통상분야 등 전문화 보강, 우리도 특수성과 미래변화에 대응 발전시켜 나가야 할 「환경」 「관광」 등의 분야는 강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으며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시에 동료, 하급자, 주민등의 참여방안에 대하여는 아직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중앙과 도,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 활성화 문제개선을 위해 도과장급이상 공무원 중앙과 교류 지속, 도전입 시험실시, 소양고사, 교육성적 우수자 발탁등 시행 도5급 승진 대상자의 시군전출 교류 등을 실시하고 있음. 앞으로 중앙과 도, 도와 시군의 인사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1:1상호교류 원칙에 의해 활성화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질 문]

「행정개혁」 관련 MBO제도, 성과중심예산제도 (道실정과 현실에 맞게 재조정, 제도적 방안)은?

[답 변]

「MBO제도」는 각종 평가지표 모델안을 연구하여 업무별 실정에 맞는 지표를 개발하고자 함
앞으로 MBO제도의 철저한 관리를 토대로 1~3급 연봉제 적용, 3급이하는 2000년도 추진실적
부터 성과급 계획, MBO목표달성도가 「공무원평정규칙」에 따라 전공무원이 「근무성적 평
정」으로 적용받는 인사·보수제도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성과중심의 예산제도」는 사업과 관련된 예산에 대하여 업무의 특성에 따른 예산운영의 탄력
성을 부여하여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임. 건설사업 등 45개 주요 재정사업에 대해
「성과주의」 예산구조로 전환하였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시에도 반영한 바 있음. 앞으로 범
위를 확대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강화등 예산의 효율성 극대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질 문]

도내 지역축제 평가분석 및 여론조사 실시

- 지역축제 조정 및 통합실시 용의
- “지역축제위원회(가칭)” 도주체로 창립용의
- 축제정보수집, 축제전문가 양성등
- 축제기금 조성을 통한 안정적 재원확보위해
- “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위한 조례제정
- 민간기업과 각급기관 재정적 참여 유도방안

[답 변]

자치시대에 시군축제를 도에서 강제로 정리하는데는 어려우며, 도내 축제에 대한 실태분석후
바람직한 축제모델을 제시한 「지역축제육성지침」을 지난 6월 시군에 시달한 바 있음. 강원도
를 대표하고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축제에 예산지원과 도·시군이 공동으로 개최
하고 있음. 시군별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자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고 있으며 강릉
「단오제」의 경우, 재정적으로 독립될 정도로 민간중심으로 잘 운영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축제위원회」를 설립하기 보다는 기존의 축제위원회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도·시군
관계자 및 의회, 학계, 언론계 인사들을 초청하여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심포지
움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 단위에 설치토록 되어 있고 재정여건을 고려해 볼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 되어 우선 도 운영 「문화예술진흥기금」 규모 확대지원 방안강구 및 민간기업의 세미나 운동참여와 각급기관의 후원과 협찬을 적극 유치방안 강구해 나아가겠습니다.

[질 문]

장애인과 정상인 공동생활하는 정책수립은?

- “장애인복지시법도” 육성시책성과
- 장애 예방적 차원 배려, 운영계획
- 장애인 취업 특단의 대책등 “장애인재활센터”효과적 활용방안은?

[답 변]

도에서는 장애인이 가장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장애인복지시법도」 육성을 목표로 여러 가지 시책등 구상추진하고 있으며 편의시설이 아직도 부족하지만 법정시한인 내년 4월까지의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마련되도록 촉구하고 미흡한 시설은 장애인의 입장에서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운영중인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금년 완공 예정인 「춘천장애인종합복지관」과 건립예정인 「강릉장애인종합복지관」이 건립되면 각종 프로그램이 한차원 높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농아인 수화통역센터는 현재 「농아인 도협회」에 설치운영중이며, 진료지원, 법정업무지원, 민원대행 등 714건의 수화통역한 바 있으며 동해시에 1개소를 추가 설립운영할 계획이며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는 맹인복지협회 도지부에 설치운영중이며, 금년도 5,444건의 업무를 처리하였음 원주·강릉에 확대운영할 계획입니다.

1개월 미만동안 주야간 보호하면서 재활치료, 물리치료를 하는 단기보호소는 현재 강원재활용에 1개소를 운영중에 있고 그밖에 장애인 그룹홈 등의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예방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여 최소한, 법정기준수의 장애인이 취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 생업지원을 위한 매점과 자판기는 현재 17개소를 장애인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 설치시에는 장애인 신청이 우선될 수 있도록 협조를 강화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정무지정발주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일부품목의 판로에는 다소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보호작업장 신축시에는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고용효과, 생산성, 판로대책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건립이 되도록 하고, 기존작업장에 대하여는 수주물량의 확보, 업종개발 등 행정지원

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나) 教育行政

[질 문]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수용시설, 지도교사, 교육비 부담등 장애인 특수교육 대책은?

- 도내 특수교육 대상자 교육실태(대상자 : 14,000여명, 도내 특수학교 수용인원 : 5개교 838명)
- 특수학교에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대책은?
-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일반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학생현황은?
- 한 학교에 특수학급이 1개정도 있으나 특수교육 교사가 아닌 일반교사가 담당하여 개발화 교육을 할 수 없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 경증 장애인의 치료교육비등 과중한 학부모 부담 경감
- 도내 경증 장애인 : 7000명 정도로 경증 장애인들의 경우 특수학급 기피 및 서울 등 타지역 시설교육기관에서의 고액치료교육비등으로 학부모 부담이 과중되는바, 이에대한 대책은?
- 학부모 부담경감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관이나 유사기관에 치료시설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는 바, 이에 대한 견해는?

[답 변]

특수교육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일반학급에 재학중인 아동 505명은 부모가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입학되기를 원하지 않은 장애아동과 특수대상자가 적어 학급설치가 어려운 소규모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아동이 대부분이고 일반학급에서도 개별화 교육이 가능하도록 자적연수, 직무연수, 일반연수 등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특수교육관련강좌를 개설운영하고 있음. 대부분의 대상자가 원하고 있으므로 일반아동과 함께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중증장애아를 위해 3개특수학교와 10개 지역교육청에서 61명의 순회겸임교사가 137명의 장애아를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확대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특수교육 유자격교사의 확보방안으로 도내 사범대학에 특수교육과 개설을 교육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유자격교사 배치를 위하여 인사관리 지침과 규칙을 개정한 바 있음. 이에 따라 2000년 3월 1일부터 전공자가 배치될 것이고 특수교육기관의 신·증설은 여러면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나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기에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이나 기타 유사기관에의 치료시설 설치문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다만 특수교육 문제에 관하여는 장애인복지관 등 유사기관 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폐교된 학교의 특수교육시설로의 활용은 여건, 개보수, 교육과정 운영등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특히 보건복지부 소관이므로 복지부와 협의 검토하겠습니다.

2) 안상현 議員

가) 江原道政

[질 문]

도정에 행정은 있으나 새로운 이념, 의지가 담긴 도지사의 철학을 느낄 수 없음.

- 도지사가 생각하는 변화의 기준
- 현란한 수사가 아닌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

[답 변]

변화의 새바람은 크게 보면 세가지 골격으로 하나는 세계적인 흐름이 세계화, 분권화, 지식정보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조직, 공무원들의 마인드 등 강원도가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응해 가느냐이고, 두 번째 발전전략 측면에서 미래형, 경쟁력이 강화되는 차원에서 새로운 틀을 짜고 전략을 정립하고 집중추진해야 되지 않느냐이고, 세 번째는 강원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강원도민 의식과 정신을 새롭게 창조해 보자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세계화, 정보화, 분권화와 연관해서 행정내부적으로 끊임없는 혁신작업을 해야되고, 두 번째는 이미지와 전략자체도 청정환경보전지 신산업 요충지로 전환시키고, 통일한국 1번지 신동해권의 중심지, 한국관광 1번지로 부상해서 최우위를 확보하자. 이런 것을 통해서 강원도 가치 및 미래를 담보해 보자는 것이 철학이고 전력이고 역점시책입니다.

권역을 교통망에 따라서 기능적으로 나누는 이른바 강원 7+3플랜 공간별 특성화 프로젝트이며 환경전략 차원에서 물자원을 전략화 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도민의식 부문으로 소극적이고 한계 의식에 젖어 있는 것을 진취적, 창조적, 능동적으로 가서 발전의 에너지를 만들어야 하며, 도민을 진취적 기상으로 바꾸고, 도민통합·지역간 갈등문제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질 문]

삶의 질과 직결된 사회복지 예산을 연도별 목표비율을 높여, 증액시킬 용의는?

- 사회복지의 생산적 사회복지 구축을 위한 정책은?

[답 변]

정부는 공급자 중심의 「전통적 복지」 개념에서, 수요자 중심의 「생산적 복지」 개념으로 사회

복지 패러다임을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가 추진해야 할 사회 복지시책은 전래적인 단순시혜차원의 「과소복지」로부터, 시장 친화적인 「적정복지」를 지향한다는 기조하에서 보호가 필요한 계층에는 체계적인 지원으로 적정수준의 기초생활 보장과 자활능력배양등 생산적 복지구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계획이며 사회복지 예산은 그 전에 워낙 어려워서 전년도 대비 '98년도에 20.5%였고, 99년도에 13.3%였고 내년도 예산에는 26.4% 이렇게 증액편성을 했음.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 문]

강원도 여성정책 업무의 이원화로 많은 문제 조정과 여성국을 부활 또는 타업무와 통합 일원화 하고 여성을 국장으로 임용할 의향은?

[답 변]

여성업무 기능중복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99. 5. 1자로 두부서의 기능을 재조정하여, 여성 정책실을 여성시책을 개발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기능을 수행토록하고, 여성복지과는 집행적 기능과 여성복지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 양실과가 상호보완적 가능하도록 조정하고 여성정책실장은 국장급으로 예우하고 있으며 환경복지국장 등에도 자격을 갖춘 우수한 여성공무원이 있다면 국장에 기용토록 할 것이며, 다만 현재 구조조정에 따른 국감축으로 심한 승진체제 현상을 빚고 있어 점진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질 문]

대규모 투자사업인 「전원신도시」 유보가 아닌, 전면 재검토 용의는?

[답 변]

「전원생태도시건설」은 2010년 완공목표로 단계별 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으며,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하였고, 입지별 개발여건 분석 및 기본계획구상 등과 항공지형측량 용역을 진행중입니다.

중앙정부의 행정정책 지원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법」 개정과 「도시개발법」이 제정되고 정부정책이 보다 분명하게 확립된 상태에서 국고지원, 외국자본 유치방안 등의 모색을 위해 충분한 준비기간 필요하고 주요 접근망인 중앙고속도로, 44번 국도 확장공사가 완성되는 시점과 경기호전 등 제반여건 성숙전망인 2000년 하반기나 2001년 상반기쯤 흥천·횡성지역을 대상으로 확정하고 현재로서는 전원생태도시의 전면 재검토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당초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 문]

대규모 투자사업인 「자연환경공원」 국비지원 가능성 희박한 상황에서 계속 추진의향, 조성사유는?

[답 변]

우리도의 특성에 맞는 자연환경연구공원은 2000년대 선도산업이 될 환경산업을 육성하면서, 자연의 소중함과 보전의식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큰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추진케 되었으며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으나 정부의 신규사업투자억제 방침에 따라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음. 앞으로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추진해 나가며,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예산확보등의 문제를 감안하여, 투자운선순위를 정하여 단계별 추진해 나가겠음.

[질 문]

민간단체지원 관련 임의보조단체 지원금이 “사회단체의 보조금 지급에 관한 관리조례”에 의해 집행내용은?

· 조례 개정용의(보조금지급 심사위원회 구성 및 사전, 사후 심의제 포함내용)은?

[답 변]

보조금의 신청이 있을 경우, 법령과 예산목적의 위배여부, 보조사업내용의 적정여부 등 종합검토후 교부결정 하고 있으며 사전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결정되므로 집행에 객관성이나 형평성을 유지하는데는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되며 연중 수시로 이루어지므로 신속한 업무처리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현행과 같이 추진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질 문]

원주기독병원의 영서권 「응급의료센터」설립이 시급한데 녹지로 묶여 응급센터 설립이 어려움과 영서권 응급의료센터 설립에 대한 대책은?

[답 변]

원주시에서 도시정비 계획에 따라 도시지역확장에 앞서 상위법인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건교부에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신청을 한 바 있으며 그 과정에서 관련부처 협의 및 국토이용계획심의 등 제반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많은 민원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확장부분을 제외한 기존 도시지역에 대하여 별도로 2000년 1월 입안하여 제반절차

를 이행 후 도시계획 변경을 신청하도록 하여 조속히 공원녹지가 해제되어 사업이 추진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나) 教育行政

[질 문]

'98년도 초등학교 교감 자격 취득자중 성적순 선발로 인해 승진되지 못한 선생님 들에 대한 대책은?

[답 변]

'99년 정년단축과 명예퇴직의 급증으로 9월 1일자 교감수요가 증가에 의한 수급을 위하여 조기에 교감자격연수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98, '99년도 자격연수 이수자를 통합 승진후 보자명부를 작성·적용케되어, '98년 이수자가 현재까지 승진임용되지 못했습니다. 2000년 교감소요는 3월에 22명 9월에 75명, 총 97명으로 예상됨. 승진 대기자는 '98년 이수자 21명을 포함 97명으로 2000년 중에 모두 임용될 것입니다.

[질 문]

도·농간 교육환경과 학력격차 해소, 교육의 기회균등실현, 소규모학교 통폐합의 최대한 억제, 소규모학교 협동체제 운영확대등을 언급하시면서 향후 도내의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한 방향과 의지를 밝혀 주시오!

[답 변]

교육환경과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소규모학교에 우수교사 배치상치교사 해소와 질 향상을 위한 현장연수를 적극 지원해 왔으며, 농·어촌지역 거점육성학교의 운영지원 확대와 내고장 학교보내기, 도·농간 교환교류학습 활성화하는 한편, 교육정보화 기반조성과 교단선진화사업, 낙후 교육시설 환경개선, 학력격차해소등에 지속적인 행정지원을 강구하고 학부모님과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교육부의 통·폐합 기준은 있으나 지역적 특수여건을 우선 고려하고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 이훈 議員

가) 江原道政



[질 문]

공직사회의 변화를 위한 분위기 쇄신 방안은?

- 道 참모진 보좌능력 부족

[답 변]

보는시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으나 현재 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제도적으로 제한된 조직여건과 제약된 범위에서 보면, 그래도 참모들을 비롯하여 모든 조직원들이 도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음은 지금까지 도정의 각 분야별로 볼 때 전반적으로 성과와 성취도가 입증한다고 봅니다. 이는 결코 도지사 혼자만이 아닌, 참모들과 전조직원이 함께하는데서 비롯된 것이며 도정을 아끼시는 조언으로 받아드리면서, 더욱 활력이 넘치는 조직으로 도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 문]

강원도 세상을 열기위한 공직변화바람 조성방안은?

- 도 산하공무원들에게 시민단체(NGO) 가입 허용
- 시민단체의 창의성등을 도정에 끌어들이는 필요성

[답 변]

조직화되어 있는 그런 NGO에 가입해서 활동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명백히 부정적임, 그 단체들이 갖고 있는 성격이 있고 활동내용들이 있고 또 공무원들도 공무원들끼리 할 일이 있음. 앞으로 시민단체와 관련해서는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으며, 다른뜻이 아닌 정말 강원도의 이익과 관련되거나, 그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훌륭한 활동을 하는데 대해서는 뒷받침 할 때는 하고 조언도 받고 해서 아주 능동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질 문]

뉴밀레니엄(새천년해맞이)행사 관련

- 시군간 연계성, 형식성, 일과성 지적
- 새천년 5대분야 르네상스 운동성공방안은?

[답 변]

「새천년해맞이」행사는 백두대간 명산영봉, 평화통일의 염원이 서린 145km의 휴전선, 국가발정의 동맥인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 등 의미있는 장소를 선정,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

를 이루기 위하여 준비함. 다른 행사는 도와 해당시군이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므로, 모든 시군간의 연계성과 통일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하겠습니다.

밀레니엄 구상은 범 도민이 참여하는 일종의 「운동」으로서 기본구상이 지닌 의미와 상징성을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점에 따라서는, 다소의 형이상학적이고 현학적인 측명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상징사업으로 선정된 19개 사업은 형이상학적이라기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업계획이라 할 수 있으며, 19개 밀레니엄 상징사업과 추진과정에서도 지역경제·문화·학술 등 「다양한 기대효과」의 거양, 행사의 내용면에 있어서 「관광성」의 부각, 지역간·계층간 「통합적 요소」의 고려, 「지속적인 관심 유도」를 위한 「정례화」 검토 등 4가지 방점을 정하여 단순한 일과성 사업이나 소모성행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 문]

정부홍보 IMF탈출관련, 도민의 실질체감지수와 강원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답 변]

현재의 실업률은 3%로 전국평균에 비해 1.6%하회함. 부도업체수도 10월 현재 17개업체로 상당히 회복되었고, 소비자 물가도 평균 6.3%상승에 그침. 무역수지도 적자에서 10월 현재 3,000만불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3만개 일자리창출 또 중소기업 지원센터, 벤처기업부분은 현재보다 더확보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한 강원 신용보증부가설립되어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수출전략과 큰 기업체가 몰려오는데 대한 소상공인 대책등에 대해서도 연구용역등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질 문]

강원도정의 사회복지기금운영과 복지위원회 구성운영 대안은?

[답 변]

지역복지증진과 사회복지사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사회복지기금은 1997~200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81억원을 조성목표로 하여 34억원이 조성되었으며, 조성완료되는 2002년부터는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주체 등에 지원하게 되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 위원회는 내년도에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제정하고, 각 분야의 사회복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앞으로 본 위원회가 강원사회복지 정책을 개발하고 입안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질 문]

강원도 공기업운영의 난맥상을 치유할 대책은?

- 의료원의 민간위탁, 특화병원, 매각등의 조치
- 강릉의료원 노인병원 전환에 대한 견해

[답 변]

시설·장비노후 등 여러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등으로 적자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유능한 의료진 확보 및 직원 친절운동을 전개해 나가면서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과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 경영혁신을 통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음. 앞으로 춘천의료원 매각과 같은 경영체제 전환을 또는 위탁운영 등 다각적인 방안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강릉의료원의 노인치매 전용병원 육성방안은 도립의 경우 시설은 국고 50%와 지방비 50%로 지원되나 운영비는 전액 운영주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을 비롯하여 수지분석과 치매환자의 수요실태 및 지역실태 등 객관적인 기준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중하게 방침을 확정해야 되므로 현재로서는 도내 노인요양시설 이용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질 문]

길림성 강원경제무역사무소 확대개편 내용은?

- 道자본으로 신축, 통상·강원도대사 업무수행

[답 변]

무역사무소 신축은 자체검토와 관련부처에 의견조회 결과 자치단체의 직접적인 해외투자가 법적 및 절차적으로 제약이 따르고 그 효율성 및 활용도면에서 불확실하므로 사실상 어려움이 있으며, 운영효율화와 경비절감을 위하여 공공건물을 저렴하게 유상 또는 무상사용하는 방안을 길림성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사무소 기능 제고를 위하여 전문상담원 1인을 보강하여 무역증대를 도모할 계획임. 대중국 수출 유망품목 발굴홍보 등 판매망을 확대하고, 전시관을 정비하여 경쟁력 없는 상품교체, 전시장비확충 등 길림성무역사무소의 존재를 적극 홍보하여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하여 명실공히 강원도의 대 중국 진출의 교두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 문]

강원도가 선도하는 관광개발전략인 「도립공원발전위원회」 구성 및 도립공원 해제의향은?

[답 변]

사유지 공원면적의 절반점유, 기존건물 난립, 자연공원 기능상실했, 전향적 개발추진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됨. 지역주민 인식이 개발과 소득위주에서 자연환경·생태계의 보존 위주로 전환될 때 전향 추진가능, 실질적인 관리주체인 시장·군수와 개발방향, 재정대책 등 역할분담하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며 앞으로 도에서는 전향적인 개발여건이 조기에 성숙되도록 주도해 가면서 우선 2000년도부터 도립공원별 입지특성을 최대한 살려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질 문]

골프장 체육성금 미납분에 대한 도의 대책은?

- 선언적·합리적 조치필요, 어떤 계획?

[답 변]

약정액은 6건에 97억원이고, 이중 13억원은 기탁되고, 84억원이 미기탁됨. 준조세적 기업성금 기탁 금지방침에 의거 '95. 12. 30 기부금품모집규제법으로 법제화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음. 현행 법규하에서는 체육진흥기금 접수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기탁한 업체와의 형평성문제, 개발이익의 지역환수, 강원체육진흥기금의 확충이라는 대의명분을 위해서도 이문제는 해결되어야함. 검토중인 몇가지 대안으로서 받아놓을 약정에 의한 기탁금 확보는 법상 불가능 하므로 현행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 가능한 지정기탁 즉 동법 제5조 단서규정과 동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서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는 가능토록에서 순수 지정기탁을 해오는 경우 접수하는 방법이 하나이고, 미기탁업체로 하여금 실업팀을 창단 운영케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이 모든것이 IMF영향, 거품경제 체질개선 과정에서 거의 공사가 중단되거나 운영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 教育行政

[질 문]

교원 정년단축등 교육개혁과정에서 교육감의 입지와 교육위기 극복 방안은?

· 단축된 교원정년 원상회복 동향에 따른 교육정책의 현주소는?

[답 변]

정년단축 등으로 많은 교원들이 한꺼번에 퇴직함으로 심각한 교원부족현상 발행. 극히 일부교



사들의 부도덕한 언행과 각종 비리 및 적절치 못한 교육활동으로 인하여 교직사회 전체가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지못함으로써 교권은 실추되고 교원의 사기는 저하되었으며, 교실붕괴와 학교 교육위기의 현상이 초래되는 실정입니다.

교육에 대한 소명의식으로 묵묵히 열과 성을 다해 성실하게 학생교육에 몸 바쳐 헌신하고 있는 모든교원들에게 위와 같은 현상외에 학생에 대한 제제와 교육적 체벌을 폭력, 폭행으로 간주연행하는 등 회의를 허탈감을 주어 교육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교육의 위기를 초래한 큰 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함.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하여 저하된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교육력을 강화하여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질 문]

여성교육기관인 사임당 교육원 운영에 있어 교육 프로그램이 시대적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직원들의 방만한 근무에 대한 여론이 있으며 현재 정원이 39명이나 현원이 43명인 문제점등 폐쇄적이고 보수적 교육행정의 전형적인 모델인 것으로 이에대한 의견은?

[답 변]

사임당교육원의 체육장을 개방하지 않는 이유는 그 교육내용은 정숙을 요하는 특성 때문이며 '77년에 설립되어 74,023명의 우수한 수료생을 배출 타·시도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우수한 지도 인력이 현재와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적용 수련생들의 만족도 조사결과 약 97% 학생이 보람있는 수련활동이었고 기구개편으로 정원이 39명인데 현원이 43명이 되고 있으나, 특기 지도 파견교사 3명과 연구관 1명등 연차계획에 따라 전원 감원조정 대상이었습니다.

여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인바, 정해진 교육과정 이외의 특별한 행사가 없어 도의원님 등과 협의시간을 갖지 못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임당교육원의 운영과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질 문]

수행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은?

[답 변]

수행평가는 종전의 획일적이고 단순한 평가방법에서 진일보한 평가형태의 도입이라고 말할 수 있겠음. 문제점으로 교사의 업무부담 가중이며, 채점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로써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으로 수행평가의 영역과 횟수 반영 비율등에 관한 재량권을 각학교에 위임하여 학교별 교과협의회를 거쳐 결정토록 함으로써 획일적인 수행평가 실시가 아닌 위의 사항을 학교의 실정과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성적관리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적극적인 대책으로 수행평가 지원센터 운영등으로 교사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수행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확보는 지필고사에 비해 교사의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많은 한편 타당성이 높은 동시에 객관적 측면에서 취약한 특성을 지니므로 객관적인 준거에 의한 엄정하고 타당성있는 평가가 수행평가의 조기 정착과 성과를 좌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 第111回 定例會

가. 第2次 本會議 質問 및 答辯要旨

1) 정철수 議員

가) 江原道政

[질 문]

역사이래 최대 산불발생중 영서북부지역 단체장이 자გი지역을 벗어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등 민선자치단체장의 실질적, 도의적 책임한계에 대한 견해는?

[답 변]

이번 산불은 강풍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정부에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조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한 바 있으며, 관선때는 단체장에게 직접 문책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으나 현행법에는 문책규정이 없어 산불에 대한 관심도에 미흡한 점이 있으나 그 중요성은 단체장 자신의 판단사항이며 중앙에서 이 문제에 대해 검토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질 문]

백두산항로 개항식에 도의회의장의 축사없고 처녀출항에 도의회의원 미동승등 도의회를 경시 이유 및 관계자 문책을 요구함.

[답 변]

의장을 비롯 연해주지사, 길림성 인민대회 부주임 등 모든 분들이 축사를 할 수 있도록 시간조정을 검토하였으나 행사진행 관계상 어려움이 있었으며, 동춘호에 의원들이 동승도 사전협의한 결과 방문할 의원이 없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도 단위 주요행사시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의 의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 문]

타시도는 정무부지사 분야에 큰 비중인데 우리도가 그렇지 못한 사유 및 도지사의 대의회관은?

[답 변]

민선2기 출범과 함께 정무부지사는 행정전문가 보다는 기업경영인이나 경제전문가를 임명해 왔

으며 타 시도의 경우도 이러한 추세를 따르고 있으며, 집행부의 대의회 관계에 있어 정무부지사는 물론 행정부지사, 실국장을 통해서 협조관계를 긴밀히 하고 또한 의회교섭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질 문]

도와 시·군 상하 협조관계인지 수평관계인지 의견은?

[답 변]

도와 시·군간의 관계가 협력과 지원의 동반자로서 횡적·수평적 관계로 변화되어 가고 있으며 도와 시·군이 지역의 주요현안과 도정전반에 대하여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 문]

강원도정발전을 위해 도의 이익 극대화를 위하여 여·야를 초월, 초당적인 협조체제 구축 방안은?

[답 변]

어떤 사안에 대한 결실과 성취는 우리모두의 한마음의 협력에서 기인되고 있음이 확신되고 또 실제 그러한 과정들을 겪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도의회, 국회의원, 시민단체 그리고 도집행부간의 공조체제를 더욱 발전시켜 우선, 당면한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협력, 지원체제를 「풀」 가동하고 수시로 도정과 지역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함께 해결하는 「상시네트워크」 체제를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질 문]

도의 본청 및 사업소의 관사 관리현황과 최근 3년간 관사 소요예산(증·감 현황 포함), 불요불급한 관사 정리방안은?

[답 변]

'98년이후 도에서 관리하여 온 관사는 도본청 22동, 외청 및 사업소 8동 등 모두 30동으로 도본청 14동, 사업소 1동을 용도폐지하여 1차 정리가 완료되면 관사는 30동에서 15동으로 줄어들게 되며, 관사소요예산은 '98년 1,258만원, '99년 1,355만원, 금년 5월까지 767만원으로 증가분은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것이며 앞으로 관사운영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불필요한 관사는 계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질 문]

1회 추경시 민간단체 보조등 선심성예산 일부편성(필요 사업비 미 반영)하는 등 도의원도 모르는 기초의원 요구 또는 사회단체 요청 사업비 지원(예산권 남용) 이와같은 예산집행 사례 및 개선대책은?

[답 변]

강릉시에서 추진하는 알콜발효 사료공장 설치사업으로 총 사업비 9,000만원중 도비 지원액 1,620만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 추진중에 있으나 일부 의원이 동 사업을 삼척, 양양등 인근 시·군 한우농가에도 추진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이에 소요되는 예산중 도비추가지원금 1,080만원을 제1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였으나 예산 사정상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예산편상과 정에서 의원이 관심을 갖는 사업에 대하여는 긴밀한 협의, 협조체제를 갖도록 하고 또한 예산 편성은 사업의 필요성과 도정시책과의 연계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질 문]

출신지역으로 인한 불이익인사 없어야 함(일부 출신지역 공무원의 중요직 편중인사). 도지사의 인사정책에 대하여 소신은?

[답 변]

성실성과 책임감, 능력과 실적 그리고 전문성과 경쟁력을 염두에 두고 인사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 개방형 임용제의 도입, 외부전문가의 계약직 채용확대, 성과중심의 근무평정등 행정 환경과 시대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인사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 문]

인구감소로 인한 강원도의 황폐화와 공동화 현상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과 향후 강원도 발전 방향은?

[답 변]

정부차원의 수도권 집중억제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과 도차원의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강원도 장기발전 전략의 근간이 되는 「강원7+3플랜」 중심의 공간별 특성화 개발을 위한 「기본틀」을 새롭게 짜고 「2시간대 생활권」 구축을 위한 「길전략」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1차산업은 특성 상품화·브랜드화, 2차산업은 첨단 벤처 중

소기업육성, 3차산업은 관광·문화의 21세기 승부산업화등 부분별 추진전력과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였습니다.

[질 문]

농공단지내 미분양부지를 사업성이 있는 기업에 장기임대 가능한지?

- 농공단지 미분양 부지 처리 방안은?
- 기업주 기업의 활성화 대책은?

[답 변]

앞으로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대책과 연계하여 도내 이전 희망업체를 미분양 농공단지에 우선 알선하는 등 분양입주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임대방안에 대해서도 농공단지 관리권자인 해당 시장·군수와 효율적인 방안을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우선 알선, 융자지원하고 유 관기관, 관내대학, 연구소등과 협조하여 기술개발지원 및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도 판로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질 문]

정부양곡의 보관창고 및 도정공장, 양곡가공 및 운반등의 관리실태에 대한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 조사강화대책은?

[답 변]

금년 3월말 재고조사결과(년2회 : 3월, 10월말 기준 실시) 재고량 총 62,260톤은 일치하였으며 창고 정비상태, 도난방지시설, 화재예방 및 누수방지 시설등 점검결과 23건의 지적이 있었으나 이를 현장 시정하여 안전관리에 이상이 없으며 정기, 비정기 및 불시조사의 강화대책으로 시·군별 양곡보관 취약지에 대한 전담조사반을 편성 운영하여, 분기별 1회이상 지도점검실시로 도난, 화재방지 등 일상생활에서 특히 일어날 수 있는 사항등에 대하여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질 문]

경작지 감소사유 및 대책은?

- 최근 3년간 경작지면적 감소현황과 사유, 감소방지대책, 농업진흥구역의 우량농지전용 제한 방안



[답 변]

농지는 “농지법”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절차에 따라 최소한의 면적만이 전용되도록 하고 있으며 농지감소현황은 '97년 842ha, '98년 467ha, '99년 508ha 등 총1,817ha가 전용되었음.
앞으로 농지전용시는 도로등 지역개발과 같은 극히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전용 조치한다는 마음자세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질 문]

산란직전 및 어린고기 남획 근절대책은?

- 삼중자망 허용여부에 대한 방침과 전망
- 어린고기 남획에도 단속하지 않는 사유
- 산란직전의 성어와 어린고기의 남획 근절방안

[답 변]

지난해 11월 5일부터 금년 12월 4일까지 한국해양연구소와 3중자망 어업에 대한 용역을 체결하여 조사중에 있으며 동 연구결과에 따라 자원의 합리적인 이용방안을 마련하여 해양수산분에 재 건의할 계획이며, 도내 약 300여척의 어선들이 작은 낚시를 사용하여 어린 가자미까지 잡는 것이 사실이나 현 제도상 가자미에 대한 체포금지 체장 및 금지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현재 낚시크기 및 어구량을 어업인 스스로 조정하여 조업하도록 지도·계몽하고 있으며 앞으로 체포금지기간이나 금지체장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질 문]

인도네시아와 어업협력 계약체결 관련 사전 절차파악 미흡 및 입어로 과다한데 사전준비와 현지정세 파악미흡에 대한 설명, 향후 대책은?

[답 변]

입어로 3개월분 선불문제는 보다 유리한 조건인 보험비율에 의한 부담방식으로 기본 계약만하고 세부사항은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으며 해외어장 개척이 우리 도로서는 처음이며 인니정정의 불안정등에서 일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앞으로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시험조업보다는 7월경 우선 우리도 어업인 10명내외를 인니 현지에 파견하여 조업사항과 가격, 유통정보등을 확인한 후 수익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면 내년초에 본격출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 문]

영세울 적용기간이 금년까지로 내년부터 10%이상 비용추가부담되고 전국 시도지사와 연계, 관

계부처에 부가세 면제기간 연장, 품목확대등 부담경감을 위하여 농축산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면제기간 연장 대안은?

[답 변]

농림부에서는 기간연장을 재정경제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재정경제부에서도 조세감면 기간연장에 대한 조세특례 제한법의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도에서도 농업인들의 농·축산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간이 연장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펄라이트”나 “트레이” 등 원예 기자재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범위에 포함되도록 중앙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나) 教育行政

[질 문]

학교교육현장의 병리현상 치유방법과 교육의 현주소와 나아가야 할 방향 및 강원교육특색과 차별화된 시책이나 전략은?

[답 변]

교육현장의 병리현상은 교직원의 소명의식 부족으로 인성교육의 소홀에서 오는 현상과 일부학부모들의 그릇된 자녀교육관 및 고르지 못한 사회의 교육환경탓이고 이의 개선을 위해 도덕성 함양운동에 관한 지도를 꾸준히 실천하는 한편 교육정책 혼선, 과외 전면개방 등으로 교원사기 저하, 정상적인 공교육운영에 대한 위기 의식 느낌 이를 극복하고 공교육활성화를 위한 교원사기 양양책 강구

- 교원 지위향상 도모
- 자율연수비 일부지원 방안 강구
- 박사학위과정교원 등 연구비 지원하고
 - 학교교육 강화방안으로
- 내실있는 교육과정으로 학습력 신장
- 특기·적성교육을 통한 소질과 적성계발
- 교육정보화 실현
- 평생교육 학습체제로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 문]

'99년도 각급학교(초·중·고)학교발전기금 모금현황으로 초·중·고별 학교수 및 모금액, '97



년도의 각급학교 기부금 모금액과의 차이 및 모금액 증가 사유는?

- 기금모금과 관련 부작용 발생건수는?
- 학교발전기금 관련사항 단위학교 평가 반영비율과 정상적인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학교운영비의 표준교육비 비율,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시에도 지속적인 학교발전기금 모금 필요성은?

[답 변]

- 학교발전기금 모금현황
 - 초등학교 : 206개교, 16억 5,003만원
 - 중 학 교 : 85개교, 5억 3,651만원
 - 고등학교 : 98개교, 18억 2,703만원
 - 특수학교 : 3개교, 705만원
- '97년도와 '99년도 모금액 비교
 - '97년도 : 20억 3,542만원
 - '99년도 : 40억 2,062만원
 - 차 액 : 19억 8,520만원
- 증가사유 : 인식정착에 따른 자발적 모금 활성화
- 기부금 모금과 관련 경미한 부작용 발생사례 있었으나, 학교발전 목적 모금으로 자체에서 원만히 해결하고 단위학교 평가에는 반영않으며 학교운영비가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표준교육비 61.4%이고, 향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개정되어도 표준교육비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학교발전기금 조성목적이 기본적 교육활동 외에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적 욕구 수용에 따라 계속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질 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한 폐교매각 처분에 따른 임대 경쟁입찰후 낙찰자가 없어 지방자치단체에게 유상임대 조건으로 2000년에 매각 회시한 폐교(양구 고대분교, 서호분교)와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할 의견 및 계획은?

[답 변]

고대분교장은 예술인 작업실로 사용중 소호분교장은 노후건물 철거후 경작지로 임대중이며 월명분교, 군량분교는 높은 임대료 및 입지 조건이 맞지 않아 유찰되어 양구군에서 청소년 이용시설 및 문화예술 공간시설로 활용키 위해 유상임대 사용되고 있습니다.

양구군에서 매각요구 있었으나 재산의 보존전 차원에 매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천희숙 議員

가) 江原道政

[질 문]

여성발전기금 기금조성 목표를 30억원 → 50억원으로 확대할 용의는?

[답 변]

여성발전기금을 50억원을 확대 조성하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당장은 도재정 형편상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점차 확대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 문]

인도네시아와 어업협력체결과 관련한 조업가능시기와 문제점은?

[답 변]

입어료 3개월분 선불문제는 보다 유리한 조건인 보험비율에 의한 부담방식으로 기본계약만 하고 세부사항은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으며, 해외어정 개척이 우리도로서는 처음이며 인니정정의 불안정등에서 일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앞으로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시험조업보다는 7월경 우선 우리도 어업인 10명 내외를 인니현지에 파견하여 조업사항과 가격, 유통정보등을 확인한 후 수익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며 내년 초에 본격출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 문]

붕어섬 개발중단 및 생태계 파괴 관련한 '96년이후 방치사유 및 관리현황, 향후 추진방안 및 대책은?

[답 변]

하중도와 붕어섬에 대한 개발을 위해 수차례에 국내·외 기업체의 현지방문 또는 외국에 나가서 투자협의를 가진바 있으나 IMF등으로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으나 SOC사업의 확충으로 투자유치 여건이 호전되면 민자유치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하중도와 붕어섬을 연계한 개발사업이 추진되리라 봅니다.

도에서는 외국자본유치를 위해 이곳을 외국의 디즈니랜드와 유니버설스튜디오와 같은 중부권의



거점 관광지로 개발 및 외국인투자를 위해 투자설명회 및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투자유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질 문]

붕어섬 개발중단 및 생태계 파괴 관련 미군헬기로 인한 주민피해는?

[답 변]

미8군의 헬기 비행훈련장 활용 협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사용을 승낙한 바 있으며 이에따라 지난 3월까지 실시된 헬기 이·착륙 훈련으로 붕어섬과 인접해 있는 춘천시 송암동, 삼천동 일부지역에서 소음등으로 인한 다소의 불편이 있었으나 이와 관련 민원은 없었으며 현재는 훈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 문]

붕어섬 개발중단 및 생태계 파괴에 대한 연구분석 용의는?

[답 변]

의암호내의 수질은 도시하수처리수가 방류되는 지점으로 골재 채취장이 있어 물이 정체된데 기인된 것으로 판단되, 자망어업인들에 의한 어획량의 증가와 외래어종의 서식증가로 인하여 토착어종인 참붕어, 동자개등의 서식밀도도 감소된 것이 어획량 감소의 요인으로 의암호 생태계 보전방안으로는 산란기 과다한 어류포획을 제한할 수 있는 어촌계의 자발적인 참여유도와 행정기관에서는 골재채취 지점의 원상복구와 골재채취 주변에 정체 수역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 문]

남이섬을 현대적 관광지로 개발할 용의는?

[답 변]

주식회사 남이섬에는 관광객이 선호하는 휴양시설로 개선하고자 체육시설과 사이버파크, 다목적 운영시설등의 신설, 휴양콘도미니엄의 신축을 위하여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마치고 착공을 위한 준비단계에 있으며, 민자사업인 관광객 이용시설업은 사업주의 의지와 자금조달 능력등이 검토되어야 시대성과 지역특성에 걸맞는 개발이 가능하므로 앞으로 계획된 관광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지도 및 사업체의 분발을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질 문]

먹는 샘터관리의 샘터현황과 관리실태 및 체계적 관리계획은?

[답 변]

도내에서 약수터 14개소, 샘터 96개소등 모두 110개소의 시설이 있고, 샘터 관리실태 조사결과 지붕시설, 안내판, 음수대, 편의시설, 진입로 및 이정표등 86개 시설이 교체 또는 정비대상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에 42개소에 대하여 편의시설과 안내판이 새로이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 지붕 5개소, 안내판 20개소, 음수대 13, 편의시설 6개소 등을 설치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질 문]

도청내 보육시설인 어린이집 설치운영 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과 도내 직장보육시설 운영현황 및 실태는?

[답 변]

도청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나 현 도청 청사에 여유공간이 없고 부지가 협소하여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향후 도청직원 자녀에 대해 민간보육시설에 위탁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으며, 우리도내 직장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는 원주 삼양식품, 아산재단 강릉병원등 8개소이며 시·군청에 설치된 직장 보육시설은 없습니다.

[질 문]

여성공무원 승진우대 실적과 현황과 임신과 출산에 대한 가산점 적용 제안에 대한 견해는?

[답 변]

여성공무원은 승진서열에 관계없이 승진인원의 배수범위 내에 포함될 경우 우선 승진임용토록 하여 지금까지 5급 3명, 7급 3명등 총 6명이 승진 임용되었고, 여성공무원의 승진기회 확대를 위하여 근무성적 평정시 실국별로 여성공무원의 20%를 평정순위 50%범위 이내에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여성에게 가산점을 적용하는 문제는 남성에게 부여하던 군필가산점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여성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경우 오히려 역차별 문제와 현행 인사법령상 우리도에서만 독자적 운영할 수가 없는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질 문]

여성회관의 야간교육과정 확대제안에 대한 견해와 정보화시대등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교육과



정 개편운영 계획은?

[답 변]

금년에 처음으로 제과제빵, 컴퓨터등 2개 과정을 야간에 편성하여 시범적으로 운영중에 있는 바 교육수요와 여성회관의 교육생수요능력등을 감안하여 야간교육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였으며, 금년 하반기부터 워드프로세서 자격증반과 경제성있는 과목을 개설, 운영하며 노인성치매질환에 대한 이해와 간병요령, 가족의 정신건강등을 내용으로 한 특수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시·군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질 문]

여성수련원을 현대식으로 전면 개축하여 전국 규모의 여성수련원으로 운영 제안하고 인근 관광지 현장체험 교육으로 도의 이미지 부각 등 획기적으로 개선할 용의는?

[답 변]

교과편성은 연수대상에 따라 특성화, 전문화하고, 정부 및 도의 여성정책 방향등 주요시책은 공통 필수과목으로 설정하는등 소프트웨어 부문을 개선하고 노후된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다양한 강의시설과 쾌적한 숙박시설을 신축하여 전국의 많은 여성들의 강원도여성수련원을 연수·휴식시설로 활용하게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 약 76억원으로 이중 50%를 2001년도 국비에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였음.

[질 문]

과거 조직보다 축소하더라도 산림국 부활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 변]

산림자원의 보전과 경제적·공익적 기능확충등 효율적인 산림관리를 위해서는 산림전담국의 설치도 제기되고 있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에서 정한 행정기구 설치 기준등 현실적으로 제약 요인(강원도 8국 이내)이 있어 국의 증설은 현 시점에서 어려우나 금번 승인된 산림복구 전담기구(4급 등 7명)와 기존부서를 조화롭게 운영하면서 앞으로 정부에서 행정기구 설치기준 개정등 기회가 있을 때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질 문]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우리도가 남북교류의 중추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도민의 기대에 부응토록

역량발휘 주문

[답 변]

지난 6. 21 환동해권 지사·성장회의에 북한의 참여를 공식 제의하고 이의 성사를 연구하고 있으며 강원개발연구원에 북강원연구센터를 설치했으며, 남북연결 교통망에 대하여는 정부와 긴밀한 협조로 조기에 복원·확충되도록 하며, 남북 강원도간의 협력사업은 1차산업에 중점을 두되 실질적으로 양 지역에 이익 및 타지역에 비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며 설악·금강권 개발과 DMZ 평화 생명마을은 평화교육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민간부문의 교류사업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 教育行政

[질 문]

여성인력양성 등 여성정책 개발·시행문제로 여성 성차별의식 해소프로그램 유무 및 획기적 정책대안 개발시행 용의와 일선 학교와 교육청 고위직 임명시 일정비율 여성에게 배려할 방안 및 여성교직자의 사기 앙양책은?

[답 변]

- 성차별 의식 해소 프로그램
- 연간 1회이상 학생·교사 대상으로 양성평등 교육 및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 성차별해소 지침서 제작 활용토록 권장
- 성차별금지 책자 보급 및 포스터게시하고 교원연수시 「양성평등」 과목 개설운영
- 각급학교 교훈의 성차별 내용 수정지도

일선학교와 교육청 고위직 임명시 일정비율 여성에게 배려하는 것은 해당자격을 소지하여야 하므로 어렵고 교장·교감 자격 소지자 중 능력과 조건 갖춘 분은 임명하고 있으며 여교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격과 능력 갖춘 분은 관련 법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계속 확대 임용하겠습니다.

여교사 협의회 활성화 및 각종 위원회와 교육행사 등에도 여교원들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질 문]

강원교육재정 확보 증대 방안과 법정전입금, 비법정전입금에 대한 관련 법규 및 근거는?



[답 변]

- 자체재원확보 관련 “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수립
- 홍보를 통해 학교발전기금 확대 노력
- 가용재원 고이율의 정기예금 전화
- 민간재원 유치
- 특별교부금 확대 노력과 법정전입금 조기전입
- 법정전입금의 법적 근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11조제1항
- 비법정전입금의 법적 근거는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 문]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대비한 컴퓨터 교육에 교사들 컴퓨터 특별연수 계획 및 초·중·고 교사중 컴퓨터 교육가능 교원수는?

- 교육정보화 기반구축 현황, 소프트웨어 공급대책, 상위기종으로 교체된 286, 386컴퓨터 활용 방안은?

[답 변]

교원의 정보화 연수 계획은 금년 중으로 전체교원의 25%정도 연수, 컴퓨터 교육할 수 있는 교원수는 전체교원의 약 70%이며 정보화 교육시설현황은 지난해까지 학생 교육용 PC보급 - 62.2%, 교단선진화기기보급 - 53.5%, 학내전산망구축 - 54.5%로 연내에 완료계획입니다. 소프트웨어 공급대책은 교육정보화 기기활용 위해 학교당 매년 100만원 지원하여 286, 386기종 컴퓨터는 자판익히기, 문서작성등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질 문]

폐교관리에 대한 일제점검 실시여부 및 결과와 현재까지 매각처분, 철거, 공익목적사용, 임대(목적별) 등 현황은?

[답 변]

높은 임대료로 지역주민 참여가 적어 외지인에게 임대가 많이 되었으며 폐교활용현황은 전체 폐교 339개중 매각 및 반환 72, 건물철거 부지만 활용 17, 자체활용 28, 임대중 205, 미활용 17이고 폐교재산은 현장체험 학습장, 학생수련 교육용으로 우선 활용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위해 수익계약 임대하며, 지역주민 공동목적 활용시 임대료 1000분의 25이상으로 낮추어 활용하

는등 폐지학교 점검은 '99년도에 본청에서 전·후반기 지도점검 실시, 금년에도 점검계획 수립 후 점검할 계획이며, 지역교육청은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질 문]

창의성교육과 관련하여 실시하고 있는 특기·적성교육 추진상황 및 문제점에 대한 향후 대책과 국고지원 감소에 따른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대책방안은?

[답 변]

특기·적성교육활동 실시학교는 국·공·사립 포함 100% 실시하며 참여학생은 약 50%이며 학생희망, 지도교사능력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문제점은 국고지원금 부족으로 강사의 확보가 어려워 교육기회를 충분히 제공 못하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강사비 확보위해 관계기관에 건의 및 군주둔지역은 군인 인원활용 방안 모색과 금년도 특기·적성교육 활동비는 전년도 대비 66억 9천만원 감액된 상태로, 12학급 미만교 전액지원은 어려운 실정이며, 교육부로부터 추가지원 받아 7월초 배부하여 활성화 시킬 예정입니다.

[질 문]

각급학교 급식실태와 문제점 및 급식사고 학교수와 처리 현황과 대책은?
· 집단 이질성 환자 발생한 원주공고 학생들의 환자발생 및 치료현황은?

[답 변]

도내 급식학교 현황은 초등학교는 전면급식, 중학교 160개교 중 101교 고등학교 111개교 중 99교 급식실시하고 급식운영방법은 자체조리급식 468개교(초 367, 중 45, 고 43) 위탁급식 99개교(중 56, 고 43)이며 급식운영 문제점으로는 정규직 영양사 부족에 따라 일용직 등을 활용하여 운영함으로써 업무 연계 유지 곤란 및 책임성 결여 문제 발생 영양사 정원을 별도 정원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건의하겠습니다.

· 급식으로 인한 위생사고 없으며 학교급식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위생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원주공고 학생 및 교사가 제주도 수학여행 후 설사 증세가 있었으나, 보건소와 역학검사결과 단순 설사 증세로 판명되었으며 학생들을 완치되었습니다.

3) 김원기 議員

가) 江原道政



[질 문]

남북강원도 교류협력방안과 전략 및 추진방법은?

[답 변]

지난 6. 21 환동해권 지사·성장회의에 북한의 참여를 공식제의하고 이의 성사를 위해 연구하고 있으며 강원개발연구원에 북강원연구센터를 설치했으며 남북연결 교통망에 대하여는 정부와 긴밀한 협조로 조기에 복원확충되도록 하며 남북강원도간의 협력사업은 1차산업에 중점을 두되 실질적으로 양지역에 이익 및 타지역에 비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며 설악·금강권 개발과 DMZ 평화생명 마을은 평화교류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민간부문의 교류사업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 문]

SOC 시설건설 민자유치방안 확충을 위해 외자 등 민자유치를 위한 종합적 구체적인 특단의 대책은?

[답 변]

도내 민자유치의 첫 성과로 미시령터널 사업에 민자유치가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투자해야 할 부문은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민간자본을 유치해야 할 부문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각종 인센티브제공, 개발수익의 보장 등 투자여건을 조성하여 성공적인 제2, 제3의 민자유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 문]

수도권기업의 강원도 이전 기업체 현황, 문제점 및 대책은?

[답 변]

2개업체 이전완료, 1개업체는 이전 합의했으며 현재 5개업체는 협의중에 있어 2~3개 업체는 더 유치할 수 있을 것이며, '99년 연말 건교부에서 수도권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이전 희망지를 조사한 결과 40개업체중 우리도 희망은 1개업체인 반면 대부분이 충청남·북도를 희망하고 있으며 현재 이전 협의중이거나 문의하는 기업 대부분이 무상에 가까운 저가의 부지알선을 요구하고 있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촉진조례도 제정된만큼 정보통신, 교통등 각종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면서 이전 가능기업을 직접 방문, 보다 많은 기업이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 문]

경차 이용 활성화로 경차 보유자에 대한 혜택 등 현행 시행제도 설명하고 경차 이용 확대방안은?

[답 변]

자동차세의 경우 연간 64천원으로서 2000cc급의 400천원에 비해 16%수준이며 등록세는 일반 승용차의 60%감면하고 면허세는 일반자동차의 33~50%를 감면하며 1가구 2차량 중과세 및 특별소비세를 면제해 주며 지역개발공채 매입시 50%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40~50%할인, 공용 주차장 주차료 50% 할인, 차량 10부제 제외 등 경승용차 권장을 추진하며, 앞으로 공공기관의 경차보유권장, 경차우선주차구역 지정 등 경차이용 확대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 문]

지방자치단체의 물관리 행정평가 결과, 도의 물관리 행정수준과 상수원 오염 및 해양오염 등 지적사례와 향후 물관리 정책은?

[답 변]

우리도의 물관리행정 수준은 전국 3위로 도내 상수원 취수장 91개소중 지하수(11개소)를 제외한 80개소의 원수검결과 간단한 정수처리만으로 사용가능한 I~II급수가 99%(79개소)이며 보다 강화된 정수처리가 필요한 III급수 상수원이 1개소로서 오염도가 법정기준을 초과한 상수원은 없으며 '99년도 해양수산부 해양환경 조사연보에 따르면 도내에는 해양오염이 심각하여 위험한 지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원도만의 생태 환경자원은 철저히 보전하고 강원도의 물은 1급 청정수로 유지관리하며 시설사업은 비교형량 원칙에 의한 경관관리형성은 고수하여 물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나) 教育行政

[질 문]

전국소년체육대회에 대하여 상위고수 대책 방안으로 상위고수 위한 계획과 대책과 메달채점 방식에서 점수채점으로 전환시 대비방안은?

· 전년도 대비 금년도 부진종목과 향상종목에 대한 의견은?

[답 변]

· 상위고수 위한 내년 대비책으로



- 시·군교육청과 학교장으로 하여금 팀의 후원단체결성 권장, 지역사회 관심도 고조, 체육지도자 사기진작 방안 강구
- 시·군교육청별 정책종목 선정 운영
- 경기단체와 육성팀간의 유대강화
- 우수선수 조기·발굴 선정하여 전문지도자 책임지도 여건 마련
- 평가전 시기 앞당겨 합동 및 전지 훈련시간 확보
 - 점수채점 전환시 대비 방안
- 배점은 많으나 취약점인 단체종목 집중 육성
 - 전년대비 부진종목과 향상된 종목
- 부진종목 : 축구, 야구, 농구, 하키, 역도, 복싱, 육상, 양궁
- 향상종목 : 정구, 테니스, 배드민턴, 태권도, 로울러, 유도, 레슬링, 씨름

[질 문]

2000년 8월말 교원명예퇴직과 관련하여

- 명예퇴직 신청자 및 철회자 현황은?
- 명예퇴직 대상자 선정 기준은?
- 예산확보 현황 및 교원수급 대책은?

[답 변]

2000년 8월말 명예퇴직 신청자는 초등 193, 중등 221명 신청후 초등 7, 중등 1명 철회하여, 406명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결정할 것이며 대상자 선정기준은 초·중등 교원의 수급사정과 예산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명예퇴직 관련 예산은 공사립 포함 642명분 2백8십4억6천3백만원 확보하여, 2월말 명예퇴직교사에게 지급하고 현재 1백20억원의 예산확보하였습니다.

2000년 2학기 교원수급 계획은 초등학교원 178명 총원요인중 보수교육이수 기간제 교사 39명, 병역복귀, 휴직교사 복직등으로 11명 충원, 부족예상 128명은 학교장 임용기간제교사로 충원할 계획으로 수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중등학교원 185명 수요 예상되며 발령대기자 96명, 사립 특재 및 복직자 33명, 기간제교사 임용등으로 수급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질 문]

도내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문제 및 미설치 사립학교에 대한 대책은?

[답 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로 전체

37개교중 15개교 설치, 22개교 미설치, 미설치학교에 대해 6월말까지 구성토록 재촉구하였으며, 기한내 미설치학교는 학과증설 억제, 특별재정 지원중단 등 조치강구하고 있습니다.

[질 문]

지방교육채 원리금 정부상환에 따른 교육부 등 정부의 입장 및 향후 상환재원의 확보 문제는?

[답 변]

지방채 상환재원 정부에서 부담해 줄 것을 시·교육감 및 부교육감 회의시마다 건의하고 있으며 정식문서로 확답은 못 받았으나 교육부에서 적극 검토, 약속을 받은 바 향후 상환재원 확보 문제는 계속해서 정부에서 부담하여 주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질 문]

각급학교 환경문제인 오수처리시설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은?

[답 변]

초·중·고·특수학교 포함 721개교 중 개선대상 484개교에 252억여원 소요되며, '99년까지 104억여원 투자하여 41%인 198개교 개선완료하였고, 금년에 71억여원 확보하여 130개교에 대한 공사가 추진중에 있으며 나머지 156개교에 소요되는 예산 77억여원으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법정개선기한인 2001. 12. 31까지 개선사업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 문]

일부 교사중 학생 생활지도 거부등 자기편의 주장에 대하여 지금까지 대처 현황과 향후 대처 계획은?

[답 변]

청소지도와 잡다한 학생들 생활지도 거부교사 일부이지만 이러한 교육자의 자세 확산 및蔓延 될까 우려하여 예방 및 확산방지에 노력하고 대부분 교육자들 우리도교육청의 주된 교육시책인 “바른 인성함양을 위한 덕성교육”에 초점을 맞춰 그 책무를 다하고 있으며 우리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불식시키고 건전한 교육풍토, 교육자적 사명감 고취로 인해 학교장 주도하에 교내 직무연수강화 및 각종 연수시 특별강의 시간 확대로 참다운 스승상 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나. 第3次 本會議 質問 및 答辯要旨

1) 조규병 議員

가) 江原道政

[질 문]

여건변화 관련 도정방향 및 남북 교류협력방안으로 도정의 한국화, 세계화를 위한 중장기계획 수정 필요하고 앞으로의 남북교류협력 구상은?

[답 변]

남북관계에 관련된 주요도정 시책으로 지난해 수립된 접경지역 민족통일평화지대계획은 접경지역 지원법에 따라 보완·발전시키며 「설악·금강권 개발계획」과 「DMZ 평화 생명마을 조성」 등은 평화교류의 모델사업으로 추진하고 평화시 구상도 연구용역을 주어 앞으로 남북관계의 진전에 대비해 나갈 계획임.

남북 교류협력 구상에 대하여는 양측의 공동이익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실현가능한 사업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 문]

TV사극 「태조 왕건」을 관광자원화 방안은?

- 철원, 원주가 중심지역임에도 세트장 소재의 충청도 지방도시 관광특구
- 관광산업에 설자리 마련 주문

[답 변]

당시의 역사적 현장은 강원도가 중심인데도 불구하고 여건상 촬영현장이 우리도에 마련되지 않았음(철원 궁예도성 → DMZ 내, 원주 석남사, 영월 세달사 → 폐사지 상태). 앞으로 궁예 도성의 경우는 남북의 공동 학술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장기적으로 복원문제도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1세기 문화관광의 세기를 맞아 스스로 설 자리를 찾는다는 의미에서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겠으며 그 핵심전략으로 깨끗한 휴양관광지, 친절한 도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 문]

태권도 공원 유치 관련 도내 자치단체간 과잉 유치경쟁에 대한 도의 조정 및 유치 방안은?

[답 변]

우리도에서는 춘천, 원주, 강릉, 동해 등 4개시의 신청서를 전달한 바 있으며 신청된 4곳이 선정기준에 비추어 볼 때 각각의 특징과 장점을 가지고 있어 후보지로 선정될 가능성은 1개소를 신청한 것보다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도에서는 신청된 4개시중에 선정될 수 있도록 심사, 선정위원회 선정기준을 파악하는 등 중앙 및 신청 시군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나) 教育行政

[질 문]

공무원 정년인하와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른 정책 발표후 강원도교육청에서 중앙정부에 전달한 견해와 의견은?

· 최근 접수한 명퇴신청 교사들의 선별작업 방안과 교사부족, 퇴직금 마련 등 후속대책은?

[답 변]

'98. 11. 3 전국교육감협의회에서 정년단축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대로 유지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고, 교육개혁 차원에서 정년을 단축해야 한다면 63세로 일시에 인하시키지 말고 연차적으로 단축, 직급별로 차등을 두어 부작용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장관에게 전언한 바 있고 '98. 11. 10 전국초·중등교육국장회의에서 정년단축 원칙적 반대 입장 표명했으며 '99. 4. 23 전국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에서 대책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98. 11~12월에 걸쳐 본도 출신일부 국회의원에게 교원 정년 인하정책의 중단 내지 조정 부탁드린바도 있는 등 이외에도 우리도교육청에서는 정년단축을 막기 위해 공·사를 가리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신청자 414명중 신청 포기한 8명 제외한 406명을 대상으로 심사하였으나 예산관계로 65세 정년 적용받는 282명만 최종 대상자로 결정 통지하였고 부족 예상되는 초등교원 128명은 기간제 교사 자원으로 충원하고, 중등교원의 경우 자원이 충분하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2월말 명예퇴직수장 집행 잔액 120억원 확보하여 추가 예산 확보없이 지급가능하겠습니다.

[질 문]

고교입시 무시험 전형에 따른 학교간의 실력차 해소방안등 고교입시 제도변경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은?



[답 변]

학교간 학력차 해소위해 교수·학습방법개선하고, 소규모학교 상치교과 해소 및 교수·학습방법 공유를 추진하고 농어촌 거점우수학교운영을 확대지정하여 예산지원을 통해 도·농간 학습환경 격차 최소화하는 한편 학교내신성적 외에도 필요하다면 구술·면접고사 성적 반영할 길 마련하여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 문]

소규모학교 교사 업무부담 경감 대책은?

[답 변]

문서실명제 실시 등으로 공문서 생산량 감축, 학교단위 위임전결 규정 제정·시행으로 공문서 처리절차 간소화, 보고문서 분교장을 본교에서 취합·보고토록 권장 필요정보 D/B화로 반복적인 공문생산 억제, 평가시 필요한 자료는 교육청 자료를 활용하여 업무부담 경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 문]

연고지의 지역근무 교사수와 이들에 대한 연고지 배치 계획은?

[답 변]

교원의 배치현황을 보면 초등의 경우 총교원수 4,757명중 65.46%인 3,114명이 중등의 경우 총교원수 6,253명중 41.98%인 2,625명이 생활연고, 근무희망 시·군에 근무, 매학년도 정기 인사시 교원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여 교원의 생활안정과 근무의욕 고취에 노력하겠습니다.

2) 이종근 議員

가) 江原道政

[질 문]

민간위탁업무인 계약기간 만료시 가장 적합한 수탁자와 계약 경신의향은?

- 적자보전 기준금액 1억원→5천만원으로 하양조정 제안(현재 1억원 초과 적자분에 대해 1/2씩 부담하는 곳이 몇 개소 있음)

[답 변]

수탁자의 변경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 시설목적과 위탁 취지에 보다 적합한 단체 또는 업체와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위탁된 시설중 적자보전 지원을 해 주는 시설을 자연학습원 청소년수련관 2곳으로 매 년도별 수입과 지출을 고려 탄력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질 문]

전임 지사시 체결 계약분중 미갱신 위탁계약 업무는 조기재계약 주문, 양질의 위탁관리대상 확보 및 사후감독 철저 주문!

[답 변]

위탁된 9개사무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 : 7건, 기간 미도래 : 1건, 신규위탁 : 1건이 있으며 앞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우수한 단체나 업체를 적극 발굴하여 해당사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면서 위탁사무의 처리상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은 시정조치를 하는 등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질 문]

- 전산전문요원 확충대책은?
- 시군정보화담당(6급) 전산직 발령권고 계획?
- 전산보안을 위해 최첨단 도난, 변조방지 시스템 도입방안 제안

[답 변]

시·군 전산직 공무원을 증원해 줄 것을 행자부에 건의하고 협의한 바 시·군 정보화 담당을 전산직 6급으로 보임하고 시·군별로 금년내에 1~3명의 전산직을 증원토록 하는 지침을 시달할 예정으로 있어 도에서는 자체충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시행할 계획이며 정보화담당의 임용도전 시·군에서 전산6급이 보임되도록 권고하겠으며 도에서는 1인 1PC 보급완료 등으로 도난·변조방지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에 따른 대책수립 및 도난·변조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도입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질 문]

세제개편관련한 신세원의 발굴, 국세 지방이양등 지방세제 개편안의 추진상황 및 향후 전망은?

[답 변]

실현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몇가지 개선과제로 관광세신설, 지역개발세 확대 기선, 송전탑설치



및 골프, 콘도회원권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등을 추가로 과세하는 방안등이 있으며 이러한 내용들이 법제화 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중앙관계부처에 논리적인 근거와 타당성을 제시하여 도의 건의가 수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질 문]

장애인 복지정책 관련, 장애인 공무원의 획기적인 채용정책은?

[답 변]

우리도에서는 장애인들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분야에 계약직 1명을 채용하고 지난 6. 17일 시행한 9급 공무원시험에는 행정직 5명중 1명을 장애인만 응시토록 했으며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높이기 위해 시·군에 기 채용될 장애인 공무원중에서 능력있는 전입희망자를 파악하여 충원해 나가는 시책도 추진하겠습니다.

[질 문]

장애인 보조기 제조업체 지방세 감면등 지원방안은?

[답 변]

도내 장애인 보장구 제조업체는 춘천, 원주에 각 1개 업체와 강릉에 2개업체등 총 4개업체가 있으나, 장애인 보장구는 지방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또한 이들 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지 않는 것은 이들 4개 업체 전체가 납부하는 연가세액이 168만원에 불과하여 감면 실익이 없고 타 유사업체와 형평성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 문]

도청 장애인 전담부서에 장애인 채용 추진상황 장애인 전용 해수욕장, 체육시설 설치상황 및 향후계획은?

- 장애인 편의시설의 조기 보완 방안은?
- 관광지 입장료 및 주차장 사용료의 장애인 감면율의 상향 및 일원화 계획은?
- 공공기관내 사판기 및 매점 운영권 장애인 배려 대책은?
- 장애인용 리프트 보다 엘리베이터 설치 권장 본관 설치 리프트 장애인 이용 실적은?

[답 변]

금년초 사회복지과에 여성 지체장애인 1명을 채용하여 장애인 업무를 전담토로 하고 있으며 장

애인 전용해수욕장은 지난해부터 강릉시 옥계해수욕장을 지정하여 금년 8월초 개장 예정이며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은 시설이 우수한 1개의 체육관을 선정하여 장애인 편의시설과 이용공간을 마련하며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미진한 시설주에게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기간내 미 이행시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등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도청에 있는 리프트는 주 3~4회정도 이용하며 관광지의 경우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에서 국·공립공원은 100%감면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에 준하여 감면토록 시군에 권고하였으며 주차장 또한 이용료를 감면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자판기나 매점 설치를 하고자 할때는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배려하도록 재촉구하고 유관기관등을 통해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질 문]

건축종합 민원실과 일괄 준공검사제 추진실적 저조로 정부 조치예정에 따른 도의대책은?

[답 변]

건축종합 민원실 설치는 행정조직 개편과 연계된 사안으로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도내 시·군 실정과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며 건축종합 민원실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관련부서간 협조를 통해 사실상의 일괄준공검사 시행될 수 있도록 시·군에 권고하겠습니다.

[질 문]

시군에 건축종합민원실 설치담당을 두도록 의지 표명시군 건축업무 주무과장 건축직(5급)발령 주문

[답 변]

건교부로부터 지난 5월 통보된 설치방안은 행자부에서 표준안을 마련중에 있어, 확정되는 대로 시·군 여건에 맞는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권고해 나가겠으며 시군에 건축과장은 행정직 보임을 지양하고 건축직으로 보임될 수 있도록 인사지도와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나) 教育行政

[질 문]

과목상치교사의 해소를 위한 확고한 계획은?



[답 변]

과목상치교사 해소하기 위해 유사교사로 대체하고 있으며, 2000. 9. 1 자 및 2001년도 정기인사시 대부분 조정할 계획이고, 일부 교과는 부전공 연수 이수로 필요교과 교사로 전환할 예정이고 사립학교 상치교사는 공립학교로 특별채용 등의 조치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질 문]

삼척, 인제, 양구 등 미 배치된 6개교육청의 원어민 경어교사 확보 계획은?

[답 변]

IMF로 인해 급여가 불리하여 지원자 감소로 교육부가 학생수에 비례하여 우리도에 12명 배치되었으나, 1명은 건강관계로 귀국하고, 1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미배치된 지역교육청은 금년 9. 1일자로 모든 지역교육청에 1명씩 배치하여 지역내에서 활용하고, 도교육청에 1명배치등 교육부에 총 18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질 문]

전보제한 기간이내라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시는 전보를 가능하게 하여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긴급 전보제”를 도입하는데 따른 견해는?

[답 변]

교육현실과 관련 학부모와의 쟁의나 갈등으로부터 교권수호하고, 교원의 권익보호차원에서 「교원긴급전보제」 추진중이며 불가피한 사유발생시 전보제한기간(1년)이내라도 전보 가능케하여 교권과 교원권익보호코자 하는 것으로 시의 적절한 조치로 생각합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 교육부에서의 관련 규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질 문]

도내 대학에 특수교육과를 신설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계획은?

· 특수교사 1인이 담당하는 장애학생수 줄이는 방안과 특수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증대방안은?

[답 변]

특수교육과 신설 필요성 인식하고 기회 있을때마다 권고했으나, 각 대학 형편상 아직 미설치, 향후 도내 대학설립자에게 특수교과 설치토록 권고를 하겠으며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에 급당 12인이하로 규정 우리도교육청에서는 학생수를 고려 유치원 7명이하, 초등부 10명이하 중등부

13명이하, 고등부 15명이하 이던 것을 금년에 중등부 12명이하로 고등부 12명이하로 인원 감축 등 특수교사에 대한 법적 인센티브외에 우리도에서는 「강원도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칙」에 의거 우선 전보 특례조항 두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3) 정충수 議員

가) 江原道政

[질 문]

접경지역 지원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접경지역 지원법 제정이후 후속조치 미흡과 진척상황 설명 및 데스크 포스팀 구성등 공격적인 자세 당부

[답 변]

도와 강개연의 접경지역 지원팀을 확대 개편하여 도 관련부서가 참여하는 접경지역 발전기획단과 관련 전문가의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였으며 도의 접경지역 관련 시·군이 참여하는 접경지역 대책협의회도 운영할 계획이며 접경지역 3개 시·도가 참여하는 「접경지역 광역실무협의회」 구성을 제안하는 등 앞으로 시행령 제정을 비롯한 법시행 이후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질 문]

지적도상 군사보호구역 경계선 확정 주문하면서 도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합리적 개선사업 계획 설명 및 노력 당부함.

[답 변]

경기도 인천시와 공동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개별 군사시설 대책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관련법 개정등 제도개선을 통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 행정규제 완화등이 이루어 지도록 3개 시·도 공동으로 관계당국에 건의하여 지역 발전 저해요인과 주민불편 사항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 문]

한강수계 관련 자원배분에 대한 도의 의견 관철해법과 상류지역 환경개선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은?



[답 변]

주민지원 사업비 배분에 관한 사항은 주민지원사업 시행을 해가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심층분석 하고 강개연등 전문가와 공조하여 대응 논리를 개발하여 우리도에 유리하게 개선되도록 하며 금년도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녹조방지등 373억원을 지원받아 수질개선 사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물이용 부담금, 양여금 등 595억원을 투자하여 환경기초시설 18개소를 건설중에 있는등 한강수계 상류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다각적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질 문]

수도권 행정협회의의 경기도의 공장건축총량제 추진대책과 수도권 과밀억제 및 경기도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도의 대책은?

[답 변]

공장총량제는 수도권 집중억제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정책 기조를 유지하는데 핵심적 제도로 공장총량제의 폐지는 있을 수 없는 일로 수도권행정협의회에 불상정 되었으며 지난해에 자연보전권역 내에서의 관광지 허용을 위한 시행령개정 시도를 우리도를 중심으로 수도권 인근 7개 시도가 공동대응하여 당초 개정안이 철회된 바 있듯이 수도권 시·도의 동향과 추이를 예의 주시하면서 우리도의 이익이 침해 당하는 일이 없도록 치밀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 문]

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해 시군의 행정규제개혁 조속히 마리 당부하며 부진 시군에 대한 제재와 감사시 규제 개혁분야 중점확인 당부함.

[답 변]

미정비된 규제사무에 대하여는 관련 조례와 규칙등을 개정하여 조속히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으며, 도의 상시점검반이 시·군규제 개혁 이행 실태를 수시 점검하며, 감사부서에서도 규제개혁분야를 중점 확인 사항으로 지정하여 실시하고 앞으로 규제개혁이 부진한 시·군 및 관련자에 대하여는 기관경고와 관련자를 문책하는등 규제개혁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 문]

토지주들의 저항해소 및 현실에 적합한 토지관리개선을 위한 공시지가 재조정의견에 대한 견해는?

[답 변]

지난해까지 표준지 및 개별공시지가는 법령에 따라 전국적으로 조사 결정하는 관계로 산정기준 일 이후 특정한 일부지역에 지가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 수시 조정할 수 없었으나 4. 29일 법령이 개정되어 금년에는 9월 1일 기준으로 1회 더 지가조사를 실시하고 2001년부터는 3회 수시 변동사항에 대한 지가를 조사하도록 제도가 보완되었으므로 지가 변동요인을 보다 더 적정하게 반영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공시지가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 문]

'99오지개발지구 지정당시 전국 10개 시·도별 개발수준지표 최하로 강원도 낙후도에 대한 의견은?

[답 변]

전국 오지개발지구 지정 322개 면중 50개면이 지정되어 4번째로 많은 면이 지정된 것은 많은 면적의 산과 상수원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지형적, 지리적여건에 기인한 바 크며 앞으로 우리도가 가진 「환경」, 「물」, 「산림」, 「청정」 등 가치자원의 비교 우위의 특성화로 경쟁력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전국에서 제일 살기좋은 강원도세상이 열릴것이라 확신합니다.

[질 문]

'99행정자치부의 시도평가 관련 타 시도와 비교한 강원도의 수준(5개 평가부분별)은?

[답 변]

우리도의 경우 민원행정, 재정운영 등 13개 평가영역에서 26건의 우수사례와 20건의 개선과제를 통보 받은바 있으나 상대적으로 평가 부분등이 우리도의 특성이나 실정과 다소 부적합한 부분이 있으며 금년에는 특히, 우리도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장애인 복지, 문관시책, 관광시책등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타 시도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평가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 第4次 本會議 質問 및 答辯要旨

1) 손석암 議員

가) 江原道政



[질 문]

태백시 다목적 체육관건립에 따른 정부예산(50억원)과 도비(25억원) 지원 방안?

[답 변]

이 사업은 총 15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국비없이 전액 지방비로 투자하기에는 도의 재정 여건상 어려운 실정으로 내년도 국비 40억원을 신청한 상태이나 국비지원은 1시군 1체육관에 한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태백시는 '95년 기존 체육관 건립시 국비 4억2천만원을 지원받으바 있어 체육관 추가건립에 따른 국비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다목적 체육관은 중장기 계획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질 문]

동남아 세일즈순방('99. 3월)사후관리 미흡한데 공무원 복지부동 시정계획 및 미흡한 성과에 대해 설명은?

[답 변]

통상업무가 산업경제국에서 국제통상협력실로 이관되는 과정과 해당기업에서 수출실적 자료공개를 기피해 KOTRA를 통해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늦어졌으며 중소기업 수출증대를 위한 시장개척 활동에는 1천7백63만불의 수출계약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정식계약을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새우양식 사료등 1천3백40만불의 수출계약 실적을 얻었으며, 예상보다 실계약이 다소 적은 이유는 인도네시아 정세불안으로 인한 계약취소와 제품의 성능검토 가격문제 등으로 계약이 협상중이며 또한 성사되도록 추진중입니다.

[질 문]

백두산항로 개항식시 도의회의장 홀대(소개없고 축사도 없었음)에 대한 견해는?

[답 변]

의장을 비롯 연해주지사, 길림성인민대회부주임등 모든 분들이 축사를 할 수 있도록 시간조정을 검토하였으나 행사 진행관계상 어려움이 있었으며, 동춘호에 의원들이 동승도 사전 협의한 결과 방문하실 의원이 없다는 통보를 받으신바 있었으며 앞으로 도단위 주요행사시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의 의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 문]

도내 주둔 군부대 도내산 우유를 군장병에게 급식 주선을 요망함.

[답 변]

농림부와 축협중앙회등 군납관계기관과 1군사령관에게 강원도 우유군납을 강력히 요청하고 협의한 결과 외지업체인 서울우유에서 군납하던 1일 8톤의 우유도 금년 1월 1일부터 도내 2개 우유업체가 군납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이와같은 사항은 의원들의 열정과 군의 도민화운동, 강원도 가치증진 시책등으로 얻어진 결과이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적극 납품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나) 教育行政

[질 문]

학생들에게 도내 생산업체 우유를 급식하지 않고 서울과 경기도 등지에서 생산가공한 우유를 급식하는 이유와 대책은?

[답 변]

우유급식은 학교장 책임하에 학교 및 지역실정 고려하여 학생들 기호도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거쳐 업체선정하고 시·읍지역학교에서는 도내 생산업체 우유 급식하고 있으나, 면·리지역 소재 소규모학교는 유통구조상 어려움이 있으나, 2000년 학교보건급식 기본방향 시달회의 및 공문으로 우리고장 생산물 이용토록 강력히 지시했습니다.

2) 김진동 議員

가) 江原道政

[질 문]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도차원의 교류계획 및 대응마인드 구축에 대한 정부협상팀과의 통로등 대응책은?

- 강원도가 남북교류 길목이 되어야 하는데 정부계획에 동해 북부선 금강산철도 복구 포함 여부?
- 기획예산처장관방문(6. 19)에 따른 진척상황, 강원국회의원 협의회 연대상황은?
- 환동해권 경제협력사업 수정여부 및 환동해권 지사·성장회의 북한 참여 전망은?
- 도점경지역 번영회 협의체 관심과 역할 당부, 이에 대한 견해는?



[답 변]

정부협상팀과의 통로는 분야별 추진반은 물론 관련부처와도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남북연결 교통망 복원은 상호간의 필요와 협력을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우선 순위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며 철도의 경우 동해북부선은 기본설계 30억원 확보 및 내년도 사업비 60억원이 심사중이며 금강산선은 50억원의 용지보상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북사업 예산확보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많은 예산이 기획예산처에 요구되었으며 강원국회의원 협의회와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수시 협력하며 환동해권 지방정부 지사·성장회의에 북한 참여는 6. 24일 우리도를 방문한 길림성 당서기도 지원을 약속했으며 또한 북한측에서 진지하게 검토하면 가능하다고 보며 도의 접경지역 발전기획단과 접경지역 대책협의회등 관련 조직과의 연계를 통해 본협의회에서 제시되는 의견 수렴 및 상호 협조체제를 긴밀히 유지하겠습니다.

[질 문]

태권도수련장 강원도 유치희망 4개시가 합의 1개소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복안은?

[답 변]

우리도에서는 춘천, 원주, 강릉, 동해등 4개시의 신청서를 전달할 바 있으며 신청된 4곳이 선정기준에 비추어볼 때 각각의 특징과 장점이 있어 후보지로 선정될 가능성은 1개소를 신청한 것보다 높을 것으로 보며 우리도에서도 신청된 4개시중에 선정될 수 있도록 심사, 선정위원회의 선정기준을 파악하는 등 중앙 및 신청 시군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질 문]

타 시·도와 협의, 전국대회 격년제 개최하고 전국대회에 도대회의 우승, 준우승팀을 순차 출연하는 의향은?

[답 변]

민속예술축제의 격년제 실시 문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금년 가을에 횡성에서 개최되는 제18회 행사가 끝난후 시·군과 유관단체 전문가 등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한 후에 보완·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타 시·도의 민속예술축제는 시·도별로 형편에 따라 임의로 개최하고 있는 행사이므로 협의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 문]

건교부의 준농림지 규제강화 법안마련에 따른 택지개발제한으로 인한 주택수급 문제여부는?

· 시군의 성급한 도시계획 확정 가능성에 부동산 투기 및 부조리 우려, 이에 대한 보완책은?

[답 변]

수도권지역에 한하여 용적률·건폐율을 축소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계획이나 우리도는 종전과 같이 용적률 100% 건폐율 60%를 적용하게 되므로 최근의 준농림지역 규제강화 조치로 인하여 주택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며 또한 도시지역 확장에 있어서는 도시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7개시는 단계별로 도시지역을 확장하도록 하고 그 외의 읍·면급 도시지역은 인구증가추세, 사회·경제지표 분석등을 하여 기 수립된 토지수급계획 범위내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도시지역의 확장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질 문]

도전문건설업체 탄원서내용 사실여부와 정부 산하기관과 투자기관의 공사내역과 의무화도급 금액, 그중 도내 전문건설업체 수주금액과 도차원의 대응방안과 대안은?

[답 변]

탄원서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결과 3억원 이하의 전문 건설공사에 대한 지역제한 입찰은 대부분 정부산하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이행하고 있으며 도차원의 대응방안과 향후 계획으로 임의 규정인 지역제한 입찰을 확대하고 의무화도급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계기를 통하여 관련단체에 적극적인 협조 및 정례간담회 개최등 다각적인 노력과 법적 제도적인 면에서도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질 문]

동해고속도로에 동해시민, 옥계톨게이트~삼척시 외곽 연장구간 개설반대에 따른 관계부처의 재검토와 중재촉구 의향은?

[답 변]

동해고속도로 현 노선은 2004년도 완공을 목표로 이미 전 구간을 착공 추진중에 있는바 우리도에서도 도로공사에 주민요구사항을 수용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도로공사에서는 산악지형 통과에 따른 터널화가 불가피 하지만 단층대 지질로 안전성 확보가 곤란하며 변경된 노선을 새로이 설계하고 착공하는데 따른 공사지역 및 경제면 그리고 변경지역 민원발생 등 노선변경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으나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지역주민의 뜻을 감안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신중하게 검토되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질 문]

한~일 정기회담 취향과 관련한 강원개발공사와 동춘향운 공동투자방안 검토에 따른 진척상황과 지방공기업에 의한 제3섹터 개발방식 제안에 따른 견해는?

[답 변]

우리도에서는 기 개설된 「백두산항로」가 「동해~쓰루가항로」개설까지 이어지는 「신동해권 시대」에 대비하고자 안내심을 갖고 준비해 나가고 있으며 지방공기업의 직접 또는 민간유치의 제3섹터 방식에 의한 참여문제와 동춘향운과의 합작 투자문제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의 검토결과 현행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지방공사 참여가능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지방공사 및 공단에서 해상운송 사업을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나) 教育行政

[질 문]

사립학교 공교육기관 흡수에 따른 도내 해당 사립중학교수와 가능성여부 및 교육자적 차원의 견해는?

[답 변]

우리도내에 15개의 사립중학교가 있으며, 규모가 영세하여 공립으로 전환 검토될만한 학교(동해삼육중 흥천 팔렬중)가 있으나, 공립으로의 전환이나 소규모학교 통·폐합 의사 없으며 사립학교중 통·폐합이나 공립전환의사 있는 학교는 관계법 검토하여 신중히 처리하겠습니다.

[질 문]

대 북한관에 대한 시각변화에 따른 교육적 개념의 혼돈과 시대변화에 따른 가치혼돈 과리를 청소년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교육시키는지?

[답 변]

안보를 우선한 통일교육에서 안보·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통일교육기본방향 설정하고 체제·이념교육에서 생활·문화중심교육으로 교육내용선정하고 참여·체험식 학습, 다양한 매체활용 통해 혼돈 과리를 이해시키며 통일교육의 기본방향 아래 민족공동체 의식과 민주시민의식 바탕으로 하여 북한사회의 올바른 이해와 통일에 대한 합리적 인식함양 및 평화통일 실현할 수 있는 의식과 태도를 길러 안보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第1節 議員研鑽會・懇談會・세미나

1. 第5代 江原道議會 議員 研鑽會

가. 概 要

- 1998년 7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춘천 두산리조트에서 제5대 강원도의회 개원에 앞서 의원 상견례를 겸한 오리엔테이션등 지방의회 운영실무를 통한 의원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와 자기계발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여 도의원 4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나. 內 容

- 7월 1일에 도의회사무회 홍기업 총무계장의 사회로 개회와 권혁인 사무처장의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 후 강형기 충북대 교수의 지방자치법 해설에 대한 강의를 2시간에 걸쳐 있었으며 오리엔테이션이 끝난 후 소양강 1층 한식당에서 만찬을 하였으며
- 7월 2일에는 자율토론과 최민수 국회의정연수원 교수의 지방의회 운영실무에 대한 강의를 끝난 후 기념촬영을 하고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제5대 강원도의회 개원이전 합숙을 통한 연찬회로 의원상호간 친선교류를 도모하고 지방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능력을 제고하는데 성과를 거양하였음.

2. 議政活動 專門性 提高를 위한 業務 研鑽會

가. 概 要

- 1998년 8월 4일부터 8월 5일까지 속초시 설악동C지구에 있는 농협연수원에서 지방의회 운영편람 및 '99강원국제관광 엑스포 성공 다짐을 위한 연찬회에 관광건설위원 11명과 의회 사무처 직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나. 內 容

- 관광건설 위원회 주관으로 소속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임병환 전문위원의 운영 편람에 의한 기초지식 설명과
- 강원도의 조직개편과 관련 상임위 간담회를 실시 소관 실국의 구조조정(안)에 대하여 논의를 하여 개편(안)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 지역계획과 하천계와 재난관리과 방제계중 방제계를 흡수 하천계를 폐지하는 집행부(안)을 지역계획과 하천계를 존치하고 재난관리과 방제계를 이관하는(안)을 제시
- 제5대 전반기 개원과 이에 따른 의원으로서의 전문지식 함양과 자기개발을 위하여 한층 열과 성을 가진 연찬회로 좋은 반응을 갔음.

3. 行政事務監査 技法 研鑽

가. 概 要

- 1998년 11월 1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원주 한솔오크벨리에서 도의원 10명 사무처직원 4명과 전문강사 2명을 초청 연찬회와 현장활동하였다.

나. 內 容

- 이경섭 감사원 심의관과 전 의왕시장 신창현을 초빙 행정사무감사기법터득에 대한 연찬회를 개최하였으며
- 11월 12일에는 원주지역 중고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과의 간담을 하고
- 도단위 장애인 대표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원주단강초등학교와 공업계고등학교 춘천 공동실습장을 방문하는 등 의정활동을 펼쳤다.

4. 地方自治 關聯 業務研鑽

가. 概 要

- 1999년 1월 22일부터 1월 24일까지 고성 설악 일성콘도에서 초선 도의원 21명, 사무처직원 4명, 초청강사 등이 참석하여 강원도정발전연구회 업무연찬

나. 內 容

- 정부의 규제지역주민 토지보상관련에 대한 지역주민과의 공청회 개최하는 방안 검토하고 지방자치의 활성화에 따른 지방의원의 역할을 위한 전문성 제고와 의회상 정립으로 지방 자치의 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남북 교류를 대비 금강산 관광 육로개설에 대비한 현장을 방문하였다.
- 특히, 이번 만찬회에는 이주희 지방행정연수원 부교수의 지방자치 및 의회운영에 대한 강의로 전문지식을 습득하였으며
- 도의회 의장단 및 집행부 기획관리실장 등의 참석 격려로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5. 21世紀 江原道 農業・農村의 發展을 위한 研鑽會

가. 概 要

- 1999년 1월 25일부터 1월 26일까지 강원도자연학습원 회의실에서 의장 및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12명 집행부 관계관 4명 농협지역본부 관계자 2명 전문위원실 3명 등 총 22명이 참석하여 만찬회가 개최되었다.

나. 內 容

- 개회를 시작으로 허천의장 엄문섭 위원장의 인사말씀과 참석자 소개후 강원대학교 농업자원경제학과 김경량 교수의 특강이 끝나고 만찬 간담회로 이어졌으며
- UF복합비료 피해관련 추진사항 및 대책안을 마련하여 보고 및 종합토론으로 산업경제위원회 회의 효율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도정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조성하는 자리가 되었다.

6. 定期會 對比 豫算審査 및 行政事務監査 技法 研鑽會



가. 概 要

- 1999년 11월 12일부터 11월 13일까지 춘천 두산리조트에서 도의원 17명이 참석하여 정기회 대비 예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기법 연찬회를 개최하였다.

나. 內 容

- '99년도 도의회 운영을 마감하는 정기회의 개최를 앞두고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강원도정 발전연구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국의정활동연구소 서우선 강사를 초빙 지방재정이론과 심사기법, 예산 및 결산심의시 착안사항, 행정사무감사 조사기법 등에 대한 연찬회를 가졌다.
- 또한 도의회 의장단 및 각 상임위원, 도의원과 집행부에서의 격려인사로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7. 2000년 道議員情報化過程 特別戀愁

가. 概 要

- 2000년 5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3일간 비합숙으로 강원도지방공무원교육원 전산교육장에서 도의원 37명이 참석.

나. 內 容

- 안일량 렉스켄경영정보연구소장의 지식정보화 경쟁마인드에 대한 특강과 이현재 원내교수의 윈도우운영체제기초 3시간, 김명수 원내교수의 인터넷정보검색 및 전자우편 7시간, 정영탁 강사의 한글과정 7시간등의 연속일정으로 정보화과정 특별연수에 참석 도의원들의 연속에 임하는 진실한 면모를 보였다.

第 2 節 懇談會 및 討論會 · 比較見學

1. 21세기 강원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방향

가. 概 要

- 1999년 5월 12일 상지대학교 세미나실에서 강원도의회 의정연구회 주관으로 도의원 21명 도내 청소년 및 자원봉사 관계자 등 261명이 참석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과 공개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나. 內 容

- 이인섭 도의원이 행사를 진행하고 상지대학교 김형방 교수의 토론진행사회,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송정부 교수의 청소년의 특기, 취미, 소질 등을 자료화하고 자원봉사의 개념을 명확히 하며, 교수의 참여, 학부모, 학교장의 관심에 대한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자로 안상현 도의회 교사위원장의 도지원 예산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어려움에 대한 토론, 방재흥 도관광문화국장의 사회적 여건의식과 관심 등 협력의 필요성 토론, 최진규 도교육청 장학관의 전담부서 설치, 특기활동과 연계된 봉사활동시 대한 토론, 김효진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사무총장의 봉사학습의 중요성, 협력체계 구축안 활성화에 대한 토론, 이훈 의정연구회장이 도차원의 행·재정 지원확대, 교육 프로그램과 가정교육을 통한 효, 청소년봉사의 가치관 정립 등 참석자 전원이 진지한 토론의 장을 보였다.

2. 21세기 영동지역 사회복지의 발전방향

가. 概 要

- 1999년 6월 29일 강릉시 여성회관 대회의실에서 도의원 12명, 강릉시의원 12명, 각급 기관단



체, 자원봉사 관계자 등 326명이 참석, 주제발표, 지정토론과 공개토론으로 진행하였다.

나. 內 容

- 신창승 도의원이 행사진행을 하고 영동사회복지포럼 김남득 운영위원장이 토론 진행사회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형방 교수의 국가발전 속도와 영동지역 사회복지의 낙후성, 동해안 시대 발전방안과 관련 지역대학에 사회복지학과 설치에 대한 주제토론에 이의 지정 토론자인 박금용 도의원의 강릉의료원의 노인전문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토론과 강릉대학 김영갑 교수의 장애인 시설과 장애인 복지지도원 임명배치, 선재주 동우전문대학 교수의 복지시설 예산확보 사회복지현장 제정, 서성윤 강릉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소장의 무의탁 노인 보호자회 구성방안 등에 대한 지정토론과 이훈 의정연구회장의 행·재정지원 확대와 사회복지 관련체험활동, 시민참여 분위기 조성 등, 열띤 토론을 가졌다.

3. 강원도 생활체육의 발전 방향

가. 概 要

- 1999년 9월 2일 횡성 로얄관광호텔 연회실에 도의원 15명, 시장·군수 3명, 시군 의회의장 8명, 시군 공무원 16명, 생활체육관계자 95명 등 총 137명이 참석하여 주제발표, 종합토론, 만찬회 순으로 운영하였다.

나. 內 容

- 원종익 도의원의 행사진행과 한림대학교 한상덕 교수의 토론 진행사회, 충청대학교 스포츠 외교학과 최재성 교수, 한국체육과학연구원 수색연구원 이한규 박사, 방재흥 도관광문화국장의
 - 강원도 관광산업과 연계한 생활체육의 발전방향
 - 생활체육 활성화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 도민 개개인의 건강과 체육,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 등

주제발표와 스포츠 산업의 문제점, 스포츠 시설의 보강과 체육대회 후 경기시설 활용 방안, 체육시설 활용강화 방안, 생활체육지도자 연수원 운영 등 열띤 종합토론을 가졌으며, 이훈 의정연구 회장의 지방자치의 목적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체육의 중요성 재고 등 의정활동에 적극 참고할 것임을 끝으로 참여자들의 많은 관심을 가졌다.

4. 강원도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사전협의 간담회

가. 概 要

- 1998년 8월 3일부터 8월 4일과 8월 10일부터 8월 12일까지 2회 걸쳐 도의회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내무위원 12명, 집행부 내무국장과 자치행정과장, 전문위원실 3명 등 총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나. 內 容

- 강원도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사전협의를 위하여 위원회 대표진을 구성하고 강원도조직개편안에 대한 내무국장의 보고를 청취, 각 상임위원회별 의견을 받아 종합검토 후 대표위원에게 위임 협의종결하였다.

5. 국립공원의 구역조정계획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가. 概 要

- 1998년 11월 11일 10시 농협중앙회 설악연수원내 소청홀에서 한일비교를 중심으로 한 국립공원제도 특당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지역주민과의 간담에 도의원 7명, 지역주민 46명, 강원개발연구원 1명 등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지답사의 이루어졌다.

나. 內 容



- 특강 시간으로 강원개발연구원 박상헌 박사의 “한일비교를 중심으로 한 국립공원 제도”와 “선진외국의 국립공원 제도와 관리” 지역주민들에 관련지식을 제공하는 시간을 마련 이해를 도왔으며
- 강원도청 관광개발과장으로부터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추진상황에 대한 경과 사항보고, 향후일정에 대하여 설명
- 국립공원 구역조정 계획과 관련하여 일부 사유지 등 도시화 구역을 공원구역에서 제척시키기 위한 주민들의 움직임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지 주민들과 도의원과 대화의 열린마당을 가짐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았음.

6. '99강원도의회 의원 총회

가. 概 要

- 1999년 1월 29일부터 1월 30일까지 평창 진부에서 호텔오대산에서 도의원 47명 사무처 8명 참석 특강, UTR시청, 의원총회가 개최되었다.

나. 內 容

- 김원기 운영위원회 간사의 사회로 의장인사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장 정의호 박사의 특강과 동계아시아경기대회 및 관광EXPO 준비시청, 만찬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배부된 안건에 대한 토의가 있었으며
- 1월 30일 오전에 운영위원장의 '99의정활동계획회의와 총무담당관의 의원관련 예산집행계획 설명과 의사담당관의 '99의사운영계획 설명이 있는 후 '99동계아시아경기대회 개최식 참가로 뜻깊은 행사와 '99년도 의정활동에 대한 의욕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7. 도 시 · 군 합동간담

가. 概 要

- 1999년 4월 1일부터 4월 6일 기간중 도의원 23명, 춘천시의회 의원 9명, 원주시의회 의원 8명, 강릉시의회 의원 7명을 방문 간담회를 개최한다.

나. 內 容

- 2000년 4월 1일 11시에 춘천시 회의실에서 춘천시의회 지역현안 협의사항인 도농 통합시 지원사업추진과 춘천권 특성화산업 예산지원에 대하여 간담을 하였으며
- 2000년 4월 3일 16시에 강릉시의회 회의실에서 도내도립공원 관리개선대책 추진과 동해안 철책선 철거 및 정동진 모래시계공원 조성지역 남대천 오염방지 및 녹색지역 교통불편 해소 등에 관한 간담과
- 2000년 4월 6일 16시에 원주시의회 회의실에서 강원도 종축장부지 주가매각 및 원주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예산지원과, 강원감염복원 도주관사업 추진, 국립공원 관리권 지방이양 및 시민 교통편의 개선 등 주요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동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순회간담회 개최하였다.



第 3 節 國 際 交 流

1. 강원도의회 ⇒ 일본국방문

가. 돛토리현 우호교류 대표단 참가

- 기 간 : 99. 12. 29~12. 2 (4일간)
- 방문단 : 도의원 2명

2. 강원도의회 ⇒ 중국방문

가. 제5호 환동해권 국제교류 포럼참가

- 기 간 : 98. 8. 21~8. 28 (8일간)
- 방문단 : 도의원 2명 (김진동, 임상규의원)

3. 강원도의회 ⇒ 캐나다 방문

가. 제15차 세계자원봉사자 회의참가

- 기 간 : 98. 8. 23~8. 27 (5일간)
- 방문단 : 도의원 1명 (안상현의원)

나. 도지사 미주지역 세일즈 순방참가

- 기 간 : 99. 6. 8~6. 20 (13일간)
- 방문단 : 도의원 2명 (정철수, 장동희의원)

4. 강원도의회 ⇒ 인도네시아방문

가. 인도네시아 어장진출 협력사업

- 기 간 : 00. 5. 29~6. 2 (5일간)
- 방문단 : 도의원 2명

5. 강원도의회 ⇒ 러시아방문

가. 양 도 · 주의회간 우정 및 협력에 관한 합의서 체결

- 기 간 : 00. 6. 13~6. 19 (7일간)
- 방문단 : 6명

6. 강원도의회 ⇒ 동남아

- 기 간 : 99. 3. 22~3. 31 (10일간)
- 방문단 : 2명
- 방문국가 :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7. 일본 ⇒ 강원도의회

가. 한일우호 의원연맹 의원단내방

- 기 간 : 98. 10. 15
- 방문단 : 25명

나. 돛토리현의회 관광엑스포 참가

- 기 간 : 99. 9. 10~9. 13 (4일간)
- 방문단 : 8명



다. 미야기현의회 대표단 초빙내방

- 기 간 : 99. 9. 10~9. 13 (4일간)
- 방문단 : 21명

라. 돗토리현의회 관광엑스포 관람 및 주요지역시찰

- 기 간 : 98. 10. 8~10. 12 (5일간)
- 방문단 : 10명

10. 중국 ⇒ 강원도의회

가. 중국 浙江省 杭州日報방문단 내방

- 기 간 : 98. 11. 12
- 방문단 : 7명

나. 안휘성의원단 우호교류 의장예방 및 산업시찰

- 기 간 : 99. 9. 8~9. 15 (8일간)
- 방문단 : 7명

다. 청도시 인민대표 의장예방 및 산업시찰

- 기 간 : 99. 9. 28~9. 30 (3일간)
- 방문단 : 5명

라. 길림성인민대표대회 의장 및 도지사예방

- 기 간 : 00. 1. 16~1. 18 (3일간)
- 방문단 : 5명

마. 길림성연변조선족자치주 인민대표대회 대표단 초청

- 기 간 : 00. 5. 13~5. 16 (4일간)

- 방문단 : 8명

바. 호북성 인민대표대회 대표단 내방

- 기 간 : 99. 6. 29~7. 1 (3일간)
- 방문단 : 8명



第 4 節 議員海外研修

1. '99·'00도의원 해외연수

가. 研修概要

- 기간 : 연수단별 11일간
 - 내무위원회 (10) : 황영철, 조규병, 권혁희, 변완기, 신명선, 신창승, 원종익, 이 훈, 인현상, 천희숙의원
 - 산업경제위원회 (8) : 엄문섭, 함종선, 곽노린, 오원일, 이무순, 이해천, 정인수, 정충수의원
 - 교육사회위원회 (10) : 안상현, 김수돈, 박금용, 성희직, 심재천, 엄민현, 이상구, 임상규, 장철수, 천희숙의원
 - 관광건설위원회 (8) : 김길정, 이상명, 박용길, 서종을, 이종근, 이기순, 유돈대, 전인택의원
- 목적 : 의원 임기중 해외연수를 통한 선진외국의 지방자치 사례를 비교 연찬하여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개발능력을 함양하여 의정과 강원도정에 반영토록 하여 자치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研修日程

일 정	연수국가	방 문 지 역	연 수 내 용
'99. 3. 3~3. 13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북경	○ 길림성 인민정부 및 대표 방문간담 ○ 대성중학교 시찰(용정) ○ 도문시 국경지역 시찰 ○ 천안문, 이화원, 만리장성, 전통무예 견학 및 시찰
	일본	돗토리현, 요나고시 동경	○ 돗토리현 의회방문 간담 ○ 현 사구 및 엔초엔 시찰 ○ 한국 강원도교류 기념비 견학

일 정	연수국가	방 문 지 역	연 수 내 용
'99. 8. 22~9. 1	스웨덴	스토홀름	○ 스톡홀름 시의회 방문 및 환담 ○ 스톡홀름 노동조합 방문 및 환담
	덴마크	코펜하겐	○ 올로 시의회 방문 ○ 돼지농장 등 농업 시설을 견학
	노르웨이	오슬로, 베르겐	○ 오슬로 시의회 방 문 ○ 베르겐 수산업 박물관 시찰
	헝가리	부다페스트	○ 헝가리 침략사에 대한 교훈이 서린 역사현장 견학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 알스메어 화훼경매 장 시찰 ○ 화훼 육묘현장 시찰
'00. 1. 6~1. 16	호주	시드니, 브리즈베인, 골드코스트	○ 시드니 실버타운방문 및 현장청취 ○ 교육시설시찰 및 실태파악 ○ 자연환경실태 파악 ○ 관광시설물 운영 및 관리실태 견학
	뉴질랜드	오클랜드, 로트로아 크라이스처치, 퀸스타운	○ 오클랜드 쓰레기소각장 시설운영 및 관리 실태 ○ 자연경관 시설 시찰 ○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관리실태 ○ 자연환경실태 청취 및 견학
'00. 2. 29~3. 10	이탈리아	로마	○ 시내 도시계획 및 고건축물 견문 ○ 문화유적지 및 유물관리 현황 견문
	그리스	아테네	○ 건축물과 문화유적의 관리실태 파악 ○ 섬개발 현황 및 관리실태 ○ 국회운영현황 청취 및 견문
	터키	이스탄불	○ 시청 건설과 방문 건설행정운영현황 청취 견문 ○ 관광협회 방문 관광지 개발 및 관리 현황 청취 ○ 도시계획 및 고대건축물 견문
	이집트	카이로	○ 고대유적지 견학 및 유물관리 현황 답사 ○ 박물관 관리상황 청취 ○ 고대 유적지의 관리상황과 관광개발 견문

다. 施策參考事項

- 특색있는 관광산업 육성 개발
 - 관광객에게 편의제공 및 손해·불이익을 최소화 시켜주는 관광경찰제도 연구시행
 - 태백산, 천제단 등 역사성 있는 성소를 소재로 관광자원화



- 강원도민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강원도적인 토속적, 민속적 관광상품 개발로 관광유인 및 동기부여
- 강원도내에 널리 산재되어 있는 화강암을 소재로 상품화 시키는 방안 강구
- 환경에 중점을 둘을 물론 관광객 수요에 맞는 시설물(변기 등) 설치와 또한 아가방 설치로 화장실 사전 평가제, 비용지원 등 관련법 제도 필요
- 강원도를 알릴 수 있는 사계절 관광자원 개발
- 도로시설을 친환경적, 생태적, 보전적 시설로 연계
 - 도로건설에 있어 대절토 등으로 환경을 파괴하고, 대성토 등으로 지역을 분절시키는가 하면 동물류 도로진입으로 무고한 살생이 이루어지는 근시안적 시설계획의 지양
 - 성토지역의 교량화
 - 절토지역의 터널화
 - 동물 이용로 확보
 - 동물 진입방지 헴스 설치
- 구조물 및 시설물을 이용한 안전시설 설치
 - 낙석 위험구간에 대한 돌출식 콘크리트 슬라브시설 설치, 수직형 암절개지 구간의 터널 입구에 안전시설 설치
 - 차량의 도로 탈선 방지용 안전 시설물 설치
 - 공사구간내 무인 신호등 설치
 - 도로 확장 및 신설도로 개설시 기존 가로수를 이용한 중앙분리대로 사용
 - 가로수 한그루에도 지역의 의미와 역사성을 부여한 수종선정 식재
-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 작은 것 하나에도 장애인 먼저 실천을 생활화
 - 횡단보도 앞의 장애인용 보턴 스위치 설치
 - 장애인 전용주차 면적 최소화 확보
 - 공공시설이나 공공이용시 장애인 먼저 승·하차후 비장애인 이용
 -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충
- 다양한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 운동장 공원 등 쓰레기가 산재한 지역에 분리 수거를 할 수 있는 색상이 서로 다른 분리 수거함을 비치
- 교육수준 질 향상 및 국제화에 대비한 교육연구

- 교육과 훈련을 병행하는 기술단과 대학과 학문적이며 전문성을 띤 수준 높은 학위 프로그램 제공
- 국제화 대비교육으로 환경교육에 대한 관심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



第 5 節 陳情 및 請願處理

1. 陳情處理

가. 總 括

진정서 처리는 제5대 전반기 중 140건이 제출되어 23건이 불수리 되었으며, 117건이 접수·처리되었다. 연도별로 보면 '98년도에 29건이 제출되어 6건이 불수리되었고, 23건을 접수·처리하였으며, '99년도에 73건이 제출되어 11건이 불수리되었고, 62건을 접수·처리하였으며, '00년도 상반기에는 38건이 제출되어 6건이 불수리되었고, 32건이 접수·처리되었다.

나. 接受現況

1) 委員會別 現況

접수된 140건의 위원회별 내역은 기획행정위원회 36건, 교육사회위원회 27건, 산업경제위원회 45건, 관광건설위원회 32건으로 나타났다.

2) 提出者別 現況

진정인을 제출자별로 보면 기관단체에서 79건으로 과반수 이상으로 제일 많으며, 다수 주민으로부터 37건이 제출되었고, 개인이 제출한 것은 24건이다.

다. 處理現況

1) 委員會別 處理現況

총 접수·처리한 140건 중 기획행정위원회 23건, 교육사회위원회 16건, 산업경제위원회 29건, 관

광건설위원회 16건이며 기타 미회부되어 직접 처리한 것이 56건이다.

2) 處理類型別 現況

강원도 등 타기관에 이송처리한 것은 26건, 위원회에 참고토록 통지한 것이 34건, 불수리 사항이 3건, 77건은 위원회에 회부하여 관련부서에서 의견을 듣거나 추진현황을 파악하여 상황설명 등으로 처리하였다.

3) 處理期間別 現況

10일 이내 처리된 것이 51건, 11~20일이 소요된 것이 30건이며, 33건은 30일 이내에 처리되어 %는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하였으나 30일 이상 소요된 것도 26건으로 나타났다.

라. 處理結果

1) 總 括

처리된 진정서 140건중 목적을 달성한 것이 21건, 향후 검토 또는 추진상황을 설명한 것이 70건으로 나타났으며, 20건은 불편 부당과 피해 보상등 예산이 요구되는 사항과 지역개발 및 제도개선 사항으로 중앙부처에서 처리되어야 할 사항으로 목적이 미달성 되었다.

2) 目的未達成 內譯

해결되지 않은 것을 내용별로 보면 법령상 제약으로 인한 것이 7건 예산부족 1건, 민사관련 3건, 정책상충 9건이다.



2. 陳情目錄 및 處理現況

가. 1998年度 : 29件

일련 번호	건 명	소관위	진 정 인	접수일	처리일	처리 결과
1	군유림대부료재조정 징수촉구진정	산경위	영월군 영월사랑회회장 김 진현	'98. 7. 2	'98. 7. 7	이 송
2	경춘선 복선화에 대한 진정	산경위	춘천시 신명균외 195인	7.10	7. 13	이 송
3	카지노및슬롯머신등의전국관광호텔 허용 방침 철회 진정	산경위	정선군변영연합회 정연선	7.13	7. 22	참 고
4	카지노및슬롯머신등의전국관광호텔 허용 방침철회 진정	산경위	삼척시 삼척상공회의소 이수일	7.15	7. 22	참 고
5	연근해채낚기어선의집어등광력 조정에 대 한 진정	산경위	고성군 거진연근해채낚기협 회 회장 정찬갑외 153인	7.27	8. 13	불 가
6	독가촌건물 철거에 대한 진정	내무위	강릉시 이동춘외 27인	7.29	8. 3	불수리
7	조직개편에 따른 여성농업인 관련 조직 존치 건의	내무위	서울시 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회장 고송자	8. 4	8. 20	해 결
8	영월교도소 설치 진정	내무위	영월군 영월사랑회회장 김 진현	8.13	8. 17	불수리
9	여성농민관련 행정조직 개편방안 건의	내무위	서울시 한국농민연구소 소장 김현숙	8.18	8. 20	해 결
10	건설폐기물중간처리장 설치허가에 대한 진정	교사위	태백시 조고석외 9인	8.20	9. 4	해 결
11	팔당호 수질개선에 관한 건의	교사위	정선군변영회 정연선	8.24	8. 26	참 고
12	기념탑 건립예산확보 지원건의	교사위	강릉시 강릉3.1독립만세 운동기념탑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 김명기	9.11	9. 11	해 결
13	임진강수계특별대책지역지정반대 건의	교사위	철원군 철원군의회 의장	9.15	9. 21	참 고
14	후평3동 SK주유소설치철회진정	산경위	춘천시 원영욱외 130인	9.17	9. 21	이 송
15	시멘트산업활성화를 위한 건의	산경위	서울시 김원황외 554인	9.17	9. 24	참 고
16	태백시의 부당한 행정집행에대한 진정	산경위	태백시 연화동 2/1 통리 5일장추진위원회 하귀도와 2,083인	9.27	10. 13	이 송
17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허가반대 진정	교사위	속초시 김병국외 770인	9.26	10. 13	불 가

일련 번호	건 명	소관위	진 정 인	접수일	처리일	처리 결과
18	태백시편입 옛삼척하장면 관할구역 환원 촉구 건의	내무위	삼척시 삼척시의회의장	'98. 10. 9	10. 29	불 가
19	도내전문건설업체 보호·육성 협조 요청	관건위	춘천시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원도지회장 왕종배	10.10	12. 9	이 송
20	경기도의회의식수전용담건설건의에 대한 항의문	관건위	인제군의회 의장	10.14	10. 19	해 결
21	농업생산관련기관통합에따른 건의	산경위	철원군 임대순외 43명	10.15	11. 6	불 가
22	정동진리관광상품개발지원건의	관건위	강릉시 정동진리 번영 회장 윤재완	10.27	11. 19	참 고
23	어족자원 조기채취에 따른 건의	산경위	미국 플로리다주	10.29	11. 13	참 고
24	담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안)일 부조항 수정건의	관건위	춘천시 강원도 시·도 군의회장단협의회장 정태섭	11. 4	11. 6	참 고
25	영세어민 애로사항 호소	산경위	고성군 황병준외 167인	11.19	12. 9	참 고
26	송전탑철폐투쟁에따른지원요청 건의	산경위	횡성군 공영조외 14인	11.26	11. 27	이 송
27	도로편입 농지에 대한 진정	관건위	춘천시 정재근외 2인	12. 1	12. 24	이 송
28	보상가현실화를 위한 호소문	관건위	정선군 이인학외 114인	12. 3	12. 5	이 송
29	농사용전기요금적용단일화건의	산경위	삼척시의회 의장	12.29	12. 30	이 송

나. 1999年度 : 73件

일련 번호	건 명	소관위	진 정 인	접수일	처리일	처리 결과
1	영월담건설반대성명서	관건위	영월군의회 의장	'99 1. 4	'99. 1. 5	참 고
2	도유지 매입 건의	내무위	강릉시 이인	1.14	2. 8	해 결
3	궁중리 도로확·포장 건의	산경위	횡성군 원종근외 75인	1.15	1. 29	불 가
4	토지보상에 관한 탄원	관건위	원주시 김재호	1.19	2. 26	이 송
5	춘천의료원의 의대부속 병원화 반대 진 정	내무위	춘천시 춘천의료원노·사공 동대책위원회 구철회, 전은 남등 34,199인	1.20	2. 24	참 고
6	강원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 징수 조례개정건의	관건위	양양군 박석준외 19인	1.26	2. 11	불 가



일련 번호	건 명	소관위	진 정 인	접수일	처리일	처리 결과
7	함태탄광아파트공매에따른 호소문	내무위	태백시 유인국	1.27	1. 29	이 송
8	휴양콘도미니엄에대한단체등수학여행단의유치규제 진정	교사위	속초시 속초시장	2. 3	2. 8	참 고
9	입찰참가수수료 인하 건의	내무위	춘천시 춘천상공회의소 회장	2. 5	3. 18	불 가
10	쓰레기매립장 설치반대 진정	교사위	영월군 우흥명외 417명	2. 8	2. 20	불 가
11	경지정리에 대한 진정	산경위	고성군 인도정	2.18	3. 10	해 결
12	그린벨트 해제추구 건의	관건위	춘천시 김천주	2.19	2. 22	참 고
13	정선환민임대아파트경매에 따른진정	내무위	정선군 김용선의 36인	2.22	2. 26	불수리
14	경춘선 60주년 기념사업 제안	내무위	춘천시 전병길	2.23	2. 26	참 고
15	영월공동묘지 설치반대 진정	교사위	영월군 이철우	2.26	3. 4	이 송
16	강원도공업중등학교교사 재임용건의	교사위	전북 김숙양	3. 8	3. 22	참 고
17	춘천시 동산면 지역 I·C설치 건의	관건위	춘천시 홍창교외 476인	3.10	3. 15	이 송
18	조달청강릉출장소 존속 건의	내무위	강릉시 강릉상공회의소 김진환	3.12	3. 15	참 고
19	결식아동을 위한 조례제정 제안	교사위	서울 사랑연대사무총장 홍성욱	3.25	4. 10	참 고
20	육체노동자 실업구제를 위한 석탄 산업 활용방안 건의	산경위	서울 전국광산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동철	4. 1	4. 3	참 고
21	지역소방서 이전에 따른 시설비지원	내무위	춘천시 김주열	4.15	5. 14	해 결
22	규석광산으로 인한 군선강오염에 대한 탄원	산경위	강릉시 김종출외 881명	4.26	5. 21	참 고
23	영월댐 백지화 건의	교사위	영월군 영월사랑회 회장 김진현	4.27	4. 30	이 송
24	폐천부지 양여증서이행 촉구에 대한 건의	관건위	춘천시 김명규외 2인	5. 4	6. 3	불 가
25	한국과학기술원 강릉분원 설치 건의	산경위	강릉시 강릉상공회의소 소장 김진환	5.10	6. 3	참 고
26	석탄산업활성화를 통한 실업안정 대책 건의	산경위	삼척시의회	5.12	5. 14	참 고
27	도로신설에 대한 건의	관건위	춘천시 이충범외 12인	6.10	7. 3	해 결
28	태백산도립공원 국립공원 지정반대 건의	관건위	태백시의회	6.15	7. 3	참 고
29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건의	교사위	고성군 거진초등학교 전교어린이회	6.24	6. 25	이 송

일련 번호	건 명	소관위	진 정 인	접수일	처리일	처리 결과
30	인구해안지구 주택지조성사업에 대한 진정	관건위	양양군 김창호외 11인	7. 2	7. 29	해 결
31	영월의료원 간호과장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진정	내무위	춘천시 전국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7. 7	8. 4	참 고
32	무단점유된 사유지 원상복구에 대한 진 정	관건위	강릉시 조규선	7.15	7. 16	이 송
33	입찰 참가자격 부당제한에 대한 시정요 청	내무위	춘천시 한국전기공사협회 강원지부	7.19	8. 4	참 고
34	하천교량설치 건의	관건위	홍천군 신동천외 124인	7.19	8. 16	해 결
35	양월댐건설 확정연구에 따른 양식 어민 재산권 보상 요구	교사위	평창군 최성열외 7인	7.28	8. 16	참 고
36	도농통합시 지방교부세산정 특례 적용 기간연장 건의문	내무위	춘천시 강원도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회장 정태섭	7.26	8. 19	참 고
37	지방정부 조직개편에 대한 건의서	내무위	경기도 전국대학지적학과 교수 협의회장	7.28	8. 30	불 가
38	영월댐건설예정지 지질구조와 관련 적극적 처리요구	교사위	영월군 영월사랑회회장 김진현	7.30	8. 16	참 고
39	호반초등학교 교사 성추행사건에 대한 재조사 요청	교사위	춘천시 호반초등학교학부 모회 이해경	8.14	9. 8	해 결
40	강원도 아마투어 복싱발전의 건의	관건위	강릉시 강원도복싱연맹발 전추진위원회 남기원외 20 인	8.26	9. 22	이 송
41	춘천~양구 소양호 다리난간에 대한 건 의	관건위	춘천시 김승환	8.26	8. 27	이 송
42	댐예정지 건축물신축에 대한 원상 복구 철회	관건위	평창군 영월댐송어장수물 대책위원장 최성열외 7인	8.31	9. 1	이 송
43	고랭지 채소의 비료피해로 인한 보상요구	산경위	삼척시 이재복외 150인	9. 2	10. 11	참 고
44	정부의 비축무연탄수매중단 및 무연탄 화력발전소 민영화 반대 결의문	산경위	삼척시의회의회장	9. 8	9. 10	참 고
45	건축허가관련 재감사 요구	내무위	춘천시 손연숙	9.13	10. 21	참 고
46	춘천의료원 경영정상화를 위한 호소문	내무위	춘천시 춘천의료원 임직 원일동	9.16	10. 21	해 결



일련 번호	건 명	소관위	진 정 인	접수일	처리일	처리 결과
47	마늘산업 붕괴방지를 위한 건의문 송부 요청	산경위	전남 전국마늘양파부정수 입방지대책위원회	9.30	10. 1	참 고
48	마늘산업 보호를 위한 건의문 송부요청	산경위	서울 농협중앙회장	10. 4	10. 5	참 고
49	공용상수도설치에관한 요청	교사위	동해시 동해대학장	10. 4	11. 30	이 송
50	농어촌지역학교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규 정개정에 대한 진정	교사위	원주시 농어촌지역학교 근무 경력가산점부여대책 위원회위원장 장기웅	10.12	10. 25	참 고
51	정선군 장애인단체의 차량지원 요청	교사위	정선군 장애인단체총연합 회장 이종기	11. 5	11. 5	이 송
52	도.농통합시 농어촌 읍지역학교 근무경력 가산점부여를 위한 건의	교사위	원주시의회회장	10.25	10. 25	참 고
53	만천리 송전탑 반대에 대한 진정	산경위	춘천시 만천리송전탑 반대투쟁위원장 김동수외 7인	10.28	11. 17	참 고
54	원주시 반곡동 동물화장장설치 반대	교사위	원주시 이기설외1032인	10.30	11. 17	참 고
55	순국 김상태의병장 추모사업 건의서	교사위	영월군 삼척김씨대종회영 월지회 김형진	11. 1	11. 3	참 고
56	폐광지역 개발촉진에 대한 건의	산경위	영월군 영월사랑회 회장 김진현	11. 2	11. 17	참 고
57	탐동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관련 탐동댐 반대에 관한 진정	산경위	고성군 탐동댐건설반대대 책위원회 김철규외8인	11. 3	11. 17	참 고
58	번호판 교부대행소 추가지정관련 탄원	관건위	속초시 함영준외 17인	11.11	12. 28	해 결
59	남해화확 B.B비료 피해에 따른 진정	산경위	정선군 신동읍 방제2리 434-41	11.11	12. 14	참 고
60	용산초등학교 통·폐합 반대	교사위	평창군 김태윤외 77인	11.16	11. 30	불 가
61	송전철탑 공사에 따른 피해보상요구	산경위	횡성군 장선익외 54인	11.19	'00. 1. 17	이 송
62	남해화확 B.B비료사용 피해손해 배상 청구	산경위	삼척시 남해화확B.B비료 피해농가대책협의회	11.22	1. 17	참 고
63	강원도 감자원종장 이전 반대	산경위	평창군 강원도감자원종장 이전반대추진위원회위원장 김종영	11.23	'99. 12. 30	불 가
64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설치를 위한 건 의 협조	관건위	충청북도의회의장	11.29	11. 30	참 고

일련 번호	건 명	소관위	진 정 인	접수일	처리일	처리 결과
65	석회석광산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 상사업 범위조정 건의에 대한 진정	교사위	삼척시의회의장	12. 1	12. 2	참 고
66	관광숙박업 설치에 따른 민원 의뢰	관건위	서울시 김영인	12. 2	12. 28	불 가
67	'99강원국제관광박람회 향토음식점 적자 운영에 대한 보상요구	관건위	고성군 박상순외 3인	12.16	'00. 1. 6	불 가
68	태백시민 생존권쟁취투쟁 지지 협조	산경위	태백시 태백지역현안대책 위원회	12.17	'99. 12. 17	참 고
69	대출보증 피해에 대한 호소문	내무위	강릉시 최기영	12.21	12. 23	참 고
70	남해화학 B.B비료 피해에 대한 진정	산경위	삼척시 남해화학 B.B 비료 피해시군공동대책협의회	12.23	12. 23	이 송
71	도체육회 사무처장 및 직원퇴진에 대한 진정	관건위	춘천시 강원도경기단체전 문이사협의회	12.24	'00. 1. 17	참 고
72	실내체육관 건립 및 도서관 시설에 대한 건의	교사위	정선군 함백여자중학교 운 영위원장 최병조의 5	12.27	1. 20	참 고
73	석회석 광산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조 례 제정 건의	교사위	삼척시의회의장	12.30	1. 20	해 결

다. 2000年度 : 38件

일련 번호	건 명	소관위	진 정 인	접수일	처리일	처리 결과
1	우리마늘지키기 공동노력 협조 요청	산경위	전남 무안군.읍 성남리 180-1	2000. 1.17	1. 18	참 고
2	조례제정 요구	내무위	서울시 전국지방자치 단체노동조합	1.17	3. 11	참 고
3	주길림성강원경제무역사무소 전홍진소장 의 유임 요망	내무위	중국 길림신문사와 2개 단체	1.21	2. 9	불 가
4	제16대 국회의원 강릉선거구 현행 유지 관철 건의	내무위	강릉시 상릉상공회의소회 장 김진환외 사회단체	1.24	1. 24	참 고
5	산업전사위령탑 위폐안치소 확장 및 일 대 성역화 건의	산경위	태백시 태백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주응환외 2	1.29	2. 16	참 고
6	강릉 경포 골프장 조성사업 승인촉구 건의	관건위	강릉시 강릉상공회의소 회장 김진환	2. 7	2. 19	참 고



일련 번호	건 명	소관위	진 정 인	접수일	처리일	처리 결과
7	중앙고속도로 원주 상행선 187.7k 지점 안전조치 촉구	관건위	인천시 박민기	2.14	2. 16	이 송
8	농업진흥보호지역에 관한 진정	산경위	횡성군 우천면 백달리 3반	2.18	3. 4	불 가
9	폐광지역개발촉진진흥지구에 대한 형평 성에 맞는 지원 요구	산경위	영월군 영월사랑회 회장 김진현 외 사회단체	2.21	3. 8	참 고
10	강원개발공사에 대한 조사 요청	내무위	춘천시 공영빌딩 신흥포토 고금란	3. 6	3. 28	참 고
11	임대아파트 경매와 관련 전세금에 대한 진정	내무위	태백시 황지동 49-87	3. 7	3. 8	참 고
12	바가지요금에 대한 진정	산경위	서울시 김주영	3.10	3. 31	참 고
13	구2차선 영동고속도로 통행불편에 대한 진정	관건위	평창군 이해숙	1.21	3. 10	이 송
14	통발어업허가 문어포획 삭제 건의	산경위	삼척시 연승조합원연합회 회장 김두영	3.23	3. 31	참 고
15	울진-신태백 765KV송전선로건설 반대 결의문	산경위	삼척시의회의장	3.29	3. 31	참 고
16	마늘산업피해 구제조치 긴급지원 요청	산경위	전남 우리마늘·양파지키 기 전국운동본부장 나남수	4. 3	4. 29	해 결
17	개정 전통시찰보존법 시행을 위한 조례 제정 협조 요청	관건위	서울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서정대	4.15	4. 28	해 결
18	사람 좀 찾아주세요	내무위	동해시 묵호동 9/2	4.20	4. 17	불 가
19	양돈축협매장으로 인한 피해·요구 사항 에 대한 진정	산경위	강릉시 종합시장상공인 협회대표 송재영	4.20	5. 12	참 고
20	강원도주민감사청구조례에 관한 공청회 요청	내무위	춘천시 효자2동 279-4신아 원룸 103호	4.24	5. 20	불 가
21	동해시 동회동 산불피해에 따른 건의문	내무위	동해시 동회동 295	5. 1	6. 26	참 고
22	삼척·동해 산불로 인한 송이버섯 피해 보상에 대한 건의문	내무위	삼척시 송이버섯피해 보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동섭	5. 1	5. 20	해 결
23	산불피해지역복구 및 보상지원 확대 건 의문	내무위	삼척시의회의장	5. 1	5. 3	해 결
24	산불피해에 대한 탄원	내무위	강릉시 최구영	5.13	6. 14	참 고

일련 번호	건 명	소관위	진 정 인	접수일	처리일	처리 결과
25	산불로 인한 장뇌산삼 피해보상에 대한 탄원	내무위	삼척시 남양동 22/3	5.15	6. 14	참 고
26	동해항 관세자유지역 지정 건의	내무위	동해시의회의장 양승웅 외 9인	5.16	6. 5	참 고
27	강원예술고등학교 교과목에 대한 건의	교사위	강릉시 남문동 삼익그린맨션 101동 1005호	5.19	6. 16	참 고
28	산불피해보상 상공인도 동일한 조건의 자금지원 요청 건의	내무위	강릉시 강릉상공회의소 회장 최규동	5.23	6. 26	참 고
29	산불피해에 대한 보상 요구	내무위	고성군 허금원	5.25	6. 14	불 가
30	군사시설 보호구역 확대반대 및 관내 군사보호구역의 행정위탁지역전환을 촉구하는 탄원	관건위	화천군 화천번영회장 장육웅외 593인	5.25	6. 14	이 송
31	동해시 관사촌아파트 건설사업비 삭감에 대한 진정	내무위	동해시 동해북부권발전협의회 회장 반병섭외 회원일동	5.29	6. 14	해 결
32	마을어장 피해 원인규명 및 손해배상에 대한 탄원	산경위	삼척시 삼척수협정라 어촌계장	6.12	8. 9	참 고
33	경춘석재(크랏사장) 운영에 따른 진정	관건위	춘천시 송희진	6.13	6. 14	참 고
34	강원도 농공단지 운영상의 개선방안 건의	산경위	춘천시 한국무역협회 강원지부장 정성기외 3	6.16	7. 10	참 고
35	장뇌산삼 피해보상 요구	산경위	강릉시 박남훈	6.24	6. 26	불 가
36	연안 사각통발 금지 건의서	산경위	삼척시 유자망연합회 회장 강영구외	6.26	8. 9	참 고
37	횡성군 강림면 지방도 411호상 교량 재건설 건의	관건위	횡성군 횡성군의회의원 서창하외 350인	7. 3	7. 26	해 결
38	영월댐 예정지역 내수면 양식어업 특별지원 요청	교사위	평창군 영월댐수몰예정송어양식어가대책위원회 최성열외 7	7. 3	7. 28	참 고



3. 請願處理

청원은 제5대 도의회 전반기중 2건이 제출되어 처리되었다.

- '99년 2월 12일 청원인 정선군 이삼돌외 836인, 건설폐기물처리적정통보철회에 관한 청원건
'99년 9월 20일 처리
- '00년 5월 16일 청원인 정선군 이상규외 49인, 421호 지방도 낙석위험지역 대책마련을 위한
청원건 '00년 7월 8일 처리

第 6 節 其 他

1. 全國 市 · 道議會議長協議會 運營

가. 機 能

- 1) 각 시도의회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과 협의
- 2) 2개 시도의상 관련 및 공통사항 협의
- 3) 각 시도의회 상호간의 친목 증진을 위한 사항
- 4) 기타 필요한 사항

나. 構 成

- 1) 의장협의회는 1998년 8월 17일 각 시도의회 의장 명으로 회장 1인, 부회장 2인, 감사 2인, 총무 1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임원현황은 다음과 같다.
 - 회 장 : 이종수 (충청남도의회 의장)
 - 부회장 : 권영적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 " : 이완식 (전라남도의회 의장)
 - 감 사 : 이춘범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 " : 장성호 (경상북도의회 의장)
 - 총 무 : 이계석 (경기도의회 의장)
- 2) 개최실적은 1998년 하반기 4회, 1999년 5회, 2000년 상반기 4회 등 총13회에 걸쳐 협의회가 개최되었으며 지방의회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공통현안 사항들이 폭넓게 협의되었다.

다. 運營狀況



구 분	일 시	장 소	내 용
제1차	'98. 8. 17	서울특별시의회	○ 회장단 구성 및 연회비 의결 ○ 제2건국운동 적극참여 결의문채택 ○ 전국 시도의회 의원배지 통일 ○ 협의회 규약중 실무협의회는 운영위원장협의회가 대행
제2차	'98. 9. 26	제주도의회	○ 지방자치법 개정안 협의 ○ 전국체전 관람
제3차	'98. 10. 8	서울특별시의회	○ 지방자치법 개정안 협의 - 회장단 10.6국회의장, 3당총재, 행정자치부장관 방문 법개정 건의
제4차	'98. 11. 18	경기도의회	○ 운영위원장 합동회의 ○ 지방자치법 등 개정안 협의 ○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관련법령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제5차	'99. 2. 11	서울특별시의회	○ 행정자치부장관과의 간담 ○ 신 한·일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 보호 대책 건의문 채택
제6차	'99. 7. 16	서울특별시의회	○ 전국시도회의의원 합동세미나 개최 협의
제7차	'99. 9. 10	강원도의회	○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등 협의 ○ 강원 국제 관광 EXPO 참관
제8차	'99. 10. 11	인천광역시의회	○ 전국시도의회 협의회보 발간계획 등 당면사항 협의 ○ 전국체전 참관
제9차	'99. 11. 27	경상남도의회	○ 의장단 재선출 ○ 당면사항 협의 ○ 국제F-3코리아 그랑프리 참관
제10차	'00. 2. 19	충청남도의회	○ 의장 협의체 설립방안 협의 ○ 협의회 건의사항 반영상황 토의
제11차	'00. 3. 17	경상북도의회	○ 지방자치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반영 건의안 채택
제12차	'00. 3. 28	광주광역시의회	○ 협의회 명의 각종 지방행사 등 지원 건의기준(안) 협의 등 ○ 광주 비엔날레 개막식 참관
제13차	'00. 5. 9	서울특별시의회	○ 행정자치부장관과의 간담 등

2. 全國市·道議會 運營委員長 協議會 運營

가. 機能

- 1) 각 시도 의회운영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과 협의
- 2) 2개 시도이상 관련 및 공통사항 협의
- 3) 각 시도의회 상호간의 친목도모 협조를 위한 사항
- 4) 기타 필요한 사항

나. 構成

- 1) 1998년 7월 17일 서울특별시 의회에서 지방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공동 이해관련 사항을 협의하고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간의 화합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규약[○]르 채택하고, 회장1인, 부회장2인, 감사2인, 사무총장1인등 총 7인의 임원을 구성하였으며 임원 현황은 아래와 같다.

※ 운영위원장협의회

- 회 장 : 이용부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
- 부 회 장 : 이덕천 (대구광역시의회 ")
- 부 회 장 : 이 훈 (강원도의회 ")
- 부 회 장 : 최형식 (전라남도의회 ")
- 감 사 : 장준호 (충청북도의회 ")
- 감 사 : 박관도 (경상남도의회 ")
- 사무총장 : 노동길 (전라북도의회 ")

- 2) 연도별로는 1998년도에 5회, 1999년도 7회, 2000년도 6회로 총 18회를 개최하였다.

다. 運營狀況

구 분	일 시	장 소	내 용
제1차 회의	'98. 8. 17	서울특별시 의회	○ 제3기 전반기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 협의회 구성 -회장 1, 부회장 3, 감사 2, 사무총장 1 ○ 지방의원 위상 제고 방안, 지방자치법 개정 등 협의



구 분	일 시	장 소	내 용
제2차 회의	'98. 9. 1	"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관련법 개정촉구 건의 ○국세의 지방세 전환으로 지방재정 확충 ○정기회 집회 및 회기 자율 운영권 확보
제3차 회의	'98. 9. 24	제주도의회	○주민감사 청구제도 개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요구 표준화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확대
제4차 회의	'98. 11. 4	강원도의회	○서울시의회 “열릴 의회 교실”개설 운영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 성공적 개최 지원 ○지방자치발전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정비 개선방안
제5차 회의	'98. 11. 18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 ○의원배지 통일안 검토
제6차 회의	'99. 3. 9	광주광역시의회	○시도의회 야간회의 개최 검토 ○지방채 발행 승인제도 개선
제7차 회의	'99. 5. 11	대구광역시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추진 ○의회사무처 직제규칙 적법성 지적·시정요구
제8차 회의	'99. 7. 1	전라북도의회	○강원국제관광엑스포 지원을 위한 도의원 홍보사절단 홍보 계획 ○지방의회 의정활동 사례집 발간
제9차 회의	'99. 9. 1	부산광역시의회	○부산자동차 산업 살리기 대정부 건의문 ○제 80회 전국체육대회 참석 협의(인천)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 성공다짐 시도 체육대회
제10차 회의	'99. 9. 28	경상북도의회	○지방의원 해외연수관련 업무회의 ○기금운영 개선 방안 ○지방의원 의정활동 차량비 지원, 경감대책
제11차 회의	'99. 10. 11	인천광역시의회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광역의원의 중앙정치권 참여 협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12차 회의	'99. 11. 27	경상남도의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사례집 발간 ○행자부 차관과의 간담회 개최 결과보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 개선
제13차 회의	'00. 1. 24	전라남도의회	○지방자치단체 의장 등 협의회 설립 ○도의회 운영 기본계획안 사례 전파
제14차 회의	'00. 2. 25	충청남도의회	○시군의회 사무처 인사권, 복수 직급제 도입 건의 ○지방의회 정례회 운영 제도개선

구 분	일 시	장 소	내 용
제15차 회의	'00. 3. 24	울산광역시의회	○지방의회 정례회의 제도개선 논의 ○문화예술분야 기능 전수자 병역특례제도 도입검토 ○전자결재 문서 열람 전 검토
제16차 회의	'00. 4. 27	충청북도의회	○시군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 등 청원서 제출 ○강원 동부지역 산불피해대책 추진건의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 비정규인력 감축반대 건의
제17차 회의	'00. 5. 25	대전광역시의회	○지방자치발전 선언문 채택 ○제5대 전반기 운영위원장 협의회 결과 보고서 발간 협의
제18차 회의	'00. 6. 12	서울특별시의회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3기(전반기)활동 마감

3. 社團法人 江原道議政會 設立 및 運營

가. 設立經緯

- 1997. 10. 15 : 창립(발기)총회
 - 발기인 : 14명(회원 72명 -초대3, 2대8, 3대47, 4대14)
- 1997. 12. 13 : 법인설립허가(강원도지사 제97-1)
- 1998. 1. 13 : 법인설립등기(춘천지방법원)
- 1998. 1. 17 : 사업자등록 신고(춘천세무서)

나. 職制 現況

- 회장단 : 회장(1), 부회장(3)
- 사무처 : 사무총장(이해천의원), 의정국장(1), 기능직(1), 계약직(1)

다. 任員 現況

- 제1대 임원현황(1997. 10. 15 ~ 2000. 01. 18)
 - 회 장 : 최경식(제3대 도의회 의장)



- 부회장 : 홍현표 (제2대 · 강릉) 정상철 (제3대 · 원주) 엄돈호 (제3대 · 강릉)
- 제2대 임원현황 (2000. 01. 19 ~ 현재)
 - 회 장 : 정상철 (제3대 의원)
 - 부회장 : 허천 (제3 · 4 · 5대 의원, 제5대 도의회 의장)
 - 엄돈호 (제3대 의원) 황금천 (제3대 의원)
 - 이 사 : 이무순, 정상철 (양양), 이수규, 고광환, 송인호, 김덕용, 임응호, 이해천, 변완기
 - 감 사 : 정인수, 방향석

라. 一般 現況

- 위 치 : 춘천시 봉의동 15 (도의회내 지하 2층) 033) 249-5067
- 회 원 : 107명 (전역의원 84, 현역의원 23)
 - ※ 준회원 : 24명 (제5대 초선의원)
- 2000년 예산 : 84,142천원
 - 세입 : 회비 6,150 도비45,000 이월금 29,192 특별회비등 3,800
 - 세출 : 인건비 5,800 사업비 78.342

마. 事業推進現況

- 의정소식지 발간 : 1호 ~ 8호
 - 창간호 : 1998. 12. 20
 - 제8호 : 2000. 09. 30
- 강원도 의회사 편찬 (초대 ~ 2대)
 - 발간규모 : 984쪽 1,000부
 - 기 간 : 1998 ~ 2000. 11 (3년차)
 - 배 부 처 : 각시도 및 의회, 시군 및 의회, 읍면동, 언론기관, 지역출신 국회의원등
- 의정회원 뺏지 제작 : 100개 (1,000천원)
- 기타사업
 - 수재민돕기 : 1999. 8. 5 (200천원)
 - 의정의회 수련회 개최 : 1999. 10. 7 ~ 10. 8 (2일간)

- 전·현직 도의원 간담회 : 2000. 1. 19 ~ 1. 20
- 의정회 연찬회 : 2000. 5. 16
- 영동지역 산불이재민 성금지원 : 2000. 5. 16 (830천원)
- 의정회원 초청 도지사 도정보고회 : 2000. 8. 28
- 의회사 출판기념회등 : 2000. 12. 13

바. 全國 市道議政會協會 現況

- 창 립 : 2000. 6. 22
- 위 치 :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63
Tel 02-771-5882 FAX 02-771-5884
- 임 원 - 고 문 : 우병택(부산) 윤태훈(충북) 송봉규(제주)
 - 회 장 : 문일권(서울)
 - 부회장 : 한근이(경기) 조용기(전남)
 - 총 무 : 심상길(인천)
 - 간 사 : 손경호(경북)

사. 定 款

社團法人 江原道議政會 定款

第 1 章 總 則

제1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강원도의정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조직) 본회는 강원도의회 전임의원 및 현임의원으로 조직한다.

제3조 (사무소) 본회의 주사무소는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번지에 둔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第 2 章 目 的 및 事 業

제4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번영을 도모하고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강원도의 발전 그리고 도민의 공공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사업의 종류) 본회는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한 행사
2.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도정홍보
3. 사회복지문제 연구
4.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第 3 章 構 成

제6조 (구성) 본회는 강원도의회 의원을 역임한 전의원을 정회원으로 하고 현역의원 중 초선의원을 준회원으로 한다.

제7조 (회원 권리의무) ① 본회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며 소정의 회비를 부담할 의무를 가진다.

제8조 (징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회원
2. 본회 정관 및 규정 또는 제반사항을 이행치 아니한 회원
- ② 징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이를 정한다.

第 4 章 任 員

제9조 (임원의 종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부회장 : 3인
단, 부회장중 1인은 상임부회장으로 한다.
3. 이 사 : 6인이상 13인 이내
4. 감 사 : 2인이상 5인이내

제10조 (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상임부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제11조 (임원의 대우) 본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①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각 임원은 중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본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상임부회장은 사무처를 관장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민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한다.

제14조 (임원선임의 보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에 대한 임원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第 5 章 會 議

第 1 節 總 會

제15조 (구성) 총회는 전 회원으로 구성한다.

단, 준회원은 의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제16조 (구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7조 (소집)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 2/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소집요구서를 접수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8조 (통지) 총회를 개최코자 할 때에는 개최일 7일전에 회의의 목적 등을 기재한 회의소집 안 내서를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성원 및 의결) ①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한다.

②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 가부동수일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0조 (의사진행) 본회 총회는 회장이 의장이 되어 의사를 진행하며 임기가 만료한 후 첫 총회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사를 진행하게 된다.

제21조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정관개폐
2. 임원선출
3.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4. 중요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기타 안건의 처리

第 2 節 理 事 會

제22조 (구성) ①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출하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② 이사회는 정수는 9인인상 17인 이내로 한다.

③ 이사회는 의장은 회장이 되고 의장이 유고시에는 상임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23조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1/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24조 (통지) 이사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일 5일전까지 서면으로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에는 전문으로 통지한다.

제25조 (성원 및 의결)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6조 (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을 요할 때 총회 기능을 대행한다. 단, 차기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업계획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재정조달 방법의 연구와 결정
4. 총회에서 수임된 사항의 처리와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결정
5. 고문 추대 동의
6. 사무총장 임명 동의
7. 기타 회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의결

第 3 節 運 營 委 員 會

제27조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산출하는 회장, 부회장, 이사 및 운영에 열의가 있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정수는 20인이상 25인 이내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고 의자의 유고시에는 상임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28조 (소집)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 1/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29조 (통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일 5일전까지 서면으로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제30조 (성원 및 의결) 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1조 (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제21조 제1항에 명시한 정관 개폐를 제외한 2항부터 6항에 명시된 사항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사항을 대행하고 다음 총회시 운영위원회 간사가 결과 보고한다.

第 4 節 諮 問 機 構

제32조 (고문) 본회는 고문을 두되 전임회장을 당연직 고문으로 하고, 또한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약간명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第 5 節 各 種 委 員 會

제33조 (위원회 설치)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第 6 節 事 務 處

제34조 (사무처) ①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총장과 직원 약간명을 둔다.



③ 사무총장과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단, 준회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을 임명할 때에는 도의회 의장과 협의한다.

제35조 (사무처직제) 사무처의 직제와 정원 및 보수에 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第 7 節 財 產 및 會 計

제36조 (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가. 본회 소유부동산

나. 총회 의결로 결정된 재산

2. 보통재산은 다음과 같다.

가. 본회에서 발생하는 회보 및 이에 준하는 간행물

나. 본회에서 판매하는 물건

다. 기타 기본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제37조 (경비) 본회의 경비는 회비, 특별회비, 회사금 및 보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38조 (기본재산의 처분) 기본재산은 이를 처분(대체를 포함)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단, 본회의 사업 수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9조 (재산의 관리) 본회의 재산은 회장이 이를 관리하되 자산 중 현금은 시중 금융관리에 예치하여야 한다.

단, 현금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일부를 확실한 유가증권으로 대체 보관할 수 있다.

제40조 (예산) 본회의 예산은 매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회장이 편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주무관청의 승인후 시행한다.

제41조 (결산) ① 본회의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와 동시 회장이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필한 후 이사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회계결산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42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43조 (회비) 회비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44조 (임시조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본회가 새로이 중대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第 6 章 定 款 變 更

제45조 (정관변경) 본 정관을 변경하여야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한다.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第 7 章 解 散

제46조 (해산) 본회를 해산코자 할 때에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3/4이상의 의결을 하여야 한다.

제47조 (잔여재산 처리) 본회가 해산할 때에 잔여재산은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3/4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본회와 유사한 법인 또는 주무장관에 기부한다.

제48조 (보칙) 본 장관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부칙 ('98. 6. 26)

(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10. 7)

(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議 政 白 書

2001年 1月 日 印 刷

2001年 2月 日 發 行

發 行 : 江 原 道 議 會

編 輯 : 江 原 道 議 會 事 務 處

事 務 處 長 李 容 善

總 務 擔 當 官 朴 宗 基

印 刷 :  에문사 ☎(033) 254-2478

連絡處 : 200-700 春川市 鳳儀洞 15番地

江原道議會事務處 總務擔當官室

電話 (033) 255-8166, 249-5042

FAX (033) 255-8167

[비 매 품]